

# 北韓法令集

上

2022. 10



## 헌 법

### 사회주의헌법

|                     |    |
|---------------------|----|
| 서 문                 | 32 |
| 제1장 정 치             | 34 |
| 제2장 경 제             | 36 |
| 제3장 문 화             | 38 |
| 제4장 국 방             | 39 |
| 제5장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 40 |
| 제6장 국가기구            | 42 |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51 |
| 〈참 고〉               |    |
| 조선로동당 규약            | 54 |
|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 71 |

## 주권부문

###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                |    |
|----------------|----|
| 제1장 선거법의 기본    | 80 |
| 제2장 대의원수와 선거날자 | 81 |
| 제3장 선거구        | 82 |
| 제4장 선거위원회      | 82 |
| 제5장 선거자명부      | 84 |
| 제6장 대의원후보자     | 85 |
| 제7장 선거선전       | 86 |
| 제8장 선거장        | 87 |
| 제9장 투 표        | 88 |
| 제10장 투표결과의 확정  | 89 |
| 제11장 재선거와 보충선거 | 90 |
| 제12장 신소처리와 제재  | 91 |

### 국기법

|              |    |
|--------------|----|
| 제1장 국기법의 기본  | 92 |
| 제2장 국기규격과 제작 | 93 |
| 제3장 국기사용     | 94 |
| 제4장 국기계양식    | 97 |

|  |    |
|--|----|
| 제5장 국기보관관리 .....                       | 98 |
| 제6장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 | 99 |

## 국장법

|                                 |     |
|---------------------------------|-----|
| 제1장 국장법의 기본 .....               | 101 |
| 제2장 국장규격과 제작 .....              | 101 |
| 제3장 국장사용 .....                  | 102 |
| 제4장 국장관리 .....                  | 104 |
| 제5장 국장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 | 104 |

|           |     |
|-----------|-----|
| 국적법 ..... | 105 |
|-----------|-----|

## 지방주권기관법

|                       |     |
|-----------------------|-----|
| 제1장 지방주권기관법의 기본 ..... | 108 |
| 제2장 지방인민회의 .....      | 109 |
| 제3장 지방인민위원회 .....     | 111 |

|                  |     |
|------------------|-----|
|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 | 114 |
|------------------|-----|

## 혁명사적사업법

|  |     |
|--|-----|
| 제1장 혁명사적사업법의 기본 .....  | 117 |
| 제2장 절세위인들과 혁명일가분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과 혁명사적의 발굴, 수집, 고충, 등록 ..... | 118 |
| 제3장 혁명사적부문의 건설 및 꾸리기, 보존관리 .....                                 | 119 |
| 제4장 혁명사적보위 및 교양, 조건보장 .....                                      | 121 |
| 제5장 혁명사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122 |

# 행정부문

---

|                |     |
|----------------|-----|
| 공무원자격판정법 ..... | 126 |
|----------------|-----|

|           |     |
|-----------|-----|
| 공인법 ..... | 130 |
|-----------|-----|

## 금수산태양궁전법

|                              |     |
|------------------------------|-----|
| 제1장 금수산태양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 .....  | 134 |
| 제2장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 .....      | 135 |
| 제3장 금수산태양궁전에서의 경의표시 .....    | 136 |
| 제4장 금수산태양궁전의 관리운영 .....      | 137 |
| 제5장 금수산태양궁전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 | 138 |

## 기구법

|                         |     |
|-------------------------|-----|
| 제1장 기구법의 기본 .....       | 140 |
| 제2장 기구의 기준제정 .....      | 141 |
| 제3장 기구의 조직과 정리 .....    | 143 |
| 제4장 기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144 |

## 기밀법

|                     |     |
|---------------------|-----|
| 제1장 기밀법의 기본         | 146 |
| 제2장 기밀대상의 등록        | 146 |
| 제3장 기밀대상의 보관관리      | 147 |
| 제4장 기밀대상의 리용        | 148 |
| 제5장 기밀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149 |

##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

|                        |     |
|------------------------|-----|
| 제1장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의 기본 | 151 |
| 제2장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방지      | 151 |
| 제3장 법적감시 및 감독통제        | 154 |
| 제4장 법적책임               | 155 |

## 문헌법

|                   |     |
|-------------------|-----|
| 제1장 문헌법의 기본       | 159 |
| 제2장 문헌편찬          | 159 |
| 제3장 문헌보존관리        | 160 |
| 제4장 문헌리용          | 161 |
| 제5장 문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161 |

## 법제정법

|                               |     |
|-------------------------------|-----|
| 제1장 법제정법의 기본                  | 163 |
| 제2장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제정 | 164 |
| 제3장 내각의 규정제정                  | 167 |
| 제4장 내각위원회, 성의 세칙제정            | 168 |
| 제5장 도(직할시)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의 세칙제정  | 169 |
| 제6장 법문건의 효력                   | 169 |
| 제7장 법문건의 작성과 법체계화             | 171 |
| 제8장 법적책임                      | 173 |

## 신소청원법

|                     |     |
|---------------------|-----|
| 제1장 신소청원법의 기본       | 174 |
| 제2장 신소청원의 제기        | 175 |
| 제3장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 175 |
| 제4장 신소청원의 료해처리      | 176 |
| 제5장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179 |

## 주민행정법

|                     |     |
|---------------------|-----|
| 제1장 주민행정법의 기본       | 180 |
| 제2장 주민행정기관          | 180 |
| 제3장 주민행정관리          | 181 |
| 제4장 주민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184 |

## 평양시관리법

|                      |     |
|----------------------|-----|
| 제1장 평양시관리법의 기본       | 185 |
| 제2장 평양시의 령역          | 186 |
| 제3장 도시건설과 경영         | 187 |
| 제4장 거주 및 기관등록        | 189 |
| 제5장 주민봉사             | 190 |
| 제6장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192 |

## 행정검열법

|                     |     |
|---------------------|-----|
| 제1장 행정검열법의 기본       | 193 |
| 제2장 행정검열의 관할        | 194 |
| 제3장 행정검열의 절차와 방법    | 194 |
| 제4장 행정검열의 총화        | 196 |
| 제5장 행정검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197 |

## 행정구역법

|               |     |
|---------------|-----|
| 제1장 행정구역법의 기본 | 198 |
|---------------|-----|

# 형·민사부문

---

## 가족법

|             |     |
|-------------|-----|
| 제1장 가족법의 기본 | 204 |
| 제2장 결혼      | 205 |
| 제3장 가정      | 205 |
| 제4장 후견      | 208 |
| 제5장 상속      | 209 |
| 제6장 제재      | 210 |

|         |     |
|---------|-----|
| 구타행위방지법 | 211 |
|---------|-----|

## 대외민사관계법

|                 |     |
|-----------------|-----|
| 제1장 대외민사관계법의 기본 | 215 |
| 제2장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 | 217 |
| 제3장 재산관계        | 217 |
| 제4장 가족관계        | 219 |
| 제5장 분쟁해결        | 221 |

## 마약범죄방지법

|                   |     |
|-------------------|-----|
| 제1장 마약범죄방지법의 기본   | 224 |
| 제2장 마약범죄의 방지 및 적발 | 225 |
| 제3장 마약범죄에 대한 법적책임 | 226 |

## 민법

|                          |     |
|--------------------------|-----|
| 제1편 일반제도 .....           | 230 |
| 제1장 민법의 기본 .....         | 230 |
| 제2장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    | 231 |
| 제3장 민사법률행위 .....         | 233 |
| 제2편 소유권제도 .....          | 235 |
| 제1장 일반규정 .....           | 235 |
| 제2장 국가소유권 .....          | 236 |
| 제3장 사회협동단체소유권 .....      | 237 |
| 제4장 개인소유권 .....          | 238 |
| 제3편 채권채무제도 .....         | 239 |
| 제1장 일반규정 .....           | 239 |
| 제2장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    | 243 |
| 제3장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 | 248 |
| 제4장 부당리득행위 .....         | 258 |
| 제4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 .....   | 259 |
| 제1장 민사책임 .....           | 259 |
| 제2장 민사시효 .....           | 261 |

## 민사소송법

|                      |     |
|----------------------|-----|
|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  | 264 |
| 제2장 일반규정 .....       | 265 |
| 제3장 제1심재판 .....      | 278 |
| 제4장 제2심재판 .....      | 294 |
| 제5장 비상상소심 및 재심 ..... | 295 |
| 제6장 판결, 판정의 집행 ..... | 299 |

## 상속법

|                    |     |
|--------------------|-----|
| 제1장 상속법의 기본 .....  | 304 |
| 제2장 법정상속 .....     | 305 |
| 제3장 유언상속과 증여 ..... | 307 |
| 제4장 상속의 집행 .....   | 309 |

## 세외부담방지법

|                           |     |
|---------------------------|-----|
| 제1장 세외부담방지법의 기본 .....     | 312 |
| 제2장 행정적 및 재정적장악통제 .....   | 313 |
| 제3장 세외부담행위의 조사처리 .....    | 314 |
| 제4장 세외부담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 | 315 |

## 손해보상법

|                         |     |
|-------------------------|-----|
| 제1장 손해보상법의 기본 .....     | 317 |
| 제2장 손해보상관계의 당사자 .....   | 318 |
| 제3장 재산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 | 319 |

|                           |     |
|---------------------------|-----|
| 제4장 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   | 322 |
| 제5장 손해보상액의 확정과 보상방법 ..... | 323 |

### 해사소송관계법

|                       |     |
|-----------------------|-----|
| 제1장 해사소송관계법의 기본 ..... | 325 |
| 제2장 관할 .....          | 326 |
| 제3장 해사청구담보처분 .....    | 327 |
| 제4장 해사청구의 책임제한 .....  | 332 |
| 제5장 채권등록과 청산수속 .....  | 333 |

|              |     |
|--------------|-----|
| 형민사감정법 ..... | 335 |
|--------------|-----|

### 형법

|                              |     |
|------------------------------|-----|
| 제1장 형법의 기본 .....             | 340 |
| 제2장 일반규정 .....               | 341 |
|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        | 347 |
|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     | 349 |
|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     | 351 |
|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     | 366 |
|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   | 370 |
| 제8장 사회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   | 375 |
| 제9장 국민의 인신, 재산을 침해한 범죄 ..... | 377 |

|                  |     |
|------------------|-----|
| 형법부칙(일반범죄) ..... | 381 |
|------------------|-----|

### 형사소송법

|                      |     |
|----------------------|-----|
|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  | 383 |
| 제2장 일반규정 .....       | 384 |
| 제3장 수사 .....         | 400 |
| 제4장 예심 .....         | 402 |
| 제5장 기소 .....         | 417 |
| 제6장 제1심재판 .....      | 418 |
| 제7장 제2심재판 .....      | 430 |
| 제8장 비상상소심과 재심 .....  | 432 |
| 제9장 판결, 판정의 집행 ..... | 436 |

## 재판·인민보안부문

---

### 검찰감시법

|                      |     |
|----------------------|-----|
| 제1장 검찰감시의 기본원칙 ..... | 440 |
| 제2장 검사의 감시임무 .....   | 441 |
| 제3장 검찰감시관할 .....     | 442 |



|                                  |     |
|----------------------------------|-----|
| 제4장 검찰감시방법 .....                 | 442 |
| 제5장 검찰감시결과에 대한 처리 .....          | 444 |
| <b>공민등록법</b> .....               | 446 |
| <b>공증법</b>                       |     |
| 제1장 공증법의 기본 .....                | 449 |
| 제2장 공증대상 .....                   | 450 |
| 제3장 공증관할 .....                   | 451 |
| 제4장 공증절차와 방법 .....               | 451 |
| 제5장 공증에 대한 의견처리와 분쟁해결 .....      | 453 |
| <b>군중신고법</b>                     |     |
| 제1장 군중신고법의 기본 .....              | 455 |
| 제2장 군중신고체계의 확립, 군중신고절차와 방법 ..... | 456 |
| 제3장 군중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          | 458 |
| 제4장 군중신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460 |
| <b>도로교통법</b>                     |     |
| 제1장 도로교통법의 기본 .....              | 461 |
| 제2장 도로교통지휘신호와 안전시설물의 관리 .....    | 462 |
| 제3장 보행자의 통행 .....                | 463 |
| 제4장 차의 통행 .....                  | 464 |
| 제5장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471 |
| <b>독성물질취급법</b>                   |     |
| 제1장 독성물질취급법의 기본 .....            | 474 |
| 제2장 독성물질의 생산과 보관 .....           | 475 |
| 제3장 독성물질의 공급과 운반 .....           | 477 |
| 제4장 독성물질의 사용 .....               | 478 |
| 제5장 독성물질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479 |
| <b>변호사법</b>                      |     |
| 제1장 변호사법의 기본 .....               | 482 |
| 제2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            | 483 |
| 제3장 변호사자격 .....                  | 484 |
| 제4장 변호사보수 .....                  | 485 |
| 제5장 변호사조직 .....                  | 485 |
| <b>소방법</b>                       |     |
| 제1장 소방법의 기본 .....                | 487 |
| 제2장 화재방지 .....                   | 488 |
| 제3장 소방대의 조직 .....                | 491 |
| 제4장 불끄기와 구조 .....                | 492 |
| 제5장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494 |

## 인민보안단속법

|                        |     |
|------------------------|-----|
| 제1장 인민보안단속법의 기본 .....  | 496 |
| 제2장 인민보안단속대상 .....     | 497 |
| 제3장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 ..... | 500 |
| 제4장 단속한 자의 처리 .....    | 502 |

## 인민보안법

|                           |     |
|---------------------------|-----|
| 제1장 인민보안법의 기본 .....       | 504 |
| 제2장 인민보안기관 .....          | 504 |
| 제3장 인민보안원 .....           | 506 |
| 제4장 인민보안사업의 현대화 .....     | 507 |
| 제5장 인민보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508 |

|              |     |
|--------------|-----|
| 재판소구성법 ..... | 509 |
|--------------|-----|

## 정보보안법

|                           |     |
|---------------------------|-----|
| 제1장 정보보안법의 기본 .....       | 512 |
| 제2장 정보통신망과 정보체계의 보안 ..... | 513 |
| 제3장 정보의 보안 .....          | 515 |
| 제4장 정보보안제품의 개발, 리용 .....  | 516 |
| 제5장 정보보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518 |

## 중재법

|                       |     |
|-----------------------|-----|
| 제1장 중재법의 기본 .....     | 521 |
| 제2장 일반규정 .....        | 521 |
| 제3장 중재관할 .....        | 522 |
| 제4장 중재제기 .....        | 524 |
| 제5장 중재준비 .....        | 525 |
| 제6장 중재심리 .....        | 527 |
| 제7장 재결 및 결정 .....     | 529 |
| 제8장 재결 및 결정의 집행 ..... | 531 |

## 총기류관리법

|                            |     |
|----------------------------|-----|
| 제1장 총기류관리법의 기본 .....       | 533 |
| 제2장 총기류의 공급과 운반 .....      | 533 |
| 제3장 총기류의 보관 .....          | 535 |
| 제4장 총기류의 리용 .....          | 536 |
| 제5장 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537 |

## 판결, 판정 집행법

|                          |     |
|--------------------------|-----|
| 제1장 판결, 판정 집행법의 기본 ..... | 539 |
| 제2장 일반규정 .....           | 540 |
| 제3장 집행관할 .....           | 542 |
| 제4장 집행절차와 방법 .....       | 543 |
| 제5장 집행에 대한 의견제기 .....    | 545 |

|                     |     |
|---------------------|-----|
| <b>폭발물처리법</b> ..... | 546 |
|---------------------|-----|

**행정처벌법**

|                          |     |
|--------------------------|-----|
| 제1장 행정처벌법의 기본 .....      | 550 |
| 제2장 일반규정 .....           | 551 |
| 제3장 위법행위와 행정처벌 .....     | 555 |
| 제4장 행정처벌의 적용절차와 방법 ..... | 589 |

**화약류취급법**

|                            |     |
|----------------------------|-----|
| 제1장 화약류취급법의 기본 .....       | 593 |
| 제2장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 .....      | 594 |
| 제3장 화약류의 공급과 운반 .....      | 596 |
| 제4장 화약류의 사용 .....          | 597 |
| 제5장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599 |

**계획·로동·재산관리부문**

---

**가격법**

|                         |     |
|-------------------------|-----|
| 제1장 가격법의 기본 .....       | 602 |
| 제2장 가격제정 .....          | 603 |
| 제3장 가격적용 .....          | 604 |
| 제4장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604 |

**국토계획법**

|                           |     |
|---------------------------|-----|
| 제1장 국토계획법의 기본 .....       | 606 |
| 제2장 국토계획의 작성 .....        | 607 |
| 제3장 국토계획의 비준 .....        | 608 |
| 제4장 국토계획의 실행 .....        | 609 |
| 제5장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610 |

**기업소법**

|                          |     |
|--------------------------|-----|
| 제1장 기업소법의 기본 .....       | 612 |
| 제2장 기업소의 조직 .....        | 613 |
| 제3장 기업소의 관리기구 .....      | 614 |
| 제4장 기업소의 경영 .....        | 615 |
| 제5장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620 |

**도시계획법**

|                           |     |
|---------------------------|-----|
| 제1장 도시계획법의 기본 .....       | 622 |
| 제2장 도시계획의 작성 .....        | 623 |
| 제3장 도시계획의 비준 .....        | 625 |
| 제4장 도시계획의 실행 .....        | 626 |
| 제5장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627 |

## 로동보호법

|                     |     |
|---------------------|-----|
| 제1장 로동보호법의 기본       | 629 |
| 제2장 로동안전교양          | 630 |
| 제3장 로동보호조건의 보장      | 631 |
| 제4장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 632 |
| 제5장 로동과 휴식          | 634 |
| 제6장 로동안전규률의 확립      | 635 |
| 제7장 로동재해의 구호와 사고심의  | 636 |
| 제8장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638 |

## 로동정량법

|                     |     |
|---------------------|-----|
| 제1장 로동정량법의 기본       | 641 |
| 제2장 로동정량의 제정        | 642 |
| 제3장 로동정량의 적용        | 643 |
| 제4장 로동정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645 |

## 물자소비기준법

|                              |     |
|------------------------------|-----|
| 제1장 물자소비기준법의 기본              | 646 |
| 제2장 물자소비기준의 제정               | 647 |
| 제3장 물자소비기준의 적용               | 649 |
| 제4장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650 |

## 부동산관리법

|                      |     |
|----------------------|-----|
| 제1장 부동산관리법의 기본       | 653 |
| 제2장 부동산의 관리분담        | 654 |
| 제3장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 655 |
| 제4장 부동산의 리용          | 656 |
| 제5장 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     | 657 |
| 제6장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658 |

## 사회주의로동법

|                            |     |
|----------------------------|-----|
| 제1장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           | 660 |
| 제2장 로동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         | 662 |
| 제3장 사회주의로동조직               | 663 |
| 제4장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 664 |
| 제5장 로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 | 665 |
| 제6장 로동보호                   | 666 |
| 제7장 로동과 휴식                 | 668 |
| 제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   | 668 |

## 사회주의재산관리법

|                        |     |
|------------------------|-----|
| 제1장 사회주의재산관리법의 기본      | 670 |
| 제2장 사회주의재산의 분류         | 671 |
| 제3장 사회주의재산의 등록, 평가, 실사 | 672 |

|                               |     |
|-------------------------------|-----|
| 제4장 사회주의재산의 보호 .....          | 672 |
| 제5장 사회주의재산의 리용 .....          | 674 |
| 제6장 사회주의재산의 처리 .....          | 675 |
| 제7장 사회주의재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676 |

### **설비관리법**

|                           |     |
|---------------------------|-----|
| 제1장 설비관리법의 기본 .....       | 677 |
| 제2장 설비의 등록과 실사 .....      | 678 |
| 제3장 설비의 운전과 점검보수 .....    | 679 |
| 제4장 설비의 조절과 폐기 .....      | 681 |
| 제5장 설비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683 |

### **인민경제계획법**

|                             |     |
|-----------------------------|-----|
| 제1장 인민경제계획법의 기본 .....       | 685 |
| 제2장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시달 .....    | 686 |
| 제3장 인민경제계획의 수행 .....        | 689 |
| 제4장 인민경제계획의 수행총화 .....      | 691 |
| 제5장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692 |

### **자재관리법**

|                           |     |
|---------------------------|-----|
| 제1장 자재관리법의 기본 .....       | 696 |
| 제2장 자재의 공급 .....          | 697 |
| 제3장 자재의 리용 .....          | 698 |
| 제4장 자재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700 |

### **재산집행법**

|                         |     |
|-------------------------|-----|
| 제1장 재산집행법의 기본 .....     | 702 |
| 제2장 일반규정 .....          | 702 |
| 제3장 재산집행신청과 집행문발급 ..... | 706 |
| 제4장 재산집행의 절차와 방법 .....  | 707 |
| 제5장 법적책임 .....          | 710 |

### **통계법**

|                         |     |
|-------------------------|-----|
| 제1장 통계법의 기본 .....       | 712 |
| 제2장 통계장악 .....          | 712 |
| 제3장 통계분석 .....          | 713 |
| 제4장 통계자료관리 .....        | 714 |
| 제5장 통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715 |

# 에너지·금속·화학·기계·지하자원부문

---

## 광천법

|                           |     |
|---------------------------|-----|
| 제1장 광천법의 기본 .....         | 718 |
| 제2장 광천의 탐사와 개발 .....      | 719 |
| 제3장 광천의 리용 .....          | 720 |
| 제4장 광천의 보호 .....          | 721 |
| 제5장 광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722 |

## 귀금속관리법

|                            |     |
|----------------------------|-----|
| 제1장 귀금속관리법의 기본 .....       | 724 |
| 제2장 귀금속의 장악 .....          | 724 |
| 제3장 귀금속의 보관 .....          | 725 |
| 제4장 귀금속의 리용 .....          | 726 |
| 제5장 귀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726 |

## 금속공업법

|                             |     |
|-----------------------------|-----|
| 제1장 금속공업법의 기본 .....         | 728 |
| 제2장 금속의 생산 .....            | 729 |
| 제3장 금속의 공급 및 판매 .....       | 731 |
| 제4장 금속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   | 731 |
| 제5장 금속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733 |

## 기계공업법

|                             |     |
|-----------------------------|-----|
| 제1장 기계공업법의 기본 .....         | 736 |
| 제2장 기계제품생산을 위한 기술준비 .....   | 737 |
| 제3장 기계제품의 생산 .....          | 738 |
| 제4장 기계제품의 공급 및 판매 .....     | 739 |
| 제5장 기계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   | 740 |
| 제6장 기계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742 |

## 내화물관리법

|                            |     |
|----------------------------|-----|
| 제1장 내화물관리법의 기본 .....       | 745 |
| 제2장 내화물원료의 탐사와 개발 .....    | 746 |
| 제3장 내화물의 생산 .....          | 747 |
| 제4장 내화물의 공급, 리용 .....      | 749 |
| 제5장 내화물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750 |

## 석탄법

|                   |     |
|-------------------|-----|
| 제1장 석탄법의 기본 ..... | 752 |
| 제2장 석탄탐사 .....    | 753 |
| 제3장 탄광개발 .....    | 755 |
| 제4장 석탄생산 .....    | 757 |

|                                 |     |
|---------------------------------|-----|
| 제5장 석탄의 공급 및 판매, 리용 .....       | 759 |
| 제6장 석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761 |
| <b>에네르기관리법</b>                  |     |
| 제1장 에네르기관리법의 기본 .....           | 766 |
| 제2장 에네르기의 생산, 공급 .....          | 767 |
| 제3장 에네르기리용 .....                | 768 |
| 제4장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770 |
| <b>연유법</b>                      |     |
| 제1장 연유법의 기본 .....               | 773 |
| 제2장 연유의 생산 .....                | 774 |
| 제3장 연유의 수송과 보관 .....            | 775 |
| 제4장 연유의 공급과 판매 .....            | 777 |
| 제5장 연유의 소비 .....                | 778 |
| 제6장 연유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779 |
| <b>원자력법</b>                     |     |
| 제1장 원자력법의 기본 .....              | 781 |
| 제2장 핵시설의 건설 .....               | 782 |
| 제3장 핵시설의 운영 .....               | 784 |
| 제4장 핵물질의 생산과 리용 .....           | 785 |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 .....         | 786 |
| 제6장 원자력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및 감독통제 ..... | 787 |
| <b>유색금속법</b>                    |     |
| 제1장 유색금속법의 기본 .....             | 788 |
| 제2장 유색금속의 생산 .....              | 789 |
| 제3장 유색금속의 공급과 리용 .....          | 789 |
| 제4장 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 .....          | 791 |
| 제5장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792 |
| <b>재생에네르기법</b>                  |     |
| 제1장 재생에네르기법의 기본 .....           | 795 |
| 제2장 재생에네르기의 자원조사 .....          | 796 |
| 제3장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계획 .....     | 797 |
| 제4장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의 장려 .....     | 798 |
| 제5장 재생에네르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   | 799 |
| 제6장 재생에네르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800 |
| <b>전력법</b>                      |     |
| 제1장 전력법의 기본 .....               | 802 |
| 제2장 전력시설건설 .....                | 803 |
| 제3장 전력생산 .....                  | 805 |
| 제4장 전력공급 .....                  | 806 |

|                                     |     |
|-------------------------------------|-----|
| 제5장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                | 808 |
| 제6장 전력의 리용 .....                    | 810 |
| 제7장 급전지휘 .....                      | 812 |
| 제8장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운영 .....              | 813 |
| 제9장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814 |
| <b>주물품협동생산법</b> .....               | 818 |
| <b>중소탄광법</b>                        |     |
| 제1장 중소탄광법의 기본 .....                 | 822 |
| 제2장 중소탄광의 개발 .....                  | 823 |
| 제3장 석탄생산 .....                      | 825 |
| 제4장 석탄리용 .....                      | 826 |
| 제5장 중소탄광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827 |
| <b>중소형발전소법</b>                      |     |
| 제1장 중소형발전소법의 기본 .....               | 831 |
| 제2장 중소형발전소의 건설 .....                | 832 |
| 제3장 중소형발전소의 운영 .....                | 833 |
| 제4장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 .....              | 835 |
| 제5장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836 |
| <b>지하자원법</b>                        |     |
| 제1장 지하자원법의 기본 .....                 | 838 |
| 제2장 지하자원탐사 .....                    | 839 |
| 제3장 지하자원개발 .....                    | 841 |
| 제4장 지하자원리용 .....                    | 844 |
| 제5장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 ..... | 845 |
| <b>화학공업법</b>                        |     |
| 제1장 화학공업법의 기본 .....                 | 849 |
| 제2장 화학공정건설 .....                    | 850 |
| 제3장 화학제품의 생산 .....                  | 851 |
| 제4장 화학제품의 공급 및 판매, 리용 .....         | 853 |
| 제5장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           | 854 |
| 제6장 화학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855 |
| <b>흑색금속법</b>                        |     |
| 제1장 흑색금속법의 기본 .....                 | 858 |
| 제2장 흑색금속의 생산 .....                  | 859 |
| 제3장 흑색금속의 공급과 리용 .....              | 861 |
| 제4장 파철관리 .....                      | 862 |
| 제5장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864 |



# 교통운수부문

---

##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                            |     |
|----------------------------|-----|
| 제1장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의 기본 ..... | 868 |
| 제2장 대리업무의 의뢰 및 접수 .....    | 869 |
| 제3장 대리업무의 리행 .....         | 870 |
| 제4장 대리업무에 대한 지도통제 .....    | 872 |

## 무역집배송선증개법

|                               |     |
|-------------------------------|-----|
| 제1장 무역집배송선증개법의 기본 .....       | 874 |
| 제2장 용선의뢰 및 증개 .....           | 875 |
| 제3장 용선계약체결 및 리행 .....         | 876 |
| 제4장 무역집배송선증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877 |

## 민용항공법

|                                   |     |
|-----------------------------------|-----|
| 제1장 민용항공법의 기본 .....               | 879 |
| 제2장 항공성원 .....                    | 880 |
| 제3장 항공기 .....                     | 881 |
| 제4장 비행장 .....                     | 883 |
| 제5장 항공기의 운행 .....                 | 884 |
| 제6장 항공영업 .....                    | 885 |
| 제7장 다른 나라 항공기의 운행 .....           | 888 |
| 제8장 항공보안 .....                    | 889 |
| 제9장 항공기의 조난구조와 사고조사 .....         | 890 |
| 제10장 항공보험 .....                   | 892 |
| 제11장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 | 892 |

## 배길표식법

|                           |     |
|---------------------------|-----|
| 제1장 배길표식법의 기본 .....       | 894 |
| 제2장 배길표식물의 설치 .....       | 895 |
| 제3장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 .....     | 896 |
| 제4장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897 |

## 배등록법

|                          |     |
|--------------------------|-----|
| 제1장 배등록법의 기본 .....       | 899 |
| 제2장 배등록의 신청 .....        | 899 |
| 제3장 배등록의 심의 .....        | 901 |
| 제4장 배등록증서 .....          | 903 |
| 제5장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904 |

## 배안전법

|                          |     |
|--------------------------|-----|
| 제1장 배안전법의 기본 .....       | 905 |
| 제2장 배의 설계 및 건조, 검사 ..... | 906 |

|                          |     |
|--------------------------|-----|
| 제3장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 .....  | 908 |
| 제4장 배의 항해안전보장 .....      | 909 |
| 제5장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912 |

## 선원법

|                         |     |
|-------------------------|-----|
| 제1장 선원법의 기본 .....       | 914 |
| 제2장 선원의 양성 .....        | 915 |
| 제3장 선원의 등록 .....        | 916 |
| 제4장 선원의 기술자격심사 .....    | 918 |
| 제5장 선원의 임무 .....        | 920 |
| 제6장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921 |

## 수로법

|                         |     |
|-------------------------|-----|
| 제1장 수로법의 기본 .....       | 923 |
| 제2장 수로의 조사 .....        | 924 |
| 제3장 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 .....  | 925 |
| 제4장 수로자료의 리용 .....      | 927 |
| 제5장 수로시설물의 관리 .....     | 928 |
| 제6장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929 |

## 자동차운수법

|                            |     |
|----------------------------|-----|
| 제1장 자동차운수법의 기본 .....       | 931 |
| 제2장 자동차운행 .....            | 932 |
| 제3장 자동차집수송 .....           | 933 |
| 제4장 자동차려객수송 .....          | 934 |
| 제5장 자동차관리 .....            | 936 |
| 제6장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937 |

## 지하철도법

|                              |     |
|------------------------------|-----|
| 제1장 지하철도법의 기본 .....          | 938 |
| 제2장 지하철도의 건설 .....           | 939 |
| 제3장 지하철도의 관리 .....           | 940 |
| 제4장 지하철도의 운영 .....           | 942 |
| 제5장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944 |

## 철도법

|                           |     |
|---------------------------|-----|
| 제1장 철도법의 기본 .....         | 946 |
| 제2장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  | 947 |
| 제3장 열차운행 .....            | 949 |
| 제4장 철도화물수송 .....          | 950 |
| 제5장 철도려객수송 .....          | 952 |
| 제6장 철도보호 .....            | 953 |
| 제7장 철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955 |

## 철도차량법

|                           |     |
|---------------------------|-----|
| 제1장 철도차량법의 기본 .....       | 959 |
| 제2장 철도차량의 생산 .....        | 960 |
| 제3장 철도차량의 등록 .....        | 961 |
| 제4장 철도차량의 관리운영 .....      | 962 |
| 제5장 철도차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964 |

## 철도화물수송법

|                             |     |
|-----------------------------|-----|
| 제1장 철도화물수송법의 기본 .....       | 966 |
| 제2장 철도화물수송계획과 계약 .....      | 967 |
| 제3장 철도화물수송의 짐입자 .....       | 969 |
| 제4장 철도화물의 수송자 .....         | 970 |
| 제5장 철도화물수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972 |

## 항만법

|                         |     |
|-------------------------|-----|
| 제1장 항만법의 기본 .....       | 974 |
| 제2장 항만건설 .....          | 975 |
| 제3장 항만관리 .....          | 977 |
| 제4장 항운영 .....           | 980 |
| 제5장 항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983 |

## 항무감독법

|                           |     |
|---------------------------|-----|
| 제1장 항무감독법의 기본 .....       | 985 |
| 제2장 해상교통관리 .....          | 986 |
| 제3장 배와 짐작업에 대한 감독 .....   | 988 |
| 제4장 항운영에 대한 감독 .....      | 992 |
| 제5장 항무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994 |

## 해사감독법

|                            |      |
|----------------------------|------|
| 제1장 해사감독법의 기본 .....        | 996  |
| 제2장 해사감독체계의 수립 .....       | 997  |
| 제3장 배의 등록 .....            | 999  |
| 제4장 선원등록과 선원기술자격심사 .....   | 1001 |
| 제5장 배설계문건의 승인과 배건조검사 ..... | 1003 |
| 제6장 운항배의 검사 .....          | 1005 |
| 제7장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검열 .....    | 1007 |
| 제8장 배에 의한 오염방지 .....       | 1009 |
| 제9장 운항배에 대한 통제 .....       | 1011 |
| 제10장 해상탐색 및 구조조종 .....     | 1013 |
| 제11장 해난사고처리 .....          | 1014 |
| 제12장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1015 |

## 해상집수송법

|                |      |
|----------------|------|
| 제1장 해상집수송법의 기본 | 1017 |
| 제2장 집수송자       | 1018 |
| 제3장 짐보내는자와 받는자 | 1021 |
| 제4장 배짐증권       | 1022 |
| 제5장 배의 운임      | 1024 |
| 제6장 용 선        | 1025 |
| 제7장 분쟁해결       | 1027 |

## 해운법

|                   |      |
|-------------------|------|
| 제1장 해운법의 기본       | 1029 |
| 제2장 배             | 1030 |
| 제3장 선 원           | 1031 |
| 제4장 항 해           | 1032 |
| 제5장 해상수송          | 1033 |
| 제6장 배에 대한 봉사      | 1037 |
| 제7장 해난구조          | 1038 |
| 제8장 해상보험          | 1040 |
| 제9장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1042 |
| 제10장 분쟁해결         | 1043 |

# 농업·임업·수산부문

---

## 과수법

|                      |      |
|----------------------|------|
| 제1장 과수법의 기본          | 1046 |
| 제2장 과일나무모의 생산        | 1047 |
| 제3장 과수원의 조성          | 1048 |
| 제4장 과수원의 관리          | 1049 |
| 제5장 과일수확과 처리         | 1050 |
| 제6장 과수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1051 |

## 농약법

|                     |      |
|---------------------|------|
| 제1장 농약법의 기본         | 1052 |
| 제2장 농약의 검정과 등록      | 1053 |
| 제3장 농약의 생산과 공급      | 1055 |
| 제4장 농약의 보관과 리용      | 1056 |
| 제5장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1057 |

## 농업법

|                   |      |
|-------------------|------|
| 제1장 농업법의 기본       | 1058 |
| 제2장 농업생산          | 1059 |
| 제3장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 1062 |

|                              |      |
|------------------------------|------|
| 제4장 농업자원의 보호 .....           | 1065 |
| 제5장 농업생산물의 관리 .....          | 1066 |
| 제6장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1068 |
| <b>농작물종자관리법</b>              |      |
| 제1장 농작물종자관리법의 기본 .....       | 1070 |
| 제2장 농작물종자의 등록 .....          | 1071 |
| 제3장 농작물종자의 생산 .....          | 1071 |
| 제4장 농작물종자의 보관과 리용 .....      | 1073 |
| 제5장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1075 |
| <b>농장법</b>                   |      |
| 제1장 농장법의 기본 .....            | 1077 |
| 제2장 농장의 조직 .....             | 1078 |
| 제3장 농장의 경영활동 .....           | 1080 |
| 제4장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1086 |
| <b>림업법</b>                   |      |
| 제1장 림업법의 기본 .....            | 1089 |
| 제2장 통나무생산 .....              | 1090 |
| 제3장 목재의 공급 및 판매, 리용 .....    | 1092 |
| 제4장 림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      | 1094 |
| 제5장 림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1095 |
| <b>부림소관리법</b>                |      |
| 제1장 부림소관리법의 기본 .....         | 1096 |
| 제2장 부림소종자관리 .....            | 1097 |
| 제3장 부림소의 등록, 실사, 도태 .....    | 1098 |
| 제4장 부림소의 사양관리 .....          | 1099 |
| 제5장 부림소의 판매 .....            | 1101 |
| 제6장 부림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1101 |
| <b>소금법</b>                   |      |
| 제1장 소금법의 기본 .....            | 1104 |
| 제2장 소금밭의 건설 .....            | 1105 |
| 제3장 소금의 생산 .....             | 1107 |
| 제4장 소금의 공급 및 판매, 리용 .....    | 1108 |
| 제5장 소금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1110 |
| <b>수산법</b>                   |      |
| 제1장 수산법의 기본 .....            | 1113 |
| 제2장 수산자원조성 .....             | 1114 |
| 제3장 수산물생산과 가공 .....          | 1115 |
| 제4장 수산자원보호 .....             | 1117 |
| 제5장 수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1118 |

## 수의방역법

|                     |      |
|---------------------|------|
| 제1장 수의방역법의 기본       | 1120 |
| 제2장 동물질병의 예방과 치료    | 1121 |
| 제3장 동물전염성질병의 전파방지   | 1123 |
| 제4장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1126 |

## 수의약품관리법

|                       |      |
|-----------------------|------|
| 제1장 수의약품관리법의 기본       | 1128 |
| 제2장 수의약품의 생산, 공급      | 1128 |
| 제3장 수의약품의 보관, 리용      | 1129 |
| 제4장 수의약품의 검정          | 1130 |
| 제5장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1132 |

## 양어법

|                   |      |
|-------------------|------|
| 제1장 양어법의 기본       | 1133 |
| 제2장 양어수역의 관리      | 1134 |
| 제3장 물고기자원의 조성     | 1135 |
| 제4장 물고기생산         | 1136 |
| 제5장 물고기자원의 보호     | 1137 |
| 제6장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1138 |

## 인삼법

|                     |      |
|---------------------|------|
| 제1장 인삼법의 기본         | 1140 |
| 제2장 인삼밭의 조성         | 1141 |
| 제3장 인삼의 생산과 수매      | 1142 |
| 제4장 인삼가공제품의 생산과 판매  | 1144 |
| 제5장 인삼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1145 |

## 작물유전자원관리법

|                         |      |
|-------------------------|------|
| 제1장 작물유전자원관리법의 기본       | 1148 |
| 제2장 작물유전자원의 등록          | 1149 |
| 제3장 작물유전자원의 보존과 리용      | 1150 |
| 제4장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1152 |

## 잠업법

|                      |      |
|----------------------|------|
| 제1장 잠업법의 기본          | 1154 |
| 제2장 누에먹이밭의 조성        | 1155 |
| 제3장 누에고치의 생산         | 1156 |
| 제4장 누에고치의 수매와 리용     | 1157 |
| 제5장 잠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1159 |

## 축산법

|               |      |
|---------------|------|
| 제1장 축산법의 기본   | 1162 |
| 제2장 집집승종자의 확보 | 1163 |

|                            |      |
|----------------------------|------|
| 제3장 집짐승의 먹이보장 .....        | 1165 |
| 제4장 집짐승의 사양관리 .....        | 1167 |
| 제5장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1169 |

## 계량·규격·품질감독부문

---

### 계량법

|                            |      |
|----------------------------|------|
| 제1장 계량법의 기본 .....          | 1172 |
| 제2장 계량단위의 제정 .....         | 1173 |
| 제3장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관리 ..... | 1174 |
| 제4장 계량수단의 생산, 리용 .....     | 1176 |
| 제5장 계량수단의 검정 .....         | 1177 |
| 제6장 계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1178 |

|                       |      |
|-----------------------|------|
| <b>국경동식물검역법</b> ..... | 1182 |
|-----------------------|------|

|                      |      |
|----------------------|------|
| <b>국경위생검역법</b> ..... | 1188 |
|----------------------|------|

### 국경통과지점관리법

|                               |      |
|-------------------------------|------|
| 제1장 국경통과지점관리법의 기본 .....       | 1193 |
| 제2장 국경통과지점의 설정 .....          | 1194 |
| 제3장 국경통과지점의 건설 .....          | 1195 |
| 제4장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 .....        | 1196 |
| 제5장 국경통과지점에서의 검사와 검역 .....    | 1198 |
| 제6장 국경통과지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1199 |

### 규격법

|                         |      |
|-------------------------|------|
| 제1장 규격법의 기본 .....       | 1201 |
| 제2장 규격의 제정 .....        | 1202 |
| 제3장 규격의 적용 .....        | 1204 |
| 제4장 규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1205 |

|                      |      |
|----------------------|------|
| <b>무역화물검수법</b> ..... | 1207 |
|----------------------|------|

### 상품식별부호법

|                             |      |
|-----------------------------|------|
| 제1장 상품식별부호법의 기본 .....       | 1211 |
| 제2장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 .....       | 1212 |
| 제3장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 .....    | 1213 |
| 제4장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1214 |

### 수출입상품검사법

|                        |      |
|------------------------|------|
| 제1장 수출입상품검사법의 기본 ..... | 1216 |
| 제2장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 .....  | 1217 |

|                              |      |
|------------------------------|------|
| 제3장 수출입상품의 검사방법 .....        | 1217 |
| 제4장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1219 |

###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                              |      |
|------------------------------|------|
| 제1장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의 기본 .....    | 1221 |
| 제2장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대상 .....     | 1222 |
| 제3장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절차와 방법 ..... | 1223 |
| 제4장 열 및 내압설비감독결과의 처리 .....   | 1225 |

### 제품생산허가법

|                             |      |
|-----------------------------|------|
| 제1장 제품생산허가법의 기본 .....       | 1227 |
| 제2장 제품생산의 허가대상 .....        | 1228 |
| 제3장 제품생산의 허가신청 .....        | 1229 |
| 제4장 제품생산의 허가심의 .....        | 1230 |
| 제5장 제품생산허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1231 |

### 품질감독법

|                           |      |
|---------------------------|------|
| 제1장 품질감독법의 기본 .....       | 1233 |
| 제2장 공정검사 .....            | 1234 |
| 제3장 제품검사 .....            | 1236 |
| 제4장 품질검정 .....            | 1238 |
| 제5장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1239 |

### 허풍방지법

|                           |      |
|---------------------------|------|
| 제1장 허풍방지법의 기본 .....       | 1241 |
| 제2장 경제계산에서의 허풍방지 .....    | 1241 |
| 제3장 농업생산에서의 허풍방지 .....    | 1242 |
| 제4장 사회전반에서의 허풍방지 .....    | 1244 |
| 제5장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 1246 |

## 北韓法令集 下

##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부문

---

|             |    |
|-------------|----|
| 건설감독법 ..... | 34 |
| 건설법 .....   | 40 |
| 건설설계법 ..... | 52 |



|                    |     |
|--------------------|-----|
| 도시경영법 .....        | 62  |
| 도시미화법 .....        | 72  |
| 량정법 .....          | 79  |
| 사회주의상업법 .....      | 88  |
| 살림집법 .....         | 102 |
| 상수도법 .....         | 114 |
|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 | 121 |
| 시, 군발전법 .....      | 127 |
| 원림법 .....          | 142 |
| 주민연료법 .....        | 148 |
| 편의봉사법 .....        | 155 |
| 하수도법 .....         | 162 |
| 화장법 .....          | 168 |

## 국토·환경보호부문

---

|                   |     |
|-------------------|-----|
| 간석지법 .....        | 172 |
| 갑문법 .....         | 179 |
| 공원, 유원지관리법 .....  | 186 |
| 국토환경보호단속법 .....   | 194 |
| 대기오염방지법 .....     | 197 |
| 대동강오염방지법 .....    | 205 |
| 도로법 .....         | 217 |
| 물자원법 .....        | 224 |
| 바다오염방지법 .....     | 230 |
| 방사성오염방지법 .....    | 240 |
| 보통강오염방지법 .....    | 249 |
| 산림법 .....         | 260 |
|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 | 273 |
| 유용동물보호법 .....     | 281 |

|                        |     |
|------------------------|-----|
| 자연보호구법 .....           | 285 |
| 재자원화법 .....            | 292 |
|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   | 299 |
|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 | 313 |
| 토지법 .....              | 321 |
| 폐기폐설물취급법 .....         | 331 |
| 하천법 .....              | 337 |
| 해상탐색 및 구조법 .....       | 343 |
| 환경보호법 .....            | 353 |
| 환경영향평가법 .....          | 368 |

## 재정·금융·보험부문

---

|                        |     |
|------------------------|-----|
| 국가예산수입법 .....          | 374 |
| 령수증법 .....             | 386 |
| 발권법 .....              | 391 |
| 보험법 .....              | 393 |
| 상업은행법 .....            | 405 |
| 상품식별부호관리법 .....        | 413 |
| 외화관리법 .....            | 417 |
|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 | 423 |
| 재정법 .....              | 433 |
| 전자결제법 .....            | 442 |
| 정보식별부호관리법 .....        | 446 |
| 중앙은행법 .....            | 450 |
| 지방예산법 .....            | 456 |
| 화폐류통법 .....            | 463 |
| 회계검증법 .....            | 469 |
| 회계법 .....              | 476 |

##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부문

---

|             |     |
|-------------|-----|
| 공업도안법       | 484 |
| 과학기술법       | 491 |
| 과학기술성과도입법   | 503 |
| 기상법         | 511 |
| 기상수문법       | 517 |
| 발명법         | 524 |
| 방송법         | 535 |
| 방송시설법       | 543 |
| 상표법         | 549 |
| 소프트웨어보호법    | 557 |
| 소프트웨어산업법    | 564 |
| 우주개발법       | 572 |
| 원산지명법       | 575 |
| 유기산업법       | 581 |
|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 587 |
| 이동통신법       | 596 |
| 저작권법        | 602 |
| 전기통신법       | 610 |
| 전자인증법       | 615 |
| 전파관리법       | 621 |
| 체신법         | 626 |
| 출판법         | 635 |
| 컴퓨터망관리법     | 640 |
|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 647 |

## 교육·문화·체육부문

---

|               |     |
|---------------|-----|
| 고등교육법         | 654 |
| 교원법           | 664 |
| 교육강령집행법       | 672 |
| 교육법           | 678 |
| 도서관법          | 685 |
|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 693 |
| 문화유산보호법       | 701 |
| 민족유산보호법       | 710 |
| 보통교육법         | 722 |
| 산업미술법         | 731 |
| 어린이보육교양법      | 739 |
| 원격교육법         | 748 |
| 청년교양보장법       | 755 |
| 체육법           | 763 |
| 체육시설법         | 771 |

## 보건부문

---

|         |     |
|---------|-----|
| 공중위생법   | 778 |
| 금연법     | 782 |
| 담배통제법   | 787 |
| 마약관리법   | 793 |
| 비상방역법   | 807 |
| 수입물자소독법 | 825 |
| 식품위생법   | 828 |
| 약초법     | 832 |
| 의료법     | 839 |
| 의약품관리법  | 846 |

|              |     |
|--------------|-----|
| 인민보건법 .....  | 853 |
| 전염병예방법 ..... | 860 |

## 사회복지부문

---

|                    |     |
|--------------------|-----|
| 여성권리보장법 .....      | 874 |
| 년로자보호법 .....       | 882 |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 889 |
| 아동권리보장법 .....      | 905 |
| 육아법 .....          | 913 |
| 장애인보호법 .....       | 923 |
| 적십자회법 .....        | 931 |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 935 |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    | 941 |

## 북남경제협력부문

---

|               |     |
|---------------|-----|
| 개성공업지구법 ..... | 954 |
| 북남경제협력법 ..... | 961 |

## 외교·대외경제부문

---

|                        |      |
|------------------------|------|
| 가공무역법 .....            | 966  |
| 경제개발구법 .....           | 972  |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 982  |
| 국제상품전람회법 .....         | 987  |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 991  |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 997  |
| 기술수출입법 .....           | 1004 |

|                 |      |
|-----------------|------|
| 대외결제법           | 1008 |
| 대외경제계약법         | 1012 |
| 대외경제중재법         | 1018 |
| 대응조치법           | 1030 |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1032 |
| 무역법             | 1044 |
| 상업회의소법          | 1053 |
| 세관법             | 1056 |
| 수출품원산지법         | 1071 |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1075 |
| 외국인기업법          | 1085 |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1089 |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1096 |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1102 |
| 외국인투자법          | 1111 |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1115 |
| 외국투자기업등록법       | 1126 |
|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     | 1131 |
| 외국투자기업회계법       | 1138 |
| 외국투자은행법         | 1147 |
| 조약법             | 1154 |
| 종합무역장관리법        | 1158 |
| 종합설비수입법         | 1163 |
| 출입국법            | 1170 |
| 토지임대법           | 1179 |
| 합영법             | 1186 |
| 합작법             | 1193 |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 1197 |



# 헌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         |                          |
|--------------|---------|--------------------------|
| 주체61(1972)년  | 12월 27일 | 최고인민회의 제 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
| 주체81(1992)년  | 4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제 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보충 |
| 주체87(1998)년  | 9월 5일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
| 주체98(2009)년  | 4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
| 주체99(2010)년  | 4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회의에서 수정보충 |
| 주체101(2012)년 | 4월 13일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수정보충 |
| 주체102(2013)년 | 4월 1일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수정보충 |
| 주체105(2016)년 | 6월 29일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수정보충 |
| 주체108(2019)년 | 4월 11일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
| 주체108(2019)년 | 8월 29일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에서 수정보충 |

##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



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변혁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개척하시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승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부강하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근본적이며 중핵적인 과제를 훌륭히 해결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실체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만대의 은인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 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 운동과 빨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룡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이여 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균중로선을 구현하여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혁명적 사업방법을 견지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 제2장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 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발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튼튼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옹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옹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 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 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 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 재화를 다그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제를 발전시키며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

재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높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 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제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 보장사업을 개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제4장 국 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제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 하도록 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 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 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 받는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4.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6.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7. 특사권을 행사한다.
8.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9.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10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3절 국무위원회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이다.

제108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9조 국무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10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령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4.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11조** 국무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2조**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 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 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4.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5. 대사권을 행사한다.
16.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17.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7조**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8조**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9조**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0조**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21조**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22조**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앞에 책임진다.

## 제5절 내 각

**제123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다.

**제124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25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채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6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7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8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30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31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32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33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34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35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36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 인민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41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2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43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44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4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4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8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9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5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5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5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5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54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6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8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9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60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61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62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63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64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5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6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7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8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뿔아 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 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 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는 비는 1:2이다.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7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참고

조선로동당 규약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 조선로동당 규약 (2021.1)<sup>1)</sup>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 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부대, 전위부대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출발점으로, 당의 조직사상 적공고화의 기초로 하며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 나간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고 발전풍부화된 주체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끊임 없이 계승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 가운데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선진투사들로 조직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어나가는 령도적 정치조직, 혁명의 참모부이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복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당 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 유대를 강화하며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 방식을 당건설과 당활동전반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간다.

조선로동당은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전당을 김일성-김정일

1) 제8차 당대회(2021.1.5~12)에서 개정

주의로 일색화하며 수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중앙의 령도 밑에 조직규율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엄격한 혁명적제도와 질서를 세운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 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

조선로동당은 계급로선과 균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지며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하며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한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로동계급적 원칙, 사회주의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를 실현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제도적우월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하고 자립적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청년운동을 강화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최대의 중대사, 혁명의 전략적요구로 내세우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로 튼튼히 키우며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조직동원한다.

조선로동당은 전 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며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 자존심과 애국적 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룡성변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제자주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 제1장 당 원

**제1조** 조선로동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조직규률에 충직하며 당중앙의 령도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한 몸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제2조** 조선로동당원으로는 조선공민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강령을 신념으로 접수하고 당규약을 준수하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조선로동당에는 열여덟 살부터 입당할 수 있다.

**제3조** 조선로동당원은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 1)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두 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내야 한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는 시, 군청년동맹위원회의 입당보증서를 내야 하며 그것은 당원 한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대신한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당세포가 요구할 때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내야 한다.
- 2) 입당보증인은 3년 이상의 당생활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청원자의 사회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하며 보증내용에 대하여 당 앞에 책임져야 한다.
-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당세포는 총회에서 입당청원자를 참가시키고 입당문제를 심의하며 채택된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 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한 달 안에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 4)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2년이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면 총회에서 그의 입당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은 후보당원을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준비가 잘 안되었을 때에는 후보기간을 1년까지의 범위 안에서 한번 미룰 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입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를 제명하여야 한다.

후보기간을 미루거나 후보당원을 제명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5) 입당날자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로 한다.
- 6) 당원으로 입당한 사람은 당원증을 수여받을 때 입당선서를 한다.
- 7) 특수한 환경에서 사업하는 사람과 다른 당에서 탈당한 사람의 입당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따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 제4조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당원은 당중앙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며 당앞에 무한히 성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
- 2)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리론, 주체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모든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 3) 당원은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조직관념을 바로가지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책임적으로 집행하고 비판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당조직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당원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현대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을 꾸준히 습득하여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대중을 이끌고 군중 속에서 핵심적이며 모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 5)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사중시를 제일국사로 여기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며 주체의 전쟁관점을 가지고 군사지식을 성실히 배우고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며 조국수호정신을 체질화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각오를 가져야 한다.
- 6) 당원은 당적,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원은 당과 혁명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예리하게 보고 대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

소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비롯한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 7) 당원은 군중과 늘 사업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중속에 당정책을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며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당조직에 제때에 반영하며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8) 당원은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원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며 안일해이한 현상을 반대하고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당, 국가, 군사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9) 당원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원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며 진실하고 레절이 바르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청렴결백하며 사회공중도덕과 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키고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적 미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10) 당원은 매달 당비를 바쳐야 한다.

당비는 월수입의 2%로 한다.

#### 제5조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당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 2) 당원은 당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지며 각급 당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 3) 당원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을 때에는 어떤 당원에 대하여서나 비판할 수 있으며 상급이 주는 어떤 과업이라도 그것이 당의 로선과 방침, 당중앙의 사상과 어긋날 때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당위원회에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으며 탈당을 요구할 수 있다.

당원이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 당세포는 총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시,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당대렬에서 내보낸다.

#### 제6조 후보당원의 의무는 당원의 의무와 같으며 후보당원의 권리는 결의권과 선거할 권리, 선거받을 권리가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제7조** 당조직규률을 어긴 당원에게는 당책벌을 준다.

- 1)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거부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고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 2) 출당시키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게는 그 과오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권리정지,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을 준다.  
경고책벌은 6개월, 엄중경고, 권리정지책벌은 1년,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은 2년을 적용한다.  
당책벌은 당원이 과오를 범하게 된 동기와 원인, 과오의 후과와 함께 그의 사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료해하고 신중하게 주어야 한다.
- 3) 당세포는 총회에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참가시키고 당책벌을 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의 참가 없이 심의결정할 수 있다.  
당원에게 당책벌을 줄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당원을 출당시킬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4) 당세포는 당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업에서 개선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책벌을 벗겨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5)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당책벌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 6)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당규률문제와 관련한 당원의 신소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정당한 이유없이 여섯 달 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3년 이상 당원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서는 당세포총회에서 그를 제명할 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다.

**제10조** 조선로동당원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년로보장 또는 사회보장을 받고 있는 당원을 비롯하여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당원은 명예당원으로 한다.

명예당원에게는 명예당원증을 수여한다.

당원을 명예당원으로 넘기는 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제11조**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조직하며 활동한다.

- 1) 각급 당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며 선거된 지도기관은 선거받은 당조직앞에 자기의 사업을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한다.
- 2)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어느 한 지역을 맡은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부문이나 단위의 사업을 맡은 당조직은 그 부문이나 단위의 일부 사업을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된다.
-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 4)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당조직은 자기의 사업정형을 상급당조직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12조** 각급 당조직은 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제13조** 각급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 참모부이다.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집행하며 여기에 당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제14조**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 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는 당대회가 선거한 당중앙위원회이다.  
도, 시, 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와 당대표회 사이에는 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기층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와 당총회(당대표회) 사이에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 2) 당대회, 당대표회 대표자는 한급 낮은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하며, 도, 시, 군당대표회 대표자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규정한다.
- 3)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는 당대회에서 결정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와 기층당조직의 위원수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결정한다.

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 기층당 조직들의 총회에서 다시 결정할 수 있다.

- 4) 각급 당지도기관의 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만든 선거세칙에 따라 한다.  
각급 당지도기관의 임기는 새로운 당지도기관을 선거하기 전까지이다.

**제15조**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해당 당위원회 후보위원 가운데서 보선한다.

필요에 따라 후보위원이 아닌 당원을 위원으로 보선할 수 있다.

- 2) 기층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과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한다.  
규모가 크거나 아래당조직들이 멀리 떨어져있거나 사업상 특성으로 당총회(당대표회)를 제때에 소집할 수 없는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위원을 소환(제명), 보선할 수 있다.

- 3) 상급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를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위원, 대표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제기된 문제의 가결은 결의권을 가진 당회의 참가자의 절반을 넘는 찬성을 받아야 확정된다.

각급 당위원회 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권만 가진다.

**제17조** 도, 시, 군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초급당과 분초급당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도당위원회에서, 부문당과 당세포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18조** 각급 당위원회는 자기 사업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부서를 내오거나 없애는 권한은 당중앙위원회에 있다.

**제19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 1) 정치기관들은 해당 부문에서 당원들과 군인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조직진행하며 해당 단위에 조직된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사업한다.

정치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원들과 군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당열성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들은 당중앙위원회에 직속되어 그 지도 밑에 사업하며 자기 사업정형을 당중앙위원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정치국(정치부)들은 아래정치기관들에 대한 지도에서 해당 지역당위원회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진다.

3)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도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며 사업한다.

**제20조** 당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조직이든지 당의 로선과 정책, 당규약을 엄중하게 어기거나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산하고 거기에 소속되었던 당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다시 등록하고 당조직을 새로 조직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맡은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들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책벌을 준다.

**제21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부문, 특수한 환경에 맞는 당조직의 형식과 활동방법, 그 밖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따로 결정한다.

###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2조** 당대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당대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며 소집에 관한 발표는 수개월 전에 한다.

**제23조** 당대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 2) 당의 강령과 규약을 수정보충한다.
- 3)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를 토의결정한다.
- 4) 당중앙위원회를 선거한다.
- 5)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선거한다.

**제24조** 조선로동당의 수반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령도한다.

**제25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자기 투쟁의 총적임무로 틀어쥐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그 위력을 높이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며 국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사업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제26조**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1년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당중앙위원회에 부서(비상설기구 포함)를 내오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하며 당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제27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제28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

**제29조**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와 그 밖의 실무적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제30조**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공화국무력을 지휘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율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다.

**제31조**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고청원을 처리하고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제32조**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당대표자회 대표자선출비율과 대표자선거절차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소환하고 보선한다.

당대표자회는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을 선거하거나 당규약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 제4장 당의 도, 시, 군조직

**제33조** 도, 시, 군당대표회는 당의 도, 시, 군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도, 시, 군당대표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도, 시, 군당위원회가 소집한다.

**제34조** 도, 시, 군당대표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도, 시, 군당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 2) 도, 시, 군당위원회를 선거한다.
- 3) 당대회, 당대표자회와 상급당대표회에 보낼 대표자를 선거한다.

**제35조**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중앙의 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지도한다.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장성사업과 당원등록사업을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대중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짓부시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과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사업이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며 경제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정권기관과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높이며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도록 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상급당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36조** 도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녀 달에 한번이상, 시, 군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석 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책임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도, 시, 군당 군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37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도, 시, 군당위원회의 이름으로 행정경제사업과 관련한 당정책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한다.

**제38조** 도, 시, 군당위원회 비서처는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조직집행한다.



**제39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승인 밑에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율에 관계없이 필요한 일군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다.

**제40조** 도, 시, 군당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고청원을 처리하고 도, 시, 군당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 제5장 당의 기층조직

**제41조** 당의 기층조직에서는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당세포가 있다.

당의 말단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며 당과 대중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단위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는 직접적 전투단위이다.

초급당은 당원들이 망라되어 정치조직생활을 하는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기본전투단위이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세포 비서대회와 초급당 비서대회를 5년에 한번 씩 소집한다.

**제42조** 당의 기층조직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원이 5명부터 30명까지 있는 단위에는 당세포를 조직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이 3~4명 있거나 30명이 넘어도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2) 당원 31명부터 60명까지 있는 독립적인 단위에는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3) 당원이 61명이상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을 조직한다.

4) 초급당(분초급당)과 당세포 사이에 당원이 31명이상 있는 생산 및 사업단위에는 부문당을 조직한다.

5) 초급당, 부문당, 당세포의 조직형식만으로 기층당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 없을 때에는 초급당과 부문당사이의 생산 및 사업단위에 당원이 60명 넘어도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이상의 당조직 형식들이 실정에 맞지 않을 때에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다른 형식의 당조직을 내올 수 있다.

**제43조** 당총회(당대표회)는 당의 기층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1) 당세포총회는 한 달에 한번이상 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총회는 석 달에 한번이상 한다. 당원과 후보당원이 500명이

넘거나 아래당조직이 멀리 떨어져있을 때에는 초급당총회(대표회)를 1년에 한번이상 할 수 있다.

**제44조** 기층당 조직에서는 1년에 한번씩 지도기관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지도기관을 선거한다.

- 1) 당세포에서는 총회에서 당세포사업을 총화하고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시, 군당위원회에 직속된 당세포에 당원이 20명이상 되면 당세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 2)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에서는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해당 당위원회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당위원회를 선거하며 그 위원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들을 선거한다.  
초급당, 분초급당위원회에서는 상급당의 승인 밑에 집행위원회를 선거할 수 있다.

**제45조** 기층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당중앙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을 제일차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나간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중앙의 유일적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률을 세우도록 한다.
- 2)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한다.  
당원, 후보당원들을 당조직에 빠짐없이 소속시키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을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조직진행하며 당원들에게 당적분공을 정상적으로 주고 총화하며 당원들이 당규약상규범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며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 3) 초급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검열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당에 받아들인다.  
초급일군들을 당에 충실하고 실력이 있으며 사업작풍이 좋은 사람들로 선발배치하고 그들이 맡은 일을 잘하도록 지도하며 입당대상자들을 료해장악하고 체계적으로 키우며 당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엄선하여 당에 받아들인다.
- 4)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린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사상교양을 부단히 강화하며 부르조아사상문화의 침습을 막고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한다.
- 5) 군중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한다.  
군중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군중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며 민심을 틀어쥐고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도록 한다.

6)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당의 사상관철전, 당 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며 과학기술발전을 앞세우고 자강력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고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며 근로자들의 후방사업을 개선하도록 한다.

7)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한다.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초급일군들을 잘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근로단체 조직들의 사업정형을 료해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며 근로단체조직들에 사업방향을 정상적으로 주고 근로단체조직들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 본신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한다.

8) 민방위사업을 강화하며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한다.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정치군사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며 자기 단위의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며 원군기풍을 세우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한다.

9)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군자리로동계급칭호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린다.

10) 상급당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46조** 당세포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하며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한 달에 위원회는 한 번 이상, 집행위원회는 두 번 이상 한다.

## 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

**제47조**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은 모든 군사정치활동을 당의 령도 밑에 진행한다.

**제48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당조직을 두며 그를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당위원회기능을 수행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49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전군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당중앙의 유일적 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명령지시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군풍을 확립하며 모든 사업을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에 립각하여 조직진행한다.

군사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며 당장성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 인민군대안의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한다.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불굴의 혁명정신과 주체전법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일당백용사로 키운다.

인민군안의 청년동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고 군사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있게 밀어주어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투준비를 끊임없이 완성하도록 한다.

《일당백》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대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다.

군인들 속에서 집단주의정신, 대중적 영웅주의정신을 배양하고 혁명적동지애와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시킨다.

**제50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아래 각급 정치부들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집행한다.

**제51조**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들에는 정치위원을 둔다.

정치위원은 해당 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로서 당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비롯한 부대안의 전반사업에 대하여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며 부대의 모든 사업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진행되도록 장악지도한다.

**제52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조선인민군 당정치사업지도서에 따라 사업한다.

## 제7장 당과 인민정권

**제53조** 인민정권은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이며 당과 인민대중을 연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진대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다.

인민정권은 당의 령도 밑에 활동한다.

**제54조** 당은 인민정권 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며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기능과 인민민주주의 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도록 지도한다.

**제55조** 각급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며 인민정권기관들이 본신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 제8장 당과 근로단체

**제56조** 근로단체들은 당의 외곽단체이고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당의 령도 밑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들의 대중적 정치조직이다.

근로단체들은 당의 령도 밑에 활동한다.

**제57조** 당은 근로단체조직들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 근로단체들을 당에 충실한 정치조직으로 만들며 근로단체들이 당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적으로 지도한다.

당은 근로단체들이 동맹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동맹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청년중시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의 대오,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 앞장서는 돌격대가 되도록 지도한다.

**제58조**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근로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을 정확히 주며 근로단체조직들이 본신임무를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 제9장 당마크, 당기

**제59조** 당마크는 마치와 낫, 붓이 한곳에서 교차되게 그려진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표식이다. 당마크는 조선로동당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뭉친 로동자, 농민, 지식

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전위부대이며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당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제60조** 당기는 붉은색 기폭의 중심에 노란색 당마크가 새겨져 있는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기발이다.

당기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이어 나가며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성격과 불굴의 의지, 투쟁정신을 상징한다.

##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2021.9)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변함없이 높이 받들어모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력사적시대에 살며 투쟁하고있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천재적사상리론과 탁월한 령도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키시여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쌓으신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을 마련하시고 빛내이신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혁명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하시여 자주시대의 완성된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게 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걸출한 정치가,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불패의 조선인민군을 창건함으로써 주체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가장 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현명하게 이끄시여 자주시대 당건설과 국가건설, 혁명무력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민을 자주적인민으로 키우시여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시여 사회주의 발전의 가장 옳바른 길을 개척하시고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이 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고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였으며 세계적인 정치적동란속에서 주체의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되고 핵무력을 증추로 하는 무적의 군사력과 튼튼한 자립경제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위력을

떨치게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총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시고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뛰어난 지략으로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시였으며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인민군대를 필승불패의 혁명 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치렬한 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조국통일과 인류의 자주위업에 한평생을 바치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정력적인 활동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오로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주체조선의 영상으로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시며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쌓아올리신 크나큰 혁명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갈 때 우리 나라는 영원한 태양의 나라로 온 세계에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며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충정을 다 바치며 당의 령도 밑에 김일성-김정일주의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1. 온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며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총적목표이다.

- 1)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 2)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령도하여오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 3)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빛내여주신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보위하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 4) 주체사상의 기치, 자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5) 전세계에서의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

2.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는것은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는 여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

1)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2)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3)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 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훌륭히 꾸리고 결사보위하여야 한다.

4)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언제나 수령님과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심장속에 간직하고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5)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3.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 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이다.

1)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와 우리 당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관점과 입장을 가져야 한다.

2)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권위, 당의 권위와 위대성을 견결히 옹호하며 내외에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3)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권위,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절대로 용화묵과하지 말고 비상사건화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며 온갖 계급적원수들의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수령님과 장군님의 권위,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여야 한다.

4)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 영상을 모신 작품과 출판선전물, 현지교시판과 말씀판, 영생탑, 당의 기본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 5)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사적비와 표식비,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을 정중히 꾸리고 잘 관리하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 6)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와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을 잘 꾸리고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
4.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은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며 주체혁명 위업의 승리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 1)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 2)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교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신조로 삼으며 그것을 자로하여 모든것을 재여보고 언제 어디서나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3)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로작과 당문헌,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 4)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회, 강연회를 비롯한 집체학습에 빠짐 없이 성실히 참가하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며 학습을 게을리하거나 방해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 5) 당문헌전달침투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사상과 로선, 방침들을 제때에 정확히 전달 침투하여야 하며 외곡전달하거나 자기 말로 전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6) 보고, 토론, 강연을 하거나 출판물에 실릴 글을 쓸때에는 언제나 수령님과 장군님의 교시, 당문헌을 정중히 인용하고 그에 기초하여 내용을 전개하며 그와 어긋나게 말하거나 글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
  - 7) 당의 방침과 지시를 개별적간부들의 지시와 엄격히 구별하며 개별적간부들의 지시에 대하여서는 당의 방침과 지시에 맞는가 맞지않는가를 따져보고 원칙적으로 대하여 개별적간부들의 발언내용을 "결론"이요, "지시"요 하면서 조직적으로 전달하거나 집체적으로 토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8)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하여 시비중상하거나 반대하는 반당적인 행위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화묵과하지 말아야 하며 부르췌아사상, 사대주의사상을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사상조류를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진리성과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5.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 당의 로선과 방침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 당의 로선과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요구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 1)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 당의 로선과 방침, 지시를 곧 법으로, 자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 2)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 당의 로선과 방침, 지시를 관철하기위한 창발적의견들을 충분히 제기하며 일단 당에서 결론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드팀도 없이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 3) 당의 로선과 방침, 지시를 즉시에 접수하고 집행대책을 세우며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즉시에 집행하고 보고하는 결사관철의 기풍을 세워야 한다.
  - 4) 당의 로선과 방침, 지시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당의 로선과 방침, 지시를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 5) 당문헌과 방침, 지시를 말로만 접수하고 그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 당정책집행에서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태도, 요령주의, 보신주의, 패배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6.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강철같은 통일단결은 당의 생명이고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 1)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 2)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양하며 온사회를 령도자와 사상과 뜻과 정을 같이하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 3)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척도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대하며 당에 불충실하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와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날카롭게 투쟁을 벌려야 한다.
  - 4) 개별적간부들에 대한 환상, 아부아침, 우상화를 배격하며 개별적간부들의 직권에 늘리워 맹종맹동하거나 비원칙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 5)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고 쪼먹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요소와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7.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따라배워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지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사상정신적품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는것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수령님식, 장군님식으로 사업하고 생활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 1)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높은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지녀야 한다.
- 2) 당적, 계급적, 사회주의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가지고 주체혁명의 한길로 역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 3)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로쇠와 침체, 인일과 해이, 소극과 보수를 배격하고 왕성한 투지와 정열에 넘쳐 전투적으로 살며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야 한다.
- 4)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사업에서 높은 창발성을 발휘하며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발휘하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 5)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지니고 언제나 인민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무슨 일에서나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 6)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청렴결백하며 고상한 도덕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 7) 세도와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본위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8.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사업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을 지닌것은 혁명전사의 가장 큰 영예이며 당과 수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사업실적으로 보답하는 여기에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참된길이 있다.

- 1) 정치적생명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정치적신념과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말며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 2)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제때에 수행하며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3) 정치조직생활총화에 성실히 참가하여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검토총화하며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끊임없이 개조해나가야 한다.
- 4)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혁명과업수행에 투신하며 혁명적실천과정을 통하

여 혁명화를 다그쳐야 한다.

-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준 당의 정치적신임에 사업실적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휘하며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당에서 맡겨준 혁명임무를 언제나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한다.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우는것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중요한 요구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엄격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
- 모든 사업을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조직진행하며 정책적문제들은 당중앙의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질서와 규률을 세워야 한다.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모든 기관들과 일군들은 당에 철저히 의거하고 당의 지도밑에 모든 사업을 조직집행해 나가야 한다.
-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결정, 지시를 정확히 집행하여야 하며 그것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변경시키거나 그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며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개별적간부들이 당, 정권기관 및 근로단체들의 조직적인 회의를 자의대로 소집하거나 회의에서 당의 의도에 맞지 않게 "결론"하며 조직적인 승인없이 당의 구호를 마음대로 떼거나 만들어 붙이며 사회적운동을 위한 조직을 내오는것과 같은 비조직적인 현상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 개별적간부들이 월권행위를 하거나 직권을 람용하는것과 같은 온갖 비원칙적인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 당에 대한 충실성과 실력을 기본적도로 하여 간부들을 평가하고 선발배치하여야 하며 친척, 친우, 동향, 동창, 사제관계와 같은 정실, 안면관계, 돈과 물건에 따라 간부문제를 처리하거나 개별적간부들이 제멋대로 간부들을 등용, 해임, 처벌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묵과하지 말고 강하게 투쟁하며 간부사업에서 당적원칙과 제정된 질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 당, 국가, 군사비밀을 엄격히 지키며 비밀을 루설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여야 한다.

9) 당의 유일적령도체계에 어긋나는 비조직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 이건 작은 문제이건 제때에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는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이며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다.

1)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대를 이어 계속해나가야 한다.

2)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끊임 없이 계승발전키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3)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데 저해를 주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말고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4) 자신뿐아니라 온 가족과 후대들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당의 유일적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영원히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 주권부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주체81(1992)년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4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1호로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5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35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1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0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선거법의 기본

### 제1조 (선거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은 최고인민회의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며 각급 주권기관을 인민의 총복으로 꾸려 인민정권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일반선거원칙)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일반선거원칙으로 한다.

17살이상의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받을 수 있으며 조국에 머무르는 기간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 경우 희망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선거권을 가진자가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로동교화형을 받고 집행중에 있거나 선거권을 박탈당하였거나 행위능력이 없는것으로 판정된것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참가할 수 없다.

### 제3조 (평등선거원칙)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평등선거원칙으로 한다.

선거할 권리를 가진 공민은 누구나 한 선거에서 한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매 선거자의 투표효력은 같다.

### 제4조 (직접선거원칙)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직접선거원칙으로 한다.

선거할 권리를 가진 공민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을 직접 투표하여 선거한다.

누구도 선거자의 선거할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다.



**제5조 (비밀투표방법)**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는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한다.

선거자는 찬성 또는 반대투표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누구도 선거자에게 찬성 또는 반대투표한 사실의 공개를 요구할수 없으며 투표와 관련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보복할수 없다.

**제6조 (선거권의 행사조건보장, 선거비용)**

국가는 공민이 선거할 권리를 원만히 행사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보장한다.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제2장 대의원수와 선거날자

**제7조 (대의원수를 정하는 기준과 기관)**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대의원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한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수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수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인민회의가 결정한다.

**제8조 (선거주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는 5년, 도(직할시)인민회의와 시(구역), 군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는 4년에 한번씩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대의원선거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90일안에 실시한다.

**제9조 (선거조직방식)**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와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는 따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직할시)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와 시(구역), 군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가 한해에 겹치게 될 경우에는 같은 날자에 함께 할수 있다.

**제10조 (선거날자를 정하는 기준)**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나기 전 30일안에 실시한다.

**제11조 (선거날자의 공포기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날은 60일전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날은 40일전에 해당 인민위원회의의 결정으로 공포한다.

## 제3장 선거구

### 제12조 (선거구조직)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선거하는 대의원수에 따라 행정구역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선거때마다 조직한다.

### 제13조 (선거구수)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수는 선거하는 해당 인민회의의 대의원수와 같다.

### 제14조 (선거구조직기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안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해당 군부대가 조직한다.

### 제15조 (선거분구)

선거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구안에 분구를 조직한다.

선거분구는 행정구역, 선거자수, 교통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해당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조직한다.

### 제16조 (선거분구와 선거구를 일치시켜 조직하는 경우)

도(직할시)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와 시(구역), 군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함께 할 경우 도(직할시)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의 분구와 시(구역), 군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일치시키는 원칙에서 조직한다.

### 제17조 (선거구와 선거분구의 조직날자)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와 분구는 선거날 40일전까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와 분구는 선거날 30일전까지 조직한다.

## 제4장 선거위원회

### 제18조 (선거위원회의 성원수)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위원회를 조직한다. 그러나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진행할 경우에는 중앙에 선거지도위원회를 조직한다.

각급 선거위원회(중앙선거지도위원회 포함)의 성원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위원회 11명 또는 13명(중앙선거지도위원회 9명 또는 11명)
2. 도(직할시), 시(구역), 군선거위원회 9명 또는 11명

3. 구, 분구선거위원회 5명 또는 7명

**제19조** (선거위원회의 조직기관)

중앙선거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도(직할시)선거위원회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시(구역), 군, 구, 분구선거위원회는 해당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조직한다.

**제20조** (선거위원회의 구성)

각급 선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기장 1명과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21조** (선거위원회의 구성성분)

각급 선거위원회는 정당,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각계각층의 성원들로 조직한다.

**제22조** (선거위원회의 성립조건)

각급 선거위원회는 그 성원의 3분의 2이상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참가한 성원의 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을 채택한다.

각급 선거위원회는 선거사업에 필요한 실무일군을 동원할수 있다.

**제23조** (선거위원회의 조직과 해산기간)

중앙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선거위원회는 선거날을 발표한 날부터 10일안에 조직하며 구, 분구선거위원회는 선거구, 분구를 정한 날부터 5일안에 조직한다.

각급 선거위원회는 선거결과가 발표된 다음 3일후에 해산한다.

**제24조** (선거위원회의 성원의 로동보수)

각급 선거위원의 성원들이 선거사업에 동원된 기간의 로동보수는 그들이 일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지불한다.

**제25조** (선거위원회 성원의 교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거위원회 성원을 교체한다.

1. 사망, 중병 같은 사유로 선거위원회에 성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
2. 이 법을 어겨 선거사업에 혼란과 지장을 주었거나 엄중한 후과를 빚어낸 경우
3. 정당, 사회단체에서 추천된 선거위원회 성원이 소속 정당, 사회단체 성원의 자격을 잃은 경우
4. 구, 분구선거위원회 성원이 해당 선거구 대의원후보자로 추천등록된 경우

**제26조** (선거위원회 성원의 교체기관)

각급 선거위원회 성원의 교체는 해당 선거위원회를 조직한 기관에서 한다.

## 제5장 선거자명부

### 제27조 (선거자명부의 작성단위)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자명부는 선거를 할 때마다 선거분구(구)를 단위로 작성한다.

도(직할시)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와 시(구역), 군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함께 할 경우에는 하나의 선거자명부를 작성한다.

### 제28조 (선거자명부의 작성기관)

선거자명부는 분구(구)선거위원회가 해당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와 함께 선거날 15일전까지 작성한다.

공민등록기관은 선거자명부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보장하여야 한다.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의 선거자명부는 해당 군부대가 작성한다.

### 제29조 (선거자명부의 등록대상)

선거자명부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할 권리를 가진 모든 공민을 등록한다.

### 제30조 (선거자명부의 등록내용)

선거자명부에는 선거자의 이름, 성별, 난날, 사는 곳을 정확히 써넣는다.

### 제31조 (선거자명부의 공시날자)

선거자명부는 모든 선거자들이 볼수 있게 선거날 15일전까지 선거분구(구)의 편리한 장소에 그 사본을 공시한다.

선거자명부의 공시는 해당 분구(구)선거위원회의 이름으로 한다.

### 제32조 (선거자명부에 대한 의견제기)

공시된 선거자명부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선거자 또는 관계자는 그 사실을 해당 분구(구)선거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제기된 사실의 정확성을 신중히 조사하여 선거자명부의 잘못이 확인되면 곧 명부를 고치고 그에 대하여 해당 선거자 또는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33조 (선거자의 이동수속)

선거자명부가 작성된 다음 다른 선거구로부터 거주지를 옮겨왔거나 다른 선거구로 거주지를 옮겨가는 공민은 선거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자기의 이동사유를 분구(구)선거위원회에 알리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 제34조 (선거자의 제명)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거자를 선거자명부에서 제명한다.

1. 사망하였거나 행위능력을 잃은 경우
2. 법에 따라 선거할 권리를 박탈당한 경우
3. 선거분구(구)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경우

## 제6장 대의원후보자

### 제35조 (대의원후보자의 추천권자)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는 선거자들이 직접 추천하거나 정당,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추천한다.

추천자는 추천한 대의원후보자를 구선거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36조 (대의원후보자의 등록조건)

추천된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는 1백명이상의 선거자회의에서 자격심의를 거쳐야 해당 선거구의 대의원후보자로 등록될수 있다.

대의원후보자의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는 구선거위원회가 조직한다.

### 제37조 (대의원후보자의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

대의원후보자의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는 주민거주지역 혹은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 군부대에서 한다.

선거자회의에는 추천된 대의원후보자를 참가시킬수 있다.

### 제38조 (대의원후보자의 자격심의내용)

대의원후보자의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에서는 추천된 후보자의 이름, 성별, 연령, 사는 곳, 정당, 사회단체, 직장직위, 경력을 소개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가한 선거자들은 추천된 대의원후보자가 인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있는 가 하는 것을 심의하여야 한다.

### 제39조 (대의원후보자등록의 결정)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등록은 후보자의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 참가자들의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40조 (대의원후보자등록과 그 순위)

구선거위원회는 선거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대의원후보자를 등록하고 그에 대하여 본인과 추천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의원후보자등록순위는 추천순위에 따른다.

### 제41조 (여러 선거구에서 추천된 대의원후보자의 등록)

여러 선거구에서 추천된 대의원후보자는 어느 한 선거구에만 등록할것을 발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거구에서의 추천은 취소된다.

**제42조** (한 선거구에 등록될 대의원후보자수)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등록될 대의원후보자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43조** (대의원후보자의 추천, 등록기간)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추천과 등록사업은 구선거위원회를 조직한 날부터 5일안에 시작하여 선거날 7일전까지 끝내야 한다.

**제44조** (대의원후보자의 등록의 취소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대의원으로 선거받을 자격을 잃은 경우
2. 정당,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소속 정당, 사회단체 성원의 자격을 잃은 경우
3. 사망, 중병 같은 사유로 대의원의 사업을 할수 없게 된 경우

**제45조** (대의원후보자의 등록취소의 결정)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에 대한 등록취소는 후보자를 등록한 해당 구선거위원회가 결정한다.

구선거위원회는 대의원후보자등록을 취소한 사유를 상급선거위원회와 본인, 추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 (대의원후보자의 보충추천등록)

후보자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는 다른 대의원후보자를 추천등록할수 있다.

**제47조** (대의원후보자의 공시)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선거날 7일전까지 등록된 대의원후보자를 사진과 함께 이름, 성별, 연령, 직장직위, 간단한 경력을 밝혀 공시하여야 한다.

대의원후보자에 대한 공시는 선거분구(구)의 편리한 장소와 동, 인민반,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비(접수)실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할수 있다.

## 제7장 선거선전

**제48조** (선거선전의 조직지도)

선거선전은 각급 선거위원회가 조직지도한다.

**제49조** (선거선전의 자유)

정당, 사회단체, 선거자는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선거선전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제50조 (선거선전의 기간)**

선거선전은 선거날을 공포한 때부터 하며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에 대한 선전은 대의원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한다.

**제51조 (선거선전의 형식과 방법)**

선거선전은 출판선전, 방송선전, 직관선전, 예술선전, 구두선전 같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한다.

**제52조 (선거선전의 내용)**

선거선전에서는 선거자들에게 선거의 목적과 의의, 선거법에 규제된 선거자의 권리, 선거절차와 방법을 알려주거나 후보자를 소개하며 높은 정치적열의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할 것을 호소할수 있다.

**제53조 (선거선전의 금지사항)**

선거선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금지한다.

1. 반대투표, 기권, 선거파괴를 선동하는 것
2. 개별적후보자를 비방하는 것
3. 선거위원회의 승인없이 집회와 시위를 조직하는것
4. 선거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은 선전조직을 내오는것

## 제8장 선거장

**제54조 (선거장을 꾸릴 의무)**

분구(분구가 없을 경우에는 구)선거위원회는 선거장을 꾸려야 한다.

**제55조 (선거장의 구비조건)**

선거장에는 투표실과 선거위원회 성원들이 사업할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화재와 자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세워져있어야 한다.

**제56조 (투표실)**

투표실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수 있게 선거날 3일전까지 꾸린다.

투표실에는 투표함과 필기도구를 갖추어놓는다.

선거장과 투표실은 기발, 꽃 같은 것으로 장식할수 있다.

**제57조 (선거장의 경비조직)**

선거장에는 선거날까지 낮과 밤경비가 조직되어야 한다.

선거장경비는 분구(구)선거위원회가 조직한다.

### 제58조 (선거장의 소개)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선거날 3일전까지 선거자들에게 선거장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선거자는 자기가 선거하게 될 선거장과 투표실상태를 돌아볼수 있다.

## 제9장 투 표

### 제59조 (투표시간과 투표단위)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투표시간은 계절을 고려하여 선거때마다 중앙선거위원회  
(중앙선거지도위원회)가 정한다.  
투표는 선거분구(구)단위로 한다.

### 제60조 (선거참관성원)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선거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선거구 선거자가운데서 5명의 선거참관성  
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선거참관성원은 선거자의 투표를 제외한 선거진행정형을 볼수 있다.

### 제61조 (투표시작절차)

투표는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이 선거참관성원과 함께 투표실과 투표함의 정상상태를 확인  
하고 투표함을 봉인한 다음 시작한다.

### 제62조 (선거자의 투표)

선거자는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한 선거구안에서는 필요한 경우 분구(구)선거위원회에서 발급한 선거권증명서를 가지고 다른  
선거분구에 가서 투표할수 있다.  
특수한 경우 선거자는 선거권증명서를 떼가지고 다른 선거구에 가서 투표할수 있다.  
한 선거구안에서 다른 선거분구 또는 다른 선거구에서 선거에 참가하는 선거자는 해당 분구  
(구)선거위원회에 가서 선거자명부에 등록하고 투표하여야 한다.  
해당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선거권증명서를 가지고오는 선거자를 선거자명부에 등록할 때 투  
표하게될 대의원후보자에 대하여 똑똑히 알려주어야 한다.

### 제63조 (선거표)

투표하려는 선거자는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에게 공민증 또는 공민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내보여 선거자명부와 대조확인하게 한 다음 선거표를 받는다.  
선거표의 규격과 양식은 선거때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제정하며 그 제작을 조직한다.

### 제64조 (무기명투표)

투표는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한다.



선거자는 찬성하면 표식을 하지 않으며 반대하면 후보자의 이름을 가로 긋는다.

**제65조 (투표조건의 보장)**

선거자가 찬성 또는 반대표시를 하고 투표할 경우 투표실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거나 들여다 볼수 없다.

**제66조 (투표를 끝내는 절차)**

분구(구)선거위원회는 투표마감시간이 되면 투표를 끝마친다는것을 알리고 투표를 끝마쳐야 한다. 투표마감시간이 되었다 하여도 투표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선거자가 있으면 투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7조 (이동투표)**

중병, 년로, 신체장애 같은 사정으로 선거자가 선거장에 나올수 없을 경우에는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이 선거표와 봉인된 이동투표함을 가지고 가서 투표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직접 투표할수 없는 선거자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자기 의사에 맞게 투표하도록 할수 있다.

**제68조 (이동투표참가정형의 보고)**

이동투표를 보장한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은 투표마감시간전으로 해당 선거분구(구)에 도착하여 분구(구)선거위원회에 봉인된 이동투표함을 바치고 투표참가정형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장 투표결과의 확정

**제69조 (투표결과의 계산시기와 장소)**

투표시간이 지나고 투표가 끝나면 투표결과를 계산한다.

투표결과의 계산은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들이 선거위원회 사무실에서 한다.

**제70조 (투표결과의 계산절차)**

투표결과의 계산을 시작할 때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들은 선거참관성원들과 함께 투표함의 봉인상태를 확인하며 선거참관성원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함안에 있는 선거표수와 내여준 선거표수를 맞추어보아야 한다.

투표함안에 있는 선거표수가 내여준 선거표수보다 적거나 같으면 유효선거이며 투표함안에 있는 선거표수가 내여준 선거표수보다 많으면 무효선거이다.

무효선거인 경우 분구(구)선거위원회는 그 사실을 곧 상급선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 (선거표의 무효)**

찬성과 반대의 표시가 명확치 않거나 제정된 규격, 양식과 다른 선거표는 무효로 한다.

선거표의 무효결정은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들이 다수가결로 한다.

**제72조 (계산방법, 투표결과의 보고)**

투표결과의 계산은 대의원후보자별로 유효한 찬성표들을 갈라놓고 비교하는 방법으로 한다.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출석한 성원전원이 합의하여 투표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수표한 다음 곧  
상급선거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73조 (당선자의 확정방법)**

당선자확정은 구선거위원회가 한다.  
구선거위원회는 분구선거위원회에서 보내온 투표결과보고서를 대의원후보자별로 종합계산  
하여 당선자를 확정한다.

**제74조 (당선조건과 기준)**

당선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한 선거자의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은 대의원후보자이다.  
한 선거구에 등록된 대의원후보자들가운데서 투표에 참가한 선거자의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  
은 후보자가 없거나 후보자들이 받은 찬성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것으로 한다.

**제75조 (선거결과의 보고)**

당선자를 확정한 구선거위원회는 곧 선거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급선거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76조 (당선자의 발표)**

당선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중앙선거위원회가, 도(직할시)인민회의의 대의원은 해당 도(직  
할시)선거위원회가, 시(구역), 군인민회의의 대의원은 해당 시(구역), 군선거위원회가 발표한다.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결과에 대한 종합자료는 중앙선거위원회(중앙선거지도위원회)가  
발표한다.

## 제11장 재선거와 보충선거

**제77조 (재선거의 실시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등록된 대의원후보자가운데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2. 당선자가 임기시작전에 사망하였거나 선거받을 권리를 잃었을 경우

**제78조 (무효선거로 판명된 경우의 재선거)**

선거가 무효로 판명된 경우에는 무효선거로 된 해당 선거구 또는 분구에서만 재선거를 실시  
한다.  
선거과정의 일부가 이 법을 어겨 무효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부터 시작하여 재선거  
를 실시한다.

**제79조 (보충선거의 실시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보충선거를 실시한다.

1. 대의원이 사망한 경우
2. 대의원이 선거자들의 신임을 잃어 소환된 경우
3.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이 다른 지방으로 옮겨간 경우

**제80조 (보충선거를 실시하는 선거구)**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보충선거는 대의원이 결원된 해당 선거구에서 한다.

**제81조 (보충선거를 하지 않을수 있는 조건)**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의 남은 임기가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충선거를 하지 않을수 있다.

**제82조 (재선거와 보충선거의 절차와 방법)**

재선거와 보충선거의 절차와 방법은 이 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제12장 신소처리와 제재

**제83조 (신소의 제기)**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 공민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이 이 법을 어겼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선거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소를 제기할수 있다.

**제84조 (신소의 처리)**

공민으로부터 신소를 받은 해당 선거위원회는 그것을 받은 날부터 3일안으로 심의결정하고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5조 (재신소)**

신소에 대한 해당 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신소자는 인민재판소에 문제해결을 제기할수 있다. 선거와 관련한 의견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각급 재판소에 제기할수 있다. 해당 재판소는 제기된 문제를 정확히 심리해결하여야 한다.

**제86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선거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

|              |         |                              |
|--------------|---------|------------------------------|
| 주체81(1992)년  | 10월 22일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0호로 채택      |
| 주체87(1998)년  | 12월 10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보충  |
| 주체89(2000)년  | 5월 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33호로 수정보충 |
| 주체89(2000)년  | 7월 2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보충 |
| 주체90(2001)년  | 7월 19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38호로 수정보충 |
| 주체91(2002)년  | 10월 2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70호로 수정보충 |
| 주체97(2008)년  | 7월 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78호로 수정보충 |
| 주체98(2009)년  | 3월 3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57호로 수정보충 |
| 주체98(2009)년  | 5월 5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호로 수정보충   |
| 주체99(2010)년  | 5월 1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35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1(2012)년 | 4월 3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3호로 수정보충 |

## 제1장 국기법의 기본

### 제1조 (국기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은 국기의 제작과 사용, 계양식, 보관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인민들속에서 국기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고 국가의 존엄을 지키며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을 높여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국기의 상징과 보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는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우리 인민의 행복과 휘황찬란한 전망의 상징이다.

국가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기를 정중히 대하고 다루며 보호하도록 한다.

### 제3조 (국기의 의미와 활동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에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몸바쳐 싸운 애국투사들과 영웅전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으며 나라의 번영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이 담겨져있다.

모든 공민은 국기에 담겨져있는 숭고한 뜻을 잘 알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 제4조 (국기의 형태와 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는 가로로 길이가 더 긴 직사각형의 람홍색기발이다. 국기는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국가는 국기를 정해진 형태와 색깔에 맞게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다.

## 제2장 국기규격과 제작

### 제5조 (국기규격과 색의 기준)

국기의 규격과 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기의 세로와 가로로 비는 1대 2이다.회의장, 행사장 같은데 드리우거나 인쇄, 형상, 장식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국기의 세로와 가로로 비를 해당 장소와 대상에 어울리게 1대 2와 달리할수도 있다.
2. 국기의 폭과 붉은 별, 흰 동그라미 가운데점, 흰 동그라미, 붉은 별, 외접원 직경의 비는 이 법 부록 1에 따른다.
3. 국기의 색은 햇빛이 프리즘을 통하여 나타나는 빛갈에서 붉은색과 푸른색의 가운데부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 제6조 (국기규격의 구분)

국기의 크기는 용도에 맞게 8개의 규격으로 한다. 규격은 이 법 부록 2에 따른다.

필요에 따라 국기의 세로와 가로로 비를 1대 2와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맞게 규격을 부록 2와 달리 정할수도 있다.

### 제7조 (국기제작자)

국기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정한 기관, 기업소에서 제작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국기를 나노기술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만든 질 좋은 천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국가가 정한 규격과 색에 맞지 않는 국기를 제작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할수 없다.

### 제8조 (드리우는 국기의 제작)

국기를 만드는 기관, 기업소는 아래로 곧추 드리울 때 쓰기 위한 오각별이 바로 놓이는 국기를 만들수 있다.

### 제9조 (국기의 금색수)

외교의례사업 같은데 쓰기 위하여 만드는 국기에는 금색수를 달수 있다. 금색수를 국기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달지 않는다.

금색수의 폭은 금색수를 달려는 국기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 제10조 (국기대의 재질과 색)

국기대는 나무, 인발관 같은것으로 만들며 그 색은 연한 푸른색, 흰색 같은것으로 한다.

**제11조 (국기대의 길이)**

국기대의 길이는 국기의 용도규격에 맞게 한다. 규격은 이 법 부록 3에 따른다.

**제12조 (국기대의 설치)**

국기대는 공공건물과 살림집, 광장, 운동장의 규모에 어울리게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국기대는 공공건물지붕우의 중심에 세울수 있다.
2. 국기대를 공공건물, 살림집앞과 광장, 운동장 같은데는 마주보아 정문, 정면 왼쪽의 잘 보이는 곳에 세우며 경우에 따라 다른 위치에 세울수 있다.
3. 국기대를 거리와 마을의 필요한 곳에 세울수 있다.
4. 국기대를 2개이상 세울 경우에는 주변의 환경에 맞게 세우며 기대사이의 거리를 띄우는 국기의 길이보다 넓게 한다.

**제13조 (국기대축)**

국기대축은 날창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기대축의 형태를 다르게 할수 있다.

**제14조 (국기대축의 색)**

국기대축의 색은 은백색 또는 황금색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색을 다르게 할수 있다.

**제15조 (국기대축의 직경)**

국기대축의 직경은 국기세로의 10분의 1로 한다.

## 제3장 국기사용

**제16조 (국기를 일상적으로 띄우거나 드리우는 기관, 장소)**

다음의 기관, 장소에는 국기를 일상적으로 띄우거나 드리운다.

1. 금수산태양궁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만수대의사당
2. 도(직할시)인민위원회
3. 각급 재판소의 법정
4. 민용항공역과 중요항구
5. 다른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6. 그밖에 필요한 장소와 해외조선동포조직의 청사에도 국기를 일상적으로 띄우거나 드릴수 있다.

**제17조 (명절, 행사시의 사용)**

국기는 국가적인 명절과 기념일,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 국가적인 중요행사때에 기관, 기업소, 단체의 건물과 살림집, 거리, 마을에 띄우거나 단다. 이 경우 국기를 국가의 상징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면서 주위환경에 조화롭게 잘 어울리도록 여러가지 형식으로 띄우거나 달아야 한다.

**제18조 (회의장에서 사용)**

국기는 회의장, 선거장, 회담장, 행사장, 체육경기장, 전람회장 같은데 띄우거나 달수 있다. 이 경우 국기를 해당 장소, 행사의 성격에 맞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띄우거나 달수 있다.

**제19조 (시위, 집회, 체육경기시의 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시위, 집회, 체육경기 같은데서 국기를 사용할수 있다.

**제20조 (재외대표부책임자의 차에 사용)**

다른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 책임자의 승용차에는 국기를 달수 있다.

**제21조 (외교의례사업시의 사용)**

국기는 외교의례사업을 할 경우 사용할수 있다. 이 경우 국기사용질서는 외무성이 정한다.

**제22조 (군사임무수행시의 사용)**

국기는 군사임무를 수행할 경우 사용할수 있다. 이 경우의 국기사용질서는 인민무력부가 정한다.

**제23조 (배에서 사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배와 우리 나라 령해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띄우거나 달아야 한다. 이 경우의 국기사용질서는 중앙해운지도기관이 정한다.

**제24조 (조기)**

국기는 조기로 띄울수 있다.

**제25조 (국기를 띄우고 내리는 시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를 띄우고 내리우는 시간을 지켜야 한다.

4월부터 9월까지 국기를 띄우는 시간은 아침 7~8시, 내리우는 시간은 저녁 7~8시로 하며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국기를 띄우는 시간은 아침 8~9시, 내리우는 시간은 저녁 5~6시로 한다.

**제26조 (국기사용시간의 변경)**

국기를 행사때와 재외대표부청사, 거리와 마을에 띄우거나 내리올 경우와 조기로 띄우거나 내리올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을 실정에 맞게 정할수 있다.

**제27조 (국기사용제한)**

이 법 제16조에 지적하지 않은 건물과 장소에는 날씨가 심히 나쁠 경우 국기를 띄우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 (국기계양방법)**

국기를 띄우거나 달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책임일군이 방조성원과 함께 띄운다.
2. 국기를 국기대끝까지 천천히 올려 띄운다.
3. 국기를 기관, 기업소, 단체기발, 오색기발 같은것과 함께 띄울 경우에는 국기부터 먼저 띄운다. 이 경우 마주보아 왼쪽이나 중심에 국기를 띄우며 다른 기발보다 높게 띄운다.
4. 국기를 기관, 기업소, 단체기발, 오색기발 같은것과 함께 들고 대렬행진을 할 경우에는 다른 기발의 앞에 세운다.
5. 공화국국기와 함께 다른 나라 국기를 띄우거나 달 경우에는 우리 나라를 승인한 나라의 국기만 사용한다.
6. 공화국국기를 다른 나라 국기와 함께 띄우거나 달 경우에는 그 크기와 높이가 같아야 한다.
7. 공화국국기를 다른 나라 국기와 교차시켜 띄울 경우에는 마주보아 공화국국기는 왼쪽에, 국기대는 다른 나라 국기대의 앞에 놓이게 한다.
8. 국기를 조기로 띄울 경우에는 국기세로의 절반 길이만큼 국기대끝으로부터 내려 띄운다. 이 경우 국기를 국기대끝까지 올렸다가 내리운다. 국기를 조기로 사용하면서 검은 땡기와 함께 띄울수 있다. 땡기의 길이는 국기의 길이와 같으며 그 폭은 국기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검은 땡기는 조기의 옷매듭점에 단다.

**제29조 (규격에 맞지 않는 국기의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가 파오손, 퇴색되었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 (국기를 내리는 방법)**

국기를 내리올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는 책임일군 또는 당일근무책임자가 방조성원과 함께 내리운다.
2. 국기를 천천히 내리운다.
3. 조기로 사용한 국기는 국기대끝까지 올렸다가 내리운다.

**제31조 (국기의 인쇄, 형상, 장식)**

국기는 표창장과 출판물, 예술작품, 휘장, 직관물, 물품, 비행기, 배 같은데 인쇄하거나 형상, 장식할수 있다.



## 제4장 국기게양식

### 제32조 (국기게양식의 준비)

국가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위에서 국기게양식준비를 잘하고 의식을 엄숙히 진행하도록 한다.

### 제33조 (국기게양식의 날자)

국기게양식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 2월 16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기념일,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 조선인민군창건기념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을 맞으면서 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와 체육경기 같은것을 할 경우에도 해당 장소에서 국기게양식을 할수 있다.

### 제34조 (국기게양식의 시간)

국기게양식은 명절날 아침 또는 명절전날 오후에 한다.

### 제35조 (국기게양식을 하는 기관)

국기게양식은 도(직할시), 시(구역), 군소재지와 조선인민군(조선인민내무군포함)부대 또는 구분대, 군급이상의 인민보안기관, 각급 학교(양성기관 포함), 소년단야영소 그밖에 내각이 정한 기관, 기업소에서 진행한다. 그러나 각급 학교(양성기관포함)에서는 방학기간에 국기게양식을 하지 않을수 있다.

### 제36조 (국기게양식의 장소)

평양시근로자들의 국기게양식은 김일성광장에서 한다. 그밖의 단위의 국기게양식은 국기대가 있는 장소에서 한다.

### 제37조 (국기게양식의 참가성원)

국기게양식은 해당 단위의 책임일군과 성원의 참가밑에 진행한다.

### 제38조 (국기게양식때의 레의)

국기게양식에 참가한 공민은 애국가의 주악과 함께 국기를 향하여 차렷자세를 하고 정중하게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주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기게양이 끝날 때까지 차렷자세를 하고 정중하게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군복이나 제복을 입은 공민과 소년단원은 거수경례 또는 소년단경례를 하며 그들이 집체적으로 참가하였을 경우에는 대렬책임자만 경례를 하고 다른 성원들은 차렷자세로 정중하게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국기게양식장소를 지나가는 공민은 걸음을 멈추고 차렷자세로 정중하게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제39조 (국기제양식의 절차, 방법)**

국기제양식은 다음의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한다.

1. 사회자가 국기제양식의 시작을 알린다.
2. 책임일군은 방조성원 2~4명과 함께 국기함에서 국기를 꺼내여 국기대줄에 단다.
3. 책임일군이 국기대줄을 잡아당기는 순간 애국가를 주악한다. 경우에 따라 주악을 하지 않을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 소고대를 참가시킬수 있다.
4. 국기제양방조성원은 방조가 끝나는 차례로 국기대를 중심으로 정방형 또는 좌우위치에 서있다가 국기제양식이 끝나면 퇴장한다.
5. 국기제양이 끝나면 사회자는 국기제양식이 끝남을 알린다. 이때 해당 단위의 특성에 맞게 구호를 부를수 있다.

**제40조 (국기를 내리우는 의식)**

국기를 내리우는 의식은 하지 않는다.

## 제5장 국기보관관리

**제41조 (국기보관함)**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를 보관함에 넣어 소중히 보관하여야 한다.

국기보관함은 국기의 크기에 알맞게 만들어야 한다.

**제42조 (국기의 손상방지)**

국기를 사용할 경우 기발이 손상되거나 어지러워지지 않게 정히 다루어야 한다.

**제43조 (나쁜 날씨때의 국기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띄운 국기에 손상이 가지 않는가를 살피며 날씨가 심히 나쁠 경우에는 내리워 보관하거나 조건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 (국기존업의 훼손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를 상표 같은데 쓰거나 그밖에 국기의 존업이 훼손될수 있는데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45조 (파오손, 퇴색된 국기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파오손되었거나 퇴색된 국기를 해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 제46조 (국기와 관련한 중앙의 지도통제기관)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통일적지도 밑에 내각이 한다.

### 제47조 (국기와 관련한 지방정권기관의 지도)

지방인민위원회는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 제48조 (국기와 관련한 감독통제)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기제작과 사용, 보관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 제49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부록1. 국기색의 폭과 붉은 별, 흰 동그라미의 가운데점, 흰 동그라미, 붉은 별, 외접원직경의 비

1. 국기를 세로 6등분하여 6분의 1을 각각 아래우의 푸른 폭으로 하며 남은 6분의 4를 24등분하여 24분의 1을 각각 아래우의 흰 폭으로 하고 24분의 22를 붉은 폭으로 한다.
2. 붉은 별의 가운데점과 흰 동그라미의 가운데점은 국기의 세로 2등분선과 국기대쪽의 가로 3등분선과의 사귄점이다.
3. 흰 동그라미의 직경은 국기의 붉은 폭과 흰 폭을 합한 세로의 3분의 2의 길이이며 붉은 별의 외접원의 직경은 흰 동그라미의 직경에서 흰 폭 세로의 2분의 1을 뺀 길이이다. 붉은 별의 끝은 흰 동그라미의 둘레에 붙지 않는다.

### 부록 2. 국기의 용도별규격 (가로×세로)

1. 400cm이상×200cm 이상
2. 340cm이상×170cm이상
3. 280cm이상×140cm이상
4. 200cm이상×100cm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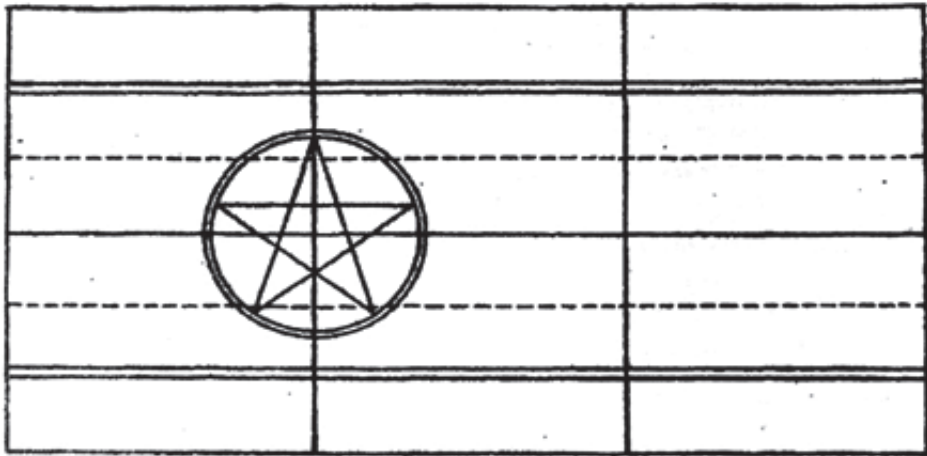
5. 140cm이상×70cm이상
6. 80cm이상×40cm이상
7. 50cm이상×25cm이상
8. 30cm이상×15cm이상

**부록3. 국기의 크기에 따르는 국기대의 규격(길이)**

1. 12m이상
2. 10m이상
3. 8m이상
4. 6m이상
5. 4m이상
6. 2m이상
7. 0.5m이상
8. 0.3m이상

**부록4. 국기제작도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제작도안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

주체82(1993)년 10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39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보충  
주체89(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3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57호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4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8호로 수정보충

## 제1장 국장법의 기본

### 제1조 (국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은 국장의 제작과 사용, 관리를 바로하여 국가의 권위를 높이며 인민들속에서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을 높여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국장의 보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은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불패의 위력과 룡성변영의 상징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장을 정중히 대하고 다루며 보호하도록 한다.

### 제3조 (국장의 형태와 제작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은 세로의 직경이 더 긴 타원형이다.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땅아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태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천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국가는 제정한 규격과 색, 제작도안에 맞게 국장을 만들도록 한다.

### 제4조 (국장사용원칙)

국가는 국장을 정해진 위치에 붙이거나 걸며 인쇄하도록 한다.

## 제2장 국장규격과 제작

### 제5조 (국장의 규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 타원의 긴 직경과 짧은 직경의 비는 6대 5이다.

국장에 표시된 띠, 나라이름, 벼이삭, 오각별, 백두산, 저수지물우의 구름, 저수지언제, 저수지물문, 발전소뒤의 언제, 발전소건물, 변압기실, 발전소물문, 물길잡이뚝, 고압철탑, 저수지와 발전소물문에서 흐르는 물의 규격은 이 법 부록 1에 따른다.

**제6조 (국장의 분류)**

국장은 크기에 따라 6가지로 나누며 그 규격은 이 법 부록 2에 따른다.

**제7조 (국장의 크기변경)**

국장을 공인 같은데 조각하거나 인쇄, 형상, 장식할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또는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8조 (국장의 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의 주되는 색은 붉은색, 푸른색, 흰색, 노란색, 밤색, 연분홍색, 노란 흙색, 노란 풀색으로 한다. 일부 색은 주되는 색에 다른 색을 더한 색으로 한다. 국장 각 부분의 색은 이 법 부록 3에 따른다.

**제9조 (국장제작자)**

국가는 국장을 만드는 기관, 기업소를 정한다.

국장을 만드는 기관, 기업소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 또는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제10조 (국장제작질서의 준수)**

국장을 만드는 기관, 기업소는 정해진 규격과 색, 제작도안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국장을 한가지 색으로 만들 수 있다.

## 제3장 국장사용

**제11조 (건물에 사용)**

국장을 건물에 사용하는 기관은 건물지붕 또는 정면우의 중심에 붙이거나 걸어야 한다.

**제12조 (문건, 출판물에 사용)**

국장을 공문서, 증명문건, 출판물 같은데 인쇄하는 기관은 문건, 출판물의 윗부분 또는 중심에 인쇄하여야 한다.

**제13조 (압인에 사용)**

국장을 압인에 새기려는 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일상적으로 붙이거나 거는 기관, 장소)**

국장을 늘 붙이거나 거는 기관,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금수산태양궁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만수대의사당
2.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3. 각급 재판소의 법정

4. 다른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승인한 기관 또는 장소

**제15조 (회의장에 사용)**

국장은 회의장, 회담장, 행사장, 전람회장 같은데 걸거나 달수 있다.

**제16조 (시위, 집회에 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시위, 집회 같은 것을 할 경우 국장을 사용할수 있다.

**제17조 (공인에 새기는 기관)**

국장을 공인에 새길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2. 내각 위원회, 성과 중앙기관
3. 지방인민위원회
4. 지방검찰, 재판, 인민보안기관
5. 다른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이 승인한 국가기관

**제18조 (공문서, 증명문건에 사용하는 기관)**

국장을 공문서, 증명문건 같은데 인쇄하여 리용할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2. 내각 위원회, 성과 중앙기관
3. 지방인민위원회
4. 도(직할시)검찰소, 재판소, 인민보안국
5. 다른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이 승인한 국가기관

**제19조 (인쇄, 형상, 장식에 사용)**

국장은 국가적명의로 되는 표창장, 기발, 초대장과 출판물, 예술작품, 집단체조, 직판물, 화폐 같은데 인쇄하거나 형상, 장식할수 있다.

**제20조 (비규격국장의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규격에 맞지 않는 국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21조 (국장존엄의 훼손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장을 상표 같은것으로 리용하여 국장의 존엄을 훼손시킬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4장 국장관리

### 제22조 (국장의 손상방지)

시위, 집회 같은데 참가하여 국장을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장이 손상되거나 어지러워지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23조 (국장의 원상보존)

국장을 붙였거나 건 기관은 국장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 제24조 (국장을 새긴 공인, 문건의 보관)

국장을 새겼거나 인쇄한 공인, 공문서, 증명문건, 출판물 같은것을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제정된 질서대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25조 (파오손된 국장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장이 파오손되었거나 퇴색되었을 경우 제때에 원상대로 복구하거나 내각 또는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장 국장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 제26조 (국장의 제작, 사용, 관리에 대한 중앙의 지도기관)

국장의 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 제27조 (국장의 제작, 사용, 관리에 대한 감독통제)

국장의 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장의 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28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국장의 제작과 사용, 관리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부록1.** 국장에 표시된 띠, 나라이름, 벼이삭, 오각별, 백두산, 저수지물우의 구름, 저수지 언제, 저수지물문, 발전소뒤의 언제, 발전소건물, 변압기실, 발전소물문, 물길잡이뚝, 고압철탑, 저수지와 발전소물문에서 흐르는 물의 규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주체52(1963)년 10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42호로 채택  
주체84(1995)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 제1조 (국적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은 공화국국민으로 되는 조건을 정하고 그들의 자주적권리를 옹호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국민의 자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다음과 같다.

1. 공화국창건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사람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자
2. 다른 나라 국민 또는 무국적자로 있다가 합법적절차로 공화국국적을 취득한자

## 제3조 (국민의 보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거주지나 체류지에 관계없이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 제4조 (귀국, 래왕의 자유원칙)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공화국으로 귀국하거나 자유로이 오갈수 있다.

## 제5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다음에 해당하는자는 출생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다.

1. 공화국국민사이에 출생한자
2.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공화국국민과 다른 나라 국민 또는 무국적사이에 출생한자
3.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사이에 출생한자
4. 공화국령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자

## 제6조 (청원에 의한 국적취득)

무국적자 또는 다른 나라 국민은 청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할수 있다.

## 제7조 (해외국민과 외국인사이에 출생한자의 국적)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과 다른 나라 국민사이에 출생한자의 국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4살에 이르지 못한자의 국적은 부모의 의사에 따라 정하며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정한다. 이 경우 출생후 3개월이 되도록 부모나 후견인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공화국국적을 가진다.
2. 14살이상 미성인의 국적은 부모의 의사와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정하며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후견인의 의사와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가 부모의 의사 또는 후견인의 의사와 다르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한다.
3. 성인으로 되는자의 국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한다.

**제8조** (해외공민과 외국인사이에 출생한자의 공화국국적입적신청)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국적을 공화국국적으로 정하려 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자녀가 거주하는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에 해당한 문건을 내야 한다.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이나 거주하는 나라의 해당 기관에 문건을 내야 한다.

**제9조** (부모의 국적변경에 따르는 자녀의 국적)

부모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입적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제적되는 경우 자녀의 국적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14살에 이르지 못한 자녀의 국적은 부모의 국적을 따라 변경된다.
2. 14살이상 16살에 이른 자녀의 국적은 부모의 의사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된다. 이 경우 부모의 의사가 없거나 본인의 의사와 다르면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제10조** (부모일방의 국적변경과 자녀의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부모중 어느 일방의 국적이 변경되어도 그 자녀의 국적은 변경되지 않는다.

**제11조** (결혼, 리혼 및 립양, 파양과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은 결혼이나 리혼 또는 립양이나 파양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제12조** (국적회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하였던자는 청원에 의하여 공화국국적을회복할수 있다.

**제13조** (국적제적자의 지위와 권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에서 제적된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상실한다.

**제14조** (국적실무사업기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적과 관련한 실무적인 사업은 공민등록기관이 한다.

공화국령역밖에서는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이 한다.

**제15조** (국적입적, 제적청원의 결정기관)

공화국국적에로의 입적청원 또는 공화국국적에서의 제적청원에 대한 결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제16조** (국적관련조약의 효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적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서 이 법의 내용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른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

|              |         |                              |
|--------------|---------|------------------------------|
| 주체63(1974)년  | 12월 19일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채택      |
| 주체82(1993)년  | 8월 26일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31호로 수정보충    |
| 주체88(1999)년  | 1월 2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2호로 수정보충  |
| 주체96(2007)년  | 8월 2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33호로 수정보충 |
| 주체98(2009)년  | 4월 2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1(2012)년 | 4월 2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46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5(2016)년 | 8월 10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45호로 수정보충 |
| 주체110(2021)년 | 10월 26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3호로 수정보충  |

## 제1장 지방주권기관법의 기본

### 제1조 (지방주권기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은 지방주권기관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인민들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지방주권기관과 그 조직)

지방주권기관은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이다.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을 단위로 조직한다.

### 제3조 (지방주권기관의 구성원칙)

지방주권기관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대표들로 구성한다.

### 제4조 (인민들의 권리와 리익의 보호원칙)

지방주권기관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 제5조 (지방주권기관의 활동원칙)

지방주권기관은 모든 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구현한다.

### 제6조 (지방주권기관법의 규제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은 지방주권기관의 구성과 활동원칙, 임무, 권한을 규제한다.

## 제2장 지방인민회의

### 제7조 (지방인민회의의 지위)

지방인민회의는 해당 지역안의 인민대표기관이며 주권기관이다.

### 제8조 (지방인민회의의 구성, 대의원의 자격)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공민으로서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이 될수 있다.

### 제9조 (지방인민회의의 임기)

지방인민회의의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해당 지방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제10조 (지방인민회의의 임무와 권한)

지방인민회의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제11조 (정기 및 임시회의)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해마다 2차 해당 인민회의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제12조 (회의날자통지)

지방인민회의의 날자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기 1개월전에 대의원들에게 알린다. 이 경우 상급인민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3조 (회의성립조건)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4조 (지방인민회의의 의장)**

지방인민회의의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5조 (지방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과 그 제출권)**

지방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중요결정관철을 위한 문제
2. 법집행정형총화, 법집행검열감독정형과 관련한 문제
3. 인민위원회사업정형총화, 지방예산과 관련한 문제
4. 이밖에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문제

지방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16조 (의안보고자)**

지방인민회의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보고는 해당 인민위원회 성원이 한다.  
해당 인민위원회 성원이 아닌 대의원도 보고를 할수 있다.

**제17조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채택방법)**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은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제18조 (결정서등본의 제출)**

지방인민회의는 해당 인민회의의 결정서등본을 상급인민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19조 (대의원의 임무와 권한)**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인민회의에 참가하여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된 결정이 채택되도록 창발적인 의견을 적극 제기하여야 한다.
2. 해당 지역안의 공민들에게 국가의 법과 규정,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을 해설선전하며 그 집행을 도와주어야 한다.
3.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가의 법과 규정, 인민회의의 결정을 정확히 집행하는가를 료해할수 있다.
4.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그들과의 사업을 하며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는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어야 한다.
5. 해당 인민위원회와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6.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대의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제20조 (대의원의 책임)**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과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대의원이 선거자들의 신임을 잃었거나 대의원의 임무를 수행할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환된다.

**제21조 (대의원의 소환)**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결정한다.  
인민회의의 휴회중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3장 지방인민위원회

**제22조 (지방인민위원회 지위)**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안에서 국가정책의 집행자이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이다.

**제23조 (지방인민위원회의 구성과 인원수)**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구성인원은 11~15명,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구성인원은 9~13명 범위안에서 해당 인민회의가 결정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24조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지방인민회의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역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역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해당 지역안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장악지도한다.
12. 국가표창, 렬사증, 사회주의애국희생증수여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다.
13. 인민들로부터 제기되는 신소와 청원을 처리한다.
14.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1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보선한다.
16.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지방예산,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제25조 (전원회의, 상무회의의 구성)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겸 사무장으로 구성한다.

#### 제26조 (전원회의, 상무회의의 소집)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분기에 1차이상, 상무회의는 필요한 때 소집한다.

전원회의는 지방인민위원회성원의 3분의 2이상인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제27조 (전원회의, 상무회의의 의안)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와 그밖의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 제28조 (회의집행)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이 집행한다.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를 대리하는 부위원장이 집행한다.

#### 제29조 (의안제출권)

지방인민위원회에서 토의할 의안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제출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 제30조 (의안보고자)

지방인민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보고는 해당 인민위원회 성원이 한다.

의안을 제출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도 보고를 할수 있다.



**제31조**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 지시)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지방인민위원회가 내는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인민위원회성원의 반수이상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제32조** (결정서, 지시문 등본의 제출, 시달)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서, 지시문 등본을 상급인민위원회에 보내며 결정서, 지시문을 채택한 날부터 1주일안으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인민위원회의 결정과 지시를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33조** (지방인민위원회 임무수행의 연장)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34조** (지방인민위원회 비상설위원회)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필요한 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35조** (책임과 복종관계)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14기 7차 최고인민회의 주체111(2022)년 9월 8일 채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전쟁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며 국제적정의를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지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태세는 현존하고 진화되는 미래의 모든 핵위협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믿음직하고 효과적이며 성숙된 핵억제력과 방위적이며 책임적인 핵무력정책, 신축성있고 목적지향성있는 핵무기사용전략에 의하여 담보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핵무력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핵무기보유국들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람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국가방위력의 중추인 핵무력이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핵무력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외부의 군사적위협과 침략, 공격으로부터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하는 국가방위의 기본력량이다.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적대세력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이 파멸을 초래한다는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침략과 공격기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전쟁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사명을 수행한다.

## 2. 핵무력의 구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각종 핵탄과 운반수단, 지휘 및 조종체계, 그의 운용과 갱신을 위한 모든 인원과 장비, 시설로 구성된다.

### 3.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지휘에 복종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임명하는 성원으로 구성된 국가핵무력지휘기구는 핵무기와 관련한 결정으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보좌한다.
- 3)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협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 4. 핵무기사용결정의 집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사용명령을 즉시 집행한다.

### 5. 핵무기의 사용원칙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6. 핵무기의 사용조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의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다.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었거나 립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었거나 립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국가의 중요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공격이 감행되었거나 립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 5)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 7. 핵무력의 정상적인 동원태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사용명령이 하달되면 임의의 조건과 환경에서도 즉시에 집행할수 있게 정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한다.

## 8.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보관관리, 수명과 성능평가, 갱신 및 폐기의 모든 공정들이 행정기술적규정과 법적절차대로 진행되도록 철저히하고 안전한 핵무기보관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그 리행을 담보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와 관련기술, 설비, 핵물질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대책을 세운다.

## 9. 핵무력의 질량적강화와 갱신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부의 핵위협과 국제적인 핵무력태세변화를 항시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게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력이 자기의 사명을 믿음직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각이한 정황에 따르는 핵무기사용전략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 10. 전파방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다른 나라의 령토에 배비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관련기술, 설비, 무기급핵물질을 이전하지 않는다.

## 11. 기 타

- 1) 2013년 4월 1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의 효력을 없앤다.
- 2) 해당 기관들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철저히 세울것이다.
- 3) 이 법령의 임의의 조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구속하거나 제한하는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혁명사적사업법

주체110(2021)년 4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07호로 채택

## 제1장 혁명사적사업법의 기본

### 제1조 (혁명사적사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혁명사적사업법은 혁명사적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혁명사적사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며 인민들을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영예롭고도 중요한 사업이다.

### 제3조 (혁명사적사업의 기본원칙)

국가는 혁명사적사업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고 수령, 당, 대중의 3위1체를 보장하며 력사주의와 과학성을 철저히 지키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한다.

### 제4조 (혁명사적의 영구보존원칙)

국가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가 깃들어 있는 혁명사적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하며 영구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한다.

### 제5조 (혁명사적사업체계확립의 원칙)

국가는 혁명사적에 대한 발굴, 고증 및 등록체계, 보존관리체계와 학술연구체계, 사적물과 자료전시체계, 혁명사적교양체계, 혁명사적강사교육체계, 혁명사적부문의 건설과 물자보장체계 등을 정연하게 세우도록 한다.

### 제6조 (혁명사적의 신성불가침원칙)

혁명사적은 그 누구도 다칠수 없는 신성불가침이다.

국가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혁명사적을 백방으로 결사보위하도록 한다.

### 제7조 (혁명사적부문에 대한 사회적관심제고원칙)

국가는 전사회적으로 혁명사적부문을 중시하고 우선시하며 적극 도와주는 기풍을 세우도록

한다.

## 제2장 절세위인들과 혁명일가분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과 혁명사적의 발굴, 수집, 고충, 등록

### 제8조 (절세위인들과 혁명일가분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일가분들의 동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밝고 정중하게 모셔야 한다.

### 제9조 (혁명사적의 발굴, 수집, 고충)

해당 기관은 혁명사적의 발굴, 수집과 고충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교양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해나가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혁명사적을 발굴, 수집하고 고충하기 위한 해당 기관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 (현지지도단위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로정과 교시, 말씀내용, 대상, 장소에 따라 현지 지도단위로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 제11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등록)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신 장소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 또는 소부대성원들, 지하정치공작원들이 군사정치활동을 벌린 장소 등을 교양장소로 꾸렸을 경우에는 혁명전적지로 등록하며 절세위인들과 혁명일가분들의 혁명사적이 깃든 곳을 교양장소로 꾸렸을 경우에는 혁명사적지로 등록하여야 한다.

### 제12조 (혁명적구호나무, 혁명유적, 유물등록)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 지하정치공작원들, 국내혁명조직성원들, 애국적인민들이 쓴 구호가 있는 나무(바위)는 혁명적구호나무(바위)로 등록하며 군사정치활동을 벌린 장소와 숙영지들, 그곳에서 발굴된 유적, 유물은 혁명유적, 유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제13조 (혁명사적나무, 혁명사적물의 등록)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이 깃든 제품, 설비, 운수 수단, 나무 등을 혁명사적물 또는 혁명사적나무로 등록하여야 한다.

### 제14조 (혁명사적건물등록 및 표식)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절세위인들께서 리용하시였거나 현지지도하실

때 들리시었던 건물을 혁명사적건물로 등록하고 건물의 해당한 위치에 정중성이 보장되게 표식판을 만들어붙여야 한다.

### 제3장 혁명사적부문의 건설 및 꾸리기, 보존관리

#### 제15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건설)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혁명사적이 이루어진 당시의 모습과 특성을 살려 원위치에 원상대로 건설하여야 한다.

#### 제16조 (혁명사적기념비의 구분과 건립)

혁명사적기념비는 혁명사적기념탑, 친필비, 명제비, 노래비, 헌시비, 혁명(현지지도)사적비, 혁명사적(현지지도)표식비, 혁명사적(현지지도)표식주 등으로 구분한다.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은 혁명사적기념비를 건립할 단위와 장소, 기념비의 형식, 크기를 바로 정하고 만년대계로 건설하며 비문을 잘 작성하여 품위있게 새겨야 한다.

#### 제17조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 혁명사적교양실, 혁명사적물보존실건설 및 꾸리기)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은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 혁명사적(구호문헌보존)교양실, 혁명사적물(구호문헌)보존실을 학술배렬도와 전시방안을 잘 작성하여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답게 건설하며 정중성과 직관성, 문화성을 보장하면서 교양적의의가 있게 꾸려야 한다.

#### 제18조 (혁명사적부문의 건설대상에 대한 준공검사)

국가건설감독기관은 절세위인들의 동상,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 혁명사적기념탑건설에 대한 공정검사, 중간검사, 준공검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혁명사적기관은 원상복구한 혁명사적건물과 혁명사적기념비에 대한 준공검사를 전적으로 맡아하여야 한다.

#### 제19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의 안내표식설치)

혁명사적기관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입구에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명칭을 밝힌 표식비, 안내도 또는 로정도를, 혁명사적건물과 혁명유적들에는 명칭을 밝힌 표식주를 세워야 하며 소로길에는 방향표식판을 만들어놓아야 한다.

#### 제20조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의 보수)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에 대한 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21조 (혁명사적물보존관리)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혁명사적물을 원상대로 영구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리용하고있는 혁명사적물에 대하여서는 정상적으로 보수, 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혁명사적건물보존관리)**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워 놓고 교양에 리용하는 혁명사적건물은 원상대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리용하고있는 혁명사적건물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진을 찍어두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진, 현대화하여야 한다.

**제23조 (혁명사적나무보존관리)**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혁명사적나무를 생태학적요구에 맞게 잘 관리하며 산불, 병해충, 벼락, 폭우, 폭설, 태풍 등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4조 (혁명적구호나무보존관리)**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아있는 혁명적구호나무를 잘 관리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살리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원통유리관에 넣어 현지에 보존하거나 교양장소에 옮겨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구호나무를 교양장소에 옮겨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위치에 자리표식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 (혁명유적, 유물보존관리)**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혁명유적을 원위치에 원상대로 보존관리하며 혁명유물에 대한 보존관리와 수복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 (혁명사적기념비보존관리)**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은 혁명사적기념비를 녹과 석수, 기름 등의 오염을 받지 않도록 과학기술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혁명사적기념비를 승인되지 않은 시약으로 자의대로 세척하거나 수복하지 말아야 한다.

**제27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 혁명사적교양실, 혁명사적물보존실의 관리)**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은 혁명사적교양거점들에 절세위인들의 사진문헌(영상미술작품), 명제판을 정중히 모시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력사주의원칙에서 원상대로 보존관리하고 혁명사적물에 대한 정상적인 점검과 관리체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제28조 (혁명사적의 이관, 인수 및 보존관리기록)**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혁명사적물, 혁명사적건물, 혁명사적나무, 혁명적구호나무, 혁명유적, 유물 등 혁명사적의 이관, 인수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며 보존경력서와 보존관리 및 점검일지를 갖추어놓고 보존관리정형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제29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구역안의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관리기관은 관리경영용건물과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사업을 잘하고 정상적으로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건물과 시설물을 새로 건설하거나 없애려 할 경우에는 기술과제서와 형성안 및 설계를 만들어 혁명사적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혁명사적의 과학기술적보존)**

혁명사적기관과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은 혁명사적사업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혁명사적을 원상대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혁명사적의 손상과 오염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 등 혁명전통 교양거점에서 승인없이 불을 망탕 피우는 행위, 전시물에 손을 대어 손상시키는 행위, 오물을 망탕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4장 혁명사적보위 및 교양, 조건보장

**제32조 (사회안전기관의 임무)**

해당 지역 사회안전기관은 혁명사적보위사업을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적간첩, 파괴암해분자들과 불순적대분자들의 책동으로부터 절세위인들과 혁명일가분들의 동상을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2. 중요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에 대한 보위사업을 책임지고 하여야 한다.
3. 신호기재, 감시기재, 차단기재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기재들을 적극 도입하여 2중, 3중의 경비방어체계를 세워야 한다.
4. 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산불과 전기에 의한 화재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열단속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5. 유사시에 절세위인들과 혁명일가분들의 동상을 정중히 옮겨모시고 혁명사적물들을 안전한 곳에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제33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보존관리하고있는 혁명사적에 대한 보위사업)**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보존관리하고있는 혁명사적에 대한 보위사업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에서 보존관리하고있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혁명사적관, 혁명사적교양실을 비롯한 혁명사적교양거점들과 혁명사적기념비, 혁명사적물, 혁명사적건물, 혁명사적나무, 혁명적구호나무, 혁명유적, 유물에 대한 보위사업을 책임지고 하여야 한다.
2. 해당 기관은 인민보위대, 로농적위군이 경비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혁명사

적보위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여 제때에 총화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큰물과 비바람, 벼락, 산사태 등 여러가지 위험요소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혁명사적보위사업을 답사, 참관교양에 지장이 없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제34조 (혁명사적부문 인민보위대에 대한 군사실무적지도)**

해당 지역 사회안전기관은 혁명사적부문 인민보위대에 대한 군사실무적지도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5조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

혁명사적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 등에 대한 답사와 참관을 계획적으로 의의있게 조직진행하여 인민들을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제36조 (답사조건보장)**

혁명사적지도기관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자들을 위한 식량과 기초식품, 의약품, 연유를 비롯한 숙식조건, 치료조건, 수송조건 등 답사조건보장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7조 (혁명사적부문의 건설, 꾸리기, 정성사업,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혁명사적부문의 건설과 꾸리기, 정성사업,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명설비, 전력케블, 세척제, 비로도천을 비롯한 각종 전기설비와 물자, 자재, 자금 등을 계획에 맞물려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38조 (타사업동원금지)**

내각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혁명사적부문 기관, 기업소에 혁명사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과제를 주거나 혁명사적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타사업에 망탕 동원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9조 (혁명사적부문 일군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보장)**

내각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혁명사적부문 일군들이 혁명사적사업에 전심전력할 수 있게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 제5장 혁명사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0조 (혁명사적사업에 대한 지도)**

혁명사적사업에 대한 지도는 혁명사적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혁명사적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국적인 혁명사적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

야 한다.

**제41조** (혁명사적지도기관의 료해와 자료수집)

혁명사적지도기관은 혁명사적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를 료해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제42조** (혁명사적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혁명사적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혁명사적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혁명사적 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혁명사적사업과 관련하여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3조** (혁명사적일군양성)

혁명사적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혁명사적일군대렬을 엄선하여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제44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혁명사적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

12기 7차 최고인민회의 주체102(2013)년 4월 1일 채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일격에 물리치고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하며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당당한 핵보유국가이다.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핵무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외세의 온갖 침략과 간섭을 받아온 수난의 력사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증되는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증되는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위험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할수 있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안전한 보관관리, 핵시험의 안전성보장과 관련한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나 그 기술, 무기급핵물질이 비법적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보관관리체계와 질서를 세운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들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는데 따라 호상존중과 평등의 원칙에서 핵전파방지와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협조한다.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전쟁위험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핵군비경쟁을 반대하고 핵군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10. 해당 기관들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철저히 세울것이다.



# 행정부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자격판정법

주체94(2005)년 1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97호로 채택  
주체97(2008)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43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주체110(2021)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12호로 수정보충

## 제1조 (공무원자격판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자격판정법은 공무원자격판정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무원의 자격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공무원자격판정의 의무적참가원칙)

공무원은 국가기관에서 일정한 행정적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 일군이다.  
국가는 모든 공무원이 자격판정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 제3조 (공무원자격판정에서 객관성, 공정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공무원자격판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4조 (공무원자격판정의 기준)

공무원자격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정책과 해당 부문의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있는가
2. 해당 부문의 전문지식과 컴퓨터실기능력이 있는가
3. 국가경제관리에 대한 일반지식이 있는가
4. 사업조직지휘능력이 있는가
5. 사업실적이 있는가
6. 해당 형식의 문건작성능력이 있는가
7. 일군으로서의 품성을 갖추고있는가
8. 경제지도일군원격재교육을 받았는가

## 제5조 (공무원자격판정의 대상)

공무원자격판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의 부원이상 일군
2. 도(직할시)급기관의 부원이상 일군
3. 시(구역), 군급기관의 부원이상 일군

4. 해당 기관의 부원이상 일군

**제6조** (공무원자격판정의 제외대상)

공무원자격판정의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 또는 선거된 일군
2. 중앙기관급이라고 하더라도 지도관리권능이 없는 기관의 일군
3. 출판보도기관,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 보건기관 같은 기관들에서 전문자격을 가지고 일하는 일군
4. 교육기관에서 통신교육 또는 재교육을 받거나 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있는 일군
5. 그밖에 따로 정해진 일군

**제7조**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조직)

국가는 공무원자격판정을 위하여 내각에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를, 해당 위원회, 성과 내각밖의 중앙기관에 부문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를, 그밖의 위원회, 성, 중앙기관에 기관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를,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에 도, 시, 군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를 둔다.

필요에 따라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해당 기관의 아래기관에도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 또는 부문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8조**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구성)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은 15명, 각급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은 5~11명범위안에서 해당 기관이 결정한다.

**제9조**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자격판정을 조직한다.
2. 공무원자격판정시험문제를 제시한다.
3. 판정날자와 장소를 정하고 30일전에 공포한다.
4. 공무원자격에 대한 평가사업을 한다.
5. 공무원자격판정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6. 공무원자격판정결과를 해당 단위에 보내준다.
7. 산하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8. 공무원자격판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제10조** (공무원자격급수)

공무원자격급수는 1~6급까지로 한다.

공무원자격급수에 따르는 기준은 공무원자격판정기준에 근거하여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가 정한다.

**제11조 (공무원자격판정관할)**

1급공무원의 자격판정은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가 한다. 그러나 내각밖의 기관과 따로 정한 기관의 1급공무원의 자격판정은 부문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 또는 기관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가 한다.

2~6급공무원의 자격판정은 해당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가 한다.

**제12조 (공무원자격판정의 주기)**

공무원자격판정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자격판정주기를 5년으로 할수 있다.

**제13조 (공무원자격판정기간의 설정)**

공무원자격판정기간은 판정주기마다 국가적인 사업을 고려하여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 (공무원자격급수판정의 분류)**

공무원자격판정은 제자리급수판정, 올라가는 급수판정으로 나누어 한다.

올라가는 급수판정에는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고 상급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가 승인한 대상이 응시할수 있다.

**제15조 (공무원자격판정의 시험방법)**

공무원자격판정시험은 필답 또는 구답의 방법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실기응용의 방법을 배합할수 있다.

**제16조 (합격하지 못한 판정결과의 처리)**

제자리급수판정에서 합격하지 못한 공무원의 자격급수는 한급 내리운다. 이 경우 내려갈 급수가 없는 공무원은 6개월안으로 다시 자격판정을 받을수 있다.

**제17조 (공무원자격판정결과의 공개)**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는 판정결과를 7일안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새로 입직하는 공무원의 자격판정)**

국가기관에 새로 입직한 때부터 1년이 지난 공무원은 공무원자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공무원자격판정사업에 대한 지도)**

공무원자격판정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가 한다.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는 국가적인 공무원자격판정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각급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사업을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20조** (공무원자격의 박탈)

정당한 이유없이 공무원자격판정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공무원자격판정에서 2차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제21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공무원자격판정을 조직하지 않았거나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판정기간을 변경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일군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2조** (공무원자격판정결과에 대한 의견제기와 처리)

공무원자격판정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 또는 상급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와 상급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인법

2007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09호로 채택

## 제1조 (공인법의 사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인법은 공인의 제작과 리용,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행정관리사업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공인의 정의)

공인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발급하는 문건이 법적담보를 위하여 찍는 공적인 도장이다. 공인은 기본공인과 보조공인, 형공인, 대외공인으로 나눈다.

## 제3조 (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공인을 제작하거나, 리용 보관관리하는 것과 공인의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다.

## 제4조 (기본공인의 형태)

기본공인은 원형이며 그 중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과 테두리 윗부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 테두리 아래 부분에 해당 기관의 명칭이 있고 국호와 해당 기관명칭사이의 량쪽에 작은 오각별이 한 개씩 있다.

## 제5조 (보조공인의 형태)

보조공인은 원형이며 그 중심에 큰 오각별과 테두리 윗부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 테두리 아래부분에 기관위 명칭이 있고 국호와 기관명칭사이의 량쪽에 작은 오각별이 한 개씩 있다.

## 제6조 (형공인의 형태)

형공인은 원형이며 그 중심에 기관, 기업소, 단체의 실정에 맞게 정한 그림과 테두리 윗부분에 상급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자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아래부분에 자기 관, 기업소, 단체 또는 부서의 명칭이 있고 윗부분명칭과 아래부분 명칭사이의 량쪽에 작은 오각별이 한 개씩 있다.

## 제7조 (대외공인의 형태)

대외공인은 원형이며 그 중심에 대외관계 실정에 맞게 정한 그림과 테두리 윗부분에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외명칭, 테두리 아래 부분에 다른 나라 말로 표기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외명칭이 있다.

**제8조 (공인의 규격과 양식)**

공인의 규격과 양식은 내각이 정한데 따른다. 내각은 공인의 규격과 양식을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급수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9조 (기본공인을 가지고 기관)**

기본공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내각위원회, 성, 중앙기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검찰, 재판, 인민보안기관, 교육기관, 은행기관, 통제기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농업지도기관, 다른 나라 주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그밖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내각이 승인한 기관이 가진다.

**제10조 (보조공인을 가지는 기관)**

보조공인은 기본공인을 리용하는 기관이 가진다. 형공인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본공인, 보조공인을 가질수 없다.

**제11조 (형공인을 가지는 기관)**

형공인은 기본공인을 리용할 수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가진다. 필요에 따라 기관안에 부서도 해당 상급기기관의 승인을 받아 형공인을 가질수 있다.

**제12조 (대외공인을 가지는 기관)**

대외공인은 국제기구, 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 또는 개인 및 경제조직과 경제거래를 하거나 대외사업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가진다.

**제13조 (비상설기관의 공인리용)**

국가적 조치에 따라 조직된 비상설기관은 필요한 경우 공인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기본공인의 리용)**

기본공인은 법령, 명령, 정령, 지시 같은 국가관리 문건과 국가 또는 정부적 성격을 띤 외교 문건, 공민증, 졸업증 같은 법적인 증명문건을 발급할 경우에 리용한다.

**제15조 (보조공인의 리용)**

보조공인은 기본공인을 가진 기관에서 국가관리 문건이 아닌 일반문건을 발급할 경우에 리용한다.

**제16조 (형공인의 리용)**

형공인은 기본공인을 리용할 수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형공인을 가진 부서가 발급하는 문건에 리용한다.

**제17조 (대외공인의 리용)**

대외공인은 국제기구, 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 또는 개인 및 경제조직과의 경제거래를 위한 문건을 발급할 경우에 리용한다. 국내기관, 기업소, 단체사이 주고받는 문건에는 대외공인을 리용할 수 없다.

**제18조 (공인신청)**

공인을 가지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인신청문건을 해당 상급기관에 내야 한다. 공인신청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주소, 소속관계, 공인을 가지려는 이유, 공인종류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9조 (공인신청 문건의 검토 공인 등록)**

공인신청문건을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공인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공인을 등록한다.

**제20조 (공인제작신청)**

공인을 제작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은 공인 신청문건을 시(구역), 군인민보안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공인제작기관의 지정)**

공인신청문건을 접수한 인민보안기관은 그것을 공인등록대장에 등록하고 공인신청문건에 공인을 제작할 수 있다는 확인과 함께 공인제작기관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인민보안기관에서 지정해주지 않은 다른 기관에서는 공인을 제작할 수 없다.

**제22조 (공인의 제작)**

공인제작기관은 공인을 정해진 규격대로 제작하여야 한다. 공인을 제작할 수 있다는 인민보안기관의 확인이 없이는 공인제작을 할 수 없다.

**제23조 (공인의 리용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인을 책임자의 승인에 따라 리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책임자의 승인이 없이 또는 해당 용도를 위반하여 공인을 리용할 수 없다.

**제24조 (기관의 명칭 또는 사업권능이 달라졌을 경우 공인의 리용질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또는 사업권능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공인의 리용을 중지하고 변경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또는 사업권능에 맞는 고인을 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낡은 공인은 폐기하고 새로운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인의 재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시(구역), 군으로 이동하였을 경우 이동하기 전의 시(구역), 군인민보안기관에서 공인등록을 삭제하고 관할 시(구역), 군인민보안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의 경우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공인의 색)**

공인은 붉은색으로 찍는다. 그러나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7조 (공인의 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인을 빌려주거나 빈종이 또는 빈양식에 찍지 말아야 한다. 손상되었거나 도형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 공인은 리용할 수 없다.

**제28조 (공인의 보관관리)**

공인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요부서책임자가 보관관리한다. 그러나 기요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가 보관 관리한다. 공인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밖으로 내갈 수 없다.

**제29조 (공인의 폐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인을 폐기하려 할 경우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인의 폐기신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안에 해당 기관에 공인을 바쳐야 한다.

**제30조 (공인등록의 삭제)**

공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공인등록대장에서 공인등록을 삭제한다.

**제31조 (○○, ○○도장, 증명도장, 합의도장, 등록도장의 제작,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서는 필요에 따라 ○○, ○○도장, 증명도장, 합의도장, 등록도장 같은 것을 만들어 리용할 수 있다.

○○, ○○도장, 증명도장, 합의도장, 등록도장 같은 것의 규격과 양식, 리용질서는 내각이 정함에 따른다.

**제32조 (공인의 제작, 리용,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공인의 제작과 리용, 보관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은 공인의 제작, 리용, 보관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제3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국가의 행정관리사업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 공민은 정형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

주체102(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호로 채택

## 제1장 금수산태양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

### 제1조 (금수산태양궁전의 지위, 법의 사명)

금수산태양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전체 조선민족의 태양의 성지로 영원히 보존하고 길이 빛내이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다.

국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금수산태양궁전에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신다.

### 제3조 (금수산태양궁전은 민족존엄의 상징)

금수산태양궁전은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다.

국가는 인민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더 없는 긍지로 소중히 간직하도록 한다.

### 제4조 (금수산태양궁전은 민족번영의 만년유산)

금수산태양궁전은 민족번영의 만년유산이다.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민족적인 사업으로 더욱 승엄하고 완벽하게 꾸리도록 한다.

### 제5조 (금수산태양궁전은 민족의 영원한 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민족과 더불어 영원할 태양의 성지이다.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조선민족의 영원한 성지로 대대손손 빛내인다.

### 제6조 (금수산태양궁전은 신성불가침)

금수산태양궁전은 그 누구도 다칠수 없는 신성불가침이다.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을 백방으로 결사보위한다.

## 제2장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

### 제7조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원칙)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는 것은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이고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을 가장 중요하고도 선차적인 사업으로 일관하게 진행한다.

### 제8조 (금수산태양궁전영구보존위원회의 조직과 임무)

국가는 해당 기관의 책임일군들로 금수산태양궁전영구보존위원회를 조직한다.

금수산태양궁전영구보존위원회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과 관련한 중요문제들을 토의 대책한다.

### 제9조 (영생홀의 영구보존)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은 곧 영생홀의 영구보존이다.

국가는 영생홀의 영구보존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 제10조 (영생홀의 영구보존과 관련한 기술지표보장)

영생홀의 기술지표보장은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영생홀의 온습도와 조명, 위생성을 기술지표대로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11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증서의 보존)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수여받으신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증서를 직관성있게 진렬하고 원상대로 잘 보존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증서의 원상보존과 관련한 수복사업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2조 (사적렬차의 보존)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리용하시던 렬차를 원상대로 잘 보존하여야 한다.

렬차의 원상보존과 관련한 기술작업은 해당 철도운수기관이 한다.

### 제13조 (사적승용차의 보존)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리용하시던 승용차를 원상대로 잘 보존하여야 한다.

승용차의 원상보존과 관련한 기술작업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14조 (사적배와 사적전동차의 보존)**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리용하시던 배와 전동차를 원상대로 잘 보존하여야 한다.

배의 원상보존과 관련한 기술작업은 해당 조선소가, 전동차의 원상보존과 관련한 기술작업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15조 (사진문헌의 보존)**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력사를 보여주는 사진문헌들을 년대별로 모시고 잘 보존하여야 한다.

사진문헌은 훈장보존실, 사적물보존실, 궁전의량같은 곳에 모신다.

### 제3장 금수산태양궁전에서의 경의표시

**제16조 (경의표시참가대상)**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의를 드리는 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의 표시이다.

인민들과 해외동포, 외국인은 누구나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삼가 경의를 드릴수 있다.

**제17조 (국가경의식)**

금수산태양궁전에서는 국가적명절과 기념일, 중요계기를 맞으며 국가경의식을 진행한다.

국가경의식은 정해진 행사질서에 따라 한다.

**제18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의식)**

기관, 기업소, 단체도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의식을 할수 있다. 이 경우 경의식날자와 시간, 참가인원수를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공민과 해외동포의 경의표시)**

공민과 해외동포는 립상홀과 영생활에서 경의를 표시한다.

경의표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허리굽혀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한다.

**제20조 (외국인의 경의표시)**

외국인은 대외사업일군의 안내를 받아 립상홀과 영생활에서 경의를 표시한다.

외국인의 경의표시는 자기 민족의 례법에 따라 할수도 있다.

**제21조 (궁전광장에서의 경의표시)**

경의표시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도 할수 있다.



이 경우 경의표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우러러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한다.

**제22조 (옷차림과 몸단장)**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의를 표시하는 공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은 옷차림과 몸단장을 바로 하며 정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제23조 (소감표시)**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의를 표시한 공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은 자기의 소감을 글로 남길수 있다.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공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이 소감을 표시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장 금수산태양궁전의 관리운영

**제24조 (관리운영원칙)**

금수산태양궁전의 관리운영사업을 잘하는 것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지성을 다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원상대로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 (금수산태양궁전특별보호구역의 제정)**

금수산태양궁전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금수산태양궁전특별보호구역을 정한다.

금수산태양궁전특별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금수산태양궁전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과 관리운영,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6조 (휴관기관과 휴관일)**

매해 5월과 6월을 금수산태양궁전의 휴관기관으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을 휴관일로 한다.

월요일과 금요일에 경의식을 할 경우에는 하루전 또는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휴관기관과 휴관일에 궁전의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보수, 정비를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건물의 관리)**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궁전건물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건물에 손상이 갔을 경우에는 제때에 원상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28조 (공원의 관리)**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궁전공원에 수종과 수형이 좋은 나무와 진귀하고 아름다운 꽃, 좋은 품종의 지피식물을 더 많이 심고 가꾸어 공원을 백화만발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 (수목원의 관리)**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궁전수목원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계획적으로 심고 잘 가꾸어 금수산태양궁전에 수려한 풍치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30조 (수목원의 관리)**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금수산태양궁전의 정상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궤도전차, 승강기, 공기조화기, 랭온풍기같은 시설들과 비품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야외불장식과 조명시설의 관리)**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과 불장식기관은 성지의 성격에 맞게 금수산태양궁전의 야외불장식과 조명을 품위있게 하고 조명설비들의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 (궁전광장과 공원의 리용)**

해마다 정해진 기관과 시간에 금수산태양궁전의 광장과 공원을 개방한다.  
광장과 공원에서는 누구나 사진도 찍고 휴식도 할수 있다.

**제33조 (금지품)**

금수산태양궁전구역에는 무기, 총탄, 폭발물, 인화물, 독해물과 궁전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줄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수 없다.

## 제5장 금수산태양궁전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제34조 (조건보장의 기본원칙)**

금수산태양궁전의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숭고한 의무이다.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최우선 무조건 보장한다.

**제35조 (관리기관의 기구, 정원수제정과 로력보장)**

해당 기관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은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과 관리운영을 원만히 할수 있도록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의 기구와 정원수를 현실에 맞게 정하고 정해진 로력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6조 (전력, 설비, 자재, 물자의 보장)**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에 필요한 전력, 설비, 자재, 물자를 최우선대상으로 따로 계획화하도록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력, 설비, 자재, 물자를 계획대로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제37조** (교통편의보장)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열차, 배스같은 운수수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 (숙식조건의 보장)

내각과 평양시인민위원회, 인민봉사기관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오는 공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의 숙식조건을 보장하며 필요한 봉사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기금의 운영)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과 관리운영자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김일성김정일기금을 운영하도록 한다.

**제40조** (감독통제)

해당 기관은 금수산태양궁전의 보위와 영구보존, 관리운영조건보장정형을 정상적으로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구법

주체91(2002)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14호로 채택  
주체93(2004)년 1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66호로 수정보충

## 제1장 기구법의 기본

### 제1조 기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구법은 기구의 기준제정과 조직, 정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구사업을 개선강화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기구사업의 실리보장원칙

기구는 국가의 정책과 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수단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실리를 보장할수 있게 기구틀 조직하고 끊임없이 개선완성 하여나가고도록 한다.

### 제3조 기구사업의 지도원칙

기구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하는것은 기구사업발전의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기구사업에서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래단위의 창발성을 높 이 발양시키도록 한다.

### 제4조 기구의 기준제정원칙

기구의 기준제정은 기구사업의 선차적공정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기구기준을 제정하도록 한다.

### 제5조 기구의 조직과 정리원칙

기구의 조직과 정리를 바로하는것은 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국가는 지도단위와 비생산단위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장간다리의 기구를 없애거나 줄이며 집행단위의 기구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6조 기구정원의 조직원칙

국가는 해당 부문의 자격을 가진 실력있는 일군들로 기구정원을 꾸리며 그들의 자질을 체계 적으로 높이도록 한다.

### 제7조 기구의 조직형식

기구는 조직형식에 따라 정원기구와 인민경제계획로력기구로 나눈다.

정원기구에는 기구정원으로 조직된 예산제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구, 인민경제계획로력기구에는 인민경제계획로력으로 조직된 독립채산제, 예산제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구가 속한다.

## 제2장 기구의 기준제정

### 제8조 기구기준제정의 기본요구

기구의 기준을 바로 제정하는것은 기구의 조직과 정리에서 통일성과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내각은 기구의 기준을 제때에 정확히 제정하고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기구의 기준에는 표준기구와 정원기준, 급수기준, 일군대우기준이 속한다.

### 제9조 표준기구의 제정

기관, 기업소, 단체의 표준기구는 인민경제의 부문별, 단위의 류형별로 제정한다. 이 경우 기구간소화의 요구, 부문별특성, 해당 단위의 임무와 사업량 같은것을 고려한다.

### 제10조 표준기구의 제정방법

표준기구의 제정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조직구조를 편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서명칭, 직제 같은것을 규정한다.

### 제11조 부서명칭의 제정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서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 성과 그와 같은 급의 중앙기관부서는 국, 처, 과 그밖의 중앙기관부서는 처, 과 같은것으로 한다.
2.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부서는 국, 처, 과, 도(직할시)급기관의 부서는 처, 과로 한다.
3.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의 부서는 부, 과, 군급기관과 그 아래단위의 부서는 과로 한다.
4. 그밖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서명칭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 제12조 부서의 조직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서는 임무수행에 맞게 둔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안에 부서를 둘수 없다.

### 제13조 기구직제의 조직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구직제는 책임자, 부책임자, 부서책임자, 책임부원, 부원, 문서원 같은것으로 한다.

부서의 부책임자직제는 특수한 경우에 둔다.

**제14조** 정원기준의 제정

기관, 기업소, 단체의 정원기준은 해당 단위의 임무, 사업량, 종업원수와 경영활동의 과학화, 현대화수준 같은것을 타산하여 제정한다.

**제15조** 부책임자의 배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책임자는 두지 않거나 1명으로 한다. 그러나 규모, 사업량, 부문별특성 같은것을 고려하여 1명이상 둘수 있다.

**제16조** 급수기준의 제정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급수기준은 인민경제적의의와 중요성, 사업량, 생산액, 실리보장수준 같은것을 고려하여 제정한다.

급수기준은 특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으로 한다.

**제17조** 대우기준의 제정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대우기준은 해당 단위의 급수, 일군의 직위, 임무 같은것을 고려하여 제정한다.

일군대우기준에는 생활비기준과 승용차리용편제기준 같은것이 속한다.

**제18조** 대우기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대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성과 그와 같은 급의 중앙기관 일군대우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2. 위원회, 성급이 아닌 중앙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일군의 대우는 위원회, 성과 그와 같은 급의 중앙기관 일군대우보다 낮은 기준으로 한다.
3. 도(직할시)급기관 일군의 대우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 일군의 대우보다 낮은 기준으로 한다.
4.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일군의 대우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 일군의 대우보다 낮은 기준으로 한다.
5. 시(구역), 군급기관 일군의 대우는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일군의 대우보다 낮은 기준으로 한다.
6. 그밖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대우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19조** 표준기구와 기구기준의 수정보충

기관, 기업소, 단체의 표준기구와 정원기준, 급수기준, 일군대우기준은 필요한 경우 수정보충한다.

## 제3장 기구의 조직과 정리

### 제20조 기구조직과 정리의 기본요구

기구의 조직과 정리를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구를 새로 나오거나 축소, 통합, 분리, 변경하거나 없애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구조직기관은 기구의 기준에 기초하여 기구를 조직, 정리하여야 한다.

기구조직기관에는 내각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이 속한다.

### 제21조 내각의 기구조직권한

내각은 위원회, 성, 중앙기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같은 기구정원으로 조직하는 기관의 기구를 조직한다.

필요에 따라 인민경제계획로력으로 조직하는 중요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구로 조직한다.

### 제22조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의 기구조직권한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은 인민경제계획로력으로 조직하는 위원회, 성, 중앙기관의 아래단위, 도(직할시)지방경제부문의 3급이상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구를 조직한다. 이 경우 중요기관, 기업소, 단체의 조직, 명칭, 소속, 급수는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 제23조 도,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의 기구조직권한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인민경제계획로력으로 조직하는 지방경제부문 3급아래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구를 조직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라 교육, 상업, 보건 같은 부문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구도 조직할수 있다.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지방경제부문의 6급과 7급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구를 조직한다.

### 제24조 해당 기관의 기구조직권한

해당 기관은 기구정원 또는 인민경제계획로력으로 조직하는 자기 단위의 기구를 조직한다. 아래단위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구도 조직한다.

### 제25조 기구의 조직근거

기구의 조직은 국가적조치에 따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기구를 조직할수도 있다.

### 제26조 기구신청문건의 제기

기구를 나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구신청문건을 만들어 기구조직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기구신청문건에는 기구의 조직근거, 임무, 명칭, 소속관계, 조직구조, 정원수, 사업분담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27조 기구신청문건의 이동**

해당 기구조직기관은 접수한 기구신청문건가운데서 표준기구와 다르게 하려는 기구신청문건, 상급기관이 조직하게 된 기구신청문건, 대상에 따르는 비생산부문기구신청문건을 내각,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8조 기구신청문건의 검토**

기구신청문건을 접수한 기구조직 기관은 그것을 제때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구를 내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사업조건, 로력원천 같은것을 료해하여야 한다.

**제29조 기구실태료해자료의 보장**

기구조직기관은 기구실태료해에 필요한 자료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구조직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 기구신청문건의 심의기간**

기구조직기관은 기구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비준된 기구는 10일안으로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제31조 기구의 정리방법**

국가의 정책과 현실의 요구에 맞지 않는 기구는 정리한다. 기구의 정리는 축소, 통합, 분리, 변경하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한다.

**제32조 기구의 정리, 조절근거**

기구조직기관은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기구를 제때에 정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구조직기관이 정한데 따라 기구를 정리하며 부서들사이의 기구를 조절할수 있다. 기구를 정리, 조절한 정형은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기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3조 기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기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기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기구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34조 기구사업에 대한 지도**

기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과 해당 기관이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기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기구사업을 정상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35조 기구사업실태의 료해장악**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구사업실태를 계획적으로 료해장악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급수를 정기적으로 사정하여야 한다.

자기 급수보다 높은 급수에 해당하는 생산액 같은 것을 3년이상 수행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급수는 높여줄수 있다.

**제36조 직능의 제정, 수행**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서의 직능을 바로 정하고 그에 맞게 사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해당 직제에서 일하는 일군을 다른 사업에 동원시킬수 없다.

**제37조 비준된 기구문건의 집행**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량정기관, 해당 기관은 비준된 기구문건을 받으면 제때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38조 기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기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기구조직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기구조직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구사업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9조 손해보상**

기구조직과 정리를 잘못하였거나 제때에 정리하지 않았거나 기구를 류용하여 료력과 자금을 량비한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0조 기구의 축소, 강급**

필요이상 늘어난 기구는 축소하며 실리를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급수에 따르는 생산액 같은것을 3년이상 수행하지 못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구는 없애거나 급수를 낮출수 있다.

**제4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기구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밀법

주체86(1997)년 6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7호로 채택  
주체106(2017)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

## 제1장 기밀법의 기본

-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밀법은 기밀대상의 등록, 보관, 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워 기밀을 엄격히 보장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 한다.
- 제2조** 기밀대상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공개할수 없는 중요사실과 문서, 도서, 사진, 도면, 지도, 록음물, 록화물, 유원성자기원판, 생산품 같은것이 속한다.  
기밀대상은 중요성에 따라 《절대비밀》, 《비밀》, 《기관안에 한함》으로 구분한다.
- 제3조** 기밀대상을 정확히 등록하는것은 기밀대상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리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기밀대상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등록하도록 한다.
- 제4조** 기밀대상의 보관관리는 기밀대상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기밀대상의 보관관리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 제5조** 기밀대상의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국가관리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기밀대상의 리용에서 기밀이 루설되지 않도록 한다.
- 제6조**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기밀을 준수할데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기밀준수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 제2장 기밀대상의 등록

- 제7조** 기밀대상의 등록은 기밀대상을 장악하고 구분하여 해당 문건에 올리는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밀대상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절대비밀》, 《비밀》, 《기관안에 한함》으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제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밀문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기밀문서가 아니라도 중요한 사업을 하는 일군이 리용하는 자료, 사업수첩 같은것도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 기밀에 속하는 도서를 출판, 인쇄, 배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포 단위와 부수를 등록하여야 한다.

기밀에 속하는 도서를 리용할 경우에는 그 리용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밀에 속하는 사진, 도면, 지도, 록음물, 록화물, 유연성자기원판 같은것을 제작이 끝나는 차제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밀에 속하는 통계자료는 해당 통계기관이 등록한다.

**제12조** 기밀에 속하는 생상품, 시제품 같은것은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소, 단체와 해당기관이 론문, 작품 같은것은 집필자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등록한다.

**제13조** 국민은 새 직무에 임명되었거나 해임된 경우 등록된 기밀대상을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가 기밀대상을 인계인수한 경우에는 그 정형을 상급기관에 문건으로 낸다.

### 제3장 기밀대상의 보관관리

**제14조** 기밀대상의 보관관리를 잘하는것은 기밀보장의 중요담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밀대상의 보관시설을 갖추며 기밀대상을 안전하게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밀문서를 문서고, 문서실, 서류장, 서류함에 보관 하여야 한다. 기밀에 속하는 도서, 사진, 도면, 지도, 록음물, 록화물, 유연성자기원판, 생상품 같은것은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밀에 속하는 사진, 도면, 지도, 록음물, 록화물, 생상품 같은것을 그 기술적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문서고, 문서실, 사무실, 서류장, 서류함의 관건, 봉인을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관건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서고, 문서실, 서류장, 서류함에는 기밀문서를 보관할수 없다.

**제18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공인은 책임일군 또는 기요일군이 보관관리한다.

공인은 해당 단위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찍는다.

**제1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관하고 있는 기밀대상을 정기적으로 실시확인하고 그 정형을 해당기관에 문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실시확인기간은 해당 기관이 정한다.

제20조 기밀문서 같은 기밀대상의 폐기승인은 해당기관이 한다.

개별적부서가 작성하여 보관하는 기밀문서의 폐기승인은 부서책임자가 한다.

제21조 문서고, 문서실에 보관된 많은 량의 기밀문서를 다른곳으로 옮기려 할 경우에는 호송원을 붙인다.

호송원은 사회안전기관이 보장한다.

제2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밀대상을 보관하는 청사, 문서고, 생산현장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기밀대상을 보관하는 청사, 문서고, 생산현장에 출입할수 없다.

## 제4장 기밀대상의 리용

제23조 기밀대상을 바로 리용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의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밀대상을 정해진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24조 기밀문서의 발송, 접수는 기요부서를 통하여 한다.

《절대비밀》《비밀》에 속하는 문서는 사회안전기관, 《기관안에 한함》에 속하는 문서는 체신기관을 통하여 발송, 접수한다.

제25조 기밀에 속하는 도서, 사진, 도면, 지도, 록음물, 록화물, 유연성자기원판, 생산품 같은것을 보내고 받는 질서는 해당 중앙기관이 정한다.

제26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밀에 속하는 문서, 도서, 도면, 지도를 정해진 장소에서 리용하여야 한다.

기밀문서를 출장지에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기요부서를 통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제27조 기밀문서내용을 알려주는 사업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일군이 한다.

《절대비밀》에 속하는 기밀문서의 내용을 알려줄 경우에는 대상을 정확히 선정하고 해당 성원에게만 알려주어야 한다.

제28조 기밀에 속하는 문서, 도서, 도면, 사진, 록음물, 록화물 유연성자기원판 같은것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열람, 대출할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대출 신청서를 낸다.

제29조 측량, 탐사, 과학연구 부문이나 항공, 해상 운수부문에서 일하는 공민은 직무상 용무로 기밀에 속하는 도면, 지도 같은것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해당 증명서는 사회안전기관이 발급한다.

제30조 공민은 신분증, 출입증 같은 증명서를 정해진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신분증, 출입증 같은 증명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수 없다.

**제3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람회, 전시회에 기밀에 속하는 논문, 생산품, 발명품 같은것을 내놓지 말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기밀에 속하는 논문, 생산품, 발명품 같은것을 내놓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통계자료를 리용하거나 공개하려 할 경우 해당 통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요한 통계자료를 공개하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수기일이 정해진 문서, 도서, 도면, 지도, 록음물, 록화물, 유연성자기원판 같은것을 제때에 회수하여야 한다.

회수한 문서, 도서, 도면, 지도, 록음물, 록화물, 유연성자기원판 같은것은 정해진데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화일람표, 암호를 정기적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통화일람표, 암호의 비밀이 로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다른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제3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대외사업과정에 기밀이 루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기밀에 속하는 문서, 도서, 록음물, 록화물, 유연성자기원판, 생산품 같은것을 외국인에게 넘겨주거나 보여줄수 없다.

## 제5장 기밀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조** 기밀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은 아래단위의 기밀보장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밀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사소한 기밀도 루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은 알고있는 기밀을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3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밀에 속하는 문서, 도면, 지도, 생산품 같은것의 작성, 제작, 생산에 필요한 조건과 기밀사업을 하는 일군의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요 회의, 강습의 준비, 진행 과정에 기밀이 루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절대비밀》에 속하는 문제를 취급하는 회의 강습을 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명단을 만들고 해당 성원만 참가시켜야 한다.

**제40조** 출판보도기관은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도 해당 검열에서 승인된 내용만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내보내야 한다.

**제41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방송설비, 컴퓨터설비, 인쇄설비, 촬영설비와 모사전송기를 비롯한 통신수단의 운영, 리용 질서를 지키며 국제전기통신수단, 국제우편물을 통하여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기밀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기밀을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3조** 이 법을 어기고 기밀을 누설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

주체110(2021)년 7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40호로 채택

## 제1장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의 기본

### 제1조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온갖 형태의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려 국가의 중앙집권적규률을 강화하고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는 특수행세를 하면서 국가관리체계와 법의 통제밖에서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대는 로골적인 치외법권적행위이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이익만을 내세우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행위이다.

### 제3조 (단위특수화, 본위주의와의 투쟁원칙)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를 쓸어버리기 위한 전면대결전을 강도높이 벌려나가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현상이 사소하게라도 나타나는 경우 비상사건화하여 강한 투쟁을 벌려나가도록 한다.

### 제4조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를 한자에 대한 처벌원칙)

국가는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를 한자에 대하여서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규제된 법정형의 범위안에서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다.

### 제5조 (다른 법과의 관계)

단위특수화, 본위주의와의 투쟁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방지

### 제6조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방지의 기본요구)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를 미리막는것은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실현하고 우리의 일심

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수성을 내세우고 본위주의를 하면서 국가관리와 경제사업에 저해를 주고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 (비법적인 기관조직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게 각종 생산단위와 기지, 봉사망들을 내오거나 위수구역안에 지하자원생산기지, 수산지지같은것을 꾸려놓거나 수출품생산기지도 없이 무역 및 외화벌이단위를 내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 (합의질서위반행위금지)**

내각과 성, 중앙기관은 경제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다른 단위에 밀어버리거나 제대로 합의해주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제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내각과 합의하지 않고 자의대로 처리할수 없다.

**제9조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받은 지표별 생산계획을 자의대로 변경시키거나 국가적인 예비동원사업을 제외한 각종 명목으로 해당 상급기관과의 합의없이 중앙공업공장, 기업소들의 설비, 자재, 자금, 로력을 동원시키는 등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통계질서위반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활비, 감가상각금, 사회순소득을 비롯한 비밀과 관련이 없는 기초적인 경제자료를 통계기관에 제때에 정확히 보내주지 않아 통계작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비밀과 관련한 통계지표항목은 해당 기관이 정한다.

**제11조 (재정 및 금융질서위반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이 없이 생산 및 봉사활동을 하고 부동산사용료를 비롯한 국가납부금을 바치지 않거나 중앙은행의 승인 또는 합의없이 은행설립과 현금류통, 귀금속취급을 비롯한 금융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자의대로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 (로력관리질서위반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인민위원회와 연계밑에 로력수급사업을 하지 않거나 해외파견로력을 자의대로 모집하며 주민들에게 가짜종업원증을 발급해주는 등 로력관리사업에 무질서를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3조 (비법적인 설비등록, 생산 및 경영활동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인들이 가지고있는 각종 생산설비들과 운수수단, 생산 및 봉사기지



들을 비법적으로 등록해주거나 해당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등 비법적인 설비등록, 생산 및 경영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기술도입, 사장된 설비동원질서위반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 경영활동과정에 창조된 가치있는 경험과 새 기술을 전국에 일 반화하며 사장된 설비들을 예비동원할데 대한 국가의 지시를 집행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말 아야 한다.

**제15조 (비법적인 상업봉사활동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을 시장과 개인들에게 무데기로 빼돌리고 가격을 망탕 정하여 판 매하거나 봉사시설을 자의대로 꾸려놓고 봉사를 하는 등 비법적인 상업봉사활동을 하지 말아 야 한다.

**제16조 (건설, 토지리용질서위반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또는 청부하여 건설을 진행하고 준공검사를 받 지 못한 살림집들에 주민들을 입사시키거나 농업토지를 건설부지로 리용하고 토지를 다른 단 위에 망탕 떼주는 등 건설, 토지리용질서위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 (철도규률위반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도운수기관의 유일사령지휘에 복종하지 않거나 차량들을 사장시키 거나 차량수리용 자재와 자금을 보장하지 않아 철도수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8조 (대외경제, 항무감독질서위반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계획을 팔아먹거나 수출입계획과 가격 및 반출입승인도 받지 않 고 수출입하며 국가의 승인없이 해외경제기술협조단을 조직, 운영하거나 자격이 없는 대상들 을 항무감독원, 수로안내원으로 임명하고 제가품 입출항승인을 해주는 등 대외경제, 항무감 독질서위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9조 (지방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방경제발전과 관련한 납부몫을 바치지 않거나 해당 기관과의 합의없 이 지방의 원료원천들을 자기 단위의 수출독점지표로 정하고 자의대로 원천동원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 (인민위원회의 조직사업에 불응하는 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복구사업, 도시미화사업, 농촌지원과 담당도로보수, 철길관리사업 등과 관련한 해당 인민위원회의 조직사업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1조 (법집행방해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법기관, 검열감독기관의 감시와 사건조사 및 검열감독사업에 불응하고

비밀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비밀이라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거나 직권을 악용하여 법일군, 검열감독성원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2조 (법세도, 사건약화행위금지)**

법기관은 법일군들과 산하 경제사업단위들에서 법세도를 쓰고 법권을 치부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또는 법기관의 간관밑에 치외법권적인 행위를 하는것을 비롯하여 특수화와 본위주의의 사소한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에서 넘겨받은 자기 단위 위법자들을 싸고돌면서 사건을 경미하게 처리하거나 무마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3장 법적감시 및 감독통제

**제23조 (검찰, 감독통제기관의 임무)**

검찰, 사회안전, 국가검열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법적감시 및 감독통제를 강화하고 온갖 형태의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를 쓸어버리기 위한 법적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한다.

**제24조 (검찰감시의 의무적복종)**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밀보장에 지장이 없는 한 관할에 관계없이 검찰기관의 감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25조 (단위특수화, 본위주의에 대한 신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단위특수화, 본위주의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단위특수화, 본위주의에 대한 조사처리)**

검찰, 사회안전, 국가검열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검찰감시, 사회안전단속, 검열감독과정에 단위특수화, 본위주의현상을 발견하였거나 그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 엄격히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 (비밀보장)**

검찰, 사회안전, 국가검열기관을 비롯한 감독통제기관, 해당 기관은 국가적으로 정해진 단위 또는 지역에 승인없이 들어가거나 료해의 명목으로 비밀에 속하는 자료를 요구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며 법적감시 및 검열감독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4장 법적책임

### 제28조 (기관조직질서위반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의 간판밑에 내각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게 각종 생산단위와 기지, 봉사망들을 나오거나 위수구역안에 비법적으로 지하자원생산기지, 수산기지 등을 꾸려놓거나 수출품생산기지도 없이 무역 및 외화별이단위를 내오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비법경영죄 또는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9조 (합의질서위반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성을 운운하면서 경제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내각과 합의하지 않고 자의대로 처리하거나 경제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다른 단위에 밀어버리거나 제대로 합의해주지 않아 국가의 경제정책관철에 지장을 준자는 형법의 직권람용죄 또는 직무태만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30조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준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성을 운운하면서 국가계획기관에서 시달한 지표별 생산계획을 자의대로 변경시키거나 국가적인 예비동원사업을 제외한 각종 명목으로 해당 상급기관과의 합의없이 중앙공업공장, 기업소들의 설비, 자재, 자금, 로력을 동원시키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31조 (통계질서위반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의 간판밑에 생활비, 감가상각금, 사회순소득을 비롯하여 비밀과 관련이 없는 기초적인 경제자료를 통계기관에 제때에 정확히 보내주지 않아 통계작성에 지장을 준자는 형법의 직무태만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32조 (재정, 금융질서위반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성을 운운하면서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이 없이 생산 및 봉사활동을 하거나 부동산사용료를 비롯한 국가납부금을 제대로 바치지 않거나 중앙은행의 승인 또는 합의없이 은행설립과 현금류통, 귀금속취급을 비롯한 금융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자의대로 처리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비법경영죄 또는 국가납부금미납죄, 비법대부죄,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33조 (로력관리질서위반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의 간판밑에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인민위원회와 합의없이 로력수급사업을 하거나 인민위원회에서 배치한 로력을 부당한 이유와 구실을 붙여 입직시키지 않거나 내보내거나 해외파견로력을 망탕 모집하고 주민들에게 가짜종업원증을 발급해주거나 종업원들에게 돈벌이과제를 주거나 무직자, 직장리탈자 등을 끌어들이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비법경영죄 또는 문서, 증명서비법처분, 위조, 사용죄,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4조 (설비등록, 생산 및 경영활동질서위반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의 간판밑에 개인들이 가지고있는 자동차, 배, 설비, 식당, 목욕탕 등을 비법적으로 등록 해주거나 영업허가증과 봉사원증을 망탕 발급하거나 석탄, 광석, 수산물을 비롯한 생산물을 비법적으로 넘겨주거나 국가의 통제밖에서 수산물양식과 물고기잡이를 하거나 해당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비법경영죄 또는 불량식품제조, 판매죄, 불량약품생산죄,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5조 (설비동원질서위반자에 대한 형사책임)**

사장된 설비들을 예비동원할데 대한 국가의 지시를 집행하지 않은자는 형법의 직무태만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6조 (상업봉사질서위반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의 간판밑에 상품을 시장과 개인에게 무데기로 빼돌리거나 퇴폐적인 상품을 끌어들이고 가격을 망탕 정하여 판매하거나 봉사시설을 자의대로 꾸려놓고 봉사를 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비법경영죄 또는 가격비법제정, 적용죄,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7조 (건설질서위반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의 간판밑에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또는 청부하여 건설을 진행하거나 살림집을 무질서하게 망탕 건설하거나 건설중에 있는 살림집, 봉사건물을 팔아먹거나 비법적으로 건물의 용도를 변경시키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살림집들에 주민들을 입사시키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직권람용죄 또는 비법경영죄, 건설물 및 기계, 설비의 리용질서위반죄, 건설감독질서위반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8조 (토지리용질서위반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의 간판밑에 농업토지에서 사금채취를 하거나 국가의 승인없이 농업토지를 건설부지로 리용하거나 토지를 다른 단위에 망탕 떼주거나 지목을 변경시키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토지비법리용죄 또는 부동산을 비법적으로 넘겨준죄,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9조 (철도규률질서위반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의 간판밑에 철도운수기관의 유일사령지휘에 복종하지 않거나 차량들을 사장시키거나 차량수리용 자재와 자금을 보장하지 않아 철도수송에 지장을 준자는 형법의 직무태만죄 또는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0조 (대외경제, 항무감독질서위반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의 간판밑에 수출입계획을 팔아먹거나 수출입계획과 가격 및 반출입승인도 받지 않고 수출입하거나 질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녹거리제품을 들여오거나 일반수입물자를 대호짐으로 납입하거나 외국기업의 대리업무허가도 없이 다른 나라 회사의 공인, 명판까지 가지고 운수수단과 각종 설비, 제품들을 들여오거나 국가의 승인없이 해외경제기술협조단을 조직, 운영하거나 자격이 없는 대상들을 항무감독원, 수로안내원으로 임명하거나 제가끔 입출항승인을 해주거나 오물처리증서를 발급해주어 입출항질서에 혼란을 조성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비법수출입죄 또는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1조 (자원을 침해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의 간판밑에 지하자원과 수산자원, 산림자원 등 나라의 자원을 침해한자는 형법의 지하자원비법개발, 채굴 및 제련죄 또는 산림고의적파손죄, 산비법개간죄,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2조 (지방경제발전에 저해를 준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성을 운운하면서 지방경제발전과 관련한 납부몫을 바치지 않거나 해당 기관과 합의없이 지방의 원료원천들을 자기 단위의 수출독점지표로 정하고 자의대로 원천동원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국가납부금미납죄 또는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3조 (인민위원회의 조직사업에 불응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의 간판밑에 산림복구사업, 도시미화사업, 농촌지원과 담당도로보수, 철길관리사업 등과 관련한 해당 인민위원회의 조직사업에 불응한자는 형법의 직무태만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4조 (범죄 및 위법행위를 묵인조장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의 울타리를 쳐놓고 범죄 및 위법행위를 묵인조장한자는 형법의 직무태만죄를 적용하거나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5조 (법집행을 방해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행세를 하면서 법기관, 검열감독기관의 감시와 사건조사 및 검열감독사업에 불응하거나 비밀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비밀이라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거나 법기관의 호출에 응하지 않거나 판결, 판정, 재결, 결정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직권을 악용하여 법일군, 검열감독성원에 게 압력을 가하는 등 법집행을 방해한자는 형법의 직무집행방해죄 또는 사건조사방해죄, 직무태만죄, 채무회피죄,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6조** (법세도행위를 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법세도를 쓰고 법권을 치부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또는 법기관의 간판밑에 치외법권적인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국가재산횡령죄 또는 퇴물죄,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7조** (사건을 약화시킨자에 대한 형사책임)

해당 기관에서 넘겨받은 자기 단위 위법자들을 싸고돌면서 사건을 경미하게 처리하거나 무마시킨자는 형법의 비법석방 및 사건약화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8조** (행정적책임)

이 법 제28조-제47조의 행위가 형사책임을 지울 정도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준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헌법

주체84(1995)년 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0호로 채택

## 제1장 문헌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헌법은 문헌의 편찬과 보존관리를 잘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민족의 력사와 찬란한 문화, 새 사회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업적을 빛내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문헌은 국가적으로 보존하고 리용할 가치가 있는 기록된 자료이다.  
문헌에는 문서, 그림, 도면, 사진, 필림, 록음물, 록화물, 자기원판 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문헌은 국가소유이다.  
국가는 비법적으로 해외에 류출된 문헌을 찾도록 한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올바른 문헌정책에 의하여 수많은 문헌들이 편찬, 보존되고 있다.  
국가는 문헌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 부문사업에 큰 힘을 넣는다.

**제5조** 문헌편찬은 국가 건설과 활동 과정에 이루어진 귀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력사적 사실과 과학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문헌을 편찬하도록 한다.

**제6조** 문헌보존관리를 잘하는 것은 문헌의 손상을 막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국가는 문헌보존시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문헌을 과학기술적으로 보존관리하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문헌을 해당 부문의 사업발전과 과학연구사업에 널리 리용하도록 한다.

**제8조** 국가는 문헌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문헌부문의 필요한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 문헌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문헌편찬

**제10조** 문헌편찬은 문헌보존관리를 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헌을 정해진 기간에 편찬하여야 한다.

**제11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업과정에 이루어진 문헌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국가 보존문헌목록에 따라 류형별, 종류별, 년도별로 편찬하여야 한다.

국가보존문헌목록에 없다 하더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해당 문헌지도기관이 승인을 받아 편찬할수 있다.

**제12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찬이 끝난 문헌을 문헌지도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문헌지도기관은 넘겨받은 문헌을 정확히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기록한 자료도 문헌으로 될 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사람이 기록한 문헌자료를 입수한 경우 그것을 정해진 기간에 문헌지도기관에 바쳐야 한다.

### 제3장 문헌보존관리

**제14조** 문헌보존관리는 문헌을 원상대로 유지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문헌보존기관과 해당기관은 수집된 문헌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문헌보존관리는 문헌보존기관이 한다. 특수부문의 문헌보존관리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16조** 문헌보존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집된 문헌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문헌은 기관별, 류형별, 종류별, 년도별로 분류하고 배열하여야 한다.

**제17조** 국가적으로 1종 1부밖에 없는 옛 문헌은 중앙문헌고에 보존한다.

필요에 따라 중앙문헌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기관도 보존할수 있다.

**제18조** 문헌보존기관과 해당 기관은 현대적인 문헌보존시설을 갖추고 문헌보존에 필요한 온도, 습도, 같은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문헌보존기관과 해당기관은 화재사고, 자연재해 같은 온갖 피해로부터 문헌을 보호하여야 한다.

특별히 중요한 문헌은 복선보존체계를 세워 보호하여야 한다.

**제20조** 문헌보존기관과 해당기관은 손상된 문헌을 제때에 정확히 수복하여야 한다.

자체로 수복할수 없는 문헌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문헌보존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헌을 이관, 폐기하려할 경우 해당 문헌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없이 문헌을 처리할수 없다.

**제22조** 문헌은 기요문건송달질서에 따라 보낸다.



## 제4장 문헌리용

- 제23조** 문헌리용은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해당 부문의 사업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하는 중요담보이다.  
문헌보존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헌리용에서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며 문헌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제24조** 문헌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헌 열람, 대출 신청서를 해당 문헌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문헌지도기관은 열람, 대출 신청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특별히 중요한 문헌의 열람, 대출은 상급문헌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25조** 문헌보존기관은 승인된 신청서에 근거하여 해당 문헌을 열람, 대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복사 또는 필사하여 줄수 있다.
- 제26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대출한 문헌을 촬영, 복사하려 할 경우 해당 문헌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7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대출한 문헌을 정히 다루며 오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 제28조** 문헌을 열람, 대출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헌리용과정에 알게된 기밀을 지켜야 한다.
- 제29조** 문헌은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전시회를 목적으로 문헌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 할 경우에는 중앙문헌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5장 문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0조** 문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문헌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문헌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31조** 국가는 문헌사업에서 제기되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를 협의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비상설국가문헌위원회를 둔다.
- 제32조** 문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문헌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이 한다.  
문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헌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 제33조** 국가는 문헌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문헌부문의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 수 없다.

**제34조** 해당 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은 문헌보존과학연구기지를 꾸리고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문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문헌보존관리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35조** 문헌을 되는대로 보존관리하여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킨다.

**제36조** 문헌의 편찬과 보존관리, 리용 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법

|              |         |              |                 |
|--------------|---------|--------------|-----------------|
| 주체101(2012)년 | 12월 19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2874호로 채택   |
| 주체105(2016)년 | 8월 10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1245호로 수정   |
| 주체107(2018)년 | 7월 29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2324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9(2020)년 | 2월 22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238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9(2020)년 | 7월 7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351호로 수정보충  |
| 주체110(2021)년 | 10월 19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746호로 수정보충  |

## 제1장 법제정법의 기본

### 제1조 (법제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법은 헌법과 부문법, 규정, 세칙제정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법체계를 완비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용어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제정은 권한있는 국가기관이 헌법과 부문법, 규정, 세칙을 비롯한 규범적법문건을 만들거나 수정보충하는 활동이다.
2. 부문법은 최고주권기관이 헌법에 기초하여 일정한 부문의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문건으로서 부문기본법과 부속법으로 나눈다.
3. 규정은 부문법을 전국적범위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더 구체화하거나 부문법을 제정할 조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부문에서 법적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실무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문건이다.
4. 세칙은 부문법이나 규정을 일정한 부문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제하는 법문건이다.

### 제3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구현할데 대한 원칙)

국가는 법제정사업에서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한다.

### 제4조 (인민의 의사를 반영할데 대한 원칙)

국가는 광범한 균중을 법제정사업에 적극 참가시키며 법에 인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한다.

### 제5조 (현실성, 과학성보장원칙)

국가는 법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 구체화하여 과학적으로 제정완성하고 제때에 수정보충하도록 한다.

록 한다.

**제6조 (준법성보장원칙)**

국가는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사회주의헌법의 요구에 맞게 법제정사업을 진행하며 법체계의 통일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 (규제범위)**

이 법은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내각위원회, 성을 비롯한 행정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기관(이 아래부터 내각위원회, 성이라고 한다.), 도(직할시)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의 법제정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제한다.

그밖의 국가기관의 법제정사업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 제2장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제정

### 제1절 립법권

**제8조 (립법기관)**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가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9조 (최고인민회의의 립법권)**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수정보충하거나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며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제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립법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한다.

필요에 따라 주권부문, 사회안전부문, 사법검찰부문, 그밖에 내각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부문과 관련하여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한다.

**제11조 (법령과 정령의 전속적관할사항)**

다음의 사항은 법령이나 정령으로만 규정할수 있다.

1. 국가형태, 국적, 국가령역, 국가상징 같은 국가주권의 사항
2. 각급 주권기관, 행정적집행기관, 사법검찰기관의 조직과 권한
3. 범죄와 형벌
4. 공민에 대한 정치적권리의 박탈,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
5. 민사기본제도
6. 소송과 중재제도

7. 경제관리 및 특수경제지대의 기본제도
8. 교육, 보건 등 문화의 기본제도
9. 국방, 국가안전 및 외교의 기본제도
10. 조국통일 및 북남관계
11. 그밖에 반드시 최고인민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법령이나 정령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

## 제2절 최고인민회의의 법제정

### 제12조 (최고인민회의에 법안을 제출하는 기관)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법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도 최고인민회의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3조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할 법안에 대한 법제위원회의 심의)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할 법안은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한다.

법제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 그것을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겠다는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4조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안심의방법)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안심의를 보고, 초안량독, 토론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대의원들에게 법초안을 미리 배포한 경우에는 법초안을 량독하지 않을 수 있다.

심의과정에 법초안에 대한 수정보충의견이 제기되면 그에 근거하여 정리한 다음 표결에 붙인다.

### 제1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안채택)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안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보충된다.

### 제16조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법의 공포)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한 헌법과 부문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법령으로 공포한다.

### 제17조 (최고인민회의에서 중요부문법의 승인)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인민회의의 휴회기간에 채택한 중요부문법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중요부문법에 대한 승인절차는 이 절의 해당 조문에 따른다.

###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제정

#### 제1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기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할 법안은 내각,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제출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할 규정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중앙 검찰소, 중앙재판소, 사회안전성, 도(직할시)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이 제출한다.

#### 제1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법안에 대한 법제위원회의 심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법안과 중요규정안은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한다.

법제위원회는 법안과 중요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 그것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겠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2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의관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법안과 규정안은 전원회의 또는 상무회의에서 심의한다. 전원회의에서는 새로 채택하려고 하는 법안과 중요 현행법수정보충안을, 상무회의에서는 그 밖의 현행법수정보충안과 규정안, 현행규정수정보충안을 심의한다.

#### 제2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의방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와 상무회의에서 법안, 규정안에 대한 심의는 초안을 랑독 하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위원들에게 초안을 미리 배포한 경우에는 초안랑독을 하지 않을수 있다.

심의과정에 초안에 대한 수정보충의견이 제기되면 그에 근거하여 초안을 정리한 다음 표결에 붙인다.

#### 제2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안채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와 상무회의에서 법안과 규정안은 그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반수이상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 제2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법의 공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부문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규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공포한다.

#### 제2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해석권)

헌법과 부문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규정에 대한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부문법과 규정에 대하여 한 해석은 해당 부문법이나 규정과 동등

한 효력을 가진다.

**제2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법해석의 심의채택)

헌법과 부문법, 규정에 대한 해석초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채택한다. 이 경우 헌법과 부문법에 대한 해석초안은 사전에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법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지시로 낸다.

## 제3장 내각의 규정제정

**제26조** (내각의 규정제정권한)

내각은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한다. 부문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내는 규정은 부문법에서 보다 구체화하여야 할 사항과 부문법에서 내각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제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부문법집행을 위하여 여러개의 규정을 낼수 있다.

**제27조** (규정제정의 제기)

규정을 제정할데 대한 제기는 내각위원회, 성이 한다.

**제28조** (규정의 제정기간)

내각은 부문법이 새로 제정되었을 경우 그것이 공포된 날부터 3개월안에 해당 부문법집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부문법이 수정보충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포된 날부터 2개월안에 해당 규정을 수정보충하여야 한다.

정책적으로 시급히 법적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법이 공포되면 그에 따르는 규정을 기일에 관계없이 빠른 시일안에 제정 및 수정보충하여야 한다.

**제29조** (규정안작성의 조직)

규정안작성은 내각이 조직한다.

내각은 부문법이 새로 작성되거나 수정보충되는 경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연계하여 그 집행을 위한 규정안작성을 동시에 조직하여야 한다.

부문법집행을 위한 규정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받는다.

**제30조** (규정안의 심의, 채택절차)

규정안을 심의하고 채택하는 절차는 내각이 정한다.

**제31조** (규정의 공포)

규정은 내각결정으로 낸다.

**제32조 (규정에 대한 해석)**

내각에서 채택된 규정에 대한 해석은 내각이 한다. 이 경우 그 해석은 해당 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제4장 내각위원회, 성의 세칙제정

**제33조 (내각위원회, 성의 세칙제정권한)**

내각위원회, 성은 부문법과 내각규정에 기초하여 해당 기관의 권한범위내에서 세칙을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한다.

**제34조 (내각위원회, 성의 세칙제정사항)**

내각위원회, 성은 부문법이나 내각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사항, 부문법이나 내각규정에서 해당 기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세칙을 낼수 있다.

**제35조 (세칙의 제정기간)**

내각위원회, 성은 규정이 새로 제정되어 공포되면 그 집행을 위한 세칙을 3개월안에 제정하여야 한다.

규정이 수정보충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포된후 2개월 안에 해당 세칙을 수정보충하여야 한다.

정책적으로 시급히 법적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공포되면 그에 따르는 세칙을 기일에 관계없이 빠른 시일안에 제정 및 수정보충하여야 한다.

**제36조 (세칙안작성의 조직)**

세칙안작성은 해당 내각위원회, 성이 조직한다.

두개이상의 내각위원회, 성의 권한범위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세칙은 해당 위원회, 성들이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내각위원회, 성은 내각규정이 제정되거나 수정보충되는 경우 내각과 연계하여 세칙작성을 동시에 조직하여야 한다.

세칙안은 내각의 검토를 받는다.

**제37조 (세칙의 심의채택)**

내각위원회, 성이 세칙안을 심의하고 채택하는 절차는 내각이 정한다.

**제38조 (세칙의 공포)**

내각위원회, 성에서 채택된 세칙은 해당 내각위원회, 성의 지시로 낸다.



**제39조 (세칙에 대한 해석)**

내각위원회, 성의 세칙에 대한 해석은 해당 내각위원회, 성이 한다. 이 경우 그 해석은 해당 세칙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제5장 도(직할시)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의 세칙제정

**제40조 [도(직할시)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세칙제정권한]**

도(직할시)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인민위원회는 부문법과 규정집행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칙으로 제정 및 수정보충할수 있다.

1. 자기가 관할하는 특수경제지대와 관계되는 사항
2. 부문법이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서 그것을 자기관할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1조 [도(직할시)인민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 세칙안작성의 조직]**

세칙안의 작성은 도인민위원회가 조직한다.

세칙안은 내각의 검토를 받는다.

**제42조 [도(직할시)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의 세칙안에 대한 심의채택]**

도(직할시)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에서 토의할 세칙안의 제출, 심의, 채택절차는 지방주권기관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도(직할시)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에서 채택된 세칙의 공포]**

도(직할시)인민회의, 인민위원회에서 채택된 세칙은 도(직할시)인민회의 또는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낸다.

**제44조 [도(직할시)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의 세칙에 대한 해석]**

도(직할시)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의 세칙에 대한 해석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한다. 이 경우 그 해석은 해당 세칙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제6장 법문건의 효력

**제45조 (헌법의 효력)**

헌법은 최고의 법적효력을 가진다.

모든 법문건은 헌법과 저촉되지 말아야 한다.

**제46조 (부문법의 효력)**

부문법의 효력은 규정, 세칙보다 높다.

**제4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규정의 효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낸 규정의 효력은 내각이 낸 규정보다 높다.

**제48조 (내각규정의 효력)**

내각이 낸 규정의 효력은 내각위원회, 성과 도(직할시)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가 낸 세칙보다 높다.

**제49조 (내각위원회, 성이 낸 세칙의 효력)**

내각위원회, 성이 낸 세칙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각기 자기권한범위안에서 시행한다.

내각위원회, 성이 낸 세칙의 효력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낸 세칙보다 높다.

**제50조 [도(직할시)인민회의세칙의 효력]**

도(직할시)인민회의가 낸 세칙의 효력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낸 세칙보다 높다.

**제51조 (일반법규범과 특별법규범, 후에 나온 법규범과 먼저 나온 법규범의 효력)**

한 기관이 낸 법문건에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 특별법규범과 일반법규범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특별법규범을 적용하며 후에 나온 법규범과 먼저 나온 법규범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후에 나온 법규범을 적용한다.

**제52조 (법문건의 시행날자)**

법문건에는 시행날자를 밝힌다.

법문건에 시행날자가 밝혀져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포후 15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3조 (효력의 불소급원칙과 소급)**

법문건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권리와 리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하도록 규정할수도 있다.

**제54조 (후에 나온 일반법규범과 먼저 나온 특별법규범의 적용에 대한 결정)**

부문법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낸 규정에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 후에 나온 일반법규범과 먼저 나온 특별법규범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어느것을 적용할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한다.

내각이 낸 규정에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 후에 나온 일반법규범과 먼저 나온 특별법규범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내각이 어느것을 적용할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제55조 (한 기관이 낸 세칙에서 같은 사항에 대한 규제내용이 다를 경우 그 적용에 대한 결정)**

한 기관이 낸 세칙에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 후에 나온 일반법규범과 먼저 나온 특별법규범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 기관이 어느것을 적용할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제56조** (서로 다른 기관이 낸 세칙사이에 같은 사항에 대한 규제내용이 다를 경우 그 적용에 대한 결정)

도(직할시)인민회의가 낸 세칙과 내각위원회, 성이 낸 세칙에서 같은 사항에 대한 규제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내각의 제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어느것을 적용할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한다.

내각위원회, 성의 세칙사이에 같은 사항에 대한 규제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내각이 어느것을 적용할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제57조** (규정과 세칙의 적법성심사에 대한 제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내각이 낸 규정이나 도(직할시)인민회의가 낸 세칙이 헌법과 부문법에 저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심사해줄것을 제기할수 있다.

**제58조** (세칙의 적법성심사에 대한 제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내각위원회, 성이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가 낸 세칙이 내각규정에 저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각에 심사해줄것을 제기할수 있다.

**제59조** (법문건의 폐지, 취소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법문건을 폐지 또는 취소한다.

1. 법문건의 내용이 국가의 로선과 정책에 어긋날 경우
2. 권한밖의 법문건을 채택한 경우
3. 법제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4. 효력이 낮은 법문건의 내용이 효력이 높은 법문건의 내용에 저촉되는 경우
5. 효력이 동등한 법문건들사이에 같은 사항에 대한 규제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제60조** (법문건의 폐지, 취소권한)

법문건을 폐지, 취소하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내각규정, 내각위원회, 성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의 세칙을 폐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내각은 내각위원회, 성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의 세칙을 폐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3. 도(직할시)인민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의의 세칙을 폐지 또는 취소할수 있다.

## 제7장 법문건의 작성과 법체계화

### 제1절 법문건의 작성

**제61조** (부문법, 규정, 세칙의 작성에서 지켜야할 요구)

부문법과 규정, 세칙작성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법적권리와 의무, 당사자, 대상, 법적책임관계가 명백히 나타날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규정은 부문법보다, 세칙은 규정보다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해당 부문법이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는것을 밝혀야 한다.
4. 해당 부문법이나 규정에 저촉되지 말아야 한다.
5. 해당 부문법이나 규정에서 이미 명백히 서술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 제62조 (법문건의 명칭)

법문건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법》, 《규정》, 《세칙》으로 한다.

부문법의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 법》으로 하며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만 사용할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이 내는 규정의 명칭은 《법시행규정》 또는 《규정》으로 한다.

내각위원회, 성과 도(직할시)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가 내는 세칙의 명칭은 《법시행세칙》, 《규정시행세칙》, 《세칙》으로 한다.

잠정적인 법문건의 명칭에는 《잠정》이라는 표현을 덧붙인다.

#### 제63조 (제정기관과 제정 날자)

법문건에는 그것을 제정한 기관과 날자를 밝힌다.

#### 제64조 (법문건의 구분단위)

법문건은 내용에 따라 편, 장, 절, 조, 항, 호, 단으로 구분할수 있다.

편, 장, 절에는 제목을 붙인다.

조에도 제목을 붙일수 있다.

#### 제65조 (총칙조문)

총칙은 법규범들에 대한 해석의 정확성과 통일성, 법규범들의 유기적인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법문건의 원칙적이며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법조문이다.

총칙에서는 해당 법문건의 사명(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원칙 같은것을 규정한다.

#### 제66조 (각칙조문)

각칙은 구체적인 정황속에서 당사자들이 지닐 권리와 의무, 법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조문이다.

각칙에서는 법적권리와 의무, 당사자, 대상, 법적책임, 법률사실에 대하여 빠짐없이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제67조 (부칙조문)

부칙은 해당 법문건의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다.

#### 제68조 (인용조문)

법문건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조문을 인용할수 있다.

**제69조 (법문건의 언어)**

법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한다.

**제70조 (법문건의 언어표현)**

법문건의 언어표현은 알기 쉽고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고 공식적이어야 한다.

법문건에서는 동일개념에 대하여 일관하게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며 서로 다른 개념은 서로 다른 어휘로 표현하여야 한다.

중요한 용어나 일상생활에서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는 해당 법문건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여야 한다.

법이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내는 규정이나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해당 법이나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와 같아야 한다.

**제71조 (법문건초안에 대한 의견청취)**

법 문건을 작성하는 기관은 초안작성단계에서 관계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

## 제2절 법체계화

**제72조 (법제정계획)**

법제정사업은 계획에 따라 진행한다.

법제정기관은 국가의 정책적요구와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제정할 부문법과 규정, 세칙을 반영하여 법제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73조 (법규정리)**

법규정리는 해마다 진행한다.

**제74조 (법규집편집)**

법제정기관은 정기적으로 법규집편집을 조직한다.

법규집에는 편집기준에 따라 편집당시 효력이 있는 법문건들을 수록한다.

## 제8장 법적책임

**제75조 (행정적책임)**

이 법을 어겨 법제정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책임있는 일군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신소청원법

주체87(1998)년 6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0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주체89(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54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신소청원법의 기본

#### 제1조 (신소청원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은 신소청원의 제기, 접수등록, 료해처리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관리사업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신소청원과 그 권리보장원칙)

신소는 자기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청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일군의 사업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의견을 제기하는 행위이다.

국가는 국민의 신소청원권리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 제3조 (신소청원의 접수등록원칙)

신소청원을 제때에 정확히 접수등록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무이다.

국가는 신소청원의 접수등록질서를 바로세우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 제4조 (신소청원의 료해처리원칙)

신소청원은 인민대중의 목소리이고 민심의 반영이다.

국가는 신소청원의 료해처리에서 원칙성과 과학성, 객관성, 공명정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5조 (신소청원사업일군의 책임성과 역할제고원칙)

신소청원사업부문 일군은 신소청원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국가는 신소청원사업부문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 제6조 (비밀보장의 원칙)

국가는 신소청원사업에서 비밀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7조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원칙)

국가는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2장 신소청원의 제기

### 제8조 (신소청원의 당사자)

공민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가 담긴 신소청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권리이다.

공민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는 한 최고주권기관에 이르기까지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일군에게 신소청원을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도 신소청원을 할수 있다.

### 제9조 (공민의 신소)

공민은 신소를 직접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소할수 있다.

### 제10조 (신소청원의 제기방법)

신소청원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찾아가 하거나 서면으로도 할수 있다. 이 경우 이름, 사는 곳, 직장직위 같은것을 정확히 밝힌다.

### 제11조 (신소청원자와의 면담)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자를 제때에 만나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소청원자가 요구하는 일군 또는 그 대리인이 만나주어야 한다.

### 제12조 (신소청원내용의 과학성, 객관성보장)

신소청원자는 과학적인 자료와 객관적사실을 가지고 신소청원을 하여야 한다.

자료나 사실을 과장, 날조하여 신소청원을 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 제13조 (재신소청원)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청원을 다시 할수 있다.

### 제14조 (신소청원자의 편의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자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신소청원내용을 써넣을수 있는 함을 설치할수 있다.

## 제3장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 제15조 (신소청원접수등록의 기본요구)

신소청원의 접수등록은 신소청원료해처리사업의 선행공정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기된 신소청원을 빠짐없이 접수하고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신소청원접수등록관할)**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신소청원의 접수등록은 신소청원사업부서가 통일적으로 한다.  
신소청원사업부서가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신소청원의 접수등록은 따로 정해진 일군이 한다.

**제17조 (신소청원의 등록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을 접수한 날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신소청원과 의뢰, 이관받은 신소청원, 자기 단위에 직접 제기된 신소청원을 따로따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 (신소청원의 접수날자)**

신소청원의 접수날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신소청원을 등록한 날로 한다.  
의뢰, 이관받은 신소청원의 접수날자는 의뢰, 이관문건을 등록한 날로 한다.

**제19조 (신소청원등록에서의 특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이름, 직장직위, 사는 곳 같은 것을 등록하지 않을수 있다.

**제20조 (신소청원의 의뢰, 이관)**

신소청원은 그것을 접수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리관할이 맞지 않거나 직접 처리할수 없는 신소청원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의뢰하거나 이관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을 의뢰할 경우에는 처리기관을 밝혀야 한다.

## 제4장 신소청원의 료해처리

**제21조 (신소청원료해처리의 기본요구)**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접수등록한 신소청원을 과학적으로 료해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에 리해관계를 가진 일군은 해당 신소청원을 료해할수 없다.

**제22조 (료해처리관할)**

신소청원의 료해처리관할은 다음과 같다.

1. 최고주권기관 사업, 최고주권기관 일군의 사업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재판 또는 법적제재를 받은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소청원, 인민생활이나 위법행위, 인권유린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직접 할수 있다.
2. 인민생활, 행정경제사업, 행정경제일군의 사업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



- 리는 내각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3. 검찰사업, 검찰일군의 사업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검찰기관이 한다.
  4. 재판, 중재, 공증과 관련한 신소청원, 재판, 중재, 공증일군의 사업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재판기관이 한다.
  5. 인민무력, 인민보안, 국가안전보위사업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해당 기관이 한다.
  6. 대외사업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23조 (료해처리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을 정해진 기간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의 료해처리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제24조 (중요신소청원의 료해분담)**

중요신소청원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에서 의뢰, 이관받은 신소청원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 또는 신소청원사업일군이 료해한다.

**제25조 (재신소청원의 료해분담)**

같은 내용의 신소청원이 다시 제기된 경우에는 이미 료해한 일군보다 직무가 높은일군이 료해한다.

**제26조 (신소청원의 료해순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을 접수등록한 순서로 료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요신소청원,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신소청원은 다른 신소청원보다 먼저 료해하여야 한다.

**제27조 (신소청원의 료해방법)**

신소청원의 료해는 신소청원자, 피신소자, 확인자, 해당 일군은 현지 또는 필요한 장소에서 만나 담화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신소청원의 내용을 객관적사실에 기초하여 료해하며 제기된 문제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신소청원의 료해사업을 방해하거나 료해자료를 과장, 날조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28조 (신소청원료해일군의 권리)**

신소청원을 료해하는 일군은 정해진데 따라 필요한 사건기록, 검열문건, 회계문건 같은것을 볼수 있으며 전문일군을 동원시키거나 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신소청원자, 피신소자, 확인자로부터 진술서, 확인서를 받으며 사건취급, 문제처리를 잘못된 일군으로부터 비판서를 받을수 있다.

**제29조 (사건, 검열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

형사, 민사, 중재사건 또는 검열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는 해당 사건이 결속되거나 검열총화가 끝난 다음에 한다. 그러나 해당 기관과의 합의밑에 사건취급, 검열중에도 신소청원을

료해할수 있다.

**제30조 (료해의 중지사유)**

부당하거나 날조된것이 확인된 신소청원에 대하여서는 료해를 중지한다. 이 경우 신소청원자에게 그 리유를 알려준다.

**제31조 (공동료해)**

신소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제기될 경우에는 정해진 기관이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료해할수 있다.

공동료해사업에는 신소내용과 관계있는 일군을 참가시킬수 없다.

해당 기관은 공동료해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 (의뢰, 이관받은 신소청원의 반송)**

의뢰, 이관받은 신소청원은 다시 의뢰, 이관할수 없다. 그러나 료해처리할수 없는 신소청원은 그 리유를 밝혀 의뢰, 이관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돌려보낼수 있다.

**제33조 (신소청원처리문제의 토의결정)**

신소청원에 대한 료해를 끝낸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처리문제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토의 결정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처리문제의 토의결정은 신소보는 날 또는 해당 일군협의회에서 건별호 한다.

**제34조 (신소청원료해처리문건의 작성)**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를 끝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료해처리문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소청원료해처리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의 수표하여야 한다.

의뢰받은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문건은 그것을 의뢰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야 한다.

**제35조 (신소청원처리통지문건)**

해당 중앙기관은 제기된 신소청원의 처리문제를 결정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신소청원 처리통지문건을 보내여 집행하게 할수 있다.

해당 중앙기관은 제기된 신소청원의 처리문제를 결정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신소청원 처리통지문건을 보내여 집행하게 할수 있다.

신소청원처리통지문건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건에 지적된대로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신소청원처리결과의 통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의 처리결과를 신소청원자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신소청원자에게 신소청원의 처리결과를 알려준 날이 신소청원의 료해처리가 끝난 날로 한다.

**제37조 (비밀준수, 신소청원문건의 보관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의 료해처리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며 신소청원과 관련

한 문건을 정확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5장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8조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중앙지도기관)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신소청원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 제39조 (신소청원사업에 장악지도)

중앙기관은 아랫단위에서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료해처리를 바로하도록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료해처리정형을 상급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0조 (신소보는 날의 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처리를 위한 신소보는 날 또는 해당 일군협의회를 정해진 날자에 실속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소보는 날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 제41조 (신소청원사업조건의 보장)

교통운수기관과 체신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사업을 하는 일군은 다른 사업에 동원시킬수 없다.

### 제42조 (신소청원사업에서 금지할 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신소청원의 료해처리사업에 간섭하는 행위, 신소청원을 묵살하거나 되는대로 처리하는 행위, 신소청원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복수하는행위 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제4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기고 공민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였거나 국가관리사업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행정부

2010년 7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44호로 채택

## 제1장 주민행정부의 기본

### 제1조 (주민행정부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행정부법은 주민행정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주민행정은 인민들의 생활전반을 책임지고 돌보는 중요한 국가관리사업이다.

주민행정사업에는 신분등록사업,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사업, 살림집보장사업, 먹는물보장사업, 교육교양 사업, 로동행정사업, 상품공급사업, 보건위생사업 같은 인민생활과 관련한 모든 사업이 속한다.

### 제3조 (주민행정사업의 기본원칙)

인민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주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주민행정사업에서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4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에서 살고있는 공화국 주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영역에서 살고있는 다른 나라 국민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5조 (다른 법과의 관계)

주민행정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주민행정기관

### 제6조 (주민행정사업의 직접적 담당자)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주민행정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이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이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소의 설치)**

주민행정사업을 실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아래에 사무소를 내온다.  
사무소는 리(읍, 로동자구, 동)에 둔다.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의 책임자는 사무장이다.

**제8조 (사무소의 지위)**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는 주민행정사업의 말단집행기관이다.  
사무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9조 (인민반의 조직)**

인민반은 국가사회생활의 기층단위이며 주민생활의 거점이다.  
인민위원회는 주민지역에서 일정한 수의 세대들을 망라하여 인민반을 조직하여야 한다.  
인민반의 세대수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0조 (인민반장)**

인민반에는 반장, 부반장을 둔다.  
인민반장과 부반장은 인민반회의에서 선거한다.  
인민반장은 해당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 제3장 주민행정관리

**제11조 (주민행정관리계획의 작성과 집행)**

주민행정관리를 바로 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인민위원회는 주민행정관리계획을 바로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신분등록)**

주민은 다음의 경우 해당 기관에 신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출생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2. 결혼 또는 리혼하였을 경우
3. 공민증(평양시민증)을 발급받으려 할 경우
4. 조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에 입대 또는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에서 제대될 경우
5. 공화국국적에 입적하였거나 공화국국적에서 제적되었을 경우
6. 거주 또는 퇴거하려 할 경우
7. 립양 또는 파양하려 할 경우
8. 다른 나라에 립시거주하려 할 경우
9. 신분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 할 경우

**제13조 (어린이보육교양조건보장)**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을 현대적으로 꾸리며 어린이보육 교양설비와 체육 및 놀이시설, 악기, 놀이감, 출판물, 교구비품 같은 것을 갖추어주어야 한다. 거리와 마을에는 아동공원과 놀이터를 꾸리고 어린이들이 리용할 여러 가지 유희시설을 갖추어주어야 한다.

**제14조 (교육조건의 보장)**

인민위원회와 해당 교육기관은 지역안의 주민수, 통학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소학교, 중학교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교육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5조 (주민들에 대한 공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주민공급체계를 바로세우고 공급기준에 따라 식량과 부식물, 펄 감, 먹는물, 주민용 상품 같은 것을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세대를 등록하고 세대별로 공급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 (편의봉사망의 운영)**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주민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위생편의, 가공편의 수리편의 리용편의 같은 편의봉사망을 합리적으로 꾸리고 편의봉사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의료봉사망의 합리적 배치)**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인민병원, 진료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현대적인 의료설비와 약품을 보장해주어 주민들이 제때에 치료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살림집의 건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주민들의 수요, 생활감정, 풍습에 맞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19조 (하부구조의 건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력망, 통신망, 상하수도망, 난방망, 우수망 같은 것을 생활구역 단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20조 (자연환경의 보장)**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거리와 마을에 수종이 좋은 가로수와 과일나무, 꽃나무, 록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관리담당구역제의 실시)**

인민위원회는 관할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인민반들에 담당구역을 정해주고 그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리와 마을관리에서 모범적인 기관, 기업소, 인민반은 널리 소개선전하며 그 경험을 일반화한다.

**제22조 (공로자, 년로자, 가정부인들의 생활보장)**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공로자, 년로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가정부인들을 가내편의봉사, 부업생산 같은 생산활동에 적극 참가시켜 세대당 수입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저금사업)**

인민위원회와 은행기관은 리(읍, 로동지구, 동)에 저금소를 내오고 주민들이 저금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들이 저금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들이 언제든지 저금한 돈을 찾아쓸수 있도록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 (절약운동, 수매사업)**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관할지역안의 가정들에서 물과 전기를 극력 절약하며 수매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사고방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주민들속에서 화재사고, 전기사고, 가스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를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타난 사고요소들은 제대에 조사장악하여 퇴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사회질서유지와 경비조직)**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과 주민지역안의 경비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27조 (신소, 청원의 접수처리)**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주민들 속에서 제기되는 신소청원을 제때에 빠짐없이 접수하며 책임적으로 정확히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주민공급과 생활보장정형의 장악, 보고)**

리(읍, 로동지구, 동)사무소는 관할지역안의 주민들에 대한 공급사업과 생활보장정형을 일, 주, 월별로 장악하여 해당 인민위원회에 보고하며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제29조 (살림집의 리용)**

살림집을 리용하려는 주민은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주민은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살림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제30조 (인민반, 가정생활)**

주민은 인민반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가정생활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건전하고 검박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 (거리와 마을, 살림집관리)**

주민은 자기가 살고있는 거리와 마을, 살림집을 언제나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고 관리

하여야 한다.

**제32조 (숙박질서)**

주민은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을 숙박시키려 할 경우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신고질서)**

주민은 위법행위를 비롯한 비정상적인 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에 제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주민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4조 (주민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주민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주민행정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고 「인민정권」기관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지도와 통제를 강화한다.

**제35조 (주민행정사업에 대한 지도)**

주민행정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인민위원회가 한다.

인민위원회는 주민행정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6조 (주민생활조건의 우선적 보장)**

국가계획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전력공급기관, 해당 기관은 주민행정사업에 필요한 자재, 설비,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주민행정사업에 돌려진 자재, 설비,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37조 (시장운영질서, 물질적 부담금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관할지역안의 시장운영질서를 바로 세우며 주민들에게 물질적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제38조 (주민행정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주민행정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주민행정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9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이 법을 어겨 주민행정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평양시관리법

주체87(1998)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86호로 채택  
주체98(2009)년 3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56호로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3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3호로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호로 수정보충

### 제1장 평양시관리법의 기본

#### 제1조 (평양시관리법의 사명)

평양은 주체의 성지이고 조선인민의 심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관리법은 평양시를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도시로 더 잘 꾸려 주민들에게 조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과 보다 편리한 생활조건, 노동조건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평양시관리에 대한 투자확대원칙)

평양시는 국가의 정확한 수도건설정책과 우리 인민의 애국적열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웅장 화려하게 건설되었다.  
국가는 수도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평양시관리에 대한 투자를 늘여 나간다.

#### 제3조 (평양시에 대한 전인민적관리원칙)

평양시를 잘 꾸리는 것은 국민의 애국심의 표현이며 영예로운 의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평양시관리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 제4조 (평양시에 대한 계획적관리원칙)

평양시관리를 계획적으로 하는것은 수도관리에서 나서는 중요원칙이다.  
국가는 평양시관리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한다.

#### 제5조 (평양시의 환경개선과 인구집중방지원칙)

평양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집중을 막는것은 수도관리에서 나서는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평양시의 한구인도, 인구밀도, 공업인구비율, 산업면적비율, 1인당 록지면적 같은 주요수도관리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 (평양시관리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평양시의 령역, 도시건설과 경영, 거주 및 기관등록, 주민봉사와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평양시의 령역

**제7조** (평양시령역의 구분)

평양시의 령역은 수도의 행정권이 행사되는 지역으로서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눈다. 중심지역에는 만수대를 중심으로 하여 정한 지역이, 주변지역에는 보호지대와 위성도시, 농촌지역이 속한다.

**제8조** (중심지역, 보호지대, 위성도시의 설정)

중심지역의 경계, 보호지대의 너비, 위성도시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내각은 중심지역과 보호지대가 정리되는데 맞게 중심지역의 경계를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시켜야 한다.

**제9조** (중심지역의 정리)

중심지역은 주민과 도시환경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정한 지역이다. 내각과 평양시인민위원회는 주민행정사업을 짜고들며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형성을 완성하는 원칙에서 중심지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호지대의 관리)

보호지대는 중심지역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문화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한 지역이다. 내각과 도시계획기관, 해당 기관은 보호지대에 산림과 유원지를 기본으로 하는 보호록지환경을 형성하여야 한다. 보호지대에는 도시경영, 교통, 농업생산시설과 농촌마을을 제외한 새로운 대상을 배치하거나 건설할수 없다.

**제11조** (위성도시의 건설)

위성도시는 중심지역의 인구집중을 조절하고 경제적, 사회봉사적기능을 분담하기 위하여 정한 도시이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해당 기관은 정해진데 따라 위성도시의 건설순차를 정하고 해당 위성도시의 성격에 맞게 기관, 기업소, 단체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농촌지역의 관리)

농촌지역은 농축산물생산기지, 보장기지이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수요와 공급조건을 타산하여 중심지역에서 가까운 농촌지역을 남새, 고기, 과일생산기지로 꾸리고 그 생산을 늘여야 한다.

### 제3장 도시건설과 경영

#### 제13조 (도시건설과 경영의 기본요구)

도시건설과 경영사업을 잘하는것은 나라의 얼굴인 평양시의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도시로 꾸려나가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건설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은 새로운 첨단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도시건설과 경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 제14조 (건설총계획의 승인)

중심지역과 보호지대는 평양시건설총계획, 위성도시는 해당 위성도시건설총계획에 따라 꾸린다.

평양시건설총계획은 내각이, 위성도시건설총계획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승인한다.

#### 제15조 (공장, 기업소의 환경영향평가)

평양시령역에 공장, 기업소를 건설하려는 기관, 단체는 해당 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해를 일으키거나 생산공정이 현대화되지 못하였거나 물동량이 많아 도서관리에 지장을 주는 공장, 기업소는 중심지역에 들수 없다.

#### 제16조 (체육문화시설의 배치)

도시계획기관은 주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원만히 보장하면서도 수도의 면모를 조화롭게 꾸려나갈수 있도록 경기장, 체육관, 극장, 영화관, 박물관, 기념탑, 유희장 같은 체육문화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17조 (살림집의 건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살림집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 날로 높아가는 주민들의 살림집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18조 (건설명시서의 발급과 건설허가)

중심지역에 건설하는 중요대상의 건설명시서발급과 건설허가는 내각이 그밖의 건설대상에 대한 건설명시서발급과 건설허가는 해당 건설감독기관이 한다.

#### 제19조 (공공건물, 살림집의 리용허가와 관리)

평양시에서 공공건물과 살림집의 리용허가와 관리는 평양시인민위원회가 한다. 그러나 특별히 정한 공공건물, 살림집의 리용허가와 관리는 해당 기관이 할수 있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를 담당한 건물과 그 주변을 정상적으로 보수, 관리하여 언제나 깨끗하고 문화적인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원림조성과 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관리구획안에 보기 좋고 수종이 좋은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꽃밭을 아름답게 조성하며 생땅이 보이지 않도록 잔디 같은 지피식물을 심고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도시안의 필요한곳마다에는 여러 가지 물풍치를 조성하고 공원과 유원지를 잘꾸려야 한다.

**제21조 (상수도의 관리)**

도시경영기관은 상수도시설을 현대적으로 갖추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며 선진적인 물소독 및 경제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주민들에게 수질이 좋고 완전히 정화된 음료수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음료수는 도시경영기관의 승인없이 공업용수로 쓸수 없다.

**제22조 (하수도의 관리)**

도시경영기관의 하수도시설과 오수정화시설을 완비하고 그 관리운영을 정상화하여 생활오수와 비물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정화시설을 갖추고 환경보호기준의 요구대로 산업폐수를 자체로 정화하여야 한다.

**제23조 (난방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평양시인민위원회는 지역별로 중앙열난방과 전기난방, 자체난방대상을 바로 정하고 난방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난방열을 생산공급하는 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정해진 류량과 온도, 압력으로 열과 더운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의 승인없이 난방시설을 변경시키거나 난방열을 뽑아 쓸수 없다.

**제24조 (대기관리)**

도시계획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건물과 가로수배치를 잘하여 도시통풍과 환경보호한계기준에 따르는 대기의 정결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중심지역에서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보일러를 운영하거나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를 내보내는 룰전기재를 운행할수 없다.

**제25조 (도로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평양시의 도로망을 완비하고 도로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 그 수명과 문화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도로를 파헤치거나 도로에 인입선을 내거나 도로시설물을 고치려 할 경우에는 평양시인민위

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6조 (하천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대동강과 보통강을 비롯한 하천의 강안정리와 바닥파기를 정상적으로 하고 환수체계를 세워 평양시안의 하천들에 늘 맑은 물이 흐르게 하며 물수위변동과 물흐름량에 맞게 갑문관리와 운영을 책임적으로 하여 큰물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27조 (가로등관리와 거리불장식)**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평양시에 여러 가지 형식의 가로등을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켜야 한다.

기념비적건축물과 거리의 곳곳에는 불장식을 하여 수도의 밤거리를 아름답게 장식하여야 한다.

**제28조 (오물의 처리)**

도시경영기관은 오물종합처리장을 꾸리고 오물을 제때에 처리하여 도시오물, 공업폐설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고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소는 공업폐설물을 오물종합처리장에 실어날라야 한다.

## 제4장 거주 및 기관등록

**제29조 (거주 및 기관등록의 기본요구)**

거주등록, 기관등록은 주민과 기관, 기업소, 단체를 정확히 장악하기 위한 선차적공정이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정해진데 따라 거주 및 기관등록사업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30조 (거주등록)**

평양시에 거주하려는 공민은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민의 거주등록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31조 (거주승인)**

지방에서 평양시에, 주변지역에서 중심지역에 거주하려는 공민은 해당 기관의 거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평양시민증수여, 평양시민이 지켜야 할 질서)**

평양시에 거주한 17살이상의 공민에게는 평양시민증을 수여한다.

평양시민은 언제나 시민증을 가지고 다니며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니고 국가의 법질서를 엄격히 준수하며 정책관철에서 모범이 되어 수도시민으로서의 영예를 지켜야 한다.

평양시민이 국가의 법질서를 엄중하게 어겼을 경우에는 평양시민증을 회수한다.

**제33조 (기관등록과 재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등록을 제때에 하며 해마다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평양시에는 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영할수 없다.

**제34조 (기관등록신청문건의 제출)**

기관등록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평양시인민위원회에 정해진 기관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평양시인민위원회는 기관등록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재지와 다르게 기관등록을 할수 없다.

**제35조 (기관등록의 변경)**

명칭, 관리기구, 정원이 달라진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에 따라 내각이나 평양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로력의 배치)**

로력배치는 기관등록을 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만 한다.

해당 로동행정기관은 로력배치를 할 경우 거주지역과 출근거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장 주민봉사

**제37조 (주민봉사의 기본요구)**

주민봉사를 잘하는것은 평양시인민위원회의 중요임무이다.

평양시인민위원회는 시안의 주민들에 대한 생활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며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잘하여야 한다.

**제38조 (식량과 연료의 공급)**

량정기관과 연료공급기관은 평양시에 대한 식량과 연료공급체계를 바로세우고 식량과 연료를 제때에 정해진 량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평양시에 공급할 식량과 연료를 《수도폰드》로 계획화하고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 (상업, 급양, 편의봉사)**

상업, 급양, 편의봉사기관은 주민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게 봉사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봉사업종을 늘이며 봉사를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은 평양시의 상업, 급양, 편의봉사부문에 필요한 설비, 상품, 원자재의 보장체계를 바로세우고 다른 부문보다 먼저 공급하여야 한다.

**제40조 (살림집과 그 구획관리)**

평양시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은 살림집을 정상적으로 개건보수하여 그 수명을 늘이며 수도의 면모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살림집구획은 계획적으로 정리하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종합적인 생활 단위로 꾸려야 한다.

살림집구획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건강에 해를 줄수 있는 대상을 둘 수 없다.

#### 제41조 (교통운수에 대한 수요보장)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평양시교통망건설총계획에 따라 교통망을 합리적으로 형성하고 교통운수수단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늘어나는 주민들의 교통운수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평양시에서는 지하철동차, 지상륜환렬차, 궤도 및 무궤도전차, 뺨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기본운수수단으로 한다.

#### 제42조 (전기통신과 우편통신의 보장)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은 평양시의 전기통신을 컴퓨터화하고 첨단기술과 운영방법을 받아들여 통신의 신속성과 정확성 안정성을 보장하며 우편통신봉사수준을 높여야 한다.

#### 제43조 (출판보도물의 보급)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출판보도물의 보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주민들이 신문, 방송 같은 것을 제때에 정상적으로 보고 듣고 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4조 (보육 및 교육조건의 보장)

어린이보육기관과 교육기관은 어린이들을 키우는 사업과 교육사업에서 위생영양학적, 교육학적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한 어린이보육교양, 청소년교육의 혜택이 주민들에게 정확히 차례지도록 탁아소, 유치원과 각급 학교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보육 및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45조 (치료 및 위생방역대책)

보건기관은 인민병원과 진료소, 해당 전문병원들을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의료봉사활동을 개선강화하여 주민들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충분히 받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보건기관은 의사담당구역제를 정확히 실시하여 의사들이 담당구역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예방치료사업을 강화하도록 위생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건기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며 의료사업에 필요한 의약품을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 제46조 (로동조건보장)

로동행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로동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한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 진출하여 로동에 마음

껏 참가할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 제6장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47조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이 한다.

내각은 평양시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48조 (평양시관리계획의 작성과 실행)

국가계획위원회와 평양시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평양시관리를 위한 부문별계획과 단계별, 순차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 제49조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성, 중앙기관을 비롯하여 평양시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심 지답게 꾸리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적극 동원되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평양시관리사업에 필요한 로력,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50조 (평양시관리를 위한 과학연구사업강화)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평양시관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수도관리를 과학화, 현대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평양시인민위원회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평양시관리사업에 제때에 받아들여야 한다.

### 제51조 (평양시에 대한 상품보장)

국가계획위원회와 각급 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평양시상업망에 넣을 상품생산을 계획화하고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 제52조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내각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내각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평양시관리와 관련한 법규의 준수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5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평양시관리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검열법

주체90(2001)년 12월 26일 회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66호로 채택

## 제1장 행정검열법의 기본

### 제1조 행정검열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검열법은 행정검열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정경제사업실태를 정확히 료해하고 발견한 결함을 제때에 고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행정검열기관

행정검열은 국가검열기관이 한다.

행정검열권한을 부여 받은 중앙, 도(직할시), 시(구역), 군의 해당 기관도 행정검열을 할수 있다.

### 제3조 행정검열의 강화원칙

행정검열을 강화하는것은 위법행위를 미리 막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행정검열을 집중적인 검열과 정상적인 검열, 큰 규모의 검열과 작은 규모의 검열을 옹게 배합하여 하도록 한다.

### 제4조 행정검열에서 강화원칙

객관성, 과학성의 보장은 행정검열의 정확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광범한 균중에 의거하고 과학적자료에 기초하여 행정검열을 하도록 한다.

### 제5조 행정검열의 총화원칙

국가는 행정검열총화에서 신중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6조 행정검열일군들의 양성원칙

국가는 행정검열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 제7조 행정검열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행정검열의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검찰기관의 집중감시는 검찰감시법에 따른다. 그러나 검열허가와 관련한 질서는 이 법에 따른다.

## 제2장 행정검열의 관할

### 제8조 행정검열관할준수의 기본요구

행정검열관할을 바로 정하는것은 검열사업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검열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해진 행정 검열관할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제9조 중앙행정 검열기관의 검열관할

국가검열기관과 해당 기관은 중앙행정경제지도기관과 그에 직속된 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정경제사업을 검열한다.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 해당기관의 검열관할에 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정경제사업을 직접 검열할수도 있다.

### 제10조 중앙 해당 기관의 검열관할

중앙 해당 기관은 자기 부문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정경제사업을 검열한다. 그러나 재정, 량정, 로동 같은 부문에 대한 행정검열은 자기 부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할수 있다.

### 제11조 도 해당 기관의 검열관할

도(직할시) 해당 기관은 도(직할시)급 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정경제사업을 검열한다.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안의 규모가 큰 기업소와 시(구역), 군 해당 기관의 검열관할에 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정경제사업을 검열할수도 있다.

### 제12조 시, 군 해당기관의 검열관할

시(구역), 군 해당 기관은 국가검열기관과 중앙, 도(직할시) 해당 기관의 검열관할에 속하지 않는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정경제사업을 검열한다.

## 제3장 행정검열의 절차와 방법

### 제13조 행정검열절차와 방법의 기본요구

행정검열절차와 방법을 지키는것은 행정검열을 편향없이 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검열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검열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제14조 검열허가증의 발급

행정검열은 해당 기관이 발급한 검열허가증을 받아야 할수 있다. 그러나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검열허가증을 받지 않고도 행정검열을 할수 있다.

**제15조** 검열일군의 파견

행정검열을 하려는 기관은 검열일군에게 검열허가증을 주어 검열할 기관, 기업소, 단체에 파견 하여야 한다.

**제16조** 검열허가증의 제시

검열일군은 검열허가증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열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검열요강의 전달

검열일군은 행정검열을 받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검열요강을 전달하여야 한다.

검열요강의 전달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해당 일군 또는 전체 종업원에게 할수 있다.

**제18조** 행정경제사업실태의 료해

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정경제사업실태를 료해하려는 검열일군은 해당 일군으로부터 필요한 설명을 들을수 있다.

필요에 따라 관계자를 불러 질문을 할수 있다.

**제19조** 행정경제사업문건의 검토

검열일군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행정경제사업과 관련한 문건을 요구하여 볼수 있다. 이 경우 행정검열목적과 내용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20조** 행정회의의 참가

검열일군은 행정검열내용과 관련 있는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의에 참가할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질문을 할수 있다.

**제21조** 위법자료의 확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법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열일군은 해당 일군협의회 또는 종업원 모임에서 제기된 문제를 토의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 현장 또는 현물의 확인

검열일군은 위법행위와 관련 있는 현장 또는 현물을 확인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창고, 금고, 물품, 문건 같은것을 봉인할수 있다.

**제23조** 필요한 전문일군, 수단의 동원

검열일군은 위법행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기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의 전문일군이나 기자재를 동원시킬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열일군의 요구를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자료의 고착

검열일군은 행정검열자료를 고착시키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을수 있다.

확인서에는 관계자의 이름, 나이 직장직위, 위법내용 같은것을 밝히고 수표를 받는다.

**제25조** 관련있는 위법행위의 료해

검열일군은 행정검열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그것을 료해할수 있다. 이 경우 관련되어 있는 위법행위의 범위를 초과하여 료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26조** 행정검열의 범위

행정검열은 검열요강에 지적된 범위에서 한다.

행정검열과 관련 없는 문건을 요구하거나 행정경제조직사업에 참여하는것 같은 행위는 할수 없다.

**제27조** 비밀의 준수 의무

검열일군은 행정검열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비밀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후과에 대하여서는 검열일군이 책임진다.

## 제4장 행정검열의 총화

**제28조** 행정검열총화의 기본요구

행정검열의 총화는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정경제사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검열기관과 해당 기관은 행정검열의 총화를 사회적교양과 행정적제재를 옳게 배합하여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29조** 행정검열의 총화시기

국가검열기관과 해당 기관은 행정검열이 끝나면 그 정형을 총화하여야 한다.

행정검열총화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계일군협의회 또는 종업원총회에서 한다.

**제30조** 행정검열의 총화방법

국가검열기관과 해당 기관은 행정검열과정에 나타난 결함을 고치고 행정경제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기할수 있다.

제기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적된 결함을 고치기 위한 대책을 세운 다음 그 정형에 대하여 해당 검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행정적제재의 제기

국가검열기관과 해당 기관은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행정적제재를 주려 할 경우 위법자료에 처리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해당 위법행위처리와 관련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2조** 형사적제재의 제기

행정검열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해당 법기관에 넘긴다.

**제33조 행정검열총화에 대한 의견의 제기**

행정검열의 총화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그것을 해당 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기관은 제때에 심의처리하고 의견을 제기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5장 행정검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4조 행정검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행정검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행정검열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행정 검열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5조 행정검열사업의 지도기관**

행정검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은 아래 단위의 행정검열사업실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제36조 국가적행정검열의 우선적보장**

검열허가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국가적으로 조직한 행정검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검열허가증발급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37조 검열력량의 편성**

국가검열기관과 해당 기관은 행정검열의 특성과 목적, 내용에 맞게 전문지식을 가진 실력 있는 일군으로 검열력량을 꾸려야 한다.

**제38조 검열일군의 금지행위**

검열일군은 행정검열과정에서 직권을 람용하거나 비법적인 사실을 묵인하거나 과장날조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9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행정검열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구역법

주체97(2008)년 10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06호로 채택

## 제1장 행정구역법의 기본

### 제1조 (행정구역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구역법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전반적지역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행정구역의 구분)

행정구역은 나라의 령토를 국가관리체계에 따라 구분한 지역적단위 또는 그 구획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구역은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동)로 구분한다.

### 제3조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사업의 권한)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사업은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없애며 행정구역의 명칭, 경계를 정하는 중요한 국가관리사업이다.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 제4조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하면서 지방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나라의 전반적지역에서 인민경제의 고도로의 발전을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주민구성과 그들의 생활상특성, 교통조건, 교육조건, 보건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자연지리적조건과 기후풍토를 고려하여야 한다.
5. 인민들의 안정된 생활조건과 주민행정사업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국방상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의 당사자)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관할구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주민행정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무회의에서 토의하고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을 할수 있다.

**제6조**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신청문건제출]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직접 내야 한다. 이 경우 린접한 도(직할시)의 행정구역과 관계되는 문제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와 문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제7조**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의 신청문건제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을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를 통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린접한 시(구역), 군의 행정구역과 관계되는 문제는 해당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와 문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제8조**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제출한 신청문건의 검토 및 제기]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로부터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이 제출되면 정확히 검토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내야 한다.

신청문건에 부족함이 있거나 신청사유가 부당할 경우에는 돌려보낸다.

**제9조**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제출한 신청문건의 검토처리]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에 부족점이 있을 경우에는 돌려보낸다.

신청문건을 돌려받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부족점을 고치고 다시 제기할수 있다.

**제10조** (신청문건의 작성방법)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에는 신청리유와 목적, 내용, 행정구역의 실태자료, 린접한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와 합의한 정형 같은 것을 밝히고 해당 행정구역도를 첨부한다.

신청문건의 양식과 작성방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한데 따른다.

**제11조** (신청문건의 심의기간)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의 심의는 해당 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안에 한다.

**제12조** (국가적요구에 의하여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경우)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적요구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직접 료해처리할수 있다.

**제13조** (신청문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보장)

인민위원회와 측지기관, 수로기관, 과학연구기관 같은 해당 기관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

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의 심의를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청문건의 심의승인기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의 심의승인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상무회의에서 한다.

**제15조** (정령 공포)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의 심의에서 승인되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공포한다.

**제16조** (정령 공포기간)

해당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공포되면 1개월안으로 집행하고 그 결과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지형지물의 변경에 대한 보고)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간석지건설, 토지정리, 물길공사, 고속도로, 저수지, 발전소건설 또는 자연조건의 변화 같은 사유로 지형지물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때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행정구역경계표식물의 설치 및 보호)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정해진 장소에 행정구역을 구분할수 있는 경계표식물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행정구역도와 행정구역관련문건의 구비)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행정구역도와 행정구역관련문건을 갖추고있어야 한다. 행정구역도와 행정구역관련문건은 정해진 기간 보관한다.

**제20조** (행정구역도의 작성, 배포)

행정구역도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사업은 국가측지기관이 한다.  
국가측지기관은 행정구역이 달라졌을 경우 제때에 수정보충하여야 한다.

**제21조** (금지사항)

승인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없애는 행위
2. 행정구역의 명칭, 경계 또는 지명을 정하는 행위
3. 행정구역경계표식물을 파손시키거나 옮기는 행위
4. 다른 행정구역의 토지를 리용하여 농사를 짓거나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 같은 행위



**제22조 (국가지명위원회의 조직)**

지명사업을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비상설로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명을 명명하거나 고증하거나 고치는 사업을 한다.

**제23조 (원상복구, 벌금, 중지)**

승인없이 행정구역을 내오고 없앴거나 행정구역의 명칭, 경계 또는 지명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킨다.

경계표식을 파손시켰거나 없앴거나 옮겼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승인없이 다른 행정구역의 토지를 리용하여 농사를 짓거나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중지시킨다.

**제24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형·민사부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주체79(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호로 채택  
주체82(1993)년 9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2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8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3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61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20호로 수정보충

## 제1장 가족법의 기본

### 제1조 (가족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결혼, 가족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결혼의 보호원칙)

결혼은 가정형성의 기초이다.  
국가는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제3조 (가정공고화의 원칙)

가정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이다.  
국가는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 제4조 (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의 보호원칙)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후견제도를 통하여 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 제5조 (상속권의 보장원칙)

상속은 개인재산에 대한 법적보호의 계속이다.  
국가는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 제6조 (어린이와 어머니의 보호원칙)

어린이와 어머니의 리익을 특별히 보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시책이다.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

### 제7조 (가족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사회주의적결혼관계와 가족, 친척들사이의 인격적 및 재산적관계를 규제한다.

## 제2장 결혼

### 제8조 (자유결혼과 일부일처제)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사이에만 할수 있다.

### 제9조 (결혼년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결혼은 남자 18살, 여자 17살부터 할수 있다.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기쁨을 장려한다.

### 제10조 (결혼춘수)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자사이에에는 결혼할수 없다.

### 제11조 (결혼등록)

결혼은 신분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수 없다.

### 제12조 (재외공민의 결혼등록)

다른 나라에서 사는 공화국공민의 결혼등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사대표기관에 하며 령사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해당 기관에 할수 있다.

### 제13조 (결혼의 무효)

이 법 제8조-제10조에 위반되는 결혼은 무효이다.

결혼의 무효인정은 재판소가 한다.

### 제14조 (무효로 된 결혼에서 자녀양육)

무효로 인정된 결혼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은것으로 한다. 그러나 자녀양육문제는 이 법 제22조, 제23조에 의하여 해결한다.

## 제3장 가정

### 제15조 (가정의 공고화)

가정을 공고히 하는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담보이다.

공민은 가정을 화목하고 명랑하게 꾸려야 한다.

**제16조** (남편과 안해관계의 성립)

남편과 안해의 관계는 결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17조** (남편과 안해의 자유활동사항)

남편과 안해는 자기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지며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 정치생활에 참가할수 있다.

**제18조** (남편과 안해의 평등권)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안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배우자의 부양의무)

남편과 안해는 노동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

**제20조** (남편과 안해관계의 해소)

남편과 안해의 관계는 리혼하면 없어진다.

리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할수 있다.

리혼판결은 확정된 때부터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1조** (리혼조건)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흑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할수 없을 경우에는 리혼할수 있다.

**제22조** (리혼시 자녀양육당사자의 결정)

남편과 안해가 리혼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할 당사자는 자녀의 리익의 견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아래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한다.

**제23조** (자녀양육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에게 그가 노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을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범위안에서 재판소가 정한다.

**제24조** (양육비면제신청)

양육비를 지불하던 당사자가 노동능력을 잃었거나 맡아키우던 당사자가 재혼하여 그 자녀가 계부 또는 계모의 부양을 받을 경우 리해관계자는 양육비를 면제하여 줄데 대하여 재판소에 요구할수 있다.

**제25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적관계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한 때부터 법적효력을 가진다.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 남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는 결혼생활과정에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와 같다.

**제26조 (자녀의 성)**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아버지의 성을 따를수 없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며 부모를 모르는 자녀의 성은 주민 행정기관이 정한다.

**제27조 (자녀교양의무)**

자녀교양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다.

부모는 자녀교양을 잘하여 그들을 지덕체를 갖춘 자주적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제28조 (미성인자녀의 대리)**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며 미성인자녀의 대리인으로 한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노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

**제29조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계부 또는 계모와 계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계자녀와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의 관계는 없어진다.

**제30조 (립양의 권리)**

공민은 다른 사람의 미성인자녀를 립양할수 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자, 양자녀의 건강에 해를 줄수 있는 질병이 있는자 그밖에 양자녀를 보육 교양할 능력이 없는자는 미성인자녀를 립양할수 없다.

**제31조 (립양의 동의)**

립양하려는 공민은 양자녀로 될자의 친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립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자녀로 될자가 6살이상일 경우에는 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32조 (립양의 등록)**

립양은 양부모로 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주민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이루어진다.

**제33조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립양이전 부모와의 관계는 없어진다.

**제34조 (파양)**

파양은 양자녀와 양부모 또는 양부모와 양자녀의 친부모나 후견인이 합의하고 해당 주민행정 기관의 승인밑에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이루어진다.

파양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해결한다.

**제35조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

조부모는 부모없는 손자녀가 건전하게 자라도록 양육하고 고양하여야 한다.

성인나이에 이른 손자녀는 자녀가 없는 조부모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

**제36조 (형제자매관계)**

형제자매는 친혈육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끌어주어야 한다.

돌볼자가 없는 형제자매는 부양능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부양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미성인, 로동능력이 없는자의 부양)**

미성인과 로동능력이 없는자는 부양능력이 있는 가정성원이 부양한다.

부양능력이 있는 가정성원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가 부양하며 그들이 없을 경우에는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부양한다.

**제38조 (국가의 부양대상자)**

이 법 제37조에 지적된 부양자가 없는 미성인과 로동능력이 없는자는 국가가 돌보아준다.

**제39조 (재산분할)**

리혼 또는 그밖의 사유로 가정성원이 갈라져나가는 경우 가정에 들어올 때 가지고 왔거나 상속, 증여받았거나 그밖에 개인적성격을 띠는 개별재산은 각자가 가지며 살림살이에 공동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가정재산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나누어 가진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해결한다.

## 제4장 후 견

**제40조 (후견인의 선정조건)**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미성인과 신체상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자를 위하여 후견인을 정한다.

**제41조 (후견인의 자격)**

미성인에 대한 후견인으로는 조부모, 형제자매가 될수 있다.

신체상결함으로 행위능력이 없는자에 대한 후견인으로는 배우자 또는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될수 있다.



후견인으로 될수 있는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후견의무수행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자가 후견인으로 된다.

**제42조 (주민행정기관에 의한 후견인선정)**

미성인과 신체상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자에게 이 법 제41조에 지적된 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선정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행정기관이 후견인을 정한다.

**제43조 (후견인의 권리)**

후견인은 후견받는자의 재산을 관리하며 그의 대리인으로 된다.

**제44조 (후견인의 의무)**

후견인은 후견받는자를 보육교양하며 그의 생활과 건강을 돌보아야 한다.

**제45조 (후견의무수행에 대한 감독)**

후견의무수행정형을 감독하는 사업은 주민행정기관이 한다.

## 제5장 상속

**제46조 (상속순위)**

공민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 상속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손자녀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상속된다.

앞항에 지적된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순위로 상속된다.

**제47조 (상속몫)**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들에게 차례지는 몫은 같다.

상속인들가운데서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에게 차례지는 몫은 나머지 상속자들에게 상속된다.

**제48조 (상속권의 박탈)**

법이 정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사망자를 생전에 몫시 학대하였거나 의식적으로 돌보지 않은 자, 고의적으로 상속조건을 만든자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않는다.

**제49조 (상속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

상속받기로 된자가 상속시키는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자녀는 사망자의 상속순위를 차지한다.

**제50조 (유언상속)**

공민은 자기의 재산을 유언으로 상속시킬수 있다. 그러나 유언이 유언자의 부양을 받던 공민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유언의 무효인정은 리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소가 해결한다.

**제51조 (사망자의 빚에 대한 책임)**

상속받은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안에서 사망자가 진 빚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52조 (상속기간)**

공민은 상속의 승인, 포기를 6개월안에 하여야 한다.

6개월안에 상속받을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상속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그 재산은 국고에 넣는다.

재판소는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판정으로 상속의 승인, 포기기일을 6개월 더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53조 (상속분쟁의 해결)**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재판소가 해결한다.

## 제6장 제 재

**제54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추궁은 재판소의 판정, 판결로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구타행위방지법

주체110(2021)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9호로 채택

## 제1조 (구타행위방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구타행위방지법은 구타행위방지외관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고 집단의 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구타행위의 정의)

구타행위는 사람을 함부로 때리거나 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구타행위에는 손으로 때리거나 긁어놓거나 꼬집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비틀어놓는 행위, 발로 차거나 누르거나 목조르기를 하는 행위, 밀치거나 넘어뜨리거나 떨어뜨리는 행위, 이마로 받거나 입으로 물어놓는 행위, 물에 빠뜨리는 행위, 머 리칼을 비롯한 몸의 임의의 부위를 잡아흔드는 행위, 돌이나 흙, 그 어떤 물체로 때리거나 찌르거나 뿌리는 행위 등이 속한다.

## 제3조 (구타행위의 미연방지원칙)

구타행위는 사람의 인신을 침해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기초인 일심단결을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엄중한 위법행위이다.

국가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준법교양과 법적 투쟁을 강화하여 구타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 제4조 (구타행위방지를 위한 교양사업강화원칙)

국가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고 준법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공민들속에서 구타행위의 사소한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 제5조 (구타행위와의 전사회적, 전군중적투쟁원칙)

국가는 구타행위를 한자들을 폭로비판하는 공개투쟁, 종업원총회, 주민총회, 학생총회를 정상적으로 벌려 이를 계기로 주민들이 구타행위의 형태와 사회적위험성, 해독적후과에 대하여 잘 알고 구타행위와의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한다.

## 제6조 (구타행위에 대한 적발처리원칙)

국가는 주민들속에 균중신고체계를 철저히 세워 구타행위를 제때에 적발하고 구타행위를 감행한자, 추진자, 구타행위와의 법적 투쟁을 바로하지 않은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따라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제7조 (사회적 교양과 법적제재의 배합원칙)**

국가는 구타행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법적제재를 옹계 배합하도록 한다.

**제8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구타행위당시 16살이상 되는자에 대하여서만 이 법에 따라처벌한다.

16살에 이르지 못한자가 구타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대책을 세운다. 그러나 14살이상에 이른자가 저지른 구타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9조 (교양의 담당자)**

구타행위를 없애기 위한 교양은 가정교양과 학교교양, 사회교양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종업원, 주민, 학생, 자녀들속에서 구타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준법교양자료의 보장)**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법기관은 관할지역안에서 나타난 구타행위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상적으로 넘겨주어 종업원, 주민,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과 군중적투쟁에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구타행위의 제지, 신고)**

국민은 구타행위를 발견하면 제때에 제지시키거나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구타행위에 대한 등록)**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법기관은 구타행위를 적발하였거나 그와 관련한 신고가 제기되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정확히 등록하고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13조 (구타행위의 조사처리)**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법기관은 구타행위의 조사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며 구타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서는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위험성정도에 따라 행정처벌을 적용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제14조 (구타행위의 묵살, 처리지연행위금지)**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법기관은 구타행위를 단속처리하지 않거나 구타행위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도 묵살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5조 (위법자처리에서 고려할 사항)**

다음의 경우 구타행위를 한자를 가볍게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을수 있다.

1.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을 경우

2. 구타행위를 한자가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백한 경우

**제16조 (손해보상)**

구타행위로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준자는 피해자의 치료비나 로동에 참가하지 못하여 끼친 수입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손실액에 대한 손해보상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한다.

손해보상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7조 (구타행위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제지시키지 않은자에 대한 벌금처벌)**

구타행위를 목격하고도 제때에 사회안전기관 또는 해당 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제지시킬 능력이 있으면서도 제지시키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1만~5만원의 벌금처벌을 준다.

**제18조 (교양을 무책임하게 한 부모에 대한 벌금처벌)**

자녀교양을 바로하지 않아 구타행위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책임있는 부모에게 1만~5만원의 벌금처벌을 준다.

**제19조 (구타행위를 한자에 대한 벌금처벌)**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밖의 사유로 노동교양처벌을 적용할수 없는자가 구타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5만~10만원의 벌금처벌을 준다.

**제20조 (구타행위를 한자에 대한 노동교양처벌)**

구타행위를 한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3개월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다음의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1. 여러번 또는 여러명을 구타한 경우
2. 여러명이 구타한 경우
3. 신체장애자를 구타한 경우
4. 임신부를 구타한 경우
5. 미성인을 구타한 경우
6. 년로자를 구타한 경우
7. 부모를 구타한 경우
8. 복종관계에 있는자를 구타한 경우
9. 청탁받고 구타한 경우
10. 구타행위로 일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11. 구타행위를 조사취급한 일군이나 구타행위의 신고자, 증인 또는 그의 가족을 복수할 목적으로 구타한 경우

**제21조** (교양사업을 무책임하게 한 일군에 대한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자기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 주민,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을 바로하지 않아 구타행위를 발생시킨 경우 책임있는 일군에게는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처벌,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다음의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1. 구타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
2. 여러명의 구타행위자가 제기된 경우
3. 구타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제22조** (구타행위방지사업을 무책임하게 한 감독통제기 관일군들에 대한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법기관, 감독통제기관일군이 구타행위를 단속처리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받고도 조사처리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직무집행과정에 구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다음의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1. 단속하였거나 신고받은 구타행위자료를 여러번 묵살하였거나 제멋대로 처리한 경우
2. 여러 구타행위자를 비법적으로 놓아준 경우
3. 돈이나 물건을 받고 위법사실을 약화시킨 경우
4. 구타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

**제23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24조** (해당 법규의 적용)

구타행위방지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처벌법을 비롯한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

주체84(1995)년 9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2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보충

## 제1장 대외민사관계법의 기본

### 제1조 (대외민사관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은 대외민사관계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장하며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대외민사관계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우리 나라 법인, 공민과 다른 나라 법인, 공민사이의 재산가족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며 민사분쟁에 대한 해결절차를 규제한다.

### 제3조 (자주적권리의 존중원칙)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당사자의 자주적권리를 존중하도록 한다.

### 제4조 (평등, 호혜의 원칙)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다.

### 제5조 (공화국법률제도의 기본원칙견지)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도록 한다.

### 제6조 (대외민사관계 관련조약의 효력)

대외민사관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에서 이 법과 다르게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러나 대외민사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관례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 제7조 (2중국적자의 본국법)

둘이상의 국적을 가진 당사자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1. 당사자가 가진 국적들 가운데서 하나가 우리 나라 국적인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
2. 당사자가 가진 국적이 다른 나라의 국적인 경우에는 국적을 가진 국가들 가운데서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
3. 당사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들에 다 거주하고있거나 어느 나라에도 거주하고있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

**제8조** (무국적자의 본국법)

국적이 없는 당사자가 어느 한 나라에 거주하고있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어느 나라에도 거주하고있지 않거나 여러 나라에 거주하고있을 경우에는 그가 거처하고있는 나라의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제9조** (지방별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나라 국적자의 본국법)

지방에 따라 내용이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당사자의 본국법은 그 나라의 해당 법에 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해당 법이 없을 경우에는 그가 소속되어있는 지방이나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의 법으로 한다.

**제10조** (거주지법의 인정)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으면서 다른 나라에도 거주하고있는 당사자에 대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당사자가 둘이상의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을 경우에는 그가 거처하고있는 나라의 법을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제11조** (거주지가 없는자의 거주지법)

어느 나라에도 거주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거처하고있는 나라의 법을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제12조**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수 없을 경우의 준거법)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다른 나라 법의 내용을 확인할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이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이 우리 나라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에 어긋날 경우의 준거법)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다른 나라의 법 또는 국제관례를 적용하여 설정된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우리 나라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에 어긋날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14조** [반치(되돌이)]

이 법에 따로 다른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나라 법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되돌이할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 (해외공민의 가족관계 법률행위의 효력)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나라 국민이 이 법 시행일전에 한 결혼, 리혼, 립양, 후견 같은 법률행위는 그것을 무효로 할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우리 나라 령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 제2장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

### 제16조 (대외민사관계 당사자)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로는 대외민사관계에 참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인, 공민과 다른 나라의 법인, 공민이 된다.

### 제17조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준거법)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서는 법인이 국적을 가진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서 다르게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18조 (공민의 행위능력에 대한 준거법)

공민의 행위능력에 대하여서는 본국법을 적용한다.

본국법에 따라 미성인으로 되는 다른 나라 공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의하여 성인으로 되는 경우 우리 나라 영역에서 그가 한 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가족, 상속관계와 다른 나라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나라 공민의 행위능력에 대하여서는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 제19조 (행위무능력자의 인증조건에 대한 준거법)

행위무능력자, 부분적행위능력자 인증조건에 대하여서는 당사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국법에 따라 인증된다고 하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의하여 인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자, 부분적행위능력자로 인증하지 않을 수 있다.

### 제20조 (행위무능력자, 부분적행위능력자인증의 효력에 대한 준거법)

행위무능력자, 부분적행위능력자인증의 효력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인증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 제21조 (소재불명자, 사망자의 인증에 대한 준거법)

소재불명자, 사망자인증에 대하여서는 당사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소재불명자, 사망자인증이 우리 나라에 있는 법인, 공민, 재산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 제3장 재산관계

### 제22조 (재산권에 대한 준거법)

점유권, 소유권 같은 재산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재산이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선박,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과 수송중에 있는 재산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해당 수송수단에 표시한 국기 나라의 법 또는 수송수단이 속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23조 (지적소유재산권에 대한 준거법)**

저작권, 발명권 같은 지적소유재산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른다. 그러나 우리 나라 법에 규정된 것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국제조약에 따른다.

**제24조 (재산거래행위에 대한 준거법)**

매매, 수송, 보험계약을 맺는 것 같은 행위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25조 (전보, 서신으로 계약체결할 경우의 준거법)**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당사자들이 전보 또는 서신 같은 것을 리용하여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나라의 법은 제의통지를 한 나라의 법으로 한다.

제의통지를 한 곳을 알수 없을 경우 계약체결행위가 있는 나라의 법은 제의자가 거주지 또는 소재지가 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제26조 (재산거래행위방식에 대한 준거법)**

재산거래행위의 방식은 행위를 한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27조 (특수경제지대에서 재산관계와 관련한 준거법)**

우리 나라 특수경제지대에서 외국투자기업설립 같은 재산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28조 (해난구조계약에 대한 준거법)**

해난구조계약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을 적용한다.

1. 령해에서는 해당 나라의 법
2. 공해에서는 해난구조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취급하는 재판소가 있는 나라의 법
3. 공해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여러 선박이 구조한 경우에는 구조받는 선박에 표시한 국기 나라의 법

**제29조 (해상공동부담손해에 대한 준거법)**

해상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법이 없을 경우 해당 항차가 끝나는 항구 또는 선박이 처음 도착한 항구가 속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들이 같은 국적을 가지고있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을 적용할수 있다.

**제30조 (위임대리, 부당리득에 대한 준거법)**

법적의무없이 다른 당사자의 재산이나 사무를 맡아보는 행위 또는 부당리득에 대하여서는 그

원인으로 되는 행위나 사실이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31조 (위법행위에 대한 준거법)**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위법행위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다른 나라에서 한 행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라 위법행위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법행위로 될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이 규정 한 범위에서 책임을 지을수 있다.

**제32조 (공해상에서 선박충돌경우의 준거법)**

공해상에서 국적이 같은 선박들이 위법행위로 충돌한 경우에는 선박에 표시한 국기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국적이 다른 선박들이 위법행위로 충돌한 경우에는 선박충돌과 관련한 문제를 취급하는 재판소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33조 (채권양도에 대한 준거법)**

채권양도에 대하여서는 양도행위가 있는 나라의 법 또는 채무자가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34조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취소하는 경우의 준거법)**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거나 취소하는 것 같은 행위에 대하여서는 채권채무관계에 적용하는 준거법과 채무자가 제3자앞에 가지는 권리의 준거법을 같이 적용한다.

## 제4장 가족관계

**제35조 (결혼조건과 방식의 준거법)**

결혼조건에 대하여서는 결혼당사자 각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국법에 따라 결혼조건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의하여 현재 존속되고있는 결혼관계나 당사자사이의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것 같은 결혼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결혼의 방식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결혼을 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36조 (결혼의 효력에 대한 준거법)**

결혼의 효력에 대하여서는 부부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부부의 국적이 다를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을, 부부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37조 (리혼과 그 방식의 준거법)**

리혼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리혼당사자들의 국적이 다를 경우에는 그들이 같이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을, 리혼당사자들

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그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리혼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리혼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38조 (공화국국민이 한편 리혼당사자인 경우 준거법)**

리혼당사자들 가운데서 한편 당사자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나라 국민인 경우에는 이 법 제 37조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9조 (부모, 자녀관계의 확정에 대한 준거법)**

친부모, 친자녀관계의 확정에 대하여서는 부모의 결혼관계에 관계없이 자녀가 출생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40조 (립양, 파양과 그 방식에 대한 준거법)**

립양과 파양에 대하여서는 양부모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양부모의 국적이 다를 경우에는 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립양과 관련하여 양자녀로 될자의 본국법에서 양자녀로 될자 또는 제3자의 동의나 국가기관의 승인을 립양의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립양과 파양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립양과 파양을 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41조 (부모와 자녀관계의 효력에 대한 준거법)**

부모와 자녀관계의 효력에 대하여서는 자녀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 한편 당사자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나라 국민인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42조 (후견과 그 방식에 대한 준거법)**

후견에 대하여서는 후견을 받을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후견의 방식은 후견인이 후견을 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43조 (후견인이 없는 외국국민의 후견인선정경우의 준거법)**

우리 나라에 거주, 체류하고 있는 다른 나라 국민에게 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라 후견인을 정할 수 있다.

**제44조 (부양관계에 대한 준거법)**

부양관계에 대하여서는 부양을 받을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부양을 받을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이 부양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의 본국법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5조 (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준거법)**

부동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상속재산이 있는 나라의 법을, 동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상속시키는 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나라 국민의 동산상속에 대

하여서는 상속시키는자가 마지막에 거주하였던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나라 국민에게 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넘겨받는다.

**제46조 (유언, 유언취소와 그 방식에 대한 준거법)**

유언과 유언취소에 대하여서는 유언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유언과 유언취소의 방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 유언행위가 있는 나라의 법, 유언자가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47조 (해외공민의 가족관계에 대한 준거법)**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나라 국민의 립양, 파양, 부모와 자녀관계, 후견유언에 대하여서는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할수 있다.

## 제5장 분쟁해결

**제48조 (분쟁해결의 준거법)**

대외민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은 이 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을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법에 따른다.

**제49조 (재판, 중재관할)**

재산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재판 또는 중재관할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50조 (재산거래분쟁시 해당 기관이 가지는 관할권)**

재산거래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재판, 중재관할을 합의하지 않았을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우리 나라 영역에 소재지를 가지고있거나 거주하고있을 경우
2. 분쟁의 원인으로 되는 재산손해가 우리 나라 영역에서 발생된 경우
3. 피고의 재산 또는 청구의 대상이 우리 나라 영역에 있을 경우
4. 분쟁의 원인이 우리 나라에 등록된 부동산과 관련이 있을 경우

**제51조 (행위무능력자, 부분적행위능력자, 소재불명자, 사망자인증과 관련한 분쟁시 관할권)**

행위무능력자와 부분적행위능력자, 소재불명자와 사망자인증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우리 나라 영역에 있는 법인, 국민, 재산과 관련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국적, 거주지에 관계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52조 (결혼과 관련한 분쟁, 리혼에 대한 관할권)**

결혼과 관련한 분쟁, 리혼에 대하여서는 소송제기당시 피고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거나 원고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나라 국민인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

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53조 (부부의 재산관계와 관련한 분쟁시 관할권)**

부부의 재산관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거나 원고 또는 피고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으면서 그 재산이 우리 나라 영역에 있을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54조 (립양, 파양, 부모와 자녀관계, 후견, 부양관계와 관련한 분쟁시 관할권)**

립양, 파양, 부모와 자녀관계, 후견, 부양관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을 경우에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55조 (상속과 관련한 분쟁시 관할권)**

상속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상속인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나라 국민이거나 상속재산이 우리 나라 영역에 있을 경우 상속인의 국적,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56조 (재판, 중재의 거부 또는 중지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구에 관계없이 재판 또는 중재를 거부하거나 중지한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2.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내용의 분쟁에 대하여 재판 또는 중재를 먼저 시작한 경우
3.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을 중지할데 대하여 합의한 경우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57조 (외국에서 한 분쟁해결의 수속 또는 판결, 재결을 인정할 경우의 자료요구)**

다른 나라 영역에서 증거의 수집, 증인신문 같은 분쟁해결의 수속 또는 다른 나라의 해당 기관이 내린 판결, 재결의 인정,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다른 나라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제58조 (외국에서 제공한 증거의 인증조건)**

다른 나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 제공한 증인신문조서, 증거물 같은 것은 해당 나라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분쟁해결의 증거로 리용할수 있다.

**제59조 (외국판결의 인정조건)**

다른 나라 해당 기관의 판결은 그것을 서로 인정할데 대한 국가적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그러나 가족관계와 관련한 다른 나라 해당 기관 판결집행의 당사자로 되는 우리 나라 국민이 그 집행을 요구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내린 판결을 인정할수 있다.

**제60조 (외국판결, 재결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해당 기관이 내린 판결, 재결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수 있다.

1. 판결, 재결의 내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2. 판결, 재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분쟁과 관련이 있을 경우
3. 판결, 재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의 판결, 재결과 관련이 있을 경우
4. 판결, 재결이 우리 나라에서 이미 인정한 제3국의 판결, 재결과 동일한 내용인 경우
5. 판결, 재결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당사자를 참가시키지 않고 내려진 경우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61조** (외국판결, 재결의 집행시 준용조문)

이 법 제59조, 제60조의 규정은 다른 나라 해당 기관이 내린 판결, 재결의 집행에도 적용한다.

**제62조** (외국판결, 재결의 집행에 대한 의견제기)

다른 나라의 해당 기관이 내린 판결, 재결의 집행에 대하여 우리 나라 영역에 있는 당사자가 리해관계를 가질 경우 판결, 재결이 확정된 때부터 3개월안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약범죄방지법

주체110(2021)년 7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38호로 채택

## 제1장 마약범죄방지법의 기본

### 제1조 (마약범죄방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약범죄방지법은 마약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마약범죄와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벌려 국가사회제도의 정치적인 안정을 보장하고 사람들의 정신육체적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범죄는 비법적으로 아편꽃을 재배하거나 아편을 채취하며 마약을 제조, 보관, 분실, 공급, 밀수, 거래, 사용하여 사람들을 정신육체적으로 변질타락시키고 국가사회제도의 정치적인 안정을 파괴하는 극히 엄중한 행위이다.
2. 마약은 신경계통에 작용하여 의식이나 감각, 판단 등을 잃게 하며 계속 쓰면 만성적인 중독 및 의존성을 일으키는 아편, 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등과 같은 약과 마약원료식물이다.

메탐페타민을 비롯한 정신자극성물질과 그 제조에 리용되는 페닐아세톤, 시안벤질, 페닐초산도 마약과 같이 본다.

### 제3조 (준법교양강화원칙)

준법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마약범죄를 철저히 막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마약범죄의 위험성과 해독적후과를 정확히 인식시키기 위한 준법교양을 강화하도록 한다.

### 제4조 (전군중적인 투쟁원칙)

국가는 마약범죄방지를 위한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감시와 신고 및 통보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인민들이 높은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마약범죄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한다.

### 제5조 (마약범죄의 근원차단원칙)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마약범죄를 산생시킬수



있는 사소한 요소도 철저히 차단하도록 한다.

**제6조** (마약범죄를 저지른자에 대한 징벌원칙)

국가는 마약범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누구이든 리유여하에 관계없이 엄중성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제7조** (이 법의 적용대상, 다른 법과의 관계)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공화국령역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밖에 있는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마약을 밀수하였거나 공화국공민에게 마약범죄를 저지르도록 추겼거나 방조하였을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마약범죄방지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마약범죄의 방지 및 적발

**제8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준법교양의무)

각급 인민위원회와 법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민들속에 마약범죄를 막기 위한 준법교양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약과 련관되게 되면 모든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시켜야 한다.

**제9조** (교육기관의 의무)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학교는 마약범죄방지와 관련한 법지식을 교육내용에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정상적으로 선전 및 교육하여야 한다.

**제10조** (부모와 후견인의 의무)

부모와 후견인은 학교, 청년동맹조직과의 련계를 정상적으로 가지고 자녀 또는 피후견인이 마약범죄에 말려들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아편꽃씨를 보관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2. 아편꽃을 재배하거나 아편을 채취하는 행위
3. 마약의 제조, 사용에 리용되는 설비 또는 기구를 제작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4. 마약제조기술과 방법을 배워주거나 배우는 행위
5. 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6. 마약을 밀수, 거래하는 행위
7. 마약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마약범죄에 대한 조사취급을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마약의 밀수차단)**

세관을 비롯한 국경검사기관과 국경경비부문은 국경을 통과하는 인원, 물품, 운수수단에 대한 검열단속 및 검사를 강화하여 마약이 밀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마약의 류출방지)**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제약공장, 의료기관, 과학연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의 생산, 공급, 수송,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마약이 류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마약의 루실방지)**

마약을 생산하거나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보관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경비근무를 강화하여 마약이 루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마약의 류동차단)**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기관은 단속초소에서 인원과 물품, 운수수단에 대한 검열단속을 강화하여 마약이 류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체신기관은 우편물을 통하여 마약이 류동되지 않도록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16조 (아편꽃의 재배, 마약의 제조 및 거래, 보관, 사용차단)**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법기관은 관할지역안에서 비법적으로 아편꽃을 재배하거나 마약을 제조, 거래, 보관, 사용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17조 (마약범죄에 대한 신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아편꽃을 재배하거나 마약을 제조, 밀수, 거래, 보관, 사용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마약범죄의 근원적발)**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법기관은 마약범죄를 발견하였거나 마약범죄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엄격히 조사취급하여 마약범죄의 근원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제19조 (부당한 조사취급금지)**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법기관은 마약범죄사건을 약화시키거나 과장날조하지 말아야 한다.

## 제3장 마약범죄에 대한 법적책임

**제20조 (마약을 분실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마약의 보관 및 경비질서를 어겨 마약을 분실한자는 형법의 마약분실죄 또는 경비근무태만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조 (마약을 비법공급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마약의 공급질서를 어겨 마약을 비법적으로 공급한자는 형법의 마약비법공급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조 (아편꽃을 비법재배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아편 꽃을 비법적으로 재배한자는 형법의 아편꽃비법재배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조 (아편을 비법채취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아편을 비법적으로 채취한자는 형법의 아편비법채취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유기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24조 (마약을 비법제조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마약을 비법적으로 제조한자는 형법의 마약비법제조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유기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25조 (비법적으로 마약제조방법을 배워주었거나 배운자에 대한 형사책임)**

비법적으로 마약제조방법을 배워준자는 마약비법제조죄의 방조범으로, 마약제조방법을 배운자는 마약을 제조하지 않았다면 마약비법제조죄의 준비범으로서 형법의 마약비법제조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조 (마약제조설비를 구입, 제작, 설치해준자에 대한 형사책임)**

마약제조에 리용될수 있는 설비를 구입해주거나 제작해주거나 설치해준자는 마약비법제조죄의 방조범으로서 형법의 마약비법제조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조 (마약을 비법보관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마약을 비법적으로 보관한자는 형법의 마약비법보관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조 (마약을 밀수, 거래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마약을 밀수, 거래한자는 형법의 마약밀수, 거래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유기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세관을 비롯한 국경검사기관과 국경경비부문에 근무하는자가 밀수한 경우에는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제29조 (마약을 비법사용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마약을 비법적으로 사용한자는 형법의 마약비법사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0조 (마약범죄를 준비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마약범죄를 준비한자는 마약과 관련하여 규제한 형법의 해당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

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1조** (마약범죄를 신고하지 않은자에 대한 형사책임)

마약범죄를 준비하고있거나 저지른것을 알면서 해당 법기관에 알리지 않은자는 형법의 일반 범죄불신고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32조** (마약범죄를 방임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마약이 제조되거나 밀수, 거래되는것을 알면서 내버려두어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형법의 엄중한결과발생방임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33조** (마약범죄를 감추어준자에 대한 형사책임)

마약범죄를 저지른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는 형법의 일반범죄은닉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4조** (마약비법사용을 추겼거나 방조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마약을 비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추겼거나 방조한자는 형법의 마약비법사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5조** (세관검사, 국경검사, 국경경비임무를 무책임하게 수행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세관검사, 국경검사, 국경경비임무를 무책임하게 수행하여 마약이 밀수되게 한자는 형법의 직무태만죄 또는 경비근무태만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6조** (검열단속을 무책임하게 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단속초소에서 인원, 물품, 운수수단에 대한 검열단속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우편물검사를 바로하지 않아 마약이 류동되게 한자는 형법의 직무태만죄 또는 독립임무태만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7조** (마약범죄사건조사를 방해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마약범죄사건조사를 방해한자는 형법의 사건조사방해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8조** (마약범죄사건을 약화시킨자에 대한 형사책임)

마약범죄자를 놓아주었거나 마약범죄사건을 약화시킨자는 형법의 비법석방 및 사건약화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9조** (마약범죄와 관련이 있는 압수, 몰수재산을 비법처분한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

마약범죄와 관련이 있는 압수, 몰수재산을 비법적으로 처분한자는 형법의 국가재산횡령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되 마약을 밀수, 거래하였거나 사용, 보관한 경우에는 마약밀수, 거래죄 또는 마약비법사용죄, 마약비법보관죄를 병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40조** (마약범죄와 관련이 있는 재산의 처리)

마약범죄에 리용되었거나 그러한 행위로 이루어진 돈이나 물건은 몰수한다.

**제41조** (행정적책임)

이 법 제20조, 제22조, 제27조, 제29~39조의 행위가 형사책임을 지울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벌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주체79(1990)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호로 채택  
주체82(1993)년 9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0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3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61호로 수정보충

## 제1편 일반제도

### 제1장 민법의 기본

#### 제1조 (민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민법의 규제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사이에 서로 같은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민사법률관계에서 당사자로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보장한다.

#### 제3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의 원칙)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기초이다.

국가는 재산관계에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계획적관리운영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도록 한다.

#### 제4조 (계획적인 재산거래원칙)

계획적인 재산거래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게 재산거래관계를 맺고 실현하도록 한다.

#### 제5조 (계약규률의 준수원칙)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며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 (인민의 복리증진원칙)**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공민과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조 (재산관계자들의 편의보장원칙)**

공민이 참가하는 재산관계는 계약이나 그밖의 법률행위와 사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재산관계에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널리 참가할수 있도록 온갖 편의와 조건을 보장한다.

**제8조 (민사관계 당사자들사이의 협력과 방조원칙)**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서로 협력하고 방조하는 집단주의원칙에서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도록 한다.

**제9조 (국가, 사회이익의 존중원칙)**

국가는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10조 (민사관련조약의 효력)**

민사활동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조약에서 달리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2장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제11조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재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된다.  
공화국령역안에 창설된 합병, 합작기업 그밖에 법이 인정한 다른 나라 법인도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한다.

**제12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등록)**

조직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창설된 것으로 인정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에 등록된 때부터 민사상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질수 있는 민사권리능력과 그것을 자신이 직접 실현할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권리능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본신임무에 맞는 범위안에서 민사권리능력을 가진다.  
자기의 본신임무를 해당 기관에 등록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마음대로 변경할수 없다.

**제14조** (대표자와 대리인에 의한 민사법률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위임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

**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책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가 관리하고있거나 소유하고있는 재산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제16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병합과 분리)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갈라지거나 합쳐지는 경우 그의 민사상 권리의무도 갈라지거나 합쳐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폐지되거나 해산을 결정한 경우 그가 가지고있던 채권채무는 해당 임무를 위임받은 청산인이 처리한다.

**제17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소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폐지 또는 해산이 해당 기관에 등록된 때에 없어진다.

**제18조** (민사법률관계 당사자로서의 국가)

국가는 국가소유관계를 비롯한 일정한 민사법률관계에서 직접 당사자로 한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하는 권한을 부여한 기관을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19조** (공민의 민사권리능력)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은 출생과 함께 생기며 사망과 함께 없어진다.

모든 공민은 민사권리능력을 평등하게 가진다. 법은 따로 정하지 않은 한 누구도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을 제한할수 없다.

**제20조** (공민의 민사행위능력)

공민의 성인나이는 17살이다.

17살에 이른 공민은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

16살에 이른자는 자기가 받은 로동보수의 범위안에서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수 있다. 그러나 6살이상의 미성인은 학용품이나 세소일용품 같은 것을 사는 행위를 할수 있다.

**제21조** (민사행위무능력자, 신체기능장애자의 민사법률행위)

민사행위무능력자, 신체기능장애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

성인의 민사행위무능력자인정은 재판절차로 한다.

**제22조** (소재불명자, 사망자의 인증)

마지막 소식이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공증기관이 소재불명자로 인증할수 있다.



소재불명자로 인증된 후 2년, 소식이 없거나 마지막소식이 있을 때부터 5년, 생명에 위험을 준 사고가 있을 때부터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앞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망자로 인증할수 있다.

**제23조 (소재불명자, 사망자인증의 취소)**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로 인증되었던 공민이 나타났거나 소식을 보내여 거처를 알려온 경우 공증기관은 본인이나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한 인증을 취소한다. 이 경우 변경된 재산관계는 취소할수 있으나 새로 성립된 결혼관계는 취소시킬수 없다.

## 제3장 민사법률행위

**제24조 (민사법률행위의 형식)**

민사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말이나 서면 같은 것으로 할수 있다. 그러나 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거나 공증을 받는다.

**제25조 (민사법률해우이의 취소, 변경)**

민사법률행위를 한자는 법에서 허용하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기가 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할수 있다.

**제26조 (민사법률행위의 유효조건)**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효력을 가진다.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이 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27조 (무효한 법률행위의 효과)**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 행위를 한자에게는 해당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28조 (취소할수 있는 민사법률행위의 형태)**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 강요로 하여 본의아니게 한 민사법률행위, 16살에 이른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수 있다.

취소는 2개월안에 하여야 한다.

취소된 민사법률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29조 (민사법률행위취소의 효과)**

민사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상대방을 속였거나 강요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게 한자의 돈이나 물건은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30조 (민사법률행위의 효력)**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은 일정한 조건의 발생과 결부시킬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조건의 발생을 앞당기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 (민사법률행위의 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법이 정한 경우나 자신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경우를 내놓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할수 있다.

**제32조 (대리의 종류)**

대리에는 법에 의하여 하는 법정대리와 위임에 의하여 하는 위임대리가 있다. 대리인은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공민이어야 한다.

**제33조 (대리행위의 법적효과)**

대리인은 대리를 위임한자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하며 그 행위의 법적효과는 대리를 위임한자에게 돌아간다. 대리를 위임한자는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한 제3자앞에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의 결과는 대리인이 책임진다.

**제34조 (대리의 위임형식)**

대리의 위임은 말로 하거나 서면으로 한다. 공민이 대리를 말로 위임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대리권의 범위를 상대방에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서면으로만 대리를 위임할수 있으며 대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이나 신임장에는 대리권의 범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35조 (대리인의 임무)**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불성실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위임한자앞에 책임진다.

**제36조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은 대리를 위임한자나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을 잃은 경우에 없어진다.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대리를 위임한자가 대리의 위임을 취소하였거나 대리인이 그 위임을 거절한 경우에도 없어진다.

말로 한 대리의 위임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2편 소유권제도

### 제1장 일반규정

#### 제37조 (소유권의 형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나누어진다.

#### 제38조 (소유권의 발생기초)

소유권은 법이나 계약 그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소유권은 법에 기초하는 경우 법이 정한 때, 계약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따로 합의하지 않은 한 계약을 맺고 그 대상을 넘겨받은 때부터 발생된다.

#### 제39조 (소유권자의 권한)

소유권을 가진자는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자기의 소유재산을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있다. 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당 소유권을 가진자만이 할수 있다.

#### 제40조 (비법점유재산의 반환청구)

소유권을 가진자는 자기의 재산을 다른자가 비법적으로 점유하고있을 경우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 제41조 (소유권실현방해행위의 배제청구)

소유권을 가진자는 자기 소유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그만 둘 것을 요구할수 있다.

#### 제42조 (공동소유권)

소유권은 여럿이 공동으로 가질수 있다.

공동소유재산을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하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자들의 합의에 따라 한다.

#### 제43조 (공동소유재산의 분할)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자들은 공동소유재산에서 자기의 몫을 갈라 가질수 있다. 재산을 현물로 가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 몫에 해당하는 값을 받을수 있다.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자들의 몫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들의 몫은 같은것으로 본다.

## 제2장 국가소유권

### 제44조 (국가소유의 성격과 원천)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는 국유화한 재산, 국가투자로 마련한 재산, 국가기업소의 생산물, 국가기관, 기업소가 산 재산, 국가의 결정에 따라 국가기관, 기업소에 넘어온 재산,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이 국가에 바친 재산 그밖에 국고에 넣기로 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 제45조 (국가소유권의 대상)

다음의 재산은 국가만이 소유할수 있다.

1.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2.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3. 각급 학교 및 중요문화보존시설

### 제46조 (국가소유권의 담당자)

국가소유권의 담당자는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국가이다.

국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재산을 제한없이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있다.

### 제47조 (국가소유권의 실현)

국가소유권은 국가가 직접 또는 개별적인 국가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실현한다.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가 맡은 국가소유재산에 대한 경영상관리권을 가지고 국가의 지도밑에 그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있다.

### 제48조 (국가소유권과 경영상관리권의 이전)

국가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 국가소유권은 그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국가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다른 국가기관, 기업소에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는 경영상관리권만 넘어간다.

### 제49조 (국가소유의 고정재산리용권)

국가에서 협동농장에 배속시킨 트랙토르, 모내는기계, 수확기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 국가부담으로 협동농장에 마련하여준 문화시설, 탈곡장, 집집승우리, 창고 같은 고정재산에 대하여 국가는 자기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있으면서 리용권을 해당 협동농장에 넘겨준다.

협동농장은 국가가 지원하여준 고정재산을 그 사명에 맞게 자기의 재산처럼 리용할수 있다.

### 제50조 (국가소유재산의 살림집리용권)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리용권을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게 넘겨주며 그 리용권을 법칙으

로 보호한다.

인민정권기관은 리혼당사자들사이에 국가소유의 살림집리용권과 관련한 분쟁이 제기될 경우 해당 재판소의 판결서등본에 기초하여 살림집리용권자를 새로 정해주어야 한다.

**제51조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 재산이 권한없는자로부터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제52조 (임자없는 물건의 소유권)**

임자없는 물건은 국가소유로 한다.

임자없는 물건에는 소유권을 가진자가 없거나 소유권을 가진자를 알수 없는 물건이 속한다.

### 제3장 사회협동단체소유권

**제53조 (사회협동단체소유의 성격과 원천)**

사회협동단체소유는 사회협동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사회협동단체소유는 사회협동단체성원들이 들여놓은 재산, 사회협동단체의 자체투자로 마련한 재산, 사회협동단체의 생산물, 사회협동단체가 산 재산, 국가에서 사회협동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54조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대상)**

사회협동단체는 토지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그밖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들을 소유할수 있다.

**제55조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담당자와 그 권한)**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인 사회협동단체이다.

사회협동단체는 자기 소유의 재산을 그 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원칙에서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처분은 법이 정한데 따라 한다.

**제56조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이전)**

사회협동단체가 생산한 제품이 국가기관, 기업소 또는 다른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 그에 대한 소유권은 상대방에 넘어간다.

**제57조 (사회협동단체소유재산의 반환청구)**

사회협동단체는 자기 소유의 재산이 권한없는자로부터 다른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 제4장 개인소유권

### 제58조 (개인소유의 성격과 원천)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혜택, 터발경리를 비롯한 개인 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밖의 법적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 제59조 (개인소유권의 대상)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수 있다.

### 제60조 (개인소유권의 담당자와 그 권한)

개인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공민이다.

공민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사회주의적생활규범과 소비적목적에 맞게 자유로이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있다.

### 제61조 (가정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권)

가정성원으로 된 공민은 가정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진다.

### 제62조 (개인소유재산의 반환청구)

공민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권한없는자에게서 넘겨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가진 공민을 상대로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여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가진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 제63조 (상속권)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공민의 개인소유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된다.

공민은 유언에 의하여서도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가정성원이나 그밖의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수 있다.

## 제3편 채권채무제도

### 제1장 일반규정

#### 제64조 (채권자의 채무자의 지위)

채권자는 일정한 재산상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채무자는 일정한 재산상행위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제65조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권리의무)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권리를 가지면서 그에 대응한 의무를 함께 가질수도 있고 권리나 의무의 하나만을 가질수도 있다.

#### 제66조 (채권채무관계의 발생기초)

채권채무관계는 인민경제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행정문건이나 계약 그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 제67조 (채무리행의 방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리행에 응당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여 채무리행에 지장을 준 채권자는 채권에 제한을 받거나 해당하는 책임을 진다.

#### 제68조 (채무위반으로 생기는 손해방지)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어기여 생긴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여 손해가 커진 경우 보상을 요구할 채권자의 권리는 그만큼 제한된다.

#### 제69조 (채권채무관계에서의 값)

채권채무관계에서 값은 국가가 정하였거나 평가한 값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값으로 정하고 계산한다.

국가의 가격규률을 어기고 더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상대방에 돌려주며 고의적으로 가격규률을 어기고 더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 제70조 (여러 당사자들사이의 채권채무)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각자는 채권이나 채무의 몫을 분할하여 가질수도 있고 연대적으로 가질수도 있다.

#### 제71조 (분할채권채무자의 권리의무)

분할채권자는 자기 몫의 리행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분할채무자는 자기 몫의 채무만을 리행할 의무를 진다.

**제72조 (뭉이 명백치 않은 분할채권의무)**

분할채권자가 가지는 청구의 뭉이나 분할채무자가 지는 의무의 뭉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그 뭉은 같은 것으로 본다.

**제73조 (연대채권채무자의 의무)**

연대채권자는 저마다 채무의 전부 리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연대채무자는 저마다 채무를 전부 리행할 의무를 진다.

**제74조 (연대채권자, 채무자들사이의 관계)**

채무를 전부 리행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뭉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채무를 전부 리행받은 연대채권자는 다른 연대채권자에게 해당한 뭉을 나누어줄 의무를 진다.

**제75조 (연대채권자의 청구권행사제한)**

연대채권자는 자기의 청구권을 행사하는데서 다른 연대채권자의 리익을 침범하지말아야 한다. 한 연대채권자가 자기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그것은 다른 연대채권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76조 (연대채무의 면제)**

채권자가 한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킨 경우 그가 부담하기로 되었던 뭉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의 뭉은 적어진다.

**제77조 (연대채무의 양도)**

채권자나 채무자는 자기의 채권이나 채무를 제3자에게 넘겨줄수 있다.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려는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며 채무를 제3자에게 넘겨주려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78조 (제3자의 허물로 생긴 채무)**

제3자의 허물로 생긴 채무를 채권자앞에 리행한 당사자는 제3자에게 해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9조 (채무리행당사자)**

채무자는 채무를 자기가 직접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직접 리행하지 않아도 될 채무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리행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제3자의 채무리행에 대하여 채권자앞에 책임진다.

**제80조 (채무리행기관의 준수)**

채무자는 채무를 정해진 기간안에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리행을 지연시키거나 채무리행의 접수를 지연시킨 당사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1조 (채무리행방법)**

법이나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채무는 한번에 리행하여야 하며 채무를 나누어 리행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리행의 접수를 거절할수 있다.

**제82조 (채무리행에서 물건의 질)**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유상으로 넘겨주는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는 질이 가장 좋은 물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중간정도의 질을 가진 물건을 넘겨줄수 있다.

**제83조 (특정물이 없어졌거나 쓸수 없게 된 경우의 채권채무)**

징표가 다른 특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에서 그 물건이 없어졌거나 쓸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채권채무관계는 없어진다. 그러나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허물있는자가 보상할 책임을 진다.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넘겨주기로 한 채권채무관계에서 물건이 없어졌거나 손상되면 채무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84조 (종류물의 특정물로서의 전환)**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가운데서 채권채무의 대상이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때부터 그 대상물은 징표가 다른 특정된 물건으로 된다.

**제85조 (종속재산의 인도)**

재산을 넘겨주는 채권채무관계에서는 넘겨주는 재산과 함께 그에 종속된 재산도 넘겨주어야 한다.

**제86조 (채무리행장소)**

채무는 법이나 계약이 정한 곳에서 리행하여야 한다.

법이나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돈으로 물어야 할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나 거래은행에서, 부동산으로 넘겨주어야 할 채무는 부동산소재지에서 그밖의 채무는 채무자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에서 리행하여야 한다.

**제87조 (보상한 파손물의 소유권)**

채무의 대상으로 된 물건을 심히 손상시킨 경우 그 값의 전부를 보상한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제88조 (채권채무관계에서 선택권)**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는 여러 행위들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정할수 있다.

법이나 계약에서 행위의 선택권을 가지는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89조 (선택권행사의 지연)**

선택권을 가진자가 채무리행기간이 되도록 행위를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 넘어간다.

**제90조 (계약의 체결)**

계약은 한편 당사자의 제의와 상대방 당사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의를 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제의를 접수한 때부터 해당 제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할수 없다.

**제91조 (계약의 합의조건)**

계약당사자는 계약대상, 리행기간, 값 같은 본질적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공민에게 불로소득을 가져다주는 계약내용은 설정할수 없다.

**제92조 (계약체결방식)**

계약은 유상으로 맺을수도 있고 무상으로 맺을수도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참가하는 계약은 유상으로 맺는다.

**제93조 (계약의 형식)**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계약은 서면으로 맺는다. 말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사이, 공민사이의 계약은 법이 달리 정하지 않은 한 말로 맺을수 있다.

계약의 체결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서면으로 맺은 계약은 재판이나 중재에서 우선적으로 인정받는다.

**제94조 (부동산거래계약)**

부동산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맺고 공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95조 (계약의 동시리행)**

두 당사자들이 다같이 의무를 지는 계약은 서로 동시에 리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자기의 의무리행을 보류할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에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대상을 잡아들 수 있다.

**제96조 (계약의 취소)**

한편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을 리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수 있으며 그것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다.

**제97조 (계약대상의 검사)**

계약대상을 접수한자는 그것을 제때에 검사하고 나타난 결함을 상대방에 알려야 한다.

계약대상의 결함에 대하여 허물있는자는 결함을 고쳐주거나 대상을 다른것으로 바꾸어주거

나 그 값을 낮추어주어야 한다.

**제98조 (계약대상의 숨은 결함에 대한 책임)**

계약대상을 접수한자는 숨은 결함을 상대방에 알려 책임을 물을수 있다.

숨은 결함에 대한 책임은 정해진 기간안에 물어야 한다.

**제99조 (계약대상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한 책임)**

계약대상을 점유하고있는자는 그것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에게 허물이 없거나 자연해해같이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계약대상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00조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은 제3자를 위하여 맺을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계약을 맺은자와 함께 제3자에 게도 발생한다.

## 제2장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제101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의 목적)**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며 경제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 하기 위하여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맺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맺어야 한다.

**제102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의 설정)**

계약당사자는 인민경제계획을 가장 정확히 합리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에 명백히 부족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계획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103조 (계약의 성립시기)**

계약은 법이 정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맺어진다.

계약을 맺는데서 의견상이는 중재절차로 해결한다.

**제104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의 변경)**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이 추가되거나 조절되면 그에 따라 변경된다.

계약의 변경은 계획의 추가, 조절에 관한 통지를 한편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았거나 계약쌍방이 권한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때에 이루어진다.

**제105조 (자재공급계약의 체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의 자재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자재를 주고받는 행위는 자재공급계

약에 따라 한다.

자재공급계약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와 자재를 주고받는데서 상업적형태를 리용할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06조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자재공급세부계획에 따라 자재를 구조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

자재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자재를 수요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한 값을 줄 의무를 진다.

**제107조 (자재공급계약의 합의조건)**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는 공급할 자재의 이름, 규격, 질, 공급기간, 수량, 값과 그것을 주고받는 방법, 포장하는 방법, 거래은행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08조 (자재공급방법)**

공급자는 자재를 제때에 운수기관을 통하여 실어보내주거나 자기 창고에서 수요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운수기관을 통한 수송조직에 대하여서는 공급자가 책임지며 여기에 드는 수송비는 수요자가 부담한다.

**제109조 (공급된 자재의 검수)**

공급된 자재의 검수는 수요자가 한다.

수요자는 자재에 사고가 있으면 공급자를 립회시키고 그로부터 사고조서를 받을수 있다.

정당한 리유없이 사고확인을 지연시키거나 거절한 당사자는 수요자가 작성한 사고조서에 근거하여 책임진다.

**제110조 (공급된 자재의 숨은 결함처리)**

공급된 자재의 숨은 결함을 발견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알리고 그로부터 사고조서를 받아야 한다. 긴급하거나 사고의 원인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감독기관의 참가 밑에 사고조서를 작성할수 있다.

숨은 결함에 대하여 수요자는 자재를 넘겨받은 때부터 3개월안에,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끝날 때까지 공급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

**제111조 (계약된 자재의 공급조절)**

수요자가 공급받은 자재를 사장량비하여 지불능력을 잃은 경우 공급자는 계약된 자재의 공급을 조절할수 있다.

**제112조 (자재값의 청산)**

수요자는 자재를 넘겨받은 다음 값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자재의 품종, 규격, 질, 값이 계약조건과 맞지 않을 경우 수요자는 값을 물지 않고 자재를 공급자에게 돌려보낼수 있다. 그러나 변질될수 있거나 긴급한 대책을 요구하는 자재는 돌려보내지 않고 값만 낮출수 있다.

**제113조 (상품공급계약의 체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의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상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상품공급계약은 주문제에 의하여 생산과 소비를 윽게 련결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킬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14조 (상품공급계약당사자의 의무)**

상품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인민소비품을 수요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하는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115조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상품배정계획에 따라 상품을 주고받는 기업소와 도매상업기업소, 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

기업소의 제품판매를 담당한 상사, 협동농장도 계약당사자로 될수 있다.

**제116조 (상품공급계약의 합의조건)**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이 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있는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17조 (상품공급방법)**

공급자는 상품을 제때에 운수기관을 통하여 실어보내거나 수요자의 창고까지 날라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상품과 함께 그 명세서를 수요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118조 (공급된 상품의 검수)**

공급된 상품의 검수는 수요자가 하며 그 과정에 나타난 결함에 대한 사고처리는 이 법 제10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한다.

**제119조 (공급된 상품의 숨은 결함처리)**

공급된 상품의 숨은 결함에 대한 사고처리는 이 법 제1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한다.

신용보증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품의 숨은 결함에 대하여서는 상품을 넘겨받은 때부터 3개월안에 책임을 물을수 있다.

**제120조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의 체결)**

수매기관이 국가의 수매계획에 기초하여 농산물을 사들이는 행위는 농업생산물수매계약에 따라 한다.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은 량곡과 원료를 계획적으로 동원하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일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리행하여야 한다.

**제121조 (농업생산물수매계약당사자의 의무)**

농업생산물수매계약에 의하여 생산자는 합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매기관에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매기관은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한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122조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의 합의조건)**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의 당사자는 수매품의 수매기간, 수량, 값, 질, 규격과 보관, 수송방법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23조 (수매품의 질과 규격)**

수매품의 질과 규격은 국가의 수매계획에 따라 정한다.

국가의 수매계획에 지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24조 (수매품의 포장재와 용기)**

수매품의 포장재와 용기는 수매기관이 보장한다.

생산자가 마련하게 된 포장재와 용기는 생산자가 보장한다. 이 경우 그 값은 수매기관이 부담한다.

**제125조 (수매기간)**

계약당사자는 수매기간을 지켜야 한다.

수매기관은 계약한 기간안에 농산물을 수매하지 못하였을 경우 생산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26조 (수매할 농산물의 검사)**

수매기관은 농산물의 질을 정확히 검사하고 그 량을 계량하여 수매하여야 한다.

농산물은 장자나 창고에 넣어 용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수매할수 없다.

**제127조 (수매한 농산물의 보관)**

생산자의 광고나 현지에서 수매한 농산물을 가져가거나 보관할 책임은 수매기관이 진다. 그러나 포장하지 않고 수매한 량곡과 부피가 큰 수매품은 수매기관의 책임밑에 생산자에게 보관시킬수 있다.

**제128조 (기본건설시공계약의 체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의 기본건설계획에 기초하여 기본건설을 위탁하는 행위는 기본건설시공계약에 따라 한다.

기본건설시공계획은 건설을 집중화하며 건설원가를 낮추고 건설물의 질을 높일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29조 (기본건설시공계약당사자의 의무)**

기본건설시공계약에 의하여 시공주는 건설대상을 완공하여 건설주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건설주는 정해진 건설조건을 보장하고 완공된 건설물을 제때에 넘겨받을 의무를 진다.

**제130조 (기본건설시공계약의 합의조건)**

기본건설시공계약의 당사자는 건설대상과 규모, 건설대상의 착공, 완공날자와 당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기본건설시공계약은 계획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건설대상별로 맺는다.

**제131조 (건설조건의 보장)**

건설주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부지와 설계를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부지안의 건물과 시설물을 옮기는 작업은 건설주의 위탁에 의하여 시공주가 할수 있다.

**제132조 (건설대상의 착공 및 완공날자와 조업기일준수)**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착공 및 완공날자와 조업기일을 지켜야 하며 설계와 기술문건대로 공사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33조 (공사실적의 확인)**

건설주는 건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주의 공사실적을 제때에 확인해주어야 한다.

**제134조 (건설물의 인계인수)**

시공주와 건설주는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만을 넘겨주고 받을수 있다.

준공검사는 계약된 공사가 끝나고 조업능력에 해당한 부하시운전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한다.

**제135조 (건설물의 보증)**

시공주는 건설물을 건설주에게 넘겨준 때부터 1년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고쳐줄 의무를 진다. 이 경우 비용은 허물있는자가 부담한다.

**제136조 (화물수송계약의 체결)**

국가의 수송계획에 맞물린 짐을 운수기관을 통하여 나르는 행위는 화물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화물수송계약은 수송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화물수송계약을 질량적으로 수행할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한다.

**제137조 (화물수송계약당사자의 의무)**

화물수송계약에 의하여 짐보내는자는 짐을 운수기관에 넘겨주고 운임을 물 의무를 지며 운수기관은 그 짐을 운반하여 짐받을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진다.

**제138조 (화물수송계약의 합의조건)**

화물수송계약의 당사자는 짐의 이름, 수송량, 보내는 곳과 닿는 곳, 짐을 신고부리는 방법과 보내는자, 받을자의 이름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39조 (짐과 운수수단의 보장)**

짐보내는자는 계약된 짐을 정해진 규격대로 운수기관에 제때에 넘겨주어야 하며 운수기관은 그 짐의 성격에 맞는 운수수단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40조 (짐을 신고부리는 작업)**

짐을 신고부리는 작업은 달리 합의된 것이 없는 한 짐임자가 한다.  
짐을 신고부리는 작업을 맡은 당사자는 정해진 작업기간을 지켜야 한다.

**제141조 (짐의 보관관리)**

운수기관은 짐받을자에게 짐을 넘겨줄 때까지 잘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운수기관은 나르는 짐을 마음대로 쓰거나 남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제142조 (수송기간의 준수)**

운수기관은 가장 합리적인 수송로를 거쳐 적힌 기간안에 짐을 목적지까지 실어날라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짐임자는 더 든 운임의 지불을 거절할수 있으며 늦게 도착한 짐에 대한 연착보상금을 받을수 있다.

**제143조 (도착짐의 통지)**

운수기관은 짐이 도착하면 제때에 짐받을자에게 알려야 한다.  
짐받을자는 도착한 짐을 정한 기간안에 찾아가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보관료나 해당 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현대수송으로 나른 짐에 대한 보관료나 제재금은 짐을 넘겨주는 운수기관이 적용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제144조 (도착짐의 검사)**

짐받을자는 짐을 검사하고 사고가 있으면 운수기관으로부터 사고조서를 받고 해당한 손해보 상을 청구할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사고조서작성을 거절한 운수기관은 그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145조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리지 않은 화물의 수송)**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리지 않은 짐을 운수기관을 통하여 나르는 것은 화물수송계약질서에 따른다.

## 제3장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제146조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의 목적)**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은 국가의 인민적인 시책이 공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며 기 관, 기업소, 단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맺는다.

**제147조 (계약을 체결할수 없는 대상)**

국가의 승인밑에서만 가질수 있는 물건이나 회유금속 그밖의 국가통제품은 계약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제148조 (팔고사기계약의 체결)**

소매상업기업소, 수매기관과 공민사이 또는 공민사이에 물건을 팔고사는 행위는 팔고사기계약에 따라 한다.

팔고사기계약은 인민들의 소비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49조 (팔고사기계약당사자의 의무)**

팔고사기계약에 의하여 파는자는 물건을 사는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지며 사는자는 물건을 넘겨받고 값을 물 의무를 진다.

물건을 파는 것은 그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자만이 할수 있다.

처분권이 없는자가 물건을 판다는 것을 알면서 맺은 팔고사기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150조 (소매계약당사자)**

기업소가 생산하여 공급한 상품에 대한 팔고사기계약에서 파는자로는 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 소매상업기업소는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상품주문서를 만들고 상품을 제때에 확보하여 팔아 주어야 한다.

**제151조 (보증기간에 나타난 결함)**

신용보증기간이 정해진 상품을 산자는 그 기간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상품을 판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

**제152조 (수매계약대상과 당사자)**

국가계획에 있는 농산물, 희유금속과 국가통제품을 제외한 농축산물과 토산물, 원료와 자재, 일반용품을 사들이는 당사자로는 수매기관이 된다.

수매기관은 기본수매품종의 등급기준과 값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수매품을 사들여야 한다.

**제153조 (수매계약기간의 준수)**

수매기관은 계약된 물건을 정해진 기간안에 사들여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수매시키는 자는 해당 물건을 수매기관에 팔수 있으며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다.

**제154조 (수매품의 수송)**

수매품을 수매장소까지 나르는 일은 수매시키는자가 하며 수매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나르는 일은 수매기관이 한다.

수매품의 나르는 일을 앞항과 다르게 계약한 경우 운반을 담당하는 해당 운임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수 있다.

**제155조 (시장에서 팔고사기계약)**

공민이 생산한 농부업생산물은 시장에서만 생산자와 소비자사이에 합의된 값으로 팔고살수 있다.

산 물건을 더 비싸게 되거리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156조 (작업봉사계약의 체결)**

공민이 물건을 만들거나 수리, 가공하거나 그밖의 일을 맡기는 행위는 작업봉사 계약에 따라 한다.

작업봉사계약은 근로자들에 대한 편의봉사를 잘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57조 (작업봉사계약당사자의 의무)**

작업봉사계약에 의하여 작업하는자는 주문받은 일을 하고 그 결과를 작업맡긴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작업맡긴자는 작업결과를 넘겨받고 해당한 봉사료를 물 의무를 진다.

**제158조 (작업봉사계약의 체결시기)**

작업봉사계약은 당사자들이 말로 합의하고 일감을 주고받은 때에 맺어진다.

**제159조 (작업맡기는자의 의무)**

작업맡기는자는 일감을 넘겨줄 때에 요구조건을 알려주면서 기술자료를 함께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작업하는자는 작업기간을 그만큼 연장하거나 작업순차를 뒤로 미룰수 있다.

**제160조 (작업에 필요한 자재, 부속품의 보장)**

작업하는자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한 자재나 부속품을 자기가 부담하여야 한다.

작업맡기는자가 자재나 부속품을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 작업하는자는 그것을 검사하고 결함이 있으면 상대방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161조 (작업대상물의 취급)**

작업하는자는 작업맡기는자가 낸 작업대상을 소중히 다루고 자재, 부속품을 소비기준과 기술 규정의 요구에 맞게 써야 한다.

쓰고남은 자재와 부속품은 작업결과와 함께 작업맡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62조 (작업대상의 구조변경금지)**

작업하는자는 작업대상의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시키거나 작업맡긴자가 낸 작업대상에서 부분품을 뜯어내거나 자재와 부속품을 바꾸어쓰지 말아야 한다.

**제163조 (작업기간의 준수)**

작업하는자는 작업기간을 지켜야 한다.

작업맡긴자는 정해진 기간까지 작업하는자가 작업을 끝내지 못할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다.

**제164조 (작업의 질보장)**

작업하는자는 작업결과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작업하는자는 보증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남의 허물이 아닌 한 책임진다.

**제165조 (작업결과를 넘겨받을 의무)**

작업맡긴자는 작업결과를 제때에 넘겨받아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작업한자는 정해진 보관료를 받을수 있다.

**제166조 (보관계약의 체결)**

물건을 맡기고 보관하는 행위는 보관계약에 따라 한다.

보관계약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상편리와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게 맺고 리행한다.

**제167조 (보관계약당사자의 의무)**

보관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보관하는자는 그 물건을 보관하였다가 보관시킨자에게 들려줄 의무를 지며 물건을 보관시킨자는 그것을 찾고 해당한 보관료를 물 의무를 진다.

**제168조 (보관계약의 체결시기)**

보관계약은 당사자들사이에 말로 합의하고 물건을 보관하는자에게 넘겨주거나 보관하는자가 물건을 넘겨받고 해당한 표식물을 상대방에 내준 때에 맺어진다.

보관계약은 기간을 정하고 맺을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맺을수도 있다.

**제169조 (물건을 보관시키는자의 의무)**

물건을 보관시키는자는 그 물건을 보관하는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을 보관하는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겨 보관물에 생긴 손해와 보관하는자에게 준 손해는 물건을 보관시킨자가 책임이다.

**제170조 (물건을 보관하는자의 의무)**

보관하는자는 계약대로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성질상 관리를 필요로 하는 물건은 성실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보관하는자는 보관물을 관리하는데 들인 비용을 보관시킨자로부터 보상받을수 있다.

**제171조 (업무수행과 관련한 물건의 보관)**

려관, 극장, 회관같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기관은 보관한 물건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 책임진다. 그러나 보관시킨자가 따로 보관한 물건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72조 (보관물을 찾을 의무)**

보관시킨자는 보관물을 제때에 찾아가야 한다.

보관하는자는 보관기간이 지나도록 보관시킨자가 보관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더 높게 정해진 보관료를 받을수 있다.

**제173조 (보관물을 원상대로 돌려줄 의무)**

보관하는자는 보관물을 보관시킨자에게 원상대로 돌려주어야 한다.

봉인하였거나 포장한 물건을 맡았을 경우에는 그대로 돌려주며 내용을 확인하고 물건을 받았을 경우에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제174조 (보관물을 정확히 돌려줄 의무)**

보관하는자는 보관물을 보관시킨 본인에게 정확히 돌려주어야 한다.

물건을 받고 표식물을 내준 경우에는 해당 표식물을 내놓는자에게 물건을 돌려주면 보관의무는 없어진다.

**제175조 (법적의무없이 하는 재산의 보관관리)**

공민은 법적의무없이도 다른 공민이나 국가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보관관리할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을 보관관리하는자는 해당 사실을 재산임자에게 알리고 자기 재산처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그것을 보관관리하는데 들인 비용을 재산임자에게서 보상받을수 있다.

**제176조 (법적의무없이 보관관리하는 재산의 처리)**

법적의무없이 남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자는 불가피하게 그 재산을 처분한 경우 받은 값만큼 재산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77조 (빌리기계약의 체결)**

공민이 도서, 생활용품이나 문화오락기구, 체육기자재 같은 것을 빌리는 행위는 빌리기계약에 따라 한다.

빌리기계약은 인민들의 다양한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78조 (빌리기계약당사자의 의무)**

빌리기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빌려주는자는 빌리는자가 그것을 일정한 기간 리용하도록 넘겨줄 의무를 지며 빌리는자는 사용료를 물고 해당 물건을 리용한 다음 빌려준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진다.

**제179조 (빌리기계약의 형식)**

공민이 도서, 특허물, 록음물, 록화물 같은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빌리는 계약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맺는다.

**제180조 (쓸수 있는 상태의 물건을 빌려줄 의무)**

빌려주는자는 물건을 그 본성에 맞게 쓸수 있는 상태에서 넘겨주어야 하며 결함이 있는 물건을 빌려주는 경우 그 사실을 빌리는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겨 빌린자에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81조 (빌린 물건을 계약조건과 용도에 맞게 쓸 의무)**

빌리는자는 빌린 물건을 계약조건과 용도에 맞게 쓰며 그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빌린 물건의 구조를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빌려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2조 (빌린 물건의 수리)**

빌린 물건의 대수리는 빌려주는자가 하며 중수리는 계약에서 정한자가 하고 소수리는 빌리는자가 한다.

중수리나 소수리를 맡은자가 수리를 제때에 하지 않아 빌린 물건이 심히 손상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제183조 (빌린 물건의 다시 빌려주기)**

빌리기계약에서 빌리는자는 빌린 물건을 빌려준자의 동의밑에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수 있다. 이 경우 빌리는자는 계약의무의 리행에 대하여 빌려준자앞에 책임진다.

**제184조 (보증금을 설정한 빌리기계약)**

보증금을 설정하고 맺은 빌리기계약에서 빌려준자는 빌려준 물건을 반환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수 있다.

**제185조 (위탁계약의 체결)**

기관, 기업소, 단체가 판매, 구매나 그밖의 재산거래를 다른 기관이나 공민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위탁계약에 따라 한다.

위탁계약은 적은 로력과 자금으로 온갖 경제적예비와 잠재력을 동원리용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86조 (위탁계약당사자의 의무)**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받는자는 위탁하는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거래행위를 위탁하는자의 부담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며 위탁하는자는 그 결과를 넘겨받고 해당한 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진다.

위탁계약은 서면으로 맺어야 한다.

**제187조 (위탁받은 행위수행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

위탁하는자는 위탁받은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먼저 상대방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88조 (위탁받은자의 의무)**

위탁받은자는 계약조건에 맞게 위탁받은 행위를 하여야 한다.

위탁받은자가 계약조건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려 할 경우에는 위탁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9조 (위탁받은자에 대한 제3자의 청구권)**

위탁계약과 관계없이 위탁받은자에게 청구권을 가지고있는 제3자는 위탁행위를 위하여 받았거나 위탁한자에게 넘겨주기로 된 돈이나 물건에서 청구권을 실현할수 없다.

**제190조 (유리한 행위결과의 처리)**

위탁받은자는 위탁한자가 요구한것보다 더 유리하게 한 행위의 결과도 다 위탁한 자에게 넘

겨주어야 한다.

**제191조 (위탁행위결과에 대한 보수와 비용의 지불)**

위탁한자는 위탁받은자로부터 행위결과를 제때에 넘겨받고 해당한 보수와 그가 들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92조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재산거래에서 계약규범의 적용)**

이 법에서 규정한 팔고사기계약, 작업봉사계약, 보관계약, 빌리기계약, 위탁계약은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이루어지는 재산거래관계에도 해당하게 적용된다.

**제193조 (려객수송계약의 체결)**

공민이 기차, 자동차, 배, 비행기를 비롯한 운수수단을 리용하여 하는 려행은 렬객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려객수송계약은 인민들의 려행상안전과 편리를 보장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94조 (려객수송계약당사자의 의무)**

려객수송계약에 의하여 손님은 운수기관에 해당 값을 물 의무를 지며 운수기관은 손님을 렬행목적지까지 태워갈 의무를 진다.

려객수송계약은 운수기관이 표에 의하여 해당 운수수단의 리용을 승인해준 때에 맺어진다.

**제195조 (려행조건의 보장)**

운수기관은 운수수단을 리용하는 손님에게 의료봉사, 도중식사를 비롯하여 려행에 필요한 조건과 시설들을 잘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96조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보낼 의무)**

운수기관은 손님을 렬행목적지까지 태워나르지 못하게 된 경우 손님에게 다른 운수수단을 리용할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97조 (표값반환 및 표사용기간의 연장)**

운수기관은 손님이 표값을 정한 기간안에 물리려 하거나 그를 태워갈수 없게 된 경우 해당 표값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손님에게 돌려주거나 표의 사용기간을 늘여주어야 한다.

**제198조 (려행자의 권리)**

려행하는 손님은 학령전어린이를 표없이 데리고 갈수 있으며 정해진 범위안의 짐을 가지고 해당 운수수단에 오를수 있다.

**제199조 (려행질서의 준수)**

손님은 렬행과정에 운수수단과 시설, 비품을 애호하고 제정된 렬행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운수기관은 해당 손님에게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운수수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200조 (저금계약의 체결)**

공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저축하는 행위는 저금계약에 따라 한다.

저금계약은 놓고있는 돈을 경제건설에 효과있게 리용하며 인민생활향상을 도모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01조 (저금계약당사자의 의무)**

저금계약에 의하여 저금하는 공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맡기면 저금기관은 그것을 저금하였다가 저금한 공민의 요구에 따라 내출 의무를 진다.

저금계약은 저금기관이 돈을 받고 저금하는 공민에게 저금증서를 내준 때에 맺어진다.

**제202조 (저금하는 공민의 권리)**

저금계약에서 저금하는 공민은 저금의 종류와 액수를 마음대로 정할수 있다.

저금기관은 저금한 공민의 요구에 따라 이미 받은 저금을 다른 종류의 저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저금기관에 옮겨주어야 한다.

**제203조 (저금하는 돈을 받거나 저금한 돈을 내출 의무)**

저금기관은 공민이 요구하면 어느때든지 저금하는 돈을 맡거나 저금한 돈을 내주어야 한다.

저금기관은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돈을 잘못 내준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04조 (저금의 비밀준수)**

저금기관은 저금의 비밀을 지키고 저금내용에 대하여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205조 (보험계약의 체결)**

공민이 생명, 건강이나 재산에 대하여 보험에 드는 행위는 보험계약에 따라 한다.

보험계약은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손해로부터 인민들을 보호하며 놓고있는 돈을 동원리용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06조 (보험계약당사자의 의무)**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에 든 공민은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물 의무를 지며 보험기관은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 또는 보험금상금을 해당 공민에게 내출 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은 보험기관이 보험에 든 공민에게 보험증권을 내준 때에 맺어진다.

**제207조 (고의적인 보험사고)**

보험에 든 공민이나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는데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보험보상금을 주지 않는다.

**제208조 (허물있는 제3자에 대한 보상청구)**

제3자의 허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을 내준 보험기관은 그에 대한 보상을 제3자에게 요구할수 있다.

제3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에 든 공민은 그 사고결과를 고착시켜야 한다. 이 의무

를 어기면 보험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수 있다.

**제209조 (인체보험료의 납부)**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재해보험 같은 인체보험계약을 맺은 국민은 정해진 기간안에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인체보험에 든 국민이 정해진 기간까지 보험료를 물지 않으면 보험효력이 없어지며 보험료를 물면 그때부터 보험효력이 다시 생긴다.

**제210조 (인체보험금의 지불)**

보험기관은 인체보험에 든 국민이 사망하였거나 로동능력을 잃었을 경우 해당한 보험금을 내주어야 한다.

생명보험과 어린이보험에서는 보험기간이 되고 보험에 든 국민이 보험료를 다 물면 만기보험금을 내준다.

**제211조 (재산보험료의 납부)**

재산보험에 든 국민이 정해진 기간안에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보험사고가 없이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지불된 보험료를 보험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212조 (재산보험사고의 통보)**

재산보험에 든 국민은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곧 보험기관에 알리고 손실을 덜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보험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수 있다.

**제213조 (위임계약의 체결)**

재산거래와 그밖의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행위를 남에게 위임하는 행위는 다른 법적근거가 없는 한 위임계약에 따라 한다.

**제214조 (위임계약당사자의 의무)**

위임계약에 의하여 위임받는자는 위임받은 행위를 위임하는자의 이름과 부담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며 위임하는자는 위임받은자가 위임받은 범위에서 한 행위의 결과를 넘겨받을 의무를 진다.

**제215조 (위임할수 없는 행위)**

양자관계나 유언같이 본인자신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행위는 위임할수 없다.

**제216조 (위임받은 범위의 준수)**

위임받은자는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위임받은 행위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수 있다.

**제217조 (위임받은 행위과정에 생긴 손해의 책임)**

위임받은자는 위임받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 자신의 허물로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위임한자앞에 책임진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의 허물도 없이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위임한자가 책임진다.



**제218조 (위임수행정형의 통보)**

위임받은자는 위임한자의 요구에 따라 위임받은 행위의 수행정형을 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19조 (위임행위에 들인 비용의 보상)**

위임한자는 계약조건에 맞게 위임받은자가 한 행위의 결과를 제때에 접수하고 그가 들인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위임한자는 자기의 허물로 위임받은자가 위임받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20조 (위임계약의 취소)**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위임계약을 어느때든지 취소할수 있다.

계약할 취소는 당사자는 그것으로 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21조 (꾸기계약의 체결)**

공민사이에 돈이나 물건을 꾸어주고 꾸는 행위는 꾸기계약에 따라 한다.

꾸기계약은 무상으로 맺는다.

리자 또는 리자형태의 물건을 주고받는 꾸기계약은 맺을수 없다.

**제222조 (꾸기계약당사자의 의무)**

꾸기계약에 의하여 꾸어주는 공민이 돈이나 물건을 꾸는 공민에게 넘겨주는 경우 끈 공민은 꾸어준 공민에게 액수가 같은 돈이나 종류와 량이 같은 물건을 갚을 의무를 진다.

꾸기계약은 꾸어주는 공민이 돈이나 물건을 상대방에 넘겨준 때에 맺어진다.

**제223조 (꾸기계약리행기간)**

기간을 정하고 꾸기계약을 맺은 경우 꾸어준 공민은 기간이 되어야 꾸어준 돈이나 물건을 갚을 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끈 공민은 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그것을 갚을수 있다.

**제224조 (꾸기계약의 리행대상)**

공민은 끈 돈이나 물건을 정한 기간안에 갚아야 한다.

같은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하고 다른 물건으로 갚을수 있다.

**제225조 (은행대부계약의 체결)**

은행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돈을 꾸어주는 행위는 은행대부계약에 따라 한다.

은행대부계약은 재정규률을 강화하며 화폐자금을 아껴쓰고 그 회전을 촉진시킬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26조 (은행대부계약당사자의 의무)**

은행대부계약에 의하여 은행기관은 대부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화폐자금을 넘겨줄 의무를 지며 대부받는자는 그 자금을 리용하고 원금과 리자를 은행기관에 물 의무를 진다.

은행대부계약은 은행기관이 대부받는자의 신청을 승인하고 대부금을 넘겨준 때에 맺어진다.

**제227조 (대부의 반환원천담보)**

은행대부계약은 대부의 반환원천이 담보되는 조건에서 맺는다.  
대부를 받으려는자는 문건으로 자기의 대부금반환능력을 은행기관에 담보하여야 한다.

**제228조 (대부금을 지정된 항목에 쓸 의무)**

대부받은자는 대부금을 유용하거나 사장랑비하지 말고 지정된 항목에 써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은행기관은 대부금을 기간전에 회수하거나 다음번 대부를 중지할수 있다.

**제229조 (대부금의 반환)**

대부받은자는 원금과 리자를 정해진 기간안에 은행기관에 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날부터 더 높은 룰의 리자를 물어야 한다.

**제230조 (합동작업계약의 체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자자금으로 살림집이나 시설물 같은것을 건설하는 작업을 같이하고 그에 대한 리용권을 나누는 행위는 합동작업계약에 따라 한다.  
합동작업계약은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건설물의 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31조 (합동작업계약당사자의 의무)**

합동작업계약의 당사자는 공동작업에 참가할 의무를 지며 작업참가정도에 따라 작업결과물의 리용권을 나누어 가진다.  
합동작업계약은 서면으로 맺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232조 (합동작업계약의 합의조건)**

합동작업계약의 당사자는 작업대상, 기간, 작업실적의 계산방법, 작업결과물을 나누는 원칙, 합동작업대표의 권한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233조 (합동작업대표의 선출)**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원만히 리행하기 위하여 합동작업대표를 선출한다.  
합동작업대표는 계약당사자의 대표로서 합동작업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234조 (합동작업결과물의 분할)**

합동작업대표는 작업이 끝나면 계약당사자에게 작업실적에 따라 작업결과물을 나누어 리용할데 대하여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4장 부당리득행위

**제235조 (부당리득의 반환의무)**

법적근거없이 남의 손실밑에 부당하게 리득을 얻은자는 그 부당리득으로 하여 손해를 입은자

에게 해당 리득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236조 (부당리득의 반환시기)**

부당리득자는 리득이 부당하다는것을 안 때부터 그 리득에서 생긴 재산을 손해를 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37조 (부당리득의 반환원칙)**

부당리득과 그로부터 생긴 재산은 현물로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로 돌려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값을 물어야 한다.

**제238조 (부당리득재산의 보관관리)**

부당리득과 그로부터 생긴 재산을 돌려준자는 그것을 보관관리하고 돌려주는데 들인 비용을 보상받을수 있다.

**제239조 (돌려받을자를 알수 없는 부당리득의 처리)**

부당리득을 돌려받을자를 알수 없을 경우 부당리득자는 그 리득을 해당 기관에 바쳐야 한다.

## 제4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

### 제1장 민사책임

**제240조 (민사책임조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남의 민사상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자기의 민사상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사책임을 진다. 그러나 같은 소유의 기관, 기업소, 단체라 하더라도 그 소유에 속하는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허물에 대하여서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1조 (허물에 대한 민사책임)**

민사책임은 법이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허물이 있는자가 진다. 계약 또는 법을 어긴자가 자기에게 허물이 없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허물은 그에게 있는것으로 본다.

**제242조 (민사책임의 형태)**

민사책임은 재산의 반환, 원상복구, 손해보상과 위약금, 연체료 같은 제재금의 지불, 청구권의 제한 또는 상실의 형태로 지운다. 이 경우 서로 다른 민사책임형태를 병합하여 지을수 있다.

**제243조 (행위무능력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자가 남의 민사상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민사책임을 지운다.

부모나 후견인의 통제에서 벗어나있는 기간에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를 통제할 의무

를 진자에게 민사책임을 지운다.

**제244조 (부분적행위능력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16살에 이른 부분적행위능력자가 남의 민사상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일으킨 경우 자기 지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그의 부모나 후견인이 민사책임을 진다.

**제245조 (기관, 기업소, 단체성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성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민사책임을 진다.

**제246조 (비법점유재산의 반환)**

남의 건물을 비롯한 재산을 비법적으로 점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재산을 현물로 돌려줄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한 값을 물어야 한다.

**제247조 (재산비법침해의 책임)**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그 재산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재산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주거나 그 값을 물어야 한다.

**제248조 (인신침해의 손해보상)**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사람의 존엄과 명예를 심히 훼손시켜 그의 신체와 인격에 지울수 없는 손상을 남긴자는 시효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249조 (관리하고있는 짐승이 남에게 준 손해의 보상)**

관리하고있는 짐승이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 짐승의 임자나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허물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책임이 떨어지거나 면제된다.

**제250조 (국토환경보호법규위반에 의한 손해의 보상)**

국토와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할데 대한 국가의 법을 영기며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51조 (공동침해행위의 연대적책임)**

여럿이 공동으로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연대적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제252조 (계약위반의 책임)**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을 어긴자는 위약금이나 연체료를 물며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계약을 어긴자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53조 (계약을 양편 당사자들이 위반한 책임)**

계약당사자들이 다같이 맺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자가 해당한 민사책임을 진다.

**제254조 (계약의 변경, 취소시 손해보상)**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는 손해보상을 요구한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55조 (주위환경에 큰 위험을 줄수 있는 대상에 의하여 끼친 손해의 책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위환경에 큰 위험을 줄수 있는 대상을 다루거나 작업을 하는 과정에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 허물이 없어도 민사책임을 진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6조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시 책임면제)**

공민이 정당방위를 위하여 또는 자연재해나 비법침해로부터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7조 (긴급피난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상)**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불가피하게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 그것으로 하여 구원된 재산의 임자는 해를 입은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58조 (민사책임과 행정적, 형사적책임의 관계)**

민사책임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 제2장 민사시효

**제259조 (민사시효의 적용)**

민사상권리의 실현을 보장받기 위한 재판이나 중재의 제기는 민사시효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긴 경우에는 재판, 중재절차에 의한 권리의 실현을 보장받지 못한다.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에 대하여서는 민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260조 (공민이 당사자로 나서는 민사시효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사이 또는 공민사이의 민사시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61조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민사시효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민사시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의 대금청구와 보증금반환청구, 공급한 제품의 규격, 완비성 및 견본의 위반과 파손, 부패변질, 수량부족 그밖의 계약조건위반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보상청구와 위약금, 연체료의 지불청구 및 운수, 체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3개월
2. 앞호이외의 청구에 대하여서는 6개월
3. 대외민사거래와 관련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조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2년

**제262조 (예산제기관, 기업소의 채권에 대한 민사시효기관)**

예산제기관, 기업소의 청구에 대하여서는 민사시효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그 청구권이 발생한 예산년도가 지나면 시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제263조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의 처리)**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은 임자없는 재산으로 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때에 해당 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264조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다음 민사상 의무의 자발적 리행)**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다음 자기의 민사상 의무를 자발적으로 리행한자는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5조 (민사시효기간의 정지)**

민사시효기간의 마지막 3개월안에 자연재해같이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시효기간의 계산은 정지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기간의 계산은 계속된다. 나머지 시효기간이 3개월이 못될 경우에는 3개월까지 연장한다.

**제266조 (민사시효기간의 중단)**

다음과 같은 경우 민사시효기간의 계산은 중단된다.

1. 채권자가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였을 경우
  2. 은행기관을 통한 지불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확인하였을 경우
  3. 공민호상간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사이 혹은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일반계약분쟁사건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였을 경우
- 시효기간이 중단되면 그때부터 시효기간은 새롭게 계산된다.

**제267조 (민사시효기간의 연장)**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청구권을 가진자가 민사시효기간안에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데 대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효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268조 (민사시효의 의무적 적용)**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가 민사시효의 리익을 주장하지 않아도 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269조 (민사시효기간의 시작)**

민사시효기간은 다음과 같은 때부터 시작된다.

1. 리행기간이 지정된 채무에 대하여서는 그 기간이 된 때
2. 리행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서는 채무가 생긴 때
3.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공급한 제품의 규격, 완비성 및 견본의 위반과 파손, 부패변

질, 수량부족 그밖의 계약조건위반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보상청구는 그에 대한 사고조서를 작성하였거나 작성하기로 된 때

4. 그밖의 청구권은 청구권을 실현할수 있게 된 때

**제270조 (민사시효기간의 시작날자)**

민사시효기간은 일간, 월간, 년간으로 정하며 그 계산은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제271조 (민사시효기간이 끝나는 날)**

민사시효기간은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자와 같은 날이 지나면 끝나며 같은 날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달의 마지막날이 지나면 끝난다.

시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 명절일이거나 국가에서 정한 휴식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첫로동일을 시효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민사소송법

|              |         |                              |
|--------------|---------|------------------------------|
| 주체65(1976)년  | 1월 10일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8호로 채택      |
| 주체83(1994)년  | 5월 25일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7호로 수정보충    |
| 주체91(2002)년  | 10월 2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69호로 수정보충 |
| 주체93(2004)년  | 12월 7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8호로 수정보충  |
| 주체94(2005)년  | 10월 25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26호로 수정보충 |
| 주체96(2007)년  | 3월 20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61호로 수정보충 |
| 주체98(2009)년  | 4월 2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호로 수정보충   |
| 주체98(2009)년  | 12월 15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20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4(2015)년 | 12월 23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7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5(2016)년 | 8월 10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45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5(2016)년 | 11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88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6(2017)년 | 11월 1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81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9(2020)년 | 7월 7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1호로 수정보충  |

###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 제1조 (민사소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 국민의 민사상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재판소의 책임성과 소송당사자의 적극성결합원칙)

국가는 재판소의 책임성에 소송당사자의 적극성을 옹계 배합하는 원칙에서 민사소송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 제3조 (민사소송당사자의 권리와 소송행위조건의 보장원칙)

국가는 민사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권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조건을 평등하게 보장한다.

#### 제4조 (민사소송활동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는 원칙)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제5조 (민사소송활동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6조 (민사소송법의 적용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국민들사이에 제기되는 민사상권리, 이익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적용한다.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국민과 다른 나라 법인, 개인들사이 또는 공화국재판소에 제



기된 다른 나라 법인, 개인들사이의 분쟁해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일반규정

### 제1절 민사사건의 취급형식

#### 제7조 (민사사건의 재판권)

민사사건의 재판권은 재판소가 행사한다.

재판소는 제기된 민사사건을 객관적사실과 과학적인 증거, 해당 법규에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처리한다.

#### 제8조 (민사재판소의 구성)

민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소의 구성은 재판소구성법에 따른다.

#### 제9조 (민사사건의 해결방식)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재판소의 판결, 판정으로 해결한다.

#### 제10조 (민사사건조사심리의 기초)

민사사건에 대한 조사심리는 소송당사자나 리해관계있는 제3자 또는 검사의 소송제기에 기초하여 진행한다.

#### 제11조 (민사재판심리의 공개)

민사사건의 재판심리는 공개한다.

국가 또는 공민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재판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재판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 제12조 (조선말사용)

민사사건의 조사심리는 조선말로 한다.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역인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해석인을 붙인다.

다른 나라 사람은 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기 나라 글로 써낼수 있다.

#### 제13조 (변론의 보장)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당사자의 변론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14조 (다른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의 인정)

재판소는 민사재판에서 심리검토하여야 할 사실이 이미 다른 재판에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소송제기의 금지)**

소송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같은 대상에 대하여 같은 근거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2절 재판관할**

**제16조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할 사건)**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중재 또는 행정적절차로 해결하게 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한 재산분쟁사건
2. 리혼사건
3. 자녀양육당사자결정, 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와 관련한 사건
4. 민사상권리와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사실에 대한 확인사건
5. 이밖에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도록 규정한 사건

**제17조 (인민재판소관할)**

시(구역), 군인민재판소는 관할지역안의 시(구역), 군급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당사자로 나서는 민사사건을 재판한다.

**제18조 (도재판소관할)**

도(직할시)재판소는 도급기관, 기업소, 단체나 외국법인, 외국인이 당사자로 나서는 민사사건을 재판한다.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안의 시(구역), 군인민재판소관할에 속하는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은 제2심으로 재판한다.

**제19조 (중앙재판소관할)**

중앙재판소는 각 도(직할시)재판소와 시(구역), 군인민재판소관할에 속하는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도(직할시)재판소와 시(구역), 구인민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도(직할시),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은 제2심으로 재판한다.

**제20조 (군사재판소관할)**

군사재판소는 무력부문산하 기관, 기업소와 군인, 군사기관의 종업원이 당사자로 나서는 민사사건을 재판한다.

**제21조 (피고거주지재판소의 관할)**

민사사건의 재판은 피고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거주지가 서로 다른 여러명의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진행되는 재판은 어느 한 피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제22조** (피고의 임시주소지재판소의 관할)

거주지를 떠나 일정한 기간 사업과 생활을 다른 주소지에서 하고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그 당사자가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할수 있다.

**제23조** (원고거주지재판소의 관할)

다음의 사건은 원고의 거주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재판할수 있다.

1.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개별적공민을 상대로 제기하는 재산청구사건
2. 자녀양육비, 부양료청구사건
3.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생명에 위협을 준것과 관련한 손해보상청구사건
4. 임신한 녀성 또는 1살이 되지 못한 어린이를 가졌거나 여러명의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가 제기하는 사건
5. 교화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사건
6. 소재불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사건

**제24조** (법률행위지, 계약리행지재판소의 관할)

기관, 기업소, 단체의 법률행위로 발생한 사건의 재판은 법률행위지 또는 계약리행지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제25조** (부동산청구사건의 재판관할)

부동산을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은 그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제26조** (수송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건의 재판관할)

짐수송과 관련하여 수송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사건의 재판은 짐이 닿아야 할 곳이나 짐이 닿은 곳 또는 짐을 부친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제27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사건의 재판관할)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사건의 재판은 피고의 거주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제28조** (상속과 관련한 사건의 재판관할)

상속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사건의 재판은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제29조** (해사청구사건의 재판관할)

선박충돌 혹은 기타 해난사고로 인한 손해보상청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사건의 재판은 충돌 발생지, 파괴된 선박의 첫 도착지, 가해선박을 억류한 지역 혹은 피고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사재판소가 한다.

**제30조** (해난구조와 관련한 사건의 재판관할)

해난구조비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사건의 재판은 구조지 혹은 포구조선박의 첫 도착지를 관할하는 해사재판소가 한다.

**제31조 (관할이 다른 당사자의 재판관할)**

관할이 다른 당사자를 함께 재판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상급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면 상급재판소에서,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면 특별재판소에서 재판한다.

**제32조 (맞소송, 제3자가 제기한 사건의 재판관할)**

소송당사자가 맞소송을 제기하거나 제3자가 소송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사건의 재판은 이미 심리를 시작한 재판소가 한다.

**제33조 (사건의 이송)**

재판소는 이 법 제17조-제32조를 어기고 제기한 사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판정으로 그 사건을 해당 재판소에 넘겨야 한다.

재판심리를 시작하였거나 다른 재판소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은 다른 재판소에 넘길수 없다. 그러나 상급재판소나 특별재판소의 관할사건인 경우에는 넘겨야 한다.

**제34조 (상급재판소에 의한 관할지정)**

재판소들사이에 관할권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견은 상급재판소가 해결한다.

**제35조 (재판관할에 대한 의견제기)**

재판소가 사건을 접수한 후 관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답변서제출 기간안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재판소는 당사자가 제기한 의견을 검토하고 해당 재판소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거부하는 판정을 한다.

**제36조 (인민재판소관할사건의 이송)**

시(구역), 군인민재판소는 자기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다른 재판소에 보내어 해결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도(직할시)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재판소에 보낼수 있다.

사건을 다른 도(직할시)안의 재판소에 보내려 할 경우에는 중앙재판소의 승인을 받는다.

### 제3절 소송관계자와 그 배제

**제37조 (민사소송관계자)**

민사소송관계자에는 민사소송담당자와 민사소송관여자가 속한다.

**제38조 (민사소송담당자)**

민사소송담당자에는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집행원, 소송당사자, 사건해결에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속한다.

**제39조 (민사소송관여자)**

민사소송관여자에는 재판서기, 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 립회인과 같은 민사사건의 취

급처리에 관여하는자가 속한다.

**제40조** (소송관계자가 재판에 참가할수 없는 경우)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본인과 가족, 친척이 해당 민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을 경우 그 사건을 취급처리하는 재판에 참가할수 없다.

**제41조** (민사소송임무를 겸할수 없는 사유)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집행원, 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해당 사건의 조사심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입할수 없다.

**제42조**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성원으로 될수 없는 조건)

제1심재판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

**제43조** (한 재판소성원으로 될수 없는 조건)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은 한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

**제44조**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

소송당사자는 이 법 제40조-제4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소에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집행원,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하여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재판에서 사실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45조**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처리)

재판소는 이 법 제40조-제4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을 제외한 그밖의 재판소성원들이 판정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재판소성원들가운데서 한사람이라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바꾼다.
2. 검사, 집행원,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판정으로 해결한다.

## 제4절 소송당사자와 제3자, 대리인

**제46조** (소송당사자인정)

소송당사자능력과 소송대리의 인정은 이 법과 민법 그밖의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47조** (소송당사자의 자격)

소송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재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될수 있다.

소송당사자로 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송상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48조** (여러 사람이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의 당사자선정)

공동의 리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그들을 대표할수 있는 한 사람을 당사자로 선정할수 있다.

**제49조** (소송행위능력이 결여된자의 소송행위)

미성년자, 부분적행위능력자, 행위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법정대리인, 후견인만이 할수 있다.

**제50조**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의 대리인)

판사는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수 없는 경우 판정으로 해당 주민행정기관에 후견인선정을 의뢰하여 대리인을 정한다.

**제51조** (소송당사자의 권리)

소송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소송당사자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신청할수 있으며 재판심리에서 조사심리하여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2. 소송당사자는 재판심리에서 자기의 주장사실을 설명할수 있으며 필요한 신청과 질문을 할수 있다.
3. 원고는 소송제기이후에 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범위를 변경시킬수 있다.
4. 소송당사자는 서로 화해할수 있다.
5. 소송당사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수 있으며 판결의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다.
6. 소송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수 있다.
7. 소송당사자는 재판소성원과 기타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 것을 신청할수 있다.

**제52조** (소송당사자의 의무)

소송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제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재판소의 부름에 제때에 응해야 한다.
3. 재판소앞에서 사실대로 말하여야 한다.
4. 담보처분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아야 한다.
5. 판결, 판정에 지적된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53조** (거주지변동의 통보)

소송당사자는 소송이 제기된 다음 거주지, 소재지를 옮겼을 경우 3일안으로 재판소에 알려야 한다.

제때에 알리지 않아 초래된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진다.

**제54조 (소송당사자의 교체)**

재판소는 원고로 될수 없는자가 제기한 소송이거나 피고로 될수 없는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자격있는 소송당사자로 바꿀수 있다.

**제55조 (소송상권리, 의무와 이전)**

소송이 제기된 다음 민사상권리와 의무가 계약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 지시에 의하여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소송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상권리와 의무는 그것을 계승한 당사자에게 넘어간다. 이 경우 이미 진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제56조 (공동소송당사자)**

소송은 한 당사자 또는 여러 당사자가 한 당사자나 여러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할수 있다. 공동원고나 피고는 소송행위를 다른 공동원고나 피고에게 맡길수 있다.

**제57조 (공동소송당사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공동소송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의 법적효력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원고나 피고가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공동소송에서 민사상권리와 의무가 공동원고나 피고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3. 제2호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원고나 피고들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소송을 중지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 소송의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을 미친다.

**제58조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진 제3자의 소송행위)**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진 제3자는 그 소송당사자를 상대로 이 법 제3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 참가할수 있다. 이 경우 제3자는 원고가 가지는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제59조 (독립적인 청구권이 없는 제3자의 소송참가)**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은 없으나 재판결과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자신의 요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 재판소의 결심에 따라 이미 제기된 사건을 심리하는데 참가할수 있다. 이 경우 판결의 집행을 요구하거나 맞소송을 제기할수 없다.

**제60조 (제3자의 소송참가신청)**

제3자가 이미 진행되고있는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재판소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소는 제3자의 소송참가신청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재판소의 해결)**

재판소는 제3자의 소송참가신청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이 제기된 경우 그것을 심리해결

하여야 한다.

**제62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소송대리인으로는 변호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위임을 받은자, 법정대리인이 될수 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자, 행위능력이 없는자는 소송대리인으로 될수 없다.

**제63조 (소송행위의 방식)**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공민은 소송행위를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한다.

**제64조 (대리의 실현)**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하려는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어야 한다.  
소송행위를 맡은 대리인은 위임장을 재판소에 내야 한다.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소송행위를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한 재판심리조서는 위임장을 대신한다.

**제65조 (위임장의 법적효력)**

위임장은 개별적 공민인 경우 위임하는자의 수표가 있어야 효력을 가지며 기관, 기업소, 단체인 경우 공인명판과 책임자의 수표가 있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66조 (위임장의 내용)**

위임장에는 위임하는자와 위임받는자의 이름, 위임자와의 관계, 거주지, 사건명, 소송제기의 이유와 내용 같은 것을 지적하여야 한다.  
위임하는자는 대리인에게 청구를 포기, 승인하거나 소송당사자와 화해하며 돈 또는 물건을 주거나 받을데 대한 소송행위를 맡기는 경우 그 내용을 위임장에 밝혀야 한다.

**제67조 (대리권의 증명)**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은 증명되어야 한다.  
해당 증명문건은 반드시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 (소송대리권의 변경 및 해소된 경우의 통지)**

소송대리인의 권한이 변경 혹은 해소되면 대리를 위임한자는 서면으로 재판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재판소는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절 증거

**제69조 (증거의 종류)**

증거로는 소송당사자의 말, 증인의 말, 증거문서, 증거물, 감정결과, 검증결과, 시청자료 같은 것이 될수 있다.



**제70조 (소송당사자의 말)**

소송당사자의 말은 제기된 사건의 사실사정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설명이다.

**제71조 (증인의 말)**

증인의 말은 증인으로 선정된자가 사건의 해결에 의의있는 사실을 재판소앞에서 하는 진술이다.

**제72조 (증인의 자격)**

증인으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의의있는 사실을 알고있는자가 될수 있다.

정신병 그밖의 신체상결함으로 해당 사실을 옳게 리해할수 없거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수 없는자는 증인으로 될수 없다.

**제73조 (증인의 권리)**

증인은 알고있는 사실을 직접 써내거나 말로 할수 있으며 진술내용이 잘못 기록된 경우 그에 대하여 고쳐줄 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74조 (증인의 진술의무)**

증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여야 한다.

**제75조 (증거문서)**

증거문서는 그 내용이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문서이다.

**제76조 (증거문서의 제출)**

증거문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을 제출할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대신할수 있다. 대외민사분쟁사건과 관련한 사본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77조 (증거물)**

증거물은 그 외형상 특징이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물건이다.

**제78조 (증거물의 제출)**

증거물은 현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현물로 제출하기가 곤란한 것이 확인된 경우 복제품, 사진 같은것을 낼수 있다.

**제79조 (감정결과)**

감정결과는 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감정인이 감정을 진행하고 얻은 결론이다.

**제80조 (감정의 종류)**

감정에는 법의학감정, 법정신병학감정, 법화학감정, 필적감정, 기술감정, 회계감정, 문서감정, 친자감정, 지적재산에 대한 감정 같은 것이 속한다.

**제81조 (감정의뢰)**

감정은 전문감정기관에서 한다.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국가적자격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자에게 감정을 맡길수 있다.

**제82조 (감정인의 의무)**

감정을 맡은 기관 또는 감정인은 재판소가 의뢰한 감정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감정인은 맡은 감정을 정확히 하고 감정서를 재판소에 내며 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재판심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83조 (감정인의 권리)**

감정인은 감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재판소에 요구할수 있으며 다른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전문일군을 붙여줄 것을 요구할수 있다.

판사의 승인밑에 감정인은 소송당사자와 증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내용을 물어볼수 있으며 현장검증에 참가할수 있다.

**제84조 (감정회피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감정을 회피하는 경우 그로부터 초래된 불리익은 본인이 책임진다.

**제85조 (검증결과)**

검증결과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 물건 또는 문서의 상태와 특징을 조사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집고착한 자료이다.

**제86조 (시청자료)**

시청자료는 USB기억기, 컴퓨터하드디스크 같은 전자매체에 기록되어있는 자료이다.

**제87조 (소송당사자의 주장과 필요한 증거제시)**

소송당사자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며 그에 필요한 증거를 재판소에 내야 한다.

**제88조 (증거제출요구)**

판사는 소송당사자에게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내도록 한다.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당사자에게 다른 증거를 더 내게 할수 있다.

**제89조 (판사의 증거수집)**

판사는 사건내용을 정확히 밝히기 위하여 법이 정한데 따라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수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원인으로 자체로 수집할수 없는 증거나 사건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는 직접 수집할수 있다.

**제90조 (증거수집방법)**

판사는 증거를 균중의 힘과 지혜에 이거하고 과학기술적인 수단과 방법에 기초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제91조 (당사자의 증거수집신청과 그 거부)**

당사자는 사건해결과 관련한 증거수집을 판사에게 신청할수 있다.

판사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사건해결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을 거부할수 있다.

#### 제92조 (비밀의 엄수)

소송관계자는 사건취급처리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 제93조 (소송당사자의 증거제시시기)

소송당사자는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내야 한다. 그러나 사건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증거는 재판심리를 시작한 다음에도 낼수 있다.

소송당사자가 증거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거를 위조하였거나 증거제출에 관한 재판소의 요구에 정당한 리유없이 응하지 않아 초래된 불리익에 대하여서는 그가 책임진다.

#### 제94조 (증거의 수집의뢰)

판사는 관할지역밖에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것을 해당 재판소에 의뢰할수 있다. 해당 재판소는 정당한 리유가 없는 한 의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안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보내야 한다.

#### 제95조 (증인의 소환)

재판소의 부름을 받은 증인은 소환장에 지적된 곳으로 제때에 와야 한다.

증인이 재판소의 부름에 정당한 리유가 없이 응하지 않거나 사건해결에 지장을 줄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를 구인할수 있다.

구인판정의 집행은 사회안전기관이 한다.

사회안전기관은 재판소의 구인판정서등본을 받으면 판정서에 지적된 날자와 시간안에 의무적으로 집행하고 그 결과를 재판소에 회보하여야 한다.

#### 제96조 (증거문서, 증거물의 제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판소에서 요구하는 증거문서나 증거물을 제때에 내야 한다.

외국문증거를 제출하려면 반드시 조선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97조 (증거의 고착)

재판소는 수집된 증거를 조서로 고착한다.

필요에 따라 사진, 녹음, 록화와 같은 방법으로 고착할수 있다. 이 경우 조서에 밝힌다.

#### 제98조 (증거물고착방식)

증거물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였는가에 따라 증거물제출조서, 증거물수집조서, 현장검증조서로 고착한다.

증거물의 특징, 상태를 따로 고착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물검증조서로 고착한다.

#### 제99조 (증거물처리)

재판소는 증거물을 당사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주는 경우 그 사실을 판정서, 판결서에 밝히며 확인서를 받아 근거문건과 함께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0조 (판사의 증거보존)

판사는 증거보존을 미리 하지 않으면 그 증거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멸실되어 재판심리에서 그 증거를 리용하기가 곤란하거나 해당 증인신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거보존을 할수 있다.

#### 제101조 (증거보존의 신청)

소송당사자도 필요에 따라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의 말, 증거문서, 증거물 같은 것을 증거로 보존하여줄것을 판사에게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증거를 수집하고 조서로 고착하여야 한다.

#### 제102조 (증거보존신청시기)

증거보존의 신청은 소송제기전에는 해당 공증기관에, 소송제기후에는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 제103조 (증거보존신청서의 내용)

증거보존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난날, 성별, 사는 곳, 직장직위, 보존할 증거와 그 사유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 제104조 (증거보존기일통지)

해당 공증기관 또는 판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보존을 하는 경우 그 기일을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5조 (증거의 검토)

소송당사자가 내놓았거나 재판소가 수집한 증거는 사실심리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확인되어야 판단과 해결의 기초로 삼을수 있다.

#### 제106조 (증거의 검토방법)

재판소는 수집된 증거자체를 분석하거나 확인한 다른 증거, 새로 수집한 증거와 대조확인하는것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한다.

#### 제107조 (증거의 개별적, 종합적평가)

재판소는 법이 정한데 따라 수집하고 검토확인된 증거를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련관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제108조 (당사자의 주장사실의 평가)

당사자의 주장사실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제6절 소송기간과 문건송달

#### 제109조 (민사사건의 처리기일)

재판소는 민사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제1심사건은 2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

건이 복잡하고 중대하여 2개월안에 처리할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 상급재판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 더 연장할수 있다.  
대외민사분쟁과 관련한 사건은 1년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심과 비상상소심, 재심사건은 1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반송받은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0조 (소송기간의 계산)**

소송기간은 년, 월, 일로 정하며 그것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소송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날의 24시까지로 하며 월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소송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 그런 날이 없을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날이 지나면 끝나는 것으로 본다.  
소송기간이 끝나는 날이 국가적명절이거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로동일이 지나면 끝난다.

**제111조 (소송기간의 연장)**

소송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소송기간을 지체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10일내에 연장된 기간만큼 연장신청을 하며 재판소는 그 이유가 정당한 경우 그 기간을 늘여줄수 있다.

**제112조 (소송문건의 송달기간)**

소송문건은 법이 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내야 한다.

**제113조 (소송문건의 송달)**

소송문건의 송달은 사건을 맡은 판사가 한다.  
소송문건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이 접수하였을 때 송달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114조 (소송문건의 직접송달 및 간접송달)**

소송문건은 송달받을자에게 직접 송달하여야 한다.  
송달받을자가 공민이고 그 본인이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의 성인에게 접수시키며 기관, 기업소, 단체인 경우 그 책임자 또는 기요책임자에게 소송문건을 접수시킨다. 이 경우 송달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115조 (소송문건의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의 송달)**

송달받을자 또는 그와 동거하는 가족의 성인이 소송문건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립회인 2명을 세우고 소송문건을 송달받을자의 거처지에 남겨두면 송달된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송달확인서에 송달인과 립회인이 확인수표를 한다.

**제116조 (우편 및 위탁송달)**

소송문건을 직접 송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우편으로 하거나 다른 재판소에 의뢰하여 송달할

수 있다.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물명수증에 밝힌 접수날이 송달날자로 된다.

**제117조 (교화인을 상대로 한 소송문건의 송달)**

교화인을 상대로 소송문건을 송달하려는 경우 해당 교화소를 통하여 전달한다.

## 제7절 소송비용

**제118조 (소송비용)**

소송비용에는 국가수수료와 사건수속비용이 속한다.

**제119조 (소송비용의 납부)**

소송당사자는 소송진행과 관련하여 국가수수료를 납부하며 필요에 따라 사건수속비용을 바쳐야 한다.

소송비용의 납부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120조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은 원고의 청구를 승인한 경우 피고에게, 거부한 경우 원고에게 부담시킨다.

**제121조 (소송비용부담의 고려)**

재판소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 고려할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소송비용을 나누어 부담시키거나 감소, 면제시킬수 있다.

## 제3장 제1심재판

### 제1절 소송의 제기와 접수

**제122조 (소송제기서의 제출)**

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재판소에 소송제기서를 내야 한다.

**제123조 (소송제기날자의 인정)**

소송은 당사자가 낸 소송제기서를 재판소가 접수한 날에 제기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소송제기서를 우편 또는 기요문서로 보냈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낸 날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124조 (소송제기서의 내용)**

소송제기서에는 재판소의 명칭, 소송당사자의 이름, 나이, 성별, 직장직위, 주소, 청구내용과 그 근거로 되는 사실, 해당한 증거를 밝힌다.

**제125조 (소송제기의 첨부문건)**

소송제기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첨부한다.

1. 피고의 수에 해당하는 소송제기서의 사본
2. 소재불명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는 공증기관의 인증문건
3. 재산을 갈라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목록
4.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5. 문서의 송달에 필요한 우표
6. 국가수수료납부증

**제126조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는 사건)**

다음의 사건은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1. 자녀양육당사자결정, 자녀양육비, 부양료청구사건
2.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생명에 위협을 준것과 관련한 손해보상청구사건
3. 범죄행위로 입은 손해보상청구사건
4. 검사가 제기하는 사건

**제127조 (맞소송의 제기)**

피고는 제기된 소송의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맞소송은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법 제122조, 제124조, 제125조의 절차에 따라 제기한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재판심리를 시작한 다음에도 맞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제128조 (소송제기서의 검토, 불비점퇴치)**

재판소는 원고가 낸 소송제기서를 24시간안으로 검토하고 이 법 제124조, 제125조에 규정된 요구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필요한 기간을 정해주어 불비한 점을 고치게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불비한 점을 고친 경우에는 재판소가 소송제기서를 처음 받은날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소송제기서의 불비한 점을 정해진 기간안에 고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송제기서를 돌려보낸다.

**제129조 (소송의 거부)**

재판소는 제기된 소송의 내용에 이 법 제16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소송의 제기를 거부한다.

**제130조 (소송의 거부에 대한 의견제기)**

소송당사자는 재판소가 소송제기서를 접수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거부한데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10일안으로 한급 높은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재판소는 그것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131조 (사건의 병합, 분리)**

재판소는 자기 결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합치거나 갈라 재판할수 있다.

**제132조 (사건담당판사선정)**

재판소는 당사자로부터 소송제기서를 접수하면 48시간안에 담당판사를 선정하고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제2절 재판준비

**제133조 (재판준비기간)**

재판준비는 재판준비판정을 한 날부터 45일안으로 끝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고 중대하여 제기간에 끝낼수 없는 경우에는 이 법 제109조에 따른다.

판사단독판정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재판준비는 30일안으로 끝내야 한다.

**제134조 (재판준비판정)**

사건을 맡은 판사는 그날로 재판준비판정을 한다.

복잡하고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재판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판정으로 재판준비에 다른 성원을 인입할수 있다. 이 경우 인입된 성원은 소송당사자를 만나거나 감정을 맡기거나 검증에 참가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135조 (소송제기서사본, 답변서의 송달)**

판사는 원고가 낸 소송제기서의 사본을 준비판정을 한 때로부터 2일안으로 피고에게 보내며 그에게 소송제기서사본을 받은 날부터 5일안으로 답변서를 내게 한다.

답변서는 받은 날부터 2일안으로 그 사본을 원고에게 보낸다.

피고가 정당한 리유없이 정해진 기일안으로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 재판준비와 심리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36조 (소송당사자의 소환)**

판사는 재판준비를 위하여 소송당사자를 만날 수 있다.

소송당사자가 재판소의 소환에 정당한 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사건해결에 지장을 줄 경우 그를 구인하는 판정을 할수 있다.

구인판정의 집행은 이 법 제95조 3항과 4항에 따른다.

**제137조 (소송상권리와 의무의 통고)**

소송당사자에게 이 법 제51조-제52조에 지적된 소송상권리와 의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38조 (당사자심문조서의 작성)**

당사자심문조서에는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말한 것을 그대로 적는다. 필요에 따라 당사



자에게 진술내용을 조서에 직접 쓰게 할수 있다.

**제139조 (당사자심문조서의 내용)**

당사자심문조서에는 심문날자와 장소, 판사의 이름, 당사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정당별, 사는 곳, 직장직위, 전화번호, 진술내용, 당사자의 확인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40조 (당사자심문조서내용의 확인)**

판사는 당사자심문이 끝나면 당사자에게 조서를 읽어보게 하거나 읽어준 다음 그가 말한것이 조서에 옳게 씌여졌는가를 물어본다.

조서를 수정, 보충, 삭제하여줄 것을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것이 정당하면 고쳐주며 부당하면 거부하고 조서에 밝힌다.

심문조서에는 당사자의 지장과 판사의 확인도장을 찍는다.

당사자가 심문조서에 지장을 찍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조서에 밝힌다.

**제141조 (증인심문)**

판사는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증인을 심문할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증인에게 거짓말을 하면 법적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42조 (증인심문조서의 작성)**

판사는 증인을 심문한 경우에 이 법 제138조, 제139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3조 (증인심문조서의 내용)**

증인심문조서에는 심문날자와 장소, 판사의 이름, 증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사는 곳, 직장직위, 전화번호, 당사자들과의 관계, 법적책임추궁통고, 진술내용, 증인의 확인내용과 지장, 판사의 도장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44조 (감정의 의뢰)**

판사는 사건내용을 밝히는데 전문지식이 필요할 경우 판정으로 감정을 맡길수 있다.

**제145조 (감정맡김판정서)**

감정을 맡길 경우에는 감정맡김판정서를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보낸다.

감정맡김판정서에는 해명할 내용과 감정에 필요한 자료, 기간,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의 의무, 허위감정을 하면 법적책임을 진다는것을 밝힌다.

감정을 맡길 경우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넘겨준다.

**제146조 (재감정)**

판사는 감정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정으로 다시 감정을 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수 있다.

**제147조 (현지조사)**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현지조사를 할수 있다. 그러나 증인을 맞대어놓고 사실사정을 확증

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148조 (현장검증)**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현장검증을 할수 있다.

현장검증에는 소송당사자를 참가시킬수 있으며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제149조 (현장검증조서작성)**

판사는 현장검증을 하였을 경우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서에는 검증한 차례로 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결과를 써야 하며 소송당사자와 립회인의 지장, 판사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서에는 략도와 사진, 록화물 같은 것을 첨부할수 있다.

**제150조 (증거문서, 증거물의 등록과 고작)**

판사는 증거문서, 증거물을 수집하였을 경우 조서에 고착시켜야 한다.

조서에는 증거문서, 증거물의 이름, 수집장소, 특징을 써야 하며 소송당사자나 증인의 지장, 판사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51조 (재산담보처분의 사유)**

판사는 해당 재산이 없이는 판결의 집행을 보장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담보처분을 한다.

**제152조 (재산담보처분의 시기)**

판사는 사건을 맡은 때부터 판결의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어느 단계에서나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자기의 결심에 따라 판정으로 피고의 재산을 담보처분할수 있다.

**제153조 (재산담보처분의 범위)**

재산담보처분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분쟁물과 청구가 제기된 량만큼 한다.

**제154조 (재산담보처분판정)**

재산담보처분을 하려는 판사는 그 이유를 밝힌 판정을 한다.

판정은 재산담보처분판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55조 (재산담보처분판정서의 내용)**

재산담보처분판정서에는 날자, 판사의 직장과 이름, 사건명, 재산담보처분을 해야 할 사유, 그 심리정형, 민사소송법조항, 판정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56조 (재산담보처분집행의 담당자)**

재산을 담보처분할데 대한 판정의 집행은 해당 재판소 집행원이 한다.

**제157조 (재산담보처분방법)**

재산담보처분은 그 재산이 있는 곳에 한다.

집행원은 담보처분을 하는 경우 자기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재산담보처분판정서를 담보

처분당하는자에게 제시하고 립회인 2명을 세운다.

**제158조 (재산담보처분조서의 작성)**

재산담보처분을 한 집행원은 재산담보처분조서와 2통의 재산목록을 만들어 1통은 재산보관자에게 준다.

재산보관자에게는 담보처분한 재산을 처분하면 해당한 법적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제159조 (재산담보처분의 해제, 취소)**

재판담보처분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증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판정으로 해제 또는 취소한다.

**제160조 (재산담보처분을 할수 없을 경우의 처리)**

재산이 없어 담보처분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 조서를 작성한다.

**제161조 (썩거나 못쓰게 될 재산의 처리)**

담보처분한 재산가운데서 썩거나 못쓰게 될수 있는 물건은 그 이유를 밝히고 이미 내린 판결을 해제한다.

**제162조 (소송의 중지)**

다음의 사유가 제기되면 판정으로 소송을 중지한다.

1. 소송당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소송당사자인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었을 경우
3. 재판, 중재 또는 행정적절차에 따라 취급되고있는 사건이 처리되기 전에는 해당 사건을 해결할수 없을 경우
4. 소송행위를 계속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63조 (중지하였던 소송을 계속할데 대한 판정)**

재판소는 이 법 제162조 1-2호의 경우 소송을 중지한 때부터, 3-4호의 경우 재판준비를 중지한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3개월안으로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판소의 결심에 따라 소송을 계속할데 대한 판정을 하고 소송을 계속한다.

**제164조 (소송취소신청의 승인)**

판사는 원고의 청구포기 또는 소송당사자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소송을 취소시켜줄데 대한 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을 판정으로 승인한다.

**제165조 (사건의 기각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판정으로 사건을 기각한다.

1. 중재, 행정적절차로 처리할 사건인 경우
2. 확정된 판결, 판정이 있는 사건인 경우
3. 소송당사자로 될수 없는자가 원고 또는 피고로 되었으나 그를 자격있는 당사자로 바꿀

수 없는 사건인 경우

4. 소송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의 권리, 의무를 다른자에게 물려줄수 없는 사건인 경우
5.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병사, 사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사건인 경우
6. 피고가 임신중에 있거나 1살에 이르지 못한 어린이를 키우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리혼 사건인 경우
7. 리혼과 관련한 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확정된 때부터 1년이 못되는 리혼사건인 경우
8. 소송행위를 계속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6개월이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을 경우
9. 원고가 재판준비단계에서 30일이 지나도록 재판소의 부름에 정당한 이유가 없이 오지 않거나 옮겨간 주소를 알리지 않아 사건처리기일을 보장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6조 (사건기각판정에 대한 상소)**

재판준비단계에서 내린 사건기각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당사자는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한급 높은 재판소에 상소할수 있다.

**제167조 (중요소송행위에 대한 검사의 참가)**

검사는 중요소송행위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48시간안으로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검사는 중요소송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에게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제168조 (검사의 의견에 대한 판사의 활동)**

검사의 의견을 받은 판사는 사건기록에 그 내용을 밝히고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169조 (재판준비결속)**

판사는 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길수 있도록 재판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준비를 끝낸다.

**제170조 (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서의 작성)**

판사는 재판준비가 끝나면 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한다.

판정서에는 재판심리날자와 장소, 재판심리에 부를 증인, 감정인,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정형 같은 것을 밝힌다.

**제171조 (검사에게 사건기록의 발송)**

판사는 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한 다음 사건기록을 24시간안으로 검사에게 보낸다.

**제172조 (검사의 사건기록검토)**

사건기록을 받은 검사는 사건검토결정을 하고 7일안으로 사건기록을 검토한 다음 사건기록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검토결정서와 함께 사건기록에 첨부하여 보낸다.

**제173조 (재판심리날자와 장소의 통지)**

판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5일전에 검사, 소송당사자 그밖의 소송관계자들에게 재판심리 날자와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74조 (소송행위와 관련한 통지방법)**

재판심리날자를 알리는 것을 비롯하여 소송행위와 관련한 통지는 이 법 제113조-제117조에 따른다.

**제3절 재판심리**

**제175조 (법정 정면장식과 좌석배치, 재판복의 착용)**

법정 정면벽가운데 윗부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을 걸며 그 아래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드리운다.

재판소성원은 법정 주석단자리에, 검사, 재판서기, 소송당사자, 증인을 비롯한 소송관계자는 주석단아래에 앉는다.

재판소성원은 재판할 때 정해진 재판복을 입는다.

**제176조 (재판심리기간)**

재판심리는 5일안에 끝내야 한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하고 중대하여 이 기간에 끝낼수 없는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수 있다.

**제177조 (재판소구성)**

재판심리는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하며 이 경우 재판서기가 참가한다.

신체기능장애자, 소재불명자, 로동교화형을 받고있는자를 상대로 제기된 리혼청구사건과 판결, 판정, 대외경제중재재결의 집행 또는 공증을 받은 채무리행, 공증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건은 판사단독으로 해결할수 있다.

**제178조 (판사단독판정절차)**

판사는 신체기능장애자, 소재불명자, 로동교화형을 받고있는자를 상대로 제기된 리혼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단독판정을 하려는 경우 판정을 내리기 10일전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보낸다. 검사의 사건기록검토는 이 법 제172조에 따른다.

**제179조 (한 사건의 재판심리성원)**

한 사건의 재판심리는 같은 재판소성원으로 한다.

재판심리를 하다가 재판소성원을 바꾸었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

**제180조 (검사의 재판심리참가)**

재판심리에는 검사가 참가한다.

특별한 사유로 검사가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제181조 (재판장의 권한)**

재판장은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재판심리와 소송관계자들의 활동을 지휘하며 그

들이 질서를 지키도록 통제한다.

**제182조 (재판심리과정의 록음)**

재판소는 재판심리의 전과정을 록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심리조서도 작성한다.

**제183조 (재판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재판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 다음 소송당사자를 확인한다.

**제184조 (결석심리 사건기각)**

소송당사자가 재판심리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미룬다. 피고나 제기자 일방이 재판심리에 호출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참가하지 않았거나 자기의 참가없이 재판심리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립회인 2명이 확인한 결석심리신청서를 확인하고 피고의 참가없이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원고가 재판심리에 호출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건을 기각한다. 이 경우 소송을 다시 제기할수 있다.

**제185조 (재판심리에 당사자의 의무적참가)**

재판소는 사건해결에서 재판심리에 당사자의 참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를 의무적으로 참가시켜야 한다.

소송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심리를 회피하는 경우 구인하는 판정을 할수 있다.

구인은 이 법 제95조 3항, 4항에 따른다.

**제186조 (소송상권리와 의무의 통고)**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권리와 의무를 알려준다.

**제187조 (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의 참가정형확인)**

재판장은 재판심리에 부른 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의 참가정형을 확인한다.

증인, 감정인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사와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묻고 재판심리를 계속하거나 미룬다.

통역인, 해석인이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미룬다.

**제188조 (소송관계자의 의견청취)**

재판장은 소송관계자들에게 재판소성원과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알려준 다음 그들을 바꿀데 대한 의견이 없는가를 묻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한다.

**제189조 (새 증거, 그밖의 신청)**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에게 새로운 증거를 내거나 다른 증인을 부르거나 그밖의 신청이 없는가를 묻고 제기된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한다.

**제190조 (재판심리에서 당사자의 증거보충)**

재판준비단계에서 소송당사자가 주장하지 못하였거나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의 경우에

만 재판심리에서 주장하거나 제출할수 있다.

1. 사건해결에 결정적영향을 줄수 있는 증거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판준비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재판소의 직권으로만 조사할수 있는 사실인 경우

**제191조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재판심리중지)**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의 수집같은데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판정으로 재판심리를 미룬다.

**제192조 (사실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사실심리를 시작한다는것을 알린 다음 원고에게 주장하는 사실을 말하게 하고 피고에게 답변을 하게 한다.

**제193조 (사실심리순서의 결정)**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묻고 인민참심원과 합의하여 사실심리순서를 정한다.  
정한 심리순서는 법정에 알린다.

**제194조 (소송당사자에 대한 심리순서)**

소송당사자에 대한 심리는 재판장, 인민참심원의 차례로 하며 그것이 끝나면 소송당사자에게서로 질문하게 한다.

검사, 감정인은 재판장의 승인밑에 소송당사자에게 질문할수 있다.

**제195조 (증인에 대한 심리)**

증인에 대한 심리는 순서에 따라 1명씩 법정에 불러다 한다.

재판장은 먼저 증인이 본인이 틀림없는가, 소송당사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거짓말을 하면 법적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말하게 한다.

**제196조 (증인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질문)**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 증인을 심리하여줄 것을 요구한 소송당사자에게 먼저 질문하게 하며 그 다음 상대편 당사자에게 질문하게 한다.

다른 소송관계자는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증인에게 질문할수 있다.

재판소는 이미 심리한 증인을 다른 증인앞에서 다시 심리하거나 증인을 맞대어놓고 심리할수 있다.

**제197조 (미성년증인에 대한 심리)**

재판소는 미성년을 증인으로 심리할 경우 부모나 후견인 또는 교원 그밖의 보호자를 립회시켜야 한다.

**제198조 (재판심리를 미루는 경우의 증인심리)**

재판소는 재판심리를 미루는 경우 참가한 증인을 심리하고 다음번 재판심리에 부르지 않을 수 있다.

**제199조 (심리받은 증인의 처리)**

증인은 재판심리가 끝나기 전에 정해진 장소를 떠날 수 없다.

재판장은 필요에 따라 소송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심리한 증인을 재판심리가 끝나기 전에도 보낼 수 있다.

**제200조 (수집, 보존한 증거의 검토)**

재판소는 이 법 제94조, 제101조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였거나 증인을 심리한 경우 사실심리에서 그 조서를 읽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201조 (증인의 재심리)**

재판소는 이미 심리한 증인을 자기의 결심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시 심리할 수 있다.

**제202조 (증인심리의 증지)**

재판소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소송당사자와 검사의 의견을 묻고 증인에 대한 심리를 그만둘 수 있다.

**제203조 (감정인의 심리)**

감정인에 대한 심리는 먼저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감정결과를 말하게 한 다음 물어보는 방법으로 한다.

소송관계자는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감정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

감정인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정서를 읽고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04조 (감정의뢰, 재감정)**

재판소는 사실심리과정에 감정을 할 필요가 제기되거나 이미 한 감정을 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판심리를 미루고 판정으로 감정을 맡긴다.

**제205조 (증거물, 증거문서의 심리)**

증거물과 증거문서에 대한 심리는 그것을 법정에 내놓고 해당 당사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06조 (현장검증, 증거자료의 확인)**

재판장은 재판심리과정에 재판소의 위임에 의하여 현장을 검증하거나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서를 만들며 그것은 재판심리에서 검토되어야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207조 (재판심리과정에 나타난 사유의 해결)**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이 법 제162조, 제164조, 제165조에 지적된 사유가 나타났을 경



우, 그것을 심리하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208조 (리혼사건심리에서 해결할 문제)**

재판소는 리혼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녀양육과 관련한 문제와 가정재산을 가르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야 한다.

리혼당사자 일방에게 일정한 기간 부양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양의무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제209조 (소송비용부담문제의 심리)**

재판소는 소송비용과 그 부담문제를 심리하여야 한다.

**제210조 (인민참심원, 검사, 소송당사자의 보충질문)**

재판장은 인민참심원, 검사, 소송당사자에게 더 보충하여 물어보게 한다.

**제211조 (사실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사건의 진상이 전면적으로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소송당사자, 인민참심원, 검사에게 사실심리를 끝마치는데 의견이 없는가를 묻고 인민참심원들과 합의한 다음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제212조 (소송당사자, 검사의 의견청취)**

재판장은 사실심리가 끝난 다음 소송당사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며 검사에게 사건해결과 관련한 의견을 말하게 한다.

소송당사자가 사건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심리를 다시 한다.

**제213조 (소송당사자들의 법정질서준수)**

당사자와 기타 소송관계자는 법정질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재판소는 법정질서를 위반한자에 대하여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법정에서 나가도록 할수 있다.

**제214조 (재판심리종결의 통고, 판결채택의 합의)**

재판장은 재판심리가 끝나면 그에 대하여 소송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인민참심원들과 함께 합의실에서 판결을 합의한다.

## 제4절 판결과 판정

**제215조 (판결의 채택조건)**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채택한다.

### 제216조 (판결채택의 참가성원)

판결의 채택에는 그 사건을 심리한 판사와 인민참심원만이 참가한다.

### 제217조 (판결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

재판소는 판결을 채택할 경우 다음의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1. 소송당사자의 청구사실과 답변이 근거가 있는가
2. 어느 법규범을 적용하며 청구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3. 증거물과 담보처분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4. 위법행위를 한자에게 어떤 제재를 줄것인가
5. 소송비용을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시킬것인가

### 제218조 (판결의 채택방법)

판결의 채택은 재판소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한다.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은 의견서를 낼수 있다. 의견서는 판결을 내릴 때 읽지 않는다.

### 제219조 (판결의 종류)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1. 청구를 승인하는 판결
2. 청구를 거부하는 판결

### 제220조 (담보처분한 재산, 증거문서, 증거물의 처리)

재판소는 담보처분한 재산을 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증거문서, 증거물가운데서 입자에게 돌려주지 말아야 할것은 기록에 붙이거나 몰수하고 그밖의것은 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증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거문건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221조 (소송비용문제의 해결)

재판소는 소송비용을 이 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에 따라 해결한다.

### 제222조 (판결의 채택날자)

판결은 재판심리가 끝나는 날에 내린다.

### 제223조 (판결서의 내용)

판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힌다.

1. 판결을 선고하는 국호, 재판심리날자와 재판소명칭
2. 재판소성원, 재판심리에 참가한 검사,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과 재판심리장소,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정형
4. 소송당사자의 이름과 간단한 신분관계
5. 원고의 청구사실과 피고의 답변

6. 재판소가 인정한 사실과 증거
7. 판결에서 의거한 법규범
8. 청구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결론
9. 담보처분한 재산과 증거물의 처리정형
10. 소송비용의 부담
11. 판결, 판정의 집행방법과 상소, 항의절차

**제224조 (판결의 선고)**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225조 (판결서, 판정서등본의 송달)**

재판소는 판결, 판정을 한 날부터 2일안으로 소송당사자, 재판에서 법적제재를 받은자, 검사에게 판결서, 판정서등본을 보내준다.

**제226조 (살림집리용과 관련한 분쟁의 처리)**

리혼당사자들사이에 국가소유의 살림집리용권과 관련한 분쟁이 제기될 경우 재판소는 판결서등본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인민정권기관에 보낸다.

**제227조 (재판심리조서의 작성)**

재판서기는 재판이 끝난 날부터 3일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심리조서를 만든다.

1. 재판심리날자와 재판소명칭
2. 재판소성원, 재판심리에 참가한 검사,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
4. 재판심리장소,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정형
5. 소송당사자의 이름과 간단한 신분관계
6. 재판심리순서에 따라 재판소가 한 모든 행위
7. 소송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과 그들이 한 말
8. 재판심리과정에 재판소가 내린 판정
9. 소송당사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
10. 검사의 의견

**제228조 (재판심리조서에 대한 소송관계자의 의견과 그 처리)**

소송관계자는 재판심리조서작성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5일안으로 조서를 볼수 있으며 조서에 빠진 것이 있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있을 경우 그것을 고칠데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기할수 있다.

재판장은 제기된 의견이 옳을 경우 판정으로 재판심리조서를 고치게 하며 부당할 경우 판정으로 거부한다.

### 제229조 (재판심리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소송당사자와 사건관계자의 위법행위가 밝혀졌을 경우 해당한 제재를 가한다.

위법행위의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 형사사건으로 처리할데 대한 판정을 하고 위법자료를 검사에게 넘겨준다.

### 제230조 (소송방해에 대한 제재사유)

소송당사자 혹은 사건에 리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재판소는 행위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해당한 법적제재를 가한다.

1. 허위진술, 허위감정을 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위조하거나 없애는 경우
2. 폭력, 위협,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저지시키거나 다른 사람이 허위증언하도록 추기거나 뇌물을 주거나 강박하는 경우
3. 재산담보처분한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치우거나 그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파괴하는 경우
4. 재판일군, 증인, 감정인, 립회인 같은 소송관계자에 대하여 모욕, 구타 혹은 복수하는 경우
5. 폭력, 위협, 혹은 기타 방법으로 재판일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 제231조 (판정의 채택절차)

판정의 채택은 판결의 채택절차에 따른다.

재판심리절차와 관련한 간단한 문제를 처리하는 판정은 재판심리조서에 적어넣는 방법으로 한다.

### 제232조 (제1심재판소 판결, 판정의 취소금지와 변경)

제1심재판소는 이미 내린 판결, 판정을 취소할수 없다. 그러나 자녀양육당사자결정, 자녀양육비, 부양료청구와 관련하여 내린 확정된 판결, 판정은 고칠수 있다.

### 제233조 (판결, 판정의 확정)

판결, 판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확정된다.

1. 상소, 항의기간이 지나도록 상소, 항의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
2. 상소, 항의가 있었으나 제2심재판소가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지지한 경우
3. 상소, 항의할수 없는 판결, 판정을 내린 경우

## 제5절 상소, 항의

### 제234조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

소송당사자와 재판에서 법적제재를 받은자 또는 검사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상소, 항의를 할수 있다.

상소, 항의가 제기되면 그 판결, 판정은 집행되지 않는다.

**제235조 (상소, 항의기간)**

상소, 항의는 판결서, 판정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한다.

상소, 항의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소, 항의를 할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늘여줄수 있다.

**제236조 (상소, 항의할수 없는 경우)**

판결, 판정에 대하여 상소, 항의를 할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판결, 판정이 확정된 경우
2. 중앙재판소 제1심재판에서 채택한 판결, 판정
3. 제2심재판, 비상상소심, 재심에서 채택한 판정

**제237조 (상소, 항의절차)**

상소, 항의를 하려는 소송당사자와 재판에서 법적제재를 받은자 또는 검사는 상소장이나 항의서를 판결, 판정을 내린 제1심재판소에 내야 한다.

소송당사자와 재판에서 법적제재를 받은자가 직접 한급 높은 재판소에 상소하였을 경우 한급 높은 재판소는 5일내로 상소가 제기된데 대하여 원심재판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상소장에는 국가수수료납부증을 첨부한다.

**제238조 (상소장의 내용)**

상소장에는 소송당사자의 이름, 법인의 명칭과 기타 법정대리인의 이름, 제1심재판소의 명칭, 사건의 간단한 내용, 상소의 이유와 요구를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제1심재판소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도 밝힐수 있다.

**제239조 (상소제기의 통지)**

제1심재판소는 상소장을 받으면 3일안으로 상소제기를 상대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0조 (상소장, 항의서의 처리)**

제1심재판소는 상소, 항의기간이 지나면 상소장, 항의서를 해당 사건기록과 함께 5일안으로 한급 높은 재판소나 검찰소에 보내야 한다.

**제241조 (항의의 취소 및 접수)**

항의를 접수한 상급검찰소 검사는 사건기록을 10일안에 검토한다.

항의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항의를 취소할수 있다.

항의리유가 근거가 있으면 같은 급의 재판소에 항의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보내야 한다.

**제242조 (상소의 취소)**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상소한 소송당사자는 제2심재판이 시작되기전까지 그것을 취소할수 있다.

## 제4장 제2심재판

### 제243조 (제2심재판소의 임무)

제2심재판에서는 상소, 항의자료와 사건기록에 근거하여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였는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 제244조 (검사에게 사건기록의 송달)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로부터 상소장, 사건기록을 받으면 24시간안에 검사에게 보낸다. 검사는 사건기록을 접수받으면 10일안에 검토하고 제2심재판소에 돌려보낸다.

### 제245조 (제2심재판소의 사건기록검토)

제2심재판소는 상소, 항의자료에 근거하여 사건기록전반을 검토한다.

### 제246조 (제2심재판심리날자의 통지)

재판심리날자는 제2심재판을 시작하기 3일전에 검사에게 알린다.

### 제247조 (제2심재판소의 구성)

제2심재판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 제248조 (2심재판에 검사의 참가)

제2심재판에는 검사가 참가한다. 그러나 검사가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 제249조 (제2심재판절차)

재판은 판사가 사건보고를 하고 제기된 내용을 심리한 다음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 제250조 (재판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제2심재판심리를 끝낸다는 것을 알린 다음 재판소성원들과 판정을 합의한다.

### 제251조 (제2심판정의 채택형식)

제2심판정의 채택은 재판소성원들의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한다.

### 제252조 (제1심재판소 판결, 판정의 지지)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옳게 내려졌다고 인정되면 그것을 지지하고 상소, 항의를 거부하는 판정을 한다.

### 제253조 (제1심재판소 판결, 판정의 수정)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에서 새로운 증거수집이나 조사를 더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사정을 명백히 밝혀놓고도 판결, 판정을 정확히 내리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고칠수 있다. 그러나 제1심판결, 판정과 반대로 되는 변경은 할수 없다.

**제254조 (사건의 반송판정)**

제2심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할데 대한 판정을 하여 제1심재판소의 재판준비단계 또는 재판심리단계에 보낸다.

1. 재판소구성에서 법을 어긴 경우
2. 사건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
3. 재판심리에서 증거를 조사검토하지 않았거나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기초하였을 경우
4.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권리를 보장하여주지 않았거나 소송당사자로 될수 없는 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사건을 처리한 경우
5. 재판관할을 어긴 경우

**제255조 (사건의 이송판정)**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가 관할을 어기고 채택한 판결, 판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사건을 해당 재판소에 보내는 판정을 한다.

**제256조 (제1심재판소 판결, 판정의 취소, 사건의 기각)**

제2심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이 법 제165조의 사유를 발견하였을 경우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다.

**제257조 (부대판정)**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1심재판의 부족점을 지적하는 판정을 따로 할수 있다.

**제258조 (재판결과의 통지)**

제2심재판소는 재판을 끝낸 날부터 2일안으로 판정서등본을 검사와 상소인에게 보내준다.

**제259조 (반송사건에 대한 재판심리)**

제2심재판소가 돌려보낸 민사사건을 접수한 제1심재판소는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제5장 비상상소심 및 재심

### 제1절 비상상소심

**제260조 (비상상소심의 임무)**

비상상소심의 임무는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났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는것이다.

**제261조 (비상상소의 제기사유)**

비상상소는 사건기록에 법을 본질적으로 어겼다는 것이 나타났을 경우 언제든지 할수 있다.

**제262조 (비상상소의 제기기간)**

비상상소의 제기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제263조 (비상상소의 제기)**

비상상소는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제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비상상소제기서를 만들어 사건기록과 함께 중앙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재판소 소장이 제기한 비상상소사건은 비상상소심을 하기 전에 사건기록을 중앙검찰소에 보낸다.

**제264조 (비상상소제기자의 권한)**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어느 재판소에서 처리한 사건이든지 기록을 요구하며 그 사건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을 해당 재판소를 통하여 정지시킬수 있다.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수 없다.

**제265조 (비상상소제기의 신청)**

재판소, 검찰소는 비상상소제기사유를 알게 된 경우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비상상소를 제기하여줄 것을 신청할수 있다.

소송당사자와 사건해결에 리해관계가 있는자도 해당 재판소 또는 검찰소에 비상상소를 제기하여줄 것을 신청할수 있다.

**제266조 (비상상소제기를 위한 사건기록의 요구)**

재판소와 검찰소는 비상상소의 제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자기 관할안에서 처리된 사건기록을 요구할수 있다.

사건기록에서 비상상소제기사유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의견을 붙여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보내며 그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해당 재판소에 돌려보낸다.

**제267조 (비상상소사건심리재판소의 구성)**

중앙재판소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에서,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회 의에서 심리해결한다.

**제268조 (중앙재판소 판사회의)**

중앙재판소 판사회의는 중앙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한다.

판사회의는 그 성원전원의 3분의 2이상 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판정은 참가한 성원의 다수 가결로 채택한다.



판사회의의 집행은 중앙재판소 소장이 한다.

**제269조 (검사의 비상상소사건심리참가)**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참가한다.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날자는 3일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린다.

**제270조 (비상상소심범위)**

비상상소심에서는 비상상소제기사유에 근거하여 사건의 사실사정을 증명한 증거가 맞는가,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를 어긴것이 없는가와 같은 판결, 판정의 합법성과 근거성을 전면적으로 심리해결한다.

**제271조 (비상상소사건의 심리)**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는 사건보고를 하고 제기된 자료를 검토한 다음 중앙검찰소 소장 또는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제272조 (비상상소사건의 처리)**

비상상소사건은 판정으로 해결한다.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중앙재판소는 이 법 제251조-제257조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제273조 (집행한 재산의 처리)**

중앙재판소는 확정된 판결, 판정이 비상상소심에 의하여 변경, 취소된 경우 집행한 재산에 대한 처리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274조 (판정의 집행시기)**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재판소의 판정은 확정기간이 없이 즉시 집행한다.

**제275조 (비상상소심결과의 통지)**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재판소는 판정을 내린 날부터 2일안으로 비상상소제기를 신청 또는 청원한자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내준다.

## 제2절 재심

**제276조 (재심의 임무)**

재심의 임무는 새로운 사실에 기초하여 확정된 판결, 판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제277조 (재심의 제기사유)**

재심은 다음과 같은 새 사실이 나타났을 경우 확정된 판결, 판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한다.

1.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았던 증거가 거짓이었다는것이 확증된 경우

2. 판결, 판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실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 알려진 경우
3. 소송당사자 또는 재판소성원이 사건해결에 영향을 줄수 있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것이  
확증된 경우
4. 이미 취소된 판결, 판정이나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에 근거하여 판결,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 확증된 경우

#### 제278조 (재심제기기간)

재심제기신청은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안으로 하며 신청서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야 한다.

#### 제279조 (재심의 제기)

재심은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재심의 제기신청이 정당할 경우 재심제기서를 만들어  
사건기록과 조사자료를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재심제기신청이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하는 판정 또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을 돌려보낸다.

#### 제280조 (재심제기자의 권한)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은 재심을 제기하기 위하여 어느 재판소에서 처리한  
사건이든지 기록을 요구하며 그 사건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을 해당재판소를 통하여 정지  
시킬수 있다.

중앙재판소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수 없다.

#### 제281조 (재심신청)

소송당사자 또는 사건해결에 리해관계가 있는자는 재심을 제기하여줄것을 해당 재판소 또는  
검찰소에 신청할수 있다.

해당 재판소와 검찰소도 필요한 경우 재심의 제기를 신청할수 있다.

재심의 제기신청은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에 한다.

#### 제282조 (재심신청의 조사처리)

재심제기신청을 받은 재판소 또는 검찰소는 1개월안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리유가 정당  
할 경우 재심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과 조사자료를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  
소 소장에게 보내며 부당할 경우 거부한다.

#### 제283조 (재심사건기록의 송달)

중앙재판소 소장이 제기한 재심사건은 재심을 시작하기 전에 사건기록을 중앙검찰소에 보낸다.

#### 제284조 (재심재판소의 구성)

재심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재심사건의 심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제285조 (재심날자의 통지)**

중앙재판소는 재심사건의 심리날자를 3일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린다.

**제286조 (재심의 범위)**

재심에서는 재심사유가 판결, 판정을 내릴 당시에 존재하였는가 존재하지 않았는가, 새로운 사실이 사건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가, 가지지 않는가를 심리해결한다.

**제287조 (재심사건의 심리절차)**

재심사건의 심리는 사건보고를 하고 재심제기사유를 검토한 다음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제288조 (재심사건의 처리)**

재심사건을 심리한 중앙재판소는 재심제기의 사유가 정당한 경우 확정된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재판소에 보내여 다시 심리하게 하거나 직접 사건을 기각한다.

재심제기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심제기를 거부하고 확정된 판결, 판정을 지지하는 판정을 한다.

**제289조 (재심판정의 집행시기)**

재심사건을 심리한 재판소의 판정은 확정기간이 없이 즉시 집행한다.

**제290조 (재심결과의 통지)**

재심사건을 심리한 재판소는 판정을 한 날부터 2일안으로 재시제기를 신청 또는 청원한자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낸다.

## 제6장 판결, 판정의 집행

**제291조 (판결, 판정집행의 근거)**

판결, 판정의 집행은 확정된 판결서, 판정서와 같은 법적효력이 발생한 문서와 이에 기초하여 발급된 집행문에 근거한다.

**제292조 (집행문발급의 기초)**

집행문은 확정된 판결서, 판정서와 같은 강제집행의 근거로 되는 법적문서를 기초로 하여 발급한다.

**제293조 (집행문의 종류)**

집행문은 그 발급의 법적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민사판결 및 판정에 근거한 집행문

2. 형사판결 및 판정의 재산부담부분에 근거한 집행문
3. 중재기관의 재결 및 결정에 근거한 집행문
4. 사법협조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체결한 협정에 예견된 외국재판소의 판결 및 판정에 근거한 집행문

**제294조 (판결, 판정의 집행시기)**

판결, 판정의 집행은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한다.

**제295조 (판결, 판정의 집행시효기간)**

판결, 판정의 집행시효기간은 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이다.

공증을 받은 채권확인서와 같은 법적문서인 경우에는 채무리행기간이 끝난 때부터 2개월이다.

**제296조 (판결, 판정집행의 대상)**

판결, 판정집행의 대상에는 판결, 판정에 따라 의무진자의 재산이나 의무리행행위가 속한다.

판결, 판정에 따라 의무진자가 공민인 경우에는 그의 개별재산이나 가정성원들의 개별 혹은 가정재산이 속한다.

**제297조 (판결, 판정집행기간)**

판결, 판정의 집행은 재판소 집행원이 한다.

**제298조 (집행원의 권한)**

집행원은 집행문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 이 경우 검사가 참가한다.

**제299조 (판결, 판정의 집행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판결, 판정집행을 위한 집행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00조 (집행문발급과 그 처리)**

재산청구에 대한 판결, 판정이 확정되면 그 판결, 판정을 내린 재판소의 판사는 자기의 결심 또는 소송당사자, 검사의 신청에 따라 집행문을 발급한다.

집행문 발급에 대한 신청은 집행시효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집행원은 확정된 판결서, 판정서등본과 집행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그것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301조 (집행문발급의 거부)**

재판소는 판결, 판정의 집행시효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집행문발급을 거부할수 있다.

**제302조 (검사에게 집행문송달)**

재판소는 이 법 제300조 1항에 따라 집행문을 발급하는 경우 검사에게 24시간내에 그 등본을 보내야 한다.

**제303조 (의무자에게 판결, 판정의 집행통지)**

집행원은 집행문을 받은 날부터 집행통지서를 작성하여 24시간안으로 의무자에게 보낸다.

집행통지서에는 자발적리행기간을 지적할수 있다.

집행원은 의무자가 자발적리행기간안에 판결, 판정서에 지적된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치를 취한다.

**제304조 (의무자의 재산집행참가)**

집행원은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집행행위를 할 경우 의무자와 립회인을 참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의무자는 집행할 재산에 대하여 지적할수 있다.

**제305조 (집행원의 판결, 판정집행활동)**

집행원은 판결, 판정집행에 앞서 의무자에게 집행문을 제시하여야 한다.

집행에는 반드시 2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한다.

집행원은 의무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날에는 집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306조 (판결, 판정집행보장의 의뢰)**

판결, 판정집행을 방해하거나 그에 반항하는 경우 집행원은 사회안전기관에 판결, 판정집행의 보장을 의뢰할수 있다.

**제307조 (사회안전기관의 판결, 판정집행의무)**

사회안전기관은 재판소의 판결, 판정집행의뢰를 받으면 집행원의 활동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308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집행)**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에 대한 집행은 해당 은행을 통하여 할수 있다.

해당 은행은 집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지적된 기간안에 집행하고 그 정형을 집행원에게 알려야 한다.

재판소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집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채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판정으로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돈자리를 동결시킬수 있다.

그러나 은행을 통한 재산집행을 할수 없을 경우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자금으로 마련한 료전기재, 배, 설비, 원료, 자재와 상품 같은 것을 채무를 리행할 때까지 억류하거나 강제집행에 충당하게 할수 있다.

**제309조 (공민의 사망이나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된 경우의 집행)**

판결, 판정에 따라 의무진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었을 경우에는 그의 권리, 의무를 계승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제310조 (채무의 계속상환의무)**

재판소는 권리자의 강제집행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조치를 취한 다음에도 판결, 판정에 따라

의무진자가 여전히 채무를 상환할수 없는 경우 의무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권리자는 판결, 판정에 따라 의무진자의 기타 재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재판소에 알려야 한다.

**제311조 (판결, 판정집행병합의 경우 집행순위)**

동일한 판결, 판정집행대상에 대하여 여러 권리자들의 집행신청이 동시에 제기된 경우에 그 실현순위는 해당 법에 따른다.

**제312조 (판결, 판정집행의 의뢰)**

판결, 판정에 따라 의무진자나 집행하여야 할 재산이 관할밖에 있는 경우 해당 재판소에 판결, 판정집행을 의뢰할수 있다.

해당 재판소는 의뢰를 접수한 후 검사에게 알리며 30일안에 끝내야 한다.

의뢰받은 재판소가 30일내에 집행하지 않을 경우 의뢰한 재판소가 해당 재판소의 상급재판소에 제기하여 집행을 할수 있다.

**제313조 (재결의 집행)**

재판소는 대외경제중재기관에서 내린 재결에 따라 재결집행신청이 제기된 경우 재결집행신청 문건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신청문건과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판정으로 집행문을 발급한다.

**제314조 (처벌판정의 집행절차)**

재판소는 로동교양처벌, 법기관에 넘기는 판정을 한 경우 판정이 확정된 날부터 2일안으로 해당 기관에 판정서등본을 보내야 한다.

**제315조 (판결, 판정집행의 중지)**

판사는 다음의 경우 판결, 판정집행을 일정한 기간 중지시킬수 있다.

1. 빚을 물어야 할자에게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 있을 경우
2. 공민인 소송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집행의 중지를 신청하였을 경우
3. 재산이 없어서 집행할수 없는 경우
4. 비상상소, 재심이 제기되었을 경우

**제316조 (판결, 판정집행중지기간)**

판결, 판정집행중지기간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317조 (집행한 재산의 처리, 집행조서의 작성)**

집행원은 판결, 판정집행이 끝난 다음 해당 절차에 따라 집행한 재산을 권리자에게 넘겨주며 집행조서를 판사에게 주어야 한다.

**제318조 (판결, 판정집행조서의 내용)**

판결, 판정집행조서에는 조서작성장소, 날자, 집행대상과 그 리유, 집행참가자의 집행조서확인 및 서명, 립회인의 이름과 수표, 집행원, 검사의 이름과 수표가 있어야 한다.

**제319조 (집행할수 없는 재산)**

개인소유재산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집행을 할수 없다.

1. 당사자와 그 가족의 1개월분의 식량과 생활비, 사업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도구, 의류, 부엌세간, 위생문화용품, 학용품, 어린이용품
2. 협동농장원인 경우에는 다음 분배때까지의 식량과 소농기구, 작은 집짐승
3. 장학금, 사회보험보조금, 년금

**제320조 (판결, 판정의 집행에 대한 감시)**

감사는 판결, 판정의 집행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감시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집행이 끝난 날부터 1개월안으로 집행조서를 검토하거나 현지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

**제321조 (판결, 판정집행사건의 기각)**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판결, 판정집행사건을 기각한다.

1. 집행문발급의 기초로 된 판결, 판정이 취소된 경우
2.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판결, 판정집행을 신청하였을 경우
3. 공민인 소송당사자가 판결, 판정집행에 대한 신청을 포기하였을 경우
4. 집행해야 할 재산이 자연재해같은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류실되었거나 못쓰게 되었을 경우
5. 국가적조치로 재산과 관련된 집행을 할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제322조 (판결, 판정집행행위에 대한 의견제기와 그 처리)**

집행원의 판결, 판정집행행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집행원이 속한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재판소는 15일안으로 신청자를 참가시키고 그것을 심리해결하여야 한다.

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당사자는 한급 높은 재판소에 상소할수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

주체91(2002)년 3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82호로 채택

## 제1장 상속법의 기본

### 제1조 (상속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은 상속과 증여, 상속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속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개인소유재산의 상속권보장)

개인소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 제3조 (상속받는자들의 권리평등보장원칙)

국가는 상속받는자들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한다. 그러나 유언에서 상속몹을 따로 정하였거나 법에서 상속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 (독자적생활능력부족한자의 리익우선보장원칙)

국가는 상속에서 독자적인 생활능력이 부족한자의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데 관심을 돌리도록 한다.

### 제5조 (당사자들의 의사존중원칙)

국가는 상속에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그들속에서 리해와 양보, 협력 같은 민족의 고유한 미풍을 구현하도록 한다.

### 제6조 (상속에서 객관성, 공정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상속문제의 취급처리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7조 (상속의 개시)

상속은 상속시키는자의 사망에 의하여 시작된다.  
상속시키는자의 사망에 대한 공증기관의 인증에 의하여서도 상속은 시작된다.

### 제8조 (상속의 수속장소)

상속의 수속은 상속시키는자의 주소지에서 한다.  
상속시키는자의 주소지가 상속수속장소로 불합리할 경우에는 상속시키는자의 재산소재지 또는 사망지에서도 상속수속을 할수 있다.



**제9조 (상속받을수 없는자)**

상속받는자라 하더라도 상속시키는자를 생전에 몹시 학대하였거나 의식적으로 돌보지 않은자, 유언을 위조하였거나 그 근거를 없애버린자, 속임수나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였거나 상속조건을 고의적으로 만든자, 유언에 의하여 상속받지 못하게 된자는 상속받는자로 될수 없다.

**제10조 (행위무능력자의 상속권대리행사)**

행위무능력자의 상속 또는 증여받을 권리는 그의 대리인이 행사한다.

**제11조 (상속시키는자의 재산상권리의무상속)**

상속받는자는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상속시키는자의 개별재산과 재산권리의무를 상속받는다. 부양료를 받을 권리 같은 상속시키는자의 인격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관된 권리는 상속할수 없다.

**제12조 (나눌수 없는 재산의 공동소유사유)**

상속받는자가 여럿인 경우 개인살림집같이 나눌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공동소유로 할수 있다.

**제13조 (상속할수 있는 재산)**

상속할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로동에 의한 분배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2. 국가 또는 사회의 추가적혜택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3. 개인부업경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4. 살림집, 도서, 화폐, 저금,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료전기재
5. 각종 재산상청구권과 채무
6. 그밖에 다른 공민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같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

**제14조 (상속권의 시효)**

상속받는자는 상속권이 침해당한 것을 안 때부터 1년안으로 그것을 회복시켜줄데 대한 청구를 재판기관에 할수 있다. 그러나 시효기간과 관련하여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상속권회복에 대한 청구는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할수 없다.

## 제2장 법정상속

**제15조 (법정상속의 기본요구)**

사망한자의 재산은 법이 정한데 따라 상속된다.  
상속받는자의 신분은 해당 기관에 등록된데 따른다.

**제16조 (법정상속의 조건)**

법정상속을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유언이 없거나 무효로 된 경우
2. 유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을자가 그것을 포기한 경우
3. 유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을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4. 유언에서 지적하지 않은 재산이 있을 경우

**제17조 (법정상속의 순위)**

상속받는자로는 배우자, 자녀, 양자녀, 계자녀, 출생할 자녀, 부모, 양부모, 계부모가 된다.  
 배우자, 자녀, 양자녀, 계자녀, 출생할 자녀, 부모, 양부모, 계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손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향형제자매, 계형제자매가 된다.  
 앞항에 지적된 상속받는자가 없을 경우에는 4촌안의 혈족이 된다.

**제18조 (상속받을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순위)**

상속받는자로 된 자녀가 형제자매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상속시키는자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자녀는 해당 상속순위를 차지한다.

**제19조 (법정상속의 몫)**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받는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에게 차례지는 상속몫은 같다. 그러나 상속시키는자의 생존기간 그에 대한 부양의무를 직접 리행하였거나 로동능력이 부족하여 수입이 적은자의 상속몫은 늘일수 있으며 부양능력이 있으면서 부양의무를 제대로 리행하지 않은자의 상속몫은 줄일수 있다.

**제20조 (법정상속의 승인, 포기)**

상속받는자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때부터 6개월안으로 재판기관에 서면이나 말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신청할수 있다.  
 6개월안으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1조 (재산, 권리의무의 상속)**

상속이 승인된 경우 상속시키는자의 재산과 재산상권리의무는 제한없이 상속된다. 그러나 상속받는자가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한정하여 상속할 경우 상속시키는자의 재산과 재산상권리의무는 계승할수 없거나 제한된다.

**제22조 (채무, 증여의 리행)**

한정하여 상속받는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안에서 상속시키는자의 채무와 유언에 의한 증여를 리행할수 있다.  
 재판기관은 한정하여 상속받는자에게 상속재산목록을 요구할수 있다.

**제23조 (채무리행과 증여재산의 이관)**

한정하여 상속받는자는 상속시키는자의 해당한 채무를 리행하며 증여받게 된자에게 재산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24조 (채권비률에 의한 채무의 이행)**

한정하여 상속받는자는 상속시키는자에게 채권자가 여럿일 경우 그들의 채권비률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협동단체의 채무에 대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시키는자의 채무를 전부 이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유언에 따르는 증여를 이행하지 않는다.

**제25조 (법정상속의 포기)**

상속받는자의 상속포기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발생한다.

**제26조 (포기한 법정상속물의 이전)**

같은 순위의 상속받는자가운데서 상속을 포기한자의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받는자에게 넘어간다.

같은 순위에 있는 모든 상속받는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 몫은 다음순위의 상속받는자에게 넘어간다.

## 제3장 유언상속과 증여

**제27조 (유언에 의한 상속, 증여의 기본요구)**

국민은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유언할수 있다.

유언한 국민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유언에 따라 상속, 증여된다.

**제28조 (유언상속, 증여받는자의 권리)**

유언에 따라 상속받는자로 지정된자는 상속권을 가진다.

유언에 따라 증여받는자로 지정된자는 상속권을 가진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넘겨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유언상속, 증여의 몫)**

유언자는 상속 또는 증여받는자에게 상속, 증여몫을 서로 다르게 정하여 줄수 있다.

**제30조 (유언의 효력)**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과 함께 발생한다.

조건을 붙인 유언의 효력은 그것이 마련된 경우에 발생한다.

**제31조 (유언의 효력상실조건)**

유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는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유언의 효력은 상실된다.

유언상속에서는 대위상속을 할수 없다.

**제32조 (유언상속, 증여의 승인, 포기)**

유언상속 또는 증여받는자는 그것을 승인하거나 포기할수 있다.

유언상속 또는 증여받게 된다는 것을 안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유언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 포기한 재산의 처리는 법정상속절차에 따른다.

**제33조 (증여받을 권리의무의 이전)**

유언에 따라 상속시키는자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증여받은자는 그에 해당하는 권리의무를 넘겨 받는다.

**제34조 (유언자의 자격)**

유언자로는 행위능력이 있는 공민이 된다. 그러나 16살에 이른 직업을 가진자는 자기 수입으로 마련된 재산의 범위안에서 유언할수 있다.

**제35조 (유언의 효력)**

유언은 명백하고 진실한 의사가 반영된것이어야 한다.

속임수, 강박에 의하여 한 유언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36조 (상속받는자가 아닌자에 대한 증여)**

유언자는 법이 정한데 따라 상속받는자가 아닌자에게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할수 있다. 이 경우 상속할 재산을 부양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는 2분의 1이상,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는 3분의 1이상 남겨놓아야 한다.

**제37조 (유언의 방식)**

유언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서면유언은 유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거기에 수표하거나 도장을 찍으며 작성날자를 쓴다.
2. 말로 하는 유언은 유언자가 2명 이상의 립회인을 참가시키고 한다. 이 경우 립회인 1명은 유언내용을 쓴 다음 유언자와 립회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시키고 유언자와 립회인이 수표하게 하거나 도장을 찍게 하고 유언날자를 쓴다.
3. 말로 하는 유언을 녹음할 경우에는 2명 이상 립회인의 말과 유언날자도 녹음한다.
4. 공증유언은 유언자가 2명 이상의 립회인을 참가시키고 공증인앞에서 한다. 이 경우 공증인은 유언내용을 기록하여 유언자와 립회인에게 확인시키고 유언자와 립회인이 수표하게 하거나 도장을 찍게 하며 공증기관의 공인을 받고 유언날자를 기록한다.

**제38조 (유언의 립회인이 될수 없는자)**

유언의 립회인으로 될수 없는자는 다음과 같다.

1. 상속 또는 증여받는자

2. 상속 또는 증여받는자와 친척이 되는자
3. 행위무능력자
4.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자

**제39조 (유언의 무효인정)**

유언의 무효인정은 리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관이 한다.

**제40조 (유언의 취소, 변경)**

유언자는 자기의 유언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할수 있다.

여러차례 한 유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

## 제4장 상속의 집행

**제41조 (상속집행의 기본요구)**

상속시키는자의 사망에 대하여 알게 된 상속받는자는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곧 다른 상속받는자에게 알려야 한다.

모든 상속받는자가 상속시키는자의 사망에 대하여 알지 못할 경우 상속시키는자가 거주하고 있던 지역의 주민행정기관이 상속받는자에게 알린다.

**제42조 (상속집행자의 지정)**

공민은 유산으로 상속집행자를 지정할수 있다. 그러나 유언으로 상속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받는자가 집행자로 한다.

상속받는자는 여럿일 경우에는 그들이 합의하여 상속집행자를 정하고 주민행정기관에 알린다. 상속집행자를 합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주민행정기관이 선정한다.

상속집행자로는 행위능력이 있는자가 된다.

**제43조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집행자는 상속재산을 바로 관리하여 상속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수 있다.

상속받는자와 리해관계자는 상속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4조 (상속집행에 대한 의견제기)**

상속받는자와 리해관계자는 상속의 집행정형에 대하여 알아볼수 있다.

상속의 집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기관에 해당한 청구를 할수 있다.

**제45조 (상속의 통지)**

상속집행자는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상속시키는자의 개별재산과 그와 동거한 가정성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이나 개별재산을 구분하고 상속받는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 (상속의 절차)**

상속재산은 상속시키는자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접수하고 채무를 리행한 다음에야 나눌수 있다.

상속시키는자의 채무를 리행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나눈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몫에 따라 채무를 리행한다.

**제47조 (채권의 증명)**

상속집행자는 상속시키는자의 채권자에게 채권을 증명할데 대하여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증명하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리행을 거절할수 있다.

**제48조 (출생할자의 상속몫)**

상속집행자는 상속재산을 나눌 경우 출생할자의 몫을 남겨놓아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문건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49조 (출생할자의 상속몫처리)**

출생할자의 몫을 남기지 않고 상속을 집행한 경우 상속받은자는 출생한자의 몫을 돌려주어야 한다.

출생하여야 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몫은 다른 상속받는자에게 상속된다.

**제50조 (상속재산관리자의 선정)**

상속받는자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을 경우 주민행정기관은 재산관리자를 선정한다.

상속시키는자가 유언으로 재산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재산관리자는 행위능력으로 공민이나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될수 있다.

**제51조 (상속재산의 관리)**

재산관리자는 상속재산을 자기의 재산처럼 관리하여야 한다.

상속재산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재산관리자가 진다.

**제52조 (상속재산관리자의 권리)**

재산관리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할수 있으며 상속시키는자의 채권을 행사하거나 채무를 리행할수 있다. 그러나 상속시키는자의 채권자, 유언에 따라 증여받게 된자를 전부 확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넘겨줄수 없다.

**제53조 (채권, 증여유언의 접수)**

재산관리자는 상속받는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상속시키는자의 채권이나 증여에 대한 유언을 접수할수 있다.

채권이나 증여에 대한 유언을 접수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상속받는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를 리행하거나 증여할수 있다.

**제54조** (상속재산처리문건의 제출)

재산관리자는 상속재산처리를 끝낸 경우 그 정형을 문건으로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관리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불받을수 있다.

**제55조** (연고자의 선정에 따르는 상속재산분배)

상속, 증여받는자가 없거나 또는 모든 상속받는자가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상속받을 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국고에 납부한다.

**제56조** (연고자의 선정에 따르는 상속재산분배)

재판기관은 상속시키는자와 동거하면서 부양하였거나 또는 부양받았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을 나누어줄수 있다.

**제57조** (의견상이의 해결방법)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외부담방지법

주체109(2020)년 7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5호로 채택  
주체110(2021)년 2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3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세외부담방지법의 기본

### 제1조 (세외부담방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외부담방지법은 세외부담방지를 위한 투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세외부담행위의 정의)

세외부담행위는 사회적과제수행과 지원사업, 꾸리기를 비롯한 각종 명목으로 인민들에게 돈과 물자를 내라고 내리먹이거나 걷어들이는 반인민적, 반사회주의적행위이다.

### 제3조 (세외부담행위의 미연방지원칙)

세외부담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옹호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본태를 지키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모든 사업을 혁명의 전반적리익의 견지에서 정책적요구와 함께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조직하며 사회적과제수행, 지원사업, 꾸리기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장악통제를 강화하여 사소한 세외부담행위도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 제4조 (세외부담행위와의 균중적투쟁원칙)

세외부담행위와의 투쟁을 전사회적, 전군중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은 세외부담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속에 세외부담행위의 위험성과 해독성을 깊이 인식시키며 준법교양을 강화하여 세외부담행위를 없애기 위한 투쟁에 적극 펼쳐나서도록 한다.

### 제5조 (세외부담행위에 대한 처벌원칙)

국가는 세외부담행위를 조직한자, 감행한자, 묵인, 조장한자, 세외부담행위와의 법적투쟁을 하지 않은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따라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 제6조 (해당 법규의 적용)

세외부담행위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처벌법을 비롯한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행정적 및 재정적장악통제

### 제7조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

세외부담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세외부담행위를 근절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담보이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세외부담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 제8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사업조직에서 지켜야 할 요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적과제수행, 지원사업, 꾸리기 등과 관련한 사업을 조직하는 경우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저촉되는 요소나 공간이 없는가 하는것을 잘 따져보고 인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하여야 한다.

사회적과제수행, 지원사업, 꾸리기 등의 명목으로 종업원들로부터 돈과 물자를 비법적으로 걷어들이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9조 (동, 인민반에서의 세외부담행위금지)

동, 인민반은 지원사업, 꾸리기 등과 관련한 사업을 조직하는 경우 주민들의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그들이 자원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며 주민세대들에 몫을 나누어주고 무엇을 언제 까지 내라는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10조 (과학, 교육, 보건, 근로단체기관에서의 세외부담행위금지)

과학, 교육, 보건, 근로단체기관은 사회적과제수행, 지원사업, 꾸리기 등과 관련한 사업이 제기된다고 하여 과학자, 연구사, 교원, 학생, 의사, 동맹원들에게 돈과 물자를 비법적으로 걷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11조 (농장에서의 세외부담행위금지)

농장은 로력과 설비, 영농자재, 자금 같은것을 농사와 관련이 없는 타사업에 동원시키거나 농장원들의 결산분배식량과 자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는 행위, 농장원들에게 사회적과제수행, 지원사업, 꾸리기 등의 명목으로 돈과 물자를 비법적으로 걷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12조 (민간군사훈련부문에서의 세외부담행위금지)

민간군사훈련부문에서는 지방군,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훈련에서 제외시켜주는 대가로 또는 꾸리기 등의 명목으로 훈련생들로부터 돈과 물자를 비법적으로 걷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13조 (직권을 리용한 세외부담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은 직권을 리용하여 세외부담행위를 묵인, 조장시키거나 옹당 해

주어야 할 수속같은것을 해주면서 돈과 물자를 건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공민의 세외부담행위금지)**

학생초급일군, 간호원, 관리원, 운전공 등 일정한 임무를 지닌 공민은 임무수행공간을 리용하여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학생, 환자, 주민들로부터 돈과 물자를 건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5조 (지원물자 또는 지원자금에 대한 비법처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원물자 또는 지원자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거나 사취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6조 (지원물자 또는 지원자금에 대한 재정적장악통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원물자 또는 지원자금을 재정보회에 국가재산으로 등록,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령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은행돈자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정기관, 은행의 임무)**

재정기관은 지원받은 단위가 쓰고 남은 지원물자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여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관, 인수하며 남은 지원자금은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은행은 은행돈자리를 통하여 지원하는 현금을 제때에 해당 단위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8조 (번 자금과 생산물동원질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번 자금과 생산물을 사회적과제수행과 지원사업 등에 동원하거나 접수할 경우 정해진 경제계산체계에 반영하여 처리정형을 통제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번 자금과 생산물을 정해진 경제계산체계에 반영하지 않고 사회적과제수행과 지원사업 등의 명목으로 루락시키거나 망탕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3장 세외부담행위의 조사처리

**제19조 (세외부담행위에 대한 조사처리의 기본요구)**

세외부담행위를 제때에 조사처리하는것은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중요임무이다.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세외부담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20조 (세외부담행위에 대한 료해대책)**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검찰감시, 사회안전단속, 검열감독과정에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사회적과제수행과 지원사업, 꾸리기 등의 명목으로 세외부담을

시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1조 (세외부담행위에 대한 신고 및 신고청원)**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외부담행위가 나타났을 경우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세외부담행위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신고청원을 할수도 있다.

**제22조 (세외부담행위에 대한 조사)**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검찰감시, 사회안전단속, 검열감독과정 에 세외부담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세외부담행위와 관련한 신고 또는 신고청원을 접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 정확히 등록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세외부담행위와 관련한 신고 또는 신고청원을 제때에 접수하지 않거나 깔아뭉개거나 그 처리 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3조 (세외부담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조사한 세외부담행위에 대하여 그 엄중성 정도에 따라 행정처벌을 줄 대상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넘기 며 형벌을 줄 대상에 대하여서는 관할에 따라 해당 법기관에 넘겨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세외부담행위에 대한 조사처리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보장)**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세외부담행위에 대한 조사처리에서 과학 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세외부담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를 부당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4장 세외부담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제25조 (경고, 엄중경고처벌)**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대한 장악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세외부담행위가 나타나게 하였을 경 우에는 해당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을 준다.

**제26조 (무보수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세외부담행위를 조직, 비호, 묵인, 조장하였거나 사회적과제수행, 지원사업, 꾸리기, 동원, 훈련, 외화벌이, 기업관리, 좋은일하기, 판정 및 료해검열 등 각종 명목으로 돈과 물자를 걷 어들인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7조 (로동교양처벌)**

학생초급일군, 간호원, 관리원, 운전공 등 일정한 임무를 지닌자가 임무수행공간을 리용하여

각종 명목으로 돈과 물자를 걷어들였을 경우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8조 (몰수)**

세외부담행위로 이루어진 돈과 물자는 몰수하여 본인들에게 돌려주며 그밖의 돈과 물자는 국고에 납부한다.

**제29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

주체90(2001)년 8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3호로 채택  
주체94(2005)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83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7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1호로 수정

## 제1장 손해보상법의 기본

### 제1조 (손해보상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은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허물있는자의 손해보상원칙)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한데 대하여 허물있는자에게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한다.

### 제3조 (손해의 완전보상원칙)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하여 줄어들었거나 늘지 못하게 된 손해를 완전보상하도록 한다.

### 제4조 (커지는 손해를 막을데 대한 원칙)

재산이나 인신의 침해로 발생된 손해가 커지는 것을 가능한 조건에서 막는 것은 피해자의 의무이다. 이 의무를 어겨 늘어난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은 그만큼 제한된다. 손해가 늘어나는것을 막는데 들인 피해자의 비용은 손해보상액에 첨가할수 있다.

### 제5조 (보관관리자의 손해보상원칙)

맹수나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물질같이 높은 주의를 돌려 보관관리해야 할 대상에 의하여 끼쳐진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관관리할 의무를 진자에게 허물이 없도록 보상책임을 지운다. 피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관관리할 의무를 진자에게 보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 제6조 (재산담보처분의 청구원칙)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당한자는 손해보상을 담보받기 위하여 재판기관에 침해한자의 재산을 담보처분할데 대한 청구를 할수 있다.

재산을 담보처분한것이 근거가 없는것으로 확정되면 그것을 청구한자는 담보처분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제7조** (행정적, 형사적책임을 지는자를 대상한 손해보상청구원칙)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하여 손해를 준자가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제8조** (법의 규제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재산이나 인신을 비법적으로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계약에 기초한 민사거래에서 발생한 손해의 보상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손해보상관계의 당사자

**제9조** (손해보상관계 당사자의 자격)

손해보상관계의 당사자에는 재산이나 인신이 침해된데 대하여 손해보상청구권을 가진자와 손해보상의무를 진자가 속한다.

손해보상청구권자로는 피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또는 그 권리의 계승인이, 손해보상의무를 진자로는 피해를 끼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또는 그 의무의 계승인이 된다.

**제10조** (해산, 병합, 분리의 손해보상청구권자)

해산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손해보상청구권자로는 청산인이, 병합, 분리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손해보상청구권자로는 그 권리를 넘겨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된 공민의 손해보상청구권은 그의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자가 가진다.

**제11조** (대리인의 손해보상청구권)

손해보상청구권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행위무능력자의 손해보상청구권은 부모나 후견인이 행사한다.

**제12조** (손해보상청구권의 포기, 양도, 채무의 상쇄)

손해보상청구권자는 청구권을 포기, 양도하거나 청구액을 줄이거나 자기의 채무와 상쇄할수 있다.

손해보상청구권자가 기관, 기업소, 단체일 경우에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 (행위무능력자의 손해보상)

행위무능력자가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의무는 부모나 후견인이 진다.

이 경우 후견인은 자기 재산이나 관리하고있는 행위무능력자의 재산으로 보상한다.

부모나 후견인의 통제에서 벗어난 행위무능력자의 손해보상의무는 그를 통제할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진다.

**제14조 (부분적행위능력자의 손해보상)**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한 부분적행위능력자는 발생한 손해의 보상의무를 진다. 그러나 지불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손해에 대한 보상의무는 부모나 후견인이 진다.

**제15조 (소재불명자, 사망자의 손해보상)**

소재불명되었거나 사망한자의 손해보상의무는 재산관리인 또는 상속인이 진다. 이 경우 관리하고있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손해를 보상한다.

**제16조 (직무집행자의 손해보상)**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성원이 고정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의무는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손해를 보상한 다음 자기 성원을 상대로 허물정도에 따라 손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제17조 (집집승피해에 의한 손해보상의 의무)**

집집승이 남의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한데 대한 손해보상의무는 임자나 관리자가 진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허물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적게 하거나 하지 않을수 있다.

**제18조 (손해보상몫을 구분할수 없을 경우의 손해보상)**

여러 가해자들의 련관된 행위로 손해보상몫을 구분할수 없을 경우 손해보상청구권자는 임의의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손해를 보상한자는 다른 가해자를 상대로 해당 몫의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 **제3장 재산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제19조 (재산침해에 대한 보상책임의 기본요구)**

재산침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금액으로 계산할수 있는 재산상손해에 대하여서만 진다.

금액으로 계산할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재판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20조 (토지침해의 보상)**

농경지 같은 토지를 침해한자는 원상복구하고 그것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침해된 토지의 원상복구범위와 손해보상의 계산은 국토감독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제21조 (산림침해의 보상)**

산림을 람도별하였거나 산불을 일으킨자는 산림자원의 값과 새로운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한다.

산림자원의 값과 새로운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산림경영지도기관이 정한다.

**제22조 (금지된 대상침해의 보상)**

금지된 기간이나 구역에서 금지된 대상의 동식물을 사냥, 채취하였거나 줄어들게 한자는 해당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국토감독기관이 정한다.

**제23조 (농작물침해의 보상)**

농작물을 침해한자는 경작에 들인 비용을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농업지도기관이 정한다.

**제24조 (명승지, 천연기념물파손의 보상)**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파손시킨자는 해당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이 정한다.

**제25조 (지하자원침해의 보상)**

지하자원을 비법적으로 채취한자는 그 값을 보상한다.

지하자원의 값은 채취공업지도기관이 정한다.

**제26조 (수산자원침해의 보상)**

양어, 양식하는 수산자원을 침해한자는 수산자원의 값이나 양어, 양식에 들인 비용을 보상한다.

금지된 구역에서 어로작업을 하였거나 정해진 어종, 어획량, 어로기간, 어로방법을 어긴자는 해당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수산지도기관 또는 국토감독기관이 정한다.

**제27조 (환경오염의 보상)**

정해진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미광, 버림물, 유해가스 같은 것을 내보내었거나 기름을 류출시켜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킨자는 해당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의무자와 손해보상액은 환경보호감독기관이 정한다.

**제28조 (건물, 시설물파손의 보상)**

건물이나 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그 리용을 방해한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이나 그밖의 손해를 보상한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경영지도기관이 정한다.

**제29조 (전도장치, 기계설비파손의 보상)**

전도장치, 기계설비, 운수수단 같은 재산을 파손시킨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과 그 침해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해당 감독기관이 정한다.

**제30조 (문화유물파손의 보상)**

문화유물을 파손시켰거나 도굴, 밀매, 훔친자는 해당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정한다.

**제31조 (원료, 자재침해의 보상)**

원료, 자재, 반제품 같은 것을 못쓰게 만들었거나 유용하였거나 흠친자는 재산의 값과 그 침해로 발생한 경영상손실을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32조 (상품, 비료 같은 재산침해의 보상)**

상품, 비료, 도서, 농토산물, 집짐승 같은 재산을 침해한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은 재산이 침해되기 전의 소매 또는 수매가격, 판매실현이 가능했던 가격으로 한다.

**제33조 (보험재산침해의 보상)**

보험에 든 재산을 침해당한자는 보험보상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보험보상금을 지불한 보험기관은 가해자로부터 해당한 금액을 보상받을수 있다.

**제34조 (남은 보상재산의 소유)**

침해한 재산의 값을 전부 보상한 가해자는 그 재산의 남은 가치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제35조 (채권증권, 신용결제증권침해의 보상)**

저금, 보험 같은 채권증권이나 행표, 수형 같은 신용결제증권의 거래를 침해하였거나 그것을 위조한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증권침해로 발생한 손해 가운데 피해자의 허물이 있을 경우 손해보상청구권은 그만큼 제한된다.

**제36조 (저작권침해의 보상)**

저작권을 침해하여 재산상손실을 준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저작물을 심의, 편집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였거나 모방한 것이 증명될 경우에도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해당 저작권지도기관이 정한다.

**제37조 (발명, 특허권침해의 보상)**

발명권, 특허권을 침해하여 재산상손실을 준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다른 사람의 발명자료를 도용하여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였거나 제3자에게 넘겨주어 발명권, 특허권을 받게 하였다가 이것이 증명될 경우에도 그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발명행정기관이 정한다.

**제38조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침해의 보상)**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준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이 경우 상표나 공업도안, 원산지명은 해당 기관에 등록된것이어야 한다.

손해보상액은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사업을 담당한 중앙기관이 정한다.

**제39조 (불가피한 재산침해의 보상)**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재산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재산을 침해한 경우에는 구원된 재산의 비율에 따라 그 임자들이 손해를 보상한다. 이 경우 구원된 재산량은 침해된 재산량보다 커야 한다.

## 제4장 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제40조 (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책임의 기본요구)**

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을 침해하여 끼친 손해에 대하여 진다.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였거나 인격, 명예를 침해하여 정신적고통을 준 경우에도 손해보상책임을 진다.

**제41조 (건강침해의 보상)**

사람의 건강을 침해한자는 치료비나 로동에 참가하지 못하여 끼친 수입손실액을 보상한다. 건강회복을 위한 치료를 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한데 대한 치료비는 해당 기관이 받아 국고에 납부한다.

**제42조 (로동능력상실의 보상)**

로동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시킨자는 건강회복을 위한 치료비와 수입손실액, 피해자의 부양을 받던자의 부양료를 보상한다.

**제43조 (수입손실액, 부양료의 보상)**

수입손실액에 대한 손해보상은 피해자의 로동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한다. 부양료에 대한 보상은 미성인인 경우 로동능력을 가질 때까지, 부양을 계속 받아야 할자는 사망할 때까지 한다.

**제44조 (사망의 보상)**

인신침해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에는 생전치료비, 장례비, 부양료 같은것을 보상한다.

**제45조 (양도할수 없는 손해보상청구권)**

인신침해로 발생한 손해보상청구권은 양도할수 없다.

**제46조 (보상하지 않는 인신피해)**

자신이나 제3자의 건강,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자에게 인신피해를 준데 대하여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자신이나 제3자의 인신침해를 직접 막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하며 방위의 범위에서 이루어진것이여야 한다.

## 제5장 손해보상액의 확정과 보상방법

### 제47조 (손해보상액의 확정과 보상방법의 기본요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손해를 제때에 고착시켜야 한다.

손해의 고착은 가해자에게 말로 확인시키거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할수 있다.

확인서작성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인민보안기관에 제기하거나 제3자를 립회시키고 확인서를 작성할수 있다.

### 제48조 (합의에 의한 손해보상액의 확정)

공민의 재산침해에 대한 손해보상액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당사자들사이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액을 침해된 재산의 소매 또는 수매가격 같은것에 기초하여 재판기관이 정한다.

### 제49조 (손해보상액의 계산)

재산침해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이 늘지 못하게 된 손해보상액의 계산은 침해전 3년간 해마다 얻은 이익의 평균으로 한다. 이 경우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전문기관에 손해보상액의 계산을 의뢰할수도 있다.

### 제50조 (손해량이 증명되지 않는 보상액의 계산)

재산침해로 늘지 못하게 된 손해량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손해보상액의 계산은 침해된 재산 값의 5%로 한다.

### 제51조 (인신침해손해보상액의 계산)

인신침해에 대한 손해보상액의 계산은 보건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확인문건에 기초하여 한다.

건강을 침해당한자의 수입손실액계산은 피해를 받기 전 정상적인 근무 6개월간 생활비의 평균으로 할수 있다.

### 제52조 (손해보상액의 재사정제기)

손해보상관계의 당사자는 인신침해와 관련한 손해보상액이 확정된 다음 로동능력 상실정도가 달라질 경우 손해보상액을 다시 정하여줄것을 재판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 제53조 (손해보상청구의 시효)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당한자는 시효기간안에 손해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산이나 인신을 엄중히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시효에 관계없이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제54조 (손해보상의 의무)**

손해보상의무자는 손해를 제때에 보상하여야 한다.

보상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이 조성되는 차제로 보상하여야 한다.

손해보상청구권자는 손해보상의무자의 보상능력이 조성된데 따라 재판기관에 손해보상을 다시 청구할수 있다.

**제55조 (손해보상액의 형식)**

손해보상은 금액으로 한다.

해당 법이나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침해된 재산을 원상복구시키거나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재산으로 보상시킬수도 있다.

**제56조 (의견상이의 해결방법)**

재산이나 인신침해에 대한 손해보상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소송관계법

주체100(2011)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56호로 채택

## 제1장 해사소송관계법의 기본

### 제1조 (해사소송관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소송관계법은 해사소송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당사자들의 해사청구권실현을 원만히 보장하고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쓰이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해사재판이란 해사분야에서 계약위반 또는 기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사건을 해결하는 민사재판의 한 부분이다.
2. 해사재판소란 해사분쟁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해결하는 기관이다.
3. 해사청구란 해상경제활동과정에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이 자기의 합법적리익이 침해된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재산과 관련된 일정한 행위를 수행할데 대한 요구이다.

### 제3조 (해사소송활동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해사소송활동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4조 (해사분쟁사건의 해결방법)

재판적절차로 해결하려는 해사분쟁사건은 해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따라 해결한다.

### 제5조 (공화국법률봉사단체를 통한 해사청구)

다른 나라 당사자가 공화국해사재판소에서 해사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자적 있는 공화국법률봉사단체를 통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나라 당사자는 공화국법률봉사단체를 통하여 해사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 제6조 (해사분쟁사건에 대한 입증책임)

해사분쟁사건해결에서 입증책임은 해사청구권자에게 있다.

### 제7조 (법의 적용)

이 법은 우리 나라 령역에서 제기되는 해사분쟁사건해결에 적용한다.

해사소송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에 따른다.

해당 법규에서 해사소송과 관련하여 규제한 내용이 이 법과 다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관할

### 제8조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사분쟁사건관할)

해사재판소는 다음의 계약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사건에 대한 관할을 가진다.

1. 해상려객 및 짐수송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사분쟁
2. 배의 매매, 건조, 수리, 해체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사분쟁
3. 기간용선, 빈배용선계약 같은 배임대계약 또는 배저당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사분쟁
4. 배 및 배짐대리업무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사분쟁
5. 배운영에 필요한 물자공급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사분쟁
6. 배짐보관 및 배짐작업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사분쟁
7. 해난구조, 배끌기, 난파선제거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사분쟁
8. 배짐보험, 배의 선체 및 기계장치보험, 건조보험, 수리보험, 선주보호 보상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사분쟁

### 제9조 (기타 해사분쟁사건관할)

해사재판소는 계약과 관련이 없는 다음의 행위로 발생한 해사분쟁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1. 배짐수송이나 배짐작업과정에 일어난 인명피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
2. 배충돌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
3. 배에 의한 항시설물, 배길표식물 그밖의 해상 및 해저시설물파손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
4. 배에 의한 오염피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
5. 배에 의한 수산 및 양식어업피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
6. 침몰된 배나 폐기시설물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아 배길리용에 끼친 손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
7. 배나 선원들의 유지비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
8. 해저자원침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
9. 연해, 항수역을 포함한 바다에서의 물고기잡이, 양식같은 수산자원의 개발과 리용, 측량, 탐사, 시설물설치, 해양과학조사, 공동해상손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

### 제10조 (해사분쟁사건종류에 따르는 해사재판소의 관할)

해사분쟁사건은 그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음의 해사재판소가 관할한다.

1. 배충돌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은 충돌발생지, 피해입은 배의 첫 도착항소재지, 피해를 입힌 배의 억류지 또는 배등록주소지의 해사재판소
2. 오염피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은 오염발생지, 피해발생지 또는 피해방지대책을

취하는 지역의 해사재판소

3. 공동해상손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은 배의 첫 도착항소재지, 공동해상손해청산지 또는 항해가 끝나는 지역의 해사재판소
4. 기타 해사분쟁은 법률행위지의 해사재판소

**제11조 (관할의 배제)**

해사재판소는 당사자사이에 해사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할데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12조 (해사중재재결의 집행관할)**

해사중재재결의 집행은 집행대상의 재산소재지나 집행의무를 지닌자 거주지의 해사재판소가 접수처리한다.

해당 지역에 해사재판소가 없을 경우에는 집행대상의 재산소재지나 집행의무를 지닌자 거주지의 도재판소가 접수처리한다.

**제13조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해사분쟁사건관할)**

해사분쟁당사자들이 배짐증권같은 수송문건이나 기타 계약서에 분쟁사건을 우리 나라에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화국해사재판소가 그 관할권을 가진다.

**제14조 (해사청구담보처분에 대한 관할)**

해사재판소는 해사청구담보처분과 관련한 신청이 제기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이에 합의한 중재 및 재판관할에 관계없이 그 관할권을 가진다.

**제15조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이 설립된 경우의 해사분쟁사건관할)**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이 설립되었을 경우 당사자사이에 중재나 재판관할을 따로 합의하지 않은 한 해사분쟁은 기금을 설립한 해사재판소가 관할한다.

## 제3장 해사청구담보처분

### 제1절 일반규정

**제16조 (해사청구담보처분의 구분)**

해사청구담보처분은 해사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해사재판소가 피청구권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리용, 처분하지 못하게 하며 그것을 원상그대로 보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의무지우는 소송상 강제조치이다.

해사청구담보처분에는 배의 억류, 배짐담보처분 같은 것이 속한다.

**제17조 (해사청구담보의 형식)**

피청구권자는 해사청구담보로 돈이나 물건, 선주보호보상기관의 담보서 같은 것을 해사재판소에 내야 한다. 다른 나라 선주보호보상기관의 담보서를 내는 경우에는 공화국선주보호보상기관의 덧보증을 내야 한다.

해사청구담보의 형식은 해사청구권자와 피청구권자의 합의에 따라 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사재판소가 정한다.

**제18조 (해사청구담보제공의 법률적효과)**

해사청구담보의 제공은 피청구권자의 책임에 대한 인정으로 되지 않는다.

**제19조 (해사청구담보의 범위)**

해사청구권자가 피청구권자에게 요구하는 담보물의 값은 청구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제20조 (부당한 해사청구담보처분에 대한 손해보상)**

해사청구권자는 해사청구담보처분을 잘못 신청하여 피청구권자나 리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보상액은 담보처분된 재산을 법이 정한 기간에 리용하여 얻을수 있었던 순리익을 초과할수 없다.

**제21조 (해사청구담보처분판정에 대한 의견제기)**

해사청구담보처분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자는 5일안으로 해당 해사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해사재판소는 그것을 검토하고 해사청구담보처분판정을 취소하거나 제기된 의견을 거부할수 있다.

의견을 접수처리하는 기간에도 해사청구담보처분판정의 집행은 보류되지 않는다.

## 제2절 배의 억류와 강제판매

**제22조 (배억류신청)**

해사청구권자는 해사청구실현을 위하여 해사재판소에 배억류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배억류신청은 해사소송을 제기하기전이나 후 임의의 단계에서 배가 있는 항구지역의 해사재판소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억류대상의 배가 현재 항구에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견하고 그 배가 들어올수 있는 항구지역의 해사재판소에 배억류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앞항 후단의 경우에 따르는 배억류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3조 (배의 억류판정)**

해사재판소는 배억류신청을 접수하면 그것을 제때에 검토하고 억류대상의 배가 출항하기전에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



배역류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집행문을 발급한다.

#### 제24조 (배의 역류조건)

배의 역류는 다음의 해사청구를 근거로만 할수 있다.

1. 배의 운영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나 재산적손해와 관련한 해사청구
2. 해난구조와 관련한 해사청구
3. 배에 의한 환경파괴와 관련한 해사청구
4. 침몰, 난파, 좌초, 포기된 배와 배짐의 견져내기, 제거, 복구, 해체 기타 위험성제거에 드는 비용과 그러한 배와 선원들의 유지비용과 관련한 해사청구
5. 배의 리용합의를 위반한것과 관련한 해사청구
6. 려객 또는 배짐수송합의를 위반한것과 관련한 해사청구
7. 배짐손해와 관련한 해사청구
8. 공동해상손해와 관련한 해사청구
9. 배끌기, 배길안내, 배운영, 관리, 유지, 봉사에 드는 비용과 관련한 해사청구
10. 배건조, 재건조, 수리, 구조변경 또는 장비설치에 드는 비용과 관련한 해사청구
11. 항, 운하, 도크, 부두, 갑문의 리용에 드는 비용과 관련한 해사청구
12. 선원생활비, 귀국비, 사회보험료같은 선원에게 지불하는 비용과 관련한 해사청구
13. 배나 배임자를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과 관련한 해사청구
14. 배보험료나 선주보호보상기관의 부조금과 관련한 해사청구
15. 배임자나 빈배용선자를 위하여 지불하는 수수료, 중개비, 대리비와 관련한 해사청구
16. 공동소유자들사이 배의 리용이나 수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해사청구

#### 제25조 (역류대상의 배)

이 법 제24조의 조건으로 역류할수 있는 배는 다음과 같다.

1. 해사청구에 책임있는 당사자가 소유한 배
2. 해사청구에 책임있는 빈배용선자가 임대한 배
3. 저당에 든 배
4. 소유권이나 점유권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배
5. 우선적해사청구가 제기된 배

#### 제26조 (배역류금지사항)

이 법 제24조와 제25조의 조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청구권자의 기본영업장소 또는 배를 제외한 재산이 공화국령역에 있을 경우에는 배를 역류할수 없다.

#### 제27조 (배의 역류기간)

배의 역류기간은 배를 역류한 날부터 30일이다. 그러나 해사청구권자가 배역류기간이 끝나

기전에 중재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 또는 소송단계에서 배역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28조 (배역류판정의 집행)**

배역류판정의 집행은 해사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필요에 따라 해사재판소는 해당 권한있는 기관에 배역류판정집행문을 보내어 배역류판정을 집행하게 할수도 있다. 이 경우 배역류판정집행문을 받은 기관은 배역류판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29조 (배역류판정의 집행시 배문건압수)**

해사재판소는 억류한 배의 모든 문건을 압수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리해관계자는 해사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압수한 배문건을 열람하거나 복사할수 있다.

**제30조 (배역류신청 및 집행비용)**

배역류를 신청하는 해사청구권자는 신청 및 집행에 드는 비용을 사전에 해사재판소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31조 (배의 억류판정해제)**

해사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배역류판정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배의 억류판정을 내린 날부터 30일안으로 해사청구권자가 중재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2. 해사청구권자가 배역류판정의 해제를 제기하였을 경우
3. 피청구권자가 청구권자에게 해사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4. 배가 강제판매되었을 경우

**제32조 (배의 재억류금지)**

피청구권자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 배의 억류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해사청구와 관련하여 억류하였던 배를 다시 억류할수 없다. 그러나 이미 제공된 담보의 성격과 금액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채무리행의 담보자가 그 리행을 할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를 다시 억류할수 있다.

**제33조 (배강제판매의 신청과 판정)**

해사청구권자는 배역류기간이 다 되도록 피청구권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억류된 배의 관리유지를 잘하지 못할 경우 배역류판정을 한 해사재판소에 그 배의 강제판매를 신청할수 있다.

해사재판소는 배의 강제판매신청을 접수하면 그것을 제때에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

**제34조 (배의 강제판매에 대한 통지)**

해사재판소는 배의 강제판매판정을 내린 경우 배를 강제판매하기 30일전에 그에 대하여 배 등록국의 등록기관과 이미 알고있는 우선적해사청구권자, 배의 저당권자와 배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제판매할 배의 이름, 강제판매하는 날자와 시간, 장소, 리유같은 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35조 (배강제판매위원회의 조직)**

해사재판소는 배의 강제판매를 위하여 배강제판매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배강제판매위원회는 해사재판소의 집행원과 해당 전문기관의 배감정원을 포함하여 3~5명을 구성한다.

**제36조 (강제판매하는 배에 대한 구매신청)**

강제판매하는 배를 사려는자는 강제판매통지서에 밝힌 기간안에 배강제판매위원회에 구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의 강제판매형식에 따라 배강제판매위원회가 요구하는 문건과 리행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내야 한다.

**제37조 (강제판매된 배의 넘겨주기)**

해사재판소는 강제판매대상의 배를 사려는자가 해당한 배값을 전부 지불하면 그 배를 모든 배문건과 함께 구매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 제3절 배짐담보처분

**제38조 (배짐담보처분의 신청과 판정)**

해사청구권자는 해사청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해사재판소에 배짐담보처분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배짐담보처분신청을 접수한 해사재판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안으로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

**제39조 (담보처분대상의 배짐)**

담보처분대상으로 될수 있는 배짐은 다음과 같다.

1. 해사청구권자가 점유하지 않은것으로서 피청구권자의 소유로 되어있는 배짐
2. 해사청구권자가 류치하고있는 배짐

**제40조 (담보처분기간)**

배짐의 담보처분기간은 배짐을 담보처분한 날부터 15일이다. 그러나 해사청구권자가 배짐담보처분기간이 끝나기전에 중재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 도는 소송단계에서 배짐담보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41조** (담보처분판정집행의 담당자)

배짐담보처분에 대한 판정의 집행은 해사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필요에 따라 해사재판소는 세관 또는 해당 권한있는 기관에 집행문을 보내어 배짐담보처분판정을 집행하게 할수도 있다. 이 경우 배짐담보처분판정집행문을 받은 기관은 배짐담보처분판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42조** (배짐담보처분의 해제)

해사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배짐담보처분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배짐담보처분판정을 내린 날부터 15일안으로 해사청구권자가 중재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2. 해사청구권자가 배짐담보처분판정의 해제를 제기하였을 경우
3. 피청구권자가 청구권자에게 해사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4. 배짐이 강제판매되었을 경우

**제43조** (배짐강제판매신청)

해사청구권자는 다음의 경우 배짐강제판매신청을 해사재판소에 제기할수 있다.

1. 배짐담보처분기간안에 피청구권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2. 담보처분된 배짐이 쉽게 부패변질될수 있을 경우
3. 담보처분된 배짐의 보관비용이 배짐가격을 초과할 경우

**제44조** (배짐강제판매판정)

해사재판소는 배짐의 강제판매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7일안으로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

**제45조** (배짐강제판매판정의 집행절차)

배짐의 강제판매절차는 이 법 제34조~제37조에서 규정한 배강제판매절차에 따른다.

## 제4장 해사청구의 책임제한

**제46조** (해사청구의 책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의 해사청구에 대하여서는 피청구권자의 요구에 따라 해사청구책임을 제한할수 있다.

1. 배에서 일어났거나 배의 운영 또는 구조작업과정에 발생한 인명피해나 재산적손실과 관련한 해사청구
2. 배짐, 려객과 손짐의 해상수송이 지연된 결과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해사청구
3. 침몰, 손실, 손상, 좌초, 포기된 배와 배짐의 건져내기, 제거, 파괴 기타 위험성제거와 관련한 해사청구

4. 배우에서 짐의 제거, 파괴 기타 위험서제거와 관련한 해사청구
5. 손해에 책임있는 당사자가 손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해사청구

**제47조 (해사청구책임제한의 법률적효과)**

해사청구책임제한을 요구하는 행위는 피청구권자의 책임에 대한 인정으로 되지 않는다.

**제48조 (해사청구책임제한신청)**

해사청구책임제한을 요구하는자는 해사재판소에서 해사청구책임제한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해사청구책임제한액수와 리유, 이미 알고있는 리해관계자의 이름, 주소, 통신수단, 해사청구와 관련한 증거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49조 (해사청구책임제한신청에 대한 의견제기)**

피청구권자의 해사청구책임제한신청에 의견있는 리해관계자는 그 신청이 제기된 날부터 30일안으로 해사재판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제50조 (해사청구책임제한판정)**

해사재판소는 해사청구책임제한신청을 접수하면 그것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

해사청구의 발생원인이 피청구권자가 해당 손해를 고의적으로 일으킨 행위 또는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임한 행위에 있을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승인할수 없다.

**제51조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의 설립)**

해사청구책임제한신청자는 책임제한이 승인되었을 경우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을 소송제기 전이나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해사재판소에 내야 한다.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은 해사재판소가 접수할수 있는 돈이외의 담보를 제공하여 설립할수도 있다.

## 제5장 채권등록과 청산수속

**제52조 (채권의 등록신청)**

배나 배짐의 강제판매,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의 설립과 관련한 판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법이 정한 기간안에 해사재판소에 강제판매되는 배 및 배짐 또는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과 관련된 채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한 기간안에 채권등록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53조 (채권을 등록)**

해사재판소는 채권등록신청을 접수하면 그것을 7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채권등록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등록한다.

**제54조 (채권자회의소집)**

해사재판소는 피청권자가 진 채무를 심의하고 확인한 다음 채권자들에게 통지하여 채권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5조 (강제판매수익금 또는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의 분배안토의)**

채권자들은 채권자회의에서 배나 배짐의 강제판매로 이루어진 수익금 또는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의 분배안을 토의하고 손해보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할수 있다.

**제56조 (강제판매수익금 또는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의 분배안에 대한 해사재판소의 결정)**

채권자회의에서 강제판매수익금 또는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의 분배안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이 정한 해사청구권순위에 따라 해사재판소가 결정할수 있다.

**제57조 (수익금과 리자의 분담방법)**

배나 배짐의 강제판매로 이루어진 수익금과 그 리자 또는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과 그 리자는 동시에 분배한다.

채무를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이전 배임자나 짐임자,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을 설립한 당사자에게 반환한다.

**제58조 (지불판정의 신청사유)**

해사청구권자는 다음의 경우 해사재판소에 재결이나 판결, 판정이 내려지기전이라도 해사청구담보금이나 배 또는 배짐강제판매수익금,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에서 자기의 청구금액을 지불해줄 것을 신청할수 있다.

1. 청구권자의 피청구권자사이에 해단 해사청구에 대한 분쟁이 없을 경우
2. 해당 해사청구의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권리의무관계가 명백할 경우

**제59조 (지불판정신청서의 제출)**

청구금액을 지불해줄 것을 신청하는 해사청구권자는 지불받을 액수와 그 근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밝힌 지불판정신청서를 해사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 (지불판정과 그 집행)**

해사재판소는 지불판정신청서를 검토하고 그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지불판정을 내려야 한다.

해사청구권자는 피청구권자가 지불판정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해사재판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민사감정법

주체97(1998)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호로 채택  
주체89(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

## 제1조 형민사감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민사감정법은 감정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 민사사건을 정확히 조사, 해명하고 처리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감정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의 보장원칙

형민사감정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사실을 과학기술적수단과 방법으로 조사해명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감정수단을 현대화하고 형민사감정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3조 감정의 구분

형민사감정은 대상에 따라 법의학감정, 흔적감정, 필적감정, 문서감정, 탄도학감정, 화학감정, 인물감정, 음성감정, 기술감정, 회계감정으로 구분한다.

## 제4조 감정기관

형민사감정은 전문감정기관이 한다. 그러나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그 부문의 국가적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시킬수 있다.

## 제5조 감정의 관할

형사, 민사사건과 관련한 법의학감정은 국가법의감정기관과 인민보안, 국가안전보위, 인민무력, 철도부문의 전문감정기관이 하며 기술감정, 회계감정은 그 부문의 국가적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할수 있다.

흔적감정, 필적감정, 문서감정, 탄도학감정, 화학감정, 인물감정, 음성감정은 인민보안, 국가안전보위, 인민무력부문의 전문감정기관이 한다.

## 제6조 감정인의 자격

형민사감정인은 해당 부문의 국가적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

사건해결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자와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증인, 통역인, 해석인은 맡은 사건의 감정인으로 될수 없다.

## 제7조 감정의 의뢰조건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형사, 민사사건해결에 전문지식이 필요할 경우 감정을 맡

겨야 한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주검, 몸에 입은 상해, 정신병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감정을 맡겨야 한다. 피심자, 피소자, 원고, 피고에게는 감정을 누구에게 맡긴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8조 감정의 의뢰절차

형민사감정의 의뢰는 감정을 맡길데 대한 결정 또는 판정으로 한다. 이 경우 결정서 또는 판정서를 2통 만들어 한 통은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다른 한 통은 감정기관에 보낸다.

감정을 맡길데 대한 결정서 또는 판정서에는 감정대상, 감정인의 의무와 권리, 감정자료, 감정내용, 감정을 맡긴 날자 같은것을 쓰고 감정을 맡긴 기관의 공인을 찍는다.

#### 제9조 감정의뢰문건

형민사감정은 감정을 맡길데 대한 결정서, 판정서에 따라 한다.

감정기관은 맡은 감정을 의무적으로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제10조 감정기관

형민사감정은 감정을 맡길데 대한 결정서,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끝낸다.

특별히 복잡한 형민사감정은 감정을 맡긴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5일간 연장할수 있다.

#### 제11조 감정에 필요한 조건보장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은 형민사감정을 맡긴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전문일군을 붙여 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 제12조 감정자료의 손상, 류실방지

감정을 맡기는 기관은 감정자료를 손상, 류실되지 말게 포장하고 봉인하여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감정자료목록을 2통 만들어 한 통은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보내고 다른 한 통은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13조 감정의 거부사유

감정기관과 감정인은 감정자료의 부족 같은 이유로 감정을 정확히 할수 없을 경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

감정의 거부는 감정을 맡길데 대한 결정서, 판정서를 받은날부터 2일안으로 감정을 맡긴 기관에 감정거부리유를 밝힌 결정서를 만들어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 제14조 감정을 맡긴 기관의 승인사항

감정과정에 필요한 시체를 해부하거나 묘지를 발굴하며 물건에 손상을 줄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을 맡긴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15조 감정서의 작성

감정기관과 감정인은 감정을 끝낸 다음 감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감정서에는 감정기관, 감정인의 이름, 감정장소와 날자, 감정서에서 밝혀진 사실을 쓰고 감



정인의 지장 또는 도장과 감정기관의 공인을 찍어야 한다. 그러나 감정인이 심문받는 과정에 쓴 감정서에는 감정기관의 공인을 찍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감정결과를 사진으로 고착하거나 특화할 수 있다.

#### 제16조 감정서, 감정자료의 제출

감정서는 감정을 맡긴 기관에 보낸다. 이 경우 감정을 맡긴 기관에서 받은 감정자료를 함께 보낸다.

부패변질되거나 사건기록에 첨부할수 없는 감정자료는 감정을 맡긴 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진으로 고착한 다음 감정서에 그 이유를 밝히고 처리할수 있다.

#### 제17조 감정인의 검증, 검진, 심리실험참가

감정을 맡긴 기관의 승인밑에 감정인은 검증, 검진, 심리실험에 참가하여 감정할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인은 조서 또는 감정서를 만들고 지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 제18조 립회인, 전문일군의 참가

형민사감정에 립회인, 해당 부문의 전문일군이 참가한 경우에는 감정서에 이름을 쓰고 지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 제19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성원의 참가

형민사감정을 맡긴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감정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서에 사실을 밝힌다.

#### 제20조 재감정

감정을 정확히 하지 못하였거나 감정에서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사실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감정을 시키거나 다른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수 있다.

#### 제21조 감정과정에 새로 발견한 사실의 통보

감정기관과 감정인은 형민사감정과정에 사건해결에 의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감정을 맡긴 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 제22조 감정인의 심문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감정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감정인을 심문할수 있다.

같은 대상에 대한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들을 개별적으로 심문하거나 맞대어놓고 심문할수 있다.

#### 제23조 감정인의 호출

감정인은 맡은 형민사감정과 관련하여 감정을 맡긴 기관이 부를 경우 제때에 와야 한다.

#### 제24조 감정서, 감정자료의 처리

감정서와 감정자료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25조** 감정인의 비밀엄수

감정인은 형민사감정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6조** 권리침해에 대한 의견제기

권리를 침해당한 감정인은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검사는 3일안으로 료해하고 결과를 감정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기고 형사, 민사사건해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              |            |                 |              |
|--------------|------------|-----------------|--------------|
| 주체79(1990)년  | 12월 15일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 제6호로 채택      |
| 주체93(2004)년  | 4월 29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432호로 수정보충  |
| 주체94(2005)년  | 4월 19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1084호로 수정보충 |
| 주체94(2005)년  | 7월 26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1225호로 수정보충 |
| 주체95(2006)년  | 3월 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1594호로 수정보충 |
| 주체95(2006)년  | 4월 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1673호로 수정   |
| 주체95(2006)년  | 5월 16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1751호로 수정보충 |
| 주체95(2006)년  | 10월 1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2035호로 수정보충 |
| 주체96(2007)년  | 6월 26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2280호로 수정보충 |
| 주체96(2007)년  | 10월 16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2403호로 수정보충 |
| 주체97(2008)년  | 1월 15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2527호로 수정보충 |
| 주체97(2008)년  | 4월 29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2689호로 수정보충 |
| 주체98(2009)년  | 4월 2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27호로 수정보충   |
| 주체98(2009)년  | 7월 2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158호로 수정보충  |
| 주체98(2009)년  | 10월 19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366호로 수정보충  |
| 주체99(2010)년  | 10월 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1105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0(2011)년 | 1월 1일부터 시행 |                 |              |
| 주체100(2011)년 | 6월 7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1694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1(2012)년 | 4월 2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2346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1(2012)년 | 5월 1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2387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2(2013)년 | 6월 19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3232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2(2013)년 | 9월 26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3376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2(2013)년 | 11월 2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3449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3(2014)년 | 4월 2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17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4(2015)년 | 1월 2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324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4(2015)년 | 7월 22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578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5(2016)년 | 8월 10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1245호로 수정   |
| 주체105(2016)년 | 12월 22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1462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7(2018)년 | 4월 25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2225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8(2019)년 | 7월 2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73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8(2019)년 | 11월 20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165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9(2020)년 | 11월 26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471호로 수정보충  |
| 주체110(2021)년 | 5월 20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619호로 수정보충  |
| 주체110(2021)년 | 11월 15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779호로 수정보충  |
| 주체111(2022)년 | 5월 17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제967호로 수정보충  |

## 제1장 형법의 기본

###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 및 형벌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범죄미연방지원칙)

국가는 공민들이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막도록 한다.

### 제3조 (범죄자처리원칙)

국가는 범죄자처리에서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 징벌과 관대를 옹계 적용하고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 제4조 (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

국가는 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 제5조 (형벌적용원칙)

국가는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범죄자의 개준성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하도록 한다.

### 제6조 (공민원칙)

공화국공민이 공화국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령역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 제7조 (령역원칙)

다른 나라 사람이 공화국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공화국령역안에서 저지른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때마다 외교적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 제8조 (현실원칙)

공화국령역밖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 공화국을 반대하였거나 공화국공민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9조 (불소급원칙)

범죄를 저지른자에게는 그 범죄를 저지른 당시의 형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 형법에서 범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범죄로 보지 않았거나 형벌을 낮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일반규정

### 제1절 범 죄

#### 제10조 (범죄의 개념)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 제11조 (범죄성립조건)

사회적위험성있는 행위가 범죄로 되자면 침해한 사회관계, 객관적표징, 주관적표징, 범죄자 표징을 갖추어야 한다.

#### 제12조 (형사책임나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살이상 이른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 제13조 (정신병상태에서 사회적위험성있는 행위를 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자기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통제할수 없는 정신병상태에서 사회적위험성있는 행위를 한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 제14조 (정당방위)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적리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자신의 적법적리익을 침해하는 위급한 범죄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그것이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죄로 되지 않는다.

#### 제15조 (긴급피난)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피하는데 그길밖에 없었 으며 그렇게 한 결과 입은 손실이 보호한 리익보다 작을 경우에는 범죄로 되지 않는다.

#### 제16조 (범죄의 준비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의 준비는 기수와 같은 조문을 적용하되 범죄의 미수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 제17조 (범죄의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의 미수는 기수와 같은 조문을 적용하되 범죄의 기수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 제18조 (범죄의 기수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의 기수에 대하여서는 해당 범죄의 객관적표징에 지적된 행위 또는 결과에 따르는 형사 책임을 지운다.

#### 제19조 (공범의 성립조건)

공범은 범죄자들의 의사합의와 행위호상간 련관이 있어야 성립된다.

**제20조** (조직체형태의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조직체의 주모자와 추종자에 대하여서는 그 조직체가 목적인 범죄에 해당되는 조, 항, 단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우며 주모자는 추종자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제21조** (단순형태의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단순형태의 공범사건에서 추진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 항, 단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추진자는 실행자와 같거나 무겁게, 방조자는 실행자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제22조** (특수적표징을 갖추지 못한 공범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적표징을 갖추지 못한자가 특수정표징을 갖춘 실행자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범죄의 공범자로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3조** (은닉범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저지르지 전이나 저지를 당시에는 관여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4조** (불신고범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가 준비되고있거나 저질러진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5조** (방임범에 대한 형사책임)

해로운 긴급한 사태를 능히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6조** (조국과 민족반역행위를 누우친자에 대한 형사책임)

조국과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우치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선자에 대하여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27조** (자수자에 대한 형사책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누우치고 자수한자는 관대히 용서한다.

**제28조** (자백자에 대한 형사책임)

일반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누우치고 자백한자는 관대히 용서하거나 형사책임을 가볍게 지운다.

**제29조** (범죄를 자발적으로 중지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준비하거나 저지르다가 도중에 스스로 완전히 그만둔자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실지로 한 행위가 다른 범죄의 표징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30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인신을 침해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인신을 침해한자는 비렬한 목적이나 동기가 없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31조** (가족, 친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자에 대한 형사책임)

가족, 친척을 상대로 가벼운 일반범죄를 저지른자는 용서하여줄데 대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의 청원이 있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32조**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지난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저지른 때부터 다음과 같은 기간이 지난 범죄자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1.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2년
2.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7년
3. 5년이상 10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2년
4.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7년
5.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20년

**제33조** (형사소추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자와 중살인범죄자는 형사소추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4조**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새로 계산되는 사유)

이 법 제32조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범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수사시작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 제2절 형 벌

**제35조** (형벌의 개념과 종류)

형벌은 범죄자에게 형사재판의 절차로 적용하는 국가적인 제재이다.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무기로동교화형
3. 유기로동교화형
4. 로동단련형
5. 선거권박탈형
6. 재산몰수형
7. 벌금형
8. 자격박탈형

## 9. 자격정지형

### 제36조 (기본형벌과 부가형벌)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기본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은 부가형벌이다.

### 제37조 (사형)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이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수 없으며 임신한 여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수 없다.

### 제38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권리의 일부가 정지된다.

유기로동교화형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이다.

범죄자가 구속되어있는 기간 1일을 유기로동교화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 제39조 (로동단련형)

로동단련형은 범죄자를 로동단련대에 보내어 로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로동단련형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권리가 보장된다.

로동단련형기간은 6개월부터 1년까지이다.

범죄자가 구속되어있는 기간 1일을 로동단련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 제40조 (선거권박탈형)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범죄를 저지른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빼앗는 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기간은 5년이며 로동교화형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 제41조 (재산몰수형)

재산몰수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에 넘기는 형벌이다.

재산몰수형판결을 집행할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가족이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식량과 일용필수품, 돈을 남겨놓는다.

### 제42조 (벌금형)

벌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에게 물질적제재를 가하는 형벌이다.

벌금형에 따르는 벌금액수는 범죄행위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재판소가 정한다.

### 제43조 (자격박탈형)

자격박탈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자격을 완전히 빼앗는 형벌이다.

자격박탈형은 자격을 가진자가 그것을 리용하여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한다.



#### 제44조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빼앗는 형벌이다.

자격정지형은 자격을 가진자가 그것을 리용하여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한다.

자격정지형기간은 3년이며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 제45조 (형벌의 량정)

형벌은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범죄자의 개준성정도를 고려하여 량정한다. 이 경우 해당 조, 항, 단에 규정된 형벌의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형벌기간은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따라 년뿐아니라 개월까지 정할수 있다.

#### 제46조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피동분자인 경우
2. 고백하였을 경우
3. 긴급피난의 정도를 넘었을 경우
4. 특출한 공로를 세운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을 경우
6. 중한 범죄를 적발하는데 협력한 경우

#### 제47조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주동분자인 경우
2. 재범자인 경우
3. 잔인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4. 전시 또는 재해시 혹은 비상방역시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 이 법에서 무겁게 처벌하도록 따로 정한 경우

#### 제48조 (형벌을 가볍게 또는 무겁게 적용하는 범위)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또는 무겁게 보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주어야 할 형벌의 절반정도의 범위안에서 그 위험성정도에 맞게 가볍게 또는 무겁게 줄 수 있다. 이 경우 법정형의 최저 또는 최고한도보다 낮게 혹은 높게 줄수 없다.

#### 제49조 (법정형의 최저한도보다 형벌을 낮게 적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한 법정형의 최저한도보다 낮게 줄수 있다.

#### 제50조 (범죄의 병합조건)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가 각각 독립적으로 형사책임을 지울수 있는 경우에는 병합한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범죄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범죄로 되었거나 어느 한 형태의

범죄가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데 필수적전제로 되었을 경우에는 병합할수 없다.

**제51조 (범죄병합시의 형벌량정)**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에는 매 범죄별로 형벌을량정한 다음 제일 높이량정한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조항의 형벌을 절반정도 합한다. 이 경우 병합한 범죄에 해당하는 부가형벌은 기본형벌과 함께 적용한다.

범죄를 병합하는 경우 유기로동교화형의 기간은 15년, 로동단련형기간은 1년을 넘을수 없다.

**제52조 (형벌집행이 끝나기 전에 저지른 범죄와 숨긴 범죄에 대한 형벌량정)**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판결이 확정된 다음 형벌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을량정하여 남은 형기에 합한다. 형기를 합산할 경우 유기로동교화형의 기간은 15년, 로동단련형은 1년을 넘을수 없다.

**제53조 (《이상》, 《이하》에 대한 해석)**

이 법에서 형벌기간을 비롯하여 수자를 지정한 《이상》, 《이하》는 해당 수를 포함한다.

**제54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조건)**

일반범죄를 저지른자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로 보아 그를 사회적교양의 방법으로 고칠수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할수 있다.

**제55조 (사회적교양처분의 법률적효과)**

사회적교양처분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교양 처분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에 대하여서도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56조 (집행유예조건과 기간)**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은자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로 보아 그를 교화소에 보내 로동교화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수 있다.

로동단련형 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은자가 선고받은 형벌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내는 경우에도 3년부터 5년까지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수 있다.

**제57조 (집행유예의 법률적효과)**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판결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형벌을 집행한다.

**제58조 (특사, 대사)**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형벌은 특사 또는 대사로 면제된다.

특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실시한다.

대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

**제59조 (형기단축 및 만기전 석방)**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판결을 받은자가 형집행기간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경우에는 형기를 줄여줄수 있다.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자가 완전히 교양개조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받은 형기의 절반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하여줄수 있다.

**제60조 (형벌집행이 끝난자의 법적지위)**

특사, 대사를 받은자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자에 대하여서는 특사, 대사를 받은 날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날부터 법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 제1절 반국가범죄

**제61조 (국가전복행위죄)**

반국가목적으로 국가전복행위를 한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2조 (테로죄)**

반국가목적으로 일군들과 인민들을 테로한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3조 (조국반역죄)**

조국반역행위를 한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4조 (공화국의 존엄모독죄)**

반국가적목적으로 공화국의 존엄을 모독한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5조 (파괴, 암해죄)**

반국가적목적으로 파괴, 암해행위를 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파괴, 암해행위를 하였거나 중요한 대상물 또는 대량의 재산을 파괴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6조 (반국가선전, 선동죄)**

반국가적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7조 (간첩죄)**

간첩행위를 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8조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

공화국에 대한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을 사촉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9조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를 한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 제2절 반민족범죄

**제70조 (민족반역죄)**

민족반역행위를 한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71조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2조 (조선민족을 적대시한 죄)**

조선민족을 적대시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의 관여범

**제73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은닉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4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불신고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가 준비되고있거나 감행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5조 (반국가범죄 방임죄)**

반국가범죄를 저지르고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76조 (전략예비물자조성 및 전시생산준비태만죄)**

전략예비물자조성과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전략예비물자조성과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아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7조 (전략예비물자의 부패, 변질, 류실죄)**

전략예비물자의 보관관리질서를 어겨 대량의 전략예비물자를 부패, 변질, 류실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전략예비물자의 보관관리질서를 어겨 특대량의 전략예비물자를 부패, 변질, 류실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8조 (전략예비물자비법처분죄)**

전략예비물자를 비법적으로 처분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전략예비물자를 비법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9조 (무기, 탄약분실죄)**

무기, 탄약의 보관관리질서를 어겨 무기, 탄약을 분실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무기, 탄약을 분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0조 (무기, 탄약비법제작죄)**

무기, 탄약을 비법적으로 제작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무기, 탄약을 비법적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1조 (무기, 탄약비법사용죄)**

무기, 탄약을 비법적으로 사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무기, 탄약을 비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2조 (무기, 탄약비법휴대, 양도죄)**

무기, 탄약을 비법적으로 가지고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무기, 탄약을 비법휴대, 양도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3조 (군사임무수행방해죄)**

군사임무수행을 방해하여 임무수행에 지장을 준 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공모하여 또는 여러명을 폭행하였거나 임무수행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4조 (군수물자매매죄)**

대량의 군수물자를 팔았거나 특대량의 군수물자를 산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군수물자를 판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5조 (군수생산에 지장을 준 죄)**

군수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원료, 연료, 전력,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지 않아 군수생산이 중지 되게 하였거나 대량의 오작품, 불합격품이 생산되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군수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원료, 연료, 전력,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지 않아 상당한 기간 군수 생산이 중지되게 하였거나 특대량의 오작품, 불합격품이 생산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 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6조 (군사복무동원방해죄)**

군사복무동원을 방해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전시 또는 준전시 군사복무동원을 방해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7조 (군사복무동원기피죄)**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전시 또는 준전시에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8조 (기피자, 탈영자 낙죄)**

군사복무동원기피자, 탈영자라는 것을 알면서 숨겨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전시 또는 준전시에 군사복무동원기피자, 탈영자를 숨겨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9조 (군인으로 가장한 죄)**

군인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90조 (민간군사훈련을 무책임하게 집행한 죄)**

민간군사훈련계획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자의대로 변경시켜 집행하였거나 형식적으로 집행한 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91조 (민간군사훈련기피죄)**

정당한 이유가 없이 민간군사훈련에 참가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92조 (민간반항공대피훈련집행태만죄)**

민간반항공대피훈련을 무책임하게 조직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민간반항공대피훈련을 무책임하게 조직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 제1절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소유를 침해한 범죄

**제93조 (국가재산훔친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훔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4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  
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9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4조 (국가재산빼앗은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빼앗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경상해를 입히고 빼앗았거나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경상해를 입히고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았거나  
특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5조 (국가재산속여가진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속여가진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8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6조 (국가재산횡령죄)**

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혹은 일시적위임에 의하여 보관관리하고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의 재산을 횡령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7조 (국가재산대량락취죄)**

이 법 제93조-제96조에 따르는 여러가지 행위를 하여 락취한 총량이 대량인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8조 (국가재산강도죄)**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강도한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강도하였거나 무기, 흉기를 리용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중상해를 입히고 강도하였거나 강도행위과정에 피해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9조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파손죄)**

직접고의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파손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 또는 중요한 생산수단이나 설비, 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방화, 폭파의 방법으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중요한 생산수단이나 설비, 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특대량의 재산을 방화, 폭파의 방법으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0조 (가벼운 형태의 국가재산파손죄)**

간접고의로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 또는 중요한 생산수단이나 설비, 시설물을 파손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 또는 대량의 중요한 생산수단이나 설비, 시설물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1조 (국가재산과실적파손죄)**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과실로 파손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재산을 파손시켰거나 대량의 중요한 생산수단이나 설비, 시설물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102조 (계획을 무책임하게 세운 죄)**

인민경제계획을 무책임하게 세워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에 지장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인민경제계획을 무책임하게 세워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에 엄중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3조 (계획미달죄)**

인민경제계획수행질서를 어겨 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인민경제계획수행질서를 어겨 인민경제계획을 심히 미달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4조 (계획수행정형거짓보고죄)**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한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5조 (계약위반죄)**

계약을 어겨 계약단위에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계약을 어겨 계약단위에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6조 (비법경영죄)**

경영활동을 비법적으로 한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경영활동을 비법적으로 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7조 (노동사고죄)**

노동보호 및 노동안전질서를 어겨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노동보호 및 노동안전질서를 어겨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하였거나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8조 (분배, 생활비, 상금을 부당하게 적용한 죄)**

대량의 분배, 생활비, 상금을 부당하게 적용한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09조 (중요부문 로력을 보장하지 못한 죄)**

노동수급질서를 어겨 중요부문 로력을 보장하지 못한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10조 (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 죄)**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11조 (녀성에게 금지된 로동을 시킨 죄)**

녀성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로동을 시킨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12조 (국가예비물자를 조성하지 못한 죄)**

국가예비물자조성질서를 어겨 국가예비물자를 조성하지 못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가예비물자를 조성하지 못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3조 (국가예비물자의 부패, 변질, 류실죄)**

국가예비물자의 보관관리질서를 어겨 대량의 국가예비물자를 부패, 변질, 류실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가예비물자의 보관관리질서를 어겨 특대량의 국가예비물자를 부패, 변질, 류실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4조 (국가예비물자의 비법공급, 리용죄)**

대량의 국가예비물자를 비법적으로 공급, 리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국가예비물자를 비법적으로 공급, 리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5조 (폭발물, 방사성물질의 분실, 류실죄)**

폭발물, 방사성물질의 보관질서를 어겨, 폭발물, 방사성물질을 분실하였거나 류실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폭발물, 방사성물질을 분실하였거나 류실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6조 (폭발물, 방사성물질의 비법공급, 리용죄)**

폭발물, 방사성물질을 비법적으로 공급, 리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폭발물, 방사성물질을 비법적으로 공급하였거나 리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7조 (폭발물비법제조, 보관죄)**

폭발물을 비법적으로 제조하였거나 보관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폭발물을 비법적으로 제조하였거나 보관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8조 (폭발물비법사용, 양도죄)**

폭발물을 비법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폭발물을 비법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9조 (독성물질분실죄)**

독성물질의 보관질서를 어겨 독성물질을 분실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독성물질의 보관질서를 어겨 대량의 독성물질을 분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0조 (독성물질비법공급, 판매죄)**

독성물질을 비법적으로 공급하였거나 판매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독성물질을 비법적으로 공급하였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1조 (독성물질비법제조, 보관죄)**

독성물질을 비법적으로 제조하였거나 보관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독성물질을 비법적으로 제조하였거나 보관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2조 (독성물질비법사용, 양도죄)**

독성물질을 비법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독성물질을 비법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3조 (위험성물질비법운반죄)**

위험성물질을 비법적으로 운반하였거나 부쳤거나 부쳐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위험성물질을 비법적으로 운반하였거나 부쳤거나 부쳐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4조 (국가재산부패, 변질, 류실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무책임하게 보관, 관리하여 대량의 재산을 부패, 변질, 류실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부패, 변질, 류실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5조 (설비점검, 보수질서위반죄)**

설비점검, 보수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설비점검, 보수질서를 어겨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6조 (국가재산량비죄)**

재산리용질서를 어겨 대량의 국가재산을 량비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재산리용질서를 어겨 특대량의 국가재산을 량비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7조 (재산도용죄)**

재산을 강도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을 략취하여 자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쓴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재산을 강도하였거나 특대량의 재산을 략취하여 자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쓴 경

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8조 (국가재산은닉죄)**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은닉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저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9조 (개인이 국가살림집을 판 죄)**

국가살림집을 팔아 특대량의 리득을 얻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가살림집을 판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0조 (부동산을 비법적으로 넘겨준 죄)**

대량의 부동산을 비법적으로 넘겨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부동산을 비법적으로 넘겨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1조 (부동산빼앗은죄)**

부동산을 빼앗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부동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2조 (국가생산수단 및 수송수단비법리용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수단 및 수송수단을 비법적으로 리용하여 작업을 하여주었거나 수송을 하여주고 대량의 돈 또는 물건을 받아가진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33조 (국가재산을 개인에게 꾸어주었거나 꾸 죄)**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개인에게 꾸어주었거나 꾸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꾸어주었거나 꾸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4조 (전기도용죄)**

전기를 도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전기를 도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5조 (먹는물, 난방열도용죄)**

먹는물, 난방열을 도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먹는물, 난방열을 도용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6조 (개인부림소밀도살죄)**

개인이 기르는 부림소를 밀도살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부림소를 여러마리 밀도살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7조 (유색금속밀매죄)**

유색금속을 밀매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유색금속을 밀해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8조 (유색금속밀수죄)**

유색금속을 밀수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유색금속을 밀수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9조 (지적소유권침해죄)**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을 침해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을 침해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0조 (품질감독질서위반죄)**

품질감독질서를 어겨 대량의 불합격품이 합격품으로 출하되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불합격품이 합격품으로 출하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1조 (해사감독태만죄)**

배설계의 심의, 배의 등록과 검사, 선원의 등록과 기술자격심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배설계의 심의, 배의 등록과 검사, 선원의 등록과 기술자격심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2조 (오작품, 불합격품생산죄)**

제품생산질서를 어겨 대량의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하였거나 생산되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품생산질서를 어겨 특대량의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하였거나 생산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3조 (생산수단오작수리죄)**

생산수단수리질서를 어겨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생산수단수리질서를 어겨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4조 (오작설계 및 시공죄)**

오작설계를 하였거나 오작시공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오작설계를 하였거나 오작시공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5조 (농업생산질서위반죄)**

농업생산질서를 어겨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농업생산질서를 어겨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6조 (축산질서위반죄)**

축산질서를 어겨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축산질서를 어겨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7조 (양어질서위반죄)**

양어질서를 어겨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양어질서를 어겨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8조 (바다가양식질서위반죄)**

바다가양식질서를 어겨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바다가양식질서를 어겨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9조 (개인의 기업 및 영업죄)**

개인으로서 기업 및 영업활동을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기업 및 영업활동을 하여 특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0조 (밀주죄)**

대량의 알곡으로 밀주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알곡으로 밀주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1조 (건설물 및 기계, 설비의 리용질서위반죄)**

건설물 및 기계, 설비의 리용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건설물 및 기계, 설비의 리용질서를 어겨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2조 (실리가 없는 시설건설, 기계설비제작죄)**

경제적으로 실리가 없거나 매우 적다는것을 알면서 시설을 건설하였거나 기계설비를 제작하여 대량의 자재, 자금, 로력을 낭비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경제적으로 실리가 없거나 매우 적다는것을 알면서 시설을 건설하였거나 기계설비를 제작하여 특대량의 자재, 자금, 로력을 낭비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3조 (건설감독질서위반죄)**

건설감독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건설감독질서를 어겨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4조 (상품비법판매죄)**

대량의 상품을 비법적으로 판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5조 (비법수매죄)**

대량의 수매품을 비법적으로 수매받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6조 (식량비법공급죄)**

대량의 식량을 비법적으로 공급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7조 (전력비법공급죄)**

대량의 전력을 비법적으로 공급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전력을 비법적으로 공급하였거나 전력을 공급하지 않아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왔거나 여러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8조 (주민연료비법공급죄)**

대량의 주민연료를 비법적으로 공급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9조 (계량, 계측기구위조 및 불량계량, 계측기구사용죄)**

계량, 계측기구의 눈금이나 량을 비법적으로 고쳤거나 계량, 계측기구의 눈금과 량이 틀린다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60조 (암거래죄)**

암거래행위로 대량의 리득을 얻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암거래행위로 특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1조 (가격비법제정, 적용죄)**

가격을 비법적으로 제정하였거나 적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62조 (탈세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3조 (국가납부금미납죄)**

국가납부질서를 어겨 국가납부금을 미달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국가납부금을 미달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4조 (무현금결제수단비법발급죄)**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발급하여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발급하여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5조 (무현금결제수단비법사용죄)**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사용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사용하여 특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6조 (무현금결제수단비법결제죄)**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결제하여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결제하여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7조 (비법대부죄)**

대부질서를 어겨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부질서를 어겨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8조 (화폐비법교환죄)**

대량의 화폐를 비법적으로 교환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화폐를 비법적으로 교환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9조 (화폐매매죄)**

대량의 화폐를 매매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화폐를 매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0조 (화폐위조죄)**

공화국화폐나 외국화폐를 위조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화폐를 위조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1조 (위조화폐사용죄)**

공화국화폐나 외국화폐가 위조되었다는것을 알면서 사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위조된 화폐를 사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2조 (유가증권위조죄)**

유가증권을 위조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유가증권을 위조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3조 (위조유가증권사용죄)**

대량의 위조된 유가증권을 사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위조된 유가증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4조 (외화도피죄)**

대량의 외화를 도피시킨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외화를 도피시킨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5조 (외화비법사용죄)**

개인적으로 특대량의 외화를 비법적으로 사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76조 (철도, 수상, 항공사고죄)**

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를 어겨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주었거나 그 정상적운행에 지장을 주었거나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를 어겨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주었거나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를 어겨 수십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7조 (화차, 짐배를 지체시킨 죄)**

화차, 짐배의 리용질서를 어겨 화차, 짐배를 상당한 기간 지체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78조 (운수수단운행방해죄)**

운수수단의 운행을 방해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운수수단의 운행을 방해하여 수일간 지체시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9조 (교통사고죄)**

륜전기재의 도로교통규정을 어겨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륜전기재의 도로교통규정을 어겨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하였거나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하였거나 교통사고죄를 저지르고 구원대책을 세우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과형에 처한다.

**제180조 (체신질서위반죄)**

체신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체신질서를 어겨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1조 (비법수출입죄)**

대량의 물자를 비법적으로 수출입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물자를 비법적으로 수출입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2조 (비법대외투자죄)**

대외투자를 비법적으로 하여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외투자를 비법적으로 하여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3조 (외화원천비법동원죄)**

비법적으로 특대량의 외화원천을 동원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외화원천으로 동원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4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밀수죄)**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대량의 재산 또는 통제품을 밀수한 경우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금지품 또는 특대량의 재산 혹은 대량의 통제품을 밀수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5조 (개인의 밀수죄)**

밀수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재산 또는 통제품을 밀수하였거나 해당부문 공무원이 밀수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절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186조 (토지비법위반죄)**

토지를 비법적으로 리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토지를 비법적으로 리용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7조 (자연재해방지태만죄)**

자연재해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자연재해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8조 (지하자원비법개발, 채굴 및 제련죄)**

지하자원을 비법적으로 개발, 채굴, 제련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89조 (개인의 광석채취, 제련죄)**

대량의 광석을 채취, 제련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광석을 채취, 제련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0조 (산림조성태만죄)**

산림조성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1조 (산림보호태만죄)**

산림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산림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2조 (산림채벌비법허가죄)**

산림을 채벌하도록 비법적으로 허가하여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산림을 채벌하도록 비법적으로 허가하여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3조 (산림고의적파손죄)**

산림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량 또는 주요대상지의 산림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4조 (산림과실적파손죄)**

산림을 과실로 파손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산림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5조 (산비법개간죄)**

산을 비법적으로 개간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6조 (풍치림고의파손죄)**

풍치림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량 또는 중요한 풍치림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7조 (풍치림과실적파손죄)**

풍치림을 과실로 파손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량 또는 중요한 풍치림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8조 (동식물을 비법적으로 잡거나 채취한 죄)**

동식물을 비법적으로 잡거나 채취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9조 (하천보호시설파손죄)**

하천보호시설을 파손시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하천보호시설을 파손시켜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0조 (도로관리태만죄)**

도로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도로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1조 (환경오염물질방출죄)**

환경오염물질을 방출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환경오염물질을 방출시킨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4절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

**제202조 (비법적인 자금거래죄)**

비법적으로 조성한 대량의 자금을 그 원천과 용도를 위장할 목적으로 거래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조성한 특대량의 자금을 거래한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3조 (비법적인 자금소유, 리용죄)**

대량의 비법적인 자금을 소유 또는 리용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비법적인 자금을 소유 또는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4조 (비법적인 돈자리개설 및 계약체결죄)**

비법적으로 돈자리를 개설해주었거나 생명보험, 신탁업무계약 같은것을 체결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돈자리를 개설해주었거나 생명보험, 신탁업무계약 같은것을 체결하여 범죄행위가 조장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5조 (자금원천과 용도, 거래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죄)**

자금원천과 용도의 적법성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자로부터 자금을 접수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06조 (자금거래자확인문건을 분실, 소각한 죄)**

자금거래자확인문건을 보관기일이 지나기 전에 분실, 소각하여 감독기관의 사업에 지장을 준 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자금거래자확인문건을 분실, 소각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7조 (의심되는 자금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죄)**

은행부문 일군으로서 대량의 의심되는 자금거래 행위를 발견하고도 제때에 금융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의심되는 자금거래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8조 (테로자금보장 및 송달죄)**

반국가적의의가 없이 다른 나라 테로조직이나 그 성원에게 대량의 자금을 보장해주었거나 송달해준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테로조직이나 그 성원에게 특대량의 자금을 보장해주었거나 송달해준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9조 (조사에 협력하지 않은 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조사와 관련한 해당 기관의 협력요구를 거부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해당 기관의 협력요구를 거부하여 조사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0조 (자금동결 및 압수, 몰수하지 않은 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를 조사하면서 응당하여야 할 대량의 자금동결이나 압수, 몰수를 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를 조사하면서 응당하여야 할 특대량의 자금동결이나 압수, 몰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1조 (자료루설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 적발사업과정에 알게 된 자료를 루설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 적발사업과정에 알게 된 자료를 루설하여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 적발사업에 엄중한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2조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에 대한 은닉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를 감추어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범죄를 여러번 감추어준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3조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범죄에 대한 불신고죄)**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범죄를 신고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범죄를 여러번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제214조 (후비양성을 부당하게 한 죄)**

후비양성을 부당하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15조 (저작, 발명, 창의고안비법평가죄)**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비법적으로 평가하여 묵살시켰거나 도입되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16조 (과학기술도입질서위반죄)**

과학기술도입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과학기술도입질서를 어겨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7조 (과학연구사업방해죄)**

과학연구사업을 방해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과학연구사업을 방해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8조 (정보통신망침입죄)**

국가관리, 국방건설, 첨단과학연구부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자료를 열람하였거나 절취, 파손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중요한 정보자료를 열람하였거나 절취, 파손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9조 (전자업무질서침해죄)**

전자업무질서를 침해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전자업무질서를 침해한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0조 (의료사고죄)**

의료일꾼으로서 치료와 간호를 규정의 요구대로 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의료사고로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1조 (치료회피죄)**

의료일군이 특별한 이유없이 환자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아 죽게 한 경우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22조 (비법의료죄)**

비법적인 의료행위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비법적인 의료행위로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3조 (비법성형외과치료죄)**

비법적으로 성형외과치료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비법적인 성형외과치료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4조 (불량의약품생산죄)**

의약품생산질서를 어겨 대량의 불량의를약품을 생산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불량의를약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5조 (의약품검정태만죄)**

의약품검정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대량의 불량의를약품이 합격품으로 출하되었거나 불량의를약품이 치료에 리용되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불량의를약품이 합격품으로 출하되었거나 대량의 불량의를약품이 치료에 리용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6조 (개인의 의약품제조 및 가짜의약품판매죄)**

개인적으로 의약품을 만들어 팔았거나 대량의 가짜의약품을 판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의약품을 만들어 팔았거나 특대량의 가짜의약품을 판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7조 (불량식료품제조, 판매죄)**

사람의 생명, 건강에 해로운 불량식료품을 만들어 팔았거나 불량식료품이라는것을 알면서 판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불량식료품을 만들어 팔았거나 불량식료품이라는것을 알면서 대량의 불량식료품을 판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불량식료품을 만들어 팔았거나 불량식료품이라는것을 알면서 특대량의 불량식료품을 한 경우에는 5년이상 1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 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8조 (위생방역질서위반죄)**

위생방역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위생방역질서를 어겨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9조 (국경검역사업태만죄)**

국경검역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경검역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0조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의 비법취득, 매매, 리용죄)**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 같은것을 비법적으로 취득, 매매, 리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강제로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 같은것을 취득, 매매, 리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1조 (마약분실죄)**

마약의 보관질서를 어겨 마약을 분실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마약의 보관질서를 어겨 대량의 마약을 분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2조 (마약비법공급죄)**

마약을 비법적으로 공급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마약을 비법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3조 (아편꽃비법재배죄)**

아편꽃을 비법적으로 재배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아편꽃을 비법적으로 재배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4조 (아편비법채취죄)**

아편을 비법적으로 채취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아편을 비법적으로 채취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많은 량의 아편을 비법적으로 채취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극히 많은 량의 아편을 비법적으로 채취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235조 (마약비법제조죄)**

마약을 비법적으로 제조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마약을 비법적으로 제조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많은 량의 마약을 비법적으로 제조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극히 많은 량의 마약을 비법적으로 제조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236조 (마약비법보관죄)**

마약을 비법적으로 보관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마약을 비법적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7조 (마약밀수, 거래죄)**

마약을 밀수, 거래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마약을 밀수, 거래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많은 량의 마약을 밀수, 거래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극히 많은 량의 마약을 밀수, 거래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238조 (마약비법사용죄)**

마약을 비법적으로 사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마약을 비법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9조 (체육선수선발을 부당하게 한 죄)**

중요체육경기에 출전할 선수선발을 바로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40조 (적지물보관, 리용, 류포죄)**

적지물을 보관, 리용, 류포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적지물을 보관, 리용, 류포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1조 (력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고의적파손죄)**

력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중요한 력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2조 (력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과실적파손죄)**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력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과실로 파손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중요한 력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과실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3조 (력사유물밀수, 밀매죄)**

력사유물을 밀수, 밀매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보력사유물을 밀수, 밀매하였거나 준국보력사유물을 여러번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5년이하

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 제1절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 제244조 (명령, 정령, 결정, 지시집행태만죄)

명령, 정령, 결정, 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명령, 정령, 결정, 지시를 여러번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았거나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명령, 정령, 결정, 지시를 전혀 집행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45조 (집단적소동죄)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 집단적소동을 일으켰거나 집단적소동을 일으키는 과정에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46조 (정치협잡죄)

정치협잡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극히 엄중한 정치협잡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47조 (직무집행방해죄)

폭행, 협박, 모욕의 방법으로 관리일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관리일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48조 (직권참용죄)

관리일군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49조 (거짓행세죄)

검열원, 감독원, 단속원, 순찰원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50조 (법인참용죄)

법인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51조 (류언비어날조류포죄)**

국가에 대한 불신을 조성할수 있는 류언비어를 날조류포시켜 사회적혼란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류언비어를 날조류포시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2조 (공인비법사용, 위조죄)**

공인을 비법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위조하였거나 위조한것인줄 알면서 사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53조 (문서, 증명서비법처분, 위조, 사용죄)**

리기적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문서, 증명서를 처분하였거나 위조하였거나 위조한것인줄 알면서 사용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문서를 비법적으로 처분하여 법기관의 검열이나 조사에 지장을 주었거나 위조 또는 위조한것인줄 알면서 사용하여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4조 (출판질서위반죄)**

출판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55조 (화재방지태만죄)**

화재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화재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6조 (경비근무태만죄)**

경비근무를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경비근무를 무책임하게 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7조 (독립임무태만죄)**

관리일군이 아닌자로서 자기의 독립적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독립임무를 무책임하게 수행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8조 (국가비밀루설죄)**

국가비밀을 루설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중요한 국가비밀을 루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9조 (국가비밀분실죄)**

국가비밀을 분실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중요한 국가비밀을 분실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0조 (국경비법출입죄)**

국경을 비법적으로 출입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경을 비법적으로 출입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1조 (비법적인 국제통신죄)**

비법적으로 국제통신을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제통신을 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2조 (령공, 령해비법출입죄)**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비행기 또는 배를 몰고 허가없이 공화국령공, 령해에 들어왔거나 령공, 령해밖으로 나갔거나 지정된 항로, 비행고도를 어긴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3조 (거짓신고, 진술죄)**

범죄에 대한 거짓신고를 하였거나 수사, 예심, 재판심리에서 거짓으로 진술, 감정, 통역, 번역, 해석을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거짓신고, 거짓진술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4조 (사건관계자강요죄)**

거짓진술, 감정, 통역, 번역, 해석을 하도록 폭행, 협박, 회유, 기만 같은 방법으로 강요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사건관계자강요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5조 (사건조사방해죄)**

사건조사를 방해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사건조사를 방해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6조 (사건관계자에 대한 복수죄)**

사건관계자에게 대한 복수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사건관계자에 대한 복수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7조 (일반범죄은닉죄)**

유기로동교화형이상의 형벌을 줄수 있는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히 엄중한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8조 (일반범죄불신고죄)**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준비하고있거나 저지른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69조 (도주죄)**

구속중에 있거나 형벌집행중에 있는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0조 (뢰물죄)**

대량의 뵤물을 받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뵤물을 받았거나 관리일군이 대량의 뵤물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뵤물을 받고 위법행위를 해주었거나 관리일군이 특대량의 뵤물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1조 (부당한 신소죄)**

리기적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과장, 날조된 신소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과장, 날조된 신소를 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2조 (대외적권위훼손죄)**

우리 나라 공민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공화국의 대외적권위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절 직무상범죄

**제273조 (직권람용죄)**

관리일군으로서 직권을 람용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직권을 람용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4조 (월권행위죄)**

관리일군으로서 상급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그의 승인없이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75조 (직무태만죄)**

관리일꾼으로서 직무상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되는대로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직무상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되는대로 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6조 (세외부담을 시킨 죄)**

사회적과제를 망탕 주었거나 각종 명목으로 대량의 물질적부담을 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사회적과제를 여러번 망탕 주었거나 특대량의 물질적부담을 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고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7조 (신소, 청원묵살 및 부당처리죄)**

공민의 신소, 청원을 묵살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공민의 신소, 청원을 묵살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8조 (국가기관권위훼손죄)**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처신을 잘못하여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79조 (강제수단비법적용죄)**

사람을 비법적으로 체포, 구속, 구인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강제수단을 비법적으로 여러번 적용하였거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0조 (비법심문 및 사건과장, 날조죄)**

사람을 비법적인 방법으로 심문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사건을 과장, 날조하여 사람이 부당한 형사책임을 받게 하였거나 비법적인 방법으로 심문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1조 (비법석방 및 사건약화죄)**

법일꾼으로서 비법적으로 범죄자를 놓아주었거나 범죄사실을 가볍게 하여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여러번 또는 엄중한 범죄자를 놓아주었거나 범죄사실을 가볍게 하여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2조 (부당한 판결, 판정죄)**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3조 (판결,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 죄)**

정당한 이유없이 확정된 판결,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8장 사회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284조 (불량자적행위죄)**

파렴치한 불량자적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잔인한 방법으로 불량자적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패를 지어 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 주동분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5조 (패싸움죄)**

패싸움을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 패싸움을 하였거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6조 (미성인범죄추진죄)**

17살에 이르지 못한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추겼거나 범죄에 가담하게 한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7조 (매음죄)**

매음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매음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8조 (음탕한 행위죄)**

음탕한 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음탕한 행위를 여러번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9조 (실력행사죄)**

자기의 재산적권리를 법에 의거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여 실현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90조 (명예, 칭호참용죄)**

개인리기적목적으로 명예나 칭호를 참용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여러번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91조 (미신행위죄)**

미신행위를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미신행위를 하였거나 미신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2조 (가정파탄 및 가짜혼인죄)**

여러번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켰거나 가짜로 혼인하였던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가정파탄 및 가짜혼인으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3조 (부양의무회피죄)**

부양의무를 회피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94조 (어린이보호, 관리태만죄)**

어린이보호, 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어린이보호, 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5조 (양로사업태만죄)**

양로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양로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6조 (학대궤시죄)**

자기의 부양, 보호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궤시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학대궤시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7조 (도박죄)**

돈 또는 물건을 대고 도박을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도박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8조 (거간죄)**

거간행위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거간행위를 하여 특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9조 (습득물횡령죄)**

주은 돈 또는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거나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300조 (략취물건거래죄)**

략취한 물건인줄 알면서 받아가졌거나 샀거나 팔아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301조 (채무회피죄)**

대량의 채무를 상당한 기간 회피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채무를 상당한 기간 회피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02조 (묘파괴죄)**

묘를 고의적으로 파괴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묘를 파괴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03조 (엄중한 결과발생방임죄)**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하였거나 재산적손실을 줄수 있다는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능히 구원하거나 막을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304조 (해난구조의무기피죄)**

해난구조의무를 기피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해난구조의무를 기피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9장 국민의 인신, 재산을 침해한 범죄

### 제1절 인신을 침해한 범죄

**제305조 (중살인죄)**

직접고의로 사람을 죽인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렬한 동기에서 죽인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306조 (경살인죄)**

간접고의로 사람을 죽게 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렬한 동기에서 죽게 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07조 (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격분상태에서 사람을 죽인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08조 (정당방위초과살인죄)**

정당방위를 초과하여 사람을 죽인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309조 (과실적살인죄)**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과실로 여러명을 죽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10조 (무거운 형태의 중상해죄)**

직접고의로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힌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명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공모하여 중상해를 입혔거나 피해자를 죽게 하였거나 비렬한 동기에서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11조 (가벼운 형태의 중상해죄)**

간접고의로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간접고의로 여러명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비렬한 동기에서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중상해후과로 피해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12조 (발작적격분에 의한 중상해죄)**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격분상태에서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힌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발작적격분상태에서 여러명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피해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13조 (과실적중상해죄)**

과실로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명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14조 (고의적경상해죄)**

고의적으로 사람에게 경상해를 입힌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315조 (폭행죄)**

사람에게 폭행을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316조 (자유비법구속죄)**

사람의 자유를 비법적으로 구속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317조 (어린이를 훔쳤거나 감춘죄)**

개인리기적목적 또는 복수적동기에서 어린이를 훔쳤거나 감춘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어린이를 훔쳤거나 감추었거나 여러명을 훔쳤거나 감춘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18조 (유괴죄)**

개인리기적목적에서 사람을 유괴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사람을 유괴하였거나 여러명을 유괴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19조 (강간죄)**

폭행, 협박하여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리용하여 녀성을 강간한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강간하였거나 률간한 경우에는 4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률간하였거나 강간과정에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9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20조 (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

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복종관계에 있는 여러 녀성에게 강요하여 성교하였거나 녀성을 타락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21조 (15살에 이르지 못한 녀성과 성교한 죄)**

15살에 이르지 못한 녀성과 성교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5살에 이르지 못한 녀성과 여러번 성교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22조 (모욕 및 명예훼손죄)**

비렬한 동기와 목적에서 사람을 모욕하였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시킨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절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

**제323조 (개인재산훔친죄)**

개인의 재산을 훔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8년이상의 고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24조 (개인재산빼앗은죄)**

개인의 재산을 빼앗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4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9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25조 (개인재산속여가진죄)**

개인의 재산을 속여가진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2년이상 7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7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26조 (개인재산횡령죄)**

개인의 재산을 횡령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4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9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27조 (개인재산대량락취죄)**

이 법 제323조-제326조에 따르는 여러가지 행위를 하여 개인재산을 락취한 량이 대량인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28조 (개인재산강도죄)**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협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개인의 재산을 강도한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개인재산을 강도하였거나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또는 고의적으로 중상해를 입히고 강도하였거나 강도행위로 피해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4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9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29조 (개인재산고의적파괴죄)**

개인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파괴한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개인재산을 파괴한 경우에는 4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형법부칙(일반범죄)

주체96(2007)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3호로 채택  
주체94(2010)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52호 및 지시 제44호로 수정보충

- 제1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고의적파손죄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 제2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략취죄  
국가재산략취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 제3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강도죄  
국가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 제4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  
국가재산고의적파손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 제5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화폐위조죄  
화폐위조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 제6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귀금속, 유색금속밀수, 밀매죄  
귀금속, 유색금속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 제7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교화인도주죄  
중형을 받고 형벌집행중에 있는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 제8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유괴죄  
사람을 유괴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 제9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강간죄  
강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 제10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강도죄  
개인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11조** 레외적으로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 자는 무기로 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         |                              |
|--------------|---------|------------------------------|
| 주체81(1992)년  | 1월 15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2호로 채택     |
| 주체93(2004)년  | 5월 6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6호로 수정보충  |
| 주체94(2005)년  | 7월 26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25호로 수정보충 |
| 주체95(2006)년  | 10월 1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5호로 수정보충 |
| 주체97(2008)년  | 4월 29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90호로 수정보충 |
| 주체98(2009)년  | 2월 3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4호로 수정보충 |
| 주체98(2009)년  | 3월 3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57호로 수정보충 |
| 주체98(2009)년  | 4월 2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호로 수정     |
| 주체99(2010)년  | 12월 6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49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0(2011)년 | 10월 19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3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1(2012)년 | 5월 1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87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5(2016)년 | 8월 10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45호로 수정   |
| 주체109(2020)년 | 7월 7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1호로 수정    |
| 주체110(2021)년 | 1월 20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10호로 수정보충  |

##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 제1조 (형사소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계급로선의 관철원칙)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 제3조 (균중로선의 관철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균중의 힘과 지혜에 적극 의거하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철저히 옹호하도록 한다.

### 제4조 (범죄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공민들속에서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범죄를 미리막도록 한다.

### 제5조 (전면성과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전면성과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인권의 보장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언어의 사용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를 조선어로 하도록 한다.

조선어를 모르는자에게는 통역인을 붙인다.

다른 나라 사람은 형사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기 나라 글로 써낼수 있다.

**제8조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방법의 준수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에 대한 취급과 처리를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방법에 따라 하도록 한다.

## 제2장 일반규정

### 제1절 형사소송관계자

**제9조 (형사소송관계자의 구분)**

형사소송관계자에는 형사소송담당자와 형사소송관여자가 속한다.

**제10조 (수사의 담당자)**

수사는 해당 법기관의 전문수사원이 한다.

필요에 따라 수사권한을 가진 일군도 수사를 할수 있다.

**제11조 (예심의 담당자)**

예심은 해당 법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제12조 (기소의 담당자)**

형사소송에 대한 기소는 검사가 한다.

**제13조 (재판의 담당자)**

재판은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형벌의 적용은 재판소의 판결로 한다.

**제14조 (수사, 예심, 재판에 대한 감시의 담당자)**

수사, 예심, 재판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제15조 (비밀엄수 및 형사사건조사방해금지)**

형사소송관계자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와 관련된 비밀을 지키며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6조 (리해관계에 따라 형사소송에 참가할수 없는 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결과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을 경우 그 사건의 취급처리에 참가할수 없다.

**제17조** (형사소송임무를 겸할수 없는 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 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 보증인은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할수 없다. 그러나 검사, 증인은 손해보상청구자로 될수 있다.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는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도 자기가 담당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의 다른 소송관계자로 될수 없다.

**제18조** (같은 사건을 다시 예심할수 없는 사유)

형사사건을 과장날조한것이 검사, 재판소가 사건을 돌려보낸 근거로 된 경우 그 사건을 담당하였던 예심원은 다시 예심을 담당할수 없다.

**제19조** (같은 사건을 다시 감시, 기소할수 없는 사유)

형사사건을 과장날조한것이 재판소가 사건을 돌려보낸 근거로 된 경우 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한 감시와 기소를 다시 담당할수 없다.

**제20조**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는 사유)

제1심재판심리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재판소, 비상상소심 또는 재심재판소성원으로 될수 없다. 그러나 예심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재판소가 반송하였던 형사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에는 참가할수 있다.

**제21조** (한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는 사유)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은 한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

**제22조** (증인으로 될수 없는 사유)

이 법 제17조에 규정된자와 정신병, 그밖의 신체상장애로 형사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본 사실을 옳게 리해할수 없거나 정확히 표현할수 없는자는 증인으로 될수 없다.

**제23조**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으로 될수 없는 사유)

이 법 제16조, 제17조의 사유가 있거나 국가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지지 못한자는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으로 될수 없다.

**제24조**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

소송관계자는 이 법 제16조~제2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다음과 같이 할수 있다.

1. 수사원, 예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검사에게 한다.
2.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재판소에 한다.
3. 검사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수사, 예심, 기소단계에서는 그가 속한 단위책임자에

계, 재판단계에서는 재판소에 한다.

4. 소송관여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에 한다.

**제25조** (재판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하는 시기)

재판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사실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한다. 그러나 사실심리가 시작된 다음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야 할 사유가 생겼거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도 신청을 할수 있다.

**제26조** (수사, 예심, 기소단계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처리)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받은 수사원, 예심원, 검사, 검찰기관의 단위책임자는 3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수사원, 예심원, 검사는 자기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에 대한 해결이 있을 때까지 수사, 예심, 감시와 기소활동을 계속한다.

**제27조** (재판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처리)

재판심리에 참가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바꿀 대상으로 지적된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을 제외한 그밖의 재판소성원들이 판정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재판소성원들가운데서 한사람이라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바꾼다.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심리할 재판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를 다시 구성한다.

**제28조** (형사소송관계자들의 포기)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 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 보증인은 이 법 제16조~23조의 사유가 자신에게 있을 경우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

## 제2절 증거

**제29조** (과학적증거에 기초한 형사사건의 취급처리)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는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한다.

법에 따라 수집되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확인된 자료만이 사건해결의 기초로서의 증거로 될수 있다.

**제30조** (증거의 종류)

증거로는 증인의 말, 감정결과, 검증결과, 증거물, 증거문서, 범죄자의 말에서 얻은 자료가 된다.

**제31조 (증거로 확장하여야 할 대상)**

범죄의 표징을 이루거나 형벌을 정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는 사실은 반드시 증거로 확정되어야 한다.

**제32조 (증거의 수집, 리용)**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는 법이 정한데 따라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리용할수 있다.

해당 법기관은 군인, 종업원들이 사회에 나와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을 취급처리하기 위한 사회안전, 검찰기관의 수사, 예심과 재판소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 (증거를 찾아내는 방법)**

증거는 균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고 과학기술적인 수단과 방법에 기초하여 찾아낸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수사원, 예심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34조 (증거의 고착)**

찾아낸 증거는 진술서, 조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고착한다.

필요에 따라 사진을 찍거나 락도를 그리거나 록음, 록화 같은 방법으로 고착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진술서, 조서에 밝힌다.

**제35조 (증거와 검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수집된 증거자체를 분석하거나 이미 검토확인된 다른 증거, 새로 수집한 증거와 대조확인하는것 같은 방법으로 검토한다.

**제36조 (증거의 평가)**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법이 정한데 따라 수집하고 검토확인된 증거를 개별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37조 (범죄자의 말에 대한 평가)**

강압, 유도의 방법으로 받은 말은 증거로 쓸수 없다.

범죄자의 말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그의 범죄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한다.

범죄자가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범죄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이 밝혀지면 증명된것으로 인정한다.

**제38조 (증거물의 등록, 고착형식)**

증거물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냈는가에 따라 증거물발견조서, 증거물제출조서, 수색, 압수조서, 현장검증조서에 등록한다.

증거물의 특징, 상태, 흔적은 증거물검증조서로 고착한다.

**제39조 (증거물수집에서 립회)**

증거물을 찾아내고 고착시킬 경우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이 법 제16조, 제17조에 규정된자와 정신병, 그밖의 신체상장애로 형사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본사실을 옳게 이해할수 없거나 정확히 표현할수 없는자, 14살에 이르지 못한자, 법기관 성원은 립회인으로 될수 없다.

#### 제40조 (증거물의 보관)

증거물은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이 봉인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보관한다.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이 보관하기 어려운 증거물은 해당 기관에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인다.

수집한 귀금속은 은행에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으며 현금은 은행의 해당 구좌에 입금시키고 립시입금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인다.

#### 제41조 (증거물의 이관)

형사사건을 다른 기관의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에 보낼 경우에는 증거물을 사건기록과 함께 넘겨준다.

증거물을 입자 또는 해당 기관에 이미 돌려주었거나 넘겨준 경우와 그의 이관이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거문건을 넘겨준다.

#### 제42조 (사건종결전단계에서 증거물의 처리사유)

썩거나 못쓰게 될수 있는 증거물은 형사사건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수사원, 예심원의 결정, 판사의 판정으로 입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줄수 있다.

몰수할 필요가 없는 증거물가운데서 소유자, 점유자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지장이 없다면 수사원, 예심원의 결정, 판사의 판정으로 그 사건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입자에게 돌려줄수 있다. 이 경우 돌려받은 증거물을 형사사건종결전에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변형시키지 말데 대하여 알려준다.

#### 제43조 (증거물의 처리방법)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주려는 수사원, 예심원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으며 판사는 판정서를 작성한다.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준 경우에는 입자,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다.

형사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처리한 증거물은 특징, 상태, 흔적을 검증조서, 사진 같은것으로 고착하여 근거문건과 함께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 제44조 (종결한 형사사건의 증거물처리)

형사사건을 종결한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입자에게 돌려줄수 없는 증거물은 몰수하거나 폐기하여 그밖의 증거물은 입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주고 그 사실을 사건을 종결하는 형사소송문건에 밝힌다.

증거물을 돌려받았거나 넘겨받은 입자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근거문건과 함께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 제3절 관할

#### 제45조 (관할설정기준)

관할은 사건이 어느 한 법기관에 편중되지 않고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취급처리될 수 있도록 법기관의 사명과 임무, 범죄발생지,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 제46조 (인민재판소관할)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 사건을 재판한다.

#### 제47조 (도재판소관할)

도(직할시)재판소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사형, 무기로동고화형을 규제하고있는 법조항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직접 재판한다.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 제48조 (특별재판소관할)

군사재판소는 군사상 범죄사건, 군사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 군인, 안전원, 군사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

군수재판소는 군수공업부문의 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과 군수공업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과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

#### 제49조 (중앙재판소관할)

중앙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 특별재판소의 제1심판결,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하며 비상상소심사건과 재심사건에 대한 재판을 한다.

필요에 따라 하급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사건을 직접 재발할 수 있다.

#### 제50조 (수사, 예심관할)

보위기관의 수사원, 예심원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수사, 예심한다.

검찰기관의 수사원, 예심원은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와 범준수집행정형감시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을 수사, 예심한다.

사회안전기관의 수사원, 예심원은 그밖의 일반범죄사건을 수사, 예심한다.

특별법기관의 수사원, 예심원은 해당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따르는 범죄사건을 수사, 예심한다.

**제51조 (지역관할)**

법기관은 자기의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취급처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법기관에 알리고 범죄자가 사는 곳 또는 범죄사건을 적발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기관이 취급처리할 수 있다.

**제52조 (혼자서 저지른 관할이 다른 여러가지 범죄의 취급관할)**

혼자서 관할이 다른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부 범죄가 상급법기관의 관할에 속하면 상급법기관에서, 특별법기관의 관할에 속하면 특별법기관에서 취급처리한다.

**제53조 (관할이 다른 여러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의 취급관할)**

관할이 다른 여러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부가 상급법기관의 관할에 속하면 상급법기관에서, 특별법기관의 관할에 속하면 특별법기관에서 취급처리한다.

## 제4절 변호

**제54조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보장)**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제55조 (변호인의 임무)**

변호인은 법에 따라 형사사건이 정확히 취급처리되고 피심자, 피소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한다.

**제56조 (변호인의 선정권)**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받을 권리를 가진다.

피심자, 피소자의 가족, 친척, 소속단체대표자도 변호인을 선정할수 있다.

**제57조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의 포기)**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할수 있다.

**제58조 (사선변호인선정시기)**

사선변호인의 선정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때로부터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하기 전까지 한다.

**제59조 (공선변호인선임의뢰시기)**

예심원은 피심자가 사선변호인선정권을 포기한 그날로 공선변호인선임을 의뢰한다.

**제60조 (변호인의 자격)**

변호인으로는 조선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가 될수 있다.

변호사자격을 갖춘자도 변호인으로 될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판사의 승인을 받는다.

**제61조 (변호인선정신청 및 변호인선임의뢰절차)**

피심자, 피소자, 그의 가족, 친척 또는 소속단체대표자는 예심원, 판사에게 변호인선정신청을 한다.

변호인선정신청을 접수한 예심원, 판사는 선정한 변호사 또는 변호사자격을 갖춘자에게 3일안으로 신청내용을 알려준다.

피심자가 변호인선정권을 포기한 경우 예심원은 그날로 해당 변호사위원회에 변호인선임을 의뢰한다.

**제62조 (변호인선정신청 및 선임의뢰에 대한 통지)**

변호인선정신청을 받은자 또는 변호인선임의뢰를 받은 해당 변호사위원회는 3일안으로 그 동의여부를 해당 예심원, 판사에게 알려준다.

변호인의 선정동의여부에 대하여 통지받은 예심원, 판사는 곧 변호인선정신청을 한자에게 알려준다.

**제63조 (변호인의 재선정, 재선임)**

변호사 또는 변호사자격을 갖춘자가 변호인선정신청을 거부하거나 검사 또는 판사가 변호사자격을 갖춘자의 변호인선정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인을 다시 선정한다.

변호인으로 나섰던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호활동을 계속할수 없거나 사건이 이송된 경우에도 변호인을 다시 선정 또는 선임한다.

변호인 재선정, 재선임은 이 법 제61조에 따른다.

**제64조 (사선변호인의 우선권)**

공선변호인을 선임한 다음 사선변호인이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선변호인이 변호인으로 된다.

**제65조 (리해관계가 다른 피심자, 피소자에 대한 변호)**

변호인은 리해관계가 서로 다른 피심자, 피소자들을 함께 변호할수 없다. 그러나 피심자, 피소자들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해관계가 다른 피소자를 함께 변호할수 있다.

**제66조 (변호인의 피심자, 피소자담화)**

선정된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만나 담화할수 있다.

예심원, 판사, 재판소는 변호인, 피심자, 피소자가 요구할 경우 만나게 해준다.

**제67조 (변호인의 사건기록열람)**

변호인은 범죄사건이 기소된 다음 사건기록을 열람한다.

**제68조 (변호인의 변호사자료수집과 검토확인)**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변호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검토확인할수 있다.

**제69조 (변호인의 의견제기)**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검사, 판사,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한다.

검사, 판사, 재판소는 제기받은 의견을 3일안으로 처리하고 변호인에게 알려준다.

## 제5절 형사소송문건

### 제70조 (형사소송문건작성의 목적)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형사소송행위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고찰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문건을 작성한다.

형사소송행위와 결과는 문건에 고착되어야 법적효력을 가진다.

### 제71조 (형사소송문건의 종류)

형사소송문건에는 수사, 예심, 기소, 재판준비, 재판심리단계에서 작성하는 결정서, 진술서, 조서, 기소장, 판정서, 판결서 같은것이 속한다.

### 제72조 (형사소송문건의 작성방법)

형사소송문건에는 소송행위를 진행한 날자와 장소, 작성자의 이름과 직장직위, 소송행위의 법적근거와 진행과정, 결과 같은것을 정확히 밝힌다.

진술서,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자들에게 그 내용을 확인시켜야 한다.

형사소송문건에는 관계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으며, 해당한 형사소송문건에는 공인, 명판을 찍는다.

### 제73조 (형사소송문건의 비공개)

형사소송문건은 법에 따라 보게 되어있는자를 제외하고는 열람할수 없다.

## 제6절 형사소송기간과 문건 송달, 소송비용

### 제74조 (형사소송기간의 계산)

형사소송기간의 계산은 시간, 날, 달, 해로 한다. 이 경우 계산사유가 생긴 다음날 또는 다음 시간부터 계산한다.

날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날 24시에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달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달가운데서 계산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이 지나면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마지막달가운데서 계산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이 없을 경우에는 그달의 마지막날이 지나면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끝나는 날이 국가적휴식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첫 로동일이 지나면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 제75조 (형사소송문건의 발송기간에 따르는 효력인정)

형사소송문건을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낸 것으로 인정한다.



형사소송문건을 보내야 할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문건을 받아 처리하는 기관이 그 기간을 늘여줄수 있다.

**제76조 (형사소송문건의 송달)**

형사소송문건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이 접수하였을 때 송달된것으로 인정한다. 당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의 성인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형사소송문건을 접수할수 있다.

**제77조 (형사소송비용의 부담)**

인민참심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이 형사사건조사처리에 동원된 기간의 생활비나 려비는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근무하지 않는자의 경우 로력보수와 려비는 그를 부른 기관이 부담한다.

## 제7절 형사사건의 취급시작

**제78조 (형사사건의 취급시작과 담당자)**

형사사건의 취급은 수사원이 수사시작결정을 한때부터 시작된다.

수사원이 수사시작결정을 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그것을 수사에 넘기는 예심원, 검사의 결정, 검사에게 넘기는 재판소의 판정이 있을 때부터 형사사건의 취급이 시작된다.

**제79조 (형사사건취급시작의 기초자료)**

형사사건의 취급시작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범죄에 대한 신고에 기초하여 한다.

해당 법기관이 직접 수집한 범죄자료에 기초하여서도 형사사건의 취급을 시작한다.

**제80조 (증거보존 및 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범죄를 준비하고있거나 저지르고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범죄현장, 사건해결에 의의있는 물건, 문서가 못쓰게 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그날로 사회안전, 검찰, 보위기관에 신고한다.

**제81조 (범죄에 대한 신고형식)**

범죄에 대한 신고는 말이나 글로 할수 있다.

**제82조 (범죄에 대한 신고접수 및 료해)**

사회안전, 검찰, 보위기관은 범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관할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는 신고서를 받거나 신고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사회안전, 검찰, 보위기관은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제기된 경우 10일안으로 신고자료의 정확성을 료해할수 있다.

**제83조 (범죄에 대한 신고자료의 이송)**

사회안전, 검찰, 보위기관은 접수한 범죄에 대한 신고자료가 다른 기관의 관할에 속할 경우 그날로 해당 기관에 넘겨준다.

**제84조 (범죄에 대한 신고처리결과의 통지)**

범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처리정형을 1개월안으로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신고자는 신고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신고처리를 한 기관의 상급기관에 다시 신고할수 있다.

**제85조 (직접 수집한 범죄자료의 고착)**

사회안전, 검찰, 재판, 보위기관은 임무수행과정에 직접 수집한 범죄자료를 해당 법규에 따라 고착한다.

**제86조 (자백자료의 의무적접수 및 처리)**

자백은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하며 다른 법기관의 관할에 속할 경우에는 그날로 해당 기관에 넘겨준다.

자백자료를 접수받은 관할법기관은 정해진 기간안으로 자백자료의 정확성을 해당 법규에 따라 료해하고 처리한다.

## 제8절 형사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87조 (형사사건의 병합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제1심재판소는 여러명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거나 혼자서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른 형사사건으로서 각기 제기된 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한다.

**제88조 (혼자서 저지른 여러 가지 범죄사건병합에서 지켜야 할 요구)**

혼자서 자기가 사는 곳 또는 여러 지역에서 여러가지 범죄를 저질러 사건을 병합하여야 할 경우에는 범죄혐의자,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를 취급하고있는 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일부 범죄가 상급법기관의 관할에 속하거나 보위기관, 특별법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2조에 따라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제89조 (여러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사건병합에서 지켜야 할 요구)**

여러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사건은 주모자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주모자를 모를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먼저 취급하기 시작한 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여러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사건에서 일부가 상급법기관의 관할에 속하거나 보위기관, 특별법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3조에 따라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제90조 (형사사건의 병합절차)**

형사사건을 병합할 경우에는 사건병합결정, 판정을 하고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제91조 (형사사건분리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제1심재판소는 여러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형사사건에서 일부 범죄혐의자,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가 도주하였거나 일시적인 정신병 또는 중병을 앓고있어 병이 나을 때까지 다른자에 대한 취급처리를 뒤로 미룰수 없는것 같이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할수 없을 경우 그 사건을 분리할수 있다.

**제92조 (형사사건분리절차)**

형사사건을 분리하려 할 경우에는 사건분리결정, 판정을 하고 해당한 사건기록을 작성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분리한 형사사건을 관할법기관에 넘기는 절차는 이 법 제149조에 따른다.

## 제9절 형사소송의 중지 및 형사사건의 기각

**제93조 (형사소송의 중지사유)**

피심자, 피소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렸거나 도주한것과 같이 형사사건취급을 계속할수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중지한다.  
정신병, 중병에 대한 감정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94조 (형사소송의 중지절차)**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이 법 제9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을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
2. 검사는 기소를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
3. 판사, 재판소는 재판을 중지하는 판정을 한다.

**제95조 (의료처분의 절차)**

피심자, 피소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려 형사소송을 중지하려 할 경우에는 이 법 제 96조 2호, 3호에 따라 의료처분을 적용한다.

**제96조 (의료처분의 종류)**

의료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회복할수 없는 정신병환자에 대한 의료처분
2. 일시적인 정신병환자에 대한 의료처분
3. 중병에 걸린자에 대한 의료처분

**제97조 (의료처분받은자의 의무)**

의료처분을 받은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승인없이 결정서, 판정서에 지적된 지역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2. 병치료에 전념하여야 한다.
3. 증거를 없애는것 같은 형사사건의 조사,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98조 (보증인의 선정)**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피심자, 피소자에게 의료처분을 하는 경우 2명의 보증인을 세운다. 이 경우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받는다.

**제99조 (보증인의 의무)**

의료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의료처분을 받은자가 이 법 제97조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2. 의료처분을 받은자가 이 법 제97조에 규정된 의무를 어기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지역 사회안전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00조 (의료처분결정의 통고)**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의료처분을 적용한 경우 의료처분을 받은자와 그의 보증인에게 의료처분의 적용사유와 지켜야 할 의무를 알려준다.

**제101조 (의료처분받은자에 대한 감시)**

의료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감시는 그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사회안전기관이 한다.  
의료처분을 받은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사회안전기관은 그의 병상태와 치료정형, 류동정형을 본인이나 보증인으로부터 통보받으며 정상적으로 확인한다.  
해당 사회안전기관은 의료처분사유가 없어졌거나 의료처분을 받은자가 이 법 제97조를 어긴 경우에 의료처분을 적용한 법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02조 (형사소송증지의 해제, 취소)**

형사소송증지사유가 없어졌거나 의료처분을 받은자가 이 법 제97조를 어긴 경우에는 형사소송증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결정, 판정을 하고 형사사건취급을 계속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제103조 (형사사건의 기각사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한 뒤에 그것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기각한다.

1. 14살에 이르지 못한자의 행위인 경우
2. 저지른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을 경우

3.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4. 특사로 형벌적용이 면제되었을 경우
5. 확정된 판결, 판정이 있는 행위일 경우
6. 이 법에 규정된 예심기일안에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만 한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7. 범죄혐의자, 피심자, 피소자가 죽었을 경우
8. 정신병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른 다음 회복할수 없는 정신병을 앓고 있을 경우

**제104조 (형사사건의 분리기각사유)**

여러명이 함께 저지른 형사사건에서 일부 범죄혐의자, 피심자, 피소자에게 이 법 제103조의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분리하여 기각한다.

**제105조 (형사사건의 기각형식과 절차)**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이 법 제10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수사원은 수사취소결정을 하고 검사에게 알린다.
2. 예심원은 형사사건기각결정을 하고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3. 검사는 형사사건기각결정을 한다.
4. 판사, 재판소는 형사사건기각판정을 하고 검사에게 알린다.

**제106조 (형사사건의 기각통지)**

형사사건을 취소하거나 기각한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그에 대하여 48시간안으로 신고자, 피해자, 범죄혐의자, 피심자, 피소자, 관할지역 사회안전기관에 알려준다.

**제107조 (형사사건을 기각한 경우 의료처분)**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이 법 제103조 8호에 따라 형사사건을 취소하거나 기각하는 경우 의료처분결정, 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원,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제108조 (기각한 형사사건에서 구속자처리)**

수사, 예심을 취소하거나 형사사건을 기각한 경우에는 구금, 구류되어있는 범죄혐의자, 피심자, 피소자를 그날로 놓아준다.

**제109조 (기각한 형사사건에서 손해보상 및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수사, 예심을 취소하거나 형사사건을 기각한 수사원,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담보처분한 재산가운데서 피해자에게 돌려줄수 없는 물건을 몰수하고 근거문건을 사건기록에 붙인다. 손해보상청구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앞항의 경우 재산담보처분기간을 1개월 연장할수 있다. 그 내용은 수사, 예심취소결정서, 사건기각결정서, 판정서, 판결서에 밝힌다.

**제110조 (형사사건의 기각취소)**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형사사건의 기각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을 취소하는 결정, 판정을 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신고자, 피해자에게는 형사사건의 기각취소에 대하여 알려준다.

**제111조 (형사사건기각취소의 효력)**

형사사건의 기각취소를 한 경우 이미 진행한 소송행위와 수집한 증거는 효력을 가지며 그 사건취급을 계속한다.

## 제10절 사회적교양처분

**제112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사유)**

검사, 판사, 재판소는 형법 제54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한다.

**제113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시기)**

사회적교양처분은 기소, 제1심재판, 제2심재판, 비상상소심에서 적용한다.

**제114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절차)**

검사, 판사, 재판소는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려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검사는 상급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결정을 한다.
2. 판사, 재판소는 피소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판정, 판결을 내린다.

**제115조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의 처리)**

구류되어있는 피심자, 피소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결정, 판정,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날로 놓아준다.

**제116조 (사회적교양처분을 한 경우 증거물, 손해보상 및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한 경우 증거물, 손해보상 및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는 이 법 제44조, 제109조, 제346조에 따른다.

**제117조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교양의 담당자)**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교양은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거주하고있는 리(읍, 구, 동)에서 책임진다.

미성인에 대하여서는 그의 부모도 책임진다.

**제118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취소사유)**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가 법이 정한 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

을 경우에는 그에게 적용하였던 사회적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책임을 지운다. 이 경우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에 대하여서도 함께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119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취소절차)**

수사원, 예심원은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에게 이 법 제118조의 사유가 나타난 경우 사회적교양처분을 취소하여줄데 대하여 검사, 판사, 재판소에 제기하여야 한다.

검사, 판사, 재판소는 사회적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사건을 예심원 또는 검사에게 돌려보낸다.

## 제11절 손해보상

**제120조 (손해보상의 청구자)**

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보상할 책임이 있는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예심원 또는 판사, 재판소에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검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을 위하여 직접 재판소에 손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다.

**제121조 (손해보상청구의 통고)**

예심원, 판사, 재판소는 피심자, 피소자가 저지른 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다는것을 알려준다.

**제122조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자)**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자로는 범죄를 저질러 물질적손해를 준 피심자, 피소자, 범죄의 련루자 또는 범죄자의 행위에 대하여 재산적책임을 질자가 된다.

**제123조 (손해보상청구의 대상)**

손해보상청구는 범죄로 손해를 입은 물질적재산에 대하여 한다.

**제124조 (손해보상청구의 형식)**

손해보상청구는 말로 하거나 글로 써낼수 있다.

말로 한 손해보상청구에 대하여서는 조서에 밝힌다.

**제125조 (손해보상청구의 시기)**

손해보상청구는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한 때부터 재판에서 사실심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할수 있다.

손해보상청구를 하지 못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의 절차로 손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다.

**제126조 (손해보상청구의 심리)**

손해보상청구는 형사재판에서 함께 심리해결한다. 그러나 손해보상청구심리가 재판심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따로 심리할수 있다.

손해보상청구의 기각은 재판소가 한다.

**제127조 (기각된 손해보상청구의 재청구금지)**

손해보상청구를 형사재판심리에서 기각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청구할수 없다.

손해보상청구를 민사재판에서 기각하였을 경우에도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다시 청구할수 없다.

**제128조 (손해보상청구수수료의 면제)**

범죄로 입은 물질적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29조 (손해보상재산의 제출)**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손해보상책임이 있는자가 화폐재산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은행에 입금시키게 하고 립시입금증을 받은 다음 손해보상재산제출조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물자재산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손해보상재산제출조서를 작성하고 봉인하여 형사사건을 취급 처리하는 기관에 사건기록과 함께 보관하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물자재산은 해당 기관에 보관 시키고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인다.

## 제3장 수사

**제130조 (수사의 임무)**

수사의 임무는 범죄혐의자를 찾아내어 확증하는 것이다.

**제131조 (수사의 시작)**

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았거나 범죄자료를 직접 얻은 수사원은 근거를 밝힌 수사시작결정을 하고 수사를 시작한다.

**제132조 (수사시작결정서의 처리)**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24시간안으로 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보낸다.

결정서등본을 받은 검사는 수사근거가 없을 경우 수사시작결정을 취소할데 대하여 지시한다.

**제133조 (수사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수사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범죄혐의자를 찾아내고 확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받을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에게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제134조 (수사의 방법)**

수사원은 범죄혐의자를 찾아내고 확증하기 위하여 검증, 수색, 압수, 심리실험, 식별, 대질행위를 할수 있으며 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앞항의 행위는 이 법 제4장의 해당 조, 항에 따른다.

**제135조 (관할지역밖에서의 수사)**

수사원은 범죄혐의자를 찾아내고 확증하기 위하여 자기 관할지역밖에서도 수사를 직접 할수 있다. 이 경우 그 관할지역의 검사가 감시할수 있다.

**제136조 (수사의 의뢰)**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밖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수사원에게 의뢰할수 있다.

수사를 의뢰받은 수사원은 5일안으로 수사하고 회보한다.

**제137조 (수사원은 증거수집제한)**

범죄혐의자를 확증한 수사원은 증거수집을 할수 없다. 그러나 범죄의 흔적이 없어지거나 증거를 얻을수 없게 되는것과 같이 증거수집을 뒤로 미룰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수집한다.

**제138조 (수사사건의 이송)**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을 관할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경우 수사사건이 송결정을 하여 검사에게 알리고 해당 수사기관에 넘긴다. 이 경우 범죄혐의자가 구금되어있을 경우에는 사건이송 및 이감결정을 한다.

수사과정에 알게 된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자료도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준다.

**제139조 (검사의 승인없이 체포, 수색, 압수할수 있는 사유)**

수사원이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에 발견되었을 경우
2.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3. 범죄혐의자 몸 또는 거처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4. 범죄혐의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하거나 뒤쫓기우고있을 경우
5. 범죄혐의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제140조 (체포한 범죄혐의자의 처리)**

수사원은 이 법 제139조에 따라 체포한 범죄혐의자를 구금하였을 경우 구금한 때부터 48시간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금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긴다.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구금한 날부터 10일안에 범죄혐의자라는것이 확증되지 않으면 즉시 내놓는다.

구금된자에게 이 법 제93조의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구금을 해제 또는 중지한다. 구금해제를 받은자에게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금해제를 취소하며 도주하였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구금중지를 해제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 제141조 (구금하지 않을 범죄혐의자의 처리)

수사원은 체포하여 구금한 범죄혐의자가 구금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금한 때로부터 48시간안으로 체포날자, 사유 같은것을 검사에게 알리고 놓아주어야 한다.

#### 제142조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

범죄혐의자를 확증한 수사원은 곧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고 사건을 예심에 넘긴다. 이 경우 도주하였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은 범죄혐의자는 체포하여 예심에 넘긴다.

#### 제143조 (수사에 대한 감시)

수사감시를 맡은 검사는 감시결정서를 작성한다.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의 수사에 참가하거나 소송문건을 검토할수 있으며 위법적인 수사를 바로잡거나 필요한 수사를 할데 대하여 수사원에게 서면으로 결정 또는 지시할수 있다.

수사원은 검사의 결정,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상급검찰소는 5일안으로 해결한다.

## 제4장 예심

### 제1절 예심의 임무와 기간

#### 제144조 (예심의 임무)

예심의 임무는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것이다.

#### 제145조 (예심에서 밝혀야 할 내용)

예심에서는 객관적증거에 근거하여 피심자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행위정도의 결과, 범죄를 저지른데서 논 역할과 책임정도 같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을 남김없이 밝힌다.

#### 제146조 (반복조사금지)

예심에서는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가 검토확인된 경우그대로 쓸수 있다.

수사에서 넘긴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심시작결정, 형사책임추궁결정, 피심자심문, 예심종결과 같은 중요한 예심행위만을 진행하고 예심을 종결한다.

#### 제147조 (예심의 기간)

예심은 범죄사건의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안으로 끝낸다.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10일안으로 끝낸다.

검사, 판사, 재판소가 돌려보낸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20일안으로, 로동단련형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7일안으로 끝낸다.

#### 제148조 (예심기간의 연장)

이 법 제147조 1항의 기간에 예심을 끝낼수 없는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의 예심은 이 법 제184조 1, 2항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10년 이상의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서는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5개월, 그밖의 로동교화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서는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4개월까지 할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이 이 법 제147조 2항에 규정된 기간에 끝낼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5일간 연장할수 있다.

#### 제149조 (예심사건의 이송)

예심원은 자기 관할이 아닌 범죄사건에 대하여서는 긴급히 필요한 예심행위를 한 다음 검사에게 알리고 사건이송결정을 하여 관할법기관의 예심원에게 보낸다. 이 경우 피심자가 구류되어있다면 사건이송 및 피심자이감결정을 한다.

#### 제150조 (관할지역밖에서의 예심)

예심원은 예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에 대한 개별적예심행위를 자기 관할지역밖에서 직접 할수 있다. 이 경우 그 관할지역의 감사가 감시할수 있다.

#### 제151조 (예심의 의뢰)

예심원은 자기 관할지역밖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개별적예심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의뢰할수 있다.

예심을 의뢰받은 예심원은 5일안으로 예심을 하고 회보한다.

#### 제152조 (예심에 대한 감시)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의 예심에 참가하거나 예심과정에 작성한 형사소송문건을 검토할수 있으며 위법적인 예심행위를 바로잡거나 예심원에게 필요한 예심행위를 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수 있다.

예심원은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상급검찰소는 5일안으로 해결한다.

## 제2절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

#### 제153조 (예심의 시작)

예심원은 범죄사건을 넘겨받은 때부터 48시간안으로 예심시작결정을 하고 예심을 시작한다. 예심원은 예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24시간안으로 검사에게 알린다.

**제154조 (형사책임추궁)**

예심원은 피심자의 확정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다. 이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서를 작성한다.

**제155조 (형사책임추궁결정과 변호인선정권리의 통고)**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때로부터 48시간안으로 피심자에게 알려준다. 이 경우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밝힌다.

**제156조 (형사책임추궁결정서의 발송)**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서등본을 48시간안으로 검사에게 보낸다.

**제157조 (형사책임추궁결정서의 변경, 취소, 추가)**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이후 이미 적용한 형법의 조, 항, 단을 변경, 취소하거나 새로운 형법의 조, 항, 단을 추가하여 적용할 사유가 밝혀진 경우 그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보낸다.

### 제3절 피심자심문

**제158조 (피심자심문시기)**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알려준 때부터 48시간안으로 심문한다.

**제159조 (피심자심문기간)**

피심자심문은 8~20시사이에 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앞항에 규정된 시간밖에도 피심자를 심문할수 있다. 이 경우 검사의 참가밑에 심문하여야 한다.

**제160조 (피심자호출 및 구인)**

구류하지 않은 피심자를 예심장소에서 심문하려는 그에게 호출장을 보낸다.

정당한 리유없이 호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심자를 구인할수 있다.

구인의 집행은 구인결정에 따라 예심원이 한다.

**제161조 (피심자심문장소와 호송)**

구류한 피심자심문은 예심실에서 한다.

피심자의 호송은 예심원의 요구에 따라 계호원이 한다.

**제162조 (피심자체포의뢰)**

예심원은 피심자가 도주하였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체포의뢰결정을 한다.

체포의뢰결정서에는 피심자를 찾는 데 필요한 자료를 밝히며 그것을 체포령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보낸다.

체포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은 피심자를 체포하고 회보한다.

**제163조 (강제적인 심문의 금지)**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할수 없다.

**제164조 (피심자심문의 개별화)**

예심원은 피심자가 여럿인 경우 서로 련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다른 피심자가 없는 장소에서 피심자를 심문한다.

**제165조 (피심자의 권리통고)**

피심자를 심문하는 예심원은 먼저 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피심자의 권리를 알려준다.

**제166조 (피심자의 권리)**

예심에서 가지는 피심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지적된 범죄를 인정할수 없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2. 예심원이 추궁하는 범죄를 인정할수 없을 경우에는 직접 반증하거나 정확히 조사해명하여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3.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수 있다.
4. 예심원을 비롯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하여 제기할수 있다.
5. 자기의 진술을 심문조사에 직접 쓰거나 심문조서의 내용을 수정, 삭제, 보충하여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6.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사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제167조 (피심자의 의무)**

피심자는 예심원의 물음에 답변하며 호출에 응하여야 한다.

피심자는 증거를 없애는것 같은 형사사건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68조 (피심자심문에 기록수 및 립회인 참가)**

피심자심문에는 기록수가 참가한다.

예심원은 필요에 따라 피심자심문에 립회인을 세울수 있다.

**제169조 (피심자의 진술과 예심원의 질문)**

예심원은 피심자를 심문하는 경우 그에게 형사책임추궁인정여부와 범죄에 대하여 먼저 말하게 하고 필요한 질문을 한다.

**제170조 (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 또는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있는 피심자에 대한 심문)**

예심원은 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를 심문할 경우 통역인율, 언어장애자, 청각장애자에 대한 피심자심문을 진행할 경우 그의 의사표시를 해석할수 있는자를 참가시킨다. 이 경우 통역인율과 해석인에게 통역 또는 해석을 의식적으로 그릇되게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준다.

통역인 또는 해석인을 심문에 참가시켰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밝힌다.

**제171조 (피심자심문조서의 작성)**

피심자를 심문한 경우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 제4절 체포와 구속처분

**제172조 (체포, 구속처분의 목적)**

체포, 구속처분은 피심자, 피소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다.

**제173조 (비법적인 체포, 구속의 금지)**

법에 규정되어있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체포, 구속할수 없다.

검사는 비법적으로 체포, 구속되어있는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그를 놓아준다.

**제174조 (체포, 구속처분의 시기)**

체포, 구속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기 전에 수사원,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수 있다. 이 경우 10일안으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면 구류구속처분을 해제한다.

**제175조 (체포, 구류의 구속처분의 사유)**

체포, 구류구속처분은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수 있다.

임신한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구속처분을 할수 없다.

**제176조 (체포의 담당자)**

체포는 수사원, 예심원이 한다.

체포령장이 없이는 체포할수 없다.

**제177조 (체포령장발급신청과 체포령장의 발급)**

구금하지 않은 피심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은 체포령장발급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어 승인을 받는다.

검사의 승인은 체포령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78조 (체포, 구류구속처분의 절차)**

범죄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을 하려 할 경우에는 그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체포령장을 제시하며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낸다.

구금된 범죄혐의자를 구류구속처분하러 할 경우에는 그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며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낸다.

**제179조 (체포, 구속의 통지)**

체포, 구속처분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심자에게 알려주며 체포, 구속한 때부터 48시간안으로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장소를 그의 가족과 소속단체,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알려준다.

**제180조 (구속처분의 종류)**

구속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구류구속처분
2. 자택구속처분
3. 지역구속처분

**제181조 (구속처분결정서의 작성)**

피심자를 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적용한 형법의 조, 항, 단과 구속처분리유를 밝힌 결정서를 만든다.

**제182조 (구속처분결정의 승인)**

구속처분결정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수 있다.

검사는 예심원에게 구속처분결정을 하게 하거나 구속처분결정을 취소하거나 구속처분을 변경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수 있다.

**제183조 (구류의 기간)**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개월을 넘을수 없다.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을 넘을수 없다.

검사, 재판소가 돌려보낸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0일,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7일을 넘을수 없다.

**제184조 (구류기간의 연장)**

이 법 제147조 1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인 경우 시(구역), 군예심과 도(직할시)예심원은 도(직할시)검찰소 소장, 중앙예심원은 중앙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 늘일수 있다.

구류기간을 더 연장하여야 할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에 대하여서는 중앙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10년이상의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 단을 적

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인 경우 2개월, 그밖의 로동교화형사건인 경우 1개월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으로서 이 법 제147조 2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5일간 연장할수 있다.

#### 제185조 (자택구속처분)

자택구속처분은 질병, 임신 같은 사정으로 피심자를 구류구속처분하는것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다. 이 경우 피심자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자택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2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우며 보증인으로부터 피심자를 언제든지 예심원, 검사, 재판소의 요구대로 보내겠다는 보증서를 받는다.

#### 제186조 (지역구속처분)

지역구속처분은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심자, 피소자를 예심원, 검사 또는 재판소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부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다. 이 경우 피심자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지역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서약서를 받는다.

#### 제187조 (구속처분결정의 해제 및 변경)

예심원은 예심과정에 언제든지 이유를 밝힌 결정으로 피심자에 대한 구속처분을 해제하거나 검사의 승인을 받아 구속처분의 종류를 바꿀수 있다.

## 제5절 검증과 심리실험

#### 제188조 (검증의 목적)

예심원은 범죄와 관련이 있는 장소, 물건, 사람의 몸에서 사건해결에 의의가 있는 증거물, 흔적, 특징을 찾아내고 고착하기 위하여 검증을 한다.

#### 제189조 (검증의 종류)

검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장검증
2. 증거물검증
3. 죽은 사람에 대한 검증
4. 산 사람에 대한 검진

#### 제190조 (범죄현장에서 증거물검증)

범죄현장에서 찾아냈거나 압수한 물건과 문서는 현장에서 검증한다.

검증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물을 다른 장소에 옮겨놓고 검증할수



있다.

**제191조 (검증의 동의)**

검증에 필요한 경우에는 임자의 동의를 얻어 묘를 파거나 물건을 파괴할수 있다.  
임자의 동의를 얻을수 없는 경우에도 검증에 필요한 행위를 할수 있다.

**제192조 (검진결정서 및 검진말김결정서의 작성)**

검진하려 할 경우에는 검진결정서를 만든다.  
검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에는 검진말김결정서를 작성한다.

**제193조 (검증, 검진의 시간)**

검증, 검진은 낮에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밤에도 검증, 검진을 할수 있다.

**제194조 (검진결정서의 제시)**

검진을 하는자는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검진결정서 또는 검진말김결정서를 검진을 받을 자에게 제시한다.

**제195조 (검증, 검진의 립회)**

검증, 검진에는 립회인을 세운다.  
녀성에 대한 검진에는 녀성을 립회시킨다.

**제196조 (검증에 감정인의 참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에 감정인을 참가시킬수 있다.

**제197조 (검증, 검진조서의 작성)**

검증, 검진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검증, 검진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과 검진결과를 밝혀야 하며 락도와 사진을 붙일수 있다.  
수사원, 예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검진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검진조서를 만든다.

**제198조 (심리실험의 사유)**

보거나 듣거나 일정한 행위의 가능성여부와 그러한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이루어질수 있었겠는가를 검토확인하기 위하여 심리실험을 할수 있다.

**제199조 (심리실험에서 지켜야 할 요구)**

심리실험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검토확인하여야 할 행위나 현상이 있는 당시와 같은 장소, 시간, 환경, 조건에서 하여야 한다.
2. 립회인을 세우고 여러번 하여야 한다.
3. 심리실험참가자에게 예심원의 의사를 강요하거나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제200조 (심리실험의 금지사유)**

사람의 생명, 건강, 인격이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심리실험을 할수 없다.

**제201조 (심리실험조서의 작성)**

심리실험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심리실험을 위한 조건보장정형, 심리실험과정, 결과를 밝힌다.

## 제6절 감정

**제202조 (감정의 사유)**

감정은 범죄사건의 조사에 전문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한다.  
비정상적인 주검, 몸에 입은 상해정도와 정신병의 증상이 있는 증인, 범죄자의 정신상태, 반동사상문화예술작품, 력사유물은 의무적으로 감정한다.

**제203조 (감정의 종류)**

감정에는 법의학감정, 법정신병학감정, 법화학감정, 흔적감정, 필적감정, 탄도학감정, 기술감정, 회계감정, 인물감정 같은것이 속한다.

**제204조 (감정기관)**

감정은 국가의 전문감정기관이 한다.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그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소유한자에게 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제205조 (감정인의 통고)**

감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정기관이나 감정인을 피심자, 피소자에게 알려준다.

**제206조 (감정의 의뢰)**

감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정의뢰결정서를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보낸다. 감정의뢰결정서에는 해명할 내용과 감정에 필요한 자료, 감정인의 의무, 허위감정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것을 밝힌다.  
감정을 의뢰할 경우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보내준다.

**제207조 (감정의뢰에 대한 의무적리행)**

감정을 의뢰받은 기관 또는 감정인은 의무적으로 감정하며 감정을 의뢰한 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208조 (감정인의 권리)**

감정인은 감정을 의뢰한 기관에 감정에 필요한 자료나 해당 전문일군을 참가시켜줄것을 요구

할수 있다.

**제209조 (감정기간과 회보)**

감정인은 10일안으로 감정을 진행하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의뢰한 기관에 회보한다.

감정서에는 감정에서 밝혀낸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감정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한다.

**제210조 (감정인심문)**

감정에서 명백하지 못한것이 있거나 감정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감정인을 심문할수 있다.

앞항의 경우 이 법 제229조, 제230조에 따른다.

**제211조 (재감정)**

감정에서 사실이 정확히 밝혀지지 못하였거나 감정결과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결정으로 다시 감정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 제7절 수색과 압수

**제212조 (수색, 압수의 목적과 사유)**

범죄자를 찾아내거나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물건이나 문서를 수집, 리용하기 위하여 수색, 압수를 한다.

수색은 범죄자가 숨어있거나 범죄를 밝히는데 필요한 물건, 문서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압수는 사건해결에 의의있는 물건, 문서를 내놓을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할수 있다.

**제213조 (수색, 압수의 승인)**

수색, 압수는 검사의 승인밑에 한다.

수색, 압수하려는 예심원은 수색, 압수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제214조 (수색, 압수결정서의 제시)**

예심원은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수색, 압수결정서를 수색, 압수당하는자에게 제시한다.

**제215조 (수색장소의 경비조직)**

수색장소에는 필요한 성원으로 경비를 세울수 있다.

**제216조 (수색, 압수의 시간)**

수색, 압수는 낮에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밤에도 수색, 압수를 할수 있다.

**제217조 (수색, 압수의 립회)**

수색, 압수를 할 경우에는 립회인을 세운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건 또는 문서를 수색, 압수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를, 녀성의 몸을 수색할 경우에는 녀성을 립회시킨다.

**제218조 (외교적절차에 의한 수색, 압수)**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대표부의 건물 또는 살림집을 범죄 및 범죄자의 적발과 관련하여 수색하거나 물건, 문서 같은것을 압수하려 할 경우에는 외교적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참가하며 대외사업일군과 해당 대표부의 대표자를 립회시킨다.

**제219조 (압수대상과 방법)**

압수는 범죄와 관련있는 물건과 문서만을 한다. 이 경우 압수품목록을 만들어 사건기록에 붙이며 압수당한자에게는 압수품목록등본을 준다.

**제220조 (수색, 압수조서의 작성)**

수색, 압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수색, 압수과정에 발견한 물건, 문서의 위치와 상태와 특징, 수량, 제기된 의견을 밝힌다.

## 제8절 증인심문

**제221조 (증인으로 될수 있는 사유)**

증인으로는 해당 범죄사건에 대하여 들었거나 보았거나 느낀것이 있는자가 될수 있다.

**제222조 (증인의 권리)**

증인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의견을 제기할수 있으며 진술을 조서에 직접 쓰거나 조서를 수정, 삭제, 보충하여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223조 (증인의 의무)**

증인은 예심원이 부르면 제때에 응해야 한다.

증인은 범죄와 관련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정확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224조 (증인심문장소)**

증인심문은 그가 있는 장소에서 한다.

필요에 따라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할수 있다.

**제225조 (증인 호출 및 구인)**

증인을 해당 장소에서 심문하려는 경우에는 호출장을 보낸다.

정당한 리유없이 오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수 있다.

구인의 집행은 구인결정에 따라 예심원이 한다.

**제226조 (조선말을 모르거나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있는 증인에 대한 심문)**

조선말을 모르거나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있는자를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의 절차는 이 법 제 170조에 따른다.

**제227조 (증인심문의 개별화)**

증인심문은 다른 증인이 없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한다.

예심원은 증인심문이 끝날 때까지 같은 범죄에 대한 증인들이 서로 연계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

**제228조 (14살에 이르지 못한 증인심문)**

14살에 이르지 못한자를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에는 교원이나 부모, 후견인, 그밖의 보호자를 립회시킨다.

**제229조 (증인심문절차)**

증인을 심문하는 예심원은 먼저 증인의 신분, 피심자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다음 심문하는 이유,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여주고 범죄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예심원은 증인이 알고있는 범죄사실을 먼저 말하게 하고 그의 진술이 끝나면 필요한 질문을 할수 있다.

**제230조 (증인심문조서의 작성)**

증인을 심문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 제72조, 제171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한다.

## 제9절 대질심문과 식별심문

**제231조 (대질심문의 사유)**

같은 범죄에 대한 여러 진술자의 말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차이를 다른 방법으로 해명할수 없을 경우에는 대질심문을 한다.

**제232조 (대질심문에서 지켜야 할 요구)**

대질심문을 하려는 예심원은 해명하려는 문제를 진술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말며 그들이 공모하거나 다른 진술자의 위협이나 거짓진술의 영향을 받아 본의아닌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기된 사실을 그대로 말하게 한다.

**제233조 (차이점을 밝히기 위한 질문)**

예심원은 대면시킨자의 진술이 끝나면 차이점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고 답변하게 한다.

**제234조 (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질문권의 보장)**

예심원은 대면시킨자에게 상대방의 말에서 밝힐것이 있으면 밝히고 물어볼것이 있으면 물어보게 한다. 이 경우 예심원의 승인을 받게 한다.

**제235조 (대질심문조서의 작성)**

대질심문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대면시킨자가 증인, 감정인인 경우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데 대하여 알려준 정형, 문제로 제기된 사실에 대한 진술, 예심원의 질문과 차례로 답변한 내용, 상대방에게 서로 물어본 정형과 답변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236조 (식별심문의 목적과 요구)**

범죄사건해결과 관련된 사람 또는 물건을 가려내기 위하여 식별심문을 한다.

식별심문은 식별대상과 비슷한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물건을 동시에 식별자에게 보이는 방법으로 한다.

**제237조 (식별대상특징의 사전료해와 식별정형확인)**

예심원은 식별대상을 보이기 전에 식별자에게 그가 알고있는 대상의 특징을 자세히 물어보고 조서에 밝힌다.

식별과정에 식별자가 어떤 특징에 의하여 아는 사람 또는 물건을 갈라냈는가를 묻고 그것을 확인한다.

**제238조 (식별심문의 립회)**

식별심문에는 립회인을 세운다.

**제239조 (식별심문조서의 작성)**

식별심문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식별자가 증인인 경우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데 대하여 알려준 정형, 식별대상을 보이기 전에 식별자에게 알고있는 대상의 특징을 물어본 정형과 그에 대한 답변, 식별과정과 결과를 사실대로 밝힌다.

## 제10절 재산담보처분

**제240조 (재산담보처분의 목적)**

재산몰수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을 취급하는 예심원은 형벌집행을 위하여 재산담보처분을 한다.

재산담보처분은 범죄로 입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와 국민의 재산상손해를 보상시켜주기 위해서도 할수 있다.

**제241조 (재산담보처분의대상)**

재산담보처분을 할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재산물수형을 줄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자의 재산.
2. 손해보상에 책임있는 피심자 또는 피심자의 범죄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직접 책임을 져야 할자와 그 련루자의 재산.

**제242조 (재산담보처분의 시기)**

재산담보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고 손해보상자를 확정된 다음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앞항에 관계없이 재산담보처분을 할수 있다.

**제243조 (재산담보처분의 범위)**

재산담보처분은 재산상가치가 있는것으로 한다. 이 경우 손해보상청구가 제기된 량 또는 몰수할 량만큼 한다.

**제244조 (재산담보처분결정)**

재산담보처분을 하려는 예심원은 그 이유를 밝힌 결정을 한다.

결정은 재산담보처분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45조 (재산담보처분의 방법)**

재산담보처분을 하는 예심원은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재산담보처분결정서를 담보처분당하는자에게 제시하며 립회인을 세운다.

**제246조 (재산담보처분조서의 작성)**

재산담보처분을 한 예심원은 재산담보처분조서와 2부의 재산목록을 만들어 1부는 재산보관자에게 준다.

재산보관자에게는 담보처분한 재산을 처분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준다.

**제247조 (재산담보처분의 해제 또는 취소)**

예심원은 재산담보처분을 한 다음 그것이 필요없게 되였거나 잘못되였다는것이 확증되면 해제 또는 취소결정을 한다.

**제248조 (재산담보처분을 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재산이 없어 담보처분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 조서를 작성한다.

**제249조 (썩거나 못쓰게 될 재산의 처리)**

담보처분한 재산가운데서 썩거나 못쓰게 될수 있는 물건은 그 이유를 밝힌 결정을 하고 해당 기관에 넘겨준다. 이 경우 결정서와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사진기록에 첨부한다.

## 제11절 예심의 종결

### 제250조 (예심의 종결사유)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전모와 범죄를 밝히는데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심을 종결한다.

### 제251조 (예심의 종결절차)

예심을 종결하려는 예심원은 예심을 끝낸다는것을 피심자에게 알려주고 범죄와 관련되는 기록을 보여주며 신청할것이 없는가를 물어본다.

피심자의 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예심을 더 하며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한다.

피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예심을 더 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한 기록을 보여준다.

### 제252조 (검사의 예심종결참가)

예심의 종결은 검사의 참가밑에 한다.

### 제253조 (예심종결조서의 작성)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하면 조서를 작성한다.

예심종결조서에는 피심자의 이름, 종결한 날자와 시간, 사건기록을 보인 정형, 제기된 의견의 처리정형, 검사의 참가정형 같은것을 밝힌다.

### 제254조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한 다음 그날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긴다. 이 경우 증거물첨부결정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 제255조 (권리침해에 대한 의견제기와 검사의 처리)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 피심자와 피심자의 보증인은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날부터 7일안으로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검사는 3일안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준다.

### 제256조 (권리침해의견에 대한 예심원, 검사의 처리)

예심원, 검사는 이 법 제255조 1항의 의견을 제기받았을 경우 48시간안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 또는 검찰소 소장에게 보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검찰소 소장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심 또는 감시를 계속한다.



## 제5장 기소

### 제257조 (기소의 임무)

기소의 임무는 예심종결한 범죄사건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범죄의 전모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소에 넘기는 것이다.

### 제258조 (기소의 기간)

사건을 접수한 검사는 그날로 사건검토결정을 하고 15일안으로 검토처리한다. 그러나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은 5일안으로 검토처리한다.

### 제259조 (기소를 위한 구류기간)

기소를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5일이다. 그러나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5일이다.

### 제260조 (사건검토내용)

사건기록검토에서 중심을 두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전모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 사정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가.
2. 수사, 예심을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대로 하였는가.
3. 인정된 범죄에 대하여 형법의 조, 항, 단을 옳게 적용하였는가.

### 제261조 (범죄사건기소)

검사는 예심이 충분하고 옳게 진행되었을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한다.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하는 경우 기소장과 사건기록을 증거물과 함께 보낸다.

### 제262조 (기소장의 작성)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하려는 검사는 기소장을 작성한다.

기소장에는 작성날자, 작성자의 직장직위, 이름, 피심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예심에서 조사 확증된 사실과 증거, 피심자의 형사책임을 확정하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사정, 인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의 조, 항, 단과 형사소송법조항, 기소할 재판소를 밝힌다.

### 제263조 (기소장에 첨부할 문건)

기소장에는 재판심리에 참가시켜야 할 피심자와 증인, 감정인의 이름과 사는 곳, 피심자를 구속한 날자와 구속되어있는 곳, 증거물, 손해보상청구와 재산담보처분정형을 밝힌 문건을

불인다.

**제264조 (범죄사건을 예심에 돌려보내는 결정)**

검사는 예심이 불충분하게 되어 기소할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지적하여 예심원에게 돌려보낸다.

**제265조 (반복기소의 금지)**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판결할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재판소가 반송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해당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기소할수 없다.

## 제6장 제1심재판

### 제1절 제1심재판의 임무와 제1심재판소구성

**제266조 (제1심재판의 임무)**

제1심재판의 임무는 재판심리를 통하여 범죄와 범죄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는것이다.

**제267조 (제1심재판의 공개)**

제1심재판은 공개한다.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수 있을 경우에는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제268조 (재판활동의 독자성보장)**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제269조 (확정된 사실의 인정)**

형사재판이외의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나 확정된 사실이 범죄로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형사재판에서 심리확정한다.

**제270조 (제1심재판소의 구성)**

제1심재판소는 재판장인 판사와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재판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271조 (재판소성원의 고착과 교체)**

같은 범죄사건의 재판은 처음 구성하였던 재판소성원으로 한다.

재판심리도중에 재판소성원을 바꾸었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

**제272조 (재판심리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의 참가)**

재판심리는 검사와 변호인의 참가밑에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가 참가하지 못하였거나 피소자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검사나 변호인의 참가없이도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제1심재판에는 재판서기가 참가한다.

**제273조 (재판심리에서 재판장)**

재판장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재판심리와 재판관계자들의 활동을 지휘하며 그들이 재판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통제한다.

**제274조 (재판심리에서 검사)**

재판심리에서 검사는 피소자의 범죄를 폭로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며 재판이 법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는가를 감시한다.

**제275조 (재판심리에서 변호인)**

재판심리에서 변호인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고 피소자의 행위가 옳게 분석평가되며 그의 법적권리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한다.

**제276조 (법정 정면장식과 좌석배치, 복장의 착용)**

법정 정면벽가운데 옷부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을 걸며 그아래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드리운다.

재판소성원은 법정 주석단자리에, 검사와 변호인, 증인, 피소자는 주석단아래의 좌측과 우측에 서로 마주한 자리에, 재판서기는 주석단아래의 가운데자리에 앉는다.

재판소성원은 재판할 때 재판복을 입으며 검사는 정해진 복장을 착용한다.

**제277조 (피소자의 재판심리참가)**

재판심리에는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재판심리의 참가를 거부하는 피소자는 구인 또는 구속하여 재판한다.

**제278조 (법정에서 피소자구속금지)**

법정에서는 피소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항하거나 도망치려는 피소자는 할수있다.

**제279조 (피소자의 권리)**

재판에서 가지는 피소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재판소성원들과 재판관계자들가운데 이 법 제16~23조의 사유가 있는자가 있을 경우에는 배제신청을 할수 있다.
2. 기소사실이 근거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것을 부인할수 있다.
3. 새로운 증거수집을 신청할수 있으며 새로운 증인의 재판참가를 요구할수 있다.
4. 증인 및 감정인 또는 공동피소자에게 질문할수 있다.

5. 변호인을 선정하거나 다른 변호인으로 바꾸어줄데 대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으며 변호인의 방조를 포기할수 있다.
6. 재판에서 자기의 리익과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7. 사실심리가 끝난 다음 마지막말을 할수 있다.
8. 상소할수 있다.

**제280조 (피소자의 의무)**

재판에서 피소자는 물음에 답변하며 재판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81조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는 경우)**

손해보상청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보상청구를 따로 할수 있다.

**제282조 (현지공개재판의 조직)**

재판소는 균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와 피해자를 미루한 사건 관계자들이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하게 할수 있다.

**제283조 (제1심재판기간)**

제1심재판소는 재판준비판정을 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재판을 끝낸다. 그러나 제1심재판기간에 재판을 끝낼수 없는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10일간 연장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소자에 대한 재판은 재판준비판정을 한 날부터 10일안으로 끝낸다.

**제284조 (제1심재판을 위한 구류기간)**

제1심재판을 위하여 피소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30일이다. 그러나 제1심재판기간에 재판심리를 끝낼수 없는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10일간 연장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소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이다.

**제285조 (재판단계에서의 사건이송)**

판사,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판정을 할수 있다.

**제286조 (재판에 대한 검사의 감시)**

검사는 재판에 참가하거나 재판기록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재판이 법적절차와 요구에 따라 정확히 진행되는가를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검사의 의견을 받은 경우 재판준비에서는 판사, 재판심리에서는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 제2절 재판준비

### 제287조 (재판준비의 담당자)

재판준비는 사건을 맡은 판사가 한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48시간안으로 재판준비판정을 한다.

### 제288조 (사건검토내용)

재판준비에서 검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사, 예심에서 범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되었는가.
2. 기소에 근거가 있는가.
3. 기소된 범죄에 대하여 형법의 조, 항, 단이 옳게 적용되었는가.
4. 근거없이 범죄의 공모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은것은 없는가.
5.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를 정확히 지켰는가.

### 제289조 (범죄현장과 증거의 확인)

판사는 재판심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에 나가 범죄현장과 증거를 확인할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증거를 수집할수 없다.

### 제290조 (범죄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

판사는 예심이 충분히 진행되어 재판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한다.

기소된 범죄에서 다름이 없으나 형법의 조, 항, 단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기소한 형법의 조, 항, 단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 범죄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긴다.

### 제291조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

재판심리를 할수 없을 정도로 예심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심하게 어겼거나 기소장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한다.

### 제292조 (변호인선임의뢰)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였던 피심자가 재판준비단계에서 변호인의 방조를 요구한 경우 판사는 해당 변호사위원회에 변호인선임의뢰를 한다.

### 제293조 (재판준비에서 검사의 의견처리)

판사는 재판준비에서 이 법 제94조, 제104조, 제1055조, 제114조 2항, 제285조, 제290조 2항, 제291조에 따라 판정하려 할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는다.

향의를 위하여 검사가 요구하는 판정서등본은 판정을 한 날부터 2일안으로 보낸다.

**제294조 (재판준비에서 한 판정에 대한 검사의 항의)**

재판준비에서 한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검사는 상급재판소에 항의할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제358조에 따른다.

**제295조 (기소장 및 판정서등본의 송달)**

판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3일전에 피소자에게 기소장등본을 보낸다.

기소된 형법의 조, 항, 단을 고치는 판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3일전에 피소자와 변호인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낸다.

**제296조 (재판심리날자의 통지)**

판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3일전에 인민참심원, 검사,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에게 재판심리날자를 알려주며 증인, 감정인에게는 호출장을 보낸다.

재판심리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할 증인이 정당한 리유없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한다.

앞항의 경우 구인절차는 이 법 제225조에 따른다.

**제297조 (신청, 의견의 처리)**

피십자가 기소된 다음 재판준비단계에서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신청과 의견은 사건을 맡은 판사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재판심리에서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신청과 의견은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 제3절 재판심리

**제298조 (제1심재판의 절차)**

제1심재판은 재판심리시작, 사실심리, 론고와 변론, 피소자의 마지막 말, 판결의 선고절차로 한다.

**제299조 (제1심재판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재판시작을 알리고 피소자에게 본인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한 다음 기소장등본접수 정형과 구금날자를 묻고 피소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준다.

**제300조 (재판관계자들의 의견청취)**

재판장은 재판관계자들에게 재판소성원과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알려주고 바꿀데 대한 의견이 없는가를 묻는다.

**제301조 (오지 않은 증인, 감정인의 통고)**

재판장은 재판심리에 호출한 증인, 감정인이 오지 못한 경우 그 리유를 재판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으며 새 증거를 신청할것이 없는가를 묻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302조 (사실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사실심리를 시작한다는것을 알린 다음 검사에게 기소장을 읽게 한다.  
검사가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서기에게 기소장을 읽게 한다.

**제303조 (기소사실의 인정확인)**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기소사실을 인정하는가를 묻는다.

**제304조 (심리순서의 확정)**

재판장은 검사, 변호사의 의견을 묻고 인민참심원과 합의하여 심리순서를 정한다.  
심리순서는 법정에 알린다.

**제305조 (피소자심문순서)**

피소자에 대한 심문은 먼저 피소자에게 자기 범죄를 말하게 한 다음 재판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재판관계자들이 하도록 한다.

**제306조 (피소자에 대한 개별심문)**

여러명의 피소자를 함께 심리하는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피소자를 한사람씩 법정에 불러다 심문할수 있다.

**제307조 (재판질서를 문란시키는 피소자에 대한 처분)**

재판장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 재판질서를 문란시키는 피소자는 판정으로 법정에서 내보내고 사실심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사실심리를 끝낸 다음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제308조 (증인심문의 시작)**

증인에 대한 심문은 순서에 따라 1명씩 법정에 불러다 한다.  
재판장은 먼저 증인에게 본인이 틀림없는가, 피소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거짓 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준 다음 그가 알고있는것을 말하게 한다.

**제309조 (증인심문의 순서)**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를 심문할것을 요구한자가 먼저 심문하게 한다.  
앞항에 지적된자의 심문이 끝나면 재판관계자들이 재판장의 승인을 받고 증인을 심문한다.  
재판장은 피소자에게도 증인에게 물어볼 기회를 준다.

**제310조 (재심문, 대질심문)**

필요에 따라 이미 심문한 증인을 다른 증인앞에서 다시 심문하거나 증인과 증인, 증인과 피소자를 대면시켜놓고 심문할수 있다.

**제311조 (심문받은 증인의 처리)**

심문받은 증인은 사실심리가 끝나기 전에 자의대로 돌아갈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판장은 재판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심문받은 증인을 사실심리가 끝나기 전에도 돌려보낼수 있다.

**제312조 (증인심문의 중지)**

사실심리에서 범죄가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에는 증인심문을 그만둘수 있다.

**제313조 (재판심리에 감정인의 참가)**

감정인을 필요에 따라 재판심리에 참가시킬수 있다.

**제314조 (감정의뢰와 감정인심문)**

재판소는 사실심리과정에 전문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경우 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감정을 맡기거나 감정인을 심문하는 절차는 이 법 제205조~210조에 따른다.

**제315조 (재판심리에서 재감정)**

재판소는 감정결과에 부족점 또는 의문이 있거나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판정으로 감정을 다시 시킬수 있다.

**제316조 (증거물과 증거문서의 검토확인)**

재판소는 사실심리에서 증거물과 증거문서를 검토확인한다.

검사, 변호인도 사실심리과정에 언제든지 증거물과 증거문서를 검토확인할 수 있다.

**제317조 (수사, 예심조서의 검토확인방법)**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사실심리에서 수사, 예심조서를 읽는 방법으로 증거를 검토확인할수 있다.

**제318조 (증거자료의 현지확인)**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재판관계자들의 참가밑에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수 있다.

앞항의 증거자료확인인 재판소의 위임에 따라 재판장도 할수 있다.

**제319조 (증거수집의 금지)**

재판소는 사실심리과정에 직접 증거를 수집할수 없다.

증거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낸다.

**제320조 (손해보상청구의 심리)**

사실심리에서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에는 증거심리를 끝내고 손해보상청구에 대한 심리를 한다.

재판장은 손해보상청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에게 손해보상청구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피소자에게 답변하게 한다.

**제321조 (사실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인민참심원에게 심리할것이 더 없는가를 묻고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것을 알린다.

피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죄의 틈을 준 관계자를 사실심리에 참가시켰을 경우 그를 내세워 교훈을 찾게 한 다음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것을 알린다.



**제322조 (론고와 변론의 순서)**

재판장은 사실심리가 끝나면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의 순서로 론고와 변론을 하게 한다. 필요에 따라 재판에 참가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자들에 게도 말을 하게 할수 있다.

**제323조 (론고의 내용)**

론고는 피소자의 범죄를 폭로규탄하고 그것이 유죄로 되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론증하며 기소된 형법의 조, 항, 단의 형벌을 적용할데 대한 내용으로 한다.

**제324조 (변론의 내용)**

변론은 형사소송법의 요구에 맞게 재판이 진행된 정형과 피소자의 법적권리보장정형, 기소된 범죄사실과 적용된 기소법조인정, 범죄의 원인과 찾아야 할 교훈, 피소자의 개준성정도를 근거있게 밝히면서 형벌량정에서 참작하여줄데 대한 내용으로 한다. 피소자의 행위가 무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죄로 되는 근거를 정확히 밝힌다.

**제325조 (보충론고와 변론)**

재판장은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이 보충적으로 론고와 변론할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을 허용할수 있다.

**제326조 (론고와 변론의 기초)**

론고와 변론은 재판심리에서 검토확인된 증거에 기초한다.

**제327조 (피소자의 마지막말)**

재판장은 론고와 변론이 있는 다음 피소자에게 마지막말로 말할 기회를 준다. 피소자의 마지막말에서 범죄사건의 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판심리를 다시 한다.

**제328조 (재판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피소자의 마지막말이 끝나면 재판심리가 끝났다는것을 알리고 인민참심원들과 함께 합의실에서 판결채택을 위한 협의를 한다.

## 제4절 기소의 추가와 변경

**제329조 (기소의 추가사유)**

기소의 추가는 이미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응당 적용하여야 할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다.

**제330조 (기소의 추가시기)**

기소의 추가는 재판준비, 재판심리에서 할수 있다.

### 제331조 (기소의 추가절차)

재판소는 범죄사실은 밝혀져있으나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기소를 추가한 다음 피소자와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재판심리를 10일간 미룰수 있다.

### 제332조 (기소의 변경사유)

기소의 변경은 기소된 피소자에게 적용한 형법의 조, 항, 단을 형벌을 가볍게 줄수 있는 조, 항, 단으로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거나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형법의 조, 항, 단을 잘못 적용하였다는것이 인정될 경우에 한다.

### 제333조 (기소변경의 시기)

기소의 변경은 재판의 준비와 재판심리에서 한다. 제2심재판, 비상상소심에서도 기소의 변경을 할수 있다.

### 제334조 (기소의 변경절차)

재판소는 기소된 피소자에게 적용한 형법의 조, 항, 단을 형벌을 가볍게 줄수 있는 조, 항, 단으로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거나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다르거나 형벌을 가볍게 줄수 있는 조, 항, 단으로 고쳐야 할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판정으로 고친 다음 계속 심리하여 판결한다.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다르거나 형벌을 무겁게 줄수 있는 조, 항, 단으로 고쳐야 할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판정으로 고친 다음 피소자와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재판심리를 10일까지 미룰수 있다.

### 제335조 (새로운 범죄자 및 범위반자에 대한 처리)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피소자가 아닌 다른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행정처벌을 주어야 할 사실이 있다는것을 발견한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하여 검사에게 보내거나 행정처벌을 주는 판정을 할수 있다. 이 경우 구속처분판정을 할수 있다.

## 제5절 판결

### 제336조 (판결의 조건)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 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내린다.

### 제337조 (판결채택의 참가성원)

판결의 채택에는 재판심리를 한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참가한다.

### 제338조 (판결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

판결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기소된 범죄가 있었는가.
2. 범죄를 피소자가 저질렀는가.
3. 범죄의 표징을 갖추었는가.
4. 피소자에게 어떤 형벌을 어느 정도 줄 것인가.
5. 손해보상청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6. 증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7. 구속처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8. 담보처분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339조 (판결, 판정의 채택)**

판결과 재판심리에서 하는 판정은 재판소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한다.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은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제340조 (판결의 종류)**

재판소는 유죄 또는 무죄판결을 한다.  
피소자에게 형벌과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판결은 유죄판결이며 그에게 범죄가 없다는 판결은 무죄판결이다.

**제341조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어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경우에는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을 한다.  
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제342조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판결)**

재판소는 이 법 제112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피소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판결을 한다.

**제343조 (무죄판결)**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거나 피소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한다.

**제344조 (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한다.

**제345조 (피소자의 석방)**

구류되어있는 피소자에게 무죄판결,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판결 또는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를 그날로 놓아준다.

**제346조 (증거물,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판결, 판정을 한 경우 범죄의 증거물과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는 이 법 제44조, 제247조에

따른다.

#### 제347조 (손해보상청구의 해결)

손해보상청구의 해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손해보상청구가 정당할 경우에는 손해를 보상시킨다.
2. 범죄가 없거나 피소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를 기각한다.
3.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를 해결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48조 (사건반송의 판정)

재판소는 판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심에서 범죄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 법의 원칙과 절차를 심하게 어겼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한다.

#### 제349조 (사건반송의 제한)

재판소는 다른 증거를 더 수집하지 않아도 이미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반송할 수 없다.

이 법 제148조, 제184조에 규제된 예심 및 구류기간이 다 지나간 범죄사건이 반송되었다가 다시 기소된 경우에도 반송할 수 없다.

#### 제350조 (판결서의 작성)

판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판결서의 첫 부분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국호와 재판일자,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 이름, 사건명,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정형, 피소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과 사는 곳,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과 그에 대한 증거의 설명, 손해보상청구와 그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 그밖에 사건의 성질에 따라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문제를 밝힌다.

판결서의 다음부분에는 해당 판결이 의거하는 형사소송법조항, 그에게 적용하는 형법의 조, 항, 단과 형벌 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한데 대하여 지적하며 손해보상청구, 증거물, 재산담보처분, 구속처분문제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쓴다.

판결서에는 상소절차를 지적한다.

#### 제351조 (판결서, 판정서등본의 송달)

재판소는 판결, 판정을 한 날부터 2일안으로 검사,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에게 판결서, 판정서등본을 보내준다.

#### 제352조 (재판조서의 작성기간과 열람)

재판서기는 재판이 끝난 날부터 5일안으로 재판조서를 작성한다.

검사, 변호인은 재판조서작성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안으로 조서를 볼 수 있으며 수정, 보충,

삭제할 내용을 서면으로 제기할수 있다.

재판장은 제기된 의견이 옳을 경우 재판서기에게 고치게 하며 부당할 경우 판정으로 거부한다.

#### 제353조 (재판조서의 작성)

재판조서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판날자, 장소
2.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
4. 피소자의 이름, 신분관계
5.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 사는 곳
6. 재판심리순서에 따라 재판소가 한 행위
7. 재판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과 신청
8. 재판심리과정에 재판소가 내린 판정
9. 론고와 변론의 내용
10. 피소자가 한 마지막말

#### 제354조 (상소, 항의제기)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수 있으며 검사는 항의할수 있다.

#### 제355조 (검사의 항의관할)

시(구역), 군검찰소 검사는 해당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 도(직할시)검찰소 검사는 해당 도(직할시)재판소 및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 특별검찰소 검사는 해당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항의할수 있다.

하급검찰소 검사의 항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상급검찰소 검사는 그것을 취소할수 있다.

#### 제356조 (상소, 항의할수 없는 판결, 판정)

판결, 판정에 대하여 상소, 항의를 할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재판소 제1심재판에서 채택한 판결, 판정
2. 제2심재판, 비상상소심, 재심에서 채택한 판정

#### 제357조 (상소절차)

상소하려는자는 판결서,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상소장을 제1심재판소에 낸다. 그러나 로동단련형을 받은자는 3일안으로 낸다.

제1심재판소는 상소기간이 지나면 그날로 상소장을 사건기록과 함께 상급재판소에 보낸다.

#### 제358조 (항의절차)

항의하려는 검사는 판결서,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항의서를 제1심재판소에

낸다. 그러나 로동단련형을 적용한 사건의 판결, 판정에 대한 항의서는 3일안으로 낸다.

제1심재판소는 항의기간이 지나면 그날로 항의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항의한 검사의 상급검찰소에 보낸다.

항의를 접수한 상급검찰소 검사는 48시간안으로 사전검토결정을 하며, 그날부터 로동단련형을 적용한 사건기록은 3일, 그밖의 형벌을 적용한 사건기록은 10일안으로 검토하고 같은 급의 재판소에 사건기록과 함께 보내거나 항의를 취소할수 있다.

**제359조 (판결, 판정의 집행중지)**

상소, 항의가 제기된 판결, 판정은 집행하지 않는다.

**제360조 (제1심판결, 판정의 확정)**

제1심판결, 판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확정된다.

1. 상소, 항의기간이 지났을 경우
2. 제2심재판소가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지지하였을 경우
3. 상소, 항의할수 없는 판결, 판정을 내렸을 경우

## 제7장 제2심재판

**제361조 (제2심재판의 임무)**

제2심재판의 임무는 사건기록과 상소, 항의자료에 근거하여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였는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잘못을 바로잡는것이다.

**제362조 (제2심재판소의 구성)**

제2심재판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363조 (제2심재판기간)**

제2심재판소는 상소, 항의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판정을 한 날부터 25일안으로 사건을 심리해결한다.

로동단련형사건은 상소, 항의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판정을 한 날부터 7일안으로 끝낸다.

**제364조 (제2심재판을 위한 구류기간)**

제2심재판을 위하여 피소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5일이다.

로동단련형사건의 피소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7일이다.

**제365조 (제2심재판심리에 검사, 변호인참가)**

제2심재판심리에는 검사가 참가하며 피소자, 변호인이 상소한 경우 변호인을 참가시킨다.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 변호인이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제366조 (사건기록의 발송과 검사의 검토기간)**

제2심재판소는 재판심리를 하기 전에 상소장을 사건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보낸다. 이 경우 검사는 로동단련형을 적용한 사건기록은 3일, 그밖의 사건기록은 10일간 검토할수 있다.

**제367조 (제2심재판날자의 통지)**

제2심재판소는 재판날자를 재판하기 2일전에 검사, 변호인에게 알린다.

**제368조 (제2심재판심리의 범위)**

제2심재판심리에서는 상소장 또는 항의서에 지적된 부분의 내용심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수사, 예심, 제1심재판에서 이 법의 요구와 절차를 심히 어겨 판결에 영향을 준것이 없는가를 검토한다.

상소장 또는 항의서에 지적되지 않은 사실에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검토한다.

**제369조 (제2심재판심리의 절차)**

재판장은 재판심리시작을 알리고 제1심재판소가 재판한 범죄사건의 내용과 판결, 판정, 그에 대한 상소 또는 항의리유를 보고하고 검사, 변호인, 재판소성원들에게 의견을 말하게 한다.

**제370조 (제2심재판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제2심재판심리를 끝낸다는것을 알린 다음 판정을 하기 위하여 재판소성원들과 합의한다.

**제371조 (판정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

판정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상소 또는 항의에 근거가 있는가.
2. 인정한 사실과 그에 적용한 형법의 조, 항, 단이 맞는가.
3. 형벌을 정확히 적용하였는가.
4. 수사, 예심 또는 제1심재판심리에서 이 법의 요구와 절차를 정확히 지켰는가.

**제372조 (판정의 채택)**

재판소가 합의하여 판정을 하면 재판장이 판정서를 읽는다.

판정서를 읽을 때 검사와 변호인도 참가한다.

**제373조 (제1심판결, 판정의 지지)**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게 채택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을 지지하는 판정을 한다.

**제374조 (범죄사건의 반송)**

제2심재판소는 수사, 예심 또는 제1심재판심리에서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범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거나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를 심하게 어겼거나 인정한 사실과 맞지 않게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하였거나 형벌을 정하였을 경우 그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범죄

사건을 검사 또는 제1심재판소에 돌려보낸다.

**제375조 (범죄사건의 기각)**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에서 기각하여야 할 범죄사건을 기각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 그 판결을 취소하고 범죄사건을 기각한다.

**제376조 (판결의 변경)**

제2심재판소에서 제1심재판소의 판결을 직접 고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제1심재판소가 형법의 조, 항, 단을 형벌이 무겁게 규정된 조, 항, 단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2. 제1심재판소가 형벌을 지나치게 무겁게 적용한 경우
3. 제1심재판소가 응당 적용하여야 할 부가형벌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잘못 적용하였을 경우
4. 손해보상청구심리에서 사실인정은 옳바로 하였으나 판결을 잘못 내린 경우

**제377조 (반송사건에 대한 재판심리)**

제2심재판소가 돌려보낸 범죄사건을 접수한 제1심재판소는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따른다.

**제37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와 허용)**

상소에 근거하여 판결이 취소된 범죄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제1심재판소는 처음 판결을 한 재판소가 정한 형벌보다 무겁게 줄수 없다. 그러나 피소자는 형벌이 무겁다고 상소하였고 검사가 형벌이 가볍다고 항의한 범죄사건으로서 처음 정한 형벌보다 무겁게 줄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범죄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재판소가 해당한 형벌을 줄수 있다.

**제379조 (부대판정)**

제2심재판소는 예심 또는 제1심재판의 부족점을 판정으로 지적할수 있다.

예심 또는 제1심재판소는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따른다.

**제380조 (재판결과의 통지)**

제2심재판소는 재판을 끝낸 날부터 2일안으로 판정서등본을 검사와 상소인에게 보내준다.

## 제8장 비상상소심과 재심

### 제1절 비상상소심

**제381조 (비상상소심의 임무)**

비상상소심의 임무는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났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는것이다.

**제382조 (비상상소심재판소의 구성)**

중앙재판소를 제외한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한다.  
중앙재판소의 제1심판결, 판정과 제2심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서 심리해결한다.

**제383조 (비상상소심의 기간)**

중앙재판소는 비상상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개월안으로 사건을 심리해결한다.

**제384조 (검사의 비상상소심참가)**

중앙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비상상소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참가한다.

**제385조 (비상상소의 제기자)**

비상상소는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제386조 (비상상소의 제기기간)**

비상상소의 제기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에 대한 비상상소는 판결을 받은자가 죽은 다음에도 제기할수 있다.

**제387조 (비상상소의 제기사유)**

비상상소의 제기는 범죄사건의 처리에서 법을 본질적으로 어겼다는것이 판결, 판정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나타나있을 경우에 한다.

**제388조 (비상상소를 제기할수 없는 범죄사건)**

형벌집행이 끝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벌이 낮다는 이유로 비상상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형사 소추시효기간이 지난 범죄사건은 비상상소를 제기할수 없다.

**제389조 (비상상소의 제기신청)**

비상상소를 제기할 범죄사건은 해당한 의견을 붙여 사건기록을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보낸다.  
각급 재판소와 검찰소는 비상상소제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서 처리된 사건기록을 요구할수 있다.

**제390조 (비상상소제기를 위한 사건기록요구)**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어느 재판소에서 처리한 범죄사건이든지 기록을 요구할수 있다.  
비상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건기록은 그날로 돌려보낸다.

**제391조 (비상상소제기를 위한 판결, 판정집행의 정지)**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재판소를 통하여 판결, 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수 있다. 그러나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집행을 정지시킬수 없다.

### 제392조 (비상상소의 제기)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제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비상상소제기서를 만들어 사건기록과 함께 중앙재판소에 보낸다.

중앙재판소 소장이 제기한 비상상소사건은 비상상소심을 하기 전에 사건기록을 중앙검찰소에 보낸다.

### 제393조 (비상상소심날자의 통지)

중앙재판소는 비상상소심날자를 재판하기 2일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린다.

### 제394조 (비상상소심의 범위)

비상상소심에서는 비상상소제기사유에 근거하여 범죄와 그것을 증명한 증거가 맞는가, 피소자를 정확히 확정하였는가,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를 어긴것은 없는가, 형벌을 정확히 적용하였는가와 같은 판결, 판정의 합법성, 근거성을 전면적으로 심리해결한다.

### 제395조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절차)

비상상소심은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중앙검찰소 소장 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 제396조 (비상상소사건의 처리)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중앙재판소는 이 법 제373~376조에 따라 범죄사건을 처리한다.

### 제397조 (판정의 집행시기)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재판소의 판정은 확정기간이 없이 즉시 집행한다.

### 제398조 (비상상소심결과의 통지)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재판소는 판정을 한 날부터 2일안으로 비상상소제기를 신청 또는 청원한자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내준다.

## 제2절 재심

### 제399조 (재심의 임무)

재심의 임무는 새로운 사실에 기초하여 확정된 판결, 판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 제400조 (재심재판소의 구성)

재심사건은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 제401조 (재심의 기간)

중앙재판소는 재심이 제기된 때로부터 1개월안으로 사건을 심리해결한다.

**제402조 (검사의 재심참가)**

재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제403조 (재심의 제기자)**

재심은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제404조 (재심의 제기기간)**

재심의 제기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제기는 판결을 받은자가 죽은 다음에도 할수 있다.

**제405조 (재심제기의 사유)**

재심제기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판결, 판정의 기초로 하였던 증거가 거짓이라는것이 알려진 경우
2. 판결, 판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실로서 재판할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것이 새로 알려진 경우

**제406조 (재심제기의 신청)**

재심신청은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검사에게 한다.

앞항의 신청을 접수한 검사는 2개월안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근거가 있을 경우 재심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조사자료를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보낸다.

검사가 재심제기사유로 되는 자료를 직접 얻었을 경우에도 앞항에 따른다.

**제407조 (재심제기를 위한 판결, 판정집행정지)**

중앙검찰소 소장은 필요에 따라 재심을 제기하기 위하여 기록을 요구한 범죄사건의 판결, 판정에 대한 집행을 해당 재판소를 통하여 정지시킬수 있다.

**제408조 (재심의 제기와 거부)**

중앙검찰소 소장은 재심의 제기신청이 정당할 경우 재심제기서를 만들어 사건기록과 함께 중앙재판소에 보낸다.

재심제기신청이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하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을 돌려보낸다.

**제409조 (재심날자의 통지)**

중앙재판소는 재심날자를 재판하기 2일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린다.

**제410조 (재심의 범위)**

재심에서는 재심제기의 사유로 되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심리확정하면서 피소자를 정확히 확정하였는가, 형벌을 옳게 적용하였는가 하는것을 심리해결한다.

**제411조 (재심사건의 심리)**

재심은 검사의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412조 (재심사건의 처리)**

중앙재판소는 재심의 제기가 정당할 경우 확정된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범죄사건을 검사 또는 제1심재판소에 돌려보내거나 직접 기각 또는 변경한다.

재심제기가 부당할 경우에는 재심제기를 거부하고 확정된 판결, 판정을 지지하는 판정을 한다.

**제413조 (재심판정의 집행시기)**

재심사건을 심리한 재판소의 판정은 확정기간이 없이 즉시 집행한다.

**제414조 (재심결과의 통지)**

재심사건을 심리한 재판소는 판정을 한 날부터 2일안으로 검찰기관을 통하여 재심제기를 신청 또는 청원한자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낸다.

## 제9장 판결, 판정의 집행

**제415조 (판결, 판정의 집행시기)**

판결, 판정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한다.

사형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수 있다.

**제416조 (집행문건의 발송)**

재판장은 판결, 판정이 확정되면 2일안으로 집행문건을 해당 형벌집행기관에 보낸다.

**제417조 (판결 판정집행에 대한 감시)**

판결, 판정의 집행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사형판결의 집행은 검사의 참가밑에 한다.

**제418조 (사형판결의 집행)**

사형판결의 집행은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이 한다.

사형집행지휘문건은 중앙재판소가 발급한다.

**제419조 (사형집행결과의 회보)**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은 사형을 집행하고 결과를 3일안으로 해당 재판소에 알린다.

**제420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은 재판소가 발급한 판결, 판정서등본, 확정통지서를 받은 해당 형벌집행기관이 한다.

**제421조 (형벌집행기간의 계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형벌집행기간계산은 판결을 집행하는 날부터 한다.

피소자가 이미 구류되어있었을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계산한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중에 있는자가 형벌집행기관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형벌집행기간으로 계산한다.

#### 제422조 (선거권박탈형 및 벌금형의 집행)

선거권박탈형의 집행은 기본형벌집행이 끝난 다음 형벌집행기관이 보낸 판결서등본과 출소증을 접수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한다.

벌금형의 집행은 해당 기관이 한다.

#### 제423조 (자격박탈형 및 자격정지형의 집행)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의 집행은 기본형벌집행이 끝난 다음 형벌집행기관이 보낸 판결서등본과 출소증을 접수한 해당 자격을 준 기관이 한다.

#### 제424조 (재산몰수형의 집행)

재산몰수형의 집행은 집행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이 경우 립회인을 세우며 집행조서와 몰수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붙이고 몰수당한자에게는 몰수재산목록등본을 준다.

재산몰수형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은 해당 재판소의 판사가 3일안으로 해결한다.

#### 제425조 (손해보상재산의 집행)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의 집행은 집행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이 경우 립회인을 세우며 집행조서와 손해보상재산목록 2부를 작성하여 손해보상재산목록 1부는 재산임자에게 주고 손해보상청구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았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은 해당 재판소의 판사가 3일안으로 해결한다.

#### 제426조 (재산의 강제집행)

재산임자가 재산몰수형,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집행을 정당한 리유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한다.

#### 제427조 (형벌집행의 중지사유)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렸거나 도주하여 형벌집행을 계속할수 없는 경우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에게서 숨긴 범죄가 드러나 그에 대한 형사사건취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형벌집행을 중지한다.

임신한 녀성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형벌집행을 중지한다.

#### 제428조 (형벌집행의 기각사유)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자가 고칠수 없는 정신병에 걸렸거나 죽은 경우에는 형벌집행을 기각한다. 이 경우 법의감정을 한다.

**제429조 (형벌집행의 중지 및 기각, 만기전석방의 제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집행을 중지 및 기각하거나 형기가 끝나기 전에 내놓을데 대한 제기는 형벌집행기관의 책임자가 해당 검찰소 소장에게 한다.

검찰소 소장은 제기받은 내용을 검토확인하고 그것을 부결하거나 해당 재판소에 제기한다.

**제430조 (형벌집행의 중지 및 기각, 만기전석방의 심리)**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집행을 중지 및 기각시키거나 형기가 끝나기 전에 내놓은것은 해당 재판소 또는 판사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집행의 중지는 제기를 받은 때부터 3일안으로, 기각시키거나 형기가 끝나기 전에 내놓는것은 10일안으로 해결한다.

**제431조 (형벌집행중지를 받은자의 처리 및 관리)**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려 형벌집행을 중지한자에게는 의료처분을 적용하며 임신하여 형벌집행을 중지한자에게는 자택구속처분 또는 지역구속처분을 적용한다.

형벌집행을 중지받은자에 대한 관리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이 한다.

**제432조 (형벌집행중지의 해제)**

해당 재판소는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렸거나 임신한것으로 하여 형벌집행을 중지하였던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자에게 형벌집행중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것을 해제하는 판정을 한다.

형벌집행중지기간은 형벌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433조 (형벌집행중에 있거나 형벌집행중지중에 있는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리)**


형벌집행중에 있거나 형벌집행중지중에 있는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사건의 취급시작은 이 법 제78조에 따른다.

**제434조 (판결, 판정집행과 관련한 신청의 심리날자 통지)**

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소는 심리날자를 2일전에 검사에게 알린다.

**제435조 (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에 대한 재판심리)**

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에 대한 재판심리는 제2심재판의 절차에 따른다.



재판·  
인민보안부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검찰감시법

|              |         |                              |
|--------------|---------|------------------------------|
| 주체74(1985)년  | 9월 19일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5호로 채택      |
| 주체86(1997)년  | 1월 15일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78호로 수정보충    |
| 주체87(1998)년  | 11월 19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
| 주체89(2000)년  | 7월 2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보충 |
| 주체96(2007)년  | 2월 27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4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1(2012)년 | 4월 2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46호 수정보충  |

### 제1장 검찰감시의 기본원칙

#### 제1조 (검찰감시의 본질과 담당기관)

검찰감시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집행하는가를 감시하는 국가의 권력적 활동이다.

검찰감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각급 검찰기관이 한다.

#### 제2조 (검찰감시의 목적)

검찰기관은 감시활동을 통하여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온갖 범죄적 및 위법적 침해로부터 튼튼히 보위하며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제도와 질서를 세워 조선로동당의 정책관철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제3조 (검찰감시에서 법에 의거할데 대한 원칙)

검찰기관은 공화국주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 모든 부문, 모든 대상에게 차별이나 레외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가의 법에 의거하여 감시활동을 조직진행한다.

#### 제4조 (검찰감시에서 계급원칙과 균중에 의거할데 대한 원칙)

검찰기관은 감시활동에서 계급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광범한 균중에 의거하여 사업한다.

#### 제5조 (감시결과의 처리원칙)

검찰기관은 감시결과를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엄격하면서도 공정하게 처리한다.

#### 제6조 (검찰감시에 대한 지휘)

검찰감시는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 제2장 검사의 감시임무

### 제7조 (검사의 임무)

검사는 국가의 믿음직한 정치적보위자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참다운 옹호자이다.

검사는 범죄자와 범위반자를 모조리 적발하여 법적책임을 엄격히 추궁하여야 한다.

### 제8조 (경제관리질서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검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하는 현상을 비롯하여 국가의 법을 어기는 일이 없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인민보안기관에 대한 감시)

검사는 인민보안기관사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하여야 한다.

인민보안기관사업에 대한 준법감시는 따로 정한 법규에 따라 한다.

### 제10조 (수사, 예심활동에 대한 감시)

검사는 수사, 예심기관이 수사, 예심활동을 바로하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

### 제11조 (재판, 중재에 대한 감시)

검사는 재판, 중재에서 사건을 법의 요구에 맞게 제때에 정확히 심리해결하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

### 제12조 (판결, 판정 및 재결, 결정적 집행에 대한 감시)

검사는 확정된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이 제때에 정확히 집행되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

### 제13조 (검열, 단속, 통제에 대한 감시)

검사는 재정, 설비, 물자, 품질감독기관을 비롯한 행정경제부문의 감독통제기관이 검열, 단속, 통제와 처리사업을 법의 요구대로 하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의 적법성에 대한 감시)

검사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

### 제15조 (공민의 준법성에 대한 감시)

검사는 공민이 헌법적의무와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

### 제16조 (준법교양임무)

검사는 법해설을 비롯한 준법교양사업을 적극 벌려 범죄와 위법현상을 미리 막아야 한다.

## 제3장 검찰감시관할

### 제17조 (시(구역), 군검찰소의 관할)

시(구역), 군검찰소는 중앙검찰소, 도(직할시)검찰소, 특별검찰소의 감시관할에 속하지 않는 자기 관할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개별적인 수사, 예심활동, 재산과 관련하여 재판소가 내린 판결, 판정의 집행에 대한 감시는 해당 지역의 시(구역), 군검찰소가 한다.

### 제18조 (도(직할시)검찰소의 관할)

도(직할시)검찰소는 도(직할시)급기관과 도(직할시)안의 규모가 큰 공장, 기업소에서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필요에 따라 시(구역), 군검찰소 감시관할에 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직접 감시할수 있다.

### 제19조 (중앙검찰소의 관할)

중앙검찰소는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그에 직속된 기관, 기업소가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 (구역), 군검찰소 및 특별검찰소 감시관할에 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직접 감시할수 있다.

### 제20조 (특별검찰소의 관할)

특별검찰소의 감시관할은 따로 정한 법규에 따른다.

### 제21조 (개별적공민의 위법행위조사에 대한 관할)

개별적공민이 국가의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하여서는 해당 관할지역의 시(구역), 군검찰소가 조사한다.

## 제4장 검찰감시방법

### 제22조 (감시방법의 선정)

검찰기관의 감시방법은 법이 따로 정한 경우를 내놓고 이 법에 따라 한다.

### 제23조 (행정경제감시방법)

행정경제감시는 담당감시와 집중감시를 옹계 배합하여 법준수집행정형을 늘 료해장악하고 위법행위를 밝혀내는 방법으로 한다.

### 제24조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감시방법)

기관에서 채택한 결정, 지시에 대한 감시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문건을 받아 검토하는 방법으

로 한다.

**제25조 (수사, 예심활동감시방법)**

수사, 예심활동에 대한 감시는 사건별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예심활동에 참가하거나 사건기록을 검토할수 있다.

**제26조 (재판, 중재감시방법)**

재판, 중재에 대한 감시는 사건심리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판사, 중재원은 사건 심리날자를 정한 기일안에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검사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 중재심리에 참가하지 못하였거나 재판소의 판결, 판정과 중재 기관의 재결,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기록을 요구하여 볼수 있다.

**제27조 (판결, 판정집행감시방법)**

확정된 판결, 판정의 집행에 대한 감시는 직접 집행에 참가하여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판결, 판정의 집행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1개월안으로 해당 문건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지조사를 할수 있다.

**제28조 (감시조서의 작성)**

검찰감시과정에 범죄와 위법행위를 확정하였을 경우에는 감시조서를 만들수 있다.

**제29조 (신고받은 자료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법적처리를 요구하는 자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1개월안으로 정확히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행정적 또는 민사소송, 중재절차로 처리할 자료는 해당 권한있는 기관에 넘겨준다.

**제30조 (법준수집행정형의 설명과 문건자료의 요구)**

검찰감시를 신속정확히 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과 공민에게 법준수집행정형에 대한 설명과 문건자료를 요구할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회의에 참가하거나 회의록을 볼수 있다.

**제31조 (진술서의 작성, 감정의뢰)**

범죄와 위법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사건관계자를 불러 진술을 받거나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문서 또는 물건을 요구할수 있으며 해당 전문일군에게 감정을 시키거나 필요한 전문일군과 기자재를 동원할 수 있다.

**제32조 (범죄사건관련자의 구인, 억류)**

범죄사건에 관련되어 있는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따라 부르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할수 있다.

구인결정은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보내어 집행한다.

범죄혐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조사를 방해할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10일까지 억류할수 있다.

그러나 큰 규모의 국가재산락취행위같이 복잡하거나 공모자가 도주하여 10일안에 사건조사를 끝낼수 없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검사의 승인을 받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 (검증, 검진, 수색, 압수, 재산담보처분)**

검찰감시과정에 범죄 및 위법행위를 제때에 정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 방법에 따라 검증, 검진, 수색 압수, 재산담보처분을 할수 있다.

수색, 압수를 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는다.

## 제5장 검찰감시결과에 대한 처리

**제34조 (법을 어긴 자에 대한 제재의무)**

검사는 국가의 법을 어긴 자에 대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법적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제35조 (범죄사건의 예심기관)**

검사는 감시과정에 적발한 위법행위가 일반범죄사건일 경우 그것을 예심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반국가범죄사건은 해당 예심기관에 넘겨야 한다.

**제36조 (사회적교양에 넘길 자의 처리)**

검사는 국가의 법을 어긴자를 사회적교양을 통하여 개조하려할 경우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 위원회에 넘기거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군중투쟁을 벌리도록 제기할수 있다.

**제37조 (검사의 항의, 비상상소, 의견제기)**

검사는 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항의할 수 있으며 중앙검찰소 소장은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난다고 인정된 경우 비상상소를 제기할수 있다.

중재에서 내린 재판,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중재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제38조 (민사소송, 중재의 제기)**

검사는 침해당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할수 있다.

**제39조 (감시자료의 이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에서 감시과정에 적발한 범죄자료가 특별검찰소 감시관할에 속한 대상과 관련되어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조사를 다하여 특별검찰소에 넘겨야 한다.

**제40조 (검사의 결정)**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범위반행위를 바로잡거나 법적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결정을 한다.

1. 수사, 예심기관의 부당한 수사, 예심시작결정 또는 수색, 압수행위를 취소하거나 수사, 예심사건을 기각시키려 할 경우
2. 수사일군 또는 예심원을 바꾸거나 침해된 사건관계자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려 할 경우
3. 범죄자를 예심에 넘기거나 법을 어긴자를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동지심판회에 넘기거나 로동교양 또는 구금처벌을 하려 할 경우

**제41조 (검사의 지시)**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범위반행위를 바로잡거나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서면 또는 구두지시를 한다.

1. 뒤로 미룰수 없는 위법행위를 중지시키거나 고치게 하려할 경우
2. 위법적인 수사, 예심행위를 바로잡거나 필요한 수사, 예심행위를 하게 하려할 경우  
체포장이 없이 체포되었거나 간혀있는 사람을 놓아주려 할 경우

**제42조 (검사의 제의)**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국가의 법을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해당 권한있는 기관에 제의를 한다.

1. 법에 어긋나는 기관의 결정,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시켜야 할 경우
2. 위법행위를 낳게 한 조건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경우
3. 침해당한 국가,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원상대로 복구시키거나 동원리용하려할 경우 또는 국가에 회수시켜야 할 경우
4. 법을 어긴 일군에게 벌금을 물리게 하거나 국가와 사회에 준 재산상손실을 보상시켜야 할 경우

**제43조 (검사의 결정, 지시, 제의 방식)**

검사의 결정, 지시, 제의는 해당 검찰소의 이름으로 낸다.

**제44조 (검사의 결정, 지시, 제의에 대한 의견제기)**

검사의 결정, 지시, 제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 또는 공민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으로 해당 상급검찰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상급검찰소는 20일안으로 심의해결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의견처리와 관련한 중앙검찰소의 결정은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집행조서작성과 책임추궁)**

검사는 결정, 지시, 제의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 또는 공민이 제때에 집행하지 않을경우 언제까지 집행하겠다는 조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때까지 집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한 법적책임을 추궁할수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

주체86(1997)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2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주체89(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5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35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10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0호로 수정보충

## 제1조 (공민등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은 공민을 장악등록하는데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공민등록법의 규제대상)

공민등록법은 공민의 출생, 거주, 퇴거등록절차와 방법을 규제한다.

## 제3조 (공민등록기관)

공민등록은 거주지역의 인민보안기관이 한다.

다른 나라에서 살고있는 공화국공민의 등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사대표기관이 한다.

## 제4조 (공민의 거주등록)

공민은 살고있는 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거주등록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난날, 난곳, 사는곳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 제5조 (공화국국적에 입적한 공민의 등록)

다른 나라 국적에서 제적하고 공화국국적을 소유한 공민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려할 경우 공민등록을 한다.

## 제6조 (주민등록대상)

인민보안기관은 공민을 주민등록대장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름, 성별, 난날, 난곳, 사는곳과 직업, 결혼, 리혼관계 같은것을 정확히 밝힌다.

## 제7조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발급대상)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임을 확인하는 증서이다.

출생등록을 한 공민에게는 출생증을, 17살이상의 공민에게는 공민증을, 평양시에 거주하는 17살이상의 공민에게는 평양시민증을 준다.

**제8조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발급기관)**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부의 이름으로 공민이 거주한 지역의 인민보안기관이 발급한다.

**제9조 (출생등록)**

출생등록은 난날부터 15일안으로 한다. 이 경우 출생등록신청서를 거주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낸다.

출생등록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난날, 난곳, 사는곳, 민족별 같은것을 밝힌다.

**제10조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발급신청)**

공민은 17살에 이른 날부터 15일안으로 공민증, 평양시민증발급신청서를 거주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내야 한다.

공민증, 평양시민증발급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난날, 난 곳, 사는 곳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1조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발급기일)**

출생등록신청서, 공민증발급신청서 같은 신청서를 접수한 인민보안기관은 그것을 15일안으로 검토하고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2조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관리)**

공민은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정히 다루며 그것을 분실하거나 오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빌려줄수 없다.

**제13조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반납 및 회수)**

공민이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인민보안, 안전보위기관에 입대하거나 또는 사망하였거나 정신병에 걸렸거나 공화국국적에서 제적되었을 경우에는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거주하던 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바친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회수한다. 그러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자의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회수하지 않는다.

**제14조 (퇴거등록)**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려는 공민은 퇴거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등록신청서를 거주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내야 한다.

퇴거등록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난날, 난곳, 사는곳, 퇴거하여 가는곳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5조 (거주등록기간)**

퇴거등록을 한 공민은 퇴거등록을 한 날부터 15일안으로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기재사항변경)**

공민은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에 등록된 이름, 성별, 난날, 난곳을 고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름, 성별 난탈, 난곳을 고치려 할 경우에는 신분을 고치는 허가신청서를 인민보안기관에 내야 한다.

인민보안기관은 신청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허가 또는 부결하며 성별을 다시 정하려 할 경우에는 국가법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공민등록의 제적)

공민이 사망하였거나 공화국국적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공민등록에서 제적한다.

**제18조** (공민등록사업에 대한 지도)

공민등록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은 공민등록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공민등록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19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기고 공민등록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증법

주체84(1995)년 2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1호로 채택  
주체93(2004)년 12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8호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8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45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8호로 수정보충

## 제1장 공증법의 기본

### 제1조 (공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증법은 공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고 민사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공증의 정의)

공증은 공증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사실과 문서의 정확성, 합법성을 확인해주는 활동이다.

### 제3조 (공증신청자의 편의도모원칙)

공증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국가는 공증을 신청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도록 한다.

### 제4조 (공증에서 정확성, 합법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공증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정확성과 합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5조 (신청자의 권리행사, 의무리행원칙)

국가는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부여된 민사상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며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도록 한다.

### 제6조 (공증기관)

공증은 공증기관에서 한다.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공화국국민이 신청하는 공증은 그 나라에 주재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사대표기관이 한다.

### 제7조 (공증기관의 설치지역)

공증기관은 도(직할시), 시(구역), 군에 조직한다.

### 제8조 (공증사업에 대한 지도)

공증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중앙재판소가 한다.

도(직할시)재판소는 관할지역의 공증사업을 지도한다.

**제9조 (공증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공증분야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10조 (공증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 제2장 공증대상

**제11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증할수 있는 대상)**

공증기관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과 문서에 대하여 공증한다.

1. 신분 및 가족친척관계
2. 기술 및 전문가자격, 학위학직, 명예칭호, 경력, 학력, 지적소유권
3. 소재불명자 및 사망자
4. 계약, 재산소유권
5. 상속, 유언, 증여
6. 법인 및 위탁, 대리
7. 채권채무, 손해보상
8. 사고, 검사, 자연재해
9. 기관명칭, 은행돈자리, 수표, 도장
10. 기업의 규약
11. 문서의 원본, 사본, 번역본
12. 증거보존, 재산의 공탁
13. 그밖에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사실과 문서

**제12조 (의무적으로 공증받아야 할 대상)**

법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대상에 대하여서는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공탁)**

공증기관은 빚을 물 목적으로 맡기는 재산, 민사분쟁의 대상물, 손해보상을 위한 담보금, 임자없는 물건을 공탁받는다.

**제14조 (민사사건의 증거보존)**

공증기관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소멸될수 있거나 다시 수집할수 없는 민사사건의 증거를 보존한다.

## 제3장 공증관할

### 제15조 (시(구역), 군공증기관의 관할)

시(구역), 군공증기관은 시(구역), 군급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공화국령역에서 쓸 목적으로 신청하는 대상을 공증한다.

### 제16조 (도(직할시)공증기관의 관할)

도(직할시)공증기관은 도(직할시)급기관, 기업소, 단체가 공화국령역에서 쓸 목적으로 신청하는 대상과 공민이 다른 나라에서 쓸 목적으로 신청하는 대상,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신청하는 대상을 공증한다.

### 제17조 (중앙공증기관의 관할)

중앙공증기관은 중앙기관이 공화국령역에서 쓸 목적으로 신청하는 대상과 기관, 기업소, 단체가 다른 나라에서 쓸 목적으로 신청하는 대상을 공증한다.

### 제18조 (거주지, 소재지에 따르는 공증관할)

공증은 신청당사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증기관이 한다.

한 공증대상에 대하여 여러 당사자가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어느 한 당사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증기관이 공증할수 있다.

### 제19조 (건물, 재산, 증거의 공증관할)

건물은 건물이 있는 곳, 기관, 기업소, 단체에 등록된 재산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재지, 보존된 증거와 공탁한 재산은 증거 또는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공증기관이 공증한다.

### 제20조 (소재불명자, 사망자, 유언의 공증관할)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와 관련한 공증은 그의 마지막 거주지, 유언과 관련한 공증은 유언한 곳을 관할하는 공증기관이 한다.

### 제21조 (자연재해, 사고, 계약체결의 공증관할)

자연재해, 사고, 계약체결과 관련한 공증은 자연재해나 사고가 있는 곳 또는 계약을 체결한 곳을 관할하는 공증기관이 한다.

## 제4장 공증절차와 방법

### 제22조 (공증의 신청)

공증의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해당 공증기관에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증의 신청을 대리인을 통하여 하거나 공증인을 현지에 초청하여 할수

있다.

**제23조 (공증신청문건)**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공증신청서와 증거문서, 국가수수료납부증을 해당 공증기관에 내야 한다.

공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난날, 직장직위, 사는 곳, 신청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제24조 (공증신청문건의 불비점퇴치)**

공증기관은 공증신청서가 불비할 경우 5일안으로 수정보충하게 한다.

정해진 기간에 수정보충하였을 경우에는 공증신청서를 처음 받은 날을 신청한 날로 한다.

**제25조 (공증신청의 처리기간)**

공증기관은 공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연재해 같이 어찌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수 있다.

**제26조 (공증신청내용의 검토)**

공증기관은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격, 신청내용과 증거문서의 정확성, 합법성을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증인을 부르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증거물을 요구하며 해당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길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증과 관련한 공증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 (공증문서의 작성)**

공증기관은 공증신청내용이 정확하고 법의 요구에 맞을 경우 공증문서를 만든다.

공증문서는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주고 1부는 공증기관이 보관한다.

**제28조 (공증의 거부)**

다음의 경우에는 공증을 거부한다.

1. 공증신청내용에 대하여 당사자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2. 공증신청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을 경우
3. 공증신청내용에 대하여 증거가 없거나 날조되었을 경우
4. 공증신청내용이 비밀에 속하는 경우
5.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가 그것을 포기한 경우
6.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았을 경우

**제29조 (공증의 거부통지)**

공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근거를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알려준다.

**제30조 (재산의 공탁과 증거의 보존)**

재산의 공탁과 증거의 보존은 공증기관이 직접하거나 해당 기관에 맡겨 할수 있다.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은 거래은행에, 독해물은 해당 감독기관에, 부패변질될수 있는 물건

은 수매시켜 현금을 은행돈자리에 넣어 보관하며 증거는 증인심문조서, 현장검증조서, 감정서를 받아두거나 사진을 찍어두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제31조 (공탁재산과 증거의 처리)**

공탁받은 재산과 보존하고있는 증거는 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자에게 돌려준다.

**제32조 (공탁재산에 대한 집행신청)**

공증기관은 공탁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간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해당 재판소에 집행을 신청한다.

**제33조 (공증문서의 작성어문)**

공증문서는 조선글로 쓴다.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 글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수 있다.

**제34조 (공증문서의 효력)**

공증문서는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사실과 문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법적문건이다.

공증문서에는 공증인의 수표가 있어야 하며 공증기관의 공인을 찍는다.

공증문서는 발급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5조 (공증을 받은 채권확인서의 효력)**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에 채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공증을 받은 채권확인서는 재판소에 집행을 신청할수 있는 법적근거로 된다.

**제36조 (공증인의 배제)**

신청된 공증에 대하여 리해관계가 있는 공증인은 그에 대한 공증을 할수 없다.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공정하게 공증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증인을 다른 공증인으로 바꾸어줄데 대하여 요구할수 있다.

해당 공증기관은 제기된 의견이 정당할 경우 다른 공증인으로 바꾸며 부당할 경우 거부한다.

공증인을 바꾸는 경우 해당 재판소의 위임을 받은 다른 일군이 공증할수 있다.

**제37조 (국가수수료와 비용)**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국가수수료와 해당한 비용을 정한데 따라 물어야 한다.

## 제5장 공증에 대한 의견처리와 분쟁해결

**제38조 (공증에 대한 의견제기)**

공증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공증문서나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해당 공증기관에 공증거부와 공증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제39조 (공증에 대한 의견처리)**

공증기관은 제기된 의견이 정당할 경우 거부하였던 공증에 대한 신청을 다시 접수하거나 이미 발급한 공증문서의 효력을 없애고 새로 공증문서를 발급할수 있다.

**제40조 (공증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

공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당사자와 리해관계자 사이의 분쟁은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한다. 이 경우 공증기관은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서, 판정서에 근거하여 분쟁의 원인으로 된 공증문서의 효력을 없애고 새로 공증문서를 발급할수 있다.

**제4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침해하였거나 민사거래의 안전성보장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공증인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중신고법

주체108(2019)년 4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19호로 채택

## 제1장 군중신고법의 기본

### 제1조 (군중신고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중신고법은 범죄 및 위법행위에 대한 군중신고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의 생명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고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및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회안전, 검찰, 보위기관에 알리는 적법적인 행위이다.
2. 신고자는 신고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리(읍, 로동자구, 동) 사무소, 인민반, 학교 포함]와 공민이다.
3. 신고접수처리기관은 각급 사회안전, 검찰, 보위기관이다.

### 제3조 (군중신고체계의 확립 원칙)

전인민적인 군중신고체계를 확립하는것은 반사회주의적현상과의 투쟁을 전인민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전인민적인 군중신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온갖 범죄 및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 적발하도록 한다.

### 제4조 (신고의무)

범죄 및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기관에 제때에 신고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성한 법적의무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 우리 국가제일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높은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군중신고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 제5조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원칙)

신고를 제때에 접수하고 조사처리하는 것은 사회안전, 검찰, 보위기관의 중요임무이다.

국가는 사회안전, 검찰, 보위기관들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제기하는 신고를 빠짐없이 접수하고 법적요구에 맞게 신속정확히 조사처리하도록 한다.

**제6조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원칙)**

신고에 따르는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를 잘하는것은 광범한 대중의 신고열의를 높여주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군중신고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신고를 잘하여 공로를 세운 사람들을 정확히 평가하도록 한다.

**제7조 (규제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군중신고체계의 확립과 군중신고절차와 방법, 신고접수처리기관의 군중신고접수 및 조사처리와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 제2장 군중신고체계의 확립, 군중신고절차와 방법

**제8조 (신고접수처리기관)**

신고는 신고접수처리기관에 한다.

신고접수처리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범죄 및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때에 해당 신고접수처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9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고체계확립)**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 주민들에 대한 준법교양을 강화하며 자기 단위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신고접수처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인민반신고체계의 확립)**

신고접수처리기관은 인민반신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인민반을 통하여 빠짐없이 신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반은 새로 이사를 왔거나 간 주민, 미거주자, 비법적인 숙박자, 직장리탈자, 범죄요소자를 비롯하여 의심되는자들을 제때에 장악하여 신고접수처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신고수단의 설치, 신고절차게시)**

신고접수처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비실, 접수실같은곳에 전화기와 신고함을 설치하고 신고접수처리기관의 전화번호, 신고할 내용, 신고절차와 방법을 게시하여야 한다.

연선지대나 집들이 외 따로 떨어져있는것과 같은 곳에는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의 신호연락수단을 갖추어놓도록 한다.

**제12조 (신고전화체계의 정상가동)**

체신기관은 신고전화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할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고의무리행)**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범죄 및 위법행위를 목격하였거나 알게 된 경우 제때에 신고접



수처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할수도 있다.

**제14조 (집중신고대책의 날 운영)**

신고접수처리기관은 월에 1차씩 집중신고대책의 날을 실정에 맞게 정하고 관할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나가 범죄 및 위법행위를 미리 막기 위한 군중정치사업을 진행하면서 신고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료해대책하여야 한다.

**제15조 (신고할 내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음과 같은 범죄 및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감행하거나 감행하도록 추기는 행위
2. 무기, 총탄, 흉기, 폭발물, 화약류, 독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비법적으로 보관 및 사용, 밀매하는 행위
3. 당 및 국가, 군사비밀을 탐지하거나 누설하거나 팔아먹는 행위
4. 정치협잡을 하거나 류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사회적혼란을 조성하는 행위
5. 퇴물을 받거나 물질적부담을 시키는 등 세도와 전횡,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하면서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행위
6. 적대방송을 시청하거나 적지물을 보관, 리용하면서 그 내용을 류포시키는 행위
7. 다른 나라 사람과 비법적으로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돈 또는 물건같은것을 주고 받는 행위
8. 군사시설을 비롯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상물과 시설물, 나라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킬수 있는것을 촬영하는 행위
9. 불순출판선전물들을 들여오거나 제작, 복사, 보관, 류포, 시청하는 행위
10. 불량행위, 음탕한 행위, 미신행위, 매음행위, 도박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추기거나 조건을 보장하여주는 행위
11. 살인, 강도, 강간을 비롯한 강력범죄행위
12. 마약을 제조, 밀매, 보관, 사용하는 행위
13. 훔치기, 빼앗기, 속여가지기, 횡령행위를 비롯하여 국가 및 개인재산을 략취하는 행위
14. 전력선, 통신선절단, 설비파손행위를 비롯하여 국가재산을 파손시키는 행위
15. 밀주, 암거래, 거간, 화폐매매, 차관장사 행위를 비롯한 각종 비사회주의적행위
16. 금, 은, 동을 비롯한 유색금속과 설비부속품, 연유, 비료, 의약품을 비롯한 국가통제품을 밀수밀매하는 행위
17. 력사유물을 밀수밀매하는 행위
18. 가짜의약품과 불량약품, 불량식료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
19. 패싸움을 비롯한 사회공동생활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20. 컴퓨터망에 비법침입하여 비밀에 속하는 자료를 열람 및 절취 하거나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21. 수입대지출이 맞지 않게 많은 돈과 물품을 쓰는 행위
22. 비법적으로 토지와 건물같은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돈벌이를 하는 행위
23. 화재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
24. 그밖의 비정상적인 행위

**제16조 (신고의 정확성보장, 과장날조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확한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실을 과장하거나 날조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 (증거제출)**

신고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범죄 및 위법행위의 증거가 있을 경우 그것을 신고 접수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신고의 형식과 방법)**

신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과 방법으로 할수 있다.

1. 신고접수처리기관에 찾아와 말로 하거나 전화로 할수 있다.
2. 신고접수처리기관에 신고내용을 글로 써서 가져오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신고함에 넣을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이름과 직장직위, 주소를 밝히며 신고자가 기관, 기업소, 단체일 경우에는 공인 또는 명판을 찍는다.
3. 정해진 신호연락의 방법으로 할수 있다.

## 제3장 군중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제19조 (신고의 접수등록)**

신고접수처리기관은 신고를 의무적으로 접수하고 신고접수등록대장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다른 기관에서 조사처리하여야 할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관할에 따라 그 자료를 해당 기관에 넘겨준다. 이 경우 <<신고자료를 넘김에 대하여>>를 만들어 기관책임자의 비준을 받으며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 (신고의 접수방법)**

신고의 접수는 신고서를 받거나 신고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고접수처리기관은 신고서를 받은 경우 신고서에 신고자의 이름과 직장직위, 주소가 제대로 밝혀져있는가를 확인하고 없으면 적어넣게 하며 신고자가 말로 신고한 경우 신고조서를 만들고 조서작성자의 이름과 직장직위, 신고자의 이름과 직장직위, 주소를 밝히고 도장 또는 지장을 찍어야 한다.

신고자에게는 거짓신고를 하면 해당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준다.

**제21조 (신고자와의 담화)**

신고접수처리기관은 신고조사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불러 담화하거나 신고자에게 해당한 증거를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불편을 주어 신고열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2조 (장애자 또는 미성년자의 신고접수)**

신고접수처리기관은 조선말을 모르는자나 언어장애자, 청각장애자가 신고할 경우 통역인 또는 해석인을 붙이며 14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교원이나 부모, 후견인, 그밖의 보호자를 립회시킨다. 이 경우 통역인과 해석인에게 통역 또는 해석을 의식적으로 틀리게 하면 법적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주며 14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에게는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는것을 알려준다.

**제23조 (무기명신고의 조사처리)**

신고접수처리기관은 무기명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목살하지 말고 신고접수등록대장에 등록하며 신고내용이 사실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조사처리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4조 (신고조사처리분담)**

신고접수처리기관은 신고조사처리르 위한 분담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신고분담은 신고내용의 성격에 따라 해당 권능에 맞게 한다. 이 경우 신고조사처리에 리해관계가 있는 일군은 그 신고조사처리의 담당자로 될수 없다.

**제25조 (신고조사처리기간)**

신고접수처리기관은 신고를 접수등록한때부터 법이 정한 기간안에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신고조사처리정형은 분기에 1차씩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제26조 (신고조사처리정형회보)**

신고접수처리기관은 신고조사처리정형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가족, 친척에게 알려줄수 있다.

**제27조 (신고자의 안전보장대책)**

신고접수처리기관은 신고자와 신고사실에 대하여 비밀에 붙이고 루설하지 말며 신고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신고를 하였다는 리유로 신고자에게 피해를 준자는 해당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제28조 (이관받은 신고의 등록 및 조사처리)**

신고접수처리기관은 관할에 따라 신고를 이관받았을 경우 그것을 등록하고 제때에 조사처리 하여야 한다.

## 제4장 군중신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29조 (군중신고사업에 대한 지도)

군중신고사업에 대한 지도는 해당 중앙신고접수처리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신고접수처리기관은 자기 부문의 군중신고접수, 조사처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신고의 접수, 등록, 조사처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 제30조 (전문부서 및 담당자)

신고접수처리기관은 군중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신고자에 대한 평가사업을 전문으로 맡아 보는 부서 또는 담당자를 실정에 맞게 두고 사업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제31조 (신고자에 대한 평가)

신고를 잘하여 공로를 세운 신고자에게는 신고가치에 따라 해당하는 평가를 한다.

신고자에 대한 평가는 신고접수처리기관의 책임일군협의회에서 건당 심의하고 해당 기관에 제기하며 그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참관 및 견학, 답사를 조직하거나 훈장, 또는 메달, 상금, 상품같은것을 수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고자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 제32조 (견학 및 참관, 답사조건보장)

내각과 해당 기관은 신고를 잘한 공로자들의 견학 및 참관, 답사조직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 제33조 (의견제기)

신고자는 신고조사처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해당 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34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1. 범죄 및 위법행위에 대하여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2. 거짓신고를 하였을 경우
3. 신고자를 구타, 폭행, 협박하였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복수하였을 경우
4. 신고를 묵살하였거나 그 조사처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범죄 및 위법행위와의 투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신고자의 안전보장대책을 세우지 않아 신고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6. 신고자에 대한 평가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 제35조 (형사적 책임)

이 법 제34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정상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도로교통법

|              |         |              |                 |
|--------------|---------|--------------|-----------------|
| 주체93(2004)년  | 10월 6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709호로 채택    |
| 주체96(2007)년  | 5월 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2227호로 수정보충 |
| 주체96(2007)년  | 10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2400호로 수정보충 |
| 주체98(2009)년  | 12월 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482호로 수정보충  |
| 주체99(2010)년  | 8월 10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1023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2(2013)년 | 5월 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3156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2(2013)년 | 11월 2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3448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4(2015)년 | 2월 1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353호로 수정보충  |

### 제1장 도로교통법의 기본

#### 제1조 (도로교통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지휘신호와 안전시설물관리, 보행자와 차의 통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도로교통지휘신호와 안전시설물관리원칙)

도로교통은 나라의 문명정도를 보여주는 중요척도이다.

국가는 도로교통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도로교통지휘신호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며 현대적인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관리를 과학화, 정상화하도록 한다.

#### 제3조 (도로통행의 원칙)

도로통행의 기준은 교통안전의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도로에서 우측통행의 원칙, 보행자, 전차, 뺄스에 우선권을 보장하는 원칙, 속도가 느린 차가 빠른 차에 양보하는 원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 제4조 (도로교통사업체계확립원칙)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도로교통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 제5조 (도로교통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도로교통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6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우리 나라의 도로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법인, 외국인(이 아래부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라고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2장 도로교통지휘신호와 안전시설물의 관리

### 제7조 (도로교통지휘신호의 종류)

도로교통지휘신호는 건널길, 차길의 사립길에서 보행자와 차의 통행을 보장하는 안전표시이다.  
도로교통지휘신호에는 교통보안원이 하는 신호와 자동신호등에 의한 신호가 있다.

### 제8조 (교통보안원의 교통지휘신호)

교통보안원이 하는 교통지휘신호는 다음과 같다.

1. 곧바로 가게 하는 신호
2. 돌아가게 하는 신호
3. 일반예고신호
4. 특별예고신호
5. 궤도전차안내신호

### 제9조 (자동신호등에 의한 교통지휘신호)

자동신호등에 의한 교통지휘신호는 다음과 같다.

1. 푸른색신호등으로 하는 통과신호
2. 노란색신호등으로 하는 일반예고신호
3. 붉은색신호등으로 하는 정지신호
4. 붉은색신호등과 노란색신호등을 함께 켜서 하는 특별예고신호
5. 사각형신호등으로 하는 궤도전차안내신호

### 제10조 (교통보안원의 배치, 자동신호등의 설치)

인민보안기관은 도로교통이 복잡한 곳과 차길의 사립길에 교통보안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로관리기관은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협의하여 제정된 곳에 자동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자와 차는 도로에서 교통지휘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 제11조 (도로안전시설물의 종류)

도로안전시설물은 보행자와 차의 교통안전과 편리를 보장하기 위한 표식이다.  
도로안전시설물에는 경고, 금지, 지시 및 안내표식과 도로 바닥선, 도로안전보호울타리와 란간, 빛반사대 같은 것이 속한다.

### 제12조 (도로안전시설물의 설치)

도시경영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도로건설기관은 정해진 곳에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민보안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로안전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마음대로 변경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통행은 도로안전시설물의 표식대로 하여야 한다.

**제13조 (주차구획설정)**

도시경영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각급 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인민보안기관과 연계밑에 고속도로와 중요도로, 극장, 영화관, 공공장소, 주택지구 같은 필요한 장소에 주차구획을 정하고 표식기를 규정대로 세워야 한다.

**제14조 (도로를 통과한 전기선, 통신선의 안전대책)**

도로에 전기선, 통신선 같은 것을 늘이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차가 안전하게 통행할수 있는 높이를 보장하며 높은 전압의 전기줄밑에는 쇠그물망을 치거나 해당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도로를 수리하거나 차단하려 할 경우에는 인민보안기관과 도로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돌림길을 내고 해당한 도로안전표식물을 세워야 한다.

**제15조 (도로안전시설물의 계획적설치)**

도시경영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도로건설기관은 도로안전시설물의 설치, 관리사업을 국가계획에 맞물려 하여야 한다.

## 제3장 보행자의 통행

**제16조 (보행자통행의 기본요구)**

보행자는 도로통행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보행자는 걸음길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걸음길이 구분되어있지 않는 도로에서는 오른쪽변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건능길의 통행)**

도로를 건느려는 보행자는 건능길, 지하건능길, 구름다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건능길시설이 없는 도로를 건느려 할 경우에는 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고속도로의 통행금지)**

보행자는 고속도로로 통행할수 없다.

고속도로를 건느려는 보행자는 구름다리나 지하건능길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9조 (대렬의 통행)**

대렬은 걸음길로 질서있게 통행하여야 한다.

국가적인 행사나 특별한 경우에는 차길로 통행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인민보안기관과 합의 하여야 한다.

#### 제20조 (신체장애자와 학령전어린이의 통행)

보행자와 차의 통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신체장애자와 학령전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호자는 신체장애자 또는 학령전어린이가 도로에서 다니거나 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21조 (보행자의 손수레와 아기차리용)

손수레나 아기차를 리용하는 보행자는 걸음길로 통행하며 걸음길이 구분되어있지않는 도로에서는 오른쪽변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 제22조 (보행자의 빠스, 전차리용)

빠스, 전차를 리용하는 보행자는 줄을 서서 오르내려야 하며 차에 매달리거나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지 말아야 한다.

역한 냄새가 나는 물질, 집짐승, 폭발물, 인화성물질 같은것을 가지고 빠스 전차에 오르지 않으며 차창밖으로 머리와 손을 내보내거나 물건을 던지지 말아야 한다.

#### 제23조 (보행자의 삼륜자전거리용)

삼륜자전거를 리용하는 보행자는 제정된 도로를 리용하며 차길의 오른쪽변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은 짐의 너비가 삼륜자전거집합의 너비를 넘지 말아야 한다.

#### 제24조 (보행자의 자전거리용)

자전거를 리용하는 보행자는 자전거길로 통행하며 자전거길이 없는 도로에서는 차길의 오른쪽변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전거에는 학령전어린이 1명을 태울수 있으며 실은 짐의 너비는 자전거손잡이의 너비를 넘지 말아야 한다.

신호중, 조명등이 없거나 제동장치가 불비한 자전거는 리용할수 없으며 교통이 복잡한 곳, 차길, 자전거길에서는 자전거를 따라앞설수 없다.

#### 제25조 (보행자의 우마차리용)

우마차를 리용하는 보행자는 차길의 오른쪽변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은 짐은 정해진 길이와 너비를 넘지 말아야 하며 도시안에서 정해지지 않은 도로를 리용하거나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통행하는 행위, 차가 어길수 없는 좁은 차길, 도시도로, 다리에 우마차를 세워두는 행위, 배설물받이가 없는 우마차를 리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4장 차의 통행

#### 제26조 (차통행의 기본요구)

차의 통행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우는 것은 도로교통안전의 기본담보이다.

차운전자자격심사기관과 차량감독기관은 운전사의 자격심사와 등록을 엄격히 하고 차를 정확



히 등록, 검사하여야 한다.

**제27조 (차운전자격의 종류와 급수)**

차는 운전자격이 있어야 운전할수 있다.

차운전자격은 자동차, 트랙도르, 전차, 지정차, 오토바이운전자격으로 구분하며 매 차운전자격종류에 따라 1~4급으로 나누다.

지정차, 오토바이운전자격에는 급수가 없다.

운전사는 차운전자격의 종류와 급수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할수 없다.

**제28조 (차운전자격시험응시)**

차의 운전자격을 받으려는 공민은 해당 차운전자격심사기관에 차운전자격시험신청문건을 내고 운전자격의 종류와 급수에 해당하는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차운전자격시험과목은 도로교통법규와 차기술학, 안전운전학, 운전실기같은 것으로 한다.

**제29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차운전자격심사기관은 운전자격시험에서 합격한 공민을 등록하고 그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당 차운전자격심사기관에 등록된 공민은 기관, 기업소단체의 명칭, 소속, 거주지 같은 것이 달라지는 경우 이동등록을 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격의 종류와 급수, 운전할수 있는 차같은 것을 밝힌다.

**제30조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차운전자격심사기관에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신청문건을 내고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차운전자격심사기관은 제기된 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확인하고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 (운전면허증교부)**

운전면허증발급단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려는 공민은 해당 차운전자격심사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운전면허증교부신청문건을 접수한 차운전자격심사기관은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려는 공민에 대한 차운전자격시험을 조직할수 있다.

**제32조 (협조원증의 발급과 실습)**

차운전양성기관을 나왔으나 차운전자격시험에서 불합격된 공민,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자체로 양성하는 공민에게는 협조원증을 발급할수 있다.

협조원증을 발급받은 공민은 2급이상의 차운전면허증을 소유한 운전사의 립회밑에서 운전실습을 할수 있다.

**제33조 (등록, 검사하는 차의 종류)**

차량감독기관은 자동차, 트랙도르, 불도젤, 굴착차, 전차, 오토바이같은 차를 정확히 등록하고 차의 기술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 편제밖의 승용차, 소형빠스를 등록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차를 제때에 등록하고 검사받아야 한다.

**제34조 (차등록의 종류)**

차의 등록은 첫 등록, 이동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으로 나누어 한다.

첫등록은 우리 나라 차량감독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차를 새로 구입하였을 경우, 이동등록은 해당 차량감독기관에 등록된 차를 이관받았거나 차를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명칭과 소속, 거주지같은것이 달라진 경우, 재등록은 필요에 따라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이 조직하는 경우에 한다.

**제35조 (차의 등록, 차등록증, 번호판의 발급)**

차를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차등록신청문건을 해당 차량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차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차량감독기관은 그것을 검토하고 해당 차를 등록한 다음 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폐기된 차, 비법적으로 구입한 차, 중고승용차와 중고소형빠스, 중고려객빠스, 조향륜이 오른쪽에 있는 차는 첫 등록을 할수 없다.

**제36조 (차등록증과 차번호판의 재발급)**

차등록증, 차번호판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킨 경우에는 차량감독기관에 재발급 신청문건을 내고 차등록증 또는 차번호판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37조 (차기술검사의 조율)**

차의 기술검사는 첫기술검사, 정기기술검사, 재기술검사, 변경기술검사, 폐기기술검사, 립시기술검사로 나누어 한다.

첫기술검사는 차를 첫등록한 경우, 정기기술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이 된 경우, 재기술검사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차기술상태를 다시 판정하여야 할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변경기술검사는 차를 변결등록한 경우, 폐기기술검사는 차를 폐기하는 경우, 립시기술검사는 필요에 따라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이 조직하는 경우에 한다.

**제38조 (차의 기술검사)**

차의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검사에 필요한 문건과 공구, 비품을 갖추어놓고 시루검사신청문건을 차량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차량감독기관은 기술검사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차의 기술상태를 검사한 다음 합격된 차에 기

술검사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 (차등록의 삭제)**

차등록을 삭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차량감독기관에 차삭제 신청문건과 차등록증, 차번호판을 바치고 차등록을 삭제하였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재정 및 은행기관은 차량감독기관의 차등록삭제확인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 수속을 해주어야 한다.

**제40조 (표식, 창가림의 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차량감독기관의 승인없이 차의 외부에 글자, 그림같은 표식을 할수 없으며 차의 유리에 색지를 붙이거나 창가림을 하거나 맑은 유리를 색유리로 바꾸어 끼울수 없다.

**제41조 (차의 번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차에 정해진 규격과 형식, 방법대로 번호판과 번호를 달아야 한다. 차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거주된 도(직할시)의 번호를 달며 도(직할시)의 번호를 달지 않는 차인 경우에는 평양시와 지방차를 구분할수 있게 해당한 번호를 달아야 한다. 등록수속을 위하여 통행하는 차에는 새로 받은 차문건이나 해당 차량감독기관이 발급한 임시표식판이 있어야 한다.

차의 번호판은 차등록기관에서만 제작할수 있다.

**제42조 (불비한 차의 통행금지)**

차량감독기관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차, 검사에서 불합격된 차,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차, 불품이 없는 차, 검은 연기를 내보내거나 기술상태가 불비한 차, 교통안전보조설비가 없거나 불비한 차는 통행할수 없다.

**제43조 (차운전사의 임무와 금지사항)**

운전사는 운전면허증, 차등록증, 운행증과 공구, 비품, 예비부속품 같은 것을 충분히 갖추고 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술 또는 주정이 있는 음료나 약물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운전을 하면서 손전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4조 (배차, 교통안전지령체계와 검차)**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리정비한 차를 배차하고 교통안전지령을 주며 매일검차를 하여야 한다. 검차원은 차대수에 따라 전임 또는 겸임으로 둘수 있다.

**제45조 (차의 달림선)**

차는 조명등을 켜고 차길로만 통행하여야만 한다.

차달림선이 표시된 차길에서는 정해진 차달림선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차달림선이 표시되어있지 않는 차길에서는 차의 속도와 종류, 형, 운행목적 같은것에 따라서로 양보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46조 (차의 경적금지)**

학교, 유치원, 탁아소, 병원, 건능길 같은 곳이나 도시안에서는 차의 경적을 울릴수 없다.

**제47조 (차의 속도)**

차는 차달림선에 규정된 속도로 통행하며 규정된 속도를 낼수 없을 경우에는 오른쪽달림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달림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시속 60k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48조 (차의 급제동, 급저속금지)**

통행하는 차는 갑자기 세우거나 속도를 낮추지 말아야 한다.

사고위험이 조성되어 부득이하게 차를 세우거나 속도를 낮추려 할 경우에는 해당한 안전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제49조 (차의 저속통행)**

사립길, 정류소와 건능길표식이 있는 곳, 안전보임거리가 제한된 곳, 복잡한 곳으로 통행하거나 눈, 비, 안개, 먼지 같은 자연환경으로 통행에 지장을 받는 차는 속도를 낮추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50조 (차의 고속도로통행)**

고속도로로 통행하는 차는 정해진 시속으로 해당 달림선에서 통행하여야 한다.

고속도로에 들어서거나 그곳에서 나가는 차는 정차선 또는 1선으로 통행하며 정해진 속도로 해당 달림선에 들어서서 통행하여야 한다.

고속도로를 건너가려는 차는 해당 안내표식이 있는 곳으로만 건너가야 한다.

고속도로로 통행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차는 통행할수 없다.

**제51조 (차의 안전거리, 차대렬에 끼여들기금지)**

차는 제정된 안전거리를 보장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통행하는 차의 대렬에는 끼여들 수 없다.

**제52조 (차의 따라앞서기와 금지장소)**

차는 차달림선이 따로 없는 도로에서 앞선 차를 따라앞서려 할 경우 해당한 신호를 하여야 한다. 신호를 받은 차는 따라앞서려는 차에 길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앞선 차를 또 따라앞서지 말아야 한다.

좁은 차길, 따라앞설수 없는 표식이 있는 구간의 차길, 굽인돌이길, 사립길, 건능길, 정류소, 다리, 굴길, 철길건능길 같은 곳에서는 차를 따라앞서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53조 (차의 어기기)**

언덕길같은 곳에서 어기는 차는 먼저 본 차 또는 내려오는 차가, 큰길과 좁은길에서 어기는 차는 큰길로부터 들어오는 차가 길을 양보하여야 한다.

**제54조 (차의 정차와 주차금지장소)**

멈춰서려는 차는 안전을 확인한 다음 차길의 오른쪽변두리나 주차장에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대로 주차 또는 정차시키며 밤에는 해당한 표식을 하여야 한다.

굴길, 다리, 세거리와 네거리, 사곶길, 철길건늬길, 시야가 제한된 언덕길과 굽인돌이길같은 교통이 복잡하거나 사고위험이 있는 곳, 정차, 주차금지표식이 있는 곳, 걸음길에는 차를 세울수 없다.

교통보안원은 세거리와 네거리에서 차머무름시간을 줄이며 세거리, 네거리, 굽인돌이길같은 교통이 복잡하거나 사고위험이 있는 곳에서 차를 세우지 말아야 한다.

**제55조 (차의 승차인원)**

승용차 버스 같은 차에는 정해진 수의 인원만을 태워야 한다.

화물차에는 필요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인원을 태울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짐을 실은 화물차에는 자리를 안전하게 만들어놓고 정해진 수의 상하차인원만을 태울수 있다.

**제56조 (차의 짐적재정량과 규격의 초과금지, 짐포장)**

화물차는 적재정량과 정해진 규격을 초과하여 짐을 실을수 없다.

바람에 날리거나 떨어져 도로를 파손시키거나 보행자와 다른 차의 통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짐은 포장을 하고 실어야 한다.

**제57조 (승차가 금지된 차)**

자동부립식, 반끌림식, 짐함식, 짐틀식, 탱크식화물차와 련결차, 강재, 원목, 폭발성물질,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인화성물질 같은 것을 실은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인원을 태울수 없다.

폭발성물질,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인화성물질 같은것을 실은화물차에는 해당한 표식을 하고 소방기재 같은것을 갖추어야 한다.

**제58조 (차의 련결차)**

련결차를 끌려는 차는 련결고리를 2중하여 하며 련결차마다에는 제동장치, 조명 또는 빛반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9조 (차의 고장퇴치, 고장난 차의 끌기)**

통행중에 고장난 차는 차길의 오른쪽변두리에 세워놓고 앞뒤에 주의표식기를 설치한 다음 고장을 퇴치하여야 한다.

차를 세워둘수 없는 도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빨리 끌어내야 한다.

고장난 차를 끌고가는 차는 해당한 안전대책을 세우며 앞차를 따라앞서지 말아야 한다.

**제60조** (건능길에서 보행자의 우선권보장)

차는 건능길에서 보행자가 차길을 건너간 다음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행자는 차길을 빨리 건너가야 한다.

**제61조** (차의 사궤길통행)

차는 교통보안원과 자동신호등이 있는 도로의 사궤길에서 속도를 점차 낮추면서 가려는 방향의 신호등을 켜 다음 해당한 자리바꿈선에 들어서서 교통지휘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리바꿈선안에서 다시 자리바꿈을 하거나 붉은색자동신호등이 켜진 다음 저지선을 통과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교통보안원과 자동신호등이 없는 도로의 사궤길에서는 가려는 방향의 신호등을 켜고 교통안전에 주의를 돌리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62조** (차의 굴길통행)

굴길을 통행하는 차는 시속을 낮추어야 한다.

어기기 힘든 굴길에서는 먼저 들어선 차가 통행하여야 한다.

**제63조** (차의 다리통행)

다리로 통행하는 차는 다리의 안전표식대로 짐을 싣고 통행하여야 한다.

어기기 힘든 다리에서는 먼저 들어선 차가 통행하여야 한다.

**제64조** (차의 철길건능길통행)

철길을 건느려는 차는 건능길 10m앞에 차를 세우고 련차의 운행이 없는가를 확인하며 안전신호가 있는 다음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의 속도를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65조** (차의 밤통행)

밤에 통행하는 차는 조명의 보임거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등이 있는 도로에서는 원거리등을 켜지 말아야 한다.

차가 어기는 경우에는 근거리등을 켜 다른 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평양시 중심구역에서 밤에 통행하는 차는 원거리등을 켤수 없다.

**제66조** (빠스, 전차의 통행)

빠스, 전차는 련객이 오르내리는 문을 닫고 통행하여야 한다.

교통보안원과 다른 차는 사궤길에서 련객을 태운 빠스, 전차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정류소가 아닌 곳에는 빠스, 전차를 세울수 없다.

**제67조** (비상임무수행, 도로시설관리차의 통행)

구급차, 소방차, 교통안전차, 도로청소차 같은 차는 경보장치와 색등신호장치를 갖추고 비상

임무를 수행하거나 도로시설관리를 위한 작업을 할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긴급한 비상임무를 수행하거나 도로시설관리를 위한 작업을 하는 차는 교통안전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제정된 속도보다 빠르게 또는 느리게 통행할수 있다. 이 경우 교통보안원과 다른 차는 해당 차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68조 (교육차와 시험차의 통행)

교육차와 시험운행을 하려는 차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알리고 정해진 시간과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교육차, 시험차에는 제정된 표식을 하여야 한다.

#### 제69조 (무한궤도차의 통행금지)

무한궤도차는 포장도로로 통행할수 없으며 화물차에 실어서 운반하여야 한다.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되는 무한궤도차의 포장도로통행절차는 따로 정한다.

#### 제70조 (트랙도르, 오물운반차, 오토바이의 통행)

도시에서 트랙도르, 오물운반차는 정해진 시간과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오토바이를 타는 공민은 안전모를 쓰고 보호안경을 껴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인원을 태우거나 짐을 실을수 있다.

#### 제71조 (교통사고시 운전사의 임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운전사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제때에 알리며 사고현장을 빨리 정리하여 보행자와 다른 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장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72조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로교통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73조 (교통상안전과 편리보장)

인민보안기관과 지방정권기관, 도로관리기관은 도로교통사업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지도하여 보행자와 차의 교통상안전과 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74조 (도로상태에 대한 통보)

체신기관은 도로보수, 파괴, 침수 등으로 도로를 리용할수 없는 경우 그 정형을 운전사나 주민들이 통신수단을 통하여 제때에 알수 있게 하여야 한다.

도로상태에 대한 자료는 인민보안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보장한다.

**제75조** (교통보안일군, 차량감독일군, 차운전자격심사일군의 양성)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통보안일군, 차운전자격심사일군, 차량감독일군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며 그들의 전문기술지식수준을 높여주어야 한다.

**제76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도로교통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77조** (도로교통안전교양)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통안전교양실》을 꾸려놓고 도로교통안전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며 운전사회의와 《설비점검의 날》, 《사고방지대책의 날》 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78조** (학생, 어린이들의 교육교양)

교육기관과 해당 기관은 학생들과 어린이들속에 교통안전과 교통도덕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며 《교통안전교양마당》 같은것을 리용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79조** (출판물, 문학예술작품의 창작, 출판, 보급)

출판기관과 문학예술기관, 해당 기관은 교통안전 및 교통도덕과 관련한 대중잡지, 그림책, 걸그림, 소설, 영화, 연극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창작, 출판, 보급하여야 한다.

**제80조**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도로안전시설물의 관리와 리용, 보행자와 차의 통행, 차운전자격심사, 차의 등록과 검사질서준수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81조** (사고위험개소에 대한 통보와 대책)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질서를 어겼거나 도로교통에 지장을 줄수 있는 사고위험개소를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 대책을 세우고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도로관리기관에 알리며 인명과 재산구조를 위하여 인민보안기관이 필요한 인원과 기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82조** (차의 억류)

차의 등록, 통행질서를 어겼거나 보행자와 차의 통행에 지장을 준 차는 정상에 따라 2개월까지 억류한다.

**제83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도로와 그 안전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위치를 변경시켰거나 차를 파손시킨 경우에는 원상복



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84조 (벌금)**

도로와 그 안전시설물관리 및 리용질서를 어겨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었거나 통행질서를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85조 (운행중지)**

차의 기술상태가 불비하거나 통행질서를 심히 어기었을 경우에는 차의 운행을 중지시킨다.

**제86조 (운전자격의 정지, 강급, 박탈)**

차통행질서를 어겼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운전자격을 정지 또는 강급, 박탈한다.

**제87조 (차의 압류, 몰수)**

다음의 경우에는 차를 압수 또는 몰수한다.

1. 차통행질서를 심히 어겼을 경우
2.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경우
4. 등록되지 않은 차를 리용하였을 경우
5. 차를 개인이 구입하였다고 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등록하였다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로 가면서 가지고 갔을 경우
6. 차등록증, 기술검사표를 위조하였을 경우
7. 인민보안기관의 정당한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반항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8. 교통지휘, 자동신호질서를 어겨 사고위험을 조성하였거나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9. 밤에 차의 조명등 켜는 질서를 어겨 사고위험성을 조성하였거나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차의 압수, 몰수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88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도로교통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독성물질취급법

주체104(2015)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09호로 채택  
주체109(2020)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7호로 수정보충

### 제1장 독성물질취급법의 기본

#### 제1조 (독성물질취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독성물질취급법은 독성물질의 생산과 보관, 공급과 판매, 운반, 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적안정과 인민의 생명, 건강,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독성물질의 정의)

이 법에서 독성물질이란 자연적인 생물독을 제외한 치사량(LD50)이 500mg/kg아래인 물질을 말한다.

#### 제3조 (독성물질의 생산과 보관원칙)

독성물질의 생산과 보관을 바로하는것은 독성물질취급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독성물질을 인민경제계획과 규격대로 생산하며 정해진 장소에만 보관하도록 한다.

#### 제4조 (독성물질의 공급과 판매, 운반원칙)

독성물질을 계획에 따라 공급하며 정해진 질서대로 운반하는 것은 독성물질의 람용과 분실 또는 그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독성물질을 계획된 단위에만 공급하며 그 운반에서 안전기술적요구를 지키도록 한다.

#### 제5조 (독성물질의 사용원칙)

국가는 독성물질의 사용질서를 바로세우고 해당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 제6조 (적용대상)

이 법은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서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7조 (해당 법규의 적용)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독성물질의 생산과 보관

### 제8조 (독성물질의 생산단위)

독성물질은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의 생산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생산할수 있다. 평양시에서는 독성물질을 생산할수 없다.

### 제9조 (독성물질생산시설의 건설, 변경)

독성물질생산시설을 건설하거나 이설, 변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합의없이 독성물질생산시설을 건설하거나 이설, 변경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10조 (독성물질생산허가신청)

독성물질을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생산허가신청문건을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내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과 생산건물의 위치, 독성물질명, 생산목적, 수량, 기간 같은것을 정확히 밝힌다.

### 제11조 (독성물질의 생산허가)

독성물질생산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사회안전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독성물질생산시설을 안전상의 견지에서 엄격히 검사한 다음 독성물질의 생산을 허가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독성물질생산을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독성물질생산허가증을 발급한다.

### 제12조 (독성물질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

독성물질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독성물질의 특성에 따라 6개월부터 1년까지로 한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을 통하여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 (독성물질생산허가증의 재발급)

독성물질생산허가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에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알리고 다시 발급받는다.

### 제14조 (독성물질생산의 안전상요구)

독성물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음과 같은 안전상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독성물질생산시설은 중요도로와 철길, 주민지구, 수원지, 방목지, 양어장, 강, 호수 같은곳으로부터 일정하게 떨어진 장소에 두어야 한다.
2. 독성물질생산건물은 불견딤도가 보장되어야 하며 소화설비가 원만히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3. 제품검사에 필요한 설비가 있어야 한다.
4. 생산설비와 장치는 유해가스가 새어나오지 않게 하며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방지시설이 구비되어있어야 한다.
6. 독성물질보관창고가 따로 있어야 한다.

**제15조** (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의 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해당 사회안전기관은 독성물질의 생산공정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적으로 사용을 금지시킨 독성물질은 생산할수 없다.

**제16조** (독성물질의 포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독성물질을 규격대로 포장하고 정해진 독성물질표식을 하며 치사량,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보관기간, 검사자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7조** (독성물질의 등록)

생산한 독성물질은 검정기관의 독성검정을 받은 다음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등록한다.

**제18조** (독성물질의 수입)

독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치사량과 사용설명서를 밝히지 않은 독성물질은 수입할수 없다.

**제19조** (노동안전조건의 보장)

독성물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며 노동보호, 노동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독성물질을 생산할수 없다.

**제20조** (독성물질생산시설에 대한 출입)

독성물질생산시설에는 정해진 성원만이 출입할수 있다.

다른 성원이 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 (독성물질생산허가증의 반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생산을 그만두려 할 경우 독성물질생산허가증을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22조** (독성물질의 보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보관시설을 정해진대로 꾸리고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독성물질보관시설에는 다른 물건을 보관할수 없다.

**제23조** (독성물질의 입출고, 실사)

독성물질을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의 입출고를 정해진대로 하며 그 정형을

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보관하고 있는 독성물질에 대하여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독성물질보관시설의 경비와 출입)**

독성물질보관시설에는 관건장치를 철저히 하고 경비를 세워야 한다.

독성물질보관시설에는 정해진 인원만 출입할수 있다.

**제25조 (독성물질보관정형에 대한 정상료해)**

해당 사회안전기관은 독성물질의 보관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3장 독성물질의 공급과 운반

**제26조 (독성물질의 공급, 판매단위)**

독성물질의 공급과 판매는 독성물질공급, 판매계획에 따라 한다.

독성물질을 공급받거나 구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받은 공급 계획 또는 무역계획이 있어야 한다.

계획이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필요에 따라 적은 량의 독성물질을 공급받거나 구입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상급기관을 통하여 사회안전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제27조 (독성물질의 공급, 판매기관)**

독성물질의 공급은 정해진 독성물질공급기관이 하며, 독성물질의 판매는 중앙사회안전지도 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 한다.

독성물질공급, 판매기관은 독성물질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기술적조건과 현장조건에 맞는 규격으로 공급, 판매하며 그 정형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28조 (독성물질의 공급, 판매장소)**

독성물질의 공급, 판매는 독성물질보관창고에서 한다.

독성물질을 공급받거나 구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계획 또는 무역계획 같은 필요한 문건을 해당 공급, 판매기관에 내고 독성물질을 공급받을수 있는 용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공급, 판매기관은 독성물질을 정확히 계량하여 공급, 판매하며 취급자에게 사용방법과 주의 사항 같은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용기에 넣은 독성물질을 공급,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정해진대로 용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29조 (독성물질의 운반허가)**

독성물질을 운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독성물질의 운반은 정해진 성원이 한다.

판매와 공급을 목적으로 평양시 중심구역에 독성물질을 들여오거나 독성물질을 싣고 중심구

역을 통과할수 없다.

**제30조 (독성물질의 운수수단)**

독성물질을 운반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을 실은 운수수단에 정해진 안전시설을 갖추고 위험표식을 하며 독성물질의 피해를 받을수 있는 다른 물건을 함께 싣지 말아야 한다. 독성물질은 려객렬차나 려객기, 려객선, 려객빠스에 실을수 없다.

**제31조 (독성물질의 운반도중에 지켜야 할 질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반도중에 독성물질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며 독성물질을 실은 운수수단에 운반성원밖의 다른 인원을 태우지 말아야 한다.

**제32조 (운반도중의 독성물질에 대한 경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을 실은 운수수단을 정차 또는 주차시켰을 경우 경비를 세워야 한다.

**제33조 (운반도중사고에 대한 통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을 운반하는 과정에 사고가 났을 경우 즉시 사회안전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4장 독성물질의 사용

**제34조 (독성물질의 사용허가)**

독성물질을 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와 인민보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인민보안기관은 독성물질의 보관장소와 사용의 안정성 같은것을 정확히 따져보고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사용지도서의 요구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을 사용지도서의 요구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지도서가 없는 독성물질은 사용할수 없다.

**제36조 (독성물질의 용도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을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며 독성물질용기를 사회안전기관에 등록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쓰고남은 적은 량의 독성물질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려 할 경우에는 상급기관과 해당 사업안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필요없는 독성물질과 용기는 해당 공급기관을 통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바치며 독성물질을 넣었던 용기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37조 (독성물질취급성원)**

독성물질의 취급은 사회안전기관에 등록된 성원만이 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성원에게 기술교육과 안전교양을 주어야 한다.

**제38조 (작업교대시 독성물질의 인계인수)**

독성물질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작업교대를 할 경우에는 남은 독성물질을 정확히 넘겨주고 받아야 하며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제39조 (독성물질사용과정에 생긴 사고통보)**

독성물질의 사용과정에 사고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긴급대책을 세우고 해당 기관과 사회안전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40조 (독성물질의 사용금지)**

독성물질은 짐승이나 물고기잡이에 사용할수 없다.

위생방역기관이 곤충이나 해로운 짐승잡이에 독성물질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독성물질의 폐기)**

독성물질 또는 그 원료를 폐기처리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사회안전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사용기간이 지났거나 효능이 떨어진 독성물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때에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 제5장 독성물질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2조 (독성물질취급사업을 지도하는 기관)**

독성물질취급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자기 단위의 독성물질취급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며 독성물질취급과 관련한 문건이나 지시를 내려보내려 할 경우에는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43조 (비정상적인 문제의 통보)**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취급에서 제기된 비정상적인 문제를 제때에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 (독성물질취급일군의 양성, 안전교양)**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취급일군을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그들의 전문기술수준

을 높이며 《사고방지대책월간》과 《사고방지대책의 날》에 독성물질취급과 관련한 안전교양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5조 (수수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취급허가를 받은 경우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제46조 (독성물질취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독성물질취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기관은 독성물질의 생산과 보관, 공급과 운반, 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7조 (비법적인 독성물질취급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비법적으로 독성물질을 가지고있거나 팔고 사거나 또는 제조, 수출입, 바꿈질, 사용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비법적으로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독성물질취급을 바로하지 못하였거나 해당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아 재산상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9조 (중지)**

다음의 경우에는 독성물질의 취급을 중지시킨다.

1. 불비한 생산설비로 독성물질을 생산하면서 사고위험을 조성하였거나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2. 포장을 정해진 규격대로 하지 않았거나 치사량과 사용지도서가 없는 독성물질을 공급, 판매하였을 경우
3. 사회안전기관의 합의를 받지않고 독성물질을 수입하였을 경우
4. 독성물질취급허가를 받지않았을 경우
5. 독성물질의 운반질서를 어겼을 경우
6. 독성물질용기를 정해진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7. 독성물질보관 및 정화시설이 불비한 경우

**제50조 (몰수)**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독성물질을 몰수한다.

1. 허가없이 독성물질을 생산, 공급, 보관, 사용하였을 경우
2. 공급, 판매계획에 없는 독성물질을 공급 또는 판매였거나 해당 사회안전기관의 합의없



- 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독성물질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았을 경우
3. 용도에 맞지 않게 독성물질을 사용하였을 경우
  4. 보관창고밖에 독성물질을 보관하였거나 사회안전기관의 합의, 검사,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 독성물질을 보관하였을 경우
  5. 개별적공민이 독성물질을 가지고있거나 사용하였을 경우
  6. 독성물질을 허가없이 망탕 처리하였을 경우

**제5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독성물질취급사업에 사고위험을 조성하였거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주체82(1993)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3호로 채택

## 제1장 변호사법의 기본

### 제1조 (변호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역할을 높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의 법적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법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변호사활동의 보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변호사는 변호활동과 법률상방조를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법률제도를 옹호한다.

국가는 변호사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제3조 (변호사의 활동내용)

변호사는 변호인, 소송대리인, 민사법률행위의 대리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며 법률상담과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문서를 작성, 심의한다.

### 제4조 (변호사의 자유로운 선택원칙)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소송 및 법률행위를 수행하는데서 자기를 방조하거나 대리할수 있는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법인과 개인도 변호사의 법률상방조를 받을수 있다.

### 제5조 (변호사활동의 근본원칙)

공정성, 객관성, 과학성을 보장하는 것은 변호사활동의 근본원칙이다.

변호사는 법에 의거하고 사실에 기초하여 활동한다.

### 제6조 (변호사활동의 독자성원칙)

국가는 변호사활동의 독자성을 보장한다.

### 제7조 (변호사양성원칙)

국가는 변호사양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변호사자격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한다.

### 제8조 (변호사위원회의 지도)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위원회의 지도밑에 활동한다.

## 제2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 제9조 (변호사의 권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형사사건기록을 볼수 있으며 피심자, 피소자와 담화하거나 서신거래를 할수 있다.
2. 증인, 감정인과 담화할수 있다.
3. 변호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확인하며 보존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에 앞서 재판소에 증거를 심리하여줄 것을 신청할수 있다.
4.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변호에 필요한 증거문서, 증거물의 열람과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5.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원이 보장될수 있도록 필요한 의견을 검사 또는 재판소에 제기할수 있다.
6. 말은 사건의 제1심판결, 판정에 대하여 상급재판소에 상소할수 있으며 상소를 심리하는 제2심재판에 참가할수 있다.

### 제10조 (국가의 법과 규정집행)

변호사는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잘 알고 그것을 존중하며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 제11조 (법해설과 준수의 방조)

변호사는 인민들속에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해설하며 그것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제12조 (변호인)

변호사는 피심자, 피소자의 신청이나 재판소의 의뢰에 따라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나서는 경우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옳게 분석평가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수 있게 하며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13조 (대리인, 법률고문)

변호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위임에 따르는 소송대리인, 민사법률행위의 대리인, 법률고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한다.

### 제14조 (법률상담과 문서의 작성, 심의)

변호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에 따르는 법률상담과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문서의 작성, 심의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 제15조 (비밀엄수)

변호사는 직무집행과정에서 알게 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16조** (법률상방조의 신청접수)

변호사는 법률상방조를 요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신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받는다.

**제17조** (대리활동에서 민법의 준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민사법률행위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대리의 위임절차, 대리행위의 법적효과, 대리권의 소멸 같은 것은 민법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제18조** (동시변호, 대리의 금지)

변호사는 리해관계가 서로 다른 피심자, 피소자 또는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들을 동시에 변호하거나 대리할수 없다. 그러나 한사건의 피소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의 요구에 따라 동시에 변호할수 있다.

**제19조** (법률상방조신청의 거절)

변호사는 법률상방조를 신청하는자가 사실을 정확히 말하지 않거나 그 신청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 그의 요구를 거절할수 있다.

## 제3장 변호사자격

**제20조** (변호사의 자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자는 변호사로 될수 있다.

1.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가진자
2. 법부문에서 5년이상 일하던자
3. 해당 분야의 전문가자격을 가진자로서 단기 법률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자

**제21조** (겸직변호사)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할수 없다.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의 법학학위학직 소유자는 겸직변호사로 일할수 있다.

**제22조** (변호사의 자격심사)

변호사자격심사는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한다.

변호사자격심사는 따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3조** (다른 나라 변호사에게 공화국변호사자격의 부여)

다른 나라 변호사에게 호상성의 원칙에서 공화국변호사자격을 줄수 있다.

공화국변호사자격을 가진 다른 나라 변호사는 다른 나라 법인과 개인, 다른 나라 법과 관련된 문제만을 취급할수 있다.

#### 제24조 (변호사의 자격박탈)

변호사가 법을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변호사자격을 박탈할수 있다.

변호사자격박탈심사는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한다.

## 제4장 변호사보수

#### 제25조 (변호사의 보수조건)

변호사보수는 변호사가 수행한 일의 중요성과 복잡성, 결과 같은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는다.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였을 경우

1. 소송대리인, 민사법률행위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였을 경우
2. 법률상담을 하였거나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문서를 작성, 심의하였을 경우

#### 제26조 (변호사의 보수기준)

변호사보수기준은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해당 변호사위원회는 정해진 기준에 준하여 변호사보수를 정확히 받아야 한다.

#### 제27조 (변호사의 보수면제)

해당 변호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줄수 있다.

## 제5장 변호사조직

#### 제28조 (조선변호사회의 설립)

변호사들의 조직으로서 조선변호사회를 둔다.

#### 제29조 (조선변호사회의 구성)

조선변호사회는 상무기관으로서 중앙과 도(직할시), 해당 부문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도(직할시)와 해당 부문에 조직된 위원회아래에 사무소 또는 법률상담소를 둘수 있다.

#### 제30조 (변호사위원회의 임무)

각급 변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변호사들에게 국가의 법과 규정을 제때에 알려주고 그들이 인민의 충실한 복무자로 활동하도록 교양한다.
2. 법률상방조를 요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을 접수하고 사업분담을 조직

한다.

3. 변호사들의 우수한 사업경험을 일반화하며 그들이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조직진행한다.
4. 아래 위원회와 변호사들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지도통제한다.
5. 변호사들의 사업조건을 보장하며 변호사보수를 받는다.

**제31조 (다른 나라 변호사조직들과의 교류와 협조)**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는 다른 나라 변호사조직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방법

주체94(2005)년 2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64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60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5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6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소방법의 기본

### 제1조 (소방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방법은 화재방지, 불끄기와 구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재부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화재방지사업원칙)

화재방지는 전국가적, 전군중적인 사업이다.

국가는 소방대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에 화재방지구역을 분담하고 화재방지책임제를 실시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 제3조 (불끄기와 구조사업원칙)

불끄기와 구조는 화재로부터 인민의 생명을 구원하고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화재통보체계를 바로세우고 소방대의 역할을 높이며 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불끄기와 구조를 신속히 하도록 한다.

### 제4조 (소방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국가는 소방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5조 (소방수단의 현대화, 전문가양성 및 과학연구사업강화원칙)

국가는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소방수단을 현대화하며 소방부문에 필요한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소방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 제6조 (소방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 령역에 있는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화재방지

### 제7조 (화재방지의 기본요구)

화재를 방지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사업과 국민의 생활상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인민보안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재방지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 제8조 (화재방지교양)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들과 주민들속에서 화재방지와 관련한 법규범과 소방규칙에 대한 해설을 준법교양계획에 맞물려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새로 입직하는 종업원과 실습생에게는 화재방지와 관련한 교양사업을 집중적으로 조직한다.

### 제9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화재방지 질서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불취급질서, 전기시설관리 및 리용질서, 화재위험성물질보관취급질서 같은 화재방지를 위하여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제10조 (화재방지사업담당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재방지사업담당자를 정하고 그들의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화재방지사업담당자는 화재위험개소를 정상적으로 감시하며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11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화재위험개소퇴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 시설물에서 화재위험개소를 찾아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 제12조 (화재위험개소의 통보)

화재위험개소를 발견한 국민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화재위험에 대하여 통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즉시 퇴치하여야 한다.

### 제13조 (소방규칙작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방규칙을 작성하여 리용하여야 한다.

건물, 시설물, 생산공정을 신설 또는 개건하거나 설비를 보충, 폐기하는것과 같은 변동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방규칙을 갱신한다.

### 제14조 (화재위험표식, 소방안전설명서)

화재위험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소, 단체는 해당 제품에 화재위험표식을 하거나 소방안전설명서를 붙여야 한다.

화재위험표식을 하지 않았거나 소방안전설명서를 붙이지 않은 화재위험제품은 판매, 공급할



수 없다.

**제15조 (소방제품의 인증)**

소방제품의 생산, 공급, 판매, 수입은 인민보안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할수 있다.

**제16조 (행사때 소방대책)**

화불, 축포, 전기장식물 같은것을 리용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재방지 대책을 세우고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알려야 한다.

해당 인민보안기관은 전기장식물을 검사하거나 화재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건설총계획의 소방지표)**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시, 마을건설총계획에 외부소화전, 소방용수, 건물의 불막이안전거리와 안전구획, 화재위험성물질생산과 저장시설의 위치, 소방차가 다녀야 할 건물사이의 통로, 소방대건물 같은 소방지표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18조 (건설설계의 소방지표)**

건설설계기관은 건설설계에 도시, 마을건설총계획에 반영된 소방지표와 화재위험성정도에 따르는 불견딤급수, 화재위험시설의 배치, 불막이시설, 내부소화전과 화재수감부 및 화재경보장치, 피난 및 진입통로와 설비, 불막이재료 같은것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소방시설의 검사)**

건설주기관은 건설물의 시공을 끝내면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소방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건설물을 리용할수 없다.

**제20조 (건물, 시설물의 안전거리)**

건물, 시설물은 화재가 발생하여도 다른 건물, 시설물에 확산되지 않게 호상 안전거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건물의 불막이시설과 보온재료)**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의 필요한 위치에 불막이벽과 불막이문을 비롯한 불막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에 보온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이 나도 확산되지 않는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살림집의 화재위험개소퇴치)**

살림집관리기관과 공민은 살림집의 전기시설, 난방시설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화재가 일어날수 있는 위험개소를 찾아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공민은 살림집에서 승인되지 않은 전열설비를 사용하거나 석유, 가스 같은 주민용연료밖의 인화성물질을 보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3조 (화재위험성시설, 불탈성물질취급건물의 위치)**

화재위험성물질을 전문으로 생산, 보관취급하는 건물, 시설물의 위치는 도시주변 또는 살림집구획으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탈곡장과 솜보관창고 같은 불탈성물질을 취급하는 건물, 시설물, 건조장, 가열로 같은 불취급시설의 위치는 화재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정한다.

화재위험성물질보관취급시설의 위치를 정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한다.

**제24조 (화재위험성물질, 발화성물질의 보관과 운반)**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재위험성물질을 소방수단이 갖추어지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건물이나 장소에 보관되며 전용수송수단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화재위험성물질을 정해진 건물이나 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하려 하거나 전용수송수단이 아닌 수송수단으로 운반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화성물질은 다른 화재위험성물질이나 불탈성물질과 함께 보관할수 없다.

**제25조 (전기시설, 전기용품의 화재방지)**

전기시설과 전기용품은 화재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를 하며 용량에 맞게 설치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제26조 (불취급시설, 건조시설, 환기시설의 화재방지)**

불취급시설과 건조시설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판, 굴뚝 같은 필요한 요소들을 정해진 대로 설치하고 리용하며 건물, 시설물의 공기조화장치와 같은 환기시설은 불이 퍼지는것을 막을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수수단의 화재방지)**

운수수단에는 불이 날 경우 그것을 제때에 끌수있도록 소방기재를 갖추어야 한다.

**제28조 (화재위험성물질, 불탈성물질보관건물에서 불취급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재위험성물질, 불탈성물질을 보관취급하는 건물이나 장소에서 화재를 일으킬수 있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화재를 일으킬수 있는 작업을 하려할 경우에는 소방대책을 세우고 해당 인민보안기관 또는 소방대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29조 (창고에 사무실, 경비실, 침실의 설치금지)**

화재위험성물질이나 불탈성물질을 보관취급하는 창고에는 사무실, 경비실, 침실을 꾸리거나 불취급시설을 설치할수 없다.

불탈성물질을 보관하는 창고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여 설치한 다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화재위험성물질, 량곡취급, 난방, 건조시설의 정기검사)**

화재위험성물질과 량곡취급시설, 난방, 건조시설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보안기관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화재위험성물질은 보관취급시설을 정해진대로 갖추고 정기검사에서 합격된 기관, 기업소, 단체에만 판매공급할수 있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량곡취급시설, 난방, 건조시설은 리용할수 없다.

## 제3장 소방대의 조직

**제31조 (소방대조직의 기본요구)**

소방기구를 바로 조직하는것은 소방사업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방대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 (소방대의 분류)**

소방대는 소방관할에 따라 인민보안소방대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방대로 나눈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방대는 소방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소방대 또는 전문자위소방대와 일하면서 불끄기에 참가하는 군중자위소방대로 나눈다.

**제33조 (전문소방대의 조직)**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시(구역), 군과 규모가 특별히 크고 화재위험성이 많은 기관, 기업소에 인민보안소방대 또는 산업소방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전문자위소방대를 조직할수 있다.

**제34조 (군중자위소방대의 조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군중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군중자위소방대를 부락별로 조직할수 있다.

**제35조 (소방대조직 및 해산합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위소방대를 새로 조직하거나 없애려 할 경우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36조 (인민보안소방대의 임무)**

인민보안소방대는 관할지역에서 화재방지사업과 화재로 위협에 처한 인원과 재산의 구조, 불끄기를 한다.

지진, 해일과 같은 재해성자연현상으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지휘에 따라 재해구조사업에 동원된다.

**제37조 (기관, 기업소, 단체소방대의 임무)**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방대는 자기 단위의 화재방지사업과 화재로 위험에 처한 인원과 재산의 구조, 불끄기를 한다. 이 경우 산업소방대는 정한데따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불끄기도 한다.

**제38조 (소방대상의 불량개소퇴치)**

인민보안소방대와 산업소방대, 전문자위소방대는 관할지역안의 소방차통로와 건물, 시설물의 소방시설 및 소방기재, 전기, 불취급, 화재위험성물질취급 시설들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불량개소를 즉시 퇴치시켜야 한다.

**제39조 (소방대의 조건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방대가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사업과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장 불끄기와 구조

**제40조 (불끄기와 구조의 기본요구)**

일어난 불을 제때에 끄고 인원과 재산을 구조하는 것은 화재에 의한 손실을 막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소방대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불끄기훈련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주민들과 종업원들에게 화재발생시 행동질서를 잘 알려주어 불끄기와 구조에서 신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1조 (소방시설과 기재의 설치 및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 시설물에 소화전, 소화기, 화재경보기 같은 소방시설과 기재를 정해진대로 갖추고 그 사용방법을 잘 알려주며 언제든지 리용할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정비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과 기재를 다른 목적에 리용할수 없다.

**제42조 (화재의 통보)**

화재를 발견한 공민은 즉시 관할소방대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체신기관은 화재통보에 필요한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점검보수하여야 한다.

**제43조 (군중자위소방대의 불끄기와 구조)**

화재를 발견하였거나 통보받은 군중자위소방대는 인민보안소방대 또는 산업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위험에 처한 인원과 재산을 구조하면서 불끄기를 하여야 한다.

화재현장 가까이에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불끄기와 구조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44조 (소방차의 통행)**

화재현장으로 가는 소방차는 교통안전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규정된 달림속도, 달림방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교통보안원은 소방차가 멈춤없이 달릴수 있도록 지휘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소방차는 통행이 제한된 차길과 차길이 아닌 곳으로 통행하거나 음향 또는 불빛으로 경보신호를 할수 있다.

**제45조 (소방차통행의 보장)**

도로로 통행하는 차와 보행자는 소방차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통행하는 차는 소방차대렬에 끼여들 수 없다.

**제46조 (소방시설파손 및 소방차통로, 소방통신수단차단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방시설을 파손시키거나 소방차통로, 소방통신수단을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방차통로와 소방통신수단을 차단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인민보안소방대, 산업소방대의 불끄기와 구조)**

화재통보를 받은 인민보안소방대와 산업소방대는 화재현장에 즉시 진출하여 인원과 중요대상, 재산을 먼저 구조하면서 불끄기를 하여야 한다. 인민보안소방대와 산업소방대는 화재현장 가까이에 있는 다른 소방대에 불끄기지원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의뢰받은 소방대는 의무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제48조 (불끄기의 지휘)**

불끄기지휘는 인민보안소방대일군이 한다. 지원을 의뢰받고 불끄기에 동원된 소방대는 관할지역 인민보안소방대일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9조 (불끄기지휘일군의 권한)**

소방대지휘관은 인원을 동원시키거나 교통차단, 전력공급중지와 같은 불끄기와 구조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방대지휘관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

**제50조 (화재사고현장보존과 조사)**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불을 끈 다음 화재사고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재사고조사를 시작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51조 (화재사고현장출입)**

화재사고현장에는 해당 일군만이 출입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재사고조사가 끝난 다음 현장과 재산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2조 (화재사고조사일군의 권한)**

화재사고조사일군은 화재사고와 관련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료를 보거나 국민의 진술을 들을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화재사고조사일군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 (소방봉사료)**

공화국령역에 있는 다른 나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인의 건물, 시설물, 운수수단에서 일어난 불을 끈 경우와 화재위험작업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소방대가 근무를 수행하였거나 화재위험 감소퇴직작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한 봉사료를 받는다.

봉사료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 제5장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4조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소방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5조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방사업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6조 (자위소방대에 대한 지도)**

인민보안기관은 관할지역의 산업소방대와 군중자위소방대의 불끄기훈련을 계획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산업소방대와 군중자위소방대는 불끄기훈련에서 제기되는 실무적문제를 정상적으로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소방사업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58조 (소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소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화재방지, 불끄기와 구조, 소방사업조건보장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9조 (벌금)**

화재방지질서를 어겨 화재위험성을 조성하였거나 소방시설과 소방기재를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불끄기훈련을 바로 하지않은것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60조 (중지)**

인민보안기관의 합의없이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화재위험성물질취급 시설을 리용하는 경우,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화재가 발생할수 있는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제품을 생산, 공급, 판매, 수입하는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시킨다.

**제61조 (몰수)**

화재위험으로 리용이 중지된 설비와 제품을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설비와 제품을 몰수한다.

**제62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소방시설과 기재를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6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소방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 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인민보안단속법

주체81(1992)년 12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2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0호로 수정보충  
주체90(2001)년 9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66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5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2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26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4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인민보안단속법의 기본

#### 제1조 (인민보안단속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단속법은 인민보안단속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법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저지시키고 정확히 조사, 처리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균중로선의 관철원칙)

온 사회에 법질서를 세우는것은 인민대중의 지향이며 요구이다.

국가는 인민보안단속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한다.

#### 제3조 (법질서위반행위의 미연방지원칙)

법질서를 어기는것은 국가와 인민대중의 리익을 쪼먹는 유해로운 행위이다.

국가는 준법교양과 법적단속을 강화하여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미리 막도록 한다.

#### 제4조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인민보안단속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5조 (사회적교양과 법적제재의 결합원칙)

국가는 법질서를 어긴 자의 처리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옹게 결합시키도록 한다.

#### 제6조 (인권유린, 직권람용행위의 금지원칙)

국가는 인민보안단속에서 인권을 유린하거나 직권을 람용하지 않도록 한다.

#### 제7조 (인민보안단속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법질서를 어긴 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인민보안단속대상

### 제8조 (일반적단속대상)

단속대상을 바로 정하는것은 인민보안단속사업의 첫 공정이다.  
인민보안기관은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야 한다.

### 제9조 (국가의 정치적안전에 위험을 주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국가의 정치적 안전에 위험을 주는 행위를 단속한다.

### 제10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와 공민의 재산을 약취하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재산을 약취하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 제11조 (국가재산관리질서와 수출입질서를 어기거나 계획실행정형을 거짓보고하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설비, 자재, 생산물을 되는데로 관리하여 못쓰게 만들거나 또는 계획실행정형을 거짓보고하거나 수출입질서를 어기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 제12조 (사회주의상업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상품을 비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정해진 가격을 어기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 제13조 (국가재산비법처리와 비법적인 봉사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설비, 자재를 비법적으로 빼내거나 승인없이 음식물매대같은 봉사시설을 갖추어 놓고 돈벌이를 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비법적으로 돈벌이를 조직하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종업원이 비법적으로 돈벌이를 조직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 제15조 (농기계, 부림소관리와 영농물자 보관관리, 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농기계, 부림소관리를 바로 하지 않거나 비료, 농약 같은 영농물자의 보관, 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 제16조 (외화벌이, 외화관리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외화벌이기지를 꾸리지 않고 외화벌이를 하거나 외화관리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 제17조 (전기랑비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비법적으로 전열기를 쓰는것 같은 전기를 량비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 제18조 (출퇴근정형을 장악하지 않거나 로동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종업원의 출퇴근정형을 제때에 장악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리유없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거나 로동시간을 지키지 않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19조** (로력동원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력을 다른 일에 망탕 동원시키거나 계획된 로력을 제때에 동원시키지 않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0조** (비법의료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의료일군이 환자에 대한 치료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의료일군이 아닌 자가 환자를 치료하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21조** (미신을 믿거나 요언을 퍼뜨리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점을 치는것과 같은 미신행위를 하거나 사실을 날조, 왜곡하거나 요언을 퍼뜨리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22조** (퇴폐적인 사상문화류포행위)

인민보안기관은 퇴폐적인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를 복사, 류포하거나 컴퓨터, 인쇄기, 수자식촬영기, 반도체라디오, 반도체라디오가 달린 녹음기의 등록질서를 어기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23조** (불량자적행위)

인민보안기관은 패싸움을 하거나 또는 여성을 희롱하거나 남의 옷에 더러운것을 발라놓는것 같은 불량자적행위를 단속한다.

**제24조**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리거나 공공시설물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술을 마시고 공공장소에서 추태를 부리거나 공공시설물을 파손시키거나 그 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그러나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는 단속은 할수 없다.

**제25조** (철길, 고속도로, 관광도로와 그 주변에서 제정된 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철길, 고속도로로 걸어 다니거나 관광도로와 그 주변에서 공중도덕과 제정된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6조** (렬차, 전차, 뱌스의 정상적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렬차, 전차, 뱌스에 설치한 시설을 파손시키거나 그 정상적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7조** (밀주행위, 국가가 금지시킨 물건과 시장밖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장사, 물물교환을 목적으로 술을 만들거나 또는 국가가 금지시킨 물건을 팔고 사거나 시장밖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8조** (밀수, 밀매, 비법월경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비법적으로 밀수, 밀매하거나 허가없이 국경을 넘나드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29조 (도적물건매매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도적물건을 숨겨주거나 또는 팔아주거나 사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0조 (려행질서, 걸어다니는 질서위반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렬행질서, 걸어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1조 (비밀관리질서위반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기밀자료, 인쇄설비의 보관, 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2조 (경비질서위반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인민반에서 경비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3조 (신분등록, 숙박등록, 살림집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신분등록, 숙박등록, 살림집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4조 (교통안전질서와 빈차운행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룬전기재를 등록하지 않거나 기술검사를 받지 않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또는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를 내보내는 룬전기재를 운행하는것 같은 교통안전질서와 빈차운행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5조 (화재방지질서위반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화재방지시설 또는 기재를 갖추지 않거나 승인없이 건물, 불당기는 물질보관시설을 건설, 리용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6조 (화약류, 총기류, 방사성 및 독성물질의 취급질서위반행위)**

인민보안기관은 화약류, 총기류와 방사성, 독성물질의 취급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7조 (내압설비, 열설비, 권양설비, 나무배검사와 운영질서위반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내압설비, 열설비, 사람이 타는 권양설비, 나무배를 정해진 기간에 검사 받지 않거나 그 운영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8조 (자연재해방지질서위반행위)**

인민보안기관은 큰물피해, 지진피해, 물에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9조 (리로운 동식물보호 및 국토환경보호질서위반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 또는 금지된 방법으로 리로운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 산림을 램도벌하는 행위와 물, 공기, 토양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40조 (신고자, 충고를 주는 자를 폭행, 모욕하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법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충고를 주는 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나 반항, 모욕하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 제3장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

#### 제41조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의 준수)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를 엄격히 지키는것은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와의 투쟁을 바로 할수있게 하는 중요담보이다.

인민보안기관은 이 법에 규정된 단속방법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제42조 (법질서를 어긴 자에 대한 단속방법)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긴 자를 단속할 경우 자기 신분을 밝히고 단속리유를 알려준 다음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법질서를 어긴 행위와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물건과 문서를 보거나 필요한 내용을 조사할수 있다.

#### 제43조 (인민보안원의 요구와 그에 응해야 할 단속된 자와 증인의 임무)

인민보안원은 단속한 자의 신분이나 법질서를 어긴 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단속된 자와 증인에게 다른 장소나 인민보안기관 또는 자기 사무실까지 함께 갈것을 요구할수 있다.

단속된 자와 증인은 인민보안원의 요구에 응하며 법질서를 어긴 행위와 관련된 물음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한다.

#### 제44조 (수집한 자료, 신고받은 자료, 이관받은 자료에 대한 조사)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긴 행위와 관련있는 자료를 수집하였거나 신고받았거나 이관받은 경우 그것을 대장에 등록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 제45조 (증거의 수집과 고찰)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하여 증거를 찾아내고 진술서를 비롯한 조서에 고찰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을 찍거나 녹음, 록화할수 있다.

록음, 록화한 내용은 해당 조서가 있어야 증거로 쓸수 있다.

#### 제46조 (조서의 작성)

법질서를 어긴 자를 단속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필요한 장소에서 조서를 작성한다.

여러명이 공모하여 법질서를 어긴 경우에는 조서를 개인별로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내용을 진술자의 자필로 받을수 있다.

조서에는 단속된 자의 신분관계와 단속날자, 장소, 근거를 밝히고 작성자와 단속된 자 또는 증인, 감정인, 해석인, 통역인, 립회인의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다.

#### 제47조 (억류대상)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기고 도주하거나 또는 공모하여 법질서를 어겼거나 조사를 방해하

는 자, 방랑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자를 억류할수 있다.

운행질서를 어긴 자동차, 트랙터, 배를 비롯한 운수수단도 억류할수 있다.

**제48조 (법질서위반자 및 운수수단 억류절차)**

법질서를 어긴 자 또는 운수수단을 억류하려 할 경우에는 대장에 등록하고 24시간안으로 단  
위책임자의 비준을 받는다.

억류한 자에게 로동을 시키거나 억류한 운수수단을 리용할수 없다.

**제49조 (억류된 자에 대한 통보)**

법질서를 어긴 자를 억류하였을 경우에는 24시간안으로 검사에게 알린다.

억류된 자의 가족과 직장 또는 거주지의 사무소에도 알린다.

**제50조 (억류기간)**

법질서를 어긴 자의 억류기간은 인민보안소는 3일, 시(구역) 군인민보안서는 10일까지이다.  
그러나 대규모의 국가재난락취행위같이 복잡하거나 공모자가 도주하여 10일안에 사고조사  
를 끝낼수 없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검찰소 검사의 승인을 받아 10일 까지 연장할수있다.  
륜전기재는 시(구역)군인민보안서가 10일까지 억류할수 있다.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까지 녀성과 중병, 전염성질병환자는 억류할수 없다.

**제51조 (기술기재사용)**

법질서를 어긴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단속하는 보안원에게 폭행을 가하는것 같  
은 법질서를 심히 문란시키는 자를 체포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술기  
재를 사용할수 있다.

**제52조 (단속된 자에 대한 조사활동)**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긴 행위로 단속한 자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할수 있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 또는 개별적공민으로부터 필요한 설명을 들을수 있다.
2. 단속된 자의 몸과 입은 옷에서 법질서를 어긴 행위와 관련있는 흔적, 특징, 물건을 찾아  
내기 위하여 검신할수 있다. 이 경우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3. 법질서를 어긴 행위와 관련있는 물건과 문서를 해당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인민보안기관  
또는 필요한 장소에 보관시킬수 있다.
4. 전문감정기관이나 또는 해당 부문의 국가적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과학기  
술적방조를 받을수 있다.

**제53조 (군중인입과 운수수단, 기술기재 리용)**

인민보안원은 인민보안단속에 군중을 인입할수 있으며 도주하는 법질서를 어긴 자를 체포하  
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가지고 있는 운수수단, 기술기재  
를 리용할수 있다.

## 제4장 단속한 자의 처리

### 제54조 (단속한 자의 처리에서 지켜야 할 요구)

단속한 자의 처리는 법질서를 어긴 자를 개준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인민보안기관은 법질서를 어긴자의 개준성과 법질서를 어긴 행위의 위험성정도를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55조 (단속된 자의 이관)

법질서를 어긴자를 단속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거주지나 직장을 관할하는 인민보안기관에 넘겨 주거나 교양처리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서와 증거물 같은것을 함께 넘긴다.

단속한 군인은 조서와 함께 해당 기관에 넘긴다.

### 제56조 (단속된 자의 처리결정)

법질서를 어긴 자를 단속한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긴 자료를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해당 인민보안기관 책임일군협의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57조 (행정적처벌의 종류)

인민보안기관 책임일군협의회는 법질서를 어긴 자료를 심의하고 로동교양,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중지, 몰수처벌을 주거나 교양처리할수 있다. 제1항에 지적되지 않은 행정적 처벌을 주려할 경우에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제기하며 형사적책임을 추궁하려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려행질서, 교통질서, 빈차운행질서를 어긴 자에게 직접 벌금을 물릴수 있다.

### 제58조 (단속된자의 처리기간)

법질서를 어긴 자의 처리기간은 단속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 제59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의 위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대책)

인민보안기관은 법질서를 어긴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법행위를 없앨데 대한 대책적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기할수 있다.

대책적의견에는 법질서를 어긴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시정할데 대하여 지적하여야 한다.

대책적의견을 제기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은 지적된 기간안에 결함을 고치고 인민보안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60조 (단속된 자의 교양처리)

법질서를 어긴 행위가 가벼운 경우에는 법질서를 어긴 자의 보호자나 그의 교양을 책임진 자로부터 담보서를 받고 교양처리할수 있다.

**제61조 (압수 및 몰수)**

법질서를 어긴데 리용한 수단,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압수 또는 몰수할수 있다.  
압수품과 몰수품은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법

주체96(2007)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06호로 채택

## 제1장 인민보안법의 기본

### 제1조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법은 인민보안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옹호보위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인민보안사업의 발전원칙

국가는 인민보안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3조 로동계급적 요구와 준수원칙

국가는 인민보안사업에서 로동계급적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 제4조 군중로선의 관철원칙

국가는 인민보안사업에서 광범한 군중의 힘과 지혜에 철저히 의거하며 그들이 법의 준수와 사회질서유지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 제5조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보장원칙

국가는 인민보안사업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 교류, 협조국가는 인민보안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인민보안기관

### 제7조 인민보안기관조직의 기본요구

인민보안기관의 조직을 바로 하는것은 인민보안기관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은 인민보안사업의 특성에 맞게 인민보안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 제8조 인민보안기관의 구분

인민보안부문에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지방인민보안기관을 둔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에는 부서, 직속기관과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 제9조 지방인민보안기관

지방인민보안기관에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보안기관과 시, 군급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기업소인민보안기관이 속한다.

지방인민보안기관에는 필요한 부서와 직속기관을 둔다.

#### 제10조 인민보안소

시(구역), 군인민보안기관과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기업소인민보안기관의 아래에 일정한 행정구역 또는 부문을 단위로 인민보안소를 둔다.

인민보안소는 말단인민보안기관이다.

#### 제11조 인민보안기관의 임무

인민보안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정치적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진압한다.
2. 퇴폐적인 문화를 끌어들이거나 류포시키는 행위를 단속통제한다.
3. 범죄와 위법행위를 단속, 수사, 적발한다.
4. 국가의 경제정책집행과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는가를 감독통제한다.
5. 사회공중질서침해행위를 단속통제한다.
6. 교통안전질서를 유지하고 그것을 어기는 행위를 단속통제한다.
7.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비사업을 감독통제하며 중요 기관, 기업소와 시설에 대한 경비 사업을 한다.
8. 총기류, 화학류와 폭발물, 방사성, 독성물질 같은 위험물질의 취급처리질서를 감독통제한다.
9. 소방사업조직과 화재사고, 로동재해 같은 각종 사고방지사업집행을 감독통제한다.
10. 출생, 거주, 퇴거 같은 공민등록사업을 한다.
11. 큰물, 지진, 해일 같은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감독통제한다.
12. 항공감시, 경보감시, 대피, 소개, 공습피해제거 같은 민간반항공사업을 한다.
13. 기관, 기업소, 단체의 비밀관리사업과 컴퓨터정보계통의 안전보호사업을 감독통제한다.
14. 이밖에 판결, 판정의 집행을 비롯하여 법이 정한 사업을 한다.

#### 제12조 범죄자, 범죄혐의자의 강제처분

인민보안기관은 범죄와 범죄사실을 정확히 밝히기 위하여 체포, 수색, 압수, 또는 구금, 구류할수 있으며 수사, 예심행위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 제13조 위법행위의 단속처리

인민보안기관은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필요한 조사를 할수 있으며 엄중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와 운행질서를 어긴 운수수단을 역류할수 있다. 이 경우 인민보안단속법에 따른다.

**제14조** 운수수단, 기술기재의 리용

인민보안기관은 범죄자추격, 사회질서유지 같은 임무수행과정에 긴급히 필요한 운수수단, 기술기재의 보장을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인민보안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군중신고체계의 수립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견한 범죄와 위법행위를 즉시 인민보안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민보안기관은 제기된 신고를 제때에 접수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6조** 범죄, 위법행위요소자 료해장악

인민보안기관은 관할지역의 범죄와 위법행위를 저지룰수 있는 자를 빠짐없이 료해장악하고 교양사업과 단속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7조** 인민보안사업의 협력

인민보안기관은 관할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을 인민보안사업에 인입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인민보안사업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장 인민보안원

**제18조** 인민보안원 선발의 기본요구

인민보안원은 인민보안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인민보안기관은 인민보안원의 선발배치를 바로 하여야 한다.

**제19조** 인민보안원의 자격

인민보안원은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될수 있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은 인민보안원을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20조** 명령, 지시의 집행

인민보안원은 상급의 명령, 지시를 정확히 집행하며 높은 자각성과 성실성에 기초하여 맡은 임무를 제때에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업에서 위훈을 세운 인민보안원에게 훈장과 메달을 비롯한 표창을 한다.

**제21조** 범죄, 위법행위의 제압, 재해구조 인민보안원은 발견한 범죄 또는 위법행위를 즉시 제압하여야 한다.

자연재해, 로동재해 같은 긴급사태발생시에는 국가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먼저 구조하여야 한다.

**제22조** 기술기재의 사용

인민보안원은 엄중한 범죄 또는 위법행위를 제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재를 사용할수 있다.

폭력행위, 무기탈취행위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자를 체포하는데 다른 방도가 없을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수 있다.

**제23조** 법규와 사회질서의 자각적준수

인민보안원은 국가의 법과 규정, 사회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인민을 존중하고 레절있게 대하여야 한다.

**제24조** 직권람용행위, 월권행위, 퇴물행위의 금지

인민보안원은 직권람용행위, 월권행위, 퇴물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5조** 자유구속 및 수색의 금지

인민보안원은 비법적으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몸이나 물건, 살림집 같은것을 수색하지 말아야 한다.

**제26조** 국가비밀의 엄수

인민보안원은 인민보안사업비밀을 비롯한 국가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4장 인민보안사업의 현대화

**제27조** 인민보안사업현대화의 기본요구

인민보안사업의 현대화를 실현하는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보안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은 인민보안사업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망계획을 바로 세우고 단계별로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28조** 기초시설의 건설

인민보안기관은 인민보안사업에 필요한 기초시설건설을 기본건설계획과 부문별건설총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 기술수단과 수법의 갱신

인민보안기관은 증거의 발견, 수집, 고착, 조사 같은 범죄와 위법행위를 제때에 정확히 적발하기위한 기술수단과 수법을 범죄수사학적,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부단히 갱신하여야 한다.

**제30조** 통신수단과 사무처리의 현대화

인민보안기관은 인민보안사업에 현대적인 통신수단을 널리 받아들이고 컴퓨터화를 실현하여 지휘통신과 사무처리의 신속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1조** 기동수단의 구비, 수리정비

인민보안기관은 순찰차, 교통단속차, 소방차 같은 기동수단을 규정한대로 갖추어야 한다.

기동수단의 수리주기를 지키며 그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 현대적인 기술기재의 생산보장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인민보안사업에 필요한 기술기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현대적인 기술기재를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 최신과학기술의 연구도입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인민보안사업발전에 가치있는 최신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제34조**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인민보안사업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장 인민보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5조** 인민보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인민보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인민보안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보안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36조** 인민보안사업에 대한 지도

인민보안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은 인민보안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인민보안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7조** 지방인민보안기관의 임무

지방인민보안기관은 관할지역의 인민보안사업실태를 료해하고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38조** 지방정권기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의 임무

지방정권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보안기관에서 정기복무년한을 마친 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며 그들의 생활을 잘 돌보아주어야 한다.

**제39조** 인민보안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인민보안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사, 예심활동을 비롯한 인민보안기관의 사업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0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인민보안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

주체65(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7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2호로 수정보충  
주체87(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4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호로 수정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 제1조 (재판소구성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은 재판소의 조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 민사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재판소구성을 바로할데 대한 원칙)

재판소구성을 바로하는 것은 재판심리의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재판소구성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 제3조 (재판소 조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최고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를 둔다. 필요한 부문에는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군수재판소 같은 특별재판소를 둔다.

## 제4조 (판사, 인민참심원의 선거)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선거한다.

최고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 제5조 (특별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명 및 선거)

특별재판소의 판사는 최고재판소에서 임명하고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 회의에서 선거한다.

## 제6조 (판사, 인민참심원의 자격)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국민이 될수 있다. 그러나 해당한 자격이 없는자는 판사로 될수 없다.

## 제7조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8조** (판사, 인민참심원의 해임)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그를 선거 또는 임명한 기관의 소환에 의해서만 해임될수 있다.

**제9조** (제1심재판소의 구성)

제1심재판소는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제1심재판소를 판사 3명으로 구성할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0조** (한재판소 성원으로 될수 없는 조건)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

**제11조**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성원으로 될수 없는 조건)

제1심재판심리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

**제12조** (인민참심원의 재판심리참가일수)

인민참심원은 1년에 14일간 재판심리에 참가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인민참심원은 14일이상 재판심리에 참가할수 있다.

**제13조** (인민참심원의 재판심리참가기간 생활비, 로력보수, 려비)

인민참심원은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의 생활비, 로력보수와 려비를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인민참심원은 해당 재판소에서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의 려비를 받는다.

**제14조** (제2심재판소의 구성)

제2심재판소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5조** (비상상소,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의 구성)

최고재판소 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과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6조**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하는 최고재판소 판사회의의 구성)

최고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는 최고재판소 판사회의에서 한다.

최고재판소 판사회의는 최고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한다.

최고재판소 판사회의는 그 성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할수 있다.

**제17조** (판결, 판정의 채택)

재판소의 판결, 판정은 재판 또는 판사회의에 참가한 판사, 인민참심원들의 다수가결로 채택한다.

**제18조** (재판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재판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최고재판소가 통일적으로 한다.

최고재판소는 전국의 재판소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19조** (재판사업에 대한 책임)

최고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재판소와 시(구역), 군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해당 인민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20조** [도(직할시), 특별재판소의 감독통제]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는 아래재판소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형사, 민사 사건해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정보보안법

주체106(2017)년 10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38호로 채택  
주체110(2021)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90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정보보안법의 기본

#### 제1조 (정보보안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보보안법은 정보통신망과 정보체계, 정보의 보안, 정보보안제품의 개발,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며 나라의 정보화를 적극 추동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보관, 처리, 전송가능한 문서, 음성, 화상, 동영상 같은 수자화된 자료를 말한다.
2. 정보보안이란 정보통신망과 정보체계에 대한 불법침입, 정보의 루출, 변조 같은 침해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체계, 정보를 보호하는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정보를 주고 받을수 있는 통신망을 말하며 여기에는 자료통신망, 전화통신망, 유선TV망, 위성통신망 같은것이 속한다.
4. 정보보안체계란 정보통신망과 정보체계, 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수단과 방법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구축한 체계이다.
5. 정보보안제품이란 정보통신망과 정보체계, 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개발한 하드웨어제품과 소프트웨어제품을 말한다.

#### 제3조 (정보보안사업의 계획화원칙)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보보안전망계획을 바로세우고 정보보안사업을 계획적으로 밀고나가도록 한다.

#### 제4조 (정보보안사업질서의 확립원칙)

정보보안사업은 정보통신망과 정보체계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정보보안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정보보안사업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5조** (정보보안부문의 과학연구, 교육사업강화원칙)

국가는 정보보안부문의 과학연구사업과 정보보안담당일군, 전문가, 기술자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추진하여 정보보안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한다.

**제6조** (정보보안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정보보안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 (국제적교류와 협조)

국가는 정보보안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에 있는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의 대표기관과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9조** (다른 법과의 관계)

정보보안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정보통신망과 정보체계의 보안

**제10조** (정보보안체계의 구축)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체계를 운영 및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단위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정보보안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보보안체계를 구축하지 않고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체계를 운영 및 리용할수 없다.

**제11조** (정보보안체계의 관리운영)

정보보안체계를 구축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검토를 받고 등록한 다음 정해진데 따라 정보보안체계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정성검토와 등록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체계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한하여 하며 이동자료통신망의 정보보안체계에 대하여서는 안전성검토만 받는다.

해당 기관은 안전성검토와 등록을 정해진 기일안에 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안전성검토를 받고 등록한대로 정보보안체계를 관리운영하며 자의대로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전국적범위에서 도입되는 정보화대상의 정보보안체계에 대하여서는 안전성검토를 받고 등록한 다음 국가적인 최종도입심의를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자료통신망 또는 정보체계에 대한 운영시험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보안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운영시험에서는 가상적인 자료를

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보안체계의 갱신)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체계를 운영 및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보보안체계를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하였거나 안전성담보기간이 지난 정보보안체계는 안전성검토와 등록을 정해진 기일안에 다시 하여야 한다.

**제13조** (우리 식 조작체계의 리용)

컴퓨터를 리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식 조작체계를 설치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우리 식 조작체계를 리용할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과 합의하고 필요한 조작체계를 리용할수 있다.

**제14조** (컴퓨터의 보안과 봉사기의 2중화, 접근기록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컴퓨터에 방화벽과 신분확인기능, 사건기록 및 추적기능, 자동신고기능, 침입검출 및 차단체계같은 해당한 보안기능을 구축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봉사기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봉사기의 2중화체계를 세우며 봉사기에 대한 접근기록자료를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체계의 보안)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체계를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기준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검토를 받은 다음 등록하여야 한다.

정보체계의 보안 및 관리운영을 맡아할수 있는 자체의 기술력량이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자적으로 정보체계를 운영할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체계의 운영을 전문운영단위에 위탁할수 있다.

**제16조** (비루스검역 및 감시체계의 수립)

컴퓨터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단위안에 비루스검역 및 감시체계를 세우고 승인된 최신악편프로그램을 설치, 리용하여야 한다.

제거되지 않는 컴퓨터비루스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악편프로그램개발단위 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7조** (악편프로그램의 보급, 갱신)

악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적범위에서 보급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루스발생통보 및 악편프로그램보급을 전문으로 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승인된 악편프로그램을 보급하며 악편기능을 부단히 갱신하여야 한다.

**제18조 (전파설비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감독기관에 등록한 전파설비를 리용하여야 한다.

**제19조 (국제통신보안)**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제전자우편, 인터넷, 확스같은 국제통신설비의 설치, 리용에서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한다.

**제20조 (국가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관리)**

국가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관리는 해당 체신기관, 기업소가 한다.

외국투자기업 또는 외국인이 국가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정보보안비상대응 및 복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보통신망과 정보체계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침해가 발생한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및 복구대책을 제때에 세워야 한다.

**제22조 (정보통신망과 정보체계에서의 금지행위)**

정보통신망과 정보체계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할수 없다.

1. 비법적으로 정보통신시설 또는 망에 접근하거나 보관된 정보를 수정, 복사, 삭제, 루출시키는 행위
2. 컴퓨터바이러스를 비롯한 악성프로그램을 류포시키는 행위
3. 한번에 정해진 량을 초과하여 신호를 보내는것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서 오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원격으로 취약점검사와 같은 보안기능검사를 진행하는 행위
5.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정보처리장치, 프로그램을 보관, 설치, 리용하는 행위
6. 기타 정보통신망과 정보체계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줄수 있는 행위

## 제3장 정보의 보안

**제23조 (정보의 암호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주고 받거나 정보처리장치에 보관하려는 경우 정해진 비밀등급에 따라 암호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암호가 로출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제24조 (신분정보의 보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체계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별적공민의 신분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필요이상의 자료를 등록하지 말아야 하며 등록된 신분정보가 외부에 누출되거나 다른 목적에 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기관내부자료의 보안)**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터넷나 국가자료통신망을 통하여 기관내부자료가 누출되지 않도록 인터넷와 국가자료통신망, 기관내부망을 물리적으로 서로 격폐시켜야 한다.

인터넷나 공중자료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에서는 기관내부자료를 편집 및 보관할수 없다.

**제26조 (업무프로그램개발의뢰 및 도입시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업무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하거나 도입시험을 하는 경우 가상적인 자료를 리용하여야 한다.

업무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발에 참가한 개별적공민은 개발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발한 업무프로그램을 다른 목적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27조 (업무프로그램, 외부기억매체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업무프로그램과 외부기억매체를 업무활동에 리용하려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제28조 (전자인증체계의 수립)**

전자거래업무체계를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입자의 신분과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할수 있도록 전자인증체계를 세우며 그에 대한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의 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은 전자인증체계에 대한 리용승인을 정해진 기일안에 해주어야 한다.

**제29조 (다른 나라 프로그램과 장치의 리용)**

다른 나라 프로그램과 장치를 수입,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다른 나라의 프로그램과 장치는 수입, 리용할수 없다.

## 제4장 정보보안제품의 개발, 리용

**제30조 (정보보안제품의 개발)**

정보보안제품의 개발은 정해진 개발단위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도 필요에 따라 정보보안제품을 자체로 개발할수 있다.

전국적범위에서 도입되는 정보보안제품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31조 (정보보안제품의 규격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보안제품을 정해진 규격대로 개발하여야 한다.  
정보보안제품의 규격은 해당 기관과 합의한 다음 규격제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2조 (정보보안제품의 안전성검토,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보안제품 또는 정보보안관련제품을 개발한 경우 그에 대하여 안전성검토를 받은 다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안관련제품에 대하여서는 안전성검토만 받으며 정보보안제품등록신청문건에는 개발자로부터 받은 해당 담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안전성검토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정보보안제품 또는 정보보안관련제품은 도입, 판매, 리용할수 없다.

해당 기관은 안전성검토와 관련한 기준을 국가규격으로 정하고 그것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갱신하여야 한다.

전국적범위에서 도입되는 정보보안제품은 안전성검토를 받고 등록한 다음 국가적인 최종도입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보안기능의 갱신)**

정보보안제품을 개발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보안제품의 보안기능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보안기능을 갱신하였거나 안전성담보기간이 지난 정보보안제품은 안전성검토와 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34조 (정보보안제품의 비밀보장)**

정보보안제품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의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정보보안제품연구개발공정에 대한 보안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승인없이 정보보안제품의 핵심관련기술자료를 류통시키거나 다른 나라에 내가거나 학술논문, 잡지, 전시회같은것을 통하여 공개할수 없으며 정보보안제품의 보안약점을 위법행위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35조 (정보보안제품의 리용, 폐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정보보안제품을 리용하여야 한다.

리용이 중지되었거나 파괴, 고장같은 원인으로 리용할수 없는 정보보안제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 또는 삭제한다.

## 제5장 정보보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6조 (정보보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정보보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정보보안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보보안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37조 (비상설위원회의 조직, 운영)

국가는 나라의 정보보안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기 위하여 내각을 비롯한 해당 기관의 책임일꾼들로 국가적인 비상설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비상설정보보안위원회를 조직하고 단위안의 정보보안사업을 계획하고 그 집행정형을 장악통제하며 제기되는 문제를 토의대책하여야 한다.

### 제38조 (정보보안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정보보안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정보보안사업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39조 (몰수처벌)

정보보안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질서를 어겼을 경우 비법적으로 얻은 돈과 물건, 해킹행위나 악성프로그램의 제작을 비롯한 엄중한 위법행위에 리용된 설비와 소프트웨어는 몰수한다.

### 제40조 (중지처벌, 차단, 가입취소)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체계의 운영 및 리용과 관련하여 정해진 질서를 어겼을 경우 중지처벌을 주거나 망가임을 차단시킨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처벌을 주거나 망가임을 취소시킨다.

### 제41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벌금처벌을 준다.

1. 말단방화벽을 설치하지 않거나 국내산 최신악편프로그램에 의한 실시간 비루스감시 및 검역체계를 세우지 않고 정보통신망과 정보체계를 운영 또는 리용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5,000~1만원
2. 승인을 받은대로 정보통신망과 정보체계를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3. 제기된 보안취약점을 퇴치하지 않고 국가자료통신망홈페이지를 운영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0만~150만원

4. 할당받은 통신회선과 IP주소, 식별자, 암호를 비법적으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국민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었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국민에게는 1만~5만원
5. 인터넷과 국가자료통신망, 기관내부망을 물리적으로 서로 격폐시키지 않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6. 봉사기2중화체계를 세우지 않고 대외홈페이지를 비롯한 중요정보체계를 운영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0만~150만원
7.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원격으로 취약점검사와 같은 보안기능검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국민에게는 10만원
8. 접근 및 조작리력, 침입기록, 봉사기실출입기록같은 정보보안관련리력 및 기록자료들을 자의대로 변경시키거나 삭제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국민에게는 5만~10만원
9. 안전성검토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정보보안제품과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판매, 도입, 류포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국민에게는 5만~10만원
10. 외부기억매체의 등록, 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만원, 국민에게는 5,000~1만원
11. 정해진 비밀등급에 따라 암호화를 진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주고 받거나 정보처리장치에 보관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만원, 국민에게는 5,000~1만원
12. 비상설정보보안위원회를 조직하지 않거나 정해진대로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제42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비법적으로 정보통신시설 또는 망에 침입하였을 경우
2. 방화벽과 신분확인기능, 사건기록 및 추적기능, 자동신고기능, 침입검출 및 차단체계 같은 해당한 보안기능을 구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과 정보체계를 운영하였을 경우
3. 중요 정보통신망과 정보체계를 운영하는 단위들에서 정해진 관리운영질서를 지키지 않아 해킹분석과 대응,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국가자료통신망에 승인받지 않은 홈페이지를 공개시켰거나 비밀에 속하는 자료와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고 받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을 경우

5. 인터넷과 국가자료통신망, 기관내부망을 물리적으로 서로 격폐시키지 않았거나 봉사기2중화체계를 세우지 않고 대외홈페이지를 비롯한 중요 정보체계를 운영하였거나 정보보안관련리력자료를 자의대로 변경시키거나 정해진 보관기일전에 삭제하였을 경우
6. 정해진 비밀등급에 따라 암호화를 진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주고받거나 정보처리장치에 보관하였거나 공중자료통신망에 연결된 정보처리장치에 기관 내부자료를 보관하거나 공유시켜 누설하였거나 누설공간을 조성시켰을 경우
7. 정보통신선로를 절단하거나 국가자료통신망위상구조를 자의대로 변경시켜 정보통신망과 정보체계의 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안전성검토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과 정보체계를 운영하였거나 안전성검토와 등록, 규격합의를 정해진 기일안에 해주지 않았을 경우
9.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정보보안제품의 핵심관련기술자료를 류통시키거나 다른 나라에 내가거나 학술논문, 잡지, 전시회같은것을 통하여 공개하였을 경우
10. 워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위에서 새로 발생하는 컴퓨터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대책을 제때에 세우지 않았을 경우
11. 정보보안과 관련한 국가적인 조직사업집행을 태공하였을 경우
12. 비상설정보보안위원회를 조직하지 않거나 정해진대로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
13. 이 법 제22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앞항 1~13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별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별을 준다.

**제43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재법

주체84(1995)년 3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3호로 채택  
주체94(2005)년 10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26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중재법의 기본

### 제1조 중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재법은 중재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고 계획수행 및 계약리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인민경제계획실행을 적극 추동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중재사건처리에서 국가적이익의 견지원칙

국가는 중재사건을 국가적이익의 견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 제3조 중재사건처리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중재사건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며 균중에 의거하도록 한다.

### 제4조 행위에 따르는 책임추궁원칙

국가는 인민경제계획 및 계약규률을 어긴 행위를 밝히고 그 정상에 따라 법적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 제5조 계획 및 계약규률위반행위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중재사건처리를 통하여 인민경제계획 및 계약규률위반행위를 미리 막도록 한다.

### 제6조 중재법의 적용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재법은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계약을 맺고 리행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사건해결에 적용한다.

## 제2장 일반규정

### 제7조 중재사건의 해결형식

중재사건의 해결은 재결, 결정으로 한다.

### 제8조 중재당사자

중재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될수 있다.

### 제9조 중재당사자의 권리

중재당사자는 중재심리에 참가하여 증거를 내놓거나 자기의 주장을 설명할수 있으며 필요한 신청을 할수 있다.

### 제10조 증거의 종류

증거로는 중재당사자의 말, 증인의 말, 증거문서, 감정결과 같은것이 될수 있다.

### 제11조 청구의 포기, 화해금지

중재당사자는 제기한 청구를 포기하거나 서로 화해할수 없다.

### 제12조 중재당사자의 권리의무이전

중재를 제기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어 그의 권리의무가 제3자에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중재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제3자에게 넘어간다. 이 경우 이미 진행한 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 제13조 중재당사자의 대표자와 대리인

중재당사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할수 있다. 대리인에게는 위임장 또는 신임장을 준다.

### 제14조 중재사건처리기간

중재기관은 중재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재결에 대하여 의견이 제기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1개월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15조 중재관계문서제출기간의 인정

중재제기서를 비롯한 중재관계문서를 법이 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낸것으로 인정한다.

### 제16조 다른 재판, 중재심리결과의 인정

중재심리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실이 이미 다른 재판이나 중재심리에서 확증되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한다.

## 제3장 중재관할

### 제17조 중재절차로 해결할 사건

중재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인민경제계획실행을 위한 계약을 맺거나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분쟁사건
2.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분쟁은 없으나 인민경제계획 및 계약규률을 위반한 사건

**제18조 중앙중재기관의 관할**

중앙중재기관은 중앙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되는 중재사건과 부문중재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무력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되는 중재사건을 심리한다.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중재기관관할에 속하는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 중재하거나 다른 도(직할시)중재기관에 넘길수 있다.

**제19조 도(직할시)중재기관의 관할**

도(직할시)중재기관은 중앙중재기관과 부문중재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중재사건을 심리해 결한다.

도(직할시)중재기관이 심리해결하는 중재사건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직할시)중재기관이 심리한다.

피고들이 서로 다른 도(직할시)에 있을 경우에는 어느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직할시)중재기관이 심리한다.

**제20조 전용선계약체결분쟁사건의 관할**

전용선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제기된 분쟁사건에 대한 중재심리는 전용선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도(직할시)중재기관이 한다.

수송도중 사고보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분쟁사건에 대한 중재심리는 짐이 닿을 역 또는 짐이 닿은 역을 관할하는 도(직할시)중재기관이 한다.

**제21조 부문중재기관의 관할**

부문중재기관은 무력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되는 중재사건을 심리해결한다.

**제22조 중재사건의 이관**

중재기관은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않는 중재사건을 제기받았을 경우 그것을 해당 중재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23조 련관관할**

한 사건으로 중재관할을 달리하는 여러가지 청구가 제기되었거나 여러 기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중재사건에 대한 심리는 그것을 먼저 제기받은 중재기관이 한다.

한 사건에 부문중재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청구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부문중재기관이 심리한다.

**제24조 도(직할시)중재기관관할사건의 이송**

도(직할시)중재기관은 자기 관할에 속하는 중재 사건을 다른 중재기관에 넘겨 처리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중앙중재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중재기관에 넘길수 있다.

**제25조 중재관할이 아닌 사건의 반송**

민사재판이나 행정 적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사건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재제기서를 돌려보낸다.

## 제4장 중재제기

### 제26조 중재제기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실행 및 계약리해과정에 자기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당한 경우 중재를 제기하여야 한다.

### 제27조 중재제기자

중재를 제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재기관에 중재제기서를 내야 한다.

중재 제기서에는 원고, 피고의 이름과 소재지, 청구내용과 그 근거로 되는 사실 같은것을 써 넣어야 한다.

### 제28조 중재제기서의 첨부문건

중재제기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건을 첨부한다.

1. 청구의 근거로 되는 문건
2. 분쟁사건에 대하여서는 피고에게 청구하였던 문건의 등본과 피고의 답변서
3. 이 밖의 사건해결에 의의가 있는 문건

### 제29조 중재제기서의 형식

중재제기서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도장을 찍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책임자의 이름을 쓰고 수표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 제30조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제기

중재기관은 중재심리과정에 해당 사건과 관련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계획 및 계약규률위반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직접 중재를 제기할수 있다.

중재제기는 중재원의 결정으로 한다.

### 제31조 감독통제기관에 의한 중재제기

감독통제기관은 중재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계획 및 계약규률위반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중재를 제기할수 있다.

### 제32조 중재제기날자의 인정

중재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낸 중재제기서를 중재기관이 접수한 날에 제기된것으로 인정한다.

기요 또는 우편으로 중재제기서를 보냈을 경우 그것을 보낸 날에 제기된것으로 인정한다.

중재제기서밖의 중재관계문서를 기요 또는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도 중재제기서를 보냈을 때와 같이 인정한다.

### 제33조 중재제기서의 제출방법

중재제기서를 비롯한 모든 중재관계문서는 기요로 보낸다.

기요로 보낼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중재기관에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수 있다.

#### 제34조 중재제기서의 불비점퇴치

중재기관은 중재제기서가 이 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의 요구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필요한 기간을 정해주어 고치게 하며 그 기간에 고치지 않을 경우에는 돌려 보낸다. 이 경우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제35조 확정된 사건에 대한 중재제기의 금지

재결이 내려졌거나 판결, 판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서는 중재를 제기할수 없다.

## 제5장 중재준비

#### 제36조 중재준비 담당자

중재사건을 검토하고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중재준비를 한다.  
중재준비는 사건을 맡은 중재원이 한다.

#### 제37조 중재준비의 내용

중재원은 중재제기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사자에게 새로운 증거를 더 내게 한다.
2. 새로운 당사자를 인입하거나 자격없는 당사자를 자격있는 당사자로 바꾼다.
3. 사건을 합치거나 가르는 문제를 결정한다.

#### 제38조 현지조사

중재원은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수 있다.

#### 제39조 중재원의 활동권한

중재원은 중재준비를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문건이나 자료를 요구할수 있으며 해당 일군으로부터 조서를 받을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일군은 중재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40조 담보처분

중재원은 중재준비과정에 비법적으로 거래된 자금, 물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담보처분할수 있다. 이 경우 담보처분결정서를 해당 일군에게 보이고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 제41조 감정의뢰

중재원은 중재사건을 밝히는데 전문지식이 필요할 경우 해당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수 있다.

감정을 맡기는 결정서에는 감정대상과 내용, 기간을 밝힌다.

#### 제42조 감정인의 권리

감정인은 감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중재기관에 요구할수 있으며 중재원의 승인밑에 필요한 내용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일군에게 물어볼수 있다.

#### 제43조 감정인의 의무

감정인은 정해진 기간에 감정을 하고 감정서를 중재기관에 내야 하며 중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중재심리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44조 중재준비의 중지

다음의 경우에는 중재준비를 중지한다.

1. 당사자인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었을 경우
2. 행정적절차에 따라 심의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전에는 중재사건을 처리할수 없을 경우
3. 중재준비를 계속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 제45조 중재준비의 계속

중재원은 이 법 제44조

1호에 의하여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어갔거나 2호, 3호의 사유가 없어졌을 경우 중재준비를 계속하여야 한다.

#### 제46조 중재심리에 넘기는 결정

중재원은 중재준비가 끝나면 결정으로 사건을 중재심리에 넘긴다.

사건을 중재심리에 넘기는 결정서에는 사건명과 원고, 피고의 이름, 원고, 피고의 주장사실, 중재원이 조사확증한 사실, 중재심리날자와 장소, 중재심리에 부를 증인, 감정인 같은것을 밝힌다.

#### 제47조 중재사건기각

다음의 경우에는 중재사건을 기각한다.

1. 당사자인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었거나 그의 권리, 의무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길수 없을 경우
2. 당사자로 될수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당사자로 되었으나 중지한 때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그 사유가 없어지 않을 경우
3. 이 법 제44조 2호, 3호의 사유로 중재준비를 중지하였으나 중지한 때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않을 경우
4. 중재심리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 제48조 중재심리날자와 장소의 통지

중재기관은 중재심리를 시작하기 7일전에 검사, 당사자, 증인, 감정인에게 중재심리 날자와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중재심리 날자와 장소를 알리는것을 비롯하여 모든 통지는 통신수단을 리용하여 한다.

#### 제49조 수속상문제의 해결

중재준비과정에 제기되는 수속상문제의 해결은 중재원의 결정으로 한다.

중재원의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해당 중재원이 속한 중재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해당 중재기관은 의견을 제기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50조 중재준비조서

중재원은 중재준비단계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서에는 중재원, 진술자의 이름을 쓰고 수표하거나 도장을 찍으며 고친데는 도장을 찍는다.

립회인이 참가하였을 경우에는 조서에 립회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는다.

## 제6장 중재심리

#### 제51조 중재심리의 당사자

중재심리는 중재원 1명이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중재원 3명으로 구성된 중재원회의에서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중재원이 중재심리를 지휘한다.

중재심리에는 검사가 참가하며 서기를 참가시킬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가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중재심리를 할수 있다.

#### 제52조 중재심리의 참가자

중재심리에는 당사자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참가한다.

대표자가 참가할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가할수 있다.

#### 제53조 중재당사자가 참가하지 않은 중재심리에서 사건처리

중재당사자가 중재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고가 참가하지 않아 사건을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사건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원고의 참가없이도 피고의 범위사실을 확증하고 사건을 해결할수 있을 경우에는 중재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물린 제재금을 국고에 넣는다.
2. 피고가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중재심리를 하고 해당한 재결을 내린다.

#### 제54조 중재심리의 시작

중재원은 중재 심리를 시작한다는것을 알린 다음 당사자에게 새로운 증거를 내거나 그밖의 신청이 없는가를 묻고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한다.

#### 제55조 중재심리의 연기

중재원은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중재심리를 계속할수 없을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재심리를 미룬다.

#### 제56조 사실심리의 시작

중재원은 사실심리를 시작한다는것을 알린 다음 원고에게 청구하는 사실을 말하게 하고 피고에게 답변을 하게 한다.

감독통제기관이 제기한 중재사건에 대한 사실심리에서는 먼저 사건을 제기한 기관의 해당 일군이 범위반자료를 읽게 한다.

#### 제57조 중재당사자의 심리

중재당사자의 진술이 끝나면 그들을 심리하고 서로 물어보게 한다.

#### 제58조 증인의 심리

중재당사자에 대한 심리가 끝나면 증인을 심리한다.

증인에 대한 심리는 1명씩하며 그것이 끝나면 당사자들에게 물어보게 한다.

중재원은 이미 심리한 증인을 다른 증인앞에서 다시 심리하거나 증인을 맞대어 놓고 심리할 수 있다.

#### 제59조 심리가 끝난 증인의 처리

증인은 중재심리가 끝나기전에 정해진 심리장소에서 떠날수 없다.

중재원은 필요한 경우 이미 심리한 증인을 중재심리가 끝나기전에 보낼수 있다.

#### 제60조 감정인의 심리

감정인에 대한 심리는 먼저 감정결과를 말하게 한 다음 물어보는 방법으로 한다.

감정인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재원이 감정서를 읽고 검토하는 방법으로 심리한다.

#### 제61조 중재당사자에 의한 사실의 증명

중재당사자는 청구하였거나 답변하는 사실을 증명하며 그에 필요한 증거를 중재심리가 끝나기 전에 내야 한다.

#### 제62조 중재준비와 중재사건의 기각

중재원은 중재심리과정에 이 법 제44조, 제47조에 규정된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 그것을 확인하고 해당한 결정을 한다.

#### 제63조 중재사건을 제기한 감독통제기관

중재사건을 제기한 감독통제기관은 중재심리에 참가하여 피고의 범위반사실을 증명하며 필요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 제64조 사실심리의 종결

중재원은 사건내용이 완전히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에게 사실심리를 끝마치는데 의견



이 없는가를 묻고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것을 알린 다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준다.  
당사자의 말에서 사건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이 제기된 경우에는 사실심리를 다시 한다.

#### 제65조 재결의 선고

중재당사자의 말이 끝나면 중재심리를 끝내고 재결을 내린다.

#### 제66조 중재심리조서의 작성

중재심리가 끝난 날부터 3일안으로 중재심리조서를 만든다.

중재심리조서에는 중재원의 도장을 찍는다.

서기를 립회시키고 중재심리를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서기의 도장도 찍는다.

## 제7장 재결 및 결정

#### 제67조 재결의 채택조건

중재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이 완전히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법의 요구에 맞게 재결을 내린다.

#### 제68조 재결채택에서 결정할 문제

재결을 내릴 경우에는 다음의 문제를 결정한다.

1. 원고의 청구가 근거있는가
2. 피고의 답변이 근거있는가
3. 어느 법규범을 적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4. 담보처분한 재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5. 피고에게 어떤 제재를 적용할것인가
6. 국가수수료를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시킬것인가

#### 제69조 재결의 종류

중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재결을 내린다.

1. 원고의 청구를 승인하는 재결
2.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재결
3. 중재심리에서 입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데 대한 재결
4. 위약금, 연체료, 손해보상 같은것을 면제하는 재결

#### 제70조 어찌할수 없는 사유와 제3자의 잘못이 있을 경우의 재결

피고가 어찌할수 없는 사유 또는 제3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리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재결을 내린다. 그러나 제3자의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피고에게 계약위반행

위와 직접 관련된 허물이 있을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또는 전부승인하는 재결을 내릴 수 있다.

#### 제71조 국가수수료부담

국가수수료의 부담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1. 원고의 청구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국가수수료를 물린다.
2. 제3자의 허물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국가수수료를 물린다.
3.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수수료를 면제시킬수 있다.

#### 제72조 재결서의 내용

재결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밝힌다.

1. 중재심리날자와 중재원의 이름, 서기가 참가한 경우에는 그의 이름
2. 사건명과 중재당사자의 참가정형
3. 원고의 청구내용과 피고의 답변내용
4. 중재심리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
5. 재결에서 의거한 법규범
6. 사건해결과 관련한 결론
7. 담보처분한 재산과 증거물의 처리정형
8. 국가수수료의 부담문제
9. 의견제기절차

#### 제73조 재결서등본의 발송

중재기관은 재결을 내린날부터 3일안으로 그 등본을 중재당사자와 검사에게 보낸다.

#### 제74조 재결에 의한 의견제기

재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중재당사자는 재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중재심리를 한 중재기관에 의견제기서를 내야 한다.

의견제기서에는 의견제기리유와 근거를 밝혀야 한다.

#### 제75조 의견제기서의 처리

의견제기서를 받은 도(직할시)중재기관은 그것을 사건기록과 함께 3일안으로 중앙중재기관에 보내야 한다.

#### 제76조 중재원회의사건의 심리관할

도(직할시)중재기관이 내린 재결에 대하여 의견이 제기된 중재사건은 중앙중재기관의 중재원 3명이 참가하는 중재원회의에서 심리해결한다. 이 경우 당사자와 서기를 참가시킬수 있다.

중재원회의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할수 있다.

#### 제77조 중재원회의방법

중재원회의는 사건을 맡은 중재원이 사건보고를 하고 다른 중재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해당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

중재당사자가 참가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그의 의견을 듣는다.

#### 제78조 중재원회의사건의 심리관할

중앙중재기관이 내린 재결, 중재원회의에서 내린 결정에 의하여 의견이 제기된 사건은 중앙중재기관의 중재원전원회의에서 심리해결한다.

#### 제79조 중재원전원회의의 구성과 운영

중재원전원회의는 중앙중재기관의 책임자, 부책임자, 중재원들로 구성한다.

중재원전원회의는 그 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결정은 다수가결로 채택한다.

중재원전원회의의 집행은 중앙중재기관의 책임자가 한다.

중재원전원회의에는 중앙검찰소검사가 참가할수 있다.

#### 제80조 의견이 제기된 중재사건의 결정

의견이 제기된 중재사건의 심리에서는 이미 진행한 중재심리에서 내린 재결,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그것을 지지하고 제기된 의견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며 이미 내린 재결,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면 그것을 취소하고 고치는 결정을 한다.

#### 제81조 의견이 제기된 중재사건의 기각

의견이 제기된 중재사건의 심리과정에 이 법 제47조의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미 내린 재결을 취고하고 사건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 제82조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결정

중재기관은 중재심리과정에 위법행위가 나타났을 경우 해당한 제재를 가할데 대한 결정을 내릴수 있다.

## 제8장 재결 및 결정의 집행

#### 제83조 재결, 결정의 집행근거

재결 및 결정의 집행은 중재기관이 발급한 집행문에 따라 한다.

#### 제84조 제재금의 집행

기관, 기업소, 단체에 물린 제재금은 은행기관이 집행한다.

은행기관은 집행문에 지적된 기일안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돈자리에서 제재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85조 벌금의 집행**

개별적일군에게 물린 벌금은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회계책임자가 집행한다.  
재정회계책임자는 집행문에 지적된 기일안으로 벌금을 집행하고 그 령수증을 해당 중재기관  
에 보내야 한다.

**제86조 재결, 결정집행의 감독**

재결 및 결정의 집행에 대한 감독은 중재기관이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기류관리법

주체98(2009)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4호로 채택

## 제1장 총기류관리법의 기본

### 제1조 (총기류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기류관리법은 총기류의 등록과 보관,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총기류란 저격무기, 사냥총, 경기용총 같은 사격수단을 말한다.

총기류에는 총탄이나 수류탄 같은 사람의 생명을 해칠수 있는 수단도 속한다.

### 제3조 (총기류의 제작원칙)

총기류는 국가가 정한 기관, 기업소가 제작한다.

그밖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총기류를 제작할수 없다.

### 제4조 (총기류의 소유 및 매매금지원칙)

총기류는 국가의 통제품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총기류를 소유할수 없으며 사고팔수 없다.

### 제5조 (총기류에 의한 사고방지원칙)

국가는 총기류관리를 엄격히 하여 총기류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 제6조 (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안에서 총기류관리와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인민무력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의 총기류관리와 관련한 질서는 따로 정한 데 따른다.

## 제2장 총기류의 공급과 운반

### 제7조 (총기류공급과 운반의 기본요구)

총기류의 공급과 운반을 바로하는것은 총기류관리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를 계획에 따라 공급하며 운반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조 (총기류의 공급기관)**

총기류는 인민보안기관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통일적으로 넘겨받아 공급한다.  
인민보안기관은 넘겨받은 총기류의 번호, 등급, 수량, 성능 같은것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총기류공급신청)**

총기류를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보안기관에 총기류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총기류공급신청서에는 총기류를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과 총기류의 수량, 리용목적, 기간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0조 (총기류의 공급방법)**

총기류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인민보안기관은 그것을 검토하고 총기류를 정해 진 질서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계획에 없거나 해당 문건을 정확히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총기류를 공급할수 없다.

**제11조 (총기류의 접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받은 총기류의 번호, 등급, 수량, 성능 같은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급받은 총기류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에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2조 (총기류의 등록)**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를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 (총기류의 운반허가)**

총기류를 운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보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총기류를 운반할수 없다.

**제14조 (총기류의 운반수단)**

총기류의 운반은 렬차, 자동차 같은 운수수단으로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무장인원이 호송한다.

**제15조 (총기류운반의 안전성보장)**

총기류를 운반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수수단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총기류를 신고부릴 때와 운반과정에 정해진 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총기류를 실은 운수수단에는 운반인원밖의 다른 인원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을수 없다.

**제16조 (총기류의 운반도중 체류 및 숙박)**

총기류를 운반하는 도중에 체류 또는 숙박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 기관에 알리고 경비를 세워야 한다.

## 제3장 총기류의 보관

### 제17조 (총기류보관의 기본요구)

총기류보관을 잘하는것은 총기류의 도난 또는 분실을 막고 성능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의 보관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제18조 (총기류보관기관)

총기류보관은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보관시설을 갖추고 총기류를 규정대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9조 (총기류보관시설건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보관시설을 사고위험성이 적고 총기류보관에 편리한 장소에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총기류보관시설주변에는 보초소, 감시대, 은폐호, 울타리, 차단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20조 (총기류보관시설경비조직)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보관시설에 대한 무장경비를 조직하여야 한다.

총기류보관시설경비인원은 경비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21조 (총기류보관시설의 출입)

총기류보관시설에는 해당 인원외에 누구도 출입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다른 인원이 들어가려 할 경우에는 책임일군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리성원이 립 회하여야 한다.

### 제22조 (총기류보관시설관리)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보관시설에 대한 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 비가 새거나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총기류보관시설과 그 주변에서는 화재를 발생시킬수 있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23조 (총기류실사)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실사를 정기적으로 진행 하고 그 정형을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기류실사는 총기류등록대장에 기록된 내용과 현물을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4조 (총기류의 기술검사, 수리, 정비)**

인민보안기관은 총기류에 대한 기술검사를 진행하고 불비한 요소들을 제때에 수리, 정비하여야 한다.

**제25조 (쓸수 없는 총기류의 처리)**

인민보안기관은 자기의 사명을 보장할수 없게 된 총기류를 해당 절차에 따라 등급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수 있다.

## 제4장 총기류의 리용

**제26조 (총기류리용의 기본요구)**

총기류의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총기류에 의한 사고를 막고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며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총기류를 정해진 규정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27조 (총기류의 리용허가)**

총기류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인민보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민보안기관은 총기류의 리용장소와 목적같은것을 정확히 따져보고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총기류를 내주거나 받는질서)**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를 내주거나 받아들이는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비상동원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기류를 밤에 내주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제29조 (총기류의 휴대)**

승인없이 총기류를 휴대하고 다닐수 없다.

공무집행을 위하여 총기류를 정상적으로 휴대하는 인원은 인민보안기관으로부터 총기류휴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총기류를 립시로 휴대하는 인원에게는 립시총기류휴대증을 발급한다.

**제30조 (총기류휴대자의 임무)**

총기류휴대인원은 총기류를 항상 몸에서 떼어놓지 말며 정해진대로만 리용 하여야 한다.

**제31조 (총기류의 반환)**

총기류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리용허가기간이 끝나기전에 그것을 인민보안기관에 바쳐야 한다.

총기류를 반환받는 인민보안기관은 총기류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 (총탄, 수류탄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총탄이나 수류탄 같은것을 리용한 다음 그 정형을 인민보안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탄피와 남은 총탄, 수류탄을 바쳐야 한다.

**제33조 (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총기류를 공무집행, 경비근무, 훈련과 기타 허가받은 용도밖의 다른 일에 리용하는 행위
2. 총기류를 집 또는 사무실에 보관하거나 짐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행위
3. 총기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맡기는 행위
4. 승인없이 총기류를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로 들여오거나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내가는 행위
5. 총기류를 파손시키는 행위
6. 총기류를 자체로 만드는 행위

**제34조 (총기류도난, 분실신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총기류를 도난당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인민보안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장 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5조 (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총기류관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6조 (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은 총기류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7조 (총기류관리에 필요한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총기류관리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 (총기류관리부문의 일군양성, 과학연구사업 강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교육, 과학연구기관은 총기류관리부문에 필요한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며 총기류관리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9조** (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총기류의 공급과 운반, 보관, 리용정형을 엄격히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40조** (총기류의 회수)

총기류를 허가없이 리용하였거나 위법행위에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회수한다.

**제41조** (벌금적용)

총기류를 파손시켰거나 총기류보관시설의 건설과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총기류관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제4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판결, 판정 집행법

주체86(1997)년 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0호로 채택  
주체86(1997)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3호로 수정보충  
주체87(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주체89(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  
주체94(200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수정보충

### 제1장 판결, 판정 집행법의 기본

#### 제1조 (판결, 판정집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판결, 판정집행법은 재판소가 내린 판결, 판정을 정확히 집행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판결, 판정의 집행기관)

판결, 판정의 집행은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그러나 재산과 관련하여 내린 판결, 판정의 집행은 재판소 집행원이 한다.

#### 제3조 (기관, 기업소, 단체 리익의 우선적보호원칙)

국가는 판결, 판정집행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공민의 리익도 다같이 보호하도록 한다.

#### 제4조 (계급로선과 균중로선의 견지원칙)

국가는 판결, 판정집행에서 로동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균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한다.

#### 제5조 (신속성, 정확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판결, 판정집행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6조 (판결, 판정집행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일반규정

### 제7조 (판결, 판정의 집행시기)

판결, 판정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한다.

### 제8조 (집행지휘문건, 집행문의 발급)

재판소는 판결, 판정이 확정된 다음 자기의 결심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서, 판정서 등본, 확정통지서 같은 집행지휘문건 또는 집행문을 발급한다.

### 제9조 (당사자의 신청없이 집행지휘문건, 집행문의 발급)

다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도 집행지휘문건 또는 집행문을 발급한다.

1. 형사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내린 판결, 판정
2. 재산을 몰수하거나 벌금을 물릴데 대한 판결, 판정
3. 재산을 국고에 넣을데 대한 판결, 판정
4.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청구를 승인한 판결, 판정
5. 자녀양육비, 부양료청구를 승인한 판결, 판정
6. 혁명렬사, 애국렬사유가족, 영예군인의 재산청구를 승인한 판결, 판정

### 제10조 (집행기간)

판결, 판정집행은 집행지휘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끝낸다. 그러나 재산처리와 관련하여 내린 판결, 판정의 집행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끝낸다.

### 제11조 (판결, 판정에 따르는 재산담보처분)

집행원은 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따라 재산담보처분을 할수 있다.

### 제12조 (담보처분, 강제집행할수 없는 재산)

집행원은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서는 담보처분하거나 강제집행을 할수 없다.

1. 당사자와 그 가족의 1개월분의 식량과 생활비, 사업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도구, 의류, 부엌세간, 위생문화용품, 학용품, 어린이용품
2. 협동농장원인 경우에는 다음분배까지의 식량과 살림집, 소농기구, 작은 집짐승
3. 장학금, 사회보험보조금, 년금

### 제13조 (집행에 대한 의무적복종)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판결, 판정집행과 관련한 집행기관, 집행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집행기관, 집행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한다.

**제14조 (집행문발급신청기간)**

재산청구자는 판결, 판정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안에 집행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수 있다.

재판소는 정한 기간안에 재산청구자가 집행문발급신청을 하지 못한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기간을 1개월까지 늘여줄수 있다.

**제15조 (집행당할 재산의 지적)**

재산을 집행당하는 자는 집행할 재산을 지적할수 있다. 그러나 위법적으로 이루어진 재산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가 지적한 재산에 관계없이 집행할수 있다.

**제16조 (집행원의 교체에 대한 의견제기)**

재산을 집행당하는자는 집행원이 재산집행을 공정하게 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 상급재판소에 집행원을 바꾸어 줄데 대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재판소는 3일안으로 심리하고 판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17조 (집행원의 제기에 대한 재판소의 처리)**

집행원은 재산집행의 결과에 대하여 자신과 가족, 친척에게 리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바꾸어 줄것을 상급재판소에 제기하여야 한다.

의견을 제기 받은 재판소는 3일안으로 심리하고 판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집행의 중지, 정지사유)**

재판소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집행을 중지 또는 정지하는 판정을 할수 있다.

1.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 로동교양의 처벌을 받은 자가 중병에 걸려있거나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녀성일 경우
2.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집행을 고려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3.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서 집행할수 없을 경우
4. 공민인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집행의 중지를 신청하였을 경우

**제19조 (재산집행중지기간)**

재산집행의 중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수 없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급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1년까지 연장할수 있다.

**제20조 (집행의 중지, 정지의 제기)**

판결, 판정집행의 본질적인 범위반이 있을 경우 중앙검찰소 소장과 중앙재판소 소장은 재산집행의 중지 또는 형기집행의 정지를 재판소에 제기할수 있다.

재산집행중지는 판결, 판정을 내린 재판소가 심리하고 판정으로 해결하며 형기집행정지는 도(직할시)재판소 또는 중앙재판소가 심리하고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21조 (집행의 중지, 정지기간의 계산)**

재산집행의 중지 또는 형기집행의 정지기간은 판결, 판정의 집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2조 (집행의 기각사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판결, 판정집행을 기각한다.

1.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 로동교양의 처벌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집행지휘문건, 집행문발급의 기초로된 판결, 판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3. 집행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이 지났을 경우
4. 공민인 당사자가 집행을 포기하였을 경우
5. 집행해야 할 재산이 자연재해 같은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류실되었거나 못쓰게 되었을 경우
6. 국가적조치로 재산집행을 할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제23조 (집행에 대한 감시)**

판결, 판정집행에 대한 감시의 감시는 집행에 참가하여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행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판결, 판정집행이 끝난날부터 1개월 안으로 해당 문건 또는 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지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

## 제3장 집행관할

**제24조 (사형판결집행기관)**

사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사형집행지휘문건을 받은 기관이 한다.

**제25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판결집행기관)**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판결에 대한 집행은 로동교화소가, 로동단련형판결에 대한 집행은 로동단련대가 한다.

**제26조 (선거권박탈형판결집행기관)**

선거권박탈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로동교화소 출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인민위원회가 한다.

**제27조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판결집행기관)**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해당 자격을 준 기관이 한다.

**제28조 (집행유예판결집행기관)**

집행유예를 적용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에 지적된 기관이 한다.

**제29조 (사회적교양판결집행기관)**

사회적교양에 넘길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에 지적된 기관이 한다.

**제30조 (무죄판결집행기관)**

죄가 없다는 판결의 집행은 재판관할지역의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한다.

**제31조 (재산집행기관)**

재산집행은 집행당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 집행원이 한다. 움직일수 없는 재산에 대한 집행은 재산이 있는 지역의 재판소 집행원이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집행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임할수 있다.

## 제4장 집행절차와 방법

**제32조 (사형판결의 집행절차와 방법)**

사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재판소가 발급한 판결서등본, 사형집행지휘문건을 받은 다음 총살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33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판결의 집행절차와 방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재판소가 발급한 판결서등본, 확정통지서를 받은 형벌집행기관에서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제34조 (선거권박탈형판결의 집행절차와 방법)**

선거권박탈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로동교화소가 보낸 판결서사본과 로동교화소출소증을 받은 인민위원회가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 참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

**제35조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판결의 집행절차와 방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로동교화소가 보낸 판결서사본과 로동교화소출소증에 따라 해당 자격을 준 기관이 자격을 완전히 빼앗거나 일시적으로 빼앗는 방법으로 한다. 자격정지기간은 3년을 넘을수 없다.

**제36조 (재산몰수형판결의 집행절차와 방법)**

재산몰수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담보처분한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제37조 (집행유예판결의 집행절차와 방법)**

집행유예를 적용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등본, 확정통지서를 받은 기관이 판결서에 지적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여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제38조 (사회적교양판결의 집행절차와 방법)**

사회적교양에 넘길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등본, 확정통지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책임지고 교양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9조 (무죄판결의 집행절차와 방법)**

죄가 없다는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등본을 받은 기관이 피소자를 내놓는 방법으로 한다.

**제40조 (벌금적용, 손해보상판결, 판정의 집행절차와 방법)**

벌금을 물리거나 손해를 보상할데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은 재판소 집행원 또는 위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판결서, 판정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해당한 돈을 회수하여 국고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제41조 (집행한 물건을 넘겨받은 기관의 의무)**

집행한 물건을 넘겨받은 기관은 그 값을 10일안으로 집행문에 지적된 기관의 돈자리에 넣어야 한다.

**제42조 (자녀양육비, 부양료지불판결, 판정의 집행절차와 방법)**

자녀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불할데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은 재판소 집행원이 자녀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불해야 할 당사자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임장과 집행문을 보내어 매월 생활비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녀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한번에 지불한 경우에는 재판소 집행원이 받아 당사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한다.

**제43조 (로동교양판정의 집행절차와 방법)**

로동교양처벌을 적용할데 대한 판정의 집행은 해당 권한있는 기관에 판정서등본, 확정통지서를 보내어 한다.

**제44조 (집행의 기각)**

판결, 판정집행의 기각은 재판소의 판정으로 한다.

**제45조 (재산집행의 위임)**

재산을 집행할데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위임은 재판소 집행원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임장과 집행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기관명, 집행의무를 지닌 기관명, 사건내용, 위임할 내용, 돈자리번호 회보할 날자 같은것을 써야 한다.

위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46조 (재산물수형, 손해보상판결, 판정집행의 립회)**

재산물수형에 처하거나 손해를 보상할데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할 경우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우며 집행조서와 재산목록을 만든다.



집행조서와 재산목록에는 집행자와 립회인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

**제47조** (재산몰수형판결을 받은 자가 진 빚의 처리)

재산몰수형판결을 받은 자가 이미 진 빚은 재산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몰수한 재산가운데서 물어준다.

**제48조** (재산몰수형판결을 받은 자, 채무자의 저금, 보험금에 대한 집행)

재산몰수형판결을 받은 자 또는 채무자의 저금, 보험금에 대한 집행은 저금기관 또는 보험기관에 위임장을 보내여 국고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제49조** (판결, 판정의 집행정형보고)

집행기관, 집행원 및 위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판결, 판정집행정형을 정한 기간안에 해당 재판소에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제5장 집행에 대한 의견제기

**제50조** (집행에 대한 의견제기와 그 처리)

판결, 판정집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5일안으로 해당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재판소는 10일안으로 신청자와 증인을 참가시키고 심리하여 판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51조** (의견제기를심리해결한 판정에 대한 상소와 그 처리)

의견제기를 심리해결한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상급재판소에 상소할수 있다.

상소받은 재판소는 10일안으로 심리하고 판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5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판결, 판정집행을 방해하였거나 그것을 정당한 리유없이 집행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폭발물처리법

주체95(2006)년 10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8호로 채택  
주체104(2015)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10호로 수정보충

### 제1조 (폭발물처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폭발물처리법은 폭발물의 발견과 탐지, 회수, 처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폭발물의 분류)

폭발물은 폭발성을 가진 물건이다.

폭발물에는 폭탄, 포탄, 수류탄, 지뢰, 총탄, 신관 같은 것이 속한다.

### 제3조 (폭발물처리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투하, 매물, 설치하였거나 묻혀있는 폭발물을 해제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다.

### 제4조 (폭발물처리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폭발물처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5조 (폭발물의 탐지, 회수, 처리기관)

폭발물의 탐지, 회수, 처리는 도(직할시)인민보안기관이 한다.

특정한 지역에서 폭발물의 탐지, 회수, 처리는 해당 기관이 한다. 그러나 자체로 처리할수 없는 폭발물은 인민보안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할수 있다.

인민보안기관은 폭발물의 탐지, 회수, 처리를 위하여 전문폭발물처리대를 조직할수 있다.

### 제6조 (폭발물의 계획적탐지)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의 탐지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이 많이 투하, 매물된 장소, 중요도로와 철길, 행사장 같은 곳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

### 제7조 (파철집합장소의 조사)

해당 인민보안기관은 제철소, 제강소, 고금속사업소, 수매소 같은 곳에 모아놓은 파철무지속에 폭발물이 없는가를 월 또는 주 1차씩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정형은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 (파철상하차시 폭발물의 확인)

파철을 싣고부리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폭발물이 없는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작업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을 발견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그 장소를 차단한 다음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9조 (폭발물의 신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폭발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훈련장에서 폭발물의 확인)**

실탄사격훈련을 하는 기관은 훈련이 끝난 후 불발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해당 탄피를 정확히 회수하여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바쳐야 한다.

불발탄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때에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1조 (폭발물발견장소의 차단)**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을 발견한 장소의 일정한 구역을 차단하고 사람, 운수수단, 짐짐승 같은 것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차단구역에는 위험표식을 하고 경비조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폭발물의 소유금지)**

승인없이 폭발물을 보관하거나 리용, 판매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얻었거나 비법적으로 가지고있는 폭발물을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13조 (폭발물의 운반)**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처리용 료전기재에 안전시설과 색동, 경보기, 확성기를 갖추고 붉은색삼각기발을 달아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처리용 료전기재에는 폭발물처리일군 밖의 다른 인원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을수 없다.

**제14조 (폭발물운반차의 운행)**

처리하려는 폭발물을 실은 료전기재는 정해진 시간과 도로에 제한없이 운행할수 있다. 이 경우 안전속도를 유지하며 중요지역과 주민지대, 교통이 복잡한 곳, 시내 중심구역을 통과하지 않는 원칙에서 운행하여야 한다.

교통지휘일군은 폭발물을 실은 료전기재를 지체시키지 말고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제15조 (폭발물의 처리장소)**

폭발물을 처리하려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의 종류와 수량, 지형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폭발물처리장소를 정하고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합의없이 폭발물처리장소와 안전시설을 없애거나 옮기지 말아야 한다.

**제16조 (폭발물의 처리방법)**

폭발물의 처리는 정해진 장소에서 순폭폭발의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해체하거나 순폭폭발의 방법으로 처리할수 있다.

폭발물을 매몰하거나 물속에 넣는 방법으로 처리할수 없다.

**제17조 (폭발물의 처리절차)**

폭발물을 처리하려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처리신청문건을 작성하여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폭발물처리신청문건을 폭발물의 종류와 수량, 처리장소와 날자, 시간, 방법, 차단조직원형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상급기관은 폭발물의 종류와 수량, 위험성정도 같은 것을 정확히 료해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18조 (폭발물의 처리)**

폭발물의 처리는 폭발물처리장소에서 2명이상의 전문폭발물처리일군이 한다.

폭발물처리장소에는 폭발물처리일군외에 누구도 들어갈수 없다.

**제19조 (폭발물처리시의 안전대책)**

폭발물을 처리하려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처리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폭발물의 처리날자와 시간, 장소, 주의사항 같은 것을 미리 알려주며 처리장소에 대한 인원들의 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폭발물의 처리에 대하여 통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폭발물의 폭약처리)**

인민보안기관 해당 기관은 폭발물을 해체하는 과정에 나온 폭약을 순폭처리하거나 화약류를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다른 나라의 의뢰에 의한 폭발물처리)**

인민보안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의뢰하여온 폭발물을 탐지, 처리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료금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폭발물처리정형의 보고)**

폭발물을 탐지, 회수, 처리하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그 정형을 정확히 대장에 기록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폭발물처리사업에 대한 지도)**

폭발물처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처리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폭발물처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24조 (폭발물처리부문의 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폭발물의 탐지, 회수, 처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폭발물처리일군의 우대)**

중앙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처리일군의 생활조건의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폭발물처리일군에게는 해당하는 가급금을 준다.

**제26조 (폭발물처리사업의 현대화, 과학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의 탐지, 회수, 처리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며 능력있는 전문일군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27조 (벌금, 몰수)**

폭발물을 바치지 않고 가지고있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며 해당 폭발물을 몰수한다.

**제28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행정처벌법

|              |         |              |                 |
|--------------|---------|--------------|-----------------|
| 주체93(2004)년  | 7월 1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546호로 채택    |
| 주체94(2005)년  | 8월 2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1234호로 수정보충 |
| 주체95(2006)년  | 5월 23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1773호로 수정보충 |
| 주체96(2007)년  | 1월 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2109호로 수정보충 |
| 주체96(2007)년  | 3월 20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2161호로 수정보충 |
| 주체96(2007)년  | 6월 26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2279호로 수정보충 |
| 주체96(2007)년  | 12월 1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2482호로 수정보충 |
| 주체97(2008)년  | 5월 20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2712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0(2011)년 | 10월 16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지시 제77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5(2016)년 | 12월 22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지시 제102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9(2020)년 | 12월 1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지시 제72호로 수정보충   |
| 주체110(2021)년 | 3월 1일부터 | 시행           |                 |

### 제1장 행정처벌법의 기본

#### 제1조 (행정처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은 위법행위와 행정처벌에 대한 규제를 정확히 하고 그 적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위법행위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모든 기관, 기업소, 단세와 국민들이 법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키며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 제3조 (행정처벌과 사회적교양의 배합원칙)

국가는 위법행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행정처벌을 배합하도록 한다.

#### 제4조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보장원칙)

국가는 행정처벌의 적용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5조 (행정처벌법의 효력원칙)

이 법은 위법행위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 영역에서 위법행위를 한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 단체, 기업체,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때마다 외교적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제6조 (불소급원칙)**

위법행위를 한자에게는 위법행위당시의 행정처벌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 행정처벌법에서 위법행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위법행위로 보지 않거나 행정처벌을 낮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7조 (행정처벌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위법행위와 그에 따르는 행정처벌의 종류, 적용절차, 방법을 규제한다.

## 제2장 일반규정

**제8조 (위법행위의 정의)**

위법행위는 국가의 법질서를 어긴 행정처벌을 적용할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제9조 (행정처벌의 정의)**

행정처벌은 위법행위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적용하는 행정법적제재이다.

**제10조 (행정처벌의 적용나이)**

행정처벌은 위법행위당시 16살이상 되는자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16살이 되지 못한자가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대책을 세운다.

**제11조 (정당방위)**

이 법에서 위법행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적리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자신의 적법적리익을 침해하는 위급한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그것이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되지 않는다.

**제12조 (긴급피난)**

이 법에서 위법행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피하는데 그길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한 결과 입은 손실이 보호된 리익보다 작을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되지 않는다.

**제13조 (행정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조건)**

행정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장애자가 자기의 행위를 가리지 못하거나 통제할수 없는 상태에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미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3. 자백하였을 경우
4. 행정처벌적용시효가 지난 경우

**제14조 (공모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공모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매 위법자가 위법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맞

게 행정처벌을 적용한다.

위법행위의 추진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문에 따라 행정처벌을 적용한다.

추진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무겁게, 방조자는 실행자보다 가볍게 행정처벌을 적용한다.

#### 제15조 (행정처벌의 종류)

행정처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엄중경고처벌
2. 무보수로동처벌
3. 로동교양처벌
4. 강직, 해임, 철직처벌
5. 벌금처벌
6. 변상처벌
7. 몰수처벌
8. 중지처벌
9.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

#### 제16조 (경고, 엄중경고처벌)

경고, 엄중경고처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가벼운 위법행위를 한 일군에게 주는 행정법적제재이다. 경고처벌기간은 3개월, 엄중경고처벌 기간은 6개월이다.

#### 제17조 (무보수로동처벌)

무보수로동처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 일군을 자기 단위가 아닌 어렵고 힘든 부문에 보내어 육체적로동을 시키는 행정법적제재이다.

무보수로동처벌기간은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이다.

#### 제18조 (로동교양처벌)

로동교양처벌은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 공민을 로동교양대에 보내어 로동을 시키는 행정법적제재이다.

로동교양처벌 기간은 5일이상 6개월이하이다.

#### 제19조 (강직, 해임, 철직처벌)

강직, 해임, 철직처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다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 일군을 해당 직위 또는 직무에서 내려놓거나 떼는 행정법적제재이다.

#### 제20조 (벌금처벌)

벌금처벌은 위법행위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에게 물질적자극을 주는 행정법적제재이다.



벌금적용절차와 방법, 액수는 벌금규정에 준한다.

**제21조 (변상처벌)**

변상처벌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국민에게 해당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배수를 물게 하는 행정법적제재이다.

변상처벌은 3개월안으로 집행한다.

**제22조 (몰수처벌)**

몰수처벌은 비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위법행위에 리용된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넣는 행정법적제재이다.

**제23조 (중지처벌)**

중지처벌은 위법적인 경영, 건설, 영업, 운행을 중지시키는 행정법적제재이다.

경영, 건설, 영업중지처벌기간은 결함을 퇴치하였을 때까지 운행중지처벌기간은 10일이상 2개월이하이다.

**제24조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은 위법행위를 한 기술기능자격소유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거나 급수를 낮추거나 빼앗는 행정법적제재이다.

자격정지처벌기간은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이다.

**제25조 (행정처벌의 량정)**

행정처벌은 위법행위의 목적과 동기, 수단과 방법, 실행정도, 공모관계, 위법자의 개준성정도 같은것을 고려하여 그 종류와 한도를 정한다.

**제26조 (침해된 재산에 대한 량적계산방법)**

재산침해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적용하려 할 경우에는 침해된 재산의 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그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량정하여야 한다.

**제27조 (위법행위의 병합조건)**

한 위법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위법행위가 각각 독립적으로 행정처벌을 적용할수 있는 경우에는 병합한다. 그러나 어느 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다른 형태의 위법행위를 저지르는데 필수적전제로 되었을 경우에는 병합할수 없다.

**제28조 (위법행위의 병합시 행정처벌량정)**

한 위법자가 여러가지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함께 심의하고 총체적 위험성을 평가하여 하나의 행정처벌을 적용한다.

**제29조 (서로 다른 종류의 행정처벌기간계산)**

무보수로동처벌기간과 로동교양처벌기간을 합하여 계산할 경우에는 로동교양처벌기간 1일을 무보수로동처벌기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제30조** (행정처벌적용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

행정처벌적용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공모한 위법행위의 피동분자인 경우
2. 위법행위조사에 협력하였을 경우
3. 국가에서 맡겨준 일을 더 잘하려고 하다가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긴급피난의 정도를 넘었을 경우
5. 고백하였을 경우
6. 략취하였거나 파손한 재산을 스스로 보상하였거나 원상 복구하였을 경우
7.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을 경우

**제31조** (행정처벌적용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

행정처벌적용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공모한 위법행위의 주동분자인 경우
2. 위법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았으나 또다시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법집행일군의 위법행위조사활동을 방해하였을 경우
4. 위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은닉 또는 소멸시켰을 경우
5. 위법사실을 알린 사람이나 증인을 독행 또는 보복하였을 경우
6. 전시 또는 재해 및 비상방역시에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7. 자기의 보호밑에 있거나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자에게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32조** (행정처벌집행중에 저지른 위법행위, 숨긴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행정처벌을 받은자가 그 집행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숨긴 위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받고있는 행정처벌의 집행기간을 늘이거나 보다 무거운 행정처벌을 적용할수 있다.

**제33조** (행정처벌의 해제 및 기한전해제)

경고, 엄중경고처벌,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자격정지처벌은 그 집행기간이 끝나는 날에, 중지처벌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결함을 퇴치한 후에 해제시킨다.  
행정처벌을 받고있는자가 자기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생활을 특별히 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집행기간의 절반이 지난 다음 남은 처벌기간을 해제시켜줄수 있다.

**제34조** (《이상》, 《이하》, 《여러번》에 대한 의미)

이 법에서 행정처벌기간을 지정한 <이상>, <이하>는 해당 수를 포함한다.  
<여러번>은 두번이상을 의미한다.

**제35조** (행정처벌의 적용시효)

위법행위를 한 때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처벌을 적용할수 없다.

1. 경고, 엄중경고처벌을 줄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1년
2.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줄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2년

**제36조 (행정처벌을 받고있는자의 권리제한)**

경고, 엄중경고처벌,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받고 있는자에게는 처벌기간안에 국가표창을 하거나 등용, 동급조동시킬 수 없으며 중요행사, 회의, 강습에 참가시키거나 휴가, 휴양을 주거나 다른 나라에 출장보낼수 없다.

경고, 엄중경고처벌을 받고있는자는 필요에 따라 중요행사, 회의, 강습에 참가시킬수 있다.

## 제3장 위법행위와 행정처벌

### 제1절 국방관리질서위반행위

**제37조 (전략예비물자의 조성태만행위)**

전략예비물자의 조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38조 (전략예비물자의 부패, 변질, 류실행위)**

전략예비물자의 보관관리질서를 어겨 전략예비물자를 부패, 변질, 류실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39조 (전략예비물자비법처분, 류용행위)**

전략예비물자를 비법적으로 처분하였거나 류용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40조 (전시생산준비태만행위)**

전시생산준비를 태만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41조 (전투기술기재략취행위)**

전투기술기재를 략취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42조 (군사시설파손행위)**

군사시설을 파손시킨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43조 (민간군사경비근무질서위반행위)**

민간군사경비근무질을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44조 (군사임무수행방해행위)**

군사임무수행을 방해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45조 (군수품생산용자재 및 군수품의 류용, 분실, 매매행위)**

군수품생산용자재 또는 군수품을 류용하였거나 분실하였거나 매매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46조 (군수품생산용자재 및 군수물락취행위)**

군수품생산용자재 또는 군수품을 락취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47조 (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 행위)**

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48조 (군수품생산질서위반행위)**

군수품생산질을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49조 (군사복무동원기피행위)**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50조 (군사복무동원방해행위)**

군사복무동원을 방해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51조 (기피자, 탈영자은닉행위)**

군사복무동원기피자, 탈영자라는것을 알면서 숨겨준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52조 (군인으로 가장한 행위)**

군인으로 가장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53조 (국방비밀루설행위)**

국방비밀을 루설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54조 (민간군사훈련계획집행질서위반행위)**

민간군사훈련계획집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55조 (민간군사훈련기피행위)**

민간군사훈련을 기피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56조 (민간반항공질서위반행위)**

민간반항공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57조 (병기운반 및 보관관리질서위반행위)**

병기운반 및 보관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 제2절 경제관리질서위반행위

**제58조 (계획작성, 심의승인, 시달, 등록질서위반행위)**

인민경제계획작성, 심의승인, 시달, 등록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59조 (계획적생산 및 계획수행보고질서위반행위)**

인민경제의 계획적생산 및 계획수행보고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60조 (계약규률위반행위)**

계약규률을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61조 (통계질서위반행위)**

통계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62조 (제품생산질서위반행위)**

제품생산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63조 (품질감독질서위반행위)**

품질감독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64조 (규격 및 계량, 계측질서위반행위)**

규격 및 계량, 계측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65조 (수출입상품검사질서위반행위)**

수출입상품검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66조 (영농질서위반행위)**

영농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67조 (축산질서위반행위)**

축산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68조 (과일생산질서위반행위)**

과일생산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69조 (잠업질서위반행위)**

잠업생산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70조 (어로, 양어, 양식질서위반행위)**

어로, 양어, 양식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71조 (공예작물생산질서위반행위)**

공예작물생산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72조 (흑색 및 유색금속생산, 공급, 보관질서위반행위)**

흑색 및 유색금속생산, 공급, 보관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73조 (생산수단수리질서위반행위)**

생산수단수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74조 (비법적인 경영활동행위)**

비법적인 방법으로 경영활동을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75조 (소프트웨어산업질서위반행위)**

소프트웨어산업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76조** (전자업무질서위반행위)

전자업무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77조** (생산물비법처분행위)

생산물을 비법적으로 처분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78조** (설비, 원료, 자재비법처분행위)

설비, 원료, 자재를 비법처분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79조** (국가예비물자관리질서위반행위)

국가예비물자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80조** (연유관리질서위반행위)

연유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81조** (원료, 자재, 자금의 류용, 량비행위)

원료, 자재, 자금을 류용, 량비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82조** (국가재산의 부패변질, 류실행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부패변질, 류실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83조** (설비점검 및 보수질서위반행위)

설비점검 및 보수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84조 (부림소관리질서위반행위)**

부림소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85조 (부동산비법처분행위)**

부동산을 비법적으로 처분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86조 (부동산빼앗은 행위)**

부동산을 빼앗은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87조 (국가재산횡령행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횡령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88조 (국가재산공동탐오행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공동탐오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조직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89조 (국가재산훔친 행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90조 (국가재산빼앗은 행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은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91조 (국가재산속여가진 행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속여가진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92조 (국가재산파손행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파손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93조 (국가재산은닉행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은닉시킨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94조** (국가재산을 개인에게 꾸어주었거나 끈 행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개인에게 꾸어주었거나 끈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95조** (재산도용행위)

재산을 략취하여 자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쓴 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96조** (지원물자비법처분행위)

지원물자를 비법적으로 처분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97조** (가격제정 및 적용질서위반행위)

가격제정 및 적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의 벌을 준다.

**제98조** (국가납부질서위반행위)

국가납부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99조** (탈세 행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자에게는 벌금처벌을 준다.

**제100조** (회계질서위반행위)

회계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01조** (대부질서위반행위)

대부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02조** (무현금결제수단비법발급, 사용, 결제행위)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발급, 사용, 결제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03조 (화폐위조행위)**

공화국화폐 또는 외국화폐를 위조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104조 (위조화폐 사용행위)**

위조된 공화국화폐나 외국화폐를 사용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105조 (유가증권위조행위)**

유가증권을 위조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106조 (위조유가증권사용행위)**

위조된 유가증권을 사용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107조 (화폐교환질서위반행위)**

화폐교환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08조 (화폐매매행위)**

리기적목적밑에 공화국화폐나 외국화폐를 매매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109조 (로력배치질서위반행위)**

로력배치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10조 (로동조직질서위반행위)**

로동조직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11조 (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 행위)**

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12조 (녀성에게 금지된 로동을 시킨 행위)**

녀성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로동을 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13조 (로동정량제정 및 적용질서위반행위)**

로동정량제정 및 적용질서를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14조 (사회주의분배질서위반행위)**

사회주의분배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15조 (기능공양성질서위반행위)**

기능공양성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16조 (로동안전 및 로동보호질서위반행위)**

로동안전 및 로동보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17조 (비법적인 작업 또는 수송행위)**

비법적으로 작업 또는 수송을 하여준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118조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보장질서위반행위)**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보장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19조 (무직건달 및 무단결근행위)**

무직건달을 부렸거나 무단결근을 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120조 (전력공급질서위반행위)**

전력공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21조 (전력리용질서위반행위)**

전력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22조 (개인의 전력비법리용행위)**

전력을 비법적으로 리용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123조 (전기사용료납부질서위반행위)**

전기사용료납부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24조 (철도수송조직질서위반행위)**

철도수송조직과 지휘를 무책임하게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25조 (철도시설물보호질서위반행위)**

철도시설물보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26조 (열차운행안전질서위반행위)**

열차운행안전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27조 (철길보호질서위반행위)**

철길보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128조 (화차리용질서위반행위)**

화차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29조 (국가측지점보호질서위반행위)**

국가측지점보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130조 (토지보호 및 리용질서위반행위)**

토지보호 및 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을 준다.

**제131조 (개인의 토지비법리용행위)**

토지를 비법적으로 리용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132조 (산림조성 및 보호질서위반행위)**

산림조성 및 보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33조 (산림리용허가질서위반행위)**

산림리용허가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34조 (산림파손행위)**

산림을 파손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35조 (풍치림보호질서위반행위)**

풍치림보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36조 (도로관리 및 보호질서위반행위)**

도로관리 및 보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37조 (하천보호 및 리용질서위반행위)**

하천보호 및 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38조 (감문관리질서위반행위)**

감문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39조 (광천개발, 리용, 보호질서위반행위)**

광천개발, 리용, 보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40조 (샘물개발 및 생산질서위반행위)**

샘물개발 및 생산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41조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채취, 제련질서위반행위)**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채취, 제련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42조 (개인의 지하자원비법개발, 채취, 제련행위)**

개인이 지하자원을 비법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채취, 제련한 경우에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143조 (수산자원조성 및 보호질서위반행위)**

수산자원조성 및 보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44조 (동식물자원보호질서위반행위)**

동식물자원보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145조 (하천, 호소, 바다오염행위)**

하천, 호소, 바다를 오염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46조 (정화질서위반행위)**

정화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47조 (대기오염행위)**

환경보호질서를 어겨 대기를 오염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

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48조 (폐기폐설물취급질서위반행위)**

폐기폐설물취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49조 (건설계획, 설계, 명시, 허가질서위반행위)**

건설계획, 설계, 명시, 허가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50조 (건설감독질서위반행위)**

건설감독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51조 (건설물의 시공질서위반행위)**

건설물의 시공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52조 (비법건설행위)**

비법건설행위를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53조 (건물 및 살림집관리질서위반행위)**

건물 및 살림집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54조 (건물 및 살림집리용질서위반행위)**

건물 및 살림집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55조 (실리가 없는 시설건설, 기계설비제작행위)**

실리가 없는 시설을 건설하였거나 기계설비를 제작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



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56조 (먹는물생산 및 공급질서위반행위)**

먹는물생산 및 공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57조 (먹는물도용행위)**

먹는물을 도용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158조 (난방열관리질서위반행위)**

난방열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59조 (난방열도용행위)**

난방열을 도용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160조 (도시오물처리질서위반행위)**

도시오물처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61조 (하수관리질서위반행위)**

하수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62조 (공원, 유원지관리운영 및 리용질서위반행위)**

공원, 유원지관리운영 및 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63조 (도시미화에 지장을 준 행위)**

도시미화의 요구를 어겨 도시미화에 지장을 준자에게는 벌금처벌을 준다.

**제164조 (식량공급질서위반행위)**

식량공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

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65조 (량곡가공질서위반행위)**

량곡가공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66조 (량곡판매질서위반행위)**

량곡판매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67조 (주민연료공급질서위반행위)**

주민연료공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68조 (상품공급 및 판매질서위반행위)**

상품공급 및 판매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69조 (가짜상품제조, 판매행위)**

가짜상품을 제조, 판매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170조 (불량식료품제조, 판매행위)**

불량식료품제조, 판매행위를 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171조 (사회급양, 편의, 려객봉사질서위반행위)**

사회급양, 편의, 려객봉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72조 (부업반 및 가내반조직 및 운영질서위반행위)**

부업반, 가내반조직 및 운영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73조 (수매질서위반행위)**

수매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74조 (장의보장질서위반행위)**

장의보장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75조 (유전자전이생물안전관리질서위반행위)**

유전자전이생물안전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76조 (대외경제계약체결 및 리행질서위반행위)**

대외경제계약체결 및 리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77조 (수출입질서위반행위)**

수출입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78조 (대외투자질서위반행위)**

대외투자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79조 (무역화물검수질서위반행위)**

무역화물검수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80조 (유색금속밀수, 밀매행위)**

유색금속을 밀수, 밀매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81조 (밀수행위)**

밀수행위를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

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82조 (귀금속관리질서위반행위)**

귀금속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83조 (외화관리질서위반행위)**

외화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84조 (외화사용질서위반행위)**

외화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85조 (외화도피행위)**

외화를 도피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86조 (외화별이질서위반행위)**

외화별이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87조 (무역 및 외화별이기관, 단체의 상적행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문자를 가지고 상적행위를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 제3절 문화관리질서위반행위

**제188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관리 및 보호질서위반행위)**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관리 및 보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89조 (력사유적, 유물보호관리질서위반행위)**

력사유적, 유물보호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90조 (력사유물밀수, 밀매행위)**

력사유물을 밀수, 밀매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191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관리질서위반행위)**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92조 (교육질서위반행위)**

교육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93조 (어린이보육교양질서위반행위)**

어린이보육교양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94조 (가정교사행위)**

가정교사행위를 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195조 (후비양성질서위반행위)**

후비양성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96조 (과학기술발전계획작성, 수행 및 보고질서위반행위)**

과학기술발전계획작성, 수행 및 보고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97조 (과학연구사업조건보장질서위반행위)**

과학연구사업조건보장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198조 (과학기술연구자료평가질서위반행위)**

과학기술연구자료평가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 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 처벌을 준다.

**제199조 (과학기술연구자료도용행위)**

과학기술연구자료를 도용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00조 (과학기술연구성과도입질서위반행위)**

과학기술연구성과도입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 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 처벌을 준다.

**제201조 (과학기술보급질서위반행위)**

과학기술보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02조 (자격 및 급수사정질서위반행위)**

자격 및 급수사정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03조 (자격 및 급수비법취득행위)**

자격 및 급수를 비법적으로 취득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 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04조 (저작, 발명, 창의고안평가질서위반행위)**

저작, 발명, 창의고안평가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 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 직처벌을 준다.

**제205조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침해행위)**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을 침해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06조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도용행위)**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을 도용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 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

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07조 (출판 및 인쇄질서위반행위)**

출판 및 인쇄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08조 (출판물발행 및 보급질서위반행위)**

출판물발행 및 보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09조 (개인의 인쇄물, 다매체편집물비법제작행위)**

인쇄물, 다매체편집물을 비법적으로 제작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10조 (상표리용질서위반행위)**

상표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11조 (체육질서위반행위)**

체육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12조 (의료질서위반행위)**

의료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13조 (치료회피행위)**

치료를 회피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14조 (비법의료행위)**

비법의료행위를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15조 (정신병원관리운영질서위반행위)**

정신병원관리운영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16조 (위생방역질서위반행위)**

위생방역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17조 (의약품관리질서위반행위)**

의약품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18조 (가짜의약품제조, 판매행위)**

가짜의약품제조, 판매행위를 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19조 (수의방역질서위반행위)**

수의방역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20조 (수의약품관리질서위반행위)**

수의약품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21조 (아편꽃비법재배행위)**

비법적으로 아편꽃을 재배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22조 (아편비법채취행위)**

비법적으로 아편꽃을 채취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23조 (마약비법제조, 보관행위)**

마약을 비법적으로 제조하였거나 보관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24조 (마약밀수, 거래행위)**

마약을 밀수하였거나 거래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25조 (마약비법사용행위)**

마약을 비법적으로 사용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26조 (마약생산 및 관리질서위반행위)**

마약생산 및 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27조 (진정제 및 수면제관리질서위반행위)**

진정제 및 수면제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 제4절 일반행정질서위반행위

**제228조 (명령, 정령, 결정, 지시집행태만행위)**

명령, 정령, 결정, 지시집행을 태만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29조 (정책집행을 무책임하게 한 행위)**

정책집행을 무책임하게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30조 (직무태만행위)**

직무를 태만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31조 (직권람용행위)**

직권을 람용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32조 (월권행위)**

월권행위를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33조 (국가기관권위훼손행위)**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준다.

**제234조 (퇴물행위)**

퇴물을 받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35조 (세외부담을 시킨 행위)**

세외부담을 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36조 (강제수단비법적용행위)**

사람을 비법적으로 구속, 구인, 억류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37조 (진술강요 및 위법사실과장, 날조행위)**

진술을 강요하였거나 위법사실을 과장, 날조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38조 (위법사실약화행위)**

위법자를 비법적으로 놓아주었거나 위법사실을 가볍게 하여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39조 (신소청원처리질서위반행위)**

신소청원처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40조 (부당한 판결, 판정, 재결, 결정행위)**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을 부당하게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41조 (경비근무질서위반행위)**

경비근무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42조 (독립임무수행태만행위)**

독립임무수행을 태만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43조 (증명서관리질서위반행위)**

증명서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44조 (문서비법처분, 위조, 사용행위)**

문서를 비법적으로 처분하였거나 위조, 사용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45조 (당, 국가상징물관리질서위반행위)**

당, 국가상징물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46조 (공인사용질서위반행위)**

공인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47조 (신분등록질서위반행위)**

신분등록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48조 (숙박등록질서위반행위)**

숙박등록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49조 (판결, 판정, 재결, 결정집행거부행위)**

판결, 판정, 재결, 결정집행을 거부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50조 (집단적소동행위)**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킨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51조 (직무집행방해행위)**

직무집행을 방해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

은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52조 (부당한 신소행위)**

부당한 신소를 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53조 (법기관의 호출거부행위)**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이 법기관의 호출에 정당한 리유없이 응하지 않아 사건해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54조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강요행위)**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하도록 강요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55조 (복수행위)**

위법행위를 조사취급한 일꾼이나 위법행위의 신고자,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에 대한 복수행위를 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56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57조 (거짓신고, 진술행위)**

위법행위에 대한 거짓신고를 하였거나 위법행위의 조사취급시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58조 (직권참용행위)**

직권을 참용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59조 (법인참용행위)**

법인으로 가장하여 경제거래를 한자에게는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60조 (거짓행세행위)**

검열, 단속심원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61조 (범죄자, 위법자은닉행위)**

범죄자, 위법자를 숨겨주었거나 그 흔적을 감추어준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62조 (불신고행위)**

유기노동교화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준비하고있거나 저지른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63조 (도주행위)**

단속되었다가 도주하였거나 조사취급과정 또는 처벌집행중에 도주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64조 (행정검열질서위반행위)**

행정검열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65조 (검열단속성원의 권한비법행사행위)**

부여받은 검열단속권한을 비법적으로 행사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66조 (비밀관리질서위반행위)**

비밀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노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67조 (봉인손상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한 봉인을 손상시킨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68조 (사고방지질서위반행위)**

사고방지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노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69조 (화약류취급질서위반행위)**

화약류취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노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70조 (방사성, 인화성, 폭발성물질관리질서위반행위)**

방사성, 인화성, 폭발성물질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

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71조 (독성물질관리질서위반행위)**

독성물질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72조 (위험동물관리질서위반행위)**

위험동물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73조 (열 및 내압설비관리운영질서위반행위)**

열 및 내압설비관리운영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74조 (륜전기재의 안전통행 및 운영질서위반행위)**

륜전기재의 안전통행 및 운영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75조 (전자, 전파설비등록 및 관리질서위반행위)**

전자, 전파설비의 등록 및 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76조 (전자, 전파설비리용질서위반행위)**

전자, 전파설비의 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77조 (전자인증질서위반행위)**

전자인증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78조 (정보통신망보안질서위반행위)**

정보통신망보안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79조 (정보통신망관리운영 및 리용질서위반행위)**

정보통신망관리운영 및 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80조 (정보통신망침입행위)**

정보통신망에 침입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81조 (체신질서위반행위)**

체신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82조 (비법적인 국제통신행위)**

비법적으로 국제통신을 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83조 (대표단파견 및 활동질서위반행위)**

대표단의 파견 및 활동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84조 (국경검사, 검역질서위반행위)**

국경검사, 검역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85조 (국경비법출입행위)**

국경을 비법적으로 출입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86조 (항만관리질서위반행위)**

항만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87조 (바다출입 및 항해질서위반행위)**

바다출입 및 항해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88조 (해사감독질서위반행위)**

해사감독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89조 (배등록 및 안전질서위반행위)**

배등록 및 안전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90조 (배길표식물의 설치 및 운영, 보호질서위반행위)**

배길표식물의 설치 및 운영, 보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91조 (해난구조의무회피행위)**

해난구조의무를 회피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92조 (큰물 및 비바람피해방지질서위반행위)**

큰물 및 비바람피해방지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93조 (지진 및 화산피해방지질서위반행위)**

지진 및 화산피해방지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94조 (기상수문질서위반행위)**

기상수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95조 (재해구조 및 복구질서위반행위)**

재해구조 및 복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 제5절 사회공동생활질서위반행위

### 제296조 (불량자적행위)

불량자적행위를 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 제297조 (공중질서위반행위)

공중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 제298조 (공공장소리용질서위반행위)

공공장소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 제299조 (려행질서위반행위)

려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 제300조 (승차질서위반행위)

승차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을 준다.

### 제301조 (운수수단운행방해행위)

운수수단의 운행을 방해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 제302조 (자전거리용질서위반행위)

자전거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을 준다.

### 제303조 (보행질서위반행위)

보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처벌을 준다.

### 제304조 (로력착취행위)

로력을 착취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 제305조 (미신행위)

미신행위를 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 제306조 (류언비어류포행위)

류언비어를 퍼뜨린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 제307조 (도박행위)

도박행위를 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

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08조 (암거래행위)**

암거래행위를 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09조 (개인의 비법봉사행위)**

개인이 비법적으로 봉사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10조 (봉사로금지불질서위반행위)**

봉사로금을 지불하지 않은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11조 (거간행위)**

거간행위를 하여 부당리득을 얻은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12조 (고리대행위)**

고리대행위를 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13조 (략취물건거래행위)**

략취한 물건을 거래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14조 (밀주행위)**

밀주행위를 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15조 (묘파손행위)**

묘를 파손시킨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16조 (군민관계훼손행위)**

군민관계를 훼손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317조 (이색적인 옷차림, 몸차림행위)**

옷차림과 몸차림을 이색적으로 한자에게는 벌금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18조 (가짜혼인행위)**

비렬한 동기와 목적으로 가짜로 혼인하였던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19조 (부당한 리혼행위)**

부당한 동기와 목적에서 리혼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20조 (부화방탕한 행위)**

부화방탕한 행위를 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21조 (가정파탄행위)**

가정을 파탄시킨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22조 (매음행위)**

매음행위를 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23조 (훈장, 메달보관질서위반 및 명예, 칭호참용행위)**

훈장, 메달보관질서를 어겼거나 국가적명예, 칭호를 참용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24조 (미성인을 추진 행위)**

미성인을 추겨 위법행위를 하게 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25조 (부양, 보호, 자녀교양의무회피행위)**

부양, 보호, 자녀교양의무를 지닌자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한 경우에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26조 (부양, 보호밑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학대괄시행위)**

자기의 부양, 보호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괄시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27조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학대괄시행위)**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 사람을 학대괄시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

입, 철직처벌을 준다.

**제328조 (인격모욕 및 명예훼손행위)**

비열한 동기와 목적에서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였거나 명예를 훼손시킨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29조 (구타, 폭행행위)**

사람을 구타하였거나 폭행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30조 (패싸움행위)**

패싸움을 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31조 (자유비법구속행위)**

사람의 자유를 비법적으로 구속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32조 (정당방위초과중상해행위)**

정당방위를 초과하여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힌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33조 (엄중한 결과발생방임행위)**

사람이 위협에 처하였거나 재산적손실을 줄수 있다는것을 알면서 그것을 방임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34조 (개인재산훔친행위)**

개인재산을 훔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35조 (개인재산빼앗은행위)**

개인재산을 빼앗은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36조 (개인재산속여가진행위)**

개인재산을 속여가진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37조 (개인재산횡령행위)**

개인재산을 횡령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38조 (개인재산파손행위)**

개인재산을 파손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39조 (실력행사행위)**

자기의 재산적권리를 법에 의거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여 실현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40조 (채무회피행위)**

채무를 상당한 기간 회피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341조 (습득물횡령행위)**

습득물을 횡령한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342조 (양로원, 양생원관리질서위반행위)**

양로원, 양생원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343조 (육아원, 애육원, 학원관리질서위반행위)**

육아원, 애육원, 학원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 제4장 행정처벌의 적용절차와 방법

**제344조 (행정처벌기관)**

행정처벌은 각급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내각, 검찰기관, 재판기관, 사회안전기관, 중재기관, 검열감독기관, 자격수여기관이 준다.

기관, 기업소, 단체도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해당한 행정처벌을 줄수 있다.

**제345조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행정처벌권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 또는 개별적공민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경고, 엄중경고처벌,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강직, 해임, 철직처벌, 벌금처벌, 변상처벌, 몰수처벌, 중지처벌,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줄수 있다.

**제346조 (내각의 행정처벌권한)**

내각은 내각산하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경고, 엄중경고처벌, 무보수로동처벌, 강직, 해임, 철직처벌, 벌금처벌, 변상처벌, 몰수처벌, 중지처벌을 줄수 있다.

**제347조 (검찰기관의 행정처벌권한)**

검찰기관은 검찰감시과정에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로동교양처벌, 벌금처벌, 변상처벌, 몰수처벌, 중지처벌을 줄수 있다.

**제348조 (재판기관의 행정처벌권한)**

재판기관은 재판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로동교양처벌, 변상처벌, 몰수처벌을 줄수 있다.

**제349조 (사회안전기관의 행정처벌권한)**

사회안전기관은 사회안전단속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로동교양처벌, 벌금처벌, 변상처벌, 몰수처벌, 중지처벌을 줄수 있다.

**제350조 (중재기관의 행정처벌권한)**

중재기관은 중재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무보수로동처벌, 벌금처벌, 변상처벌, 몰수처벌, 중지처벌을 줄수 있다.

**제351조 (검열감독기관의 행정처벌권한)**

검열감독기관은 행정검열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벌금처벌, 변상처벌, 몰수처벌, 중지처벌을 줄수 있다.

**제352조 (자격수여기관의 행정처벌권한)**

해당 자격수여기관은 위법행위를 한 기술기능자격소유자에게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줄수 있다.

**제353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정처벌권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법행위를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자기 단위의 종업원에게 변상처벌을 줄수 있다.

**제354조 (행정처벌의 제기당사자)**

행정처벌을 줄데 대한 제기는 검찰기관, 재판기관, 사회안전기관, 중재기관, 검열감독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행정처벌을 줄데 대한 제기를 할수 있다.

**제355조 (행정처벌의 제기방법)**

행정처벌의 제기는 위법자료를 해당 행정처벌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법자료에는 위법자의 신분관계, 위법내용, 적용하려는 법조문 같은것을 밝히고 위법자 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자로부터 받은 조서나 확인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56조 (위법자료의 료해학인)**

행정처벌기관은 제기된 위법자료를 정확히 료해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법자 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자를 만나 담화하거나 필요한 문건을 볼수 있으며 위법자로부터 조서나 확인서를 받을수 있다.

사실과 맞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행정처벌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은것 같은 행정처벌을 줄수 없는 자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것을 돌려보내거나 기각처리한다.

**제357조 (행정처벌의 심의결정기간)**

행정처벌기관은 위법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심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58조 (행정처벌의 심의결정방법)**

행정처벌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내각 상무회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으로 준다. 그러나 재판, 중재기관에서 주는 행정처벌은 해당기관의 판정, 재결 또는 결정으로 준다.

**제359조 (행정처벌심의에 위법자의 참가)**

행정처벌기관은 행정처벌을 심의결정할 경우 해당 위법자를 참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벌금처벌, 변상처벌, 몰수처벌, 중지처벌문제를 심의결정할 경우에는 위법자를 참가시키지 않을수 있다.

**제360조 (행정처벌결정통지서의 발급)**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은 행정처벌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 처벌을 받은자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그가 거주하고있는 지역의 사회안전기관, 해당 집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처벌을 받은자가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그가 거주한 지역의 주민행정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361조 (권한밖의 행정처벌적용금지)**

행정처벌기관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권한밖의 행정처벌을 줄수 없다.

자기 권한밖의 행정처벌을 줄 대상에 대하여서는 위법자료를 해당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62조 (위법자료의 이관)**

행정처벌기관은 제기된 위법자료가 형벌을 줄 정도로 엄중할 경우 그 자료를 해당 법기관에

넘겨야 한다.

행정처벌대상자가 자기의 취급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자료를 해당 행정처벌기관에 넘긴다.

**제363조 (행정처벌집행기관의 임무)**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집행하는 기관은 처벌자들의 작업과 일과생활, 총화 같은 것을 엄격히 조직하고 통제하며 그들의 생활자료를 정상적으로 장악하여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4조 (행정처벌의 해제, 기한전해제결정)**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은 행정처벌의 해제 또는 기한전해제를 하는 경우 행정처벌의 해제 또는 기한전해제결정을 하고 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야 한다.

**제365조 (행정처벌의 변경 및 취소)**

상급행정처벌기관은 하급행정처벌기관에서 잘못 적용한 행정처벌에 대하여 변경시키거나 취소시킬수 있다. 필요에 따라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도 이미 적용한 행정처벌에 대하여 변경시킬수 있다.

**제366조 (행정처벌정형에 대한 보고)**

행정처벌기관은 행정처벌적용과 집행에 대한 보고를 분기에 한번씩 해당 사회주의법무생활 지도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제367조 (신소제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행정처벌의 적용과 집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행정처벌기관 또는 행정처벌집행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제368조 (신소처리)**

행정처벌적용이나 집행에 대한 신소를 받은 행정처벌기관 또는 행정처벌집행기관은 신소를 받은 날부터 중앙급기관은 60일, 도(직할시)급기관은 50일, 시(구역), 군급기관은 30일안에 심의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약류취급법

주체94(2005)년 11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66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2호로 수정보충

## 제1장 화약류취급법의 기본

### 제1조 (화약류취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약류취급법은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 공급과 운반, 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화약류취급에서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화약류의 종류, 취급자격)

화약류에는 화약, 폭약, 화공품 같은것이 속한다.  
화약류의 취급은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만이 한다.

### 제3조 (화약류의 생산, 보관원칙)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을 바로하는것은 화약류취급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화약류를 제정된 규격대로 생산하며 제정된 장소에만 보관하도록 한다.

### 제4조 (화약류의 공급, 운반원칙)

화약류를 계획에 따라 공급하며 제정된 질서대로 운반하는 것은 화약류의 탐용과 분실, 그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화약류를 계획된 단위에만 공급하며 운반에서 안전기술적요구를 지키도록 한다.

### 제5조 (화약류의 사용원칙)

화약류는 생산과 건설의 중요수단이다.  
국가는 화약류사용질서를 바로세우고 해당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 제6조 (화약류취급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국가는 화약류취급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데 큰 힘을 넣는다.

### 제7조 (적용대상)

이 법은 화약류를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서 화약류를 취급하는 다른 나라 기관, 국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

### 제8조 (화약류생산과 보관의 기본요구)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은 화약류취급사업의 중요내용이다.

국가계획기관,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화약류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생산계획을 세우고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생산, 보관하여야 한다.

공민은 화약류를 보관할수 없다.

### 제9조 (화약류의 생산기관)

화약류의 생산은 허가를 받은 기업소가 한다.

생산허가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이 한다.

### 제10조 (화약류생산시설의 승인과 검사)

화약류의 생산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 이설, 변경하려는 기업소는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화약류생산시설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 제11조 (새 종류의 화약류생산)

기관, 기업소는 새 종류의 화약류를 생산하거나 연구실험을 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도입하려 할 경우 중앙인민보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 (화약류의 규격)

화약류를 생산하는 기업소는 제정된 규격대로 생산하여야 한다.

화약류의 규격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규격지도기관이 한다.

### 제13조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준수)

화약류를 생산하는 기업소는 제품검사설비안전도를 보장하고 성능실험설비를 갖추며 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지켜야 한다.

### 제14조 (화약류의 포장)

화약류를 생산하는 기업소는 화약류의 포장을 제정된 규격대로 하여야 한다.

포장용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합의를 받은 명세서가 있어야 하며 위험표식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 (생산한 화약류의 이관)

화약류를 생산하는 기업소는 생산한 화약류를 정확히 검수하여 화약류공급기관에 넘겨야 한다. 이 경우 제정된 절차를 지켜야 한다.

### 제16조 (화약류생산폐기물의 처리)

화약류를 생산하는 기업소는 폐기물처리장과 폐수정화장을 꾸려야 한다.

화약류는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 (로동보호, 로동안전대책)**

화약류를 생산하는 기업소와 해당 기관은 생산공정을 과학화, 현대화하고 로동보호, 로동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로동보호, 로동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화약류를 생산할수 없다.

**제18조 (화약류의 보관창고건설)**

화약류를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폭약창고, 화공품창고를 건설, 확장할 경우에 안전기술적요구를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약류의 보관창고는 주민지역, 건물, 시설물로부터 해당한 안전거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화약류의 보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를 종류와 특성, 안전성에 맞게 보관관리하며 보관량과 기일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화약류보관창고에는 다른 물건을 보관할수 없다.

**제20조 (화약류의 입출고, 실사)**

화약류를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의 입출고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입출고정형을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보고하며 보관한 화약류를 정기적으로 실사하여야 한다.

**제21조 (화약류생산, 보관시설의 보수정비)**

화약류를 생산,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보관시설을 정기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생산, 보관시설은 사용할수 없다.

**제22조 (화약류보관창고의 정비)**

화약류를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보관창고에 무장경비성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일일화약류보관창고에는 교대창고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23조 (화약류생산, 보관시설의 출입질서)**

화약류를 생산,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현장, 창고 같은 곳에는 제정된 인원만이 출입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화약류를 생산,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현장, 창고 같은 곳에 다른 인원이 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화약류의 생산, 보관장소에는 안전에 지장을 줄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출입할수 없다.

**제24조 (위험작업의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약류의 생산, 보관시설의 안전거리안에서 발파, 불놓이, 용접 같은 폭발을 일으킬수 있는 작업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5조 (폭풍피해권안에서 건설금지)**

화약류의 생산, 보관시설의 폭풍피해권안에는 다른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설치할수 없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국가건설감독기관은 폭풍피해권안에 건설위치지정서와 건설명시서를 주지 말아야 한다.

## 제3장 화약류의 공급과 운반

**제26조 (화약류공급과 운반의 기본요구)**

화약류의 공급과 운반은 화약류를 공급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나르는 중요한 사업이다.

화약류공급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를 계획에 따라 공급하며 화약류의 운반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27조 (화약류공급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 화약류공급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화약류공급계획을 생산량과 수요, 소비량, 작업대상과 조건 같은 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세워야 한다. 이 경우 화약류공급계획을 인민보안기관에 의무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제28조 (화약류의 공급기관)**

화약류의 공급은 화약류공급기관이 한다.

화약류공급기관은 화약류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기술적특성과 현장조건에 맞는 규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화약류공급기관은 화약류의 원단위소비기준, 재고량 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장악하여야 한다.

**제29조 (화약류의 공급장소)**

화약류의 공급은 화약류보관창고에서 한다.

화약류를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문건을 해당 공급기관에 내야 한다.

**제30조 (화약류의 운반허가)**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운반은 제정된 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화약류의 운반수단)**

화약류의 운반은 공급기관으로부터 화약류보관창고까지는 제정된 열차, 화물자동차, 짐베스로, 화약류보관창고에서 일일화약류보관창고까지는 전차, 권양기, 고무바퀴달구지, 자전거로 한다.

일일화약류보관창고에서 발파작업현장의 화약류운반은 화약배낭, 화약함으로 한다.

**제32조 (화약류의 운반수단검사)**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반수단과 짐함을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반수단과 짐함에는 불끄는 기재를 갖추고 위험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33조 (화약류의 상차)**

화약류를 열차, 자동차로 운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과 폭약,뢰관, 도폭선을 따로 실어야 한다. 그러나뢰관과 도화선, 수지관도폭선은 함께 실을수 있다.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화약류를 실을수 없다.

**제34조 (화약류운반차의 승차금지)**

화약류를 실은 운수수단에는 운반인원밖의 다른 인원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을수 없다.

화약류를 운반하는 공민은 화약류를 실은 운수수단에서 불을 다루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제35조 (화약류의 운반기일과 도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의 운반을 정한 기일에 해당 도로로 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화약류를 실은 화차가 목적지까지 제정된 시간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조직 하여야 한다.

**제36조 (화약류운반차의 정차, 주차질서)**

화약류를 실은 운수수단은 주민지역, 도시도로에 정차, 주차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지역, 도시도로에 운수수단을 주차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인민보안기관의 승인을 받고 경비를 세워야 한다.

## 제4장 화약류의 사용

**제37조 (화약류사용의 기본요구)**

화약류의 사용을 바로하는 것은 그 효과를 높이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화약류를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를 해당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8조 (화약류의 사용허가)**

화약류를 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인민보안기관은 화약류의 사용장소와 주변의 안전성을 정확히 따져보고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화약류사용시 갖추어야 할 기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의 사용에 필요한 조명기재, 신호기재, 발파기재 같은 것을

갖추어야 한다.

**제40조 (화약류의 사용장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를 승인된 장소에서 제정된 질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남은 화약류를 화약류보관창고에 입고시켜야 한다.

**제41조 (화약류를 원료로 하는 제품생산질서)**

화약류를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의 사용에 대하여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정기적인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발파작업시의 안전대책)**

발파를 조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에서 인명과 재산, 환경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발파작업은 발파설계지령서대로 하여야 한다.

**제43조 (발파대의 조직)**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파를 전문으로 하는 발파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발파대를 조직하지 않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임발파공 또는 겸임발파공을 두어야 한다.

**제44조 (대발파시의 안전조치)**

대규모의 발파를 조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험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발파시간, 신호, 대피장소를 알려주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규모의 발파는 전기발파로 주간에 하며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발파질서)**

발파는 발파공이 한다.

발파공은 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도화선에 불을 달지 말아야 한다. 제정된 기준보다 많은 도화선에 불을 달려 할 경우에는 묶음식발파를 하거나 여러명의 발파공이 하여야 한다.

**제46조 (갱안에서의 발파)**

갱안에서 발파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파가스중화제를 써야 한다.

가스 또는 폭발성탄먼지가 있는 갱안에서는 제정된 폭약을 사용하며 전기발파로 하여야 한다.

유독성가스가 생기는 폭약은 갱안에서 사용할수 없다.

**제47조 (화약류의 수출입)**

화약류를 수출, 수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제5장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48조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화약류취급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기본 담보이다.

국가는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49조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지도)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화약류취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50조 (화약류취급기관의 의무)

화약류를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취급에서 기술구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화약류취급에서 제기된 문제는 제때에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1조 (화약류취급일군의 양성, 안전교양)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취급일군을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그들의 전문기술수준을 높이며 《사고방지대책월간》과《사고방지대책의 날》에 화약류취급과 관련한 안전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보안기관은 분기마다 화약류취급정형을 총화하여야 한다.

### 제52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화약류취급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화약류취급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 제53조 (비법행위의 금지, 신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법적으로 화약류를 가지고있거나 팔고사거나 또는 제조, 수출입, 바꿈질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발견한 비법행위를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4조 (수수료의 지불)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취급허가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제55조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인민보안기관이 한다.

인민보안기관은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 공급과 운반, 사용질서의 준수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6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화약류의 취급에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아 재산상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7조 (중지)**

화약류의 취급을 중지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를 합의받지 않고 화약류의 생산, 보관시설, 설비를 건설, 제작하였거나 해당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2. 불비한 생산설비로 화약류를 생산하며 로동보호, 로동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아 위험성을 조성하였을 경우
3. 화약류의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보관시설이 불비한 경우
4. 규격에 맞지 않은 화약류를 생산할 경우
5. 발파작업질서를 어겼을 경우
6.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한 경우

**제58조 (벌금)**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화약류를 공급하였거나 운반, 보관, 입출고, 사용질서를 어겼거나 화약류의 질을 떨어뜨린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59조 (몰수)**


화약류를 몰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허가없이 화약류를 생산, 보관, 운반, 사용하였을 경우
2. 공급계획에 없는 화약류를 공급하였을 경우
3. 용도에 맞지 않게 화약류를 사용하였을 경우
4. 보관창고밖에 화약류를 보관하였을 경우
5. 공민이 화약류를 가지고있었을 경우
6. 보관능력을 초과하여 화약류를 보관하였을 경우

**제60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화약류취급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계획·로동·  
재산관리부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격법

주체86(1997)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81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  
주체88(1999)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5호로 수정

## 제1장 가격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격법은 가격의 제정, 적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국가가격은 유일가격이며 계획가격이다.

가격의 종류에는 도매가격, 소매가격, 수매가격, 운임, 요금같은 기본종류의 가격과 일부 보충적가격이 속한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가격의 종류를 새로 나오거나 없앤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가격은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수단이다.

국가는 가격정책을 정확히 실시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려지도록 한다.

**제4조** 가격제정은 국가의 정책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 가치법칙의 요구, 제품의 쓸모와 인민경제적의의, 수요와 공급, 축적과 소비 사이의 호상관계를 옹계 타산하여 가격을 정하도록 한다.

**제5조** 가격적용을 바로하는것은 인민생활을 안전향상시키며 생산과 경영 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하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가격적용 방법과 가격과 절차를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 가격을 일원화 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가격제정기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가격사업의 유일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 상품의 가격을 체계적으로 낮추는 것은 국가의 일관된 정책이다.

국가는 상품생산과 재정자원이 늘어나는데 맞게 상품의 가격을 낮추도록 한다.

**제8조** 국가는 가격제정일군양성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가격제정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가격사업의 과학성,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9조 무역가격사업,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가격사업은 해당 법을 따른다.

## 제2장 가격제정

제10조 가격제정을 바로하는것은 가격제정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가격제정기관은 해당 시기 정책적요구와 현실적조건 맞게 나라의 경제발전을 자극하고 인민 생활을 고르롭게 높일수 있도록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가격제정은 중앙과 지방의 가격제정기관의 기본임무이다.

내각 또는 중앙 가격제정기관이 정한데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도 가격을 제정할수 있다.

제12조 가격제정은 표준가격, 기준가격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균형을 맞추어 지표별 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표준가격, 기준가격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일부 생산물의 표준가격, 기준가격은 도(직할시)가격제정기관이 정할수 있다.

제13조 가격제정기관은 유일가격과 지역별, 계절별로 되는 가격을 제때에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유일가격과 지역별, 계절별로 되는 가격은 경리형태, 생산방법, 계절의 영향 같은것을 고려한다.

제14조 가격제정기관은 제품사이의 가격균형을 정확히 맞추며 제품의 생산은 늘이고 질을 높일수 있게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중소비품의 가격과 어린이, 학생용 상품의 가격은 가치로부터 배리시켜 다른 상품의 가격보다 낮게 정한다. 희귀상품, 고급상품의 가격은 높게 정한다.

제16조 국가적으로 처음 생산한 제품의 가격은 내각 또는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처음 생산한 일부 제품에 대하여서는 먼저 립시가격을 정하고 그 제품의 쓸모가 확정된 다음 가격을 다시 정한다.

제17조 수출입상품의 국내가격은 해당 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해당 가격제정기관은 수출입상품의 국내가격을 다른 상품가격의 안정성과 공고성을 보장할수 있게 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자기 가치를 부분적으로 상실한 상품의 가격은 가격제정기관 또는 해당가격평가위원회가 정한다.

제19조 대외봉사부문의 가격, 운임, 요금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도 정할수 있다.

제20조 인민경제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가격을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고쳐 정하는 사

업은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21조** 가격을 제정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제정신청문건을 해당 가격제정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본보기제품 또는 기술경제적자료를 함께 내야 한다.

### 제3장 가격적용

**제22조** 가격적용은 가격정책집행의 중요공정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별, 규격별, 등급별 가격과 운임, 요금, 부가금을 정확히 적용하여야 한다.

**제23조** 도매가격, 소매가격, 수매가격, 운임, 요금 같은 기본종류의 가격과 공급가격, 부가금 같은 보충적가격의 적용방법, 절차, 대상은 내각 또는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24조**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통계기관은 인민경제계획을 세우거나 인민경제계획실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정해진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해진 가격으로 평가하지 않은 인민경제계획실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25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상품의 국내가격을 유일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국가가 수출입하는 상품가격에 수출첨가금, 관세 같은 것을 포함시킬수 없다.

**제26조** 가격제정기관이 가격을 정하지 않는 제품을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 사이에 넘겨주고 받을 경우에는 협의가격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가격제정기관이 정한 원칙과 방법에 따른다.

**제27조** 대외봉사부문과 합영합작부문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가격, 운임, 요금을 유일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28조** 국가적인 조치로 생긴 가격편차액은 국가예산으로 보상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상액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제2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이 정해진 제품을 처음 생산하였을 경우 해당 가격제정기관의 적용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제품이나 봉사장소에 제정된 가격, 운임, 요금을 표시하거나 써붙여야 한다. 가격, 운임, 요금을 표시하지 않거나 써붙이지 않고 봉사활동을 할수 없다.

### 제4장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1조**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가격제도를 공고발전 시키는데

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가격제정기관의 역할을 높이고 가격사업의 유일성과 가격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2조** 가격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중앙가격제정기관은 가격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가격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3조** 지방가격제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데 따라 가격사업을 지도하며 그 정형을 해당 가격제정기관에 정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 제정, 적용과 관련한 문제를 해당 가격제정기관의 합의 또는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해당 가격제정기관의 합의, 승인없이 가격을 제정하거나 적용할수 없다.

**제35조** 가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가격제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가격제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사업소, 단체와 공민이 가격의 제정, 적용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6조** 가격규률을 어겼을 경우에는 해당한 금액을 국가 예산에 회수하거나 보상시키며 정해진 가격으로 계산, 평가하지 않은 인민경제계획실행실적의 해당 부분은 삭감한다.

정해진 가격보다 더 받은 금액과 덜 받은 금액을 서로 메꾸는 방법으로 처리할수 없다.

**제37조** 이 법을 어겨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

주체91(2002)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2호로 채택  
주체93(2004)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2호로 수정보충

## 제1장 국토계획법의 기본

### 제1조 (국토계획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의 작성과 비준, 실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토관리를 계획적으로 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국토계획의 분류)

국토계획은 국토와 자원, 환경의 관리에 관한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  
국토계획에는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 도(직할시)국토건설총계획, 시(구역), 군국토건설총계획이 속한다.

### 제3조 (국토계획의 작성원칙)

국토계획을 바로 작성하는 것은 자연을 개조하고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건설하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국토계획작성에서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랫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한다.

### 제4조 (국토계획의 비준원칙)

국토계획의 비준은 작성한 계획을 심의, 승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국토계획의 심의, 승인에서 과학성과 현실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5조 (국토계획의 실행원칙)

국토계획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은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토지정리와 산림조성, 주민지구와 산업지구건설, 도로건설, 자원개발, 환경보호 같은 국토관리를 국토계획에 엄격히 준하여 하도록 한다.

### 제6조 (기본건설계획과 설계의 작성, 실행원칙)

국토계획은 기본건설계획과 설계작성의 기초이다.  
국가는 기본건설계획과 설계를 국토계획에 맞게 작성하고 실행하도록 한다.

**제7조** (전인민적인 국토관리의 원칙)

국가는 국토계획사업체계를 바로세우며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국토를 아끼고 사랑하며 국토관리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8조** (국토계획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원칙)

국가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토계획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며 국토계획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9조** (국토계획부문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국토계획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2장 국토계획의 작성

**제10조** (국토계획의 작성기관)

국토계획의 작성은 국토계획사업의 첫 공정이다.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의 작성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도(직할시), 시(구역), 군국토건설총계획의 작성은 도(직할시)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한다.

**제11조** (국토계획작성에서 지켜야 할 원칙)

국토계획작성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부침땅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2. 도시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아야 한다.
3. 해당 지역의 기후풍토적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경제발전전망과 실리를 타산하여야 한다.
5. 국방상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6. 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 (국토계획의 전망기간)

국토계획의 전망기간은 50년이다.

필요한 경우 국토계획의 전망기간을 50년보다 짧게 할수 있다.

**제13조** (국토계획작성의 기준)

국토계획작성의 기준은 국가의 국토관리정책이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국가의 국토관리정책에 근거하여 국토계획작성과제를 설정하고 지도서를 만들어 해당 기관에 내려보내야 한다.

**제14조** (국토실태의 조사, 장악)

국토실태를 조사, 장악하지 않고는 국토계획을 작성할수 없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계획작성에 필요한 국토실태를 조사, 장악하여야 한다.

**제15조 (필요한 정보자료의 보장)**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요구하는 자원상태, 인구수, 경제발전전망, 건설실태, 기상수문예보와 관측자료, 환경실태, 위성사진, 지도 같은 정보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국토계획초안의 작성)**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실태를 연구, 분석하고 국토계획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계획초안에는 국토개발전략과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의 보호, 부침땅과 산림, 하천, 호소, 바다의 리용, 자원개발, 도시와 마을의 형성, 휴양지구개발, 산업지구와 하부구조의 건설, 자연환경의 조성과 보호, 국토정리와 미화사업 같은 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국토건설총계획작성의 기초)**

전국국토건설총계획은 경제, 문화발전전망 같은 것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과 도(직할시)국토건설총계획의 작성은 전국국토건설총계획에, 시(구역), 군국토건설총계획의 작성은 도(직할시)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한다.

## 제3장 국토계획의 비준

**제18조 (국토계획비준의 기본요구)**

국토계획의 비준절차를 엄격히 지키는 것은 국토계획의 정확한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작성한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을 내각에, 도(직할시), 시(구역), 군국토건설총계획을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9조 (국토건설총계획의 비준제기)**

내각은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을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비준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 또는 상무회의에서 토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전국,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의 심의승인)**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된 국토건설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21조** (기타 국토건설총계획의 심의승인)

도(직할시), 시(구역), 군국토건설총계획은 도(직할시)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도(직할시)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된 국토건설총계획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22조** (비준된 국토계획의 시달)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비준된 국토계획을 1개월안으로 국가계획기관, 국가건설감독기관, 지방정권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 제4장 국토계획의 실행

**제23조** (국토계획실행의 기본요구)

국토계획의 실행은 국토와 자원, 환경을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관리하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관리를 국토계획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4조** (국토계획실행순차의 제정)

국토계획을 시달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계획실행을 위한 당면 또는 전망과제와 년차별, 대상별순차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제25조** (기술과제, 건설총계획의 작성)

국토계획실행을 위한 대상과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과제와 건설총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기술과제와 건설총계획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국토건설, 개발신청문건의 제기)

국토를 건설하거나 자원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이 경우 부지조사보고서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제기된 신청문건을 제때에 보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27조**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국토개발승인서의 발급)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을 승인한 경우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국토개발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건설위치지정서의 발급은 건물, 시설물의 건설 같은 경우에, 국토개발승인서의 발급은 자원의 조성개발, 도시 및 산업지구의 건설, 보호구역과 특수구역의 설정 같은 경우에 한다.

**제28조** (건설위치지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대상)

도시와 산업지구 영역안의 건설대상에 대하여서는 건설위치지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29조** (건설명시와 건설허가, 토지이용허가, 자금지출허가)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국토개발승인서에 근거하여 건설명시, 건설허가, 토지이용허가, 자금지출허가 같은 것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원을 개발허간 보호구역을 설정하려 할 경우에는 건설명시를 받지 않는다.

**제30조** (국토건설, 자원개발조건)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국토개발승인서에 지적된대로 국토를 건설하거나 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국토건설, 자원개발에 착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31조** (국토계획대상과 관련시설의 건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계획대상과 그 관련시설을 종합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복공사를 없애며 노력과 자재, 자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제32조** (국토계획실행정형의 보고)

국토계획을 실행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정형을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내각과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계획의 실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여야 한다.

## 제5장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3조**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국토관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4조**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국토계획을 바로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35조** (국토계획정보기지의 축성, 변동실태의 보고)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국토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보존, 봉사할 수 있는 국토계획정보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지방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환경의 변동실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여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국토건설총계획의 준수의무)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와 하천정리, 산림조성, 도로와 중소형발전소건설 같은 사업을 시(구역), 군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37조** (국토계획사업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해당 기관은 국토계획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부문의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부문에 돌려쓸수 없다.

**제38조**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토계획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9조** (중지)

승인없이 국토건설을 하거나 자원개발을 하는 것 같은 행위는 중지시킨다.

**제40조** (손해보상)

국토계획과 어긋나게 건설명시를 주었거나 토지리용허가를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시킨다.

**제4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국토계획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기업소법

주체99(2010)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94호로 채택  
주체103(2014)년 11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8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5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17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11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57호로 수정보충

### 제1장 기업소법의 기본

#### 제1조 (기업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은 기업소의 조직과 경영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기업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기업소의 정의)

이 법에서 기업소란 일정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가지고 생산 또는 봉사활동을 직접 조직진행하는 경제단위이다.

기업소에는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는 생산, 건설, 교통운수, 봉사단위같은것이 속한다.

#### 제3조 (기업소의 조직원칙)

기업소의 조직은 기업소를 신설하거나 축소, 통합, 분리, 변경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기업소의 조직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 제4조 (기업소의 경영원칙)

기업소의 경영은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적공간들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한 경제활동이다.

국가는 기업소들이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정확히 세우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를 바로 실시하여 경영활동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며 기업소를 로력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 원가절약형, 부지절약형으로 전환시켜 최대한의 실리를 내도록 한다.

#### 제5조 (기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인민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부문간, 지역간연계가 밀접해지는데 맞게 기업소들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확대하고 경영관리를 개선하여 물질기술적 토대를 부단히 강화하도록 한다.

#### 제6조 (경영활동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기업소들에서 첨단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경영활동의 주체화, 현대화, 정

보화,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제7조** (김정일애국주의교양원칙)

국가는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종업원들이 기업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절약정신을 체질화한 애국적인 근로자가 되도록 한다.

**제8조**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원칙)

기업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소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게 기업소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기업소가 생산과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조직진행해나갈수 있도록 한다.

**제9조** (기업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보호원칙)

국가는 기업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제10조** (법의 적용제외대상)

외국투자기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2장 기업소의 조직

**제11조** (기업소의 조직기관)

기업소의 조직은 기업소의 급수와 중요성에 따라 해당 기업소조직기관이 한다. 기업소조직기관에는 내각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이 속한다.

**제12조** (기업소의 조직근거)

기업소의 조직은 국가적조치에 따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업소를 조직할수도 있다.

**제13조** (기업소조직신청)

기업소를 조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기업소조직기관에 내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기업소명, 조직목적과 근거, 소재지, 급수, 종업원수, 업종과 지표, 규모 같은 것을 밝힌다.

**제14조** (기업소조직신청문건의 심의와 결과통지)

기업소조직기관은 기업소조직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그것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문건으로 통지한다.

#### 제15조 (기업소의 등록)

새로 조직되는 기업소는 기업소조직이 승인된 날부터 30일안으로 기업소등록신청문건을 해당 사회안전기관의 경유를 받아 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소조직승인문건, 건물 리용허가문건 같은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6조 (기업소등록증의 발급)

기업소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인민위원회는 7일안으로 검토하고 해당 기업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기업소에 기업소등록증을 발급하여 준다.

기업소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5일안으로 해당 통계기관의 경유를 받으며 은행기관에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기업소등록증이 없이 경영활동을 할수 없다.

#### 제17조 (기업소의 변경등록)

기업소는 기업소등록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10일안으로 해당 기업소조직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기업소변경등록신청문건을 해당 사회안전기관의 경유를 받아 인민위원회에 내여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기업소변경등록신청문건에는 기업소의 명칭과 주소, 변경리유를 밝히고 해당 기업소조직기관이 승인한 변경승인문건을 첨부한다.

#### 제18조 (기업소의 정리)

기업소조직기관은 국가의 정책과 현실의 요구에 비추어보아 불합리하거나 전망성이 없는 기업소를 정리할수 있다.

기업소정리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 제19조 (기업소등록증의 반납)

기업소는 통합, 분리되거나 기타 사유로 없어졌을 경우 10일안으로 해당 인민위원회에 기업소등록증을 바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회안전기관과 통계기관, 은행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3장 기업소의 관리기구

#### 제20조 (기업소의 관리일군)

기업소에는 정해진 관리기구에 따라 지배인, 기사장, 부지배인 같은 필요한 관리일군을 둔다. 관리일군은 기업소의 사업을 책임진 지휘성원이다.

#### 제21조 (지배인)

지배인은 기업소를 대표하며 기업소전반사업을 책임진다.

지배인이 없을 경우에는 기사장 또는 정해진 관리일군이 지배인의 사업을 대리한다.

#### 제22조 (기사장)

기사장은 기업소의 계획작성, 생산지도, 기술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 같은 사업을 책임진다.  
기사장은 자기 사업정형을 지배인에게 정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 (부지배인)

부지배인은 기업소의 자재공급, 제품판매, 로동행정, 운수, 후방경리 같은 사업을 책임진다.  
부지배인은 자기 사업정형을 지배인 또는 지배인이 없을 경우 기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 (관리부서)

기업소는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할수 있게 부서를 꾸리고 사업분담을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관리일군은 자기의 직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25조 (기업소의 사업준칙작성)

기업소는 국가의 통일적인 기업소관리규범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사업준칙 같은 것을 작성하고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기업소사업준칙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위원회 또는 종업원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26조 (기업소의 회의운영)

기업소는 경영활동에서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행정간부회의, 참모회의, 종업원총회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회의운영절차는 기업소사업준칙으로 정한다.

#### 제27조 (비상설위원회의 조직운영)

기업소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위원회를 비롯하여 기업관리에 필요한 비상설위원회를 실정에 맞게 조직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제28조 (기업소의 기구변경)

기업소는 정해진데 따라 기구를 합리적으로 변경할수 있다.

## 제4장 기업소의 경영

#### 제29조 (기업소의 경영권행사)

기업소의 경영권을 바로 행사하는 것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업소는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한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며 종업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0조 (경영전략, 기업전략의 작성)

기업소는 국가의 경제발전전략에 기초하여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경영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경영전략, 기업전략은 기업소의 로력과 기술장비상태, 원료, 자재의 보장과 리용정형, 련관단위의 경영실태,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추세 같은것을 고려하여 기업경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전망목표를 규정하고 그 실현의 총적방향과 근본방도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세운다.

### 제31조 (인민경제계획의 실행)

기업소는 계획권을 가지고 객관적 조건과 가능성, 잠재력을 타산하여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실행하며 수요가 높은 제품생산을 계획적으로 늘여나아가야 한다.

기업소는 지표분담과 주문계약방법, 계획화사업분담에 따라 계획을 정확히 맞물리며 해당 통계기관에 제때에 등록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기업소지표는 기업소가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문계약을 맺은데 따라 자체로 계획화하고 실행한다.

### 제32조 (생산조직 및 생산공정관리)

기업소는 생산조직권을 바로 행사하여 생산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생산공정관리를 짜고들며 종업원들의 창조력을 적극 발동시켜 맡겨진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와 공급간의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협동생산조직과 전문화생산조직, 결합화생산조직, 대규모생산조직 같은 여러가지 생산조직형태를 받아들일수 있다.

원료, 자재를 비롯한 필요한 조건을 보장받고도 생산조직을 바로하지 못하여 생산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소가 책임진다.

### 제33조 (관리기구와 로력조절)

기업소는 관리기구와 로력조절권을 가지고 로력자원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기술경제적지표들을 갱신하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장성시켜야 한다. 종업원들의 기술기능급수를 사정할 경우에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서 정확히 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정해진 표준관리기구와 비생산로력배치기준에 기초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관리부서들을 능동적으로 통합, 정리하거나 관리기구정원수를 정하며 개별적일군들의 직능과 책임한계를 명백하게 정해주고 생산부문의 로력비중을 늘여나아가야 한다. 로력을 내보내거나 받아들이거나 기업소사이에 주고받을 경우에는 정해진 등록질서를 지켜야 한다.

### 제34조 (제품개발)

기업소는 제품개발권을 가지고 세계적인 발전추세와 규격화, 표준화의 요구에 맞게 생산확대



와 경영관리개선에 이바지하는 새 기술, 새 제품개발전략을 세우고 적극 추진하여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된 기업, 기술집약형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새 기술, 새 제품개발을 위한 전문기술개발단위를 실정에 맞게 조직운영하고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수요대로 보장하며 심의등록된 새 기술, 새 제품을 생산에 제때에 도입하여야 한다.

#### 제35조 (품질관리)

기업소는 품질관리권을 바로 행사하여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는 품질제고전략을 세우고 생산물의 질과 생산공정의 품질관리수준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생산판매한 제품의 질과 신뢰성을 일정한 기간 의무적으로 보증하는 사업, 품질인증제도에 맞게 품질관리체계인증과 개별적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제품생산에서 국가규격을 엄격히 지키면서 제품의 구체적인 형태나 색깔 같은것은 자체로 제정하여 적용할수 있다.

#### 제36조 (인재관리)

기업소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인재관리권을 바로 행사하여 높은 창조적자질과 실천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기술대학을 비롯한 해당 대학들에 보내여 공부시키는 한편 공장대학과 원격교육망 같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와 재교육체계를 통하여 쓸모있는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하며 인재를 선발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사업과 인재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바로하여야 한다.

#### 제37조 (무역과 합영, 합작)

기업소는 무역과 합영, 합작권을 가지고 가능한 범위에서 대외경제활동을 능동적으로 벌려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설비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설비와 생산기술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며 수출품생산을 위한 단위를 실정에 맞게 조직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 제38조 (재정관리)

기업소는 재정관리권을 가지고 재정관리사업을 전망성있게 설계하고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며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번 자금과 생산물은 정해진 경제계산체계에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생산자대중의 요구와 현실적조건을 반영하여 재정관리세칙을 잘 만들고 그 집행에서 엄격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기업소는 생산계획수행정형과 재정관리정형을 결부하여 일생산 및 개정총화를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정해진데 따라 부족되는 경영활동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부받거나 주민유휴화폐자금을 동원리용할수 있다.

#### 제39조 (생산물의 가격제정 및 판매)

기업소는 정해진 범위안에서 생산물의 가격제정권과 판매권을 가지고 생산물류통을 자체로 실현하여 원가를 보상하고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가야 한다.

기업소가 수요자와 주문계약하여 생산하였거나 자체로 지표를 찾아 생산한 제품은 생산물의 가격을 원가를 보상하고 생산확대를 실현할수 있게 정해진 가격제정원칙과 방법에 따라 구매자의 수요와 합의조건을 고려하여 자체로 정하고 판매할수 있다.

기업소는 정해진데 따라 기업소지표로 생산한 생산물을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직접 거래하며 소비품, 생활필수품, 소농기구와 같은 상품들은 도매기관, 소매기관, 직매점과 직접 계약하고 판매할수 있다.

질이 낮아 체화되거나 퇴송되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해당 기업소가 책임진다.

#### 제40조 (종업원들의 책임성과 창조력 발양대책)

기업소는 직장, 작업반, 종업원별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조직하고 그 총화와 평가사업을 잘 하며 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 모든 종업원들이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설비와 시설물, 건설물을 비롯한 국가재산을 적극 애호관리하며 그 리용률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 제41조 (과학기술발전사업)

기업소는 국가의 과학기술발전방향과 과업, 과학기술발전추세, 기업소의 현실태와 생산발전 전망을 깊이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과학기술발전계획을 현실성있게 과학적으로 세우며 기술자, 노동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것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발명과 창의고안을 비롯한 기술혁신을 하여 국가에 리익을 준 일군과 종업원에게는 해당하는 평가를 한다.

#### 제42조 (기술개선)

기업소는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현대적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원칙을 구현할수 있게 기술개선목적과 목표,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기술개선은 그 단계와 대상, 선후차와 방도같은 것은 정확히 정하고 경제적실리가 나게 하여야 한다.

#### 제43조 (기술관리)

기업소는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기술경제적지표를 개선하고 기술공정관리를 기술규정과 표준

조작법의 요구대로 하며 과학기술성과의 교류와 공유를 통하여 최신성과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넓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은 제때에 갱신하여야 한다.

#### 제44조 (동력관리)

기업소는 석탄을 비롯한 연료를 잘 보관하고 효과있게 리용하며 열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연료소비기준을 무단히 낮추고 열효률을 높이며 자연열과 폐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정해진 전력소비기준을 지키고 체계적으로 낮추며 교차생산조직에 따르는 전력리용질서와 전력시설관리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제45조 (재자원화사업)

기업소는 국가재자원화발전전략에 따라 재자원화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실행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재처리기술공정과 설비를 현대과학기술의 성과와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갖추고 생산과정에 나오는 폐기폐설물과 수집한 생활오물을 제때에 가공처리하여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 제46조 (자재관리)

기업소는 자재를 계획적으로 확보하고 자재소요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자재공급계획을 세우며 그에 따라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자재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자재소비기준을 정확히 지키며 자재를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 제47조 (재산실사)

기업소는 기업소재산에 대한 실사를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재산실사정형은 제때에 상급기관과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8조 (로동정량의 제정과 적용, 로동보수)

기업소는 국가표준로동정량에 기초하여 자체로 제정한 종합 및 세부로동정량을 해당 로동정량제정기관에 등록하고 적용하며 기술집약형, 로력절약형의 원칙에서 로동정량을 끊임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여 로동보수원천을 늘이고 로동보수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조성된 로동보수원천범위에서 종업원들에게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계산지불하여야 한다.

#### 제49조 (로동보호,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기업소는 종업원들에 대한 로동안전교양과 로동조건보장을 바로하며 로동보호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기업소는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를 정확히 실시하여 종업원들에게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골고루 차례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고정재산의 관리)**

기업소는 부동산, 설비를 비롯한 고정재산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그 관리와 리용을 기술적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고정재산의 특성과 사용년한을 고려하여 자체로 갱신주기를 정하고 여러 가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개진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남거나 사장되어있는 부동산, 설비를 비롯한 고정재산은 합의가격에 의한 자금담보를 세우고 해당 기관에 등록한 조건에서 다른 기업소에 이관, 임대하며 이 과정에 이루어진 자금은 경영활동에 리용할수 있다.

**제51조 (종업원생활조건의 보장)**

기업소는 종업원들의 살림집문제, 부식물공급문제, 땀감문제 같은 생활상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기업소는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병동, 정양소, 료양소같은것을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52조 (경영총화 및 평가)**

기업소는 경영총화를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반년별, 년별로 진행하며 경영활동결과를 월마다 종업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경영총화에서는 기업소경영활동에서 나타난 성과와 결함, 경험과 교훈을 찾고 직장, 작업반과 일군들의 활동정형을 공정하게 평가하며 기업관리를 개선하고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기업소는 국가로부터 받은 인민경제계획과 재정계획, 가격 같은것을 통계기관에 등록하고 통계장악을 위한 정연한 체계를 세우며 통계기관의 현지확인을 통하여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의무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 제5장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3조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의 요구에 맞게 기업소사업을 엄격히 장악, 지도하여야 한다.

**제54조 (기업소의 경영활동조건보장)**

내각과 해당 기관은 기업소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경영권을 바로 행사하여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구현한 규정, 세칙들을 제때에 작성, 시달하며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55조 (경영활동정형의 보고)**

기업소는 경영활동에 대하여 해당 상급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상급기관은 기업소의 경영활동정형을 분석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제56조 (기업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기업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업소의 경영활동이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주체92(2003)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27호로 채택  
주체96(2007)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2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5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호로 수정보충

## 제1장 도시계획법의 기본

### 제1조 (도시계획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작성과 비준, 실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도시와 마을을 전망성있게 건설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주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도시계획의 분류)

도시계획은 도시와 마을계획영역의 토지를 리용하며 건물, 시설물, 녹지 같은 것을 건설, 개진, 정비하는것과 관련한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다.

도시계획에는 도시, 마을총계획과 그에 따르는 세부계획, 구획계획 같은 것이 속한다.

### 제3조 (도시계획의 작성원칙)

도시계획을 바로 작성하는 것은 도시를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도시계획작성에서 도시성격과 규모, 형성방향을 정확히 규정하며 도시계획영역을 도시, 마을총계획에서 확정하도록 한다.

### 제4조 (도시계획의 심의, 승인원칙)

도시계획의 비준은 작성한 도시계획을 심의, 승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도시건설, 개진, 정비사업을 도시계획에 엄격히 준하여 하도록 한다.

### 제5조 (도시계획의 실행원칙)

도시계획을 정확히 실행하는 것은 도시를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도시건설, 개진, 정비사업을 도시계획에 엄격히 준하여 하도록 한다.

### 제6조 (도시계획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국가는 도시계획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도시계획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도록 한다.

**제7조** (기술자, 전문가양성, 과학연구사업원칙)

국가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도시계획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8조** (도시계획분야에서 교류, 협조)

국가는 도시계획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2장 도시계획의 작성

**제9조** (도시계획작성의 기본요구)

도시계획의 작성은 도시건설의 선행공정이다.

도시계획작성기관은 도시건설에 앞서워 도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시계획작성의 기본기준)

국가의 도시건설정책은 도시계획작성의 기본기준이다.

도시계획작성기관은 국가의 정책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시계획의 작성기관)

도시계획의 작성은 도시계획설계기관이 한다. 이 경우 지방정권기관은 도시계획의 작성을 주 문한다.

중요대상의 도시계획작성은 내각이 조직한다.

**제12조** (도시계획작성에서 지켜야 할 원칙)

도시계획작성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기념비적건축물, 력사유적, 천연기념물을 원상대로 보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나라의 경제문화발전전망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을 옹계 구현하여야 한다.
4. 자연지리적조건과 기후풍토를 고려하여야 한다.
5. 도시를 너무 크게하지 말고 인구밀도, 건축밀도를 줄이며 큰 도시주변에 위성도시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6. 경사지와 지하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토지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7. 나라의 기본도로와 철도는 도시중심을 통과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8. 도, 시, 군, 지역별에 따르는 살림집의 총수는 도시 및 마을계획설계기준에 맞게 정하며 거리는 살림집을 위주로 형성하여야 한다.
9. 도시를 수림화, 원림화하며 자연재해와 공해를 방지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10. 국방상요구를 지켜야 한다.

**제13조 (도시계획의 작성방법)**

도시, 마을총계획은 국토건설총계획에, 세부계획은 도시, 마을총계획에, 구획계획은 세부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대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세부계획과 구획계획 같은 것을 합쳐 작성할수도 있다.

**제14조 (도시계획의 전망기간)**

도시, 마을총계획의 전망기간은 20년이다.

필요한 경우 도시, 마을총계획의 전망기간을 20년이상으로 할수도 있다.

**제15조 (국토개발의 승인)**

도시, 마을총계획의 작성을 주문하려는 기관은 국토개발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 마을총계획령역안의 건설대상에 대하여서는 국토개발승인과 건설위치지정을 받지 않는다.

**제16조 (도시계획작성자료의 조사, 장악)**

도시계획작성기관은 도시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장악하여야 한다.

필요한 자료를 조사, 장악하지 않고는 도시계획을 작성할수 없다.

**제17조 (도시계획작성자료의 요구)**

도시계획작성기관은 도시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계획작성기관이 요구하는 인구수, 자원상태, 경제발전전망자료, 환경실태, 기상수문자료, 지형 및 지질자료, 위성정보자료 같은 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도시계획에 반영할 내용)**

도시, 마을총계획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망인구수
2. 도시계획령역과 건설령역, 보호령역의 규모와 경계
3.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살림집지역, 공공건물지역, 산업지역, 철도, 항만, 비행장지역, 창고지역, 특수지역, 중요기관, 기업소구획의 규모와 경계
4. 도시중심부의 위치
5. 도로와 광장, 시내교통망, 기술시설망과 그에 따르는 시설물의 배치, 녹지의 배치, 지대 조성
6. 재해 및 공해방지시설의 배치와 도시계획적조치

**제19조 (세부계획에 반영할 내용)**

세부계획에는 계획구역의 설정, 기능별대지경계, 건물능력과 층수, 배치, 형성방향, 도로와 기술시설물, 녹지의 배치, 지대조성 같은 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 (구획계획에 반영할 내용)**

구획계획에는 대상별대지경제, 건물능력과 층수, 도로와 기술시설물, 녹지와 수종배치, 지대 조성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장 도시계획의 비준

**제21조 (도시계획의 비준의 기본요구)**

도시계획비준절차를 지키는 것은 도시계획의 실행을 담보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내각과 국가건설감독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도시계획을 제때에 심의, 승인하여야 한다.

**제22조 (도시계획초안의 합의)**

도시계획작성기관은 작성한 도시계획초안을 관계기관과 합의한 다음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내각과 국가건설감독기관에서 비준하는 도시계획초안을 국가건설감독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3조 (도시계획초안에 대한 검토와 비준)**

도시계획비준기관은 도시계획초안이 국가의 도시건설정책과 도시계획작성원칙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정확히 검토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의 비준은 해당 기관의 상무회의 또는 간부회의에서 한다.

**제24조 (시급도시총계획과 중요대상의 도시총계획의 심의, 승인)**

시급도시총계획과 중요대상의 도시총계획은 내각이 승인한다. 이 경우 국가건설감독기관은 내각이 승인하는 도시총계획초안을 심의하고 내각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5조 (읍총계획과 시급도시, 읍의 세부계획, 구획계획의 심의, 승인)**

읍총계획과 시급도시, 읍의 세부계획, 구획계획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심의, 승인한다.

**제26조 (로동지구, 마을총계획과 세부계획, 구획계획의 심의, 승인)**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로동지구, 마을총계획과 세부계획, 구획계획을 심의, 승인한다.

**제27조 (비준된 도시계획의 하달)**

내각과 국가건설감독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비준한 도시계획을 제때에 도시계획작성기관에 내려보내야 한다.

도시계획작성기관은 비준된 도시계획을 중앙도시경영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기관에 보내 주어야 한다.

**제28조 (도시계획의 변경)**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준된 도시계획내용을 승인없이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도시계획을 수정보충하려 할 경우에는 비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장 도시계획의 실행

### 제29조 (도시계획실행의 기본요구)

도시계획의 실행은 비준된 계획의 요구대로 도시를 건설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준된 도시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 제30조 (도시계획의 실행)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 실태와 전망적 요구, 투자 규모 같은 것을 타산하여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 한 개 구획 및 한 개거리씩 집중완성하는 원칙에서 도시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 제31조 (도시 순차 및 년차건설계획의 작성, 하달)

비준된 도시계획을 받은 지방정권기관과 도시계획작성기관은 도시 순차 및 년차 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건설계획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행단위에 내려보내야 한다.

### 제32조 (건설명시서의 발급)

도시계획을 실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명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 및 도시경영과 관련한 문제를 해당 인민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건설명시서의 발급은 대상의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국가건설감독기관 또는 도(직할시) 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중요대상에 대한 건설명시서발급은 내각의 비준을 받아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 제33조 (건설명시서의 유효기간)

건설명시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대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건설명시서의 유효기간을 3년이상으로 할수도 있다.

유효기간안에 대상건설총계획이나 대상설계를 작성하지 못한 대상의 건설명시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 제34조 (기술과제와 건설총계획, 설계의 작성)

도시계획을 실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명시서에 기초하여 건설대상에 대한 기술과제와 건설총계획, 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5조 (대상의 계획화)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 순차 및 년차건설계획에 반영된 대상을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제36조 (토지의 리용허가)**

도시계획을 실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은 건설명시서에 기초하여 토지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건설의 허가)**

도시계획을 실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상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허가는 대상에 따라 국가건설감독기관 또는 해당 건설감독기관이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 또는 해당 건설감독기관은 건설대상에 대한 하부구조능력을 정확히 검토하고 그것이 보장된 조건에서 건설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38조 (건설의 시공)**

기관, 기업소, 단체는 허가받은 대상의 건설을 제때에 착공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령역안에 립시건물과 시설물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는 허가받은 대상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그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9조 (도시계획실행정형의 보고, 총화)**

지방정권기관은 도시계획실행정형을 국가건설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은 도시계획의 실행정형을 해마다 총화하여야 한다.

## 제5장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0조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도시건설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1조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이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도시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실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2조 (도시계획작성에 필요한 정보기지의 축성)**

국가건설감독기관은 도시계획작성에 필요한 정보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지방정권기관은 정보기지를 꾸리는데 필요한 자료를 국가건설감독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도시계획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4조 (중지)**

건설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 개진, 정비하는 것 같은 행위는 중지시킨다.

**제45조 (손해보상)**

도시계획령역안에 건설위치지정을 하였거나 또는 도시계획과 어긋나게 건설명시서를 발급하였거나 건설허가, 토지이용허가, 자금공급을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시킨다.

**제46조 (몰수 또는 철거)**

도시계획과 어긋나게 건설한 대상은 몰수하거나 철거시킨다.

**제4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도시계획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

주체99(2010)년 7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45호로 채택  
주체103(2014)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01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12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6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8호로 수정보충

## 제1장 로동보호법의 기본

### 제1조 (로동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은 로동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로동보호부문성과의 공고발전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국가의 정확한 로동보호정책에 의하여 가장 인민적인 로동보호제도가 마련되었다.

국가는 로동보호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3조 (로동보호의 기본원칙)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의 혜택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하며 그들이 보다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조건에서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일하도록 한다.

### 제4조 (로동보호사업의 선행원칙)

국가는 생산과 건설에 앞서 로동보호사업을 선행할데 대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한다.

### 제5조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로동보호사업원칙)

로동보호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국가는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선전과 교양을 강화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 제6조 (로동보호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국가는 로동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충분히 갖추고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7조** (로동보호부문의 과학연구, 기술일군양성원칙)

국가는 로동보호부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인재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8조** (로동보호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로동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로동안전교양

**제9조** (로동안전교양체계의 확립)

로동안전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 로동재해와 건강상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교양체계를 바로세우고 근로자들에 대한 로동안전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로동안전교양의 대상과 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교양대상과 기간을 바로 정하고 근로자들의 직종과 작업대상, 작업조건에 따라 로동안전교양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로동안전교양대상과 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11조** (로동안전교양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근로자들이 국가의 로동보호정책과 로동안전기술지식, 로동안전규정, 로동안전조작법, 로동위생지식 같은것을 정확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로동안전교양원칙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음과 같은 로동안전교양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직종에 따라 새로 일을 시작하는 근로자들에게는 5~20일간, 직종을 바꾸는 근로자들에게는 2~5일간 로동안전교양을 준 다음 일을 시켜야 한다.
2. 작업을 조직하거나 작업대상과 작업조건이 달라질 때마다 로동안전교양을 주어야 한다.
3. 특별히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작업구간과 대상, 작업구간과 환경에 맞게 로동안전교양을 엄격히 주어야 한다.
4. 로동안전과 관련한 인식정도를 료해하고 합격이 되었을 경우에만 일을 시켜야 한다.
5. 로동안전교양을 받거나 작업실습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다른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6. 로동안전교양과정안을 정확히 만들어 집행하여야 한다.
7. 로동안전교양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는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13조 (로동안전교양실의 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교양실을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로동안전교양실에는 근로자들이 로동안전교양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놓아야 한다.

**제14조 (로동안전재교양)**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재교양체계를 세우고 근로자들에 대한 로동안전재교양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로동안전교육)**

해당 교육 및 양성기관에서는 로동안전공학과 로동보호학을 필수과목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3장 로동보호조건의 보장

**제16조 (로동보호조건보장의 기본요구)**

로동보호를 위한 조건보장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에 대한 로동보호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로동안전시설의 설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보호장치, 신호장치 같은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킬수 없다.

**제18조 (로동안전시설의 점검보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시설에 대한 점검보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불비한 로동안전시설을 제때에 정비하여야 한다.

**제19조 (로동안전시설의 정상가동보장, 해체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치된 로동안전시설은 로동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승인없이 해체할수 없다.

**제20조 (로동위생조건의 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열, 가스, 먼지, 소음, 진동, 습기, 방사선, 세균의 의한 피해를 막으며 위생학적으로 요구에 맞게 채광, 조명, 통풍, 난방조건 같은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열, 유해물질이 정해진 한계를 초과하는 곳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킬수 없다.

**제21조 (편의시설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합숙, 식당, 세목장, 리발소, 휴게실,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편

의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 (건강검진, 치료)**

보건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병원 또는 진료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치료예방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로동재해위험이 특별히 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의무적으로 병원 또는 진료소를 두어야 한다.

**제23조 (직종의 변동)**

로동행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직업성질병으로 해당 직종에서 일할수 없게 된 근로자들을 제때에 알맞는 직종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여성근로자들의 로동보호조건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에게 산전산후휴가에 들어가기 전까지 험한 일을 시키며 젓먹이어린이를 가진 여성근로자들에게 젓먹이는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생산건물, 시설물의 건설)**

설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건물이나 시설물을 건설하는 경우 로동안전, 로동위생 같은 로동보호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이나 시설물은 그로부터 발생할수 있는 유해물질이 린접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로동보호조건에 대한 측정, 검사와 부족점의 퇴치)**

로동행정기관과 위생방역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시설, 로동위생조건에 대한 측정 및 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설비, 검사기구는 정상적으로 검정하고 합격된 조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위생방역기관은 로동위생조건에 대한 측정 및 검사정형을 해당 로동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로동행정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책할 문제와 기간을 규정하여주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족점을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 제4장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제27조 (로동보호물자공급의 기본요구)**

유해로동, 고열로동, 중로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작업대상과 성격에 따라 작업필수품, 로동보호용구, 영양제, 세척제, 약제 같은 로동보호물자를 공급한다.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로동보호물자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단위를 잘 꾸



리고 정상운영하여 로동보호물자를 원만히 생산, 보장하도록 한다.

**제28조 (로동보호물자의 공급대상과 기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공급대상과 기준에 따라 해당한 로동보호물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생산현장에서 과학연구, 실습을 하는 연구사, 실습생과 필요에 따라 동원된 인원에게도 직종에 따르는 로동보호물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로동보호물자의 공급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29조 (로동보호물자의 생산, 공급계획)**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보호물자의 생산, 공급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로동보호물자는 다른 물자보다 먼저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제30조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회수)**

로동보호물자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로동보호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쓰던것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1조 (로동보호물자의 보관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보호물자보관시설을 갖추고 로동보호 물자가 손상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로동보호물자는 제때에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제32조 (영양제공급, 영양제식당의 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렵고 힘든 로동, 유해로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영양제와 보호약제, 해독제 같은것을 정해진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영양제식당을 운영할수 있다.

영양제, 보호약제, 해독제의 공급기준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정한다.

**제33조 (우대물자의 공급)**

탄광, 광산, 금속, 립업, 수산, 지질탐사부문 같은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피복, 식료품, 기호품 같은 우대물자를 공급한다.

우대물자의 공급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34조 (제복의 공급)**

따로 정한 부문의 근로자들에게는 제복을 공급한다.

제복을 공급하는 부문과 대상, 공급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5장 노동과 휴식

### 제35조 (노동과 휴식보장의 기본요구)

노동과 휴식을 옹계 결합하는것은 근로자들의 노동생산능률을 높이고 문화정서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의 노동과 휴식조직을 짜고들어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노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6조 (노동시간)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힘든 부문과 특수한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그보다 짧게 정할수 있다.

노동시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노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 제37조 (시간외노동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외 노동을 시키려 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8조 (여성근로자들의 노동)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성근로자들에게 체질적특성을 고려하여 힘든 노동,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노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젖먹이어린이가 있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노동, 시간외 노동, 휴식일노동을 시킬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내보낼수 없다.

여성근로자들이 일할수 없는 직종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노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 제39조 (휴식의 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에게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날과 일요일 같은 쉬는날에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날에 노동을 시켰을 경우에는 한주일안으로 대휴를 주어야 한다.

### 제40조 (휴가의 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에게 정해진데 따라 정기휴가와 보충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정기휴가와 보충휴가외에 산전산후휴가를 더 준다.

정기휴가와 보충휴가는 다음해로 넘길수 없다.

### 제41조 (정양소, 휴양소의 조직, 물자보장)

중앙노동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양소, 휴양소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그 관리

운영체계를 바로세워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정양소와 휴양소에서 휴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양소, 휴양소에 필요한 물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정상적으로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6장 노동안전규률의 확립

### 제42조 (노동안전규률확립의 기본요구)

노동안전규률을 강화하는것은 노동재해를 미리막고 안전한 노동조건을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중앙노동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노동안전규률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 제43조 (노동안전규정, 표준조작법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노동안전규정과 표준조작법을 만들고 근로자들이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위험한 작업에 따르는 노동안전규정과 표준조작법은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집행시켜야 한다.

### 제44조 (노동안전지령의 선행)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조직에 앞서 노동안전지령을 주며 작업이 끝난 다음 그 집행정형을 총화하여야 한다.

노동안전규정의 요구에 어긋나게 작업을 조직할수 없다.

### 제45조 (작업전 노동안전상태의 확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시작전에 작업장의 안전상태와 근로자들의 노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의 착용정형을 확인하여야 한다.

결함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퇴치한 다음 일을 시켜야 한다.

### 제46조 (위험개소의 퇴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과정에 사고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개소를 퇴치한 다음 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 제47조 (작업교대질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교대를 하는 경우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교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퇴치한 다음 교대하여야 한다.

### 제48조 (설비점검, 위험표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점검을 할 경우 노동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함께 하여야 한다.

위험한 작업대상과 설비에는 위험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49조 (유해작업장의 검사)**

유해작업장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에 등록하며 정기적으로 해당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작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킬수 없다.

**제50조 (위험물질취급, 열 및 내압설비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폭발성, 독성, 방사성물질을 취급하거나 열 및 내압설비를 가동하려 할 경우 해당 법규에 따르는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로동보호감독원의 배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장에 로동보호감독원과 로동안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로동보호감독원과 로동안전원을 배치하지 않고서는 작업을 진행할수 없다.

## 제7장 로동재해의 구호와 사고심의

**제52조 (로동재해구호와 사고심의의 기본요구)**

로동재해의 구호와 사고심의는 로동재해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구원하며 사고의 원인을 해명하고 재사고를 막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재해구호와 사고심의를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53조 (구호대의 조직)**

해당 기관은 필요한 지역이나 단위에 로동재해구호를 위한 전임구호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구호대는 겸임으로 조직할수도 있다.

**제54조 (설비 및 기자재보장)**

해당 기관은 산소호흡기, 자동인공호흡기, 산소, 시약, 운수수단, 통신수단, 측정수단 같은 로동재해구호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물자를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5조 (구호대의 비상동원준비)**

해당 기관은 구호대의 로동재해구호훈련을 강화하여 언제든지 신속히 동원할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구호대의 훈련과정안은 어길수 없다.

**제56조 (로동재해에 대한 구호작업)**

해당 기관은 로동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구호대를 동원시켜 구호작업을 하여야 한다. 발생한 로동재해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린접 또는 지구구호대를 동원시킬수 있다.

**제57조 (구호대의 타사업동원금지)**

구호대와 구호설비, 기자재는 로동재해구호작업에만 동원할수 있다.

**제58조 (구호작업을 위한 운행조건보장)**

사회안전기관과 철도운수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재해구호작업을 위하여 동원되는 인원과 설비, 기자재를 실은 운수수단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9조 (로동재해발생에 대한 통보)**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정형을 제때에 로동행정기관과 사회안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 (비상설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조직)**

국가적인 로동재해방지와 사고심의를 위하여 비상설중앙사고방지대책위원회를 내오고 운영한다. 이경우 비상설중앙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상무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성, 중앙기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과 기관, 기업소에도 비상설사고방지대책위원회를 내오고 자기 관할에 따르는 로동재해방지와 사고심의사업을 진행한다.

**제61조 (사고심의의 제기)**

로동행정기관은 발생한 로동재해와 관련하여 해당 비상설사고방지대책위원회에 사고심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62조 (사고심의관할)**

로동재해와 관련한 사고심의는 사고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중앙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 성, 중앙기관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 기관, 기업소 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나누어 한다.

필요에 따라 하급 사고방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이라 하더라도 상급 사고방지대책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할수 있다.

**제63조 (사고심의내용)**

로동재해와 관련한 사고심의에서 토의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로동재해가 발생한 날자, 시간, 장소, 형태
2. 로동재해가 발생하게 된 동기와 원인
3. 로동재해를 발생시킨 단위의 로동보호실태
4. 로동재해로 인한 인적 및 재산적손실
5. 책임관계와 처리문제
6. 로동재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문제
7. 로동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

## 8. 이밖에 제기되는 문제

### 제64조 (사고심의정형보고)

로동재해와 관련한 사고심의를 끝나면 그 정형을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장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65조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로동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66조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로동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 제67조 (로동보호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로동보호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물자, 자금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 제68조 (로동보호와 관련한 과학연구성과의 도입)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은 로동보호와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그 성과를 로동보호사업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 제69조 (로동보호에 대한 과학지식보급)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국가의 로동보호정책과 로동보호와 관련한 과학지식을 보급하며 로동보호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 제70조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로동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로동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동보호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71조 (건강,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로동보호대책을 세우지 않아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국민의 재산에 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72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로동안전교양을 규정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10만~50만원
2. 로동안전시설, 로동위생조건을 정해진대로 갖추어주지 않았을 경우 50만~150만원
3. 로동안전시설의 점검보수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20만~150만원
4. 위험개소를 퇴치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을 경우 50만~150만원
5. 로동보호조건에 대한 측정, 검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대책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을 경우 30만~150만원
6. 유해로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영양제를 규정대로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20만~100만원

## 제73조 (중지처벌)

제72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경영활동 또는 설비, 공정의 운영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시킨다.

## 제74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로동안전교양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고 일을 시켰을 경우
2. 로동보호조건을 보장하지 않고 일을 시켰을 경우
3. 로동안전시설과 로동위생조건에 대한 측정 및 검사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로동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로동보호물자를 대상과 기준에 맞게 공급하지 않았거나 류용, 랑비, 부패변질시켰을 경우
5. 휴식과 휴가를 정해진대로 보장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건강과 문화정서생활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여성근로자들에게 금지된 로동을 시켰거나 로동보호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지 않아 생명과 건강에 해를 주었을 경우
7. 정양소, 휴양소를 정해진대로 꾸리지 않았거나 그 관리운영 및 물자보장을 바로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정양, 휴양을 통한 휴식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로동안전규율을 어겨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9. 로동재해발생정형통보와 로동재해구호조직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사업조건을 보장하지 않아 로동재해 구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로동재해구호사업에 제대로 동원되지 않았거나 구호대와 구호설비, 기자재를 타사업

에 동원시켰을 경우

11. 로동재해사고심의를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12. 이밖에 로동보호법규를 어겼을 경우

앞항 1~12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75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정량법

주체98(2009)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채택  
주체104(2015)년 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4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7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2호로 수정보충

## 제1장 로동정량법의 기본

### 제1조 (로동정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정량법은 로동정량의 제정과 적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로동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로동의 효과성을 높이며 사회주의경제 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로동정량은 일정한 작업조건에서 단위시간에 수행하여야 할 로동기준이며 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로동정량에는 종합로동정량과 세부로동정량, 로력배치기준 같은것이 속한다.

### 제3조 (로동정량사업의 개선강화원칙)

로동정량사업을 바로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로동정량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동정량사업을 끊임 없이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 제4조 (로동정량제정원칙)

로동정량의 제정은 로동조직을 바로하며 로동의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로동정량사업에서 균중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기술 수준,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로동정량을 제정하도록 한다.

### 제5조 (로동정량적용원칙)

로동정량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로동생산능률을 높여 더 많은 사회적부를 창조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단위에서 로동정량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다.

**제6조 (노동정량일군대렬강화원칙)**

국가는 노동정량일군대렬을 능력있는 일군들로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제7조 (노동정량의 갱신원칙)**

국가는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지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가 적극 추진되는데 맞게 노동정량을 끊임없이 갱신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을 로력 절약형, 원가절약형, 기술집약형 기관, 기업소, 단체로 전환하도록 한다.

**제8조 (과학연구사업강화, 전문가양성)**

국가는 노동정량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전문일군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9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노동정량을 제정하고 적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2장 노동정량의 제정

**제10조 (노동정량제정의 담당자)**

노동정량은 표준노동정량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노동정량으로 나누어 제정한다.  
표준노동정량은 노동정량제정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의 노동정량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제정한다.

**제11조 (표준노동정량의 제정방법)**

노동정량제정기관은 기업관리가 정규화, 규범화되고 생산이 정상화된 표준단위를 바로 정하고 그 단위에서 이룩된 노동실적과 측정자료에 기초하여 표준노동정량을 제정하여야 한다.  
표준단위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단위가운데서 노동생산능률이 높은 단위의 노동실적과 측정자료에 기초하여 표준노동정량을 제정할수 있다.

**제12조 (표준노동정량제정과제에 따르는 노동정량제정)**

표준노동정량은 표준노동정량제정과제에 따라 제정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정량지도기관은 표준노동정량제정과제를 정확히 작성하여 노동정량제정 기관에 내 려보내야 한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노동정량제정)**

기관, 기업소, 단체의 노동정량은 표준노동정량을 자료하여 발전하는 현실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제정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별, 작업공정별에 따라 노동정량제정대상과 방법을 바로 정

하고 종합로동정량, 세부로동정량, 로력배치기준, 작업량과제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제정 하여야 한다.

**제14조 (표준로동정량의 심의신청)**

제정한 표준로동정량은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의 심의를 받는다. 이 경우 로동정량제정기관은 표준로동정량 심의신청문건을 만들어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5조 (표준로동정량의 심의)**

표준로동정량 심의신청문건을 접수한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은 표준로동정량을 제때에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로동정량제정기관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해당 로동정량제정기관은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내야 한다.

**제16조 (표준로동정량의 심의결과통지)**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은 표준로동정량을 정확히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제때에 해당 로동정량제정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 (로동정량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정한 로동정량을 해당 로동정량제정기관 또는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 (로동정량의 갱신)**

로동정량제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정량을 정상적으로 검토하고 제때에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한 로동정량은 대상에 따라 해당 로동정량제정기관 또는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3장 로동정량의 적용

**제19조 (로동정량의 적용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정량을 의무적으로 정확히 적용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로동정량은 적용할수 없으며 등록된 로동정량은 마음대로 고칠수 없다.

**제20조 (로동정량적용조건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들에게 로동정량을 정확히 알려주며 그대로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림시로동정량의 적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 시작하는 제품생산이나 작업에 대하여 림시로동정량을 제정하고

적용할수 있다.

림시로 제정한 로동정량은 3개월이상 적용할수 없다.

림시로동정량을 3개월이상 적용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로동정량제정기관 또는 중앙로동정량 지도기관에 등록한다.

**제22조 (다른 단위에 동원되었을 경우 로동정량의 적용)**

기관, 기업소, 단체의 종업원이 립시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동원되어 일할 경우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동정량을 적용한다.

**제23조 (등록된 로동정량과 달리 적용하려 할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된 로동정량을 고쳐 적용하려 할 경우 대상에 따라 해당 로동정량제정기관 또는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 (로동정량의 적용시기)**

로동정량의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표준로동정량은 해당 표준로동정량표에 밝힌 적용날자부터 적용한다.
2. 제정 또는 갱신한 로동정량은 해당 로동정량제정기관 또는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적용한다.
3. 립시로동정량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제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5조 (로동정량에 기초한 로동계획의 작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정량에 기초하여 로동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건에서 진행되는 같은 제품생산이나 작업에 대하여서는 같은 로동정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6조 (로동정량에 기초한 로동의 평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정량에 기초하여 로동의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따르는 로동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계획기관은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이 보낸 로동정량등록종합자료에 따라 로력을 계획화하고 통계, 은행기관은 등록된 로동정량을 확인한데 기초하여 계획수행률을 평가하며 로동보수자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제27조 (로동정량적용결과의 장악과 분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월, 분기, 년별로 로동정량적용결과를 정상적으로 장악분석하고 그 정형을 기록하여야 한다.

로동정량적용결과에 대한 장악과 분석은 도급작업참가정형과 로동정량수행정형을 기본대상으로 한다.

## 제4장 노동정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28조 (노동정량사업에 대한 지도)

노동정량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노동정량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노동정량지도기관은 국가의 노동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노동정량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29조 (노동정량사업개선대책)

중앙노동정량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노동정량사업에 대한 료해를 정상적으로 하고 개선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노동정량일군들의 사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 제30조 (노동정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노동정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노동정량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노동정량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노동정량의 제정과 적용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 제31조 (노동실적의 삭감, 노동보수금액의 회수)

노동정량을 잘못 적용하여 평가된 노동실적은 삭감하며 지출된 노동보수금액은 회수한다.

### 제32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1. 표준노동정량에 대한 심의승인을 바로하지 않아 손해를 주었을 경우
2. 노동정량을 망탕 제정, 적용하여 손해를 주었을 경우
3. 등록하지 않은 노동정량을 적용하여 손해를 주었을 경우
4. 임시노동정량을 등록하지 않고 3개월이상 적용하였을 경우
5. 노동정량을 제때에 갱신하지 않아 손해를 주었을 경우
6. 노동결과에 대한 평가와 노동보수지불을 노동정량과 다르게 하였을 경우
7. 등록된 노동정량을 마음대로 고쳐 적용하였을 경우
8. 등록된 노동정량을 확인하지 않고 로력을 계획화하거나 계획수행률평가를 하며 노동보수자금을 지출하였을 경우
9. 이밖에 노동정량제정 및 적용질서를 어겨 손해를 주었을 경우

### 제33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32조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소비기준법

주체98(2009)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6호로 채택

## 제1장 물자소비기준법의 기본

### 제1조 (물자소비기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소비기준법은 물자소비기준의 제정과 적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물자량비를 없애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물자소비기준의 정의)

물자소비기준은 단위제품을 만들거나 단위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물자의 소비한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물자에는 원료, 자재, 연료, 설비 같은 것이 속한다.

### 제3조 (물자소비기준의 제정원칙)

물자소비기준의 제정은 물자의 공급과 소비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물자소비기준을 제정하도록 한다.

### 제4조 (물자소비기준의 적용원칙)

물자소비기준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물자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최대의 경제적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물자의 공급과 리용체계를 바로세워 제정된 물자소비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도록 한다.

### 제5조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의 의무화원칙)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생산과 경영활동에 쓰이는 모든 물자에 대한 소비기준을 의무적으로 제정하고 적용하도록 한다.

### 제6조 (물자소비기준의 갱신원칙)

물자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는 것은 인민경제의 끊임없이 빠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이 고도로 현대화되는데 맞게 물자소비기준을 부단히 낮추도록 한다.

**제7조 (물자소비기준제정부문의 일군대렬강화원칙)**

국가는 물자소비기준제정부문의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한다.

**제8조 (적용대상)**

이 법은 물자소비기준을 제정하거나 적용하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 제2장 물자소비기준의 제정

**제9조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실리를 보장할수 있는 물자소비기준의 제정)**

물자소비기준제정을 바로하는 것은 인민경제계획을 정확히 세우며 물자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하고 최대의 경제적실리를 보장할수 있는 물자소비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10조 (물자소비기준지표의 구분)**

물자소비기준은 대상에 따라 국가지표의 물자소비기준, 부문, 도(직할시)지표의 물자소비기준, 기관, 기업소, 단체지표의 물자소비기준으로 나눈다.

물자소비기준지표를 구분하는 사업은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물자소비기준지도기관은 물자소비기준지표를 구분하는데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지방의 창발성을 옹계 결합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11조 (물자소비기준제정의 담당자)**

국가지표의 물자소비기준은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이, 부문, 도(직할시)지표의 물자소비기준은 해당 부문, 도(직할시)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지표의 물자소비기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제정한다.

**제12조 (물자소비기준제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요구)**

물자소비기준의 제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적요구와 나라의 구체적실정, 조건에 맞게 제정하여야 한다.
2. 수입물자를 쓰지 않거나 적게 쓰도록 제정하여야 한다.
3. 선진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아들이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최대의 실리를 보장할수 있게 제정하여야 한다.
4. 생산과 경영활동에 쓰이는 모든 종류의 물자에 대하여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제13조 (물자소비기준초안작성)**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정해진 기간안에 물자소비기준초안을 작성하여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물자소비기준초안작성은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에서 내려보낸 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서와 사업요강에 따라 한다.

**제14조 (물자소비기준초안의 심의, 등록)**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성된 물자소비기준초안을 제때에 심의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지표의 물자소비기준초안에 대한 심의, 등록은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이, 부문, 도(직할시)지표의 물자소비기준초안에 대한 심의, 등록은 해당 부문, 도(직할시)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지표의 물자소비기준초안에 대한 심의, 등록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5조 (아래단위의 물자소비기준 등록)**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은 부문, 도(직할시)지표와 기관, 기업소, 단체지표의 물자소비기준을 등록하여야 한다.

부문, 도(직할시)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표의 물자소비기준을 등록한 다음 그 사본을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6조 (등록된 물자소비기준의 하달)**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은 등록된 물자소비기준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내려보내야 한다. 이 경우 물자소비기준의 적용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제17조 (실험, 실측, 계량, 자료분석)**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소비와 관련한 실험, 실측, 계량 및 자료분석을 구체적으로 하여 물자소비기준제정의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실험, 실측, 계량 및 자료분석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의뢰하여 할수도 있다.

**제18조 (물자소비기준제정에 필요한 자료보장)**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은 물자소비기준제정에 필요한 기술경제적자료, 시료, 시제품 같은 것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시료, 시제품 같은 것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9조 (표준물자소비기준의 제정)**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은 기업관리수준이 높고 생산을 정상화하고있는 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물자소비기준을 표준물자소비기준으로 제정하여 생산제품이나 기술장비 같은 것이 비슷한



다른 공장에도 일반화시킬수 있다.

**제20조** (림시물자소비기준의 제정)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제품과 생산량이 적고 생산주기가 짧으며 변하기 쉽고 반복성이 없는 제품 같은 것이 대하여 림시물자소비기준을 제정할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본을 해당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21조** (물자소비기준의 갱신)

다음의 경우에는 물자소비기준을 갱신하여야 한다.

1. 선진과학기술의 도입에 의하여 물자소비량이 줄어들었을 경우
2. 새 제품에 대한 시험생산이 끝나고 정식 생산이 들어갔을 경우
3. 원료조건, 소재의 규격, 재질 같은 것이 달라졌을 경우
4. 작업조건과 방법,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기술경제적지표 같은 것이 달라졌을 경우
5. 물자소비기준의 적용기간이 완료되었을 경우
6. 기타 물자소비기준을 갱신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을 경우

**제22조** (물자소비기준의 갱신기간과 심의, 등록)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소비기준의 갱신조건이 제기되면 정해진 기간안에 물자소비기준을 갱신하고 심의,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자소비기준의 갱신과 심의, 등록은 물자소비기준제정절차에 따른다.

## 제3장 물자소비기준의 적용

**제23조** (물자소비기준의 의무적인 준수)

물자소비기준의 적용은 물자소비기준에 맞게 물자를 쓰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물자소비기준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제24조** (등록된 물자소비기준의 적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된 물자소비기준만을 생산과 경영활동에 적용하여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물자소비기준은 리용할수 없다.

**제25조** (물자소비기준에 기초한 계획작성 및 실적평가)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소비기준에 준하여 계획을 세우거나 계획실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물자소비기준에 기초하지 않고 한 계획실행실적평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26조** (물자소비기준에 따르는 물자공급)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소비기준에 따라 물자를 공급하며 그 소비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

하여야 한다.

물자소비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물자를 공급하지 않거나 배수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27조 (물자소비기준에 따르는 가격제정, 감독)**

가격제정기관과 품질감독기관, 해당 기관은 가격제정, 감독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물자소비기준에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 (생산지표이관시 물자소비기준의 적용)**

생산지표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 경우에는 해당한 물자소비기준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넘겨받은 물자소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에 제기하여 다시 제정받아 적용할 수 있다.

**제29조 (합영, 합작부문에서 물자소비기준의 적용)**

합영, 합작부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 경영활동에 정해진 물자소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상대방 당사자가 제기한 물자소비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제30조 (물자소비기준적용기간의 준수와 연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소비기준의 적용기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기간이 지난 물자소비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

물자소비기준을 적용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려 할 경우에는 적용기간이 완료되기 30일 전에 연장신청문건을 해당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물자소비기준의 준수정형에 대한 총화와 보고)**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소비기준의 준수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그 자료를 해당 상급기관에 내야 한다.

## 제4장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2조 (물자소비기준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물자소비기준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3조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물자소비기준 제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은 물자소비기준제정부문의 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물자소비 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4조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체계의 확립)**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책임일군이 직접 책임지고 물자소비기준의 제정 및 적용사업을 진행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

물자소비기준제정일군은 물자소비기준의 준수정형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5조 (균중적인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정된 물자소비기준을 종업원들에게 빠짐없이 알려주며 그들이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종업원은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물자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한 창발적인 안을 적극 제기하여야 한다.

**제36조 (물자소비기준자료집출판)**

물자소비기준과 관련한 자료집의 출판은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물자소비기준과 관련한 자료집을 출판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감독통제)**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해당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물자소비기준의 제정과 적용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8조 (손해보상)**

물자소비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하였거나 반복작업을 하여 물자를 낭비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9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물자소비기준을 망탕 제정하거나 적용하여 물자를 낭비하였을 경우
2. 물자소비기준이 없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하였을 경우

3. 물자소비기준을 제때에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4. 물자소비기준을 제때에 제정하여 내려보내지 않아 계획작성과 생산,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물자소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6. 등록되지 않은 물자소비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7. 승인없이 기간이 지난 물자소비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8. 물자소비기준에 따라 물자공급을 하지 않아 물자를 낭비하였을 경우
9. 계획작성이나 실적평가, 가격제정, 감독 같은 사업을 물자소비기준에 준하지 않고 진행하여 해당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이밖에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제40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39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 국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동산관리법

주체98(2009)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5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 제1장 부동산관리법의 기본

### 제1조 (부동산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동산관리법은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리용, 사용료납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적소유를 공고발전시키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부동산의 구분)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시설물, 자원 같은 것으로 나눈다.

토지에는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업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가, 건물, 시설물에는 산업 및 공공건물, 시설물, 살림집건물 같은 것이, 자원에는 지하자원, 산림자원 같은 것이 속한다.

### 제3조 (부동산관리에서 사회주의적요구관철원칙)

부동산은 우리 인민의 간고한 투쟁과 창조적로동과정에 마련된 고귀한 전취물이며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물질적기초이다.

국가는 부동산관리에서 사회주의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 제4조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원칙)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를 엄격히 하는 것은 부동산관리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부동산을 형태별, 용도별로 정확히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실사하도록 한다.

### 제5조 (부동산의 리용원칙)

부동산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부동산의 사회경제적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부동산의 리용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 제6조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제정 및 적용원칙)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는 부동산관리에서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조적공간이다.

국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한데 기초하여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를 바로 정하고 정확히 적용하도록 한다.

**제7조 (부동산의 전인민적보호원칙)**

부동산을 적극 보호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부동산을 귀중히 여기고 그 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8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부동산을 관리하고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와 외국투자기업 및 단체, 외국인의 부동산관리, 리용질서는 따로 정한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부동산의 관리분담

**제9조 (부동산에 대한 관리분담의 기본요구)**

부동산의 관리분담은 부동산관리를 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부동산에 대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범위와 임무를 바로정해주어야 한다.

**제10조 (토지의 관리기관)**

토지에 대한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토지는 농업지도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
2. 산림토지, 산업토지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
3. 주민지구토지는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이 관리한다.
4. 수역토지는 대상에 따라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관리한다.
5. 특수토지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

**제11조 (건물, 시설물의 관리기관)**

건물,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도시경영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2조 (자원의 관리기관)**

산림자원, 지하자원 같은 자원에 대한 관리는 대상에 따라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국가지하자원개발기관이 한다.

**제13조 (건설 또는 개발중에 있는 부동산의 관리기관)**

건설 또는 개발중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관리는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건설 또는 개발을 위한 임시건물과 시설물도 함께 관리한다.

## 제3장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 제14조 (부동산의 등록요구)

부동산의 등록은 부동산을 빠짐없이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모든 부동산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 제15조 (부동산등록기관)

부동산에 대한 등록은 자체등록과 국가등록으로 한다.  
자체등록은 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며 국가등록은 해당 부동산관리기관이 한다.

### 제16조 (부동산의 현물, 화폐적등록)

부동산의 등록은 현물, 화폐적으로 한다.  
화폐적으로 등록할수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현물만 등록한다.

### 제17조 (토지의 등록방법)

토지의 등록은 토지등록대장과 지적도에 한다.  
지적도는 지목, 지번, 면적 같은 것을 정확히 표시하여야한다.

### 제18조 (건물, 시설물의 등록방법)

건물, 시설물의 등록은 건물등록대장과 시설물등록대장에 한다.  
등록대장에는 건물, 시설물의 리용자명, 리용면적, 건물의 수명, 보수주기 같은 것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 제19조 (자원의 등록방법)

자원의 등록은 자원량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해당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20조 (부동산실사)

부동산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동산실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부동산실사는 정기실사, 총실사로 나누어 해당 부동산의 현물수량과 실태를 등록대장과 대조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21조 (부동산실사정형보고)

부동산실사를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정형을 제때에 상급기관과 해당 부동산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부동산의 리용

### 제22조 (부동산리용의 기본요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을 국가적리익의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 제23조 (부동산리용허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을 리용하려 할 경우 대상에 따라 해당 부동산리용허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부동산은 리용할수 없으며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다.

### 제24조 (부동산의 리용허가신청)

부동산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부동산리용허가기관에 부동산리용허가신청서를 내야 한다.

부동산의 용도 같은 것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부동산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제25조 (부동산리용허가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부동산리용허가신청서에는 신청자명, 부동산명, 위치, 용도, 면적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한 자료를 첨부한다.

부동산을 립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리용기간도 밝힌다.

### 제26조 (부동산의 리용승인)

부동산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30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부동산리용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해당 부동산의 리용허가증을 발급한다.

### 제27조 (부동산리용허가증의 재발급)

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리용허가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 부동산리용허가기관에 제때에 알리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 제28조 (부동산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의 리용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력사유적유물과 천연기념물을 잘 보존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자연 및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의 인구집중과 공해를 막아야 한다.
3. 건물, 시설물부지면적기준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4. 토지를 람용하지 말며 농경지를 침범하거나 못쓰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5. 자원을 채취하면서 주변환경과 시설물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6. 부동산을 팔고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9조 (부동산의 구조 또는 용도변경금지)**

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관리기관의 승인없이 부동산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시킬수 없다.

**제30조 (부동산의 넘겨주기 또는 빌려주기금지)**

부동산은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줄수 없다.

**제31조 (부동산의 반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남았거나 리용하지 않는 부지, 건물, 시설물을 제때에 국가에 바쳐야 한다.

해당 지방정권기관은 국가에 바친 부동산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5장 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

**제32조 (부동산가격과 사용료적용의 기본요구)**

부동산가격은 부동산가치의 화폐적표현이며 부동산사용료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부동산을 리용하는 대가로 국가예산에 납부하는 자금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가격에 따라 정해진 부동산사용료를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제정)**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국가가격제정기관은 부동산을 책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를 과학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제34조 (부동산사용료의 의무적납부)**

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사용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사용료의 납부대상과 절차, 방법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다.

**제35조 (부동산사용료납부등록)**

부동산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재정기관에 제때에 부동산사용료 납부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사용료납부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을 리용할수 없다.

**제36조 (부동산사용료납부장소와 기간)**

부동산사용료의 납부는 해당 지역의 제정기관이 한다.

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사용료를 정해진 기간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장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7조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부동산관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38조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부동산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 제39조 (부동산정책집행을 위한 문제토의)

해당 중앙기관은 관계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가의 부동산정책집행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제때에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40조 (부동산관리사업에서 협조)

해당 중앙기관은 부동산관리기관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부동산관리와 관련한 자료는 호상 통보한다.

### 제41조 (부동산관리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정권기관은 부동산관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 제42조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부동산관리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43조 (원상회복, 손해보상, 리용중지)

부동산을 파괴,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리용을 중지시키거나 부동산리용허가증을 회수할수 있다.

### 제44조 (벌금의 적용, 수입금의 몰수)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리용, 부동산사용료납부질서를 어겨 부동산관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리용하여 부당하게 얻은 수입금은 전액 몰수한다.

**제45조 (분쟁해결)**

부동산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제46조 (신소제기 및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신소를 제기할수 있다.

신소받은 기관은 그것을 제때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부동산관리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주체67(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호로 채택  
주체75(1986)년 2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94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6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3-1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66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

**제1조**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제2조** 로동은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재부의 원천이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된다.

**제3조**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로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으로 일한다.

**제4조** 사회주의하에서 공민은 로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적로동에 참가한다.

**제5조**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다.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제6조**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나라와 사회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자들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근로자들을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제7조** 노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노동이 즐거운 것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상요구로 되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줄여나간다.

**제8조**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을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자로 키우는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인민적인 교육시책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제9조**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이고 생산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국가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고 천리마운동을 심화발전시키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 로동생산능률의 높은 장성과 생산의 빠른 발전을 보장한다.

**제10조**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전일적인 사회주의경제체계에서 진행되는 사회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방침에 따라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 사회적로동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한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재부는 전적으로 나라의 부강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며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인다.

**제12조** 로동과 휴식을 옹계 결합하며 근로자들의 로동을 보호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할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전반적무상치료제와 선진적인 로동보호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적로동정책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시된 혁명적인 로동강령을 구현하며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로동정책을 더욱 발전시키며 전국적범위에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로동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제2장 노동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공산주의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담당자들이다.

로동은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것은 국민의 영예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국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보람찬 로동에 자원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16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한다.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로동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제17조** 근로자들은 로동을 통하여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주인답게 일하여야 한다.

**제18조** 사회주의로동규률은 자각적규률이며 사회주의로동규률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근로자들의 응당한 의무이다.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직장을 리탈할수 없다.

**제19조**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 것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의 본분이다.

근로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새로운 기준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단위시간안에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제20조** 근로자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지혜와 정력을 발휘하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어 맡겨진 계획과제를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근로자들은 알뜰한 일본새로 일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정확히 지켜 생산물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제22조** 근로자들은 자기가 맡은 기대와 설비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설비리용률을 높이고 원료와 자재를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제23조** 근로자들은 자기의 일터를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경각성있게 지키며 로동보호법규를 엄격히 지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2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지위는 로동의 성실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로동에서 모범인 사람은 인민의 사랑과 높은 존경을 받는다.

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근로자들은 로력영웅칭호와 명예칭호를 비롯한 국가적표창을 받는다.

### 제3장 사회주의로동조직

**제25조**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나라의 로력자원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근로자들의 창조적열의와 재능을 적극 발양시켜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모든 로력자원을 통일적으로 동원리용한다.

**제26조** 국가는 사회적로동조직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

공정,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행정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로동조직에서 근로로선을 구현하며 로력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27조** 로동계획화는 로동조직을 바로하며 로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기초이다.

국가는 나라의 로력원천과 수요를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맞물린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로동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제28조** 국가는 공업과 농업,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 기본생산부문과 보조생산부문사이의 로력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로동행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부문 로력자수의 우선적증대를 보장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에 맞게 비생산부문 로력자수를 규정하는 원칙에서 로력을 배치하며 직접부문 로력의 비중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29조** 국가는 나라의 로력원천을 적극 동원하며 로력후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인민경제의 로력수요를 계획적으로 충족시킨다.

각급 경제기관과 로동행정기관은 국가의 경제정책의 요구에 맞게 로력보충조절계획을 세워 인민경제발전계획에 예견된 로력수요를 제때에 보장하며 인민경제부문들과 지역들에 로력을 정확히 조절배치하여야 한다.

**제30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이 창조적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낼수 있도록 성별, 연령, 체질, 희망, 기술기능수준에 맞게 로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31조**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이 사회적로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게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편의시설을 꾸려야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들이 희망에 따라 일할수 있도록 가내작업반, 가내협동조합 등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32조** 공장,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공정의 특성, 기술장비수준, 작업조건 등에 맞게 로동조직을 바로하며 로력관리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로동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로력랑비를 없애고 근로자들이 480분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조직에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과 휴식과 학습을 옹게 배합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을 정규화하고 학습을 정상화하며 휴식을 잘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 국가기관, 기업소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로력이 남을 때에는 제때에 다른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생산적작업에 대한 립시지원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는 일시적으로 로력이 남는다고 하여 로동자들을 마음대로 제적할수 없다.

**제35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로력을 마음대로 다른 일에 동원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공장, 기업소의 생산로력은 국가의 승인없이 다른 일에 동원할수 없다.

농번기에는 그 누구도 농사와 관련이 없는 일에 농장원들을 동원할수 없다.

**제36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관리일군들은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 생산로동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 제4장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제37조**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분배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이며 로동에 의한 분배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생산력발전을 다그치는 힘있는 수단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

근로자들은 성별, 연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하여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

**제38조**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하는 육체적 및 정신적힘을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생활비등급제를 정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등급제와 생활비지불원칙에 립각하여 로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생활비를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

**제39조** 로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비의 기본형태는 도급지불제와 정액지불제이며 생활비의 추가적형태는 가급금제와 상금제이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이며 그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킬수 있도록 생활비지불형태를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40조** 국가는 독립채산제원칙에 따라 공장, 기업소들의 현물지표별생산계획과 원가계획실행을 정확히 평가한데 기초하여 공장, 기업소들에 생활비자금을 분배한다.

공장, 기업소는 생산계획실행정형, 제품의 질, 설비, 자재의 리용정형 등을 바로평가하여 일을 잘한 근로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장려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41조** 노동정량은 노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이며 노동정량을 바로 정하는 것은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국가는 노동정량사업에서 균중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기능수준,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 등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노동정량을 제정하는 원칙을 관철한다.

**제42조** 국가는 인민경제부문별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가 정규화, 규범화되고 생산이 정상화된 표준공장을 꾸리고 거기서 측정한 자료를 기초로하여 국가표준로동정량을 제정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표준로동정량을 자로 하여 발전하는 현실과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노동정량을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적용하며 끊임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제43조** 로력일은 협동농장원들과 협동농장에 복무하는 근로자들의 노동결과를 평가하고 분배몫을 규정하는 척도이다.

협동농장은 로력일평가를 정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협동농장원들과 협동농장에 복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로력일에 따르는 분배를 바로하여야 한다.

**제44조**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는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며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은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를 실시하여 로력일평가사업을 정확히 하며 추가적로력보수를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45조** 국가는 공업과 농업의 발전, 노동생산능률의 제고에 기초하여 모든 부문노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각이한 지대의 농민들의 수입을 고르게 높이며 전반적으로 노동자, 사무원과 농민의 생활수준을 균형적으로 높이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제5장 노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

**제46조** 노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는 것은 기술혁명의 중심과업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공업화의 성과에 기초하여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켜 착취

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며 그들에게 노동생활에서의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47조** 국가는 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앤다.

**제48조** 국가는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화학화와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완성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실현하며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앤다.

**제49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은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기술혁신운동을 대중적으로 벌려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창의고안, 합리화운동을 적극 장려하며 창의고안과 합리화안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발명가 및 창의고안자, 생산혁신자에게 국가적배려를 돌리며 기술자격을 준다.

**제50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공장고등전문학교와 농장고등전문학교, 야간 및 통신교육 등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최신과학기술을 체득하고 현대적기계설비를 잘 다루며 인민경제를 능숙하게 관리운영할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키운다.

**제51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기술기능학습체계와 기능전습체계를 바로세워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모든 근로자들이 한가지이상의 현대적기술을 소유하고 자기가 다루는 기계설비와 자기 부문 기술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을 위하여 기사급수, 기능등급판정시험제를 실시한다. 과학기술행정기관과 노동행정기관은 기사급수, 기능등급판정시험을 정기적으로 조직집행하여야 한다.

## 제6장 노동보호

**제53조** 노동보호사업을 잘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하며 보다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지어주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중요한 조건이다.

국가는 노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우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한다.

**제54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노동안전교양사업체계를 세우고 근로자들에게 노동보호정책과 노동안전기술지식을 체득시켜 노동보호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게 노동보호정책과 해당 부문의 노동안전기술지식을 체득시키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들을 일시킬수 없다.

**제55조**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의 첫째가는 사업이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노동안전시설과 고열, 가스, 먼지 등을 막고 채광, 조명, 통풍 등을 잘 보장하는 산업위생조건을 갖추며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완비하여 노동재해와 직업성질환을 미리 막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일터에서 일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 및 작업조직에 앞서 노동안전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수 있는 위험한 개소들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생산과정에 사고위험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생산을 멈추고 위험한 개소를 정비한 다음에 생산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57조** 건설 및 설계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는 공장, 기업소, 건물, 구축물의 건설과 기계설비의 제작에서 근로자들의 노동보호조건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신설, 확장, 보수한 공장, 기업소, 건물, 구축물과 새로 제작한 기계설비는 해당 검열, 감독기관의 준공검사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조업하거나 돌릴수 없다.

**제58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검진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여야 한다.

**제59조**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의 노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보호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여성들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수 없으며 젖먹이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로동을 시킬수 없다.

**제60조**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노동보호용구를 보장하며주며 작업필수품 및 영양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근로자들은 작업할 때 지정된 노동보호용구와 작업필수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노동보호물자를 극력 아껴써야 한다.

**제61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표준조작법과 노동보호규정을 만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동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보호증진에 엄중한 후과를 끼치는 현상이 없도록 엄격히 통제한다.

## 제7장 노동과 휴식

**제62조** 근로자들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8시간로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 시설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제63조** 근로자들은 하루로동시간이 끝나면 휴식한다.

경제기관, 기업소들은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로동을 시킬수 없다.

**제64조** 근로자들은 주에 하루씩 휴식을 보장받는다.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날과 일요일은 쉬는날로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날에 근로자들을 로동시킨 경우에는 한주일안으로 반드시 대휴를 주어야 한다.

**제65조**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 7일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는다.

**제66조** 녀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18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

**제67조** 국가는 정양소, 휴양소망을 여러 가지 형태로 늘이고 그 시설을 현대화하며 관광, 탐승 등을 널리 조직하여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문화적휴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킨다.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는 직장정양소를 잘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충분히 휴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

**제68조**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을 받는다.

**제69조**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쓸모있고 문화적인 살림집과 합숙을 보장한다.

국가는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협동농장원들이 그것을 무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70조** 국가는 노동자, 사무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에게 낮은 값으로 식량을 공급한다.

**제71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어린이들을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72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어린이들을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모든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학생복과 교과서를 낮은 값으로 공급받으며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는다.

**제73조** 국가는 노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년금을 준다.

**제74조** 국가는 남자 60살, 여자 55살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노동년한을 가진 경우에 년로년금을 준다.

**제75조** 국가는 노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헌을 세운 국가공로자들이 노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돌린다.

**제76조**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는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에게 정기 및 보충휴가기간에 평균생활비 또는 평균로력일을 주며 산전산후휴가기간에는 일시적보조금 또는 평균로력일을 준다.

**제77조** 국가는 노동재해, 질병, 부상 등의 원인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양육을 받아오던 부양가족들에게 유가족년금을 주며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은 국가가 맡아 키운다.

**제78조** 국가는 노동능력을 잃은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을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보아준다.

**제79조**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제에 의한 의료상혜택을 준다.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및 그들의 부양가족은 치료, 료양, 예방, 해산 등 모든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받는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재산관리법

주체85(1996)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70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사회주의재산관리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재산관리법은 재산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사회주의적소유를 공고발전시키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사회주의재산은 우리 인민이 간고한 투쟁과 창조적인 로동을 통하여 이룩한 고귀한 전취물이며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물질적기초이다.  
국가는 확립된 사회주의재산관리제도를 공고히 하며 재산관리에서 집단주의적요구를 관철하도록 한다.

**제3조** 사회주의재산관리는 국가소유의 재산과 사회협동단체소유의 재산에 대한 관리이다.  
국가소유의 재산관리는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며 사회협동단체소유의 재산관리는 해당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제4조** 사회주의재산관리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지도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재산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창발성을 높이며 재산관리를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5조** 사회주의재산관리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 국가는 재산관리에서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정확히 구현하며 그들의 자각적 열의와 창조적 지혜에 의거하여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 사회주의재산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재산관리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구현하여 재산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재산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제7조** 사회주의재산관리는 계산과 통계에 기초한다.  
국가는 재산관리에 대한 계산과 통계의 객관성, 시기성을 보장하여 실태를 정확히 료해장악

하고 재산관리를 예견성있게 하도록 한다.

**제8조** 국가는 사회주의재산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재산관리사업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재산관리수단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사회주의재산관리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재산관리에 앞선 과학기술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10조** 사회주의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나라와 인민후대들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나라의 재산을 귀중히 여기고 늘이며 애호관리하도록 한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재산관리법은 재산관리에서 나서는 원칙과 절차, 방법을 규제한다.

등록, 평가, 실사할수 없는 재산에 대한 관리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사회주의재산의 분류

**제12조** 사회주의재산을 분류하는 것은 재산관리를 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재산에 대한 관리 한계와 분담을 바로할수 있도록 재산을 정확히 분류한다.

**제13조** 사회주의재산은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으로 나눈다.

국가재산에는 국유화한 재산, 국가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기업소의 자체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단체 또는 공민이 기관, 기업소에 소유권을 넘긴 재산 같은 것이, 사회협동단체재산에는 단체가 기관, 기업소 또는 공민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재산, 단체의 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같은 것이 속한다.

**제14조** 사회주의재산은 대상의 특성에 따라 자연부원의 고정재산, 류동재산으로 나눈다.

자연부원에는 토지, 산림, 지하자원, 수산자원 같은 것이, 고정재산에는 살림집을 비롯한 건물, 구축물, 전도장치, 설비, 운수수단, 공구기구, 종자집짐승, 부림짐승, 비품, 설계도면, 도서, 문예작품, 관상용동식물, 천연기념물, 문화유물 같은 것이, 류동재산에는 원료, 자재, 미성품, 반제품, 완제품, 상품, 귀금속, 화폐 같은 것이 속한다.

**제15조** 사회주의재산은 경우에 따라 부동산, 동산 같은 것으로 나눌수 있다.

### 제3장 사회주의재산의 등록, 평가, 실사

**제16조** 사회주의재산의 등록, 평가, 실사는 재산을 빠짐없이 장악기록하고 그 가치를 규정하며 재산의 상태를 조사하는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모든 재산을 제대에 정확히 등록하고 평가, 실사하여야 한다.

**제17조** 사회주의재산에 대한 등록은 자체 등록과 국가등록으로 한다.

자체 등록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며 국가등록은 해당 재산감독기관이 한다.

**제1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이 조성되고 평가되었거나 그 가치가 변동되어 재평가되었을 경우 자체 등록을 하고 정해진 데 따라 국가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은 현물, 화폐적으로 한다. 화폐적으로 등록할수 없는 재산은 현물로만 등록한다.

**제19조** 사회주의재산에 대한 평가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한다.

재산평가는 가격제정기관과 중앙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이 한다.

**제20조** 사회주의재산에 대한 재평가는 재산의 도매가격이 변동되었거나 그밖의 사유가 제기될 경우에 한다.

재산재평가는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제2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에 대한 실사를 정해진 기간에 하여야 한다.

재산실사는 해당 자연부원, 고정재산, 류동재산의 현물 수량과 실태를 등록대장, 해당 기술문건과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2조** 사회주의재산실사는 정기실사, 립시실사와 총실사로 나누어 한다.

정기실사는 월, 분기, 년을 기간으로 하며 립시실사는 책임일군, 재산관리일군의 변동, 재산이관 같은 경우에 한다. 총실사는 나라의 재산상태를 전반적으로 조사장악할 경우에 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실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실사를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재산실사에는 대상에 따라 재산감독기관일군이 립회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산실사정형을 제때에 상급기관과 해당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사회주의재산의 보호

**제24조** 사회주의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재산의 피해를 막으며 그것을 잘 보존하고 늘여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산의 특성에 맞게 재산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의 피해를 막는데 필요한 건물, 구축물, 설비, 자재, 비품 같은 물질기술적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획이나 설계에 예견된 기술지표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 제2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고정재산에 대한 경력서를 만들고 기술공학적 요구와 기술관리상태를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며 고정재산의 보호관리에서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 제2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특정에 맞는 보호방법을 적용하여 그 류실, 화재, 파손, 산화, 오염, 부패변질, 병충해 같은 피해를 막고 량과 질을 보존하여야 한다.
- 제2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을 기술적조건과 안전조건이 갖추어진 장소에 보관하며 그것을 정해진대로 받아들여거나 내주어야 한다.  
수송, 수리, 빌리기 같은 사유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자기 재산과 같이 관리한다.
- 제2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에 피해를 줄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마음대로 내 보내거나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해로운 물질은 정제 도는 제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리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 제30조** 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사회주의재산에 피해를 줄수 있는 불리한 기후, 지진 같은 것이 예견될 경우 해당 재산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받은 기관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여야 한다.
- 제3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정재산에 대한 계획적예방보수체계를 세우고 정해진 보수형태, 보수주기를 지키며 보수 기일과 보장하여야 한다.
- 제32조** 고정재산은 구조, 형태를 마음대로 변경시킬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정재산의 구조, 형태를 변경시키려 할 경우 대상에 따라 재산감독기관과 합의하고 상급기관 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비점검검열의 날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설비점검검열의 날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3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에 대한 보호를 한계와 분담을 명확히하며 재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재산관리자는 분담받은 재산관리에서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 제35조** 사회주의재산을 잘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에 따라 재산보호구역을 정한다.

재산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제36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국보적 가치가 있거나 경제적가치가 있는 사회주의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받은 기관은 재산을 제때에 조사확인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 국가는 사회주의재산을 책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재산애호월간을 정한다.

재산애호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산애호월간에 재산을 알뜰히 관리하기 위한 조직동원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려야 하며 국민은 재산애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 제5장 사회주의재산의 리용

**제38조** 사회주의재산의 리용은 재산을 용대대로 쓰고 다루는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산의 사명에 맞게 재산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3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경제적 타산을 바로하고 앞선 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여 사회주의재산의 리용들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제40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회주의재산리용과 관련한 기술경제적기준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기술경제적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4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정재산을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의 요구에 맞게 보다 능률적인 것으로 개조하며 계획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의 내용년한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제42조** 새로 조성하였거나 보수한 고정재산은 검사를 받아야 리용할수 있다.

새로 조성하였거나 보수한 고정재산의 검사는 대상에 따라 해당 재산감독기관이 한다.

**제43조** 고정재산의 용도는 마음대로 바꿀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정재산의 용도를 바꾸려 할 경우 대상에 따라 해당 재산감독기관과 합의하고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관리에서 계산을 정확히 하고 재산관리를 자극, 추동할수 있도록 자격, 원가, 로동보수, 위약금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옹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45조** 국가는 질이 보장된 사회주의재산을 리용하기 위하여 재산에 대한 신용보증제를 실시한다.

신용보증 대상과 기관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중앙재산관리지도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 제4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하고있는 사회주의재산의 리용범위를 정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쓸수 있게 분할, 배치하여야 한다.  
 재산은 필요한 경우 조절배치할수 있다.  
 재산을 조절배치하는 사업은 대상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지도기관, 재산감독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 제4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하고있는 사회주의재산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재산은 승인없이 놀리거나 사장시킬수 없다.
- 제48조** 사회주의재산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빌려줄수 있다.  
 이 경우 빌려쓸 단위와 계약을 맺으며 대상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다.
- 제4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리용과 관련하여 절약과제와 원가저하계획을 직장, 작업반 같은 아랫단위와 종업원에게 정확히 주며 그 수행정형을 제때에 장악평가하여야 한다.
- 제50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산물, 폐기폐설물, 고자재 같은 것을 최대한 회수리용하여야 한다.
- 제51조** 국가는 고정재산의 능력을 유지하고 고정재산을 갱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며 생산적 고정재산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자극하기 위하여 생산적 고정재산에 대한 감가상각금제를 적용한다.

## 제6장 사회주의재산의 처리

- 제52조** 사회주의재산의 처리는 재산을 판매, 이관, 폐기하는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산을 국가계획과 계약, 해당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나 단체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물을 자재상사, 판매상사 또는 상업, 량정 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공급, 판매하거나 수매시켜야 한다. 그러나 일부 생산물은 따로 정한데 따라 처리할수 있다.
- 제5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능력상 남거나 놓고 있는 고정재산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이관할수 있다. 이 경우 대상과 가치의 크기에 따라 해당 재산감독기관과 합의하고 상급기관이나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산관리지도기관은 이관할수 있는 재산을 정기적으로 장악하여 해당 단위에 이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5조** 기관, 기업소사이에 고정재산을 넘겨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값을 받지 않는다. 그러

나 따로 정한 경우에는 값을 받을수 있다.

고정재산을 기관, 기업소가 단체에 넘겨주거나 단체가 기관, 기업소나 다른 단체에 넘겨줄 경우에는 값을 받는다.

**제5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재산을 다른 나라에 내보낼수 있다. 이 경우 대상과 가치의 크기의 따라 해당 재산감독기관과 합의하고 상급기관이나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 임자가 없는 재산, 몰수한 재산은 해당 기관에 넘겨 처리한다.

해당 기관은 재산을 정해진데 따라 처리하고 값을 받았을 경우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정재산이 쓸모를 잃었을 경우 재산을 폐기하고 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과 가치의 크기에 따라 해당 재산감독기관과 합의하고 상급기관이나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장 사회주의재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9조** 사회주의재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재산관리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재산의 피해를 막아 재산관리를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재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60조** 사회주의재산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이 한다.

내각은 재산관리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재산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61조** 재산관리지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사회주의재산을 알뜰히 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62조** 국가계획기관,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사회주의재산관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63조** 사회주의재산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재산관리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재산관리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재산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64조** 사회주의재산을 파괴, 손상, 랑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65조** 사회주의재산관리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비관리법

주체97(2008)년 3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38호로 채택  
주체98(2010)년 11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4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6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53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설비관리법의 기본

### 제1조 (설비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비관리법은 설비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설비의 정의)

설비는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설비에는 기계와, 장치, 공업로, 생산용탑과 탱크 같은 것이 속한다.

### 제3조 (설비의 등록과 실사원칙)

설비의 등록과 실사는 설비를 장악기록하며 그 상태를 조사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설비를 제때에 등록하며 계획적으로 실사하도록 한다.

### 제4조 (설비의 운전과 점검보수원칙)

설비의 운전과 점검보수를 잘하는 것은 설비의 정상가동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설비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운전하며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 제5조 (설비의 조절, 폐기원칙)

국가는 설비를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그 리용률을 높이며 쓸수 없는 설비를 제때에 폐기하도록 한다.

### 제6조 (모범기대창조운동)

설비관리의 주인은 생산자대중이다.

국가는 생산자대중속에서 25호선반을 따라배우는 모범기대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설비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 제7조 (설비관리에 대한 연구사업강화, 일군양성)

국가는 설비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필요한 일군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 제2장 설비의 등록과 실사

### 제8조 (설비등록과 실사의 기본요구)

설비의 등록과 실사를 바로하는 것은 설비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정확히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설비등록대장의 구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등록대장을 갖추고 설비를 제때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 (설비등록지표에 따르는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등록지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설비등록지표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이 한다.

### 제11조 (설비의 현물, 화폐적등록)

설비등록은 현물, 화폐적으로 한다.

현물등록에서는 설비의 명칭과 등록번호, 형, 능력, 수량, 생산 또는 설치 년, 월, 일, 설치장소, 등록근거 같은 것을, 화폐적등록에서는 설비의 도매가격과 운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기록한다.

### 제12조 (설비의 등록절차)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등록할 경우 대상별로 설비관리감독기관이나 해당 기관의 배정 또는 이관, 인수지도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설비는 해당 부문의 감독기관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 제13조 (새로 건설한 대상에 설치한 설비의 등록)

새로 건설한 대상에 설치한 설비의 등록은 그것을 넘겨주고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인계, 인수가 끝난 후에 한다.

설비시운전에서 합격되지 않은 설비는 넘겨주거나 넘겨받을수 없다.

### 제14조 (해당 상급기관과 거래은행에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된 설비를 해당 상급기관과 거래은행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당 상급기관과 거래은행에 등록하지 않은 설비는 리용할수 없다.

### 제15조 (설비의 변경등록과 삭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소속관계 또는 구조가 변경되었거나 설비가 폐기되었을 경우 제때에 변경등록하거나 등록에서 삭제하며 그 정형을 해당 부문의 감독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 (설비실사위원회 조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수량과 기술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비실사를 하여야 한다.  
설비실사는 설비실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진행한다.

**제17조 (정기실사와 총실사)**

설비실사는 정기실사와 총실사로 나누어 한다.  
정기실사는 분기에 1차, 총실사는 년간에 1차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설비에 대한 립시실사를 할수 있다.

**제18조 (설비실사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실사하는 경우 수량의 증감과 기술상태 같은 것을 실비등록대장, 재정회계등록대장과 정확히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설비실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이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19조 (설비실사정형의 장악과 보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실사과정에 등록하지 않은 설비, 분실한 설비, 못쓰게된 설비, 놓고있는 설비 같은 것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분기설비실사자료는 해당 상급기관에, 연간설비실사자료는 해당 기관을 통하여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 제3장 설비의 운전과 점검보수

**제20조 (설비운전과 점검보수의 기본요구)**

설비의 운전과 점검보수는 설비를 안전하게 가동시키며 그 기술상태를 검사하고 불량개소를 제때에 퇴치하는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운전과 점검보수를 바로하여 설비사고를 없애며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21조 (설비운전자격)**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능공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기술기능을 원만히 갖춘 운전공이 설비를 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열 및 내압설비와 룰전설비 같은것의 운전은 해당한 자격을 받은 운전공만이 한다.

**제22조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로동안전규정의 준수)**

설비운전공은 설비의 운전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로동안전규정과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종류와 특성에 맞게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로동안전규정을

만들어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 (로동안전원 배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기능과 책임성이 높은 일군을 로동안전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로동안전원은 설비의 가동상태를 정상적으로 살피며 사고요소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4조 (설비배치와 리용률제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용도와 능력에 맞게 그것을 배치하고 리용률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설비배치는 기술적조건과 안전조건이 보장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 (설비경력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별로 경력서를 만들어놓아야 한다.

설비경력서에는 설비평정, 정밀도검사, 기름주기, 구조변경, 대보수, 중보수, 소보수, 설비리용정형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 (설비의 점검보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계획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설비의 보수는 소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한다.

설비보수에는 쓸수 있는 다른 설비의 부속품을 떼내어 리용할수 없다.

**제27조 (설비보수자금)**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계획적으로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재정은행기관은 설비대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설비보수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28조 (설비보수의 질과 기일보장 및 보고서작성제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앞선 보수방법을 받아들여 설비보수의 질을 높이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수한 열 및 내압설비, 료전설비 같은 설비는 해당 전문기술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비보수가 끝나면 설비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급기관에 내야 한다.

**제29조 (설비점검검열의 날 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설비평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일군들로 설비평정심사 위원회를 조직하고 설비의 능력과 정밀도, 기술상태와 중요부분품들을 검토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30조 (설비에 대한 평정)**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설비평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일군들로 설비평정심사



위원회를 조직하고 설비의 능력과 정밀도, 기술상태와 중요부분품들을 검토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31조 (설비의 갱신)**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설비를 끊임없이 현대화하고 장비수준을 개선하여야 한다.

중요설비의 구조를 고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합의한 기술합의문건과 설계도면, 구조 변경신청서를 상급기관 또는 설비관리감독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설비사고의 심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사고가 생겼을 경우 제때에 설비사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하여야 한다.

설비사고심의는 기술감정결과에 근거하여 사고의 원인과 책임한계를 밝히고 사고복구대책을 세우며 책임있는 일군에게 해당하는 제재를 주는 방법으로 한다.

사고심의결과는 해당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설비의 조절과 폐기

**제33조 (설비의 조절과 폐기의 기본요구)**

설비를 조절하고 폐기하는 것은 설비의 리용률을 높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가동정형을 료해하고 실리의 요구에 맞게 조절하며 쓸수 없는 것은 제때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34조 (설비의 조절방법)**

설비관리감독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리용범위를 과학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쓸수 있게 조절하여야 한다.

설비의 조절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빌려주거나 이관, 인수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한다. 설비를 빌려주거나 이관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설비의 빌려주기)**

설비를 빌려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빌려쓰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그것을 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설비경력서와 기술관리문건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상급기관에 등록된 중요설비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비를 빌려주는 기간은 1년을 넘을수 없다.

**제36조 (비법적인 설비빌려주기와 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설비는 공민에게 빌려줄수 없다.

공민은 승인되지 않은 설비를 가지고있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에 등록하고 리용할수 없다.

**제37조 (설비이관, 인수합의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넘겨주거나 넘겨받으려 할 경우 설비이관, 인수합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상급기관 또는 설비관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설비이관, 인수합의신청서에는 설비명, 등록가격, 설비이관, 인수의 목적과 내용 같은 것을 밝히고 설비를 넘겨주고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공민을 적어야 한다.

**제38조 (설비이관, 인수합의지도서의 발급)**

설비이관, 인수합의신청서를 받은 상급기관과 설비관리감독기관은 그것을 제때에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적으로 중요한 설비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설비이관, 인수가 승인된 경우에는 설비이관, 인수합의지도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 (국가적조치에 따르는 설비동원)**

국가적조치에 따르는 설비동원은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이 발급한 설비이관, 인수합의지도서에 따라 한다.

**제40조 (설비의 넘겨주기)**

설비이관, 인수합의지도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한 기간안으로 설비를 넘겨주고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를 넘겨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넘겨주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고정재산이관, 인수조서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41조 (비법적인 설비교체, 설비파손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넘겨주는 경우 다른 설비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넘겨주는 설비에서는 부속품, 공구, 지구 같은 것을 떼낼수 없다.

**제42조 (몰수한 설비의 배정)**

몰수한 설비의 배정은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설비를 몰수하였을 경우 몰수조서와 함께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 또는 내각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43조 (설비의 폐기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낡고 리용전망이 없는 설비를 제때에 폐기시켜야 한다. 이 경우 설비폐기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설비폐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경유를 받아 상급기관 또는 설비관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설비폐기신청서에는 설비의 기술상태와 폐기리유, 쓸수 있는 부대설비 및 부분품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44조 (설비폐기신청에 대한 승인)**

해당 상급기관과 설비관리감독기관은 설비폐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정해진 기간안으로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적으로 중요한 설비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 (폐기설비의 처리)**

설비관리감독기관과 해당 상급기관은 설비의 폐기를 승인한 경우 쓸수 있는 부대설비나 부품 같은 것을 용도에 맞게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기되는 설비에서 쓸수 있는 부대설비나 부품같은 것을 해당 상급기관 또는 설비관리감독기관이 정해준대로 회수하여 리용하여야 한다.

설비의 폐기로 나오는 파철과 유색금속의 처리는 해당 법규에 따라 한다.

## 제5장 설비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6조 (설비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설비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설비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7조 (설비관리정형에 대한 료해)**

설비관리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설비를 빠짐없이 장악하며 설비의 감독과 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설비관리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관리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8조 (설비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설비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설비관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설비관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설비관리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9조 (설비운영의 중지와 벌금)**

기술상태를 불량하거나 사고위험성이 있는 설비를 운영하거나 용도와 능력에 맞지 않게 운전 자격이 없는 운전공이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그 운영을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50조 (설비회수)**

설비를 사장시켰거나 제때에 넘겨주지 않거나 비법적으로 넘겨주고 받았거나 빌려주었을 경우에는 회수한다.

**제51조 (손해변상)**

설비를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변상시킨다.

**제52조 (설비의 몰수)**

등록하지 않았거나 비법적으로 구입하여 리용하거나 팔고산 설비, 사고를 일으킨 료전설비 같은 것은 몰수한다.

**제5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설비관리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              |        |                              |
|--------------|--------|------------------------------|
| 주체88(1999)년  | 4월 9일  |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호로 채택            |
| 주체90(2001)년  | 5월 17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14호로 수정보충 |
| 주체98(2009)년  | 8월 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6호로 수정보충  |
| 주체99(2010)년  | 4월 6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8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4(2015)년 | 6월 25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53호로 수정보충  |
| 주체110(2021)년 | 9월 29일 |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2호로 수정보충         |

## 제1장 인민경제계획법의 기본

### 제1조 (인민경제계획법의 사명)

인민경제계획은 경제발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한 당의 지령이고 국가의 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은 인민경제계획의 작성과 시달, 수행과 그 총화에  
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민경제계획화란 인민경제계획을 세우고 그 수행을 조직지도하는 사회주의국가의 중  
요한 경제조직자적기능과 활동이다.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는 계획작성과 시달, 계획수행조직과 지도, 총화 등이 포함된다.
2. 국가계획기관이란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전문으로 맡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가계획기관에는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지방계획기관이 속한다.

### 제3조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자립경  
제, 계획경제이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이다.

국가는 자력갱생의 정신을 구현하여 자립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인민생활  
을 안정향상시킬수 있도록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

### 제4조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서 균중로선관철원칙)

인민경제계획을 생산자대중과 토의하여 세우고 작성된 계획을 생산자대중자신의것으로 만드  
는것은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의 중요원칙이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서 균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생산자대중의 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한다.

**제5조 (인민경제계획작성의 근본원칙)**

인민경제계획을 바로세우는것은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 조건이다.

국가는 당의 로선과 정책에 립각하고 사회주의경제법칙과 현실적조건을 옳게 타산하여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인민경제계획을 세워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내도록 한다.

**제6조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원칙)**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사회주의경제계획화체계이며 방법이다.

국가는 인민경제에 대한 계획화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계획화의 유일성을 보장하며 계획화 방법을 혁신하여 계획을 세부적으로 맞물리도록 한다.

**제7조 (인민경제계획규률강화원칙)**

인민경제계획규률을 강화하는것은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담보이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의 법적, 지령적성격을 고수하며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엄격히 총화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도록 한다.

**제8조 (인민경제계획의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계획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 인민경제계획사업을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9조 (법의 적용대상)**

이법은 인민경제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 제2장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시달

**제10조 (인민경제계획작성에 나서는 기본요구)**

인민경제계획작성에서는 다음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경제사업의 객관적조건과 생산가능성, 잠재력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세워야 한다.
2. 인민경제부문별, 기업소별, 지표별생산능력을 장악, 평가하고 해당 단위의 실태와 경제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담보성있고 집행력있게 세워야 한다.
3. 내부예비를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게 동원적으로 세워야 한다.
4. 경제부문별사이, 기업체들사이에 생산적연계와 협동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는 원칙에서 선후차를 명백히 갈라 혁신적으로 세워야 한다.
5. 수요와 공급간의 균형을 현물량적으로만이 아니라 가치적으로 정확히 담보할 수 있게 세워야 한다.

6. 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할 수 있게 세워야 한다.
7. 경제적효과성을 높이고 실리를 보장할수 있게 세워야 한다.
8. 현존생산능력을 정비, 보강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적극 추동할수 있게 세워야 한다.
9. 국가가 보장할 몫과 기업소가 자체로 해결할 몫을 밝혀 세워야 한다.

**제11조 (전망계획과 현행계획)**

인민경제계획은 전망계획과 현행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전망계획은 경제발전방향과 총적목표, 기본과업 같은것을 규정하여 세운다.

현행계획은 전망계획에 기초하여 년도별로 나누어 세운다.

**제12조 (인민경제계획작성사업의 조직)**

인민경제계획의 작성은 경제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작성을 위한 조직계획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 계획작성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13조 (계획기준의 제정)**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작성에 필요한 노동정량, 물자소비기준, 자금지출기준 같은 계획기준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인민경제계획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작성을 위하여 계획기준과 생산 및 경영 실태,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추세, 자연부원상태, 인구수 같은 기초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통계기관, 재정기관, 은행기관, 노동행정기관, 가격기관과 해당 기관은 인민경제계획작성을 위하여 국가계획기관이 요구하는 기초자료를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기초자료를 준비하지 않고는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할수 없다.

**제15조 (계획정보자료기지의 구축)**

국가계획기관은 현대적인 정보기술수단을 받아들이고 계획정보자료기지를 구축하여 계획화 사업에 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인민경제계획지표의 등록)**

인민경제계획은 중앙계획지도기관에 등록된 지표에 따라 세운다.

새로운 지표를 계획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단위와 지표분담에 맞게 그것을 상급기관 또는 해당 지방계획기관을 거쳐 중앙계획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 (인민경제계획에 반영할수 없는 지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맞물리지 못하였거나 과학기술심의를 받지 않은 지표, 승인된 설계

문건이 없는 지표 같은것은 인민경제계획에 반영할수 없다.

**제18조 (인민경제계획지표의 분담)**

중앙계획지도기관은 인민경제계획지표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적리익을 우선시하면서 지방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창발성을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지표, 국가적으로 반드시 틀어줘야 할 중요지표는 중앙지표로, 그 밖의 지표는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분담하여야 한다.

**제19조 (기업체몫의 규정)**

중앙계획지도기관은 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재정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지표별에 따르는 기업체몫을 합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제20조 (인민경제계획의 맞물림)**

인민경제계획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분담된 지표의 수요와 원천을 맞물리는 방법으로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인민경제계획의 맞물림은 주문계약의 방법으로도 할수 있다.

**제21조 (예비수자의 작성)**

인민경제계획의 작성은 예비수자를 묶는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비수자를 작성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제22조 (통제수자의 작성)**

국가계획기관은 예비수자를 검토하고 국가적요구와 원료, 자재보장가능성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통제수자를 작성한 다음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제23조 (균중토의)**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초안작성을 위한 균중토의안을 만들고 그에 따라 균중토의를 하여야 한다.

중요지표에 대하여서는 균중토의단계에서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몫과 자체로 보장할 몫을 타산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제24조 (인민경제계획초안의 작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제수자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인민경제계획초안을 작성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은 제기된 인민경제계획초안을 정확히 검토하고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초안을 작성하여 내각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5조 (인민경제계획의 심의제기)**

내각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작성된 인민경제계획초안을 최고인민회의 또는 지방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각과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토의하여야 한다.



**제26조 (인민경제계획의 심의, 승인)**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방의 인민경제계획은 지방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계획과 그 조절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지방의 인민경제계획은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27조 (인민경제계획의 시달)**

국가계획기관은 승인된 인민경제계획을 시기별, 지표별로 구체화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내려보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인민경제계획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화하여야 한다.

**제28조 (인민경제계획의 변경금지)**

심의, 승인된 인민경제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할수 없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달된 인민경제계획범위안에서 계획을 변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표분담에 따라 정해진 기간안에 내각 또는 국가계획기관,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인민경제계획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된 인민경제계획을 제때에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을 등록하지 않고는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받을수 없다.

**제30조 (인민경제계획의 대조)**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대조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민경제계획의 시달정형을 료해하고 부족점을 바로잡으며 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장 인민경제계획의 수행

**제31조 (인민경제계획수행의 기본요구)**

인민경제계획은 법적과제이며 그것을 정확히 수행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의 목적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바로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32조 (인민경제계획과 그 수행방도를 알려줄 의무)**

인민경제계획수행의 직접적담당자는 생산자대중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자들에게 인민경제계획과 그 수행방도를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3조 (계약의 체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정확히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계획에 기초한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이 시달된 때부터 정해진 기간안에 맺으며 주문계약은 년 중 수시로 맺을수 있다.

**제34조 (인민경제계획의 월별 분할)**

해당 기관은 분기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월별로 분할하여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월별 분할은 분기인민경제계획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35조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사업조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업조직을 짜고들어야 한다.

**제36조 (인민경제계획수행준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기능공양성, 설비점검보수, 원료, 자재준비, 설계 및 기술공정작성, 기술장비준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제정, 시작품생산 같은 생산 준비와 기술준비를 선행하여야 한다.

**제37조 (인민경제계획수행의 선후차)**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중요대상과 수출계획에 예견된 제품을 정한 기일안으로 먼저 생산하여야 한다.

**제38조 (협동생산조직)**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협동생산조직을 바로하여 협동생산계획에 예견된 제품을 정해진 기일안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 (인민경제계획수행에 필요한 조건보장)**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기관, 은행기관,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인민경제계획수행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기술자로 같은것을 계획과 계약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설비, 자재는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40조 (과학기술력제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의 인재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여 생산정상화와 개건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 제품의 질제고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41조 (내부예비의 동원)**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여 인민경제계획수행에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야 한다.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여유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동원, 조절하여야 한다.

**제42조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의 장악)**

내각과 해당 기관은 생산지휘체계를 바로세우고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그 수행대책을 제때에 취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상급기관과 국가계획기관, 통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인민경제계획의 수행총화

**제43조 (인민경제계획수행총화의 기본요구)**

인민경제계획수행총화를 바로하는것은 계획규률을 강화하고 인민경제계획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에 대한 총화를 생산을 추동하고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에서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44조 (인민경제계획수행총화주기)**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은 월별, 분기별, 상반기, 년간으로 총화한다.

기업소와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주별, 순별로도 총화하여야 한다.

**제45조 (인민경제계획수행총화준비)**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수자에 근거하여 책임한계를 정확히 따질수 있게 인민경제계획수행총화를 위한 준비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물지표별생산계획과 과학기술발전계획, 재자원화계획, 수입총액계획, 수익성계획, 순소득계획 같은 항목별 계획수행자료를 생산단위별로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지난 계획기간 계획수행자료와 대비적으로 분석총화할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제46조 (예비총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계획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민경제계획수행에 대한 예비총화를 하여야 한다.

예비총화는 계획수행전망을 예비적으로 분석총화하고 남은 기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방법으로 한다.

**제47조 (완전총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계획기간이 끝난 다음 인민경제계획수행에 대한 완전총화를 하여

야 한다.

완전총화는 계획수행결과를 항목별, 단위별로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계획수행과정에 나타난 성과와 결함, 경험과 교훈을 엄격히 분석총화하며 책임한계를 명백히 규정하고 다음 시기 계획수행을 위한 정확한 해결책을 찾는 방법으로 한다.

**제48조 (인민경제계획수행의 평가기준)**

인민경제계획수행의 평가기준은 통계기관에 등록된 계획이다.

통계기관은 등록된 계획과 장악된 계획수행실적으로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평가한 다음 그 정형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49조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의 전달, 공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들에게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정기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은 공시할수 있다.

**제50조 (인민경제계획수행실적제외)**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으로 계획에 없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설, 봉사를 한 경우에는 인민경제계획실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제51조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

인민경제계획수행총화결과에 따라 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에게는 해당하는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를 한다.

## 제5장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2조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계획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한다.

**제53조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계획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은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며 인민경제계획을 바로세우고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54조 (인민경제계획화방법의 개선)**

내각과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계획화방법을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55조 (계획일군양성)**

해당 기관은 계획일군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능력있는 계획일군을 체계적으로, 전망성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제56조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검찰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검찰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인민경제계획작성 및 시달정형과 계획수행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보장정형, 계획 및 계약규률준수정형, 계획수행총화 및 실적보고정형 등에 대한 법적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7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직권을 악용하여 인민경제계획작성, 시달에서 룡간을 부리며 이중성과 불공정성을 조성하는 행위
2. 로력과 자금, 자재보장대책이 없이 인민경제계획을 망탕 세워 시달하는 행위
3. 수요와 공급간의 균형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계획수지를 억지로 맞추는 행위
4. 이미 시달한 인민경제계획을 조절한다고 하면서 승인없이 추가계획을 망탕 세워 시달하는 행위
5. 인민경제계획에 없는 제품생산과 건설, 봉사를 하는 행위
6. 인민경제계획에 반영된 전력, 설비, 자재, 원료를 생산하여 수요자단위에 보장하지 않으면서 기업체뭇을 초과소비하거나 비법처분하는 행위
7.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계획수행과 관련이 없는 타사업에 동원시키는 행위
8.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하는 행위
9.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를 부리면서 국가적인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 불응하거나 도전하는 행위

**제58조 (민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보상, 위약금,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제59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50만~15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1.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계약을 제때에 맺지않았거나 리행하지 않아 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협동생산규률을 어겨 련관단위의 생산과 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인민경제계획에 반영된 전력, 설비, 자재, 원료를 생산하여 수요자단위에 보장하지 않으면서 기업체몹을 초과소비하거나 비법처분하였을 경우

**제60조 (중지처벌)**

인민경제계획에 없는 생산, 건설, 봉사를 하거나 계획에 맞물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계획수행과 관련이 없는 타사업에 동원시켰을 경우 해당 생산 또는 건설, 봉사를 중지시킨다.

**제61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인민경제계획작성을 위한 계획기준제정과 등록, 기초자료준비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2. 기업체몹을 합리적으로 정해주지 않아 생산정상화와 확대재생산, 종업원생활조건보장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분담된 계획지표를 정확히 맞물리지 않았거나 인민경제계획을 정해진 기간안에 시달하지 않았을 경우
4. 직권을 악용하여 인민경제계획작성, 시달에서 룡간을 부리며 이중성, 불공정성을 조성하였을 경우
5. 이미 시달한 인민경제계획을 조절한다고 하면서 승인없이 추가계획을 망탕 세워 시달하였을 경우
6. 수요와 공급간의 균형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계획수자를 억지로 맞추거나 균중토의와 로력, 자금, 자재보장대책이 없이 인민경제계획을 망탕 세워 시달하였을 경우
7. 인민경제계획을 승인없이 변경시켰을 경우
8. 인민경제계획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9. 과학기술심의를 받지 않은 지표, 승인된 설계문건이 없는 지표를 인민경제계획에 반영하였을 경우
10. 인민경제계획이 없이 생산, 건설, 봉사를 한 경우
11. 계약을 바로 체결하지 않았거나 리행하지 않아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2.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조직과 지휘, 준비를 바로하지 않아 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3.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기술자료 같은것을 계획과 계약대로 보장하여주지 않아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4.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으로 지표별계획에는 상관없이 생산하기 쉽고 수입이 높은 제품만 생산하여 기본생산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5. 중요대상과 수출계획에 예견된 제품의 생산보장기일을 어겼을 경우

16. 협동생산규율을 어겨 련관단위의 생산과 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7.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지 않아 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 경우
18.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제때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하였을 경우
19. 기업체몹을 초과소비하거나 비법처분하였을 경우
20.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계획수행과 관련이 없는 타사업에 동원시켰을 경우
21.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에 대한 총화와 평가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22.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 대한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23.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를 부리면서 국가적인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 불응하거나 도전하였을 경우

앞항 1~23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62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재관리법

주체99(2010)년 1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15호로 채택  
주체104(2015)년 9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55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자재관리법의 기본

### 제1조 (자재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재관리법은 자재의 공급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자재의 정의)

이 법에서 자재는 생산과 건설에 쓰이는 설비, 원료, 연료, 공구, 지구, 반제품, 시약 같은것을 말한다.

### 제3조 (자재의 공급원칙)

국가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자재를 우가 책임지고 아래에 내려다주는 자재공급체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4조 (자재의 리용원칙)

자재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자재의 소비를 줄이고 경제적효과성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재의 리용분야를 바로 정하고 그 리용률을 높이도록 한다.

### 제5조 (자재관리의 현대화원칙)

국가는 자재관리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받아들여 자재관리사업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 제6조 (자재절약의 대중화원칙)

자재를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숭고한 애국심의 발현이다.

국가는 대중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자재절약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 제7조 (자재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원칙)

국가는 자재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하면서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창발성을



높여 자재관리를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8조 (적용대상)**

이 법은 인민경제계획과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주문과 계약을 통하여 자재를 주고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 제2장 자재의 공급

**제9조 (자재공급계획의 작성)**

중앙지표에 대한 자재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기타 지표에 대한 자재공급계획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세운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맞게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자재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0조 (자재공급계약의 체결)**

자재공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자재의 세부적인 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자재공급계약을 맺어야 한다.

자재의 추가적인 수요에 대하여서는 지표분담에 관계없이 기관, 기업소, 단체호상간 합의하여 주문, 교류, 판매계약을 맺을수 있다.

중앙지표에 대한 자재공급계약은 기타 지표에 대한 자재공급계약보다 먼저 맺는다.

**제11조 (자재공급계획의 체결시 합의사항과 효력)**

자재공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공급계획을 맺을 경우 자재의 품명, 규격, 품질, 수량, 값과 공급기간, 자재를 주고받는 방법, 포장방법, 거래은행 같은 사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밝힌 다음 공인을 찍고 책임일군이 수표하여야 한다.

공인과 책임일군의 수표가 없는 계약서는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12조 (자재공급의 선후차)**

자재공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공급의 선후차를 옳게 정하고 그에 맞게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지표를 생산하는 중요단위의 자재를 먼저 공급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13조 (자재의 공급절차)**

자재공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공급계획에 기초한 자재공급계약과 주문, 교류, 판매계약에 따라 자재를 생산하여 계약을 맺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재보유기준보장)**

자재공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수요자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

산 및 건설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해진 자재보유기준과 계약내용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재의 수송 또는 현지공급)**

자재공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통운수기관과 화물수송계약을 맺고 자재를 제때에 실어보내야 한다.

거래관계, 자재의 수량, 특성 같은 것을 고려하여 자재를 현지에서 직접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할수도 있다.

**제16조 (자재의 검수)**

자재의 검수는 자재를 공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받은 자재에서 수량부족이나 불량 같은 것이 생겼을 경우 공급자 또는 해당 당사자의 립회밑에 그 원인을 해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있는자로부터 조서를 받을수 있다.

**제17조 (공급받은 자재의 대금결제)**

자재를 공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금결제를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재의 조절공급)**

자재공급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사장되어있는 자재, 전람회 또는 전시회에 내놓은 자재, 해당 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재, 회수 또는 몰수한 자재, 계획변동으로 남은 자재 같은 것을 장악하고 필요한 단위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자재포장용기의 반환)**

자재를 공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포장을 해체한 경우 정해진데 따라 자재를 포장하였던 용기를 자재공급기관에 제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3장 자재의 리용

**제20조 (자재의 리용률제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소비계획과 자재의 용도에 맞게 자재를 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경제적타산을 바로하고 앞선 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여 자재의 리용률을 최대한을 높여야 한다.

**제21조 (자재소비기준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의 리용에서 정해진 소비기준을 정확히 지키며 자재소비기준을 부단히 갱신하여야 한다.

자재소비기준을 갱신하였을 경우에는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새 기술도입)**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효율이 높은 설비와 기술공정을 적극 받아들여 자재를 종합적으로 리용하며 자재소모를 줄이고 그것을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효율이 낮은 설비와 기술공정을 제때에 개조하거나 갱신하여야 한다.

**제23조 (부산물, 폐기폐설물, 고자재의 회수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를 리용하는 과정에 나오는 부산물, 폐기폐설물, 고자재 같은 것을 망탕 버리지 말고 재생하여 리용할수 있는 것은 모조리 회수리용하여야 한다.

**제24조 (물자교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공급계획에 맞물리지 못한 자재, 모자라거나 없는 자재 같은 것을 정해진 물자교류질서에 따라 해결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에 리용할수 있다.

**제25조 (국내자재의 리용률제고)**

수입자재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 수입자재의 리용률을 줄이고 국내자재의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제26조 (경제적공간의 적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리용에 대한 계산을 정확히 하며 가격, 원가, 로동보수 같은 경제 적공간을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27조 (자재소비정형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소비정형을 등록대장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재의 총소비량과 품종, 규격, 재질에 따르는 소비량, 제품단위당 소비량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8조 (자재보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보관책임자를 정하고 자재를 책임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는 그 물리화학적특성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시설을 꾸리고 종류별, 구역별, 재질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 (자재의 실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월별, 분기별로 자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비정기실사도 할수 있다.

**제30조 (자재의 출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를 출고전표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고 출고하여야 한다.

자재출고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1조 (자재소비정형의 장악과 보고)**

자재공급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소비정형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월자재소비정형을 자재공급기관과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자재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2조 (자재관리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자재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자재공급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자재공급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재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 제33조 (자재관리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노동행정기관은 자재관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금 같은 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 제34조 (자재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자재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자재공급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자재공급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자재관리법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35조 (민사적책임)

정당한 리유없이 자재공급계약 또는 화물수송계약, 주문, 교류, 판매계약을 리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약금 또는 연체료 같은 것을 물린다.

자재의 량비, 체화, 사장, 부패변질, 분실, 파손과 같은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36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자재공급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아 생산과 건설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자재공급계획체결과 리행질서를 어겨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자재공급계획이 없거나 자재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단위에 자재를 공급하거나 정당한 리유없이 자재공급계약을 맺어주지 않아 경제사업에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
4. 자재의 대금결제질서를 어기었을 경우
5. 자재소비기준을 어기고 자재를 량비하여 손해를 주었을 경우
6. 자재리용과정에 나오는 부산물, 폐기폐설물, 고자재 같은것의 회수리용체계를 세우지 않아 자재를 량비하였을 경우

7. 물자교류질서를 어기고 마음대로 자재를 주고받았을 경우
8. 자재보관질서를 어겨 자재를 부패, 변질, 도난, 사장시켰을 경우
9. 자재를 비법적으로 개인들에게 넘겨주었거나 팔았을 경우
10. 이밖에 자재관리질서를 어겼을 경우

**제37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36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산집행법

주체110(202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7호로 채택

## 제1장 재산집행법의 기본

### 제1조 (재산집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산집행법은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국가와 사회공동리익의 우선보장원칙)

국가는 재산집행에서 국가와 사회공동의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 제3조 (법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원칙)

국가는 재산집행을 법에 근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제4조 (교양과 강제의 배합원칙)

국가는 재산집행에서 재산집행당사자들에게 대한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강제를 배합하도록 한다.

### 제5조 (재산집행에서 독자성, 신속성, 효율성보장원칙)

국가는 재산집행에서 독자성과 신속성, 효율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6조 (법의 적용대상, 다른 법과의 관계)

이 법은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 재결, 결정, 공증을 받은 채권의 집행에 적용한다.

공화국재판소에 제기된 외국재판소나 중재기구가 내린 판결, 판정, 재결에 대한 집행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재산집행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일반규정

### 제7조 (재산집행기관의 정의)

재산집행기관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재산에 대한 집행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다.

#### 제8조 (재산집행관할)

재산집행은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을 내린 재판소에 소속된 재산집행기관이나 그와 같은 급의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재산집행기관이 한다.

대외경제중재기관의 재결, 결정에 대한 집행은 의무자의 소재지 또는 해당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도급재산집행기관이 하며 공증을 받은 채권에 대한 집행은 해당 재산이 있는 곳이나 채무자의 거주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산집행기관이 한다.

#### 제9조 (재산집행의 의뢰)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나 집행할 재산이 관할밖에 있는 경우 해당 재산집행기관에 집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집행의뢰서를 해당 재산집행기관에 보내고 그에 대하여 권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의뢰받은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의뢰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의무적으로 재산집행을 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 제10조 (재산집행기관의 권한)

재산집행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집행문, 집행통지서를 발급하거나 재산담보처분판정을 비롯한 재산집행과 관련한 판정을 내린다.
2.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한다.
3.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
4. 의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할수 있다.
5. 재산집행당사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할수 있다.
6. 집행한 재산에 대한 가격평가를 의뢰할수 있다.
7. 집행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의견을 처리한다.
8. 행정처벌을 직접 주거나 해당 기관에 위법 및 범죄자료를 넘겨준다.

#### 제11조 (재산집행당사자의 권리)

재산집행당사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2. 권리자는 재산집행신청을 포기할수 있다.
3. 재산집행의 중지 또는 집행할 재산의 범위변경을 신청할수 있다.
4. 의무자는 집행할 재산의 순서를 정할수 있다.

#### 제12조 (재산집행당사자의 의무)

재산집행당사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집행의 근거문서에 지적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담보처분한 재산을 자의대로 처분하거나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재산집행과 관련한 재산집행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4. 그밖에 재산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3조 (재산집행당사자변경신청의 처리)**

재산집행과정에 재산집행당사자의 민사상권리와 의무가 법이나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재산집행당사자 또는 제3자는 재산집행기관에 당사자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집행기관은 10일안으로 신청을 심리하고 판정으로 승인 또는 거부하여야 한다.

재산집행당사자변경신청이 판결, 판정, 재결, 결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 재산집행기관은 2일안으로 해당 신청문건을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을 내린 재판소 또는 중재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14조 (재산집행사건의 조사를 위한 심문)**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집행당사자 또는 재산집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할수 있다. 이 경우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제15조 (재산집행의 근거문서)**

재산집행의 근거문서에는 확정된 판결서, 판정서, 재결문, 결정서, 공증을 받은 채권확인서와 그에 따라 발급된 집행문, 집행통지서가 속한다.

**제16조 (재산집행의 대상)**

재산집행의 대상에는 재산집행의 근거문서에 지적된 의무자의 재산이나 의무리행행위가 속한다.

**제17조 (재산집행의 제외대상)**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서는 집행할수 없다.

1. 의무자단위 또는 공민인 의무자나 그의 가정성원이 국가로부터 선물받은 재산
2. 의무자와 그가 부양하고있는 가족의 한달 식량과 생활비, 농장원에 대해서는 다음 분배 받을 때까지의 식량과 생활비, 소농기구와 부림소
3. 사업과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도구, 의류품, 부역세간, 위생용품, 어린이용품과 장학금, 사회보험금, 년금
4. 의무자나 그가 부양하고있는 가정성원이 신체기능장애와 관련하여 리용하는 보조공구, 의약품
5. 인민경제계획수행과 관련된 생산건물이나 국가적조치를 받아 건설한 건물, 국가의 자금으로 마련된 건물, 룬전기재, 설비, 중요물자생산과 관련된 원료와 자재
6.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조약이나 국제관례에 따라 제외하게 되어있는 재산과 우리 나



라 주재 국제기구, 다른 나라 대표부와 그 성원의 재산

#### 제18조 (재산집행의 중지사유)

재산집행기관은 다음의 경우 판정으로 재산집행을 중지한다.

1. 재산집행당사자가 사망하였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었을 경우
2. 의무자가 권리자의 동의하에 담보를 제공하면서 재산집행의 중지를 신청하였을 경우
3. 재산집행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재산집행의 중지를 신청하였을 경우
4. 재산집행에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집행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하였을 경우
5. 재산집행의 대상이 재판소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리하고있는 사건과 관련되어있거나 담보처분되었을 경우
6. 의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
7. 의무자에게 재산집행을 계속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8. 집행중에 있는 판결, 판정에 대하여 비상상소, 재심이 제기되었을 경우
9. 재판소가 대외경제중재기관이 내린 재결에 대한 취소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10. 그밖에 재산집행을 계속할수 없는 사유가 제기되었을 경우

#### 제19조 (재산집행중지의 해제)

재산집행기관은 이 법 제18조의 중지사유가 없어진때부터 10일안으로 재산집행당사자의 신청 또는 집행기관의 결심에 따라 재산집행중지를 해제하는 판정을 내리고 재산집행을 계속한다.

#### 제20조 (재산집행의 기각사유)

집행기관은 다음의 경우 재산집행사건을 기각한다.

1.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이나 공증을 받은 채권이 무효로 되었을 경우
2. 재산집행신청시효기간이 지난 후 재산집행을 신청하였을 경우
3. 공민인 권리자가 재산집행에 대한 신청을 포기하였을 경우
4. 사망한 의무자가 진 의무를 부담할 자가 없을 경우
5. 부양료, 양육비청구사건에서 부양받는자나 양육받는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6. 그밖에 재산집행을 전혀 할수 없게 되었을 경우

#### 제21조 (재산집행의 종결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재산집행사건을 종결한다.

1. 집행문에 지적된 의무자의 의무가 리행되었을 경우
2. 공민인 권리자와 의무자사이에 화해가 성립되고 그대로 리행되었을 경우
3. 재산집행사건이 기각되었을 경우

#### 제22조 (재산집행기간)

재산집행기간은 집행문이 발급된 때부터 2개월까지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간 연장할수 있다.

#### 제23조 (재산집행사건에 대한 감시)

재산집행사건에 대한 감시는 해당 검찰기관의 검사가 한다.

검사는 재산집행사건에 대하여 판정서, 집행문, 집행통지서등본 등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그 과정을 감시한다.

집행판사, 집행원은 검사의 감시에 의견이 있을 경우 상급검찰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 제24조 (재산집행비용)

재산집행당사자는 재산집행비용을 재산집행기관에 내야 한다.

재산집행비용에는 수수료와 재산집행수속비용이 속한다.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당사자에게 고려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재산집행비용을 감소, 면제시킬수 있다.

## 제3장 재산집행신청과 집행문발급

#### 제25조 (재산집행신청권리)

권리자는 의무자가 판결서, 판정서, 재결문, 결정서 또는 공증을 받은 채권확인서에 지적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집행기관에 재산집행을 신청할수 있다.

#### 제26조 (재산집행신청문건의 제출)

권리자는 재산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집행신청서와 함께 판결서, 판정서, 재결문, 결정서의 등본 또는 공증을 받은 채권확인서, 판결확정통지서를 재산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집행신청서에는 권리자의 명칭(이름), 신청리유, 의무자의 명칭(이름) 기타 사항을 밝히고 신청자의 수표와 도장을 찍는다.

#### 제27조 (재산집행신청시효)

재산집행신청은 판결, 판정이 확정되었거나 재결, 결정이 내려진 날 또는 공증을 받은 채권확인서의 채무리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까지 할수 있다.

재산집행신청을 할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 제28조 (재산집행신청문건의 검토)

재산집행신청문건을 접수한 재산집행기관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재산집행의 근거로 되는 법적문서가 효력이 있는가
2. 재산집행신청시효가 지나지 않았는가
3. 재산집행당사자가 적격자인가

4. 의무자가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는가

5. 재산집행관할을 어기지 않았는가

재산집행기관은 신청이 부당한 경우 재산집행신청문건을 접수한 때부터 10일안으로 재산집행신청을 거부하는 판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29조 (사건기록의 열람)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신청문건의 검토를 위하여 해당 민사사건이나 대외경제중재사건의 기록 또는 공증문건을 열람할수 있다.

#### 제30조 (집행문발급)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신청을 승인한 경우 10일안으로 집행문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31조 (판사, 중재원, 감사의 제의에 따르는 집행문발급)

다음의 경우에는 재산집행신청이 없어도 판사 또는 중재원, 감사의 제의에 따라 집행문을 발급할수 있다.

1. 재산을 국고에 넣을데 대한 판결, 판정을 하였을 경우
2.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청구를 승인하는 판결, 판정을 하였을 경우
3. 중재기관이 재결, 결정을 하였을 경우
4. 자녀양육비, 부양료청구를 승인하는 판결, 판정을 하였을 경우

## 제4장 재산집행의 절차와 방법

#### 제32조 (집행문등본과 집행통지서의 발송)

재산집행기관은 집행문을 발급한 때부터 2일안으로 집행문등본을 재산집행당사자와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의무자가 집행문에 지적된 자발적리행기간안에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집행과련관된 기관에 집행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 제33조 (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

재산집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의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할수 있다. 이 경우 전문일군을 인입하거나 해당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 제34조 (재산집행의 시점)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가 집행문등본을 받은 때부터 재산집행을 할수 있다. 그러나 집행문에 자발적리행기간을 지적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때부터 재산집행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날에는 재산집행을 하지 않는다.

**제35조 (재산집행의 립회)**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현장에 의무자와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 립회인 2명을 참가시켜야 한다.

의무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재산집행현장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할수 있다.

**제36조 (재산집행질서유지)**

재산집행기관은 사회안전기관에 재산집행질서유지를 의뢰하는 집행협조통지서를 보낼수 있다. 집행협조통지서를 받은 사회안전기관은 의무적으로 재산집행에 참가하여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 (재산집행시 신분제시와 조서작성)**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을 하는 경우 의무자에게 집행문과 함께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재산집행이 끝나면 재산집행조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제38조 (강제집행)**

재산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 재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판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강제집행판정을 내리고 해당 재산을 강제집행할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게 24시간안으로 알려야 한다.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의무자 또는 립회인들에게 강제집행판정서를 제시한다.

강제집행이 끝나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 (집행한 재산의 판매)**

재산집행기관은 집행한 재산을 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단위에 위탁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40조 (집행한 재산의 판매가격)**

집행한 재산의 판매가격은 재산집행당사자들이 합의한데 따라 정한다.

가격평가와 관련하여 재산집행당사자들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격기관에 의뢰하여 가격을 정한다.

**제41조 (의무자에 의한 담보처분한 재산의 판매)**

의무자는 담보처분기간안에 의무리행을 위하여 재산집행기관의 승인을 받아 담보처분당한 재산을 직접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의 판매행위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42조 (판매대금의 처리)**

집행기관은 재산을 판 경우 판매수입금에서 재산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리자에게 돌려주며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 의무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43조 (특정물에 대한 집행)**

집행할 재산이 특정물인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특정물이 파손되었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그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집행한다.

**제44조 (의무자의 돈자리에 대한 집행)**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가 자발적리행기간안에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은행에 집행통지서를 보내어 의무자의 돈자리를 동결시키거나 돈자리에 있는 의무자의 돈을 출금 또는 환치시킬수 있다.

재산집행기관은 돈자리동결이후 의무자가 의무를 리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것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5조 (저금에 대한 집행)**

재산집행기관은 공민인 의무자의 저금으로 재산집행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은행에 집행통지서와 의무자의 저금통장을 보내어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재산집행을 한다.

**제46조 (의무자의 수입에 대한 집행)**

재산집행기관은 공민인 의무자의 수입으로 재산집행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의무자가 속한 단위에 집행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집행통지서를 받은 단위는 의무자의 수입을 재산집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47조 (지적소유권에 대한 집행)**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가 소유하고있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같은 지적소유권의 재산적 권리를 집행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집행통지서를 보내어 재산집행을 할수 있다.

**제48조 (륄전기재에 대한 집행)**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단위가 소유한 륄전기재로 재산집행을 할수 있다.

재산집행기관은 륄전기재를 집행하거나 담보처분하려는 경우 집행통지서 또는 담보처분판정서등본을 사회안전기관에 보내야 한다.

집행통지서 또는 담보처분판정서를 받은 사회안전기관은 차경력문건, 기술검사증과 같은 해당 륄전기재와 관련한 문건과 변호판, 열쇠 등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7일안으로 재산집행기관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49조 (륄전기재의 집행취소)**

재산집행기관은 담보처분된 륄전기재가 판매되기 전이나 권리자의 재산으로 등록되기 전에 의무자가 의무를 전부 리행하였거나 해당 륄전기재의 값을 지불하는 경우 해당 판정을 취소하고 륄전기재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50조 (부동산의 집행)**

재산집행기관은 부동산을 반환해줄데 대한 권리자의 신청이 있거나 권리자의 권리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집행하거나 담보처분할수 있다.

**제51조 (담보처분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재산집행기관은 담보처분된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의무자나 제3자에게 맡길수 있다. 이 경우 관리를 맡은 의무자나 제3자는 담보처분된 부동산을 처분할수 없다.

담보처분된 부동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한다.

**제52조 (담보처분된 부동산의 이관)**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가 담보처분기간안에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권리자에게 이관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이관과 관련한 집행통지서를 부동산등록기관에 보내야 한다.

집행통지서를 받은 부동산등록기관은 집행통지서에 지적된 내용을 집행하고 그에 대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제53조 (의무리행행위에 대한 집행)**

재산집행기관은 의무리행행위에 대한 집행과 관련하여 의무자에게 집행문등본을 보내야 한다. 의무자가 집행문등본에 지적된 의무리행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해당 행위를 하게 하고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의무자에게 부담시킨다.

**제54조 (집행한 재산의 처리)**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을 한 경우 그 재산을 권리자에게 넘겨주고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 (재산집행에 대한 의견제기와 처리)**

재산집행당사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재산집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재산집행기관에 재산집행중이나 재산집행후 1개월까지의 기간안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이 경우 재산집행기관은 15일안으로 제기된 의견을 심리하고 판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재산집행기관의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재산집행당사자는 한급 높은 재산집행기관에 상소할수 있다.

## 제5장 법적책임

**제56조 (의무자의 출국제한)**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가 의무리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의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다.

의무자가 의무를 전부 리행하였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출국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7조 (재산집행을 바로하지 못한자에 대한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 집행판사, 집행원, 재산집행에 책임있는 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

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집행관사, 집행원이 이 법의 절차와 방법을 어겼을 경우
2. 재산집행에 책임있는 자가 재산집행과 관련한 통지서에 지적된 의무를 거부하였거나 태공하였을 경우
3. 그밖에 이 법에서 정한 법적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지 않았을 경우

앞항 1~3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58조** (재산집행의무를 태공한자에 대한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 의무자나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는 벌금,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2. 담보처분한 재산을 숨겼거나 손상시켰거나 자의대로 리용, 처분하였을 경우
3. 의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였을 경우
4. 고의적으로 재산담보처분표식 같은것을 떼버렸을 경우
5. 재산집행기관의 집행행위를 방해하였을 경우
6. 그밖에 재산집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앞항 1~6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59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60조** (법적제재의 처리절차)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판정으로 벌금,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줄수 있다.

다른 종류의 행정적처벌이나 형사적처벌을 주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해당 기관에 넘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계법

주체85(1996)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76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 제1장 통계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계법은 통계의 장악과 분석, 통계자료관리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정책수립과 인민경제계획화의 과학성을 담보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통계는 사회경제현상의 량적측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자료이다.  
통계자료에는 정치, 경제, 문화 발전자료와 자연부원, 국가사회재산 실태자료 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 사회주의는 정확한 통계에 기초하여서만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국가는 통계의 과학성과 객관성, 시간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 일원화통계체계는 국가통계기관인 중앙, 도(직할시), 시(구역), 군 통계기관과 통계세포인 기관, 기업소, 단체의 통계부서로 이루어진 사회주의 통계체계이다.  
국가는 통계기관과 통계세포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한다.

**제5조** 통계의 세부화는 사회주의통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세분화대된 통계지표를 가지고 사업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통계분야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성공을 받아들여 계산사무를 더욱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통계사업은 중앙통계기관이 정한 통계방법에 따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는데 맞게 통계방법을 개선하도록 한다.

**제8조** 국가는 통계사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수경제지대에서의 통계사업은 따로 정한 법규에 따라 한다.

## 제2장 통계장악

**제10조** 통계장악을 바로하는 것은 통계사업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통계장악은 통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1조** 통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계장악을 중앙통계기관이 정한 방법과 지표목록대로 하여야 한다.

지표목록에 없는 통계를 장악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통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통계장악은 통계보고와 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통계보고는 일보, 순보, 월보, 분기보, 반년보, 계절보, 년보로 하며 통계조사는 일제조사, 동시조사, 선택조사, 단일조사로 한다.

**제13조** 장악된 통계자료는 문건으로 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전기통신수단을 리용하여 낼 수도 있다.

**제14조** 통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변동정형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통계의 전면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합, 분리되었거나 조직된 경우 해당 통계기관에 등록하며 해산되면 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15조** 통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실행실적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반년별, 년별로 장악하여야 한다.

하루 인민경제계획실행 실적장악은 그날 0시부터 24시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제1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통계기관이 제정한 표준시초계산양식에 준하여 시초계산양식에 준하여 시초계산양식을 만들고 그에 맞게 통계를 장악하여야 한다.

통계를 시초계산양식으로 장악할수 없을 경우에는 객관적 실태자료를 조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장악한다.

**제1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초계산 단위, 대상, 방법과 계산문건순환절차를 합리적으로 정하며 계량사업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계량하지 않고 통계자료를 장악할수 없다.

**제18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장악된 통계 또는 그와 관련된 자료를 통계기관이 정한 날자나 시간에 내야 한다.

**제1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거짓통계보고를 하거나 장악된 통계를 고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3장 통계분석

**제20조** 통계분석을 바로하는 것은 국가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통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계분석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21조** 통계기관은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 인민경제의 균형, 국가관리실태자료 같은 것을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통계자료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22조**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통계의 분석은 중앙통계기관이 한다.  
중앙통계기관은 장악된 통계를 국가의 정책수립을 과학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분석하여야 한다.
-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과 리용정형 같은 것을 제때에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 제24조** 중앙통계기관은 사회주의건설에 도움이 될수 있게 다른 나라의 사회경제실태에 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연구분석하여야 한다.
-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사회주의건설성과의 론증, 소개선전 같은 것을 목적으로 통계를 분석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6조** 통계분석자료는 인민경제계획작성의 기초이다. 국가계획기간은 인민경제계획작성에 필요한 통계를 정확히 분석하여야 한다.
- 제27조** 대외적교류와 관련한 통계분석은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 제4장 통계자료관리

- 제28조** 통계자료는 중요기밀이다.  
통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계자료관리체계를 바로세워 기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29조** 통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계자료를 제때에 등록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통계자료의 보존기간은 중앙통계기관이 정한다.
- 제30조** 통계자료를 열람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통계자료열람신청서를 해당 통계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통계기관은 통계자료열람신청내용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 제31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승인을 받은 통계자료를 지정된 장소에서만 발취, 복사하여야 한다.  
발취, 복사한 통계자료는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줄수 없다.
- 제32조** 통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악된 통계자료를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정리된 통계자료는 국가문헌지도기관에 넘긴다.
- 제3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통계자료를 리용하는 과정에 알게된 기밀을 엄격히 지

켜야 한다.

통계기관에 보고한 통계자료는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보여줄수 없다.

**제3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계자료를 이관하거나 폐기하려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통계자료의 송달은 기요문건송달체계에 따라 한다.

## 제5장 통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조** 통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 것은 통계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통계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7조** 통계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중앙통계기관이 한다.

중앙통계기관이 통계의 장악과 분석, 통계자료관리 사업이 정확히 진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38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에 대한 평가는 해당 통계기관이 한다.

해당 통계기관은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검토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통계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은 인민경제계획실행자료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39조** 통계기관은 필요한 통계자료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계기관이 요구하는 통계자료를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40조** 해당 교육기관과 중앙통계기관은 통계일군양성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교육내용과 질을 개선하여 능력있는 통계일군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야 한다.

**제41조** 교통운수기관과 체신기관, 해당 기관은 통계사업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통계총화기간, 인민경제계획실행평가기간에는 통계일군을 다른 사업에 동원시킬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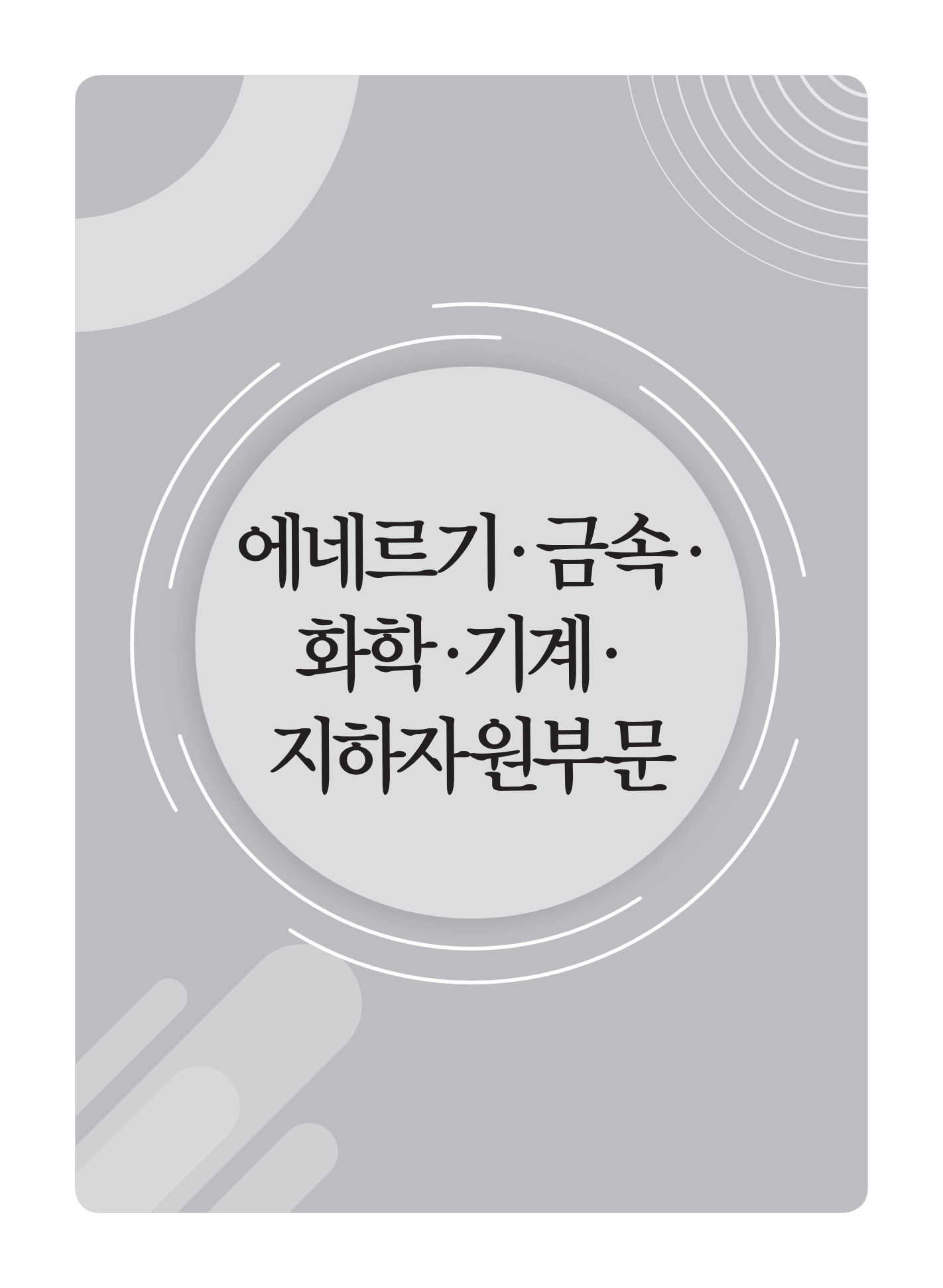
**제42조** 통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통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통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통계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3조** 통계자료를 제때에 내지 않았거나 거짓통계보고를 한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 설비, 자재, 생산물 같은 것을 몰수한다.

**제44조** 이 법을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에너지·금속·  
화학·기계·  
지하자원부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광천법

주체101(2012)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79호로 채택됨

## 제1장 광천법의 기본

### 제1조 (광천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광천법은 광천의 탐사와 개발, 리용,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광천의 정의)

광천은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특성과 치료작용에서 보통물과는 다른 땅속의 물이다.  
광천에는 약수와 온천이 속한다.

### 제3조 (광천의 탐사와 개발원칙)

국가는 광천탐사와 개발을 전망성있게 하여 광천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 제4조 (광천의 보호원칙)

국가는 광천보호체계를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광천보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 제5조 (광천의 리용원칙)

국가는 광천의 리용질서를 바로세워 광천을 인민들의 병치료와 건강증진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 제6조 (국제적인 교류와 협조)

국가는 광천탐사와 개발, 리용, 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7조 (련관법규의 적용)

광천부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광천의 탐사와 개발

### 제8조 (광천탐사, 개발의 기본요구)

광천탐사와 개발은 광천자원을 늘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광천의 탐사와 개발은 국가계획에 따라 한다.

### 제9조 (광천탐사계획, 광천개발계획의 작성)

광천탐사계획과 광천개발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 광천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 해당 지역의 지질자료 같은것에 기초하여 광천탐사계획과 광천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10조 (광천탐사)

광천탐사는 전문광천탐사기관, 기업소가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에 의뢰하여 할수도 있다.

### 제11조 (광천탐사방법)

광천탐사는 현행탐사와 전망탐사로 나누어 한다.  
광천탐사기관, 기업소는 앞선 탐사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해당 지역의 광천을 종합적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탐사자료는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낸다.

### 제12조 (발견한 광천의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광천으로 인정되는 대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우고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13조 (광천의 개발신청과 승인)

광천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천개발신청서를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아 중앙자원개발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광천개발신청서에는 개발목적과 규모, 매장량 같은것을 밝히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광천개발승인은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한다.

### 제14조 (토지리용허가와 위치지정)

국토환경보호기관,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토지리용허가질서에 따라 광천개발승인서에 지적된 산림토지, 농업토지 같은것을 보장하며 위치지정을 해주어야 한다.

### 제15조 (광천개발설계의 작성, 승인)

광천개발설계의 작성은 해당 설계기관 또는 광천개발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조건과 탐사자료에 기초하여 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광천개발설계의 승인은 해당 상급기관과 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제16조** (설계에 따르른 광천개발)

광천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천개발을 설계대로 하며 개발과정에 광천성분과 량에 변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설계로는 광천개발을 할수 없다.

**제17조** (개발한 광천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발한 광천을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3장 광천의 리용

**제18조** (광천리용의 기본요구)

광천리용은 인민들의 병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천성분과 량이 풍부한 지대에 광천리용시설을 잘 꾸리고 그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19조** (광천성분함량의 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천리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여 광천의 성분함량을 기준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 (용도에 맞는 광천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천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광천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광천용출량증가를 위한 동력리용)

광천의 용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동력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료양소의 건설과 운영)

중앙보건지도기관은 광천치료조건이 유리한 곳에 료양소를 건설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현대적인 치료시설과 문화후생시설 같은 것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도 료양소를 건설하고 운영할수 있다.

**제23조** (광천료양치료조건보장)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민들이 광천료양치료를 마음껏 받을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광천료양치료를 받으려는 공민은 해당 보건기관으로부터 료양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24조 (광천성분분석표의 게시)**

광천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리용자들이 보기 편리한 곳에 광천성분분석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 (광천제품의 수요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적인 광천제품생산시설을 갖추고 질병예방과 치료에 좋은 광천제품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 (광천의 수출)**

광천을 수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의 합의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장 광천의 보호

**제27조 (광천보호의 기본요구)**

광천보호는 광천의 고유한 약효성분을 보존하고 광천의 허실을 막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천보호사업을 광천의 특성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28조 (광천보호관리의 담당자)**

광천의 보호는 광천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광천관리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천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광천의 약효성분이 달라지거나 양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광천보호구역)**

광천보호를 위하여 광천보호구역을 정한다.  
광천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30조 (광천보호구역의 관리)**

광천관리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방야계공사, 원림록화 같은 사업을 잘하여 광천보호구역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야 한다.

**제31조 (광천보호구역에서의 금지사항)**

광천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폭발물을 터치거나 땅을 일구거나 묘를 쓰거나 나무를 뜨거나 베는 행위
2. 모래, 자갈을 채취하거나 기타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행위
3. 승인없이 살림집이나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4. 집짐승을 기르는 행위
5. 독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행위

## 6. 갯도작업이나 시추작업을 하는 행위

### 제32조 (이상현상의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광천의 약효성분이 달라졌거나 양이 줄어들었거나 기타 광천보호구역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보건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 제5장 광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3조 (광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

광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기관 해당 기관은 광천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34조 (광천부문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광천의 탐사와 개발, 리용, 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35조 (과학연구사업의 강화)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광천의 개발, 리용, 보호와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 부문에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 제36조 (광천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광천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보건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보건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광천의 탐사와 개발, 리용, 보호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37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광천을 오염시켰거나 광천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38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광천을 승인없이 맞지 않게 리용하였을 경우
2. 광천을 용도에 맞지 않게 리용하였을 경우
3. 광천을 승인없이 리용하였을 경우
4. 광천료양소, 약수터의 운영을 바로하지 않아 인민들의 치료와 건강증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제31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39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38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귀금속관리법

주체86(1997)년 10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98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 제1장 귀금속관리법의 기본

-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귀금속관리법은 귀금속의 장악, 보관, 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귀금속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며 화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수단이다. 귀금속에는 금, 은, 백금, 오스미움, 이리디움, 루테니움, 로디움, 팔라디움 같은 것이 속한다.
- 제3조** 귀금속의 장악을 바로하는 것은 귀금속을 국가에 집중시키기 위한 중요 담보이다. 국가는 귀금속을 유일적으로 장악하고 책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 제4조** 귀금속의 보관은 귀금속을 질량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귀금속을 과학기술적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 제5조** 국가는 귀금속을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 제6조** 국가는 귀금속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귀금속의 장악

- 제7조** 귀금속의 장악은 귀금속관리의 선차적공정이다. 중앙은행은 생산, 수입하였거나 회수, 수매한 귀금속을 빠짐없이 장악하여야 한다.
- 제8조** 중앙은행은 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넘겨받는 귀금속의 질량을 계량하고 품위를 정확히 분석하여야 한다. 분석한 귀금속의 질량과 품위에 대하여서는 중앙은행이 책임진다.
- 제9조** 귀금속을 제련하는 기업소는 정해진 규격과 품위가 보장된 귀금속을 중앙은행에 넘겨야 한다. 이 경우 귀금속의 분석시료도 함께 보내야 한다.
- 제10조** 다른 나라에서 귀금속을 사들여온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정해진 기일안에 중앙은행에 넘겨야 한다. 귀금속을 중앙은행에 넘길 경우에는 귀금속의 질량과 품위, 규격 같은 것을 밝힌 문건을 함께 보내야 한다.

- 제11조** 몰수한 귀금속은 중앙은행기관에 넘긴다. 이 경우 중앙은행기관은 귀금속을 넘겨받았다는 확인서를 해주어야 한다.
- 제12조**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귀금속을 공급받아 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이 달라졌거나 그밖의 사정으로 쓰지 못하게 된 귀금속, 못쓰게 된 귀금속제품, 귀금속부산물을 중앙은행에 바쳐야 한다.
- 제13조** 귀금속을 공급받아 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귀금속회수비율을 지켜야 한다. 귀금속회수비율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은행이 한다.
-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유하고있는 귀금속과 그 제품을 수매할수 있다.
- 제15조** 귀금속을 수매받는 사업은 중앙은행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필요한 계량수단을 갖추고 수매받는 귀금속을 정확히 계량하여야 한다.
- 제16조** 귀금속의 회수, 수매는 순금속량으로 환산한 질량으로 한다.
- 제17조** 회수, 수매한 귀금속에 대하여서는 해당한 값을 준다. 귀금속의 회수, 수매에 필요한 자금은 재정기관이 보장한다.

### 제3장 귀금속의 보관

- 제18조** 귀금속의 보관을 잘하는 것은 귀금속을 다루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중요임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귀금속보관시설을 꾸리고 귀금속을 그 특성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 제19조** 국가가 보유하는 귀금속의 보관은 중앙은행이, 귀금속을 다루는 기관,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가지고있는 귀금속의 보관은 재정부기부서가 한다.
- 제20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량을 초과하여 귀금속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정해진 량을 초과하여 귀금속을 보관하여 할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 귀금속은 안전성이 보장된 금고에 보관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무장경비를 세운다.
- 제22조** 귀금속을 입출고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귀금속의 질량을 대장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귀금속재고량은 매월 실시하여야 한다.
- 제23조** 교통운수기관은 귀금속을 안전조건이 보장된 운수수단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무장호송원을 붙인다.
- 제24조** 국가는 필요한 량의 귀금속예비를 가진다. 귀금속예비는 중앙은행이 보관한다.

## 제4장 귀금속의 리용

- 제25조** 귀금속의 리용을 바로하는 것은 늘어나는 귀금속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귀금속을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 제26조** 귀금속을 공급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단위당 귀금속소비기준을 만들어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기관은 귀금속소비기준을 정확히 검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제27조** 귀금속의 공급은 내각의 승인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귀금속을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귀금속의 종류와 규격, 소비계획 같은 것을 밝힌 귀금속공급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 제28조** 중앙은행은 귀금속공급신청문건을 검토하고 귀금속을 정해진 기일안에 공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받은 귀금속을 제품단위당 소비기준에 따라 정확히 리용하여야 한다.
- 제29조** 중앙은행은 매월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한 귀금속의 소비정형을 료해하여야 한다. 귀금속소비정형에 대한 료해는 정해진 계산방법에 따라한다.
- 제30조** 귀금속과 귀금속제품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수출할수 있다. 귀금속괴의 수출은 해당 은행이, 귀금속제품의 수출은 해당 무역기관이 한다.
- 제31조** 중앙은행은 수출하는 금, 은, 백금의 괴를 정해진 규격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국제시장에 등록된 우리 나라 상표를 붙여야 한다.
- 제32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귀금속을 승인없이 팔고사거나 바꾸거나 꾸어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5장 귀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3조** 귀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귀금속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귀금속관리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34조** 귀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귀금속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35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귀금속의 생산, 공급, 보관, 리용과 관련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제36조** 국가는 귀금속가공을 장려한다. 귀금속을 가공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특혜를

준다.

**제37조** 귀금속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귀금속관리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8조** 귀금속을 류용, 랑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귀금속을 회수하거나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9조** 정해진 회수비률에 따르는 귀금속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귀금속의 공급을 중지한다.

**제40조** 이 법을 어겨 인민경제발전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속공업법

주체110(2021)년 7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35호로 채택

## 제1장 금속공업법의 기본

### 제1조 (금속공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속공업법은 금속의 생산과 공급 및 판매, 금속공업부문에 대한 조 건보장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금속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금속공업의 정의)

금속공업은 선철, 삼화철, 강철, 합금강, 압연강재 같은 흑색금속 및 가공품과 동, 니켈, 연, 아연 같은 유색금속 및 가공품을 생산하는 공업이다.

### 제3조 (금속공업발전원칙)

금속공업은 자립경제의 기둥이며 경제발전의 관건적고리이다.

국가는 금속공업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 주체철생산체계를 기술적으로 완성하고 능력을 확장하며 금속공업부문의 발전을 선행시켜나가도록 한다.

### 제4조 (금속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금속공업발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금속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한다.

### 제5조 (금속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원칙)

국가는 금속공업부문에 조건보장대책을 우선적으로 세워 금속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금속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도록 한다.

### 제6조 (에너지절약원칙)

금속생산에서 에너지소비를 극력 줄이는것은 귀중한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애국사업이다.

국가는 금속공업부문에서 에너지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바로세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리용하고 절약하도록 한다.

### 제7조 (과학연구사업강화, 인재양성원칙)

국가는 금속공업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금속공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 제8조 (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금속 및 가공품(이 아래부터 금속이라고 함.)의 생산과 공급 및 판매와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금속공업부문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금속의 생산

#### 제9조 (금속생산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금속생산에서는 다음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제철공업부문에서는 산소열법에 의한 주체철생산공정에서 원가를 낮추고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여 우리 식의 철생산방법들을 더욱 완성하며 에네르기절약형의 현대적인 제철기지들을 건설하여야 한다.
2. 제강공업부문에서는 정련기술을 비롯한 앞선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제강시간을 단축하고 강질을 높이며 중량레루, 불수강 등 여러가지 압연강재와 인발강관, 쇠바줄을 비롯한 2차, 3차 가공제품생산을 늘여야 한다.
3. 합금철공업부문에서는 합금철생산기지들을 완비하고 희토류원소를 비롯한 합금원소광물을 개발리용하여 여러가지 합금철과 개량제들을 생산하여야 한다.
4. 제련공업부문에서는 생산토대를 보강확대하고 제련능력과 제련실수율을 높여 전기동, 연, 전기아연 같은 유색금속생산을 늘여야 한다.

#### 제10조 (금속생산기업소의 조직)

금속생산기업소는 국가적조치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구조직기관이 조직한다.

기구조직기관은 국가의 금속공업발전전략과 생산력배치계획에 따라 금속생산기업소를 합리적으로 조직, 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 (금속생산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은 금속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원료, 자재, 동력보장가능성, 생산능력 같은 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며 현실성있는 금속생산계획을 세워 제때에 시달하여야한다.

#### 제12조 (금속생산계획의 수행)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금속생산기업소는 과학기술을 앞세우며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지켜 시달된 계획을 시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준비, 생산준비의 선행)**

금속생산기업소는 금속생산과 관련한 기술과제서, 설계예산서, 설계도면 및 기술공정의 작성과 기술장비대책,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작성 같은 기술준비와 기능공양성, 설비점검 및 보수, 원료, 자재준비 같은 생산준비를 생산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제14조 (금속의 품종, 규격확대)**

금속생산기업소는 우리 나라의 합금원소자원에 의한 합금철과 합금강생산비중을 높이며 압연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강재를 비롯한 압연품의 품종과 규격을 늘여야 한다.

**제15조 (금속의 질제고)**

금속생산기업소는 선진적인 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현대적인 분석 및 측정수단을 갖추며 금속생산설비들을 표준조건에서 정상운영하여 금속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16조 (로력관리)**

금속생산기업소는 로력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여야 한다.

**제17조 (로동보호)**

금속생산기업소는 로동안전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로동보호물자를 정해진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종업원은 로동안전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18조 (설비, 자재관리)**

금속생산기업소는 제철, 제강, 제련, 압연설비와 원료, 자재보장설비, 제품처리설비 같은 생산설비에 대한 점검 및 계획적예방보수를 바로하여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

금속생산기업소는 자재를 계획적으로 확보하고 자재소비기준을 엄격히 지키며 자재를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속생산용자재는 다른 용도에 소비할수 없다.

**제19조 (동력관리)**

금속생산기업소는 선진적인 에네르기절약기술을 받아들이고 동력소비기준을 낮추며 교차생산규율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20조 (품질검사)**

생산된 금속은 해당 법규에 따라 품질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제품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금속은 생산실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출하할수 없다.

**제21조 (재자원화)**

금속생산기업소는 재자원화기지를 꾸리고 생산과정에 나오는 슬라크와 폐열, 먼지, 석탄버력, 탄재 같은 폐기폐설물을 가공처리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22조 (환경보호)**

금속생산기업소는 제진설비를 비롯한 환경보호시설을 표준대로 갖추고 오염물질배출농도를 정상적으로 분석, 측정하면서 불비한 요소들을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  
생산과정에 나오는 오염물질은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내보낼수 없다.

## 제3장 금속의 공급 및 판매

**제23조 (금속공급계획)**

국가계획기관은 금속생산량과 수요, 경제발전방향 같은것을 타산하여 금속공급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시달하여야 한다.

**제24조 (금속공급 및 판매계약)**

금속생산기업소와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금속공급 및 판매계약을 맺고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  
금속공급계약은 금속공급계획에 따라 맺는다.

**제25조 (금속판매소)**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금속생산기업소는 정해진데 따라 금속생산량, 수송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역에 전문판매소를 내오고 생산한 금속을 판매할수 있다.

**제26조 (금속의 보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금속의 물리화학적특성에 맞게 보관시설을 갖추고 금속을 정해진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금속의 수송)**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금속을 제때에 실어나르며 수송도중에 금속이 루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금속의 수출)**

금속생산기업소는 생산한 금속을 해당 법규에 따라 다른 나라에 수출할수 있다.

## 제4장 금속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제29조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조건보장)**

내각,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중앙교육지도기관,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금속공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국가의 금속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에 집중시켜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적극 추동하여야 한다.

**제30조 (로동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금속공업부문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고열 및 유해로동을 없애기 위한 물질기술적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제31조 (원료, 연료, 자재, 설비의 보장)**

금속생산기업소에 원료, 연료, 자재, 설비를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된 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금속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는 10일분이상 생산에 앞서워 보장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 (금속광물의 생산보장)**

금속광물생산기업소는 합리적인 채굴방법과 박토처리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고 선풍공정을 현대화하여 품위높은 광물을 계획대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금속광물은 비법적으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개인에게 넘겨줄수 없다.

**제33조 (내화물과 흑연, 전극의 생산보장)**

내화물생산기업소는 내화물광산과 내화물생산공정을 현대화하여 고질내화물을 품종별로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흑연, 전극생산기업소는 생산토대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생산방법을 받아들여 품위높은 흑연과 질좋은 전극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 (전력, 석탄보장)**

전력공급기관과 송배전기관은 금속공업부문에 계획된 전력을 정전과 부하제한없이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석탄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금속공업부문에 질좋은 석탄을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 (화물수송)**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금속생산용물자를 수송계획과 계약대로 다른 부문보다 앞에서 최우선적으로 실어날라야 한다.

**제36조 (로력, 자금, 식량, 로동보호물자의 보장)**

국가계획기관, 로동행정기관, 재정기관, 은행기관, 량정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금속공업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자금, 식량, 로동보호물자 같은것을 다른 부문에 앞서워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7조 (경영활동 및 생활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가격기관은 금속생산기업소의 생산정상화와 경영활동조건, 종업원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금속공업부문의 기업체몫과 금속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 제38조 (평가)

선진적인 금속생산기술을 개발하여 나라의 금속공업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금속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국가에 리득을 준 단위와 국민에게는 해당하는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를 한다.

### 제39조 (재정적우대)

내각과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금속공업부문에 대하여 정해진데 따르는 재정적우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장 금속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40조 (금속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

금속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금속공업지도기관이 한다.

### 제41조 (금속공업발전전략)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해당 기관은 나라의 금속공업발전을 위한 전략과 단계별목표를 바로세우고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 제42조 (금속공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금속공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 제43조 (금지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원료, 자재, 동력보장대책이 없이 생산계획을 세워 시달하는 행위
2. 공급원천을 초과하여 금속공급계획을 세워 시달하는 행위
3. 금속과 금속생산용자재를 다른 용도에 소비하거나 비법적으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개인에게 넘기는 행위
4. 중요금속생산기업소 또는 금속광물기업소 주변에서 금속생산을 하면서 국가적인 금속생산에 장애를 주는 행위
5. 금속생산기업소에 금속생산계획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과제를 주는 행위

### 제44조 (민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원상복구, 손해보상,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 제45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30만~15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1. 금속생산에서 자재소비기준과 기술경제지표표를 어겨 원료, 자재, 동력을 낭비하였을 경우
2.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 점검, 보수를 바로하지 않아 생산성과 효율을 떨어뜨렸을 경우

3. 로동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4. 금속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동력을 계획과 계약에 정해진대로 보장하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내보냈을 경우

**제46조 (중지처벌)**

제45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생산, 수출을 중지시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 폐업시킬수 있다.

**제47조 (몰수처벌)**

금속을 비법적으로 판매하였거나 공급받은 금속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된 돈과 물품을 몰수한다.

**제48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금속생산기업소를 합리적으로 조직, 배치하지 않아 금속공업발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금속생산을 위한 기술준비, 생산준비를 선행시키지 않았을 경우
3. 원료, 자재, 동력보장대책이 없이 생산계획을 세워 시달하였을 경우
4. 금속생산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5. 금속생산에서 기술규정, 자재소비기준과 기술경제적지표를 어겼을 경우
6.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 점검, 보수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7. 로동보호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8. 환경보호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내보냈을 경우
9. 금속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동력을 계획과 계약에 정해진대로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10. 공급원천을 초과하여 금속공급계획을 세워 시달하였을 경우
11. 금속과 금속생산용자재를 류용하였거나 생산한 금속을 계획대로 공급하지 않고 생산물을 비법처분하였을 경우
12. 금속의 보관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금속을 루실시켰을 경우
13. 금속을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였을 경우
14. 금속생산기업소에 금속생산계획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과제를 주었을 경우
15. 중요금속생산기업소 또는 금속광물생산기업소 주변에서 금속생산을 하면서 국가적인 금속생산에 장애를 주었을 경우
16. 로력, 설비, 자금, 식량, 로동보호물자 같은것을 계획대로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17. 금속공업부문의 기업체뭉과 금속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하지 않아 확대재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8. 금속공업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금속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국가에 리득을 준 단위와 공민에 대한 평가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앞항 1~18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49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계공업법

주체110(2021)년 7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37호로 채택

## 제1장 기계공업법의 기본

### 제1조 (기계공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계공업법은 기계제품생산을 위한 기술준비와 기계제품의 생산, 공급 및 판매, 기계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기계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기계제품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기계공업발전원칙)

기계공업은 전반적경제부문을 주도하고 견인하는 중요공업부문이며 경제발전과 기술적진보의 기초이다.

국가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기계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기계공업을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기초가 든든한 공업, 개발창조형의 공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3조 (기계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계공업부문에 첨단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기계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한다.

### 제4조 (기계제품생산의 전문화, 집중화원칙)

기계제품생산을 전문화, 집중화하는것은 기계제품의 질을 높이고 기술력량의 분산을 막으며 로력과 원료, 연료, 동력의 낭비를 없애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가는 기계제품생산을 전문화, 집중화하고 기계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사이의 긴밀한 연계밑에 협동생산조직을 잘하여 질 좋은 기계제품을 다종, 다량, 계열생산하도록 한다.

### 제5조 (기계제품생산의 국산화원칙)

국가는 기계제품생산의 국산화를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핵적인 문제로 틀어쥐고 일관성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자체의 기술과 원료, 자재, 설비로 기계제품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한다.

### 제6조 (금속재료의 질제고원칙)

금속재료는 기계제품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기본자재이다.



국가는 철강재를 비롯한 금속재료를 재질별, 규격별로 보장하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기계제품의 질과 성능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제7조 (과학연구사업강화, 인재양성원칙)**

국가는 기계공업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기계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인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8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기계공업부문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기계제품생산을 위한 기술준비

**제9조 (기계제품생산을 위한 기술준비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기계제품생산에 앞서 기술준비를 선행시키는것은 보기에도 좋으며 그 성능과 질이 담보되는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개발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기계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 기계제품생산기업소라고 함.)는 기계제품도안과 기계설계, 기술공정준비를 생산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제10조 (기계제품도안의 작성, 심의)**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생산에 앞서 정해진 기계제품에 따르는 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계제품도안은 전문산업미술창작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한 기계제품도안은 해당 산업미술지도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기계제품도안의 보관, 관리)**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심의승인된 기계제품도안을 등록하고 제정된 질서대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심의승인된 기계제품도안은 산업미술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수정할수 없다.

**제12조 (기계설계의 작성, 심의)**

기계설계는 기계설계지도기관의 지시 또는 기계제품생산기업소의 주문에 따라 작성한다.

기계설계작성기관은 기계설계계획과 기계설계기술과제서에 근거하여 기계설계를 작성한 다음 해당 기계설계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계설계의 작성은 먼저 기술설계를 작성하고 시작품단계를 거쳐 생산설계 또는 총화설계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3조 (기계설계의 등록, 보관)**

기계설계작성기관은 심의승인된 기계설계를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은 설계작성자에게 기계설계등록증을 발급하여준다.

등록된 기계설계는 정해진 질서대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계설계의 수정)**

등록된 생산설계 또는 총화설계는 승인없이 수정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수정하려 할 경우에는 비상설기계설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기계의 시작품제작)**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기술설계의 요구대로 시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시작품을 제작한 경우에는 성능 및 운영시험과 시작품합평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술공정준비)**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기계제품생산의 모든 공정들에서 질적지표에 따르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킬수 있도록 생산에 앞서 물자소비기준작성, 노동정량작성, 기술공정표작성, 장비제작, 기술규정작성, 표준조작법작성을 비롯한 기술준비를 철저히 갖 추어야 한다.

### 제3장 기계제품의 생산

**제17조 (기계제품생산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으면서도 현실이 요구하는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질 좋게 생산해내는것은 기계공업부문의 발전목표이다.

중앙기계공업지도기관과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공구와 핵심적인 기계요소제작기술을 발전시켜 정밀도와 능률이 높은 현대적인 기계들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18조 (기계제품생산기업소의 조직)**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국가적조치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구조직기관이 조직한다.

기구조직기관은 국가의 기계공업발전전략과 생산력배치계획에 따라 기계제품생산기업소를 합리적으로 조직,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기계제품생산계획의 작성, 시달)**

국가계획기관은 기계제품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 생산가능성, 원료, 자재, 동력보장가능성, 축적과 소비의 균형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한데 따라 과학적이며 현실성있는 기계제품생산계획을 세워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20조 (기계제품생산계획의 수행)**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생산을 정상화하여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협동품을 생산하는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협동품생산을 계열화하고 협동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 제21조 (기계제품의 질제고)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여러가지 품종과 규격의 기계제품을 질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 제22조 (기술경제적지표의 준수)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생산에서 물자소비기준과 노동정량을 비롯한 기술경제적지표를 엄격히 지키며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원료, 자재, 동력소비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 제23조 (설비의 생산성과 효율제고)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생산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바로하고 점검과 보수를 책임적으로 하여 설비의 생산성과 효율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 제24조 (노동보호)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노동안전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충분히 갖추며 노동보호물자를 정해진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종업원은 노동안전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제25조 (제품검사)

품질감독기관은 생산된 기계제품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제품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기계제품은 생산실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출하할수 없다.

#### 제26조 (새제품개발)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자체의 기술자, 기능공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 질적공고화에 큰 힘을 넣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여러가지 품종의 새 기계제품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설계, 제작하고 계열생산공정을 확립하여야 한다.

#### 제27조 (재자원화)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생산경영과정에 나오는 폐기폐설물과 생활오물들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공처리하여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정해진데 따라 수매소를 내오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로부터 유휴자재를 수매받아 생산에 리용할수 있다.

## 제4장 기계제품의 공급 및 판매

#### 제28조 (기계제품공급계획)

기계제품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기계제품의 생산지표와 생산능력, 인민경제적수요, 경제발전방향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기계제품공급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워 시달하여야 한다.

**제29조 (기계제품공급 및 판매계약의 체결)**

기계제품생산기업소와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계제품공급 및 판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기계제품공급계약은 기계제품공급계획에 따라 맺는다.

**제30조 (기계제품공급 및 판매계약의 리행)**

기계제품생산기업소와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표, 수량, 가격, 날자, 장소 등 기계제품공급 및 판매계약에 밝혀진 사항을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31조 (기계제품의 보관)**

기계제품은 그 물리화학적특성에 맞게 보관시설을 갖추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기계제품보관, 관리를 잘못하여 기계제품이 손상되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계제품에 대한 보관관리를 맡은 당사자가 져야 한다.

**제32조 (기계제품의 리용)**

기계제품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구입한 기계제품을 등록하고 설치, 시운전을 거쳐 생산에 리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리용과정에 기계제품에 대한 계획적예방보수체계대로 보수를 진행하여 기계제품의 수명을 늘이고 성능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 (기계제품에 대한 품질담보)**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생산, 공급 또는 판매한 기계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정해진 품질담보기일안에 책임져야 한다.  
품질담보기일이 지난 기계제품에서 이상이 생겼거나 기계제품리용자가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아 기계제품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기계제품생산기업소가 책임지지 않는다.

**제34조 (기계제품의 수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기계제품을 해당 법규에 따라 다른 나라에 수출할수 있다.

## 제5장 기계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제35조 (기계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의 기본요구)**

기계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사업을 바로 하는것은 기계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인민경제의 기계제품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계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기계제품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도록 기계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6조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조건보장)**

내각,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중앙교육지도기관, 중앙기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기계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에 기계공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집중시켜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적극 추동 하여야 한다.

**제37조 (로력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기관은 기계공업부문에 필요한 로력을 계획에 맞물려 제때에 보장 하여야 한다.

**제38조 (원료, 자재보장)**

기계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는 인민경제계획 또는 주문계약의 방법으로 보장한다. 원료, 자재보장을 맡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과 계약에 정해진 품종과 수량, 규격과 재질에 따르는 원료, 자재를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 (전력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 송배전기관은 기계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0조 (경영활동 및 생활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국가가격기관은 기계공업부문 기관, 기업소, 단체의 확대재생산과 경영활동 조건, 종업원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기업체뭉과 기계제품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해 주어야 한다.

**제41조 (기계설비의 회수리용)**

내각, 국가계획기관, 중앙기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계설비의 회수리용체계를 철저히 세워 쓰지 않는 기계설비들을 생산에 적극 동원하여야 한다.

**제42조 (수속절차의 간소화)**

내각, 국가계획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선진기술이 도입된 기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소의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한 각종 수속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수속에서 신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 (특별보호관세의 적용)**

내각은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는 품종의 기계제품들을 수입하는 경우 특별보호관세를 적용하여 국가의 기계공업부문을 적극 보호하고 그 발전을 추동하여야 한다.

**제44조 (평가)**

현대적인 기계제품생산을 위한 과학연구, 기술개발, 기계제품도안창작, 기계설계작성사업을 잘하여 나라의 기계공업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계제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국가에 리득을 준 단위와 공민에게는 해당하는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를 한다.

#### 제45조 (기계공업부문에 대한 특혜)

기계공업부문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다음과 같은 특혜를 준다.

1. 자체로 생산설비를 현대화하여 국가에 리익을 준 경우 더 생산한 기계제품은 일정한 기간 주문계약의 방법으로 판매할수 있으며 그에 대한 재정적특혜를 준다.
2. 수입에 의존하던 기계제품을 국산화하였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계획기관, 가격기관, 규격기관에 등록만 하고 판매하며 그에 대한 재정적특혜를 준다.
3. 국가적으로 중요시하는 품종의 기계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제품생산기업소에는 정해진 데 따라 장려금을 지불한다.

### 제6장 기계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46조 (기계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

기계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기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 제47조 (기계공업발전전략)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중앙기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국가경제발전방향에 따라 기계공업발전전략과 단계별목표를 바로세우고 철저히 집행하며 기계공업부문에 대한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실현하여야 한다.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국가의 기계공업발전전략에 따라 기업소발전전략과 단계별목표를 세우며 국가기계공업발전전략, 기업소발전전략을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 제48조 (기계공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기계공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기계공업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49조 (금지사항)

다음의 행위는 할수 없다.

1. 원료, 자재, 동력보장대책이 없이 생산계획을 세워 시달하는 행위
2. 개별적공민이 생산설비를 차려놓고 기계제품을 제작하는 행위
3. 기관, 기업소, 단체가 생산허가를 받지 않고 기계제품을 생산하는 행위
4. 기계제품생산에서 설계, 규격의 요구를 어기는 행위
5.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제품을 공급, 판매, 구입, 리용하는 행위

#### 제50조 (민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원상복구, 손해보상,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 제51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기계제품도안, 기계설계를 기계제품생산에 선행시키지 않았을 경우 30만~150만원
2. 심의를 받지 않은 기계제품도안, 기계설계를 리용하였을 경우 20만~100만원
3. 등록된 기계제품도안, 생산설계, 총화설계를 승인없이 수정하였을 경우 20만~100만원
4. 기계제품생산에서 물자소비기준과 로동정량같은 기술경제적지표를 어겨 로력, 원료, 자재, 동력을 낭비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5.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 점검, 보수를 바로 하지 않아 생산성과 효율을 떨어뜨렸을 경우 30만~100만원
6. 로동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30만~150만원
7. 생산허가를 받지 않고 기계제품을 생산한 경우 50만~150만원
8.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제품을 공급, 판매, 구입, 리용하였을 경우 100만~150만원
9. 기계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동력을 계획과 계약에 정해진대로 보장하지 않아 기계제품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0만~150만원

#### 제52조 (중지처벌)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시킨다.

1. 기술경제적지표를 어겨 로력, 원료, 자재, 동력을 낭비하였을 경우
2.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 점검, 보수를 바로하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로동보호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종업원의 생명, 건강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기관, 기업소, 단체가 생산허가를 받지 않고 기계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5.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제품을 구입, 리용하였을 경우
6. 기계제품생산, 공급 및 판매질서를 어겨 국가의 기계공업발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 제53조 (몰수처벌)

기계제품을 비법적으로 판매, 구입, 리용하였거나 개별적공민이 생산설비를 차려놓고 기계제품을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되었거나 위법행위로 얻은 돈과 물품을 몰수한다.

#### 제54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기계제품도안, 기계설계를 기계제품생산에 선행시키지 않았거나 심의를 받지 않은 기

계제품도안, 기계설계를 리용하였을 경우

2. 등록된 기계제품도안, 생산설계, 총화설계를 승인없이 수정하였을 경우
3. 등록된 기계제품도안, 기계설계를 정해진 질서대로 보관,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
4. 시작품제작에 대한 성능 및 운영시험과 시작품합평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5. 기술공정준비를 책임적으로 하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기계제품생산기업소를 합리적으로 조직, 배치하지 않아 기계공업발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원료, 자재, 동력보장대책이 없이 기계제품생산계획을 세워 시달하였거나 기계제품생산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8. 기계제품생산에서 기술규정, 표준조작법과 기술경제적지표를 어겼을 경우
9.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 점검, 보수를 바로 하지 않거나 로동보호사업을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10. 개별적공민이 생산설비를 차려놓고 기계제품을 제작하였을 경우
11. 생산허가를 받지 않고 기계제품을 생산하였거나 기계제품생산에서 설계, 규격의 요구를 어겼을 경우
12. 제품검사를 바로 하지 않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제품을 공급, 판매, 구입, 리용하였을 경우
13. 기계제품의 보관, 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기계제품을 손상시켰을 경우
14. 기계제품생산에 필요한 로력, 원료, 자재, 동력을 계획과 계약에 정해진대로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15. 기계공업부문의 기업체뭉과 기계제품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하지 않아 기계제품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6. 기계설비의 회수리용을 바로하지 않아 기계설비를 사장시켰거나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17. 기계제품개발과 관련한 수속을 신속히 해주지 않아 새제품개발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8. 기계공업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계제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국가에 리득을 준 단위와 공민에 대한 평가를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19. 기계공업부문에 대한 특혜조치를 바로 실시하지 않아 기계공업발전에 저해를 주었을 경우

앞항 1~19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 제55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화물관리법

주체101(2012)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78호로 채택

## 제1장 내화물관리법의 기본

### 제1조 (내화물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화물관리법은 내화물원료의 탐사와 개발, 내화물의 생산과 공급,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내화물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내화물은 높은 온도에서 여러 가지 기계적 및 물리화학적작용에 오래동안 견디어 낼수 있는 비금속재료이다.

내화물에는 내화벽돌과 내화콘크리트를 비롯한 내화다짐재료, 내화복합재료 같은 것이 속한다.

### 제3조 (내화물원료의 탐사, 개발원칙)

내화물원료의 탐사와 개발은 내화물원료자원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내화물원료탐사와 개발을 내화물공업의 선행공정으로 확고히 앞세워나가도록 한다.

### 제4조 (내화물생산원칙)

국가는 주체적이며 현대적인 내화물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인민경제적수요에 맞게 내화물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한다.

### 제5조 (내화물의 공급 및 리용원칙)

국가는 내화물을 인민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쓸수 있게 계획적으로 공급하며 그 리용에서 소비기준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 제6조 (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내화물관리부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전망성 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 제7조 (내화물관리부문에서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내화물관리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8조 (관련법규의 적용)

내화물관리부문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내화물원료의 탐사와 개발

### 제9조 (내화물원료탐사의 선행)

내화물원료탐사를 선행시키는 것은 내화물공업발전의 중요담보이다.

내화물원료탐사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원료의 탐사를 개발에 앞서워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0조 (내화물원료탐사계획의 작성)

내화물원료탐사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내화물원료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지질상태에 기초하여 탐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11조 (내화물원료탐사의 분류)

내화물원료에 대한 탐사는 전망탐사와 현행탐사, 작업탐사로 나누어 한다.

전망탐사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소속 탐사기관, 기업소가, 현행탐사는 내화물공업지도기관소속 탐사기관, 기업소가, 작업탐사는 해당 광산이 한다.

### 제12조 (내화물원료탐사의 설계)

내화물원료탐사설계의 작성은 내화물원료탐사기관, 기업소가 한다.

내화물원료탐사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원료를 빠짐없이 찾아낼수 있게 탐사단계별로 설계를 작성하여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 (설계에 따르는 내화물원료탐사)

내화물원료탐사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원료탐사를 승인된 설계대로 하여야 한다.

탐사가 끝나면 시추구멍과 지질도랑, 탐사우물을 채굴작업과 토지리용에 지장이 없도록 메워야 한다.

### 제14조 (내화물원료매장량의 계산, 심의, 등록)

내화물원료탐사기관, 기업소는 탐사한 내화물원료매장량을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내화물원료매장량은 내화물원료개발설계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 제15조 (내화물원료의 개발승인)

내화물원료를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화물원료개발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내화물원료를 개발할수 없다.

### 제16조 (설계에 의한 내화물원료개발)

내화물원료개발은 내화물원료개발설계에 따라 한다.

내화물원료개발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원료개발설계의 요구를 지켜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 제17조 (내화물원료의 채굴)

내화물원료개발기관, 기업소는 채굴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채굴방법을 개선하여 채굴기준과 매장량기준이 되는 내화물원료를 다 채굴하여야 한다.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광체만 골라내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18조 (내화물원료의 순도보장)

내화물원료개발기관, 기업소는 채취 및 선광, 파쇄, 사별에서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지켜 내화물원료의 순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9조 (폐광, 폐갱)

내화물원료개발기관, 기업소는 광산을 폐광하거나 갱을 폐갱하려 할 경우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 (환경보호)

내화물원료개발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원료개발과정에 국토와 자원, 자연풍치를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3장 내화물의 생산

#### 제21조 (내화물생산의 확대)

내화물생산을 늘이는 것은 내화물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내화물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 제22조 (내화물생산계획의 작성 및 시달)

내화물생산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내화물생산은 내화물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내화물생산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내화물생산계획을 세우며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 제23조 (내화물생산계획의 실행)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내화물생산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 제24조 (내화물의 질제고)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생산에서 소성온도를 비롯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지켜 품종과 규격에 따르는 내화물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25조 (소성로의 생산성제고)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미분탄취입, 산소농화송풍 같은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소성

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제26조 (주체적인 내화물생산방법의 도입)**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알탄과 석탄가스화, 고온공기연소기술에 의한 내화물생산방법 같은 주체적인 내화물생산방법을 연구도입하여 내화물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제27조 (내화물에 대한 품질검사)**

품질감독기관은 내화물의 용도에 따르는 규격을 세계적수준에 맞게 바로 정하고 품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내화물은 생산실적으로 평가할수 없다.

**제28조 (내화물의 포장)**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생산된 내화물을 눈, 비나 습기, 충격 같은 원인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품종별, 규격별로 기술규정의 요구에 맞게 포장하여야 한다.

**제29조 (내화물생산로력의 고착)**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생산로력을 고착시키며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제30조 (물자소비기준의 준수)**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생산에서 정해진 물자소비기준을 엄격히 지키며 전력, 수입연료 같은것의 소비량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내화물생산에 대한 물자소비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제31조 (설비관리)**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설비점검보수를 계획적으로 하고 설비점검검열의 날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설비가동률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제32조 (내화물생산량의 보고)**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생산정형을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에 제때에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내화물의 수입제한)**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에 대한 국내수요를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내화물의 수입을 극력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장 내화물의 공급, 리용

### 제34조 (내화물공급의 계획화)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생산된 내화물을 공급계획과 계약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 제35조 (내화물공급계획의 작성)

내화물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내화물생산능력과 수요 같은 것을 타산하여 내화물공급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 제36조 (내화물공급계약의 체결)

내화물을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는 내화물공급계획에 기초하여 내화물공급기관, 기업소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 제37조 (내화물공급계획과 계약의 리행)

내화물공급기관, 기업소는 공급계획과 계약에 정해진 품종과 규격의 내화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른 품종과 규격의 내화물을 공급하려 할 경우에는 수요자와 기술합의를 하여야 한다.

### 제38조 (내화물의 공급장소)

내화물의 공급은 내화물생산지에서 한다.

경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재판매소에서도 내화물을 공급할수 있다.

### 제39조 (내화물의 공급순위)

내화물공급기관, 기업소는 내화물공급에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내화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대상의 내화물을 먼저 공급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 제40조 (내화물공급정형의 보고)

내화물을 공급한 기관, 기업소는 그 정형을 내화물공업지도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1조 (내화물의 수송)

교통운수기관은 화물수송계획과 계약에 따르는 내화물을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내화물을 실어나르는 운수수단에는 덮개를 씌우며 수송도중 내화물이 못쓰게 되거나 류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2조 (내화물의 보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내화물보관시설을 갖추고 내화물을 등급과 규격별로 갈라 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 (내화물의 리용률제고)**

해당 기관, 기업소는 공급받은 내화물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비법적으로 공급받은 내화물을 다른 물자와 바꾸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44조 (내화물소비기준의 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는 내화물리용에서 정해진 소비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내화물소비기준은 국가계획기관이 정한다.

**제45조 (내화물의 공급중지)**

내화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가 정해진 소비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내화물공급을 중지할수 있다. 이 경우 내화물공급기관, 기업소는 그 정형을 내화물공업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내화물의 가격제정)**

국가가가격제정기관은 내화물생산의 원가를 보상하는 원칙에서 내화물의 가격을 바로 제정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제47조 (내화물의 수출)**

내화물수출은 내화물수출계획에 따라 한다.  
가공하지 않은 내화물원료는 수출할수 없다.

## 제5장 내화물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8조 (내화물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내화물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내화물공업지도기관이 한다.  
내화물공업지도기관은 내화물원료의 탐사, 개발, 내화물의 생산, 공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9조 (내화물관리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내화물관리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내화물관리부문의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50조 (내화물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내화물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내화물원료의 탐사와 개발, 내화물의 생산, 공

급, 리용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1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 처벌을 준다.

1. 승인없이 내화물원료를 개발하였을 경우
2. 내화물원료의 채굴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아 자원랑비를 가져왔을 경우
3. 내화물원료를 개발하면서 자연환경을 파괴시켰을 경우
4. 승인없이 광산 또는 갱을 폐광, 폐갱시켰을 경우
5. 내화물생산조직을 바로하지 않아 계획실행을 심히 미달하였을 경우
6. 내화물생산에 필요한 조건보장을 바로하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정해진 소비기준을 지키지 않아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낭비하였을 경우
8. 내화물공급계획 및 계약규률을 어겨 내화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내화물 비법적인 거래에 리용하였을 경우
10. 내화물의 수출질서를 어겼을 경우

**제52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51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법

|              |         |              |                 |
|--------------|---------|--------------|-----------------|
| 주체98(2009)년  | 1월 7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3044호로 채택   |
| 주체98(2009)년  | 9월 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271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0(2011)년 | 12월 2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5(2016)년 | 11월 23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1421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7(2018)년 | 9월 6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2388호로 수정보충 |
| 주체110(2021)년 | 9월 1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691호로 수정보충  |

## 제1장 석탄법의 기본

### 제1조 (석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법은 석탄탐사와 탄광개발, 석탄생산, 공급 및 판매,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석탄공업발전원칙)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며 석탄공업은 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이다.

국가는 석탄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석탄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석탄공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발전시킨다.

### 제3조 (석탄탐사원칙)

석탄탐사는 나라의 석탄자원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석탄탐사의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며 석탄자원을 빠짐없이 찾아내도록 한다.

### 제4조 (탄광개발원칙)

탄광개발을 다그치는 것은 석탄자원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국가는 석탄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대규모탄광개발을 다그치는 한편 중소규모탄광을 많이 개발하도록 한다.

### 제5조 (석탄생산원칙)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국가는 석탄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탄광들에 투자를 집중하고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갱내작업의 종합적기계화, 운반의 다양화를 실현하여 인민경제적수요에 맞게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한다.



#### 제6조 (석탄공급, 리용원칙)

석탄공급과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고 석탄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생산된 석탄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며 석탄소비기준을 엄격히 지켜 나라의 귀중한 전략 자원인 석탄을 극력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 제7조 (석탄자원보호, 탄광지원)

석탄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석탄자원을 적극 보호하며 탄광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한다.

#### 제8조 (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석탄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석탄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 제9조 (석탄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석탄탐사와 탄광개발, 석탄생산과 리용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석탄탐사

#### 제10조 (석탄탐사선행)

석탄탐사를 선행시키는 것은 석탄공업발전의 중요담보이다.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석탄탐사를 탄광개발과 석탄생산에 앞서워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1조 (석탄탐사계획의 작성)

석탄탐사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석탄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지질상태에 기초하여 탐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12조 (석탄탐사의 분류)

석탄탐사는 전망탐사와 현행탐사, 작업탐사로 나누어 한다.

전망탐사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소속 탐사기관, 기업소가, 현행탐사는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소속 탐사기관, 기업소가, 작업탐사는 해당 탄광이 한다.

석탄탐사를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는 전망탐사, 현행탐사, 작업탐사에 따르는 임무와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전망탐사에서는 10~20년이상 앞질러가면서 석탄자원의 분포상태를 립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히며 유망한 석탄매장지를 더 많이 찾아낸다.

현행탐사에서는 운영중에 있거나 개발중에 있는 탄광의 심부와 주변구역에서 10년이상 캘수 있는 석탄매장량을 넉넉히 확보한다.

탄광에서의 작업탐사는 예견된 채굴구역에서 합리적인 채굴을 보장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는데 중심을 두고 1년이상 앞세워 조직진행한다.

### 제13조 (석탄탐사설계)

석탄탐사설계는 석탄탐사기관, 기업소가 한다.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지질조사, 예비탐사, 세부탐사단계별로 탐사설계를 작성하여 대상에 따라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또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은 탐사설계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탐사과정에 지질상태가 새롭게 해명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맞게 탐사설계를 고치고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또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 (설계에 의한 석탄탐사)

석탄탐사는 승인된 설계대로 하며 탐사가 끝나면 시추구멍과 지질도랑, 탐사우물을 채굴작업과 토지리용에 지장이 없도록 메워야 한다.

### 제15조 (탐사속도와 효율제고)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앞선 탐사력량을 강화하며 탐사기술과 방법을 개선하고 탐사속도와 효율을 높여 아직 찾아내지 못한 석탄자원을 적극 탐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참사에 필요한 탐사설비와 자재, 동력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16조 (석탄매장량의 계산)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탐사한 석탄매장량을 비상설자원개발심의 위원회에서 정한 석탄매장량계산기준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 제17조 (계산된 석탄매장량의 심의)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석탄매장량계산자료를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또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에 내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은 석탄매장량계산자료에 대한 심의를 정확히 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 제18조 (석탄매장량의 등록)

심의승인된 석탄매장량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 해당 탐사기관, 기업소에 등록한다.

등록되지 않은 석탄매장량은 탐사실적으로 평가받을수 없으며 탄광개발설계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제19조 (석탄매장량의 실사)**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은 석탄매장량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석탄매장량의 변동정형을 정확히 장악등록하여야 한다.

## 제3장 탄광개발

**제20조 (계획적인 탄광개발)**

탄광개발은 석탄생산기지를 꾸리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탄광개발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탄광개발승인)**

탄광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설자원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없이 탄광개발을 할수 없다.

중소탄광의 개발승인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2조 (탄광개발신청문건의 제기)**

탄광개발승인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신청문건을 만들어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 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은 탄광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통일적으로 검토하고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규모 탄광개발을 신청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구석탄탐사기관,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 지하자원보호감독기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으며 중소규모탄광을 개발하려는 구역이 이미 승인된 탄광개발구역인 경우에는 해당 탄광 및 그 상급기관과도 합의하여야 한다.

**제23조 (탄광개발신청문건의 심의)**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탄광개발신청문건을 접수한 경우 탄광개발목적과 규모, 석탄매장량, 품위같은것을 정확히 심의하고 탄광개발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탄광개발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탄광개발승인문건을 발급한다. 이 경우 탄광개발승인문건에는 탄광개발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석탄매장량, 탄광개발구역, 탄광개발기간, 채굴좌표경계선, 탄광개발에서 지켜야 할 사항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탄광개발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혀 탄광개발신청문건을 돌려보낸다.

**제24조 (탄광개발승인의 등록)**

탄광개발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날부터 1개월안에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에 탄광개발승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탄광개발승인변경신청)**

탄광개발을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승인문건에 지적된 명칭, 탄광개발구역 및 기간, 채굴좌표경계선 같은것이 달라졌을 경우 탄광개발승인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문건을 만들어 제22조에 따라 해당 기관과 협의하고 비상설자원개발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26조 (토지리용허가, 위치지정)**

탄광개발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리용허가질서에 따라 토지리용허가, 위치지정을 받아야 한다.

탄광개발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토지리용허가, 위치지정을 해줄수 없다.

**제27조 (탄광개발금지구역)**

다음의 구역에서는 탄광개발을 할수 없다.

1. 중요공업지구와 도시지구, 도시상수도수원구역
2. 철도, 중요도로와 그 주변의 일정한 구역
3. 중요강하천, 언제와 그 주변의 일정한 구역
4.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자연보호구, 명승지, 력사문화유적구역
5. 그밖에 국가가 자원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정한 구역

**제28조 (중소규모탄광의 개발기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나의 중소규모탄광만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석탄매장량과 소요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둘이상의 중소규모탄광을 개발할수도 있다.

대규모탄광의 개발전망구역과 현행채굴에 지장을 줄수 있는 구역에서는 중소규모탄광을 개발할수 없다.

**제29조 (탄광개발계획의 작성)**

탄광개발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석탄탐사자료와 탄광개발승인문건에 기초하여 탄광개발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제30조 (탄광개발기술과제의 작성, 승인)**

탄광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기술과제를 작성하여야 한다.

탄광개발기술과제에는 개발위치와 립지조건, 개발대상의 능력과 규모, 특성, 생산기술공정과 생산설비, 원료, 연료, 동력의 소요량, 공사비, 개발기간, 시공기관 같은 설계작성에 필요한 기술경제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작성한 탄광개발기술과제는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국가계획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1조 (탄광개발과제설계, 기술설계의 작성, 승인)**

탄광개발과제설계, 기술설계의 작성은 탄광설계기관이 한다.

탄광설계기관은 탄광개발기술과제에 기초하여 탄광개발과제설계, 기술설계를 작성한 다음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중앙설계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설계의 요구준수)**

탄광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발단계와 순차를 바로 정하고 설계의 요구대로 탄광을 개발하여야 한다.

탄광개발에는 탄층의 농임조건에 따라 합리적인 개발방법을 받아들여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제33조 (준공검사)**

탄광을 개발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굴준비가 끝나면 건설감독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탄광은 석탄생산을 할수 없다.

**제34조 (중소규모탄광후보지의 지정)**

승인된 중소규모탄광개발구역이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대규모탄광을 개발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탄광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다른 중소규모탄광개발후보지를 정해주어야 한다.

대규모탄광은 중소규모탄광에 갱을 임대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5조 (생활환경, 생태환경의 보존)**

탄광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과정에 국토와 자원, 자연풍치를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6조 (탄광개발구역에서 건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전망구역에 도로, 철도, 공장, 수원지 같은것을 건설하려 할 경우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탄광개발구역에 시설물을 건설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탄광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제4장 석탄생산

**제37조 (석탄중산)**

석탄생산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석탄을 캐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굴진과 박토를 석탄생산에 앞세우고 능률적인 채굴방법을 받아들여 석탄생산을 적극 늘여야 한다.

**제38조 (석탄생산계획의 작성)**

석탄생산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석탄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석탄생산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성있는 석탄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39조 (굴진선행)**

탄광은 굴진을 생산에 앞세워 채굴장을 여유있게 마련하여야 한다.

기본굴진은 3년분이상, 준비굴진은 6개월분이상 생산에 앞세워야 한다.

**제40조 (채굴의 합리적조직)**

탄광은 채굴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채굴방법을 개선하여 채굴기준과 석탄매장량계산기준이 되는 석탄을 모두 캐야 한다.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탄층만 골라 캐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1조 (채굴좌표경계선의 준수)**

탄광은 승인된 채굴좌표경계선안에서 채굴작업을 하여야 한다.

채굴과정에 채굴좌표경계선을 벗어나거나 보호간주를 마음대로 채굴할수 없다.

**제42조 (캘수 없는 석탄장악)**

탄광은 채굴기준이 되지 못하거나 채굴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당장 캘수 없는 석탄을 장악 등록하고 채굴조건이 갖추어지는데 따라 채굴하여야 한다.

**제43조 (석탄운반)**

탄광은 탄상조건과 운반조건에 맞게 운반능력을 높이고 여러가지 운반수단을 적극 받아들이며 운반설비를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고 만가동시켜 캐낸 석탄을 제때에 운반하여야 한다.

**제44조 (선탄)**

탄광은 현대적인 선탄시설을 갖추고 캐낸 석탄에 대한 선별작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석탄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선탄과정에 나온 버력은 정해진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 (품질검사)**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중앙규격지도기관, 품질감독기관은 석탄의 용도에 따르는 품위와 규격을 바로 정하고 품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46조 (설비관리 및 보장)**

탄광은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규정대로 하고 보수정비를 정상적으로 하여 설비가동과 능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탄광설비생산기업소는 탄광의 기계화수준일 높일수 있도록 생산조직을 짜고들고 앞선 과학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현대적이고 능률적인 탄광설비와 부속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탄광에 계획대로 보내주어야 한다.

탄광설비를 폐기하면서 나오는 파철, 파유색금속은 탄광의 설비보수에 리용하여야 한다.

#### 제47조 (사고와 자연피해방지)

탄광은 석탄생산에서 기술규정과 로동안전규정을 엄격히 지켜 사고와 자연피해를 막아야 한다. 채굴장에는 락반, 가스돌출, 출수에 의한 피해를 막을수 있는 로동안전시설과 조명, 통풍 같은것을 보장할수 있는 로동위생조건을 충분히 갖추어놓으며 로동안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48조 (로동보호용구의 보장)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부들에게 로동보호용구를 규정대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로동보호용구가 없이는 갱안에 들어갈수 없다.

#### 제49조 (폐광, 폐갱)

탄광을 폐광하거나 갱을 폐갱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하자원보호감독기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제5장 석탄의 공급 및 판매, 리용

#### 제50조 (석탄공급계획의 작성)

석탄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석탄생산량과 수요, 설비 및 자재보장대책가능성, 석탄소비기준, 생산지와 소비지의 배치상태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51조 (석탄공급 및 판매계약의 체결과 리행)

석탄을 공급,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석탄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공급 및 판매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탄공급계약은 석탄공급계획에 따라 맺는다.

계획외의 석탄은 공급할수 없다.

#### 제52조 (석탄계량)

석탄을 공급,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검정을 받은 계량수단을 갖추고 석탄을 정확히 계량하여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석탄을 공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계량한 수량에 따라 대금결제를 하여야 한다.

**제53조 (품위와 규격에 맞는 석탄공급 및 판매)**

석탄을 공급,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석탄을 용도에 따르는 품위와 규격대로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용도에 따르는 석탄품위와 규격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중앙규격지도기관이 한다.

**제54조 (주민연료로 리용할 석탄의 공급)**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로 리용할 석탄을 계획대로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주민연료로 리용할 석탄공급은 월별, 분기별 또는 집중적으로 할수 있다.

**제55조 (석탄수송)**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수단을 정상적으로 정비하고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석탄을 제때에 실어나르며 수송도중에 석탄이 허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화력발전소에는 전력생산용석탄수송순환렬차를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제56조 (석탄보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저탄장, 석탄저장고 같은 석탄보관시설을 정해진대로 꾸리고 석탄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석탄보관시설이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석탄을 공급할수 없다.

**제57조 (석탄소비기준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리용에서 정해진 소비기준을 엄격히 지키며 석탄리용설비와 기술공정을 개조, 갱신하여 석탄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소비기준을 초과하여 석탄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석탄을 공급할수 없다.

**제58조 (석탄소비기준저하를 위한 과학기술적대책)**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중앙교육지도기관,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소비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에 맞물려 책임적으로 집행하며 석탄을 대량적으로 소비하는 단위에 과학기술력량을 집중하여 석탄소비기준을 결정적으로 줄이기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59조 (석탄의 지정된 용도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을 정해진 용도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석탄을 비법적으로 팔고 사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60조 (저열탄, 연재탄, 초무연탄의 리용)**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국가계획기관, 해당 기관은 저열탄, 연재탄, 초무연탄을 주민연료로 널리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열탄, 연재탄, 초무연탄의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제61조 (중소규모탄광에서 생산한 석탄의 리용)**

중소규모탄광에서 생산한 석탄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연료로 쓰거나 주민연료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62조 (석탄건류, 액화, 가스화)**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을 건류, 액화, 가스화하여 그 리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63조 (석탄수출제한)**

석탄수출을 극력 제한한다.

석탄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합의한데 따라 내각의 승인을 받은 단위만이 수출할수 있다. 석탄수출단위는 비상설수출입심의위원회에서 석탄수출할당량을 받는데 따라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수출계획을 받고 석탄을 수출하여야 한다.

석탄수출할당량 및 계획을 석탄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시달하거나 다른 탄광으로부터 석탄을 사들여 수출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 제6장 석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4조 (석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석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석탄공업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석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65조 (석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

석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석탄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66조 (석탄부문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가격기관은 탄광의 생산정상화와 경영활동조건, 탄부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석탄부문의 기업체뭇과 석탄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석탄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석탄부문의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 쓸수 없다.

**제67조 (탄부우대 및 생활조건보장)**

탄부는 석탄생산을 책임진 직접적담당자로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탄부들을 적극 우대하고 그들의 생활조건과 노동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는것은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모든 탄부들이 탄전의 주인으로서의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석탄생산에 집중할수있게 생활조건과 노동조건을 기준대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68조 (탄광보호)**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과학화하여 폭우,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탄광을 보호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막는데 필요한 기상, 지진자료 같은것을 제때에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탄광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69조 (탄광경영방법의 개선, 종업원에 대한 교양)**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경영방법을 부단히 개선완비하여야 한다.

탄광은 종업원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고 과학기술보급과 전습을 짜고들어 그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0조 (석탄사업실태보고)**

탄광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과 석탄생산, 공급정형을 정상적으로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 (석탄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석탄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석탄탐사와 탄광개발, 석탄생산, 공급 및 판매, 리용, 석탄소비기준의 준수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2조 (민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원상복구, 손해보상,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제73조 (탄광개발승인의 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탄광개발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1. 탄광개발신청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
2. 탄광개발이 승인된 날부터 1개월안에 탄광개발승인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3. 탄광개발이 승인된 날부터 6개월안으로 개발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개발에 착수하여 6

개월이상 개발을 중지하였을 경우

4. 탄광개발권을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었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탄광개발을 합동하였을 경우

**제74조 (시설물의 철거)**

승인없이 탄광개발구역에 시설물을 건설하였을 경우에는 철거시킨다.

**제75조 (변상처벌)**

석탄소비기준을 초과하여 석탄을 량비하였거나 석탄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석탄을 루실시켰을 경우에는 변상처벌을 준다.

**제76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부과한다.

1. 해당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광을 개발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2. 설계의 요구를 어기고 탄광을 개발하였을 경우 30만~150만원
3.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고 석탄을 생산하였을 경우 150만원
4. 석탄탐사, 탄광개발과 석탄생산과정에 환경을 파괴시켰을 경우 20만~150만원
5. 로동안전조건을 지키지 않고 탄광개발 또는 석탄생산을 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6.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탄층만 골라 췄을 경우 150만원

**제77조 (중지처벌)**

제76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탄광개발 및 석탄생산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시킨다.

**제78조 (몰수처벌)**

석탄을 비법적으로 채취, 밀매하였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되었거나 위법행위로 얻은 설비와 석탄, 자금과 물품을 몰수한다.

**제79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석탄탐사, 탄광개발, 석탄생산, 석탄공급과 관련한 계획을 바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2. 석탄탐사, 채굴을 무책임하게 하여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량비하였을 경우
3. 석탄탐사를 승인된 설계대로 하지 않았거나 탐사가 끝난 다음 시추구멍, 지질도랑, 탐사우물을 메우지 않았을 경우
4. 석탄매장량의 계산, 심의, 등록, 실사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5. 승인없이 탄광개발 또는 석탄생산을 하였을 경우
6. 탄광개발승인등록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7. 탄광개발금지구역에서 탄광개발을 하도록 승인하였을 경우
8. 탄광개발을 승인된 설계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9.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고 석탄생산을 하였을 경우
10. 탄광개발승인, 토지이용허가, 위치지정, 준공검사 같은 탄광개발과 석탄생산에 필요한 수속을 비법적으로 하였을 경우
11. 승인없이 갱을 양도하였거나 임대하였을 경우
12. 석탄탐사, 탄광개발과 석탄생산과정에 환경을 파괴시켰을 경우
13. 승인없이 탄광개발구역에 시설물을 건설하였을 경우
14. 굴진을 정해진대로 선행시키지 않아 석탄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5.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탄층만 골라 캐거나 채굴과정에 채굴좌표경계선을 벗어나거나 보호간주를 마음대로 캐을 경우
16. 선탄 또는 품질검사를 바로하지 않아 석탄의 규격과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17. 로동안전조건, 위생조건 같은것을 보장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거나 탄부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18. 로동보호물자를 기준대로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19. 승인없이 탄광을 폐광시켰거나 갱을 폐갱시켰을 경우
20. 계획에 없는 석탄을 공급하였을 경우
21. 석탄공급 및 수송조직을 바로하지 않아 다른 부문의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2. 석탄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거나 용도에 맞게 리용하지 않았거나 석탄소비기준을 지키지 않아 석탄을 낭비하였을 경우
23. 석탄을 비법적으로 팔고났거나 수출하였을 경우
24. 석탄부문의 기업체뭇과 석탄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하지 않아 석탄생산과 탄부생활조건보장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5. 로력, 전력, 설비, 자재, 자금 등을 계획대로 보장하지 않았거나 석탄부문의 로력,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류용하였을 경우
26. 탄부들의 생활조건과 로동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아 탄부들의 건강과 생활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7. 탄광시설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
28. 석탄사업실태보고를 제때에 하지 않아 국가적인 석탄생산, 공급, 판매정형장악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앞항 1~28호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

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80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네르기관리법

주체87(1998)년 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8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9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에네르기관리법의 기본

### 제1조 (에네르기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네르기관리법은 에네르기의 생산과 공급,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에네르기낭비를 없애고 에네르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늘어나는 에네르기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에네르기관리는 에네르기의 생산과 공급, 리용과정을 조직지휘하는 기능이다.  
에네르기에는 석탄, 원유, 수력, 풍력, 태양빛과 열, 지열, 생물질, 핵물질 같은것과 그것을 원천으로 하여 생산된 열, 동력 같은것이 속한다.

### 제3조 (에네르기부문의 계획적발전원칙)

에네르기부문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경제의 자립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관건적인 사업이다.  
국가는 에네르기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현대적인 에네르기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에네르기부문을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계획적으로 발전시킨다.

### 제4조 (에네르기의 생산, 공급원칙)

에네르기의 생산과 공급은 에네르기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고 에네르기를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에네르기생산을 늘이고 질을 높이며 수요에 맞게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 제5조 (에네르기의 리용과 절약원칙)

에네르기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에네르기의 소비를 줄이고 경제적효과를 높이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와 지역적특성에 맞게 에네르기형태별로 리용분야를 규정하고 리용효율을 높이며 나라의 경제를 에네르기절약형으로 건설하도록 한다.

**제6조 (에네르기관리의 과학연구사업원칙)**

국가는 에네르기관리부문에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며 에네르기관리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7조 (에네르기관리의 과학화, 대중화원칙)**

국가는 선진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에네르기관리를 과학화하며 에네르기관리에 대한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에네르기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8조 (에네르기관리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에네르기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9조 (법의 적용)**

이 법은 에네르기를 생산, 공급,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에네르기의 생산, 공급

**제10조 (에네르기생산과 공급의 기본요구)**

에네르기생산과 공급을 잘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 요요구이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에네르기생산과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고 생산 및 공급조직을 바 로하여 에네르기생산을 늘이고 계획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에네르기자원조사)**

에네르기자원을 조사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자원조사계획에 따라 필요한 수 단을 갖추고 해당 지역의 에네르기자원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에네르기자원조사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제12조 (에네르기생산계획의 작성 및 수행)**

에네르기생산계획은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세운다.

에네르기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에네르기의 생산확대와 질제고)**

에네르기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진적인 에네르기생산기술을 받아들이고 에네르기생산 설비를 부단히 현대화하여 생산을 늘이고 질을 높여야 한다.

**제14조 (자가소비저하)**

에네르기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가소비를 최대한 줄일수 있게 자가소비체통을 합리적 으로 구성하고 자가소비률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제15조 (에네르기 공급계획의 작성)**

에네르기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세운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 에네르기소비 기준, 에네르기생산지와 소비지의 배치상태, 수송조건, 생산계획, 생산공정의 기술장비수준, 에네르기절약예비 같은것을 고려하여 에네르기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6조 (에네르기공급계약의 체결과 리행)**

에네르기공급기관, 기업소, 단체와 에네르기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 공급계획에 따라 계약을 맺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에네르기는 정해진데 따라 판매계약을 맺고 판매할수 있다.

**제17조 (에네르기의 공급시설관리, 도중손실저하)**

에네르기공급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공급시설을 정해진대로 꾸리고 그 관리를 바로 하며 에네르기공급과정에 도중손실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8조 (에네르기의 계량)**

에네르기공급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을 정해진대로 갖추고 에네르기를 정확히 계량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계량수단은 정기적으로 해당 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에네르기의 수송)**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수송기재를 정상적으로 정비하고 수송 조직을 짜고들어 석탄을 비롯한 에네르기를 제때에 수송하며 그 도중손실을 없애야 한다.

## 제3장 에네르거리용

**제20조 (에네르기균형과 소비계획의 작성)**

에네르기의 합리적리용은 에네르기의 리용효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문별인민경제계획작성에 앞서 중장기, 단기, 년간에네르기생산과 소비사이 균형을 작성하며 이에 기초하여 에네르기 소비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에네르기절약목표와 계획의 시달 및 총화)**

내각과 국가계획기관은 해마다 에네르기절약목표와 계획을 세워 해당 기관에 시달하고 그 집행정형을 엄격히 총화대책하여야 한다.

**제22조 (에네르기규격과 기준의 제정)**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우리 나라의 실정과 세계적인 표준에 맞는 에네르기 규격과 에



네르기소비기준, 에네르기효률기준 같은 에네르기관련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규격과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23조 (에네르기의 합리적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정에 맞게 에네르기관리단계를 설정하고 에네르기리용에 대한 감시, 평가, 분석체계를 바로세워 에네르기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에네르기는 정해진 대상과 용도에 맞게 소비하여야 한다.

**제24조 (에네르기소비정형의 기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에량수단을 갖추고 에네르기소비정형을 정상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에네르기소비대장에는 에네르기총소비량, 종류별소비량, 제품단위당 소비량 같은것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 (에네르기설비리용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설비에 대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만들고 그것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남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은 제때에 보충, 갱신하여야 한다.

**제26조 (효률이 높은 에네르기설비, 기술공정의 도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리용에서 효률이 높은 설비와 기술공정을 받아 들이고 효률이 낮은 설비와 기술공정을 개조, 갱신하여야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생산공정을 설계하는 경우 에네르기를 종합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7조 (에네르기의 리용효률제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열설비의 연소효률, 열효률을 정해진 기술지표대로 보장하며 변환된 력학적에네르기와 열에네르기의 리용효률을 높여야 한다.

**제28조 (에네르기손실의 저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설비에 대한 기술검사와 보수를 정상적으로 하고 열관, 열설비에 대한 보온을 철저히 하여 에네르기손실을 극력 줄여야 한다.

폐열, 남는 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29조 (에네르기설비의 경부하, 무부하운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료와 자재, 에네르기보장조건에 맞게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며 설비들의 경부하운전, 무부하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진적인 에네르기절약기술을 받아들여 에네르기소비를 극력 줄여야 한다.

### 제30조 (연료보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료의 물리화학적특성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시설을 꾸리고 그것을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31조 (에네르기절약형건물의 건설)

국가계획기관, 건설설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을 새로 건설하려 할 경우 에네르기의 공급 및 리용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에네르기절약형으로 설계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명, 난방, 환기와 온수공급에 드는 에네르기를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보온대책을 바로세워 열손실을 적게 하여야 한다.

### 제32조 (중소형발전소건설과 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지역의 수력, 풍력 같은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중소형발전소를 적극 건설하고 그에 대한 기술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발전소의 운영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발전소를 건설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전력수요를 보장하는데 우선적으로 리용한다.

### 제33조 (대용에네르기의 동원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 같은 중요한 에네르기를 대용할수 있는 연료와 초무연탄, 저열탄, 연재탄, 지열, 생물에네르기 같은것을 적극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 제34조 (에네르기효율이 낮은 설비의 제작, 수입, 판매금지)

에네르기효율이 낮은 설비는 제작, 수입, 판매할수 없다.

## 제4장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5조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에네르기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36조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은 에네르기의 생산과 공급, 소비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공급된 에네르기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37조 (에네르기통계분석)

통계기관과 해당 기관은 에네르기통계지표와 장악체계를 바로 세우고 에네르기의 생산과 공급, 리용정형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정해진 기간안에 해당 통계기관과 상급기관에 내야 한다.

**제38조 (에네르기관리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기관은 에네르기관리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에네르기부문에 대하여 정해진데 따르는 재정적우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 (과학기술의 연구와 도입)**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관리부문에 대한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가치있는 기술을 연구완성하며 에네르기효율을 높이는데서 이룩된 과학기술적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40조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에네르기의 생산과 공급,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1조 (민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원상복구, 손해보상,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제42조 (중지처벌)**

에네르기공급시설을 정해진대로 꾸리지 않았거나 에네르기소비가 많은 설비를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에네르기의 생산과 공급, 설비의 운영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시킨다.

**제43조 (몰수처벌)**

에네르기효율이 정해진 기준보다 낮은 설비를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되었거나 위법행위로 얻은 설비와 자금, 물품을 몰수한다.

**제44조 (변상처벌)**

에네르기소비계획과 에네르기소비기준을 초과하여 에네르기를 량비하였거나 에네르기 수송 또는 보관을 바로하지 않아 에네르기를 루실시켰을 경우에는 변상처벌을 준다.

**제45조 (벌금처벌)**

에네르기의 생산, 공급, 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해당 법규에 따라 벌금처벌을 준다.

**제46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 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에너지생산계획을 미달하였거나 에너지공급계약리행질서를 어긋을 경우
  2. 에너지공급시설을 정해진대로 꾸리지 않았거나 에너지도중손실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3. 계량을 정확히 하지 않고 에너지를 공급하였을 경우
  4. 에너지수송과정에 에너지를 루실시켰을 경우
  5. 에너지소비계획과 에너지소비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에너지를 정해진 대상과 용도에 맞지 않게 소비하였을 경우
  6. 에너지절약계획을 미달하였거나 에너지규격과 기준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거나 에너지소비정형에 대한 기록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7. 효율이 낮은 설비와 기술공정을 개조,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8. 열관, 열설비에 대한 보온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에너지설비의 경부하, 무부하운전을 하였을 경우
  9. 연료보관을 바로하지 않아 루실되었거나 에너지효율이 정해진 기준보다 낮은 설비를 제작, 수입, 판매하였을 경우
  10. 에너지통계분석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1. 에너지관리에 필요한 조건보장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2. 에너지관리부문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연구성과도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 앞항 1~12 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별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별을 준다.

**제47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유법

주체96(2007)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12호로 채택

## 제1장 연유법의 기본

### 제1조 (연유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유법은 연유의 생산, 수송과 보관, 공급과 판매, 소비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연유의 량비를 없애고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연유의 정의)

연유는 현대산업의 동력원천의 하나이며 국가의 중요전략물자이다.

연유에는 룬전기재와 가열설비의 연료로 쓰이거나 제조공업의 용매제로 쓰이는 휘발유, 디젤유, 증유, 항공석유 같은 것이 속한다.

### 제3조 (연유생산의 원칙)

연유생산을 늘이는 것은 연유부문 사업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이다.

국가는 연유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질 좋은 연유를 생산하도록 한다.

### 제4조 (연유수송, 보관의 원칙)

연유의 수송과 보관은 연유를 소비지로 실어나르며 관리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연유수송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연유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도록 한다.

### 제5조 (연유공급, 판매에서 지켜야 할 원칙)

연유의 공급과 판매를 바로하는 것은 인민경제발전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연유를 공급, 판매하도록 한다.

### 제6조 (연유소비의 원칙)

연유의 소비는 연유를 생산, 경영활동에 리용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연유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그 소비를 극력 낮추도록 한다.

### 제7조 (기술자, 전문가양성)

국가는 연유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 제8조 (균중적인 연유절약)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연유에 대한 과학지식보급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연유를 극력 아끼고 절약하도록 한다.

**제9조 (교류, 협조)**

국가는 연유사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10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연유를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주민생활에 쓰이는 연유의 관리질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연료법에 따른다.

## 제2장 연유의 생산

**제11조 (연유생산기관)**

연유의 생산은 연유를 확보하여 공급원천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연유생산은 원유가공기업소가 한다.

**제12조 (연유생산계획초안의 작성)**

연유생산은 국가계획에 따라 한다.

연유를 생산하려는 연유가공기업소는 연유생산계획초안을 작성하여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제13조 (연유생산계획의 승인)**

국가계획기관은 원유확보량, 연유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 같은 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제기된 계획초안을 검토하고 연유생산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된 연유생산계획을 원유가공기업소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4조 (연유의 생산)**

원유가공기업소는 원유가공공정을 현대적으로 꾸리며 생산조직을 짜고들여야 한다.

계획된 연유를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의 준수)**

원유가공기업소는 연유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지키며 제정된 규격의 연유를 생산하여야 한다.

연유의 규격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규격지도기관이 한다.

**제16조 (연유출하)**

생산된 연유는 국가품질감독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출하할수 있다.

출하하는 연유는 탱크에서 가스성분을 충분히 제거하고 물이 섞이지 않은것만 하여야 한다.

**제17조 (연유의 수입)**

생산한 연유로 국가적수요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유를 수입한다.

연유의 수입은 수입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한다.

연유의 수입절차와 방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에 따른다.

### 제3장 연유의 수송과 보관

#### 제18조 (연유수송과 보관의 요구)

연유를 정확히 수송하고 보관하는 것은 연유의 질과 량을 보존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연유를 제때에 수송하여 그 보관취급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 제19조 (연유의 수송수단)

연유의 수송은 송유관으로 하거나 화재를 막고 불을 끄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유조차나 유조선 같은 전문수송기재로 한다.

유조차가 없을 경우에는 안전성을 보장할수 있는 화물차로 연유를 수송할수 있다.

#### 제20조 (송유관에 의한 수송)

500t이상 되는 연유의 수송은 송유관으로 한다.

송유관관리운영기관은 연유를 정확히 계량하여 수송하며 연유의 도중손실을 극력없애야 한다.

#### 제21조 (유조선에 의한 수송)

수입하는 연유와 유조차수송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연유의 수송은 유조선으로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조선의 항차조직을 짜고들며 배집증권에 반영된 연유량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제22조 (조차에 의한 수송)

연유생산지 또는 도착지로부터 공급지까지의 연유수송은 유조차로 한다. 이 경우 연유수송을 책임진 인수원이 립회하여야 한다.

립회인이 없이 연유수송과정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는 연유수송기관이 책임진다.

#### 제23조 (연유의 인수)

연유인수원은 연유를 정확히 인수받아야 한다.

연유의 인수는 유조차의 연봉상태를 확인하고 송장에 반영된 현물이 정확한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족되는 량은 원인을 해명하여야 한다.

#### 제24조 (연유의 신고 부리는 작업)

연유를 신고 부리우는 작업은 전문시설이 갖추어진 역과 부두, 공급지에서만 한다.

필요에 따라 전문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곳에서 연유를 신고 부리는 작업을 하려 할 경우에

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5조 (연유의 보관)**

연유의 보관은 연유창에 한다.

연유창에는 연유공급, 판매소와 기관, 단체의 연유보관창고가 속한다.

**제26조 (연유창의 승인)**

연유창은 인민보안기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나오거나 운영할수 있다.

연유창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를 품종별, 규격별로 보관하고 공급할수 있는 시설과 불끄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7조 (연유의 검수)**

연유공급, 판매기관의 연유를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입고되는 연유를 정확히 검수 하여야 한다.

연유의 검수는 연유의 량과 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8조 (연유의 종류별, 규격별보관)**

연유공급, 판매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를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하며 물질이 서로 다른 연유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쓰던 탱크에 다른 종류의 연유를 보관하려 할 경우에는 탱크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제29조 (화재의 방지대책)**

연유공급, 판매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보관취급에서 화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유를 창고에 보관할 경우에는 가스농도에 의한 폭발을 일어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환기시켜야 한다.

**제30조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국가는 연유보관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유창의 일정한 지역을 출입금지구역으로 한다. 출입금지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31조 (출입금지구역에서 금지사항)**

출입금지구역에는 울타리를 치며 그안에는 정해진 성원만이 출입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연유창출입금지구역가까이에서 화재를 일으킬수 있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32조 (원유제품자연손실기준)**

연유공급, 판매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수송과 보관과정에 생기는 자연감모를 계산을 원유제품자연손실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원유제품자연손실기준을 수송조건, 온도, 보관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제33조 (연유의 위탁보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를 연유공급, 판매기관에 위탁보관시킬수 있다. 이 경우 보관료를 내야 한다.

## 제4장 연유의 공급과 판매

**제34조 (연유공급, 판매의 기본요구)**

연유의 공급과 판매는 수요자에게 필요한 연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연유공급, 판매기관은 연유의 공급과 판매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35조 (연유공급계획의 작성과 시달)**

국가계획기관은 연유생산량, 연유설비대수와 소요량,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 같은 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연유공급계획을 세우며 그것을 연유공급기관과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36조 (연유의 공급지령)**

국가연유공급계획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하는 연유는 공급지령에 따라 공급한다. 이 경우 먼저 중요대상에 대한 공급지령을 한다.

**제37조 (연유의 결제)**

연유공급기관은 공급지령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연유를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하는 연유의 결제는 무현금행표로 한다.

**제38조 (연유의 월, 분기 공급)**

국가의 연유공급계획에 따르는 연유공급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한다.

공급계획이 없이 연유를 공급할수 없다.

**제39조 (연유의 판매기관)**

연유의 판매는 수입한 연유를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팔아주는 봉사사업이다.

연유의 판매는 국가의 승인을 받은 연유판매기관만이 한다.

**제40조 (연유공급, 판매소의 배치)**

연유공급, 판매기관은 연유공급, 판매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수요자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연유공급, 판매소는 지역별수요, 교통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주민지로부터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41조 (연유의 판매가격)**

연유의 판매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가격으로 한다.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가격을 어기고 연유를 판매할수 없다.

**제42조 (연유판매의 신청)**

연유를 구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연유판매기관에 필요한 수량을 신청하여야 한다.  
연유판매기관은 신청량에 따르는 판매대금을 계산하여 해당한 전표를 떼주어야 한다.  
전표는 해당한 판매소에게 정한 기간까지 리용할수 있다.

**제43조 (연유의 계량, 공급, 판매)**

연유공급, 판매기관은 연유를 정확히 계량하여 기준대로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연유의 비중을 마음대로 조절하여 연유를 공급, 판매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4조 (연유의 송달)**

연유공급, 판매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주문에 따라 연유를 송달하여 줄수 있다. 이 경우 주문송달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송달비를 내야 한다.

**제45조 (공급, 판매자료의 기록, 보관)**

연유공급, 판매기관은 연유공급, 판매량을 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연유공급, 판매정형을 월 1차이상 실시하며 남거나 모자라는 것은 그 원인을 해명하고 상급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유공급, 판매실사자료는 정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장 연유의 소비

**제46조 (연유의 소비에서 지켜야 할 요구)**

연유의 소비를 바로하는 것은 연유를 절약하고 리용효률을 높이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연유를 정해진 대상과 용도에 맞게 소비하여야 한다.

**제47조 (연유의 계획적소비총화)**

연유를 공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소비계획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소비하여야 한다.  
연유소비정형을 일별, 월별로 총화하여야 한다.

**제48조 (연유소비기준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소비설비를 등록하고 연유소비기준을 지키며 그것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연유소비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제49조 (연유의 리용용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를 생산과 경영활동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연유를 시장같은데서 팔고 사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50조 (연유의 교환)**

연유공급, 판매소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다른 종류의 연유와 교환하여줄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연유교환비율을 지켜야 한다.

**제51조 (연유랑비의 근절)**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연유소비설비의 공회전을 없애며 필요없이 료전기재의 발동을 걸어놓거나 빈차운행 같은 것으로 연유를 량비하지 말아야 한다.

**제52조 (연유소비설비의 교체)**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혁신운동을 벌리고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연유를 많이 소비하는 설비를 적게 쓰거나 쓰지 않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제53조 (연유의 손실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보관시설과 연유설비에 대한 기술검사와 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 연유의 자연손실을 극력 줄어야 한다.

## 제6장 연유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4조 (연유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의 기본요구)**

연유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연유지도기관과 해당 중앙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연유지도기관과 해당 중앙지도기관은 아래 단위의 연유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5조 (기술지도서의 작성)**

중앙연유지도기관은 연유관리기술지도서를 작성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관리기술지도서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6조 (연유부문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은 연유부문 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57조 (연소효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대용연료개발)**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연유의 연소효률을 높이고 대용연료를 개발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연소효율을 높이고 대용연료를 개발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제58조 (연유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연유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연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연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연유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며 위법현상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제59조 (중지)**

연유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연유수입질서를 어겼거나 계획없이 연유를 공급하였거나 연유공급시설, 화재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유의 생산과 공급을 중지시킨다.

**제60조 (보상, 벌금)**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연유를 비법처리하였을 경우
2. 정한 판매가격을 어겼거나 승인없이 연유공급비중을 조절하였을 경우
3. 화재사고를 일으켜 재산상손해를 주었을 경우
4. 연유판매를 잘못하였거나 판매자금을 제때에 입금시키지 않았을 경우
5. 계량계측수단의 눈금과 량을 속여 연유를 공급하였을 경우
6. 연유의 인수와 검수를 잘못하였을 경우
7. 연유와 판매전표를 류실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8. 휘발유, 디젤유에 나프샤, 갱질유, 석유 같은 것을 섞어 질이 나쁜 연유를 공급하였을 경우
9. 위조전표를 리용하였을 경우

**제6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연유부문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법

|              |        |                             |
|--------------|--------|-----------------------------|
| 주체81(1992)년  | 2월 12일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5호로 채택     |
| 주체88(1999)년  | 1월 2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2호로 수정보충 |
| 주체88(1999)년  | 3월 1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19호로 수정보충 |
| 주체110(2021)년 | 1월 20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9호로 수정보충 |

## 제1장 원자력법의 기본

### 제1조 (원자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법은 핵시설의 건설과 운영,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의 에네르기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인민의 생명, 건강과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의 변환과정에 생기는 에네르기이다.
2. 핵시설이란 핵물질을 생산, 리용, 보관하는데 리용되는 시설로서 원자력발전소, 우라늄광산, 우라늄정광공장, 핵연료봉공장, 폐연료재처리시설 같은것이다.
3. 원자력발전소란 원자에네르기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소이다.
4. 핵물질이란 핵원료 및 핵연료물질이다.
5. 방사성동위원소란 동위원소들가운데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불안정한 동위원소이다.

### 제3조 (핵동력공업발전원칙)

핵동력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국가의 에네르기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핵동력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주체적인 핵동력공업을 창설하고 첨단과학기술의 토대우에서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4조 (핵안전보장원칙)

핵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하는것은 핵동력공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핵시설을 선진과학기술과 검증된 국제적기준에 부합되게 안전성을 담보하여 건설, 운영하도록 한다.

**제5조** (방사성광물의 탐사, 채취선행원칙)

국가는 핵시설건설에 앞서 핵물질생산을 위한 우라늄, 토리움 같은 방사성광물의 탐사와 채취를 선행시키도록 한다.

**제6조** (과학기술인재양성, 과학연구사업원칙)

국가는 원자력부문의 과학기술인재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도록 한다.

## 제2장 핵시설의 건설

**제7조** (핵시설건설주)

핵시설건설은 국가핵동력기관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이 아래부터 핵시설건설주기관, 기업소라고 한다.)가 한다.

핵시설건설주기관, 기업소는 핵시설의 설계, 설비제작, 원료보장, 폐기물처리, 대상별과제집 행정형에 대한 장악통제 등 핵시설건설과 관련한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한다.

**제8조** (기술과제서, 건설총계획)

핵시설건설주기관, 기업소는 핵시설건설을 위한 기술과제서와 건설총계획을 작성하여 건설 대상에 따라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술과제서와 건설총계획의 작성, 심의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9조** (부지선정승인)

핵시설건설주기관, 기업소는 부지선정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합의를 거쳐 국가 핵안전감독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지선정승인신청서에는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의 합의문건과 건설부지에 대한 조사보고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같은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핵시설설계의 작성, 승인)

핵시설설계는 정해진 설계기관, 기업소가 한다.

핵시설설계는 승인된 기술과제서에 따라 작성하여 비상설핵시설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상설핵시설설계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1조** (핵시설건설계획)

핵시설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승인된 핵시설건설총계획에 따라 건설계획을 세우고 핵시설건설주와 시공주 기관, 기업소에 대상건설계획을 정확히 맞물려주어야 한다.

#### 제12조 (건설허가)

핵시설건설주기관, 기업소는 건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핵안전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건설허가신청서에는 원자력발전소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같은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가핵안전감독기관은 건설허가신청서를 검토, 확인하고 승인하는 경우 건설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3조 (시공 및 검사)

핵시설시공주기관, 기업소는 시공조직과 지도를 바로하며 건설물시공과 계통 및 설비설치를 설계와 공법의 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핵시설건설주, 시공주기관, 기업소는 시공전기간 공정검사 및 심의체계를 세우고 안전성 및 품질검사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핵시설건설주, 시공주기관, 기업소와 대상설비생산기관, 기업소는 안전성 및 품질검사에서 지적된 결함을 제때에 퇴치하며 건설물의 질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보증하여야 한다.

#### 제14조 (건설자재, 설비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품질이 보장된 자재와 설비를 시공에 앞세워 보장하여야 한다.

핵시설건설자재와 설비에 대한 품질보증과 관련한 질서는 국가핵안전감독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 제15조 (핵시설의 시운전)

핵시설건설주기관, 기업소는 시운전계획을 세우고 각 계통에 대한 계통별시운전, 부분시운전, 총시운전을 시운전지도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제16조 (방사선보호구역의 설정)

국가핵안전감독기관은 핵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의 일정한 구역에 방사선보호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관리는 해당 기관, 기업소가 한다.

방사선보호구역출입 및 행동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승인없이 방사선보호구역안에 건물이나 시설을 건설할수 없다.

#### 제17조 (핵시설건설기록, 보관)

핵시설건설주, 시공주기관, 기업소는 핵시설건설 진행정형을 문건이나 사진, 록화물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제3장 핵시설의 운영

### 제18조 (운영허가)

핵시설을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핵시설운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핵안전감독기관에 내야한다.

핵시설운영허가신청서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핵시설의 시운전보고서,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핵폐기물처리계획서 같은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가핵안전감독기관은 운영허가신청서를 검토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며 승인하는 경우 운영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9조 (안전검사)

국가핵안전감독기관과 핵시설운영기관, 기업소는 핵시설의 운영과정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상태와 핵연료의 생산, 리용, 보관정형, 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방사선보호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핵시설운영기관, 기업소는 검사과정에 지적된 결함을 제때에 퇴치한 다음 국가핵안전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 (보수와 시험 및 검사)

핵시설운영기관, 기업소는 핵시설의 보수와 시험 및 검사계획을 세우고 모든 구조물과 설비, 계통 구성요소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와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 (안전관리)

핵시설운영기관, 기업소는 핵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며 운영전기간 운영업무수행정형을 정기적으로 심의하고 핵안전기준에 맞게 안전성을 평가하여 핵시설의 안전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핵시설의 안전관리정형을 국가핵안전감독기관에 정상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조 (방사능감시)

핵시설운영기관, 기업소는 항시적인 방사능감시체계를 세우고 핵시설과 그 주변에 대한 방사능감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방사선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방출되는 경우 제때에 국가핵안전감독기관과 해당 지역의 사회안전기관에 통보하고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23조 (핵시설운영성원자격)

핵시설운영성원으로는 원자력분야의 전문교육을 받고 해당한 자격을 가진 성원만이 될수 있다.

핵시설운영성원자격을 주는 사업은 해당 양성기관이 한다.

핵시설운영기관, 기업소는 운영성원양성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24조 (폐업 및 해체)**

핵시설을 폐업 또는 해체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해당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핵안전감독기관에 내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폐업 및 해체절차와 방법은 국가핵안전감독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25조 (핵시설의 운영, 폐업 및 해체정형의 기록, 보관)**

핵시설운영기관, 기업소는 핵시설의 운영, 폐업 및 해체정형을 문건이나 사진, 록화물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장 핵물질의 생산과 리용

**제26조 (방사선보호대책수립)**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광물의 탐사와 채취, 핵물질의 생산, 리용과정에 방사선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한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7조 (방사성광물의 탐사, 채취)**

핵물질생산을 위한 우라늄, 토리움 같은 방사성광물의 탐사와 채취는 정해진 전문탐사, 채취기관, 기업소가 한다.

방사성광물의 탐사, 채취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8조 (핵물질의 생산, 리용승인)**

핵물질을 생산,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핵물질취급허가신청문건을 작성하여 국가핵안전감독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안전관련규정, 품질보증계획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같은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 (핵물질의 등록, 품질검사)**

핵물질을 생산하거나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핵물질을 국가핵안전감독기관에 등록하며 정해진데 따르는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핵물질보관)**

핵물질을 보관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핵물질을 기술적요구에 맞게 꾸려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핵물질보관장소에 대한 국가핵안전감독기관의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핵물질의 입출고)**

핵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핵물질의 입출고를 해당 성원의 립회밀에 승인된 입출고 문건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출고정형은 입출고대장에 기록한다.

### 제32조 (핵물질의 수송)

핵물질을 수송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핵물질수송을 위한 수단과 조건을 갖추고 국가핵안전감독기관의 안전성검사와 해당 사회안전기관의 수송허가를 받은 다음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 제33조 (핵물질의 수출입승인)

핵물질을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품명과 수량, 용도, 기술적특성을 밝힌 수출입신청문건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경유를 받아 국가핵안전감독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한 핵물질은 제때에 국가핵안전감독기관과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34조 (핵폐기물처리)

핵폐기물처리는 국가핵안전감독기관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전문핵폐기물처리기관, 기업소가 한다.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

### 제35조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리용승인)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신청문건을 작성하여 국가핵안전감독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또는 리용목적, 오염방지대책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 제36조 (방사성동위원소의 등록)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리용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는 방사성동위원소를 국가핵안전감독기관과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는 리용할수 없다.

### 제37조 (방사성동위원소의 보관)

방사성동위원소를 보관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방사성동위원소를 기술적요구에 맞게 꾸려진 승인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38조 (방사성동위원소리용장치의 제작승인)

방사성동위원소리용장치를 제작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문건을 작성하여 국가핵안전감독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작된 방사성동위원소리용장치는 국가핵안전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39조 (방사성동위원소리용장치의 사용허가, 등록)

방사성동위원소리용장치를 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핵안전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리용장치는 국가핵안전감독기관과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등록하고 방사선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 (방사성동위원소리용장치의 폐기)**

폐기하려는 방사성동위원소리용장치는 국가핵안전감독기관이 정한 해당 기관, 기업소가 한다.

**제41조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출입)**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성동위원소리용장치를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수출입승인신청 문건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경유를 받아 국가핵안전감독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한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성동위원소리용장치는 제때에 국가핵안전감독기관과 사회안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2조 (방사성폐물의 저장 및 처리)**

방사성폐물처리기관, 기업소는 방사성폐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을 방사선안전기준의 요구에 맞게 건설하고 관리하며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저장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방사성폐물의 저장 및 처리정형은 문건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 제6장 원자력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및 감독통제

**제43조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노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재정기관, 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원자력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기술자료, 전력, 설비, 연료, 자재, 자금 같은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원자력부문의 로력과 기술자료, 전력, 설비, 연료, 자재, 자금 같은것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44조 (방사선피해보상)**

해당 기관, 기업소는 원자력부문의 종업원들에 대한 의학적, 선량학적검사를 정상적으로 하여 방사선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및 회복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자력부문의 종업원들에게는 정해진데 따라 원자력가급금제, 보충휴가제, 사회보장금제를 실시하며 영양제, 노동보호물자 같은것을 기준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45조 (감독통제)**

핵시설의 건설과 운영,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핵안전감독기관이 한다.

**제46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색금속법

주체95(2006)년 8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03호로 채택  
주체98(2009)년 7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7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유색금속법의 기본

### 제1조 (유색금속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색금속법은 유색금속의 생산, 공급과 리용, 회수와 수매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유색금속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유색금속의 정의)

유색금속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유색금속에는 철을 제외한 모든 금속이 속한다.

### 제3조 (유색금속의 생산원칙)

국가는 유색금속생산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생산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 제4조 (유색금속의 공급과 리용원칙)

국가는 유색금속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며 인민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 제5조 (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원칙)

국가는 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체계를 바로세우고 그것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도록 한다.

### 제6조 (전군중적인 유색금속관리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유색금속관리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해설선전하여 그들이 유색금속을 귀중히 여기고 예비를 적극 찾아내도록 한다.

### 제7조 (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유색금속의 광석이나 정광, 제품과 가공절단품, 절삭밥, 잔사, 사장되어 있거나 못쓰게 된 유색금속제품 같은 파유색금속의 관리와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금, 은, 백금 귀금속관리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유색금속의 생산

### 제8조 (유색금속생산의 기본요구)

유색금속생산을 늘이는 것은 유색금속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기업관리와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유색금속생산을 계획적으로 늘여야 한다.

### 제9조 (유색금속생산계획의 작성 및 실행)

국가계획기관은 유색금속생산가능량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유색금속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유색금속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 제10조 (선광실수률, 정광품위의 보장)

유색금속정광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는 선광실수률과 정광의 품위를 정해진 기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선광실수률과 정광품위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이 한다.

### 제11조 (유색금속광석, 정광의 보관관리)

해당 기관, 기업소는 생산한 유색금속광석이나 정광을 책임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유색금속광석이나 정광은 비법적으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개인에게 넘겨줄수 없다.

### 제12조 (제련실수률의 보장)

유색금속을 제련하는 기관, 기업소는 정한 제련실수률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련실수률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이 한다.

### 제13조 (유색금속정광이 수송)

유색금속정광을 수송하는 기관은 정광의 수분을 기준으로 보장하며 정광이 류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장 유색금속의 공급과 리용

### 제14조 (유색금속의 공급과 리용의 기본요구)

유색금속의 공급과 리용을 바로하는 것은 유색금속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의 공급계획을 정확히 작성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유색금속의 공급)**

유색금속은 국가계획에 따라 유색금속회수계획을 수행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한다.  
유색금속을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서 발급한 유색금속회수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제16조 (파유색금속의 공급)**

파유색금속의 공급은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이 한다.  
파유색금속을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이 승인한 파유색금속공급문건을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 내야 한다.

**제17조 (유색금속의 수송)**

유색금속을 수송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의 경유를 받은 판매문건을 지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유색금속은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서 발급한 송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18조 (유색금속제품생산소비기준)**

유색금속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제품생산소비기준을 작성하고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색금속제품생산소비기준은 어길수 없다.

**제19조 (유색금속의 계획적리용)**

유색금속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받은 유색금속을 해당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계획에 없는 제품생산에 유색금속을 리용할수 없다.

**제20조 (유색금속의 자체리용)**

회수하게 되었거나 대품으로 받은 유색금속을 자체로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과 합의하고 국가계획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유색금속의 수출)**

유색금속을 수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수출문건에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파유색금속과 그 주피는 수출할수 없다.

**제22조 (유색금속의 보관시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의 물리화학적특성에 맞게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보관시설은 정해진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유색금속가공설비의 비법소유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승인없이 용해, 주조, 압연, 연신설비 같은 유색금속가공설비를

가지고있을수 없다.

## 제4장 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

### 제24조 (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의 기본요구)

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는 유색금속의 리용과정에 생기는 파유색금속을 제때에 거두어들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을 계획적으로 회수, 수매하여야 한다.

### 제25조 (유색금속의 회수계획실행)

국가계획기관과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월, 분기, 연간 유색금속회수계획을 작성하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유색금속회수계획실행평가는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서 발급한 유색금속회수확인문건에 따라 한다.

### 제26조 (유색금속의 회수기간, 비율)

유색금속회수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리용과정에 생기는 파유색금속을 월에 1차씩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 바쳐야 한다. 이 경우 유색금속회수비율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 제27조 (유색금속폐기품의 회수)

유색금속이 들어있는 전도장치, 설비, 비품 같은 것을 폐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과정에 나오는 유색금속은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 바쳐야 한다.

### 제28조 (리용하지 못한 유색금속의 회수)

유색금속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의 변경 같은 사정으로 리용하지 못한 유색금속을 3개월안으로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 바쳐야 한다.

리용하지 못한 유색금속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과 합의하고 국가계획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9조 (몰수한 유색금속의 회수)

검찰기관과 인민보안기관, 재판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몰수한 유색금속을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몰수한 유색금속을 넘겨주고 받은 질서는 압수, 몰수규정에 따른다.

### 제30조 (유색금속회수확인문건의 발급)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은 유색금속을 바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유색금속회수확인문건

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 (유색금속의 수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이나 해당 수매기관에 유색금속을 수매할수 있다.

유색금속을 수매받은 기관은 그것을 품종별로 정확히 계량하고 해당한 값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2조 (수매받은 유색금속의 회수)**

해당 수매기관은 수매한 유색금속을 수매대장에 정확히 기록하고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유색금속을 넘겨받은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은 해당한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3조 (유색금속의 교환)**

상업기관과 해당 수매기관은 국가계획에 따라 유색금속제품을 파유색금속과 교환하여 줄수 있다.

유색금속제품과 파유색금속을 교환하는 상업기관과 수매기관은 해당 제품의 유색금속소비기준을 초과하여 파유색금속을 받지 말아야 한다.

**제34조 (수매, 교환할수 없는 유색금속)**

상업기관과 해당 수매기관은 동, 연, 아연, 알루미늄주괴 같은 유색금속제품과 가정용품을 제외한 유색금속부속품, 전기선, 통신선같이 그대로 쓸수 있는 유색금속제품을 수매받거나 교환용으로 받지 말아야 한다.

**제35조 (비법적인 유색금속의 회수, 매매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법적으로 유색금속을 거두어들이거나 또는 보관, 운반하거나 팔고 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유색금속을 다루지 않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파유색금속회수과제를 줄수 없다.

**제36조 (유색금속의 대금결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제품에 대한 대금결제를 판매기관, 파유색금속에 대한 대금결제를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 제5장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7조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유색금속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유색금속관리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8조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유색금속감독 및 회수지도 기관이 한다.

중앙유색금속감독 및 회수지도기관은 유색금속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유색금속관리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 하여야 한다.

**제40조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의 권한)**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역과 항,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출입하거나 필요한 문건과 장소, 설비 같은 것을 볼수 있다.
2. 범위반자를 단속하고 조서를 받을수 있다.
3. 범위반행위를 한 운수수단을 조사할수 있다.
4.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필요한 과학기술적방조와 인원, 운수수단의 보장 같은 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41조 (유색금속관리정형에 대한 감독통제조건 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유색금속관리사업정형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조건을 의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 (유색금속생산, 리용의 중지)**

유색금속광석의 선광실수률과 정광품위, 제련실수률을 기준대로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계획 또는 승인, 합의를 받지 않고 유색금속을 리용, 수출할 경우에는 생산, 리용, 수출을 중지시킨다.

**제43조 (유색금속공급의 중지)**

유색금속회수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유색금속을 비법적으로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유색금속공급을 중지시킨다.

**제44조 (손해보상, 벌금)**

유색금속을 류용, 량비, 분실, 변질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45조 (몰수)**

비법적으로 용해, 주조, 압연, 연신설비 같은 유색금속가공설비를 가지고있거나 유색금속제

품을 만들었거나 매매하였거나 수송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설비와 제품, 얻은 돈과 물건, 리용된 운수수단과 도구를 몰수한다.

**제46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유색금속관리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생에너르기법

주체102(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3호로 채택

## 제1장 재생에너르기법의 기본

### 제1조 (재생에너르기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생에너르기법은 재생에너르기의 개발과 리용을 장려하고 재생에너르기산업을 활성화하여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며 국토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재생에너르기란 태양열 및 빛, 풍력, 지열, 생물질, 해양에너르기 같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재생가능한 에너르기를 말한다.

### 제3조 (재생에너르기개발 및 리용의 장려원칙)

재생에너르기를 적극 개발하고 리용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재생에너르기를 널리 개발하고 리용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

### 제4조 (계획적인 재생에너르기의 자원조사와 개발, 리용원칙)

재생에너르기자원은 인민경제의 지속적발전과 나라의 환경보호를 위한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재생에너르기의 자원조사와 개발, 리용계획을 바로세우고 실행하도록 한다.

### 제5조 (재생에너르기분야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재생에너르기분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재생에너르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국가는 재생에너르기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분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6조 (국제적인 교류와 협조)

국가는 재생에너르기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 제7조 (자원조사의 기본요구)

재생에너지의 자원을 정확히 조사하는 것은 재생에너지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8조 (자원조사계획의 작성)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나라의 에너지수요와 환경실태, 재생에너지기술개발실태에 기초하여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9조 (자원조사설계의 작성과 승인)

재생에너지의 자원을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반복조사를 없애고 재생에너지자원을 빠짐없이 찾아낼수 있게 조사단계별로 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조사설계는 해당 설계심의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10조 (설계에 의한 자원조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생에너지자원의 조사를 설계대로 하여야 한다.

### 제11조 (재생에너지자원량의 계산기준제정)

재생에너지자원량의 계산기준은 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따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정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너지자원량이 변동되거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재생에너지자원량계산기준을 갱신하여야 한다.

### 제12조 (재생에너지자원량의 계산과 심의)

재생에너지자원을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계산기준과 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재생에너지자원량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계산된 재생에너지자원량에 대한 심의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 제13조 (재생에너지자원량의 등록)

심의에서 승인된 재생에너지자원량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등록한다.

### 제14조 (재생에너지자원량의 실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등록된 재생에너지자원량의 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그 변동정형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 제3장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리용계획

### 제15조 (계획작성의 기본요구)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리용계획을 바로세우고 실행하는 것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중요임무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리용계획을 전망성있게 세우고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 제16조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리용목표)

국가적인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리용목표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이 세운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세운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리용목표는 내각의 비준을 받는다.

### 제17조 (계획작성지도서의 시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목표에 기초하여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계획작성지도서를 만든 다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 제18조 (계획의 분류)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계획은 그 중요성과 자금보장원천에 따라 국가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계획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계획으로 나눈다.

### 제19조 (계획의 작성)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서 내려보낸 계획작성지도서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천별 자원량과 기술개발실태, 보장조건같은 것을 타산하여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계획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계획초안은 국가계획기관에 낸다.

### 제20조 (계획시달과 실행)

국가계획기관은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계획을 제때에 심의, 비준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된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 제21조 (계획실행정형총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계획의 실행정형을 월, 분기, 년별로 총화하고 그 자료를 해당 통계기관에 내야 한다.

## 제4장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의 장려

### 제22조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의 기본요구)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리용을 장려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산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 제23조 (재생에너지설비의 제작)

기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앞선 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여 현대적이며 리용효율이 높은 재생에너지설비를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규격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국가규격지도기관은 재생에너지설비의 규격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 제24조 (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재생에너지설비를 제작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받은 재생에너지설비는 생산, 공급, 판매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 제25조 (재생에너지설비의 수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생에너지설비를 수입할 경우 현대적이며 리용효율이 높은 설비를 수입하여야 한다.

### 제26조 (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와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태양온수계통, 지열랭난방계통, 태양빛전지계통, 풍력발전기, 메탄가스생산시설 같은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면서 건물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27조 (개발한 재생에너지의 리용)

재생에너지를 개발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자체로 리용하며 남는 재생에너지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할수 있다.

### 제28조 (재생에너지공급망의 구성)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부문 또는 지역에서 재생에너지개발이 진척되는데 맞게 재생에너지의 공급망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여야 한다.

### 제29조 (재생에너지리용계통을 살림집과 공공건물에 결합)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너지리용계통을 살림집과 공공건물에 결합시키기 위한 건설규범을 제정하여야 한다.

해당 설계 및 건설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의 설계와 시공에서 재생에너지리용계통을

결합시키기 위한 건설규범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30조 (농촌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

도, 시, 군인민위원회는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주민용연료 및 동력을 재생에너지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적으로 현실성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제31조 (생물질리용기술의 도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물질의 재순환을 철저히 보장하며 에너지수요보장과 산림보호, 논밭의 지력개선을 다같이 만족시키는 생물질리용기술을 적극 발전시키고 확대도입하여야 한다.

**제32조 (토지리용허가)**

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질서에 따라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기술경제적지표의 분석종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생에너지리용시스템의 운영자료를 정기적으로 과학기술행정기관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과학기술행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너지리용시스템의 기술경제적지표를 분석종합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5장 재생에너지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제34조 (물질기술적토대강화의 기본요구)**

재생에너지분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앞선 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여 재생에너지산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내각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재생에너지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제35조 (과학연구사업의 선행과 생산의 결합)**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재생에너지분야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분야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는 제때에 현실에 도입하여야 한다.

**제36조 (전문가양성)**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너지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규모를 체계적으로 늘이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능력있는 재생에너지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키워내야 한다.

**제37조 (정보자료기지의 운영)**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보자료기지를 잘 꾸리고 재생에너지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를 제때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38조 (재생에너지리용기술의 확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너지분야의 발전추세와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문화수준을 높이며 태양빛전지, 풍력발전기, 지열펌프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설비의 생산과 리용기술봉사단위를 높여야 한다.

**제39조 (재생에너지분야의 자금지출항목)**

재생에너지분야의 자금지출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수요조사, 통계작성사업
2. 재생에너지분야의 기술연구, 개발, 평가사업
3. 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사업
4. 재생에너지기술의 정보수집, 분석사업
5. 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기술봉사와 인재양성사업
6.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의 본보기창조사업
7. 재생에너지리용의 확대도입사업
8. 재생에너지분야의 국제적인 교류, 협조사업
9. 재생에너지기술의 규격화사업

## 제6장 재생에너지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0조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재생에너지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리용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1조 (지도기관)**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리용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리용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2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너지개발 및 리용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 (감독통제)**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4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와 개발, 리용을 바로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5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와 개발, 리용을 바로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2. 재생에너지의 개발, 리용과정에 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
3. 재생에너지분야의 국가예산을 류용하였을 경우
4. 재생에너지설비수입질서를 어겼을 경우
5. 재생에너지설비를 파손시켰을 경우
6. 설비인증을 바로 하지 않아 경제적손실을 주었을 경우
7. 이 밖에 재생에너지의 개발, 리용사업에 엄중한 후과를 조성하였을 경우

**제46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45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국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력법

|              |         |                              |
|--------------|---------|------------------------------|
| 주체84(1995)년  | 12월 20일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5호로 채택      |
| 주체88(1999)년  | 1월 1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보충  |
| 주체90(2001)년  | 9월 27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93호로 수정보충 |
| 주체95(2006)년  | 1월 2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8호로 수정보충 |
| 주체95(2006)년  | 11월 7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5호로 수정보충 |
| 주체97(2008)년  | 9월 30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99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4(2015)년 | 4월 22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71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6(2017)년 | 1월 25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1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7(2018)년 | 5월 10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39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7(2018)년 | 9월 2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00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8(2019)년 | 11월 20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3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9(2020)년 | 11월 26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70호로 수정보충  |
| 주체110(2021)년 | 10월 26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6호로 수정보충  |

## 제1장 전력법의 기본

### 제1조 (전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력법은 전력시설건설과 전력생산, 전력공급,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전력리용, 급전지휘,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운영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전력공업발전원칙)

전력은 인민경제의 기본동력이다.

국가는 전력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전력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전력공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발전시킨다.

### 제3조 (전력시설건설원칙)

전력시설건설은 나라의 동력기지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수력발전소건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풍력, 지열, 조수력, 생물질, 태양열을 비롯한 다른 여러가지 에너지를 자원에 의거하는 발전소건설을 배합하고 대규모 발전소와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병진시키며 여기에 송배전시설건설을 따라세우도록 한다.

### 제4조 (전력생산원칙)

전력생산을 늘이고 정상화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전력생산토대를 정비보강하고 전망성있게 확대하며 발전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만가

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전력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도록 한다.

**제5조 (통합전력관리체계구성, 전력공급, 교차생산조직, 전력리용원칙)**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가적인 통합전력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실속있게 운영하는 것과 함께 질 좋은 전력을 공급하고 교차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전력을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6조 (급전지휘원칙)**

국가는 중앙집권적인 급전지휘체계를 세우고 지역송배전기관의 책임제를 강화하며 전력계통 운영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도록 한다.

**제7조 (전력시설의 현대화, 자동화원칙)**

국가는 전력공업부문의 과학기술인재양성과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전력시설을 현대화, 자동화하도록 한다.

**제8조 (전기절약, 전력시설물보호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전기를 극력 절약하며 전력시설물보호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9조 (전력공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 전력공업분야에서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국경하천의 공동개발에 의한 수력발전소건설을 장려한다.

## 제2장 전력시설건설

**제10조 (전력시설건설의 계획화)**

전력시설건설을 잘하는 것은 전력생산능력과 공급능력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소, 송배전시설 같은 전력시설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력자원조사)**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시설건설에 앞서 전력자원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그에 기초하여 발전소건설위치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수력발전소의 건설위치는 얻을수 있는 물량과 락차같은것을, 화력발전소의 건설위치는 연료원천지와 그 매장량, 공업용수보장, 수송조건같은것을 정확히 조사하여 전망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경제적효과성의 타산)**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시설건설대상에 따르는 경제적효과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경제적효과성이 높은 대상에 투자를 집중하여야 한다.

**제13조** (전력시설건설계획의 작성)

전력시설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전력에 대한 전망적수요와 전력자원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전력시설건설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4조** (전력시설건설설계)

전력시설건설설계는 전력 및 동력설계기관 또는 정해진 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전력 및 동력설계기관은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는 건설대상과 규모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고 승인된 기술과제에 따라 전력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수력발전소설계는 필요한 대상에 일간부하조절에 리용할수 있는 조정지와 발전설비의 예비능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전력시설건설기관)

발전소건설은 전문발전소건설기업소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주전력계통의 송배전시설건설은 전력공업부문의 기관, 기업소가, 그밖의 송배전시설건설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6조** (전력시설건설물의 질, 조업기일보장)

전력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시설건설을 설계의 요구대로 하며 건설물의 질을 높이고 조업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전력시설의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발전설비와 송배전설비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전력시설은 운영할수 없다.

**제17조** (중소형발전소건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 가지 동력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중소형발전소를 균중적인 동으로 실용성있게 건설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자체의 전력수요를 보충하는데 리용할수 있다.

**제18조** (전력시설의 신설, 확장, 이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설비와 송배전시설을 신설, 확장, 이설하려 할 경우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리용질서에 따르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되는대로 전기선을 늘이거나 전선대를 세우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19조** (자연에너르기발전기금의 조성과 리용)

국가는 자연에너르기발전소건설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보장을 위하여 자연에너르기발전기금을 내온다.

자연에너지발전기금은 자연에너지발전소건설과 관리운영에만 리용한다.

## 제3장 전력생산

### 제20조 (전력증산)

전력생산은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하나이다.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소의 설비관리와 기술관리를 바로하며 계절적, 경제적조건에 맞게 생산조직을 짜고들고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전력 생산을 늘여야 한다.

### 제21조 (전력생산계획작성 및 실행)

국가계획기관은 전력생산가능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성있는 전력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 제22조 (수력발전소의 전력생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력발전소구조물과 발전설비보수를 질적으로 하고 기상조건에 맞게 물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전력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 제23조 (수력발전소의 운영효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력발전소효률을 실시간적으로 측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소를 높은 수위, 높은 효률로 운영하여야 한다.

사수위아래에서는 발전설비를 운영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수위아래에서 발전설비를 운영하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수위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승인밑에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이 한다.

### 제24조 (수력발전소의 물확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력발전소의 도중취수시설을 신설, 확장하여 더 많은 물을 얻어 내며 수력구조물의 안전성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점검보수를 질적으로 하여 물의 도중손실을 없애야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수력발전소저수지와 물길의 물을 뽑아 다른 목적에 쓸수 없다.

### 제25조 (수력발전소, 물길굴, 저수지의 보호구역)

수력발전소와 물길굴, 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력발전소보호구역과 물길굴보호구역, 저수지보호구역을 정한다.

수력발전소보호구역과 물길굴보호구역, 저수지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6조 (수력발전소, 물길굴, 저수지보호구역의 관리)**

수력발전소, 물길굴, 저수지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인민위원회는 발전소와 물길굴의 보수, 취수구준척, 언제토사처리, 방수로굴착, 저수지준척, 수로파기, 저수지보호림 조성 등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력발전소저수지로 흘러드는 하천에 미광이나 유해물질을 내보내지 말며 보호구역에서 나무를 베거나 부침땅을 일구거나 채광을 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합의하고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

해당 기관, 기업소는 화력발전소의 설비를 정비보강하고 기술경제적지표를 부단히 갱신하여 연료를 절약하고 전력생산을 늘여야 한다.

전력생산용 석탄은 전력생산밖의 다른 목적에 쓰지 말며 석탄리용에서 정해진 소비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28조 (전력생산용증기의 리용)**

전력생산용증기는 직접 또는 감압시켜 다른 목적에 쓸수 없다.

필요에 따라 전력생산용증기를 감압시켜 산업증기 또는 도시난방용온수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증기 또는 도시난방용온수의 리용과 관련한 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29조 (화력발전소에 대한 석탄공급)**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화력발전소에 필요한 석탄을 다른 부문보다 먼저 공급하여 1주일분이상의 예비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전력생산용석탄수송순환열차를 편성하여 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석탄을 제때에 집중수송하여야 한다.

정해진 품위와 규격에 도달하지 못한 석탄은 화력발전소에 공급할수 없다.

**제30조 (보이라, 공업로의 전력생산)**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보이라와 공업로를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발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전력공급을 제한할수 있다.

## 제4장 전력공급

**제31조 (전력의 합리적공급)**

전력공급을 잘하는 것은 전력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확고히 담보하고 정격주파수를 보장

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전력을 합리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제32조 (전력공급계획)**

국가계획기관은 생산되는 전력량에 맞게 전력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중요생산기업소에 대한 전력공급계획은 월마다 생산조건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세부적으로 세워야 한다.

생산된 전력이 계획보다 적거나 사고, 자연재해 그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에 전력공급계획을 조절하여 공급할수 있다.

#### **제33조 (전력공급계약)**

전력공업지도기관과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공급계획에 따라 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전력공급계약을 해당 지역송배전기관과 직접 맺는다.

#### **제34조 (영농용전력 및 장마철전력공급)**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농시기 농촌에 필요한 전력과 장마철에 탄광, 광산 같은 갱침수위험이 있는 대상들에 대한 전력공급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35조 (전력의 질보장)**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하는 전력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되는 전력의 질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를 제기할수 있다. 이 경우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리유와 송배전시설의 능력같은것을 검토하고 요구하는 질이 보장된 전력을 공급할수 있다.

#### **제36조 (전력의 정상적공급)**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을 계약에 따라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전력시설의 정비보수 또는 그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력공급을 제한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전력공급을 중지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37조 (자가소비전력의 공급금지)**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소와 변전소의 자가소비전력계통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말아야 한다.

자가소비전력은 전력생산과 송배전설비의 운영에만 리용할수 있다.

#### **제38조 (전력도중손실줄이기)**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송전체계를 바로세우고 송배전망을 개선보수하며 전압단계와 력률을 높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력 줄여야 한다.

송전계통은 점차 유연교류송전계통으로 바꾸어야 한다.

**제39조 (전력시설의 관리)**

전력시설의 관리는 대상에 따라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구역을 통과하는 송전선에 대한 관리는 정해진데 따라 송배전기관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할지역에 설치된 전력시설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0조 (전력시설의 연결, 분리)**

국가전력계통에 전력시설을 연결하거나 국가전력계통에서 전력시설을 분리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지역송배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송배전,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

국가는 송배전시설과 전력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을 정한다.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42조 (송배전,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의 관리)**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에는 다른 시설물을 건설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에 울타리를 치고 《전기위험》, 《출입금지》 같은 필요한 표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 (송배전, 전력통신시설의 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을 애호하며 전력공급과 통신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승인없이 자기계통이 아닌 송배전시설에 전력선을 연결시킬수 없다.

## 제5장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제44조 (교차계약에 따르는 생산 및 경영활동)**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교차생산조직과 지휘를 바로하는것은 전기를 절약하고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송배전기관과 교차계약을 맺고 그에 맞게 생산 및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따로 정해진 기관은 교차계약을 맺지 않는다.



**제45조 (교차생산조직표의 작성 및 제출)**

교차계약을 맺으려는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공급계약을 맺는데 따라 월마다 날자별, 시간별, 기대별 전력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여 교차생산조직표를 작성한 다음 정해진 기일안에 해당 지역송배전기관에 내야 한다.

**제46조 (교차생산조직표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차생산조직표작성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자기 단위가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빠짐없이 장악하고 전력소비공정별로 구분하여 설비의 용량과 실부하결수들로부터 매 공정의 시간별 전력소비를 타산하여야 한다.
2.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규정된 월에 쓸 전력량범위안에서 공정들의 돌릴 날자와 시간, 세울 날자와 시간을 타산하여야 한다.
3. 원료, 연료, 자재, 로력, 설비와 같은 생산 및 경영준비조건과 설비별 전력소비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7조 (교차계약체결)**

교차생산조직표를 접수한 지역송배전기관은 전원관계에 따라 자기의 관할대상은 직접 합의 해주며 상급기관의 관할대상은 상급기관에 제출하여 합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차생산조직표에 대한 합의를 받은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송배전기관과 교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교차계약을 맺지 않은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전력공급을 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해당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제48조 (전력사용한도와 전력량의 작성 및 입력)**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와 교차계약을 맺은 지역송배전기관은 배전선, 2차변전소, 송전선, 1차자변전소들의 날자별, 시간별 전력사용한도와 전력량을 작성하여 전력관리기술장치에 입력한 다음 그 정형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 (교차계약의 준수)**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차계약을 맺은데 따라 직장 및 작업반별, 공정별, 기대별 교차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교차계약은 어길수 없다.

**제50조 (교차계약의 변경)**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공급계획이 추가 또는 감소되거나 기타 국가적인 요구가 제기되는 경우 교차계약의 내용을 변경시켜줄것을 해당 지역송배전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교차계약의 내용을 변경시켜줄데 대한 제기를 받은 지역송배전기관은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합의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교차생산조직표에 대한 변경은 상급기관 또는 중앙전력공업

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특별한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51조 (교차생산에 대한 지휘)**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교차계약을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장악통제하여야 한다.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정에 맞게 교차생산지휘조를 뒀고 자기 단위의 교차생산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성, 중앙기관의 교차생산지휘조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의 연계밑에 자기 소속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의 교차생산지휘조에 대한 장악지도를 바로하여야 한다.

## 제6장 전력의 리용

**제52조 (전력공급계획, 전력사용한도의 준수)**

전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연료, 동력의 낭비를 없애고 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력공급계획 또는 전력사용한도를 지키며 공급된 전력을 정해진 대상에만 써야 한다.

**제53조 (전력소비기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단위당 전력소비기준을 지키며 그것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전력소비기준은 국가계획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정한다.

**제54조 (설비, 생산공정의 개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리고 앞선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설비와 생산공정을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전기절약형설비와 생산공정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5조 (과대용량전력설비의 설치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대용량의 전력설비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설치된 과대용량의 전력설비는 해당한 용량의 전력설비로 바꾸어야 한다.

과대용량의 전력설비를 해당한 용량의 전력설비로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그 운전을 중지시킨다.

**제56조 (전기설비리용허가)**

전열설비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상에 따라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 또는 도송배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용량이 큰 전열설비를 리용하거나 전열로 한

중설비를 운영하거나 전열을 난방으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국가 계획기관의 검토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밖의 전기설비의 리용질서는 해당 규정, 세칙에서 정한데 따른다.

**제57조 (전력량비근절)**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계설비의 공회전을 없애고 경부하운전을 하지말며 필요없는 전등 또는 전력소비가 많은 전등을 켜거나 허가 또는 등록하지 않은 전력설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전력설비의 용도와 용량을 어기고 사용하거나 전력계량수단을 설치 또는 리용하지 않거나 결선을 바로하지 않고 전력을 몰래 훔쳐쓰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제58조 (무효전력의 보상)**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무효전력소비를 줄이며 무효전력생산설비를 설치하여 소비되는 무효전력을 자체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59조 (전력공급과 소비의 계산, 전력료금의 지불)**

전력공업지도기관은 전력계량수단을 정기적으로 검정하며 전력공급과 소비를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전력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력사용료금을 정해진대로 물어야 한다. 이 경우 전력사용료금은 상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지역송배전기관에 문다.

전력사용료금지불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60조 (전기절약을 위한 설비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를 절약할수 있는 레드등, 무효전력생산설비, 카드식적산전력계같은것을 수요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61조 (효률등급이 낮은 전기설비의 생산, 수입금지)**

효률등급이 낮은 전기설비는 생산, 수입할수 없다.

전기설비에 대한 효률등급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이 한다.

**제62조 (전력소비통제)**

전력공업지도기관은 전력소비단위들의 전력소비정형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전력소비에 대한 통제를 보다 엄격히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력소비정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장소에 전력계량수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장 급전지휘

### 제63조 (전력생산과 공급, 소비의 통일적지휘)

급전지휘는 전력계통운동을 장악하고 질 좋은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전력공업지도기관은 전력생산과 공급, 소비과정을 통일적으로 지휘하여야 한다.

### 제64조 (급전지휘조건의 보장)

급전지휘는 당직급전사령만이 할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급전지휘에 간섭하거나 급전사령실의 출입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65조 (정격주파수와 규정된 전압의 보장)

전력공업지도기관은 전력생산과 공급, 리용을 조절하여 정격주파수와 규정된 전압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급전지휘에 의무적으로 복종하여야 한다.

### 제66조 (전력계통의 구성)

전력공업지도기관은 수요자들에게 전력을 공급계획 또는 사용한도대로 공급하고 도중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전력계통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제67조 (출력조절발전소와 고정발전소)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발전소의 운영상특성과 물, 연료보장조건을 고려하여 출력조절발전소와 고정발전소를 정하여야 한다.

출력조절발전소는 전력계통의 요구에 복종한다.

### 제68조 (전력공급급수의 설정)

국가는 전력공급 및 소비대상의 중요성과 특성에 따라 전력공급급수를 정한다.

전력공급급수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69조 (예비전력계통의 구성)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급수에 따라 전력을 공급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예비 전력계통을 구성하여 전력공급의 믿음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70조 (급전사고의 처리, 자연피해방지)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계통에 현대적인 보호장치를 받아들이고 그 제정값을 바로 정하여 사고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자연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피해를 막는데 필요한 기상수문, 지진자료같은것을 전력공업지도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71조 (급전지휘통신의 보장)**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현대적인 통신설비를 갖추고 급전지휘를 하여야 한다.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공업지도기관의 요구에 따라 급전지휘통신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2조 (전력시설의 보수)**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설비보수주기와 공급조건을 고려하여 발전설비, 송배전시설과 전력리용시설의 보수를 동시에 조직하여야 한다.

## 제8장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운영

**제73조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의 확립)**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는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나라의 동력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전력생산을 최대로 높이며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생산과 소비의 전과정을 감시, 조종, 관리하는 체계이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은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를 바로 운영하여 전력의 질지표인 전압과 주파수, 파형이지리짐을 규정대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4조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의 구성과 운영)**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은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를 수력발전소통합생산체계, 화력발전소통합생산체계, 통합부하관리체계와 자원계획화, 생산관리, 자동조종의 3층구조로 구성하고 실속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75조 (전력관리기술장치와 자료통신장치의 설치)**

전력을 생산, 공급,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구성을 위한 전력관리기술장치와 자료통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해당 지역송배전기관을 통하여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력관리기술장치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품질인증기관의 심의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76조 (전력관리기술장치와 자료통신장치의 정상운영)**

전력을 생산, 공급,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관리기술장치와 자료통신장치에 대한 관리를 바로하여 정상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력관리기술장치와 자료통신장치의 운영정형은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제77조 (전력관리기술장치와 자료통신장치의 점검)**

전력을 생산, 공급,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관리기술장치와 자료통신장치를 정상적으로 점검하며 불비한 요소들을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전력관리기술장치와 자료통신장치에서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지역송배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의 자료통신망 운영)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에 리용되는 자료통신망의 정상운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료통신망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전력공업지도기관과 연계하여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

**제79조**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의 보안)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기준에 맞게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의 보안을 실현하며 정상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 제9장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80조** (전력부문사업에 대한 지도)

전력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전력부문사업을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81조** (전력시설관리에 대한 관정의 조직)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전력시설을 건설운영하고 생산된 전력을 관리하도록 지도하며 해마다 전력시설관리에 대한 관정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82조** (전력부문의 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 전력공업지도기관, 로동행정기관, 재정기관, 은행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연료, 자재, 자금같은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전력부문의 로력, 설비, 연료, 자재, 자금 같은것은 다른 부문에 돌려쓸수 없으며 전력부문에 전력생산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과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제83조** (전기절약월간)

국가는 해마다 5월과 10월을 전기절약월간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기절약월간에 전기절약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제84조**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전력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전력감독대상을 바로 정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전력시설건설과 전력생산, 전력공급,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전력리용, 급전지휘,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운영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전기절약사업을 강화하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력감독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 제85조 (민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원상복구, 손해보상,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 제86조 (전력공급중지)

다음의 경우에는 전력공급을 중지한다.

1. 전력공급계획 또는 사용한도, 전력소비기준을 초과하여 전력을 리용한 경우
2.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운영질서와 교차생산질서를 어기고 전력을 리용한 경우
3. 허가 또는 등록하지 않은 전력설비를 설치하고 리용한 경우
4. 무효전력생산설비와 전력계량수단을 설치 또는 리용하지 않거나 결선을 바로하지 않고 전력을 리용한 경우
5. 전력사용료금을 정해진대로 물지 않았을 경우
6. 전력을 랑비하였거나 몰래 훔쳐 썼을 경우
7. 전력감독사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였을 경우
8. 송배전기관이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장소에 전력계량수단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 제87조 (시설물의 철거)

송배전시설, 전력통신시설 같은것이 설치되어있는 전력시설보호구역에 승인없이 시설물을 건설하였을 경우에는 철거시킨다.

#### 제88조 (몰수처벌)

과대용량의 전력설비를 설치, 리용하였거나 허가받지 않은 전기설비를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되었거나 위법행위로 얻은 설비와 자금, 물품을 몰수한다.

#### 제89조 (변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변상시킨다.

1. 전력공급계획이 없거나 전력공급 및 교차계약을 맺지 않고 전력을 소비하였을 경우
2. 전력공급 및 교차계약에 따르는 전력리용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전력을 공급계획보다 초과소비하였을 경우
3. 전력소비기준제정등록질서를 어겼거나 전력소비기준을 초과하여 전력을 소비하였을 경우
4. 승인없이 전력계량수단을 해제하였거나 거짓행위로 전력계량을 정확히 할수 없게 하고

전력을 소비하였을 경우

5. 승인없이 자기 계통이 아닌 송배전시설에 전력선을 연결하고 전력을 소비하였을 경우
6.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운영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허가 또는 등록하지 않은 전력설비를 설치하고 리용하거나 전기절약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전력을 낭비하였을 경우
8. 력률을 국가기준대로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 제90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1. 과대용량전력설비를 리용하였거나 허가 또는 등록하지 않은 전력설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3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2만~10만원
2. 정당한 리유없이 전력계량수단을 설치 또는 리용하지 않았거나 결선을 바로하지 않고 전력을 몰래 훔쳐 썼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50만원, 공민에게는 10만원
3. 교차생산조직질서를 어겼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50만~150만원
4. 부당한 리유와 구실밑에 전력사용료금을 제때에 정확히 물지 않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2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1만~10만원

#### 제91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전력시설건설물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건설에 필요한 설비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지 않아 조업기일보장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무질서하게 전기선을 늘이거나 전선대를 세워 국토관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전력시설 또는 전력설비에 대한 점검보수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발전설비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운영하지 않아 전력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전력생산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5. 승인없이 사수위아래에서 발전설비를 운영하였거나 수력발전소저수지와 물길의 물을 뽑아 썼을 경우
6. 수력발전소, 물길굴, 저수지보호구역관리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7. 전력생산용 석탄과 증기를 승인없이 다른 목적에 썼거나 산업증기 또는 도시난방용은 수리용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8. 화력발전소에 정해진 품위와 규격의 석탄을 공급하지 않아 전력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승인없이 전력공급계획이 없거나 전력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단위에 전력을 공급하였을 경우
  10. 자가소비전력계통에서 전력을 공급하였거나 전력시설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11.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
  12. 승인없이 자기계통이 아닌 송배전시설에 전력선을 연결하였을 경우
  13. 교차생산조직질서를 어겨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4. 전력을 정해진대로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된 전력을 정해진 대상에 쓰지 않았을 경우
  15. 과대용량전력설비를 리용하였거나 허가 또는 등록하지 않은 전력설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16. 정당한 리유없이 전력계량수단을 설치 또는 리용하지 않았거나 결선을 바로하지 않고 전력을 몰래 훔쳐 썼을 경우
  17. 승인없이 전력계량수단을 해제하였거나 거짓행위로 전력계량을 정확히 할수 없게 하였거나 전력소비실적을 무락시켰을 경우
  18. 전력사용료금을 정해진대로 받지 않았거나 물지 않았을 경우
  19. 정당한 리유없이 무효전력생산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20. 효율등급이 낮은 전기설비를 생산, 수입하였을 경우
  21. 급전지휘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급전지휘에 간섭 또는 불복하였거나 급전지휘통신을 제때에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22. 예비전력계통을 구성하지 않았거나 급전사고 처리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23.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운동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24. 전력관리기술장치와 자료통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25. 전력시설관리에 대한 판정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26. 전력부문의 로력, 설비, 연료, 자재, 자금같은것을 다른 부문에 돌려췌거나 전력부문에 전력생산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과제를 주었을 경우
  27. 전력감독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28. 전력감독 및 관리성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경우
- 앞항 1~28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 제92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물품협동생산법

2006년 8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02호로 채택

## 제1조 (주물품협동생산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물품협동생산법은 주물품의 생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주물품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주물품을 생산하거나 그에 필요한 원료, 자재, 전력 같은것을 보장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주물품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 체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3조 (주물품의 협동생산조직원칙)

주물품의 협동생산은 생산기업소와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련계를 맺고 주물품을 만들어 내는 생산조직형태이다.

국가는 주물품을 표준화, 규격화하고 그 생산을 전문화, 집중화하도록 한다.

## 제4조 (물질기술적토대의 강화원칙)

국가는 주물품생산기업소들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여 현대화, 과학화 하도록 한다.

## 제5조 (주물품생산기업소의 설정)

국가는 주물품의 협동생산을 위하여 주물품생산기업소를 정한다.

주물품생산기업소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6조 (주물품생산기업소 설정의 기준)

내각은 주물품에 대한 지역별, 품종별수요와 수송조건, 설비의 현대화수준 같은것을 고려하여 주물품생산기업소를 정해주어야 한다.

승인없이 주물설비를 가지고 있거나 주물품생산을 할수 없다.

## 제7조 (주물품협동생산계획의 작성, 시달)

주물품협동생산계획의 작성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주물품의 생산능력과 수요같은것을 타산하여 협동생산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8조 (주물품생산의 의뢰)**

주물품생산을 의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소에 기술합의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술합의신청서에는 주물품의 품종, 규격, 질량, 수량같은것을 밝히고 필요에 따라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기술합의신청서의 검토)**

주물품생산기업소는 접수한 기술합의신청서를 검토하고 발견된 결함을 퇴치하여 다시 제기하게 할수 있다.

의뢰받은 주물품을 생산할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계획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계획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체결)**

주물품생산기업소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물품협동생산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물품협동생산계약은 국가계획에 기초하여 맺는다.

**제11조 (주물품의 생산조직)**

주물품생산기업소는 주물품협동생산계약이 맺어지는데 따라 주물품생산조직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12조 (주물품생산장비의 보장)**

주물품생산기업소는 장비생산기지를 꾸리고 필요한 장비를 제때에 생산리용 하여야 한다. 주물품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보장할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장비의 보장을 요구할수 있다.

**제13조 (주물품의 생산)**

주물품생산기업소는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의뢰받은 주물품을 정한 기간에 생산하여야 한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된 주물품을 출하할수 없다.

**제14조 (설비와 장비, 자재, 제품관리)**

주물품생산기업소는 설비관리체계를 세우고 그 리용률을 높이며 설비를 부단히 갱신하여야 한다.

장비, 자재와 주물품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 관리하며 생산한 주물품을 제때에 판매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선진구조방법의 도입)**

주물품생산기업소는 선진구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노동생산능률과 주물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16조 (전력소비기준의 준수 의무)**

주물품생산기업소는 주물품 t당 전력소비기준을 지키며 그것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전력소비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제17조 (주물품협동생산에 대한 지도기관)**

주물품협동생산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기계공업지도 기관과 해당기관이 한다.

중앙기계공업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주물품협동생산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18조 (로력과 설비, 원료, 자재,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주물품협동생산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원료,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수송, 전력의 보장)**

교통운수기관은 주물품협동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와 주물품을 우선적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기관은 주물품협동생산에 필요한 질 좋은 전력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20조 (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자, 전문가의 양성)**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 해당기관은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주물품생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제21조 (종업원의 기술기능제고)**

주물품생산기업소는 과학기술보급과 전습을 강화하여 종업원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한다.  
양성한 기능공을 고차시켜야 한다.

**제22조 (주물품협동생산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주물품협동생산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기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 기관이 한다.  
중앙기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주물품의 질과 수요를 보장하며 협동생산을 강화하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3조 (생산의 중지)**

로동위생환경 또는 주물품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전력소비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생산을 중지시킨다.

**제24조 (벌금, 몰수)**

승인없이 주물설비를 가지고 있거나 주물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 설비를 몰수한다.

**제25조 (손해보상)**

주물품협동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전력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원

료, 자재, 주물품을 제때에 수송하지 못하였거나 주물품협동 생산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여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26조 (분쟁해결)**

주물품협동생산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제2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이 법을 어겨 주물품협동생산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중소탄광법

주체103(2014)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6호로 채택  
주체105(2016)년 1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21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9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92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중소탄광법의 기본

#### 제1조 (중소탄광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소탄광법은 중소탄광의 개발과 석탄생산,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귀중한 석탄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연료와 종업원들의 땀감문제를 해결하여 기업관리를 개선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중소탄광이란 중앙공업탄광이 전개할수 없는 독립구역이나 중앙공업탄광구역안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경영활동에 필요한 석탄과 종업원들의 땀감용석탄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의 노력과 설비, 자금으로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자체탄광을 말한다.

중소탄광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산하 중소탄광과 기타 중소탄광으로 나눈다.

#### 제3조 (중소탄광개발원칙)

중소탄광의 개발을 바로하는 것은 귀중한 석탄자원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국가는 큰 규모의 탄광을 개발할 조건이 못되거나 채굴이 끝나 폐갱한 구역에서 중소탄광을 개발하도록 한다.

#### 제4조 (석탄생산원칙)

중소탄광에서 석탄생산을 늘이는 것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정상화하며 종업원들의 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중소탄광들에게 생산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설비의 리용률을 높여 석탄생산을 늘이도록 한다.

#### 제5조 (석탄리용원칙)

석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중소탄광에서 생산한 석탄을 소비기준에 맞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6조 (과학연구사업강화)**

국가는 중소탄광부문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선진적인 과학기술성과를 중소탄광의 개발과 관리운영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7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중소탄광을 관리운영하거나 개발하려고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중소탄광부문에 종사하는 개별적공민에게 적용한다.

## 제2장 중소탄광의 개발

**제8조 (계획적인 중소탄광개발)**

중소탄광개발은 석탄수요에 대한 국가부담을 줄이고 나라의 석탄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탄광개발을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 (중소탄광의 개발권)**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칙적으로 1개의 중소탄광만을 개발할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2개이상의 중소탄광을 더 개발할수도 있다.

**제10조 (중소탄광의 개발금지구역)**

다음의 구역에서는 중소탄광을 개발할수 없다.

1.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자연보호구, 명승지, 력사문화유적구역
2. 중요공업지구와 주민지구, 상수도수원구역
3. 철도, 4급이상도로와 그 보안구역
4. 중요하천, 언제와 그 보안구역
5. 새 탄광개발구역과 중앙공업탄광의 현행생산구역 및 전망구역
6. 이밖에 국가가 자원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정한 구역

**제11조 (중소탄광개발신청문건의 제출)**

중소탄광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탄광개발신청문건을 작성하여 모체탄광, 지구석탄탐사기관,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 지하자원보호감독기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을 통하여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중앙공업탄광개발구역에서 중소탄광을 개발하려는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산하 기관, 기업소는 중소탄광개발신청문건을 작성하여 지구석탄탐사기관, 모체탄광과 그 상급기관의 합의를 받아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소탄광개발신청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과 주소, 개발구역, 개발기간, 개발목

적과 연간석탄소요량 같은것을 밝힌다.

**제12조** (중소탄광개발신청문건의 심의)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 또는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은 중소탄광개발신청문건을 제때에 심의하여야 한다.

개발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개발기간, 채굴좌표경계선, 탄광개발에서 지켜야 할 사항 같은 것을 밝힌 중소탄광개발승인문건을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혀 중소탄광개발신청문건을 돌려보낸다.

**제13조** (토지리용허가와 위치지정승인)

중소탄광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의 국토개발승인과 환경영향평가, 토지리용허가, 위치지정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업토지에 중소탄광을 개발하려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리용허가를 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토를 확보한 조건에서 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소탄광의 개발승인변경)

중소탄광의 개발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칭이나 탄광개발구역, 개발기간 같은것을 변경하려 할 경우 정해진데 따라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중소탄광개발승인의 등록)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탄광개발이 승인된 날부터 3개월안에 기관등록을 비롯하여 정해진 수속을 한 다음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 지하자원감독기관에 중소탄광개발승인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중소탄광은 개발할수 없다.

**제16조** (중소탄광개발과제설계, 기술설계의 작성, 승인)

중소탄광의 개발과제설계, 기술설계는 탄광설계기관이 작성한다.

탄광설계기관은 중소탄광의 개발기술과제에 기초하여 개발과제설계, 기술설계를 작성하여 해당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과 중앙설계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중소탄광의 개발착수시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탄광개발승인을 받은 때부터 6개월안으로 중소탄광개발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중소탄광개발조건보장)

중소탄광개발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로동보호물자 같은것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장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데 따라 중소탄광개발을 위한 로력이 부족할 경우 로력이



남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로력동원계약을 맺고 필요한 로력을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중소탄광개발에서 설계준수)**

중소탄광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설계의 요구를 지켜 탄층의 놓임조건에 맞게 개발단계와 순차를 바로 정하고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제20조 (중소탄광에 대한 준공검사)**

중소탄광운영준비를 끝낸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과 건설감독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중소탄광은 운영할수 없다.

**제21조 (중소탄광의 후보지지정)**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은 이미 승인된 중소탄광개발구역에 중앙공업탄광을 개발하려 할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중소탄광개발후보지를 정해주어야 한다.

**제22조 (자연생태환경의 보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탄광개발과정에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3조 (중소탄광개발승인문건의 비법이관금지)**

중소탄광개발승인문건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비법적으로 넘겨줄수 없다.

## 제3장 석탄생산

**제24조 (석탄생산계획의 작성과 수행)**

중소탄광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간 석탄소요량과 석탄생산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석탄생산계획을 세우고 국가계획에 맞물려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중소탄광은 석탄생산계획과 그 수행정형을 매월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 (채굴공정계획의 심의)**

중소탄광은 월, 분기별로 채굴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에는 모체탄광과 탄광연합기업소의 해당 기술일군과 로동보호감독일군들도 참가한다.

채굴공정계획을 심의받지 않고서는 석탄을 채굴할수 없다.

**제26조 (굴진의 선행)**

중소탄광은 굴진을 생산에 앞서워 채탄장을 여유있게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 (화공품의 리용)**

중소탄광은 굴진에 필요한 폭약과 퇴관 같은 화공품을 정해진 질서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화공품리용질서는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이 정한다.

**제28조 (합리적인 채굴조직)**

중소탄광은 채굴방법을 개선하고 채굴조직을 바로하여 매장되어있는 석탄을 모두 캐내야 한다.

채굴조건이 좋은 탄층만 캐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9조 (채굴구역의 준수)**

중소탄광은 승인된 채굴구역안에서만 채굴하며 정해진 채굴좌표경계선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 (갱의 임대금지, 폐광, 폐갱)**

중소탄광은 중앙공업탄광의 갱을 임대하여 석탄을 생산하거나 다른 단위에 갱을 임대해주시 말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탄광을 폐광하거나 갱을 폐갱하는 경우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에 중소탄광운영과 관련한 해당 문건을 제때에 바쳐야 한다.

**제31조 (저탄장리용)**

중소탄광은 생산한 석탄을 보관하려 할 경우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의 저탄장과 국가적으로 승인된 저탄장을 리용하여야 한다.

**제32조 (로동보호용구의 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탄광의 운영에 필요한 로동보호용구를 규정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로동보호용구를 착용하지 않고서는 갱안에 들어갈수 없다.

**제33조 (사고와 자연피해방지)**

중소탄광은 로동안전교양체계를 바로세우고 기술규정과 로동안전규정을 엄격히 지켜 사고와 자연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채굴장에는 락반, 가스돌출, 출수에 의한 피해를 막을수 있는 로동안전시설을 갖춘다.

## 제4장 석탄리용

**제34조 (석탄소비계획)**

중소탄광의 석탄소비계획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세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생산량과 수요, 계절적조건을 정확히 타산하여 석탄소비계획을 바로세워야 한다.

**제35조 (석탄공급계획의 시달금지)**

국가계획기관은 중소탄광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석탄소요량을 따져보고 자체로 수요를 보장할 경우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석탄공급계획을 주지 말아야 한다.

**제36조 (소비기준의 준수, 석탄리용률제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리용에서 정해진 소비기준을 지키며 석탄리용설비와 기술공정을 개조하여 석탄을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제37조 (국가납부몫)**

중소탄광은 생산된 석탄의 20%를 우선적으로 국가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는 석탄에 대한 품질검사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국가납부몫을 바치지 않고서는 석탄을 출하할수 없다.

**제38조 (종업원빨감의 공급)**

중소탄광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빨감용석탄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 (석탄의 수송)**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은 해당 철도운수기관과의 합의밑에 석탄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중소탄광에서 생산한 석탄을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철도수송이 불합리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륝로로 석탄을 실어나를수 있다.

**제40조 (석탄의 보관)**

중소탄광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저장고 같은 석탄보관시설을 정해진대로 꾸리고 석탄을 허실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 (생산정상화몫)**

중소탄광을 운영하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석탄의 30%를 생산정상화와 로동보호물자구입몫으로 리용할수 있다.

## 제5장 중소탄광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2조 (중소탄광부문사업에 대한 지도)**

중소탄광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은 중소탄광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43조 (중소탄광실태장악)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은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소탄광의 실태를 정확히 장악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탄광의 개발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4조 (중소탄광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중소탄광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중소탄광개발과 석탄의 생산, 리용 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45조 (중소탄광개발승인의 취소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중소탄광개발승인을 취소한다.

1. 중소탄광개발신청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
2. 중소탄광개발이 승인된 날부터 3개월안에 중소탄광개발승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6개월안으로 개발에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
3. 중소탄광개발을 6개월이상 중지하였을 경우
4. 승인없이 중소탄광개발권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었을 경우
5. 비법적으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동하여 중소탄광을 개발하였을 경우
6. 승인된 개발구역을 벗어나 석탄을 채굴할 경우
7. 중앙공업탄광의 갱을 임대하여 석탄을 생산하거나 다른 단위에 갱을 임대하였을 경우

#### 제46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해당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소탄광을 개발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2. 설계의 요구를 어기고 중소탄광을 개발하였을 경우 30만~150만원
3. 중소탄광개발에 필요한 로력을 비법적으로 동원시켰을 경우 20만~150만원
4.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고 석탄을 생산하였을 경우 150만원
5. 채굴을 망탕 하여 중앙공업탄광의 현행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50만원
6. 승인되지 않은 저탄장을 리용하였을 경우 100만원
7. 석탄탐사, 중소탄광개발과정에 환경을 파괴시켰을 경우 20만~150만원
8. 로동안전조건을 지키지 않고 중소탄광개발을 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9. 국가납부몹을 바치지 않고 석탄을 출하하였을 경우 150만원

#### 제47조 (중지처벌)

제46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소탄광개발, 운영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시킨다.

#### 제48조 (몰수처벌)

석탄을 비법적으로 채취, 밀매하였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되었거나 위법행위로 얻은 설비와 석탄, 자금과 물품을 몰수한다.

#### 제49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중소탄광개발이 금지된 구역에서 중소탄광개발을 하도록 승인하였을 경우
2. 중소탄광개발신청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
3. 개발승인, 토지리용허가, 위치지정, 준공검사 같은 중소탄광개발에 필요한 수속을 비법적으로 하였을 경우
4. 중소탄광개발승인등록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5. 승인없이 중소탄광개발을 하였거나 정당한 리유없이 중소탄광개발을 중지하였을 경우
6. 승인없이 중소탄광개발권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었거나 비법적으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동하여 중소탄광을 개발하였을 경우
7. 중소탄광개발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로동보호물자 같은것을 제대로 보장하여주지않아 석탄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중소탄광개발에 필요한 로력을 비법적으로 동원시켰거나 광주행세를 하면서 로력착취 행위를 하였을 경우
9. 중소탄광개발을 승인된 설계의 요구대로 하지않았을 경우
10.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고 석탄생산을 하였을 경우
11. 중소탄광개발과정에 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
12. 석탄생산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13. 채굴공정계획심의를 받지 않고 석탄을 채굴하였을 경우
14. 화공품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15. 채굴을 망탕 하여 중앙공업탄광의 현행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6. 채굴조직을 바로하지 않아 석탄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7. 승인된 채굴구역을 벗어나 석탄을 채굴하였을 경우
18. 중앙공업탄광의 갱을 임대하여 석탄을 생산하거나 다른 단위에 갱을 임대하였을 경우
19. 승인되지 않은 저탄장을 리용하였을 경우

20. 로동안전조건, 위생조건 같은것을 보장하지않아 사고를 일으켰거나 탄부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21. 석탄소비기준을 지키지 않아 석탄을 낭비하였을 경우
  22. 국가납부몹을 바치지 않고 석탄을 출하하였거나 석탄출하질서를 어겼을 경우
  23. 종업원떨감용석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24. 비법적으로 석탄을 가지고 장사행위를 하였을 경우
  25. 중소탄광의 개발, 운영정형을 제때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 앞항 1~25호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50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소형발전소법

주체96(2007)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06호로 채택

## 제1장 중소기업발전소법의 기본

### 제1조 (중소기업발전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소기업발전소법은 중소기업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전력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중소기업발전소의 정의)

중소기업발전소는 20000kW까지의 발전능력을 가진 발전소이다.

중소기업발전소에는 수력, 화력, 조수력, 풍력 같은 여러 가지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발전소가 속한다.

### 제3조 (중소기업발전소의 건설원칙)

중소기업발전소건설을 다그치는 것은 나라의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중소기업발전소건설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고 내부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중소기업발전소를 경제적실리에 맞게 전군중적운동으로 건설하도록 한다.

### 제4조 (중소기업발전소의 운영원칙)

중소기업발전소의 운영은 발전설비의 가동률을 보장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중소기업발전소의 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설비관리, 기술관리사업을 짜고들어 그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한다.

### 제5조 (중소기업발전소의 전력리용원칙)

중소기업발전소의 전력리용을 바로하는 것은 전력손실과 낭비를 없애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이다.

국가는 중소기업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 제6조 (과학연구성과의 도입원칙)

국가는 중소기업발전소의 전력생산과 리용효률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그 성과를 중소기업발전소운영에 적극 받아들이다도록 한다.

### 제7조 (전기절약, 전력시설물 보호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생산된 전기를 절약하며 중

소형발전소의 전력시설물을 적극 보호하도록 한다.

## 제2장 중소형발전소의 건설

### 제8조 (중소형발전소건설의 기본요구)

중소형발전소의 건설은 나라의 전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를 계절적영향을 적게 받는 위치에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제9조 (건설계획의 작성)

중소형발전소의 건설계획작성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전력수요와 로력, 자재, 설비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중소형발전소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 (기술과제의 제출과 검토)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과제를 작성한 다음 대상의 규모에 따라 국가계획기관 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은 기술과제를 30일안으로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 제11조 (건설설계의 작성)

중소형발전소건설의 설계작성은 전력설계기관이 한다.  
전력설계기관은 측량, 지질조사, 위치선정 같은 것을 정확히 하며 경제적효과성을 타산하여 합리적인 설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

중소형발전소건설설계에 대한 심의와 승인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전력설계기관은 작성한 설계안을 대상의 규모에 따라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 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국가건설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 (건설계획의 맞물림)

국가계획기관은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중소형발전소건설계획을 정확히 맞물려 주어야 한다.  
건설계획에 맞물리지 않은 대상은 시공할수 없다.

### 제14조 (시공계약)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건설계획에 따라 시공계약을 맺어야 한다.  
맺은 시공계약은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시공공정별 검사)**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사원을 두고 시공의 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질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공정의 공사를 계속할수 없다.

**제16조 (조업기일의 보장)**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건설을 설계와 표준공법의 요구대로하며 조업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중소형발전소를 시공하거나 설계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17조 (실리있는 중소형수력발전소의 건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리가 많은 중소형수력발전소를 먼저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력자원을 정확히 조사하고 수력지점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중소형화력, 풍력, 조수력발전소의 건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정에 맞게 중소형화력, 풍력, 조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야 한다.

중소형화력, 풍력, 조수력발전소의 건설을 기후, 지리적조건 같은 것을 타산하여 전력과 열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고 경제적효과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9조 (발전설비의 규격화, 표준화, 계열화)**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설비를 규격화, 표준화하고 생산을 계열화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설비를 자체로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규격대로 생산하며 앞선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발전설비를 부단히 갱신하여야 한다.

**제20조 (중소형발전소건설의 종합검사, 준공검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건설이 완공되면 종합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는 대상의 규모에 따라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 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이, 준공검사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종합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중소형발전소는 준공검사를 받을수 없다.

### 제3장 중소형발전소의 운영

**제21조 (중소형발전소운영의 기본요구)**

중소형발전소의 운영을 바로하는 것은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설비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전력생산을 늘여야 한다.

**제22조 (전력생산계획의 시달)**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발전능력에 따르는 전력생산계획을 작성하여 국가계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중소형발전소의 발전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전력생산계획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23조 (전력생산계획의 수행과 변경)**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전력생산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전력생산계획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국가계획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전력생산의 정상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언제, 취수구, 수로 같은 시설을 제때에 정비하고 물관리를 바로 하여 높은 수위와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도중취수구를 신설, 확장하여 더 많은 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중소형수력발전소의 물관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언제, 취수구, 수로 같은 시설을 제때에 정비하고 물관리를 바로 하여 높은 수위와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도중취수구를 신설, 확장하여 더 많은 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전력시설의 보호)**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거나 보호시설물을 만들어 가물, 홍수, 돌사태 같은 피해로부터 전력시설을 보호하여야 한다.

겨울에는 물뱀기 같은 추위에 의한 피해막이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7조 (발전효률의 제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설비를 정상적으로 정비보강하여 타빈과 풍차, 수차의 발전효률을 높여야 한다.

효률이 낮은 설비와 기술공정은 개조, 갱신하여야 한다.

**제28조 (설비의 점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설비점검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며 설비의 불량개소를 찾아 등록하고 퇴치하여야 한다.

설비점검으로 퇴치할수 없는 불량개소는 보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 (설비의 보수)**

중소형발전소의 설비보수는 소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수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보수주기를 지키며 발전설비의 가동률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 (설비의 폐기, 이관, 인수)**

중소형발전소의 설비에 대한 폐기, 이관, 인수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재산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수 있다.

중앙전력지도기관과 재산감독기관은 해당 승인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검토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 (전력생산실적자료의 장악)**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은 중소형발전소의 전력생산실적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그것을 중앙 전력공업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은 중소형발전소의 전력생산실적을 국가계획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

**제32조 (중소형발전소전력리용의 기본요구)**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은 생산된 전력의 리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자체의 전력수요를 보장하는데 리용한다. 이 경우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량만큼 국가전력계통의 전력을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33조 (전력계통의 련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소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중소형발전소의 전력계통을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송배전기관에 의뢰하여 가까이에 있는 국가전력계통의 련결하고 리용할수 있다.

**제34조 (여러 중소형발전소의 전력계통구성)**

한지역에 있는 여러개의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하나의 전력계통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5조 (남는 전력의 공급)**

중소형발전소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리용하고 남는 전력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하거나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전력계통에 넣을수 있다. 이 경우 전력시설공사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36조 (요금의 지불)**

전력을 공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요금지불은 측정한 전력공급량에 따른다.

**제37조 (국가전력계통의 전력리용신청)**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갈수기 또는 기타 사유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부족할 경우 국가전력계통의 전력을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승인신청문건을 송배전기관에 내야 한다. 송배전기관은 승인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 주어야 한다.

**제38조 (국가전력계통의 전력차단)**

국가전력계통의 전력을 림시로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에서 전력을 다 시 정상적으로 생산할 경우 송배전기관에 의뢰하여 국가전력계통의 전력공급을 차단하여야 한다.

전력을 2중으로 공급받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9조 (시, 군이 건설한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

시(구역), 군자체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은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중소형발전소지도관은 전력공급대상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40조 (전력리용효률의 제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의 리용효률을 높여 전력의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어야 한다. 송배전체계를 정비하고 무효전력, 과대용량 같은것에 의한 전기량비현상을 없애야 한다.

## 제5장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1조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중소형발전소건설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2조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은 중소형발전소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3조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의 지도)**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은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중소형발전소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합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줄수 없다.

**제45조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중소형발전소사업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6조 (전력생산과 리용의 통제)**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현대적인 계량수단을 리용하여 중소형발전소의 전력생산과 리용을 통제하여야 한다.

계량수단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 (벌금적용, 손해보상)**

벌금을 물리거나 손해보상을 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생산한 전력을 허위보고하였을 경우
2. 발전능력대로 허위보고하였을 경우
3. 로력, 자재, 자금을 랑비하여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였을 경우
4. 건설한 중소형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였을 경우
5. 전력을 랑비하였거나 전력료금을 물지 않았을 경우
6. 발전설비를 분실, 파손시켰을 경우

**제48조 (중지)**

중소형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전력리용을 중지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되지 않은 설계로 건설할 경우
2. 설계대로 건설하지 않을 경우
3. 종합검사와 준공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
4. 승인없이 남는 전력을 다른 목적에 리용하였을 경우
5. 전력을 초과하여 리용하였을 경우

**제49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중소형발전소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사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

|              |         |                              |
|--------------|---------|------------------------------|
| 주체82(1993)년  | 4월 8일   |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4호로 채택           |
| 주체88(1999)년  | 2월 26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
| 주체93(2004)년  | 12월 2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68호로 수정보충  |
| 주체95(2006)년  | 8월 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01호로 수정보충 |
| 주체96(2007)년  | 5월 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27호로 수정보충 |
| 주체98(2009)년  | 7월 2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7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2(2013)년 | 2월 2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79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5(2016)년 | 11월 23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21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6(2017)년 | 4월 20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88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9(2020)년 | 10월 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9호로 수정보충  |
| 주체110(2021)년 | 10월 26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7호로 수정보충  |

## 제1장 지하자원법의 기본

### 제1조 (지하자원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지하자원의 분류와 소유권)

지하자원에는 금속, 비금속, 가연성광물, 미광 같은 광물자원과 지열자원, 온천, 약수, 샘, 지열수, 지하초염수 같은 지하수자원이 속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지하자원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 제3조 (지하자원탐사원칙)

지하자원탐사는 경제강국건설의 척후전선이다.

국가는 지하자원탐사사업을 중시하고 확고히 앞세우며 탐사력량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탐사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여 지하자원을 더 많이, 더 빨리 찾아내도록 한다.

### 제4조 (지하자원개발원칙)

지하자원개발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것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지하자원개발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며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지하자원개발을 전망성있게 하도록 한다.

**제5조 (지하자원의 효과적, 합리적리용원칙)**

지하자원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지하자원리용질서를 세우고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지하자원을 효과있게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6조 (지하자원의 균중적보호원칙)**

지하자원을 적극 보호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지하자원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7조 (지하자원부문에 대한 지도와 통제원칙)**

국가는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부문에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며 이 부문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한다.

**제8조 (지하자원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지하자원탐사

**제9조 (지하자원탐사의 기본요구)**

지하자원탐사를 앞세우는 것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필요한 연료와 원료를 원만히 보장하며 인민들의 생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지하자원탐사를 계획적으로 선행시켜야 한다.

**제10조 (지하자원탐사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은 지하자원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지질상태에 기초하여 지하자원탐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질상태가 새롭게 해명된 경우에는 그에 맞게 지하자원탐사계획을 고쳐야 한다.

**제11조 (탐사의 분류)**

지하자원탐사는 전망탐사와 현행탐사, 작업탐사로 나누어 한다.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전망탐사, 현행탐사, 작업탐사에 따르는 임무와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12조 (전망탐사)**

전망탐사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소속 탐사기관, 기업소가 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한경우 지하자원개발단위에 소속된 탐사기관, 기업소도 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망탐사에서는 10~20년이상 앞질러가면서 지하자원의 분포상태를 립체적으로, 과학적으

로 밝히며 유망한 석탄, 광물매장지를 더 많이 찾아내야 한다.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은 지질조사자료를 과학적으로 해석한데 기초하여 전망탐사구역을 바로정하고 시추탐사를 위주로 하면서 갱도탐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탐사를 합리적으로 배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 (현행탐사)

현행탐사는 지하자원개발단위에 소속된 탐사기관, 기업소가 한다.

현행탐사에서는 운영 또는 개발중에 있는 탄광, 광산의 심부와 주변구역에서 10년이상 캘수 있는 석탄과 광물매장량을 넉넉히 확보하여야 한다.

#### 제14조 (작업탐사)

작업탐사는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견된 채굴구역에서 합리적인 채굴을 보장할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하는데 중심을 두고 작업탐사를 1년이상 앞세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탐사를 계획적으로 하여 기본굴진은 3년이상, 준비굴진은 6개월이상 앞세워야 한다.

#### 제15조 (지열, 지하수자원탐사)

지열, 지하수자원탐사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의 승인밑에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가 한다.

#### 제16조 (탐사단계의 준수)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탐사단계를 정확히 지켜 탐사효률과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지하자원탐사에서는 과학적인 지질조사사업을 앞세워 탐사할 대상구역을 정확히 규정하고 예비탐사를 진행하여 개발전망이 있는 지하자원을 확증한 다음 세부탐사를 하여 매장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제17조 (지하자원탐사설계)

지하자원탐사설계는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헛탐사와 반복탐사를 없애고 지하자원을 빠짐없이 찾아낼수 있게 탐사단계별로 설계를 작성하여 대상에 따라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탐사설계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된 탐사설계는 계획에 맞물린다.

#### 제18조 (설계에 의한 지하자원의 탐사)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탐사를 승인된 설계대로 하여야 한다.

광물자원탐사가 끝나면 시추구멍, 지질도랑, 탐사우물을 채굴작업과 토지리용에 지장이 없



도록 메워야 하며 지열, 지하수자원탐사가 끝나면 시추구멍과 탐사우물을 리용할수 있게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 (탐사속도와 효율의 제고, 세부탐사의 조직)**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탐사방법을 개선하고 탐사속도와 효율을 높여 우리 나라에 적거나 아직 찾아내지 못한 지하자원을 적극 탐사하여야 한다.

이미 개발승인을 받은 구역의 전망탐사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밑에 개발단위들을 내보내고 세부탐사를 조직할수 있다.

**제20조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은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지하자원매장량이 변동되거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21조 (지하자원매장량의 계산과 심의)**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탐사자료와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에 기초하여 지하자원매장량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계산된 지하자원매장량은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지하자원매장량의 등록)**

승인된 지하자원매장량은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해당 탐사기관, 기업소에 등록한다.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지하자원매장량은 개발설계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제23조 (지하자원매장량의 실사 및 변동정형등록)**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지하자원탐사 및 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매장량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지하자원매장량의 변동정형을 정확히 장악등록하여야 한다.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의 승인없이 등록된 지하자원매장량을 삭감할수 없다.

## 제3장 지하자원개발

**제24조 (지하자원개발의 기본요구)**

지하자원개발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생산을 정상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광물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취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며 굴진을 앞세우고 능률적인 채굴방법을 받아들여 광물생산을 늘이며 지열, 지하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지구에서 건물, 구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지열, 지하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제25조 (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과 심의대상)**

지하자원은 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 산간지역 등에서 농업생산용, 주민생활용으로 리용하려는 지하수자원이나 용출량이 적어 경제적리용 가치가 적은 지하수자원은 지하자원개발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기관에 등록한데 따라 리용할 수 있다.

광물자원개발심의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하며 지열, 지하수자원개발심의는 개발대상의 규모와 가치, 중요성에 따라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26조 (지하자원개발승인신청서의 검토)**

지하자원개발승인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승인신청서를 만들어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은 지하자원개발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으로 지하자원개발목적과 규모, 매장량, 품위, 수질분석자료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7조 (지하자원개발승인신청의 심의처리)**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은 지하자원개발승인신청서에 대한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의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은 지하자원을 통일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전망계획과 방안에 따라 지하자원개발심의를 진행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지하자원개발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개발단위명칭, 개발구역, 개발유효기간같은것을 밝힌 지하자원개발승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하자원개발승인서의 개발유효기간은 채굴년한에 따라 정하며 채굴년한을 확정하기 어려운 탄광, 광산에 대하여서는 따로 규정된 기간으로 정한다.

지하자원개발승인서의 개발유효기간은 내각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지하자원개발승인서를 발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지하자원개발권값과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제28조 (토지리용허가와 위치지정)**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은 지하자원개발승인서에 지적된 산림토지, 농업토지를 토지리용허가질서에 따라 보장하며 그 위치지정을 해주어야 한다.

지하자원개발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토지리용허가와 위치지정을 해줄 수 없다.

**제29조 (지하자원개발기술과제와 기술설계의 작성, 승인)**

지하자원개발기술과제와 기술설계의 작성은 해당 설계기관과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해당 설계기관과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기술과제와 기술설계를 높은 채취률과 생산능률을 보장할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지하자원개발기술과제는 국가계획기관이, 기술설계는 중앙설계지도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심의, 승인한다.

**제30조** (설계에 의한 지하자원개발)

지하자원개발은 지하자원개발설계에 따라 한다.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설계의 요구를 지켜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제31조** (지하자원개발기술지표계획)

지하자원개발기술지표계획을 세우는 사업은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이 한다.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은 채취률, 선광거둠률계획 같은 지하자원개발기술지표계획을 바로세워야 한다.

**제32조** (채굴의 합리적조직)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굴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채굴기준과 지하자원매장량 계산기준이 되는 광체를 다 캐야 한다.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광체만을 골라캐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3조** (캘수 없는 지하자원의 등록)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굴기준이 되지 못하거나 채굴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당장 캘수 없는 지하자원과 채굴장에 남아있는 지하자원을 장악등록하고 채굴조건이 갖추어 지는데 따라 채굴하여야 한다.

**제34조** (폐광, 폐갱, 폐공)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 광산을 폐광하거나 갱을 폐갱하려 할 경우 갱을 리용하여 할수 있는 지하자원탐사와 채굴작업을 하고 갱과 채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지열, 지하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추공을 폐공하려 할 경우 수위와 수질상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지하자원개발심의회기관의 승인없이 탄광, 광산을 폐광하거나 갱을 폐갱시킬수 없으며 지열, 지하수추공을 폐공시킬수 없다.

**제35조** (사고, 자연피해의 방지)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에서 기술규정과 로동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켜 사고와 자연피해를 막아야 한다.

**제36조 (생활환경, 생태환경의 보존)**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하자원개발과정에 국토와 자원, 자연풍치를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7조 (지하자원개발예견구역에서 건설합의)**

지하자원개발을 예견하는 구역에 넓은 부지를 차지하는 도로, 철도, 공장, 수원지 같은것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특이한 지질현상, 희귀한 광물, 화석의 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하자원의 탐사와 채굴, 건설작업 같은것을 하는 과정에 새로운 종류의 지하자원과 특이한 지질현상, 희귀한 광물, 화석 같은것을 발견할 경우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우고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4장 지하자원리용

**제39조 (지하자원의 리용률제고)**

지하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원료, 연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그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개별적공민은 비법적으로 지하자원을 채취하거나 제련, 제철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제40조 (지하자원관리조건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 광석, 정광, 원유 같은 광물자원이 허실되지 않도록 신고부리는 시설과 저탄장, 저광사, 창고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지열, 지하수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추공보벽관, 뿔프, 송수관, 물길 등 지하수취시설을 정상적으로 정비보수하여 지하수의 도중손실을 없애야 한다.

**제41조 (지하자원의 수송도중손실방지)**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수단을 정상적으로 정비보강하고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수송도중에 광물자원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광물자원가공에서 거둬들기준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광, 제련 같은 광물자원가공과정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지켜 정해진 거둬들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해진 거둬들기준을 보장하지 못하는 작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제43조 (광물자원의 가공처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물자원을 종합적으로 가공처리하기 위한 생산기술공정을 꾸려

그 주성분과 부성분을 회수하여야 한다.

분광, 버력, 미광, 광재안에 있는 유가성분을 회수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버리지 말고 저장하여야 한다.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물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단위로부터 비법적으로 광물을 넘겨받아 가공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4조 (대용광물원료, 연료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에 적거나 아직 찾아내지 못한 광물자원을 대용광물원료와 연료로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제45조 (지하자원의 수출)**

지하자원수출을 극력 제한한다.

지하자원은 내각의 승인을 받은 단위만이 수출할수 있다.

지하자원수출단위는 비상설수출입심의위원회에서 지하자원수출할당량을 받는데 따라 국가 계획기관으로부터 수출계획을 받고 지하자원을 수출하여야 한다.

**제46조 (광천자원의 효과적리용과 성분함량을 변화시키는 행위금지)**

광천자원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는 광천보호구역 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며 약수와 온천 같은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광천자원관리기관의 합의없이 광천보호구역에서 광물자원을 탐사하거나 폭파 같은 방법으로 개발, 건설작업을 하여 광천자원이 줄어들게 하거나 그 성분함량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7조 (지하자원의 지정된 용도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국가가 정한 용도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지열을 얻는데 리용한 지하수는 땅속에 다시 넣어야 한다.

## 제5장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

**제48조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의 기본요구)**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 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49조 (지하자원보호관리사업을 지도하는 기관)**

지하자원보호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통일적으로 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지하자원보호관리체계를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지하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책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50조** (지하자원탐사, 개발부문에 대한 국가적지원)

국가는 지하자원탐사, 개발부문을 적극 도와주는 사회적기풍을 세우며 이 부문 근로자들을 특별히 우대한다.

**제51조**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지하자원탐사, 개발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지하자원탐사, 개발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52조** (지하자원탐사, 개발부문의 과학연구사업, 기술자, 전문가양성)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부문을 새로운 과학기술적도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제53조**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하자원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지하자원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해당 토지감독기관은 관할지역에서 지하자원의 비법채굴을 목적으로 토지를 파헤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4조** (민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해를 준 당사자에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보상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제55조** (지하자원개발승인의 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지하자원개발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1. 지하자원개발신청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
2. 지하자원개발이 승인된 날부터 6개월안으로 개발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개발에 착수한 다음 6개월이상 개발을 중지하였을 경우
3. 지하자원개발권을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었을 경우

**제56조** (변상처벌)

지하자원의 개발, 리용질서를 어겨 국가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변상처벌을 준다.

### 제57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해당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하자원을 개발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2. 설계의 요구를 어기고 지하자원을 개발하였을 경우 30만~150만원
3. 기술규정과 로동안전조건을 지키지 않고 지하자원을 개발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4. 지하자원개발과정에 환경을 파괴시켰을 경우 20만~150만원
5. 지하자원개발단위가 광물생산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단위로부터 비법적으로 광물을 넘겨받아 가공하였을 경우 20만~150만원

### 제58조 (중지처벌)

제57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하자원의 개발, 리용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시킨다.

### 제59조 (몰수처벌)

지하자원을 비법적으로 채취, 밀매하였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되었거나 위법행위로 얻은 설비와 광물, 자금과 물품을 몰수한다.

### 제60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탐사를 바로하지 않아 지하자원개발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승인된 탐사설계대로 탐사하지 않았을 경우
3. 계산된 지하자원매장량에 대한 등록, 실사를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4. 지하자원개발승인과 관련한 신청, 심의질서를 어겼을 경우
5. 해당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하자원을 개발하였거나 지하자원개발권을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었을 경우
6. 지하자원개발설계가 없이 지하자원을 개발하였거나 설계의 요구를 어기고 지하자원을 개발하였을 경우
7.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광체만 골라 캐었을 경우
8. 폐광, 폐갱, 폐공질서를 어겼을 경우
9.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로동안전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10. 지하자원개발과정에 환경을 파괴시켰을 경우
11. 개인이 비법적으로 지하자원을 채취, 밀매하였거나 제련, 제철행위를 하였을 경우
12. 광물을 신고부리는 시설과 저탄장, 저광사, 창고 등을 제대로 구비, 관리하지 않았거

나 광물수송조직과 지휘를 바로하지 않아 광물자원을 루실시켰을 경우

13. 지하수취수시설을 정상적으로 정비보수하지 않아 지하수의 도중손실을 발생시켰을 경우

14. 광물자원가공에서 거둬들기준을 보장하지 못하면서도 작업을 계속하였을 경우

15. 지하자원개발단위가 광물생산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단위로부터 비법적으로 광물을 넘겨받아 가공하였을 경우

16. 분광, 버력, 미광, 광채저장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을 경우

17. 지하자원탐사, 개발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거나 이 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타사업에 망탕 리용하였을 경우

앞항 1~17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별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61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학공업법

주체110(2021년) 7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36호로 채택

## 제1장 화학공업법의 기본

### 제1조 (화학공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학공업법은 화학공정의 건설과 화학제품의 생산, 공급 및 판매, 리용,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추동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화학공업발전원칙)

화학공업은 자립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명줄과도 같은 나라의 핵심공업이다. 국가는 첨단기술의 명맥을 틀어쥐고 비료공업, 탄소하나화학공업, 화학섬유공업, 합성수지 공업을 비롯한 중요화학공업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 화학공업구조를 개선하며 나라의 화학공업을 국내원료와 자재에 철저히 의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화학제품을 수요대로 중단없이 생산하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3조 (화학제품생산의 국산화원칙)

화학제품생산을 국산화하는것은 화학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화학공업발전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의 원료와 자재, 촉매, 기술에 의거하는 화학제품생산기지들을 정비, 보강하고 새로운 국산화기술을 적극 개발하여 화학제품생산에서 원료, 자재, 촉매, 설비의 국산화비중을 부단히 높이도록 한다.

### 제4조 (에너지절약원칙)

화학제품생산에서 에너지소비를 극력 줄이는것은 귀중한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며 경제적 효과성을 높여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의 실리를 얻기 위한 애국사업이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화학공업부문의 에너지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우며 전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에너지의 종합적리용효률을 높이도록 한다.

### 제5조 (환경보호대책의 선행원칙)

화학공업부문에서 환경보호대책을 생산과 건설에 앞세우는것은 화학제품생산과정에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에 의한 생태환경의 파괴를 막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환경보호대책을 먼저 세운 조건에서 생산과 건설을 진행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물질기술적수단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제6조 (과학연구사업강화, 인재양성원칙)**

국가는 화학공업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튼튼히 꾸리고 화학분야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인재육성사업을 강화하여 개발창조형, 실천형의 인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7조 (화학공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들과 화학공업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활발히 벌려 화학공업과 관련한 과학기술을 적극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제8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화학공정의 건설, 화학제품의 생산과 공급 및 판매, 리용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화학공정건설

**제9조 (화학공정건설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학공정건설을 국토건설총계획과 건설법규에 따라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화학공정건설을 위한 국가적승인)**

화학공정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건설총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으며 환경영향평가, 건설위치지정, 토지리용허가, 건설명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과학기술심의 및 중간시험공정)**

새로 건설하려는 화학공정에 대하여서는 부문과학기술심의를 받은 다음 중간시험공정을 거쳐 국가과학기술심의를 받아야 한다.

부문과학기술심의결과에 따라 중간시험공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중간시험공정이 없이 국가과학기술심의를 받을수 있다.

**제12조 (기술과제서의 작성, 심의)**

화학공정건설을 위한 기술과제서는 건설주기관이 작성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수 있다. 이 경우 기술과제서에 폐설물처리 및 환경보호대책안 같은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작성한 기술과제서는 정해진 데 따라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설계의 작성, 심의)**

화학공정설계는 전문설계기관이 한다. 화학공정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기술과제서를 설계기관에 넘겨주며 설계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계기관은 계약조건에 따라 화학공정설계를 작성하여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며 작성한 설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작성한 설계는 정해진 데 따라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화학공정건설의 계획화)**

화학공정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학공정건설을 국가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제15조 (화학공정건설 및 준공검사)**

화학공정건설은 전문화학건설기업소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건설기업소도 할 수 있다.

건설된 화학공정에 대한 준공검사는 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이 경우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필요한 성원들을 참가시킨다.

## 제3장 화학제품의 생산

**제16조 (화학제품생산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선행시키면서 나라의 화학공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화학제품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화학제품생산에서 나서는 중요 요구이다.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과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 화학제품생산기업소라고 함.)는 국내의 원료, 자재, 촉매와 기술에 의거하여 화학제품생산을 국산화하며 그 품종과 지표, 생산량을 늘이고 질을 높여야 한다.

**제17조 (화학제품생산기업소의 조직)**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국가적조치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구조직기관이 조직한다.

기구조직기관은 국가의 화학공업발전전략과 생산력배치계획에 따라 화학제품생산기업소를 합리적으로 조직, 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화학제품생산계획의 작성 및 수행)**

국가계획기관은 화학제품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생산능력, 원료, 자재, 동력보장대책가능성, 축적과 소비의 균형 같은 것을 정확히 타산한 데 따라 과학적이며 현실성있는 생산계획

을 세워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생산을 정상화하여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제품의 질제고)**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생산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여러가지 품종과 규격의 화학제품을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질적으로 생산하며 그 질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20조 (기술경제적지표준수)**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제품생산에서 물자소비기준과 노동정량 같은 기술경제적지표를 엄격히 지키며 앞선 기술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원료, 자재, 동력소비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제21조 (설비의 생산성과 효율제고)**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생산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바로하고 점검과 보수를 책임적으로 하여 설비의 생산성과 효율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설비의 구입, 이관, 인수, 폐기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2조 (노동보호)**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노동안전교양사업을 강화하며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노동보호물자를 정해진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종업원은 노동안전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23조 (환경보호)**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오염방지시설을 정해진대로 갖추고 운영하며 생산과정에 오염물질이 류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제품검사)**

생산된 화학제품은 해당 법규에 따라 품질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제품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화학제품은 생산실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출하할수 없다.

**제25조 (새제품개발)**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자체의 기술개발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 질적공고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화학제품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26조 (원료, 자재의 수송과 보관)**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원료, 자재를 제때에 실어나르며 수송도중에 루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원료, 자재는 그 특성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 (로력관리)**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로력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관리부서들을 능동적으로 통합, 정리하며 직능과 책임한계를 명백하게 하고 생산부문의 로력비중을 늘여야 한다.

**제28조 (기술기능수준의 제고)**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로력의 리용에서 최대의 실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 (재자원화)**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재자원화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과정에 나오는 재생가능한 폐가스, 폐수, 폐설물과 생활오물을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정해진데 따라 수매소를 내오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로부터 유희자재를 수매받아 생산에 리용할수 있다.

## 제4장 화학제품의 공급 및 판매, 리용

**제30조 (화학제품공급계획)**

화학제품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생산지표와 능력, 인민경제적수요, 경제발전방향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화학제품공급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워 시달하여야 한다.

**제31조 (화학제품공급 및 판매계약)**

화학제품생산기업소와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학제품공급 및 판매계약을 맺고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  
화학제품공급계약은 화학제품공급계획에 따라 맺는다.

**제32조 (화학제품판매장소)**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필요한 경우 화학제품의 생산량, 수송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정해진 데 따라 적합한 지역에 전문판매소를 내오고 생산한 화학제품을 판매할수 있다.

**제33조 (화학제품의 수송과 보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데 따라 화학제품수송을 면밀히 조직하여 수송도중에 폭발, 파손, 루실,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화학제품은 그 물리화학적특성에 맞게 보관시설을 갖추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 (화학제품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받은 화학제품을 정해진 용도에만 리용하며 기술경제적타산을 바

로하고 현대과학기술을 받아들여 화학제품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폭발성물질, 인화성물질, 독성물질 같은 특수한 화학제품은 특별히 정해진 질서에 따라 엄격히 취급, 리용하여야 한다.

**제35조 (화학물질소비기준의 준수)**

화학물질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상별, 공정별, 제품별에 따르는 화학물질소비 기준을 엄격히 지키며 화학물질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제36조 (화학제품의 수출)**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생산한 화학제품을 해당 법규에 따라 다른 나라에 수출할수 있다.

## 제5장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제37조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사업을 바로 하는것은 나라의 경제를 자립적토대우에 올려세우고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학제품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도록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8조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조건보장)**

내각,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중앙교육지도기관,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에 집중시켜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적극 추동하여야 한다.

**제39조 (로력, 전력, 설비, 자재, 자금, 식량의 보장)**

국가계획기관, 노동행정기관, 전력공급지도기관과 송배전기관, 설비 및 자재공급기관, 재정기관, 은행기관, 량정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학공업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 식량 같은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40조 (노동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학공업부문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고열 및 유해로동을 없애기 위한 물질기술적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제41조 (경영활동 및 생활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가격기관은 화학공업부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정상화와 경영활동조건, 종업원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기업체뭉과 화학제품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해 주어야 한다.

**제42조 (수속의 신속성보장)**

내각, 국가계획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중앙설계지도기관,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화학공정건설과 화학제품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수속에서 신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 (평가)**

새로운 화학제품을 개발하여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화학제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국가에 리득을 준 단위와 국민에게는 해당한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44조 (재정적우대)**

내각과 중앙재정지도기관, 중앙은행은 화학공업부문에 대하여 정해진데 따르는 국가납부의 감면, 보상금의 지출, 자금의 우선적대부 등 재정적 우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장 화학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5조 (화학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

화학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제46조 (화학공업발전전략)**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을 위한 전략과 단계별목표를 바로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47조 (화학공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화학공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화학공업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8조 (민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원상복구, 손해보상,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제49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화학제품생산에서 물자소비기준과 기술경제적지표를 어겨 원료와 자재, 동력을 낭비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2.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 점검, 보수를 바로하지 않아 생산성과 효율을 떨어뜨렸을 경우 30만~100만원

3. 로동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30만~150만원
4. 원료, 자재와 화학제품의 수송, 보관을 무책임하게 하여 폭발, 파손, 루실, 변질시켰을 경우 10만~150만원
5. 공급받은 화학제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20만~100만원
6. 화학물질소비기준을 어겼을 경우 10만~100만원

#### 제50조 (중지처벌)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 또는 건설을 중지시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시킨다.

1. 화학공정건설과 화학제품생산과정에 환경보호대책을 바로 세우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2. 부문과학기술심의결과에 따라 중간시험공정을 거쳐 국가과학기술심의를 받아야 할 화학공정건설대상을 중간시험공정이 없이 건설하여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3. 물자소비기준과 기술경제적지표를 어겨 원료, 자재, 동력을 낭비하였을 경우
4.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 점검, 보수를 바로하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로동보호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종업원의 생명, 건강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 제51조 (몰수처벌)

화학제품을 비법적으로 판매, 구입하였거나 공급받은 화학제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된 돈과 물품을 몰수한다.

#### 제52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화학공정건설을 위한 국가적승인절차를 어겼을 경우
2. 과학기술심의를 받지 않고 화학공정을 건설하였을 경우
3. 부문과학기술심의결과에 따라 중간시험공정을 거쳐 국가과학기술심의를 받아야 할 화학공정건설대상을 중간시험공정이 없이 건설하였을 경우
4. 화학공정건설과정에 기술과제서와 설계의 작성, 심의질서, 공정건설 및 준공검사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5. 화학공정건설과 화학제품생산과정에 환경보호대책을 바로 세우지 않았을 경우
6. 화학제품생산계획, 공급계획을 과학성, 현실성이 없이 세워 시달하였거나 계획수행을 미달하였을 경우
7. 화학제품생산에서 기술규정, 물자소비기준과 기술경제적지표를 어겼을 경우



8.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 점검, 보수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9. 로동보호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0. 새제품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11. 원료, 자재와 화학제품의 수송, 보관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12. 생산한 화학제품을 계획대로 공급하지 않고 생산물을 비법처분하였거나 공급받은 화학제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13. 화학물질소비기준을 어겼거나 특수화학제품의 취급, 리용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14. 로력, 전력, 설비, 자재, 자금, 식량 같은것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15. 화학공업부문 근로자들의 로동조건보장을 위한 물질기술적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을 경우
  16. 화학공업부문의 기업체뭇과 화학제품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하지 않아 화학제품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7. 화학공정건설과 화학제품생산과 관련한 수속에서 신속성을 보장하지 않아 인민경제계획수행과 새제품개발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8. 화학공업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화학제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국가에 리득을 준 단위와 공민에 대한 평가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 앞항 1~18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별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53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흑색금속법

주체98(2009)년 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45호로 채택  
주체99(2010)년 9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64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04호로 수정보충

### 제1장 흑색금속법의 기본

#### 제1조 (흑색금속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흑색금속법은 흑색금속의 생산과 공급, 리용, 파철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흑색금속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흑색금속의 정의)

흑색금속은 철과 그 합금이다.

흑색금속에는 선철과 합금철, 립철, 해면철, 강철, 합금강, 압연강재, 2차금속가공제품 같은 것이 속한다.

#### 제3조 (흑색금속공업발전원칙)

흑색금속공업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이다.

국가는 흑색금속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흑색금속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흑색금속공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발전시킨다.

#### 제4조 (흑색금속생산확대원칙)

흑색금속생산을 늘이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계획고하사업과 생산조직을 바로하고 생산시설을 현대화하며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흑색금속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한다.

#### 제5조 (주체철생산원칙)

주체철생산은 흑색금속공업발전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의 원료, 연료, 기술에 의거하는 철생산방법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주체철생산을 체계적으로 늘이도록 한다.

#### 제6조 (흑색금속의 공급과 리용원칙)

흑색금속의 공급과 리용을 바로하는 것은 흑색금속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고 흑색금속을 인민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생산된 흑색금속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며 그 리용에서 낭비를 없애고 소비기준을 정확

히 지키도록 한다.

**제7조 (파철관리원칙)**

파철은 흑색금속생산의 중요한 원료이다.

국가는 파철관리질서를 바로세우고 파철을 남김없이 거두어들여 흑색금속생산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8조 (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흑색금속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흑색금속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9조 (교류와 협조)**

국가는 흑색금속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흑색금속의 생산

**제10조 (흑색금속생산확대)**

흑색금속생산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흑색금속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흑색금속을 끊임 없이 늘여야 한다.

**제11조 (흑색금속생산계획의 작성 및 시달)**

국가계획기관은 흑색금속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 생산가능성 같은 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성있는 흑색금속생산계획을 세우며 해당 기관, 기업소에 제때에 내려보내야 한다.

**제12조 (흑색금속생산계획의 실행)**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는 생산을 정상화하여 흑색금속생산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13조 (흑색금속생산의 질제고)**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는 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여러 가지 품종과 규격의 흑색금속을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흑색금속생산에서는 우리 나라의 합금원소자원에 의한 합금철과 합금강생산비중을 높이고 발전시키어야 한다.

**제14조 (품질검사)**

생산된 흑색금속은 품질감독법규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품질감독기관은 흑색금속의 용도에 따르는 품질과 규격을 바로 정하고 품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품질검사에서 합격되지 않은 흑색금속은 생산실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출하할수 없다.

**제15조 (로의 생산성제고)**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는 미분탄취입, 산소농화송풍, 로정고압조업, 초고전력제강, 로외정련 같은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제16조 (설비관리 및 점검보수)**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는 흑색금속생산에서 물자소비기준과 기술경제적지표를 엄격히 지키며 전력과 코크탄을 비롯한 원료, 연료, 자재소비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제17조 (물자소비기준 및 기술경제적지표준수)**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는 흑색금속생산에서 물자소비기준과 기술경제적지표를 엄격히 지키며 전력과 코크탄을 비롯한 원료, 연료, 자재소비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제18조 (원료보장)**

흑색금속생산원료를 보장하는 기관, 기업소는 품위높은 철광석과 파철, 합금철, 석회석, 형석, 고회석 같은 흑색금속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계획대로 생산하여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에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19조 (전력, 연료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는 흑색금속생산에 필요한 전력과 석탄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 (내화물의 보장)**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마그네샤크링카와 내화점토생산을 늘이고 그 순도를 체계적으로 높이며 원료배합과 소성을 잘하여 질좋은 내화물을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질이 보장되지 않은 내화물은 공급할수 없다.

**제21조 (흑연, 전극보장)**

흑연, 전극을 보장하는 기관, 기업소는 기술적특성이 담보된 흑연, 전극을 생산하여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는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흑연, 전극의 기술적특성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22조 (원료, 연료, 자재의 수송)**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수송수단을 정상적으로 정비하고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흑색금속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자재를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흑색금속생산정형은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흑색금속생산량의 장악과 보고)**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는 흑색금속생산량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흑색금속생산정형은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흑색금속의 공급과 리용

**제24조 (흑색금속의 계획적인 공급과 리용)**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흑색금속을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하며 그 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제25조 (흑색금속공급계획의 작성)**

흑색금속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흑색금속생산량과 수요, 경제발전방향 같은것을 타산하여 그에대한 공급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워야 한다.

**제26조 (흑색금속공급계약의 체결)**

흑색금속을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에 기초하여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와 공급계약을 맺어야 한다.

국가계획을 받지 않고 흑색금속공급계약을 맺을수 없다.

**제27조 (흑색금속공급장소)**

흑색금속의 공급은 흑색금속생산기업소에서 직접 한다.

필요한 경우 흑색금속의 생산량, 수송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적당한 지역에 전문판매소 같은 것을 꾸리고 할수도 있다.

**제28조 (흑색금속의 공급순위)**

흑색금속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 먼저 공급하는 원칙에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흑색금속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계획과 계약에 따르는 흑색금속공급)**

흑색금속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계획과 계약에 따라 정해진 품종, 규격, 재질의 흑색금속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른 품종, 규격, 재질의 흑색금속을 공급하려 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사이에 기술합의를 하고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흑색금속의 수송 및 보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흑색금속을 제때에 실어나르며 수송도중에 흑색금

속이 루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흑색금속은 그 물리화학적특성에 맞게 보관시설을 갖추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 제31조 (흑색금속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받은 흑색금속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리용하며 기술경제적타산을 바로하고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 흑색금속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흑색금속을 비법적으로 팔고사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32조 (흑색금속소비기준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흑색금속리용에서 대상별, 공정별, 제품별에 따르는 소비기준을 엄격히 지키며 설비와 기술공정을 개조, 갱신하여 흑색금속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소비기준을 초과하여 흑색금속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흑색금속을 공급할수 없다.

흑색금속소비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 제33조 (흑색금속의 수출)

흑색금속은 국가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관에서만 수출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장 파철관리

#### 제34조 (균중적인 파철관리)

파철관리를 바로하는 것은 흑색금속생산에 절실히 요구되는 파철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파철수집운동을 적극 벌려 더 많은 파철을 모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주어야 한다.

#### 제35조 (계획작성 및 시달)

국가계획기관은 파철생산, 국가납부 및 수매계획을 지역별, 기관, 기업소, 단체별, 지표별로 정확히 세워 제때에 내려보내야 한다.

파철생산, 국가납부계획은 흑색금속을 생산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파철수매계획은 그밖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준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된 파철생산, 국가납부 및 수매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 제36조 (생산, 가공과정에 나오는 파철의 수집)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흑색금속의 생산 또는 가공과정에 나오는 쇠물찌끼, 철강재깡다

리, 철판자투리, 절삭밥 같은 것을 수집하여 재질별로 정해진 장소에 모아놓아야 한다.

#### 제37조 (철제폐기품의 수집)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기된 철제설비나 비품, 구조물, 전도장치 같은 것을 고금속관리 기관에 의무적으로 넘겨주어야 한다. 그러나 철도운수부에서 폐기된 철제설비나 비품, 구조물, 전도장치 같은 것은 철도운수기관에 넘겨준다.

폐기품에서 그대로 쓸수 있는 부속품이나 부분품, 부대설비 같은 것은 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쓸수 있다. 이 경우 그대로 쓰는 부속품이나 부분품, 부대설비 같은것에 해당하는 수량의 파철을 고금속관리기관 또는 철도운수기관에 바쳐야 한다.

고금속관리기관 또는 철도운수기관의 인수확인서가 없이는 폐기된 철제설비나 비품, 구조물, 전도장치 같은것에 대한 재정처리를 할수 없다.

#### 제38조 (파철수집의 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실정에 맞게 매주 하루를 파철수집의 날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파철을 수집하여야 한다.

#### 제39조 (파철의 가공 및 보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파철을 종류별로 해당 용도와 규격에 맞게 절단, 압찰, 분쇄하여야 한다.

가공된 파철은 절삭밥, 파주철, 종파철, 경파철, 합금강파철 같은 것으로 갈라 산화부식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제40조 (파철납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납부계획에 따라 파철을 고금속관리기관에 정확히 납부하여야 한다.

파철납부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계획수행을 미달한 비를 만큼 파철을 공급하지 않을수 있다.

#### 제41조 (파철수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상적으로 파철을 수집하여 고금속관리기관이나 해당 수매기관에 수매하여야 한다.

파철을 수매받은 기관은 그것을 재질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고 파철값을 지불하여야 한다.

#### 제42조 (수매한 파철의 이관)

해당 수매기관은 수매한 파철을 대장하고 기록하고 고금속관리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파철을 넘겨받은 고금속관리기관은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제43조 (파철납부 및 수매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쓸수 있는 철제설비, 부속품 기타 철제품 같은 것을 파철로 납

부하거나 수매하지 말아야 한다.

**제44조 (파철공급)**

파철은 공급계획에 따라 파철을 리용할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한다.

계획고이에 파철을 공급할수 없다.

**제45조 (파철수송)**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모아놓은 파철을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제46조 (파철을 공급단위에 직접 넘겨주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집한 파철을 정해진 공급단위에 직접 넘겨줄수 있다. 이 경우 고금속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고금속관리기관의 확인이 없이는 파철납부실적평가를 받을수 없다.

**제47조 (철도운수를 통한 파철수송)**

파철을 철도로 수송하려 할 경우 고금속관리기관과 철도운수기관은 파철량을 정확히 확인하여 넘겨주고 받아야 한다.

고금속관리기관과 철도운수기관이 확인하지 않은 파철은 수송할수 없다.

고금속관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파철을 수송하는 과정에 생긴 부족사고에 대하여서는 철도운수기관이 책임진다.

**제48조 (파철터, 계량수단설치를 위한 장소와 조건보장)**

철도운수기관은 철도역구내에 파철터와 계량수단을 설치할수 있는 장소와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9조 (파철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파철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파철을 비법적으로 팔고 사거나 수출하거나 파철로 제품을 임가공하여주는 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제50조 (파철의 대금결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파철에 대한 대금결제를 고금속관리기관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철도운수부문에서 나오는 파철에 대한 대금결제는 철도운수기관을 통하여 한다.

## 제5장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1조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흑색금속부문 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



켜나가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흑색금속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3조 (흑색금속사업정형 보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흑색금속의 생산과 공급, 리용, 파철수집정형을 정상적으로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 (흑색금속부문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비롯한 해당 기관은 흑색금속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흑색금속부문의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55조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흑색금속의 생산, 공급, 리용과 파철관리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6조 (손해보상)**

흑색금속공급계약 및 리행질서를 어겨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린다.

**제57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계획수행을 미달하여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제품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작사고를 냈을 경우
3.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 점검보수를 잘하지 못하여 설비가동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물자소비기준과 기술경제적지표를 어겨 원료와 연료, 자재, 전력 같은 것을 낭비하였을 경우
5. 원료와 연료, 자재, 전력 같은 것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계획없이 또는 계획, 계약과 어긋나게 흑색금속, 파철을 공급하였을 경우
7. 흑색금속의 보관관리를 자하지 않아 그것을 루실시켰을 경우
8. 흑색금속 또는 파철을 가지고 상적행위를 하였을 경우
9. 흑색금속을 승인없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였을 경우
10. 철제폐기품처리질서를 어겼을 경우
11. 계획없이 파철을 자체로 소비하였거나 파철을 임가공하여주었을 경우
12. 승인없이 파철을 정해진 공급단위가 아닌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었을 경우
13. 파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였을 경우
14. 파철을 제때에 운반하지 않아 흑색금속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제58조 (형사적책임)**

제57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교통운수부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주체104(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6호로 채택

## 제1장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의 기본

### 제1조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은 다른 나라 배에 대한 대리업무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보장하며 대외경제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는 우리 나라 무역항과 공동수역, 해상무역장을 비롯한 전속경제수역(이 아래부터는 ‘항’이라고 한다.)에서 배임자를 대신하여 다른 나라 배의 취급과 관련한 문제를 처리하는 일(이 아래부터는 ‘대리업무’라고 한다.)이다.
2. 다른 나라 배대리기관은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를 전문으로 맡아하는 기관(이 아래부터 ‘대리기관’이라고 한다.)이다.
3. 배임자는 다른 나라 배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의 기업 또는 개인이다.
4. 배취급비용은 다른 나라 배의 취급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이다. 여기에는 무역항료금, 갑문료금, 배대리 및 짐대리료금, 검수 및 검역료금 같은 것이 속한다.

### 제3조 (대리기관의 설치)

국가는 무역항과 필요한 지역에 대리기관을 설치하고 다른 나라 배의 취급과 관련한 문제를 처리하도록 한다.

해상무역장을 비롯한 대리기관이 없는 곳에서의 다른 나라 배취급은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대리기관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대리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나라 배를 취급할수 없다.

### 제4조 (대리기관의 임무)

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나라 배의 입출항과 관련한 수속을 한다.
2. 다른 나라 배의 리제션 및 짐작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3. 물, 연유, 부속품, 선용품 같은 다른 나라 배의 운영물자를 보장한다.
4. 다른 나라 배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청산한다.
5. 다른 나라 배의 수리, 검사 및 검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6. 다른 나라 배의 선원 및 려객봉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제5조 (대리업무담당자)**

대리업무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기관만이 한다.

국가는 대리업무와 관련하여 대리기관사업의 독자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대리업무의 통일성, 신용보장)**

국가는 대리업무에서 통일성을 보장하며 신용을 지키도록 한다.

**제7조 (대리기관일군의 자격)**

국가는 대리기관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대리기관일군은 해당 자격을 가진 우리 나라 국민만이 될수 있다.

**제8조 (다른 법과의 관계)**

다른 나라 배취급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9조 (대리업무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대리업무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대리업무의 의뢰 및 접수

**제10조 (대리업무의뢰)**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우리 나라 항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는 대리기관을 통하여 배취급과 관련한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임자는 대리기관에 대리업무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 (대리업무대상)**

대리업무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다른 나라 당사자가 소유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배
2.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배
3. 다른 나라 당사자가 소유하고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진 배
4. 합영, 합작을 비롯한 외국투자기업이 소유한 배
5.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당사자사이에 공동으로 소유한 배
6. 다른 나라 배를 기간용선 또는 빈배용선, 임대하여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지고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의로 등록한 배

**제12조 (배의 국적과 소유권의 인정)**

배의 국적과 소유권에 대한 인정은 해당 나라 해사행정기관이 발급한 배등록증서에 따른다.

**제13조 (대리업무의뢰절차)**

배임자는 배가 마지막항구를 떠나기전에 대리기관에 대리업무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자료, 용선계약조건, 목적항, 도착예정날자, 선원명단을 비롯한 대리업무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내야 한다.

**제14조 (대리업무의뢰의 접수 및 통지)**

대리기관은 대리업무의뢰를 접수하였을 경우 24시간안에 동의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배취급전도금과 배길안내대기지점, 우리 나라 수역에 들어올 때 주의할 점 등을 밝히고 필요한 증서들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 (대리업무의뢰방법)**

대리업무의뢰는 각종 통신수단을 통하여 한다.

**제16조 (장기대리업무계약의 체결)**

배임자는 필요에 따라 대리기관과 장기대리업무계약을 맺을수 있다. 이 경우 배자료, 대리업무내용, 계약효력기간 같은 것을 밝힌다.

## 제3장 대리업무의 리행

**제17조 (출항통지)**

배임자는 배가 우리 나라로 출항한 즉시 대리기관에 배의 출항한 항과 날자, 목적항, 도착예정날자에 대하여 통지하며 배짐증권부분, 실은 짐의 목록, 짐실은 략도 같은 해당한 문건을 내야 한다.

**제18조 (입항전통지)**

배임자 또는 선장은 배가 우리 나라 항에 도착하기 24시간전과 배길안내대기지점에 도착하기 12시간전에 배의 위치와 배길안내대기지점도착예정시간을 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9조 (변경사항통지)**

배임자는 대리기관에 통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배가 배길안내대기지점에 도착하기전에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배취급전도금지불)**

배임자는 배가 입항하기 전까지 배취급전도금을 대리기관이 지정한 은행돈자리에 넣어야 한다.

**제21조 (입출항수속)**

대리기관은 배의 입출항예정 24시간전에 입출항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짐작업과 관련한 문제처리)**

대리기관은 배의 짐작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당 기관들과 토의하여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실인증서의 작성)**

대리기관은 배가 배길안내대기지점에 도착한 때부터 출항할 때까지의 배움직임과 짐작업준비통지서의 제출 및 접수기간, 짐작업진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실인증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들과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배운영물자보장)**

대리기관은 배에서 제기되는 물, 연유, 부속품, 선용품 같은 배운영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추가적인 대리업무)**

대리기관은 배임자의 요구에 따라 대리서명, 비용계산업무와 같은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대리업무를 진행할수 있다.

**제26조 (비용청산방법)**

배의 취급과정에 발생한 비용청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매 항차마다 청산한다.
2. 해당 법규에 준하여 관계기관의 증빙문건에 따라 청산한다.
3. 선장의 확인밑에 청산한다.
4. 결산서를 배임자에게 보낸다.

**제27조 (전도금잔액의 처리)**

대리기관은 배가 출항한 후 배임자의 요구에 따라 전도금잔액에 대한 반환송금의뢰서를 해당 은행기관에 내야 한다.

은행기관은 반환송금의뢰서에 따라 전도금잔액을 배임자에게 제때에 송금하여야 한다.

배임자의 요구에 따라 전도금잔액을 다음 항차에 리용할수 있다.

**제28조 (대리업무료금의 제정)**

대리업무료금은 대리기관이 해당 시기 국제료금추세에 맞게 국가자격기관의 합의를 받아 정한다.

**제29조 (추가비용의 지불)**

대리업무를 받은 배임자는 대리업무과정에 발생한 추가비용을 대리기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30조 (대리업무결과통지)**

대리기관은 배의 입출항정형, 짐작업정형 그밖의 대리업무과정에 제기된 내용과 대리업무결과를 배임자에게 제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배수송문건발송)**

대리기관은 배가 출항한 다음 배짐증권사본, 원산지증명서, 품질증서, 검역증 같은 필요한 문건들을 배임자에게 보내야 한다.

## 제4장 대리업무에 대한 지도통제

**제32조 (대리업무에 대한 지도)**

대리업무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대리업무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

**제33조 (전자수속체계의 수립)**

대리기관은 대리업무와 관련한 전자수속체계를 세워 대리업무의 신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 (배의 출항중지)**

대리기관은 해당한 배취급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배의 출항중지를 항무감독기관에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출항중지는 7일을 넘을수 없다.  
7일이상 출항을 중지하려 할 경우에는 중재 및 재판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5조 (배임자의 책임)**

배취급비용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거나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체선료, 연체료 및 그밖의 손실에 대하여서는 배임자가 책임진다.

**제36조 (분쟁해결)**

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37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권한없는 기관 또는 국민이 대리업무를 진행하였을 경우
2. 대리기관의 사업에 간섭하거나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대리기관을 통하지 않고 다른 나라 배를 취급하였을 경우



4. 배취급비용을 정해진대로 받지 않았을 경우
5. 대리기관이 자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6. 그밖에 이 법을 어겨 대리기관의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제38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37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국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집배용선증개법

주체103(2014)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7호로 채택

## 제1장 무역집배용선증개법의 기본

### 제1조 (무역집배용선증개법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집배용선증개법은 용선의뢰 및 증개, 용선계약의 체결 및 리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해상무역집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며 나라의 해운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선이란 용선자가 해상무역집수송을 위하여 무역집배 또는 무역집배의 일부 짐칸을 빌려 쓰는 것을 말한다.
2. 용선증개란 무역집수송과 관련하여 용선자와 해상수송자사이에 용선계약이 체결되도록 주선해주는 것을 말한다.
3. 용선사업기관이란 용선을 증개하거나 용선자나 해상수송자를 대리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는 등 용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용선사업기관은 대외적으로 조선용선회사의 이름으로 활동한다.
4. 용선자란 해상으로 무역집을 실어나르기 위하여 무역집배 또는 무역집배의 일부 짐칸을 빌려 쓰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말한다.
5. 해상수송자란 무역집배를 소유하고있거나 그것을 빌려줄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해상무역집수송계약을 맺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말한다.
6. 우리 나라 무역집배란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하고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진 배를 말한다.
7. 다른 나라 무역집배란 다른 나라 당사자가 소유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배,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배, 다른 나라 당사자가 소유하고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진 배, 합영, 합작을 비롯한 외국투자기업이 소유한 배,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당사자사이에 공동으로 소유한 배, 다른 나라 배를 기간용선 또는 빈배용선, 임대하여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지고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의로 등록한 배를 말한다.

**제3조 (통일적인 용선중개사업체제수립원칙)**

무역집배용선중개사업을 바로하는 것은 해상을 통한 무역집의 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무역집배용선을 용선사업기관의 중개밑에 통일적으로 하는 체계를 세우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용선중개사업의 조직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도록 한다.

**제4조 (우리 나라 무역집배를 우선적으로 용선하는 원칙)**

무역집을 우리 나라 무역집배로 실어나르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해상을 통한 무역집수송에서 우리 나라 무역집배를 우선적으로 용선하도록 한다.

**제5조 (용선계약의 체결 및 리행원칙)**

국가는 용선계약당사자들이 무역집배용선계약을 정확히 맺고 어김없이 리행하도록 한다.

**제6조 (신용준수 및 용선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보장원칙)**

국가는 용선계약당사자들이 무역집배용선에서 신용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며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무역집배를 운영하거나 우리 나라 해상무역집수송을 위하여 무역집배를 용선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 다른 나라 법인,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과의 관계)**

용선의뢰 및 중개, 용선계약체결, 리행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 규에 따른다.

## 제2장 용선의뢰 및 중개

**제9조 (용선사업기관을 통한 용선의뢰)**

무역집배를 용선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용선의뢰서를 작성하여 용선사업기관에 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 다른 나라 법인, 외국인도 용선사업기관에 용선의뢰를 할수 있다.

**제10조 (용선의뢰서의 작성방법)**

용선의뢰서는 중앙해운지도기관에서 정한 용선의뢰서양식에 따라 용선을 의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수송하려는 무역집의 품명과 물리화학적특성, 포장조건, 짐신는 항 또는 부두, 짐부리는 항같은 것을 정확히 밝혀 작성한다.

**제11조 (용선의뢰서의 접수 및 배मत물림)**

용선사업기관은 용선의뢰서를 접수하면 제때에 용선의뢰조건에 맞는 우리 나라 무역집배를

선정하여 용선을 의뢰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맞물려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 무역집배가 없거나 다른 나라 무역집배를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할 경우에는 다른 나라 무역집배를 중개할수 있다.

**제12조 (국가적인 긴급수송보장)**

용선사업기관은 국가적으로 긴급히 수송하여야 할 무역집에 대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중개하여 무역집배를 맞물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상수송자는 용선사업기관이 맞물려준대로 해당 무역집을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제13조 (다른 나라 무역집배용선합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무역집배를 용선하려 할 경우 용선사업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무역집배 및 무역항의 실태장악)**

용선사업기관은 용선의뢰가 제기되는 경우 제때에 중개할수 있도록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무역집배의 척수와 기술상태, 수송능력, 무역항의 무역집 및 배취급능력 같은 것을 해당 기관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정확히 장악하고있어야 한다.

**제15조 (용선중개비용)**

용선사업기관의 무역집배용선중개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한 중개비용을 낸다. 무역집배용선중개비용은 계약된 운임의 1.25%로 한다.

## 제3장 용선계약체결 및 리행

**제16조 (용선계약당사자)**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용선자와 해상수송자이다.

용선자 또는 해상수송자의 위임에 따라 용선사업기관이 용선자나 해상수송자를 대리하여 용선계약당사자로 나설수 있다.

**제17조 (용선계약체결)**

용선계약은 중앙해운지도기관이 정한 표준용선계약서에 준하여 맺는다.

다른 나라 무역집배를 용선하는 경우에는 용선사업기관이 맞물려준데 따라 용선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용선계약의 체결은 용선사업기관이 다른 나라 해상수송자와 합의한 용선계약서에 준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용선계약체결시 짐종류, 짐의 가격, 수송되는 해상거리에 따라 운임률을 바로 정하고 정확히 리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용선계약서의 경우)**

용선자와 해상수송자가 직접 용선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용선계약서에 용선사업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용선계약의 담보조건)**

용선사업기관이 중개한 무역집배의 용선자는 용선계약을 맺을 때 운임의 일부를 지출하거나 운임지불담보서를 내야 한다.

용선자는 무역집의 위험부담조건에 따라 해상수송자에게 지불능력있는 보험증서를 요구할수 있다.

**제20조 (무역집의 상선준비)**

용선자는 계약에서 정한 기일안에 무역집을 지정된 무역항에 도착시키며 무역집배에 실을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1조 (무역집배의 도착)**

해상수송자는 계약에서 정한 기일안에 항해감당력이 있는 무역집배를 지정된 무역항에 도착시키며 해상무역집을 실을수 있는 준비를 정해진 요구대로 갖추어야 한다.

용선사업기관은 해상수송자로부터 무역집배가 항에 도착하는 예정날자를 받아 용선자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2조 (용선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

용선계약은 취소하거나 변경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선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용선자와 해상 수송자사이 에 합의를 하고 취소 또는 변경하며 그에 대하여 용선사업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계산서, 증빙문건의 제기)**

용선자와 해상수송자는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이 끝나면 운임, 조출료 또는 채선료계산서와 증빙문건을 해당 용선계약당사자에게 제때에 내야 한다.

**제24조 (요금청산)**

운임, 조출료 또는 채선료계산서를 받은 용선계약당사자는 그것을 3일안으로 검토하고 운임, 조출료 또는 채선료를 청산하여야 한다.

운임, 조출료 또는 채선료를 제때에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한 연체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제4장 무역집배용선중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25조 (무역집배용선중개사업에 대한 지도)**

무역집배용선중개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은 무역집배용선중개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 도하여야 한다.

**제26조** (비상설조선해운위원회)

중앙해운지도기관은 비상설조선해운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조직운영하여 무역집배 용선중개 사업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제때에 토의대책하여야 한다.

**제27조** (무역집배용선중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무역집배용선중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무역집배용선중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 무역집배용선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배취급의 중지)

이 법 제18조에 따라 용선사업기관의 경유를 받지 않은 무역집배에 대하여서는 우리 나라 무역항에서의 배취급을 중지시킨다.

**제29조** (용선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보상)

용선계약을 어겨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가 손해를 보상한다.

**제30조** (분쟁해결)

무역집배용선중개 또는 용선계약체결 및 리행과정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해사중재 또는 해사재판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제3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국가의 해운정책집행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 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              |        |              |                 |
|--------------|--------|--------------|-----------------|
| 주체89(2000)년  | 3월 23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1419호로 채택   |
| 주체91(2002)년  | 5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3025호로 수정보충 |
| 주체94(2005)년  | 8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1236호로 수정보충 |
| 주체97(2008)년  | 4월 22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2686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9(2020)년 | 8월 22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372호로 수정보충  |

## 제1장 민용항공법의 기본

### 제1조 (민용항공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은 민용항공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간항공의 안전과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령공에 대한 자주권의 행사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공에 대하여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한다.  
다른 나라 항공기는 승인없이 공화국령공에서 비행할수 없다.

### 제3조 (민용항공의 안전보장원칙)

민용항공의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민용항공사업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항공안전계획과 안전관리체계를 엄격히 세워 항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용항공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 제4조 (항공운수의 발전원칙)

항공운수를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민용항공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 늘어나는 항공수송수요를 보장하도록 한다.

### 제5조 (민용항공기의 관리원칙)

항공기에 대한 관리는 민용항공사업의 중요공정이다.  
국가는 민용항공기의 관리질서를 바로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 제6조 (비행장운영의 과학화원칙)

비행장을 현대적으로 꾸리는 것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민용항공사업의 발전추세에 맞게 비행장운영을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7조** (민용항공부문의 과학연구, 일군양성원칙)

국가는 민용항공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민용항공일군들을 전망성있게 키워 내도록 한다.

**제8조** (항공보험제의 실시원칙)

국가는 항공사고에 의한 피해와 손해를 제때에 보상받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보험제를 실시한다.

**제9조** (민용항공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민용항공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10조** (국제협약의 효력)

민용항공사업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2장 항공성원

**제11조** (항공성원의 의무)

항공성원은 민용항공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항공성원은 승무임무, 지상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항공성원의 구분)

항공성원은 승무성원과 지상근무성원으로 나눈다.

승무성원에는 승조장, 비행사, 항법사, 승무기사, 승무무전수, 승무안내원, 승무지도성원이, 지상근무성원에는 비행지휘원, 비행기술정비원, 항공무선통신수, 항공수송조직 및 봉사성원이 속한다.

**제13조** (항공성원의 자격)

항공성원으로는 항공분야의 전문교육을 받고 해당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항공성원의 자격을 주는 사업은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이 경우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항공성원의 자격기준을 국제협약의 요구에 맞게 정하고 자격을 주어야 한다.

국제민용항공기구 체약국에서 준 항공성원자격도 이 법에 따라 준 자격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4조** (항공성원이 소지할 증서)

항공성원은 해당 자격증, 건강검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자격증, 건강검진증의 유효기간을 연기받으려 할 경우에는 자격판정,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은 해당 의료기관이 한다.



#### 제15조 (항공기승조의 구분)

항공기의 승조는 승조장과 해당 승무성원으로 구성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항공기의 종류와 운행목적, 해당 조건에 맞게 승조의 구성과 인원수, 비행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 (승조장의 임무와 권한)

승조장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승조를 지휘하며 비행의 시작, 계속, 취소와 관련한 최종결심을 내려야 한다.
2. 비행중 항공기안의 질서를 세우며 항공기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지시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우거나 항공기에서 내리울수 있다.
3. 항공기에 있는 인원과 재산, 화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4. 항공기의 정상비행을 보장하며 정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비행지휘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비행안전이 위협당하는 경우 비행계획을 변경시키거나 항로를 우회할 결심을 내려야 한다.
6. 조난신호를 받았거나 조난당한 항공기 또는 배를 발견하면 그 장소를 항행일지에 기록하고 비행지휘소에 통보하며 가능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7. 다른 나라의 공중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해당 나라의 공중단속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 제17조 (항공기위험시 승조장의 위치)

승조장은 항공기에 위험이 조성되었을 경우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항공기에서 마지막으로 떠나야 한다.

#### 제18조 (승조원, 려객의 임무)

항공기안에서 승조원과 려객은 승조장에게 무조건 복종하며 승조장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3장 항공기

#### 제19조 (항공기의 구분)

항공기는 항공수송의 기본수단이다.

항공기에는 비행기, 직승기, 활공기, 비행선, 기구 같은 것이 속한다.

#### 제20조 (항공기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공기를 민용항공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항공기에는 정해진 국적표식과 등록표식을 한다.

다른 나라에 등록된 항공기는 등록할수 없다.

**제21조 (항공기의 비행유용성검사 및 증명서발급)**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항공기에 대한 기술검사를 하고 비행유용성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제민용항공협약에 따라 국제민용항공기구 체약국에서 발급한 비행유용성증명서는 이 법에 따라 발급한 비행유용성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2조 (항공기의 비행유용성보존)**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용항공관리기관이 정한 비행유용성기준에 맞게 항공기의 비행유용성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 (항공기의 접수)**

항공기를 새로 접수하는 항공회사는 항공기의 기술상태를 담보하는 비행유용성증명서를 넘겨받아야 한다.

항공기를 대수리하였거나 정해진 정비작업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비행유용성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24조 (무선통신수단의 설치, 리용허가)**

항공기의 무선통신수단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이 발급하는 항공기무선국사용허가증을 받지 않고서는 항공기의 무선통신수단을 리용할수 없다.

**제25조 (항공기정비기관의 운영허가)**

항공기정비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용항공관리기관의 운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용항공관리기관은 운영허가기준에 맞는가를 정확히 확인하고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항공기정비기관에서 항공기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민용항공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6조 (항공기정비기관의 운영허가정지 또는 취소)**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항공기정비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술능력이 없거나 민용항공관리기관의 검열을 회피, 방해하였을 경우 운영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할수 있다.

**제27조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문건)**

항공기에는 항공기등록증명서, 비행유용성증명서, 항행일지와 민용항공관리기관이 정한 문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4장 비행장

### 제28조 (비행장의 구분)

민용비행장은 국내비행장과 국제비행장으로 나눈다.

### 제29조 (검사, 검역기관의 설치)

국제비행장에는 통행검사기관, 세관, 항공보안검사소, 검역기관을 설치한다.

항공회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검사, 검역기관들의 요구에 의무적으로 복종하여야 한다.

### 제30조 (비행장운영허가신청)

비행장을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용항공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비행장의 건물, 시설물, 비행보장수단에 대한 자료, 비행장운영지도서 등을 첨부한 비행장운영허가신청문건을 민용항공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 제31조 (비행장운영허가)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비행장운영허가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비행장운영허가신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등록하고 비행장운영허가증을 발급한다.

비행장운영허가증은 제3자에게 빌려줄수 없다.

### 제32조 (비행장의 운영기준)

비행장의 운영기준은 민용항공관리기관이 정한다.

비행장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용항공관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항공기의 리착륙과 지상기동, 정박을 보장하며 려객과 손짐, 화물, 우편물의 취급, 항공성원들에 대한 봉사를 원만히 할수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있어야 한다.

정해진 운영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비행장운영을 할수 없다.

### 제33조 (비행장구역과 그 주변의 표식, 신호장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행장구역과 그 주변의 건물과 시설물에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표식, 신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표식, 신호장치설치기준과 비행장주변의 범위는 민용항공관리기관이 정한다.

### 제34조 (비행장주변의 안전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비행장주변에 고압송전선, 탑이나 살림집, 목장, 시설 등을 건설하려 하거나 지대정리와 작물재배를 하려는 경우 민용항공관리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비행장주변에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35조 (항행시설설치 및 정상가동)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비행장들에 필요한 항행시설을 국제적표준에 맞게 설치하고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민용항공관리기관의 승인없이 비행장주변에서 항행등시설과 혼동을 일으킬수 있는 조명시설의 설치 및 리용, 각종 신호간섭 등 항행시설의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5장 항공기의 운행

### 제36조 (항공기운행의 기본요구)

항공기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안전하게 비행시키는것은 항공기운행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해당 공중규칙의 요구에 맞게 비행지휘와 통보봉사를 정확히 하여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37조 (공중구역의 구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중구역은 공화국의 령토와 령해, 전속경제수역의 상공과 그밖에 공화국이 항공기들에 대한 항공교통봉사업무를 보장할 책임을 진 임의의 공중공간을 포괄한다. 공화국의 공중구역은 항공로와 항로지점, 비행장구역, 비행지휘구역, 비행훈련구역,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비행위험구역으로 나눈다. 공화국의 공중구역에서 항공기는 항공교통기관의 비행지휘를 받으며 해당 구역에 따라 정해진 요구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 제38조 (항공기운행의 승인)

항공기를 운행하려는 항공회사는 민용항공관리기관에 항공기운행계획을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기운행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제39조 (항공기의 비행허가)

항공회사는 비행계획을 비행지휘소에 제출하고 비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공기의 리착륙순서와 비행항로 등을 정하는 사업은 비행지휘소가 한다.

### 제40조 (항공기의 비행)

항공기는 정해진 항공로 또는 항로지점을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항공로 또는 항로지점을 변경하거나 우회하여 비행하려 할 경우에는 비행지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항공기의 국경통과)**

항공기는 국경통과지점상공에 도착하기전에 비행지휘소의 통과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경을 통과할 경우에는 정확한 시간, 비행제대고도를 비행지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항공기의 비행방조)**

항공기는 정해진 항공로나 항로지점에서 벗어났을 경우 즉시 비행지휘소에 알리고 비행지휘소가 지적하는 항공로나 항로지점, 비행구역에 들어가야 한다.  
비행지휘소는 항공기가 승인된 비행계획과 정해진 비행규칙대로 비행하도록 하며 항공기가 조난중에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가능한 방조를 하여야 한다.

**제43조 (항공기의 통신)**

항공기는 비행과정에 비행지휘소와의 통신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비행지휘소와의 통신이 끊어졌을 경우에는 정해진 질서대로 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린접국가 또는 해당 비행지휘소들과 비행지휘협동을 실현하여야 한다.

**제44조 (견시비행, 계기비행규칙의 준수 의무)**

항공기는 비행지휘소의 승인을 받은 다음 견시비행 또는 계기비행규칙대로 비행하여야 한다.  
견시비행, 계기비행규칙을 정하는 사업은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제45조 (항행보장근무조직)**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평양비행통보구역안에서 항공기의 안전비행을 위한 항행보장근무를 조직하고 지상무선봉사와 항공기상통보 등을 국제적표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 제6장 항공영업

**제46조 (항공영업의 구분)**

항공영업은 항공운수의 중요분야이다.  
항공영업에는 항공운수영업과 항공작업 같은것이 속한다.

**제47조 (항공운수영업의 허가)**

항공운수영업은 항공회사운영허가증을 받은 항공회사가 한다.  
항공회사운영허가증의 발급은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제48조 (항공회사의 운영허가증발급)**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항공회사는 회사의 운영지도서, 운영제원, 항공기운영을 위한 최소기준, 수송규칙, 요금표 같은 항공회사운영허가신청문건을 민용항공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신청문건의 검토와 예비검열, 검열을 통하여 신청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 운영제원을 승인하고 항공회사운영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9조 (관광유람항공기의 운영)**

민용항공관리기관은 관광유람비행을 조직할수 있다.

관광유람항공기를 운영하려는 항공회사는 평양시를 비롯한 여러 명승지를 유람할수 있게 항로를 설정하고 민용항공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다른 나라 항공운수영업의 허가)**

정부사이의 협정에 따라 공화국령역에서 정기항로운수영업을 하려는 다른 나라 항공회사는 민용항공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정기항로운수영업을 하려 할 경우에도 민영항공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 (항공수송계약)**

항공수송은 항공회사와 려객 또는 짐입자사이에 맺은 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수송계약에 따라 항공회사는 비행기표, 돈 무는 손집표, 화물부침표 같은 것을 발급하며 려객 또는 짐입자는 정해진 요금을 물 의무를 진다.

**제52조 (항공수송계약리행의 중지)**

항공회사는 비행안전담보가 없거나 항공수송이 공화국의 법 또는 출발, 도착하는 나라의 법에 위반되거나 려객의 상태가 항공기의 운행에 지장을 줄수 있을 경우 해당 수송계약의 리행을 중지할수 있다.

**제53조 (비행기표의 물리기)**

려객은 산 비행기표를 정해진 기간안에 물릴수 있다.

비행기표를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물릴 경우에는 해당한 수수료를 문다.

**제54조 (운행이 중지, 취소되는 항공기의 화물처리)**

항공회사는 항공기의 운행이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화물을 부친자와 받을자에게 알리고 그 처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55조 (화물부침표에 지적할 사항)**

항공회사는 화물부침표에 출발지점, 도착지점과 경유지점, 화물의 품명과 수량, 무게, 운임, 수송자 등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항공회사는 화물부침표에 지적된 사항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56조 (부치는 화물의 수속)**

화물을 부치는자는 항공회사에 해당 문건을 내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항공회사에 화물을 넘겨준 다음 발송되기 전까지는 화물을 부치는자를 변경할수 있다.

**제57조 (화물부치는자의 책임)**

화물을 부치는자는 화물부침표의 내용대로 신고하며 정해진대로 포장한 화물을 항공회사에 넘겨주어야 한다.

화물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았거나 정해진대로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넘겨주어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화물을 부친자가 진다.

**제58조 (발송한 화물의 처리)**

화물을 부친자는 발송한 화물을 넘겨받을자가 없거나 넘겨줄수 없을 경우 그것을 처리할수 있다.

**제59조 (받을 화물의 수속)**

항공회사는 화물이 도착하면 화물을 받을자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화물의 도착에 대하여 통지받은 화물을 받을자는 해당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60조 (항공회사의 책임)**

항공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려객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시작한 때부터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의 사이에 사망하였거나 인체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2. 수송지연, 취급부주의 같은 사유로 려객이나 손짐, 화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3. 항공기의 사고 또는 항공기에서 떨어진 물체에 의하여 제3자가 사망하였거나 피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61조 (항공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조건)**

항공회사는 사망, 피해, 손해, 사고의 원인이 려객이나 짐입자의 허물 또는 어찌할수 없는 사유에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이 경우 항공회사는 해당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제62조 (수송도중 화물의 책임)**

수송도중 손짐이나 화물의 손상, 분실에 대한 책임은 신고된 범위에서만 진다.

짐입자는 손짐이나 화물의 수량 또는 가치를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제63조 (위험물품의 수송)**

항공회사는 위험물품을 정확히 분류하고 수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품수송과 관련한 공화국의 해당 법규와 국제민용항공협약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4조 (항공기의 임대, 전용, 호상교환계약)**

항공회사는 다른 나라 항공회사와 항공기의 임대, 전용, 호상교환을 위한 계약을 맺을수 있다. 이 경우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해당 나라 당국과 비행유용성증명서, 비행승조와 정비성원들의 자격증, 항공기무선국허가증명서의 발급 및 인증과 관련한 책임을 넘겨주거나 넘겨받기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65조 (항공기의 리용계약)**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공회사와 항공작업계약 또는 항공기사용계약을 맺고 농업, 건설, 림

업, 수산, 탐사부문의 작업과 촬영, 과학연구, 체육문화활동, 의료방조, 조난구조 같은데 항공기를 리용할수 있다.

조난 같은 긴급한 경우에는 항공기사용계약을 맺지 않고 구조작업을 할수 있다. 이 경우 항공회사는 민용항공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6조 (항공작업계약)

항공회사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공작업계약을 정확히 맺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작업대상과 량, 작업구역, 항공작업에 리용할 비행장 또는 착륙장, 해당 설비의 리용절차, 요금지불조건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 제67조 (계약의 리행의무)

항공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작업을 끝내며 작업의 질, 작업과정에 제3자에게 끼친 피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항공작업을 주문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 제68조 (항공작업의 지휘)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항공작업조직과 진행, 항공기의 리용에 대한 지휘를 바로하여 작업의 효과성을 높이며 항공작업이나 항공기의 리용과정에 환경, 농작물, 집짐승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 제69조 (손해보상청구)

항공영업과정에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항공회사에 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손해보상청구는 정해진 기간에 하여야 한다.

## 제7장 다른 나라 항공기의 운행

#### 제70조 (다른 나라 항공기의 착륙, 리륙, 통과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다른 나라 항공기는 정부사이의 협정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착륙, 리륙, 통과비행할수 있다. 이 경우 공화국의 항공법규를 지켜야 한다.

#### 제71조 (정기항로비행의 승인)

정기항로비행을 하려는 다른 나라 항공회사는 민용항공관리기관에 비행계획과 비행시간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행계획과 비행시간표를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제72조 (비정기항로비행허가의 신청)

비정기항로비행을 하려는 다른 나라 항공회사는 비행허가신청서를 민용항공관리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정기항로비행허가신청기간은 항행통보로 공포한다.

**제73조 (다른 나라 항공기의 리륙증지)**

다른 나라 항공기는 정해진 문건을 정확히 갖추어야 한다.

정해진 문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비행유용성이 담보되지 않은 다른 나라 항공기의 리륙을 중지시킬수 있다.

**제74조 (다른 나라 항공기의 비상착륙조건)**

비행지휘소는 통과비행승인을 받은 다른 나라 항공기가 공화국의 비행규칙을 위반하였거나 항공기에 실은 화물을 검사할 필요가 생겼거나 또는 항공기의 비행에 불리한 일기조건이 조성되었을 경우 비상착륙시킬수 있다.

**제75조 (다른 나라 항공기의 구조)**

민용항공관리기관은 공화국의 공중구역에서 다른 나라 항공기에 위험이 조성되었거나 사고가 생긴 경우 구조대책을 세우고 해당 나라의 민용항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 (다른 나라 항공기의 조사)**

다른 나라 항공기가 승인없이 공화국의 공중구역으로 들어왔거나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비행위험구역에 들어섰을 경우에는 착륙시키고 그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비용부담과 책임은 항공기의 승조장 또는 해당 항공회사가 진다.

**제77조 (비행료금)**

공화국의 공중구역에서 비행하는 다른 나라 항공기는 정해진 요금을 물어야 한다.

## 제8장 항공보안

**제78조 (항공보안사업의 기본요구)**

항공보안사업은 민용항공에 대한 비법적인 간섭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와 인원, 시설 등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항공보안사업체계와 질서를 바로세우고 항공보안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79조 (항공보안사업)**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다음의 행위를 막기 위한 항공보안사업을 한다.

1. 항공기를 랏치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2. 항공기와 비행장안에서의 인질랍치행위
3. 위험물품을 비행장안에 들여오거나 항공기에 가지고 탑승하는 행위

4. 려객, 항공성원, 기타 성원들에 대한 폭력행위
5. 항공기나 비행장, 항행시설을 파손시키는 행위
6. 항공기를 리용하여 인명, 재산피해를 주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7. 민용항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허위정보를 통보하는 행위
8. 민용항공관리기관의 승인없이 비행장금지구역과 항행시설구역에 침입하는 행위
9.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싸이버위협 및 공격행위

**제80조 (항공보안질서의 준수 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항공보안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려객과 항공성원의 안전, 항공기의 운행과 비행장, 민용항공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81조 (항공보안검사를 받을 의무)**

항공기로 수송하는 인원과 물품은 탑승전에 항공보안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공보안검사를 받지 않은 려객, 항공성원, 물품은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실을수 없다.

## 제9장 항공기의 조난구조와 사고조사

**제82조 (항공기 조난구조, 사고조사의 기본요구)**

항공기의 조난구조와 사고조사는 조난당한 인원과 재산을 구원하고 항공기사고의 원인을 해명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공화국령역에서 항공기의 조난구조, 사고조사는 국가민용항공지도기관의 승인밑에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제83조 (항공기의 조난인정)**

승조의 힘으로 극복할수 없는 사태가 생겨 항공기와 인원에게 위험이 조성되었거나 비행지휘소와의 통신이 끊어져 위치를 알수 없는 항공기는 조난중에 있는 것으로, 충돌 또는 추락하여 파괴되었거나 심한 손상을 입었거나 비행장이 아닌 곳에 불시착륙한 항공기는 조난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84조 (항공기의 조난신호)**

항공기는 조난중에 있거나 조난당하였을 경우 즉시 조난구조지휘소에 보고하며 조난신호를 보내야 한다.  
항공기의 조난신호를 받은 비행지휘소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조난구조지휘소와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 (항공기의 조난구조작업)**

항공기의 조난에 대하여 통보받은 조난구조지휘소는 즉시 조난탐색, 구조작업을 조직진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인원부터 먼저 구조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조난구조작업은 비상재해극복작업절차대로 한다.

**제86조 (항공기의 조난자료처리)**

조난당사자와 조난탐색, 구조작업에 동원된 성원은 사고현장과 증거물을 보존하며 조난과 관련한 자료를 탐색구조지휘소에 내야 한다.

**제87조 (다른 나라 항공기의 조난작업승인)**

다른 나라 민용항공기관은 공화국의 공중구역에서 사고가 났거나 조난당한 자기 나라 항공기에 대한 탐색, 구조작업 및 사고조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민용항공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8조 (조난탐색, 구조작업의 비행지휘)**

조난탐색, 구조작업을 하는 항공기에 대한 비행지휘는 해당 비행지휘소가 한다.

조난탐색, 구조작업구역은 비행통보구역과 같다.

**제89조 (항공기사고조사조,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직과 사고조사방조)**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조 또는 사고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사고조사위원회를 조직하려 할 경우에는 국가민용항공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지방인민위원회와 사회안전기관, 법의감정기관, 해당 기관은 사고조사기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편의를 보장해주며 항공기사고조사사업을 적극 방조하여야 한다.

**제90조 (항공기사고조사조, 사고조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사고조사조, 사고조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외부성원의 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2.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와 그안의 물품, 비행보장수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사고원인을 해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조사는 책임추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3.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당 장소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수 있다.
4. 사고와 연관된 해당 성원들을 만나 담화할수 있으며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할수 있다.
5. 항공기와 그안에 있는 인원과 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조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을 가져갈수 있다.

**제91조 (비밀엄수 및 조사방해금지)**

항공기사고조사성원은 비행기록기와 좌실음성기록기의 자료, 기내영상자료, 공중촬영자료 등 사고조사과정에 알게 된 자료를 승인없이 공개하거나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항공기의 사고조사사업에 간섭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10장 항공보험

### 제92조 (항공보험의 구분)

항공보험은 항공회사와 항공운수수단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항공보험에는 항공기기체보험, 항공려객상해보험, 항공수송보험, 항공화물보상책임보험, 항공기제3자보상책임보험 같은 것이 속한다.

### 제93조 (의무적인 항공보험)

항공회사는 항공보험에 들어야 한다.

보험에 들지 않은 항공회사는 영업허가를 받을수 없다.

### 제94조 (항공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의 체결, 리행절차와 방법은 공화국의 보험법규에 따른다.

항공보험금액의 범위는 국제협약에 따라 정할수도 있다.

## 제11장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 제95조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민용항공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96조 (민용항공사업의 지도)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국가의 국가민용항공지도기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민용항공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 제97조 (민용항공관리기관의 임무와 권한)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민용항공정책과 민용항공법의 집행, 국제협약의 리행을 위한 세칙, 규칙, 지도서를 작성 또는 수정보충하며 필요한 경우 민용항공법의 수정보충안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직접 제기한다.

2. 국가의 항공운수를 발전시키고 민용항공시설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다.
3. 국가항공안전계획을 세우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리행하도록 한다.
4. 국제, 국내항공로와 그 리용절차를 정하고 공포한다.
5. 항공회사, 비행장운영기관, 항공교통기관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 운영승인을 준 다음 그에 대한 검열을 정상적으로 조직한다.
6. 국제기구, 다른 나라와 민용항공분야의 협약, 협정을 체결한다.
7. 민용항공사업에 필요한 인원보장, 항공성원양성사업을 한다.
8. 민용항공검열원을 임명하며 항공안전검열, 항공성원들의 자격검열사업을 한다.
9. 항공기사고조사보고서에 지적된 결함퇴치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한다.
10. 이밖에 국가민용항공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을 한다.

**제98조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민용항공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항공회사, 비행장, 항공교통 등 민용항공부문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99조 (항공안전자료와 정보의 보호)**

민용항공의 안전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그러나 그 자료 또는 정보가 비렬한 동기나 목적으로 제공되었다는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00조 (비행과 관련한 자료의 통보)**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비행장, 비행제한구역, 비행금지구역, 비행위험구역과 관련한 자료를 정상적으로 해당 기관과 항공회사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01조 (법적책임)**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비행장이나 항공회사의 운영중지, 해당 승인의 취소, 항공성원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박탈, 강급, 벌금, 손해보상 같은 행정적 또는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102조 (의견상이의 해결)**

민용항공사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중재,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길표식법

주체93(2004)년 3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호로 채택

## 제1장 배길표식법의 기본

### 제1조 (배길표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길표식법은 배길표식물의 설치와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배길표식물의 종류)

배길표식물은 등불, 모양, 색깔, 소리, 전파 같은 것을 리용하여 항만, 연안수역, 하천, 호수에서 배길안내를 위한 기본수단이다.

배길표식물에는 등대, 등간, 등표, 립표, 부표, 도표, 음향신호설비, 무선신호설비 같은 것이 속한다.

### 제3조 (배길표식물의 현대화원칙)

배길표식물의 설치는 배길표식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배길표식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배길표식물을 현대화하고 수로항해학적요구에 맞게 설치하도록 한다.

### 제4조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원칙)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을 바로하는것은 배길표식물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그 기술적성능과 제원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한다.

### 제5조 (배길표식물의 보호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배길표식물에 대한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배길표식물보호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 제6조 (배길표식부문의 과학연구사업원칙)

국가는 배길표식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도록 한다.

### 제7조 (배길표식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배길표식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배길표식분야의 국제협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배길표식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2장 배길표식물의 설치

**제9조 (배길표식물설치의 기본요구)**

배길표식물의 설치를 바로하는 것은 해난사고를 미리 막고 배의 항해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수로지도기관은 배길표식물설치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배길표식물설치의 담당자)**

배길표식물의 설치에 배길표식기관, 기업소가 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가 리용하는 배길표식물의 설치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1조 (배길표식물설치의 신청)**

배길표식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길표식물설치신청서를 만들어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배길표식물신청서에는 설치리유, 위치, 종류, 재원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2조 (배길표식물설치신청의 심의)**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길표식물설치신청서를 1개월안으로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통지서를, 부결한 경우에는 배길표식물신청서에 그 리유를 밝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야 한다.

**제13조 (배길표식물설치의 중요요구)**

배길표식물의 설치에서 나서는 중요요구는 다음과 같다.

1. 항해하는 배에서 잘 보여야 한다.
2. 정해진 형태와 색깔, 등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비침과 보임거리, 음향과 무선전파거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4. 안전성과 견고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5. 문화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배길표식물설계의 작성)**

배길표식물의 설치를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길표식물의 설계를 설계지도서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배길표식물설계지도서를 만드는 사업은 국가수로지도기관이 한다.

**제15조 (배길표식물의 설치방법)**

배길표식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길표식물의 설치에서 기술규정과 표준 공법을 지키며 설치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안에 배길표식물의 설치를 끝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수로 지도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6조 (배길표식물의 준공검사)**

배길표식물을 설치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배길표식물은 사용할수 없다.

**제17조 (배길표식물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치한 배길표식물을 정한 기간안에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배길표식물은 승인없이 철수하거나 위치를 변경시킬수 없다.

**제18조 (배길표식물의 설치조건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배길표식물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인원의 출입, 건물 또는 시설물의 철수 같은 배길표식물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달라진 배길표식물의 제원통보)**

국가수로지도기관은 설치하였거나 달라진 배길표식물의 제원을 제때에 수로공보를 통하여 내보내며 등대표와 해도에 정확히 밝혀야 한다.

## 제3장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

**제20조 (배길표식물관리운영의 기본요구)**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은 배길표식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본임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을 배길표식물관리운영지도서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배길표식물관리운영지도서를 만드는 사업은 국가수로지도기관이 한다.

**제21조 (배길표식물의 성능과 제원유지)**

배길표식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대표에 밝혀진 배길표식물의 성능과 제원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자연재해 같은 사고로 배길표식물의 성능과 제원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제때에 그것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 (배길표식의 성능과 제원측정)**

배길표식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길표식물의 성능과 제원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달라진 성능과 제원은 국가수로지도기관에 곧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배길표식물의 보수)**

배길표식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길표식물의 보수주기를 지키며 보수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내용년한이 지났거나 못쓰게 된 배길표식물은 제때에 교체하여야 한다.

**제24조 (배길표식물의 보호구역)**

국가는 배길표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길표식물보호구역을 정한다.

배길표식물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5조 (배길표식물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배길표식물보호구역에서 승인없이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토지를 일구거나 물고기잡이를 하는 것 같은 배길표식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6조 (배길표식물의 보호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배길표식물을 적극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배길표식물에 배, 때뭍 같은 것을 매여두거나 배길표식물을 파손시킬수 있는 거리로 향해할 수 없다.

**제27조 (등불, 음향신호, 무선신호의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배길표식물의 식별에 지장을 줄수 있는 등불, 음향 신호, 무선 신호 같은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28조 (배길표식물의 사고신고)**

배길표식물이 파손되었거나 배길표식물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배길표식기관에 곧 알려야 한다.

**제29조 (배길표식물의 리용료금)**

배길표식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료금을 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 **제4장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0조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배길표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

이다.

국가는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1조 (배길표식사업지도기관)**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배길표식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2조 (과학기술적지도와 선진기술의 보급)**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길표식부문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하고 선진기술의 보급과 도입사업을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제33조 (로력, 자재, 설비,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기관은 배길표식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35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배길표식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6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배길표식물의 설치와 관리운영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등록법

주체96(2007)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08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 제1장 배등록법의 기본

### 제1조 (배등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등록법은 배등록과 관련한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배에 대한 장악과 통제를 원만히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배등록의무)

배등록은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배등록절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고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 제3조 (등록된 배의 법적보호)

국가는 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 제4조 (국기계양)

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계양한다.

### 제5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배등록기관과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등록하려는 다른 나라 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6조 (배등록의 제외대상)

군함 및 경비용배에는 이 법에 따르는 배등록을 하지 않는다.  
총톤수가 5톤미만의 기계배와 배길이 12m미만의 작은 배에 대한 등록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 제7조 (배등록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배등록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배등록의 신청

### 제8조 (배등록신청의 기본요구)

배등록의 신청은 배등록사업의 첫 공정이다.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때에 배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 (등록신청대상의 배)

다음의 배는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의 배
2.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가 합영, 합작하여 운영하는 배
3. 우리 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는 배

#### 제10조 (배등록의 신청)

배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다른 나라의 배등록신청은 중앙해사감독기관에 한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해사대표기관에 직접 할수도 있다.

#### 제11조 (배등록신청의 구분)

배등록신청은 다음의 경우에 한다.

1. 새로 건조하였거나 구입한 배를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첫배등록신청을 한다.
2.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배이름, 선적항, 소유관계, 배구조 같은것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배의 변경등록신청을 한다.
3. 대부상환 또는 기타 채무리행담보로 배를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배의 저장등록신청을 한다.
4. 빈배용선한 배를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빈배용선등록신청을 한다.
5. 배의 등록관할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배의 전출 및 전입등록신청을 한다.

#### 제12조 (배등록신청문건의 기재사항과 첨부문건)

배등록신청문건에는 배의 이름, 선적항, 종류, 톤수, 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호출부호,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 기술제원 같은것을 밝히며 배등록신청목적과 내용에 따라 배무이관련증서, 배등록삭제증서, 배연혁기록부, 배매매증서, 채무관련증서, 공증기관확인서, 계약서, 구조변경승인서 같은 문건을 첨부한다.

#### 제13조 (배등록신청문건의 반송)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신청문건에 밝혀야 할 기재사항이 없거나 틀리거나 첨부하여야 할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문건을 돌려보낼수 있다.

배등록신청문건을 돌려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결함을 퇴치하고 배등록신청을 다시 할수 있다.

#### 제14조 (배등록의 삭제신청)

우리 나라에 등록하였던 배를 국적제적, 배의 행방불명 또는 침몰, 폐선 같은 리유로 삭제하

려 할 경우에는 배등록삭제신청문건을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신청문건에 배의 이름과 등록번호, 종류, 톤수, 사용년한, 신청리유, 채권채무관계 같은것을 밝히며 해당한 증명문건을 첨부 한다.

## 제3장 배등록의 심의

### 제15조 (배등록의 심의의 기본요구)

배등록의 심의는 배등록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심증성을 엄격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16조 (배등록의 심의)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배등록심의는 국제항해하는 배와 국내항해하는 배의 등록을 위한 심의와 배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한 심의로 구분하여 한다. 구체적인 배등록심의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 제17조 (배등록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배등록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 제18조 (배의 톤수측정)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를 할 경우 해당 배의 톤수측정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국제항해하는 배의 톤수측정은 배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하며 국내항해하는 배의 톤수측정은 국내톤수측정규정에 따라 한다.

### 제19조 (배등록의 승인 또는 부결)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를 한 경우 해당 배의 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배등록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배등록의 부결통지를 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힌다.

### 제20조 (등록할수 없는 배)

다음의 배는 등록할수 없다.

1. 항해감당력이 담보되지 않은 배
2. 해양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배

### 제21조 (배등록의 재심의제기)

배등록의 부결통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심을 제기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의 재심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1개월안으로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22조 (의견제기)

배등록의 심의결과에 이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해사감독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제때에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 제23조 (배의 등록)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이 승인된 배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의 이름, 선적항, 종류, 톤수, 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등록번호, 호출부호, 국제해사기구번호, 해상 이동봉사식별번호, 기술제원, 채권채무관계, 등록날자 같은것을 밝힌다.  
등록하지 않은 배는 항해할수 없다.

#### 제24조 (배등록의 구분)

배는 국제항해배와 국내항해배로 나누어 등록한다.

#### 제25조 (공화국국적소유)

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는 공화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우리 나라 배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제26조 (우리 나라 수역에서 경제활동)

공화국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다른 나라 배는 우리 나라 수역에서 어로작업, 과학연구 같은 경제활동을 할수 없다.  
우리 나라 수역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27조 (등록된 배의 표식과 기술검사)

배를 등록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기와 배의 이름, 선적항, 국제해사기구번호, 만재잠김선 같은것을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표식하여야 한다.  
배기술검사는 정기적으로 받는다.

#### 제28조 (등록된 배의 법규준수의무)

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는 공화국의 해당 법규와 우리 나라가 승인한 해사관련 국제협약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영상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배를 등록에서 삭제 또는 정지시켰다 할지라도 공화국의 법적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제29조 (배등록의 정지)

빈배용선계약에 따라 우리 나라 배를 다른 나라에 빌려주어 다른 나라 국적으로 운영하려 할 경우에는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청에 따라 빈배용선하는 기간 그 배의 등록을 정지시킨다. 이 경우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을 정지시킨다는 서면동의서를 발급할수 있다.

### 제30조 (배등록의 삭제)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삭제가 승인된 배를 배등록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배등록을 허위로 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배등록을 삭제한다.

## 제4장 배등록증서

### 제31조 (배등록증서와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등록된 배에 배등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배등록증서에는 배의 이름, 국적, 선적항, 소유관계, 등록날자, 종류, 톤수 및 기술제원, 발급 날자, 유효기간 같은것을 밝힌다.  
배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 제32조 (림시배등록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배를 새로 구입하였거나 배등록증서가 만기되었거나 배의 등록관할이 달라진것으로 하여 배등록증서가 없이 항해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그 배에 림시배등록증서를 발급할수 있다.  
림시배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은 1~6개월이다.

### 제33조 (배등록증서의 재발급)

배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그것을 분실, 오손시켰거나 회수당하였을 경우에는 제때에 신청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 제34조 (배의 항해)

배는 해사감독기관에서 발급한 배등록증서 또는 림시배등록증서가 있어야 항해할수 있다. 그러나 새로 건조하였거나 수리한 배에 대한 시운전을 하려 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배등록증서나 림시배등록증서를 발급받기전이라도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항해할수 있다.

### 제35조 (배등록삭제증서)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을 삭제하였을 경우 배등록삭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이 삭제된 배의 등록증서를 제때에 해사감독기관에 바쳐야 한다.

### 제36조 (배이름과 선적항, 해당 번호, 부호의 지정)

배이름과 선적항은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사감독기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배의 등록번호와 등록증서발급번호는 해사감독기관이, 배호출부호와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는 전파감독기관이 정한다.

## 제5장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7조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해사감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담 보이다.

국가는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38조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사업체계와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 제39조 (배등록자료의 구비)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의 등록척수, 등록톤수, 배기관출력 및 배수송능력 같은 배등록과 관련 한 종합적인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해당 기관이나 국제해사기구 또는 다른 나라의 해사기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배등록과 관련 한 보증을 한다.

### 제40조 (배등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배등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배등록의 신청과 심의, 배등록증서발급정형을 엄 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41조 (배등록증서회수)

비법적으로 배등록증서를 발급받았거나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회수한다.

### 제42조 (항해중지)

배등록을 하지 않고 항해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의 항해를 중지시키거나 억류할수 있다.

### 제4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배등록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안전법

주체98(200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2호로 채택  
주체104(2015)년 8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98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3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7호로 수정보충

## 제1장 배안전법의 기본

### 제1조 (배안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안전법은 배의 설계 및 건조와 검사,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 배의 항해안전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배의 설계 및 건조원칙)

배의 설계와 건조, 검사를 바로하는 것은 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 요구이다.

국가는 배의 설계와 건조, 검사에서 해사관련법규의 요구를 엄격히 시키도록 한다.

### 제3조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원칙)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은 바다, 강, 호수에서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다.

국가는 배의 안전관리, 안전보장체계를 바로세우고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 제4조 (배의 항해안전보장원칙)

배의 항해안전을 보장하는것은 항해과정에 해난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배의 항해안전보장과 관련한 체계를 바로세우고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 제5조 (법의 제외대상과 해당 법규 및 국제해사협약의 적용)

군함 및 경기용 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안전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 또는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 해사협약(협약에 따르는 규칙, 수정문 포함)에 따른다.

### 제6조 (배안전과 관련한 국제적교류와 협조)

국가는 배안전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배의 설계 및 건조, 검사

### 제7조 (배의 설계, 건조, 개조원칙)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관련법규의 요구에 맞게 배를 설계, 건조, 개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사감독기관의 심의 및 검사를 받는다.

### 제8조 (배의 설계기관)

배의 설계는 전문배설계기관이 한다.

배의 기관 및 의장품 등에 대한 설계는 해사감독기관이 승인한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도 할 수 있다.

### 제9조 (배설계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

배설계의 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충분한 세기와 불침몰성, 복원성을 보장할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2.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3. 해사관련법규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4. 기술조사자료에 기초하여 현대발전추세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5. 지출을 줄이고 실리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6. 편리하고 미학적요구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 (배설계계약)

배의 설계를 주문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설계기관, 기업소와 설계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대상에 따르는 기술과제를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11조 (배의 설계단계)

설계는 과제설계, 초기설계, 기술설계, 작업설계, 총화설계단계로 나누어 작성한다.

배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단계에 따르는 절차와 방법, 과학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제12조 (배설계의 유효기간)

해사감독기관은 승인한 배설계의 유효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배설계는 리용할수 없다.

### 제13조 (표준설계문건의 리용)

배설계기관, 기업소는 배설계작성에 표준화, 규격화된 설계문건을 리용할수 있다.

### 제14조 (설계 및 표준조작법의 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기관, 의장품을 제작하는 경우 설계와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기관, 의장품의 설치 및 시험과 용접 같은것은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 기능공만이 할수 있다.

**제15조** (성능검사시험, 계류 및 항해시운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는 과정에 작업공정별에 따라 필요한 대상에 대한 성능검사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품에 대한 성능검사시험은 배에 설치한 다음 하여야 한다.

배의 건조, 개조, 수리가 끝나면 계류 및 항해시운전을 진행하고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설계수정 및 총화설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기관 및 의장품을 제작하는 과정에 설계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된 설계는 해사감독기관의 심의를 받는다.

배설계기관, 기업소는 배의 건조, 개조, 수리가 끝나면 그에 대한 총화설계를 작성하여 배소유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7조** (배의 선체구조, 기관 및 의장품, 만재잠김선, 톤수)

배는 해사관련법규에 따라 선체구조와 정해진 기관 및 의장품을 갖추고 만재잠김선을 표식하여야 하며 톤수를 제정받아야 한다.

기관 및 의장품설치에 대한 승인, 만재잠김선과 톤수의 제정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제18조** (무선설비)

배는 항해구역에 맞게 해상조난안전체계설비와 배안전보장경보장치, 배장거리식별추적장치와 같은 해사감독기관이 정한 무선설비를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갖추어야 한다.

**제19조** (발명, 창의고안의 도입)

배 또는 배설계에 발명, 창의고안 같은것을 새로 도입하려 할 경우에는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제20조** (검사에서 합격한 배의 운항과 관련한 증서)

검사에서 합격된 배는 운항과 관련된 증서를 발급받으며 증서유효기간안에 년차, 중간, 갱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배는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해사협약에 따르는 증서도 발급받는다.

**제21조** (배검사에 대한 의견제기, 배증서의 반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검사에 의견이 있거나 배증서를 분실 또는 오손시켰을 경우 해사감독기관에 제기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배가 폐선 또는 판매되었거나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기되었을 경우에는 배증서를 해사감독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22조** (배 또는 배의 재료, 설비 및 의장품수입)

배 또는 배의 재료, 설비 및 의장품을 수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자료나 견본 같은것을 내야 한다.

**제23조** (배의 설계, 건조 및 수리기관, 제작공장, 기술봉사소에 대한 인증 또는 공정승인)  
배를 설계, 건조 및 수리하거나 배의 재료, 의장품, 선용품을 제작 또는 그에 대한 기술봉사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의 인증 또는 공정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배검사)  
건조 및 운항하는 배 또는 조선선급을 가진 다른 나라 배, 보험대상의 배에 대한 검사는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배검사는 해당 법규에 따라 한다.

**제25조** (림시운항검사)  
해당 증서를 발급받기전에 구입 또는 양도, 폐선, 톤수측정, 개조, 수리와 같은 목적으로 항해하려는 배는 해사감독기관의 림시운항검사를 받고 그에 따르는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제3장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

**제26조**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의 기준)  
배운영 및 항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 기준에 맞게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체계를 세워야 한다.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 기준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제27조** (안전관리체계의 수립과 리행)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안전한 배운영과 환경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세우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리행정형을 기록부에 기록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안전관리문건)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안전관리문건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관리문건에는 안전관리체계에 따르는 성원들의 임무와 권한, 책임 및 호상관계, 배관리운영방법과 내용을 밝힌 안내서, 절차서, 지도서, 계획서 같은 것이 속한다.

**제29조** (안전보장체계의 수립과 리행)  
배와 항운영기관은 외부로부터 침습할수 있는 위험을 막고 사람과 재산을 보호할수 있도록 안전보장체계를 세우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30조** (배안전보장계획의 작성과 집행)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안전보장상태를 평가하고 안전보장과 관련한 행동절차가 반영된 안전보장계획을 세워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배에 갖추어야 한다.  
배는 안전보장계획을 정확히 집행하며 그 정형을 기록부에 기록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

여야 한다.

**제31조 (항시설안전보장계획의 작성과 집행)**

항운영기관은 정해진 기준에 맞게 항시설안전보장계획을 세워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갖추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항시설안전보장계획집행정형은 기록부에 기록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 (안전보장신고서)**

입항 또는 작업하는 배와 항운영기관은 안전보장상 문제점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장 신고서를 작성하여 배와 항 또는 배호상간 교환하며 신고서대로 안전보장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3조 (안전관리일군과 안전보장일군의 자격)**

배 및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항운영기관의 안전관리일군과 안전보장일군은 해사감독 기관의 자격평가를 받은 다음 해당한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일군과 안전보장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34조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검열의무)**

배 및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항운영기관은 해사감독기관의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검열을 받아야 한다.

검열에서 합격된 배 및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항운영기관에는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증서를 발급한다.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증서가 없는 배는 운영할수 없다.

## 제4장 배의 항해안전보장

**제35조 (배의 항해안전보장을 위한 련관기관들의 임무)**

기상수문, 항무감독, 수로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해당 법규에 따라 배의 항해안전을 보장하기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최소안전정원수의 보장)**

항해안전을 위하여 배에는 최소안전정원수가 보장되어야 한다.

배의 최소안전정원수는 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제37조 (운항자료의 기록)**

배는 항해일지, 기관일지, 기록부를 정해진대로 갖추고 운항자료를 정확히 기록하며 그 정형을 배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항해일지, 기관일지, 기록부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한다.

**제38조 (바다, 강, 호수에서 작업시 항해안전대책)**

수중구조물 또는 수중케블의 설치 및 해체, 난파선의 제거, 시추작업, 배길작업, 배해체를 비롯하여 바다, 강, 호수에서 작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항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작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대책과 관련한것은 해사감독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 (배의 정상상태유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관련법규의 요구에 맞게 배의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없이 배구조와 설비를 변경할수 없다.

**제40조 (출항전 항해준비)**

배는 출항하기 12시간전에 다음과 같은 안전항해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최소안전정원수를 갖추고 선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2. 항해설비와 주 및 보조기관, 조타장치, 비상전원계통을 비롯한 항해관련설비들을 동작 시험하고 결함을 퇴치하여야 한다.
3. 해도와 항해용출판물, 항해기상자료를 리용하여 예정항해계획을 세워야 한다.
4. 복원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5. 기타 안전항해와 관련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출항전검사)**

배는 정해진데 따라 매 항차마다 해사감독기관의 출항전검사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 시기 출항전검사 또는 기항국검열에서 제기되지 않은 배는 일정한 기간 출항전검사를 받지 않는다. 출항전검사에서는 배 및 선원관련 증서와 문건의 구비, 선체와 기계장치, 설비들의 상태, 최소안전정원수에 따르는 승선정형, 오염방지대책과 배의 항해안전성담보를 비롯한 해사관련 법규의 준수정형을 검사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배는 출항할수 없다.

**제42조 (짐취급과 관련한 안전규정의 준수)**

배는 사명과 용도에 맞게 짐을 실으며 고체산적짐, 위험짐, 액체짐을 비롯한 해상짐을 안전 규정의 요구대로 보관, 취급, 배치, 수송하여야 한다.

해상짐의 보관, 취급, 배치, 수송과 관련한 안전규정은 해당 법규와 국제규칙에 따른다.

**제43조 (안전항해유지)**

배는 다음과 같은 안전항해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충돌예방규정에 따라 항해하여야 한다.
2. 당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정해진 항해구역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4. 기타 안전항해와 관련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44조 (무선통신설비의 운영과 통항지휘)**

배는 무선통신설비와 배자동식별장치, 항해자료기록기를 항상 가동시켜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 또는 해상교통관리초소와 통신을 정상 유지하며 호출에 응답하고 그 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해상교통관리수역에서 해상교통지휘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45조 (항해과정에 피항 및 안전대책)**

항해과정에 해상경보가 있거나 좁은 수로와 같이 불리한 조건이 조성되었을 경우 배는 안전수역으로 대피하거나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안전항해를 보장할수 없을 정도의 불리한 날씨에는 항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46조 (배의 비상대응계획과 비상임무분담표)**

배는 화재, 침수, 조난, 오염사고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과 비상임무분담표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임무분담표는 승선인원이 교체되는 경우 수정하여야 한다.

**제47조 (려객선, 유람선, 나루배, 고기배의 운영)**

려객선, 유람선, 나루배, 고기배는 인명 및 항해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따로 정한 해사규정에 맞게 운영한다.

전파탐지기와 라침판 같은 항해설비가 없는 배는 바다에 나갈수 없다.

**제48조 (안전항해와 관련한 다른 나라 배의 통보)**

다른 나라 배가 해난사고를 일으켰거나 우리 나라 항에 입출항하거나 수리하려는 경우 배대리기관은 해당한 자료를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제49조 (조난시 탐색구조봉사요구)**

조난된 배는 정해진 절차대로 조난경보를 보내어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이나 가까운 수역에 있는 배에 구조를 요구할수 있다.

려객선은 조난시에 리용할수 있는 탐색구조협동계획을 작성하여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탐색구조방법과 절차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50조 (요금지불)**

배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안전과 관련하여 해당한 심의, 검사, 항해정보봉사, 정비봉사를 받았을 경우 정해진 요금을 내야 한다.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지도기관이 한다.

## 제5장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51조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해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 담보이다.

국가는 배안전사업과 관련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52조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안전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 제53조 (해사관련규정의 작성 및 지도)

내각과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안전을 위한 해사관련규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고 그 집행에 대한 지도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 제54조 (배안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배안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배안전사업에 대한 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55조 (다른 나라 배의 검열)

우리 나라 항에 들어온 다른 나라 배는 우리 나라 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의 준수정형에 대하여 해사감독기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 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결함을 퇴치할 때까지 출항중지 또는 억류시킬수 있다.

### 제56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1. 해사감독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설계로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였거나 설비, 의장품을 제작하였을 경우
2. 배설계작성요구를 지키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설계를 수정하였을 경우
3.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고 발명, 창의고안 같은것을 배 또는 배설계에 도입하여 배안전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설비, 의장품을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변경시켰을 경우
5.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고 배 또는 배의 재료, 설비, 의장품을 수입하였을 경우
6. 해사감독기관의 인증 또는 공정승인을 받지 않고 배를 설계, 건조, 개조, 수리하였거나



- 배의 재료, 기관, 의장품, 선용품을 제작하였거나 그에 대한 기술봉사를 하였을 경우
7.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검열을 받지 않았거나 검열에서 합격되지 못한 배를 운영하였을 경우
  8. 배의 최소안전정원수를 보장하지 않았거나 항해일지, 기관일지, 기록부를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고 운항자료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9. 바다, 강, 호수에서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고 작업을 하였을 경우
  10. 출항전항해준비, 안전항해유지, 무선통신설비의 정상가동 및 응답, 짐취급을 정해진 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11. 항해과정에 불리한 조건이 조성되었을 경우 피항 및 안전대책을 바로 세우지 않아 사고를 냈을 경우
  12. 화재, 침수, 조난, 오염사고와 같은 비상정황에 대처하기 위한 배의 비상대응계획과 비상임무분담표를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13. 배증서를 위조하였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증서를 가지고 항해하였을 경우
  14. 배의 설계심의회와 검사를 바로 하지 않았거나 해상짐의 보관, 취급, 배치, 수송과 관련한 질서를 어졌을 경우
  15. 다른 나라 배의 입항통지를 제때에 하지 않아 그에 대한 검열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6. 우리 나라 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을 지키지 않아 배가 다른 나라에 나가 대외적권위를 훼손시켰거나 국가적손실을 주었을 경우

**제57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56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 국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원법

주체98(2009)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5호로 채택  
주체104(2015)년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98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선원법의 기본

### 제1조 (선원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원법은 선원의 양성과 등록, 기술자격심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선원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배의 관리와 항해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선원의 구분)

선원은 배관리의 주인이며 항해의 직접적담당자이다.

선원은 지휘선원과 일반선원으로 구분한다.

### 제3조 (선원의 양성원칙)

선원양성은 능력있는 선원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선원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그 질적수준을 부단히 높이도록 한다.

### 제4조 (선원의 등록원칙)

선원등록을 바로하는 것은 해사감독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국가는 선원등록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 제5조 (선원의 기술자격심사원칙)

국가는 선원기술자격심사질서를 바로세우고 기술자격심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6조 (선원의 책임성과 역할제고원칙)

국가는 선원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그들이 항해와 배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 제7조 (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선원의 양성과 등록, 기술자격심사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8조 (선원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선원양성 및 등록, 기술자격심사기관, 선원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 수역에 들어온 다른 나라 배와 선원에게도 적용한다.

## 제2장 선원의 양성

### 제9조 (선원양성기관)

선원양성은 해당 전문교육기관과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 같은 선원양성기관에서 한다.  
선원양성기관에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고는 선원이 될수 없다.

### 제10조 (선원양성의 질적수준보장)

선원양성기관은 선원양성의 질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교육 또는 훈련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항해와 배관리임무를 원만히 담당수행할수 있는 선원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선원양성의 질관리체계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해당 전문교육기관은 항해와 배의 기관, 전기설비, 무선통신 같은 전문부문의 교육과 선원훈  
련을 위한 과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고 선진적인 교수방법을 받아들여 쓸모있  
는 전문가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의 운영)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훈련을 위하여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 같은 것을 운  
영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의 임무)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훈련시설과 설비를 충분히 갖  
추고 훈련의 목적과 대상의 특성에 맞게 훈련내용과 방법을 바로 정하며 훈련생에게 항해와  
배관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지식과 동작을 실속있게 배워주어야 한다.

### 제14조 (선원훈련구분과 대상)

선원훈련은 기초안전훈련과 전문훈련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선원에 대한 기초안전훈련과 전문훈련기준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 제15조 (실습)

선원양성기관은 실습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실습을 통한 교육 또는 훈련을 정상적으로 조직하  
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양성에 필요한 실습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 제16조 (배에서의 선원훈련)

배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서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정

형을 훈련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 (선원훈련교원 및 지도선원의 자격)**

배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선원양성담당일꾼과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의 교원, 배의 훈련지도선원은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자격을 갖추지 않고는 선원훈련을 줄수 없다.

**제18조 (선원훈련평가신청)**

훈련을 받은 선원은 주기적으로 해사감독기관의 훈련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훈련평가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제19조 (선원훈련평가와 증서발급)**

해사감독기관은 선원훈련평가신청에 따라 해당 선원에 대한 훈련평가를 진행하고 합격된 선원에게 선원훈련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제항해증에 있는 배의 선원이 선원훈련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훈련평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에게 유효기간이 제한된 선원훈련증서를 발급할수 있다.

선원훈련증서의 유효기간은 대상에 따라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 제3장 선원의 등록

**제20조 (선원등록기관)**

선원등록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등록기준과 절차를 바로 정하고 선원등록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21조 (선원등록신청)**

선원등록의 신청은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선원을 등록하려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선원등록신청문건에는 해당 선원의 신분관계, 경력,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정형, 기술자격 소유정형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2조 (선원등록심의기간)**

해사감독기관은 선원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심의하고 선원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원등록심의결과를 선원등록을 신청한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3조 (선원등록심의자료요구)**

해사감독기관은 선원등록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선원등록을 신청한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

체에 요구할수 있다.

선원등록을 신청한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 (선원등록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제기 및 처리)**

선원등록심의결과에 의견이 있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등록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안으로 해사감독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5조 (선원등록)**

해사감독기관은 등록이 승인된 선원을 선원등록부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선원은 5년에 한번씩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 (선원증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등록된 선원에게 선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에 따라 국제항해하는 배의 선원과 국내항해하는 배의 선원을 구분하여 해당한 선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국제항해하는 배의 선원에게 발급한 선원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권을 대신한다.

선원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27조 (다른 나라 선원에게 선원신분확인증서의 발급)**

우리 나라 배에 승선하려는 다른 나라 선원은 해사감독기관으로부터 선원신분확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나라에서 발급한 선원증과 선원기술자격증, 선원훈련증서가 있어야 한다.

**제28조 (선원등록의 변경, 삭제)**

다음의 경우에는 선원등록을 변경하거나 삭제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또는 소속이 달라졌을 경우
2. 선원의 직무가 달라졌을 경우
3. 선원이 해임되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제29조 (선원증의 재발급)**

다음의 경우에는 선원증을 재발급받는다.

1. 선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2. 선원증이 오손되었을 경우
3. 선원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4. 선원증의 변경등록란을 다 썼을 경우

### 제30조 (선원증의 반환)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이 사망하였거나 해임되었을 경우 30일안으로 선원증을 해사감독기관에 바쳐야 한다.

선원증을 재발급받을 경우에는 낡은 선원증을 바쳐야 한다.

## 제4장 선원의 기술자격심사

### 제31조 (선원기술자격심사기관, 선원기술자격구분)

선원기술자격심사는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기준과 선원기술자격시험응시기준을 바로 정하고 선원기술자격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선원기술자격은 국내항해배와 국제항해배의 선원기술자격으로 구분한다.

### 제32조 (선원기술자격급수)

선원기술자격급수는 다음과 같다.

1. 항해부문; 항해 1급-6급
2. 기관부문; 기관 1급-6급
3. 무선통신부문; 무선통신사, 무선수, 세계해상조난안전체계 일반운영사
4. 전기부문; 전기사

### 제33조 (배길안내사자격급수)

배길안내사자격급수는 배길안내사 1급, 배길안내사 2급, 보조배길안내사로 나눈다.

### 제34조 (해사감독기관의 선원기술자격심사조직임무)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심사계획을 바로세우고 심사기간과 기술자격시험방향을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지하며 선원기술자격심사성원을 능력있는 일군으로 선정하고 선원기술자격시험문제를 준비하여야 한다.

### 제35조 (선원기술자격심사의 신청)

선원기술자격심사신청은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선원의 기술자격심사를 받으려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기술자격심사를 하기 15일전으로 해당 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 제36조 (선원기술자격심사의 구분)

선원기술자격심사는 제자리급수심사, 올라가는 급수심사로 구분하여 한다.

### 제37조 (선원기술자격심사)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심사를 진행하고 해당 자격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

여야 한다.

선원기술자격심사결과는 15일안으로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 (선원기술자격심사위원회의 조직)**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심사를 위하여 비상설로 선원기술자격심사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선원기술자격심사위원회에는 해당 전문일군들을 망라시켜야 한다.

**제39조 (선원기술자격증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심사에서 합격된 선원에게 해당하는 선원기술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선원기술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40조 (선원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선원기술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에는 선원기술자격증을 재발급받는다. 이 경우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기술자격증 재발급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제41조 (다른 나라 선원의 기술자격증 또는 보증서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선원양성, 자격증명 및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나라 선원에게 우리 나라의 선원기술자격증, 선원훈련증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나라에서 발급한 선원기술자격증을 인정하는 보증서를 발급할수 있다.

**제42조 (림시선원기술자격증의 발급)**

국제항해하는 배에서 항차중에 사망, 급병 같은 리유로 지휘선원이 결원되었을 경우 그 직무에 한급 낮은 직무를 가진 지휘선원을 림시배치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림시배치하려는 지휘선원의 기술자격이 한급 낮을 경우 그에게 유효기간이 6개월이하의 해당하는 림시선원기술자격증을 발급하여줄수 있다.

선장, 기관장, 무선통신사의 직무에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하의 림시선원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제43조 (지휘선원의 자격)**

지휘선원은 배의 톤수와 기관출력에 따르는 항해, 기관, 무선통신, 전기부문의 해당 선원기술자격을 가져야 한다.

## 제5장 선원의 임무

### 제44조 (선원의 일반임무)

선원은 자기가 맡은 임무에 정통하며 그것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45조 (선장)

선장은 배의 총책임자이다.

선장은 선원과 고객, 배관리, 항해에 대한 지휘권과 통제권을 행사하며 배에 있는 인원 및 재산보호, 배의 안전항해보장, 해상환경보호책임을 진다.

### 제46조 (부선장)

부선장은 갑판부문의 책임자이며 선장의 1대리인이다.

부선장은 항해 및 정박당직, 배관리, 화물수송과 관련한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장이 자기 임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대리임무를 수행한다.

### 제47조 (항해사)

항해사는 배의 안전항해와 해상환경보호, 담당설비에 대한 관리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한다.

부선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 대리임무를 수행한다.

### 제48조 (기관장)

기관장은 기관부문의 책임자이다.

기관장은 기관부문의 설비와 갑판부문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운영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지휘한다.

### 제49조 (부기관장)

부기관장은 기관부문의 부책임자이며 기관장의 1대리인이다.

부기관장은 기관부문의 항해 및 정박당직과 기관정비사업을 조직집행하며 담당할 설비에 대한 관리운영과 정비를 책임진다.

### 제50조 (기관사)

기관사는 기관장의 지시밑에 담당할 설비의 관리운영과 정비를 하며 기관의 정상운영을 보장한다.

### 제51조 (전기사)

전기사는 배의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운영을 책임진다.

전기사는 기관장의 지시를 받는다.

### 제52조 (무선통신사)

무선통신사는 배업무통신과 조난통신을 원만히 보장할 책임을 진다.



무선통신사는 선장의 지시를 받는다.

**제53조 (갑판장)**

갑판장은 갑판원의 책임자이다.

갑판장은 갑판원의 작업을 조직하며 선체와 갑판구조물을 비롯한 갑판설비와 기공구, 비품을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54조 (갑판원)**

갑판원은 갑판장의 지시밑에 화물과 갑판설비를 관리하며 갑판에서 제기되는 작업을 수행한다.

**제55조 (조기장)**

조기장은 조기원의 책임자이다.

조기장은 기관장의 지시밑에 조기원의 작업을 조직하며 기관부문의 설비에 대한 정비와 자재 관리를 책임진다.

**제56조 (조기원)**

조기원은 조기장의 지시밑에 기관부문의 설비운영과 정비를 한다.

**제57조 (기타 선원)**

의사는 배의 위생관리와 선원의 건강을 책임진다.

후방부문의 선원은 후방사업과 생활상 편의보장사업을 책임진다.

**제58조 (당직근무)**

선원은 정해진 당직기준에 따라 당직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직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 제6장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9조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제60조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지켜야 할 요구)**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선원양성기관의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해당하는 증서를 갖춘 선원을 승선시키며 선원기술자격소유정도와 능력에 맞게 적합한 임무를 주어야 한다.
2. 정해진 최소안전정원기준과 건강기준에 맞게 선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3. 로동안전, 로동보호대책을 엄격히 세우며 선원에게 휴식과 문화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4. 선원의 기술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선원의 경력,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정형, 신체검사정형, 자격증소유정형 같은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1조 (선원생활조건에 맞는 배설계 및 건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설계하거나 건조, 개조하는 경우 침실, 식당을 비롯한 생활 시설을 선원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 (선원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선원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선원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3조 (다른 나라 배 선원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 수역에 들어온 다른 나라 배의 선원에 대하여 선원양성, 자격증명,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는 증서 또는 자격증소지정형과 선원양성, 자격증명,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정형을 검열할수 있다.  
검열결과 결함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퇴치할 때까지 항해를 중지시킬수 있다.

**제64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1. 선원등록신청을 거짓으로 하여 선원등록사업에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
2. 선원등록, 선원훈련평가, 선원기술자격심사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선원증, 선원기술자격증, 선원훈련증을 비법적으로 발급하였을 경우
3. 선원증이 없는 인원을 배에 승선시켰을 경우
4. 선원기술자격급수에 맞지 않게 임무분담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5. 당직근무를 무책임하게 수행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6. 최소안전정원기준을 어겨 배의 안전항해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선원증, 선원기술자격증, 선원훈련증을 위조하였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증서를 가지고 항해하였을 경우
8. 배설계와 건조, 개조를 무책임하게 하여 선원생활에 불편을 조성하였을 경우

**제65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64조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로법

주체93(2004)년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4호로 채택  
주체109(2020)년 4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4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수로법의 기본

### 제1조 (수로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로법은 수로의 조사, 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 리용, 시설물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항해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민경제와 군사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수로부문의 투자원칙)

수로사업은 바다와 하천, 호수의 구획과 지형지물의 위치, 특성 같은것을 조사확정하고 통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수로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현대화, 정보화하도록 한다.

### 제3조 (수로의 조사원칙)

국가는 수로의 조사사업을 전망성있게 과학적으로 하도록 한다.

### 제4조 (수로통보원칙)

국가는 수로자료의 출판질서를 바로세우고 수로공보, 무선항해경보 같은 통보의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5조 (수로자료의 리용원칙)

국가는 출판된 수로자료를 안전한 항해와 인민경제발전에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 제6조 (수로시설물의 관리원칙)

국가는 수로시설물의 관리체계를 세우고 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 제7조 (수로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수로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8조 (해당 법규 및 국제협약의 적용)

수로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와 우리 나라가 승인한 수로분야의 국제협약,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협약에 따르는 규칙, 수정문 포함)에 따른다.

## 제2장 수로의 조사

### 제9조 (수로조사의 기본요구)

수로의 조사는 수로사업의 선행공정이다.

국가수로지도기관은 수로조사를 계획적으로 하며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같은것을 고려하여 과학적인 배길선정체계를 세워야 한다.

### 제10조 (수로의 조사방법)

수로의 조사는 수로측량과 해양관측의 방법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공중관측, 기구관측 같은 방법으로도 수로조사를 할수 있다.

### 제11조 (수로측량기관, 기업소의 의무)

수로측량은 수로측량기관, 기업소가 한다.

수로측량기관, 기업소는 바다와 하천, 호수의 수로향해학적요소들과 자연지리적상태 같은것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 제12조 (해양관측기관, 기업소의 임무)

해양관측은 해양관측기관, 기업소가 한다.

해양관측기관, 기업소는 바다물의 물리화학적성질과 구조, 바다흐름, 밀של물, 물결의 특성 같은것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 제13조 (해도편찬의 수로조사기관, 기업소)

해도를 편찬하기 위한 수로조사는 국가수로지도기관이 한다. 그러나 일반해도편찬을 위한 수로조사는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할수 있다.

### 제14조 (수로조사집행계획서, 기술지도서의 작성)

수로를 조사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수로조사대상에 따르는 집행계획서, 기술지도서를 만들어야 한다.

집행계획서, 기술지도서에는 수로조사의 목적, 구역, 기간, 기술적내용과 방법, 정확도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 제15조 (수로조사자료의 질보장)

수로를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는 수로조사를 정해진 기간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수로조사자료는 검사를 받은 다음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수로자료는 리용할수 없다.

### 제16조 (기술기재의 준비)

수로를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는 수로조사에 필요한 배를 비롯한 기술기재를 갖추어야 한다.

기술기재에는 정해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기술기재의 검정)**

수로를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는 수로조사에 쓰이는 기술기재를 정상적으로 검정하여야 한다.  
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기술기재는 수로조사에 리용할수 없다.

**제18조 (수로조사일군의 자격)**

수로조사일군은 해당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지 못한 일군은 수로조사를 할수 없다.

**제19조 (표준조작법의 준수)**

수로조사일군은 수로조사에서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표준조작법을 만드는 사업은 국가수로지도기관이 한다.

**제20조 (수로변화상태의 조사)**

수로조사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은 수로의 변화상태를 장악하기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며 조사한 수로자료는 국가수로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은 수로조사자료에 기초하여 배길선정체계를 갱신하며 그 정형을 수로공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수로조사조건의 보장)**

수로를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수로조사에 필요한 조건보장을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로를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 (수로조사신청서의 제출과 승인)**

자체로 수로조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수로지도기관에 수로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로조사신청서에는 수로조사의 목적, 대상, 기간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 제3장 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

**제23조 (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의 기본요구)**

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를 바로하는것은 안전한 항해와 바다자원의 개발리용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수로자료에는 해도와 수로지, 등대표, 조석표 같은 항해참고자료와 수로공보, 무선향해경보 같은것이 속한다.

**제24조 (해도와 항해참고자료의 편집발행계획)**

해도와 항해참고자료의 편집발행기관은 해도와 항해참고자료에 대한 수요와 현실적 조건을

타산하여 편집발행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25조 (해도의 출판)**

해도의 출판은 국가수리지도기관이 한다.

국가수리지도기관은 국제수리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도의 편집지도서를 작성하며 그에 기초하여 편집원도와 출판원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26조 (해도, 항해참고자료의 발행)**

해도와 항해참고자료를 인쇄하거나 발행하려 할 경우에는 인쇄승인과 발행허가를 받는다.

인쇄승인과 발행허가는 국가수리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27조 (해도, 항해참고자료의 배포)**

인쇄한 해도, 항해참고자료는 검사와 배포승인을 받는다.

검사와 배포승인은 국가수리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28조 (수로공보와 무선항해경보)**

국가수리지도기관은 수로공보, 무선항해경보체계를 바로세우고 수로공보 또는 무선항해경보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수로공보와 무선항해경보의 정확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기상자료 같은 항해관련 자료를 국가수리지도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항해자료의 배포)**

배길표식, 항해위험물의 변경 같은 항해자료는 수로공보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내보낸다.

수로공보의 배포단위 또는 무선공보단위를 정하는 사업은 국가수리지도기관이 한다.

**제30조 (긴요한 항해자료의 경보)**

긴요한 항해자료는 무선항해경보로 내보낸다.

무선항해경보는 긴급항해경보와 일반항해경보로 나누어 한다. 이 경우 긴급항해경보와 관련한 무선항해경보는 전파관리와 관련한 해당 법규와 국제규칙의 요구대로 즉시 내보낸다.

**제31조 (긴급항해경보)**

긴급항해경보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해저화산, 지진 같은 위급한 자연현상이 예견될 경우
2. 비행물체가 떨어질것이 예견될 경우
3. 충돌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4. 떠다니는 기뢰 같은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5. 항해하는 배에 급히 중대한 위험이 닥쳐올수 있을 경우
6. 그밖에 긴급히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경우

### 제32조 (일반항해경보)

일반항해경보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압초 같은 항해위험물을 새로 발견하였을 경우
2. 가리앉은 배 또는 그 표식을 발견하였을 경우
3. 알수 없는 물체가 떠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4. 조난당한 배를 발견하였을 경우
5. 좁은 수역안에서 규모가 큰 배 또는 여러척의 배가 항해하고있을 경우
6. 배길표식물의 설치, 철수, 등질의 변화가 있을 경우
7. 배길의 변경과 봉쇄가 예견될 경우
8. 해일, 태풍 같은 현상이 예견될 경우
9. 그밖에 항해에 영향을 줄수 있는 현상이 있을 경우

### 제33조 (기상자료 및 항해자료의 통보)

국가수로지도기관은 기상수문기관으로부터 받은 기상자료에 기초하여 기상예보는 매일 4회 이상, 기상경보는 접수받은 즉시 배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하여야 한다.

배의 선장은 항해수역에서 새로 발견하였거나 달라진 항해자료를 정리하여 국가수로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장 수로자료의 리용

### 제34조 (수로자료리용의 기본요구)

수로자료의 리용은 출판된 해도와 항해참고자료, 수로자료통보를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로자료의 특성에 맞게 보관실을 꾸리고 수로자료리용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35조 (수로자료리용신청서의 제출)

수로자료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로자료리용신청서를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로자료리용신청서를 제때에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 제36조 (수로자료의 열람, 대출)

수로자료의 리용을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열람, 대출할수 있다.

열람은 열람실에서만 하며 대출하는 수로자료는 대장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37조 (수로자료의 리용)**

수로자료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로자료를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수로자료를 다른 목적에 리용할수 없다.

**제38조 (수로자료의 대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가 리용하는 수로자료를 빌려쓸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하고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수로자료의 반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대출한 수로자료를 정해진 기간에 바쳐야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열람, 대출한 수도자료를 정확히 회수하여야 한다.

**제40조 (수로자료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에 배포된 수로자료는 기요문서로 등록하고 리용한다. 그러나 일반항해참고자료 같은것은 기요문서로 등록하지 않고 리용할수 있다.

**제41조 (수로자료의 기밀엄수)**

수로자료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밀을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 공민은 리용과정에 알게 된 수로자료의 기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42조 (수로자료를 다른 나라로 내가는 질서)**

수로자료를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장 수로시설물의 관리

**제43조 (수로시설물관리의 기본요구)**

수로시설물의 관리를 잘하는것은 수로시설물의 파손을 막고 그 수명을 늘이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수로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로시설물을 그 규격과 기술적요구, 안전조건에 맞게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 (수로시설물의 종류)**

수로시설물에는 국가수로측량기점과 부동표식물, 배길표식물, 수위 또는 해양관측설비 같은 것이 속한다.

수로기관, 기업소는 수로시설물의 특성에 맞게 관리분담을 바로하여야 한다.



**제45조 (수로시설물의 관리기관)**

수로시설물의 관리는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분담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수로시설물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물리화학적특성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 (수로시설물의 관리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로시설물을 애호관리하여야 한다. 파손, 류실된 수로시설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제때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47조 (수로시설물의 변경)**

수로시설물의 규격과 위치는 마음대로 변경시킬수 없다. 수로시설물의 규격과 위치를 변경시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 (수로시설물보존상태의 보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수로시설물의 보존상태를 료해장악하여 그 정형을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 (수로시설물의 리용)**

국가수로측량기점 같은 수로시설물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국가수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6장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0조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수로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1조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는 기술적지도를 강화하며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52조 (수로사업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수로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

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53조** (수로부문의 과학연구와 기술자, 전문가양성)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수로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수로사업에서 나서는 과학 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수로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54조** (수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수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55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수로의 조사, 자료출판과 통보, 리용, 시설물의 관리를 잘못하여 로력과 자재를 낭비하였거나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6조** (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승인없이 수로자료를 구입, 복사, 제작,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5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수로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동차운수법

주체86(1997)년 2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3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자동차운수법의 기본

### 제1조 (자동차운수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동차운수법은 자동차운행과 수송,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자동차운수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자동차운수는 교통운수의 기본부문의 하나이며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는 중요고리이다. 국가는 자동차운수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고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 들여 자동차운수를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 제3조 (자동차운행의 정규화원칙)

자동차운행에서 규률은 생명이다. 국가는 자동차운행에 대한 사령지휘체계를 세우며 자동차운행을 정규화하도록 한다.

### 제4조 (자동차운행의 짐수송원칙)

자동차짐수송을 강화하는 것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짐수송, 짐함수송, 련대수송을 강화하고 여러가지 앞선 수송방법을 받아들여 자동차에 의한 짐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 제5조 (자동차의 려객수송원칙)

자동차려객수송은 인민들의 교통상편리를 보장하기 위한 봉사사업이다. 국가는 자동차려객수송조직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려객수송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6조 (자동차의 기술정비원칙)

자동차관리를 잘하는 것은 자동차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자동차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자동차의 기술정비를 정상화하도록 한다.

### 제7조 (자동차의 관리원칙)

자동차는 사회주의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운전자들과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자동차를 아끼고

사랑하며 잘 관리하도록 한다.

**제8조** (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자동차운수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자동차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기술인재와 운전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9조** (자동차운수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자동차운수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자동차운행

**제10조** (자동차의 무사고운행)

자동차운행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우는 것은 자동차수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운행조직과 지휘를 바로하고 운전사의 책임성을 높여 자동차의 무사고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동차다닐표)

자동차운수기업소는 자동차운행조직을 다닐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닐표는 자동차운수기업소에서 만들어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불필요한 운행의 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를 용도에 맞게 리용하며 자동차의 불필요한 운행을 조직하지 말아야 한다.

**제13조** (운전수와 운행문건)

자동차운전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격을 가진 운전사만이 한다. 자동차운행지령을 받은 운전사는 운전면허증, 기술검사증, 운행증과 필요한 문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자동차의 운행속도)

자동차운전사는 제정된 도로를 따라 규정된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자동차를 세우지 못하게 된 장소에서 짐을 싣고 부리거나 사람을 태우고 내리올 수 없다.

**제15조** (운행중 사고방지)

자동차운전사는 운행중 사고위험이 나타나면 자동차운행을 중지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며 먼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중점검을 하여야 한다. 도중점검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16조** (표준운전조작법, 교통안전질서의 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운전사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표준운전조작법과 교통안전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운행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지방정권기관은 도로를 계획적으로 포장하고 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건설을 전망성있게 하며 도로표식물을 설치하여 자동차운행의 신속성,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3장 자동차집수송

**제18조** (자동차집수송의 기본요구)

자동차집수송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짐을 실어나르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짐을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동차집수송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은 수송수요와 수송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며 현실성있는 자동차집수송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20조** (자동차집수송계약)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와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수송계획에 근거하여 수송계약을 제때에 맺고 그것을 리행하여야 한다.  
짐수송계약은 연간, 분기별, 월별로 맺는다.

**제21조** (불합리한 수송의 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어날라야 할 짐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수송조직을 개선하여 역수송, 반복수송, 한쪽거리수송 같은 불합리한 수송을 없애야 한다.

**제22조** (먼거리수송)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에 따라 먼거리수송을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전문수송, 봉사수송, 기동수송)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짐의 종류와 특성, 수송조건에 따라 전문수송, 봉사수송, 기동수송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24조** (집중수송)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일정한 지역에 있는 많은 량의 짐을 짧은 기간에 실어날라야 할 경우 집중수송을 하여야 한다.

#### 제25조 (련대수송)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련대짐수송계획에 따르는 수송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련대짐수송은 수송의 경제적효과성을 타산하여 조직하여야 한다.

#### 제26조 (짐함수송)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함을 널리 리용하여 짐수송의 문화성을 보장하며 수송도중 짐의 허실, 파손을 막아야 한다.

짐함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는 여러 가지 짐함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 제27조 (련결차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련결차의 리용률을 높여 더 많은 짐을 수송하여야 한다.

련결차는 자동차의 기술상태와 운행조건에 맞게 달아야 한다.

#### 제28조 (빈차운행의 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빈차운행을 없애며 자동차의 적재정량대로 짐을 싣고 다녀야 한다.

부득이 빈차운행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자동차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9조 (짐포장과 싣고 부리는 작업의 기계화)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은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을 제정된 규격대로 포장하며 싣고 부리는 작업을 기계화하여 자동차의 머무름시간을 줄여야 한다.

#### 제30조 (짐의 호송)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의 자동차로 짐을 실어나르는 경우 호송원을 붙여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와 합의하고 호송원을 붙이지 않을수 있다.

#### 제31조 (운송점)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중요주민지구에 운송점을 내오고 주민들의 짐을 수송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송점을 리용할수 없다.

## 제4장 자동차려객수송

#### 제32조 (자동차려객수송의 기본요구)

자동차려객수송을 강화하는것은 인민들의 출퇴근과 려행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려객수송에서 봉사성과 문화성을 높여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33조 (려객수송의 분류)

자동차려객수송은 려객수송형태에 따라 도시려객수송, 고속도로려객수송, 농촌려객수송 같

은것으로 나누어 한다.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제정된 운행로선에서 버스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 (운행로선과 정류소)**

버스운행로선과 정류소를 내오거나 없애는 사업은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버스운행로선과 정류소를 인민들의 교통에 편리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35조 (택시, 단체려객수송)**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택시를 보장하며 답사, 관광, 견학 같은 것이 제기되는 경우 단체려객수송을 조직할수 있다.

단체려객수송을 보장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에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 (출퇴근보장)**

자동차운수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가지고있는 버스를 근로자들의 출퇴근보장에 동원시킬수 있다.

출퇴근보장에 동원된 버스는 정해진 로선에서만 운행할수 있다.

**제37조 (빈버스운행의 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빈버스운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 빈버스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손님들을 태워야 한다.

**제38조 (농촌버스의 운영)**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농촌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농촌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39조 (버스정류소, 손님기다림칸)**

지방정권기관과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버스정류소, 손님기다림칸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버스정류소, 손님기다림칸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0조 (버스리용질서의 준수)**

공민은 버스리용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지정된 차표를 내지 않거나 손님들의 려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짐을 가지고 버스에 오를수 없다.

## 제5장 자동차관리

### 제41조 (자동차관리의 기본요구)

자동차관리는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관리를 잘하여 자동차의 실동률을 높여야 한다.

### 제42조 (자동차의 등록, 기술검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를 등록하고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의 등록과 기술검사는 자동차감독기관이 한다.

### 제43조 (차고의 건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를 보관관리할수 있는 차고를 건설하여야 한다.  
차고에는 자동차보관관리에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 제44조 (자동차의 기술상태검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의 기술상태에 대한 검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기술상태가 불량한 자동차는 운행시킬수 없다.

### 제45조 (자검자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운전사를 고착시키고 자검자수를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차에는 자검자수에 필요한 공구, 예비부속품 같은것이 마련되어있어야 한다.

### 제46조 (자동차의 수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점검하며 자동차수리정비소 같은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주기에 따라 자동차를 수리하여야 한다.  
자동차수리는 대수리, 중수리, 소수리로 나누어 한다.

### 제47조 (수리의 질과 기일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수리에서 분해, 가공, 조립, 시험, 검사 같은 공정과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정확히 지켜 수리의 질과 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48조 (자동차의 구조개조 및 이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없이 자동차의 구조를 고치거나 그것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 경우에는 부속품, 부분품을 떼내거나 바꿀수 없다.

### 제49조 (자동차의 폐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의 내용년한이 지났거나 쓸수 없게 되어 폐기하려 할 경우 자동차감독기관과 협의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장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50조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도)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동차운수부문의 계획화사업, 수송조직사업, 자동차관리사업을 바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51조 (연유의 절약)

자동차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소비기준을 낮추며 대용연료를 적극 도입하고 연유를 절약하기 위한 균중적운동을 벌려야 한다.

### 제52조 (자동차운수부문의 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동차부속품, 다이아생산기지를 꾸리며 자동차운수부문에 필요한 설비, 자재, 연유, 부속품, 다이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 제53조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동차운행과 수송, 관리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54조 (억류, 회수)

승인없이 자동차를 바꾸었거나 빌려주었거나 또는 교통안전질서를 지키지 않았거나 자동차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억류하거나 회수할수 있다.

### 제55조 (손해보상)

수송계약규률을 어겼거나 자동차를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56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자동차운수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철도법

주체96(2007)년 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26호로 채택

## 제1장 지하철도법의 기본

### 제1조 (지하철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철도법은 지하철도의 건설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교통상편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지하철도운수의 발전원칙)

지하철도는 도시의 려객수송을 보장하기 위한 지하교통운수수단이다.

국가는 지하철도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지하철도운수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3조 (지하철도의 건설원칙)

지하철도건설을 바로하는 것은 도시의 교통망을 완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지하철도를 현대적으로 전망성있게 건설하도록 한다.

### 제4조 (지하철도의 관리원칙)

지하철도관리는 지하철도의 설비와 구조물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지하철도를 과학기술적으로 문화성있게 관리하도록 한다.

### 제5조 (지하철도의 운영원칙)

지하철도운영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우는 것은 열차의 무사고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지하철도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그 운영을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한다.

### 제6조 (과학연구사업, 기술자, 전문가양성)

국가는 지하철도의 건설과 관리운영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한다.

### 제7조 (지하철도부문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지하철도부문 사업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지하철도의 건설

### 제8조 (지하철도건설의 기본요구)

지하철도건설은 도시의 여객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지하철도를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제9조 (지하철도건설을 위한 조사)

지하철도건설을 위한 조사는 지하철도설계기관이 한다.  
지하철도설계기관은 도시의 상태, 도시발전전망계획과 그에 따르는 여객흐름량, 건설지대의 지질학적, 수문학적조건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제10조 (지하철도건설계획의 작성)

지하철도건설계획의 작성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도시건설총계획과 지하철도건설설계에 기초하여 지하철도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 (지하철도건설설계의 작성)

지하철도건설설계의 작성은 지하철도설계기관이 한다.  
지하철도설계기관은 지하철도건설을 위한 조사자료와 여객수송능력, 환경보호의 요구 같은 것을 고려하여 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 (지하철도건설의 담당자)

지하철도건설은 지하철도전문건설기관이 한다.  
지하역의 벽화와 조각장식 같은 것은 해당 전문기관, 기업소가 한다.

### 제13조 (설계의 요구, 기술규정, 표준공법의 준수)

지하철도건설기관은 건설에서 공정순위를 바로 정하고 설계의 요구와 기술규정, 표준공법을 엄격히 지키며 그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질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공정의 공사를 할수 없다.

### 제14조 (로동재해의 근절)

지하철도건설기관은 로동안전시설을 정한대로 갖추며 로동재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건설과정에 사고위험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해당한 조치를 취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 (지하철도건설작업의 기계화)

지하철도건설기관은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갖추고 건설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지하철도건설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지하철도구조물의 건설)**

지하철도는 차굴, 역사, 공기갈이굴, 계단승강기굴, 위생기술설비실, 변전소 같은 구조물을 건설한다.

필요에 따라 차고, 검차소 같은것도 지하에 건설할수 있다.

**제17조 (지하철도역건설)**

지하철도역은 도시령역에서 려객들이 많이 집중되는 지점에 지상교통운수수단과의 맞물림을 고려하여 건설한다.

계단승강기굴은 두개 또는 한개 건설할수 있다.

**제18조 (지하철도설비의 설치)**

지하철도에는 운영을 위한 계단승강기, 신호, 전력, 통신, 조명, 위생기술설비 같은 것을 설치한다.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졌거나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설비는 설치할수 없다.

**제19조 (준공검사)**

지하철도건설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지하철도는 지하철도운영기관에 넘긴다. 이 경우 지하철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문건 같은 것을 함께 넘겨준다.

## 제3장 지하철도의 관리

**제20조 (지하철도관리의 기본요구)**

지하철도관리를 바로하는 것은 지하철도의 리용률을 높이고 문화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지하철도의 설비와 구조물관리를 정확히 분담하고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정기검사)**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지하철도설비의 기술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지하철도설비는 운영할수 없다.

새로 받았거나 수리한 지하철도설비는 시운전에서 합격되어야 운영할수 있다.

**제22조 (기술정비)**

지하철도설비의 기술정비는 주기에 따라 한다.

기술정비주기를 정하는 사업은 지하철도운영기관이 한다.

**제23조 (집중정비)**

지하철도설비의 집중정비는 월에 1차 한다.  
설비집중정비날에는 지하철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제24조 (수리)**

지하철도운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지하철도설비를 계획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설비의 수리는 대수리, 중수리, 소수리로 나누어 한다.

**제25조 (수리의 질과 기일보장)**

지하철도운영기관과 지하철도설비의 수리를 의뢰받은 기관, 기업소는 정해진 수리공정을 정확히 지키며 수리의 질과 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 (구조물의 보수)**

지하철도운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지하철도구조물의 보수를 바로하여 지하철도의 문 화성과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지하철도구조물의 보수는 대보수, 소보수로 나눈다.  
대보수기간에는 해당 지하철도역을 운영하지 않는다.

**제27조 (렬차와 지하철도역의 관리)**

지하철도운영기관은 렬차와 지하철도역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깨끗이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제28조 (공기갈이굴보호구역)**

국가는 지하철도의 공기갈이굴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기갈이굴보호구역을 정한다.  
공기갈이굴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9조 (공기갈이굴보호구역에서의 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승인없이 공기갈이굴보호구역에 들어가거나 보호구역에서 공기갈이와 굴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 (지하철도근무성원의 출입보장)**

지하철도근무성원은 공기갈이굴을 보수하거나 지하철도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기갈이굴의 보수 또는 설비의 정비를 위한 지하철도근무성원의 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1조 (균중적인 지하철도의 보호)**

지하철도운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지하철도를 보호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민은 지하철도의 설비와 구조물에 이상이 생겼거나 지하철도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4장 지하철도의 운영

### 제32조 (지하철도운영의 기본요구)

지하철도운영에서 규률은 생명이다.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유일적인 사령지휘체계를 세우고 열차의 무사고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33조 (열차운행표)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열차운행표를 정확히 만들고 열차를 운행표대로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열차운행표는 마음대로 고치거나 위반할수 없다.

### 제34조 (열차의 운전)

열차의 운전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기관사만이 한다.

기관사는 열차운전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가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기관조사가 없이는 열차를 운전할수 없다.

### 제35조 (열차운행시격의 보장)

열차사령과 운전지휘원, 기관사는 정한 열차운행시격을 보장하여야 한다.

운전지휘원은 시격계 또는 시격지시기가 고장난 경우 기관사에게 해당 시격을 알려주며 제때에 수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6조 (계단승강기의 운영)

지하철도운영기관은 계단승강기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려객류동량이 많은 시간에는 계단승강기를 모두 돌려야 한다.

려객류동량이 특별히 많은 시간에는 따로 정한 질서에 따라야 한다.

### 제37조 (공기갈이, 사고방지조치)

지하철도운영기관은 공기갈이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지하철도안에 맑고 깨끗한 공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역과 정한 곳에는 소방설비를 갖추며 사고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8조 (지하철도의 운영시간)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정한 운영시간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려객류동량이 특별히 많은 경우에는 정한 운영시간을 더 늘일수 있다.

지하철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39조 (지하철도운영의 공시)**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지하철도운영시간이 변경되었거나 집중정비 또는 대보수로 지하철도를 운영하지 못할 경우 제때에 지하철도지상역들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0조 (봉사성의 제고)**

지하철도운영기관은 고객들에 대한 봉사성을 높이며 그들이 지하철도리용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 또는 그밖의 사정으로 지하철도운영을 일시 중지하는 경우 고객들에게 예견 되는 운영시간 같은 것을 즉시 알려주며 제때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 (지하철도근무성원의 요구준수)**

지하철도를 리용하는 고객은 지하철도근무성원의 근무수행을 방해하지 말며 지하철도리용질서를 세우기 위한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 (지하철도리용의 편리보장)**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지하역에 방향표식판, 종합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하여 고객들의 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운영시간에는 지하역의 위생시설을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43조 (차표판매)**

지하철도차표는 지하철도의 지상역에서 판다.

지하철도차표판매시간은 지하철도의 운영시간과 같게 정한다.

**제44조 (차표에 의한 지하철도의 리용)**

공민은 지하철도차표를 내고 지하철도를 리용하여야 한다.

돈 또는 버스표 같은 것을 내고 지하철도를 리용할수 없다.

**제45조 (지하철도에서의 금지사항)**

공민은 지하철도에서 설비와 건축물에 손상을 주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침을 뱉는 것 같은 행위를 하거나 지하철도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짐을 가지고 지하철도를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46조 (지하철도역에서의 상업봉사활동)**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지하철도역에서 고객들의 편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상업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장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47조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교통운수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48조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지하철도지도기관이 한다.

지하철도지도기관은 지하철도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 제49조 (국가적지원과 우대)

국가는 지하철도부문을 적극 도와주는 사회적기풍을 세우며 이 부문 근무자들을 특별히 우대한다.

### 제50조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지하철도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 제51조 (전력의 공급)

전력공급기관은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필요한 질좋은 전력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력시설과 설비에 대한 정상적인 점검보수체계를 세우고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 전력손실을 극력 줄여야 한다.

### 제52조 (물의 공급)

도시경영기관은 지하철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운영기관은 급수관정비와 물탱크관리를 바로하여 물을 지하철도의 관리운영에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 제53조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하철도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지하철도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지하철도의 건설과 관리운영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54조 (지휘중지, 자격정지)

지하철도열차운행지휘나 운전지휘 또는 운전조작을 잘못하여 열차운행시격을 심히 어겼거나 설비를 제대로 가동시키지 못하여 려객들에게 불편을 준 경우에는 해당 지휘를 중지시키거나 자격을 정지시킨다.



**제55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지하철도의 설비와 건축물에 손상을 주었거나 파손시킨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6조 (벌금, 지하철도역밖으로 내보내기)**

지하철도리용질서를 어겼거나 지하철도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지하철도역밖으로 내보낸다.

**제5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철도법

|              |         |                              |
|--------------|---------|------------------------------|
| 주체76(1987)년  | 10월 22일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호로 채택       |
| 주체88(1999)년  | 3월 1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
| 주체89(2000)년  | 2월 3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37호로 수정보충 |
| 주체95(2006)년  | 1월 2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8호로 수정보충 |
| 주체97(2008)년  | 2월 26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01호로 수정보충 |
| 주체98(2009)년  | 5월 5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0(2011)년 | 4월 26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17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0(2011)년 | 8월 23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5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4(2015)년 | 7월 22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7호로 수정보충  |
| 주체110(2021)년 | 3월 2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50호로 수정보충  |

### 제1장 철도법의 기본

#### 제1조 (철도의 지위와 사명)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철도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발전과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향상에 이바지한다.

#### 제2조 (철도에 대한 소유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철도는 중요산업국유화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철도는 국가만이 소유한다.

#### 제3조 (철도운수의 발전원칙)

수송은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의 중요구성부분이다.

국가는 생산과 수송의 균형을 바로잡으며 생산에 앞서 수송능력을 미리 조성하는 원칙에서 철도운수를 발전시킨다.

#### 제4조 (철도건설원칙)

철도를 전망성있게 건설하는것은 나라의 전반적지역과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다같이 발전시키는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철도를 계획적으로 건설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 제5조 (철도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원칙)

철도를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하는것은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의 중심과업이다.

국가는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며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철도를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하도록 한다.

**제6조 (철도운영의 정규화원칙)**

철도에서 규률은 생명이다.

국가는 철도에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며 철도운영을 정규화하도록 한다.

**제7조 (늘어나는 수송수요의 보장원칙)**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생산의 정상화와 끊임없는 장성의 기본 담보이다.

국가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통합수송관리체계를 세워 수송조직과 지휘를 개선하며 집중수송, 집합수송, 련대 수송을 강화하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8조 (철도수송에서 문화성, 봉사성제고원칙)**

철도수송은 사회와 전체 인민을 위한 봉사사업이다.

국가는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철도를 알뜰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며 철도수송에서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9조 (철도보호원칙)**

철도를 전근중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이 수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철도를 힘있게 지원하며 철도를 보호관리하는데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10조 (철도운수분야의 과학연구와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철도운수수단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철도운영을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인재양성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도록 한다.

**제11조 (철도운수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철도운수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제12조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의 기본요구)**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철도운수건설의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철도운수기관은 철도운수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철도운수수단과 장비를 현대화, 고속화, 정보화, 중량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철도의 전기화)**

철도전기화는 우리 나라 철도운수발전의 기본방향이다.

철도운수기관은 철도전기화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교류견인전력공급체계를 전방

설있게 개발하여 철도전기화를 완성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기관은 철도에 전력을 단독선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세우고 질 좋은 전력을 보장 하여야 한다.

#### 제14조 (운수수단, 장비의 생산)

철도운수기관과 해당기관은 차량, 레우, 콘크리트침목, 철길고착품생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으며 기술적성능과 편리성, 문화성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현대적인 교류전기기관차, 내연기관차, 전동렬차, 중량화차, 객차, 중량레우, 콘크리트침목, 철길고착품과 전단면굴진기, 궤도부설렬차, 자갈청소차, 철길눈치는 기계, 철길사고복구기중기같은 운수수단과 장비를 계획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 제15조 (철길안전성 및 강도보장, 역구내선확장 및 상가건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복선차굴시공과 철다리보반치개의 경량화를 비롯한 철길건설기술을 발전시켜 철길구조물을 보강하고 중량레우, 콘크리트침목을 받아들여 철길의 안전성과 강도를 보장하며 철도역구내선을 늘리고 주요철도역들에 정해진 규모의 상가를 건설하여야 한다.

#### 제16조 (철길건설의 전문화, 새 철길건설, 철도망완비)

국가계획기관과 철도운수기관, 해당 기관은 전문철길건설기업소에 현대적인 건설장비를 갖추어주어 철길건설의 전문화를 실현하고 중량화, 현대화, 표준화된 새 철길을 전망적으로 건설하며 통과능력이 긴장한 구간에 복선과 우회선, 연결선을 놓아 나라의 철도망을 완비하여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철길은 운영할수 없다.

#### 제17조 (철도자동화와 철도운영의 정보화)

철도운수기관은 컴퓨터연동체계와 열차운행조종체계를 받아들여 철도역구내와 구간을 자동화하며 간선철길의 전용통신망을 정비하고 열차위치추적체계와 차량식별체계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수단을 널리 받아들여 철도운영을 정보화하여야 한다.

#### 제18조 (화물역과 전용선)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수송능력이 늘어나는데 따라 화물역과 전용선에 화물을 싣고부리거나 보관하는 여러가지 현대적인 설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차에 손상을 줄수 있는 설비와 시설은 화물역과 전용선에 설치할수 없다.

#### 제19조 (철도운수부문의 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의 중량화, 현대화와 운영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 설비를 다른 부문에 앞세워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사, 기관조사, 수리공, 철길원을 비롯한 철도종업원들을 철도부문사업과 인연이 없는 다

른 사업에 동원시킬수 없다.

## 제3장 열차운행

### 제20조 (열차의 무사고정시운행)

철도에서 열차운행규률을 강화하는것은 철도수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철도운수기관은 열차운행조직과 지휘에서 유일적인 사령지휘체계를 세우며 철도운행을 정규화하여 열차의 무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철도본선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유일사령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21조 (열차운행표)

철도운수기관은 열차운행표를 정확히 만들고 모든 열차를 열차운행표대로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열차운행표는 마음대로 고치거나 위반할수 없다.

### 제22조 (열차편성계획)

철도운수기관은 열차편성계획에 따라 열차를 편성하여야 한다.

열차편성계획을 작성하는 사업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한다.

### 제23조 (화차교류과제)

철도운수기관은 화차교류과제를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운용화차는 보유기준보다 더 가지고있을수 없다.

### 제24조 (철도차량의 운영)

철도차량은 철도운수기관만이 운영한다.

철도운수기관과 화차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차의 견인중량과 달림거리를 늘이고 정해진 화차회귀일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다른 나라의 차량을 리용하려 할 경우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으며 리용한 차량을 정해진 기간안에 돌려보내야 한다.

### 제25조 (열차지휘와 운전취급)

철도일군은 열차지휘와 운전취급에서 규정과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열차지휘와 운전취급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철도일군만이 할수 있다.

### 제26조 (차량의 장악등록과 예비조성 및 동원)

철도운수기관은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장악등록하며 시기적으로 긴급하게 제기되는 수송에 필요한 기관차와 화차, 객차의 예비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국가적인 긴급화물수송시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의 전용 및 순환차량을 동원시킬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운수기관이 요구하는 전용 및 순환차량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 (철도역)**

철도역은 수송을 직접 맡아 수행하는 기층단위이다.

철도운수기관은 철도역사업을 강화하여 열차운전취급과 려객 및 화물수송에서 철도역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장 철도화물수송

**제28조 (철도화물수송의 기본요구)**

철도화물수송은 철도운수기관의 기본업무이다.

철도운수기관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화물을 정해진 기간안에 정확히 수송하여야 한다.

**제29조 (철도화물수송계획과 계약)**

국가계획기관은 수송수요와 수송능력사이의 균형이 정확히 보장되도록 철도화물수송 계획을 세워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짐입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물수송계획에 근거하여 수송계약을 제때에 맺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제30조 (불합리한 수송의 금지)**

국가계획기관과 철도운수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역수송, 반복수송, 빈물동수송을 비롯한 불합리한 수송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집중수송)**

철도운수기관은 큰 공장, 기업소나 일정한 지역에 실어나를 많은 량의 화물은 집중수송하여야 한다.

자재공급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집중수송의 요구에 맞게 계약된 물자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 (집합수송)**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집합생산을 늘여 수송도중에 허실될수 있는 화물, 포장재가 많이 들거나 신고부리기 힘든 화물은 집합으로 실어날라야 한다.

빈 짐함은 제때에 입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제33조 (련대수송)**

국가계획기관과 운수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련대수송을 조

직하여야 한다.

현대수송조직은 경제적효과성을 높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4조 (철도화물의 분류와 포장)

철도화물은 차관짐, 적은짐, 잔짐, 손짐으로 나누어 수송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송하려는 화물을 정해진 규격대로 포장하여야 한다.

규격대로 포장하지 않은 화물은 수송할수 없다.

#### 제35조 (철도화물의 신기)

철도운수기관과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물을 화차의 적재정량과 해당한 규정의 요구대로 실어야 한다.

섬유, 쇠팅, 벼짚을 비롯하여 압착할수 있는 부피가 크거나 가벼운 화물은 압착하여 실어야 한다.

#### 제36조 (특수화물의 수송)

방사성물질, 폭발성물질을 비롯하여 특수한 수송조건을 요구하는 화물의 수송은 따로 정한 규정에 따라 한다.

#### 제37조 (화물을 신고부리는 작업분담)

철도역에서 화물을 신고부리는 작업은 철도운수기관이 한다. 그러나 차관짐을 신고부리는 로력이 없는 철도역과 전용선, 전용장소에서 화물을 신고부리는 작업은 짐임자가 한다.

#### 제38조 (화물의 신고부리기, 화차머무름시간)

철도운수기관과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물을 제때에 신고부리며 신고부린 화차를 정해진 시간안에 철도역에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화차머무름시간을 정하는 사업은 철도운수기관이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정해진 철도역에 화물높은홈과 인입도로를 건설하여 화물을 신속히 신고부리울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39조 (화물의 넘겨주고 받기)

철도운수기관과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화물을 정확히 넘겨주고 받아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화물을 넘겨받은 때부터 넘겨줄 때까지의 기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물수송을 맡긴 기간에 생긴 손해의 보상을 철도운수기관에 요구할수 있다.

#### 제40조 (화물관리)

철도운수기관은 화물관리와 반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임자를 모르거나 보관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화물은 해당 기관에 넘겨 처리한다.

**제41조 (철도운임과 요금)**

다른 나라 화차 또는 련운화차를 리용하거나 화물수송을 맡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철도운수기관에 정해진 운임과 요금을 물어야 한다.

철도운임과 요금은 대상에 따라 국가가격기관 또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정한다.

## 제5장 철도려객수송

**제42조 (철도려객수송의 기본요구)**

철도려객수송은 손님들의 련행상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봉사활동이다.

철도운수기관은 련행하는 손님들에 대한 봉사성을 높여 그들의 안전하고 문화적인 련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 (려객렬차의 조직)**

철도운수기관은 손님들의 련행에 편리하게 련객렬차를 조직하여야 한다.

필요한 구간에는 통근렬차, 통학렬차, 관광렬차, 림시려객렬차를 조직할수 있다.

**제44조 (철도역과 객차의 봉사시설)**

철도운수기관은 철도역과 객차안에 여러가지 봉사시설을 갖추고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며 손님들에 대한 안내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조명, 급수, 난방이 보장되지 않는 객차는 운영할수 없다.

**제45조 (차표판매)**

철도운수기관은 객차정원수에 맞게 차표를 팔아야 한다.

단체려행을 조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도운수기관에 미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6조 (철도에서 상업봉사)**

철도운수기관은 련차식당을 잘 운영하며 철도역구내와 역사, 련차안에서 손님들에게 청량음료를 비롯한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팔아주어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농업지도기관, 상업지도기관은 련차상업에 필요한 식료품원자재와 지방특산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7조 (려행도중에 생긴 환자치료)**

철도운수기관은 련행도중에 생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당 지역의 보건기관과 련차에 탄 보건일군은 철도운수기관의 요구에 따라 련행도중에 생긴 환자의 치료에 동원되어야 한다.

**제48조 (철도려행, 련객렬차리용질서의 준수)**

공민은 철도려행질서와 련객렬차리용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지정된 차표가 없거나 손님들의 려행과 차안의 질서유지에 지장을 줄수 있는 짐을 가지고 객차에 오를수 없다.

## 제6장 철도보호

### 제49조 (철도보호의무)

철도를 보호하는것은 려차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중요담보이다.

철도운수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철도를 아끼고 사랑하며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 제50조 (철도보호구역)

철길과 철도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보호구역을 정한다.

철도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51조 (철도보호구역의 관리)

철도보호구역안에서 논밭을 일구거나 집짐승을 기르는것을 비롯하여 철도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본철길보호구역밖의 좌우 20m구간의 토지에는 나무를 심으며 산림관리기관과 도시경영기관, 지방인민위원회가 관리한다. 이 경우 산림관리기관과 도시경영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려차운행에 지장을 줄수 있을 정도로 자란 나무를 제때에 옮겨심어야 한다.

산림관리기관과 도시경영기관, 지방인민위원회를 제외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본철길보호구역밖의 좌우 20m구간의 토지를 리용할수 없다.

### 제52조 (철도시설물의 보호)

철도운수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철길뚝, 철다리, 차굴주변의 강기슭, 산비탈을 비롯하여 필요한 곳에 옹벽공사와 사태막이공사, 물빠기공사를 하여 자연피해로부터 철도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주요철길구간에는 보호란간, 보호철망 같은것을 설치하며 철다리밑으로 도로가 지나간 곳에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3조 (전기삭음피해방지)

철도운수기관은 철도전기화구간에 대한 전기절연대책을 세우며 철도시설물의 전기 삭음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 제54조 (전용선건설, 보수)

전용선은 철도본선에서 직접 끝수 없으며 철도역의 측선에서 끌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는 전용선을 놓거나 고치거나 철거하려 할 경우 철도운수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전용선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는 차량과 철길을 비롯한 철도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전용선에 대한 기술적지도와 감독통제는 철도운수기관이 한다.

#### 제55조 (철길통행금지)

주민과 자동차, 우마차를 비롯한 운수수단은 철길로 다니거나 철길건능길이 아닌곳으로 철길을 건너다닐수 없으며 해당 철도운수기관의 승인없이 역구내에 들어설수 없다.

지방정권기관과 도로관리기관, 철도운수기관은 철길건능길을 만들 경우 사이거리가 2Km이상 보장되게 하며 철길건능길에 립체다리나 지하건능길을 건설하여야 한다.

립체다리나 지하건능길을 건설할수 없는 철길건능길에는 감시초소를 만들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정해지지 않은 곳에 립시로 철길건능길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려 할 경우에는 철도운수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차단물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56조 (철도역과 철길주변관리)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철도역과 철도시설물을 잘 꾸리고 그 주변관리를 위생문화적으로 하며 철도표식물을 문화성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기본철길주변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양묘장으로 리용하며 사름물을 규정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본철길과 잇닿아있는 산들의 부대기밭, 무림목지들에는 나무를 심어 수림화하여야 한다.

기본철길로부터 정한 거리안에는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짓지 말며 이미 있는것은 옮겨야 한다.

#### 제57조 (철도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철도표식물, 신호통신시설, 봉사시설과 전기철도급전시설을 손상, 파괴하거나 철도운수기관의 승인없이 거기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전차선로, 신호통신선로우로 고압선을 늘일 경우에는 규정된 높이를 보장하고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철길주변의 정한 거리안에서는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58조 (차량관리)

철도운수기관은 차량에 대한 보수정비를 계획적으로 하여 차량의 정상가동을 보장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 및 순환차량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차량수리에 필요한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차량의 구조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승인없이 변경시킬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차량을 정히 다루며 그것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59조 (철길의 점검, 보수)**

철도운수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구간을 정하고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길을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철길뚝주변에는 왜싸리나 잔디 같은것을 심어 철길뚝이 류실되지 않도록 하며 언제나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 (짐함과 수송비품관리)**

철도운수기관과 짐입자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짐함과 수송비품을 잘 관리하며 그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지켜야 한다.

짐함과 수송비품은 다른 용도에 쓸수 없다.

**제61조 (철도보호에 대한 교양)**

철도운수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인민들속에서 철도를 애호하며 철도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2조 (자연재해시 철도복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재해 같은 일로 철도복구작업이 제기될 경우 해당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를 의무적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 제7장 철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3조 (철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

철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철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 하여야 한다.

**제64조 (철도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철도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철도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철도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철도부문의 정책집행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 하여야 한다.

**제65조 (위약금, 체차료)**

화물수송계약과 자재공급계약을 위반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위약금을 물린다.

화차머무름시간을 초과하여 화차를 제때에 돌려보내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체차료를 물린다.

**제66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철도차량과 철도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화물사고를 일으켜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전용

및 순환차량을 동원시킴에 대한 철도운수기관의 요구에 불응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책임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보상책임을 지운다.

#### 제67조 (벌금)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벌금을 물린다.

1. 빈 짐함을 48시간이 지나도록 임자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단위에는 20만~150만원
2. 화물을 정해진 규격대로 포장하지 않았거나 정해진대로 싣지 않은 단위에는 10만~50만원
3. 객차에 필요한 조명, 급수, 난방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손님들에게 불편을 준 경우 해당 단위에는 10만~80만원, 철도종업원에게는 1,000~1만원
4. 철길로 걸어나거나 철길건능길이 아닌 곳으로 철길을 건너다닌 공민에게는 1,000~1만원
5. 차표가 없거나 금지된 물건을 가지고 객차에 오르는것과 같은 철도여행질서와 려객렬차리용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1,000~10만원

#### 제68조 (중지)

다음의 경우에는 화차리용을 중지시킨다.

1.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96시간이상 초과하였을 경우
2. 화물수송계약리행을 48시간이상 지연시켰을 경우
3. 철도차량의 보수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보수정비와 수리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차량구조를 승인없이 변경시켰을 경우
4. 화차에 손상을 줄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5. 다른 나라 차량이나 련운화차를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합의없이 리용하였거나 제때에 돌려보내지 않았을 경우
6. 운용화차를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가지고있을 경우
7. 정해진 철도운임과 요금을 제대로 물지 않았을 경우
8. 그밖에 화차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 제69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렬차편성계획작성을 바로 하지 않았거나 렬차운행표를 정확히 만들지 않았거나 마음대로 고치거나 렬차무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거나 렬차운행표와 어긋나게 렬차를 운행하였거나 불합리한 수송을 요구 또는 조직하였거나 집중수송, 짐함수송, 렬대수송의 요구를 지키지 않은것과 같은 철도수송조직과 지휘를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2. 철도표식물, 고압선안전그물망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철도역구내와 철길주변에 안전시설을 규정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주요철길구간에 보호란간, 보호철망 같은 것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철다리밑으로 도로가 지나간 곳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과 같은 철도보호시설물설치를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3. 위험한 개소들에 옹벽공사, 사태막이공사, 물빼기공사를 하지 않았거나 전기삭음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철도운영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수, 수리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철도보호구역안에 철도운영과 관련이 없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였거나 철도본선에 전용선을 연결한 것과 같은 철도시설물보호를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4. 열차취급, 열차운전, 열차검차규정을 어겼거나 근무시간에 술을 마셨거나 잠을 잤거나 근무장소를 비운 것과 같은 열차운전취급질서를 어겼을 경우
5. 화물수송규정을 어기고 화차에 짐을 편적되게 실었거나 차량한계밖으로 나오게 실었거나 짐실이량을 초과하여 실은 것과 같은 짐실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6. 차량수리기지를 꾸리지 않았거나 차량수리에서 공정상요구와 기술규정의 요구를 지키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차량의 구조를 고쳤거나 불량한 차량을 합격된 차량으로 평가한 것과 같은 철도차량의 수리 및 검사질서를 어겼을 경우
7. 철길순검, 철길보수, 철길감시, 철길순회를 바로하지 않은 것과 같은 철길관리질서를 어겼을 경우
8. 철길구조물보강, 철도시설물보호공사, 안전시설물설치를 바로 하지 않았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철길을 운영하였을 경우
9. 전철기나 신호련동길차지장치보수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급전시설에 대한 점검보수를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철도운영시설보수질서를 어겼을 경우
10. 철길로 걸어다녔거나 철길진늬길이 아닌 곳으로 건너다녔거나 자체로 만든 룬전기재를 타고 다녔거나 철길보호구역안에서 짐짐승을 방목하였거나 시설물을 건설하였거나 철길자갈을 파헤쳤거나 철길에서 잠을 잤거나 승인없이 철길진늬길을 새로 만들었거나 없앴거나 차단물을 설치한 것과 같은 철길보호질서를 어겼을 경우
11. 철도차량리용계약을 맺지 않은 단위에 차량을 배정하였거나 차량에 손상을 주었거나 기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짐을 제때에 신고부리지 않았거나 화차사용료를 제때에 물지 않았거나 화차회귀일수를 보장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창고로 리용한 것과 같은 화차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12. 다른 나라 차량과 련운화차를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합의없이 리용하였거나 정해진 기간안에 돌려보내지 않았을 경우
13. 철도유일사령지휘에 간섭하였거나 복종하지 않았을 경우
14. 철도표식물, 신호통신시설, 봉사시설과 전기철도급전시설 등 각종 시설을 손상, 파괴

하였을 경우

15.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나무를 제때에 옮겨심지 않았을 경우

16. 철도운수부문에 철도사업과 관련이 없는 로력과 자금, 자재동원과제를 망탕 주었거나  
철도종업원들을 철도부문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에 동원시켰을 경우

앞항 1~16호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별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별을 준다.

**제70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차량법

주체99(2010)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06호로 채택

## 제1장 철도차량법의 기본

### 제1조 (철도차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차량법은 철도차량의 생산과 등록,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철도차량의 정의와 구분)

철도차량은 철도를 리용하여 려객이나 짐을 실어나르는 료전기재이다.  
철도차량에는 기관차, 객차, 화차 같은 것이 속한다.  
철도차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 제3조 (철도차량의 생산원칙)

철도차량의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은 철도수송능력을 부단히 늘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철도차량생산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여 철도차량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현대적인 철도차량을 수요에 맞게 생산하도록 한다.

### 제4조 (철도차량의 등록원칙)

철도차량의 등록은 철도차량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모든 철도차량을 빠짐없이 등록하도록 한다.

### 제5조 (철도차량의 관리운영원칙)

철도차량의 관리운영을 잘하는 것은 철도차량의 리용률을 높여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철도차량의 관리운영에서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며 정규화하도록 한다.

### 제6조 (철도차량의 보호원칙)

철도차량을 적극 보호하는 것은 애국심의 발현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철도차량을 귀중히 여기고 보호하도록 한다.

**제7조** (철도차량부문의 과학연구와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철도차량을 현대화하고 그 관리운영을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철도차량기술일군양성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도록 한다.

**제8조** (교류와 협조)

국가는 철도차량의 생산과 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철도차량의 생산

**제9조** (철도차량생산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철도차량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생산능력 같은 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철도차량생산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한다.

**제10조** (철도차량생산단위)

철도차량의 생산은 전문철도차량생산기관, 기업소에서 한다.

철도차량생산기관, 기업소는 차량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기관차와 객차, 화차를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철도차량의 중량화, 고속도화)

철도차량생산기관, 기업소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철도차량의 중량화, 고속도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철도차량의 중량화, 고속도화실현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풀며 선진기술을 제때에 생산에 도입하여야 한다.

**제12조** (객차의 안전성과 문화성보장)

철도차량생산기관, 기업소는 려행자들의 편리를 최대로 보장할수 있는 현대적인 객차를 생산하여야 한다.

객차에는 달림장치, 련결완충장치, 제동장치의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차내조명과 급수, 난방, 랭풍장치 같은 것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화차생산)

철도차량생산기관, 기업소는 특성이 서로 다른 품종의 화물을 원만히 실어나를수 있게 무개차, 유개차, 세멘트차, 유조차 같은 화차를 종류별로 생산하여야 한다.

**제14조** (철도차량생산의 질보장)

철도차량생산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생산에서 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생산되는 철도차량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철도차량의 수입)**

해당 기관은 필요에 따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으며 성능이 좋은 철도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수 있다. 이 경우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철도차량의 시운전)**

새로 생산 또는 수입하였거나 수리한 철도차량은 시운전을 하고 검사에서 합격되었을 경우에만 운영할수 있다.

해당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철도차량은 운영할수 없다.

**제17조 (철도차량의 표식)**

철도차량에서 정해진 규격의 철도표식을 하고 번호를 달아야 한다.

철도차량표식의 규격과 번호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한다.

**제18조 (철도차량의 부분품, 부속품생산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의 생산에 필요한 부분품과 부속품을 지표별로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 제3장 철도차량의 등록

**제19조 (철도차량의 등록기관)**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을 철도차량관리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철도차량관리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철도차량은 운영할수 없다.

**제20조 (철도차량등록의 종류)**

철도차량의 등록은 첫 등록, 이동등록, 변경등록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첫 등록은 철도차량을 새로 생산하였거나 수입하였을 경우에, 이동등록은 이미 등록된 철도차량을 이관받았거나 새로 생산하였거나 수입하였을 경우에, 이동등록은 이미 등록된 철도차량을 이관받았거나 철도차량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의 소속 또는 명칭이 달라졌을 경우에, 변경등록은 철도차량의 구조와 용도, 색깔, 번호 같은 것을 달리하였을 경우에 한다.

**제21조 (철도차량의 등록신청)**

철도차량을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등록신청문건을 철도차량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철도차량관리기관은 철도차량등록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철도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 (철도차량의 이동등록 및 변경등록)**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이미 등록된 철도차량을 이관받았거나 소속 또는 명칭

이 달라졌거나 철도차량의 구조와 용도, 색깔, 번호 같은 것을 변경시켰을 경우에 제때에 이 동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철도차량의 등록증서, 경력서의 발급)**

철도차량관리기관은 등록된 철도차량에 대하여 철도차량등록증서와 철도차량경력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철도차량등록증서는 철도운수기관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에, 철도차량경력서는 철도차량에 보관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제24조 (철도차량등록증서의 재발급)**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등록증서 또는 철도차량경력서를 분실, 오손 시켰을 경우 제때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분실, 오손리유를 밝힌 재발급신청서를 철도차량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5조 (철도차량의 실사)**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에 대한 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등록하지 않은 차량, 못쓰게 된 차량 같은 것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의 실사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 제4장 철도차량의 관리운영

**제26조 (철도차량의 관리체계수립)**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의 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철도차량을 언제나 만가동할수 있게 알뜰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철도차량의 기술검사)**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정해진데 따라 철도차량에 대한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기술검사에서 불합격된 철도차량은 운영할수 없다.

철도차량의 기술검사절차와 방법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28조 (철도차량의 기술검사종류)**

철도차량의 기술검사는 첫 기술검사, 이관기술검사, 변경기술검사, 폐기기술검사, 정기기술 검사, 지정기술검사로 나누어 한다.

첫 기술검사는 철도차량을 첫 등록하였을 경우에, 이관기술검사는 철도차량을 이관받았을 경우에, 변경기술검사는 철도차량을 변경등록하였을 경우에, 폐기기술검사는 철도차량을 폐기 하려 할 경우에, 정기기술검사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철도차량을 수리하였을 경우에, 지정기술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다.

**제29조 (철도차량의 운영)**

철도차량은 철도운수기관의 유일사령지휘에 따라 운영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도운수기관의 유일사령지휘에 의무적으로 복종하여야 한다.

**제30조 (철도차량의 리용)**

철도차량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계획에 따라 철도운수기관과 리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철도차량리용계약을 맺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철도차량을 배정할수 없다.

철도차량리용계약을 맺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도운수기관에 해당하는 요금을 물어야 한다.

**제31조 (다른 나라 철도차량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의 철도차량을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철도차량에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다른 나라의 철도차량은 정해진 기일안에 돌려주어야 한다.

**제32조 (철도차량의 무사고운행보장)**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에 대한 정비를 정상적으로 하고 표준조작법대로 운영하여 언제나 무사고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당한 리유로 짐실은 철도차량을 지체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3조 (철도차량의 인계인수)**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을 인계인수할 경우 그 기술상태와 정비상태, 부속품상태 같은 것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퇴치한 다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34조 (철도차량의 수리)**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의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고장난 철도차량을 제때에 수리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의 수리는 대수리, 중수리, 소수리, 운영수리, 립시수리로 나누어 진행한다.

철도차량의 수리주기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한다.

**제35조 (철도차량수리의 질보장)**

철도차량을 수리하는 기관, 기업소는 분해, 가공, 조립, 시험, 검사 같은 공정상요구와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철도차량을 질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제36조 (철도차량의 구조변경 및 이관)**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의 구조를 고치거나 철도차량을 다른 기관, 기업소에 넘겨주려 할 경우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도차량을 넘겨줄 경우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떼내거나 바꿀수 없다.

**제37조 (철도차량의 폐기)**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내용년한이 지났거나 쓸수 없게 된 철도차량을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수 있다.

철도차량의 폐기가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을 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제5장 철도차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8조 (철도차량사업에 대한 지도)**

철도차량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철도차량의 생산과 등록, 관리운영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 (철도차량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철도차량의 생산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로력, 전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의 생산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돌려진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은 다른 데 돌려쓸수 없다.

**제40조 (철도차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철도차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철도차량의 생산과 등록, 관리운영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1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철도차량생산계획을 미달하였거나 철도차량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철도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였을 경우
3. 기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된 철도차량을 운영하여 사고위험을 조성하였을 경우
4. 철도운수기관의 유일사령지휘에 복종하지 않고 제마음대로 철도차량을 운영하여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철도차량관리를 잘하지 않아 파손시켰을 경우
6. 부당한 이유로 철도차량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아 대외적권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7. 철도차량의 수리를 제때에 하지 않아 그 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다른 나라의 철도차량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아 대외적권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9. 승인없이 철도차량의 구조를 고치었거나 철도차량을 다른 기관, 기업소에 넘겨주었거나 폐기시켰을 경우
10. 철도차량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훔쳤거나 파손시켰거나 그것을 가지고 장사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42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41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국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화물수송법

주체110(2021)년 10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67호로 채택

## 제1장 철도화물수송법의 기본

### 제1조 (철도화물수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화물수송법은 철도화물수송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쓰이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화물이란 열차로 실어나르는 짐을 말한다.
2. 철도화물수송이란 열차로 짐을 실어나르는 수송을 말한다.
3. 철도화물수송계획이란 철도운수기관에서 정해진 기간에 열차로 수송하여야 할 짐량을 반영한 인민경제계획을 말한다.
4. 철도화물수송계약이란 철도운수기관과 짐임자사이에 짐을 정해진 장소까지 실어나르는 것을 내용으로 맺는 계약을 말한다.
5. 철도화물수송증권이란 철도운수기관에 의한 짐의 접수와 수송계약의 내용, 짐찾을 권리, 철도화물을 수송하는데 드는 운임과 요금을 담보하는 증서를 말한다.
6. 위험화물이란 방사성물질이나 독성물질, 폭발성물질과 같이 사람과 환경, 철도의 차량과 시설, 다른 짐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는 짐을 말한다.
7. 광대화물수송이란 하나의 짐무게나 길이, 너비, 높이가 정해진 한계를 넘는 짐의 수송을 말한다.

### 제3조 (철도화물수송의 발전원칙)

철도화물수송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철도화물수송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 철도화물수송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4조 (유일사령지휘체계의 확립원칙)

유일사령지휘체계를 세우는것은 화물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국가는 철도화물수송에서 사령의 지휘에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유일사령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우도록 한다.

**제5조 (철도화물수송의 신속성, 정확성보장원칙)**

철도화물수송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것은 철도화물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개선하여 철도화물수송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철도화물수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7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철도화물수송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철도화물수송계획과 계약

**제8조 (철도화물수송수요의 장악)**

철도운수기관은 년간철도화물수송계획작성에 앞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제기되는 철도화물수송수요를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도로 수송할 화물의 품명과 수량, 보내는 역과 도착하는 역, 수송조건, 수송기간 등 철도화물수송수요장악을 위하여 철도운수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철도화물수송계획의 작성)**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철도화물수송수요를 장악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원만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철도화물수송계획초안을 작성한 다음 중앙계획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낸 철도화물수송계획초안을 검토하고 국가적 요구를 반영하여 분기별로 구분한 년간 철도화물수송계획초안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철도화물수송계획의 시달)**

중앙계획지도기관은 승인받은 철도화물수송계획을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 짐입자기관이라고 함.)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중앙계획지도기관으로부터 시달받은 철도화물수송계획을 월별로 세분화하여 해당 철도운수기관에 내려보내야 한다.

**제11조 (철도화물수송계획의 맞물림)**

철도운수기관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으로부터 시달받은 철도화물수송계획에 따라 짐입자기관과 철도화물수송의 맞물림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12조 (철도화물수송계획의 변경금지)**

승인된 철도화물수송계획은 변경할수 없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철도화물수송계획을 변경하려 할 경우 변경사유를 밝힌 문건을 중앙계획지도기관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철도화물수송계약의 당사자)**

철도화물수송계약의 당사자는 철도운수기관과 짐입자기관이 될수 있다.

철도운수기관과 짐입자기관은 철도화물수송계획에 기초하여 철도화물수송계약을 맺어야 한다.

국가적조치에 따라 철도화물수송이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경우에도 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14조 (철도화물수송계약문건의 작성)**

철도화물수송계약문건은 철도화물수송계획을 시달받은 짐입자기관이 작성한다.

철도화물수송계약문건에는 수송할 화물의 품명, 상태, 수량, 보내는 역과 도착역, 보내는 짐입자와 받는 짐입자의 이름, 수송기간, 운임,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5조 (철도화물수송계약의 체결기간)**

철도운수기관과 짐입자기관은 철도화물수송계획을 시달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철도화물수송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16조 (불가항력적사유에 의한 계약리행의 중지)**

철도운수기관과 짐입자기관은 불가항력적사유로 철도화물수송 또는 화물을 보장할수 없는 경우 계약리행을 일정한 기간 중지할수 있다. 이 경우 계약리행을 중지한 당사자는 그에 대하여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적사유로 계약리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되지 않는다.

**제17조 (중지되었던 계약의 리행)**

철도운수기관과 짐입자기관은 불가항력적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계약리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철도화물수송계약의 변경)**

짐입자기관은 철도화물수송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계약변경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철도운수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해당 철도운수기관은 철도화물수송에 지장이 없을 경우 철도화물수송계약을 변경할수 있다.

**제19조 (철도화물수송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철도화물수송계약상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에 맞지 않게 리행한 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위약금을 물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제3장 철도화물수송의 짐임자

### 제20조 (철도화물의 보장)

짐임자기관은 철도화물수송계약에 따라 수송할 화물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철도로 수송할 화물은 그 량과 형태에 따라 차판짐, 적은짐, 손짐, 잔짐으로 나눈다.  
화물을 역에 내오거나 역에서 화물을 취급하는 절차와 방법은 철도운수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 제21조 (철도화물의 포장)

짐임자기관은 산적화물을 제외한 수송화물은 정해진 규격대로 포장하고 짐부침표를 철도운수기관에 내야 한다.  
철도화물로 수송하는 손짐, 잔짐에는 짐임자표 또는 짐꼬리표를 달며 취급에서 주의하여야 할 짐에는 정해진 표식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 (짐실이비품의 보장)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방수포, 쇠사슬, 바줄을 비롯한 짐실이비품은 짐임자기관이 보장한다. 그러나 철도운수기관에서 생산보장하게 되어있는 짐실이비품은 철도운수기관이 보장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짐임자기관에서 넘겨받은 짐실이 비품을 등록하고 해당 짐임자기관의 화물을 수송하는데만 리용하여야 한다.

### 제23조 (화물의 신고부리기)

화물의 신고부리는 작업은 계약에서 따로 정한것이 없는 한 짐임자기관이 한다.  
화물은 정해진 기준에 맞게 실어야 한다.  
화물을 신고부리는 장소와 시간은 철도운수기관이 정한다.

### 제24조 (실은 화물의 확인)

짐임자기관은 화물을 봉인하거나 실은 상태로 해당 철도운수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짐임자기관과 실은 화물의 포장상태와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25조 (도착한 화물의 넘겨받기)

짐임자기관은 철도운수기관으로부터 화물의 도착통지를 받으면 제때에 넘겨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철도운수기관과 화물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제26조 (화물사고조서의 작성)

짐임자기관은 넘겨받은 화물의 봉인이나 포장상태가 달라진 경우, 화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책임한계를 갈라야 할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철도운수기관과 함께 검사하고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정당한 리유없이 사고조서작성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27조 (화물사고에 대한 손해보상)**

짐입자기관은 넘겨받은 화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철도운수기관에 손해를 보상할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운수기관에 해당한 손해보상청구서를 내야 한다.

**제28조 (짐입자기관의 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짐입자기관이 화물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1. 제정된 포장규격대로 화물을 포장하지 않았을 경우
2. 화물의 내용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밝힌 경우
3. 화물의 봉인상태에 이상이 없거나 호송원이 호송한 짐인 경우
4.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화물자체의 물리화학적 작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인 경우
5. 법이나 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정도의 감모로 발생한 손해나 그밖에 짐입자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인 경우

**제29조 (체차료의 부과)**

짐입자기관은 다음의 경우 체차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1. 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화물의 신고부리기를 하지 못하여 화차를 머무르게 한 경우
2. 수송할 화물보다 많은 화차를 요구하여 빈화차로 머무르게 한 경우
3. 품질이나 품명이 계약에 밝혀진 내용과 맞지 않아 짐받는 기관이 넘겨받지 않고 되돌려 보낸 경우
4. 이밖에 짐입자의 잘못으로 화차를 정해진 시간보다 더 머무르게 하였을 경우

**제30조 (화물수송운임과 요금)**

짐입자기관은 철도화물수송계약에 따라 정해진 운임과 요금을 철도운수기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 제4장 철도화물의 수송자

**제31조 (기관차와 화차의 보장)**

철도운수기관은 화물수송계약에 따라 기관차와 화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차와 화차는 수송거리와 수송량, 짐의 특성에 맞으며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제32조 (화물수송증권의 발급)**

철도운수기관은 화물을 넘겨받은 경우 화물통지서, 손짐, 잔짐나름표, 우편물송장 같은 화물수송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철도화물수송증권의 효력)**

철도운수기관은 짐입자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화물의 상태와 봉인 또는 밀폐된 짐의 겉보기 상태를 확인하고 철도화물수송증권에 정확히 밝혀야 한다.

철도화물수송증권이 발급되면 증권에 밝힌 화물을 철도운수기관이 넘겨받은것으로 한다.

**제34조 (철도화물수송의 변경)**

짐입자기관은 화물을 실어보내기전에 화물을 다시 찾거나 보내는 역, 도착역, 품명, 짐입자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철도운수기관에 화물수송변경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화물수송변경리유를 따져보고 화물수송계획에 지장이 없을 경우 수송변경을 승인할수 있다.

**제35조 (불합리한 수송의 금지)**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수송계획작성과 수송조직, 지휘를 짜고들어 역수송과 반복수송, 가까운거리수송 같은 불합리한 수송을 없애야 한다.

**제36조 (긴급화물수송)**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국가적조치에 따라 긴급수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것을 우선적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기관차와 화차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수송조직과 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37조 (집중수송)**

철도운수기관은 철도화물수송계획에 따라 많은 량의 화물을 짧은 기간에 수송하여야 할 경우 짐입자기관과 집중수송계약을 맺고 집중화물수송을 조직하여야 한다.

짐입자기관은 집중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화물을 보장하며 신고부리기를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38조 (위험화물수송)**

위험화물을 철도로 수송하려는 짐입자기관은 화물과 관련한 자료를 철도운수기관에 내야 한다. 위험화물의 수송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39조 (광대화물수송)**

광대화물을 수송하려는 짐입자기관은 화물수송신청문건을 철도운수기관에 내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짐입자기관으로부터 광대화물수송신청을 받으면 짐의 크기와 무게, 화차의 종류와 신고부리는 방법을 비롯하여 광대화물수송과 관련한 사항을 따져보고 짐입자기관과 수송조건을 합의하여야 한다.

**제40조 (철도운수기관의 책임)**

철도운수기관은 짐입자기관으로부터 짐을 넘겨받아 도착지에서 넘겨주기 전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그러나 이 법 제28조 사유에 의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41조 (연착보상금의 지불)**

철도운수기관은 화물이 정해진 수송기간보다 늦어졌을 때에는 늦어진 하루마다 짐운임의 3%에 해당하는 연착보상금을 짐입자기관에 물어야 한다.

연착보상금은 짐운임의 50%를 넘을수 없다.

불가항력적사유나 짐입자기관의 잘못으로 짐이 늦게 도착하였을 경우에는 연착보상금을 물지 않는다.

## 제5장 철도화물수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2조 (철도화물수송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철도화물수송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철도화물수송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3조 (철도화물수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철도화물수송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철도화물수송정형에 대하여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4조 (분쟁해결)**

철도화물수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절차로 해결한다.

**제45조 (철도차량의 압수, 몰수)**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법규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가 리용하는 기관차, 화차를 압수 또는 몰수한다.

1. 국가적인 통제품을 비법적으로 수송하였을 경우
2. 비법적인 상적행위에 리용하였을 경우
3. 화차를 기관, 기업소, 단체, 개인이 구입하거나 수리하였다고 하여 리기적인 목적으로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합의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빌려주었거나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화물을 실었을 경우
4. 화차번호를 위조하여 리용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리용한 경우

**제46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150만원, 개별적공민에게 5,000~10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1. 계약문건에 수송할 화물의 량, 상태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수송에 지장을 준 경우

2. 계약문건에 도착역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 잘못 수송한 경우
3. 수송계획 및 계약을 마음대로 변경, 취소시켜 화물수송에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
4. 유일사령지휘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계약된 화물을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6. 철도화물수송의 맞물림조직을 바로하지 못하였을 경우
7. 화물의 특성에 맞는 화차를 보장하지 않아 화물을 류실, 손상시킨 경우
8. 수송과정에 화물의 보관과 관리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9. 정해진 규격대로 포장하지 않아 다른 화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10. 화물의 특성에 맞는 짐실이비품을 보장하지 못하여 화물수송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1. 짐을 정한 시간까지 신고부리지 못하였을 경우
12. 짐을 제때에 넘겨주거나 넘겨받지 않았을 경우

**제47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적용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화물수송에 기관차나 화차를 동원시키지 않았을 경우
2. 고장난 철도차량수리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을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3. 철도화물수송계획작성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4. 철도화물수송계약체결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5. 철도화물수송준비를 바로하지 않아 화물수송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철도화물수송을 제정된 질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7. 철도화물수송계획, 계약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를 하여 화물수송에 혼란을 주었을 경우
8. 철도화물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지 않아 사업에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
9. 긴급수송에 필요한 화물이나 화차를 제때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신고부리지 못하였을 경우
10. 위험화물의 취급과 수송절차를 어겨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앞항 1~10호를 어긴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48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만법

주체75(1986)년 9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1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12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0호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21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91호로 수정보충

## 제1장 항만법의 기본

### 제1조 (항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만법은 항만건설과 관리, 항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나라의 수상운수와 인민경제를 적극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항만건설원칙)

항만을 적극 개발리용하는것은 해상 및 강하천수송, 른대수송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항만을 현대적으로 개진확장하며 새로운 항만을 전망성 있게 건설하도록 한다.

### 제3조 (항만관리원칙)

항만관리는 항의 정상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항만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항사업을 정규화하도록 한다.

### 제4조 (항운영원칙)

항운영을 잘하는것은 발전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에 맞게 항통과능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국가는 항운영질서를 바로세우고 해당 사명에 맞게 항을 운영하도록 한다.

### 제5조 (항봉사원칙)

항봉사는 해상수송의 신속성과 정확성,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국가는 항봉사시설을 잘 꾸리고 배와 선원, 려객에 대한 봉사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 제6조 (항만분야의 과학연구사업원칙)

국가는 항만건설과 관리, 항운영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한다.

**제7조 (적용대상)**

이 법은 항만을 건설, 관리, 운영,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포함)에 적용한다.

**제8조 (항만사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항만사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9조 (다른 법과의 관계)**

항만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에 따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항만관계의 국제협약에 이 법과 다르게 규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2장 항만건설

**제10조 (항만건설계획의 작성)**

해당 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항만건설계획을 세우고 항만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11조 (항의 구분)**

항은 무역항, 국내운수항, 공업항, 어항, 려객항으로 구분한다.

**제12조 (항만설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항만설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상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토지, 해안선, 강하천, 해양자원 리용의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경제발전과 경제적실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4. 환경보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5. 배와 짐취급, 교통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하나의 항수역 또는 지역에 둘이상의 무역항이 설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항만건설과 관련한 합의, 위치지정, 환경영향평가)**

항만을 건설하려는 기관은 국방, 해양지질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과 합의한 다음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위치지정,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무역항을 건설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국경검사, 검역, 무역화물검수, 항무감독과 관련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항만건설의 승인)**

항만건설에 대한 승인은 내각이 한다.

내각은 항만건설과 관련한 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15조 (항만건설의 변경)**

승인된 항만건설계획을 변경시켜 항만을 건설하려는 기관은 내각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합의와 위치지정,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받는다.

**제16조 (항만설계)**

항만설계는 전문설계기관이 한다.

항만설계기관은 항의 리용목적과 규모, 항을 통과하게 되는 배와 짐의 종류와 류동방향, 지형 지질조건, 기상수문조건, 해양조건 같은것을 정확히 조사장악하고 항만을 설계하여야 한다.

**제17조 (항만건설기관)**

항만건설은 건설주기관이 직접 하거나 건설주기관과 시공주기관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한다. 시공주기관은 승인된 설계와 시공계약의 요구대로 건설대상을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18조 (항만구조물)**

항에는 방파제, 방사제, 부두를 비롯한 항만구조물을 건설하여야 한다.

항만구조물은 배의 정박과 항행에 지장이 없고 항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할수 있어야 한다.

**제19조 (배와 짐취급에 필요한 설비)**

항에는 배와 짐취급에 필요한 항만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항만설비는 승인없이 다른 용도에 리용할수 없다.

**제20조 (짐보관시설)**

항에는 항의 규모와 특성, 짐통과능력에 맞게 창고, 야적장, 싸이로같은 짐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야적장을 꾸리는 경우 짐에 의하여 항수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1조 (철길 및 도로의 배치)**

항에는 배와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줄이며 짐취급을 기동성있고 원활하게 할수 있게 철길, 도로를 합리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22조 (항해봉사시설)**

항에는 배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배길표식물을 수로학적요구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규모가 큰 항에는 신호설비, 시간알림설비와 해양 및 기상관측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3조 (배의 대기 및 대피장소 설정)**

항에는 배가 립시로 정박할수 있는 가박지 같은 배대기장소와 재해로부터 배를 보호할수 있는 대피장소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24조 (배수리시설)**

배들이 집중되어있고 배통과능력이 큰 항에는 배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5조 (오염방지시설)**

항에는 오염물질의 접수 및 처리시설과 기름차단띠, 기름흡수설비를 비롯한 기름오염제거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제26조 (려객봉사 및 물고기처리시설)**

려객을 취급하는 항에는 렬객수송을 보장할수 있도록 안전하고 문화적인 여러가지 봉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어항에는 물고기부림시설과 가공시설, 저장시설, 항능력에 따르는 랭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7조 (항만건설물의 준공검사)**

시공주기관은 항만건설이 끝난 다음 건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주기관은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을 넘겨받아야 한다.

**제28조 (항만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항만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계획에 정확히 맞물려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 제3장 항만관리

**제29조 (항만관리의무)**

항만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의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항만에 세워진 제도와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항만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제30조 (항만의 경계)**

항만경계는 륭상경계와 수역경계로 나눈다.

항만경계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 또는 지방정권기관이 한다.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은 항만경계를 배의 항해 및 정박, 해상교통관리, 배취급 및 작업봉사, 항관리운영, 환경보호에 편리하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1조 (항만관리기관)**

항만관리는 항운영기관이 한다.

**제32조 (항만구조물에 대한 기술감정과 보수)**

항운영기관은 방파제, 방사제, 부두와 같은 항만구조물에 대한 기술감정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파손된 항만구조물은 제때에 보수한다.

**제33조 (배터와 배길의 준척)**

항운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배터와 배길을 정상적으로 준척하여 배의 안전한 정박과 항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항만수역에서 준척, 인양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4조 (짐작업설비의 수리정비)**

항운영기관은 짐을 싣고부리거나 나르는 설비에 대한 계획적인 보수정비체계를 세우고 보수 주기에 따라 제때에 질적으로 수리정비하여야 한다.

기술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설비는 운영할수 없다.

**제35조 (창고와 야적장의 보수정비)**

항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창고와 야적장을 보수계획에 맞물려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창고와 야적장에는 통로와 짐쌓는 구역을 정하고 짐을 종류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 (도로와 철길보수정비)**

항운영기관과 철도운수기관은 항에 있는 도로와 철길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건늬길과 교통이 복잡한 곳에는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7조 (항운영시설의 보수정비)**

항운영기관은 물과 연유공급, 상하수도, 전력공급시설 같은 항운영시설을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제38조 (항해봉사시설의 관리)**

배길표식기관과 항운영기관, 해당 기관은 배길표식물, 신호설비, 시간알림설비와 해양 및 기상관측설비를 현대화하고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배길표식물 같은 설비를 파손시켜 배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9조 (항구내관리)**

항운영기관은 부두를 비롯한 항구내를 잘 포장하고 늘 알뜰하게 거두어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주변을 록화하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 (항관리운영과 관련한 건물과 시설물의 배치)**

항안에는 항관리운영과 관련한 건물과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항운영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안에 건물과 시설물을 새로 건설하려 하거나 항안의 건물과 시설물을 없애려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1조 (오염방지)

항운영기관은 항수역과 항만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않도록 하며 기름과 오물 같은것을 제때에 거두어내야 한다.

항수역에서 항해하거나 정박하고 있는 배는 기름을 비롯한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발라스트물을 배출하지 말아야 한다.

배의 오염물질은 항의 오염물질 접수 및 처리시설에 넘겨처리하여야 한다.

#### 제42조 (항의 안전보장)

항운영기관은 안전보장기준에 맞게 항안전보장체계를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항에서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폭발물을 터치거나 항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항에서 위험짐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43조 (재해방지)

항운영기관과 항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에 있는 설비, 시설물과 물자를 화재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연유를 비롯한 인화성물질과 폭발성물질을 다루는 일은 정해진 부두 또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제44조 (배의 입출항)

입출항하려는 배는 입출항수속을 하고 해당한 봉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 항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단다.

#### 제45조 (항수역에서 항해규칙준수와 항해안전보장)

항수역에서 배는 충돌예방규정과 해당 수역의 항해규칙에 맞게 항해하여야 한다.

배길안내대기지점과 해상교통관리수역, 항수역에서는 배의 항해와 정박에 지장을 줄수 있는 자원채취와 물고기잡이, 양어 및 양식장운영 같은것을 할수 없다.

#### 제46조 (배의 정박)

항에서 배는 정해진 곳에 정박하며 정박위치를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운영기관은 선장으로부터 배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곧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47조 (항시설과 설비의 보호)

항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시설과 설비를 보호하여야 한다.

항수역에서는 배길 및 항만구조물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이 없는 준침, 자원채취와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제48조 (측심 및 무선통신기재의 사용금지)**

다른 나라 배는 항에서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측심, 전파탐지 및 무선통신기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49조 (항출입 및 배에 오르내리는 질서의 준수)**

공민은 정해진 항출입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항에 나들거나 배에 오르내릴수 없다.

**제50조 (안전항해 및 해난구조체계수립)**

해당 기관은 항에서 배의 안전항해와 해난구조를 위한 지휘체계를 세워야 한다.

## 제4장 항운영

**제51조 (무역항에 대한 국경통과지점설정)**

무역항은 국경통과지점으로 설정받아야 한다.

무역항에 대한 국경통과지점설정은 해당 법에 따라 한다.

**제52조 (항이름과 관련한 합의)**

해당 기관은 무역항이름을 정하려는 경우 중앙해운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53조 (국경검사, 검역, 검수기관과 항무감독기관의 설치)**

무역항에는 통행검사기관, 세관,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 무역화물검수기관, 항무감독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둘이상의 항이 일정한 구역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국경검사, 검수, 검역기관, 항무감독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경검사, 검수, 검역기관과 항무감독기관의 검사, 검수, 검역, 감독을 받지 않고서는 선원, 려객, 배, 짐취급을 할수 없다.

**제54조 (항변경에 대한 승인)**

무역항이 아닌 항을 무역항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기관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방, 위치지정, 국경검사, 검역, 항무감독과 관련한 합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제55조 (무역항운영에 대한 허가)**

무역항은 중앙해운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수 있다.

부득이하게 하나의 항수역에 둘이상의 기관이 독자적으로 부두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허가를 따로 받는다.

**제56조 (항연합위원회의 운영)**

무역항에는 비상설로 항연합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항연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따로 정한데 따라 한다.

**제57조 (대리기관을 통한 다른 나라 배와의 사업)**

무역항에서 다른 나라 배와의 사업은 다른 나라 배대리기관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58조 (입출항승인)**

무역항에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우리 나라 배와 다른 나라 배가 입출항할수 있다.

배의 입출항승인은 항무감독기관이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배운영기관 또는 다른 나라 배대리기관으로부터 배의 입출항신청을 받으면 배에 대한 검사와 배길안내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59조 (입출항연합검사)**

국제항해하는 우리 나라 배와 다른 나라 배는 입출항연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출항연합검사는 항무감독기관의 지휘밑에 항에 있는 해당 검사기관이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서 통과되지 못한 배는 입출항할수 없다.

**제60조 (배길안내)**

무역항에 나드는 다른 나라 배는 배길안내대기지점으로부터 배길안내를 받아야 한다.

배길안내는 배길안내기관이 한다.

우리 나라 배에 대한 배길안내는 선장의 요구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61조 (짐작업기준량의 제정)**

무역항에서 배에 짐을 싣거나 부리는 작업기준량은 항운영기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항운영기관은 무역항에서 짐을 제때에 싣고부리며 배에 대한 기술봉사를 잘하여 배의 머무름 시간을 줄여야 한다.

**제62조 (짐작업의뢰)**

항에서 짐작업봉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작업의뢰와 관련한 자료를 항운영기관에 내야 한다.

짐작업의뢰와 관련한 자료는 정해진 시간에 내야 한다.

항운영기관은 출항전검사 또는 다른 나라 배 검열에서 승인된 배에 대하여 짐취급을 해주어야 한다.

**제63조 (배취급 및 선원봉사의뢰)**

무역항에서 배취급과 선원들에 대한 봉사는 해당 의뢰기관과 항운영기관사이에 맺은 계약에 따라 한다.

**제64조 (배취급순서)**

배의 취급은 우리 나라 배와 긴급한 사정이 있는 배를 제외하고 항에 들어오는 차례로 한다.

**제65조 (작업준비완료통지서제출)**

항에 들어온 배의 선장은 입항연합검사가 끝난 다음 로동안전대책과 작업준비를 끝내고 작업준비완료통지서를 짐임자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66조 (짐모으기작업)**

항에 짐을 모으는 일은 짐임자기관이 한다.

짐임자기관은 배선계획에 맞물려 배짐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제때에 짐을 모아야 한다.

**제67조 (짐작업의뢰)**

짐작업은 짐임자대리기관 또는 배임자대리기관이 낸 짐작업의뢰서에 의하여 한다.

짐작업의뢰서는 정해진 기간안에 내야 한다.

**제68조 (신고부리는 작업)**

배에 짐을 싣거나 배에서 짐을 부리는 일은 짐적제도면과 짐작업기술공정표, 짐취급과 관련한 해당 규정 또는 지도서에 의해서만 할수 있다.

**제69조 (수입품을 보내는 사업)**

항에서 수입품을 수요자기관에 보내는 사업은 짐임자대리기관이 한다.

수입품을 실어나르는데 필요한 화차와 자동차는 수요자기관이 보장한다.

**제70조 (짐의 보관과 처리)**

항안에는 짐을 오래 쌓아둘수 없다.

짐임자기관은 배에 실을 짐과 배에서 부린 짐을 항안에 립시로 보관시킬수 있다.

짐을 보관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보관료를 물어야 한다.

항운영기관은 정해진 기간안에 보관시킨 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수 있다.

**제71조 (짐의 넘겨주고 받기)**

항에서 짐을 넘겨주고 받는것은 운수기관과 짐임자대리기관사이, 짐임자대리기관과 항운영기관사이에 한다.

짐을 넘겨받은 기관은 넘겨줄 때까지의 기간에 자기의 잘못으로 생긴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72조 (짐의 수량 및 질에 대한 감정)**

항에서 배짐검수와 배짐감감정 같은 수량지표에 대한 감정은 국가검수기관이, 짐의 질적지표에 대한 감정은 대상에 따라 품질감독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국가검수기관과 품질감독기관, 해당 기관은 수량지표와 질적지표에 대한 감정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 제73조 (배운영물자와 식료품보장)

항기관과 해당 기관은 물, 연유, 부속품을 비롯한 배운영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봉사기관은 선원들에게 충분하고 문화적인 휴식조건을 지어주며 납새를 비롯한 식료품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74조 (무역항료금)

무역항료금은 중앙가격기관이 정한다.  
무역항료금은 항리용과 관련하여 배운영기관이 지불하는 항만비와 배짐의 상하선작업과 관련하여 짐입자기관이 지불하는 항작업료로 구분한다.  
항운영기관은 무역항료금을 공시하며 정해진 가격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제75조 (무역항료금의 청산)

무역항에서 료금의 계산과 청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만비의 계산과 청산은 배가 출항할때마다 하며 항수역에서 배의 정박이 30일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주기로 한다.
2. 항작업료의 계산과 청산은 짐입자가 항에 짐을 넣거나 찾아갈때마다 한다.
3. 다른 나라 배는 항만비를 배가 항에 도착하기 전에 지정된 은행을 통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 제76조 (국내운수항, 공업항, 어항, 려객항의 운영)

국내운수항, 공업항, 어항, 려객항의 운영은 따로 정한 법규에 따른다.

## 제5장 항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77조 (항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항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항만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해당 기관은 항만건설과 관리, 항운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 제78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배길표식물, 항만설비와 시설물을 손상, 파괴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79조 (몰수)

항만에서 다른 나라 배가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측심, 전파탐지 및 무선통신기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재 또는 배를 몰수할수 있다.

### 제80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50만~150만원, 국민에게 1만~10만원의 벌금을 부

과한다.

1. 항만시설을 설계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관리를 바로하지 않고 운영하였을 경우
2. 배길안내대기지점과 해상교통관리수역, 항수역에서 자원채취와 물고기잡이, 양어 및 양식장운영, 시설물의 설치를 비롯하여 배의 항해와 정박, 항만구조물의 보호 및 관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항수역을 오염시켰을 경우
4. 항설비 및 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
5. 항만료금의 계산과 청산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 제81조 (중지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중지처벌을 준다.

1. 준공검사, 운영허가를 받지 않고 항을 운영하는 경우
2. 항만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3. 국경검사, 검역, 검수, 항무감독질서를 어기고 무역항을 운영하는 경우

#### 제82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이 법 제12조를 어겼을 경우
2. 항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합의질서를 어겼을 경우
3. 승인없이 항만을 건설하는 경우
4. 선원, 려객, 배, 짐취급질서를 어겼을 경우
5. 항만료금을 정해진대로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앞항 1~5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 제83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무감독법

주체102(2013)년 10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98호로 채택  
주체104(2015)년 6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53호로 수정보충

## 제1장 항무감독법의 기본

### 제1조 (항무감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무감독법은 항무감독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항안에서 사람과 배, 항시설물의 안전을 보장하며 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이란 무역배가 나들고 정박할수 있는 국가가 정한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항에는 무역배를 취급하는 부두도 속한다.
2. 해상교통관리란 국가가 정한 일정한 수역에서 항해하는 배들에 대한 지휘를 말한다.
3. 해상무역장이란 해상에서 무역거래를 직접 할수 있도록 국가가 특별히 정한 일정한 수역을 말한다.
4. 입출항연합검사란 항과 해상무역장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배에 대하여 항무감독기관이 책임지고 국경통행검사, 세관검사, 국경검역기관이 해당 법규에 따라 진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 제3조 (항무감독기관의 설치)

국가는 항에 항무감독기관을 설치하고 항무감독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해상무역장에 대한 항무감독은 해당 수역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항무감독기관이 한다.

### 제4조 (항무감독기관의 임무와 권한)

항무감독기관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정해진 수역에서의 해상교통관리를 한다.
2. 배에 대한 입출항연합검사를 조직지휘한다.
3. 인원과 룬전기재의 항출입질서를 세운다.
4. 항수역경계, 가박지를 설정한다.
5. 항안에서의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을 한다.
6. 항시설물과 설비의 안전상태에 대한 감독을 한다.

7. 항안에서의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을 한다.
8. 배길표식물의 정상운영에 대한 감독을 한다.
9. 배길안내를 조직하고 감독한다.
10. 배의 입출항과 이동정형을 해당 기관에 통지한다.

**제5조 (항무감독과 항운영사업의 유기적결합원칙)**

항무감독과 항운영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항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항운영과 리용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항무감독기관과 항운영기관에 서로 긴밀히 협조하도록 한다.

**제6조 (항무감독일군의 자격)**

국가는 항무감독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항무감독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소유한자만이 될수 있다.

**제7조 (적용대상)**

이 법은 항을 리용하거나 항에서 일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외국투자기업과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다른 나라 법인,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8조 (항무감독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항무감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9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항무감독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2장 해상교통관리

**제10조 (해상교통관리체계의 수립)**

항무감독기관은 정해진 수역과 해상무역장(이 아래부터 ‘해상교통관리수역’이라고 한다.)에 서의 해상교통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상교통관리수역의 분담)**

해상교통관리는 해당 수역의 해양기상학적조건과 해상교통밀도, 관리내용에 따라 일정한 넓 이의 수역으로 나누어 한다.

해상교통관리수역을 분담하는 사업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해운지도기관이 한다.

**제12조 (해상교통지휘)**

항무감독기관은 담당한 수역의 필요한 장소에 해상교통관리초소를 내오고 배의 항해규칙준 수정형을 감시하며 해상교통지휘를 실시간으로 하여야 한다.

20n. mile안에 여러개의 항이 있을 경우 투묘대기지점의 할당이나 입출항같은 배의 이동과

관련한 해상교통지휘는 중앙해운지도기관이 정한 항무감독기관이 한다.

**제13조 (해상교통관리수역안의 항해규칙의 제정)**

항무감독기관은 해당 해상교통관리수역에만 적용되는 배의 정박지점이나 항해금지구역, 제한속도, 최적권고침로선, 의무적인 통행분리선같은 항해규칙을 정하고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포하여야 한다.

해상교통관리수역에만 적용되는 항해규칙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같은 일반항해규칙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제14조 (초단파대화기무휴통신의 유지, 배자동식별장치, 항해자료기록기의 가동)**

해당 배는 해상교통관리수역에서 이동, 정박, 짐작업에 관계없이 해상교통관리초소의 호출에 응답할수 있도록 초단파대화기무휴통신을 유지하며 배자동식별장치와 항해자료기록기를 항상 가동시켜야 한다.

초단파대화기나 배자동식별장치의 설치기준은 내각이 정한다.

**제15조 (배이동)**

해상교통관리수역에서 배는 항무감독기관의 지휘에 따라 이동, 정지, 투묘하거나 부두에 대고 떼야 한다.

기본배길에서는 배를 정지시키거나 투묘할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정지하거나 투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항무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배움직임에 대한 감시와 정박위치의 지정)**

항무감독기관은 해상교통관리수역에서 이동하거나 정박하고있는 모든 배의 움직임을 장악하고 항에 들어오는 배에 안전한 대기지점을 지정해주어야 한다.

**제17조 (해상교통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의무적인 통지)**

해당 기관은 해양기상, 해난구조, 항행경보, 해상 및 해저공사같은 해상교통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항무감독기관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해당 정보를 접수한 즉시 해상교통관리수역안의 모든 배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배의 요구에 의한 항해안전정보의 통지)**

항무감독기관은 배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항해안전에 필요한 다음의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1. 접근하는 배의 침로와 속도, 항해의도
2. 배길이나 변침점에 대한 배의 상대적위치
3. 위험짐수송배 또는 흘수, 조종성능이 제한된 배의 위치
4. 배에 조성될수 있는 위험정황
5. 수로안내원승선지점이나 수로안내순위

**제19조 (위험정황의 제거)**

항무감독기관은 배가 정해진 배길 또는 정박위치를 리탈하거나 위험 또는 금지수역으로 접근하거나 충돌위험이 조성되는 경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시를 할수 있다.

해당 배는 항무감독기관의 지시에 의무적으로 복종하여야 한다.

**제20조 (해상교통관리설비의 정상운영)**

항무감독기관은 초단파대화기, 배자동식별장치, 레이다, 폐쇄형감시카메라 같은 해상교통관리설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 (해상교통관리정형의 기록)**

항무감독기관은 해상교통관리정형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며 그 자료를 중앙해운지도기관에 제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상교통관리정형의 기록자료는 2년동안 보관하며 람발하거나 변경시킬수 없다.

**제22조 (해상교통관리정형기록자료의 보장)**

항무감독기관은 해상분쟁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재판소, 중재기관, 해난사고조사 처리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이나 분쟁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해상교통관리정형의 기록자료를 중앙해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보장할수 있다.

## 제3장 배와 짐작업에 대한 감독

**제23조 (입출항신청)**

항에 들어오거나 나가려는 배는 입출항예정 24시간전에 배운영기관 또는 외국배 대리기관을 통하여 항무감독기관에 입출항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입출항신청서에는 배의 이름, 국적, 선적항, 소속기관명, 배의 길이, 너비, 홀수, 총톤수, 순톤수, 기관출력, 짐종류와 수량, 대기지점도착예정시간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24조 (입출항승인)**

입출항신청서를 받은 항무감독기관은 항의 짐 및 배취급능력과 실을 짐의 준비상태, 배와 인원, 짐의 수속정형, 출항연합검사결과같은 것을 확인하고 입출항승인을 하여야 한다.

배는 항무감독기관의 승인없이 항에 나들수 없다.

**제25조 (입출항시간)**

배가 항에 나드는 시간은 날이 밝을 때부터 어두워질 때까지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해운지도기관과 국경통행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밤에도 나들수 있다.

**제26조 (다른 나라 배의 국기계양)**

다른 나라 배는 배길안내대기지점에 도착한 때부터 항에 있는 기간과 출항하여 배길안내대기

지점을 벗어날 때까지 배의 높고 잘 보이는 곳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선미에는 배등록국의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제27조 (위험짐을 실은 배의 입출항)**

위험짐을 실었거나 실으려는 배는 전용항 또는 해당 설비가 구비되어있는 항에만 나들며 항무감독기관이 정해준 위치에 정박하여야 한다.

위험짐을 실은 배는 눈에 잘 보이는곳에 낮에는 국제해상신호 B기발을 띄우며 밤에는 붉은색등을 켜야 한다.

**제28조 (배의 통보의무)**

항에 들어온 배는 항해중에 발견하였거나 자기 배에서 발생한 다음의 사항을 항무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1. 해난사고
2. 선원, 려객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문제
3. 각종 배길표식물의 파괴, 손상, 위치변경사실
4. 기타 항해에 지장을 줄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항무감독기관은 해당 사고처리기관에 통지받은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9조 (입출항연합검사대상)**

항에 나드는 다른 나라 배와 다른 나라로 나가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우리 나라 배는 입출항연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 동해안의 항에서 서해안의 항으로 또는 그 반대로 나드는 배도 입출항연합검사를 받는다.

**제30조 (입출항연합검사조직)**

입출항연합검사는 항무감독기관일군이 책임지고 국경통행검사, 세관검사, 국경검역, 외국배대리기관일군을 망라하여 조직한다. 이 경우 국경검역일군은 해당 검역대상의 짐을 기본으로 신고 입항하는 배, 외국배대리기관일군은 다른 나라 배의 련합검사에만 참가할수 있다.

입항연합검사를 받기 전에는 국경통행검사성원과 위생검역성원, 배길안내원, 출항연합검사를 받은 후에는 국경통행검사성원과 배길안내원외에 그 누구도 배에 오르거나 내릴수 없으며 짐작업을 할수 없다.

해당 검사기관은 입출항연합검사시 특수한 정황이 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무감독기관의 승인없이 개별적으로 배에 올라 검사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1조 (입출항연합검사장소)**

입출항연합검사는 가박지나 부두같은 항무감독기관이 정한 장소에서 한다.

**제32조 (입출항연합검사일정준수)**

항무감독기관은 입출항연합검사일정을 바로세우고 해당 검사기관들이 그것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입출항연합검사에 참가하는 기관들은 배의 크기와 선원수에 따라 검사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입출항연합검사일정준수와 관련한 항무감독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입출항연합검사에 참가하는 개별적검사기관의 검사방법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33조 (항무감독기관의 입출항연합검사방법)**

항무감독기관은 입출항연합검사시 배등록증서와 국제톤수증서, 최소안전정원증서 같은 배에 비치된 증서와 문건의 유효성과 해당 증서에 따르는 항해 및 인명안전설비와 짐작업설비, 환경보호설비의 설치 및 운영정형, 짐의 수송안전성, 항해준비정형 같은 것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결함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퇴치시키거나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제34조 (입출항연합검사대상이 아닌 배의 입출항검사)**

입출항연합검사대상이 아닌 배는 항에 나드는 경우 항무감독기관과 국경통행검사 기관의 입출항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출항허가증의 발급)**

항무감독기관은 출항연합검사가 끝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출항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항허가증은 당일에만 효력을 가진다.

출항허가증에는 중앙해양지도기관이 정한 유일번호를 밝히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와 함께 해당 항무감독기관의 명칭이 있는 공인을 찍는다.

출항허가증은 항무감독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비법적으로 발급할수 없다.

**제36조 (출항중지)**

항무감독기관은 다음의 경우 배의 출항을 중지시킬수 있다.

1. 해당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지적된 결함을 고치지 않았을 경우
2. 항의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3. 사고를 내었거나 사고에 관계되었을 경우
4. 만재잠김선을 초과하여 짐을 실었거나 려객을 태웠을 경우
5. 항만비용과 요금을 물지 않았을 경우
6. 입출항연합검사과정에 부과된 벌금을 물지 않았을 경우
7. 배와 짐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
8. 재판기관의 억류판정이 있는 경우
9. 연유, 식료품 같은 항해예비물자를 해당 항차보장에 필요한만큼 충분히 갖추지 못하

였을 경우

10. 기타 항무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7조 (배길안내조직)**

항해 나드는 배는 배길안내를 받으려 할 경우 항무감독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배길안내신청을 접수한 항무감독기관은 제때에 배길안내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38조 (배길안내를 하는 경우)**

항에 나드는 다른 나라 배는 의무적으로 배길안내를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 배는 선장이 요구할 경우 또는 항무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배길안내를 받는다.

배를 부두에 대거나 떼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배길안내를 받는다.

**제39조 (배길안내원과 선장의 의무와 책임)**

배길안내원은 배길안내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배길안내를 받은 선장은 배의 항해 및 조종상특성을 배길안내원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배길안내를 받는 배가 입었거나 그 배에 의하여 다른 대상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서는 배측이 책임진다.

**제40조 (짐작업에 대한 감독)**

항무감독기관은 배와 짐작업기관에 짐작업을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짐을 안전하게 싣고 부리도록 하여야 한다.
2. 만재잠금선을 초과하여 짐을 싣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실은 짐의 고무퍼기, 결박을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4. 위험짐과 유독성화학물질취급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5. 짐작업장소와 시간에 따라 조명을 비롯한 작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로동안전 및 화재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6. 짐의 류실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7. 짐작업이 끝난 다음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고체산적짐의 싣기)**

항무감독기관은 고체산적짐을 배에 싣는 경우 짐임자로부터 해당 짐의 수송수분한계증서와 수분함유량확인서를 받아 대조확인한 다음 짐싣기를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짐싣는 과정에 수분함유량이 확인서의 내용과 차이난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짐임자에게 수분함유량을 다시 확인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

수송수분한계증서는 해사감독기관이, 수분함유량확인서는 수출입품검사기관이 발급한다.

**제42조 (짐작업과정에 발생한 사고의 처리대책)**

배와 짐작업기관은 짐작업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항무감독기관에 알리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4장 항운영에 대한 감독

**제43조 (항운영)**

항을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과 합의하고 중앙해운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항을 운영하거나 배취급을 할수 없다.

**제44조 (항출입)**

항에 나들려는 외부 인원은 항무감독기관과 국경통행검사기관에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류전설비의 항출입도 앞항의 질서에 따른다.

**제45조 (승선 및 접선)**

항무감독기관과 국경통행검사기관의 승인없이 누구도 배에 오를수 없으며 배를 서로 접선시킬수 없다.

**제46조 (작업신청 및 승인)**

항안에서 다음의 작업을 하려 할 경우에는 항무감독기관에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의 기관 및 설비수리, 녹벗기기, 도색작업같은 배수리 및 정비작업을 할 경우
2. 선원훈련을 하려 할 경우
3. 발라스트물을 배출하려 할 경우
4. 위험짐을 싣거나 부리려 할 경우
5. 수중작업을 하려 할 경우
6. 기타 배와 항시설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줄수 있는 작업을 하려 할 경우

**제47조 (항수역과 배길의 유지보호)**

항무감독기관은 배길과 가박지, 부두수역에 대한 준첩을 정상적으로 하여 정해진 물깊이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길이나 가박지, 부두수역에 있는 장애물은 제때에 없애도록 한다.

**제48조 (계선설비의 보호)**

항무감독기관은 계선작업과 짐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현재, 계선주 같은 계선설비와 기재들을 정상적으로 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선설비와 기재가 없는 방파제, 방사제, 호안에는 배를 댈수 없다.

**제49조 (화재방지설비)**

항무감독기관은 항안에 있는 건물과 창고, 배에 있는 소화설비와 기재들을 규정의 요구대로 갖추고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인화성물질취급)**

항무감독기관은 폭발성 및 인화성물질의 취급을 규정의 요구대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 (화재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재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항무감독기관과 항소방대에 알리고 정해진 신호를 하여야 한다.

**제52조 (진화대책)**

항무감독기관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불을 끄기 위한 필요한 모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항안에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항무감독기관의 조직사업에 따라 불끄기에 의무적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항무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라 불이 난 배와 짐을 물속에 가라앉힐수 있다.

**제53조 (구조작업)**

항무감독기관은 항수역에서 해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적인 해난구조체계에 따라 제때에 구조작업을 조직지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설탐색구조조정위원회에 통보한다.

항안에 있는 해난구조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구조작업에 동원될데 대한 항무감독기관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4조 (난파선의 제거)**

배임자 또는 물건임자는 난파선이나 난파물을 항무감독기관이 정한 기간안에 건져내어 지정된 장소로 내가야 한다.

난파선이나 난파물의 제거작업을 하려는 시공자는 시공계획과 방안을 항무감독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은 조건에서만 할수 있다. 이 경우 기름오염방지와 관련한 해사감독기관의 담보를 미리 받아야 한다.

난파선이나 난파물을 정한 기간안에 제거하지 못하였을 경우 항무감독기관은 다른 시공자를 선정하여 제거하게 한 다음 그 비용을 배임자 또는 물건임자로부터 회수하여 보상해준다.

**제55조 (오염방지대책)**

항무감독기관은 항안의 오물처리시설과 설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배 또는 짐취급 과정에 항구내와 항수역에 오물을 버리거나 기름, 오수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 (위생관리)**

항무감독기관은 항안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건물과 설비, 도로와 마당, 일터를 늘

깨끗이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를 하지 않은 화차와 룬전기재는 항안에 들어올수 없으며 항안에서 화차와 룬전기재를 정비하거나 수리하려 할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제5장 항무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57조 (항무감독사업에 대한 지도)

항무감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은 항무감독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의 항무감독부서는 대외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무감독국으로 활용하며 기본공인을 가진다.

### 제58조 (항무감독사업에 대한 협력)

국경통행검사, 세관검사, 국경검역, 수출입품검사, 무역화물검수, 해사감독, 외국배대리기관은 항무감독기관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9조 (인증)

항무감독기관은 항에 들어온 배의 선장이 요구하는 경우 해난보고서와 항해일지, 기관일지같은 항해기록문건에 대한 인증을 해줄수 있다.

### 제60조 (자격심사)

항무감독일군은 3년에 한번씩 중앙해운지도기관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심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항무감독일군으로 일할수 없다.

### 제61조 (손해보상)

이 법을 어겨 인명사고를 발생시켰거나 항시설물과 설비, 배, 배길표식물, 짐에 피해를 주었거나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손해보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해사중재 또는 해사재판절차로 해결한다.

### 제62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해상교통관리수역에서 항무감독기관의 승인없이 정지, 투묘하였거나 항해규칙을 어겼을 경우
2. 항무감독기관의 해상교통지휘에 복종하지 않아 항해사고위험을 조성하였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주었을 경우
3. 초단파대화기호출에 제때에 응답하지 않거나 배자동식별장치를 가동시키지 않아 해상

교통지휘를 할수 없게 하였을 경우

4. 입출항연합검사질서를 어겨 배와 항운영에 지장을 주었거나 대외적권위를 훼손시켰을 경우
5. 의무적배길안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였을 경우
6. 수송수분한계증서와 수분함유량확인서를 위조하여 수분함유량이 초과되는 짐을 실었을 경우
7. 배 및 짐취급질서를 어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주었을 경우
8. 해난구조, 난파선제거와 관련한 항무감독기관의 지시를 거부하였을 경우
9. 항구내와 항수역에 오수, 오물을 버리거나 배출시켜 물과 대기를 오염시켰을 경우

**제63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6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해사감독법

|              |         |                              |
|--------------|---------|------------------------------|
| 주체86(1997)년  | 9월 24일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7호로 채택      |
| 주체88(1999)년  | 1월 2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2호로 수정    |
| 주체93(2004)년  | 6월 2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
| 주체95(2006)년  | 10월 3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1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0(2011)년 | 12월 2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2(2013)년 | 7월 2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9(2020)년 | 1월 3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8호로 수정보충  |

### 제1장 해사감독법의 기본

#### 제1조 (해사감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감독법은 해사감독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바다, 하천, 호소에서 사람의 생명과 배의 안전을 보장하며 배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원이란 해사감독기관에 등록되고 배의 해당한 직무에서 일하거나 대기하고있는 인원을 말한다.
2. 배란 물우 또는 물속에서 수송이나 기타 경제활동에 쓰이는 모든 형태의 부유구조물의 총체를 말한다.  
배에는 고정 및 이동식해상시추구조물도 속한다.
3.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란 배운영 및 선원관리와 관련하여 해사부문법규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지닌 배소유자나 배소유자로부터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넘겨받기로 합의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빈배용선기관, 기업소, 단체를 말한다.
4. 우리 나라 수역이란 하천과 호소를 포함하여 국가가 정한 경제수역으로서 령해의 기산선으로부터 200n·mile이며 200n·mile을 그을수 없는 수역에서는 바다반분선까지의 수역을 말한다.
5. 국내항해란 하천, 호소를 포함한 우리 나라수역에서의 항해를 말한다.
6. 국제항해란 우리 나라의 항구와 다른 나라의 항구사이 또는 다른 나라항구들사이의 항해를 말한다.
7. 우리 나라배란 우리 나라 배등록기관에 등록된 배를 말한다.

8. 다른 나라배란 다른 나라 배등록기관에 등록된 배를 말한다.

**제3조 (해사감독체계의 수립원칙)**

국가는 해사감독체계를 바로세우고 해사감독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도록 한다.

**제4조 (해사감독사업의 강화원칙)**

해사감독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해사감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는다.

**제5조 (해사감독기준의 제정 및 준수원칙)**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해사감독기준을 바로 정하고 엄격히 준수하도록 한다.

해사감독기준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세우고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6조 (해사감독사업의 과학성, 객관성, 신속성 보장원칙)**

국가는 해사감독사업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 (해사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해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적용대상)**

이 법은 배의 항해안전과 배에 의한 오염방지와 관계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배에 적용한다.

군함 및 경기용 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 (해당 법규의 적용)**

해당감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나라의 해당 법규 또는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해사협약에 따른다.

## 제2장 해사감독체계의 수립

**제10조 (해사감독기관)**

해사감독기관은 국가의 해사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앙해사감독기관과 지방해사감독기관으로 구분한다.

해사감독기관에는 중앙해사감독기관에 소속된 해당 전문기관도 속한다.

해사감독기관은 해사감독부문의 정책과 해당 법규의 요구에 맞게 해사감독사업을 엄격히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중앙해사감독기관)**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나라의 해사감독부문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중앙기관으로서 중요해사감독사업을 직접 맡아하며 지방해사감독기관의 사업을 지도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대외적으로 해사감독부문을 대표하여 활동한다.

**제12조 (해사감독부문법규집행을 위한 세칙, 지도서 작성)**

중앙해사감독기관은 국가의 해사감독정책과 해사감독부문법규집행을 위한 세칙, 지도서 같은것을 제때에 작성시달하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완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해사협약의 요구에도 맞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방해사감독기관)**

지방해사감독기관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의 지도밑에 자기 관할지역의 해사감독부문사업을 맡아수행하는 기관이다.

지방해사감독기관에는 도(직할시)와 시(구역), 군해사감독기관이 속한다.

**제14조 (해사감독부문의 해당 전문기관)**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해사감독사업에 필요한 전문기관을 내올수 있다.

해사감독사업에 필요한 전문기관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절차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5조 (단속초소)**

중앙해사감독기관은 해사감독사업을 위하여 지방해사감독기관 아래에 단속초소를 내온다.

**제16조 (비상설국가해사감독위원회)**

해사감독부문의 정책과 법규집행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토의대책하기 위하여 내각에 비상설국가해사감독위원회를 둔다.

비상설국가해사감독위원회의 실무보장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제17조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

해상탐색 및 구조의 통일적인 지휘를 위하여 중앙해사감독기관에 비상설로 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를 둔다.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는 해사감독기관, 국가계획기관, 배운영기관, 항, 부두, 포구 운영 및 관리기관, 보건기관, 체신기관, 기상수문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의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8조 (해사감독일군)**

해사감독일군은 해사감독사업의 직접적담당자로서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될수 있다.

해사감독일군의 자격기준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 제3장 배의 등록

### 제19조 (배등록기준의 제정)

배등록기준제정은 배등록을 바로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의 등록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적요구와 법적요구, 국제적기준에 맞게 배등록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에 준하여 배등록사업을 하여야 한다.

### 제20조 (배등록의 구분)

배등록은 국내항해배와 국제항해배, 우리 나라 국적을 취득한 다른 나라 배의 등록으로 구분하여 한다.

먼바다물고기잡이배의 등록은 국제항해등록에 속한다.

### 제21조 (배등록의 종류)

배등록에는 첫등록과 변경등록, 등록삭제, 등록정지, 소유권등록, 저당권등록이 있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준비하여야 할 문건종류와 양식 같은것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 제22조 (배등록 및 폐선을 위한 기술검사)

배를 등록 및 폐선하려는 경우에는 해사감독기관의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등록 및 폐선하려는 배의 기술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지해주어야 한다.

### 제23조 (배구입전 기술상태평가)

다른 나라에서 배를 구입하려 하거나 1년이상의 기간으로 빈배용선하려는 경우 해사감독기관은 그 배에 대한 기술상태평가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배를 넘겨주거나 받는 경우에도 신청에 따라 배기술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 제24조 (배등록신청 및 심의)

배의 등록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청에 따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를 신청문건에 대한 심의, 배기술검사결과에 대한 심의, 배의 소유관계에 대한 심의로 나누어 엄격히 하여야 한다.

### 제25조 (배등록심의와 관련한 자료요구 및 확인)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와 관련하여 배의 국적, 소유관계같은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하거나 국제기구, 다른 나라 해사기관 또는 공증기관을 통하여 확인할수 있다.

**제26조 (배등록의 승인 또는 부결)**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에서 배등록기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정확히 심의하고 배의 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배등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혀 배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배등록부와 배자료의 기록)**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부를 갖추고 승인된 배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의 등록날자와 이름, 선적항, 총톤수와 순톤수, 종류, 등록번호, 국제해사기구번호, 호출부호, 해상이동봉사 식별번호, 배소유 및 운영관계, 채권채무관계, 저당관계, 배의 연혁자료, 기술제원 같은 배자료도 함께 기록한다.

**제28조 (배이름제정과 선적항지정)**

배는 하나의 이름과 선적항을 가진다.

배이름제정, 선적항지정과 관련한 원칙과 방법 및 절차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제29조 (배등록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 국적으로 등록된 국내항해배에 유효기간이 4년인 배등록 및 운항증서를, 국제항해배에 유효기간이 5년인 배등록증서를 발급하며 변경등록한 배에 대하여서는 해당 증서를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수역에서 어로작업을 비롯한 경제활동 및 과학연구를 하려는 다른 나라 배에는 정해진 기간의 임시배등록증서를,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수속중에 있는 배, 수리, 폐선, 매매를 목적으로 정해진 장소에로 항해하려는 배에는 유효기간이 6개월이하인 임시배등록증서를 발급한다.

**제30조 (배의 등록삭제)**

해사감독기관은 다음의 경우 배를 등록에서 삭제한다.

1.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등록삭제를 신청한 경우
2. 등록된 배가 현물이 없거나 5개월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3. 국가의 리익에 저촉되게 운영하거나 허위로 등록된 경우

**제31조 (배의 최소안전정원증서의 발급)**

등록된 배의 최소안전정원수는 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최소안전정원수를 배의 크기와 구조, 기관의 수량, 출력, 기술장비, 항해거리 같은것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안전정원수를 국내항해배에는 배등록 및 운항증서에, 국제항해배에는 최소안전정원증서에 밝혀준다.



### 제32조 (연혁기록부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국적, 배이름, 선적항, 소유 및 운영관계, 선급같은 등록자료의 변경정형을 기록한 배경력서 또는 배연혁기록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항해배에는 배경력서를, 국제항해배에는 연혁기록부를 발급한다.

## 제4장 선원등록과 선원기술자격심사

### 제33조 (선원등록기준제정)

선원등록기준제정은 선원등록을 바로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선원의 등록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적요구와 법적요구, 국제적기준에 맞게 선원등록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에 준하여 선원등록사업을 하여야 한다.

### 제34조 (선원건강 및 신체능력평가)

해사감독기관은 선원의 건강 및 신체기준을 바로정하고 그에 따라 선원건강 및 신체능력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원건강평가는 보건기관의 신체검사결과에 따른다.

선원건강 및 신체능력기준에 맞지 않는 성원은 선원으로 될수 없다.

### 제35조 (선원양성기관의 교육 및 훈련과정안)

선원양성기관은 교육 및 훈련과정안을 선원교육 및 훈련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선원양성기관의 선원교육 및 훈련기준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 제36조 (선원훈련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선원에 대한 훈련평가를 진행하고 합격된 성원에게 해당한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서유효기간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 제37조 (선원등록심)

해사감독기관은 선원등록을 신청한 성원에 대하여 선원양성기관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정형, 신체검사를 받은 정형, 훈련평가를 받은 정형같은것을 선원등록기준에 준하여 심의하고 선원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선원등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8조 (선원의 등록구분)

해사감독기관은 선원등록심의에서 승인된 선원을 국내항해배의 선원과 국제항해배의 선원으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면바다물고기잡이배의 선원은 국제항해배의 선원으로 등록한다.

**제39조 (선원등록의 종류)**

선원등록에는 첫등록, 변경등록, 등록삭제가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등록종류에 따라 절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고 선원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40조 (선원등록부와 선원자료의 기록)**

선원등록은 선원등록부에 하며 이 경우 지휘선원과 일반선원으로 갈라 선원의 이름, 난날, 등록번호, 소속기관, 배이름 및 직무, 훈련받은 정형을 비롯한 선원자료도 함께 기록한다.

**제41조 (선원증, 선원신분확인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첫등록된 선원에게 유효기간이 5년인 선원증을 발급한다. 그러나 변경등록된 경우에는 발급된 선원증에 해당 변경내용을 밝혀준다.

우리 나라 배에 승선하려는 다른 나라 선원에게는 해당 나라에서 발급한 선원증과 자격증같은것을 확인하고 선원신분확인증서를 발급한다.

**제42조 (선원기술자격기준)**

선원기술자격기준은 국내항해배선원기술자격기준과 국제항해배선원기술자격기준으로 구분한다.

선원기술자격기준은 해사부문법규와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해사협약의 요구에 맞게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제43조 (선원기술자격심사의 구분)**

선원기술자격심사는 항해부문, 기관부문, 무선통신부문, 전기부문, 배길안내부문의 선원기술자격심사로 구분하여 한다.

선원기술자격심사에는 제자리급수심사와 올라가는 급수심사가 속한다.

**제44조 (선원기술자격시험응시대상의 확인)**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시험응시대상에 대하여 선원교육 및 훈련을 받은 정형, 승선경력, 견습을 받은 정형같은것을 해당 기준에 준하여 확인하고 선원기술자격시험에 응시시켜야 한다.

**제45조 (선원기술자격심사)**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심사절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고 선원의 기술자격기준에 준하여 선원의 기술자격을 정확히 심사하여야 한다.

선원기술자격심사결과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지한다.

**제46조 (기술자격선원의 등록)**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등록부를 갖추고 해당 기술자격심사에서 합격된 선원을 해당한 급수에 맞게 기술자격선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원의 이름, 난날, 등록번호, 자격

관계를 비롯한 해당 자료를 함께 기록한다.

**제47조 (선원기술자격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제자리 또는 올라가는 선원기술자격시험에 합격된 선원에게 유효기간이 5년인 선원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국제항해배에서 항차중에 사망, 급병 같은 이유로 지휘선원이 결원되었을 경우에는 그 직무에 한급 낮은 직무를 가진 지휘선원에게 유효기간이 6개월이하인 해당항 립시선원기술자격증을, 선장, 기관장, 무선통신사의 직무에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하인 립시선원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제48조 (다른 나라 선원의 기술자격증 또는 보증서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선원양성, 자격증명 및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나라 선원에게 우리 나라의 선원기술자격증, 선원훈련증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나라에서 발급한 선원기술자격증을 인정하는 보증서를 발급할수 있다.

## 제5장 배설계문건의 승인과 배건조검사

**제49조 (공정승인기준의 제정)**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작업 및 생산공정에 대하여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공정승인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에 준하여 작업 및 생산에 대한 공정승인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50조 (공정승인대상)**

공정승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배건조와 개조, 수리에 리용하는 설계공정
2. 배의 건조, 개조, 수리공정
3. 배재료와 기관, 의장품생산공정
4. 배설비 또는 부분품에 대한 기술봉사공정

**제51조 (공정승인기준의 내용)**

공정승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배설계기관은 배를 설계할수 있는 기술력량, 설계수단을 비롯한 설계능력을 해당 규칙에 맞게 갖추어야 한다.
2. 배건조 및 수리, 운영기관은 배건조와 수리를 할수 있는 기술력량, 설비와 수단, 건조 및 수리구역을 해당 규칙에 맞게 갖추어야 한다.

3. 배재료와 기관, 의장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체계와 규모, 기술력량, 설비를 해당 규칙에 맞게 갖추고 해당 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4. 배기술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규모와 특성에 따라 해당 규칙의 요구에 맞는 봉사체계와 기술력량, 봉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2조 (공정승인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공정승인기준에 따라 배의 건조, 개조, 수리와 관련한 해당 작업 및 생산공정을 정확히 평가하고 합격된 경우 공정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공정승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정의 유지정형을 년차별로 확인한다.

**제53조 (배설계문건의 심의)**

해사감독기관은 배설계문건이 해사부문의 기술규칙과 규격, 기술경제적효과성, 국가의 정책을 비롯하여 배설계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를 준수하였는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54조 (배설계문건의 구분)**

배설계문건은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재료, 기관, 의장품을 제작 수리하려는 설계도면과 기술문건으로 구분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설계문건별로 심의받아야 할 설계도면과 기술문건을 정해주어야 한다.

**제55조 (배설계문건의 승인 또는 부결)**

해사감독기관은 배설계문건을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며 승인된 설계문건에 유효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설계문건으로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재료, 기관, 의장품을 제작, 수리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56조 (배설계문건의 재심의)**

유효기간이 지난 설계문건 또는 수정한 설계문건으로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재료, 기관, 의장품을 제작,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문건에 대한 해사감독기관의 심의를 다시 받는다.

**제57조 (배건조검사의 구분)**

배의 건조검사는 공정검사, 기관 및 의장품검사, 시운전검사로 구분한다.

해사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배의 건조공정계획과 건조검사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건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58조 (공정검사)**

공정검사는 배의 건조, 개조, 수리의 시작으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설계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는가를 공정별로 확인하는 검사이다.

해사감독기관은 공정검사를 직접 하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로 진행하는 공정검사에

립회하는 방법으로 할수 없다.

공정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공정의 작업을 할수 없다.

#### 제59조 (기관 및 의장품검사)

기관 및 의장품검사는 배에 설치할 기관과 의장품의 제작으로부터 배에 설치하기전까지의 과정에 대한 검사이다.

해사감독기관은 기관과 의장품에 대한 검사를 직접 하거나 그에 대한 품질증서를 확인하거나 해당 품질감독기관에 의뢰하여 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

#### 제60조 (시운전검사)

시운전검사는 건조, 개조, 수리가 끝난 배에 대하여 배의 기술적성능이 설계문건의 요구에 맞는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해사감독기관은 시운전검사를 경사시험, 계류시운전, 항해시운전의 방법으로 할수 있다.

#### 제61조 (건조검사결과에 대한 처리)

해사감독기관은 건조검사를 진행한 결과 합격된 부분이나 완성품에 대하여서는 합격증을 발급 하거나 검사표식을 하며 불합격된 공정에 대하여서는 퇴치할 내용과 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 제62조 (발명, 창의고안,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

배 또는 배설계에 발명, 창의고안, 프로그램 같은것을 새로 도입하려 할 경우에는 해사감독 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이 경우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항해안전과 해당 기술규칙의 요구에 맞는가를 검토하고 합의해주어야 한다.

## 제6장 운항배의 검사

#### 제63조 (운항배의 검사요구)

운항배의 검사는 운항하는 배의 선체와 기관, 의장품에 대한 측정 및 시험, 확인을 통하여 안전상태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해사감독기관은 운항배에 대한 배안전법규와 해당 기술규칙의 준수정형을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 제64조 (운항배검사의 구분)

운항배의 검사는 국내항해배와 국제항해배로 구분하여 해당 기술규칙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배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을 비롯한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해사협약에 준하여 검사한다.

#### 제65조 (운항배의 검사종류)

국내항해배의 검사는 초기, 년차, 중간, 정기, 갱신검사로, 국제항해배의 검사는 초기, 년차,

중간, 갱신, 정기검사와 선저외판검사로 구분하여 한다.

**제66조 (추가검사)**

해사감독기관은 운항배의 항해감당력에 영향을 주거나 해난사고로 배를 개조 또는 수리하거나 해체, 판매하는것과 같은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검사를 할수 있다.

**제67조 (운항배검사신청)**

운항배의 검사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청에 따라 한다.

신청문건이 불비하거나 검사준비가 되지 못한 배에 대하여서는 운항배검사를 할수 없다.

**제68조 (운항배검사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운항배검사에서 합격된 국내항해배와 국제항해배에 해당한 증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한 증서에 검사확인경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배에는 해당 국제해사협약에 따르는 증서도 발급한다.

다른 나라 해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운항배검사를 한 다른 나라 배에도 해당 증서를 발급할수 있다.

**제69조 (협약적용면제증서발급)**

해사감독기관은 배가 필요에 따라 한 항차만 국제항해하는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 배의 안전항해, 오염방지가 담보되는 조건에서 국제해사협약의 적용면제증서를 발급할수 있다.

**제70조 (운항배의 개조, 변경, 수리)**

개조, 변경, 수리하려는 운항배는 정해진데 따라 해사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배설계문건에 대한 승인과 해당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1조 (다른 나라에서 운항배검사)**

다른 나라수역에서 항해하는 우리 나라 배의 검사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그에 대한 검사는 우리 나라 해사대표기관이 한다.

우리 나라 해사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직접하거나 다른 나라 해사기관에 의뢰하여 할수 있다.

**제72조 (보험검사)**

보험검사는 보험에 들러는 배의 기술상태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보험기관의 신청에 따라 보험에 들러는 배에 대한 기술상태를 평가하고 해당 보고서를 발급할수 있다.

## 제7장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검열

### 제1절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의 안전관리검열

#### 제73조 (안전관리검열요구)

안전관리검열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가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안전관리체계를 세우고 리행하고있는가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안전운영과 배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수 있는 안전관리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에 준하여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에 대한 안전관리검열을 하여야 한다.

#### 제74조 (안전관리검열의 구분)

안전관리검열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에 대한 안전관리검열로 구분하여 초기, 년차, 중간, 갱신, 추가검열의 방법으로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안전관리기준을 정확히 알려주어 그에 맞는 준비사업을 바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5조 (안전관리체계의 수립과 리행정형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가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배의 안전운영과 해상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확히 리행하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 제76조 (안전관리검열신청)

안전관리검열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청에 따라 한다.

안전관리검열을 받으려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이 제기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안전관리검열을 할수 있다.

#### 제77조 (안전관리상결합퇴치요구)

해사감독기관은 안전관리검열과정에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가 안전관리체계를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세우지 않았거나 그 리행을 바로하지 않을 경우 운영을 중지시키고 결합을 퇴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8조 (안전관리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에 안전관리검열결과에 따르는 해당한 증서를 발급하거나 유효기간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가 6개월이상 안전관리체계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주기적인 안전관리검열을 제때에 받지 않을 경우에는 리행증서 또는 안전관리증서의 효력을 무효시킨다.

**제79조** (다른 나라 배 또는 배운영기관에 대한 안전관리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해사기관의 신청에 따라 다른 나라 배 또는 배운영기관에 대한 안전관리검열을 하고 해당 증서를 발급하거나 확인해줄수 있다.

**제80조** (안전관리일군증서발급)

해사감독기관은 안전관리일군의 자격을 평가하고 해당 성원에게 안전관리일군증서를 발급하거나 확인해주어야 한다.

**제81조** (해상로동 및 생활조건보장정형에 대한 평가와 증서발급 및 확인)

해사감독기관은 국제항해배에서 선원의 해상로동 및 생활조건보장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리행하는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증서를 발급하거나 확인해주어야 한다.

**제82조** (선원관리체계의 확인과 증서발급)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배에 우리 나라 선원을 승선시키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선원관리기준에 맞게 선원관리체계를 세우고 리행하는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증서를 발급하거나 확인해주어야 한다.

## 제2절 배 및 항시설의 안전보장검열

**제83조** (배 및 항시설에 대한 안전보장검열요구)

배 및 항시설에 대한 안전보장검열은 국제항해배와 무역항이 안전보장기준에 맞게 안전보장체계를 세우고 리행하고있는가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 및 항시설에 대한 안전보장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에 준하여 국제항해배와 무역항에 대한 안전보장검열을 하여야 한다.

**제84조** (안전보장등급설정)

배와 항시설에 위협을 주는 정도에 따라 안전보장등급을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제85조** (안전보장일군)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배는 배안전보장계획의 리행과 유지를 위하여 해당 성원으로 안전보장일군을 정한다. 이 경우 안전보장일군은 겸직으로 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안전보장일군의 자격기준을 바로정하고 기준에 맞는 성원에게 해당한 증서를 발급하거나 확인해주어야 한다.

**제86조** (안전보장계획의 승인)

배는 위협으로부터 선원 또는 려객, 화물, 선용품 또는 배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장계획을 작성하며 항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설비와 배, 인원, 화물, 화물수송기재, 선용품을 보호하기 위한 항시설안전보장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장계획은 해사감독기관의 검토승인을 받는다.

**제87조 (안전보장검열방법, 증서발급)**

안전보장검열은 배에 대한 안전보장검열과 무역항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항시설안전보장검열로 구분하여 초기, 중간, 갱신, 추가검열의 방법으로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 및 무역항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청 또는 필요에 따라 안전보장검열을 진행하고 해당 증서를 발급하거나 확인해주어야 한다.

**제88조 (안전보장신고서 작성)**

안전보장일군은 배가 항시설이나 다른 배와 접촉 시 사람과 재산, 환경에 줄수 있는 위험성 정도에 따라 안전보장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장신고서의 작성절차와 방법은 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제89조 (배안전보장경보)**

배는 접촉하는 항시설이나 다른 배에서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배안전경보신호를 보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에서 보내는 배안전보장경보를 제때에 접수하고 즉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90조 (다른 나라 배에 대한 안전보장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해사기관의 신청에 따라 다른 나라 배에 대한 안전보장검열을 하고 해당증서를 발급하거나 확인해줄수 있다.

## 제8장 배에 의한 오염방지

**제91조 (배에 의한 오염방지요구)**

해사감독기관은 배에 의한 오염방지기준을 바로 정하고 배에 의한 오염을 미리 막도록 하여야 한다.

**제92조 (오염방지를 위한 배의 구조, 설비, 장치)**

배구조와 설비, 장치는 배에 의한 오염을 미리막을수 있도록 해당 기술규칙에 맞게 설계, 건조,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오염방지와 관련한 규칙, 기준을 환경보호관련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의 요구에 맞게 정하고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3조 (배오염물질의 종류와 처리기준작성)**

배의 오염물질에는 기름, 유독성액체물질, 유해물질, 오수, 오물을 비롯하여 바다, 강, 호소와 대기를 오염시켜 사람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는 물질이 속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르는 오염물질관리기준과 배출기준을 바로 정하

여야 한다.

**제94조 (계획에 따르는 오염물질의 관리)**

배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염물질과 발라스트물 및 침전물취급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오염물질과 발라스트물 및 침전물취급과 관련한 계획을 해당 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의 요구에 준하여 승인하거나 합의해주어야 한다.

**제95조 (배의 오염방지문건과 그에 대한 확인)**

배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오염방지와 관련하여 작성한 계획, 오염물질처리와 관련한 기록부, 확인서같은 오염방기관관련문건이 있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갖추어야 할 오염방기관관련문건의 종류와 기록방법을 정해주고 그 정형을 정상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배의 오염방기관관련문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한것으로 취급한다.

**제96조 (발라스트물 및 침전물의 처리)**

해사감독기관은 발라스트물 및 침전물처리설비의 설치 및 처리기준을 바로 정하고 배가 발라스트물 및 침전물을 정해진대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7조 (배오염물질 접수시설의 설치)**

배의 오염물질은 항, 부두, 포구, 갑문의 접수시설에 넘겨 처리한다.

해사감독기관은 항, 부두, 포구, 갑문에 갖추어야 할 오염물질접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바로정하고 오염물질을 정해진 기준대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8조 (배의 기관, 설비, 장치에 의한 대기오염방지)**

해사감독기관은 대기오염을 발생시킬수 있는 기관, 설비, 장치의 운영기준과 연유의 리용기준을 바로 정하고 대기오염물질이 방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연유공급단위를 등록하고 등록된 단위에서 연유를 공급하는 배연유공급체계를 세우며 공급한 연유에 대한 검증확인문건과 연유이송장, 견본시료를 배에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99조 (배의 건조 및 수리, 해체시 오염방지)**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건조 및 수리, 해체와 같은 작업과정에 생기는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기준을 바로 정하고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100조 (배해체의 승인)**

배의 해체작업은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해체하려는 배를 검사하고 해당한 증서를 발급해주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해체능력을 평가하고 승인증서를 발급해주어 해체작업이 승인된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록 하여야 한다.

**제101조 (난파선제거시 오염방지)**

난파선제거작업은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난파선제거능력을 평가하고 기준에 맞는 경우 능력확인증서를 발급하고 제거작업이 승인된 난파선제거방안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2조 (선체칠감에 의한 오염방지)**

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칠감은 배의 선체칠감으로 리용할수 없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에 리용할 선체칠감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 리용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103조 (난파선제거 및 배연유오염피해에 대한 담보확인)**

해사감독기관은 난파선제거 또는 배연유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수 있다는 재정담보증서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민사책임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증서유효기간은 재정담보증서의 유효기간과 같다.

**제104조 (배기름오염비상대응체계)**

중앙해사감독기관은 기름오염사고등급에 따르는 배기름오염비상대응체계를 세우고 기름오염사고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들과 연계하여 오염제거사업을 조직지휘하여야 한다.

## 제9장 운항배에 대한 통제

**제105조 (운항배의 통제요구)**

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 항, 부두, 정박지, 내륙수역과 경제수역에서 항해, 정박, 작업하는 우리 나라 배와 다른 나라 배가 해사부문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을 준수하도록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제106조 (운항배의 통제방법)**

운항배의 통제는 우리 나라 배의 출항전검사, 다른 나라 배의 검열, 해당 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을 위반한 배에 대한 단속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107조 (출항전검사)**

배는 매 항차마다 해사감독기관의 출항전검사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 시기 출항전검사와 기항국검열에서 제기되지 않은 배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기간 출항전검사를 하지 않는다.

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 배의 지난 시기 출항전검사와 기항국검열정형을 분석하여 출전검사를 할 대상과 하지 않을 대상을 정하고 제기된 배에 대하여 출항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108조 (다른 나라 배검열)

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해사협약에 따라 다른 나라 배의 최소안전정원배치 및 선원직무수행능력과 배 및 선원관련증서지참정형, 문건의 유효성과 리용정형, 선체와 구조를 비롯한 배설비 및 장치들의 유지관리상태에 대한 검열을 하여야 한다.

증서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배, 설비 또는 선원이 국제해사협약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과 같은 사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세부적인 검열을 할수 있다.

#### 제109조 (결함이 나타난 배의 처리)

해사감독기관은 출항전검사와 다른 나라 배검열과정에 결함이 나타났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

1. 배의 안전항해, 오염방지와 관련하여 나타난 결함이 경할 경우에는 퇴치시키고 출항시킨다.
2. 배의 안전항해, 오염방지와 관련한 설비 및 장치가 심하게 고장났거나 해당 증서유효기간이 지난 것과 같은 결함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출항을 중지시킨다.
3. 다른 나라 배인 경우에는 나타난 결함의 정도에 따라 국제해사협약의 요구에 맞게 퇴치조건을 주어 출항시킬수 있다.
4. 기타 해당 법규에 따르는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 제110조 (결함퇴치)

이 법 제109조 2호에 따라 출항이 중지된 배는 나타난 결함을 퇴치하고 해사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 출항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부당한 조건으로 배의 출항을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 제111조 (단속통제)

해사감독기관은 항해구역의 리탈, 오염행위, 배충돌위험조성같은 해당 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배에 올라 문건 및 설비검열, 위법행위조사와 같은 단속통제사업을 할수 있다.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해당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 제112조 (다른 나라 배의 출항중지 및 해제와 관련한 서면통지)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배에 대한 출항중지 및 해제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그와 관련한 서면통지서를 다른 나라 배대리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제출하며 그 사실을 해당 국제기구와 배국적국의 해사기관, 배국적국의 위임에 따라 증서를 발급한 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3조 (다른 나라 배의 입항거절)

국제안전보장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보호에 위협으로 되는 배와 같이 국제해사협약에 맞지 않는 다른 나라 배는 입항할수 없다. 이 경우 중앙해사감독기관은 입항거절과 관련한

내용을 국제해사기구와 배가 소속한 나라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장 해상탐색 및 구조조종

### 제114조 (해상탐색 및 구조조종요구)

해상탐색 및 구조조종은 바다, 하천, 호소에서 조난당한 사람과 배를 구원하고 필요한 방조를 제공하기 위한 구조지휘활동이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을 내오고 그를 통하여 해상탐색 및 구조조종을 진행한다.

### 제115조 (조난의 등급구분)

조난은 그 종류와 범위, 수역에 따라 1급조난, 2급조난, 3급조난으로 구분한다.

조난의 등급기준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 제116조 (해상탐색 및 구조조종체계의 수립)

중앙해사감독기관은 조난발생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사람과 배, 짐을 구조하고 필요한 방조를 제공하기 위한 해상탐색 및 구조조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조난에 신속히 대처해나가야 한다.

### 제117조 (비상대응계획의 작성 및 승인)

비상대응계획은 전국적인 비상대응계획과 지역별 비상대응계획으로 구분한다.

전국적인 비상대응계획은 비상설중앙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가 작성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으며 지역별 비상대응계획은 지역별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가 작성하여 웃단위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118조 (조난등급의 확정과 비상대응)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조난경보가 발생하면 조난의 정확성을 식별, 분석하고 해사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조난등급을 확정하고 비상대응의 개시와 해제를 선포하여야 한다.

### 제119조 (구조조종 및 구조)

구조조종 및 구조는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진행한다.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는 구조력량과 수단의 동원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 대책하여야 한다.

### 제120조 (다른 나라와의 구조협력)

비상설중앙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는 국제기구, 다른 나라와 해상탐색 및 구조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의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탐색 및 구조협력을

한다.

## 제11장 해난사고처리

### 제121조 (해난사고처리요구)

해난사고의 처리는 해난사고를 조사하고 해난사고방지대책을 심의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조사기준과 심의방법을 바로 정하고 해난사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22조 (해난사고의 종류)

해난사고에는 배의 항해, 정박, 작업과정에 발생한 사람의 사망, 부상, 배의 침몰, 침수, 충돌, 좌초, 좌주, 중요설비고장 및 파손, 화재, 오염사고 같은것이 속한다.

### 제123조 (해난사고통보체계)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바다, 하천, 호소에서 발생한 해난사고를 즉시에 통보하는 전국적인 해난사고통보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해난사고를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124조 (해난사고의 조사관할)

우리 나라 수역에서 발생한 해난사고의 조사는 사고가 발생한 수역을 관할하는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다른 나라 수역이나 공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나라 배의 해난사고에 대한 조사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 제125조 (해난사고조사일군의 권한)

해난사고조사일군은 해난사고조사를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거나 배에 오를수 있으며 필요한 설비를 분해하거나 부분품을 떼어내거나 대상물을 촬영, 측정, 분석할수 있으며 사고관계자를 배에서 내리워 문의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에 사고와 관련한 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 제126조 (배의 운항중지)

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배가 일정한 기간 지정된 장소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다. 이 경우 배의 운항을 중지시키는 기간은 7일을 넘을수 없다.

특별한 경우에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운항중지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 제127조 (해난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과 심의제출)

해난사고조사일군은 해난사고조사를 한 다음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난사고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사고의 발생경위와 원인, 피해정형같은것을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밝힌다.

**제128조 (해난사고심의)**

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조사가 끝난 때부터 30일안에 해난사고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난사고를 심의한 다음 그 처리와 관련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난사고심의에는 해난사고심의위원회 위원들과 사고관계자, 증인이 참가한다.

**제129조 (해난증서)**

해사감독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국민이 요구하는 경우 해난증서를 발급하여줄수 있다.

**제130조 (다른 나라 배의 해난사고처리)**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배가 우리 나라 수역에서 해난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하여 그 배의 출항을 중지시키고 해난사고를 조사심의하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해난사고조사 및 심의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협정 또는 합의를 맺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12장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131조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해사감독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132조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해사감독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133조 (해사부문의 법규와 국제협약, 자료의 통보)**

해사감독기관은 해사부문의 법규와 국제협약,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며 그 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134조 (배사고방지대책월간)**

국가는 배의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하여 해마다 8월과 9월을 배사고방지대책월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배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세우도록 한다.

**제135조 (해사감독조건의 보장)**

해사감독기관은 해사감독에 필요한 전문일군과 문건, 자료, 설비, 조건보장 같은것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해사감독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136조 (행정처벌의 적용)**

해사감독기관은 감독과정에 이 법을 어긴 배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 국민에게 권한의 범위 안에서 벌금, 중지, 몰수, 자격처벌같은것을 주거나 권한있는 기관에 해당한 처벌을 제기할 수 있다.

위조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발급된 배 및 선원관련증서는 회수한다.

**제137조 (증서의 재발급)**

해사감독기관은 배 및 선원관련증서가 분실 또는 오손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기되었을 경우 해당 증서를 재발급한다.

**제138조 (해사부문의 질기준)**

해사감독기관은 선원양성, 배건조 및 수리, 배기술봉사, 배해체 및 난파선제거를 비롯한 해사부문사업이 배의 항해안전, 오염방지와 관련한 국가적 또는 국제적요구에 만족되는가를 평가할수 있는 질기준을 바로 정해주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139조 (국제해사협약에 따르는 통보)**

중앙해사감독기관은 국제해사협약의 통보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 해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0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해상집수송법

주체95(2006)년 1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2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12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0호로 수정보충

### 제1장 해상집수송법의 기본

#### 제1조 (해상집수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집수송법은 배에 의한 해상집수송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해상집수송의 장려원칙)

해상집수송을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해상집수송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바다를 통한 집수송을 적극 장려하도록 한다.

#### 제3조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보호원칙)

해상집수송에서 계약당사자들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국가는 해상집수송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한다.

#### 제4조 (해상집수송에서 신용보장의 원칙)

해상집수송에서 신용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대외적권위를 높이고 해상수송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해상집수송계약당사자들이 배와 짐을 정확히 보장하며 짐관리와 배운임지불의무를 정확히 리행하도록 한다.

#### 제5조 (적용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집수송법은 우리 나라 당사자들사이 또는 우리 나라 당사자와 다른 나라 당사자사이에 해상집수송계약을 맺고 리행하는 해상집수송에 적용한다.

련대수송계획에 따라 계약을 맺고 리행하는 해상집수송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6조 (다른 법과의 관계)

해상집수송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우리 나라가 승인한 해운분야의 국제협약과 관례는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2장 짐수송자

### 제7조 (짐수송자의 행위)

짐수송자는 수송의뢰자와 해상짐수송계약을 맺은 당사자이다.

해상짐수송과 관련하여 위임된 범위안에서 짐수송자의 대리인이 한 행위는 짐수송자의 행위로 된다.

### 제8조 (짐수송자의 책임기간)

짐수송자는 짐보내는자에게서 짐을 넘겨받은 때부터 짐받는자에게 넘겨줄 때까지 그 짐에 대하여 배짐증권소지자앞에 책임진다.

배짐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상운송장 같은 수송문건소지자앞에 책임진다.

### 제9조 (항해의 준비)

짐수송자는 항해를 시작하기 전까지 짐을 안전하게 수송할수 있도록 배의 항해감당력을 보장하며 선원을 배치하고 짐칸, 랭동칸, 랭장칸 같은 것을 준비하여야 한다.

### 제10조 (배선)

짐수송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배를 짐신는 항에 제때에 대야 한다.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대로 배와 배선기일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에 다른 배를 보장하거나 기일을 연장하여줄 것을 제기할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방은 2일안으로 답변하며 답변이 없으면 짐수송자의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 제11조 (짐의 다루기)

짐수송자는 짐의 싣기와 쌓기, 고루펴기, 관리, 부리기를 배의 항해와 짐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담당자에게 짐의 싣기와 쌓기, 고루펴기, 부리기를 정확히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짐수송자의 요구대로 짐을 다루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해당 작업담당자가 책임진다.

### 제12조 (갑판짐)

짐을 갑판에 실으려 할 경우 짐수송자와 짐보내는자는 합의하고 그 사실을 수송문건에 밝혀야 한다.

갑판짐에 생길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서는 계약에 따라 짐보내는자 또는 짐받는자가 부담한다.

### 제13조 (직항)

짐수송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목적항까지 직항하여야 한다.

계약에서 정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관례적인 항로를 따라 항해한다.

항해도중 인명이나 재산구조 기타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항로를 달리 정하였을 경우에는 항

로리탈로 보지 않는다.

**제14조 (위험짐의 처리)**

짐수송자는 수송도중 위험성이 있는 짐에 의하여 인명이나 배, 짐, 환경에 위험이 조성되었을 경우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그것을 파괴하거나 버리는 것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15조 (짐의 넘겨주기)**

짐수송자는 배가 목적항에 도착하면 짐반는자에게 짐을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짐반는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짐을 제때에 넘겨받지 않거나 넘겨받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짐반는자가 없을 경우에는 짐보내는자에게 알리고 짐을 임의의 창고나 장소에 보관시키는 것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짐수송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비용은 짐보내는자 또는 짐반는자가 부담한다.

**제16조 (배짐증권에 의한 짐의 넘겨주기)**

짐수송자는 짐을 넘겨주려 할 경우 짐반는자로부터 배짐증권정본을 정확히 넘겨받아야 한다. 목적항이 아닌 곳에서 짐을 넘겨주려 할 경우에는 발급된 배짐증권정보 전체를 넘겨받아야 한다.

배짐증권정보 없이거나 목적항이 아닌 곳에서 배짐증권정보 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짐을 넘겨줄수 없다.

**제17조 (지불담보서에 의한 짐의 넘겨주기)**

짐수송자는 짐반는자가 배짐증권을 제때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짐을 넘겨주어도 좋다는 짐보내는자의 동의서, 짐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짐반는자와 그가 거래하는 은행의 담보서를 받고 짐을 넘겨줄수 있다.

**제18조 (짐의 류치)**

짐수송자는 운임이나 비운짐자리운임, 체선료 또는 대기료, 짐을 위하여 추가로 지출한 비용, 해난구조비용, 공동해손분담금 같은 것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짐의 신고부리기를 거절, 중지하거나 실은 짐을 류치할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한 비용은 책임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9조 (짐의 경매처분)**

짐수송자는 제18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할 날부터 30일안에 지불하지 않았거나 짐을 넘겨받아야 할 날부터 30일안에 짐반는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해당 짐에 대하여 경매 처분하여줄 것을 재판소에 제기할수 있다.

짐이 쉽게 부패변질되거나 짐보관비용이 짐의 가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경매처분을 제기할수 있다.

**제20조 (경매처분대금의 분배)**

경매처분한 짐의 값에서 경매처분에 들인 비용과 짐수송자가 받아야 할 몫은 우선보상하고

나머지를 짐보내는자 또는 짐받는자에게 돌려준다.

짐수송자는 경매처분한 짐의 값이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 이르지 못할 경우 모자라는 금액을 짐보내는자 또는 짐받는자에게 청구할수 있다.

**제21조 (짐수송자의 책임면제조건)**

짐수송자가 발생한 짐의 손실, 손상, 넘겨주기지연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전쟁 및 무장충돌, 적대행위, 해적행위의 경우
2. 검역, 해당 당국의 행정적 및 법적조치의 경우
3. 바다, 항해수역에서 예견할수 없었던 위험, 사고의 경우
4. 항해 또는 배관리에서 선원, 수로안내원의 실수인 경우
5. 짐보내는자, 짐받는자 또는 그 대리인의 행위인 경우
6. 파업, 작업정지 기타 장애의 경우
7. 짐자체의 자연적특성 또는 결함의 경우
8. 짐의 포장, 표식이 불량한 경우
9. 배의 숨은 결함인 경우
10. 해난구조행위의 경우
11. 인명, 재산,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한 조치의 경우
12. 짐수송자의 잘못이 아닌 화재나 기타 원인의 경우

**제22조 (책임면제를 받으려는자의 입증책임)**

발생한 짐의 손실, 손상, 넘겨주기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짐수송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의 허물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3조 (짐수송자의 책임제한)**

짐수송자는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짐의 손실, 손상과 관련한 손해보상액을 짐의 포장당, 단위당 666.67SDR 또는 1kg당 2SDR의 금액가운데서 더 높은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수 있다.

짐의 넘겨주기지연에 대한 손해보상액은 운임총액으로 제한한다.

**제24조 (책임제한권의 상실)**

짐수송자는 짐에 대하여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면서도 그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제한을 받을수 없다.

## 제3장 짐보내는자와 받는자

### 제25조 (짐보내는자의 의무)

짐보내는자는 수송계약에 따라 실을 짐을 짐수송자에게 넘겨주고 배짐증권, 해상운송장 같은 수송문건을 넘겨받은 당사자이다.

짐보내는자는 인명이나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짐신기와 보관관리, 부리기에 적합한 짐을 짐수송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짐수송자와 합의없이 계약에서 정한 짐을 바꿀수 없다.

### 제26조 (짐의 표시)

짐보내는자는 짐수송자에게 넘겨줄 짐 또는 포장에 주기호, 출발항, 목적항, 경유항, 짐보내는자, 짐받는자, 취급주의사항 같은 필요한 표시를 지워지지 않게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 제27조 (짐자료의 제공)

짐보내는자는 보내려는 짐의 품명, 수량, 포장, 표시, 무게, 성질 같은것과 그에 따르는 주의사항을 짐수송자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짐과 관련한 자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와 비용은 짐보내는자가 부담한다.

### 제28조 (짐의 수송수속)

짐보내는자는 짐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세관검사, 검역, 가격승인 같은 필요한 수속을 제때에 하며 짐을 배에 싣기 전에 짐수송자에게 상선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선의뢰서에는 짐보내는자의 이름, 통고인, 짐받는자의 이름, 배의 이름, 짐신는 항, 짐부리는 항, 짐의 최종도착지, 짐의 품명, 수량, 포장, 표시, 무게, 성질 기타 필요한 자료, 짐의 겉보기상태를 밝혀야 한다.

### 제29조 (실을 짐의 보장)

짐보내는자는 계약에서 정한 기일안에 짐의 신기작업을 끝낼수 있도록 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계약에서 짐의 신기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짐신기를 중단없이 할수 있도록 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30조 (짐반환 및 짐받는자, 짐부리는 항의 변경)

짐보내는자는 짐을 돌려주거나 짐받는자 또는 짐부리는 항을 변경시켜줄 것을 짐수송자에게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짐수송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제31조 (짐보내는자의 책임면제)

짐보내는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입은 짐수송자 또는 배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 제32조 (짐의 넘겨받기)

짐받는자는 짐이 목적항에 도착하면 계약에 따라 짐수송자로부터 짐을 제때에 넘겨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짐수송자와 짐받는자는 짐의 손실, 손상정형을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검사비용은 검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검사비용을 부담한자는 짐의 손실, 손상에 책임있는자에게 비용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제33조 (짐의 손실, 손상에 대한 통지)

짐받는자는 넘겨받은 짐의 손실, 손상되었을 경우 짐을 넘겨받은 날부터 14일안에 짐수송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쌍방이 확인한 짐에 대하여서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정한 기간안에 통지하지 않은 짐의 손실, 손상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은 소멸된다.

### 제34조 (짐넘겨주지이지연의 통지)

짐받는자는 짐의 넘겨주기가 지연되었거나 짐을 넘겨받지 못하였을 경우 짐을 넘겨받아야 할 날부터 30일안에 짐수송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한 기간안에 통지하지 않은 짐의 넘겨주지연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은 소멸된다.

### 제35조 (대리인, 배의 선장에게 한 통지의 효력)

짐받는자가 짐의 손실, 손상, 넘겨주지연에 대하여 짐수송자의 대리인 또는 배의 선장에게 한 통지는 짐수송자에게 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제4장 배짐증권

### 제36조 (배짐증권의 발급)

배짐증권은 짐수송자가 짐을 접수하여 배짐증권에 밝혀진대로 수송하고 배짐증권소지자에게 넘겨준다는 것을 약속하는 수송문건이다.

짐수송자는 짐보내는자로부터 짐을 넘겨받으면 그의 요구에 따라 쌍방이 확인한 항해사인수증에 준하여 배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배짐증권대신 해상운송장 같은 수송문건을 발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상운송장 같은 수송문건은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 제37조 (대리인에 의한 배짐증권발급)

배짐증권은 짐수송자의 위임에 따라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대리인은 발급한 배짐증권을 짐수송자의 승인밑에 짐보내는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배짐증권에 한 선장의 수표는 짐수송자가 수표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38조 (배짐증권의 재발급)**

짐수송자는 배짐증권을 발급한 후에 짐보내는자, 짐받는자 또는 용선자가 배짐증권을 다시 발급하여줄 것을 요구할 경우 이미 발급한 것을 회수하고 재발급하여줄수 있다.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발급한 배짐증권을 제때에 회수할수 없을 경우에는 짐보내는자, 짐받는자 또는 용선자로부터 정한 기간안에 돌려주겠다는 담보서를 받고 재발급하여줄수 있다.

**제39조 (배짐증권의 양도)**

지시식으로 발급된 배짐증권은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배짐증권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도 함께 넘어간다.

**제40조 (배짐증권의 기재내용)**

배짐증권에 밝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짐수송자의 이름
2. 짐보내는자의 이름
3. 짐받는자의 이름 또는 짐도착통지를 받을 당사자의 이름
4. 배의 이름
5. 짐신는 항과 짐부리는 항
6. 짐의 품명, 수량, 포장, 표식, 무게, 성질 기타 짐보내는자가 제공한 자료
7. 짐의 겉보기상태
8. 배운임의 지불관계
9. 갑판에 실은 짐
10. 배짐증권발급장소와 날자, 부수
11. 짐수송자의 수표

**제41조 (배짐증권의 비고란에 밝힐 내용)**

배짐증권을 발급하는 짐수송자는 배짐증권에 밝힌 짐의 품명, 수량, 포장, 표식, 무게 또는 겉보기상태 같은 것이 넘겨받은 짐과 맞지 않거나 맞지 않는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배짐증권의 비고란에 밝힐수 있다.

**제42조 (결함없는 배짐증권의 효력)**

배짐증권의 비고란에 결함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짐수송자가 짐보내는자로부터 배짐증권에 밝힌 상태의 짐을 정확히 넘겨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결함이 없는 배짐증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반대되는 주장을 할수 없다.

**제43조 (배짐증권의 앞면과 뒤면기재내용의 효력)**

배짐증권의 앞면과 뒤면에 기재한 내용이 서로 모순될 경우에는 앞면의 기재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44조 (통과 및 런대짐수송에 따르는 배짐증권의 발급)**

해상수송을 포함하는 통과 또는 런대짐수송을 할 경우에는 통과 및 런대짐수송에 따르는 배 짐증권을 발급한다. 이 경우 그 배짐증권은 해상짐수송과 관련하여 발급한 배짐증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5장 배의 운임

**제45조 (배운임의 지불의무)**

배의 운임은 짐보내는자, 짐받는자 또는 용선자가 지불한다.

짐보내는자, 짐보내는자 또는 용선자는 계약에 따라 짐수송자에게 배의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46조 (배운임의 지불방법)**

배의 운임지불은 전불 또는 후불, 총괄지불 같은 방법으로 한다.

당사자들사이의 합의없이 배의 운임을 상쇄, 공제, 반환할수 없으며 계약에서 정한 운임률을 변경시킬수 없다.

**제47조 (배운임의 전불)**

배의 운임을 전불로 정하였을 경우 짐수송자가 짐을 넘겨받으면 배의 운임을 지불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짐이 손실,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배의 운임을 전액 지불한다.

배의 운임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짐수송자는 짐보내는자에게 배짐증권을 주지 않을수 있다.

**제48조 (배운임의 후불)**

배의 운임을 후불로 정하였거나 운임지불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가 목적항에 도착한 다음 짐부리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짐이 손실,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배의 운임을 전액 지불한다.

입항승인을 받은 배는 목적항에 도착한 배로 인정한다.

**제49조 (배의 총괄운임)**

배의 운임을 총괄로 지불하기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실은 짐에 관계없이 배의 운임을 전액 지불한다. 그러나 배의 적재능력이 계약에서 정한것보다 모자라 짐을 다 싣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금액을 배의 운임에서 덜수 있다.

**제50조 (싣지 못한 짐과 더 실은 짐의 운임)**

계약한 짐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비운짐자리운임을 지불한다.

계약보다 짐을 더 실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운임을 더 지불한다.



**제51조 (짐보내는자의 계약위반시 배운임의 지불)**

짐수송자는 여러 짐보내는자의 짐을 한배로 수송할 경우 계약기간안에 일부 당사자가 짐을 싣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예정대로 배를 출항시킬수 있다. 이 경우 짐을 싣지 못한 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배의 운임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제52조 (계약취소로 손해를 본 배운임의 보상)**

수송의뢰자는 해상짐수송계약을 짐싣는 항에 배가 도착한 다음 출항전에 취소하려 할 경우에는 배운임의 3분의 2를, 출항한 다음 취소하려 할 경우에는 배운임의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짐수송자와 여러 수송의뢰자가 맺은 계약을 전체 또는 일부의 수송의뢰자가 취소하려 할 경우에는 자기 몫에 해당하는 배운임의 전액을 보상한다.

## 제6장 용 선

**제53조 (용선의 형태)**

용선은 항차용선, 기간용선, 빈배용선 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다. 이 경우 용선중개인을 통하여 한다.

**제54조 (배의 보장)**

배임자는 계약에서 정한 배 또는 짐칸을 보장하여야 한다.  
빈배용선계약에 따라 배를 보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도 넘겨주어야 한다.  
계약한 배를 보장할수 없을 경우에는 용선자와 합의하여 다른 배를 보장할 수 있다.

**제55조 (재용선)**

용선자는 용선한 배를 제3자와 재용선계약을 맺고 보장할수 있다. 이 경우 배임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재용선계약은 기본용선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56조 (용선된 배의 저당, 양도)**

배임자는 용선된 배를 저당시키거나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용선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용선된 배를 양도할 경우에는 용선계약도 함께 양도할수 있다.

**제57조 (해난구조비를 지불받을 권리)**

기간 또는 빈배용선자는 용선한 배로 해난구조를 하였을 경우 구조비총액에서 구조작업에 든 비용과 제3자에게 준 손해보상액, 구조작업에 동원된 선원의 보수 기타 구조작업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받을수 있다.

**제58조 (용선료의 지불)**

기간 또는 빈배용선자는 배를 보장받은 대가로 배임자에게 용선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용선자의 잘못이 아닌 원인으로 배를 운영할수 없게 되었거나 배의 가치가 완전히 소멸되었거나 배가 행방불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마지막소식이 있는 날부터 용선료의 지불을 정지할수 있다. 이 경우 선물로 지불된 용선료는 배의 리용기간에 따라 반환된다.

**제59조 (용선한 배의 반환)**

기간 또는 빈배용선자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안에 배임자에게 배를 원상대로 돌려주어야 한다. 배자체의 정상적인 마모와 손상은 결함으로 보지 않는다.

**제60조 (배반환기간이 지난 후의 배운영)**

기간 또는 빈배용선자는 항차도중 배의 반환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항차를 끝내고 배를 돌려줄수 있다. 이 경우 항차기간을 20일이상 초과할수 없다.

배의 반환기간이 끝난 다음 발생한 용선료는 계약에서 정한 비율로 지불한다. 그러나 용선료율의 시세가 계약에서 정한것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1조 (용선계약의 취소)**

용선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이 계약조건을 어겼거나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계약을 리행할수 없거나 그밖의 계약취소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이 경우 3일안에 계약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용선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법에서 규정한 손해보상 또는 분쟁해결과 관련한 조항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제62조 (항차용선)**

항차용선은 한 항구로부터 다른 항구까지 한방향으로 한번 항해하거나 두 항구사이를 한번 또는 여러번 왕복으로 항해하면서 짐을 수송하기 위하여 배의 전부 또는 일부 짐칸을 빌리는 행위이다.

용선자는 배의 전부 또는 일부 짐칸을 빌린 대가로 배임자에게 배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63조 (항차용선계약)**

항차용선을 하려는 용선자는 배임자와 항차용선계약을 맺어야 한다.

항차용선계약서에는 배임자와 용선자의 이름, 배의 이름, 선적항, 짐의 무게, 용적, 품명, 짐신는 항과 부리는 항, 짐신고부리는 기간, 배의 운임, 조출료와 체선료관계, 분쟁해결방법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64조 (기간용선)**

기간용선은 용선자가 배임자로부터 선원을 태운 배를 일정한 기간 빌려 운영하는 행위이다.

기간용선자는 짐수송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배의 항해감당력보장과 관련한 의무는 배임자가 진다.

#### 제65조 (기간용선계약)

기간용선을 하려는 용선자는 배임자와 기간용선계약을 맺어야 한다.

기간용선계약서에는 배임자와 용선자의 이름, 배의 이름, 국적, 선급, 톤수, 적재능력, 속도, 연료소비, 항해구역, 용도, 용선기간, 배의 보장과 반환시기, 장소, 용선료의 지불조건, 계약종결, 분쟁해결방법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 제66조 (기간용선자의 지시권한)

기간용선자는 용선한 배의 선장에게 배의 운영, 짐수송과 관련한 지시를 준다. 이 경우 배임자와 맺은 계약조건과 어긋나는 지시를 할수 없다.

#### 제67조 (배임자의 류치권)

기간용선자가 용선료 또는 기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배임자는 배에 실은 짐과 용선자가 얻은 수입에 대하여 류치권을 행사할수 있다.

#### 제68조 (빈배용선)

빈배용선은 용선자가 배임자로부터 선원이 없는 배를 일정한 기간 빌려 운영하는 행위이다. 빈배용선자는 짐수송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 제69조 (빈배용선계약)

빈배용선하려는 용선자는 배임자와 빈배용선계약을 맺어야 한다.

빈배용선계약서에는 배임자와 용선자의 이름, 배의 이름, 선적항, 선급, 톤수, 적재능력, 항해구역, 용도, 용선기간, 배의 보장과 반환시기, 장소, 배의 검사, 관리, 수리, 용선료의 지불조건, 배보험, 계약종결, 분쟁해결방법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 제70조 (빈배용선자의 의무)

빈배용선자는 용선기간 배의 관리와 수리에 대하여 책임진다.

배의 구조, 기관, 보이라, 장비 같은 것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배임자와 합의하며 배를 돌려줄 경우에는 배임자의 요구에 따라 본래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제71조 (빈배용선자의 배보험)

빈배용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계약에서 정한 가격과 방식에 따라 배보험에 들어야 한다.

## 제7장 분쟁해결

#### 제72조 (분쟁해결의 방법)

해상짐수송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사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한다.

**제73조 (분쟁해결의 기준)**

해상짐수송과 관련한 분쟁해결은 당사자들 사이에 맺은 계약, 배짐증권소지자가 용선자가 아닐 경우에는 배짐증권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진행한다.

당사자들 사이에 맺은 계약과 배짐증권,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해당 법규와 국제협약, 관례에 따른다.

**제74조 (해사청구권의 시효기간)**

해사청구권의 시효기간은 1년이다.

어찌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사청구권의 시효가 정지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다음날부터 계속된다.

해사청구권자가 배역류를 신청하였거나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하였거나 해당 청구에 대한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다.

**제75조 (손해보상청구제기)**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시효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손해보상청구를 재판이나 중재에 제기하려 할 경우에는 해사법률봉사단체를 통하여 할수 있다.

**제76조 (손해보상청구액의 계산)**

손해보상청구액의 계산은 계약에서 정한 목적항에서 짐수송자가 짐받는자에게 짐을 넘겨줄 당시 거래되는 짐값에 준하여 한다.

해당 짐의 값을 알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과 유사한 종류와 품질의 짐값에 따른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운법

주체69(1980)년 8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6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2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9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85호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12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0호로 수정보충

## 제1장 해운법의 기본

### 제1조 (해운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운법은 배관리운영과 취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해상 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해상운수발전원칙)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는 것은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배를 많이 무어내고 항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 제3조 (배관리운영원칙)

배의 관리운영은 해운사업의 중요내용이다.

국가는 배관리운영을 정규화, 규범화하며 배관리운영기관의 경영활동에서 독자성을 보장한다.

### 제4조 (배의 안전한 항해보장원칙)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것은 해상수송을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항해지휘체계를 바로세우며 기술관리를 잘하고 선원대렬을 튼튼히 꾸려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도록 한다.

### 제5조 (해상수송원칙)

해상수송을 짜고드는 것은 배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본공간이다.

국가는 수송조직을 개선하고 계획 및 계약률을 엄격히 지켜 늘어나는 해상수송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 제6조 (배의 취급원칙)

국가는 배취급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하며 배취급에서 봉사성을 높이도록 한다.

### 제7조 (해난사고방지원칙)

국가는 해난사고를 미리 막으며 해상수송과정에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하여 해상보험제를 실

시한다.

**제8조 (해상운수의 과학화원칙)**

국가는 해상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도록 한다.

**제9조 (해운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해운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10조 (해운관계 국제협약의 효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해운관계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2장 배

**제11조 (배의 소유권과 등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배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해사감독기관에 등록하고 배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12조 (배의 국적취득)**

다른 나라 국적을 가졌던 배는 해당 나라에서 발급한 국적삭제증서가 있어야 공화국국적을 소유할수 있다.

공화국국적을 소유하였던 배는 국적등록부에서 삭제되어야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할수 있다.

재판소의 판정에 의하여 강제판매된 배에 대하여서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 (공화국국적배의 국기게양)**

공화국국적을 소유한 배에는 우리 나라 국기를 단다.

공화국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배라 하여도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재지가 우리 나라에 있고 공화국국민을 선원으로 승선시킨 경우에는 우리 나라 국기를 달수 있다.

**제14조 (용선, 합영배의 국기게양)**

다른 나라 배를 장기간 용선하여 공화국국민을 선원으로 승선시킨 경우에는 우리 나라 국기를 달수 있다.

합영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배에는 공화국국민을 선원으로 승선시켜도 다른 나라 기발을 달수 있다.

**제15조 (배의 검사)**

배는 항해안전성, 로동조건과 작업수단의 안전성, 바다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해사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운영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항해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배의 항해를 중지시키거나 짐싣는 량, 항해 구간을 제한할수 있다.

#### 제16조 (다른 나라 항에서 우리 나라 배의 검사)

다른 나라 항에서 우리 나라 배에 대한 검사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의 의뢰에 따라 공화국령사 대표기관이 조직한다. 그러나 공화국령사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배에 대한 검사를 대리기관을 통하여 조직한다.

공화국령사대표기관이 발급한 검사증서는 배가 우리 나라로 오는 항차에만 효력을 가진다.

#### 제17조 (배의 문건과 표식)

배에는 국적과 항해안전성을 인증하는 증서, 선원명부, 항해일지, 짐문건 같은 것을 갖추고 선적항, 배잠김선을 비롯한 해당한 표식을 한다.

배의 굴뚝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표식을 할수 있다.

#### 제18조 (배의 리용과 구조변경)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그 사명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배를 다른 목적에 리용하려 하거나 배의 구조를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9조 (배의 수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대한 예방보수체계를 세우고 주기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배수리기업소는 배수리를 정해진 기간안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20조 (배의 매매, 폐선)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팔고 사거나 폐선시키려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장 선 원

#### 제21조 (선원의 지위와 임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선원은 항해의 직접적담당자이며 배관리의 주인이다.

선원은 배와 짐을 책임적으로 관리하며 당직근무와 항해임무를 정확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22조 (선원의 자격)

선원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해당한 자격을 주는 사업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 제23조 (선원증)

선원은 공화국선원증을 가져야 한다.

다른 나라로 다니는 선원에게 발급한 선원증은 공화국려권을 대신한다.

다른 나라에서 새로 산 배에는 그 배의 설비조작을 위하여 다른 나라 선원증을 소유한 선원을 일정한 기간 승선시킬수 있다.

### 제24조 (선장의 지위와 임무)

선장은 항해와 선원들의 활동을 지휘하는 배의 책임자이다.

선장은 배와 배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항해계획을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 제25조 (선장의 책임과 대리행위)

선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앞에 책임진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집임자가 없는 곳에서 선장은 공동으로 미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 배 또는 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리행위를 할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은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집임자가 진다.

### 제26조 (다른 나라 항에서 방조)

다른 나라 항에 들어간 배의 선장은 그 나라 주재 공화국령사대표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방조를 받을수 있다.

### 제27조 (선원들의 로동조건보장)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해주며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주어야 한다.

## 제4장 항 해

### 제28조 (항해지휘)

항해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따라 목적항으로 배를 인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해하는 배를 정확히 장악하고 항해지휘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29조 (항해준비상태의 검사)

항무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의 항해준비상태를 정확히 검사하여야 한다.

기술준비와 항해예비물자, 인명보호수단, 배문건 같은 것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안전항해에 관한 국제질서대로 준비하지 못한 배는 출항시킬수 없다.



**제30조 (해상충돌예방, 특수항해질서의 준수)**

항해하는 배는 해상충돌예방질서와 해당 수역의 특수항해질서를 지켜야 한다.

공화국령해와 항수역에서 배는 정해진 질서를 지키며 항무감독기관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 (바다, 대기의 오염행위금지)**

공화국령해와 항수역에서 배는 버림물, 오물을 버리거나 바다와 대기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32조 (항수역과 배길보호, 배의 항해에 지장주는 행위의 금지)**

항수역과 배길보호, 배의 항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길에 침몰된 배를 항무감독기관이 정한 기일안에 건져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항해에 지장을 줄수 있는 수중작업을 하거나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 항무감독기관 또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고 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3조 (배길표식물의 설치와 관리)**

배길표식기관은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통일적인 배길표식체계를 세우고 현대적인 배길표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한 배길표식물은 장성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 (수로의 조사)**

수로기관은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할수 있도록 수로조사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도와 항해에 필요한 자료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며 정해진 항해질서, 항해위험구역, 배길조건의 변동에 대하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 (공화국수역에서 단속에 응할 의무)**

공화국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배는 조선인민군해군함선과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배의 단속에 응하여야 한다.

군사행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 제5장 해상수송

**제36조 (해상수송계획의 작성과 실행)**

해상수송은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본임무이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상수송계획을 세우고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37조 (우리 나라 항구들사이의 배수송)**

우리 나라 항구들사이의 배수송은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맡아한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수송에서 집중수송, 른대수송을 강화하며 짐합수송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제38조 (우리 나라 짐의 우선 수송)**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의 짐부터 먼저 실어날라야 한다.  
빈배로 항해하거나 체선시키는 일이 없도록 실어나를 짐을 정확히 맞물려야 한다.

**제39조 (짐수송계약)**

해상수송은 짐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른대수송계획에 따라 배로 짐을 실어나르려 할 경우에도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을 우리 나라 배로 실어나르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40조 (용선의뢰)**

용선은 용선중개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용선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용선중개기관에 의뢰서를 내야 한다.

**제41조 (용선계약)**

용선을 의뢰받은 용선중개기관은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용선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배로 다른 나라 짐을 실어나르려 할 경우에는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직접 다른 나라 당사자와 용선계약을 맺을수 있다.

**제42조 (용선계약대상과 내용)**

용선계약은 짐수량에 따라 배전체 또는 일부 짐칸을 대상으로 맺는다.  
용선계약서에는 배와 짐이름, 짐수량과 그것을 싣거나 부리는 항, 계약조건 같은 것을 밝힌다.

**제43조 (용선중개기관의 임무)**

용선중개기관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을 정확히 리행하게 하며 배운임, 체선료, 조출료를 정해진 기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44조 (계약한 배의 보장)**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적항까지 짐을 안전하게 실어나를수 있는 배를 정해진 기일까지 짐싣는 항에 대야 한다.  
수송계약에서 짐을 싣거나 부리는 항을 후에 정하기로 한 경우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항을 정하고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한다.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합의없이 계약에서 정한 배를 다른 배로 바꾸어 댈수 없다.

**제45조 (짐문건과 짐의 인계)**

수송을 의뢰하거나 짐을 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의 이름과 수량, 기호, 특성 같은 것을 밝힌 문건과 실어나를 짐을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야 한다.

계약에서 정한 짐대신 다른 짐을 실어보내려 할 경우에는 미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46조 (배의 짐배치)**

배에서 짐의 배치는 선장의 지시에 따른다.

국제해운법규 또는 관례에 따라 갑판에 싣는 짐으로 인정되어있지 않는 짐을 갑판에 실으려 할 경우에는 짐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하고 수송문건에 밝힌다.

**제47조 (짐의 겉보기상태, 수량의 확인)**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을 넘겨주고 받을 경우 보내거나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짐의 겉보기상태,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48조 (배짐증권의 발급과 효력)**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을 배에 실은 다음 짐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배짐증권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짐증권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권리의무관계는 배짐증권에 따른다. 그러나 배짐증권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권리의무관계는 배짐증권에 따른다. 그러나 배짐증권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수송을 의뢰하였거나 배짐증권에 수송계약서의 내용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수송계약서의 내용이 배짐증권의 내용보다 더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

**제49조 (직항수송의무)**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배길로 목적지까지 직항하여 짐을 제때에 넘겨주어야 한다.

사람과 배, 재산의 구조 또는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직항하지 못한 것은 배길리탈로 보지 않는다.

**제50조 (배짐증권에 의한 짐인수)**

짐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짐증권이 여러부 발급되었을 경우 목적항에서는 1부를 내고 짐을 찾을수 있다. 이 경우 나머지 배짐증권의 효력은 없어진다.

목적항이 아닌 곳에 발급된 배짐증권을 전부 내야 짐을 찾을수 있다.

**제51조 (짐수송부담금)**

짐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배짐증권정보를 내고 짐수송과 관련한 부담금을 물어야 짐을 찾을수 있다.

**제52조** (목적항에 들어갈수 없는 배의 짐처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가 목적항에 들어갈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하고 가까이에 있는 안전한 항에 짐을 부릴 수 있다. 이 경우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입은 손해와 비용은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상한다.

**제53조** (배에 실은 위험짐의 처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실은 위험짐이 사람이나 다른 짐에 위험을 줄수 있는 경우 그것을 부리거나 위험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짐의 성질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실은 위험짐의 처리비용은 짐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한다.

**제54조** (짐받을자, 짐부리는 항의 변경)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해가 시작되기 전이나 시작된 다음에도 짐을 돌려주거나 계약된 짐수량, 짐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짐부리는 항의 변경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5조** (넘겨받기를 거절, 지체하거나 넘겨받을 당사자가 없는 짐의 처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적항에서 짐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짐넘겨받기를 거절 또는 지체하거나 짐받을 기관, 기업소, 단체가 없을 경우 짐을 부려 보관시키고 그에 대하여 짐을 받거나 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짐의 보관료와 위험,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입은 손해,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짐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제56조** (배운임의 납부)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에 따라 배운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배운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계약된 수량보다 짐을 더실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운임을 물어야 한다.

**제57조** (짐의 손실원인에 따르는 배운임의 납부)

짐자체의 성질이나 결합, 수송을 의뢰하거나 짐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잘못으로 짐이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배운임을 전부 문다. 그러나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잘못으로 손실된 짐에 대해서는 배운임을 물지 않는다.

**제58조** (수송계약의 불리행에 대한 책임)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잘못으로 계약된 짐을 다 신지 못하였거나 짐을 맡아가지고있는 기간 짐이 손실, 손상되었거나 짐을 제때에 임자에게 넘겨주지 못하여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계약에서 정한 기일이 지나도록 짐을 신거나 부리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채선료를 물린다.

**제59조** (배관리자가 짐의 손실, 손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경우)

짐의 손실, 손상에 대하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 전쟁 및 적대행위, 해당 당국의 조치를 비롯한 어찌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충돌, 좌주를 비롯한 해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짐자체의 결함이 있었을 경우
4. 짐함이나 그 봉인상태가 정상인 경우

**제60조** (다른 나라 당사자에 대한 배관리운영자의 책임)

짐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다른 나라 당사자앞에 지는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은 국제협약에 따른다. 그러나 국제협약보다 낮은 기준에서 책임을 지게 된 나라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그에 따른다.

**제61조** (려객수송의 보장)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렬객수송에서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며 렬객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렬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려객은 제정된 배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 제6장 배에 대한 봉사

**제62조** (봉사관련법규와 봉사순위)

배에 대한 봉사를 잘하는 것은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배에 대한 봉사는 공화국의 해당 법규에 따르며 그에 정해있지 않은것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다.

배에 대한 봉사는 우리 나라 배와 긴급한 물자를 실은 배를 내놓고 항에 들어오는 차례로 한다.

**제63조** (다른 나라 배의 대리업무)

다른 나라 배에 대한 대리업무는 선박대리기관이 맡아한다.

우리 나라 항과 령해, 공동수역의 우리측 지역에 영업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는 대리업무에 필요한 배와 짐자료, 비용을 선박대리기관에 미리 내야 한다.

항기관과 해당 기관은 선박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 배와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제64조** (배길안내)

항에 나드는 다른 나라 배는 배길안내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 배는 선장의 요구에 따라 배길안내를 받을수 있다.

배길안내는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할수 있다.

**제65조 (배길안내를 받는 선장의 의무와 책임)**

배길안내를 받는 배의 선장은 배길안내원에게 배의 항해 및 조종상특성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배길안내를 받을 경우에도 선장은 배의 조종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66조 (배끌기작업)**

배끌기작업은 배를 부두에 대거나 부두에서 뺄 때를 비롯한 필요한 경우에 한다.

끌배운영기관은 배끌기작업을 원만히 할수 있는 배를 보장하여야 한다.

끌리는 배의 선장은 끌배선장에게 자기 배의 조종상특성과 결함 그밖의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67조 (배끌기작업의 지휘)**

배끌기작업은 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은 한 끌리는 배의 선장이 지휘한다. 이 경우 지휘를 받는 배의 선장도 끌기작업의 안전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제68조 (배끌기작업과정에 생긴 손해)**

배끌기작업과정에 생긴 손해는 그에 잘못이 있는 당사자가 책임진다.

잘못을 가를수 없을 경우에는 배끌기작업을 지휘한 당사자가 책임진다.

배끌기작업을 지휘한 당사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잘못이 없어도 잘못을 일으킨 당사자와 련대적으로 책임진다.

배끌기작업을 지휘한 당사자는 배끌기작업과정에 생긴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제69조 (배의 기술봉사와 물자공급)**

항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에서 요구하는 기술봉사를 하며 연유, 물, 식료품, 냄새같은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70조 (태풍, 해난으로 항에 들어온 배와 선원에 대한 방조)**

항기관과 해당 기관은 태풍과 해난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항에 들어온 배와 선원에게 필요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 제7장 해난구조

**제71조 (해난구조기관과 그 임무)**

해난구조는 바다에서 재해를 당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구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 나라 수역에서 해난구조와 가라앉은 재산을 건지는 사업은 공화국해난구조 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난구조기관은 해난구조체계를 바로세우고 발견된 해난을 제때에 구조하여야 한다.

**제72조 (해난의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의 선장은 해난을 발견한 즉시 해난구조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해난구조를 의뢰받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제73조 (선장의 구조의무)**

배의 선장은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과 배를 발견하였거나 조난신호를 받았을 경우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람부터 먼저 구원하여야 한다.

**제74조 (해난구조료의 납부)**

해난구조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의 선장은 해난구조료를 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해난구조료문제는 따로 정한 법규에 따른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당사자사이의 해난구조료문제는 국제협약에 따른다.

**제75조 (가라앉은 재산의 구조)**

우리 나라 수역에 가라앉은 재산을 건지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정해진 기간안에 건져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6조 (배충돌시 선장의 임무)**

배는 안전항해의 요구를 지켜 충돌사고를 내지 말아야 한다.

배들이 충돌한 경우 선장은 상대측 배의 안전을 도와주며 배이름과 선적항, 떠난 항과 목적항을 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77조 (배충돌시 잘못에 따르는 책임)**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배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충돌한 배들이 서로 잘못이 있었을 경우에는 잘못의 정도에 따라, 잘못의 정도를 가릴수 없으면 같은 몫으로 손해를 보상한다.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에 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연대적으로 책임진다.

**제78조 (배충돌로 생긴 손해보상)**

배충돌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은 그 사고와 관련한 직접적손실과 비용에 대하여 한다. 그러나 배충돌이 있는 다음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더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79조 (공동해손의 보상)**

항해중 배와 짐, 운임을 공동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일으킨 해상손해는 공동으로 보상한다.

공동해상손해는 구제받은 재산의 임자가 구제된 재산가격에 비례하여 보상한다.

**제80조 (공동해손보상청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동으로 보상하는데서 해상손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보상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짐입자는 손해보상에 대한 지불담보를 하여야 짐을 찾을수 있다.

**제81조 (공동해손의 청산)**

공동으로 보상하는 해상손해의 청산은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지정한 손해청산인이 한다.

항해가 끝난 다음 1개월안으로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손해청산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이 지정할수 있다.

손해청산인은 국제적으로 정해진 손해청산원칙에 따라 손해를 청산하여야 한다.

**제82조 (해난사고의 통보, 인증)**

선장은 항해과정에서 있는 해난사고에 대하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사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자기 배의 잘못이 없이 생긴 해난사고에 대하여서는 사고가 있는 다음 처음 도착한 항에서 해당 권한있는 기관 또는 공화국령사대표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83조 (다른 나라 당사자에게 준 손해의 책임)**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직접적인 잘못이 없이 다른 나라 당사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손해를 일으킨 배의 가격범위에서 보상책임을 제한할수 있다.

배의 가격보다 낮은 기준에서 책임을 지게 된 나라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그에 따른다.

## 제8장 해상보험

**제84조 (해상보험의 대상)**

해상보험을 실시하는 것은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무역기관의 경영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해상보험은 배짐과 운임, 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책임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85조 (해상보험계약의 체결과 효력발생시기)**

해상보험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계약은 보험에 드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신청서를 내고 보험기관이 보험증권을 내주면 맺어진다.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에 든 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험료를 문 때부터 발생한다.



**제86조 (재보험과 해상보험계약의 취소)**

보험기관은 해상보험계약에서 부담하게 된 책임을 다시 다른 나라 보험기관의 보험에 들수 있다.

보험료를 제때에 물지 않았거나 보험대상에 손해가 생긴 것을 알면서 해상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할수 있다.

**제87조 (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이전)**

해상보험에 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길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물 의무는 넘길수 없다.

**제88조 (수송하는 짐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해상보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일정한 기간 배를 통하여 련이어 보내거나 받게 될 짐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상보험에 넣을수 있다.

해상보험계약을 맺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을 보냈거나 그것이 도착할 때마다 짐과 배, 배길의 상태, 보험금액에 대하여 곧 보험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89조 (보험대상의 위험변동에 대한 통보와 덧보험료)**

해상보험에 들었거나 보험보상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험대상이 당할수 있는 위험의 변동에 대하여 제때에 보험기관에 알려야 한다.

보험기관은 해상보험대상에 대한 위험이 커진데 대하여 보험료를 더 받을수 있다.

**제90조 (보험대상의 손해통지)**

해상보험에 들었거나 보험보상을 받을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험대상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기관에 제때에 알리며 그 손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의식적으로 리행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받을수 없다.

**제91조 (보험보상을 받을수 있는 손해)**

보험보상은 해상보험계약에서 담보한 위험의 직접적인 결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한다.

**제92조 (보험보상금)**

보험보상금은 따로 정한 경우를 내놓고 보험금액의 한도를 넘을수 없다.

보험보상을 받을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상보험대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그에 대한 권리를 보험기관에 넘기고 보험금액전액에 대한 보험보상을 받을수 있다.

보험기관은 해상보험대상이 손해를 입은 근거자료와 보험증권을 받고 보험보상금을 물어준다.

**제93조 (손해보상청구권의 이전)**

보험기관은 물어주는 보험보상금의 범위안에서 해상보험대상에 손해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하여 보험보상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가지는 손해보상청구권을 넘겨받을수 있다.

보험보상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험기관이 손해보상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넘

겨주어야 한다.

## 제9장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94조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해운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95조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은 배관리운영과 항해, 해상수송, 배취급, 해난사고와 그 구조실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96조 (과학연구사업과 그 성과도입)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해운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 제97조 (해운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노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은 해운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 제98조 (해운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해운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배와 배의 항해질서준수정형, 항의 관리운영과 배취급정형 같은 것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99조 (해운업에 대한 영업허가)

배운영과 용선, 해상중계수송, 항운영을 비롯한 해운업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해운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과 영업소재지, 업종, 배이름, 항이름, 국가승인근거 같은 것을 밝힌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은 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증이 없이는 해운업을 할수 없다.

### 제100조 (벌금)

배의 입출항, 항해질서를 어겼거나 공화국이 관할하는 수역을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101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항, 갑문시설물과 배길표식물을 파손시켰거나 짐을 손실,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10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해운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 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제10장 분쟁해결

**제103조 (분쟁해결방법)**

해운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해사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제104조 (청구문건의 제출, 청구권보장기간)**

분쟁문제를 해결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구문건을 청구권보장기간안에 해사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 내야 한다.

청구권보장기간은 6개월이다. 그러나 우선적인 해사청구권보장기간은 1년이다.

**제105조 (법률봉사단체를 통한 청구문건의 제출)**

해사중재 또는 재판에서 원고, 피고로 되는 당사자는 공화국법률봉사단체를 통하여 청구문건을 낼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나라 당사자는 정해진 법률봉사단체를 통해서만 청구문건을 내야 한다.

법률봉사단체는 해당 법규에 맞게 법률봉사를 하여야 한다.

**제106조 (배역류판정과 그 집행)**

재판기관은 빚을 받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의 책임밑에 배와 짐 그밖의 재산을 일정한 기간 억류할데 대한 판정을 할수 있다.

재판소의 판정은 재판소 집행원이 집행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빚을 근거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하였거나 관리 운영하는 배나 재산을 억류할수 없다.

**제107조 (배의 강제판매)**

재판기관은 빚을 물지 못하여 억류당한 배가 30일이 지나도록 채무리행담보를 세우지 않거나 채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빚을 받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정으로 그배를 강제판매시킬수 있다.

판매대금은 재결 또는 판결에 기초하여 우선적해사청구권의 순위로 물어주며 나머지는 배임

자에게 반환한다.

**제108조 (보상책임의 제한)**

배의 항해, 해상수송과 관련하여 손해를 끼친 당사자는 정해진 한도에서 보상책임을 제한하여 줄데 대한 의견을 재판소에 제기할수 있다. 그러나 손해가 고의 또는 결과를 예측할수 있는 행위로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받을수 없다.

**제109조 (우선적인 해사청구권의 순위)**

우선적인 해사청구권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인명피해, 로동보수와 관련한 청구권
2. 항만비용과 관련한 청구권
3. 해난구조, 공동부담손해보상과 관련한 청구권
4. 항구조물과 설비에 끼친 손해보상, 충돌손해보상과 관련한 청구권
5. 짐과 계약상책임에 따르는 손해보상과 관련한 청구권


**제110조 (우선적인 해사청구권과 저당권, 항차, 청구액의 관계)**

우선적인 해사청구권은 저당권보다 우선적이다.

우선적인 해사청구권에서는 전항차보다 다음항차에 발생한것이 더 우선적이며 같은 항목에 서는 그 청구액에 비례한다.

**제111조 (분쟁해결의 기준문건)**

분쟁해결은 당사자들사이의 계약, 공화국의 해당 법규, 공화국이 승인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농업·임업·  
수산부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수법

주체91(2002)년 1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53호로 채택  
주체99(2010)년 5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50호로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01호로 수정보충

## 제1장 과수법의 기본

### 제1조 (과수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수법은 과일나무모의 생산, 과수모의 조성관리, 과일수확과 처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일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과일나무모의 생산원칙)

과일나무모의 생산은 과수원을 조성하고 과일나무의 그루바꿈에 필요한 나무모를 키우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과일나무원종을 보존, 개량하며 키가 낮고 심은 다음 인차 높은 수확을 거둘수 있는 과일품종을 생산공급하도록 한다.

### 제3조 (과수원의 조성원칙)

과수원조성을 바로하는 것은 과수부문의 경영관리를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과수원조성을 과일생산에 유리한 토지에 과일나무를 밀식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한다.

### 제4조 (전인민적인 과수원관리원칙)

과수원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과수부문 근로자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과수원관리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 제5조 (과일의 수확, 포장, 저장, 가공원칙)

국가는 과일을 제때에 수확하고 포장을 규정대로 하며 저장시설과 가공공정을 더 잘 꾸리도록 한다.

### 제6조 (과수부문 경영방법의 개선원칙)

국가는 과수부문에 대한 경영방법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도록 한다.

### 제7조 (과수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과수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2장 과일나무모의 생산

### 제8조 (과일나무모생산의 기본요구)

과일나무모의 생산을 늘이는 것은 과수업발전의 선결조건이다.

중앙농업지도기관, 농업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과일나무모생산체계를 바로세우고 과수원조성과 그루바꿈면적에 따르는 과일나무모를 계획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 제9조 (원원종과일나무모의 생산기관)

원원종과일나무모의 생산은 농업과학연구기관이 한다.

농업과학연구기관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원원종과일나무모를 생산하여야 한다.

### 제10조 (원종과일나무모의 생산기관)

원종과일나무모의 생산은 종과일나무원종생산기업소가 한다.

종과일나무원종생산기업소는 원원종과일나무모를 해당 지역에 풍토순화시켜 수확고가 높은 원원종과일나무모를 생산하여야 한다.

### 제11조 (종과일나무모의 생산단위)

종과일나무모의 생산은 농업과학연구기관과 과일나무모원종생산기업소, 과일나무모생산기업소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도 농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일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다.

### 제12조 (과일나무모생산토지의 보장)

농업지도기관가 해당 기관은 과일나무모생산에 필요한 토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과일나무모받은 토양이 비옥하고 관수조건, 수송조건이 유리한 곳에 정하여야 한다.

### 제13조 (과일나무모생산계획의 실행)

과일나무모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자어미나무밭, 접가지어미나무밭을 잘 가꾸며 과일나무모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 제14조 (과일나무모의 검사)

과일나무모에 대한 검사는 해당 검사기관이 한다.

해당 검사기관은 생산된 과일나무모의 굵기, 크기, 영양상태, 병해충감염상태 같은 것을 정확히 검사하여야 한다.

### 제15조 (과일나무모의 공급)

과일나무모의 공급은 계획과 계약에 따라 한다.

과일나무모를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사에서 합격된 과일나무모를 공급하여야 한다.

통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급한 과일나무모에 대하여서만 생산실적으로 평가해주어야 한다.

**제16조 (과일나무모의 포장)**

공급할 과일나무모의 포장은 그것을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과일나무모의 포장은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 제3장 과수원의 조성

**제17조 (과수원조성의 기본요구)**

과수원의 조성을 전망성있게 하는 것은 과일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지리적특성과 과수업의 발전추세, 과일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과수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8조 (과수원의 조성계획)**

과수원조성은 국가계획에 따라 한다.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과수원조성계획을 국가계획에 정확히 맞물려야 한다.

**제19조 (과수원의 설계)**

과수원설계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과수원조성지역의 기후, 토양, 경사조건을 조사분석하고 과일생산공정을 기계화하며 로력과 농약을 적게 쓰면서도 단위당 면적에서 과일생산을 늘일수 있게 과수원설계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과수원조성토지의 보장)**

과수원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이 경우 농업지도기관 또는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 (과일품종의 배치)**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올과일과 늦과일품종을 배합하여 과일나무를 심어야 한다.  
빈그루는 제때에 보석하여야 한다.

**제22조 (과수원시설의 건설)**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수원에 농약창고, 비료창고, 약물탱크, 과일선별장, 과일저장고를 건설하며 사방야계공사를 질적으로 하고 관수시설, 물빼기시설을 정해진대로 갖추어야 한다.

**제23조 (과일나무의 그루바꿈)**

과일나무그루바꿈은 과일나무들이 퇴화된 과수원부터 단계별로 한다. 이 경우 농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24조 (비료시기의 기준)

과수원을 새로 조성하거나 그루바꿈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급비료와 화학비료, 소석회 같은 것을 정해진 기준대로 주어야 한다.

비료시비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농업지도기관이 한다.

## 제4장 과수원의 관리

#### 제25조 (과수원관리의 기본요구)

과수원의 관리는 과일나무의 생장에 필요한 영양과 환경조건보장의 기본공정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수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26조 (과수원의 토양분석, 개량)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수원의 토양분석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산성화된 토양, 랭습해를 받는 토양, 굳은 토양을 제때에 개량하여야 한다.

#### 제27조 (과수원의 지력제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거름 같은 질 좋은 자급비료를 생산하여 과수원의 지력을 높여야 한다.

#### 제28조 (과일나무의 가지자르기, 열매숙아주기)

농업과학연구기관은 과일나무의 특성과 영양상태에 맞는 가지자르기방법, 열매숙음방법을 연구완성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정에 맞게 앞선 가지자르기방법과 열매숙음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 제29조 (과수원의 김매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후치질, 땅뒤집기, 살초제치기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수원의 김매기를 제철에 하여야 한다.

#### 제30조 (과수원의 병해충구제)

농업과학연구기관은 효율적인 병해충구제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병해충예찰예보체계를 바로세우고 발생한 병해충을 제때에 구제하여야 한다.

#### 제31조 (앞선 과학기술의 도입)

농업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수원관리에서 앞선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수작업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 제32조 (사이그루작물의 심기)

어린 과일나무를 심었거나 그루바꿈을 할 과수원에는 키낮은 집짐승먹이작물을 심을수 있다. 결과원에는 거름작물만 심는다.

**제33조 (자연피해로부터의 보호)**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물, 황사, 큰물 같은 자연피해로부터 과수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복토, 벼짚싸주기, 석회물바르기 같은 것을 하여 과일나무가 추위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장 과일수확과 처리

**제34조 (과일수확과 처리의 기본요구)**

과일수확과 처리는 익은 과일을 따들이고 보관, 공급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일수확과 처리를 제철에 하여야 한다.

**제35조 (예상수확량의 판정)**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종, 품종에 따르는 과일나무당 평균수확량을 과학적으로 측정 하여야 한다. 판정한 수확고는 해당 기관에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과일수확의 시기)**

과일수확은 과일이 익은 차례로 한다. 수송도중에 부패변질되기 쉬운 과일, 먼곳으로 수송하여야 할 과일은 익기 전에 수확할수 있다.

**제37조 (과일의 공급)**

과일공급은 계약에 따라 한다. 계약한 과일을 제때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수 있다.

**제38조 (과일의 직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과일의 일부를 직매점을 통하여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과일의 보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앞선 과일보관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과일의 부패변질을 막아야 한다. 실정에 따라 갱도식, 반지하식 같은 보관시설을 꾸리고 과일을 보관할수 있다.

**제40조 (과일의 가공)**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떨어진 과일, 허물진 과일로 단묵, 통줄임 같은 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농업지도기관, 통계기관은 판매된 과일가공품을 과일생산실적으로 평가해주어야 한다.

**제41조 (과일의 수송)**

과일수송은 정해진 용기에 넣어 하여야 한다. 교통운수기관은 생산된 과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제42조 (과일생산량의 장악)**

농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 해당 기관은 과일생산량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과일을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량을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장 과수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3조 (과수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과수부문의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과수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과수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4조 (과수부문의 지도)**

과수부문 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과수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은 과수부문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5조 (과수부문의 과학기술적지도)**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과수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하며 아랫단위의 과수부문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46조 (과수부문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로동행정기관, 해당 기관은 과수부문에 필요한 토지, 로력, 자금, 농약, 비료, 포장재 같은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7조 (과수부문의 과학연구, 기술자, 전문가양성)**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과수업발전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제때에 풀며 유능한 과수부문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48조 (과수부문 사업의 감독통제)**

과수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농업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과수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과일나무모의 생산, 과수원의 조성관리, 과일수확과 처리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9조 (손해보상)**

승인없이 과일나무를 찍었거나 또는 과수원의 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계약된 과일나무모나 과일을 제때에 가져가지 않아 손실, 부패변질시킨 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0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과수업발전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약법

주체95(2006)년 8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39호로 채택

## 제1장 농약법의 기본

### 제1조 (농약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약법은 농약의 검정과 등록, 생산과 공급, 보관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필요한 농약을 생산보장하며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농약의 분류)

농약은 농작물과 산림자원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잡초를 없애며 농작물과 산림자원의 성장을 조절하는데 리용하는 물리화학적, 생물학적제품이다.

농약에는 살충제, 살균제, 살초제, 휘로몬제, 기피제, 식물성장조절제, 생물농약 같은 것이 속한다.

### 제3조 (농약의 검정, 등록원칙)

농약의 검정과 등록은 농약의 질을 평가하고 등록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농약의 검정, 등록체계를 세우고 검정, 등록에서 과학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4조 (농약의 생산, 공급원칙)

농약의 생산과 공급은 바로 하는 것은 농약에 대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농약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그 질을 높이며 수요에 맞게 공급하도록 한다.

### 제5조 (농약의 보관, 리용원칙)

농약의 보관과 리용을 바로하는 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농약의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보관관리하며 생물농약의 리용을 장려하도록 한다.

### 제6조 (농약관리부문의 투자원칙)

국가는 농약관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 제7조 (대외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농약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농약의 검정과 등록

### 제8조 (농약검정, 등록의 기본요구)

농약의 검정과 등록을 바로하는 것은 농약에 의한 사고를 막고 그 안정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농약을 생산, 수출입하거나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검정을 받고 등록하여야 한다.

### 제9조 (농약의 검정기관)

농약검정은 농업과학연구기관이 한다.

필요한 경우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분석설비가 갖추어진 과학연구기관도 농약검정을 할수 있다.

### 제10조 (농약검정신청)

농약을 검정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농업과학연구기관 또는 해당과학연구기관에 검정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검정신청문건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신청리유를 정확히 밝히며 농약제품견본과 검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 (농약의 검정대상)

농약의 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규격을 새로 제정하기 위하여 만든 농약
2. 생산, 수출입하는 농약
3. 농약사고 같은 사유로 조사심의하는 농약
4. 수요자와 공급자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농약
5. 질을 판정할 필요가 있는 농약

### 제12조 (농약의 검정기준)

농약의 검정은 농약규격에 따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농약의 검정은 해당 나라의 농약규격에 따라 한다. 그러나 해당 나라의 규격이 없는 농약의 검정은 농약검정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 제13조 (농약의 검정방법)

농약검정기관은 농약의 질검사와 성분함량분석, 기초활성분석, 포전효과검정시험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농약의 독성검사,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같은 것은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수 있다.

**제14조 (농약검정결과의 통지)**

농약검정에 대한 평가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농약검정기관은 농약검정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 (농약의 등록신청)**

농약의 등록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농약을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중앙농업지도기관에 등록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등록신청문건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신청리유를 밝히며 농약검정문건과 견본품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결합있는 신청문건의 반송)**

중앙농업지도기관은 결합있는 농약등록신청문건을 돌려보낼수 있다.

등록신청문건을 돌려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결합을 고치고 다시 제기할수 있다.

**제17조 (농약의 등록심의)**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접수한 등록신청문건을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심의에 전문일군을 참가시킬수 있다.

농약의 등록심의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 (등록할수 없는 농약)**

등록할수 없는 농약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영향을 주는 농약
2.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리용에 부정적영향을 주는 농약
3. 국제적으로 리용이 금지된 농약
4. 용도에 맞지 않는 농약

**제19조 (농약등록증의 발급)**

등록이 결정된 농약은 국가농약등록부에 등록하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농약 등록증을 발급하여준다.

등록된 농약은 공개한다.

**제20조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제기)**

농약등록심의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6개월안으로 중앙농업 지도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3장 농약의 생산과 공급

### 제21조 (농약생산, 공급의 기본요구)

농약의 생산과 공급은 국가의 계획에 따라 한다.

국가계획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농약에 대한 국가적인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농약의 생산, 공급계획을 작성하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 제22조 (농약의 규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의 생산을 규격에 맞게 하여야 한다.

농약의 규격을 제정하는 사업은 중앙규격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 제23조 (농약의 생산허가)

농약의 생산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수 있다.

농약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노동안전시설, 환경보호시설, 위생조건같은 것을 갖추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제24조 (농약의 포장)

농약을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을 정해진대로 포장하여야 한다.

포장용기에는 농약이름, 성분함량, 수량, 생산날자, 기업소 이름, 유효기간, 독성분류 같은 것을 밝힌 상표와 검사증을 붙여야 한다.

### 제25조 (농약의 공급)

농약의 공급은 공급계획에 따라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농약을 사용기간안에 공급하여야 한다.

사용기간이 지났거나 상표, 검사증이없는 농약은 공급할수 없다.

### 제26조 (농약의 수송)

농약을 수송하려는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농약의 특성에 맞게 수송수단을 갖추고 기술 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사람과 환경에 피해를 줄수 있는 농약을 수송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7조 (농약의 수출입)

농약을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검사, 검역기관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은 농약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

## 제4장 농약의 보관과 리용

### 제28조 (농약보관, 리용의 기본요구)

농약의 보관, 리용을 잘하는 것은 생산된 농약의 질을 보존하고 손실을 막으며 그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의 보관, 리용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29조 (농약의 보관시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농약보관시설을 주기에 따라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 제30조 (농약의 보관방법)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보관관리자를 정하여 농약을 종류별, 포장별로 갈라 보관하고 표식을 하여야 한다.

독성이 센 농약은 따로 보관하며 농약을 다른 물건과 함께 보관시킬수 없다.

### 제31조 (농약의 입출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의 입출고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농약의 입출고정형을 정확히 기록하며 매월 실시하여야 한다.

### 제32조 (농약의 리용)

농약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지도서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독성이 센 농약의 리용은 농약기술자의 립회밑에 하여야 한다.

### 제33조 (안전기술규정의 준수)

농약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로동보호대책을 세우고 안전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임신한 녀성, 젓먹이어린이가 있는 녀성은 독성이 센 농약을 다룰수 없다.

### 제34조 (농약의 리용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농약을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설명서가 없는 농약은 리용할수 없다.

### 제35조 (독성위험의 표식)

독성이 센 농약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장소에 독성위험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농약에 의한 환경피해방지)**

농약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농약이 바다, 강, 호수, 우물 같은곳으로 흘러 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약을 리용한 용기, 도구를 강, 호수, 물길 같은 곳에서 씻을수 없다.

**제37조 (농약에 의한 사고의 통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농약리용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제때에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8조 (농약의 회수처리)**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용기일이 지났거나 유효성분함량과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지표들이 기준에 이르지 못한 농약을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 제5장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9조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농약관리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0조 (농약관리사업의 지도기관)**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농약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1조 (감독통제기관)**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농약관리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2조 (손해보상, 벌금)**

농약의 보관과 리용을 잘하지 못하여 손상, 분실시켰거나 농작물과 산림자원, 환경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43조 (중지, 몰수)**

검정, 등록을 받지 않은 농약을 생산, 공급, 리용하거나 수출입할 경우에는 생산, 공급, 리용, 수출입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농약을 몰수한다.

**제44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농약관리사업과 농업생산, 환경보호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법

주체87(1998)년 12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0호로 채택  
주체91(2002)년 6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03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11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2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22호로 수정보충

## 제1장 농업법의 기본

### 제1조 (농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법은 농업생산과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농업자원 보호와 농업생산물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농촌 경리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농업생산의 목적)

농업은 인민경제 2대부문의 하나이다.

국가는 농업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높은 수준에서 해결하고 공업원료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 제3조 (농업발전의 기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한 농업정책에 의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농업생산수준이 높아졌으며 사회주의적인 농업경리제도가 굳건히 다져졌다.

국가는 농업발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생산을 고도로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제4조 (농업의 경리형태와 협동경리의 국영경리에로의 전환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농업의 경리형태는 사회주의적경리형태이다.

농업의 사회주의적경리형태는 국영경리와 협동경리로 이루어진다.

국가는 국영경리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며 협동경리를 성숙된 조건과 가능성, 협동단체에 들어 있는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점차 국영경리로 전환하도록 한다.

### 제5조 (농업근로자들의 역할제고원칙)

농업생산과 관리의 주인은 농업근로자들이다.

국가는 농업근로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존중하며 그들이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양하여 농업생산과 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 제6조 (농업의 다각화원칙)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농업생산물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알곡생산을 비롯한 농업생산의 여러 부문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7조 (주체농법의 구현원칙)

주체농법은 우리 나라 기후풍토와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 지대의 조건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하는 영농방법이다.

국가는 농업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주체농법을 발전풍부화시키고 그것을 농업생산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한다.

#### 제8조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원칙)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농업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 제9조 (농업에 대한 지원원칙)

농업을 적극 도와주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농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농업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 제10조 (농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방법개선의 원칙)

국가는 농업에 대한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를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농업생산단위의 창발성을 높이며 농업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 제11조 (농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농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농업생산

#### 제12조 (농업생산계획작성과 생산조직)

농업생산은 알곡, 낱새, 공예작물, 축산물, 과일, 누에고치 같은것을 생산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생산조직을 바로하여야 한다.

#### 제13조 (농업생산부문의 배치)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알곡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농업생산의 다른 부문을 배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농업생산부문의 배치는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와 지대의 자연경제적조건을 타산하여 생산성을 높일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농업생산의 전문화)**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의 전문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농업생산을 전문화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과학기술발전수준과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작물별, 집짐승종류별, 수종별, 누에종류별생산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15조 (종자의 생산)**

종자생산에 선차적관심을 돌리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농업지도기관과 종자관리기관, 원종장, 채종농장, 종축장, 종묘장, 종란장 같은 종자생산공급기관, 기업소는 종자생산공급체계를 바로세워 생산성이 높고 지대의 기후풍토에 맞으며 순결률이 높은 종자를 제때에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종자를 생산공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종자의 생육조건을 보장하고 퇴화를 막으며 종자의 보관관리를 정해진대로 하여 그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종자의 등록, 검사, 평가)**

종자는 국가에 등록되고 검사에서 합격된것만 리용한다. 그러나 알곡종자는 국가에 등록되고 검사에서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지대의 시험재배에서 좋은것으로 평가되었을 경우에 심는다. 종자의 등록과 검사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17조 (알곡생산)**

농업에서 기본은 알곡생산이다.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벼, 강냉이, 감자, 콩을 비롯한 다수확알곡작물의 파종면적을 늘이고 비배관리를 잘하며 논벼농사에서 영양랭상모재배, 수직파재배, 불경재배, 소식재배, 밭농사에서 사이그루재배, 섞음그루재배 같은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부침땅의 정보당 수확량을 높여야 한다.

**제18조 (남새생산)**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남새밭면적을 알맞게 정하고 영양가와 수확량이 높은 남새종류와 품종을 널리 받아들이며 남새의 정보당 수확량을 높여야 한다. 남새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기별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계단식재배, 온실 재배를 하며 여러가지 앞선 남새재배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19조 (공예작물생산)**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호, 기름, 약용, 섬유작물 같은 공예작물을 적지에 집중적으로 심으며 비경지를 리용하여 더 많은 공예작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20조 (다모작)**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모작방법을 받아들여 부침땅의 단위당 생산량을 높여야 한다.

다모작의 규모는 로력, 종자, 물, 비료조건을 타산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축산물생산)**

축산물생산은 공동축산을 기본으로 하고 개인부업축산을 배합하여 한다.

축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풀먹는집집승을 위주로 하면서 지대의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 집집승을 기르며 그 사양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수의방역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2조 (과일생산)**

과일생산은 사과, 배를 위주로 하고 올과일과 늦과일, 로력과 농약이 적게 드는 수종, 품종을 배합하여 한다.

과수농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의 실정과 지대적조건에 맞게 과일생산을 조직하며 점차 고급과일생산비중을 높여야 한다.

**제23조 (고치생산)**

잠업농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뽕누에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러가지 누에를 배합하고 앞선 누에치기방법을 받아들여 고치생산을 늘여야 한다.

누에치기는 적기에 집중적으로 하며 먹이조건, 로력조건을 따라 균중적으로도 하여야 한다.

**제24조 (적지적작, 적기적작)**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영농공정에 따르는 작업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물의 공급, 리용)**

농업지도기관과 관개수리기관, 기업소는 물사령체계를 바로세우고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을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대기방법을 개선하여 물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관개용수를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농업의 기계화)**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계작업의 종류와 범위를 늘이고 기계수단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농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농업생산용트랙토르 같은 기계설비는 농업생산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킬수 없다.

**제27조 (비료, 농약의 리용)**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학비료, 복합미생물비료, 유기질비료, 농약, 살초제 같은 것을 제때에 확보하고 과학적으로 리용하여 그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사람에게 심한 피해를 줄수 있는 농약, 살초제는 농업생산에 리용할수 없다.

**제28조 (병해충피해방지)**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병해충예찰예보체계를 세우고 병해충을 제때에 적발하여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

병해충발생지구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방역위원회를 내올수 있다.

**제29조 (자연피해방지)**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바람, 고온, 저온, 우박, 서리에 의한 피해막이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워 농작물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농작물의 손실을 막는데 필요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설비, 자재, 로력을 동원시킬수 있다.

## 제3장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제30조 (물질기술적토대강화의 기본요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농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농업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나라의 귀중한 밑천이다.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제31조 (농업토지의 관리)**

농업에서 토지는 기본생산수단이다.

농업토지에는 농업생산에 리용하거나 리용하기로 된 토지가 속한다.

농업생산에 리용하는 토지에 대한 관리는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32조 (농업토지의 조사, 장악, 등록)**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토지를 정기적으로 조사장악하고 그 정형을 농업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에 리용하려는 토지는 농업지도기관에 등록하며 농업토지의 지목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3조 (농업토지의 확보)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간석지를 개간하고 새땅찾기운동을 적극 벌려 더 많은 농업토지를 얻어내야 한다.

토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는 내부망공사를 비롯하여 설계에 예견된 공사를 끝내고 준공 검사를 받은 다음 개간한 농업토지를 농업생산단위에 넘겨주어야 한다.

개간한 농업토지를 넘겨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제때에 농업생산에 리용하여야 한다.

### 제34조 (지력제고)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양분석을 주기적으로 하고 농업토지를 계획적으로 개량하며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어 농업토지의 지력을 높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양분석시약, 토지개량제 같은것을 계획대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 제35조 (토지정리)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리계획을 세우고 패기논과 비탈 밭, 빈땅 같은것을 정리하여야 한다.

정리하는 농업토지는 규격포전, 기계화포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 제36조 (과수밭, 뽕밭건설)

농업지도기관과 과수농장, 잠업농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수원, 뽕밭적지를 바로 정하고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에 편리하게 건설하여야 한다.

과일나무, 뽕나무의 수종, 품종배치와 그루바꿈은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 제37조 (관개수리시설의 개진, 보수정비)

농업지도기관과 관개수리기관, 기업소, 농목장, 해당 기업소는 관개수리시설과 설비를 개진 확장하며 그것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중소관개수리시설과 설비에 대한 보수정비는 그것을 리용하는 단위가 할수 있다.

### 제38조 (농업생산용물의 확보)

농업지도기관과 관개수리기관, 기업소는 농업생산용저수지의 물을 제때에 확보하여야 한다.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원천을 적극 찾아내고 저수시설을 마련하여 더 많은 물을 잡아야 한다.

### 제39조 (영농용전력의 공급)

전력공급기관, 기업소는 농업부문에 대한 전력공급체계를 바로세우고 필요한 전력을 영농시기별로 원만히 공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가지 형태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농업부문에 요구되는 전력수요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40조 (농업설비, 농기구, 부속품의 생산)**

기계공업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업소는 농기계를 비롯한 농업설비와 농기구, 부속품을 수요대로 생산보장하며 농업설비, 농기구에 대한 보수정비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농업근로자는 농업설비, 농기구를 알뜰히 다루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 (신용보증제)**

국가는 농기계생산과 수리에서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제를 실시한다.

신용보증제를 실시할 대상과 신용보증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42조 (비료, 농약의 생산공급)**

화학공업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비료, 농약, 살초제를 제때에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제43조 (부림집짐승의 관리)**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부림집짐승을 마련하고 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제44조 (종자, 집짐승먹이, 수의약품생산)**

농업지도기관과 농업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자, 집짐승먹이, 수의약품, 연료생산기지와 인공수정기지 같은 것을 실정에 맞게 튼튼히 꾸려야 한다.

**제45조 (풀판의 조성)**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풀먹는집짐승을 기르기 위한 풀판적지를 조사장악하고 지대적특성에 맞는 좋은 풀판을 계획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농업부문의 기본건설)**

협동농장의 농업토지와 관개수리시설, 탈곡장, 집짐승우리, 창고건설 같은 농업생산과 관련한 기본건설은 계획에 예견하여 국가자금으로 한다.

협동농장은 물질적토대가 강화되는데 따라 중소규모의 기본건설을 자체자금으로 할수 있다.

**제47조 (영농기자재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농업지도기관, 운수기관은 영농기자재를 농업생산의 기본단위인 농목장에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영농기자재는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할수 없다.

**제48조 (농업과학기술의 개발도입)**

농업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농업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세포공학, 유전자공학을 비롯한 현대생물학과 농업생산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과 새로운 농업생산기술, 수단,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을 제때에 도입하여야 한다.

## 제4장 농업자원의 보호

### 제49조 (농업자원보호의 기본요구)

농업자원을 보호하는것은 농업생산의 안전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중요방도이다.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자원보호 체계를 세우고 농업자원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50조 (농업자원보호시설의 건설)

농업지도기관과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피해로부터 농업자원을 보호할수 있게 물도랑파기, 하천정리, 사방야계공사, 제방공사와 사방림, 방풍림, 수원함양림의 조성, 다락밭건설 같은것을 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자원에 피해를 줄수 있는 대상을 조사장악하고 피해막이대책을 세우며 농업토지가 류실, 매몰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때에 복구하여야 한다.

### 제51조 (농업자원보호시설의 보수정비)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자원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큰 규모의 농업자원보호시설은 전문기업소가, 작은 규모의 농업자원보호시설은 해당 리용단위가 보수정비한다.

### 제52조 (농업토지람용의 금지)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토지를 농업생산에만 리용하며 그것을 목이 거나 람용하지 말아야 한다.

농업토지를 건설부지 같은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 대토를 확보하고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3조 (농업자원피해대상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자원과 그 지대의 생태환경에 피해를 줄수 있는 건설이나 해로운 물질에 대한 처리를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제54조 (보호구역, 격리구역)**

국가는 농업자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농업토지, 작잠림지, 밤나무림지, 관개수리 시설과 농사시험장, 원종장, 채종농장, 종축장의 필요한 지역에 보호구역 또는 격리구역을 정한다.  
보호구역이나 격리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제55조 (보호구역, 격리구역에서 금지행위)**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농업자원보호구역에서 농업자원보호와 관련이 없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지 말고 돌, 나무, 모래, 흙 같은것을 채취하거나 파지 말며 격리구역에서 종자생산에 피해를 줄수 있는 작물을 심거나 집짐승을 기르지 말아야 한다.

**제56조 (좋은 토종의 보호)**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우리 나라에 있는 좋은 토종을 보호증식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토종을 보호증식하기 위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7조 (리로운 동식물의 보호)**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농업생산에 리로운 동식물의 생육, 번식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

리로운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려 할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58조 (기상예보와 통보, 배수시설관리)**

기상수문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불리한 기후에 의한 농업자원의 손실을 미리 막을수 있도록 기상예보통보체계를 세우고 기상예보와 통보의 신속성, 과학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저수지, 갑문관리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에 의한 피해로부터 농업자원을 보호할수 있게 배수시설을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장 농업생산물의 관리

**제59조 (농업생산물관리의 기본요구)**

농업생산물의 관리는 농업생산물을 장악, 보관하고 처리하는 사업이다.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을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 (농업생산정형의 장악, 등록)**

농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은 농업생산물생산정형을 장악하여야 한다.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을 계량하여 빠짐없이 등록하고 농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에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 (농업생산물의 허실방지)**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의 수확, 탈곡, 선별, 운반, 가공, 처리 같은 것을 알뜰히 하여 허실과 부패변질, 불량품을 없애야 한다.

**제62조 (농업생산물의 포장)**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포장용기를 마련하고 쓸수 있는 용기를 제때에 회수리용하며 농업생산물포장을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포장용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는 계획된 용기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63조 (농업생산물의 보관)**

수매량정기관과 상업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을 기술적조건과 안전조건이 갖추어진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수매한 농업생산물보관은 수매량정기관, 기업소 또는 상업기관, 기업소가 한다. 그러나 수매한 량곡을 국가중간창고에 실어나를 때까지의 보관은 내각이 정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할 수 있다.

**제64조 (농업생산물의 처리)**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을 국가계획과 계약 그밖에 정해진데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벼는 걸곡으로 또는 정미하여 국가에 납부하거나 수매할수 있다.

**제65조 (농업생산물검사)**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을 국가에 납부하거나 수매할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농업생산물에 대한 검사는 국가품질감독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국가품질감독기관이 위임한 기관, 기업소, 단체도 검사를 할수 있다.

**제66조 (농업생산물의 직매)**

농목장은 낱새, 관일, 젓 같은 일부 농업생산물을 직매점을 통하여 판매할수 있다.

직매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농업생산물의 종류, 수량과 시기는 해당 기관이 정한다.

**제67조 (농업생산물의 수출)**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예작물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을 해당 기관을 통하여 수출할수 있다.

종자를 다른 나라에 내보내려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 제6장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68조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농업관리를 개선하며 농업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사업과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 제69조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농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농촌경리전반에 대한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실현하고 농업과학기술과 농업의 전망적발전문제를 해결하며 나라의 농업생산을 책임진 참모부로서의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70조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의 임무)

도농업지도기관은 도의 농촌경리발전과 농업생산을 책임지고 시, 군농업지도기관과 농업부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농업정책집행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시, 군농업지도기관은 농업생산을 직접 책임지고 협동농장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강화하며 농업생산에 복무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틀어쥐고 협동농장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를 원만히 실현하여야 한다.

### 제71조 (농업생산공정의 장악, 기업관리의 개선)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은 농업사령체계와 기술지도체계를 세우고 농업생산의 모든 공정을 장악하고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며 농업을 기업적방법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72조 (독립채산제,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실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농목장과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기업소는 국가의 계획적지도밑에 기업관리를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농장은 농업관리운영에서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73조 (토지사용료)

국가의 토지를 경작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제때에 바쳐야 한다.

### 제74조 (생산의 효과성제고, 분배)

농목장은 농업에 대한 계획화 사업과 로력, 재정관리를 잘하고 경제적공간을 리용하여 생산의 효과성을 높이며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맞게 농장원의 가동일수와 로력일에 따라 현물분배를 기본으로 하면서 현금분배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분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5조 (기술자, 전문가양성)**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은 농업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이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76조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농업생산과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농업자원보호와 농업생산물관리질서를 지키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7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회수)**

농업생산실적을 허위보고하였거나 부침땅을 람용하였거나 또는 농업시설물, 설비, 자재를 파괴, 손상시켰거나 농업생산물에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부업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알곡수확량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업토지를 회수한다.

**제78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농업발전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작물종자관리법

주체100(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0호로 채택  
주체109(2020)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22호로 수정보충

## 제1장 농작물종자관리법의 기본

### 제1조 (농작물종자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작물종자관리법은 농작물종자의 등록과 생산, 보관,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작물종자관리사업을 개선하고 농업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대한 투자원칙)

농작물종자는 농업생산발전의 밑천이다.

국가는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선차적관심을 돌리고 그 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도록 한다.

### 제3조 (농작물종자의 등록원칙)

농작물종자의 등록은 새로 개발한 농작물종자를 국가품종으로 등록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농작물종자등록체계를 바로세우고 농작물종자등록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 제4조 (농작물종자의 생산원칙)

국가는 농작물종자생산에서 전문화, 과학화, 상품화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작물종자를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하도록 한다.

### 제5조 (농작물종자의 보관과 리용원칙)

국가는 농작물종자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며 그것을 정해진 용도에 리용하도록 한다.

### 제6조 (과학연구 및 인재양성사업원칙)

국가는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농작물종자관리사업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 제7조 (농작물종자관리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농작물종자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2장 농작물종자의 등록

### 제8조 (농작물품종비교시험의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새 농작물품종을 육종하였을 경우 농작물품종등록심의위원회에 품종비교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 제9조 (농작물품종의 비교시험)

국가품종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국가품종등록위원회는 농작물품종비교시험을 3년간 진행하면서 생산시험을 동시에 조직하고 새 품종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육종연구기관에서 육종과정에 특별히 우수하게 평가되는 종자에 대하여서는 국가품종등록위원회에서 1년간 시험할수 있다.

농작물품종비교시험을 3년안에 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필요한 정도 더 늘일수 있다.

### 제10조 (국가농작물품종의 등록)

국가품종등록위원회는 생물안전검사에서 통과되고 품종비교시험과 원원종, 원종생산단계를 거쳐 합격된 농작물종자를 국가농작물품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품종등록증서를 발급한다.

특별히 우수하게 평가되는 품종은 국가농작물품종으로 등록하고 원원종, 원종, 채종생산을 동시에 진행할수 있다.

국가품종등록위원회는 새품종등록에서 채종량과 맛, 질을 비롯한 지표들을 중시하여야 한다.

### 제11조 (국가농작물품종등록결과에 대한 의견제기)

국가농작물품종등록결과에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국가품종등록위원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국가품종등록위원회는 제기된 의견을 60일안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 (농작물종자의 생산도입)

농업지도기관과 농업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농작물종자의 생산도입에서 나서는 과학 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풀며 새로 육종한 농작물종자를 농업생산에 제때에 도입하여야 한다.

## 제3장 농작물종자의 생산

### 제13조 (농작물종자생산계획의 작성과 실행)

농작물종자생산은 국가적인 농작물종자생산계획에 따라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농작물종자수요를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농작물종자생산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 농작물의 종자생산계획은 작물 및 품종별 수요와 재배특성에 따라 중앙지표와 지방지표로 나누어 세운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된 농작물종자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14조 (농작물원원종, 원종의 생산단위)**

농작물원원종생산은 농업과학연구기관을 비롯한 육종연구기관에서, 원종의 생산은 원종농장에서 한다.

필요에 따라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도 원원종, 원종을 생산할수 있다.

농작물원원종, 원종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의 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제15조 (농작물종자의 채종단위)**

농작물종자의 채종은 채종농장에서 한다.

농업과학연구기관과 채종농장이 아닌 농장도 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농작물종자를 채종할수 있다.

**제16조 (농작물종자생산단위조직과 조건보장)**

농업지도기관은 농작물종자를 생산하는 단위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농작물종자생산에 필요한 토지와 물질기술적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농작물종자생산에 필요한 토지는 토양이 비옥하고 관수조건, 수송조건, 격리조건 같은것이 유리한 곳에 정하여야 한다.

**제17조 (농작물종자의 생산조직)**

농업지도기관과 육종연구기관, 원종농장, 채종농장은 기술관리체계를 엄격히 세우며 농작물종자의 생산지표와 규모, 갱신주기의 설정, 포전배치 같은 생산조직을 바로하여야 한다.

**제18조 (농작물종자의 규격)**

농업지도기관과 육종연구기관, 원종농장, 채종농장은 농작물종자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생산공정별 기술규정을 엄격히 지키며 정해진 규격에 맞는 농작물종자를 생산하여야 한다.

농작물종자의 규격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규격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제19조 (농작물종자의 수확, 가공, 포장)**

농업지도기관과 육종연구기관, 원종농장, 채종농장은 농작물종자의 수확시기를 바로 정하고 제때에 수확하여야 한다.

육종연구기관과 원종농장, 채종농장은 수확한 농작물종자의 탈곡, 건조, 정선, 선별, 피복 같은 가공과 포장을 표준화, 규격화하여야 한다.



#### 제20조 (농작물종자의 검사)

농작물종자에 대한 검사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지도밑에 농작물종자검사기관이 한다.

농작물종자검사기관은 농작물종자검사에서 농작물종자생산과 보관에 이르기까지 농작물종자에 대한 포전검사, 실험실검사를 검사지표대로 엄격히 하여야 한다.

#### 제21조 (격리거리의 보장)

토지를 농업생산에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육종연구기관, 원종농장, 채종농장과 정해진 격리거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육종연구기관과 원종농장, 채종농장구역안에서 농작물종자의 생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22조 (출입금지)

육종연구기관, 농작물품종비교시험장, 원종농장, 채종농장에는 외부인원이 들어갈수 없다.

사업상필요에 따라 외부인원이 들어가려 할 경우에는 농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3조 (농작물종자의 비밀엄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농작물종자관리사업과 관련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농작물종자관리사업과 관련한 자료는 정해진 일군만이 취급하며 승인없이 보여줄수 없다.

## 제4장 농작물종자의 보관과 리용

#### 제24조 (농작물종자의 보관기관)

농작물종자의 보관은 농작물종자를 육종하거나 생산, 공급,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보관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 제25조 (농작물종자의 보관시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의 특성과 보관량에 맞는 시설을 과학기술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농작물종자보관시설은 정상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제26조 (농작물종자의 보관방법)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적인 농작물종자의 보관방법을 적용하여 농작물종자의 손상, 부패변질 같은 피해를 막고 그 량과 질을 보존하여야 한다.

#### 제27조 (농작물종자의 입출고)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의 입출고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창고에 보관하고있는 농작물종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정형을 농업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농작물종자의 보관기간과 처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의 보관기간을 지켜야 한다.

보관기간이 지난 농작물종자는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농작물종자의 리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제29조 (농작물종자의 수송)**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의 수송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눈이나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입거나 허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계획에 따른 농작물종자의 공급)**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역별 종자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농작물종자공급계획을 바로세우고 농작물종자를 계획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하고 남은 종자 또는 과학기술적요구가 높은 우량종자는 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요자단위와 주문계약을 맺고 판매할수 있다.

**제31조 (검사에서 합격된 농작물종자의 공급)**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검사기관의 검사에서 합격된 농작물종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검사에서 불합격된 농작물종자를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농작물종자의 씨뿌림량)**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의 씨뿌림량을 지대별, 작물별, 품종별에 맞게 정하며 씨뿌리기 전 농작물종자처리를 기술규정대로 하여야 한다.

**제33조 (쓰고남은 농작물종자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쓰고남은 농작물종자를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쓰고남은 농작물종자를 승인없이 다른 용도에 리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4조 (등록된 농작물종자의 리용)**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농작물품종으로 등록되고 채종체계를 거친 농작물종자를 농업생산에 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국가농작물품종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채종체계를 거치지 않은 농작물종자를 농업생산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내각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5조 (농작물종자의 반출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에 리용하려는 농작물종자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에 내보내려 할 경우 내각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장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6조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비상설농산부분종자협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종자육종과 도입에 대한 중앙적인 심의, 지도, 총화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한다.

### 제37조 (농작물종자관리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자금, 연유, 비료, 농약, 농기계 같은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농작물종자관리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로력을 동원하거나 자금, 연유, 비료, 농약, 농기계 같은것을 돌려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38조 (공로평가)

농작물종자를 새로 육종하고 농업생산을 늘이는데 기여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해당한 평가를 한다.

### 제39조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농작물종자관리사업을 바로하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40조 (손해보상)

계획된 농작물종자를 가져가지 않았거나 정해진대로 보관하지 않아 부패변질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41조 (중지, 원상복구)

육종연구기관, 원종농장, 채종농장구역안에서 농작물종자의 생산에 지장을 주는 농작물을 심거나 시설물을 건설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원상복구시킨다.

### 제42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계획에 없는 농작물종자를 생산하였을 경우
2. 육종연구기관, 농작물품종비교시험장, 원종, 채종농장에 승인없이 들어가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농작물종자검사를 정해진대로 하지 않아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농작물종자를 망탕 공급하여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농작물종자를 계획에 없는 단위에 공급하였을 경우
6. 농작물종자를 승인없이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7. 등록되지 않았거나 채종체계를 거치지 않은 농작물종자를 승인없이 농업생산에 리용하였을 경우
8. 농작물종자를 승인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다 생산에 리용하였거나 다른 나라에 내보내었을 경우

**제43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42조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국민에게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

|              |         |              |                 |
|--------------|---------|--------------|-----------------|
| 주체98(2009)년  | 12월 10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483호로 채택    |
| 주체101(2012)년 | 11월 20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2809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2(2013)년 | 7월 2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3(2014)년 | 12월 2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296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4(2015)년 | 6월 25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555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9(2020)년 | 2월 22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239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9(2020)년 | 7월 7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351호로 수정    |
| 주체110(2021)년 | 3월 1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548호로 수정보충  |
| 주체110(2021)년 | 11월 15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778호로 수정보충  |

## 제1장 농장법의 기본

### 제1조 (농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은 농장의 조직과 경영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장사업을 개선강화하며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농장의 정의)

농장은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여 농업생산과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사회주의농업기업체이다.

농장에는 협동농장과 남새, 축산, 공예, 과수, 잠업부문의 전문농장, 부업농장, 실습농장 같은 것이 속한다.

### 제3조 (농장의 임무)

국가로부터 받은 농업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농장원들의 노동생활과 물질문화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은 농장앞에 나서는 기본임무이다.

국가는 농장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한다.

### 제4조 (농장의 조직원칙)

농장의 조직은 농장을 새로 나오거나 축소, 통합, 분리, 변경하거나 없애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농장의 조직기준을 바로 정하고 농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도록 한다.

### 제5조 (농장의 경영활동원칙)

농장의 경영활동을 바로하는 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농장책임관리제와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고 농장의 경영활동을 실리주의원칙에서 과학화, 합리화하며 농작물배치에서 강냉이농사는 최대한 제한하고 벼

농사와 밀, 보리농사으로 방향전환을 하도록 한다.

**제6조 (농장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농장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농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자립성을 강화하며 농업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7조 (농장에 대한 지원원칙)**

농장을 적극 도와주는것은 국가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농장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농장의 리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2장 농장의 조직

**제8조 (농장조직의 요구)**

농장은 리를 단위로 조직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리의 일정한 지역에 농장을 따로 조직할수 있다.

농장조직에 대한 승인은 대상에 따라 내각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9조 (농장조직신청)**

농장을 내오려는 농업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조직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농장조직기관에 내야 한다.

농장조직신청문건에는 농장명, 조직목적, 소재지, 급수, 면적, 생산업종과 지표, 생산규모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0조 (농장조직신청문건의 심의)**

농장조직기관은 농장조직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안에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조직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농장조직결정)**

농장조직기관은 농장조직신청문건을 심의한 다음 농장조직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그 정형을 제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농장의 등록신청)**

농장조직승인을 받은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30일안에 농장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와 사회안전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농장의 등록)**

농장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30일안에 심의하고 농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농장에는 농장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농장의 재등록)**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의 등록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10일안에 해당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의 경유를 받아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 (농장등록증의 재발급)**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 제 때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16조 (작업반과 분조의 조직)**

농장은 작업반과 분조를 생산구조와 규모, 농장원들의 생활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작업반, 분조의 로력과 토지는 고착시키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농장의 기구조직)**

농장은 농장운영을 위하여 농장원총회, 관리위원회, 검사위원회와 필요한 관리기구를 둘수 있다. 그러나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 (농장원총회)**

농장원총회는 농장의 최고기관이다.

농장원총회는 국가의 정책과 법의 집행, 농장규약의 채택, 토지를 비롯한 중요생산수단의 관리, 작업반과 분조의 조직, 농장원등록, 결산분배 같은 농장운영과 관련한 중요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농장원총회는 분기에 한번이상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19조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는 농장앞에 나서는 과업을 조직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는 농장의 생산, 로력, 자재, 재정, 후방, 수매 같은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제20조 (검사위원회)**

검사위원회는 농장관리사업을 감독통제하는 기관으로서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한다.

검사위원회는 법규범의 준수, 로력, 재정, 공동재산관리를 비롯한 농장의 전반적인 관리정형을 검열하고 대책을 세운다.

### 제21조 (농장의 관리성원)

농장은 관리위원장 또는 지배인, 기사장과 그밖의 필요한 관리성원을 둔다. 이 경우 국가적으로 농장의 경지면적과 농업생산량에 따라 정해진 표준관리기구범위안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겸직을 조직하여 관리기구를 줄일수 있다.

농장은 관리성원들의 직능과 책임한계를 명백하게 정해주고 그들이 자기의 직무상 책임을 성실히 리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장 농장의 경영활동

### 제22조 (농장의 경영권)

농장은 경영활동에서 계획권과 생산조직권, 관리기구 및 로력조절권, 생산물처리권, 자금리용권 같은 경영권을 가진다.

농장은 국가가 부여한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 제23조 (농업생산계획의 작성, 실행)

농장은 국가에서 시달된 농업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할수 있게 작물배치 및 파종면적계획과 정보당수확고계획을 실정에 맞게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농장은 국가에서 시달된 농업생산계획을 실행하는 조건에서 수입이 높은 여러가지 작물을 농장지표로 계획화하고 재배할수 있다.

작물배치 및 파종면적계획, 정보당수확고계획은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 제24조 (농업생산조직)

농장은 생산참모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우며 작업반과 분조의 생산지표와 생산규모의 선정, 작물 및 품종의 배치, 로력과 농기계의 배치 같은 생산조직을 바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에서 시달한 농업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할수 있게 작물과 품종선택, 재배형식과 파종면적을 규정하고 군농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집행하며 영농시기와 방법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수 있다.

농장은 농장원들의 수입을 높일수 있게 여러가지 부업생산단위를 자체로 조직할수 있다.

### 제25조 (분조관리제의 실시)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경영활동을 고도로 현대화, 조직화, 과학화, 합리화하며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 농장원들의 책임성과 창조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제26조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의 실시)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는 농장원들에게 포전을 맡겨주어 관리하도록 하고 포전담



당자의 번로력일과 담당포전의 생산결과에 따라 분배몫을 계산하여주는 분조관리제안에서의 작업조직방법이며 분배방법이다.

농장은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 제27조 (포전분담)

농장은 농장원들에 대한 포전분담을 분조가 책임지고 농장원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8조 (담당포전농업생산 및 수매계획)

농장은 작업반, 분조별에 따르는 부침땅면적과 토지소출능력 같은것을 정확히 고려하여 농업생산계획과 수매계획을 작업반, 분조를 단위로 시달하여야 한다.

작업반, 분조는 농장원들에게 담당포전의 농업생산과제와 수매과제를 정확히 정해주어야 한다. 농장과 작업반은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에서부터 받은 농업생산계획과 수매계획을 변경시켜 작업반과 분조에 시달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29조 (담당포전의 영농작업에 대한 책임)

농장은 담당포전의 영농공정수행에서 농장, 작업반, 분조, 농장원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분조는 농장원들의 작업조직과 로력일평가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30조 (농업생산물처리)

농장은 분조에서 국가알곡의무수매계획과 농장공동조성몫을 수행한 경우 농장의 국가알곡의 무수매계획수행정도에 관계없이 농장원들의 번 로력일과 생산계획수행률에 따라 생산한 알곡을 분조단위로 전량 현물로 분배하여야 한다.

남새, 공예작물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은 판매한 수입에서 생산에 지출된 비용과 농장공동기금 조성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농장원들의 번 로력일에 따라 현금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 제31조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확립)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집짐승을 길러 물거름을 생산하고 물거름을 쳐서 알곡생산을 늘이며 그 알곡을 먹이로 하여 고기를 생산하는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워야 한다.

#### 제32조 (종자생산, 공급)

종자는 농업생산을 좌우하는 기본고리이다.

농업지도기관과 종자관리기관, 원종장, 채종농장, 종축장 같은 종자생산공급기관, 기업소는 종자생산체계를 바로세워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고 기물과 추위, 염기와 병해충견딜성이 강하며 비료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은 다수확우량품종의 종자를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종자는 국가에 등록되고 검사에서 합격된것만 리용하여야 한다.

### 제33조 (영농준비와 영농작업수행)

농장은 영농일지와 포전별영농기술공정표의 작성, 비료, 농약, 농기구를 비롯한 자재의 확보 같은 영농준비를 제때에 빈틈없이 하며 씨뿌리기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농작업을 과학농법의 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농장은 벼강화재배를 비롯한 선진적인 영농방법들을 받아들이며 두벌농사, 세벌농사운동을 힘있게 벌려 다수확을 거두어야 한다.

농장은 영농물자를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가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게 분조별로 균형을 맞추어 공급하며 모기르기, 논물관리, 비료주기, 농약치기 등 영농공정수행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34조 (농업토지의 조사, 장악, 등록)

농장은 농업토지를 해마다 조사장악하고 그 정형을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업토지는 농업지도기관에 등록하며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인에게 마음대로 넘겨줄 수 없다.

농업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5조 (농업토지의 정리)

농장은 새땅찾기사업을 적극 진행하며 농업토지정리계획을 세우고 땀기논과 비탈밭, 빈땅 같은것을 규격포전, 기계화포전으로 정리하면서 부침땅면적을 부단히 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토지정리를 경제적효과성이 높고 쉽게 할수 있는 대상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

### 제36조 (지력제고)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는것은 농장의 중요임무이다.

농장은 토양분석을 포전별, 필지별로 세밀하게 하고 그에 기초하여 토지개량을 계획적으로 하며 유기질비료와 생물활성비료, 미생물비료, 생물농약 같은것을 많이 내어 부침땅의 지력을 높여야 한다.

### 제37조 (농업토지리용률의 제고)

농장은 자연기후조건을 고려하여 지대의 특성에 맞게 경종체계를 바로세우고 그에 따라 선진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용하여 농업토지의 정보당 수확고와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 제38조 (농업토지람용의 금지)

농장은 농업토지를 농업생산에만 리용하며 그것을 목이거나 람용하지 말아야 한다.

농업토지를 건설부지 같은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대토를 확보하고 국토 환경보호기관의 동의를 받은 다음 중앙농업지도기관과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토복구를 하지 않고 농업토지를 다른 목적에 리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39조 (물원천의 확보)

농장은 영농기전에 작업반, 분조별로 물소요량과 물확보량을 따져보고 한해농사에 쓸 물원천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농장은 물원천을 적극 찾아내고 저수지와 저류지, 우물, 굴포, 줄짱 같은 물잡이시설을 건설하여 더 많은 물을 잡아야 한다.

### 제40조 (물의 공급, 리용)

농업지도기관과 관개수리기관, 기업소는 물사령체계를 바로 세우고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을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농장은 기상기후조건과 포전의 특성, 농작물의 생육상태에 맞게 논물대기 및 밭관수를 짜고 들어 진행하며 물을 절약하고 물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 제41조 (관개수리시설과 설비의 보수)

농장은 관개수리시설과 설비에 대한 보수를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관개수리시설과 설비에 대한 정상보수는 자체로 하며 대보수는 관개수리기관, 기업소에 의뢰하여 한다.

### 제42조 (큰물과 고인물에 의한 피해막이대책)

농장은 농장림을 조성하고 잘 가꾸며 중소하천정리와 제방쌓기, 사방야계공사, 배수시설건설 같은것을 하여 큰물과 고인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농업토지가 류실, 매몰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제때에 복구하여야 한다.

### 제43조 (영농설비의 리용)

농장은 트랙터와 자동차, 모내는 기계, 탈곡기 같은 영농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정상가동을 보장하며 씨뿌리기와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를 비롯한 모든 영농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농장은 영농설비를 사회적과제수행을 비롯한 각종 명목으로 농사와 관련이 없는 타사업에 동원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44조 (영농설비와 농기구의 보수정비)

농장은 농기계수리기지를 꾸리고 영농설비와 농기구에 대한 보수정비를 정상적으로 하며 그것을 알뜰히 다루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농장은 15일설비점검체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 제45조 (부림소관리)

농장은 작업반별 부림소확보계획을 정확히 주고 어김없이 실행하여 농업생산에 필요한 부림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농장은 부림소우리를 질적으로 짓고 필요한 관리도구를 갖추며 부림소먹이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6조 (영농자재리용의 효과성제고)**

농장은 영농자재의 리용에서 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농장은 영농자재를 각종 명목으로 농사와 관련이 없는 타사업에 리용하거나 랑비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7조 (로력관리)**

농장은 로력배치상태를 해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부문별, 단위별로력을 균형적으로 배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부문의 로력비중을 늘이는 원칙에서 비생산로력조절, 로동정량제 정 등 로력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처리하며 기술자, 기능공대렬을 계획적으로 늘이고 그들을 우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제48조 (로력일평가)**

농장은 농장원들의 로력일평가를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제때에 정확히 하며 공시하여야 한다. 로동정량은 제때에 재사정하여 적용한다.

**제49조 (자금리용 및 재정총화)**

농장은 해당 은행기관에 돈자리를 개설하고 돈자리에 적립된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으로 영농물자, 식량 같은것을 구입하거나 기타 경영활동을 진행하는데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자체지표생산물을 가지고 번 자금은 경영활동에 제한없이 쓸수 있다.

은행기관은 농장에 필요한 영농물자구입자금을 저리자로 대부해주며 대부금에 대한 상환기일을 농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만큼 연기시켜줄수 있다.

농장은 농장원들의 의사에 따라 소득을 생산확대와 농장원들의 생활보장에 합리적으로 분배, 리용하며 경영활동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유휴화폐자금을 직접 동원리용할수 있다.

농장은 재정총화를 10일, 월, 분기, 상반년, 년별로 하여야 한다.

농장의 수입지출정형은 공시하여야 한다.

**제50조 (알곡예상수확고의 판정)**

농장은 작업반별, 분조별, 포전담당별 알곡예상수확고판정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일군들과 농장원들을 참가시켜 알곡예상수확고판정에서 과학성, 공정성, 객관성이 보장되게 하여야 한다.

알곡예상수확고판정은 포전에서평뜨기방법으로 한다.

**제51조 (농장의 결산분배)**

농장은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따라 결산분배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농장은 결산분배총화를 농장원총회에서 하며 농장원들에게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맞게 현물분배를 기본으로 하면서 현금분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 (고정재산의 등록과 실사)**

농장은 고정재산을 국가고정재산과 농장고정재산으로 갈라 현물 또는 화폐적으로 등록하며 그에 대한 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을 이관, 인수, 폐기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 (농업생산정형의 등록과 보고)**

농장은 농업생산물을 정확히 계량하여 빠짐없이 등록하고 농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물의 계량은 해당 일군의 립회밑에 계량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계량수단으로 한다.

농업생산물의 계량을 규정대로 하지 않거나 농업생산정형을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54조 (농업생산물의 허실방지와 보관)**

농장은 농업생산물의 수확, 운반, 탈곡, 가공을 제때에 하며 허실,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공한 농업생산물은 정해진대로 포장하고 기술적 및 안전조건이 갖추어진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5조 (국가알곡의무수매계획의 시달)**

국가계획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은 국가적인 알곡수요와 농장원들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원칙에서 국가알곡의무수매계획을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있게 세워 년초에 농업지도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지도기관은 국가로부터 시달받은 수매계획을 변경시켜 아래단위와 농장에 시달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56조 (농업생산물의 수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국가알곡의무수매계획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 작업반은 자기 단위에 시달된 수매계획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계획을 넘쳐 수행한 농장, 작업반, 분조로부터 농업생산물을 더 거두어들여 수매계획을 맞추거나 수매계획을 빗대고 평균주의를 하여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는 행위, 국가알곡의무수매계획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을 수행하지 않고 영농물자구입과 사회적과제수행 등의 명목으로 농업생산물을 비법처리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57조 (수매하고 남은 농업생산물의 처리)**

농장은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을 수행하고 남은 농업생산물을 종자, 집짐승먹이, 생산정상화뭇을 비롯한 공동조성뭇과 현물분배뭇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8조 (종자와 집짐승먹이의 조성, 리용)**

농장은 정해진 범위안에서 알곡종자와 집짐승먹이같은것의 조성규모를 농장원총회에서 토의

결정하고 조성, 리용하여야 한다.

**제59조 (농장생산정상화묘의 조성, 리용)**

농장은 정해진 범위안에서 생산정상화묘의 조성규모와 그 리용방법을 농장원총회에서 토의 결정하여야 한다.

생산정상화묘가운데서 알곡은 량정체계를 통하여, 그밖의 농업생산물은 상업망을 통하여 류 통시켜야 한다.

**제60조 (농업생산물의 공급)**

농업생산물의 공급은 계획과 계약에 따라 한다.

농업생산물을 계약단위에서 정해진 기간에 가져가지 않아 부패변질될수 있을 경우에는 계약 단위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체로 처리할수 있다.

계약된 농업생산물을 류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61조 (농장지표의 생산물에 대한 가격제정, 등록)**

농장지표로 생산한 농업생산물과 부업생산물은 정해진데 따라 원가를 보상할수 있게 자체로 가격을 정하고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자체로 정한 가격은 해당 가격기관에 등록한다.

**제62조 (농업생산물의 수출)**

농장은 공예작물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을 해당 기관을 통하여 수출할수 있다.

## 제4장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3조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농장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64조 (농장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영농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자금, 전력, 연유, 비료, 농약, 살초제, 농기계, 농기구, 부속품 같은것을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의 로력과 설비, 영농자재, 자금 등을 농사와 관련이 없는 사회적 과제수행에 동원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65조 (농장원생활조건보장)**

농장원은 농업생산을 책임진 직접적담당자이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살림집 과 식량, 빨감, 먹는물 같은것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66조 (농장사업의 정보화실현, 기술자, 전문가 양성)**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장사업을 정보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67조 (농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농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사회주의원칙에 맞게 농장관리운영을 바로 하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8조 (연체료지불)**

농장은 해당하는 국가예산납부금을 바쳐야 한다.

국가예산납부금을 정해진 기간에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납일당 정해진 연체료를 물린다.

**제69조 (손해보상)**

농장이 영농물자를 계획대로 보장받고도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미달한 농업생산물몫에 해당하는 값을 국가에 납부시키며 구매자가 계약을 어기고 농업생산물을 제때에 가져가지 않아 부패변질되었거나 루실되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70조 (중지, 원상복구)**

대토복구를 하지 않고 농업토지를 농업생산과 다른 목적에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용을 중지시키거나 원상복구시킨다.

**제71조 (토지의 회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업농장에서 농업생산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회수한다.

**제72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농장조직신청을 허위로 제기하여 승인받았을 경우
2. 농장등록과 변경등록을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않아 농장등록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정확히 실시하지 않거나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맞게 분배를 하지 않고 평균주의를 하거나 담당포전의 농작물을 자의대로 처분하였을 경우
4. 농업생산계획과 수매계획을 자의대로 변경시켜 시달한 경우
5. 농업토지를 국가의 승인없이 또는 등록하지 않고 리용하였거나 지목을 변경하였을 경우
6. 농업토지를 정리하지 않았거나 지력을 높이지 않아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농업토지를 묵였거나 람용하였거나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8. 피해막이대책을 세우지 않아 농업토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9. 물관리와 영농설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농업생산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등을 농업생산과 관련없는 사회적과제수행에 동원시켰을 경우
11. 농업생산물의 수확, 운반, 탈곡, 가공, 보관을 바로하지 않아 허실, 부패변질시켰을 경우
12. 수매계획을 빗대고 농업생산물을 더 거두어 계획수행을 한 경우
13. 로력동원 등 사회적과제수행의 명목으로 알곡을 비법처리하였을 경우
14. 비법적으로 농업생산물을 가지고 상적행위를 하거나 영농물자를 구입하거나 사취 또는 퇴물로 제공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15. 농업생산물의 계량을 규정대로 하지 않거나 농업생산물생산정형을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
16. 농업생산계획과 국가알곡의무수매계획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17. 영농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자금, 전력, 연유, 비료, 농약, 살초제, 농기계, 농기구, 부속품 같은것을 계획대로 보장하지 않아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8. 농업토지를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인에게 리용하게 하였을 경우
19. 농장결산분배자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거나 결산분배가 늦어지게 하였거나 농장원들의 식량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앞항 1~19호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별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 제73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림업법

주체109(2020년) 1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77호로 채택

## 제1장 림업법의 기본

### 제1조 (림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림업법은 통나무생산과 목재의 공급 및 판매, 리용, 림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식채벌방법은 일정한 규모의 산림구역을 설정하고 그것을 몇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다음 정해진 기간을 주기로 한 구역씩 차례로 순환하면서 나무를 계획적으로 베고 심고 가꾸는 통나무생산경영방법이다.
2. 순환식채벌구역은 림업기관, 기업소가 순환식채벌방법으로 림업활동을 진행하는 산림구역이다.
3. 순환구역은 순환식채벌구역을 림업활동에 편리하게 몇개의 구역으로 구분하는 단위이다.
4. 림산물은 림업활동과정에 얻어지는 통나무와 그 부산물, 목재가공품, 화학물질같은것이다.

### 제3조 (림업발전원칙)

림업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림산물을 생산보장하는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채취공업부문이다.

국가는 림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자립적이며 현재적인 림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림업발전을 적극 앞세워나가도록 한다.

### 제4조 (통나무생산원칙)

국가는 순환식채벌방법을 바로 적용하여 나라의 산림자원을 계속 늘이면서 통나무생산을 정상화하며 림업근로자들이 산림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통나무생산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목재의 종합적, 효과적리용원칙)

목재를 종합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산림자원을 극력 아끼면서 나라의 목재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목재가공기지와 목재화학기지를 튼튼히 꾸려 목재를 종합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6조** (산림조성 및 보호원칙)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은 국토를 아름답게하고 토지를 보호하며 나라의 산림자원을 늘이기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다.

국가는 순환식채벌구역의 산림조성과 보호에서 전문기업소들의 역할을 높이며 균중적운동으로 나무심기와 가꾸기를 진행하여 산림자원을 끊임없이 늘여나가도록 한다.

**제7조** (림업의 현대화원칙)

림업의 현대화는 기계설비의 현대화이다.

국가는 림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생산공정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다양하고 성능이 좋은 기계설비를 더 많이 생산하며 림업을 적극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8조** (림업과학기술발전 및 인재양성원칙)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림업부문의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과학연구와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림업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능력있는 인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 제2장 통나무생산

**제9조** (산림자원조사)

순환식채벌구역의 산업자원에 대한 조사를 바로 하는것은 순환식채벌방법의 요구대로 통나무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 공정이다.

중앙림업지도기관과 림업설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받아들여 산림자원조사에서 과학성과 신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조사한 자료는 중앙산림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0조** (순환식채벌총계획의 작성)

중앙림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산림자원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순환식채벌총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한다.

순환식채벌총계획에는 순환구역과 채벌구역계획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년평균나무벨량규모와 순환주기를 과학적으로 규정하며 통나무생산기술공정대책, 나무를 베 구역에 대한 나무심기

및 보호관리대책, 목재의 종합적리용대책, 립산마을의 규모와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적조치에 따라 순환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순환식채벌총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 제11조 (채벌구종합설계작성)

채벌구종합설계는 립업설계기관과 해당설계기관이 작성한다.

립업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순환식채벌총계획에 기초하여 통나무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채벌구종합설계작성을 선행시켜야 한다.

채벌구종합설계는 전망생산과 현행생산, 나무베기와 산림조성의 결합, 통나무생산공정의 기계를 보장할수 있게 작성한다.

#### 제12조 (기술준비, 생산준비의 선행)

립업기관, 기업소와 해당 설계기관은 통나무생산과 관련한 기술준비와 생산준비를 생산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기술준비에는 채벌구가르기와 통나무생산기술공정설계, 나무베기설계, 생산준비건설설계 같은것이, 생산준비에는 산지합숙건설, 통나무생산시설건설 같은 것이 속한다.

#### 제13조 (통나무생산계획)

통나무생산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년평균나무벨량규모와 생산능력, 수송조건, 인민경제적수요, 축적과 소비의 균형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며 현실성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립업기관, 기업소는 통나무생산계획을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 제14조 (나무베기)

립업기관, 기업소는 산림경영기관의 나무베기허가를 받고 통나무생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경영기관은 통나무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나무베기허가를 제때에 해주어야 한다.

립업기관, 기업소는 나무베기를 설계의 요구대로 하며 년평균나무벨량규모를 초과하거나 채벌순위를 어기지 말아야 한다.

자연재해복구를 비롯하여 국가적조치에따라 통나무를 긴급생산보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년평균나무벨량규모를 초과하거나 채벌순위를 변경하여 나무베기를 할수 있다.

#### 제15조 (채벌뒤자리정리 및 나무심기)

립업기관, 기업소는 나무를 베 다음 채벌뒤자리를 제때에 정리하고 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 경우 설계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 제16조 (통나무운반)

립업기관, 기업소는 립산철도, 삭도, 물길 등에 의한 여러가지 통나무나르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통나무운반수단의 가동률을 높여 베어놓은 통나무를 제때에 운반하여야 한다.

**제17조 (순환식채벌구역에서의 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순환식채벌구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중앙림업지도기관의 합의와 국가적승인이 없이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행위
2. 립업기관, 기업소의 합의와 산림경영기관의 허가없이 나무를 베거나 산열매, 약초, 정유, 송진을 채취하는 행위
3. 립업기관, 기업소가 아닌 단위에 나무베기를 허가해주는 행위
4. 립업기관, 기업소가 아닌 단위와 개인이 숲구이를 하는 행위
5. 부업지를 개간하거나 산불을 놓는 행위
6. 이밖에 해당 법규에 따라 금지하게 된 행위

**제18조 (사고와 자연재해, 병해충피해방지)**

림업기관, 기업소는 통나무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로동안전규정을 엄격히 지켜 사고를 미리 막으며 자연재해와 병해충피해를 입을수 있는 요소들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제때에 퇴치하여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 제3장 목재의 공급 및 판매, 리용

**제19조 (목재공급계획의 작성)**

목재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목재소비기준과 설계예산, 생산제품의 종류에 따르는 재질과 규격을 정확히 타산하여 목재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제20조 (목재공급 및 판매계약의 체결과 리행)**

목재는 목재공급계획과 계약에 따라 공급, 판매한다.

목재공급 및 판매계약은 립업기관, 기업소와 목재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맺고 리행한다.

목재는 용도, 규격에 맞게 공급 및 판매하며 계획외의 목재는 공급할수 없다.

**제21조 (목재공급장소)**

목재는 다음의 장소에서 공급한다.

1. 철도역토장을 가지고있는 립업기관, 기업소는 생산한 목재를 철도역토장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합의하여 운재토장에서 공급할수도 있다.
2. 철도역토장이 없는 립업기관, 기업소는 생산한 목재를 운재토장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3. 양륙토장을 가지고있는 립업기관, 기업소는 물길나르기의 방법으로 운반한 목재를 양

륙토장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제22조 (품질검사)**

품질감독기관은 공급, 판매하는 목재에대한 품질검사를 제때에 하여야 한다.

운재토장, 양륙토장에서 공급, 판매하는 목재에 대한 품질검사는 품질감독기관의 위임에 따라 립업기관, 기업소가 자체로 할수 있다.

**제23조 (목재의 반출)**

순환식채벌구역에서 생산한 목재는 립업기관, 기업소가 발급한 공급지도서, 판매송장에 의해서만 실어갈수 있다. 이 경우 분기에 1차씩 판매수량을 지방인민위원회에 통보해주어야 한다.

**제24조 (목재수송)**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목재를 제때에 실어나르며 목재수송의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목재수송에 필요한 쇠고리, 조임바줄 같은 자재는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목재가공)**

립업기관, 기업소는 통나무를 생산지에서 1차이상 가공하기 위한 목재가공기지를 꾸리고 컨나무생산비중을 늘여야 한다.

**제26조 (목재거둠률제고)**

립업기관, 기업소와 목재를 가공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나무생산과 목재가공에서 거둠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27조 (목재부산물리용)**

립업기관, 기업소와 목재를 가공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목재가공기지와 목재화학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통나무생산과 목재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28조 (목재소비기준의 준수)**

목재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재소비기준을 바로 정하고 엄격히 지키며 목재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제29조 (용도에 따르는 목재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재를 정해진 용도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통나무는 수출할수 없다.

## 제4장 림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 제30조 (림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의 기본요구)

림업부문의 생산 및 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하는것은 림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인민경제의 목재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재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도록 림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31조 (통나무생산기지확대)

국가계획기관, 중앙산림지도기관, 중앙림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새 림산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조사와 설계를 앞세우고 리용가능한 림지들을 순환식채벌구역으로 선정하여 통나무생산기지를 늘여야 한다.

중앙림업지도기관은 대외활동을 적극 벌려 대외림업생산기지를 확대하여야 한다.

### 제32조 (경영활동 및 생활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은 림업기관, 기업소의 생산정상화와 경영활동조건, 종업원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기업체몹을 합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 제33조 (로력, 전력, 설비, 자재, 자금, 식량의 보장)

계획기관,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지도기관과 송배전기관, 설비 및 자재공급기관, 재정기관, 은행기관, 량정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림업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 식량 같은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주며 림업기관, 기업소에 통나무생산계획수행과 관련이 없는 로력동원 및 사회적과제를 주지 말아야 한다.

### 제34조 (이동작업비, 로동보호물자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림업지도기관, 재정기관, 은행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림업기관, 기업소에 이동작업비와 로동보호물자를 정해진대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 제35조 (순환식채벌구역의 관리)

림업기관, 기업소는 담당한 순환식채벌구역에 약초와 산열매 같은것을 계획적으로 심고 가꾸어 리용하며 담당구역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36조 (림농복합경영)

림업기관, 기업소는 담당한 순환식채벌구역에서 나무를 벤 뒤자리에 림농복합경영방법으로 나무와 함께 키낮은 농작품을 심을수 있다. 이 경우 나무사름물을 높이며 생산한 농장물은 종업원생활보장에 리용하여야 한다.

**제37조** (균중동원에 의한 산림 조성)

중앙산림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순환식채벌구역의 산림 조성사업에 균중을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담당구역에서 산림 조성 및 보호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 나무의 사름률을 정해진 기준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장 림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8조** (림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림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림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림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림업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제39조** (비법적으로 얻은 림산물의 이관)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순환식채벌구역에서 림업기관, 기업소의 합의와 국가적승인이 없이 림산물을 채취하였을 경우 해당 림산물을 몰수하여 림업기관, 기업소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40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림소관리법

주체110(2021)년 10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66호로 채택

## 제1장 부림소관리법의 기본

### 제1조 (부림소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림소관리법은 부림소의 사양관리와 등록, 실사, 도태, 판매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부림소종자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고 부림소를 증식시켜 농업생산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부림소의 정의)

부림소는 영농작업을 하거나 집을 나르는데 리용하기 위하여 기르는 소이다.  
부림소는 성장단계에 따라 젓먹이송아지, 젓똥송아지, 후보소, 어미소로 나눈다.

### 제3조 (조선소원종보존 및 부림소기르기장려원칙)

국가는 조선소원종을 보존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고유한 소품종의 우수한 특성을 살리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부림소기르기를 적극 장려하도록 한다.

### 제4조 (부림소사양관리개선 및 수의방역사업강화원칙)

국가는 부림소의 성장단계와 생리적특성에 맞게 사양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수의약품생산을 늘이고 수의방역체계를 엄격히 세워 전염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없애도록 한다.

### 제5조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축산과학연구기관, 수의방역기관, 종축검정기관, 인공수정기관, 부림소종자생산단위에 대한 투자를 늘여 이 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한다.

### 제6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농업지도기관과 축산과학연구기관, 수의방역기관, 종축검정기관, 인공수정기관, 부림소종자생산단위, 부림소를 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부림소관리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되어있지 않는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부림소종자관리

### 제7조 (조선소원종보존, 원종비밀엄수)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축산과학연구기관, 종축검정기관, 부림소종자생산단위는 조선소원종보존체계를 엄격히 세워 조선소원종의 우량한 유전자원을 보존 하여야 한다.

조선소원종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으며 승인없이 열람하거나 출판물에 실을수 없다.

### 제8조 (인공수정)

농업지도기관과 인공수정기관은 부림소의 인공수정체계를 바로세우고 과학적인 인공수정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부림소를 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해당 기관과의 연계밑에 인공수정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 제9조 (종축기록 및 계보작성)

부림소종자생산단위는 종축기록과 계보작성을 바로하여 근친교배에 의한 부림소종자의 퇴화를 막아야 한다.

종축기록 및 계보작성과 관련한 기술적지도는 종축검정기관이 한다.

### 제10조 (부림소종자생산, 공급)

부림소종자생산단위는 부림소종자를 계획에 따라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은 부림소종자에 대한 공급체계를 바로세우고 부림소종자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확히 공급하여야 한다.

### 제11조 (부림소종자선정)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부림소종자를 선정하려 할 경우 종축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종축검정기관은 유전자분석기술을 비롯한 선진적인 검정방법을 받아들여 우량한 부림소종자를 과학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12조 (부림소종자등록)

농업지도기관과 종축검정기관은 부림소종자등록대장을 갖추고 종자로 선정된 부림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부림소종자는 소등록증에 종자로 표기한다.

### 제13조 (부림소종자의 등록삭제)

등록된 부림소종자를 리용할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농업지도기관과 종축검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부림소종자등록대장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제3장 부림소의 등록, 실사, 도태

### 제14조 (부림소의 등록, 변경신청)

부림소로부터 새끼를 받았거나 부림소를 새로 구입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15일안으로 해당 농업지도기관에 소등록증발급(변경)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소등록증발급(변경)신청문건양식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정한다.

### 제15조 (소등록증의 발급, 변경)

소등록증발급(변경)신청문건을 접수한 농업지도기관은 10일안으로 소등록증발급(변경)신청문건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부림소등록대장에 등록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소등록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제16조 (소등록증용지배포)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정해진 양식대로 소등록증용지를 발행하여 해당 농업지도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소등록증의 양식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 제17조 (소등록증의 의무적소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등록증을 항상 소지하고 부림소를 부리거나 방목하여야 한다.  
부림소관리공은 부림소를 내어주거나 받는 경우 소등록증의 소지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8조 (임자없는 부림소, 몰수한 부림소의 등록)

소등록증이 없거나 임자를 확인할수 없는 부림소, 몰수한 부림소는 사회안전기관, 종축검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농업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9조 (소등록증의 재발급)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등록증이 분실, 소각, 손상되었을 경우 해당 농업지도기관에 통지하고 소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농업지도기관은 소등록증의 분실, 소각, 손상정형을 확인한 다음 재발급해주어야 한다.

### 제20조 (부림소의 실사)

부림소를 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월에 1차 이상 부림소의 개체별마리수와 상태를 부림소등록대장, 고정재산등록대장과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농업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은 년에 1차이상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부림소총실사를 진행하며 부림소등록대장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경우 원인을 찾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21조 (부림소의 도태)

부림소를 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림소가 부림능력을 잃었을 경우 수의방역기

관의 확인과 해당 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도태시켜야 한다.

도태시킨 부림소의 처리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 제22조 (죽은 부림소의 처리)

부림소를 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가지 원인으로 부림소가 죽었을 경우 수의방역기관의 확인과 해당 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공민이 기르던 부림소가 죽었을 경우에는 수의방역기관의 확인을 받는다.

#### 제23조 (부림소의 등록삭제)

부림소가 판매 또는 도태되었거나 죽었을 경우 해당 농업지도기관은 부림소등록대장, 고정제산등록대장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도태되었거나 죽은 부림소의 등록증은 해당 농업지도기관에 바친다.

#### 제24조 (부림소등록 및 삭제통지)

농업지도기관은 부림소를 등록, 삭제하였을 경우 해당 은행기관, 통계기관에 제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장 부림소의 사양관리

#### 제25조 (부림소사양관리의 전문화)

부림소를 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단위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부림소관리공을 배치하고 사양관리를 전문화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림소관리공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 제26조 (먹이보장)

농업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풀판조성계획을 전망성있게 세우고 단백질이 풍부한 먹이풀을 대대적으로 심는것과 함께 여러가지 첨가제를 리용한 먹이가공방법을 받아들여 부림소먹이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부림소먹이보장을 위하여 생산한 알곡은 다른 용도에 리용할수 없다.

#### 제27조 (먹이주기)

부림소를 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대별, 계절별, 개체별에 따르는 소먹이를 기준으로 확보하고 부림소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먹이주기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소먹이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 제28조 (소우리관리)

부림소를 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림소의 생리적특성과 수의위생학적 요구에

맞게 소우리를 밀폐식으로 꾸려야 한다.

소우리에는 부림소의 생육에 필요한 온도, 습도를 보장할수 있게 환기시설, 먹이시설 같은것을 갖추어야 한다.

#### 제29조 (사양관리도구의 구비)

부림소를 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림소의 사양관리에 필요한 도구를 일상적으로 갖추고있어야 한다.

#### 제30조 (부림소의 방목)

부림소를 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정된 장소에서 순환식방목을 비롯한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부림소를 방목하여야 한다.

#### 제31조 (부림소쌍짓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림소에 대한 개체별 등급순위를 정하고 우량개체를 쌍짓기에 리용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은 부림소쌍짓기기간을 바로정하고 제때에 쌍짓기를 조직하여야 한다.

#### 제32조 (새끼뺨 부림소의 사양관리)

새끼뺨 부림소는 부림시간을 초과하여 부릴수 없다.

새끼뺨 부림소의 부림시간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의 새끼낳이장소를 깨끗이 거두고 소독을 철저히 하며 새끼뺨 부림소에 대한 사양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소가 죽거나 병에 걸리거나 락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33조 (수의방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림소예방접종 및 건강검진과 소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전염병과 기생충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 발생할수 있는 근원을 없애야 한다.

부림소가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제때에 해당 수의방역기관과 농업지도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34조 (부림소품평회 조직)

농업지도기관은 실정에 맞게 부림소품평회를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부림소관리에서 얻은 경험을 교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림소품평회에서 부림소의 사양관리를 잘하여 부림소증식에 기여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는 해당하는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를 한다.

## 제5장 부림소의 판매

### 제35조 (부림소의 판매조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데 따라 부림소를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소등록증과 수의방역기관이 발급한 동물건강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 제36조 (부림소의 판매장소)

부림소의 판매는 해당 지역에 조직된 소시장에서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농업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다른 소시장에서 부림소를 판매할수 있다.

### 제37조 (소시장의 조직)

소시장은 해당 농업지도기관이 내온다.

농업지도기관은 지역별특성과 판매자, 수요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형식의 소시장을 실정에 맞게 조직하여야 한다.

### 제38조 (소시장의 관리운영)

소시장은 해당 농업지도기관이 관리운영한다.

농업지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부림소를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39조 (소시장에서의 부림소판매가격)

소시장에서 판매하는 부림소의 가격은 해당 가격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40조 (부림소판매결과의 처리)

소시장에서 부림소를 구입 또는 판매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이 법 제14조, 제15조, 제23조에 따라 해당 농업지도기관에 부림소를 재등록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 제6장 부림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41조 (부림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부림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부림소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42조 (부림소관리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국토관리기관,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림소증자생산과 부림소의 사양관리, 종축검정과 수의방역, 인공수정사업에 필요한 로력, 토

지,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 (부림소관리와 관련한 교육, 과학연구사업)**

농업지도기관과 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은 부림소관리와 관련한 기술자, 전문가양성 및 과학연구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며 과학연구기지를 잘 꾸리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사업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4조 (부림소의 보호)**

공민은 높은 애국심과 공민적자각을 지니고 부림소를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부림소를 흠치거나 밀매하는 행위, 부림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부림소를 승인없이 도살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5조 (부림소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부림소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감독통제기관은 종자관리, 부림소의 사양관리와 등록, 실사, 도태, 판매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6조 (민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해를 준 당사자에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보상책임을 지운다.

**제47조 (변상처벌)**

다음의 행위를 하여 국가와 사회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변상처벌을 준다.

1. 관리를 잘못하여 부림소가 죽었거나 병에 걸렸거나 상했거나 부림소새끼를 락태시켰을 경우
2. 부림소관리시설물과 도구를 파손, 분실시켰을 경우
3. 소먹이를 부패, 변질시켰거나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4. 이밖에 부림소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제48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벌금을 물린다.

1. 부림소를 제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20만~100만원, 공민에게는 5,000~2만원
2. 소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1,000원
3. 부림소도태질서를 어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3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1만~5만원
4. 부림소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

만원, 국민에게는 2만~10만원

5. 소시장밖에서 부립소를 팔고 산 경우 기업소, 단체에는 150만원, 국민에게는 10만원
6. 소등록증을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소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50만원, 국민에게는 10만원

**제49조 (몰수처벌)**

부립소를 밀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소와 위법행위로 얻은 돈과 물품을 몰수한다.

**제50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조선소원중비밀을 누출시켰을 경우
2. 인공수정체계를 바로세우지 않아 종자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종축기록과 계보작성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4. 정해진 종자공급질서를 어겼을 경우
5. 검정, 검사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6. 부립소등록질서를 어겼을 경우
7. 부립소실사와 총실사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
8. 부립소의 도태질서를 어겼을 경우
9. 부립소의 사양관리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0. 부립소집결쌍짓기조직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1. 부립소품평회조직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2. 부립소판매질서를 어겼을 경우
13. 부립소관리와 관련한 조건보장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4. 부립소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부립소의 보호, 증식에 저해를 주었을 경우

앞항 1~14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51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소금법

주체103(2014)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5호로 채택  
주체105(2016)년 1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21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5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17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소금법의 기본

#### 제1조 (소금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금법은 소금밭의 건설, 소금의 생산과 공급 및 판매,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의 소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소금공업의 발전원칙)

소금은 인민들의 식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기초식품이며 공업의 주요원료이다.  
국가는 소금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현대적인 소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소금생산의 집약화, 기계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으로 실현하도록 한다.

#### 제3조 (소금밭조성원칙)

국가는 바다물의 소금함유량이 높고 지하초염수매장량이 풍부하며 소금생산조건이 좋은 바다가지역에 소금밭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성하도록 한다.

#### 제4조 (소금생산확대원칙)

소금생산을 늘이는것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소금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국가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을 비롯한 선진적인 소금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생산설비를 현대화하고 그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 소금생산을 적극 늘이도록 한다.

#### 제5조 (소금수입제한원칙)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소금을 국내생산으로 보장하는것은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나라의 소금공업을 추켜세우는데서 나서는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의 리용을 적극 장려하며 소금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것을 극력제한하도록 한다.

#### 제6조 (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소금공업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소금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7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소금의 생산과 공급 및 판매, 리용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소금밭의 건설

**제8조** (소금밭건설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요구)

소금밭은 바다물의 소금함유량이 높고 바닷물취수, 토질, 자연기후조건이 좋은 바다가지역에 건설하며 해일과 폭우 같은 자연피해에 견딜수 있게 한다.

**제9조** (소금밭건설과 관련한 신청문건의 제출)

소금밭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밭건설을 위한 국토개발승인신청문건과 환경영향평가심사승인신청문건, 토지리용허가신청문건을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내야 한다.

**제10조** (소금밭건설과 관련한 신청문건의 심의)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소금밭건설을 위한 국토개발승인신청문건과 환경영향평가심사승인신청문건, 토지리용허가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심의하고 비상설자원개발심의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회는 제기된 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소금밭건설을 위한 국토개발승인신청문건과 환경영향평가심사승인신청문건, 토지리용허가신청문건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개발승인서, 환경영향평가심사승인서, 토지리용허가증을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혀 신청문건을 돌려보낸다.

**제11조** (소금밭건설총계획의 제출, 심의)

소금밭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준하여 소금밭건설총계획을 작성하고 대상에 따라 내각 또는 중앙설계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내각과 중앙설계지도기관은 소금밭건설총계획을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건설명시)

소금밭건설총계획을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개발승인서에 근거하여 건설명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소금발전설비기술과제의 작성, 승인)**

소금발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발전설비기술과제를 작성하여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는데 따라 국가계획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금발전설비기술과제에는 건설위치와 건설대상의 능력과 규모, 특성, 생산기술공정과 생산설비, 자재, 연료, 동력의 소요량, 투자규모, 운영준비내용, 시공기관 같은 설계작성에 필요한 기술경제적요구를 반영한다.

**제14조 (소금발전설비과제설계, 기술설계의 작성, 승인)**

소금발전설비과제설계, 기술설계의 작성은 제염설계기관이 한다.

제염설계기관은 소금발전설비기술과제에 기초하여 소금발전설비과제설계, 기술설계를 작성한 다음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는데 따라 중앙설계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소금발전설비계획의 작성)**

소금발전설비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소금발전설비를 위한 기술과제와 기술설계문건에 기초하여 소금발전설비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제16조 (건설허가)**

소금발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건설감독기관의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건설감독기관은 건설계획맞물림정형을 정확히 따져보고 건설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설계의 요구준수)**

소금발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단계와 순차를 바로 정하고 설계의 요구대로 소금발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리적인 건설방법을 받아들여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제18조 (준공검사)**

소금발을 건설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감독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소금발에서는 소금생산을 할수 없다.

**제19조 (소금발전의 폐전 및 이전승인)**

소금발전을 없애거나 옮기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소금발전관리담당자)**

소금발전의 관리는 해당 제염소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발전을 정해진 질서에 따라 정확히 등록하여야 하며 비법적으로 넘겨주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3장 소금의 생산

### 제21조 (소금생산계획)

소금생산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소금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소금생산조건과 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며 현실성있는 소금생산계획을 세워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제22조 (바다물, 지하초염수의 저장)

제염소는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시기와 바다물잡이위치를 과학기술적으로 타산하여 농도높은 바다물과 지하초염수를 충분히 저장하며 바다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수문관리를 바로 하여야 한다.

### 제23조 (바다물, 지하초염수의 보장)

제염소는 소금생산에 필요한 바다물과 지하초염수의 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소금밭에 바다물과 지하초염수를 정상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생산성이 높고 거리가 먼 소금밭부터 먼저 보내주어야 한다.

### 제24조 (소금생산실수률의 제고)

제염소는 기상조건같은것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공정별기술관리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진행하여 제품의 정해진 규격을 보장하며 생산실수률을 높여야 한다.

### 제25조 (소금건이와 운반)

제염소는 능률적인 소금건이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소금을 제때에 거두어야 한다.

건어낸 소금은 운반수단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 조건을 갖춘 장소에 제때에 쌓아놓으며 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워 소금이 류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26조 (설비관리)

제염소는 소금생산설비를 현대화하고 그에 대한 기술관리를 규정대로 하며 보수정비를 정상화하여 설비가동률과 능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 제27조 (소금밭의 보수, 관리)

제염소는 소금밭보수계획을 바로세우고 소금밭다짐과 소금밭결정지타일교체, 소금밭뚝과 수로정리같은 소금밭의 보수와 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여 소금밭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 제28조 (로동안전)

제염소는 로동안전교양사업을 강화하며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규정대로 갖추어야 한다.

종업원은 로동안전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제29조 (로동보호물자의 보장)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가 도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염공들에게 정해진 로동보호물자를 계획에 맞물려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 제30조 (제품검사)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품질감독기관은 소금의 용도에 따르는 품위와 규격을 바로 정하고 제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품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소금은 출하할수 없다.

#### 제31조 (저류지에서 양식과 양어)

제염소는 소금생산을 위하여 바다물을 저장하는 저류지에서 정해진데 따라 양식과 양어를 하며 생산물은 생산확대와 종업원생활보장에 리용한다.

생산물을 수출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2조 (기상자료의 통보)

기상수문기관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막고 소금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기상자료를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통보해주어야 한다.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상조건에 따르는 해당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소금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장 소금의 공급 및 판매, 리용

#### 제33조 (소금공급계획의 작성)

소금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생산지표와 능력, 인민경제적수요, 생산지와 소비지의 배치상태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34조 (소금공급 및 판매계약)

소금을 공급,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공급 및 판매 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소금공급계약은 소금공급계획에 따라 맺으며 계획외의 소금은 공급할수 없다.

**제35조 (소금공급순위)**

소금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용소금을 먼저 공급하는 원칙에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소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36조 (소금의 계량계측)**

소금을 공급,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계측수단을 갖추고 소금을 정확히 계량계측하여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제37조 (규격에 맞는 소금의 공급 및 판매)**

소금을 공급,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소금을 용도에 따르는 품위와 규격대로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용도에 따르는 소금의 품위와 규격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중앙규격지도기관이 한다.

**제38조 (소금의 수송)**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수단을 정상적으로 정비하고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소금을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수송도중 소금이 허실되었을 경우에는 수송을 담당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9조 (소금의 보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보관시설을 정해진대로 갖추고 소금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소금보관시설이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소금을 공급할수 없다.

**제40조 (소금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받은 소금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리용하며 기술경제적타산을 바로 하여 소금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소금을 비법적으로 팔고 사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1조 (소금소비기준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리용에서 정해진 소비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소비기준을 초과하여 소금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을 공급받을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소금을 추가로 공급할수 있다.

**제42조 (중소규모제염소에서 생산한 소금의 리용)**

중소규모제염소에서 생산한 소금은 정해진데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자체로 리용할수 있다.

## 제5장 소금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43조 (소금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

소금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은 소금공업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44조 (소금공업부문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소금공업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계획대로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금공업부문의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국가계획기관과 국가가격기관은 제염소의 확대재생산과 경영활동조건, 종업원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기업체몫과 소금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 제45조 (특별보호관세의 부과)

내각은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는 품위와 규격의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 특별보호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제46조 (해안방조제의 보호)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안방조제에 대한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 해일과 폭우, 센바람 같은 자연피해로부터 해안방조제를 보호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해안방조제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47조 (소금공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소금공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소금발전설과 소금생산, 공급 및 판매, 리용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48조 (민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원상복구, 손해보상시키거나 연체료를 물린다.

### 제49조 (벌금)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소금발전과 생산설비에 대한 보수, 기술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생산성과 효율을 떨어뜨렸을 경우 30만~100만원

2. 노동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30만~150만원
3. 소금생산에서 정해진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20만~150만원
4. 소금의 수송, 보관을 무책임하게 하여 류실시켰을 경우 10만~150만원
5. 공급받은 소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20만~150만원
6. 소금소비기준을 어겼을 경우 10만~100만원

**제50조 (중지)**

다음의 경우에는 소금발전설 또는 소금생산을 중지시킬수 있다.

1. 정해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금발을 건설할 경우
2. 설계의 요구를 어기고 소금발을 건설할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고 소금을 생산할 경우
4. 승인없이 소금발전설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5. 로동안전조건을 지키지 않고 소금생산을 할 경우

**제51조 (시설물의 철거)**

소금생산구역에 승인없이 시설물을 건설하였을 경우에는 철거시킨다.

**제52조 (몰수)**

소금을 비법적으로 판매 또는 구입하였거나 공급받은 소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된 돈과 물품을 몰수한다.

**제53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승인없이 소금발을 건설, 폐전, 이전시켰을 경우
2. 소금발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3. 승인없이 소금발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거나 빌려주었을 경우
4. 소금생산 및 공급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5. 소금생산조직과 지휘를 바로하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소금생산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바로하지 않거나 소금발보수를 질적으로 하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노동보호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거나 소금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품질검사를 바로하지 않아 소금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소금을 용도에 따르는 품위와 규격대로 공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9. 기상자료를 제때에 정확히 통보해주지 않아 소금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계획에 없는 소금을 공급하였을 경우

11. 소금의 수송, 보관을 바로하지 않아 소금을 허실하였을 경우
  12. 소금을 정해진 용도에 맞지 않게 리용하거나 비법적으로 팔고 사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3. 소금소비기준을 지키지 않아 소금을 낭비하였을 경우
  14. 소금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소금생산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5. 해안방조제보호관리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소금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 앞항 1~15호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별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54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

|              |        |              |                 |
|--------------|--------|--------------|-----------------|
| 주체84(1995)년  | 1월 1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49호로 채택     |
| 주체88(1999)년  | 2월 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383호로 수정보충  |
| 주체96(2007)년  | 5월 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2227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2(2013)년 | 2월 2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2979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3(2014)년 | 3월 19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3617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4(2015)년 | 9월 23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677호로 수정보충  |

## 제1장 수산법의 기본

### 제1조 (수산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은 수산자원조성과 보호, 수산물생산과 가공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수산자원조성의 원칙)

수산자원조성을 수산물생산에 앞세우는 것은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바다에서의 양어, 양식사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하천, 저수지, 호소에서의 양어, 양식 사업에도 큰 힘을 넣는다.

### 제3조 (수산물생산과 가공원칙)

국가는 먼바다어업과 가까운바다어업, 대형어업과 세소어업을 옹계 배합하고 물고기잡이일수를 보장하여 수산물생산을 늘이며 수산물가공사업을 더욱 개선하도록 한다.

### 제4조 (수산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수산업발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수산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친다.

### 제5조 (수산자원보호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지식보급사업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수산자원보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 제6조 (수산부문의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데 대한 원칙)

국가는 수산부문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능력있는 수산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7조 (수산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수산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수산자원조성

**제8조 (수산자원조성계획)**

수산자원조성을 잘하는 것은 수산물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계획기관은 수산물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확히 주어야 한다.

**제9조 (양어, 양식적지조사)**

양어, 양식적지조사는 수산과학연구기관이 한다. 이 경우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과학연구기관의 양어, 양식적지조사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수산과학연구기관은 양어, 양식적지조사를 정확히 하고 그 자료를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0조 (양어, 양식품종의 육종)**

수산지도기관과 수산과학연구기관은 맛 좋고 빨리 자라며 생활력이 강한 양어, 양식품종의 육종체계를 바로세우며 생산을 늘이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내야 한다.

**제11조 (양어장, 양식장에 넣을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생산을 늘이며 양어장, 양식장에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를 국가계획대로 넣어야 한다.

**제12조 (양어, 양식방법)**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립체적인 양어, 양식방법을 받아들여 수산자원량을 늘이며 양어,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사름률과 단위당 무게를 정해진 기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먹이기지)**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 양식하는 수산동물의 먹이기지를 전망성있게 꾸리며 자연먹이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산자원조성계획의 실행)**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받은 양어, 양식시설물만 들어넣기계획과 인공성에조성, 새끼고기넣어주기, 종자뿌리기 같은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실행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환경보호기관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양어장, 양식장, 자연어장의 수산자원리용권)**

양어장, 양식장의 수산자원과 자연어장에 따로 조성한 수산자원은 그것을 조성한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리용할수 있다.

**제16조 (저수지에 양어시설물의 설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 건설하는 저수지에 양어시설물을 만들고 저수지 바닥을 제때에 정리하여 수산자원조성과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장 수산물생산과 가공

**제17조 (수산물생산과 가공의 기본요구)**

수산물생산을 늘이고 그 가공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업관리와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물고기를 잡으며 수산물과 그 가공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제18조 (수산자원조사)**

수산과학연구기관은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실속있게 하며 종류별 수산자원량과 그 생산가능량을 해마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수산자원조사연구사업을 따로 하는 기관은 해당 수역의 종류별수산자원량과 그 생산가능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수산과학연구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수산자원조사 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은 종류별수산자원생산가능량과 수산자원조성계획의 실행정형에 따라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을 받지 않았거나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출할수 없다.

**제20조 (어장분할과 어업허가)**

어장분할과 어업허가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을 받은 단위에 어장분할, 어업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제21조** (어기, 어장예보, 어황통보)

수산과학연구기관과 수산지도기관은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물고기떼탐색에 위성정보에 의한 어장탐색지원체계를 도입하여 어기, 어장예보와 어황통보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22조** (배척당 물고기생산량제고)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기배를 현대화, 만능화하며 그 가동률을 높이고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받아들여 고기배척당 물고기생산량을 늘여야 한다.

**제23조** (양어장, 양식장에서 정보당 생산량제고)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장, 양식장에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를 적지적종의 원칙에서 배치하고 과학기술적으로 키워 정보당 생산량을 늘여야 한다.

**제24조** (수산물생산량의 장악)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잡이일지, 생산일지 같은 문건을 갖추고 수산물생산량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자기 단위의 수산물생산량을 정확히 장악하여 중앙통계기관에 내야 한다.

**제25조** (고기배무이와 어구생산, 수리정비)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업이 발전하는데 맞게 현대적이며 만능화된 고기배무이와 어구생산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고기배에는 해사규정의 요구대로 전파탐지기를 비롯한 항해기재, 통신설비를 빠짐없이 갖추어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기배수리에 필요한 부속품, 유지부속품을 충분히 갖추며 고기배의 수리기일을 정확히 지키고 어구수리를 제때에 하여 고기배의 정상출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산물가공계획의 실행)

국가계획기관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수산물가공계획을 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가공계획을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27조** (수산물의 선도보장)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기배에 필요한 시설과 조건을 맞추어 수산물의 선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선도가 보장되지 않은 수산물로는 가공품을 만들 수 없다.

**제28조** (수산물보관시설의 현대화와 포장, 운반용기보장)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림시설과 랭동, 저장시설을 현대화하며 수산물의 포장, 운반용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 (수산물의 종합적가공)**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을 종합적으로 가공처리하기 위한 기술공정을 꾸리고 기술 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지켜 수산물가공품의 품종을 늘이며 위생안전성을 보장하고 질을 높여야 한다.

**제30조 (수산물의 수송)**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때에 실어나르며 수송도중에 손실되거나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장 수산자원보호

**제31조 (수산자원보호월간)**

국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마다 4월과 7월을 수산자원보호월간으로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자원보호월간에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한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감독통제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 (수산자원보호조치)**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정한다.

1. 수산자원보호구
2.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의 종류
3. 종류별수산자원의 보호시기
4. 잡거나 뜯을수 있는 수산자원의 크기
5. 쓰지 말아야 할 어구와 어로방법

**제33조 (수산자원보호구관리)**

수산자원보호구관리를 맡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자원보호관리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 보호구안의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제34조 (수산자원보호실태자료)**

수산과학연구기관은 해마다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한 실태자료를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수산자원보호대책안을 만들어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35조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의 생산제한)**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생산계획을 초과하여 실행하지 말아야 한다.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생산계획은 수산과학연구기관이 낸 수산자원생산가능량을 초과하여 세울수 없다.

연해에서는 도루메기잡이를 제외한 밀충뜨랄어업을, 동해에서는 밀충자망어업을 할수 없다.

**제36조 (양어수역에서 물고기보호)**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에서 물고기의 알쓸이와 겨울나이조건을 잘 지어주며 물고기들이 양어수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 (물고기보호에 리로운 풀의 채취금지, 낚시질질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승인없이 바다와 하천, 저수지, 호소에서 물고기보호에 리로운 풀을 뜯지 말며 정해진 낚시질질서를 지켜야 한다.

**제38조 (갑문, 언제의 물고기질)**

갑문, 언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는 물고기질을 설계대로 만들어야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물고기의 성장과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물고기질을 설계하고 수산과학연구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저수지, 호소의 물관리)**

물관리기관은 저수지, 호소의 물을 사수위아래로 줄이려 할 경우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 수산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국가적의의가 큰 저수지, 호소의 물을 사수위아래로 줄이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바다와 하천, 저수지, 호소의 오염방지)**

수산자원에 피해를 줄수 있는 미광이나 정화하지 않은 버림물,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오물과 폐설물은 바다와 하천, 저수지, 호소에 버릴수 없다.

## 제5장 수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1조 (수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수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수산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수산지도기관은 수산물생산단위의 조직과 수산부문의 계획화사업, 생산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수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중앙수산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2조 (바다작업, 생활조건의 보장)**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부문 근로자들의 작업조건과 바다에서의 생활조건을 보장하며 고기배의 입출항질서와 선대규률을 강화하고 로동안전규정을 철저히 지

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 (수산물의 수출)**

국가계획기관은 수산물수출계획을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만 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자원을 수출하려 할 경우 해당 수속을 거쳐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고기배의 등록)**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생산에 리용하는 배를 배등록기관에 빠짐없이 등록하고 그 등록정형을 중앙수산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5조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수산자원조사와 수산물생산금지)**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 사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 수산자원조사와 수산물생산을 할수 없다.

우리 나라와 맺은 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6조 (수산자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수산자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수산자원보호질서를 지키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수산자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과정에 제기된 자료를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

**제47조 (양어장, 양식장, 자연어장의 이관)**

양어장, 양식장, 자연어장관리를 잘하지 않아 단위당 생산량을 늘이지 못하였거나 그 운영을 비법적으로 하였거나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전혀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수 있다.

**제48조 (생산, 수출 중지, 피해보상, 몰수)**

국가계획을 받지 않고 수산물을 생산, 수출하거나 수산자원조성과 보호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수산물생산, 수출을 중지시키고 피해를 보상시키며 비법적으로 생산, 수출하는 수산물과 그것으로 얻은 수입, 위법행위에 리용한 배와 어구, 설비는 몰수한다.

**제49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인민생활과 수산자원에 엄중한 피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방역법

주체86(1997)년 12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5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호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4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04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8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수의방역법의 기본

### 제1조 (수의방역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방역법은 수의방역질서를 엄격히 세워 동물질병의 발생, 전파를 막고 축산업발전과 인민들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한다.

### 제2조 (동물질병의 예방원칙)

수의방역에서 기본은 예방이다.

국가는 동물의 환경위생, 먹이위생, 관리위생 같은 수의위생학적예방조건을 보장하여 동물의 질병을 미리 막도록 한다.

### 제3조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수의방역사업원칙)

수의방역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국가는 수의방역에 대한 선전과 교양을 강화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수의방역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 제4조 (수의방역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원칙)

수의방역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수의방역사업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국가는 수의방역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5조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원칙)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국가의 수의방역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6조 (수의방역부문의 과학연구, 기술일군양성사업원칙)

국가는 수의방역부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필요한 기술일군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7조 (수의방역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수의방역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동물질병의 예방과 치료

**제8조 (동물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기본요구)**

동물질병을 예방하고 제때에 치료하는것은 동물보호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동물질병을 미리 막으며 발생된 질병을 제때에 치료하여야 한다.

**제9조 (수의방역시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장, 동물원 같은 동물집단사육장에 방역초소와 방역울타리, 소독시설, 격리우리, 오수정화장, 두엄처리장, 폐축처리장, 도살장, 수의생물약품저장고, 수의실 같은 수의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방목장의 선정)**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형, 기후, 물, 먹이조건 같은 동물의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방목장을 정하여야 한다.

방목장에는 동물의 물먹이터를 꾸려야 한다.

**제11조 (동물관리장소, 설비, 기재의 위생관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동물을 관리하는 장소, 설비, 기재를 정상적으로 청소, 소독하며 쥐, 유해곤충 같은것을 제때에 잡아없애야 한다.

**제12조 (동물먹이의 수의위생학적요구 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동물의 먹이가공, 보관장소를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동물먹이가 공설비와 원료에 대한 소독을 하며 수의위생학적요구에 맞는 먹이를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동물에게는 수의위생학적요구에 맞는 먹이와 물을 먹여야 한다.

**제13조 (동물, 동물먹이, 축산물관리일군의 검진)**

동물 또는 동물먹이, 축산물을 전문관리하는 일군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전염성질병이 있는 일군은 동물과 동물먹이, 축산물을 관리할수 없다.

**제14조 (동물집단사육장의 출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동물집단사육장에 불필요한 인원과 기재를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과 기재를 들여놓으려 할 경우에는 소독하여야 한다.

**제15조 (동물의 검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동물에 대한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동물의 검진은 일반검진, 종합검진으로 나누어 한다.

**제16조 (동물의 예방접종)**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방접종계획을 세우고 동물에 대한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하여야 한다.

예방접종은 기본접종과 보충접종의 방법으로 한다.

**제17조 (동물의 종자, 새끼공급)**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동물종자 또는 새끼를 건강하고 예방접종을 받은것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건강진단서,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동물종자, 새끼는 공급할수 없다.

**제18조 (새로 접수한 동물의 검역)**

기관, 기업소, 단체에 새로 들어오는 동물은 검역한다.

검역은 일정한 기간 검역우리에 넣고 검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 (도살하려는 동물의 검사)**

도살하려는 동물은 수의방역기관의 검사를 받는다.

수의방역기관은 도살하려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20조 (도살장소)**

동물의 도살은 도살장에서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은 집집승도살장과 간이도살장을 수의위생학적요구에 맞게 꾸리고 정해진 기술지도서의 요구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살장이 아닌 곳에서 동물을 도살하려 할 경우에는 수의방역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 (동물도살후 검사)**

수의방역기관은 동물도살전이나 도살후 검사를 진행하고 수의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수의검사증에는 병의 유무상태, 축산물의 용도와 가공, 사용, 처리방법, 이동경로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수의검사증이 없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류동시킬수 없다.

**제22조 (동물, 동물먹이, 축산물을 실어나르는 운수수단의 소독)**

동물과 동물먹이, 축산물을 실어나르는 운수수단은 짐을 싣기 전과 부린 후에 소독한다. 이 경우 수의방역기관은 소독증을 발급한다.

동물과 동물먹이, 축산물을 전문으로 실어나르는 운수수단에는 다른 짐을 실을수 없다.

**제23조 (축산단위의 등록, 목장, 동물먹이가공공장, 축산물가공공장의 건설)**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거주지역의 수의방역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축산을 할수 없다.

목장, 동물먹이기공공장, 축산물가공공장 같은 것을 건설하거나 옮기려 할 경우에는 수의방역기관과 합의한다.

#### 제24조 (질병에 걸린 동물의 치료)

수의방역기관은 질병에 걸린 동물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하고 제때에 치료하여야 한다.

### 제3장 동물전염성질병의 전파방지

#### 제25조 (동물전염성질병의 통보)

동물전염성질병의 전파를 막는것은 동물의 무리폐사를 막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수의방역기관은 역학감시 및 통보체계를 세우고 동물전염성질병을 발견한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즉시 통보하며 동물전염성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6조 (수의방역구역의 선정)

국가는 동물전염성질병의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동물원종장이나 해당 목장주변의 일정한 구역을 수의방역구역으로 정한다.

수의방역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27조 (수의방역구역에서 동물의 사육)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의방역구역에서 원종장이나 목장에 있는것과 같은 종류의 동물을 기르지 말아야 한다.

승인없이 수의방역구역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할수 없다.

#### 제28조 (병에 걸린 동물, 죽은 동물의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동물이나 죽은 동물을 발견한 경우 수의방역기관과 위생방역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수의방역기관과 위생방역기관은 통보받은 즉시 방역학적요구대로 확인검사를 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한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29조 (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의 격리)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동물을 격리시켜야 한다.

승인없이 동물격리장소에 출입할수 없다.

**제30조 (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의 치료)**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동물을 제때에 치료하여야 한다.

고칠수 없거나 사람과 동물에게 큰 피해를 줄수 있는 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은 즉시 도살하여야 한다.

**제31조 (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이 있던 장소, 먹이, 물에 대한 방역조치)**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동물을 관리하던 장소와 그 동물이 먹던 먹이, 물 같은것을 소독하거나 소각, 매몰, 폐기하여야 한다.

전염성질병으로 죽었거나 죽인 동물은 소각하거나 폐축처리장에 매몰하여야 한다.

**제32조 (오염된 축산물의 리용절차)**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염성질병에 오염된 동물의 고기와 부산물을 동물먹이, 제품 원료로 리용하려 할 경우 오염을 일으킬수 있는 병원체를 완전히 제거하고 수의 방역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염성질병에 오염된 동물의 고기와 부산물은 식용으로 리용할수 없다.

**제33조 (오염된 방목장의 처리)**

수의방역기관은 전염성질병에 오염된 방목장에 대하여 폐기, 운영의 립시정지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이 경우 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이동, 판매하려는 동물, 축산물의 검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동물, 축산물을 이동시키거나 공급, 판매하려는 경우 수의방역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수의방역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없는 동물, 축산물은 이동시키거나 공급, 판매할수 없다.

**제35조 (모임장소에서 동물의 검사)**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동물판매, 품평회 같은 목적으로 동물이 모이는 경우 동물에 대한 전염성질병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동물이 모이는 장소에는 수의방역초소, 동물격리소, 오물처리장 같은 수의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6조 (동물전염성질병발생시 농업지도기관의 임무)**

농업지도기관은 동물전염성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위험성정도에 따라 일정한 지역의 교통을 차단하고 인원과 운수수단, 동물, 동물먹이, 축산물 같은것의 이동을 금지시킬수 있다.

국경을 차단할 경우에는 내각, 일정한 지역을 차단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37조 (수의비상방역위원회의 조직)

국가는 전파력이 강한 동물전염성질병이 발생하여 우리 나라에 들어올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었거나 우리 나라에서 동물성전염성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전파를 막기 위하여 중앙과도, 시, 군에 수의비상방역위원회를 조직하고 해당 급수에 따르는 수의비상방역을 선포하도록 한다.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는 농업성, 보건성을 비롯한 해당 중앙기관과 중앙급의 검찰, 사회안전, 무력, 군수단위 등의 책임일군들로, 도, 시, 군수의비상방역위원회는 지역안의 해당 단위책임일군들로 구성한다.

### 제38조 (수의비상방역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수의비상방역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전염성질병의 류입과 발생, 전파를 막기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한다.
2. 동물전염성질병의 위험성과 그 전파경로를 막기 위한 해설 및 소개선전, 통보사업을 해당 기관과의 연계밑에 진행한다.
3. 수의비상방역과 관련한 지시를 축산을 하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검역기관에 작성, 시달하고 그 집행정형을 장악통제한다.
4. 수의비상방역사업에 필요한 인원과 설비, 수의약품, 운수수단 같은것을 시급히 보장하기 위한 임무분담을 한다.
5. 동물전염성질병의 역학상태에 따라 국경봉쇄와 해당 지역의 차단, 인원과 동물의 이동, 축산물의 판매와 류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6. 수의비상방역사업정형을 정기적으로 총화하고 대책하며 수의방역질서를 위반한 자료를 해당 기관에 넘긴다.

### 제39조 (국경동물검역)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중앙세관지도기관,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동물검역대상물에 대하여 중앙수의방역기관의 검역요구조건합의를 받는데 따라 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해당 검역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로 들어오거나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동물과 동물성물품, 그것을 실은 운수수단에 대하여 검역하며 그 결과자료를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을 통하여 중앙수의방역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검역에서 합격되지 못한 동물과 동물성물품, 그것을 실은 운수수단은 국경을 통과시킬수 없다.

### 제40조 (인수공통성전염병의 방지)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수공통성전염병을 미리 막으며 그것이 발생된

경우 즉시 보건기관에 통보하고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기관은 발생된 인수공통성전염병을 막기 위한 보건위생학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장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41조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지도)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전국의 수의방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42조 (수의위생방역월간)

국가는 수의방역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마다 3월과 4월, 9월과 10월을 수의위생방역월간으로 한다.

### 제43조 (수의위생방역월간의 수의방역)

농업지도기관과 수의방역기관은 수의위생방역월간에 계절적특성에 따르는 수의방역사업을 균중적으로 벌려야 한다.

### 제44조 (수의방역조건보장)

수의방역기관은 수의방역사업에 필요한 시료, 자료, 설비, 로력 같은것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수의방역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농업지도기관은 수의방역일군들이 수의위생방역월간에는 집집승전염병예방접종사업을, 약초채취시기에는 고려약초와 수의약품생산을 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 제45조 (수의방역일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의방역부문의 일군대렬을 질적으로 꾸려야 한다.  
수의방역부문에서는 해당 자격을 가진자만이 일할수 있다.

### 제46조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수의방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수의방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의방역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47조 (수의방역질서위반조서)

수의방역기관은 수의위생상태가 불결하거나 필요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위반조서를 받을수 있다.  
위반조서에는 위반자의 이름, 직장직위, 위반내용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48조 (제품생산의 중지)**

동물의 질병에 따르는 축산물가공, 사용,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제품생산을 중지시킬수 있다.

**제49조 (동물, 축산물의 이동, 도살, 공급, 판매의 중지 또는 몰수)**

승인없이 동물, 축산물을 이동시키거나 도살, 공급, 판매할 경우에는 그 활동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물품을 몰수할수 있다.

**제50조 (손해보상)**

치료를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기술적요구대로 관리하지 않아 동물을 죽게 한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축산업발전과 동물자원보호, 인민들의 건강보호에 엄중한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약품관리법

주체97(1998)년 6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1호로 채택  
주체97(1998)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수의약품관리법의 기본

-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약품관리법은 수의약품의 생산과 공급, 보관, 리용, 검정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동물의 병진단과 예방, 치료사업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수의약품생산과 공급을 잘하는 것은 수의약품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선차적 요구이다. 국가는 질 좋고 효능 높은 수의약품의 생산을 늘이며 그것을 수요에 맞게 공급하도록 한다.
- 제3조** 수의약품보관, 리용은 수의약품의 질을 보존하고 손실을 막으며 생산된 수의약품을 효과적으로 쓰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수의약품의 보관, 리용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 제4조** 수의약품검정은 수의약품의 질을 평가하고 판정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수의약품검정 수단을 현대화하고 검정방법을 개선하며 수의약품검정에서 과학성,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5조** 국가는 수의약품관리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수의약학을 발전시키고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 제6조** 국가는 수의약품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수의약품의 생산, 공급

- 제7조** 수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은 수의약품관리사업의 중요내용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수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수의약품생산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여야 한다.
- 제8조** 수의약품은 정해진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생산한다. 필요에 따라 수의생물약품은 수의연구기관, 목장 같은데서도 생산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9조** 수의약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의약품을 규격에 맞게 생산하여야 한다. 수의약품규격을 제정, 수정보충하는 사업은 중앙규격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 제10조** 수의약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멸균과 랭동, 세척, 부균조작, 포장시설 같은 수의약품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수의약품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지켜야 한다.
- 제1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수의약품을 정해진대로 포장하여야 한다. 수의약품을 포장한 용기에는 약표, 사용설명서 같은 것을 붙여야 한다.
- 제12조** 수의약품공급은 수의약품공급계획에 따라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수의약품의 생산량과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수의약품공급계획을 세우고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 제13조** 수의약품은 먼저 생산한것부터 공급한다. 변질되었거나 사용기간이 지난 수의약품과 약표, 사용설명서 같은 것이 없는 수의약품은 공급할수 없다.
- 제14조**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의약품의 수송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수의약품수송은 정해진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
- 제15조** 수의약품은 정해진 장소에서 판매할수 있다. 수의약품의 판매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이 승인한 지표와 수의방역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한다.

### 제3장 수의약품의 보관, 리용

- 제16조** 수의약품을 잘 보관하고 그 리용을 바로하는 것은 수의약품의 효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하였거나 공급받은 수의 약품을 기술규정대로 보관, 리용하여야 한다.
- 제17조**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의약품의 특성에 맞게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수의약품을 보관할수 없다.
- 제18조**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의약품을 물리화학적,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 수의약품으로 리용하는 독약, 극약, 마약은 따로 보관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약, 극약, 마약에 대한 입출고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의약품보관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수의약품보관장소는 깨끗한 환경위생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21조**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의약품을 약리작용과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독약, 극약, 마약의 리용은 수의사가 직접 하거나 그의 립회밀에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수의약품별, 동물별에 따르는 수의약품리용방법을 정확히 만들어야 한다.

**제22조** 자체로 생산한 수의약품은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리용한다.

자체로 생산한 수의약품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3조** 공민은 수의화학약품, 수의고려약품 같은 일반수의약품을 사용설명서에 따라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의 병치료에 리용할수 있다.

일반수의약품은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리용한다.

**제24조**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사용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수의약품, 사용설명서가 없거나 약표가 떨어진 수의약품을 리용하지 말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에서 수의약품을 들여오려 할 경우 약리적으로 안전하고 효능이 높은 것으로 들여와야 한다. 이 경우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의약품에 의한 중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때에 수의방역기관에 알려야 한다.

수의약품중독사고에 대하여 통보받은 수의방역기관은 그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장 수의약품의 검정

**제27조** 수의약품의 검정을 바로하는 것은 질종고 효능이 높은 수의약품을 생산, 리용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의약품검정체계를 바로세우고 수의약품검정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28조** 수의약품검정은 수의약품검정기관과 해당 수의방역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중앙농업지도기관이 승인한 기관에서도 수의약품검정을 할수 있다.

**제29조** 수의약품검정은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한다.

1. 규격을 새로 제정하기 위하여 만든 수의약품
2. 생산하였거나 판매하려는 수의약품
3.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수의약품
4. 사고 또는 사건조사심의를 위하여 제기된 수의약품
5. 수요자와 공급자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수의약품
6. 그밖에 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의약품

**제30조** 국가규격을 제정하기 위하여 모든 수의약품, 전문수의약품생산기관, 기업소에서 생산한 수의약품,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수의약품에 대한 검정은 수의약품검정기관 또는 중앙수의방역지도기관이, 자체소비를 위하여 생산한 수의약품에 대한 검정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승인한 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수의약품검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다른 기관에서 검정한 수의약품을 다시 검정할 수 있다.

**제31조** 수의약품검정은 수의약품규격에 따라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만든 수의약품에 대한 검정은 해당 나라의 수의약품규격에 따른다.

수의약품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정한데 따라 검정한다.

**제32조** 수의약품검정은 수의약품검정의뢰에 따라 한다.

수의약품을 검정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의약품검정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검정 의뢰문건과 시료를 내야 한다.

**제33조** 수의약품검정의뢰를 받은 수의약품검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의약품의 유효성, 무균성, 순수성, 무독성 같은 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필요에 따라 수의약품검정의 정확성여부에 대한 검열을 조직할수 있다.

**제34조** 수의약품검정기관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의약품검정이 끝난 다음 판정문건을 작성하여 검정을 의뢰한 기간, 기업소, 단체에 보내야 한다.

수의약품에 대한 검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35조** 수의약품검정에 합격되지 못한 수의약품은 생산하거나, 공급, 판매, 리용할수 없다.

## 제5장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조**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 것은 수의약품의 생산과 공급, 보관, 리용, 검정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7조**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38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의약품의 생산과 보급, 리용, 검정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수의약품관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의약품의 관리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1조**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의약품을 생산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수의약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그 생산을 중지시킨다.

**제42조** 수의약품의 공급, 수송, 보관은 정해진대로 하지 못하여 수의약품이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3조** 이 법을 어겨 수의약품관리와 동물의 병진단, 예방, 치료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어법

주체87(1998)년 12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8호로 채택  
주체90(200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22호로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3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01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양어법의 기본

### 제1조 (양어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양어법은 양어수역의 관리와 물고기의 자원조성, 생산, 자원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어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양어부문의 투자원칙)

양어를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양어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고 양어를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하며 양어수역을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한다.

### 제3조 (물고기자원조성의 선행원칙)

물고기자원의 조성은 양어사업의 선행공정이다.

국가는 양어사업에서 물고기자원의 조성을 확고히 앞세우며 그것을 적극 늘여나가도록 한다.

### 제4조 (물고기생산의 정상화원칙)

양어를 발전시켜 물고기생산을 늘이는 것은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물고기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한다.

### 제5조 (물고기자원보호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물고기자원을 보호할데 대한 교양과 과학지식보급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물고기자원보호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 제6조 (양어과학기술발전원칙)

국가는 양어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양어부문의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 제7조 (양어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양어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양어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하천, 호소, 저수지 같은 륙지수역에서 물고기를 기르고 잡는 질서를 규제한다.  
륙지수역에서 조개류, 새우류 같은것의 양식도 이 법에 따른다.

## 제2장 양어수역의 관리

**제9조 (영어수역의 장악과 관리분담)**

양어수역의 관리를 바로하는 것은 양어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중앙양어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영어수역을 장악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에 양어수역에 대한 관리를 정확히 분담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어수역의 분류)**

양어수역은 인공양어수역과 자연양어수역으로 나눈다.  
인공양어수역에는 양어를 하기 위하여 건설한 인공수역이, 자연양어수역에는 양어를 할수 있는 하천, 호소, 저수지, 물웅덩이, 관개용물길 같은 자연수역이 속한다.

**제11조 (영어적지의 조사)**

영어적지조사는 양어과학연구기관이 한다.  
양어과학연구기관은 지역별, 수역별에 따르는 영어적지조사를 진행하고 그 자료를 중앙양어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2조 (자연양수역리용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수역을 리용하여 양어를 하려 할 경우 자연양어수역 리용신청서를 중앙양어지도기관을 통하여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내야 한다.  
자연양어수역리용신청서에는 해당 수역의 이름, 략도, 만수면적과 갈수면적 같은 것을 정확히 밝힌다.

**제13조 (자연양어수역의 리용승인)**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자연양어수역리용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며 그 결과를 중앙양어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양어장의 건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온천, 습지대, 물웅덩이 같은 양어에 적당한 자연지리적조건을 리용하여 양어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양어장건설은 설계대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양어수역의 등록)**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을 양어지도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등록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해당 수역의 크기와 용도, 물고기의 생태조건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6조** (양어수역, 시설물의 보수정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의 생태조건에 맞게 양어수역과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양어수역은 물고기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물깊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양어수역토지의 리용)

양어수역토지는 물고기의 자연먹이생산기지이다.

양어수역토지에는 하천, 호소, 저수지 같은 양어수역에서 최대만수때 물이 차있던 곳으로부터 물이 줄어들 때 생기는 땅이 속한다.

양어수역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토지를 물고기의 먹이생산에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한다.

### 제3장 물고기자원의 조성

**제18조** (물고기자원조성계획의 작성과 시달)

물고기자원의 조성을 잘하는 것은 물고기생산을 늘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계획기관은 물고기자원조성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주어야 한다.

**제19조** (물고기자원조성에 대한 연구)

중앙양어지도기관과 양어과학연구기관은 물고기의 원종을 보존하며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고 생산성이 높은 물고기품종을 연구개발하여 양어장에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물고기종류별에 따르는 앞선 사육방법과 물고기를 속성으로 자래울수 있는 먹이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완성하여야 한다.

**제20조** (업지, 후보업지물고기관리)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어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업지, 후보업지물고기의 사육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새끼물고기생산을 늘여야 한다.

퇴화된 품종의 물고기는 먹이가 적게 들면서도 빨리 자라고 생활력이 강한 품종의 물고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업지, 후보업지물고기는 등록한다.

**제21조** (새끼물고기관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끼물고기의 살아남은 률을 높이며 정해진 크기와 무게가 보장된 새끼물고기를 양어수역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새끼물고기공급)**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질 좋은 새끼물고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새끼물고기생산기지를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끼물고기수요를 자체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물고기의 알낱이조건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에 리로운 풀을 조성하거나 알받개를 띄워주는 것 같은 물고기의 알낱이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  
양어수역에 띄어놓은 알받개를 거두어가는 것 같은 행위는 할수 없다.

**제24조 (연해물고기의 양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강과 바다로 오르내리는 물고리를 고기길로 유인하여 유리한 자연 번식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  
엄지물고기를 잡아 공업적방법으로 번식시키는 사업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물고기먹이보장)**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먹이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여러 가지 영양가높은 먹이를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양어수역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 가지 풀을 조성 또는 채취하거나 지렁이, 싸그쟁이, 미생물 같은 것을 번식시키는 방법으로 물고기자연먹이생산을 늘여야 한다.

**제26조 (물고기자원조성량의 장악)**

국가계획기관과 양어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물고기자원조성량을 정상적으로 장악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자원조성량을 국가계획기관, 양어지도기관, 해당 기관에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물고기생산

**제27조 (정보당 물고기생산량제고)**

물고기생산은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를 적지적종의 원칙에서 립체적으로, 집약적으로 길러 정보당 생산량을 늘여야 한다.

**제28조 (물고기생산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은 수역면적당 물고기종류별자원조성량과 생산가능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물고기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생산계획을 받지 않고는 양어수역에서 물고기를 생산할수 없다.



**제29조** (양어수역에서 물고기생산단위)

양어수역에서 물고기생산은 양어기업소와 물고기자원을 조성한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할 수 있다.

양어수역에서 물고기자원을 조성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물고기를 생산하려 할 경우에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양어수역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해당한 값을 물어야 한다.

**제30조** (물고기생산정형등록)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생산정형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물고기생산정형은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물고기생산의 현대화, 과학화)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생산설비를 현대화하고 생산방법을 과학화하여야 한다.

**제32조** (생산한 물고기보관)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시설과 조건을 갖추고 잡은 물고기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선도가 보장되지 않은 물고기는 공급할수 없다.

**제33조** (물고기공급과 수송)

국가계획기관과 양어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물고기를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물고기를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 제5장 물고기자원의 보호

**제34조** (물고기자원보호의 기본요구)

물고기자원을 보호하는 것은 양어사업에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중앙양어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물고기자원보호시기, 보호하여야 할 물고기의 종류, 물고기잡이도구와 방법 같은 것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제35조** (물고기자원실태의 조사)

양어과학연구기관은 해마다 물고기자원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물고기자원실태조사자료는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양어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36조 (양어수역에서 물고기차단)**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에서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필요한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양어수역의 물을 뽑는 양수장은 양어수역에서 떨어진 곳에 건설하여야 한다.

**제37조 (물고기자원보호시설의 설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갑문, 수문 같은 곳에 물고기질을 정해진대로 만들며 수문의 조작과 물고기길의 관리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강과 바다로 오르내리는 물고기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물고기길에서는 번식을 위하여 강과 바다로 오르내리는 물고기를 잡을수 없다.

**제38조 (호소, 저수지의 물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호소, 저수지의 물을 사수위아래로 줄이려 할 경우 양어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국가적의의가 큰 호소, 저수지의 물을 사수위아래로 줄이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양어수역의 오염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미광이나 정화하지 않은 버림물,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오물과 폐설물 같은 것을 양어수역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

기름이 새여 물고기의 생장에 지장을 줄수 있는 배는 양어수역에서 운영할수 없다.

**제40조 (낚시질질서준수)**

양어수역에서 낚시질을 하려는 국민은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한다.

## 제6장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1조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양어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2조 (중앙양어지도기관의 임무)**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는 개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양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양어지도기관은 전국의 양어사업을 정확히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3조 (물고기병에 대한 예방치료)**

중앙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병과 그 예방치료에 대한 연구를 강화

하며 연구성과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제44조** (미생물번식에 필요한 원료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에서 미생물번식에 리용할수 있도록 집짐승 배설물 같은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5조** (양어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양어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6조** (양어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양어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양어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가의 양어정책집행정형감독자료를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

**제47조** (양어수역관리권의 박탈)

양어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양어수역을 바로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관리권을 박탈한다.

**제48조** (물고기생산중지, 피해보상, 몰수)

국가계획을 받지 않고 물고기를 생산하였거나 물고기자원조성과 보호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물고기생산을 중지시키고 해당한 피해를 보상시키며 비법적으로 생산한 물고기와 얻은 수입, 위법행위에 리용한 배와 물고기잡이도구는 몰수한다.

**제49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양어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삼법

주체107(201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39호로 채택  
주체110(2021)년 7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39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인삼법의 기본

### 제1조 (인삼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삼법은 인삼밭의 조성과 인삼의 생산, 수매, 가공, 판매, 수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우리나라의 특산물인 개성고려인삼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보존하며 인삼생산을 늘이고 약효능이 높은 여러 가지 인삼가공제품을 적극 개발하여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인삼부문사업에 대한 투자원칙)

세계적인 명산물인 개성고려인삼은 나라의 국보이며 국가통제품이다.  
국가는 인삼부문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여 인삼자원을 적극 보호증식하도록 한다.

### 제3조 (인삼밭의 조성원칙)

인삼밭조성을 바로하는 것은 인삼생산을 늘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인삼밭조성을 적지적작의 요구에 맞게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 제4조 (인삼의 생산과 수매원칙)

인삼의 생산과 수매를 잘하는 것은 인삼가공원료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인삼재배를 적극 장려하여 인삼생산을 늘이며 생산된 인삼을 허실없이 제때에 수매하도록 한다.

### 제5조 (인삼가공제품의 생산과 판매원칙)

국가는 인삼가공기술을 부단히 개선하며 여러가지 질 좋은 인삼가공제품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한다.

### 제6조 (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자, 전문가양성원칙)

국가는 인삼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인삼밭의 조정과 인삼의 생산, 가공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전문가, 기술자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 제7조 (인삼부문의 대외교류와 협조)

국가는 인삼부문사업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8조 (적용대상)

이 법은 인삼밭을 조성하며 인삼을 생산, 수매, 가공, 판매, 수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 제2장 인삼밭의 조성

### 제9조 (인삼밭조성계획의 맞물림)

인삼밭의 조성은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한다.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밭조성계획을 인민경제계획에 정확히 맞물려야 한다.

### 제10조 (인삼밭조성적지의 선정)

인삼밭조성적지는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정한다.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밭조성적지를 선정하는데 기초하여 인삼밭조성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11조 (인삼밭조성설계의 작성)

인삼밭조성설계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인삼밭조성지역의 기후와 토양, 관수조건같은것을 정확히 조사분석하고 인삼재배를 과학화, 집약화할수 있게 인삼밭조성설계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 (인삼밭조성토지의 보장)

농업지도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해당 기관은 인삼밭조성에 필요한 토지 또는 그루바꿈용 토지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 제13조 (인삼밭의 지력제고)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흙갈이와 토양소독, 유기질비료시비같은것을 정해진 기준대로 하여 인삼밭의 지력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새로 조성하려는 인삼밭에는 인삼을 심기 2~3년 전부터 인삼밭의 지력을 높이는데 유리한 작물을 재배한다.

### 제14조 (인삼밭에 대한 자연피해방지)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물과 황사, 큰물 같은 재해성 자연현상으로부터 인삼밭을 보호할수 있게 관수와 배수, 사방야계공사같은것을 계획적으로 하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 제15조 (인삼밭주변에서 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인삼밭주변에서 인삼재배에 지장을 주는 작물을 심지 말아야 한다.

인삼밭주변에서 농약을 치려 할 경우에는 인삼재배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인삼밭의 출입금지)**

인삼밭에는 관리성원외에 누구도 들어갈수 없다.

필요에 따라 인삼밭관리성원이 아닌 성원이 들어가려 할 경우에는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인삼밭의 경비조직)**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밭에 대한 경비조직을 빈틈없이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장 인삼의 생산과 수매

**제18조 (인삼생산, 수매계획의 작성)**

인삼의 생산과 수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작성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인삼밭조성계획에 기초하여 인삼의 생산, 수매계획을 작성, 시달하여야 한다.

**제19조 (인삼의 육종 및 채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성고려인삼원종을 유지보존하며 인삼육종 및 채종체계를 바로 세워 우량품종의 인삼을 육종, 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 (인삼의 전문재배와 군중재배)**

인삼의 재배는 전문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농경지를 침범하지 않는 원칙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비경지나 원료기지, 산림토지 등에 인삼을 재배할수 있다.

**제21조 (인삼종자와 묘삼의 심기)**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검사기관의 검사에서 합격된 우리 나라의 고유한 인삼종자와 묘삼을 심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에 인삼 종자와 묘삼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다른 나라 인삼종자나 묘삼은 심을수 없다.

**제22조 (인삼밭의 가림설치)**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빛과 비를 막을 수 있게 인삼밭에 가림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삼밭가림의 설치는 인삼싹이 돋아나기 전에 한다.

**제23조 (인삼보식)**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밭에 빈포기가 생겼을 경우 제때에 보식하여야 한다.

인삼보식은 인삼을 심은 다음해 봄과 가을에 우량한 묘삼으로 한다.

**제24조 (인삼재배공정별에 따르는 작업)**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잎소독과 유기질비료주기, 김매기같은 인삼재배공정별에 따르는 작업을 기술적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인삼재배에 화학비료는 사용할수 없다.

**제25조 (인삼에 대한 병해충피해방지)**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에 대한 병해충예찰 예보체계를 바로세우고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인삼생산정형의 장악)**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재배면적과 생산량을 해당 상급기관을 통하여 해마다 11월중순까지 국가계획기관과 중앙통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7조 (인삼의 수확)**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6년생 인삼을 수확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수확을 할수도 있다.

인삼수확은 인삼수매기관의 립회하에만 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을 수확하기 1개월전에 인삼수확면적과 예정날자, 수확량같은 것을 인삼수매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8조 (인삼의 수매)**

인삼수매기관은 계획 또는 계약에 따라 생산한 인삼을 정확히 수매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품질감독기관의 품질검사를 받는다.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을 조선인삼협회가 정한 인삼수매기관에 수매하지 않고 자의대로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9조 (인삼의 수매가격)**

인삼의 수매가격은 조선인삼협회의 합의를 받아 국가가격기관이 정한다.

국가가격기관은 인삼의 질과 등급, 인삼생산자들의 리해관계를 고려하여 인삼수매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0조 (인삼의 보관)**

인삼수매기관은 수매받은 인삼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보관하며 인삼의 부패, 변질을 막아야 한다.

**제31조 (인삼의 수입금지)**

다른 나라의 인삼과 인삼종자, 묘삼은 수입할 수 없다.

## 제4장 인삼가공제품의 생산과 판매

### 제32조 (인삼가공제품생산기관)

인삼가공제품은 국가가 정한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생산할수 있다.

### 제33조 (인삼가공제품생산의 계획화)

국가계획기관과 인삼가공제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가공제품의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인삼가공제품생산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인삼가공제품생산계획은 조선인삼협회에 등록한다.

### 제34조 (인삼가공제품의 생산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인삼가공제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가공제품의 품종별에 따르는 생산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작성하고 엄격히 지켜야 한다.

국가품질관리체계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가공제품을 생산할수 없다.

### 제35조 (인삼가공제품의 위생안전성보장)

인삼가공제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가공제품의 위생안전성을 정해진 기준대로 보장하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위생안전성에 대한 검사, 검정을 받아야 한다.

위생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인삼가공제품은 생산할수 없다.

### 제36조 (홍삼가공의 비밀엄수)

홍삼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홍삼가공과 관련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홍삼가공과 관련한 자료는 정해진 일군만이 취급하며 홍삼가공현장은 승인없이 보여줄수 없다.

### 제37조 (인삼가공제품의 포장)

인삼가공제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가공제품을 정해진 규격대로 포장하여야 한다.

인삼가공제품의 포장용기와 재료는 인삼가공제품의 특성에 맞는것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 제38조 (인삼가공제품의 상표사용)

인삼가공제품에는 국가에 등록된 상표를 붙여야한다.

《개성고려인삼》상표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리용할수 있다.

인삼가공제품에 대한 상표를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조선인삼협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제39조 (인삼가공제품의 가격)

인삼가공제품의 가격은 조선인삼협회의 합의를 받아 국가가격기관이 정한다.

국가가격기관과 조선인삼협회는 인삼가공제품의 가격을 생산자와 소비자의 리익을 옹계 결함시킬수 있도록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제40조 (인삼가공제품의 판매)**

인삼가공제품은 조선인삼협회의 합의를 거쳐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판매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가공제품을 정해진 가격에 준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41조 (인삼의 광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과 관련한 광고를 하려 할 경우 조선인삼협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인삼가공제품의 수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을 가공하여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 할 경우 국가적으로 승인된 기관, 기업소, 단체를 통하여 위탁가공하여 수출하여야 한다.

## 제5장 인삼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3조 (비상설조선인삼협회의 조직)**

인삼부문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삼협회(략칭 조선인삼협회)를 조직한다.

조선인삼협회는 계획, 농업, 가격, 품질감독, 보건, 세관, 사회안전, 인삼재배 및 가공제품생산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군들로 구성한다.

조선인삼협회는 대외적으로 우리 나라 인삼부문을 대표하여 활동하면서 인삼생산과 수매, 가공, 판매, 수출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며 인삼수출을 위하여, 품질, 가격, 상표, 광고 등 인삼의 대외시장진출과 관련한 문제를 집체적으로 협의대책한다.

조선인삼협회의 실무보장사업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맡아한다.

**제44조 (인삼부문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 노동행정기관, 해당 기관은 인삼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토지,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5조 (인삼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인삼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조선인삼협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조선인삼협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인삼부문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6조 (손해보상)**

인삼밭의 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경비조직을 잘하지 못하여 인삼을 도난당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제47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벌금을 물린다.

1. 인삼을 정해진 수매기관에 수매하지 않고 비법적으로 처리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00만원, 국민에게는 10만원
2. 다른 나라의 인삼과 인삼종자, 묘삼을 수입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50만원
3. 인삼가공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00만원. 국민에게는 5만~10만원
4. 《개성고려인삼》 상표를 도용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국민에게는 5만~10만원
5. 인삼가공제품판매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50만원, 국민에게는 1만~5만원
6. 인삼가공제품을 비법적으로 수출하였을 경우 100만~150만원

#### 제48조 (중지 및 폐업처벌)

이 법 제47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시킨다.

#### 제49조 (몰수처벌)

인삼의 생산과 수매, 가공, 판매, 수출입질서를 어겼을 경우 위법행위로 얻은 돈과 물건, 위법행위에 리용된 설비와 물자를 몰수한다.

#### 제50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인삼발조성을 바로하지 못하여 인삼재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인삼발조성에 필요한 토지 또는 그루바꿈용토지를 제때에 보장해주지 않아 인삼발조성과 인삼재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인삼재배를 바로하지 않아 수확고를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4. 이 법 제15조의 요구를 어겨 인삼재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5. 인삼밭에 대한 경비조직을 바로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6. 인삼을 정해진 수매기관에 수매하지 않고 비법적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7. 수매받은 인삼에 대한 보관을 바로하지 않아 인삼을 부패, 변질시켰을 경우
8. 다른 나라의 인삼과 인삼종자, 묘삼을 수입하였을 경우
9. 승인없이 인삼가공제품을 생산하였거나 인삼가공제품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10. 《개성고려인삼》 상표를 도용하였을 경우
11. 홍삼가공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12. 인삼가공제품판매질서를 어겼을 경우
13. 인삼가공제품을 비법적으로 수출하였을 경우
14. 인삼에 대한 광고질서를 어겼을 경우

앞항 1~14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별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51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작물유전자원관리법

주체102(2013)년 10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96호로 채택

## 제1장 작물유전자원관리법의 기본

### 제1조 (작물유전자원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작물유전자원관리법은 작물유전자원의 등록과 보존,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을 개선하며 농업생산을 늘이는데 필요한 작물유전자원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작물유전자원이란 작물의 종 또는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자원으로서 작물의 형질별특성을 재생시키며 그의 유전적특성을 변화시키거나 개량하는데 리용할수 있는 작물의 유전적원천을 말한다.

작물유전자원에는 작물의 야생종과 그의 근연종, 재래종, 품종, 육성중에 있는 집단이 속한다.

### 제3조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투자원칙)

작물유전자원은 농업발전의 중요한 밑천이다.

국가는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선차적관심을 돌리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여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4조 (작물유전자원의 등록원칙)

작물유전자원의 등록은 새로운 작물유전자원을 더 많이 수집, 육성하여 국가작물유전자원으로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작물유전자원의 등록체계를 바로세우고 작물유전자원의 등록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 제5조 (작물유전자원의 보존과 리용원칙)

국가는 작물유전자원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존하며 정해진 용도에 리용하도록 한다.

### 제6조 (과학연구 및 인재양성원칙)

국가는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 제7조 (작물유전자원관리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작물유전자원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8조 (국제조약의 효력)**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가입하였거나 승인한 조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2장 작물유전자원의 등록

**제9조 (새로운 작물유전자원의 수집과 육성)**

농업과학연구기관은 수확고가 높고 가물과 비바람, 랭해, 병해충 같은 불리한 조건에도 잘 견디는 새로운 작물유전자원을 수집, 육성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작물유전자원을 수집하거나 농업과학연구기관의 방조밑에 육성할수 있다.

**제10조 (다른 나라의 작물유전자원에 대한 검역)**

다른 나라에서 작물유전자원을 들여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법규에 따라 작물유전자원에 대한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에서 합격되지 못한 작물유전자원은 우리 나라에 들여올수 없다.

**제11조 (작물유전자원등록신청문건의 제출)**

작물유전자원을 새로 수집하였거나 육성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등록하려 할 경우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에 작물유전자원등록신청문건과 함께 작물유전자원을 내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신청리유를 밝히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다.

**제12조 (작물유전자원의 검정시험)**

작물유전자원등록신청문건을 작물유전자원에 대한 검정시험을 정해진 기간에 진행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작물유전자원에 대한 검정시험을 하고 평가한 자료는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에 낸다.

**제13조 (병발생에 대한 구제대책)**

작물유전자원검정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에 대한 검정시험을 하는 과정에 병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평의회에서 원인을 해명하고 제때에 구제대책을 세우며 그 정형을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작물유전자원의 보존, 폐기신청)**

작물유전자원검정시험평가자료를 받은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은 그에 기초하여 작물유전자원의 보존 또는 폐기신청문건을 작성한 다음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에 내야 한다.

**제15조 (작물유전자원의 보존, 폐기결정)**

작물유전자원의 보존 또는 폐기신청문건을 받은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은 그것을 해당 부문의 과학기술심의를 거쳐 비상설국가작물유전자원등록 및 폐기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비상설국가작물유전자원등록 및 폐기심의위원회는 정해진 기간에 작물유전자원의 보존 또는 폐기신청문건을 심의하고 해당 작물유전자원의 보존 또는 폐기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국가작물유전자원등록증의 발급)**

비상설국가작물유전자원등록 및 폐기심의위원회는 국가적의의가 있는 작물유전자원을 국가작물유전자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작물유전자원을 수집, 육성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국가작물유전자원등록증을 발급한다.

### 제3장 작물유전자원의 보존과 리용

**제17조 (작물유전자원의 보존기관)**

작물유전자원의 보존은 작물유전자원연구기관이 한다.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의 보존에서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18조 (작물유전자원의 보존시설관리)**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보존시설을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며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작물유전자원의 피해방지)**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은 과학적인 작물유전자원의 보존방법을 적용하며 작물유전자원의 손상, 부패, 변질같은 피해를 막으며 분실, 도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제20조 (작물유전자원의 갱신)**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의 특성에 맞게 갱신주기를 바로 정하고 순결률과 생활력이 높은 작물유전자원으로 갱신하여 형질별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갱신한 작물유전자원의 검사)**

갱신한 작물유전자원의 검사는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이 한다.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은 포전검사와 실험실검사를 통하여 작물유전자원의 물기함량, 발아률, 순결률 같은 것을 정확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22조 (작물유전자원의 보장)**

작물유전자원의 보장은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이 한다.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을 정해진 체계에 따라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작물유전자원의 리용)**

작물유전자원을 보장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물유전자원을 정해진 용도에 리용하여야 한다.

보장받은 작물유전자원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4조 (작물유전자원의 리용정형통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장받은 작물유전자원의 리용정형을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에 정기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보장받은 작물유전자원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수 없다.

**제25조 (작물유전자원의 입출고와 실시자료의 제출)**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의 입출고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작물유전자원보존시설에 보존한 작물유전자원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자료를 중앙농업연구기관에 내야 한다.

**제26조 (토지, 시설보장)**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작물유전자원의 연구에 필요한 토지와 시설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작물유전자원의 연구에 필요한 토지는 토양이 비옥하고 관수조건, 보호조건, 자연지리적조건 같은 것이 유리한 곳에 정한다.

**제27조 (시험포전보호구역)**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과 해당 농업과학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의 육성과 검정, 보존연구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포전보호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작물유전자원의 시험포전보호구역에서 작물유전자원의 육성, 보존연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8조 (시험포전의 출입금지)**

외부인원은 작물유전자원을 연구하는 농업과학연구기관과 시험포전에 들어갈수 없다.

필요에 따라 외부인원이 들어가려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비밀엄수)**

해당 농업과학연구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과 관련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과 관련한 자료는 정해진 일군만이 취급하며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에게 보여줄수 없다.

### 제30조 (작물유전자원의 반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물유전자원을 다른 나라에 내보내려 할 경우 내각 또는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장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1조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이 한다.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32조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자금, 연유, 비료, 농약, 농기계 같은 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작물유전자원관리부문의 로력을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하거나 자금, 연유, 비료, 농약, 농기계 같은 것을 돌려쓰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33조 (공로평가)

경제적가치가 큰 작물유전자원을 새로 수집, 육성하는데 공로가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해당한 평가를 한다.

### 제34조 (감독통제)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35조 (중지, 원상복구)

작물유전자원을 연구하는 시험포전보호구역안에서 작물유전자원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농작물을 심거나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시키고 원상복구시킨다.

### 제36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새로 등록된 국가농작물품종의 원인종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작물유전자원을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에 제때에 넘겨주지 않았을 경우
2. 작물유전자원검정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아 작물유전자원의 등록과 보존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작물유전자원을 정해진대로 보존하지 않아 부패변질시켰을 경우
4. 작물유전자원의 보장질서를 어겼을 경우
5. 보장받은 작물유전자원을 승인없이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6. 승인없이 작물유전자원을 연구하는 농업과학연구기관, 시험포전에 들어가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승인없이 작물유전자원을 다른 나라에 내보냈을 경우
8. 작물유전자원의 연구 및 관리에 필요한 토지와 로력, 설비, 자금, 연유, 농약같은 것을 원만히 보장해주지 않아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작물유전자원관리와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10. 작물유전자원에 대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세우지 않아 분실, 도난사고를 냈을 경우

**제37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36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잠업법

주체102(2013)년 10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97호로 채택  
주체110(2021)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5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잠업법의 기본

#### 제1조 (잠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잠업법은 누에먹이밭의 조성과 관리, 누에고치의 생산 수매,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잠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용어의 정리)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잠업이란 누에먹이작물을 재배하고 누에를 쳐서 고치를 생산하는 농업의 한 부분을 말한다.
2. 누에먹이밭이란 뽕나무와 그밖의 누에먹이작물을 심는 토지이다.

#### 제3조 (잠업발전원칙)

국가는 잠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선진적인 잠업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잠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잠업생산을 전문화하는것과 함께 누에치기를 전군중적운동으로 활발히 벌려 인민생활향상과 지방경제발전에 적극 기여하도록 한다.

#### 제4조 (누에먹이밭조성과 관리원칙)

누에먹이밭의 조성과 관리를 잘하는것은 누에고치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누에먹이밭을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과학적인 비배관리체계를 세워 누에먹이생산을 늘이도록 한다.

#### 제5조 (담당제 실시 및 평가원칙)

국가는 잠업부문에서 누에먹이밭을 비롯한 생산수단을 생산자별로 고정담당시키고 지출된 로동, 생산물의 량과 질에 따라 평가사업을 바로하도록 한다.

#### 제6조 (누에고치수매원칙)

누에고치수매사업을 바로하는것은 생산된 누에고치를 허실없이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누에고치수매사업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세워 생산된 누에고치를 제때에 전량 수매하도록 한다.

**제7조** (과학연구사업강화, 인재양성원칙)

국가는 잠업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과학기술연구와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가치있는 잠업과학기술을 개발, 도입하며 잠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8조** (국제적인 교류와 협조)

국가는 잠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2장 누에먹이밭의 조성관리

**제9조** (누에먹이밭의 조성관리에서 나서는 요구)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적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해당 지역의 자연기후조건과 토양의 특성, 경제적실리에 맞게 누에먹이밭을 조성하며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누에먹이밭은 뽕밭을 위주로 하여 조성한다.

**제10조** (누에먹이밭조성계획의 맞물림)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누에먹이밭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국토관리총동원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제11조** (누에먹이밭조성설계의 작성)

중앙잠업지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과 선진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누에먹이밭조성지역의 기후와 토양, 경사도 같은것을 정확히 조사분석하고 그 관리를 기계화, 화학화, 수리화할수 있게 누에먹이밭조성설계를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누에먹이밭의 조사장악과 등록)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누에먹이밭을 정기적으로 조사장악하고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 (누에먹이작물재배용토지의 보장과 리용)

중앙잠업지도기관과 국토관리기관, 해당 기관은 정해진 질서에 따라 누에먹이작물재배에 필요한 토지를 제때에 보장하여 누에고치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누에먹이작물재배용토지는 정해진 용도에 리용하며 묵이거나 류용할수 없다.

**제14조** (전군중적인 누에먹이작물심기와 관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토관리총동원기간과 산림복구전투기간에 담당한 뽕밭, 마을과 살림집주변, 도로와 철길, 산과 하천주변의 빈땅 같은곳에 뽕나무를 기본으로 하는 누에먹이작물을 심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누에먹이작물품종의 배치)**

잠업부문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기후풍토조건에 맞는 누에먹이작물품종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누에먹이밭의 지력제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누에먹이밭의 토양분석을 과학적으로 진행한데 기초하여 중앙잠업지도기관이 정한 시비기준에 따라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 미량원소비료, 소석회를 시비하여야 한다.

**제17조 (누에먹이작물의 가꾸기)**

잠업과학연구기관은 누에먹이작물의 특성에 맞는 그루바투자르기, 가지자르기, 모양만들기 같은 누에먹이작물가꾸기방법을 연구완성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정에 맞게 앞선 누에먹이작물가꾸기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제18조 (뽕나무묘의 생산과 판매, 공급)**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양이 비옥하고 관수조건, 기계화조건이 유리한 곳에 양묘장을 꾸리고 다수확품종의 뽕나무묘를 대대적으로 생산하며 검사에서 합격된 뽕나무묘만을 판매 및 공급하여야 한다.

**제19조 (누에먹이작물의 병해충방지, 겨울철대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누에먹이작물에 대한 병해충예방 및 구제대책과 겨울철얼굴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야 한다.

**제20조 (자연피해방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무더기비, 사태 같은 자연피해로부터 누에먹이작물을 보호할수 있게 사방야계공사, 토지정리를 계획적으로 하고 그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장 누에고치의 생산

**제21조 (선진누에고치생산기술도입)**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회누에치기를 비롯한 선진적인 누에고치생산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누에고치생산을 늘여야 한다.

**제22조 (누에고치생산계획작성과 생산조직)**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잠업지도기관은 누에고치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생산능력을 타산하여 누에고치생산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생산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 제23조 (누에종자의 생산)

누에종자생산은 정해진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할수 있다.

잠업지도기관과 누에종자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누에종자생산체계를 바로세워 생산성이 높고 해당 지대의 기후풍토에 맞는 다수확품종의 누에종자를 생산하여야 한다.

원종이상의 누에종자는 잠업모총장, 잠업원총장에서만 생산한다.

#### 제24조 (누에종자에 대한 검사)

잠업지도기관과 누에종자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누에종자에 대하여 잠업검역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누에종자는 공급, 판매할수 없다.

#### 제25조 (새 누에품종의 등록)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누에품종을 새로 육종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에 등록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 제26조 (누에종자의 공급, 판매)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누에종자공급계획과 계약에 따라 누에종자를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 제27조 (잠업방역사업)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누에에 대한 검진과 검역, 소독, 격리 및 구제대책을 세워 누에병의 발생, 전파를 미리 막고 발생한 누에병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중앙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잠업방역사업을 위하여 누에종자를 생산하는 지역의 일정한 구역을 잠업방역지대로 설정할수 있다.

잠업방역지대안에서는 검역기관의 승인없이 누에치기와 농약시비와 같은 누에종자생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28조 (누에고치생산의 현대화)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누에고치생산자들이 일을 험하게 하고 계절의 영향을 극복하며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누에고치생산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공정과 요소의 전문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 제4장 누에고치의 수매와 리용

#### 제29조 (누에고치수매계획)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잠업지도기관은 누에고치원천을 빠짐없이 찾으며 누에고치생산과 수요의 균형을 정확히 타산하여 누에고치수매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누에고치수매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 (누에고치수매기관)**

누에고치수매는 중앙잠업지도기관이 정한 수매기업소가 한다.

누에고치수매기업소는 수매계획과 계약에 따라 누에고치를 제때에 정확히 수매받아야 한다.

**제31조 (누에고치수매방법)**

누에고치의 수매는 계획 또는 계약에 따라 한다.

누에고치를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누에고치수매계획 또는 계약에 따라 생산한 누에고치를 누에고치수매기업소에 전량 수매하여야 한다.

**제32조 (누에고치수매가격 및 수매자금지출)**

국가가격기관과 해당 기관은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누에고치생산과 수매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질수 있도록 누에고치수매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누에고치를 수매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받은 수매자금의 정해진 몫을 로동보수지불과 확대재생산을 비롯한 해당 용도에만 지출하여야 한다.

**제33조 (누에고치의 검사 및 계량)**

누에고치수매기업소와 품질감독기관은 누에고치를 정해진 규격에 준하여 생산단위의 립회밀에 품질검사와 수분검사를 진행하고 정확히 계량하여 수매받아야 한다.

**제34조 (누에고치의 보관관리)**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누에고치수매기업소는 누에고치보관조건과 시설을 갖추고 누에고치보관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제35조 (누에고치의 수출금지)**

누에고치는 수출할수 없다.

**제36조 (누에고치의 가공)**

누에고치의 가공은 해당 생산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만이 할수 있다.

누에고치가공기관, 기업소는 누에고치가공기술을 갱신하고 생산설비를 현대화하여 누에고치가공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을 늘여야 한다.

누에고치가공품은 정해진 용도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제37조 (누에고치가공품의 수출)**

누에고치가공품은 수출할수 있다. 이 경우 수출은 누에고치가공품수출허가를 받은 단위만이 한다.

**제38조 (부산물의 가공, 리용)**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누에고치와 그 가공품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용도에 맞게 효과적으로 가공, 리용하여야 한다.

**제39조 (밀수, 밀매행위의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누에종자와 누에고치, 누에고치가공품을 밀수, 밀매하는 행위를 하지말아야 한다.

## 제5장 잠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0조 (잠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

잠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잠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잠업지도기관은 잠업부문의 계획화사업과 생산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1조 (잠업부문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잠업지도기관, 건설감독기관, 국토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잠업부문에 필요한 로력, 토지, 건물, 설비, 자재, 자금, 영농물자와 사업조건을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 (과학연구사업과 그 성과의 도입)**

중앙잠업지도기관과 해당 작업연구기관은 최신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치생산방법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 (과학지식보급사업의 강화)**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지식보급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며 생산자들이 고치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4조 (공로에 대한 평가)**

누에고치를 많이 생산하여 국가에 큰 리득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해당한 평가를 한다.

**제45조 (타사업동원금지)**

내각과 로동행정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잠업부문의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잠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46조 (잠업부문사업에 저해를 주는 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누에먹이작물의 재배와 누에사육에 지장을 주거나 생산용건물과 시설을 파손시키는것을 비롯하여 잠업부문사업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7조 (잠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잠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누에먹이발조성과 관리, 누에고치의 생산, 수매, 리용정형에 대하여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8조 (민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원상복구, 손해보상, 위약금,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제49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벌금을 물린다.

1. 누에먹이발의 조사장약과 등록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30만~150만원
2. 누에먹이발을 휴경, 폐경, 류실, 류용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50만~150만원
3. 누에먹이작물의 심기와 가꾸기, 품종배치를 바로하지 않아 누에고치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150만원
4. 비법적으로 뽕나무를 찍었거나 뽕잎을 따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1,000~10만원
5. 누에먹이작물에 대한 병해충예방 및 구제대책, 겨울철얼굴피해방지대책, 자연피해방지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아 누에먹이작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30만~150만원
6. 잠업방역지대안에서 검역기관의 승인없이 누에치기와 농약시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3만~10만원
7. 누에종자의 생산, 검사, 공급, 등록질서를 어겼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5,000~10만원
8. 누에고치를 제대로 보관관리하지 않아 변질시켰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150만원
9. 생산허가를 받지 않고 누에고치를 가공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5만~10만원
10. 누에종자와 누에고치, 누에고치가공품을 밀수, 밀매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50만원, 공민에게는 10만원

**제50조 (몰수처벌)**

누에종자와 누에고치, 누에고치가공품을 밀수, 밀매하였거나 공급받은 누에고치가공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하였거나 위법행위로 얻은 물품과 자금을 몰수한다.



**제51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누에먹이밭조성계획, 누에고치생산 및 수매계획, 누에종자공급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2. 누에먹이밭의 조사장악과 등록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3. 누에먹이밭을 휴경, 폐경, 류실, 류용하였을 경우
4. 누에먹이작물의 심기와 가꾸기, 품종배치를 바로하지 않아 누에고치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누에먹이밭의 지력을 정해진 기준대로 보장하지 않아 누에고치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뽕나무모의 생산과 판매, 공급질서를 어겼을 경우
7. 비법적으로 뽕나무를 찍었거나 뽕잎을 뜯을 경우
8. 누에먹이작물에 대한 병해충예방 및 구제대책, 겨울철얼굴피해방지대책, 자연피해방지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아 누에먹이작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9. 누에종자의 생산, 검사, 등록질서를 어겼을 경우
10. 누에사육을 무책임하게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11. 잠업방역지대안에서 검역기관의 승인없이 누에치기와 농약시비와 같은 누에종자생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2. 누에고치수매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해주지 않아 누에고치생산과 수매사업에 저해를 주었을 경우
13. 누에고치를 제대로 보관관리하지 않아 변질시켰을 경우
14. 누에고치의 가공질서를 어겼을 경우
15. 누에종자와 누에고치, 누에고치가공품을 밀수, 밀매하였을 경우
16. 누에고치생산에 필요한 조건보장을 바로하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7. 잠업부문의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잠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켰거나 비법처분하였을 경우
18. 누에먹이작물의 재배와 누에사육에 지장을 주거나 생산용건물과 시설을 파손시키는것을 비롯하여 잠업부문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앞항 1~18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52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산법

주체95(2006)년 1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3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9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축산법의 기본

### 제1조 (축산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산법은 집짐승종자의 확보와 집짐승의 먹이보장, 사양관리, 수의 방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축산물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축산발전의 기본원칙)

인민들에게 고기와 알, 젓 같은 축산물을 풍족하게 생산공급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축산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여 축산을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하도록 한다.

### 제3조 (집짐승종자의 확보원칙)

종자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축산업발전의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축산부문에서 집짐승육종사업을 강화하여 좋은 집짐승품종을 많이 얻어내도록 한다.

### 제4조 (집짐승의 먹이보장원칙)

먹이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축산업발전의 결정적담보이다.

국가는 집짐승먹이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생산량을 늘여 집짐승의 먹이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 제5조 (집짐승의 사양관리원칙)

국가는 집짐승기르기를 전문화, 집약화하고 집단사육과 분산사육을 배합하면서 집짐승의 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한다.

### 제6조 (수의방역의 강화원칙)

수의방역사업은 축산업에서 생명이다.

국가는 축산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의방역체계를 바로세우고 방역사업을 강화하여 집짐승의 폐사률을 낮추고 축산물생산을 안전하게 하도록 한다.

**제7조** (전군중적인 축산물생산원칙)

국가는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내밀도록 한다.

**제8조** (축산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축산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2장 집짐승종자의 확보

**제9조** (집짐승종자확보의 기본요구)

집짐승종자확보사업을 바로하는 것은 집짐승종자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집짐승종자의 우량원종을 얻어내며 그 유지와 확대번식을 축산학적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집짐승품종의 육종)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축산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고 먹이를 적게 먹으면서도 빨리 자라며 번식률이 높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 품종의 집짐승을 육종하여야 한다.

개별적공민도 우량품종의 집짐승을 육종할수 있다.

**제11조** (새 품종의 등록)

축산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육종한 새 품종을 국가검정을 받은 다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합격된 새 품종을 중앙농업지도기관의 과학기술심의회도입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 국가집짐승품종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집짐승종자의 수입)

다른 나라에서 집짐승종자를 들여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집짐승종자는 국가검정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중앙농업지도기관의 과학기술심의회도입위원회심의를 받은 다음 국가집짐승품종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인공수정)

중앙농업지도기관과 과학연구기관, 인공수정기관은 합리적인 쉼붙임방법을 연구 완성하고 인공수정을 계획적으로 하여 경제적실리를 보장하며 생산성이 높은 집짐승종자를 생산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집짐승의 인공수정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14조 (집집승종자의 생산, 공급계획작성)**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종장과 종축장을 현대적으로 꾸리며 생산능력과 실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집집승종자의 생산,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집집승의 품종별, 계통별로 세워야 한다.

**제15조 (집집승종자의 공급)**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집집승원종, 원종알을 정해진 기관, 기업소, 단체에만 공급하여야 한다.

도(직할시)종축장, 종금장은 해마다 국가원종장에서 원종을 받아 종축, 종금을 갱신보충하며 확대생산한 원종을 시(구역), 군에 공급하여야 한다.

시(구역), 군종축장, 종금장은 1대취붙임종축, 종금 또는 순종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16조 (집집승종자, 종자알의 검사)**

집집승종자와 종자알은 해당 종축검정기관의 검사를 받는다.

검사에서 합격된 집집승종자와 종자알에는 종자증명서, 종자알검사증을 발급한다.

증명서와 검사증을 발급받지 못한 집집승종자와 종자알은 공급하거나 교류, 판매할수 없다.

**제17조 (집집승종자의 등록)**

종축검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집집승종자등록대장을 갖추고 집집승종자를 제때에 심사하여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집집승종자등록대장을 폐기할수 없다.

**제18조 (원종보존과 품종의 개량)**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종의 유전적형질보존체계를 세워 좋은 품종의 집집승이 퇴화되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하며 퇴화되었거나 생산성이 낮은 재래종의 집집승종자를 계획적으로 개량하여야 한다.

축산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가치있는 집집승종자의 개량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제때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집집승종자의 자체생산)**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필요한 집집승종자를 자체로 생산,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래력이 명백하고 우량한 집집승을 종자로 선택하여야 한다.

집집승종자의 리용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정한 집집승종자리용기준에 따른다.

**제20조 (등록하지 않은 집집승품종과 원종의 리용금지)**

중앙농업지도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집집승품종을 기를수 없으며 중앙종축검정기관의 기술적 지도와 통제밖에서 원종을 유지하거나 공급할수 없다. 그러나 국가검정을 받는 과정에 있거

나 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시험과정에 있는 집짐승품종과 원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21조 (원종비밀의 엄수)**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축산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집짐승의 원종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승인없이 집짐승의 원종과 토종, 그와 관련된 기술자료를 열람하거나 출판물에 실을수 없으며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제22조 (원종장의 출입)**

원종장의 출입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발급한 출입증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규정대로 소독을 하고 지정된 장소에만 출입할수 있다.

**제23조 (집짐승품종의 정리, 집짐승종자도태)**

집짐승품종, 집짐승종자는 승인없이 정리하거나 도태시킬수 없다.

집짐승품종을 정리하려 할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중앙농업지도기관의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심의를 거쳐 내각, 집짐승원종을 도태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집짐승종자를 도태시키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4조 (집짐승품평회의 조직)**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집짐승품평회를 실정에 맞게 정기적으로 조직하여야한다.

품평회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집짐승은 종자로 등록하고 리용할수 있다.

## 제3장 집짐승의 먹이보장

**제25조 (집짐승먹이보장의 기본요구)**

집짐승의 먹이보장은 집짐승기르기에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종별, 관리형태별로 먹이소비기준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먹이생산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집짐승종장, 종축장, 종금장과 같이 집짐승종자를 생산하는 단위들에는 먹이를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제26조 (집짐승먹이의 질보장)**

집짐승먹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집짐승먹이생산을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공업화하며 여러 가지 영양물질이 배합되어있는 완전가먹이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짐승먹이생산의 기술적요구와 위생적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집짐승배합먹이에는 정한 량의 단백질, 탄수화물, 광물질, 미량원소 같은 필수적인 영양성분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 (알곡먹이의 생산과 공급)**

부침땅을 리용하여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면적과 비옥도, 기상기후조건, 집짐승의 사양관리기준에 맞게 집짐승먹이작물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축산과 농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워 생산을 늘여야 한다.

생산한 알곡먹이는 해당 기관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종자를 남겨두고 축산물생산에 리용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수매량정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실정에 맞게 알곡 및 알곡부산물 소비계획을 주며 필요한 량을 현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28조 (알곡먹이의 제한)**

축산과학연구기관과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효과적인 먹이기공 방법과 대용먹이, 먹이첨가제를 적극 개발리용하며 알곡먹이소비량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제29조 (먹이원천의 동원리용)**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풀과 나뭇잎, 곡짚, 수초, 부싯토, 천연광물질 같은 먹이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빈땅 사이그루같은 씨불임면적계획밖에 집짐승먹이로 심어 생산한 알곡은 공급계획에 관계 없이 리용할수 있다.

**제30조 (집짐승먹이의 보관)**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확보한 집짐승먹이를 부패변질되거나 영양성분이 파괴되지 않게 가공, 저장하여야 한다.

저장한 집짐승먹이는 분실되거나 쥐, 조류 또는 벌레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풀판의 조성)**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지대적특성에 맞게 인공풀판과 자연풀판을 적극 조성하여 영양가높은 먹이풀을 재배하며 그 정보당생산량을 늘여야 한다.

**제32조 (풀판조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

풀판조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풀판조성적지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풀판조성은 산림토지, 부업지, 원료기지와 비탈밭, 떼기밭 같은데 할수 있다.

전국적인 풀판조성계획과 도, 시, 군풀판조성계획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기후풍토와 집짐승기르기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작성하고 년차별로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풀판조성사업을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반영하여 전군중적인 방법으로 조직진행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플판조성설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플판조성, 관리, 리용부문에 풀씨채집 및 파종기, 풀베는 기계, 비료, 연유, 소독 및 구충약을 비롯한 설비, 자재, 자금을 국가계획에 맞물려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플판조성, 관리, 리용분야의 과학기술적문제를 연구완성하여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과학기술교류사업을 활발히 벌려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년생 풀씨종자와 플판조성, 관리, 리용분야의 과학기술자료를 적극 수집하여야 한다.

플판조성과 리용과정에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 제33조 (조성한 플판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성한 플판을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등록된 플판을 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에 리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34조 (우량풀품종의 채종)

농업지도기관은 채종기지를 조성하고 생산성이 높고 영양가치가 있는 우량한 풀품종을 채종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우량품종의 풀씨를 들여왔을 경우에는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순화시켜 퍼뜨려야 한다.

## 제4장 집짐승의 사양관리

#### 제35조 (집짐승사양관리의 기본요구)

집짐승의 사양관리를 바로하는것은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선진적인 집짐승사양관리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집짐승을 과학기술적으로 길러야 한다.

#### 제36조 (축산작업반과 비육분조 조직운영)

농장은 축산작업반과 비육분조를 잘 꾸리고 실리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 축산작업반과 비육분조들에 새끼생산계획과 고기생산계획을 주고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7조 (농촌세대의 개인축산)

농촌세대들의 개인축산을 장려한다.

농촌세대들에서는 돼지와 염소, 토끼, 닭을 비롯한 집짐승들을 많이 길러 수입을 늘이며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꾸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제38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의 축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축산을 적극 발전시켜 종업원들의 후방사업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축산물생산 또는 필요한 새끼집짐승보장을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내부업축산반을, 도시와 로동자구는 가내축산관리위원회같은것을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9조 (개인부업축산)

공민은 돼지, 양, 염소, 토끼, 닭, 오리, 계사니, 개 같은 집짐승을 기를수 있다. 이 경우 도시 중심지역에서는 집짐승을 기르지 말아야 한다.

원종장, 농목장주변의 정해진 방역구역안에서는 해당 원종장, 농목장에서 기르는것과 같은 종류의 집짐승을 기를수 없다.

#### 제40조 (집짐승의 품종배치)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대적특성과 기상기후조건, 먹이조건을 고려하여 집짐승의 품종을 배치하여야 한다.

집짐승원종장과 종축, 종금장 같은 것은 외부와 격리시켜야 한다.

#### 제41조 (집짐승의 우리)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집짐승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우리를 설계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집짐승우리는 집짐승의 생육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 빛을 보장하며 환기시설, 먹이와 물공급 시설, 배설물처리시설 같은것을 원만히 갖추어야 한다.

#### 제42조 (먹이주는 방법)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집짐승의 생리적특성과 생산목적, 성장단계별에 따르는 먹이종류와 량, 먹이주는 시간과 방법을 바로 정하고 질좋은 먹이를 주어야 한다.

#### 제43조 (집짐승의 방목)

풀먹는 집짐승을 방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풀판면적과 풀생산량을 고려하여 놓아기르는 마리수를 정하고 돌림식농아기르기를 하여야 한다.

좁은 면적의 풀판에 많은 집짐승을 방목하여 풀판을 못쓰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며 새로 조성한 산림구역과 방목지가 아닌 산림구역에서는 방목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제44조 (새끼밴 집짐승의 관리)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새끼밴 집짐승이 병에 걸리거나 락태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며 새끼낳이시기를 바로 정하여 새끼낳이률을 높여야 한다.

새끼낳을 장소는 깨끗이 청소하고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새끼밴 집짐승을 잡을수 없다.

#### 제45조 (집짐승토종의 보호, 번식)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조선소, 풍산개같은 집짐승의 토종을



적극 보호하고 번식시켜야 한다.

**제46조 (집짐승의 방역)**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의방역시설을 잘 갖추어놓고 집짐승에 대한 검진과 우리소독을 정상적으로 하며 외부인원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양관리를 위생문화적으로 하여 전염병과 기생충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 발생할수 있는 근원을 없애야 한다. 집짐승이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제때에수의방역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47조 (국경방역사업강화)**

해당 기관은 국경방역사업을 강화하여 구제역과 조류독감 같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집짐승전염병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조성되면 해당 지역을 제때에 차단하고 방역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

**제48조 (수의방역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수의방역기관은 현대적인 진단설비와 검사기구, 시약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집짐승질병치료에 필요한 소독약, 치료약, 치료기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 제5장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9조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축산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0조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축산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1조 (축산부문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축산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원료, 자재, 자금, 토지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축산부문에 보장된 로력, 설비, 원료, 자재, 자금, 토지는 다른 용도에 리용할수 없다.

**제52조 (축산과학기술의 발전)**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교육기관, 축산과학연구기관은 축산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사업을 전망성있게 하며 축산물생산의 모든 공정을 과학화하고 합리적인 사양관리방법을 확립

하는 것을 비롯하여 축산을 발전시킬수 있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축산과학연구기지들을 잘 꾸리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과학기술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한다.

**제53조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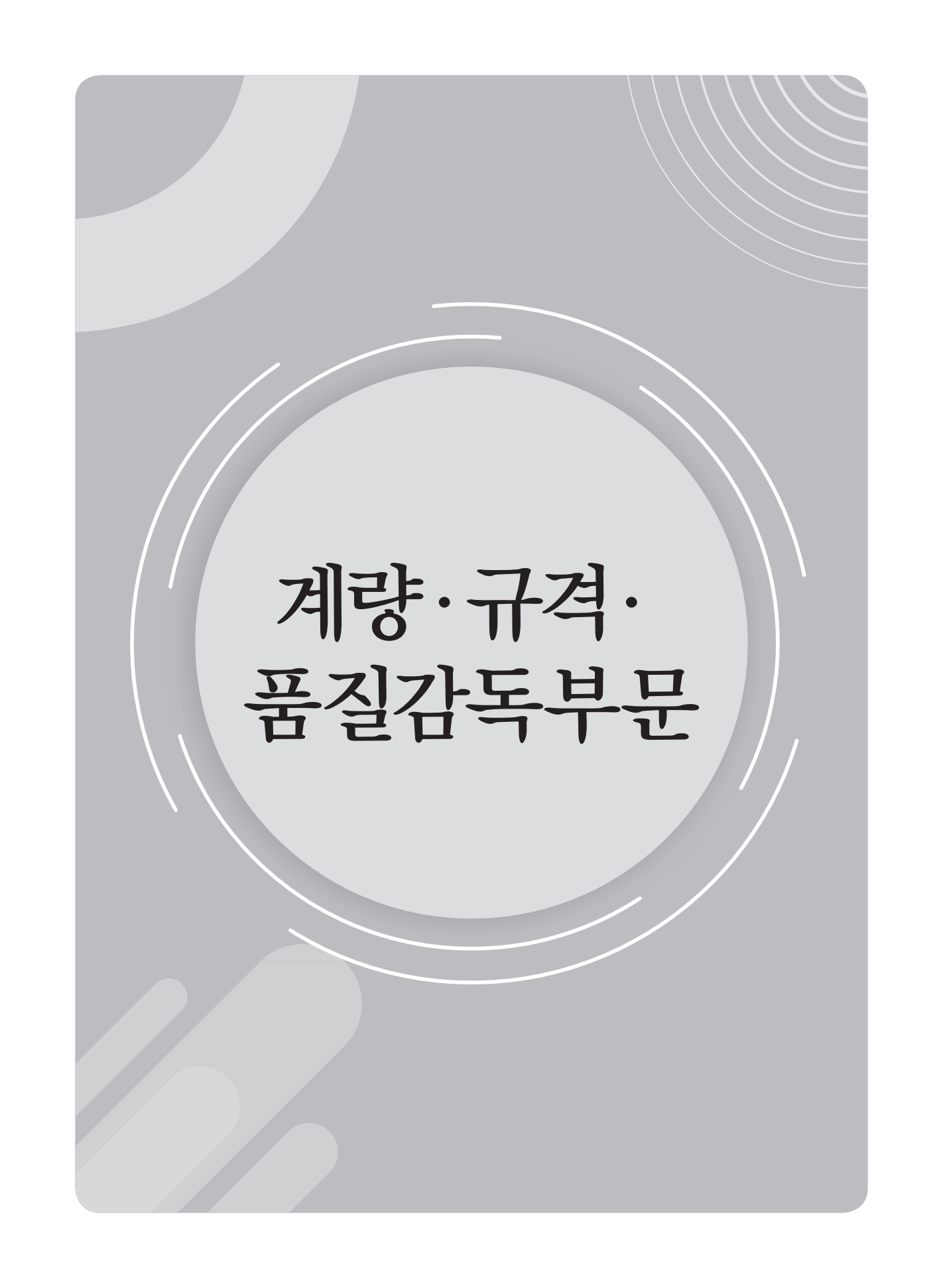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집집승종자의 확보와 집집승의 먹이보장, 사양관  
리, 수의방역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4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집집승을 잘못 관리하여 죽였거나 또는 비법적으로 공급, 판매하였거나 축산시설물을 파손시  
켰거나 집집승먹이를 부패변질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5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축산발전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  
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계량·규격·  
품질감독부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계량법

주체82(1993)년 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9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251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9호로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9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64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60호로 수정보충

## 제1장 계량법의 기본

### 제1조 (계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계량법은 계량단위를 통일시키고 그 믿음성을 보장하며 계량을 정확히 하여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계량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계량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생산과 유통, 소비에 대한 계산과 통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계량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힘을 넣는다.

### 제3조 (계량단위제정원칙)

계량단위는 계량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이다.

국가는 계량단위를 바로 정하고 통일시키도록 한다.

### 제4조 (계량원기의 등록, 보호원칙)

계량원기는 계량단위를 유지, 재현, 전달하는 유일한 기준계량수단이다.

국가는 계량원기를 국보로 등록하고 보호하도록 한다.

### 제5조 (계량수단의 생산, 공급원칙)

국가는 계량수단생산기지를 꾸리고 수요에 맞게 여러 가지 계량수단을 계획적으로 생산, 공급하도록 한다.

### 제6조 (계량수단의 리용원칙)

계량수단을 바로 리용하는것은 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하며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계량수단을 갖추고 그것을 리용하여 생산과 경영활동, 경제계산 등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나가도록 한다.

**제7조 (계량수단의 검정원칙)**

계량수단에 대한 검정은 계량수단의 정밀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일원화된 정연한 계량검정사업체계를 세우고 계량수단을 정상적으로 검정하도록 한다.

**제8조 (계량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계량부문에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며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계량수단을 연구개발하여 계량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도록 한다.

**제9조 (계량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계량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10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계량수단을 생산, 리용, 검정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외국투자기업 포함)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계량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계량단위의 제정

**제11조 (계량단위제정기관)**

계량단위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계량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계량지도기관은 국제단위계에 근거하여 인민경제와 과학기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량단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법제계량단위의 구성)**

법제계량단위는 국가적인 유일한 계량단위이다.

법제계량단위에는 국제단위계의 기본단위와 유도단위, 민족계량단위인 정보 같은 것이 속한다.

**제13조 (법제계량단위의 기본단위)**

법제계량단위의 기본단위는 국제단위계의 기본단위와 같다.

1. 길이단위는 《미터》이며 《m》으로 표시한다.
2. 질량단위는 《키로그램》이며 《kg》로 표시한다.
3. 시간단위는 《초》이며 《S》로 표시한다.
4. 전류의 세기단위는 《암페어》이며 《A》로 표시한다.
5. 온도단위는 《켈빈》이며 《K》로 표시한다.

- 6. 물질의 량단위는 《몰》이며 《mol》로 표시한다.
- 7. 빛의 세기단위는 《칸델라》이며 《cd》로 표시한다.

**제14조 (법제계량단위의 공포)**

법제계량단위를 공포하는 사업은 중앙계량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계량지도기관은 법제계량단위의 이름과 기호를 국가규격으로 공포하여야 한다.

**제15조 (계량단위의 통일)**

중앙계량지도기관은 법제계량단위를 쓰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바로 해결하여 계량단위를 통일시켜야 한다.  
 민족계량단위는 국가가 정한 부문에서만 쓴다.

**제16조 (비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법제계량단위가 아닌 계량단위를 쓰지 말아야 한다.

### 제3장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관리

**제17조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관리의 기본요구)**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관리를 바로하는것은 계량단위를 통일시키고 그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중앙계량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등록, 보관, 리용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18조 (계량원기의 등록신청)**

계량수단을 계량원기로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계량원기등록신청서를 중앙계량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원기와 대비, 검정한 자료나 기타 기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양식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19조 (계량원기의 등록심의 및 증서발급)**

중앙계량지도기관은 계량원기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그것을 받은 날부터 60일안으로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계량원기등록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에 계량원기등록증서를 발급한다.

**제20조 (계량원기의 폐기 또는 사명변경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계량원기를 폐기하거나 그 사명을 변경한다.

1. 다시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정밀정확도가 떨어졌을 경우

2. 계량원기가 파손되어 원상복구할수 없을 경우
3. 이미 쓰던 계량원기를 새로운 계량원기로 교체하려 할 경우

**제21조 (계량원기의 폐기 또는 사명변경승인)**

해당 기관, 기업소는 계량원기를 폐기하거나 그 사명을 변경하려 할 경우 중앙계량지도기관에 해당 문건을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량원기의 폐기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등록에서 삭제하고 증서를 회수하며 계량원기의 사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맞게 다시 등록한다.

**제22조 (표준계량수단의 구비)**

해당 기관, 기업소는 계량단위의 전달을 위하여 표준계량수단을 갖추어놓아야 한다.

표준계량수단은 계량원기에 의하여 검정된것이여야 한다.

**제23조 (표준계량수단의 등록, 폐기, 사명변경)**

표준계량수단의 등록과 폐기, 사명변경의 심의결정은 계량검정기관이 한다.

표준계량수단의 등록, 폐기, 사명변경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계량원기의 등록, 폐기, 사명변경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제24조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관리담당자)**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은 계량검정기관이 보관관리한다.

필요에 따라 중앙계량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 기업소도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을 보관관리할수 있다.

**제25조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정밀정확도유지)**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는 담당자를 정하고 보관관리를 정해진대로 하여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계량원기는 중앙계량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옮길수 없다.

**제26조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대비, 검정)**

해당 기관, 기업소는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을 국제계량원기나 다른 나라 계량원기와 주기적으로 대비, 검정하여야 한다.

중앙계량지도기관은 대비, 검정사업체계를 바로세워야 한다.

**제27조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리용)**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은 계량단위의 유지, 재현, 전달에만 쓴다.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을 일반계량수단으로 리용할수 없다.

**제28조 (표준물질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는 계량수단의 검정이나 계량대상의 분석에 필요한 표준물질을 종류별로 갖추고 중앙계량지도기관의 인증과 등록을 받아 리용하여야 한다.

중앙계량지도기관은 표준물질에 대한 심의등록체계와 단위전달체계를 바로세워야 한다.

**제29조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보충갱신)**

중앙계량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을 계획적으로 보충갱신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과학기술행정기관, 해당 기관은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보충갱신에 필요한 자금, 설비 같은것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장 계량수단의 생산, 리용

**제30조 (계량수단의 품종확대와 계획적인 생산)**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계량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데 맞게 계량수단의 품종을 늘이며 생산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계량수단의 생산허가)**

계량수단을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계량지도기관의 생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량수단의 생산허가절차와 방법은 제품생산허가법에 따른다.

**제32조 (제품의 질제고)**

계량수단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현대화하고 앞선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33조 (계량수단수리기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계량수단수리기지를 꾸리고 계량수단을 제때에 수리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계량수단의 수리에 필요한 자금, 설비, 자재, 로력 같은 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 (계량수단의 수리허가)**

계량수단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계량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새로 개발한 계량수단의 기술심의)**

새로 개발한 계량수단은 중앙계량지도기관의 기술심의를 받은 다음 생산 또는 리용하여야 한다.

**제36조 (계량수단의 수입)**

계량수단을 수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전에 중앙계량지도기관의 기술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문건과 기술자료, 견본품 같은 것을 내야 한다.

기술심의를 받지 않은 계량수단에 대하여서는 수입계약을 맺을수 없으며 가격승인, 반입수속



같은 것을 할수 없다.

**제37조 (계량수단의 수입금지 또는 제한)**

다음의 계량수단은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법제계량단위가 아닌 단위가 표시된 계량수단
2.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요를 보장할수 있는 계량수단
3. 기술적특성이 국가적요구나 용도에 맞지 않는 계량수단

**제38조 (계량수단의 판매)**

생산 또는 수입한 계량수단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판매하여야 한다.

**제39조 (계량수단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계량수단을 갖추고 정해진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계량수단을 갖추지 않은 설비와 공정은 운영할수 없으며 계량수단의 눈금과 량을 비법적으로 고치거나 눈금과 량이 틀린다는것을 알면서 해당 계량수단을 리용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40조 (계량수단의 등록, 폐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을 해당 계량검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계량검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계량수단은 검정을 받을수 없다.

계량수단을 폐기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계량검정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 제5장 계량수단의 검정

**제41조 (계량수단의 장악과 검정)**

중앙계량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을 장악하고 그에 대한 검정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검정을 받지 않았거나 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계량수단은 리용할수 없다.

**제42조 (계량수단검정의 구분)**

계량수단의 검정은 국가검정과 자체검정으로 나누어 한다.

국가검정은 계량검정기관이, 자체검정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중앙계량지도기관은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국가검정을 위임할수 있다.

**제43조 (계량수단의 검정대상, 주기, 형식, 방법)**

계량수단의 검정대상과 주기, 형식, 방법은 중앙계량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중앙계량지도기관은 과학기술의 성과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량수단의 검정대상, 주기, 형식, 방법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44조 (계량수단의 검정주기준수)**

계량수단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을 정해진 주기에 검정받아야 한다.

**제45조 (계량수단의 검정장소)**

검정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을 해당 계량검정기관에 가져다 검정받아야 한다.

계량검정기관에 가져갈수 없는 계량수단은 현지검정을 받을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지검정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계량검정기관의 검정장소는 중앙계량지도기관의 합의없이 옮길수 없다.

**제46조 (계량수단의 자체검정허가)**

계량수단을 자체로 검정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검정실을 기술적요구에 맞게 꾸리고 표준계량수단을 갖추며 중앙계량지도기관의 허가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검정의 과학화)**

계량검정기관은 검정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며 검정방법을 현대화, 자동화, 정보화하여야 한다.

**제48조 (검정결과와 계량검정일군의 책임)**

계량수단의 검정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계량검정일군은 계량수단의 검정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49조 (분쟁해결을 위한 검정 또는 기술적판정)**

계량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계량검정기관은 의뢰에 따라 해당 계량수단에 대한 검정 또는 기술적판정을 할수 있다.

**제50조 (검정료금의 지불)**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에 대한 검정을 받는 경우 계량검정기관에 정해진 검정료금을 물어야 한다.

검정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 제6장 계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1조 (계량사업에 대한 지도)**

계량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계량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계량지도기관은 계량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국가의 계량정책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52조 (계량검정 및 감독일군의 자격)**

계량검정 및 감독일군은 해당 자격을 가진 자만이 될수 있다.

계량검정 및 감독일군에 대한 자격심사사업은 중앙계량지도기관이 한다.

해당한 자격을 가지지 못한자는 계량검정 및 감독사업을 할수 없다.

**제53조 (계량사업에 대한 검열, 감독)**

계량사업에 대한 검열, 감독은 계량검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계량검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계량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검열, 감독하여야 한다.

**제54조 (민사적책임)**

계량을 정확히 하지 않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해를 준 당사자에게는 원상 복구 또는 손해보상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제55조 (변상처벌)**

계량수단을 비법적으로 리용하였거나 계량수단의 보관관리를 잘못하여 국가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변상처벌을 준다.

**제56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벌금을 물린다.

1. 허가를 받지 않고 계량수단을 생산, 수리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150만원
2. 새로 개발한 계량수단을 기술심의를 받지 않고 생산, 리용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50만원
3. 금지된 장소에서 계량수단을 판매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3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2만~10만원
4. 기술심의를 받지 않고 계량수단을 수입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50만~150만원
5. 수입이 금지된 계량수단을 들여왔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50만원
6. 필요한 계량수단을 갖추지 않고 설비와 공정을 운영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30만~150만원
7. 계량수단의 눈금과 량을 비법적으로 고쳤거나 눈금과 량이 틀린다는것을 알면서 해당 계량수단을 사용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3만~10만원
8. 검정받지 않았거나 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계량수단을 판매, 리용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20만~100만원, 공민에게는 1만~5만원

**제57조 (중지처벌)**

제56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경영활동 또는 설비, 공정의 운영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시킨다.

### 제58조 (몰수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계량수단과 위법행위로 얻은 자금과 물품을 몰수한다.

1. 허가를 받지 않고 계량수단을 생산, 수리하였을 경우
2. 금지된 장소에서 계량수단을 판매하였을 경우
3. 기술심의를 받지 않고 계량수단을 수입하였거나 수입이 금지된 계량수단을 들여왔을 경우
4. 계량수단의 눈금과 량을 비법적으로 고쳤거나 눈금과 량이 틀린다는것을 알면서 해당 계량수단을 사용하였을 경우
5. 검정받지 않았거나 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계량수단을 리용한데 대하여 지적하였으나 정해진 기일안에 검정받지 않았을 경우

### 제59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법제계량단위가 아닌 계량단위를 사용하며 계량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등록, 폐기, 사명변경질서를 어겨 계량단위의 유지, 재현, 전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보관관리를 잘못하여 파손시켰거나 정밀정확도를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4. 승인없이 계량원기를 옮겼을 경우
5.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을 일반계량수단으로 리용하였을 경우
6. 표준물질을 갖추지 않았거나 표준물질에 대한 인증과 등록을 받지 않았을 경우
7.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보충갱신에 필요한 자금, 자재, 설비 같은것을 보장하지 않아 계량단위의 유지, 재현, 전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허가를 받지 않고 계량수단을 생산, 수리하였거나 정해진 단위에서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
9. 새로 개발한 계량수단을 기술심의를 받지 않고 생산, 리용하였을 경우
10. 계량수단의 판매질서를 어겼을 경우
11. 기술심의를 받지 않고 계량수단을 수입하였거나 기술심의를 받지 않은 계량수단에 대하여 수입과 관련한 수속을 해주었을 경우
12. 수입이 금지된 계량수단을 들여왔을 경우
13. 필요한 계량수단을 갖추지 않고 설비와 공정을 운영하였을 경우
14. 계량수단의 눈금과 량을 비법적으로 고쳤거나 눈금과 량이 틀린다는것을 알면서 해당 계량수단을 리용하였을 경우

15. 계량수단을 계량검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량검정기관의 경유를 받지 않고 폐기하였을 경우
16. 검정받지 않았거나 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계량수단을 리용하였을 경우
17. 검정장소를 합의없이 옮겼을 경우
18. 계량수단에 대한 검정을 되는대로 하여 계량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9. 해당 자격이 없이 계량검정 또는 감독사업을 하였을 경우

앞항 1~19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60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국경동식물검역법

주체86(1997)년 7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9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6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43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3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0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8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1호로 수정보충

### 제1조 (국경동식물검역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동식물검역법은 국경에서 동식물검역질서를 엄격히 세워 동물 검역전염병과 식물검역병해충의 전파를 막고 인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자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국경동식물검역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국경동식물검역은 국경검역기관이 한다.

국가는 국경동식물검역체계를 바로세우고 검역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 제3조 (국경동식물검역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로,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동식물검역대상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경우에 적용한다.

우리 나라가 국경동식물검역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 (국경동식물검역전염병)

동물검역전염병은 국제동물검역전염병과 지정동물검역전염병이다.

국제동물검역전염병에는 국제수의기구가 정한 동물전염병과 기생충병이, 지정동물검역전염병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이 정한 동물전염병과 기생충병이 속한다.

### 제5조 (국경식물검역병해충)

식물검역병해충에는 아직 분포되어있지 않거나 또는 일부 지역에만 분포되어있으면서 농작물을 비롯한 식물자원에 심한 피해를 주는 식물병해충 같은것이 속한다.

식물검역병해충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정한다.

### 제6조 (국경동물검역대상)

국경동물검역은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한다.

1. 짐승, 새, 물고기, 조개, 게, 벌레 같은 동물과 그 표본

2. 고기, 알, 꿀, 젖, 발쪽, 장기, 피 같은 동물성산물
3. 털, 가죽, 뿔, 누에고치 같은 동물성생재료
4. 동물의 정액, 수정란, 종자알, 누에종자, 수정 또는 배자단계의 물고기알
5. 수의약품, 동물병원성미생물균주, 동물성약재
6. 동물먹이와 그 첨가제
7. 동물과 동물성물품을 실은 운수수단, 동물운반에 리용된 깔판, 포장재, 관리도구
8. 다른 나라에서 동물검역을 요구하는 물품

**제7조 (국경식물검역대상)**

국경식물검역은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한다.

1. 식물과 그 표본
2. 식물의 종자 또는 번식재료
3. 알곡, 남새, 과일, 공예작물, 약초, 산나물, 바다나물, 목재, 꽃 같은 식물성산물
4. 농약, 식물병원성미생물균주, 식물기생곤충표본
5. 식물성물품을 실은 운수수단, 식물성물품을 다루던 도구, 식물성물품포장재
6. 다른 나라에서 식물검역을 요구하는 물품

**제8조 (국경통과가 금지된 동식물검역대상)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는 동식물검역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성미생물과 해충 같은 동식물에 해로운 유기체
2. 동물검역전염병 또는 식물검역병해충이 퍼진 나라에서 들어오는 동식물검역대상
3.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생고기와 생알
4. 동물의 사체
5. 토양

**제9조 (국경통과가 금지된 동식물검역대상의 처리)**

국경검역기관은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낼수 없는 검역대상을 발견한 경우 그것을 돌려보내거나 해당한 처리를 할수 있다.

우리 나라로 들여올수 없는 동식물검역대상을 과학연구 같은 목적으로 들여오려 할 경우에는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 (국경동식물검역장소)**

국경동식물검역은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 국제우편국, 국경도로경계점 같은 국경 통과지점의 지정된 곳에서 한다. 그러나 산 동물, 종자알, 씨앗 같은것은 검역장이나 검역포전에서, 수출품은 생산지나 출하지에서 검역할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 비행기 같은 운수수단이 지정된 국경통과지점이 아닌 곳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그곳에서도 동식물검역을 할수 있다.

**제11조 (국경동식물검역시간)**

우리 나라에 들어온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은 그것이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는 즉시에 한다. 그러나 배나 그에 실려있는 동식물검역대상은 해가 뜬 다음부터 지기 전까지의 사이에 검역한다.

다른 나라로 내가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은 출발예정시간전에 한다.

**제12조 (국경동식물검역요구조건 합의신청서의 제기)**

동식물을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계약을 맺기 전에 검역요구조건 합의신청서를 중앙농업지도기관의 경유를 받아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계약당사자와 합의할 내용을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국경동식물검역신청의 제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하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신청서를 해당 국경 검역기관에 내야 한다.

검역신청서는 수입하는 검역대상이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수출하는 검역대상이 생산지나 출하지 또는 마지막국경통과지점에서 출발하기 전에 낸다.

**제14조 (중계, 통과수송하는 검역대상의 검역신청)**

중계수송하거나 우리 나라를 통과하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신청은 그 대리업무를 맡은 기관이 한다.

대리업무를 맡은 기관은 검역대상이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국경검역기관에 검역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5조 (무역품이 아닌 검역대상의 검역신청)**

무역품이 아닌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신청은 집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한다.

집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검역대상이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면 국경검역기관에 검역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6조 (운수수단과 그에 실려있는 검역대상의 검역신청)**

운수수단과 그에 실려있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신청은 운수수단의 책임자가 한다.

운수수단의 책임자는 운수수단이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면 국경검역기관에 검역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7조 (무역, 기증, 과학기술교류 같은 형식으로 들어오는 검역대상의 검역)**

무역이나 기증, 과학기술교류 같은 형식으로 동식물검역대상을 들어오는 경우에는 해당 나라에서 발급한 동물 또는 식물검역증이 있어야 한다.



애완용, 관상용, 교예용 같은 동물에는 전염병예방접종증명서와 동물건강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전염병예방접종증명서와 동물건강진단서가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국경검역기관에서 예방접종과 진단을 받고 해당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18조 (운수수단의 검역)**

국경검역기관은 열차, 배, 비행기, 자동차 같은 운수수단의 손님칸, 승무원칸, 짐칸, 취사장, 식료품창고 같은 곳을 검역하며 필요한 문건을 보거나 복사, 발취할 수 있다.

**제19조 (수출입품의 검역)**

수출입품에 대한 국경동식물검역은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의 지령에 따라 한다.

국경검역기관은 검역지령에 따라 동식물검역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20조 (중계, 통과수송하는 검역대상의 검역)**

중계수송하거나 우리 나라를 통과하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은 해당 나라에서 발급한 동물 또는 식물검역증을 확인하고 운수수단과 화물의 외부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1조 (개인소지품의 검역)**

국경검역기관은 여행자나 운수수단의 승무원이 가지고 다니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하여 검역하여야 한다.

여행자나 운수수단의 승무원은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을 정확히 받아야 한다.

**제22조 (운수수단에 싣는 봉사물자의 검역)**

국경검역기관은 여행자나 승무원을 위하여 운수수단에 싣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하여 검역하여야 한다.

검역에서 합격되지 못한 동식물검역대상은 운수수단에 실을수 없다.

**제23조 (동물검역전염병, 식물검역병해충발생지에서 들어오는 운수수단, 물품의 검역)**

국경검역기관은 동식물검역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물검역전염병 또는 식물검역 병해충이 발생한 나라에서 들어오는 운수수단이나 물품에 대하여 검역할수 있다.

**제24조 (검역시료의 채취)**

국경검역기관은 동식물검역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할수 있다.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방법과 량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이 한다.

**제25조 (검역을 끝내는 시간, 예비검역, 도착지검역)**

국경검역기관은 검역을 정해진 시간에 끝내야 한다.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을 정해진 시간에 끝낼수 없을 경우에는 예비검역을 하고 도착지에서 완전검역을 할수 있다.

산동물, 종자알, 씨앗, 묘목 같은 검역대상은 국경검역기관에서 예비검역을 하고 도착지 해

당 방역기관에 넘겨 완전검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방역기관은 검역결과를 국경검역 지도기관과 중앙방역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검역을 받지 않은 검역대상의 이동금지)**

검역을 받지 않은 동식물검역대상은 국경검역기관의 승인없이 지정된 장소를 옮길수 없다.

**제27조 (국경동물검역에서 제기된 대상의 처리)**

국경검역기관은 검역과정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동물검역전염병에 걸린 동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살, 매몰, 소각한다.
2. 동물검역전염병에 걸린 동물과 접촉한 대상을 돌려보내거나 격리, 소독한다.
3. 동물검역전염병에 오염된 동물성물품을 돌려보내거나 소각, 소독하거나 용도를 변경시킨다.

**제28조 (국경식물검역에서 제기된 대상의 처리)**

국경검역기관은 식물검역병해충에 오염되었거나 잡초씨가 섞인 식물성물품에 대하여 돌려보내거나 소각, 소독하며 용도변경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29조 (검역증, 검역처리통지서의 발급)**

국경검역기관은 동식물검역을 진행하고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돌려보내거나 도살, 매몰, 소각, 소독, 용도변경 같은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 (국경동식물검역에서 해당 기관과의 연계)**

국경검역기관은 세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경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이나 검역이관통지서가 없는 동식물검역대상은 국경을 통과시킬수 없다.

**제31조 (운수수단에서 오물, 오수의 처리)**

국경을 통과하는 운수수단은 동물검역전염병이나 식물검역병해충을 전파시킬수 있는 오물, 오수를 마음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 오물, 오수를 버리려 할 경우에는 국경검역기관의 승인을 받고 그것을 소독한 다음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제32조 (국경동식물검역조건보장)**

국경검역기관은 동식물검역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필요한 방조를 요구할수 있다. 동식물검역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국경검역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 (검역료금)**

국경동식물검역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해당한 검역료금을 물어야 한다.

검역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4조** (국경통과의 금지 또는 제한, 비상방역조치)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은 동물검역전염병이나 식물검역병해충이 퍼질 긴급한 사태가 조성되는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 국경통과지점에서 인원의 류동과 검역대상에 대한 수출입의 금지, 제한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비상방역기간 국경동식물검역사업은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서 정한 질서에 따른다.

**제35조** (국경동식물검역질서를 어기고 반출입한 검역대상의 퇴송, 몰수 또는 억류)

국경동식물검역질서를 어기고 동식물검역대상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경우에는 그것을 돌려보내거나 억류 또는 몰수한다.

**제36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국경위생검역법

주체85(1996)년 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9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호로 수정  
주체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6호로 수정보충  
주체108(2019)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4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3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0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8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1호로 수정보충

### 제1조 (국경위생검역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은 국경위생검역질서를 세워 전염병의 전파를 막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국경위생검역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로 또는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인원, 운수수단, 물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경우에 적용한다.

우리 나라가 국경위생검역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 (국경위생검역전염병의 종류)

국경위생검역전염병은 국제검역전염병과 지정검역전염병이다.

국제검역전염병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전염병이, 지정검역전염병에는 중앙보건 지도기관이 공포하는 전염병이 속한다.

### 제4조 (국경위생검역대상)

국경위생검역은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한다.

1. 인원
2. 열차, 배, 비행기, 자동차 같은 운수수단
3. 사람이 그대로 먹을수 있게 가공한 식료품
4. 의약품, 혈액 및 혈장
5. 인체병원성미생물균주
6. 다른 나라에서 위생검역을 요구하는 물품
7. 시체를 넣은 관
8. 전염병발생지역에서 들어오는 물품

**제5조 (국경검역기관의 임무)**

국경위생검역은 국경검역기관이 한다.

국경검역기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검역대상에 대한 위생검역사업을 강화하여 전염병의 전파를 막아야 한다.

**제6조 (국경위생검역장소)**

국경위생검역은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 국경도로경계점 같은 국경통과지점의 지정된 곳에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 비행기 같은 운수수단이 국경통과지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 오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수단이 도착한 곳에서 할수 있다.

**제7조 (국경위생검역시간)**

국경위생검역은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운수수단이나 도보여행자가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는 즉시에 한다. 그러나 배에 대한 위생검역은 해가 뜬 후부터 지기 전까지의 사이에 한다.

다른 나라로 나가는 운수수단이나 도보여행자에 대한 국경위생검역은 출발예정시간전에 한다.

**제8조 (입출국하는 운수수단의 통보)**

해당 기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운수수단의 도착 또는 출발예정시간, 운수수단의 명칭과 국적, 승무원수, 위생상태, 적재화물이름과 수량, 출발한 나라이름 같은것을 국경검역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9조 (입국시 검역증명서소지)**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공민과 외국인은 국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국제여행자건강증명서 같은 검역증명서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국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국제여행자건강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받고 해당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경검역기관은 입국신고서의 질병신고란에 간염, 결핵, 말라리아, 에이즈를 비롯한 전염병의 감염여부, 여행과정의 병적증상같은것을 밝히도록 하며 전염병감염자가 나타나는 경우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출국시 검역증명서발급)**

다른 나라로 나가는 공민은 필요한 검진과 해당 나라의 역학상태에 따르는 예방접종을 받고 국제예방접종증명서나 국제여행자건강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이 다른 나라로 나가려 할 경우에는 위생방역기관에서 에이즈검사를 받고 에이즈검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국제여행자건강증명서, 에이즈검사증이 없이는 국경을 통과할수 없다.

**제11조 (입출국하는 운수수단의 국경위생검역문건)**

국경을 통과하는 운수수단에는 쥐잡이증명서, 쥐잡이면제증명서 같은 위생검역에 필요한 문건이 있어야 한다.

**제12조 (전염병환자, 사망자의 통보와 그 처리)**

국경을 통과하는 운수수단에서 전염병환자나 원인을 알수 없는 사망자가 생겼을 경우 운수수단의 책임자는 곧 국경검역기관에 알려야 한다.

전염병환자나 사망자에 대하여 통보받은 국경검역기관은 즉시 현지를 료해하고 해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국경위생검역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생검역을 받아야 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경우 국경검역기관에 위생검역신청서를 내야 한다.

위생검역신청서에는 물품의 품명, 수량, 수출 및 수입하는 나라이름, 수송방법, 국경 통과지점, 도착 또는 출발예정날자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4조 (인원에 대한 국경위생검역)**

국경검역기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공민과 외국인의 국제예방접종증명서나 국제여행자건강증명서 같은 검역증명서 소지정형을 확인하고 건강신고서에 따라 건강상태를 검진하여야 한다.

검역증명서, 건강상태확인이 끝난 다음 해당 손짐을 검사한다.

**제15조 (운수수단에 대한 국경위생검역)**

국경검역기관은 운수수단의 책임자에게 위생검역에 필요한 문건을 요구하거나 내용을 물어보고 승무원들의 건강상태와 승무원실, 식당, 취사장, 창고, 위생실 같은 곳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16조 (출항위생검역증)**

다른 나라로 나가려는 우리 나라 배는 국경위생검역을 받은 다음 출항위생검역증을 발급받는다. 출항위생검역증을 발급받지 않은 배는 출항할수 없다.

**제17조 (국경위생검역이 끝나지 않은 운수수단)**

국경위생검역이 끝나지 않은 운수수단에는 승인없이 누구도 오르내리거나 물품을 신고부릴수 없다.

국경위생검역의 승인없이 오르내린 인원과 신고부리운 물품은 위생검역을 받는다.

**제18조 (물품에 대한 국경위생검역)**

물품에 대한 위생검역은 필요한 검역문건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방법과 량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이 한다.

**제19조 (국경위생검역과정에 취하는 조치)**

국경위생검역은 검역과정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전염병환자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자를 격리시킨다.
2. 전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의심이 있는 장소를 소독하며 그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3. 전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의심이 있는 물품을 소독 또는 매몰하며 그 이동을 금지시키거나 돌려보낸다.
4. 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의심이 있는 시체를 해부 또는 화장한다.
5. 전염병의 매개물로 되는 쥐나 벌레 같은것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6. 예방접종 및 치료사업을 한다.
7. 위생검역이 끝날 때까지 해당 운수수단을 감시한다.

**제20조 (국경위생검역증명서발급시기)**

국경위생검역은 위생검역이 끝난 다음 해당한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위생처리대상에 대하여서는 위생처리가 끝난 다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수수단에 오르는 작업인원과 식료품, 음료수에 대한 국경위생검역)**

국경검역기관은 작업을 위하여 운수수단에 오르는 인원과 운수수단에 싣는 식료품, 음료수에 대한 위생검역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출국하는 다른 나라 운수수단, 외국인에 대한 국경위생검역)**

우리 나라에서 나가는 다른 나라 운수수단이나 외국인에 대한 위생검역은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다.

**제23조 (운수수단에서 오물 또는 오염된 물품의 처리)**

우리 나라에 들어온 운수수단에서는 오물이나 전염병에 오염된 물품을 마음대로 버릴수 없다.  
오물이나 전염병에 오염된 물품을 버리려 할 경우에는 국경검역기관의 승인을 받고 해당한 위생처리를 한 다음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제24조 (국경위생검역조건보장)**

국경검역기관은 위생검역과정에 운수수단의 책임자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방조를 요구할수 있다.  
운수수단의 책임자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경위생검역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재검역)**

국경검역기관은 위생검역을 받은 대상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검역을 할수 있다.  
국경통과지점에서 위생검역을 끝낼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도착지에서 검역을 할수 있다.

**제26조 (국경위생검역료금)**

국경위생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한 료금을 문다.

검역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27조** (국경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비상방역조치)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은 전염병이 퍼질 긴급한 사태가 조성되는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 국경통행의 금지, 제한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비상방역기간 국경위생검역사업은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서 정한 질서에 따른다.

**제28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통과지점관리법

주체103(2014)년 6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호로 채택  
주체105(2016)년 1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21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48호로 수정보충

## 제1장 국경통과지점관리법의 기본

### 제1조 (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통과지점관리법은 국경통과지점의 설정과 건설, 관리운영, 국경검사 및 검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안전과 대외적 권위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국경통과지점은 나라의 관문이다.

국경통과지점에는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같은 인원과 운수수단, 짐이 다른 나라로 나가거나 우리 나라에 들어올수 있도록 국가가 정한 통로와 구역이 속한다.

### 제3조 (국경통과지점의 설정원칙)

국가는 국경통과지점을 나라의 안전보장 및 대외정책에 따라 설정한다.

### 제4조 (국경통과지점의 건설원칙)

국경통과지점건설을 잘하는것은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국경통과지점을 나라의 관문답게 현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한다.

### 제5조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원칙)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을 바로하는것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무이다.

국가는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에서 국경검사, 검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성을 더욱 높이도록 한다.

### 제6조 (국경검사, 검역원칙)

국경검사, 검역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은 나라의 안전과 대외적권위를 지키고 출입국인원과 운수수단의 국경통과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국경통과지점에 통행검사기관, 세관, 위생 및 동식물검역기관 같은 국경검사, 검역기관을 설치하고 국경검사, 검역사업에서 신속성, 정확성, 공정성, 편리성보장원칙을 견지하도록 한다.

**제7조 (대외협력강화, 협약의 효력)**

국가는 국경통과지점의 설정,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국경통과지점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8조 (법의 적용)**

이 법은 국경통과지점을 관리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의 국내통과지점설정과 건설, 관리운영도 이 법에 따라 한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국경통과지점의 설정

**제9조 (국경통과지점의 구분과 종류)**

국경통과지점은 육지구경통과지점과 바다국경통과지점, 항공국경통과지점으로 구분한다.  
육지구경통과지점에는 국경교두, 국경나루터, 국경도로경계점(이 아래부터 국경교두라고 한다.)과 국경철도역, 국경무역항이, 바다국경통과지점에는 무역항과 해상무역장이, 항공국경통과지점에는 국제항공역이 속한다.

**제10조 (국경통과지점의 설정신청을 할수 있는 기관)**

국경통과지점의 설정신청은 국가로부터 권한을 받은 기관만이 할수 있다.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경통과지점설정신청을 할수 없다.

**제11조 (국경통과지점의 명칭)**

국경통과지점의 명칭은 지명에 따라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한개의 국경통과지점에는 국가가 정한 하나의 명칭만을 사용한다.

**제12조 (국경통과지점설정신청문건의 제기절차)**

국경통과지점의 설정에 대한 승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국경통과지점을 설정하려는 기관은 신청문건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들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3조 (림시국경통과지점의 설정)**

해당 기관은 정해진 국경통과지점을 리용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가의 승인을 받아 림시국경통과지점을 내올수 있다.  
림시국경통과지점의 설정신청문건은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기관이 검토, 승인한다.

**제14조 (국경통과지점의 설정에 대한 공포)**

국경통과지점의 설정에 대한 공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제15조** (국경통과지점의 설정과 관련한 대외사업)

국경통과지점의 설정과 관련한 대외사업은 정해진데 따라 외무성과 중앙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제16조** (국경통과지점의 변경과 폐쇄)

국경통과지점은 국가적요구에 따라 변경 또는 폐쇄할수 있다.

외무성과 중앙출입국사업기관은 국경통과지점의 변경 또는 폐쇄와 관련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7조** (국경통과질서준수)

출입국하는 인원과 운수수단, 짐은 국경통과지점으로만 통과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경통과지점이 아닌 곳으로 통과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3장 국경통과지점의 건설

**제18조** (국경통과지점건설의 기본요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경통과지점을 나라의 안전보장과 선편리성, 선미학성의 요구에 맞게 전망성있게 건설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경통과지점의 건설계획)

국경통과지점의 건설은 국가계획에 맞물려 한다.

건설계획을 국가계획에 맞물리는 사업은 건설대상 또는 지역에 따라 해당 중앙기관 또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한다.

**제20조** (국경통과지점의 건설부지확정)

국경통과지점의 건설부지를 정하는 사업은 그 대상에 따라 내각 또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한다.

**제21조** (국경통과지점의 표준설계와 그 승인)

국경통과지점의 건설설계는 정해진 설계기관이 하며 설계의 심의, 승인은 대상에 따라 내각 또는 중앙설계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국경통과지점의 규모, 특성과 검사, 검역사업조건에 맞게 표준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경통과지점설계에는 수입물자소독장, 려행자검사장, 종합무역장, 검사, 검역기관들의 청사, 문주, 마당, 도로 같은 대상들을 반영한다.

**제22조** (문주의 규격)

륙지국경통과지점에는 나라의 관문임을 상징하는 문주를 세운다.

문주를 세울 위치와 문주의 규격은 해당 기관이 정한다.

문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000 관문》이라는 명칭을 단다.

#### 제23조 (려행자검사장의 건설)

해당 기관은 국경통과지점에 출입국인원에 대한 위생검역, 국경통행검사, 세관검사를 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렬행자검사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려행자검사장에는 해당 국경통과지점의 특성과 출입국인원수에 맞는 검사통로, 대기장소, 면담실, 위생실과 필요한 사무 및 봉사조건을 갖춘다.

#### 제24조 (종합무역장의 건설)

해당 기관은 국경통과지점에 출입국하는 운수수단과 짐의 종류, 규격, 특성, 통과량에 맞게 검사장과 창고, 그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종합무역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종합무역장을 국경통과지점과 가까운 곳에 건설할수 있다.

#### 제25조 (기관청사 및 종합수속실의 건설)

해당 기관은 국경통과지점에 관리기관, 검사, 검역기관을 비롯한 기관청사건물과 반출입수속을 위한 종합수속실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청사건물은 검사구역과 분리되게 하며 종합수속실은 반출입수속을 한 장소에서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26조 (종합수속실의 건설)

해당 기관은 국경통과지점에 수입물자를 소독할수 있는 소독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소독장에는 취급하는 물자의 종류와 특성에 맞게 건열소독, 증기소독, 자외선소독, 세척소독, 오존소독 등 여러가지 소독을 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27조 (건설시공에서 설계와 표준공법의 요구준수)

국경통과지점의 건설시공을 맡은 단위는 시공을 설계와 표준공법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은 시공을 설계와 표준공법의 요구대로 하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4장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

#### 제28조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기관)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한다.

위임받은 기관은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을 법규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 제29조 (국경통과지점의 국기계양)

국경통과지점에는 일상적으로 우리 나라 국기를 계양한다.

국기계양은 정해진 기관이 한다.

**제30조 (국경통과지점의 운영날자와 시간)**

국경교두의 운영날자와 시간은 중앙출입국사업기관이 정한다.

국경통행검사기관은 국경교두에서 정해진 운영날자와 시간밖에 국경통행이 제기되는 경우 중앙출입국사업기관의 승인을 받아 국경통행을 보장할수 있다.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에서 검사, 검역사업은 해당 운수수단의 출입국시간표에 따라 한다.

**제31조 (비상설련합위원회의 운영)**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사업을 바로하기 위하여 해당 국경통과지점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검사, 검역기관과 기타 련관기관의 책임자를 성원으로 하는 비상설련합위원회를 둔다.

비상설련합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토의대책하여야 한다.

**제32조 (국경통과지점의 관리분담)**

국경통과지점의 관리분담은 다음과 같다.

1. 국경교두에 대한 관리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한다.
2. 국경철도역에 대한 관리는 해당 철도운수기관이 한다.
3. 무역항에 대한 관리는 항운영기관이 한다. 항을 여러 단위가 운영 또는 리용할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4. 국제항공역에 대한 관리는 민용항공기관이 한다.
5. 해상무역장에 대한 관리는 외국배대리기관이 한다.

**제33조 (국경통과지점의 철교, 다리, 도로관리)**

국경통과지점의 철교는 철도운수기관이, 다리와 도로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한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국경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철교, 다리, 도로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국경통과지점을 여러 기관이 운영할 경우 그 기관들에 도로관리를 분담할수 있다.

**제34조 (국경통과지점의 건물관리)**

국경통과지점의 수입물자소독장과 련행자검사장, 종합무역장, 종합수속실에 대한 관리는 해당 관리기관이 한다.

기관청사건물에 대한 관리는 자체로 한다.

**제35조 (국경통과지점의 원림록화와 구내관리)**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원림록화계획을 바로세우고 국경통과지점과 그 주변의 원림록

화를 잘하여야 한다.

해당 관리기관은 국경통과지점의 구내를 질적으로 포장하고 늘 알뜰하게 거두어야 한다.

**제36조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조건보장)**

관리기관은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력, 통신, 상하수도, 난방 및 랭방보장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7조 (국경검사, 검역사업조건보장)**

국경통과지점관리기관은 국경검사, 검역사업을 지장없이 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 (국경통과지점의 경비 및 출입질서)**

국경통과지점의 검사구역에 대한 경비는 국경통행검사기관이 한다.

국경통과지점에서 사업하거나 일을 보려는 우리 나라 공민과 입출국하는 다른 나라 공민은 정해진 출입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국경통과지점의 출입제한구역에 나들수 없다.

**제39조 (국경통과지점의 보호관리의무)**

국경통과지점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경통과지점의 건물, 시설물, 설비, 도로와 각종 표식물을 보호하며 주인답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 (국가적인 보장사업)**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국경통과지점을 관리하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에 필요한 전력, 설비, 자재, 물자를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장 국경통과지점에서의 검사와 검역

**제41조 (국경검사, 검역의 일반적순차)**

입국시 국경검사, 검역은 위생검역, 통행검사, 세관검사의 순서로 하며 다른 검사, 검역과 기타 수속은 세관검사가 끝난 다음에 한다.

출국시 국경검사, 검역은 세관검사, 통행검사의 순서로 하며 다른 검사, 검역과 기타 수속은 세관검사전에 한다.

수입물자는 정해진데 따라 소독장에서 소독을 한 다음 해당 검사, 검역과 기타 수속을 한다.

**제42조 (국경검사, 검역의 신속성보장)**

국경검사, 검역기관은 정해진 검사장소와 시간을 어김없이 지키며 출입국인원과 운수수단, 짐의 국경통과를 신속히 보장하여야 한다.

법적근거가 없이는 인원과 운수수단, 짐의 국경통과를 지체시킬수 없다.

**제43조 (국경검사, 검역의 정확성보장)**

국경검사, 검역기관은 현대적인 검사기술기재와 수단을 도입하여 검사, 검역의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4조 (국경검사, 검역의 공정성과 편리성보장)**

국경검사, 검역기관은 검사, 검역을 법규의 요구대로 공정하게 하면서도 검사, 검역을 받는 당사자들의 편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종류의 검사, 검역을 반복할수 없다.

**제45조 (연합검사)**

배, 열차에서의 국경검사, 검역은 연합검사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배에 대한 연합검사질서는 항무감독법에 따른다.

**제46조 (검사, 검역일군의 제복착용)**

국경검사, 검역일군은 검사, 검역을 할 경우 정해진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47조 (국경검사, 검역에 참가하는 인원)**

국경검사, 검역기관은 검사, 검역에 극히 필요한 수의 인원만 참가시키며 복잡성과 물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검역은 해당 검역대상이 있을 경우에 한다.

연합검사에 참가하는 인원수는 연합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8조 (국경검사, 검역기관들사이의 협력)**

국경검사, 검역기관은 검사, 검역사업에 서로 협력하며 기관분위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

검사, 검역과정에 다른 검사, 검역기관에 넘겨주어야 할 대상이나 물품이 나타나면 제때에 넘겨주어야 한다.

## 제6장 국경통과지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9조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국경통과지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것은 국경관리정책집행에서 나서는 중요 요구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경통과지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0조 (지도기관)**

국경통과지점관리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제51조 (감독통제기관과 그 임무)**

국경통과지점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법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법기관은 국경통과지점의 관리를 바로하도록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행정적 및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53조 (신소와 그 처리)**

국경통과지점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국경검사, 검역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에 신고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일안에 료해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규격법

|              |        |                              |
|--------------|--------|------------------------------|
| 주체86(1997)년  | 7월 23일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0호로 채택      |
| 주체88(1999)년  | 2월 26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
| 주체94(2005)년  | 9월 13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98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4(2015)년 | 2월 25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9호로 수정보충  |
| 주체110(2021)년 | 8월 3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76호로 수정보충  |

## 제1장 규격법의 기본

### 제1조 (규격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규격법은 규격의 제정과 적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생활상편리를 보장하며 경제와 문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규격의 종류)

규격은 사회경제적효과성을 최대로 내게 하는 합리적기준이다.

규격에는 용어, 기호, 표기 및 표식방법, 설계기준, 관리기준, 안전기준, 위생학적기준, 환경보호기준과 제품의 품종, 형, 치수, 호수, 기본특성, 기술적요구, 시험법 같은것이 속한다.

### 제3조 (규격의 제정원칙)

규격의 제정은 사회생활의 편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 생산과 경영활동의 합리적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과학기술발전수준과 현실의 요구,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제품의 질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며 노동생산능률을 높이는것을 비롯하여 사회경제적효과성을 최대로 낼수 있게 규격을 제정하도록 한다.

### 제4조 (규격의 적용원칙)

규격의 적용을 바로하는것은 국가의 규격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규격보급사업을 강화하여 제정된 규격을 정확히 적용하도록 한다.

### 제5조 (규격의 통일성보장원칙)

규격을 일원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규격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규격의 통일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6조 (규격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규격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규격일균양성에 깊은 관심을

둘리며 규격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데 큰 힘을 넣는다.

**제7조 (규격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규격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2장 규격의 제정

**제8조 (규격제정의 기본요구)**

규격의 제정을 바로하는것은 규격을 정확히 적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규격제정대상을 바로 정하고 규격제정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 (규격의 분류와 규격제정기관)**

규격은 적용범위에 따라 국가규격, 부문규격, 성규격, 도(직할시)규격, 시(구역), 군규격, 기업소규격으로 나눈다.

국가규격은 중앙규격지도기관이 그밖의 규격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제정한다.

**제10조 (규격화계획)**

규격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규격화사업을 위한 전망계획과 당해년도계획을 바로세우고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규격화계획은 중앙규격지도기관이 세워 국가계획에 맞물린다.

**제11조 (국가립시규격)**

국가규격제정대상으로서 정해진 기술경제적지표에 도달하지 못한 대상은 국가립시규격으로 제정한다.

국가립시규격의 제정은 중앙규격지도기관이 한다.

**제12조 (규격제정의 제외대상)**

공예품, 수예품, 미술품 같은것은 규격을 제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생산자와 수요자가 합의하여 기술지표를 만든다.

**제13조 (규격제정의 제한조건)**

국가규격, 부문규격이 제정된 경우에는 그와 다른 규격을, 도(직할시)규격이 제정된 경우에는 시(구역), 군규격이나 기업소규격을 제정할수 없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국가규격, 부문규격이나 정해진 규격제정원칙과 방법론에 준하여 도(직할시)규격, 시(구역), 군규격, 기업소규격을 제정할수 있다.

**제14조 (규격화기술실무기관)**

규격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규격초안작성과 심의를 맡아하는 규격화기술실무기관을 조직할수 있다.

규격화기술실무기관은 정해진 질서에 따라 규격초안의 작성과 심의를 하며 작성, 심의한 규격초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15조 (규격초안작성)**

규격초안은 규격을 새로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작성한다.

국가적으로 긴급하게 제기되는 대상의 규격초안은 중앙규격지도기관이 직접 작성할수 있다.

**제16조 (새 제품생산, 새 기술도입과 관련한 규격의 초안작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 개발생산하는 제품(식료품, 의약품, 화장품과 같이 사람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 제외)에 대하여 새 제품 장려기간 기업소규격을 제정하고 리용할수 있다. 그러나 새 제품의 생산, 새 기술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통일시켜야 할 규격제정대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가규격초안을 작성하여 중앙규격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7조 (규격의 심의)**

국가규격은 비상설규격화위원회에서, 그밖의 규격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규격합평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18조 (규격의 효력)**

부문규격, 성규격, 도(직할시)규격, 시(구역), 군규격, 기업소규격은 해당 규격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제19조 (규격의 연구, 도입, 갱신)**

중앙규격지도기관과 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진적인 규격에 대한 연구와 도입사업을 강화하여 규격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갱신하고 통일시켜야 한다.

규격의 갱신은 해당 규격의 유효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제20조 (규격제정에 필요한 자료보장)**

규격지도기관은 규격제정에 필요한 기술경제적자료, 시료, 제품 같은것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경제적자료, 시료, 제품 같은것을 정해진 기간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규격의 략호)**

국가규격의 략호는 《국규》이며 그의 대외적인 표기는 《KPS》이다.

부문규격, 성규격, 도(직할시)규격, 시(구역), 군규격, 기업소규격의 략호와 대외적인 표기는 중앙규격지도기관이 정한다.

**제22조 (규격의 공시)**

규격지도기관은 새로 제정된 규격, 수정보충한 규격, 규격정보사업을 통하여 얻은 국제적인 선진규격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3장 규격의 적용

### 제23조 (규격의 의무적적용)

규격의 적용은 사회경제발전의 필수적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제정된 규격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제24조 (사회생활분야의 규격적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사회생활의 편리를 보장할수 있도록 과학, 교육, 문화, 보건, 환경보호사업 같은데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제25조 (인민경제부문의 규격적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인민경제부문사이의 련계를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설계 및 기술규정의 작성, 가격과 물자소비기준, 노동정량의 제정, 품질검사, 제품생산, 자재공급 같은데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규격이 없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서는 생산계획, 허가, 가격, 제품상표승인, 물자소비기준제정 같은것을 해줄수 없다.

### 제26조 (대외경제계약체결시의 규격적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외경제계약을 맺을 경우 우리 나라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규격을 적용할수 없을 경우에는 국제규격이나 해당 나라의 규격을 적용할수 있다.

### 제27조 (규격적용료금의 지불)

제정된 규격을 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데 따라 규격적용료금을 물어야 한다.

규격적용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 제28조 (규격의 유효기간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규격의 유효기간을 지켜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규격은 적용할수 없다.

### 제29조 (상품의 규격표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 또는 제품상표에 규격략호와 번호, 제정년도, 제품의 생산년도, 보관기일, 보관조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규격략호와 번호, 제정년도, 제품의 생산년도, 보관기일, 보관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공급, 판매할수 없다.

### 제30조 (표준물질, 기준견본)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규격적용에 필요한 표준을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범위에 따라 중앙규격지도기관 또는 해당 규격지도기관에 등록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 제4장 규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1조 (규격사업에 대한 지도)

규격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규격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규격지도기관은 국가의 규격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규격사업을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32조 (규격적용판정)

규격지도기관은 규격적용판정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규격적용판정사업에 필요한 조건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장한다.

### 제33조 (규격합평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규격합평회를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규격제정계획작성, 규격초안 심의, 규격적용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34조 (규격의 대외반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 규격을 출판물로 다른 나라에 내보내려 할 경우 중앙규격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5조 (규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규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규격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규격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규격제정과 적용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36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승인, 등록되지 않은 규격을 적용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2. 제정된 규격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30만~150만원
3. 규격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 판매하였을 경우 20만~100만원
4. 표준물질, 기본견본을 규격지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리용하였을 경우 10만~30만원

### 제37조 (중지처벌)

이 법 제36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시킨다.

### 제38조 (몰수처벌)

규격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규격표시를 위조한 제품을 공급,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몰수한다.

**제39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국가규격, 부문규격과 다르게 규격을 제정하였을 경우
2.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규격을 적용하였을 경우
3. 규격제정에 필요한 자료, 시료, 제품을 정해진 기간안에 보장하지 않아 규격제정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규격의 제정 및 수정보충정형, 규격정보자료를 제때에 알려주지 않아 규격제정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규격을 등록하지 않고 적용하였을 경우
6. 규격이 없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들에 대하여 생산계획, 허가, 가격, 제품상표승인, 물자소비기준제정같은것을 해주었을 경우
7. 규격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 판매하였을 경우
8. 표준물질, 기준전본을 규격지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리용하였을 경우
9. 승인없이 우리 나라 규격을 출판물로 다른 나라에 내보냈을 경우

앞항 1~9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40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화물검수법

주체101(2012)년 7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21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50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48호로 수정보충

## 제1조 (무역화물검수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화물검수법은 무역화물에 대한 검수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무역에서 신용제일주의원칙을 지키며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역화물이란 국경통과지점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화물이다.
2. 검수란 무역화물의 수량을 품종별, 규격별로 확인하는 사업이다.
3. 짐임자기관이란 무역화물을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외국투자은행 포함)이다.
4. 무역화물검수기관이란 무역화물검수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 제3조 (적용대상)

이 법은 국경통과지점을 통하여 무역화물을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한다.

국경통과지점을 통하여 무역화물을 실어나르는 다른 나라 수송기관에도 이 법을 적용 한다.

## 제4조 (검수기관)

무역화물에 대한 검수는 무역화물검수기관이 한다.

무역화물검수기관은 검수체계를 바로세우고 현대적인 검수수단과 방법을 받아들이며 검수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무역화물검수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정확성을 엄격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조 (검수대상)

무역화물의 검수대상은 다른 나라로 내가거나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화물이다.

## 제6조 (검수장소)

무역화물에 대한 검수는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 같은 국경통과지점에서

한다.

필요한 경우 철도 또는 육로로 수송하는 화물에 대하여서는 화물도착장소 또는 화물부치는 장소에서도 검수를 할수 있다.

#### 제7조 (검수의 의무성)

국경통과지점을 통하여 무역화물을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에 내가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화물검수기관으로부터 무역화물에 대한 검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무역화물검수는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검수원자격을 받은 성원만이 할수 있다.

#### 제8조 (검수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

무역화물검수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무역화물검수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무역화물검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 제9조 (조약의 적용)

무역화물의 검수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정부사이에 맺은 협정, 합의서 같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10조 (검수신청문건의 제출)

무역화물에 대한 검수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검수신청문건을 무역화물검수기관에 내야 한다. 검수신청문건에는 신청자명, 기관명칭, 품명, 수량, 출발지, 목적지, 출발날자, 도착 날자, 이 밖의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화물수송문건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 (검수신청당사자)

무역화물의 검수신청은 화물수송기관 또는 짐입자기관이 한다. 화물수송기관 또는 짐입자기관의 위임에 따라 그 대리인도 검수신청을 할수 있다.

#### 제12조 (검수조직)

검수신청문건을 접수한 무역화물검수기관은 화물의 품종과 수량에 맞게 검수조직을 제때에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3조 (무역화물도착통지)

화물수송기관 또는 짐입자기관이나 그 대리인은 무역화물이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면 즉시 무역화물검수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14조 (국경교두에서의 검수)

국경교두에서의 검수는 창고 또는 야적장에서 화물을 신고 부리는 작업시 검수원이 화물수송기관 또는 짐입자기관, 짐작업기관, 짐보관기관의 립회밑에 화물의 수량을 품종별, 규격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5조 (무역항에서의 검수)**

무역항에서의 검수는 배 또는 부두에서 화물을 싣고 부리는 작업시 검수원이 화물수송기관 또는 짐입자기관, 항작업기관, 짐보관기관의 립회밑에 화물의 수량을 품종별, 규격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조 (국경철도역에서의 검수)**

국경철도역에서의 검수는 철도역에서 화물을 싣고 부리는 작업시 검수원이 화물수송 기관 또는 짐입자기관, 짐작업기관, 짐보관기관의 립회밑에 화물의 수량을 품종별, 규격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7조 (국제항공역에서의 검수)**

국제항공역에서의 검수는 항공역에서 화물을 싣고 부리는 작업시 검수원이 화물 수송기관 또는 짐입자기관, 짐작업기관, 짐보관기관의 립회밑에 화물의 수량을 품종별, 규격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8조 (기타 장소에서의 검수)**

국경통과지점에서 화물을 싣거나 부리지 않고 통과하는 화물의 검수는 화물도착역 또는 화물 부치는역에서 한다.

**제19조 (검수증의 발급)**

무역화물검수기관은 검수가 끝나면 화물의 품종별, 규격별에 따르는 실지수량, 손상 수량, 과부족수량 같은것을 밝힌 검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 (화물의 대금결제조건)**

무역화물검수기관의 검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역화물에 대한 대금결제를 할수 없다.

**제21조 (검수료금)**

무역화물에 대한 검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검수료금을 물어야 한다. 이 경우 검수료금은 검수증을 발급받기전에 묻다.

검수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제22조 (검수사업에서의 협력)**

무역화물검수기관은 검수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련관기관들과 협의하여 대책하여야 한다.

**제23조 (검수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무역화물검수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 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무역화물검수사업에서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24조 (연체료의 적용)**

검수를 받고 정해진 기간안에 검수료금을 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에 연체료를 물린다.

**제25조 (작업중지)**

무역화물검수기관은 검수를 받지 않고 무역화물을 신고 부리거나 입출고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킬수 있다.

**제26조 (행정적 및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무역화물검수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 및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27조 (분쟁해결)**

무역화물검수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제28조 (신소 및 그 처리)**

무역화물검수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또는 해당 기관에 신소를 제기할수 있다.

신소를 제기받은 기관은 그것을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상품식별부호법

주체97(2008)년 1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4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3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19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상품식별부호법의 기본

#### 제1조 (상품식별부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식별부호법은 상품식별부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품류를 정보화하고 사회주의상업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정의, 상품식별부호사용의 의무화원칙)

상품식별부호는 상품에 기계로 인식하여 처리할수 있는 선부호 또는 무선주파수 식별부호 같은것으로 표기한것이다.

국가는 상품생산과 유통부문에서 상품식별부호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제3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원칙)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은 상품식별부호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 제4조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원칙)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을 바로하는 것은 상품류를 과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 요구이다.

국가는 상품식별부호의 제정 및 사용기준을 유일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 제5조 (상품식별부호기술의 연구보급, 물질기술적토대강화)

국가는 상품식별부호기술의 연구와 보급사업을 강화하고 이 분야에 대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6조 (상품식별부호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상품식별부호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7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상품식별부호를 제정, 제작,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우리 나라 상품식별부호를 사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

### 제8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신청의 제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을 바로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상품식별부호를 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 제9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신청문건에 기재사항)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신청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과 주소, 기업의 특성, 식별하려는 상품같은것을 밝히며 기관등록증, 영업허가와 관련한 문건을 첨부한다.

### 제10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신청문건의 제기방법)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신청문건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신청문건을 전자우편, 팩스같은 통신수단을 통하여 낼수도 있다.

### 제11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의 발급)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검토하고 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를 상품식별부호사용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2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의 변경)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내용을 변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변경등록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변경등록신청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과 주소, 변경리유 같은것을 밝힌다.

### 제13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의 재발급)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변경등록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7일안으로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는다.

### 제14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5일전으로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연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의 삭제)

상품식별부호사용자로 등록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거나 사용자등록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에서 삭제한다.

### 제3장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

#### 제16조 (상품식별부호제정과 사용의 기본요구)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은 상품식별부호사업의 기본내용이다.

상품식별부호는 사용부문과 항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정하며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 제17조 (사용자식별번호의 제정)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을 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사용자식별번호를 정해주어야 한다.

사용자식별번호는 나라별식별번호를 포함하여 정한 수만큼 되게 하여야 한다.

#### 제18조 (상품식별부호의 제정신청)

사용자식별번호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제정신청문건을 만들어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상품식별부호제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9조 (상품식별부호제정기관)

상품식별부호를 제정하는 사업은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이 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사용자식별번호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제출한 신청문건과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항목별 상품식별부호를 제정하여야 한다.

#### 제20조 (항목별 상품식별부호의 등록, 보관)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제정한 항목별 상품식별부호를 상품식별부호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등록대장은 2중 또는 3중으로 만들어 보관하여야 한다.

#### 제21조 (상품식별부호 제작기관)

상품식별부호의 제작은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이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도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과 합의하고 상품식별부호를 제작할 수 있다.

#### 제22조 (상품식별부호의 제작)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국가규격에 따라 상품식별부호를 제작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상품식별부호는 제작할수 없다.

**제23조 (상품식별부호의 표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는 상품식별부호를 정해진 방법대로 표기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표기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이 한다.

**제24조 (상품식별부호인쇄질검사)**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필요한 검사수단을 갖추고 상품식별부호인쇄질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인쇄질이 보장되지 않은 상품식별부호는 사용할수 없다.

**제25조 (상품식별부호처리수단의 구비)**

항공역, 철도역, 항, 상업망같은 것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장소에 상품식별부호처리수단을 갖추어놓고 리용하여야 한다.

**제26조 (상품식별부호와 관련한 비법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법적으로 상품식별부호를 제정, 제작, 사용하거나 등록된 상품식별부호를 마음대로 변경시켜 사용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7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의 반환)**

상품식별부호사용자로 등록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산되거나 사용자등록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났을 경우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알리고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된 상품식별부호의 사용금지)**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에서 삭제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를 사용할수 없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삭제된 상품식별부호를 3년동안 다른 사용자에게 주지말아야 한다.

**제29조 (항목변경의 신고)**

상품식별부호는 해당 항목이 없어지거나 달라지는 경우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알려야 한다.  
없어진 항목의 식별부호는 3년동안 다른 항목에 사용할수 없다.

## **제4장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0조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상품식별부호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상품생산과 류통부문에서 상품식별부호의 사용을 바로하며 사회주의상업발전을 추동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1조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이 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상품식별부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2조 (상품식별부호체계와 기술 및 그 응용분야의 제정공포)**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국가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품식별부호체계와 상품식별부호기술 및 그 응용분야를 제정공포하여야 한다.

**제33조 (상품식별부호자료기지봉사)**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상품식별부호와 관련한 국내외의 앞선 기술자료들과 등록된 상품식별부호들에 대한 자료기지를 조성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봉사하여야 한다.

**제34조 (상품식별부호사업과 관련한 요금)**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요금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사업과 관련한 요금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35조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상품식별부호의 사용자등록과 제정, 제작, 사용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6조 (벌금, 손해보상)**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상품식별부호를 위조 또는 변경시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7조 (중지, 몰수)**

상품식별부호제작에서 국가규격과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제작한 상품식별부호를 랍발하였거나 승인없이 상품식별부호를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상품식별부호제작을 중지시키며 위법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제작에 리용된 해당 설비를 몰수한다.

**제38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상품식별부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39조 (분쟁해결)**

상품식별부호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              |         |                              |
|--------------|---------|------------------------------|
| 주체85(1996)년  | 1월 10일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6호로 채택      |
| 주체88(1999)년  | 2월 26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
| 주체88(1999)년  | 8월 19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5호로 수정보충  |
| 주체98(2009)년  | 12월 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2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0(2011)년 | 1월 25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60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2(2013)년 | 7월 10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50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8(2019)년 | 4월 2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9(2020)년 | 10월 22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48호로 수정보충  |

## 제1장 수출입상품검사법의 기본

### 제1조 (수출입상품검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은 수출입상품검사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워 수출입상품의 질과 량을 담보하고 무역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수출입상품검사대상)

수출입상품검사는 계약에 따라 다른 나라로 내가지거나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상품, 다른 나라로 내가지 않으나 수출상품생산실적으로 평가하는 제품에 대하여 한다.

집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중계 및 통과화물에 대한 상품검사도 할수 있다.

### 제3조 (수출입상품검사의 신청원칙)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은 상품을 수출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 제4조 (수출입상품검사의 객관성, 정확성보장원칙)

수출입상품검사는 상품의 질과 수량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수출입상품검사에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5조 (수출입품검사기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수출입상품검사는 수출입품검사기관이 한다.

국가는 수출입품검사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 제6조 (수출입상품검사기준의 준수원칙)

수출입상품검사기준을 준수하는것은 수출입상품검사를 과학적으로 신속정확히 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수출입상품검사를 검사기준과 계약문건에 엄격히 준하여 하도록 한다.

**제7조 (수출입상품검사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수출입상품검사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

**제8조 (수출입상품검사신청의 기본요구)**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을 바로하는것은 수출입상품검사를 정확히 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9조 (수출입상품검사신청당사자)**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은 다른 나라와 계약을 맺은 무역기관이 한다.

수출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입상품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상품검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출입상품검사신청서의 제기, 검토확인)**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상품검사신청서를 수출입품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서에 수출입상품의 품명과 판매자, 구매자, 수량, 품질, 포장조건, 품질 보증기간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수출입품검사기관은 접수한 수출입상품검사신청서를 정확히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출입상품검사로금)**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검사료를 물어야 한다.

배의 선창을 검사받은 경우에도 정해진 검사료를 문다.

선창검사는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한다.

**제12조 (다른 나라 법인, 공민과 해외동포의 수출입상품검사신청)**

다른 나라 법인, 공민과 해외조선동포도 필요에 따라 상품검사, 선창검사신청을 할수 있다.

## 제3장 수출입상품의 검사방법

**제13조 (수출입상품검사방법의 기본요구)**

수출입상품의 검사방법을 개선하는것은 수출입상품검사를 강화할수 있게 하는 중요방도이다. 수출입품검사기관은 정해진 수출입상품검사방법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제14조 (수출입상품검사장소)**

수출입상품검사는 수출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입상품을 공급,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수출입상품을 싣거나 부리는 철도역에서 한다.

필요에 따라 무역항, 국경역, 국제항공역, 국경인수도지점 같은 수출입상품이 통과하는 지점에서도 수출입상품검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입상품의 수량확인은 무역화물검수기관의 검수결과에 준한다.

수입상품은 국경통과지점에 꾸러진 소독장에서 소독을 한 다음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생산단위에서의 수출상품검사)**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수출상품검사는 완제품검사와 출하검사로 나누어 한다. 이 경우 상품의 질과 수량, 포장상태를 확인한다.

수출입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상품은 수출상품생산실적으로 평가하거나 출하 할수 없다.

**제16조 (수입상품의 검사)**

수입상품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수입상품검사는 상품의 포장상태와 질, 수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7조 (철도역에서의 수출입상품검사)**

수출입상품을 싣거나 부리는 철도역에서 수출입상품검사는 화차의 위생상태와 봉인상태, 상품의 적재상태, 포장상태, 질과 수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8조 (무역항에서의 수출입상품검사)**

무역항에서 수출입상품검사는 도착검사와 상선검사로 나누어 한다.

도착검사는 상품의 적재, 포장상태와 질을, 상선검사는 보관된 수출상품가운데서 보관기일이 지났거나 사고가 있을수 있는 상품의 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밖에 따로 정한 상품은 적재와 포장상태만을 검사한다.

**제19조 (국경역에서의 수출입상품검사)**

국경역에서 수출입상품검사는 도착검사와 통과검사로 나누어 한다.

도착검사는 화차의 봉인상태, 상품의 적재 및 포장상태와 보관기일이 지난 상품과 산적화물의 질, 옮겨싣거나 부리는 포장된 상품의 질을, 통과검사는 화차의 봉인상태와 외형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0조 (국제항공역, 국경인수도지점에서의 수출입상품검사)**

국제항공역, 국경인수도지점에서 수출입상품검사는 운수수단의 봉인 및 위생상태와 상품의 적재 및 포장상태, 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1조 (포장립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사지점에서 수출상품을 포장하거나 수입상품의 포장을 뜯으려 할 경우 수출입품검사기관의 립회밑에 하여야 한다.

**제22조 (검사증발급, 대금결제)**

수출입품검사기관은 수출입상품검사가 끝나면 해당한 검사증을 발급하여준다.  
검사증이 없는 수출입상품은 대금결제를 할수 없다.

**제23조 (수입상품의 사고감정)**

수출입품검사기관은 수입상품의 사고에 대하여 감정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감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감정증명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에 준하여 해당한 손실을 보상받아야 한다.

**제24조 (감정한 상품의 처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고로 감정된 수입상품을 그대로 보존하고 수출입품 검사기관과 무역기관의 합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내용과 맞지 않아 사용할수 없는 수입상품은 돌려보낸다.

**제25조 (기술감정, 실험분석의 의뢰)**

수출입품검사기관은 필요에 따라 수출입상품의 기술감정과 실험분석을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할수 있다.  
기술감정과 실험분석을 의뢰받은 기관은 그것을 정해진 기일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 (사고내용, 보상받은 정형의 통지)**

무역기관은 수출한 상품에서 생긴 사고내용과 수입상품사고로 보상받은 정형을 수출입품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수출입품검사기관은 수출한 상품의 사고원인을 제때에 해명하여야 한다.

**제27조 (세관과의 관계)**

수출입품검사기관은 수출입상품검사에서 해당 세관과의 련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해당 세관은 소독확인서가 없거나 수출입상품검사를 받지않은 상품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

## **제4장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28조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수출입상품검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9조**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수출입품검사지도기관이 한다.

수출입품검사지도기관은 수출입상품검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0조** (수출입상품검사조건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상품검사에 필요한 시간, 장소, 계량수단, 분석용시료 같은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1조**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수출입품검사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수출입품검사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출입상품검사정형을 정확히 감독통제 하여야 한다.

**제32조** (중지, 벌금)

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입상품을 수송, 공급,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릴수 있다.

**제3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수출입상품검사에 지장을 주었거나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잃었거나 국가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주체96(2007)년 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25호로 채택  
주체109(2020)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7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의 기본

### 제1조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은 열설비와 내압설비의 감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설비사고를 미리 막고 에너르기량을 없애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열 및 내압설비의 정의)

열 및 내압설비는 열을 생산, 리용하거나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받는 설비와 장치물이다. 열설비에는 보일러, 공업로, 증기발생장치, 랭동기, 증기타빈, 기름가열기, 열관 같이 열을 생산, 리용하는 설비와 장치물이, 내압설비에는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받는 내압탱크, 내압병, 압축기, 산소-수소발생기, 폭발성가스취급시설 같은것이 속한다.

### 제3조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원칙)

열 및 내압설비감독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열 및 내압설비감독부문을 현대화하며 감독의 과학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4조 (감독관할)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은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모든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감독을, 도(직할시)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관할지역 또는 관할부문의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감독을 한다.

### 제5조 (열내압설비감독일군)

열내압설비감독일군은 생산에 직접 복무하는 생산로력이다. 열 및 내압설비감독은 열내압설비감독원 또는 열내압설비공정검사원의 자격을 가진자만이 할수 있다. 열내압설비감독원의 자격은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이, 기관, 기업소의 열내압설비공정검사원의 자격은 해당 지역 또는 부문의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이 준다.

### 제6조 (열 및 내압설비감독사업에 대한 지도)

열 및 내압설비감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이 한다.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감독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대상)**

이 법은 열 및 내압설비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해당 감독기관에 적용한다.  
열 및 내압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 (열 및 내압설비감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열 및 내압설비감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 시킨다.

## 제2장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대상

**제9조 (감독대상선정의 기본요구)**

열 및 내압설비감독대상을 바로정하는것은 열 및 내압설비감독사업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관리운영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10조 (설계, 제작질서를 어긴 행위)**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설계기관과 공장에서 설계, 제작하였는가를 감독한다.

**제11조 (합의질서를 어긴 행위)**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의 합의를 받고 열 및 내압설비를 제작, 설치, 개조, 수입하거나 판매하는가를 감독한다.

**제12조 (설치질서를 어긴 행위)**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를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였는가를 감독한다.

**제13조 (등록질서를 어긴 행위)**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를 해당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사회안전기관에 등록하고 운영하는가를 감독한다.

**제14조 (보수주기를 어긴 행위)**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의 보수주기를 지키는가를 감독한다.

**제15조 (기술문건을 갖추지 않은 행위)**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안전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설비경력서, 사용지도서를 비롯한 기술문건을 정확히 갖추고 담당제를 실시하였는가를 감독한다.

**제16조** (기술검사질서를 어긴 행위)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를 기술검사 받고 운영하는가를 감독한다.

**제17조** (이관, 폐기질서를 어긴 행위)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의 이관, 폐기질서를 지켰는가를 감독한다.

**제18조** (운전질서를 어기는 행위)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자격이 없는자가 열 및 내압설비를 운전하지 않는가를 감독한다.

## 제3장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절차와 방법

**제19조** (열 및 내압설비감독절차와 방법의 기본요구)

열 및 내압설비감독절차와 방법을 지키는것은 열 및 내압설비감독사업을 바로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절차와 방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20조** (기술검사의 대상)

새로 제작, 수입, 설치하였거나 기술검사유효기간이 된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하여 기술검사를 한다.

기술검사는 제작검사와 설치검사, 정기검사로 나누어 한다.

제작검사는 해당 품질감독기관이, 수입설비에 대한 검사와 설치검사, 정기검사는 열내압설비감독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21조** (의무적기술검사)

열 및 내압설비를 제작, 수입, 설치, 개조, 보수하였거나 기술검사유효기간이 지난 열 및 내압설비를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기술검사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기술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열 및 내압설비는 운영할수 없다.

**제22조** (기술검사기준의 작성)

열 및 내압설비기술검사기준의 작성은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이 한다.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기술검사기준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 (기술검사의 신청)

열 및 내압설비의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검사신청서를 열내 압설비감독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기술검사신청서에는 기관이름, 설비이름, 능력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24조 (기술검사기간)**

기술검사신청서를 접수한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15일안으로 검사대상을 료해 하고 기술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제작검사)**

제작검사는 새로 생산한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품질감독법규에 따라 해당 품질감독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자체로 제작, 리용하는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하여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열내압설비공정검사원이 검사한 후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의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설치검사)**

설치검사는 새로 설치하는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설계도면과 검사 기준에 따라 한다.

**제27조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이 되었거나 보수, 개조한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보수, 개조공정에 따르는 공정검사에 기초하여 개조설계도면, 검사기준에 따라 한다.

**제28조 (설비의 공정검사)**

열 및 내압설비의 공정검사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적인 측정수단을 도입하여 열 및 내압설비의 공정검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 (자체검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영하는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자체검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설비사고요소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을 중지하고 열내압설비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0조 (기술검사증의 발급)**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기술검사에서 합격되어 운영을 승인하는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하여 기술검사증을 발급한다.

기술검사증에는 검사유효기간을 밝히고 검사도장을 찍는다.

새로 생산한 내압병에는 기업소이름, 제작검사날자를 밝힌 쇠도장을 찍는다.

**제31조 (기술검사로금)**

열 및 내압설비의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한료를 물어야 한다.

기술검사로금을 정하는 사업은 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2조 (감독방법)**

운영중에 있는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은 정상감독과 집중감독으로 나누어 한다.  
집중감독은 필요한 경우에 한다.

**제33조 (위반조서의 작성)**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의 관리운영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하여 조서를 받을수 있다.  
조서에는 위반자의 신분관계, 단속날자, 위법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34조 (감독사업조건의 보장)**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열 및 내압설비감독사업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을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4장 열 및 내압설비감독결과의 처리

**제35조 (감독결과 처리의 기본요구)**

열 및 내압설비감독결과의 처리는 열 및 내압설비관리운영질서를 세우고 그것을 어긴자를 개준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관리운영질서를 어긴자의 개준성, 행위의 위험성정도를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 (대책적의견의 제기)**

열 및 내압설비를 감독한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설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적의견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기할수 있다.  
대책적의견을 제기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30일안으로 처리하고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7조 (위법행위의 심의결정)**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과정에 적발한 위법행위는 30일안으로 열내압설비감독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심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한다.

**제38조 (중지)**

승인없이 열 및 내압설비를 제작, 이관, 개조, 수입하여 설치하였거나 기술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하였거나 또는 설비사고요소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운영을 중지시킨다.

**제39조 (손해보상)**

열 및 내압설비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0조 (벌금)**

열 및 내압설비의 관리운영질서를 어겨 연료와 열, 동력을 낭비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41조 (몰수)**

승인없이 열 및 내압설비를 수입, 판매하였거나 불량한 설비를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설비와 돈을 몰수한다. 이 경우 몰수품목록을 작성한다.

**제4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과 관리운영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43조 (신소의 제기)**

열 및 내압설비감독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내 압설비감독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신소를 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제품생산허가법

주체91(2002)년 7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25호로 채택  
주체95(2006)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5호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26호로 수정보충  
주체108(2019)년 3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50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21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제품생산허가법의 기본

#### 제1조 (제품생산허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품생산허가법은 제품생산허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제품의 질을 높이며 생산의 전문화, 집중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제품생산허가제의 실시원칙)

제품생산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요구의 하나이다.  
국가는 정해진 제품에 대하여 생산허가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 제3조 (제품생산허가대상의 선정원칙)

제품생산허가대상의 선정은 제품생산허가사업의 선차적공정이다.  
국가는 중앙의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래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제품생산허가대상을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 제4조 (제품생산허가신청의 원칙)

제품생산허가신청을 바로하는것은 제품생산허가심의를 제때에 정확히 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제품생산허가신청절차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하고 개선완성하도록 한다.

#### 제5조 (제품생산허가심의원칙)

제품생산허가심의를의 규격 또는 설계의 요구에 따르는 제품생산의 기술준비, 생산공정의 완비정형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제품생산허가심에서 과학성과 신속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6조 (제품생산허가사업의 조건보장원칙)

국가는 제품생산허가사업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7조 (제품생산허가기관)

제품생산허가는 대상에 따라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과 부문제품생산허가기관, 도(직할

시)제품생산허가기관이 한다.

#### 제8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2장 제품생산의 허가대상

#### 제9조 (제품생산허가대상에 속하는 제품)

제품생산허가대상을 바로 정하는것은 제품생산허가기관의 중요임무이다.

제품생산허가대상에는 금속공업, 기계공업, 전자공업, 화학공업, 경공업, 제약공업 같은 부문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생산하는 가공제품이 속한다. 그러나 시작품 또는 시제품, 계절성을 띠지 않는 제품과 시(구역), 군에서 자체로 규격, 가격을 정하고 생산하는 제품,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생산하는 비규격제품, 대학이나 과학연구기관의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에서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생산하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새로 개발생산하는 다품종, 소량제품,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은 생산허가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 제10조 (제품생산허가대상의 구분)

제품생산허가대상은 국가제품생산허가대상, 부문제품생산허가대상, 도(직할시)제품생산허가대상으로 나눈다.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생산의 전문화, 집중화의 요구, 해당 제품의 중요성, 인민경제부문별, 지역별특성과 수요를 정확히 고려하여 제품생산허가대상을 정하여야 한다.

#### 제11조 (국가제품생산허가대상)

제품생산허가대상으로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제품, 사회경제생활에 크게 영향을 줄수 있는 제품은 국가제품생산허가대상이다.

#### 제12조 (부문제품생산허가대상)

국가제품생산허가대상을 제외한 제품생산허가대상가운데서 인민경제 부문별로 해당 제품의 중요성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고 조절통제하여야 할 제품은 부문제품생산허가대상이다.

#### 제13조 (도, 직할시제품생산허가대상)

국가제품생산허가대상과 부문제품생산허가대상을 제외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직할시)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도(직할시)제품생산허가대상이다.

#### 제14조 (제품생산허가대상의 지표승인 또는 합의)

제품생산허가기관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수요에 따라 제품생산허가대상의 지표를 늘이거나 줄일수 있다.

국가제품생산허가대상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이 정한다.  
부문제품생산허가대상과 도(직할시)제품생산허가대상은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부문제품생산허가기관과 도(직할시)제품생산허가기관이 정한다.

**제15조 (생산허가대상의 지표와 그 변동정형통지)**

제품생산허가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생산허가대상의 지표와 그 변동정형을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3장 제품생산의 허가신청

**제16조 (제품생산허가신청사유)**

제품생산허가신청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려 하거나 생산허가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계속 생산하려 할 경우에 한다.

생산허가유효기간이 끝난 제품에 대한 생산허가신청은 질지표 또는 원단위소비기준이 갱신되었을 경우에만 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전문으로 생산하는 제품은 생산허가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다시 제품생산허가신청을 하지 않고도 계속 생산할수 있다.

**제17조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의 작성)**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은 제품별로 작성한다.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에는 제품의 기술적특성자료, 성능시험자료, 품질검정통지서, 위생학 적담보서 같은것을 첨부한다.

**제18조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에 대한 확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에 담당품질감독원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담당품질감독원은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제품생산의 기술준비와 생산공정의 완비정형을 확인하여주어야 한다.

**제19조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의 제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을 해당 통합전자수속체계를 통하여 제품생산허가기관에 내야 한다.

**제20조 (견본품의 제출방법)**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을 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제품의 견본품을 품질분석기관에 내어 품질검정을 받은 다음 품질검정합격통지서를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품생산허가기관에는 견본품을 내지 않는다.

**제21조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의 등록)**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하면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일자, 제품명,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같은것을 밝힌다.

**제22조 (결함이 있는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의 수정)**

결함이 있는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제품생산허가기관은 그것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돌려보내여 결함을 고치게 하여야 한다. 결함을 고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을 다시 제기할수 있다.

**제23조 (제품생산허가신청일자)**

제품생산허가신청일자는 제품생산허가기관이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 한다. 결함으로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을 돌려보냈을 경우에는 그것을 고친 문건을 접수한 날을 제품생산허가신청날자로 한다.

## 제4장 제품생산의 허가심의

**제24조 (제품생산허가심의의 기본요구)**

제품생산허가심을 정확히 하는것은 새제품, 새기술개발을 적극 추동하고 제품의 질제고와 생산의 전문화, 집중화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제품생산허가심의에서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새 심의와 재심의)**

제품생산허가심의를는 새 심의와 재심으로 나누어 한다. 새 심의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려 할 경우에, 재심의는 제품의 생산유효기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에 한다.

**제26조 (제품생산허가심의내용과 방법)**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제품생산허가심의에서 기구편제승인정형과 생산공정,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정형, 생산기술준비정형을 검토하여야 한다. 생산공정과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정형, 생산기술준비정형에 대한 심의는 생산현장에서 한다.

**제27조 (심의의 위임과 회보)**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생산공정과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정형, 생산기술준비정형에 대한 심의를 품질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에 위임할수 있다. 이 경우 심의를 위임받은 기관은 그 결과를 제때에 회보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품생산허가대상의 심의를 바로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제품생산허가심의위원회를 조

직한다.

**제28조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와 보장)**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품생산허가를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생산허가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의 검토승인, 부결)**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품생산허가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생산허가증을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30조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제기와 그 처리기일)**

제품생산허가심의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제품생산허가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해당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5일안에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 (제품생산허가유효기간)**

제품생산허가유효기간은 국가제품생산허가대상은 5년까지, 부문과 도(직할시)제품생산허가대상은 3년까지이다.

제품생산허가기관은 해당 제품의 특성과 규격, 설계의 유효기간을 정확히 고려하여 제품생산 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32조 (림시제품생산허가)**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은 국가적으로 긴급히 생산하여야 할 제품에 대하여 림시제품생산 허가를 줄수 있다.

림시제품생산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 제5장 제품생산허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3조 (제품생산허가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제품생산허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은 제품생산허가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4조 (생산허가대상제품의 계획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허가대상의 제품을 생산하려 할 경우 생산허가증을 받고 인민경제 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생산허가를 받은 제품에 대하여서만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주어야 한다.

**제35조 (제품생산의 전문화, 집중화)**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생산허가사업을 바로하여 제품생산의 전문화, 집중화를 보장하며 같은 제품을 여러 단위에서 제가끔 생산하면서 제품의 질을 떨어거나 로력, 자재, 자금, 전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생산허가증발급정형자료의 제출)**

부문, 도(직할시)제품생산허가기관은 분기마다 생산허가증발급정형을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 기관에 문건으로 내야 한다.

**제37조 (제품의 질과 원단위소비기준의 갱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허가유효기간안에 해당 제품의 질과 원단위소비기준을 갱신하여야 한다.

생산허가유효기간안에 제품의 질과 원단위소비기준을 갱신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허가는 취소된다.

**제38조 (제품검사, 가격승인, 인민경제계획실행실적평가, 대금결제금지사유)**

국가계획기관과 품질감독기관, 가격제정기관, 통계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생산허가를 받지 않고 생산한 생산허가대상의 제품에 대하여서는 제품검사, 가격승인, 인민경제계획실행실적평가, 대금결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9조 (감독통제기관)**

제품생산허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제품생산허가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제품생산허가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제품생산허가사업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0조 (생산, 출하의 중지, 벌금부과, 생산허가취소사유)**

생산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대상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허가증에 밝혀진대로 생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생산, 출하를 중지시키며 벌금을 물리거나 생산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제4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제품생산허가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품질감독법

|              |         |                              |
|--------------|---------|------------------------------|
| 주체86(1997)년  | 7월 2일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8호로 채택      |
| 주체88(1999)년  | 3월 1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
| 주체91(2002)년  | 6월 13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03호로 수정보충 |
| 주체92(2003)년  | 8월 2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43호로 수정보충 |
| 주체95(2006)년  | 2월 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32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0(2011)년 | 12월 2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
| 주체104(2015)년 | 6월 25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54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8(2019)년 | 3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26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8(2019)년 | 6월 23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3호로 수정보충   |
| 주체109(2020)년 | 10월 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42호로 수정보충  |

### 제1장 품질감독법의 기본

#### 제1조 (품질감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품질감독법은 품질감독사업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제품의 질을 높이고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품질감독사업의 정의)

품질감독사업은 제품생산과 상업 및 급양봉사활동에서 질적지표에 따르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품질감독사업에는 공정검사, 제품검사, 품질검정, 이동검열, 공증시험사업이 속한다.

#### 제3조 (품질감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품질감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는다.

#### 제4조 (품질감독대상)

품질감독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생산, 공급,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한다.

#### 제5조 (공정검사원칙)

공정검사를 강화하는것은 오작품, 불합격품생산을 미리 막고 원료, 자재의 낭비를 없애며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생산공정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도록 한다.

#### 제6조 (제품검사원칙)

제품검사를 강화하는것은 제품의 질과 량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제품검사를 현대화, 과학화하며 제품검사의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7조 (품질검정원칙)

품질검정을 바로하는것은 제품검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질좋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게 하는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품질검정을 객관적립장에서 제때에 정확히 하도록 한다.

#### 제8조 (품질감독의 일원화원칙)

품질감독을 일원화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품질감독체계를 바로세우고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를 보장하도록 한다.

#### 제9조 (품질감독사업의 담당자)

품질감독은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과 해당 품질감독기관이 한다.

품질감독기관밖의 개별적일군은 품질감독사업에 간섭할수 없다.

#### 제10조 (품질감독일군의 자격)

품질감독일군은 생산에 직접 복무하는 생산로력이다.

품질감독일군은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국가는 품질감독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 제11조 (품질감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품질감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장 공정검사

#### 제12조 (공정검사의 기본요구)

공정검사는 원료, 자재의 입하로부터 제품완성에 이르기까지 생산공정에서 진행되는 검사이다.

공정검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공정별로 검사원을 배치하고 공정검사를 정해진 기준대로 하여야 한다.

#### 제13조 (공정검사에 대한 감독)

품질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자체로 진행되는 공정검사를 바로하도록 엄격히 감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품질감독기관은 직접 공정검사를 할수 있다.

#### 제14조 (제품검사에 필요한 자료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을 생산하려 할 경우 월생산계획, 판매계획, 공급계획, 제품생산허

가증과 공업도안, 제품규격, 설계도면 같은 기술문건, 견본품, 각종 지도서를 품질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생산계획을 받지 못하였거나 기술문건, 견본품 같은것이 준비되지 않은 제품은 생산할수 없다.

**제15조 (품질제고전략수립)**

제품의 질제고주인은 생산자대중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전략과 질제고계획을 세우고 제품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야 한다.

**제16조 (공정검사규정과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의 작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별공정검사규정과 생산공정별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만들 어야 한다.

공정검사규정과 생산공정별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시험분석실과 측정수단의 구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험분석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공정검사에 필요한 측정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기관의 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측정수단은 쓸수 없다.

**제18조 (공정검사의 분류와 방법)**

공정검사는 원료, 자재검사, 공정별반제품검사, 완성품검사로 나누어 한다. 이 경우 개당검사, 전량검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발취검사의 방법으로 할수 있다.

**제19조 (공정검사규정과 검사표시)**

공정검사는 공정검사규정과 견본품에 준하여 한다.

검사가 끝난 반제품과 완성품에는 검사표시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반제품과 완성품은 다음 공정에 넘길수 없다.

**제20조 (제품검사신청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정검사를 받은 제품을 등급별로 갈라놓고 제품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제품검사신청서에는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생산날자, 검사원의 이름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21조 (공정검사정형의 보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정검사정형을 해당 품질감독기관에 정상적으로 보고하며 제기된 문제를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

## 제3장 제품검사

### 제22조 (제품검사의 기본요구)

제품검사는 제품의 질과 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담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품질감독기관은 생산된 제품에 대한 최종검사와 포장상태검사, 출하검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23조 (제품검사의 구분)

품질감독기관은 식료품, 의약품, 화장품과 같이 인민들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주는 제품, 국가전략지표, 전문화지표들과 1차소비품을 비롯한 인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련관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3자감독체계를 세우고 제품검사를 직접 하며 그밖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검사를 자체로 한다.

국가검사와 자체검사의 구체적인 대상은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이 정한다.

### 제24조 (제품검사의 기준)

제품검사는 제품별감독규정과 견본품에 준하여 한다.

제품별감독규정과 견본품이 없는 제품에 대한 검사는 해당 제품규격이나 국제규격에 준하여 할수 있다.

### 제25조 (제품검사지점)

제품검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현장에서 한다.

품질감독기관은 필요에 따라 이동검사를 조직할수 있다.

### 제26조 (제품의 검사방법)

제품검사는 발취검사와 전량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제품검사에서는 측정, 감각, 시운전, 물리화학적, 위생학적, 생물학적시험을 진행한다.

### 제27조 (제품검사의 위임)

품질감독기관은 필요에 따라 제품검사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임할수 있다.

제품검사를 위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검사를 제때에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제28조 (품질확인서의 발급)

품질감독기관은 제품의 질과 관련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 중재분석, 판별분석, 공증시험을 진행하고 품질확인서를 발급할수 있다.

### 제29조 (제품의 검사장소)

제품검사는 제품의 질과 량을 정확히 판정할수 있는 계량수단, 시운전조건, 조명, 온도, 습도

같은것이 보장된 장소에서 한다.

제품검사에 필요한 조건과 장소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장한다.

**제30조 (제품의 검사시료와 견본품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와 검사견본품을 품질감독기관에 의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채취와 조제는 품질감독기관이 직접 한다.

경우에 따라 시료채취와 조제를 품질감독기관의 립회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공정검사원, 시료채취공, 분석공도 할수 있다.

**제31조 (이동검열)**

품질감독기관은 이동검열품질감독대를 조직하여 주, 월별로 식료품과 의약품을 비롯한 중요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순회하면서 제품의 질을 검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2조 (제품검사도장)**

품질감독기관은 제품검사를 한 제품에 검사도장을 찍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국가앞에 책임진다.

검사도장의 형식은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이 정한다.

**제33조 (제품검사통지서, 품질증명서발급, 재검사)**

품질감독기관은 제품검사가 끝난 다음 제품검사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품검사통지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에 따라 품질증명서를 작성하고 품질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에 대하여 의견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제품검사를 다시 할수 있다.

**제34조 (제품의 출하검사)**

품질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출하하려 할 경우 출하검사를 하여야 한다.

출하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은 출하할수 없으며 생산실적평가와 대금결제를 할수 없다.

**제35조 (생산실적확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실적을 보고하려 할 경우 품질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검사료금)**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따로 정한 제품에 대하여 검사료금을 물어야 한다.

검사료금은 국가가격기관이 정한다.

**제37조 (등록, 승인)**

일반제품을 생산하거나 상업 및 급양봉사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품질감독기

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며 그의 감독과 승인밑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야 한다.  
등록, 승인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 제4장 품질검정

### 제38조 (품질검정의 기본요구)

품질검정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품질시험능력과 제품의 질상태를 검토하여 사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품질검정기관은 품질검정에서 객관성,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39조 (품질검정체계의 수립)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과 품질분석기관은 품질검정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의 품질시험방법과 품질시험결과에서 일치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40조 (품질검정의 담당자)

품질검정은 중앙품질분석기관과 도품질분석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이 승인한 기관에서도 품질검정을 할수 있다.

### 제41조 (품질검정일군의 자격)

품질검정은 품질검정원자격을 가진 일군만이 할수 있다.

품질검정원의 자격은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이 준다.

### 제42조 (품질검정방법)

품질검정은 정기검정과 수시검정의 방법으로 한다.

정기검정은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이 정한 대상과 주기,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하며 수시검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품질감독기관의 의뢰 또는 품질분석기관의 필요에 따라 한다.

### 제43조 (품질검정기준)

품질검정은 정해진 규범이나 기술문건, 규격에 따라 한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제품에 대한 품질검정은 해당 나라의 규격으로 할수 있다.

### 제44조 (품질검정의 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분석대상과 주기에 따라 해당 품질분석기관에 신청서를 내고 품질검정을 제때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요금을 물어야 한다.

### 제45조 (품질검정통지서의 발급)

품질분석기관은 품질검정을 한 다음 품질검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장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46조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지도)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은 품질감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품질감독사업에서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도록 한다.

### 제47조 (비상설품질감독위원회와 품질감독3인조의 조직운영)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집체적지도를 보장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내각에 비상설품질감독지도위원회를, 도(직할시), 시(구역), 군에 비상설품질감독위원회를 조직운영하며 품질감독과정에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를 토의대책하기 위하여 생산현장에는 정권기관 일군, 품질감독기관 일군, 기업소기술일군들로 비상설품질감독3인조를 둔다.

### 제48조 (질제고를 위한 사회적분위기조성)

국가는 사회적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켜 2월 2일 제품과 12월 15일품질메달을 받은 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공장, 기업소대렬을 늘여나가도록 한다.

### 제49조 (질제고대책월간)

국가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2월과 7월을 제품질제고대책월간으로 정하고 이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한다.

### 제50조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품질관리 및 품질감독정형을 정상적으로 검열, 감독하며 법위반행위가 엄중한 경우 기구조직기관에 통지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를 해산할수 있다.

### 제51조 (위반조서)

품질감독기관은 제품생산단위에서 공정검사와 제품검사, 품질검정질서를 지키지 않았거나 상업 및 급양봉사단위에서 품질관리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위반조서를 받을수 있다. 위반조서에는 이름, 직장직위, 위반내용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 제52조 (생산과 판매, 봉사의 중지)

다음의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 봉사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생산공정을 없앨수 있다.

1. 이 법 제37조의 요구를 어기고 품질감독기관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2.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생산환경보장의 요구를 어겼거나 원료, 자재의 질적지표를 보장하지 못하여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할 경우

3. 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 봉사하거나 제품보관을 바로하지 않아 제품을 부패 변질시켰을 경우

**제53조 (제품의 출하금지)**

상표 또는 포장상태가 불비하거나 검사표시가 없는 제품, 불합격품, 검사받지 않은 제품, 공구, 지구가 없는 제품과 수송기재가 어지러운것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출하를 중지시킨다.

**제54조 (제품 또는 금액의 회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출하하였거나 불합격품처리를 정해진대로 하지 않았거나 제품 검사기준문건과 시험분석수치를 위조하여 제품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제품 또는 제품의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

**제55조 (변상)**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하였거나 포장, 보관관리를 바로하지 못하여 제품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변상시킨다.

**제56조 (벌금, 몰수, 자격박탈)**

제품의 질보장을 위한 조직사업을 바로하지 못하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아 제품의 질을 떨어뜨렸거나 품질확인문건이 없거나 그것을 위조한 제품, 보관기일이 지난 제품, 가짜 또는 불량제품을 판매, 봉사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 제품을 몰수한다.

품질감독일군과 감독원이 생산하지 않은것을 생산한것으로, 불합격품을 합격품으로 평가해주는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자격을 박탈한다.

**제5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품질감독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거나 국가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허풍방지법

주체111(2022)년 5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972호로 채택

## 제1장 허풍방지법의 기본

### 제1조 (허풍방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허풍방지법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허풍을 치는 현상과의 투쟁을 강하게 벌려 국가의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고 인민의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허풍의 정의)

허풍은 공명심과 리기심, 책임회피와 같은 낡은 사상에 물젖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실태를 허위로 보고하여 국가의 정책집행과 인민생활에 엄중한 해독적후과를 끼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행위이다.

### 제3조 (허풍방지의 기본원칙)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허풍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면밀히 세우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실태에 대하여 국가적립장에서 정확히 보고하는것을 혁명규률로 간주하고 엄격히 준수하도록 한다.

### 제4조 (허풍행위에 대한 처벌원칙)

국가는 허풍을 치거나 허풍을 치도록 암시, 묵인, 조장하여 국가의 정책집행과 인민생활에 엄중한 해독적후과를 끼친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누구이든 정상에 따라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 제5조 (해당 법규의 적용)

허풍을 치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경제계산에서의 허풍방지

### 제6조 (경제계산에서 허풍방지의 기본요구)

경제계산에서 허풍을 방지하는것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품질감독기관, 통계기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제계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계획을 우롱하거나 허위로 통계보고하는 등 허풍을 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인민경제계획작성과 시달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작성을 위한 예비수자를 국가계획기관에 정확히 제기하며 국가계획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제기하는 예비수자의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검토 확인하고 광범한 균중토의를 거쳐 통계수자의 과학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예비수자와 통계수자를 가지고 통간을 부리는것과 같은 인민경제계획작성과 시달에서 허풍을 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을 미루지도, 당기지도 말고 순별, 월별, 분기별로 정확히 수행하며 경제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고있다가 월말이나 분기말, 연말에 가서 계획을 맞추어 련관단위들의 기업활동과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9조** (품질보장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자원화를 한다고 하면서 제품의 질을 무시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 불합격품, 보관기일이 지난 제품, 가짜상품 또는 불량상품을 생산 및 공급, 판매, 봉사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통계장악과 보고에서의 허풍방지)

통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계장악과 보고에서 아래단위에서 보고하는 통계수자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되받아넘기거나 시초계산자료와 계량계측수단도 없이 거짓통계자료를 만들거나 허위로 통계보고하여 국가의 정책수립과 인민경제계획화에 혼란을 조성하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에 대한 평가에서의 허풍방지)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통계기관,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생산실적뿐 아니라 련관단위들에 대한 원료와 자재, 협동품보장정형, 인민소비품인 경우에는 상업망에서의 판매실적까지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을 세워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허풍자체가 통할수 없게 하여야 한다.

### 제3장 농업생산에서의 허풍방지

**제12조** (농업생산에서 허풍방지의 기본요구)

농업생산에서 허풍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는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요

구이다.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농장은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허풍을 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에서의 허풍방지)**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농장은 국가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지도능력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영농공정비에 따르는 농사진행정형을 빠짐없이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영농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주관주의적으로, 일률적으로 내리먹이거나 책임회피 또는 리기적목적으로 농업생산정형을 허위로 보고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암시,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영농준비사업에서의 허풍방지)**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농장은 부식토, 두엄, 퇴비, 진거름을 비롯한 자급비료의 생산과 반출, 영농설비, 자재의 확보와 같은 영농준비사업에서 허풍을 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5조 (영농작업수행에서의 허풍방지)**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모내기과 김매기, 비료주기, 농약치기, 가을걷이 등 모든 영농작업수행에서 과학농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거나 눈가림식으로 길옆포전과 밭머리를 비롯한 보이는 곳에만 김매기를 하는것과 같은 허풍을 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제16조 (농작물예상수확고판정에서의 허풍방지)**

농업지도기관과 농업과학연구기관, 농장은 위성정보해석기술과 농작물생육모의기술에 의한 논벼, 강냉이예상수확고판정과 해당 기관 일군, 농장원의 립회밑에 진행되는 평뜨기방법에 의한 포전별농작물예상수확고판정을 결합하여 그 과학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농작물예상수확고판정을 되는대로 하거나 룡간을 부리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 (농업생산정형의 등록과 보고에서의 허풍방지)**

농장은 해당 기관 일군의 립회밑에 계량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계량수단으로 모든 농업생산물을 정확히 계량하여 빠짐없이 등록하고 통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업생산물의 계량을 규정대로 하지 않거나 농업생산정형을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8조 (농업생산물수매계획수행에서의 허풍방지)**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자기 단위에 시달된 국가알곡의무납부계획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계획을 넘쳐 수행한 농장, 작업반, 분조의 농업생산물을 더 거두어들여 납부 및 수매계획을 맞추거나 계획수행을 빗대고 평균주의를 하여 농장원들의 생산의

육을 떨어뜨리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9조 (농업토지리용에서의 허풍방지)**

농업지도기관과 농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없이 농업토지를 건설부지로 리용하거나 큰물로 류실, 매몰된 농업토지를 원상복구, 대토복구하지 않거나 자의대로 지목을 변경시키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 (농업부문에서 허풍방지를 위한 과학기술도입)**

농업지도기관과 농업과학연구기관, 농장은 농업생산정형에 대한 장악에서 원격수감기술을 비롯한 현대정보기술수단과 여러가지 분석 및 측정기술을 연구도입하여 농업부문에서 허풍을 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장 사회전반에서의 허풍방지

**제21조 (사회전반에서의 허풍방지의 기본요구)**

사회전반에서 허풍을 방지하는것은 국가의 전면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모든 사업에서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허풍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22조 (각종 사고방지사업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관리체계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설비의 점검과 정비보수를 제때에 진행하며 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불비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퇴치하는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켜야 한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눈가림식, 땀때기식으로 하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3조 (비상방역사업에서의 허풍방지)**

각급 비상방역지휘부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병과 검진, 소독약생산과 소독사업,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봉쇄 등 비상방역규정과 질서를 엄격히 준수하며 비상방역계획실행정형을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4조 (과학기술인재양성사업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의 과학기술인재를 배양, 육성하는 사업을 생산과 건설에 앞세워 품들여 체계적으로 실속있게 하며 허풍을 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5조 (과학기술심의 및 학위학직심의에서의 허풍방지)**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과 해당 기관은 논문, 발명, 창의고안 등 새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에 대한 심의를 정확히 하며 학위학직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학위학직심의를 바로하지 않거나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비법적으로 평가하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과학연구결과를 과장하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6조 (자격 및 급수사정에서의 허풍방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의 자격 및 급수를 공적과 실력에 따라 정확히 평가하지 않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7조 (국가표창사업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표창추천대상의 공로내용을 과장날조하거나 년한과 기술기능급수, 경력을 위조하거나 료해심의를 무책임하게 하거나 표창일군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국가표창추천 및 료해심의에서 허풍을 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8조 (계량, 계측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허가를 받지 않고 계량계측수단을 사용하였거나 계량계측기구의 눈금이나 량을 비법적으로 고쳤거나 틀린다는것을 알면서 사용하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9조 (민방위사업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간군사훈련계획을 정확히 집행하며 전시지휘소와 대피호, 방공호를 비롯한 민간반항공시설을 규정대로 설비하고 전쟁준비에 필요한 물자들을 정해진 기준대로 갖추어야 한다.

민간군사훈련계획을 형식적으로 집행하거나 돈이나 물건을 받고 훈련에 참가시키지 않거나 민간반항공시설을 규정대로 설비하지 않거나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정해진 기준대로 갖추지 않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 공장과 일터, 살림집 등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강국의 체모에 맞게 잘 꾸리고 사회주의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땀때기식, 눈가림식으로 하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 (재해방지사업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큰물, 폭우, 가뭄,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판정이나 평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의 생명안전과 국토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산림조성과 강하천정리, 사방야계공사, 해안보호시설물공사, 도로보수 등을 질적으로 하여 자기 지역을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게 하며 허풍을 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지도사업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모든 사업을 국가의 정책적요구와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지도하여 국가와 인민이 실지 덕을 입고 후날에도 손색이 없도록 하며 지도사업을 건수나 채우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3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사업보고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비롯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실태를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국가적립장에서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상급기관에 맹종맹동하거나 리기심, 책임회피와 같은 낡은 사상에 물젖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실태를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4조** (일생산 및 재정총화에서의 허풍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강화하고 생산실적과 계획수행정형 등을 종업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알려주어 각성된 군중의 통제에 의하여 허풍이 제압될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5장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5조**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것은 국가의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고 나라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6조**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지도)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7조**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

내각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허풍이 유발될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실무적대책을 면밀히 세우며 허풍을 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허풍을 치도록 암시, 묵인, 조장하거나 아래단위에서 보고하는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되받아넘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8조** (허풍을 방지하기 위한 교양사업강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민들속에 허풍을 치는 현상의 위험성과 후과를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과 준법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허풍을 치지 않도록 하며 허풍을 쓸어버리기 위

한 전사회적, 전군중적투쟁에 적극 펼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를 속이고 허풍을 치거나 일군들이 직권을 리용하여 품질감독, 통제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정상적인 사업에 간섭하면서 허풍을 치도록 지시, 암시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40조** (품질감독통제에서 지켜야 할 요구)

내각과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질적지표를 기준대로 보장하지 못한 제품을 합격품으로 평가하거나 품질등급평가를 망탕 하는 등 품질감독규정과 질서를 어기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검열, 감독하여야 한다.

**제41조** (통계사업감독통제에서 지켜야 할 요구)

내각과 중앙통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통계수자의 정확성과 과학성을 보장하지 않거나 통계수자를 확인하지 않고 되받아넘기거나 허위수자를 눈감아 주거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을 계획수행에 포함시켜 평가해주는 등 통계사업에서의 무책임하고 비원칙적인 현상에 대한 감독통제의 도수를 높이고 사소한 문제라도 사견화하여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제42조** (품질감독, 통계사업조건보장)

내각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품질감독, 통계일군이 자기 사업에 전심 전력할수 있게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 (감독통제기관의 직능과 기구 및 대렬강화)

내각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일군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허풍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강화할수 있게 직능을 바로 작성하고 기구적인 대책을 따라세우며 허풍을 감독통제하는 일군들을 실무가 밝고 원칙이 강한 대상으로 꾸려야 한다.

**제44조** (허풍행위에 대한 신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허풍을 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 (허풍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임무수행과정에서 허풍을 치는 행위를 발견하였거나 허풍행위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 엄격히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허풍치는 현상과 관련한 신고를 제때에 접수하지 않거나 깔아뭉개거나 그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6조 (자격정지 및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

이 업 제25조-제27조를 어긴 행위로 받은 학위학직, 저작, 발명, 창의고안, 자격, 급수, 국가 표창은 정지 및 강급 또는 박탈한다.

**제47조 (몰수처벌)**

허가를 받지 않고 생산한 계량계측수단과 허풍행위로 취득한 물품과 자금은 몰수한다.

**제48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예비수자와 통계수자를 가지고 룡간을 부리는것과 같은 인민경제계획작성과 시달에서 허풍을 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인민경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가 월말이나 분기말, 년말에 가서 계획을 맞추어 련관단위들의 기업활동과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재자원화를 한다고 하면서 제품의 질을 무시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 불합격품, 보관기일이 지난 제품, 가짜상품 또는 불량상품을 생산 및 공급, 판매, 봉사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4. 통계장악과 보고에서 아래단위에서 보고하는 통계수자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되반 아넘기거나 시초계산자료와 계량계측수단도 없이 거짓통계자료를 만들거나 허위로 통계보고하여 국가의 정책수립과 인민경제계획화에 혼란을 조성하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에 대한 평가에서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6.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와 영농준비, 영농작업수행, 농작물예상수확고판정, 농업생산물 수매계획수행에서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7. 농업생산물의 계량을 규정대로 하지 않았거나 농업생산정형을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
8. 승인없이 농업토지를 건설부지로 리용하거나 큰물로 류실, 매몰된 농업토지를 원상복구, 대토복구하지 않거나 자의대로 지목을 변경시키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9. 허위로 보고하도록 압력을 가하였거나 암시,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 사고방지사업을 눈가림식, 땀때기식으로 하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11. 과학기술인재양성, 자격 또는 급수판정, 과학기술심의 및 학위학직심의, 국가표창추천 및 룡해심의사업에서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12. 허가를 받지 않고 계량계측수단을 생산하였거나 계량계측기구의 눈금이나 량을 비법



- 적으로 고쳤거나 틀린다는것을 알면서 사용하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13. 민간군사훈련계획을 형식적으로 집행하였거나 민간반항공시설을 규정대로 설비하지 않았거나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정해진 기준대로 갖추지 않은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14.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땀때기식, 눈가림식으로 하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15. 재해방지사업에서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16. 아래단위에 대한 지도사업을 건수나 채우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는것과 같은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17. 상급기관에 맹종맹동하거나 리기심, 책임회피와 같은 낡은 사상에 물젖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실패를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
  18. 일생산 및 재정총화에서 허풍행위를 하였을 경우
  19.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20. 허풍치는 현상과 관련한 신고를 제때에 접수하지 않았거나 깔아뭉개었거나 그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에게 경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2만원분 이상의 재산적손실을 주었거나 국가의 정책수립과 인민생활에 혼란을 준것과 같은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별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49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계획수행정형거짓보고죄, 직권람용죄, 직무태만죄, 계량, 계측기구위조 및 불량계량, 계측기구사용죄, 품질감독질서위반죄, 민간군사훈련을 무책임하게 집행한 죄, 설비점검, 보수질서위반죄를 비롯한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법령색인

## 색인

|                  |       |            |       |
|------------------|-------|------------|-------|
| 가격법              | 上602  | 교원법        | 下664  |
| 가공무역법            | 下966  | 교육강령집행법    | 下672  |
| 가족법              | 上204  | 교육법        | 下678  |
|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 上80   | 구타행위방지법    | 上211  |
| 간척지법             | 下172  | 국가예산수입법    | 下374  |
| 갑문법              | 下179  | 국경동식물검역법   | 上1182 |
| 개성공업지구법          | 下954  | 국경위생검역법    | 上1188 |
| 건설감독법            | 下34   | 국경통과지점관리법  | 上1193 |
| 건설법              | 下40   | 국기법        | 上92   |
| 건설설계법            | 下52   | 국장법        | 上101  |
| 검찰감시법            | 上440  | 국적법        | 上105  |
| 경제개발구법           | 下972  | 국제상품전람회법   | 下987  |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下982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下991  |
| 계량법              | 上1172 | 국토계획법      | 上606  |
| 고등교육법            | 下654  | 국토환경보호단속법  | 下194  |
| 공무원자격판정법         | 上126  | 군중신고법      | 上455  |
| 공민등록법            | 上446  | 귀금속관리법     | 上724  |
| 공업도안법            | 下484  | 규격법        | 上1201 |
| 공원, 유원지관리법       | 下186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下997  |
| 공인법              | 上130  | 금속공업법      | 上728  |
| 공중위생법            | 下778  | 금수산태양궁전법   | 上134  |
| 공증법              | 上449  | 금연법        | 下782  |
| 과수법              | 上1046 | 기계공업법      | 上736  |
| 과학기술법            | 下491  | 기구법        | 上140  |
| 과학기술성과과도입법       | 下503  | 기밀법        | 上146  |
| 광천법              | 上718  | 기상법        | 下511  |

|                           |       |                     |       |
|---------------------------|-------|---------------------|-------|
| 기상수문법 .....               | 下517  |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 | 下693  |
| 기술수출입법 .....              | 下1004 | 무역법 .....           | 下1044 |
| 기업소법 .....                | 上612  | 무역집배용선증개법 .....     | 上874  |
| 내화물관리법 .....              | 上745  | 무역화물검수법 .....       | 上1207 |
| 녀성권리보장법 .....             | 下874  | 문헌법 .....           | 上159  |
| 년로자보호법 .....              | 下882  | 문화유산보호법 .....       | 下701  |
| 농약법 .....                 | 上1052 | 물자소비기준법 .....       | 上646  |
| 농업법 .....                 | 上1058 | 물자원법 .....          | 下224  |
| 농작물종자관리법 .....            | 上1070 | 민법 .....            | 上230  |
| 농장법 .....                 | 上1077 | 민사소송법 .....         | 上264  |
|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        | 上868  | 민용항공법 .....         | 上879  |
|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 .....      | 上151  | 민족유산보호법 .....       | 下710  |
| 담배통제법 .....               | 下787  | 바다오염방지법 .....       | 下230  |
|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 | 上71   | 발견법 .....           | 下391  |
| 대기오염방지법 .....             | 下197  | 발명법 .....           | 下524  |
| 대동강오염방지법 .....            | 下205  | 방사성오염방지법 .....      | 下240  |
| 대외결제법 .....               | 下1008 | 방송법 .....           | 下535  |
| 대외경제계약법 .....             | 下1012 | 방송시설법 .....         | 下543  |
| 대외경제중재법 .....             | 下1018 | 배길표식법 .....         | 上894  |
| 대외민사관계법 .....             | 上215  | 배등록법 .....          | 上899  |
| 대응조치법 .....               | 下1030 | 배안전법 .....          | 上905  |
| 도로교통법 .....               | 上461  | 법제정법 .....          | 上163  |
| 도로법 .....                 | 下217  | 변호사법 .....          | 上482  |
| 도서관법 .....                | 下685  | 보통강오염방지법 .....      | 下249  |
| 도시경영법 .....               | 下62   | 보통교육법 .....         | 下722  |
| 도시계획법 .....               | 上622  | 보험법 .....           | 下393  |
| 도시미화법 .....               | 下72   | 부동산관리법 .....        | 上653  |
| 독성물질취급법 .....             | 上474  | 부림소관리법 .....        | 上1096 |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 下1032 | 북남경제협력법 .....       | 下961  |
| 량정법 .....                 | 下79   | 비상방역법 .....         | 下807  |
| 령수증법 .....                | 下386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 下889  |
| 로동보호법 .....               | 上629  | 사회주의로동법 .....       | 上660  |
| 로동정량법 .....               | 上641  | 사회주의상업법 .....       | 下88   |
| 림업법 .....                 | 上1089 | 사회주의재산관리법 .....     | 上670  |
| 마약관리법 .....               | 下793  | 사회주의헌법 .....        | 上32   |
| 마약범죄방지법 .....             | 上224  | 산림법 .....           | 下260  |

|              |       |                  |       |
|--------------|-------|------------------|-------|
| 산업미술법        | 下731  | 연유법              | 上773  |
| 살림집법         | 下102  |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 下273  |
| 상속법          | 上304  |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 上1221 |
| 상수도법         | 下114  | 외국인기업법           | 下1085 |
| 상업은행법        | 下405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下1089 |
| 상업회의소법       | 下1053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下1096 |
| 상표법          | 下549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下1102 |
| 상품식별부호관리법    | 下413  | 외국인투자법           | 下1111 |
| 상품식별부호법      | 上1211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下1115 |
| 석탄법          | 上752  | 외국투자기업등록법        | 下1126 |
| 선원법          | 上914  |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      | 下1131 |
| 설비관리법        | 上677  | 외국투자기업회계법        | 下1138 |
| 세관법          | 下1056 | 외국투자은행법          | 下1147 |
| 세외부담방지법      | 上312  | 외화관리법            | 下417  |
| 소금법          | 上1104 | 우주개발법            | 下572  |
| 소방법          | 上487  | 원격교육법            | 下748  |
| 손해보상법        | 上317  | 원림법              | 下142  |
| 수로법          | 上923  | 원산지명법            | 下575  |
| 수산업          | 上1113 | 원자력법             | 上781  |
| 수의방역법        | 上1120 | 유기산업법            | 下581  |
| 수의약품관리법      | 上1128 | 유색금속법            | 上788  |
| 수입물자소득법      | 下825  | 유용동물보호법          | 下281  |
| 수출입상품검사법     | 上1216 |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 下587  |
| 수출품원산지법      | 下1071 | 육아법              | 下913  |
|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 下121  | 의료법              | 下839  |
| 시, 군발전법      | 下127  | 의약품관리법           | 下846  |
| 식품위생법        | 下828  | 이동통신법            | 下596  |
| 신소청원법        | 上174  | 인민경제계획법          | 上685  |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下1075 | 인민보건법            | 下853  |
| 소프트웨어보호법     | 下557  | 인민보안단속법          | 上496  |
| 소프트웨어산업법     | 下564  | 인민보안법            | 上504  |
| 아동권리보장법      | 下905  | 인삼법              | 上1140 |
| 약초법          | 下832  |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 下423  |
| 양어법          | 上1133 | 자동차운수법           | 上931  |
| 어린이보육교양법     | 下739  | 자연보호구법           | 下285  |
| 에네르기관리법      | 上766  | 자재관리법            | 上696  |

|                  |       |             |       |
|------------------|-------|-------------|-------|
| 작물유전자원관리법        | 上1148 | 지하철도법       | 上938  |
| 잠업법              | 上1154 | 철도법         | 上946  |
| 장애자보호법           | 下923  | 철도차량법       | 上959  |
| 재산집행법            | 上702  | 철도화물수송법     | 上966  |
| 재생에너지법           | 上795  | 청년교양보장법     | 下755  |
| 재자원화법            | 下292  | 체신법         | 下626  |
| 재정법              | 下433  | 체육법         | 下763  |
| 재판소구성법           | 上509  | 체육시설법       | 下771  |
|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 下299  | 총기류관리법      | 上533  |
| 저작권법             | 下602  | 축산법         | 上1162 |
| 적십자회법            | 下931  | 출입국법        | 下1170 |
| 전기통신법            | 下610  | 출판법         | 下635  |
| 전력법              | 上802  | 컴퓨터망관리법     | 下640  |
| 전염병예방법           | 下860  |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 下647  |
| 전자결제법            | 下442  | 토지법         | 下321  |
| 전자인증법            | 下615  | 토지임대법       | 下1179 |
| 전파관리법            | 下621  | 통계법         | 上712  |
| 정보보안법            | 上512  | 판결, 판정 집행법  | 上539  |
| 정보식별부호관리법        | 下446  | 폐기폐설물취급법    | 下331  |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下935  | 편의봉사법       | 下155  |
| 제품생산허가법          | 上1227 | 평양시관리법      | 上185  |
| 조선로동당 규약         | 上54   | 폭발물처리법      | 上546  |
| 조약법              | 下1154 | 품질감독법       | 上1233 |
| 종합무역장관리법         | 下1158 | 하수도법        | 下162  |
| 종합설비수입법          | 下1163 | 하천법         | 下337  |
| 주물품협동생산법         | 上818  | 합영법         | 下1186 |
| 주민연료법            | 下148  | 합작법         | 下1193 |
| 주민행정법            | 上180  | 항만법         | 上974  |
| 중소탄광법            | 上822  | 항무감독법       | 上985  |
| 중소형발전소법          | 上831  | 해사감독법       | 上996  |
| 중앙은행법            | 下450  | 해사소송관계법     | 上325  |
| 중재법              | 上521  | 해상침수송법      | 上1017 |
| 지방예산법            | 下456  | 해상탐색 및 구조법  | 下343  |
| 지방주권기관법          | 上108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 下941  |
|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 下313  | 해운법         | 上1029 |
| 지하자원법            | 上838  |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 上114  |

|                     |       |
|---------------------|-------|
| 행정검열법 .....         | 上193  |
| 행정구역법 .....         | 上198  |
| 행정처벌법 .....         | 上550  |
| 허풍방지법 .....         | 上1241 |
| 혁명사적사업법 .....       | 上117  |
| 형민사감정법 .....        | 上335  |
| 형법 .....            | 上339  |
| 형법부칙(일반범죄) .....    | 上381  |
| 형사소송법 .....         | 上383  |
| 화약류취급법 .....        | 上593  |
| 화장법 .....           | 下168  |
| 화폐류통법 .....         | 下463  |
| 화학공업법 .....         | 上849  |
| 환경보호법 .....         | 下353  |
| 환경영향평가법 .....       | 下368  |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 | 下1197 |
| 회계검증법 .....         | 下469  |
| 회계법 .....           | 下476  |
| 흑색금속법 .....         | 上858  |